

2006년도

연 차 보 고 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06년도
연 차 보 고 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서 문

2006년도는 위원회에 있어 무척 중요하고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제정,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언론피해구제’라는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전력을 다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0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 온 언론 조정신청 건수가 2006년에는 전년대비 23.1% 늘어난 1,087건에 이르러 연간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356건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신청인에 대한 피해구제율은 60.6%를 기록, 수년간 이어 온 60%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유지했습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손해배상청구는 2006년 318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4건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55.9%의 피해구제율을 기록, 전년도에 비해 청구건수 및 피해구제율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언론중재법의 안착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제도 역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측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제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시행과 함께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된 중재신청도 지난 한 해 7건을 접수·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중재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 관련 신청 건수는 77건으로 작년에 비해 약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4년 4월에 활동을 시작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2,304건의 상담을 접수, 이 중 74%인 1,700여건을 조정신청절차 등으로 안내

했으며 이 가운데 555건이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상담, 조정신청, 기타 법적구제절차 안내에 이르기까지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언론사, 대학, 공·사기업,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교육'을 70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교육 및 사전예방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늘어난 신청건수와 방대한 기록을 감안, 책자와 CD-ROM을 병행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수록내용은 지난해 접수·처리한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대한 현황, 통계와 사례별 요약분이며 자체심의 188건과 신청심의 50건 중 2건, 도합 190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 사례, 위원회의 주요 업무 현황 등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과 CD-ROM이 언론중재제도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개인과 단체는 물론 관련 연구자에게도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정·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신속히 대처해 언론 자유와 책임의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냄으로써 국민과 언론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조 준 희

차례

2006년도 조정 ·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65
------------------------------------	----

조정신청사례

2006대구조정1	· 전○○ 대 TBC-TV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사기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107
2006대구조정2	· 전○○ 대 매일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사기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108
2006서울조정1	· ○○○피해구조연맹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108
2006서울조정2	· ○○○피해구조연맹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109
2006서울조정3	· ○○○피해구조연맹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109
2006서울조정4	· ○○○피해구조연맹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110
2006서울조정5	· ○○○피해구조연맹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110
2006서울조정6	· ○○○피해구조연맹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111
2006서울조정7	· ○○○피해구조연맹 대 MBC-TV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111
2006서울조정8	· ○○○피해구조연맹 대 SBS-TV(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I	111
2006서울조정9	· ○○○피해구조연맹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X	112
2006서울조정10	· ○○○피해구조연맹 대 YTN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112

2006경기조정1	· 안산시 대 투데이뉴스 (정정·손배청구) 안산시 공무원들이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공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13
2006서울조정11	· 이해찬 대 일요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윤모 씨와 최근까지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18
2006서울조정12	· 이해찬 대 프런티어타임스 (손배청구) 신청인이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해 시찰은 하지 않고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19
2006대전조정1	· 조○○ 대 대전일보 (정정청구) 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해외에서 이동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시켜 밀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20
2006경기조정2	· 유○○ 외 24인 대 인천일보 (정정청구) 신청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신문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21
2006서울조정13	· 최○○ 대 중앙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작명하여 운영중인 레스토랑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작명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21
2006광주조정1	· 나주배농업협동조합 대 나주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 조합의 임원들이 폭설에도 불구하고 관광성 외유를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22
2006전북조정1	· 전주○○타운번영회 대 전북일보 (반론청구) 아파트상가번영회가 채납관리비 해소를 위해 애쓴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려 해서 관리사무소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24
2006전북조정2	· ○○레저산업 대 전주KBS-1TV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폐업수를 무단 방류해 인근 포구의 어패류가 집단 폐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25
2006강원조정1	· 국○○ 대 강원도민일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미등기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127
2006강원조정2	· 국○○ 대 강원일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미등기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128
2006강원조정3	· 국○○ 대 춘천KBS-1TV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미등기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129
2006서울조정14	· 해양수산부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해양수산부가 식약청과 협의없이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29
2006서울조정15	· 한○○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재임용심사를 위해 제출한 논문이 재탕논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30
2006광주조정2	· 김○○ 대 나주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이 자신의 치부를 위해 주차장 사용을 막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31
2006광주조정3	· ○○건설(주) 대 대한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낙찰받은 후 불법으로 재 하도급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32
2006서울조정16	· ○○건설 주식회사 대 경향신문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133
2006서울조정17	· ○○건설 주식회사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133
2006서울조정18	· ○○건설 주식회사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134
2006서울조정19	· ○○건설 주식회사 대 한겨레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134
2006서울조정20	· ○○건설 주식회사 대 한국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135
2006서울조정21	· ○○건설 주식회사 대 매일경제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 반론보도	135
2006서울조정22	· ○○건설 주식회사 대 KBS-TV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 반론보도	135
2006서울조정23	· ○○건설 주식회사 대 MBC-TV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I	136
2006서울조정24	· ○○건설 주식회사 대 YTN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X - 반론보도	136
2006대전조정2	· (주)○○케어 대 중도일보 (정정청구) 어린이 안심 프로그램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비인격적 통제장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37
2006서울조정25	· 주식회사 ○○넷 대 KBS-TV (정정 · 반론청구) 선불게임카드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부추긴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38
2006전북조정3	· 주식회사 ○○ 대 전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하천조성사업 투수콘 공사를 전주시와 수의계약하여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39
2006전북조정4	· 좌○○ 대 전북매일 (반론청구) 신청인이 축사와 주택을 불법 증축하여 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41
2006서울조정26	· 보건복지부 대 헤럴드경제 (정정청구) 정부가 병원 영리법인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42
2006서울조정27	· 장○○ 대 수산신문 (정정청구)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인 신청인이 조합비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43
2006서울조정28	· 박○○ 대 종로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과음과 패륜행위로 신문사에서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45

2006경기조정3	· ○○ YMCA 대 뉴스리더 (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탈법적으로 운영되는데도 시로부터 행정편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46
2006경기조정4	· 박○○ 대 뉴스리더 (손배청구) ○○YMCA 자활기관 직원이 이사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운전기사 노릇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48
2006서울조정29	· 교육인적자원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48
2006서울조정30	· 이○○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단월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구속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49
2006서울조정31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사설 보육시설이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관련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50
2006서울조정32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서울시의 일부 어린이집이 영·유아 혼합반을 운영하는 것이 편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51
2006서울조정33	· 한○○ 대 한겨레 (반론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펴낸 괴벨스 평전이 괴벨스의 언론정책을 견줄기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서평은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52
2006서울조정34	· 박○○ 대 KBS-2TV (정정·손배청구) 웨딩업체의 서비스 문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153
2006서울조정35	· 이○○ 대 KBS-2TV (정정·손배청구) 웨딩업체의 서비스 문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154
2006서울조정36	· 이○○ 대 AM7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손해배상	155
2006서울조정37	· 건설교통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건설교통부가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관 주도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56
2006서울조정38	· 손○○ 외 14인 대 일요서울 (정정·손배청구) 포스코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외압 논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손해배상	157
2006서울조정39	· 대구지방국세청 대 일요서울 (정정청구) 포스코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외압 논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59
2006대전조정3	· 이○○ 대 디트NEWS24 (정정청구) 교양과목 강사인 신청인이 교양과목보다 종교적 이야기로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60
2006서울조정40	·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대 스포츠서울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의 소속 연예인의 수영복 몸매가 화제가 된 것이 홍보전략 덕분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61
2006경기조정5	· 서○○ 대 경기일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고의로 휘발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섞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62
2006서울조정41	· 대한의사협회 외 1인 대 창원KBS-1TV (정정청구)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할머니가 숨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63
2006서울조정42	· 강○○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교육부가 자료제공을 기피해 힘들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64
2006서울조정43	· 사단법인 ○○노인회 대 복지연합신문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반론보도	165
2006서울조정44	· 김○○ 대 KBS-2TV (반론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이 결혼식 비디오촬영을 하지 않고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67
2006광주조정4	·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대 광주MBC-TV (정정청구) 신청인 조합이 상가의 용도를 속여 분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68
2006경남조정1	· 주식회사 ○○○○○건설 대 거제타임즈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시공한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가 이태리산 정품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68
2006서울조정45	· 보건복지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72
2006서울조정46	· 방위사업청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방위사업청의 차기잠수함 사업이 핵잠수함 사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73
2006서울조정47	· ○○대학교병원 대 한겨레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병원이 호흡곤란에 빠진 응급환자를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74
2006서울조정48	· 사단법인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대 아트 인 컬처 (정정·반론→반론청구) 대안공간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75
2006경기조정6	· 국정홍보처 대 경기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책광고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78
2006서울조정49	· 이○○ 외 2인 대 KBS-1TV (반론·손배청구) 신청인들이 실력 검증없이 대한펜싱협회 고위층 인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코치와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79
2006서울조정50	· 외교통상부 대 노컷뉴스 (정정청구) 외교부 당국자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사전협의 했다고 시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80

2006서울조정51	· 주식회사 ○○○테크놀러지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기획한 공연의 관람료가 과다경쟁과 한탕주의로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PR보도	181
2006서울조정52	· 농림부 대 내일신문 (반론청구) 농림부가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단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82
2006서울조정5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 시민의신문 (정정·반론청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83
2006서울조정54	· 중앙인사위원회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개방형 공무원제가 일부 퇴직 공무원들의 재임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87
2006서울조정55	· 도○○ 대 세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금강산 신입생 OT'를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총학생회의 이념성 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88
2006서울조정56	· 재정경제부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조세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0
2006전북조정5	· ○○네트웍스(주) 대 새전북신문 (정정·반론청구) 전주시 교육청이 학내 전산망 공사를 발주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91
2006서울조정57	· 주식회사 마케팅○○○○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주관한 여론조사가 다른 기관의 의뢰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92
2006서울조정58	· 자유개척청년단 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의 회원들이 동국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3
2006대구조정3	· (주)○○개발 대 안동MBC-TV (정정·반론·손배청구) 영주시 선비촌 위탁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직영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손님을 독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194
2006대구조정4	· (주)○○개발 대 영주시민신문 (정정·반론·손배청구) 영주시 선비촌 위탁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직영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손님을 독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195
2006서울조정59	· 최○○ 대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주택 용도 건물에서 불법으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96
2006서울조정60	· ○○○○○○○레저 주식회사 대 세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장이 수천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197
2006서울조정61	· 박○○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종갓집 땅을 처분하고 노모와 자식들의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98
2006경기조정7	· 김○○ 대 중부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화성시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0
2006경기조정8	· (주)○○건설 외 1인 대 우리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들이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01
2006서울조정62	· 전○○ 대 SBS-R (정정청구) 황우석 박사의 지지자를 마약중독자에 비유해 피해를 입었다	202
2006서울조정63	· 박○○ 대 게임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03
2006경기조정9	· 김○○ 대 여주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민원인에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다툼이 일어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5
2006서울조정64	· 학교법인 ○○○학원 대 한겨레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학교가 전·편입한 학생 학부모들에게 강제성 기부금을 걷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06
2006서울조정65	· 통일부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뮤지컬 '요덕 스토리'가 정부의 압력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07
2006서울조정66	· 통일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뮤지컬 '요덕 스토리'가 정부의 압력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08
2006서울조정67	· 대구교도소 대 레이디경향 (정정청구) 대구교도소가 수감자의 일상적인 처우와 접견을 통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09
2006제주조정1	· 코리아○○○그룹 대 한라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제주국제영어마을을 파행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10
2006서울조정68	· 주식회사 ○○○ 대 중앙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무료 경품 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11
2006경기조정10	· 장○○ 대 서울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의 병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가 하반신마비를 일으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반론보도	212
2006제주조정2	· 코리아○○○그룹 대 한라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제주국제영어마을의 운영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13
2006경기조정11	· 정○○ 대 경인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직접 열악한 환경의 홈스테이 가정을 소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16
2006서울조정69	· ○○○○ ○○○ 방생법회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운영 중인 수상법당이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17
2006경남조정2	· 이○○ 대 함안신문 (정정청구)	

	면장인 신청인이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단체장들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17
2006서울조정70	· 과학기술부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과학기술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19
2006서울조정71	· 재정경제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20
2006서울조정72	· 대통령 노무현 대 국민일보 (반론청구) 열린우리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221
2006서울조정73	· 대통령 노무현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열린우리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221
2006서울조정74	· 임○○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탈북자 구호 활동을 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22
2006서울조정75	· 서울특별시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223
2006서울조정76	· 서울특별시 대 KBS-1TV (정정청구)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25
2006서울조정77	· 남경필 대 코리아포커스 (정정청구) 신청인의 조부가 일제시대 자작 칭호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25
2006서울조정78	· 오○○ 대 시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영농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지를 타인에게 불법전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27
2006경기조정12	· 오○○ 대 투데이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영농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지를 타인에게 불법전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228
2006광주조정5	· (주)무안신문 대 목포투데이 (정정·손배청구) 무안신문이 무안군의 중국 투자 유치전에 대해 PR성 오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29
2006전북조정6	· 장○○ 대 전주KBS-1TV (정정·반론·손배청구) 전주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신청인에 대해 자격시비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30
2006서울조정79	· 국방부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훈혈인은 직업군인이 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31
2006전북조정7	· 전북개발공사 대 전북일보 (정정·손배청구)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교통사고를 낸 후 부하직원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232

2006전북조정8	· 전북개발공사 대 전주매일 (정정·손배청구)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교통사고를 낸 후 부하직원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233
2006서울조정80	· (주)○○교육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신청인 회사의 창설멤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233
2006서울조정81	· (주)○○교육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신청인 회사의 창설멤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234
2006부산조정1	· (주)○○ 대 울산MBC-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의 심야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35
2006광주조정6	· 함○○ 대 남도일보 (정정청구) 구례군 관급공사 발주 특혜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참고인인 신청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36
2006경기조정13	· 이○○ 대 경기일보 (정정청구) 시장이 그린벨트 관련 결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37
2006경기조정14	· 박○○ 대 경기일보 (정정청구) 시장이 그린벨트 관련 결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38
2006서울조정82	· 최○○ 대 뉴스앤조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교회 집사를 비롯한 신도들을 성추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삭제	238
2006서울조정83	· 정청래 대 KBS-1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한나라당 대변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추행 장면을 재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39
2006서울조정84	· 정청래 대 SBS-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한나라당 대변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추행 장면을 재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39
2006경기조정15	· 이○○ 대 인천일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후유증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40
2006경기조정16	· 이○○ 대 현대일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후유증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241
2006서울조정85	· 통계청 대 한국일보 (반론청구) 통계청과 노동부의 업종별 월평균 근로소득 통계의 오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42
2006서울조정86	· 여성가족부 대 한겨레 (정정청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범위를 줄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43
2006전북조정9	· 이○○ 대 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뇌물을 받아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44
2006서울조정87	· 남○○ 대 조선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싸게 팽처리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45
2006서울조정88	· 국민대학교 38대 총학생회 대 국민대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학생회가 학교 당국과 협의해 마련한 무료특강이 '등록금' 인상분 환원 차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46
2006대전조정4	· 주간 당진시대 대 당진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신문사가 보도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47
2006경기조정17	· 이○○ 대 전국매일 (정정·손배청구) 민주당 영광사무소가 특정 후보에게 후원당원 명부를 유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48
2006광주조정7	· 이○○ 대 대한일보 (정정·손배청구) 민주당 영광사무소가 특정 후보에게 후원당원 명부를 유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249
2006광주조정8	· 이○○ 대 전광일보 (정정·손배청구) 민주당 영광사무소가 특정 후보에게 후원당원 명부를 유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정정보도	249
2006경기조정18	· 이○○ 대 경인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한나라당 최연희 전 사무총장과 이천시장 공천신청자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50
2006경기조정19	· 김○○ 대 경기매일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폭력조직을 이용해 재산을 형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51
2006서울조정89	· (주)○○엔터테인먼트 대 KBS-2TV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계약해지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51
2006경기조정20	· 김○○ 대 경기매일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53
2006경기조정21	· 김○○ 대 인천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폭력조직을 이용해 재산을 형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54
2006서울조정90	· (주)○○○○보일러 대 매일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회사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55
2006서울조정91	· 김○○ 대 KBS-1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257
2006서울조정92	· 김○○ 대 뉴시스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258
2006서울조정93	· 김○○ 대 노컷뉴스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259

2006전북조정10	· 전주시 대 전북중앙신문 (정정청구) 전주시가 대형마트의 입점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해 소상공인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59
2006전북조정11	· 전주시 대 전북중앙신문 (정정·반론청구) 전주시가 건설업체의 설계변경 승인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반론보도	261
2006전북조정12	· 익산시농민연대 대 전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익산시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업체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63
2006대구조정5	· 김○○ 대 매일신문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265
2006대구조정6	· 김○○ 대 영남일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265
2006대구조정7	· 김○○ 대 TBC-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 반론보도	266
2006서울조정94	· 김○○ 대 KBS-1TV (손배청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강도를 당한 신청인의 얼굴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66
2006서울조정95	· 농림부 대 내일신문 (반론청구) 새만금 간척농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복토사업에 10조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67
2006서울조정96	· 서울특별시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서울시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경기·인천버스의 서울시 진입 제한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69
2006경기조정22	· 김○○ 대 인천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처가쪽 여성들을 10여 년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70
2006전북조정13	· 전주시 대 전북중앙신문 (정정·반론·손배청구) 전주시가 광장 조성용 부지를 장기간 무상대여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71
2006전북조정14	· 전주시 대 전북중앙신문 (정정·반론청구) 전주시가 여론수렴 없이 전매청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3
2006전북조정15	· 전주시 대 전북중앙신문 (정정·반론청구) 전주시가 여론수렴 없이 전주종합운동장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3
2006경기조정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 인천일보 (정정청구) 연수구가 어린이들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급식운영일지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4
2006경기조정24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의정부권역보증센터 대 연천저널2580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의 직원이 뇌물을 받고 회수불능 대출금을 변제받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6
2006부산조정2	· 조○○ 대 주간 사하타임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관내 경쟁신문을 상습적으로 무단 수거해 폐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276
2006부산조정3	· 조○○ 대 로즈저널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관내 경쟁신문을 상습적으로 무단 수거해 폐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78
2006경기조정25	· 정○○ 대 경기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법인 설립자금 차용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79
2006서울조정97	· 김○○ 대 YTN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 기사삭제	280
2006서울조정98	· 외교통상부 대 한겨레 (정정청구)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한미 FTA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한 이유가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80
2006경기조정26	· ○○산업 주식회사 대 경기일보 (정정청구) 송정산업단지 개발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토지 소유주 몰래 부지매각을 추진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81
2006경기조정27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 대 e-서부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게시한 시정개혁촉구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83
2006서울조정99	· 배○○ 대 교통환경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회식자리에서 개별화물연합 전임 간부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85
2006서울조정100	· 보건복지부 대 한겨레 (정정청구) 정부가 FTA 추진을 위해 미국의 요구대로 약값 재평가작업을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86
2006서울조정101	· 문화관광부 대 전자신문 (정정청구) 정부가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디지털시네마 전환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87
2006서울조정102	· 국방부 대 한겨레 (정정청구) 국방부가 공개입찰 규정을 어기고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군인공제회에 위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89
2006서울조정103	· 남궁○○ 대 한국경제 (손배청구) 신청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걷는 장면을 허락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290
2006서울조정104	· 국방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한·미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전략지침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290
2006서울조정105	· 박○○ 대 시사저널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언론인 주택조합 모집 책임자로 나서 동료 직원들을	

	가입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91
2006강원조정4	· 현○○ 대 원주투데이 (반론·손배청구) 재건축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93
2006서울조정106	· 전국철도노동조합 대 문화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파업복귀 후 협상을 재개하면서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294
2006서울조정107	· 전국철도노동조합 대 한국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파업복귀 후 협상을 재개하면서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295
2006경남조정3	· 황○○ 대 조간경남 (정정청구) 시장인 신청인과 딸단공무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96
2006서울조정108	· 서울○○○대학교 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학교에 정상적인 학칙과 규정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96
2006서울조정109	· 대통령비서실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청와대가 소득격차와 빈곤층 해소를 위해 “성장엔진에 브레이크를 걸자”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98
2006서울조정110	· 서울특별시 대 한겨레 (정정청구) 서울시장이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 테니스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98
2006광주조정9	· 김○○ 대 서남신문 (정정·손배청구) 열린우리당 전라남도 의원 입후보예정자인 신청인이 민주당 경쟁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01
2006서울조정111	· 교육인적자원부 대 SBS-TV (반론청구) 정부의 임대형 민자사업이 건설업자들의 로비로 혼탁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01
2006서울조정112	· 박○○ 대 기독교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문제가 생긴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선동하여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02
2006서울조정113	· 박○○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시연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용지 분류기라고 잘못 보도했다	304
2006광주조정10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 호남매일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305
2006광주조정11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 전광일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306
2006광주조정12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 광주매일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307
2006광주조정13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 남도일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307
2006광주조정14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 전남매일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308

2006광주조정15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 호남일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 반론보도	308
2006광주조정16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 호남투데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309
2006서울조정114	· 학교법인 ○○대학교 대 복음과 상황 (반론청구) 신청인 대학교가 교회에서 받은 지원금과 학생등록금의 일부를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309
2006서울조정115	· 학교법인 ○○대학교 대 뉴스앤조이 (반론청구) 신청인 대학교가 교회에서 받은 지원금과 학생등록금의 일부를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311
2006서울조정116	· 신언상 대 데일리엔케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북한을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11
2006서울조정117	· 문○○ 대 조선일보 (손배청구) 희귀애완동물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313
2006서울조정118	· 서울특별시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서울시의 시체육회 전용건물 매입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14
2006서울조정119	· ○○○마케팅서비스코리아(주) 대 파이낸셜뉴스 (정정청구) 시장조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작성한 세탁기 시장점유율 자료를 무단인용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315
2006서울조정120	· ○○○(주) 대 런아시아넷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사건’을 헤드라인 기사로 올리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16
2006서울조정121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노조가 경영진의 약점을 빌미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17
2006부산조정4	· 임○○ 대 부산일보 (정정청구) 경찰관이었던 신청인의 아버지가 자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18
2006서울조정122	· 김○○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두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19
2006서울조정123	· 서울○○○대학교 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학교에 정상적인 학칙과 규정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반론보도	320
2006서울조정124	· 통일부 대 노컷뉴스 (정정청구) 통일부가 납북자 가족 보상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6.25 전쟁 당시 납북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21
2006서울조정125	· 외교통상부 대 세계일보 (정정청구) 외교통상부가 DJ납치사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수사기록 문서는 제외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22

2006서울조정126	· 손○○ 외 1인 대 한국일보 (반론청구)	
	조선일보가 커피전문점에 무인가판매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성 비판기사를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323
2006서울조정127	· 손○○ 외 1인 대 머니투데이 (반론청구)	
	조선일보가 커피전문점에 무인가판매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성 비판기사를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324
2006서울조정128	· 손○○ 외 1인 대 KBS-1TV (반론청구)	
	조선일보가 커피전문점에 무인가판매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성 비판기사를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324
2006서울조정129	· 이○○ 대 더데일리포커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동료 여직원과 벚꽃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연인사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 정정보도·손해배상	325
2006서울조정130	· 이○○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신청인이 동료 여직원과 벚꽃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연인사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 손해배상	326
2006서울조정131	· 이○○ 대 세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교육부가 내정한 낙하산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327
2006경기조정28	· 이○○ 대 경인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교육부가 내정한 낙하산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328
2006서울조정132	· (주)○○제과 대 KBS-2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회사의 과자가 아이들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28
2006서울조정133	· 군인공제회 대 오마이뉴스 (정정·손배청구)	
	군인공제회가 군부대 PC방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특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30
2006서울조정134	· 주식회사 ○○○제과 대 KBS-2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회사의 과자가 아이들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33
2006서울조정135	· 대한미용외과학회 대 MBC-TV (정정·반론청구)	
	성형외과 비전문의들의 미용수술을 부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34
2006서울조정136	· 대통령 노무현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총리의 골프 파문을 보고 받고 격노했으며 총리의 거취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36
2006부산조정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 경상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아파트의 LPG공급 사업권을 놓고 업체-주민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돼 가스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38
2006서울조정137	· ○○·○○ 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 대 종로신문 (정정·손배청구)	
	○○·○○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39

2006서울조정138	· 정○○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TV에 출연해 납복자 중 자진 월복자가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40
2006충북조정1	· (주)HCN 충북방송 대 한빛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등 '독점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42
2006서울조정139	· 중소기업청 대 서울경제 (정정청구) 금융감독원의 중 소형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조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44
2006서울조정140	· 서○○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공천대가로 의심되는 거액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346
2006서울조정141	· 자유학교○○ 대 민들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학교의 재정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46
2006광주조정17	· (사)이륜자동차환경협회 대 대한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협회가 관련 업소들에게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비가입자를 고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48
2006경남조정4	· ○○대학교 대 진주KBS-TV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이 학교 땅 소유권 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PR보도	349
2006경기조정29	· 서○○ 대 경인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공천대가로 의심되는 거액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350
2006경기조정30	· 서○○ 대 인천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공천대가로 의심되는 거액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351
2006서울조정142	· 대전서부경찰서 대 뉴시스 (정정청구) 대전서부경찰서가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강간치상범을 단순상해범으로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52
2006대전조정5	· 이○○ 대 서해안신문 (정정청구) 태안군 임산물생산단지 조성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53
2006광주조정18	· ○○병원 대 광주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병원이 단체건강검진을 소개한 불법알선업체에 대가를 지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54
2006서울조정143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외 4인 대 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이 외국자본인 소비린에게 돈을 받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55
2006서울조정144	· 해양수산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해양수산부가 항만 물동량 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56
2006서울조정145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외 1인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조세개혁 특위 위원장의 사의표명 이유가 관계자들과의 토론이 안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57
2006서울조정146	· 서울○○대학교 대 노컷뉴스 (반론청구) 신청인 대학교가 회계부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58
2006서울조정147	· 이○○ 대 스포츠서울 (정정·손배청구) 서울시 신청사 재건축과 관련한 신청인의 인터뷰 중 하지도 않은 말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359
2006서울조정148	· 교육인적자원부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일부 학교에서 두발을 문제삼아 내신에 불이익을 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60
2006전북조정16	· (주)○○○○주택관리 대 전북중앙신문 (정정청구)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부당함 때문에 입주민들이 고발에 이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361
2006경기조정31	· 안상수 대 인천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측근이 불법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63
2006경기조정32	· 인천광역시 대 현대일보 (정정청구) 현대건설 계열사가 인천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63
2006광주조정19	· 이○○ 대 광주MBC-TV (정정청구) 신청인이 학급 반장에게 저소득층 학생명단을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64
2006서울조정149	· 임○○ 대 뉴스메이커 (정정·손배청구) 뇌줄중 관련 기사에 신청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손해배상	365
2006서울조정150	· 안상수 대 노컷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인천시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 대표를 소개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66
2006서울조정151	· 농림부 대 농민신문 (반론청구) 농림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영농교육'이 품목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67
2006서울조정152	· 이○○ 대 서울신문 (손배청구) 성폭행을 당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 손해배상	369
2006서울조정153	· 이○○ 대 YTN (손배청구) 성폭행을 당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 손해배상	370
2006서울조정154	· 이○○ 대 노컷뉴스 (손배청구) 성폭행을 당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I - 손해배상	371
2006서울조정155	· 기획예산처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기획예산처가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두고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71
2006서울조정156	· 기획예산처 대 한국경제 (정정·반론청구)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보도는 사실 아니다 -반론보도	372
2006제주조정3	· 영농조합법인 ○○유통 외 1인 대 이슈제주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들이 돼지 위탁 사육농가에서 실시한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반론보도	374
2006서울조정157	· 공정거래위원회 대 폴리뉴스 (정정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JU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76
2006서울조정158	· 박○○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경품사이트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정보를 돈을 받고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77
2006서울조정159	· 사단법인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대 SBS-TV (반론청구) 생활정보신문이 광고의뢰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광고를 게재해 연쇄살인사건의 도구가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78
2006대구조정8	· 강○○ 외 2인 대 경북일보 (정정·반론청구)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고령군청에 들이닥쳐 공무서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80
2006서울조정160	· 김○○ 대 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기획사가 기예공연을 한 중국인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81
2006서울조정161	· (가칭)○○동주택조합 외 1인 대 시사저널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유령조합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82
2006서울조정162	· 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경찰인사 청탁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83
2006서울조정163	· 현○○ 대 세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제주에 주택 두채와 토지 3필지를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84
2006서울조정164	· 방위사업청 대 한국일보 (반론청구) 방위사업청이 군수물자 수입과 관련하여 156만 달러를 떼이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85
2006서울조정165	· 홍○○ 대 브레이크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서태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86
2006서울조정166	· 홍○○ 대 쿠키뉴스 (정정청구) PC방형 도박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PC방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388
2006서울조정167	· 한○○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미성년자인 신청인에게 돈을 주고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한 후,	

	범죄에 노출된 가출아동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89
2006서울조정168	· 양○○ 대 한국건설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문광부 BTL사업의 기본 구상용역을 수행했다는 전력을 내세워 건설·건축사에 로비를 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90
2006전북조정17	· 서○ 외 11명 대 전북일보 (반론청구) 신청인들이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등에 대해 고소·고발한 것이 경영권을 노린 음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91
2006서울조정169	· 강○○ 대 MBC-TV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수입·판매하는 자전거의 결함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93
2006서울조정170	· 정보통신부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정보통신부가 IT 전시관 개·보수 비용을 민간업체에 떠넘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94
2006서울조정171	· 박○○ 대 기독교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기독교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가 기각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96
2006서울조정172	· 건설교통부 대 경향신문 (반론청구) 정부 통계가 경실련 통계와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생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397
2006서울조정173	· 이○○ 대 일요신문 (손배청구) 신청인과 모 탤런트 사이의 사생활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398
2006서울조정174	· 이○○ 대 여성중앙 (정정·손배청구) 신청인과 모 탤런트 사이의 사생활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400
2006서울조정175	· 통일부 대 국민일보 (정정청구)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의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가 포함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PR보도	401
2006서울조정176	· 통일부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의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가 포함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402
2006서울조정177	· 대한체육회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대한체육회장이 정치인 출신으로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03
2006서울조정178	· 농림부 대 프레시안 (반론청구) 광우병 감염소 판별을 위한 농림부의 '치아감별' 방식이 비과학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04
2006서울조정179	· 김○○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부친이 사망하자 재산을 빼돌리고, 누나의 유산 상속분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05
2006서울조정180	· 김○○ 대 KBS-1TV (손배청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여동생 사진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406

2006서울조정181	· 국정홍보처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국정홍보처가 언론보도를 비판하는 댓글달기 경쟁을 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의 인터넷 주소를 파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07
2006충북조정2	· (주)HCN 충북방송 대 한빛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의 고급형 채널상품 할인 정책이 보급형 TV수신료 인상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08
2006충북조정3	· (주)HCN 충북방송 대 한빛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사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개발이 금지된 '완충녹지' 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10
2006서울조정182	· (주)○○사 대 서울경제 (정정청구) 다이어리를 판매한 커피전문점 때문에 신청인 회사의 수첩 매출이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11
2006광주조정20	· (주)호남매일신문 대 인터넷시민의소리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사주가 자신의 사업에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12
2006서울조정183	· 이○○ 대 한국마케팅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다단계업체 투자설명회에서 사업자들을 속이는데 주도적으로 간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12
2006전북조정18	· 이○○ 외 2인 대 전북일보 (정정청구) 중학생인 신청인의 자녀들이 유부녀를 성희롱하여 그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413
2006전북조정19	· 이○○ 외 2인 대 전라일보 (정정청구) 중학생인 신청인의 자녀들이 유부녀를 성희롱하여 그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414
2006서울조정184	· 교육인적자원부 대 한겨레 (반론청구) 교육부의 '교과서 외형 개선 방안'에서 새 교과서 용지와 눈 건강과의 관련성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15
2006부산조정6	· 이○○ 대 부산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수억 원의 공천현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416
2006부산조정7	· 이○○ 대 국제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수억 원의 공천현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417
2006서울조정185	· 산업자원부 대 서울경제 (정정청구) 연간 승강기 사고발생 건수가 수십만 건에 달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18
2006서울조정186	· 한국농촌공사 대 내일신문 (반론청구) 화성호가 수질악화로 인해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19
2006서울조정187	· 채○○ 대 국민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의 집이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조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421
2006서울조정188	· (주)○○○교육그룹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학원이 수강료 환불 약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PR보도	421
2006서울조정189	· (주)○○○교육그룹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학원이 수강료 환불 약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422
2006서울조정190	· (주)○○○교육그룹 대 중앙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학원이 수강료 환불 약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PR보도	423
2006서울조정191	· 김○○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작고한 신청인의 부친이 안락사 허용 논란에 관해 인터뷰한 것으로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23
2006서울조정192	· 박성범 외 1인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425
2006서울조정193	· 박성범 외 1인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426
2006서울조정194	· 박성범 외 1인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426
2006서울조정195	· 박성범 외 1인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427
2006서울조정196	· 박성범 외 1인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427
2006서울조정197	· 박성범 외 1인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427
2006서울조정198	· 박성범 외 1인 대 국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428
2006서울조정199	· 박성범 외 1인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I	428
2006서울조정200	· 박성범 외 1인 대 세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X	429
2006서울조정201	· 문화관광부 대 동아일보 (반론→정정청구) 문화관광부가 장·차관의 독일 방문시 대표팀 선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축구협회에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29
2006서울조정202	· 문화관광부 대 내일신문 (반론청구) 문화관광부가 딱지상품권을 묵인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30

2006전북조정20	· 채○○ 대 새전북신문 (손배청구) 신청인의 집이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조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432
2006서울조정203	· 정책기획위원회 외 4인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위원회들이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32
2006서울조정204	· 고진화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5·31 지방선거에 공천할 수 있는 시·구의원 절반 이상을 신청인의 보좌관·비서관으로 채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34
2006서울조정205	· 황○○ 대 싱글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을 비만체형 독자 대표로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과 신체 사이즈 및 신상정보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손해배상	435
2006서울조정206	· 박성범 외 1인 대 MBC-TV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436
2006서울조정207	· 김○○ 대 스포츠서울 (손배청구) 신청인이 댄스경연대회에서 춤추는 장면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437
2006경기조정33	· 조○○ 대 경기도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민사 분쟁 상대방인 공무원에 대한 음해성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37
2006서울조정208	· 오○○ 대 KBS-2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을 반대한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38
2006서울조정209	· 신○○ 대 매일경제 (손배청구) 신청인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PR보도	439
2006서울조정210	· 교육인적자원부 대 매일경제 (정정·반론청구) 학자금 대출을 실시할 때 신용상태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40
2006경기조정34	· 송○○ 대 수도권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시의원 선거사무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42
2006서울조정211	· 대통령비서실 대 내일신문 (반론청구) 정부내 갈등관리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42
2006서울조정212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대 주간동아 (정정청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수립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44
2006서울조정213	· 박성범 외 1인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	446
2006대전조정6	· 김○○ 대 TJB-TV (손배청구) 신청인의 동생이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47

2006서울조정214	· 국세청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국세청이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특별조사로 전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47
2006서울조정215	· 아○○○ 니○○○ 외 3인 대 KBS-1TV (정정 · 손배청구) 주한미군인 신청인들이 시민을 폭행한 후 택시에 시민을 매단 채 달아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448
2006서울조정216	· 아○○○ 니○○○ 외 3인 대 MBC-TV (정정 · 손배청구) 주한미군인 신청인들이 시민을 폭행한 후 택시에 시민을 매단 채 달아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450
2006서울조정217	· 아○○○ 니○○○ 외 3인 대 YTN (정정 · 손배청구) 주한미군인 신청인들이 시민을 폭행한 후 택시에 시민을 매단 채 달아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450
2006서울조정218	· 농림부 대 세계일보 (반론청구) 농림부가 농업계와 사전협의 없이 공매자격을 완화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51
2006서울조정219	· 김교흥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흥기를 휘두른 지씨의 취직을 알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52
2006서울조정220	· 김○○ 대 재외동포신문 (정정청구)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직에서 부당 해고된 신청인이 임기만료로 사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53
2006서울조정221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반미이념 투쟁차원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54
2006광주조정21	· 이○○ 대 완도신문 (정정 · 손배청구) 도의원 후보자인 신청인이 지역신문에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55
2006서울조정222	· 국세청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국세청이 론스타 코리아를 세무조사한 것이 미 세무당국의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56
2006서울조정223	· 국방부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남측대표가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57
2006경남조정5	· 김○○ 대 남해시대 (정정청구) 골프장에 고용된 신청인이 주민들 몰래 대형 지하관정을 파 지하수를 끌어가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58
2006경기조정35	·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대 하나로신문 (정정청구) 양평군 선관위가 군수 출마 후보자를 고발조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459
2006전북조정21	· 유○○ 대 정읍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의 미술대전 입상에 대해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60
2006서울조정224	· 이○○ 대 시사저널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성인 오락기 제작회사의 직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60
2006서울조정25	· 통일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61
2006경기조정36	·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대 경기방송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학교법인이 이사장의 회계부정사건을 폭로한 직원들을 권고사직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62
2006서울조정226	· 주식회사 ○○골프그룹코리아 대 일간스포츠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일본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64
2006충북조정4	· 유○○ 대 증평괴산저널 (정정청구) 신청인이 증평군 공무원들에게 위장 전입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65
2006서울조정227	· 국세청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국세청이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67
2006광주조정22	· ○○시 상가번영회 대 전남타임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지역가꾸기 사업예산을 계획도 없이 무원칙적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68
2006서울조정228	· 중소기업청 대 서울경제 (정정청구)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70
2006서울조정229	· 교육인적자원부 대 국민일보 (반론청구) 중학교의 원어민 영어수강료가 지역 내 영어학원의 평균 수강료보다 비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71
2006서울조정230	· 산업자원부 대 국민일보 (정정청구)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유전 매입을 위해 교통세 일부를 에너지세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72
2006대전조정7	· 이○○ 대 대전일보 (추후·손배청구) 군립합창단장인 신청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 추후보도	473
2006대전조정8	· 이○○ 대 연기신문 (추후·손배청구) 군립합창단장인 신청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 - 추후보도	474
2006대전조정9	· 이○○ 대 중도일보 (추후·손배청구) 군립합창단장인 신청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I - 추후보도	474
2006대전조정10	· 이○○ 대 충청투데이 (추후·손배청구) 군립합창단장인 신청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V - 추후보도	475
2006서울조정231	· 농림부 대 한국일보 (반론청구) 농림부가 이미 특허등록까지 마친 상황버섯 발효주에 대해 수억 원의 연구비를	

	중복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76
2006경기조정37	· 고○○ 대 용인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용인시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을 잘라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77
2006경남조정6	· 최○○ 대 함안아라신문 (정정청구) 함안군 소속 공무원인 신청인이 운동장 사용 신청을 하러 온 축구관계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478
2006경남조정7	· 최○○ 대 아라신문 (정정청구) 함안군 소속 공무원인 신청인이 운동장 사용 신청을 하러 온 축구관계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478
2006경남조정8	· 김명주 대 경남도민일보 (정정청구) 통영시가 신청인의 장인 소유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80
2006서울조정232	· 교육인적자원부 대 한국경제 (반론청구) 학교 급식의 만족도가 낮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81
2006경남조정9	· 김명주 대 경남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지방 선거 공천과 관련해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골프채 등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82
2006서울조정233	· 박○○ 대 MBC-TV (손배청구) 드라마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도용해 현상범 포스터에 실으면서 강간미수범이라고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483
2006서울조정234	· 김○○ 대 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서울대 총학생회장 탄핵에 대해 찬성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484
2006서울조정235	· 조○○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휴대전화 자판 특허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이 특허 괴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85
2006서울조정236	· 정○○ 대 MBC-TV (손배청구) 부산 금정구 구의원 당선자의 실종사건을 방송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얼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486
2006서울조정237	· 국세청 대 국민일보 (정정청구) 국세청 관계자가 론스타에 대한 과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487
2006서울조정238	· 국세청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국세청이 까르푸에 대한 세무 조사계획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88
2006서울조정239	· 국세청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국세청 관계자가 론스타에 대한 과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489
2006서울조정240	· 이희범 대 국민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참여정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489
2006서울조정241	· 이회법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참여정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490
2006서울조정242	· 군인공제회 대 주간동아 (정정·손배청구) 군인공제회가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불법으로 대행하고, 제휴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약속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91
2006서울조정243	· 주식회사 ○○○○ 대 교통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와 통합전산망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92
2006서울조정244	· 재정경제부 대 YTN (반론청구)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 예산을 사회 간접 자본투자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93
2006경기조정38	·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 대 경기신문 (정정·손배청구) 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건설사 명의의 허위 시공참여 의향서를 배포하여 물의를 빚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94
2006서울조정245	· 오○○ 대 국제태권도신문 (정정청구) 국기원 연수원에 재직 중인 신청인이 자격시험 예상문제집을 만들어 원내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95
2006서울조정246	· 김○○ 대 마이데일리 (정정청구) 신청인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신인 여가수가 벌인 강도피해자작극이 사전에 계획된 마케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497
2006충북조정5	· 김○○ 대 청주MBC-TV (손배청구) 검찰 직원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497
2006서울조정247	· 국방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국방부 장관이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대통령 정례보고 때 보고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98
2006서울조정248	· (주)○○○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의 패션브랜드를 타 회사에서 수익성이 떨어져 정리된 브랜드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99
2006서울조정249	· (주)단월드 대 국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기독교인들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공략법을 마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00
2006서울조정250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 보건신문 (정정·반론청구) 한약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반론보도	501
2006서울조정251	· 정○○ 대 KBS-1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외환은행 매각결정 과정에서 론스타에 스톡옵션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03
2006서울조정252	· 국세청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국세청이 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소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05
2006대전조정11	· 김○○ 외 1인 대 TJB-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의 아들이 숙제를 안했다는 꾸지람을 듣고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 손해배상	505
2006대전조정12	· ○○건설(주) 외 1인 대 중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웅천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을 부설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07
2006서울조정253	· 임종인 대 YTN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법사위에 소속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08
2006서울조정254	· 원○○ 대 경향신문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09
2006서울조정255	· 기획예산처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이 불투명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10
2006서울조정256	· 농림부 대 오마이뉴스 (반론청구) 미국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확인을 위해 농림부가 실시한 ‘치아감별’ 방식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11
2006서울조정257	· 김○○ 대 문화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신인 여가수가 벌인 강도피해자작극이 사전에 계획된 마케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513
2006서울조정258	· 이○○ 대 월간미술 (손배청구) 15년 전 신청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513
2006대전조정13	· 웅천발전협의회 대 충청투데이 (정정 · 손해청구) 웅천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관망세로 전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14
2006서울조정259	· 구○○ 외 2인 대 조선일보 (손배청구) 더운 여름철, 신청인들이 음료수를 마시며 걸어가는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15
2006서울조정260	· 농림부 대 한겨레 (반론청구) 농림부가 농협의 신용사업과 유통사업을 분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16
2006전북조정22	· 고창군 대 고창신문 (정정청구) 고창군수가 자수 박물관측의 공예촌 건립 요청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17
2006서울조정261	· 전○○ 대 동아일보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 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I	519
2006서울조정262	· 전○○ 대 문화일보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 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II - 반론보도	519
2006서울조정263	· 김○○ 대 조선일보 (정정 · 손해청구) KBS가 정치적인 이유로 개그맨 심현섭을 자사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20

2006서울조정264	· 이○○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이 노대통령이 원작을 즐겨 읽었다는 이유로 긴급 기획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22
2006서울조정265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 한국경제 (정정·반론청구)	
	비현실적인 산업단지법 규정으로 인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 가짜 공장들이 넘쳐 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23
2006서울조정266	· ○○·○○뉴타운추진연합회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 연합회가 뉴타운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지지성명서를 구청에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24
2006서울조정267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단체가 빌딩을 지으면서 돈을 모으는 추진위원회에 청와대와 정부고위직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정정보도	525
2006서울조정268	· 사단법인 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 대 한국목재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연합회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연합회를 이용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26
2006대전조정14	· 주식회사 ○○해운 대 중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골재 채취용 바지선을 운항하면서 어장을 망가뜨리고 황폐화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27
2006서울조정269	· 산업자원부 대 프레시안 (정정청구)	
	산자부가 바이오디젤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29
2006부산조정8	· 배○○ 대 KNN (손배청구)	
	신청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CCTV에 찍힌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 손해배상	530
2006서울조정270	· ○○유업(주) 대 아시아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변질된 제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31
2006서울조정271	· 배○○ 대 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CCTV에 찍힌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 손해배상	532
2006서울조정272	· 배○○ 대 SBS-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CCTV에 찍힌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I - 손해배상	533
2006전북조정23	· 김○○ 대 전주MBC-TV (정정청구)	
	신청인의 허락없이 진료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덧씌워 신청인이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533
2006경기조정39	· 김○○ 대 경기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요양원 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잘못해 놓고 책임을 요양원측에 떠넘기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34
2006서울조정273	· (주)○○테크놀로지 대 컴퓨터타임즈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제품홍보와 영업은 뒷전이며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35
2006서울조정274	· 재정경제부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와 금리동결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36
2006서울조정275	· 외교통상부 대 조선일보 (정정·반론청구)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37
2006경기조정40	· ○○○ 축산업협동조합 대 경기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축협이 400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38
2006서울조정276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 서울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방음벽을 불법으로 철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40
2006서울조정277	· 양○○ 대 Running Life (손배청구) 여름철 피부화상을 초래하는 사례로 신청인이 상의를 벗고 달리는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42
2006서울조정278	· 박○○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KBS의 '생방송 시사투나잇'이 정권 편향적인 보도로 160여회나 심의팀의 지적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42
2006서울조정279	· 산업자원부 대 세계일보 (정정청구) 산자부 장관이 한미 FTA 관련 협상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43
2006서울조정280	· 국세청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국세청이 수입차 판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판매내역 제출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43
2006서울조정281	· (주)대한항공 대 SHAPE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일반 면세점보다 환불이나 A/S가 번거롭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44
2006경남조정10	· 최○○ 대 고성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판매상과 결탁하여 불량 영양제를 구입해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45
2006서울조정282	· 신문발전위원회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문발전위원회가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546
2006서울조정283	· 신문발전위원회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문발전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549
2006서울조정284	· 신문발전위원회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문발전위원회가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550
2006서울조정285	· 신문발전위원회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문발전위원회가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551
2006서울조정286	· 신문발전위원회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문발전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552
2006서울조정287	· 천○○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평택범대위 자문번호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2
2006경기조정41	· (사)녹색어머니회 인천광역시지부 대 한국기자연대 (정정·추후·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봉사활동을 빙자해 보조금을 타내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4
2006서울조정288	· 국방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미사일 발사 사실을 실무진에게 알리느라 대통령에게 늦게 보고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56
2006부산조정9	· 환경부 대 국제신문 (정정청구) 환경부가 가동이 중단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 합격판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7
2006서울조정289	· 최○○ 대 머니투데이 (손배청구) 신청인의 실명과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58
2006서울조정290	· 이종석 대 오마이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정부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8
2006대전조정15	· 송○○ 대 천안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9
2006서울조정291	· 이○○ 대 중앙일보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 추후보도	560
2006서울조정292	· 이○○ 대 한국일보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 - 추후보도	561
2006서울조정293	· 이○○ 대 SBS-TV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I - 추후보도	562
2006서울조정294	· 이○○ 대 YTN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V - 추후보도	563
2006서울조정295	· 이○○ 대 YTN STAR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V - 추후보도	563
2006서울조정296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 동아일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찬양한 친북반미 폭력운동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64
2006광주조정23	· 이○○ 대 나주투데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여성단체협의회 총무직을 사임한 이유가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투서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65
2006서울조정297	· 소방방재청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소방방재청이 강원지역 집중호우 시 상황판단을 잘못해	

	위기경보를 뒤늦게 발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66
2006서울조정298	· 소방방재청 대 국민일보 (반론청구)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보상액이 과거보다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67
2006서울조정299	· 해양수산부 대 오마이뉴스 (정정청구) 해양수산부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포르말린을 어류용 기생충 구제제로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68
2006경남조정11	· 시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 조간경남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시공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71
2006부산조정10	· ○○나라(주) 대 부산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572
2006부산조정11	· ○○나라(주) 대 국제신문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573
2006부산조정12	· ○○나라(주) 대 KNN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574
2006부산조정13	· ○○나라(주) 대 부산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574
2006부산조정14	· ○○나라(주) 대 부산KBS-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574
2006대전조정16	· 최○○ 외 1인 대 충청신문 (정정청구) 납골당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신평리가 일불사와 약정서를 체결하고 공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75
2006서울조정300	· 박○○ 대 KBS-1TV (반론청구) 신청인이 폐기물 매립장을 매입하는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76
2006서울조정301	· ○○나라(주) 대 동아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578
2006서울조정302	· ○○나라(주) 대 조선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578
2006서울조정303	· ○○나라(주) 대 YTN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I	579
2006서울조정304	· ○○나라(주)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X	579

2006서울조정305	· 이○○ 대 MBC-TV (손배청구) 영아 사체 유기사건 용의자의 회사 동료인 신청인의 말을 무단 녹취하고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79
2006서울조정306	· 환경부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낙동강에서 검출된 퍼클로레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80
2006서울조정307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 동아일보 (정정·반론청구)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 교사 교육용 교재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I	582
2006서울조정30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 조선일보 (정정·반론청구)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 교사 교육용 교재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II	584
2006서울조정309	· 진○○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전직 구청장이었던 신청인이 박사학위 지도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주고 그 대가로 학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585
2006서울조정310	· 진○○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전직 구청장이었던 신청인이 박사학위 지도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주고 그 대가로 학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587
2006서울조정31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 중인 국제정책포럼이 대규모 자축, 호화 파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87
2006서울조정312	· 최○○ 대 경향신문 (손배청구)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생기는 여름철 여성 질환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이를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88
2006서울조정313	· 전○○ 대 국민일보 (반론청구)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 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III - 반론보도	589
2006서울조정314	· 전○○ 대 서울신문 (반론청구)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IV - 반론보도	590
2006서울조정315	· 전○○ 대 매일경제 (반론청구)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 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V - 반론보도	590
2006경남조정12	· ○○나라(주) 대 마산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 추후보도	591
2006경남조정13	· ○○나라(주) 대 진주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 - 추후보도	591
2006서울조정316	· 한국산업은행 대 KBS-1TV (반론청구) 한국산업은행이 부풀려진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부실펀드를 보증하고,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92
2006서울조정317	· 국방부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국방부가 전투근무지원부대를 통폐합하고, 주요간부를 민간인으로 공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93
2006대구조정9	· 이○○ 대 매일신문 (정정·반론·손배청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장애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별도의 교육비를 청구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94
2006서울조정318	· 황○○ 대 중앙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도난 문화재를 옷돈을 받고 되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95
2006서울조정319	· 전○○ 대 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드라마 단역배우로 출연하면서 제출한 프로필 사진을 동의없이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96
2006서울조정320	· 김○○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김 양식업자인 신청인이 노숙자들을 외딴섬으로 유인해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97
2006서울조정321	· 이○○ 외 1인 대 SBS-TV (손배청구) 여름철 일사병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야외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신청인들을 몰래 촬영,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598
2006서울조정322	· 장○○ 대 월간조선 (손배청구) 북한의 마약과 탈북자에 관한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신분과 사진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599
2006서울조정323	· 이○○ 대 조선일보 (손배청구)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 - 손해배상	600
2006서울조정324	· 이○○ 대 스포츠서울 (손배청구)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I	601
2006서울조정325	· 권○○ 대 시사저널 (손배청구)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인터뷰 하였으나 '된장녀'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602
2006서울조정326	· 신○○ 대 시사저널 (손배청구)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인터뷰 하였으나 '된장녀'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604
2006서울조정327	· 해양수산부 대 노컷뉴스 (정정청구) 해양수산부가 특정 방수복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04
2006대전조정17	· 충남 연기군 ○면 ○○리 대 연기신문 (반론청구) 마을 보수 지원금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 이장과 주민들 간에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06
2006부산조정15	· 임○○ 대 효원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임의로 발췌 보도하면서 글의 취지를 왜곡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607
2006경기조정42	· 안양동 ○○ ○○○ 입주자대표회의 대 안양광역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09
2006서울조정328	· 손○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386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논술시장을 석권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611
2006경기조정43	· 수도권단 대 경기신문 (반론청구) 육군이 마련한 병영체협 행사에서 비교육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12
2006서울조정329	· (주)○○○ 대 조선일보 (정정 ·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수입 · 판매하는 시계가 정체불명의 가짜 명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13
2006서울조정330	· 하○○ 대 수산인신문 (손배청구) 오징어 TAC 실시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 발족이 신청인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15
2006경기조정44	· 양주경찰서 대 경기북부시민신문 (정정청구) 양주경찰서가 지역 언론이 행한 의도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16
2006서울조정331	· 윤○○ 외 5인 대 양천방송 (반론청구) 지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신청인 단체가 '불순한 세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17
2006서울조정332	· 영상홍보원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영상홍보원의 인사 및 제작을 청와대와 외부인사가 좌지우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19
2006서울조정333	· 외교통상부 대 MBC-TV (반론청구) 정부가 '동원호 선원 납치사건'의 협상을 동원수산 측에 떠넘기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0
2006광주조정24	· ○○농업협동조합 대 무등일보 (반론청구) 신청인농협 임원진이 허위의사록을 이용하여 법인 등기를 하고 타 농협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4
2006서울조정334	· ○○○○○선교회 대 MBC-TV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교회 총재가 중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5
2006제주조정4	· 해군제주기지사업기획단 대 제민일보 (정정청구)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진해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6
2006서울조정335	· 방위사업청 대 시사저널 (정정청구) 방위사업청이 전방 철책선 경계 시스템 설치 사업자로 삼성을 선정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28
2006서울조정336	· 정동채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문화부 장관 재임시 성인 오락실 인 · 허가 및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629
2006서울조정337	· 정동채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문화부 장관 재임시 성인 오락실 인 · 허가 및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631

2006서울조정338	· ○○○병원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사행성 게임업체와 관련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신청인 병원의 계열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31
2006제주조정5	· 해군본부 대 제민일보 (정정청구)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진해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32
2006경남조정14	· 김○○ 대 함안신문 (정정·손배청구) 면사무소 공무원인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33
2006부산조정16	· (주)건축사사무소 ○○ 외 1인 대 광역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이 울산 남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단독 입찰했다가 주민들이 건적서 제출을 요구하자 계약을 철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34
2006서울조정339	· 건설교통부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5.7%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35
2006서울조정340	· 건설교통부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중앙일보의 지적 때문에 건교부가 아파트 실거래가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37
2006서울조정341	· 통계청 대 파이낸셜뉴스 (반론청구) 통계청이 정책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경기종합지수를 왜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38
2006서울조정342	· 강남대학교 대 교수신문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대학교가 교수들의 예배참석을 감시할 목적으로 대강당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40
2006전북조정24	· 익산○○축제 운영본부 대 소통뉴스 (정정·반론청구) 익산○○축제 운영본부가 옥외광고물 및 인쇄물 공모·심사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41
2006전북조정25	· 익산○○축제 운영본부 대 소통뉴스 (정정·반론청구) 익산○○축제 운영본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43
2006서울조정343	· 박○○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학원이 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부실한 음식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44
2006서울조정344	· 서울지방노동청 대 한겨레 (정정청구) 서울지방노동청이 KTX 여승무원 불법과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집중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45
2006서울조정345	· 임○○ 대 KBS-1TV (정정·손배청구) 경찰 간부인 신청인이 성인오락실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46
2006서울조정346	·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대학교지부 대 조선일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대학교 노조원들이 파업과정에서 보직 교수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47
2006부산조정17	· 해양경찰청 대 국제신문 (정정청구) 부산해경이 무허가 수상레저업자들의 불법영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48
2006서울조정347	· 김○○ 대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650
2006부산조정18	· 박형준 대 부산KBS-1TV (정정청구)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의 예산 집행을 신청인이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51
2006서울조정348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계획에 따라 신청인 사업단이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52
2006서울조정349	· ○○○○교회 대 기독교신문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교회가 이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653
2006서울조정350	· ○○○○교회 대 기독교신문 (반론청구) 신청인 교회가 이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654
2006서울조정351	· ○○○○교회 대 기독교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교회가 총신대 교수를 상대로 190억 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55
2006서울조정352	· 통일부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통일부가 음주운전 사고 경력이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국장으로 임용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56
2006서울조정353	· 문희상 대 시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증형을 선고하도록 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58
2006대구조정10	· 조○○ 대 대구신문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59
2006경기조정45	· 부천시 대 부천자치신문 (정정청구) 부천시가 발주한 공공건물 신축공사에 저질자재가 사용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661
2006경기조정46	· 부천시 대 부천타임스 (정정청구) 부천시가 발주한 공공건물 신축공사에 저질자재가 사용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663
2006서울조정354	· 국세청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한 업소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63
2006서울조정355	· ○○종합전기 주식회사 대 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을 집단폭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64
2006경기조정47	· 김○○ 대 경기일보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665
2006서울조정356	· 박○○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666
2006서울조정357	· 박○○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668
2006서울조정358	· 박○○ 대 서울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668
2006서울조정359	· 박○○ 대 세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669
2006서울조정360	· 박○○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669
2006서울조정361	· 박○○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 반론보도	670
2006서울조정362	· 박○○ 대 뉴시스 (반론청구)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 반론보도	671
2006서울조정363	· 박○○ 대 연합뉴스 (반론청구)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I - 반론보도	672
2006서울조정364	· 국방부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672
2006서울조정365	· 국방부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673
2006서울조정366	· 국방부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674
2006서울조정367	· 국방부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675
2006서울조정368	· 국방부 대 SBS-TV (반론청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675
2006서울조정369	· 정○○ 대 전국버스노동자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입원중인 동료 조합원 돕기 모금활동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76
2006경기조정48	· 김○○ 대 경기신문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677

2006경기조정49	· 김○○ 대 경기매일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정정보도	677
2006경기조정50	· 김○○ 대 경기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정정보도	678
2006경기조정51	· 김○○ 대 경인일보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678
2006경기조정52	· 김○○ 대 기호일보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 정정보도	679
2006경기조정53	· 김○○ 대 수도권일보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I - 정정보도	679
2006경기조정54	· 김○○ 대 우리일보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X - 정정보도	680
2006경기조정55	· 김○○ 대 인천일보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 정정보도	680
2006경기조정56	· 김○○ 대 중부일보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 - 정정보도.....	681
2006경기조정57	· 김○○ 대 평화일보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I - 정정보도.....	681
2006서울조정370	·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병원이 보안당국의 시정조치를 묵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82
2006서울조정371	· 김○○ 대 아시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II - 정정보도	683
2006서울조정372	· 강○○ 대 오마이뉴스 (정정·손배청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배식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다친 아이의 부상 사실을 숨겨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83
2006서울조정373	· 김○○ 대 동아일보 (손배청구)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684
2006서울조정374	· 행정자치부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솔루션이 행자부의 IT 감리컨설팅을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85
2006서울조정375	· (주)○○○베이 대 매일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미국 게임아이템 거래업체에 매각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86
2006서울조정376	· 환경부 대 서울신문 (정정·반론청구) 환경부가 세운 대기환경개선책에 근본적 오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87
2006서울조정377	· 박○○ 외 1인 대 동아일보 (손배청구)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신청인들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690
2006서울조정378	· (사)○○○○○실천운동 외 1인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 출신 영등위 위원들이 성인 오락기 부실 심의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690
2006경기조정58	· 고조흥 대 포천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92
2006광주조정25	· 배○○ 대 무등일보 (정정·반론청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신청인이 가스공급권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692
2006서울조정379	· 서울○○○신학교동문회 대 목사장로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의 모교와 같은 재단 소속의 타학교가 개교 52주년을 맞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94
2006서울조정380	· 황○○ 대 오마이뉴스 (정정청구) 자동차 회사 지점장인 신청인이 차량 대금을 횡령하고 이를 유혹비로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94
2006서울조정381	· ○○플라자 주식회사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음란물 사이트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96
2006서울조정382	· 서울○○○대학교 대 동국대대학원신문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대학이 등록금을 유용하고 교비를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96
2006서울조정383	· 오○○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공사를 맡은 건설사로부터 민원해결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97
2006대전조정18	· 유○○ 대 중앙매일 (정정·손배청구) 대전시 유성구청이 설치한 풍력발전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해 예산낭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99
2006광주조정26	· 문화관광부 대 전남일보 (정정청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00
2006전북조정26	· ○○경찰서 대 전북도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경찰서가 관내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03
2006서울조정384	· 건설교통부 대 SBS-TV (정정청구) 주요 국도상에 설치된 과적단속용 카메라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04

2006경기조정59	· ○○○○스포츠인수위원회 대 경인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아파트의 스포츠시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세금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05
2006서울조정385	· ○○○○ 대 한국방송대학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장학금과 특강비를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06
2006서울조정386	· 김○○ 대 SBS-TV (손배청구) 신청인의 동의없이 수술장면을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707
2006대구조정11	· 전○○ 대 안동MBC-TV (정정·손배청구)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의 횡포를 보도하면서 그와 관련없는 신청인의 대리점을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708
2006서울조정387	· 교육인적자원부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절반을 행정직으로 발령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709
2006서울조정388	· 교육인적자원부 대 세계일보 (반론청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절반을 행정직으로 발령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10
2006전북조정27	· 학교법인 ○○○○학원 대 새전북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711
2006전북조정28	· 학교법인 ○○○○학원 대 전북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12
2006서울조정389	· 이종걸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사행성오락 관련 상품권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13
2006경기조정60	· 수원시 대 중부일보 (정정청구) 수원시가 시장 소유 아파트 단지를 피하기 위해 애초 결정된 분당선 노선을 주민 협의 없이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14
2006서울조정390	· 특허청 대 전자신문 (반론청구) 특허 등록기간 단축에 초점을 둔 현 특허행정이 외국 기업에 유리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15
2006경기조정61	· 전○○ 대 경기일보 (정정청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뒷거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16
2006서울조정391	· 기획예산처 대 조선일보 (정정·반론청구) 기획예산처가 왜곡된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17
2006서울조정392	· 환경부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환경부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환경부 장관의 입장을 고려해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을 연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18
2006서울조정393	· 박○○ 외 1인 대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고서방에서 경매된 '송조표전총류'가 도난품으로 암거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19

2006경기조정62	· 용인신문사 대 용인인터넷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주최한 마라톤대회에 시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추가지원을 해 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20
2006서울조정394	· (주)○○○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공기로 가는 자동차를 곧 상용화한다고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23
2006서울조정395	· 농림부 대 국민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부처가 시행 중인 '농촌관광마을사업' 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23
2006서울조정396	· 홍○○ 대 SBS-TV (손배청구) 살인사건 용의자의 회사동료인 신청인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725
2006서울조정397	· 박○○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25
2006서울조정398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대 MBC-TV (정정·반론청구) 캐나다가 NAFTA 체결 후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26
2006서울조정399	· (주)○○○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해외로 밀반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28
2006서울조정400	· (주)○○포커스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해외로 밀반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30
2006서울조정401	· 한강유역환경청 대 일간환경 (정정·반론청구) 한강유역환경청이 미8군이 배출한 유독성 폐기물을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30
2006서울조정402	· ○○군산림조합 대 아시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조합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32
2006강원조정5	· 주식회사 ○○○○○○ 대 강릉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정식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33
2006강원조정6	· 강○○ 대 강릉MBC-TV (손배청구) 주유소의 유사휘발유 판매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735
2006경기조정63	·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 뉴스리더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재단이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36
2006경기조정64	· 주식회사 ○○ 대 인천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무단형질변경 및 오폐수 방출 등의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39
2006서울조정403	· (사)한국제약협회 대 매일경제 (반론청구)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품 상당수의 효능이 부풀려진 채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739
2006서울조정404	· (사)한국제약협회 대 MBC-TV (반론청구)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품 상당수의 효능이 부풀려진 채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40
2006서울조정405	· (사)한국제약협회 대 SBS-TV (반론청구)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품 상당수의 효능이 부풀려진 채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PR보도	741
2006서울조정406	·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 외 1인 대 한국목재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연합회가 언론중재위에서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42
2006서울조정407	· 농림부 대 농민신문 (반론청구) 해썹기준원 설립이 농가들의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43
2006광주조정27	· 배○○ 대 무등일보 (정정청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신청인이 가스공급권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745
2006경기조정65	· 안○○ 대 중부일보 (정정·손배청구) 세무서장인 신청인이 지역경제인들과 수차례 만찬 및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45
2006서울조정408	· 기획예산처 대 매일경제 (반론청구) 감사원이 참여정부 들어 3년간 정부가 낭비한 예산이 39조 원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46
2006전북조정29	· 학교법인 ○○○○학원 대 전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748
2006전북조정30	· 학교법인 ○○○○학원 대 전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정정보도.....	749
2006충북조정6	· 이○○ 대 한빛일보 (정정·손배청구) 영양사인 신청인이 잔반이 섞인 음식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50
2006서울조정409	· 윤○○ 대 전자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지리정보원 좌표 변환 프로그램 오류에 대해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50
2006서울조정410	· 김○○ 대 KBS-2TV (손배청구) 신청인이 한 남성과 지하철에서 말싸움을 하는 동영상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 손해배상	751
2006서울조정411	· 김○○ 대 디지털인사이드 (손배청구) 신청인이 한 남성과 지하철에서 말싸움을 하는 동영상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 기사삭제	752
2006서울조정412	· (주)○○ 대 MBC-TV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수수료 문제로 모든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53

2006서울조정413	· 이○○ 대 SBS-TV (손배청구) 성조속증 치료를 받고 있는 신청인 딸의 진료장면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754
2006충북조정7	· 조○○ 대 동양일보 (정정·손배청구) 주민대표인 신청인이 공무원을 상습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55
2006서울조정414	· 경인방송 (주) 대기자협회보 (정정·손배청구) 경인방송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57
2006서울조정415	· ○○○○주식회사 대기자협회보 (정정·손배청구) 경인방송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58
2006서울조정416	· 김○○ 대 이코노미스트 (손배청구) 안산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티켓다방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동명의 다방 상호를 자료사진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759
2006강원조정7	· 최○○ 외 1인 대 원주투데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들이 제기한 아파트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60
2006서울조정417	· ○○○○○레저(주) 대 연합뉴스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장 과정에 인사전환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62
2006서울조정418	· 박○○ 대 tvN (손배청구) 신청인이 호화주택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763
2006서울조정419	· 이○○ 대 MBN-TV (정정·손배청구) 경찰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검찰청 출신인 신청인의 로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64
2006서울조정420	· 박○○ 대 한겨레 (반론청구) 신청인이 '경주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766
2006부산조정19	· 박○○ 대 부산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경주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67
2006전북조정31	· 학교법인○○○○학원 대 전북도민일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수익성 지분재산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767
2006전북조정32	· 학교법인○○○○학원 대 전북중앙신문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수익성 지분재산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69
2006서울조정421	· 건설교통부 대 경향신문 (정정-반론청구) 건설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종을 입법화하면서 정비업체와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을 맡기려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69

2006충북조정8	· 조○○ 대 동양일보 (정정·손배청구) 주민대표인 신청인이 마을공동기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71
2006서울조정422	· 안○○ 대 내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폭탄주를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72
2006서울조정423	· 서울○○○대학교 대 매일경제 (반론청구) 신청인 대학교가 그룹웨어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773
2006서울조정424	· 서울○○○대학교 대 한국경제 (반론청구) 신청인 대학교가 그룹웨어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774
2006서울조정425	· 서울○○○대학교 대 전자신문 (반론청구) 신청인 대학교가 그룹웨어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774
2006서울조정426	·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대 SBS-TV (정정청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개발한 사행성게임 개조방지장치가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75
2006서울조정427	· (주)메트로신문사 대 더데일리포커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신문이 대학생 선호도 조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6
2006서울조정428	· 서울지방국세청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를 하루만에 뒤바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7
2006부산조정20	·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 대 부산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협회가 심사 비리와 승부조작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8
2006서울조정429	· 충치예방연구회 대 한겨레 (정정청구) 자일리톨 껌이 치아건강을 해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9
2006서울조정430	· 중소기업중앙회 대 한겨레 (정정청구) 중소기업중앙회가 본국으로 돌아간 네팔연수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재입국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80
2006서울조정431	· 박○○ 대 한겨레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개발한 원전 복수기에 적용된 금속제품이 대법원에서 특허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82
2006경기조정66	· ○○○○○가평군지회 대 경인매일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가평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83
2006부산조정21	· 사회복지법인 ○○○원 대 울산노동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간병사들에게 극심한 노동착취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85
2006서울조정432	· 국방부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핵우산 제공여부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86
2006서울조정433	· 국방부 대 주간동아 (정정청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 전술통신체계 와이브로 기술점목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87
2006강원조정8	· 육군 제1군사령부 대 강원일보 (정정청구) 육군 제1군사령부가 야전군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에 대해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89
2006부산조정22	· (주)○○건설 대 국제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상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 당시 조건과 다르게 속임수 분양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90
2006서울조정434	· ○○○○○○○○○(주) 대 경향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학원이 산업체위탁교육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91
2006서울조정435	· 대구○○교회 대 목사장로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교회 소속 장로가 경북노회 재판국 목사에게 재판을 잘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92
2006서울조정436	· 주식회사○○드림 대 이데일리 (정정·손배청구) ○○미디어에 주식 일부를 매각한 신청인 회사가 부실회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93
2006서울조정437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상영할 영화에 대해 경찰청이 미리 알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94
2006서울조정438	· ○○○커뮤니케이션(주)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롯데쇼핑과 M&A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95
2006대구조정12	· 영천시 대 신라일보 (정정·손배청구) 영천시가 불법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96
2006서울조정439	· 김○○ 대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외고 유학반 디렉터였던 신청인이 사직 후 유학학원을 차리자 학생들이 대거 학원으로 이동해 남은 학생들의 수강료가 대폭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00
2006서울조정440	· 박○○ 외 8인 대 한겨레21 (정정·손배청구) 외고 유학반 학부모인 신청인들이 유학반 파행운영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01
2006대전조정19	· ○○산업 주식회사 대 TJB-TV (정정청구) 대전시가 ○○상가 건물을 2010년까지 철거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03
2006서울조정441	· 대한미용외과학회 대 국민일보 (정정·반론청구) 비전문의들의 성형 기술이 늘면서 의료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804
2006서울조정442	· 대한미용외과학회 대 동아일보 (정정·반론청구) 비전문의들의 성형 기술이 늘면서 의료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804
2006서울조정443	· 대한미용외과학회 대 쿠키뉴스 (정정청구) 비전문인들의 성형 수술이 늘면서 의료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805
2006서울조정444	· 임OO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불법 피부관리실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그와 관련 없는 신청인의 피부관리실을 촬영·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806
2006서울조정445	· 김OO 대 신동아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달마도를 판 돈으로 웅장한 절을 지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06
2006광주조정28	· 5·18 민주유공자 OO동지회 대 전남타임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축제 기간 중에 천막을 임대해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08
2006서울조정446	· 최OO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이 판매하는 흙이 아무 효과도 없는 엉터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09
2006서울조정447	· 농림부 대 아시아경제 (반론청구) 농림부가 특정 민간업체에 전원마을조성사업 관련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10
2006부산조정23	· 손OO 대 부산KBS-1TV (정정·손배청구)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812
2006부산조정24	· 손OO 대 KNN (정정·손배청구)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812
2006서울조정448	· 이미경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측근이 성인오락 사업과정에 불법개입하고 소속 보좌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13
2006서울조정449	· 재단법인 OO사 대 e조은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재단이 서류날조와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14
2006서울조정450	· 보건복지부 대 머니투데이 (정정청구) 보건복지부가 검증되지 않는 실손형 보험제도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16
2006서울조정451	· 국가청소년위원회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특정인사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신청인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818
2006서울조정452	· 중소기업중앙회 대 KBS-2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산업연수생들로부터 수십 만 원의 송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19
2006서울조정453	· 대통령비서실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간첩 수사에 강력히 반발한 여권 386들의 압력으로 인해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820

2006서울조정454	· 대통령비서실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간첩 수사에 강력히 반발한 여권 386들의 압력으로 인해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821
2006서울조정455	· 박성범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명품 8종 선물세트'를 받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23
2006서울조정456	· (주)○○○○○ 대 MBC-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광고와 달리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김치를 묵은지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23
2006서울조정457	· 손○○ 대 연합뉴스 (정정·손배청구)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825
2006서울조정458	· 손○○ 대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826
2006서울조정459	· 손○○ 대 이타임즈 (정정·손배청구)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826
2006서울조정460	· ○○은행 노동조합 대 아시아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과정에서 매각에 대비한 이면합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26
2006부산조정25	· 조○○ 대 주간사하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관내 경쟁신문의 상호를 도용하고 무단 수거해 폐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28
2006서울조정461	· (주)○○토취개발 대 내외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시와 유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29
2006서울조정462	· (주)○○엔터테인먼트 대 경향게임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주택사업을 등한시하고 비상식적 경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31
2006서울조정463	· 조○○ 대 MBC-TV (추후청구) 신청인이 사건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피켓 시위를 벌여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 추후보도	832
2006경기조정67	· ○○축산업협동조합 대 중부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가구공장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비료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33
2006서울조정464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대 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34
2006서울조정465	· 윤○○ 대 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들이 원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36
2006서울조정466	· 박성범 대 세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공천현금을 받아 한나라당에서 출당조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37
2006서울조정467	· 강○○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이 보수단체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37
2006서울조정468	· 정○○ 대 CNBNEWS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38
2006광주조정29	· ○○2차 입주자대표회의 대 CMB 광주방송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39
2006광주조정30	· 장○○ 대 광주드림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시청 구내이발소에서 불법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42
2006서울조정469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 MBC-TV (정정·반론청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판매장 이전 집단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42
2006경기조정68	· 주식회사 ○○○ 대 서울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분양한 상가에 부설시공 및 분양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44
2006서울조정470	· 이○○ 대 Q채널 (손배청구)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845
2006서울조정471	· 대한미용외과학회 대 YTN (정정·손배청구) 비전문의들의 성형 기술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846
2006서울조정472	· 대한미용외과학회 외 1인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비전문의들의 성형 기술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846
2006서울조정473	· 대한미용외과학회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비전문의들의 성형 기술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848
2006대구조정13	· 손○○ 대 영남일보 (정정·손배청구)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849
2006서울조정474	· 경인방송(주) 대 시사저널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1대 주주가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넘기는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50
2006서울조정475	· ○○○○(주) 대 시사저널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국가 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넘기는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52
2006서울조정476	· 백○○ 대 시사저널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넘기는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53
2006서울조정477	· 한겨레신문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신문에 대통령이 발전기금을 내자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신청인 신문 구독 확장 운동에 동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53
2006서울조정478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대 KBS-1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위원회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조작·왜곡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54
2006서울조정479	· 정동채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성인오락실 상품권 업체 선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 신청인의 측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58
2006서울조정480	· 정○○ 대 시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국유지 불하 후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860
2006서울조정481	· 박○○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제이유그룹의 기업인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61
2006광주조정31	· (주)나주뉴스 대 광주MBC-TV (정정청구)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가 신청인 언론사의 기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62
2006경기조정69	· 정○○ 대 경기매일 (정정청구) 신청인이 국유지 불하 후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863
2006부산조정26	· 오○○ 대 부산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1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864
2006부산조정27	· 오○○ 대 부산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1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865
2006부산조정28	· 오○○ 대 부산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1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865
2006부산조정29	· 오○○ 대 KNN (반론청구) 신청인이 1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865
2006서울조정482	· ○○4구역바른재개발실천연합 대 주거환경신문 (반론청구) ○○4구역 재개발 주민총회에서 '정비구역변경' 안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66
2006서울조정483	· 박○○ 대 PD저널 (손배청구)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신상을 노출하고 인터뷰하지 않는 내용을 기사화해 피해를 입었다	868
2006서울조정484	· 중소기업중앙회 대 헤럴드경제 (정정·손배청구)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이 고용허가제 시행 이전보다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69

2006서울조정485	· 신○○ 외 1인 대 순례자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들이 러시아선교사 파송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70
2006서울조정486	· 안○○ 대 레몬트리 (손배청구) 거리를 걷는 신청인의 뒷모습을 허락없이 촬영하고 옷차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70
2006서울조정48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 KBS-1TV (정정 · 반론청구) FTA 체결 효과에 대해 분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71
2006전북조정33	· 김○○ 대 전북대중일보 (정정청구) 군공무원인 신청인이 특정 건설회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72
2006서울조정488	· 조○○ 대 뉴시스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873
2006서울조정489	· 조○○ 대 메디컬투데이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874
2006서울조정490	· 인천 부평구 ○○○동사무소 대 아시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동사무소가 민원인용 주차장을 인근 유통업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75
2006광주조정32	· 서○○ 대 목포투데이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시의회 연수지에서 여인과 함께 숙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76
2006서울조정491	· 민○○ 외 1인 대 EBN (손배청구) 신청인이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삭제	877
2006서울조정492	· 익산시 대 뉴시스 (정정청구) 익산시가 고병원성 AI와 관련된 살처분 작업에 담당공무원은 배제하고 환경미화요원들만 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78
2006서울조정493	· 김○○ 대 한겨레21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신청인이 국정감사 도중 성매매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80
2006서울조정494	· 해양수산부 대 노컷뉴스 (반론청구) 해양수산부가 인장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불량방수복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81
2006대전조정20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 청양군지부 대 청양신문 (반론청구) 인구 비례만을 기준으로 청양군의 공무원 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83
2006서울조정495	· 조○○ 외 1인 대 더데일리포커스 (손배청구) 기사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모습을 무단 촬영한 뒤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84
2006대구조정14	· 성○○ 대 영남일보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이 동성로로 이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84
2006서울조정496	· 성공회대학교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성공회대가 운동권 경력자들을 대거 교수로 특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885
2006서울조정497	· 성공회대학교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성공회대가 운동권 경력자들을 대거 교수로 특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886
2006서울조정498	· 한국플라스틱주방용품공업협동조합 대 SBS-TV (정정청구) 플라스틱 용기에서 성조숙증과 요도하열의 원인이 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87
2006서울조정499	· 성공회대학교 대 헤럴드경제 (정정·손배청구) 성공회대가 운동권 경력자들을 대거 교수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889
2006서울조정500	· (재)문화엑스포 대 뉴시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재단이 개최한 행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90
2006서울조정501	· 정○○ 대 MBC-TV (손배청구) KTX광명역의 무질서한 주차난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893
2006서울조정502	·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 대 KBS-2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단체가 고려인을 돕는다며 지원받은 국민성금과 국가지원예산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94
2006서울조정503	· 설○○ 대 광주PBC-R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동료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897
2006전북조정34	· 장수군 대 전북대중일보 (정정청구) 장수군이 '농산물홍보전시관'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98
2006서울조정504	· 의료법인 ○○의료재단(○○병원)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병원이 응급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찰과 뒷거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99
2006서울조정505	· 심상정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요구한 843억 원이 선심·민원성 예산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900
2006서울조정506	· 강○○ 대 경향신문 (정정·손배청구) 전직 치안감 출신 변호사인 신청인이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대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901
2006서울조정507	· 강○○ 대 서울신문 (정정·손배청구) 전직 치안감 출신 변호사인 신청인이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대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902
2006서울조정508	· 수원시 대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아시안게임 참관을 위해 도하를 방문한 수원시 공무원들이 추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903
2006서울조정509	· 남해군 대 MBC-TV (반론청구)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독일 마을 조성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904
2006서울조정510	· 임○○ 대 시사저널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제이유그룹 사업자로 활동하며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906
2006서울조정511	· 환경부 대 KBS-1TV (정정·반론청구) 환경부가 CNG 버스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907
2006서울조정512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단체가 좌파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909
2006서울조정513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 신동아 (반론청구) 현 정부 들어 출범한 문화예술위원회가 진보진영 문화예술인들만으로 구성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910
2006서울조정514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 SBS-TV (정정청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데려간 연수생들을 방치하여 국제미아신세로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PR보도	912
2006부산조정30	· 재단법인 ○○사 대 e조은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재단이 토지처분과 관련해 비리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 정정보도	914
2006서울조정515	· 백○○ 대 KBS-1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이웃 상인의 생선을 훔쳤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여과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16
2006서울조정516	· 박○○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일심회' 사건 수사과정에 신청인의 이름이 등장해 공안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917
2006충북조정9	· 최○○ 외 1인 대 청주MBC-TV (손배청구) 신청인들의 딸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919
2006경남조정15	· 김○○ 대 진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야비파구룡요가 조선막사발 가마터가 아닌 옹기가마터로 판명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919
2006서울조정517	· 이○○ 대 모터트렌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자동차 BMW3 시리즈를 타는 남자가 좋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921
2006서울조정518	· 김○○ 외 1인 대 KBS-2TV (손배청구) 서해대교 참사를 다룬 프로그램에서 피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22
2006서울조정519	· 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피○○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923

2006서울조정520	· 김○○ 외 5인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924
2006서울조정521	· 김○○ 외 5인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925
2006서울조정522	· 김○○ 외 5인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926
2006서울조정523	· 김○○ 외 5인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926
2006경기조정70	· 조○○ 대 우리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동료교사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927
2006서울조정524	· 김○○ 외 1인 대 TUD미디어 (손배청구) 귀금속매장 직원인 신청인들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28
2006서울조정525	· 최○○ 대 KBS-1TV (반론청구) 신청인이 제이유그룹 계열사를 고소한 고소인과 차장검사와의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929
2006서울조정526	· 김○○ 대 KBS-2TV (손배청구) 의경 출신인 신청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출신 부대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삭제	930
2006서울조정527	· 한강유역환경청 대 시민일보 (정정청구) 한강유역환경청이 산업폐기물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931
2006경기조정71	· 한강유역환경청 대 경기매일 (정정청구) 한강유역환경청이 산업폐기물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932

중재신청사례

2006서울중재1	· 권○○ 대 시사저널 (손배청구)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인터뷰 하였으나 '된장녀'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37
2006서울중재2	· 신○○ 대 시사저널 (손배청구)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인터뷰 하였으나 '된장녀'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39
2006서울중재3	· 김○○ 대 동아일보 (손배청구) 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41

2006서울중재4	· 서울○○○대학교 대 동국대대학원신문 (정정·반론보도) 신청인 대학이 등록금을 유용하고 교비를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반론보도	942
2006서울중재5	· 김○○ 대 SBS-TV (손배청구) 신청인의 동의없이 수술장면을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44
2006서울중재6	· 홍○○ 대 SBS-TV (손배청구) 살인사건 용의자의 회사동료인 신청인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동의 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44
시정권고사례		947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987
중재위원 명단		996
언론조정·중재신청사례 색인		1003

2006년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2006년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1,087건의 조정신청 사건 및 7건의 중재신청 사건 등 총 1,094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는 새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년의 883건 보다도 211건이 많은 수치로 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1981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처리된 누적 신청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해 10,328건에 이르고 있다.

조정신청 사건 처리결과 합의율은 32.8%(356건)로 전년도의 37.8%(334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취하율은 38.0%(413건)로 전년도의 32.0%(283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조정불성립결정률은 20.8%(226건)로 전년도의 20.5%(181건)와 비슷했으며 직권조정결정률은 5.2%(57건)로 역시 전년도의 5.8%(51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조정신청 건 중 22건(2.0%)이 기각되었으며 13건(1.2%)이 각하되었다.

2005년에 비해 조정신청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은 매년 점증하는 조정신청의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손해배상청구 건수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청건수가 증가하였고, 이 밖에도 병합신청이 가능해진 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던 것이 3개월로 늘어난 점,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수하던 방식을 탈피해 구술과 온라인으로도 조정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율은 60.6%로 2005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60%대의 피해구제율을 유

지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총 683종의 매체를 심의하여 이 중 190건의 심의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 중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188건이며 제3자가 신청하여 시정권고한 건수는 2건이다.

시정권고 건수가 2005년에 비해 34%나 감소한 것은 언론사들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피고인 및 목격자·신고자의 신원공개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유의하여 기사화하고 있으며 마약의 용량·용법 공개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여 기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4년 위원회 내에 설치된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총 2,304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언론사, 대학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평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해 총 70 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

I. 조정신청 처리현황

조정신청 처리결과 합의 356건(32.8%), 직권조정결정 57건(5.2%), 조정불성립결정 226건(20.8%), 기각 22건(2.0%), 각하 13건(1.2%), 취하 413건(38.0%)으로 나타났다.

기각되거나 각하된 사건을 제외한 전체 1,052건

의 조정신청 사건 가운데 637건에 대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피해구제율은 60.6%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도의 피해구제율 62.4%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전년도에 비해 합의율이 5.0% 포인트 낮아진 반면, 취하율은 6.0% 포인트 높아졌다. 직권조정결정과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취하율이 높아진 것은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병합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정보도 등과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당사자간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당수의 신청인들이 이에 만족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취하하는 경향이 많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법 시행이전·이후의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비교해보면 시행이전에는 합의율이 32.3%였으나 시행이후에는 33.1%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취하율은 시행이후가 36.3%로 시행 이전의 41.7%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시행이후가 21.6%로 시행이전인 19.8%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조정신청 청구권별 신청건수는 정정보도청구 546건(50.2%), 손해배상청구 318건(29.3%), 반론보도청구 211건(19.4%), 추후보도청구 12건(1.1%) 순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청구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청구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531건, 60.1%→50.2%),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건수와 청구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141건, 16.0%→29.3%), 반론보도청구사건 역시 청구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청구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194건, 22.0%→19.4%).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청구비율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이며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청구비율 역시 2004년 이후 감소세에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정정보도청구 요건이 완화된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반론보도청구 대비 청구비율이 2.7배에 이르는 등 정정보도청구사건 신청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2006년에는 정정보도청구 신청 비율은 대폭 감소한 반면 손해배상청구신청

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와 함께 중복해서 청구되는 경향이 많은데다 과거와 달리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금전적 배상을 받고자 하는 언론피해자들의 인식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은 추후보도청구 91.7%, 정정보도청구 62.3%, 반론보도청구 61.2%, 손해배상청구 55.9%로 나타났는데 2005년과 비교해 손해배상청구의 피해구제율(51.9%→55.9%), 추후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64.7%→91.7%)은 대폭 증가한 반면 정정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63.5%→62.3%), 반론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66.7%→61.2%)은 다소 감소하였다.

청구권별 합의율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이 40.2%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37.4%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손해배상의 경우 15.4%에 머물렀으나 2005년도의 11.3%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 청구권별 취하율은 정정보도청구가 30.9%로 반론보도청구의 37.6%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취하율은 이들 청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50.9%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5년도의 47.5%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합의율이 낮고 취하율이 높은 것은 신청인들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피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어서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에 비해 합의율이 낮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정신청의 주된 목적이 언론보도로 인해 훼손된 명예를 정정 또는 반론보도로 등으로 회복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언론사와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인들이 이에 만족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구권별 불성립결정률은 정정보도청구가 19.8%, 반론보도청구가 17.5%인 반면 손해배상 청구는 25.2%로 다소 높았다.

침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명예훼손 침

해가 1,00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초상권침해 48건, 신용훼손 17건, 음성권 침해 7건 등의 순이었다.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면서 특히 초상권, 음성권 등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권조정결정은 총 57건으로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 23건, 반론보도 14건, 손해배상 20건으로 2005년도에 비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사건의 직권조정 결정건수는 감소했으나 손해배상 사건의 직권조정 결정건수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2005년 7건). 직권조정결정된 57건 중 29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신청하지 않았으며 28건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하였다. 이의신청 비율은 2005년도의 39.2%에 비해 약 10% 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49.1%로 2004년 이후 증가세에 있다.

II. 조정신청인 유형별 현황

조정신청인 유형별로 청구된 사건을 분류해보면 개인의 조정신청이 529건(48.7%), 국가기관 151건(13.9%), 기업체 127건(11.6%), 일반단체 126건(11.6%), 조합 및 협회 46건(4.2%), 교육기관 35건(3.2%),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30건(2.8%), 언론사 17건(1.6%), 공공단체 15건(1.4%), 종교단체 9건(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해 개인의 조정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385건, 43.6%→48.7%) 국가기관의 신청비율이 다소 낮아졌고(16.5%→13.9%) 일반단체의 신청건수가 58건에서 12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교육기관의 신청건수 및 비율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12건, 1.4%→35건, 3.2%).

개인의 조정신청건수는 2005년도에 전년 대비 120건 증가한데 이어 2006년에도 전년대비 144건이 증가하였는데 개인 청구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새로 시행된 언론중재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법 시행으로 인해 조정대상매체가 확대되고 조정신청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체 청구건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구술신청과 인터넷 상담 및 신청

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회가 TV, 신문, 잡지, 케이블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를 내보낸 것도 개인의 조정신청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위원회는 2004년 158회, 2005년 393회(전년대비 2.5배)에 이어 2006년도에는 865회(전년대비 2.2배)의 광고를 내보냈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경찰을 제외한 전·현직 공무원이 78건(14.7%)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회사원이 48건(9.1%), 공인으로서 뉴스의 초점이 되는 국회의원이 39건(7.4%), 교수·교사 등 교육계 종사자 37건(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언론인 29건(5.5%), 개인사업자, 농·수산·도소매업 종사자, 일반단체 및 각종조합대표·임원 등이 각각 28건(각 5.3%), 서비스업 종사자와 주부 각각 25건(각 4.7%), 문화예술인, 학생 각각 18건(각 3.4%),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17건(3.2%), 정당 정치인, 군인·경찰, 법조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는 교육기관의 합의율이 5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가기관 43.7%,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40.0% 순이었다. 반면 종교단체의 경우는 11.1%에 머물렀고, 기업체와 언론사의 합의율 역시 각각 23.6%와 29.4%에 머물렀다.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종교단체가 88.9%로 월등히 높았으며 언론사 53.0%, 기업체 30.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하는 공공단체 60.6%, 기업체 44.9%, 개인 41.5% 순이었다. 개인의 합의율(30.8%)은 단체의 합의율(34.6%)에 비해 다소 낮은 반면 취하는 41.8%로 단체의 34.4%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률은 17.4%로 단체의 24.0%에 비해 매우 낮았다.

신청인 유형별 피해구제율은 단체가 60.3%로 개인의 60.9%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단체의 경우 교육기관의 피해구제율이 80.0%로 월등히 높았으며 공공단체 73.3%, 국가기관 69.3%, 일반단체 65.8%,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60.0%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에 반해 종교단체는 11.1%, 각종 조합 및 협회 40.9%, 언론사 47.1% 의 낮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 학생 85.7%, 종교인 80.0%, 전·현직 공무원 75.6%, 의료인 70.0%, 문화예술인·언론인 각 66.7% 등의 순으로 높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한 반면 기초광역 단체장 및 의원 23.5%, 국회의원 43.6%, 서비스업종사자 48.0% 등으로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종교단체와 언론사 등 단체로 조정신청한 경우 합의율 및 피해구제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종교인, 언론인 개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비교적 높은 합의율과 피해구제율을 기록하였다.

Ⅲ. 조정신청 매체별 현황

매체 유형별로 청구된 사건을 분류해 보면 일간지가 598건(55.0%), 방송 216건(19.9%), 주간신문 125건(11.5%), 인터넷신문 77건(7.1%), 시사주간지 29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일간지(492건, 55.7%→55.0%) 및 방송(174건, 19.7%→19.9%)의 청구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청구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주간신문은 약간 감소하였고(12.8%→11.5%) 인터넷 신문은 다소 증가하였다(5.4%→7.1%). 반면 시사주간지는 2005년 4건(0.5%)에서 2006년도에 29건(2.7%)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신문매체 내에서 중앙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8.8%로 2005년의 49.8%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지방일간지는 33.9%로 2005년도의 31.6%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주간신문은 17.3%로 2005년도의 18.7%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방송매체의 경우 TV가 차지하는 비율이 86.6%로, 방송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05년도의 85.1%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뒤를 이어 케이블TV 11.1%, 라디오 2.3% 순이었다.

매체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합의율은 잡지

와 인터넷신문이 각각 48.1%, 44.1%로 타매체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이어 라디오 40.0%, 통신 35.3%, 중앙일간지 34.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케이블TV와 TV의 합의율은 각각 20.8%, 26.8%를 기록, 방송매체의 합의율이 저조했다. 반면 TV의 조정불성립결정률은 31.0%로 타매체에 비해 매우 높았다.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통신 92.9%, 월간지 80.0%, 인터넷신문 72.2%, 케이블TV 68.2%, 신문 62.7%, 방송 4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의 신문 64.5%, 잡지, 인터넷신문 각 59.5%, 방송 57.2%, 통신 53.3%에 비해 통신과 월간지, 인터넷신문의 피해구제율이 월등히 높아진 반면 신문의 피해구제율은 다소 감소했고 방송의 피해구제율은 10.0%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일간신문의 경우 중앙일간지가 64.6%로 지방일간지의 63.0%에 비해 약간 높았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 TV 68.2%, 라디오 50.0%, TV 43.7% 순으로 나타났다.

Ⅳ. 조정대상기사 현황

조정대상 기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2005년도에 이어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 관련 기사가 57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치·행정관련 기사 244건(22.4%), 산업·경제관련 기사 45건(4.1%), 교육관련 기사 44건(4.1%), 의료·건강관련 기사 34건(3.1%), 문화관련 기사 22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를 제외한 모든 매체의 조정대상 기사는 사건·사고를 포함한 사회기사, 정치·행정기사, 경제기사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사회기사 291건(47.3%)에 이어 정치·행정기사 173건(28.1%), 경제기사 31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에 비해 정치·행정기사의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111건, 21.8%→28.1%).

방송의 경우 사회기사가 162건(75.0%)으로 방송

관련 조정신청건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정치·행정기사가 22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주간지·주간신문의 경우는 사회기사 79건(51.3%), 정치·행정기사 31건(20.1%)으로 나타났으며 월간지의 경우는 의료·건강기사가 9건(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는 사회기사가 38건(49.4%), 정치·행정기사 17건(22.1%)을 차지했다.

조정대상 기사의 종류는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 508건(82.6%), 해설 기사 23건(3.7%), 심층기사 21건(3.4%), 사설 18건(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의 경우 뉴스프로그램이 144건(66.7%), 시사고발프로그램이 45건(20.8%), 교양정보프로그램이 15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취재원을 살펴보면 기자가 직접 인지하여 취재한 경우가 310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도자료 및 발표자료 231건(21.2%), 민원 및 제보 230건(21.2%), 사건의 당사자 및 주변인물 197건(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V. 중재부별 처리현황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 6개 중재부가 709건(65.2%), 지방 10개 중재부가 378건(34.8%)을 접수·처리하였다. 2005년과 비교해 서울 중재부의 접수율(67.0%→65.2%)이 소폭 감소한 반면 지방 중재부의 접수율(33.0%→34.8%)이 소폭 증가했다.

합의율은 서울중재부가 33.3%로 지방중재부의 31.7%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취하율은 지방이 46.3%, 서울이 33.6%로 지방중재부의 취하율이 월등히 높았다.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서울이 22.1%, 지방이 18.3%로 서울중재부가 다소 높았으며 직권조정결정건수는 서울중재부가 49건으로 지방중재부의 8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방중재부중에서는 경기중재부가 113건(10.4%)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광주중재부 55건(5.1%), 전북중재부 50건(4.6%), 부산

중재부 42건(3.9%), 대구중재부 31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중재부는 20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북중재부와 경기중재부, 대전중재부 등의 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지방중재부 가운데 경남중재부의 합의율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중재부 53.8%, 대전중재부 51.7%, 전북중재부 4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부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이어 경남중재부가 95.0%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으며 대전중재부 86.2%, 강원중재부 83.3%, 충북중재부 76.9%, 전북중재부 6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VI. 손해배상 처리현황

2006년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318건이 접수·처리된 가운데 합의 49건(15.4%), 직권조정결정 20건(6.2%), 조정불성립결정 80건(25.2%), 기각 6건(1.9%), 각하 1건(0.3%), 취하 162건(51.0%)이며 취하된 건 가운데는 정정·반론 등 피해구제보도로 만족하여 취하한 건수가 115건(전체 손해청구건수대비 36.2%, 취하건수 대비 71.0%)으로 집계되었다. 직접적인 금전배상에 합의한 것 외 정정·반론 등 피해구제보도로 만족하여 취하한 것을 모두 포함한 피해구제율은 55.9%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주장된 인격권의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318건 가운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이 260건, 기업 등의 신용훼손을 주장한 것이 3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 42건, 음성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 7건, 성명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 1건,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것이 4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을 구한 신청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21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단체가 45건, 기업체가 41건의 순으로 많았다.

VII. 법원 자동소제기 현황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이의신청되어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경우는 모두 24건이었다. 손해배상청구건이 8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각 6건, 정정 및 손해배상 병합 청구 2건, 정정 및 반론보도 병합 청구 2건이며 이 중 1건은 인용되고 3건은 취하되었으며 1건은 기각되고 나머지 건은 계류중이다. 신청인에 의해 이의신청된 사건은 4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였다.

Ⅷ. 중재신청 처리현황

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에 중재신청이 한 건도 없었으나, 2006년에는 7건이 청구되었다. 2006년에 이루어진 7건의 중재신청은 손해배상청구가 5건, 정정보도청구 1건, 반론보도청구 1건이었으며, 침해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 각각 2건이었고, 음성권 침해가 1건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

2006년에는 일간지 97종, 주간지 10종, 주간신문 276종, 월간지 6종, 뉴스통신 2종, 인터넷신문 292종 등 총 683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190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2005년의 278건에 비해 34.0%나 감소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총 188건이며 언론중재법 제정에 따라 제3자가 신청한 50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사가 73건(3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기사가 69건(31.7%), 목격자·신고자·피해자의 신원 공개기사가 22건(11.7%), 마약·용량·용법 공개기사가 10건(5.3%) 순이었다.

자살 사건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이 2004년 7.4%, 2005년 30.9%, 2006년 38.8%로 급증하고 있

는 반면 마약·용량·용법을 공개한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은 급감했으며(17.1%→5.3%),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 역시 감소했다(4.0%→2.1%).

피의자·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한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은 소폭 증가했으며(32.0%→36.7%), 목격자·신고자·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 역시 소폭 증가했으나(8.7%→11.7%) 시정권고 건수는 2005년에 비해 각각 19건과 2건이 감소했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150건(79.8%)을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신문이 16건(8.5%), 뉴스통신 14건(7.4%), 주간신문 8건(4.2%) 순이었다. 2005년에 비해 일간신문의 시정권고 비율이 대폭 감소한 반면(89.0%→79.8%), 인터넷 신문의 시정권고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0.7%→8.6%).

제3자가 신청한 심의건수는 모두 50건으로 이중 2건만이 시정권고 되었으며, 취하 36건, 기각 11건, 각하 1건 등이었다. 2005년의 17건에 비해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시정권고로 이어진 건수는 감소했다(3건→2건).

2005년에 비해 취하율은 급증한 반면(23.5%→72.0%) 기각률은 대폭 감소하였는데(52.9%→22.0%) 취하율이 높고 또 취하 및 기각 건수가 많은 것은 시정권고 신청을 통해 사과문 게재, 기사 삭제 등을 요구하거나 사전방송금지를 요청하는 등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간언론포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I. 상담처리결과 현황

민간언론포해상담센터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총 2,304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다.

상담신청유형은 전화상담이 1,836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상담 178건(7.7%), 인터넷게시판 상담 140건(6.1%), 인터넷실시간 상담 132건(5.7%)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전화 상담 비율(77.1%→79.7%) 및 인터넷 게시판 상담 비율(4.0%→6.1%)이 소폭 증가한 반면, 방문 상담은 다소 감소했다(11.3%→7.7%).

인터넷 사용의 증가를 반영하듯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은 2005년도 257건(10.9%)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인터넷게시판 상담 및 인터넷 실시간 상담 272건 외에도 이메일을 통한 상담 7건(0.3%) 등 모두 279건(12.1%)이 접수·처리되었다.

상담결과 1,719건(67.6%)에 대해 조정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타기관 안내 297건(11.7%), 소송제기 등의 법적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286건(11.3%) 등의 순이었다. 2005년에 비해 조정절차 문의 및 안내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며(63.2%→67.6%) 타기관 안내 비율도 소폭 증가한 반면(9.3%→11.7%), 법적절차의 안내 비율은 다소 감소(21.0%→11.3%)하였는데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언론중재제도 내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상담의 결과로 보여지며 전체 상담건수 2,542건(상담처리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2,304건의 상담건수와 불일치) 가운데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수가 555건으로 조정절차 안내 건수 대비 32.3%의 접수율을 보였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1,384건(58.0%)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성명권 등 침해 224건(9.4%), 신용훼손 침해 118건(4.9%), 사생활 침해 65건(2.7%) 등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도에 비해 명예훼손 관련 상담이 급감한 반면(71.0%→58.0%) 신용훼손 침해(2.1%→4.9%)와 초상권·성명권 등의 인격권 관련 침해(7.1%→9.4%)는 다소 증가했다.

II. 상담신청 매체별 현황

상담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매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매체 997건(41.6%), 방송매체 575건(24.0%), 인터넷 282건(11.8%), 통신 64건(2.7%), 잡지 58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매체 내에서는 일간신문이 750건(7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터넷매체가 차지하는 상담비율이 2004년 5.4%, 2005년 8.5%, 2006년 11.8%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문매체의 상담비율(40.2%→41.6%)과 방송매체의 상담비율(23.5%→24.0%)은 소폭 증가했다.

III. 상담신청 신청인별 현황

상담신청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1,084건(47.0%), 회사 267건(11.6%), 일반단체 135건(5.9%)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회사 상담이 다소 늘어난 반면(9.7%→11.6%) 개인 상담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52.7%→47.0%). 상담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 비율은 2005년 29.6%, 2006년 31.9%로 다소 증가했다.

IV. 교육 현황

2006년 한 해 동안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언론사, 대학, 공공기업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한 총 7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교육이 40회(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방 공무원 14회(20.0%), 대학 5회(7.1%), 공·사기업 4회(5.7%), 기타 7회였다. □

◇ 조정 및 중재신청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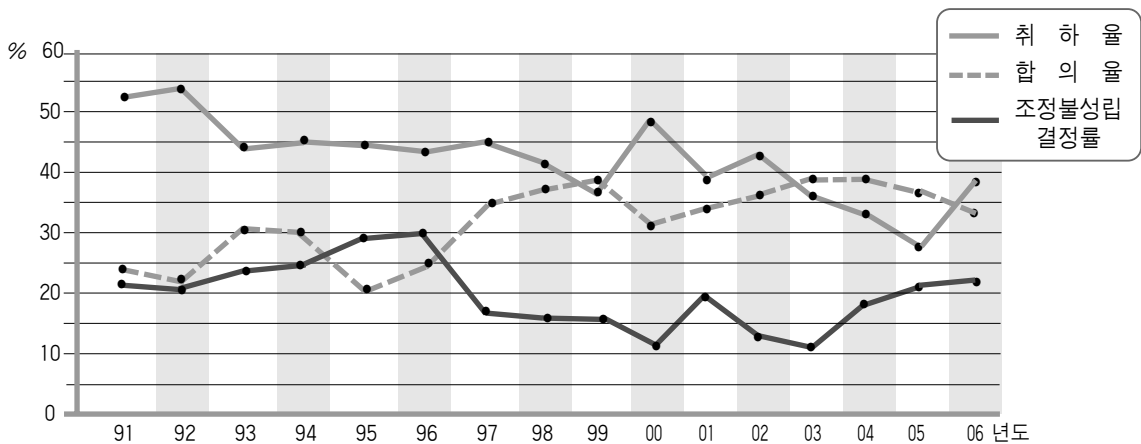
I. 조정신청처리현황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

※ ()안은 %

연 도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06	1,087	356 (32.8)	57 (5.2)	226 (20.8)	22 (2.0)	13 (1.2)	413 (38.0)

1991년 이후 합의율 · 취하율 · 조정불성립결정률 추이비교



실질적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현황

연 도	구 분	청구건수(A)	기각 · 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
1981~2002		6,868	196	6,672	3,845	57.6
2003		724	30	694	474	68.3
2004		759	13	746	495	66.4
2005		883	34	849	530	62.4
2006		1,087	35	1,052	637	60.6
계		10,321	308	10,013	5,981	59.7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과 이후 처리결과

※ ()안은 %

구 분	청 구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구 법 (1981.~05. 7. 27.)	8,758	2,833(32.3)	286(3.3)	1,737(19.8)	215(2.5)	39(0.4)	3,648(41.7)
신 법 (05. 7. 28~06. 12.31.)	1,563	518(33.1)	86(5.5)	337(21.6)	27(1.7)	27(1.7)	568(36.3)
계	10,321	3,351	372	2,074	242	66	4,216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신청현황

구 분 \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청구건수	511	724	759	883	1,087
전년대비 증감		213	35	124	204

청구권별 처리결과

※ ()안은 %

구 분 청구명 \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정 정	546(50.2)	220(40.3)	23(4.2)	108(19.8)	14(2.6)	12(2.2)	169(30.9)
반 론	211(19.4)	79(37.4)	14(6.6)	37(17.5)	2(0.9)		79(37.6)
추 후	12(1.1)	8(66.7)		1(8.3)			3(25.0)
손 배	318(29.3)	49(15.4)	20(6.3)	80(25.2)	6(1.9)	1(0.3)	162(50.9)
계	1,087(100.0)	356(32.8)	57(5.2)	226(20.8)	22(2.0)	13(1.2)	413(38.0)

최근 5년간 청구권별 조정신청현황

※ ()안은 %

청구명 \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정 정	307	503	414	531	546	2,301(58.1)
반 론	201	216	301	194	211	1,123(28.3)
추 후	3	5	44	17	12	81(2.0)
손 배				141	318	459(11.6)
계	511	724	759	883	1,087	3,964

청구권별 피해구제율

구 분 청구명	청구건수(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
정 정	546	26	520	324	62.3
반 론	211	2	209	128	61.2
추 후	12		12	11	91.7
손 배	318	7	311	174	55.9
계	1,087	35	1,052	637	60.6

신법시행 후 침해유형별 조정신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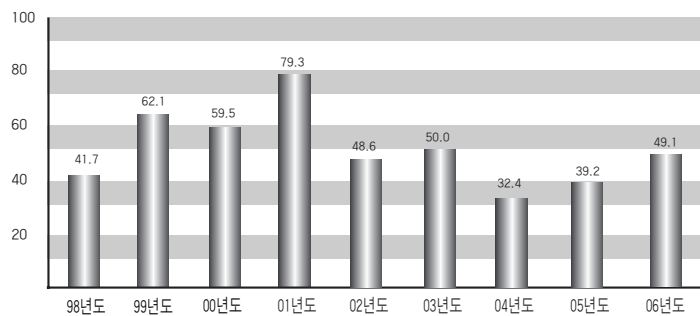
침해 유형 년도	명예훼손 및 기타인격권훼손					신용훼손	기 타	합 계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침해			
2005 (7. 28. 이후)	433	15	2	14	-	10	2	476
2006	1,003	48	7	1	5	17	6	1,087
계	1,436	63	9	15	5	27	8	1,563

최근 5년간, 침해유형별 조정신청현황

※ ()안은 %

연 도 침해유형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명예 및 기타인격권훼손	493	698	718	845	1,064	3,818(96.3)
신용훼손	10	10	39	36	17	112(2.8)
기 타	8	16	2	2	6	34(0.9)
계	511	724	759	883	1,087	3,964(100.0)

조정결정 이의신청률 추이



II. 조정신청인 유형별 처리현황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 ()안은 %

구 분 유 형	건 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및 기타인격권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개 인	529(48.7)	521	5	3	163 (30.8)	35(6.6)	92(17.4)	16(3.0)	2(0.4)	221(41.8)
국가기관	151(13.9)	150		1	66 (43.7)	10(6.6)	30(19.9)	1(0.7)		44(29.1)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30(2.8)	30			12 (40.0)	5(16.7)	9(30.0)	1(3.3)		3(10.0)
공공단체	15(1.4)	15			5 (33.3)		1(6.7)			9(60.0)
조합 및 협회	46(4.2)	46			8(17.4)	2(4.3)	14(30.5)	2(4.3)		20(43.5)
일반단체	126(11.6)	123	3		47(37.3)	5(4.0)	20(15.9)	1(0.8)	11(8.7)	42(33.3)
종교단체	9(0.8)	9			1(11.1)		8(88.9)			
기업체	127(11.6)	116	9	2	30(23.6)		40(31.5)	1(0.8)		56(44.1)
언론사	17(1.6)	17			5(29.4)		9(53.0)			3(17.6)
금융기관	2(0.2)	2					1(50.0)			1(50.0)
교육기관	35(3.2)	35			19(54.3)		2(5.7)			14(40.0)
계	1,087	1,064(97.9)	17(1.6)	6(0.5)	356(32.8)	57(5.2)	226(20.8)	22(2.0)	13(1.2)	413(38.0)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처리결과

※ ()안은 %

구 분 유 형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국회의원	39(7.4)	8(20.5)	1(2.6)	9(23.1)			21(53.8)
법조인	10(1.9)	1(10.0)	1(10.0)	6(60.0)			2(20.0)
전·현직 공무원	78(14.7)	23(29.5)	4(5.1)	4(5.1)			47(60.3)
군인/경찰	13(2.5)	4(30.8)		1(7.7)			8(61.5)
기초광역단체장/의원	17(3.2)	2(11.8)		8(47.0)			7(41.2)
정당정치인	14(2.6)		2(14.3)	2(14.3)			10(71.4)
의료인	10(1.9)	5(50.0)					5(50.0)
문화예술인	18(3.4)	6(33.2)	1(5.6)	1(5.6)			10(55.6)
종교인	9(1.7)	4(44.5)	3(33.3)		1(11.1)		1(11.1)
회사원	48(9.1)	20(41.6)	6(12.5)	14(29.2)	1(2.1)		7(14.6)
언론인	29(5.5)	12(41.4)	1(3.5)	7(24.1)	2(6.9)		7(24.1)
교육자(교수·교사·강사 등)	37(7.0)	16(43.2)		5(13.6)			16(43.2)
개인사업가	28(5.3)	9(32.2)	3(10.7)	2(7.1)			14(50.0)
농업·수산업·도소매업	28(5.3)	8(28.6)	1(3.6)	8(28.6)			11(39.2)
서비스업	25(4.7)	6(24.0)	3(12.0)	8(32.0)			8(32.0)
학 생	18(3.4)	7(38.9)	2(11.1)		2(11.1)	2(11.1)	5(27.8)
일반단체·각종조합대표 등	28(5.3)	8(28.6)	2(7.1)	8(28.6)	6(21.4)		4(14.3)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2(0.4)		1(50.0)	1(50.0)			
주 부	25(4.7)	4(16.0)	2(8.0)	7(28.0)	1(4.0)		11(44.0)
무 직	14(2.6)	7(50.0)					7(50.0)
기 타	39(7.4)	13(33.3)	2(5.1)	1(2.6)	3(7.7)		20(51.3)
계	529	163(30.8)	35(6.6)	92(17.4)	16(3.0)	2(0.4)	221(41.8)

최근 5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 ()안은 %

유 형 \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개 인	216	247	265	385	529	1,642(41.4)
국가기관	22	164	190	146	151	673(17.0)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26	43	33	31	31	164(4.2)
공공단체	17	17	30	22	15	101(2.5)
정 당	10	1	3	7	-	21(0.5)
조합 및 협회	49	60	69	87	46	311(7.8)
일반단체	35	71	34	58	126	324(8.2)
종교단체	12	16	11	19	9	67(1.7)
기업체	90	71	98	103	126	488(12.3)
언론사	20	10	15	10	17	72(1.8)
금융기관	3	1	1	3	2	10(0.3)
교육기관	7	14	8	12	35	76(1.9)
의료기관	4	9	2	-	-	15(0.4)
계	511	724	759	883	1,087	3,964(100.0)

신청인 유형별 피해구제율

유 형 \ 구 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B)	조정건수(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개 인	529	18	511	311	60.9
국가기관	151	1	150	104	69.3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31	1	30	18	60.0
공공단체	15		15	11	73.3
조합 및 협회	46	2	44	18	40.9
일반단체	126	12	114	75	65.8
종교단체	9		9	1	11.1
기업체	126	1	125	62	49.6
언론사	17		17	8	47.1
금융기관	2		2	1	50.0
교육기관	35		35	28	80.0
계	1,087	35	1,052	637	60.6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피해구제율

구 분 유 형	청구건수(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
국회의원	39		39	17	43.6
법조인	10		10	4	40.0
전·현직 공무원	78		78	59	75.6
군인/경찰	13		13	7	53.8
기초광역단체장/의원	17		17	4	23.5
정당정치인	14		14	8	57.1
의료인	10		10	7	70.0
문화예술인	18		18	12	66.7
종교인	9	1	8	8	80.0
회사원	48	1	47	28	59.6
언론인	29	2	27	18	66.7
교육자(교수·교사·강사 등)	37		37	22	59.5
개인사업가	28		28	16	57.1
농업·수산업·도소매업	28		28	15	53.6
서비스업	25		25	12	48.0
학 생	18	4	14	12	85.7
일반단체·각종조합대표 및 임원	28	6	22	12	54.5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2		2	-	-
주 부	25	1	24	14	58.3
무 직	14		14	14	100.0
기 타	39	3	36	22	61.1
계	529	18	511	311	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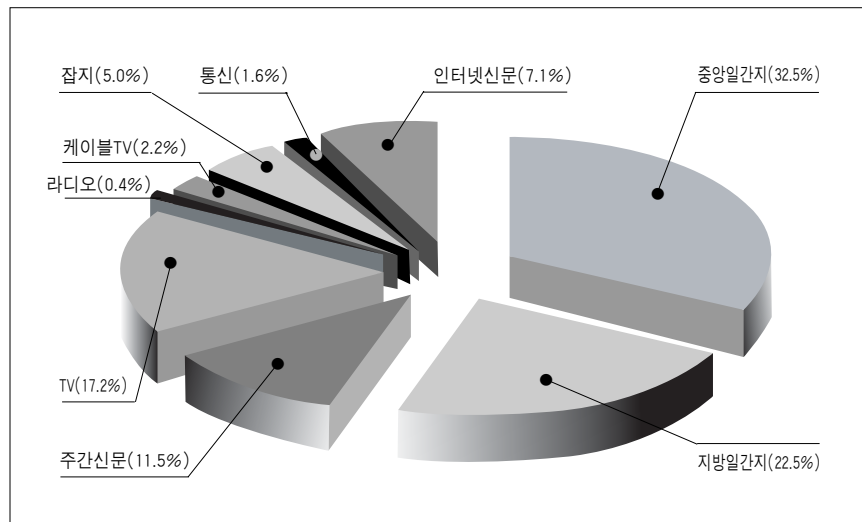
Ⅲ. 조정대상 매체별 처리현황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안은 %

구 분 매체유형 건 수			합 의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신문	중앙일간지	353	120 (34.0)	17 (4.8)	70 (19.8)	7 (2.0)	7 (2.0)	132 (37.4)
	지방일간지	245	72 (29.4)	7 (2.9)	37 (15.1)	2 (0.8)		127 (51.8)
	주간신문	125	41 (32.8)	10 (8.0)	24 (19.2)	4 (3.2)		46 (36.8)
방송	T V	187	50 (26.8)	14 (7.5)	58 (31.0)		4 (2.1)	61 (32.6)
	라 디 오	5	2 (40.0)		2 (40.0)	1 (20.0)		
	C A T V	24	5 (20.8)	3 (12.5)	6 (25.0)	1 (4.2)	1 (4.2)	8 (33.3)
잡 지		54	26 (48.1)	4 (7.4)	15 (27.8)			9 (16.7)
통 신		17	6 (35.3)		1 (5.9)	2 (11.7)	1 (5.9)	7 (41.2)
인 터 넷 신 문		77	34 (44.1)	2 (2.6)	13 (16.9)	5 (6.5)		23 (29.9)
계		1,087 (100.0)	356 (32.8)	57 (5.2)	226 (20.8)	22 (2.0)	13 (1.2)	413 (38.0)

매체별 조정신청률



최근 5년간 매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 ()안은 %

연 도 매체유형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
일간지	303	485	449	492	598	2,327 (60.7)
주간신문	89	60	89	113	125	476 (12.3)
시사주간지	10	10	14	4	29	67 (1.6)
방 송	89	121	161	151	192	714 (17.7)
케이블TV	1	12	15	23	24	75 (1.7)
월간지	14	22	18	33	25	112(2.9)
통 신	4	13	10	18	17	62(1.5)
인터넷신문				48	77	125(1.4)
계	510	723	756	882	1,087	3,958(100.0)

조정대상 매체별 피해구제율

※ ()안은 %

구 분 매체유형		청구건수(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
신 문	중 앙 일 간 지	353	14	339	219	64.6
	지 방 일 간 지	245	2	243	153	63.0
	주 간 신 문	125	4	121	69	57.0
방 송	T V	187	4	183	80	43.7
	라 디 오	5	1	4	2	50.0
	케 이 블 T V	24	2	22	15	68.2
시 사 주 간 지		29		29	14	48.3
월 간 지		25		25	20	80.0
통 신		17	3	14	13	92.9
인 터 넷 신 문		77	5	72	52	72.2
계		1,087	35	1,052	637	60.6

언론사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16	15		1					6	1	5			4
	국민일보	14	14							4	2				8
	내일신문	7	7							3					4
	동아일보	55	53				1	1		14	5	18		1	17
	문화일보	21	21							4	1	6			10
	서울신문	15	14		1					4	2	4			5
	세계일보	12	12							4		1	2		5
	조선일보	65	60		3				2	25	3	19	2	1	15
	중앙일보	34	34							13		5	1	1	14
	한겨레	31	31							11	2	4	1	2	11
	한국일보	12	11						1	4		1	1	1	5
	소 계	282	272		5		1	1	3	92	16	63	7	6	98
지방일간지	서울	시민일보	4	4						1		3			
		아시아일보	4	4						1					3
		내외신문	2	2						1					1
	부산	국제신문	5	5						3					2
		부산일보	8	8						1		1			6
		경상일보	1	1											1
		광역일보	2	2						1					1
	대구·경북	경북일보	2	2											2
		대구신문	3	3						1					2
		매일신문	6	6						3					3
		영남일보	6	6						3		2			1
		신라일보	2	2						2					
	광주	광주매일	2	2											2
		광주일보	3	3											3
	무등	무등일보	4	4						1		1			2
	전광	전광일보	4	4								2			2
	전남매일	전남매일	2	2											2
	전남일보	전남일보	1	1						1					
	호남매일	호남매일	2	2								2			
	호남일보	호남일보	2	2											2
	남도일보	남도일보	3	3									1		2
	대한일보	대한일보	5	5						1					4
	호남투데이	호남투데이	2	2											2
	대전	대전일보	3	3						1					2
	충남	충청일보	6	6						4					2
		충청신문	1	1											1
		중앙매일	2	2						1					1
	인천	경기도민일보	3	3						1					2
	경기	경기매일	8	8								4			4
		경기신문	9	9						3		1			5

매체 유형	매체명	구분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타	합의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 방 일 간 지	인 · 경 기	경 기 일 보	11							3					8
		경 인 매 일	1	1						1					
		경 인 일 보	9	9						1	1				7
		기 호 일 보	2	2											2
		서 울 일 보	3	3						2					1
		수 도 권 일 보	3	3											3
		우 리 일 보	6	6						2					4
		인 천 일 보	13	13						1	1	5	1		5
		중 부 일 보	9	9						2		2			5
		전 국 매 일	2	2											2
		현 대 일 보	3	3						1					2
		투 데 이 뉴스	3	3						1	2				
		평 화 일 보	2	2											2
	강원	강 원 도 민 일 보	2	2						1					1
		강 원 일 보	3	3						2					1
		동 양 일 보	4	4						2					2
	충 북	한 빛 일 보	6	6						3					3
		충 청 투 데 이	4	4						2					2
		새 전 북 신 문	3	3								1			2
	전 북	전 라 일 보	2	2											2
		전 민 일 보	5	5						1		1			3
		전 북 도 민 일 보	3	3						2					1
		전 북 일 보	6	6						3	1				2
		전 북 중 앙 신 문	13	13						6	1	6			
		전 주 매 일	2	2						1					1
		전 북 매 일	1	1											1
		새 전 북 신 문	1	1						1					
		전 북 대 중 일 보	2	2						1	1				
	경남	경 남 도 민 일 보	3	3						2					1
		조 간 경 남	3	3						1					2
	제주	제 민 일 보	2	2						1					1
		한 라 일 보	6	6								6			
	소 계		245	245						73	7	37	2		126
경 제 지	매 일 경 제	매 일 경 제	17	15	1	1				5		1			11
		서 울 경 제	4	4						2					2
		파이낸셜뉴스한	2	1					1						2
		국 경 제	11	10		1				4				1	6
		헤럴드경제	5	5						2		1			2
		머니투데이	2	1		1				1		1			
		아시아경제	5	5						2					3
	소 계		46	41	1	3			1	16		3		1	26
스 포 츠 지	스 포 츠 서 울		5	3		2				3					2
	일 간 스 포 츠		2	2						1					1
	소 계		7	5		2				4					3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타	합의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 일간지	농 민 신 문	2	2							1					1
	전 자 신 문	5	5												5
	일 간 환 경	2	2							2					
	소 계	9	9							3					6
무료 일간지	더테일리포커스	5	2		3					2	1	2			
	A M 7	2			2					2					
	광 주 드 림	2	2									2			
	소 계	9	4		5					4	1	4			
중 앙 방 송	KBS-TV*	7	4	2		1				1		2			4
	KBS-1TV	41	38	1	2					13	4	11			13
	KBS-2TV	18	10	4	2	2				4	2	9			3
	MBC-TV	46	33	5	6	2				11	7	18		1	9
	SBS-TV	28	22	1	2	1		2		9		4		3	12
	SBS-R	1	1										1		
	PBC-R	2	2									2			
	소 계	143	110	13	12	6		2		38	13	46	1	4	41
지 방 방 송	부산KBS-1TV	6	6									3			3
	강릉KBS-1TV	2	2							1					1
	춘천KBS-1TV	2	2												2
	진주KBS-1TV	1	1							1					
	전주KBS-1TV	4	4							1					3
	부산MBC-TV	3	3									1			2
	강릉MBC-TV	1				1					1				
	청주MBC-TV	2	1		1					1					1
	안동MBC-TV	5	5									3			2
	마산MBC-TV	1	1							1					
	울산MBC-TV	1	1												1
	진주MBC-TV	1	1							1					
	전주MBC-TV	1	1												1
	광주MBC-TV	3	3							1		1			1
	소 계	33	31		1	1				7	1	8			17
지 역 민 방	KNN	5	4		1					1		3			1
	TJB-TV	4	3		1					3		1			
	TBC-TV	4	4							1		2			1
	경기방송-R	2	2							2					
	소 계	15	13		2					7		6			2
케이블 TV	YTN	15	12		3					2	1	5		1	6
	MBN	2	2								1	1			
	YTN STAR	2	2							1					1
	TVN	1			1					1					
	Q채널	1			1						1				
	양천방송	1	1										1		
	CMB광주방송	2	2							1					1
	소 계	24	19		5					5	3	6	1	1	8

* KBS1, KBS2TV에 모두 방송된 경우 KBS-TV로 처리함

매체유형 매체명 구분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동멀티미디어	T U 미 디 어	1			1										1
	소 계	1			1										1
뉴 스통신	연 합 뉴 스	8	6		1			1		2		1	2	1	2
	뉴 시 스	9	9							4					5
	소 계	17	15		1			1		6		1	2	1	7
시사주간지	뉴 스 메 이 커	2			2					2					
	시 사 저 널	17	15		2					3	2	8			4
	이 코 노 미 스트	1	1							1					
	주 간 동 아	4	4							1		3			
	한 겨 레 2 1	5	5							2		2			1
	소 계	29	25		4					9	2	13			5
시사주간신문	일 요 서 울	3	3								3				
	일 요 신 문	3	3								1	2			
	시 민 의 신 문	2	2							1					1
	소 계	8	8							1	4	2			1
지역주간신문	중 로 신 문	3	3							2		1			
	사 하 타임즈	2	2							2					
	주간사하신문	2	2							2					
	영주시민신문	3	3									3			
	나주투데이	4	4							1		2			1
	서남신문	2	2												2
	완도신문	2	2												2
	전남타임즈	4	4												4
	당진뉴스	1	1							1					
	청양신문	1	1									1			
	주간리더	2	2									2			
	여주신문	1	1												1
	e-서부신문	2	2										2		
	서해안신문	1	1												1
	하나로신문	1	1												1
	연기신문	3	3							1					2
	용인신문	1	1												1
	주간한국기자연대	3	3							1					2
	안양광역신문	2	2							1					1
	경기북부시민신문	1	1							1					
	부천자치신문	1	1							1					
	포천신문	1	1												1
	뉴스리더	2	2												2
	원주투데이	4	2						2				2		2
	증평괴산저널	1	1							1					
	목포투데이	4	4									4			
	정읍신문	2	2												2
	고창신문	1	1							1					
	남해신문	1	1							1					

매체유형 매체명 구분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타	합의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 역 주 간 신 문	함안아라신문	1	1							1					
	고 성 신 문	2	2							1					1
	함 안 신 문	3	3							2					1
	진 주 신 문	2	2							1					1
	소 계	66	64						2	21		13	4		28
특 수 주 간 신 문	수 산 신 문	1	1							1					
	복지연합신문	3	3							2					1
	계 임 신 문	2	2							1					1
	연 천 저 널	1	1									1			
	기 독 교 보	3	3								3				
	한국건설신문	1	1							1					
	한국마케팅신문	2	2												2
	교 통 신 문	1	1												1
	국제태권도신문	1	1							1					
	보 건 신 문	2	2							2					
	한국목재신문	4	4							2					2
	컴퓨터타임즈	1	1												1
	수 산 인 신 문	1	1									1			
	교 수 신 문	2	2									2			
	기 독 신 문	4	4							1		3			
	목사장로신문	3	3									2			1
	기 자 협 회 보	4	4							2					2
	국 민 대 신 문	1	1							1					
	재외동포신문	1	1								1				
	동국대학원신문	2	2												2
	한국방송대학보	1	1												1
	복 음 과 상 황	1	1							1					
	교통환경신문	2	2								2				
	경 향 계 임 스	2	2												2
	주거환경신문	1	1							1					
	P D 저 널	1						1		1					
	순 례 자	2	2							1					1
	e-조은뉴스	1	1							1					
	소 계	51	50					1		19	6	9			17
월 간 지	신 동 아	3	3							1					2
	월 간 조 선	1			1							1			
	아트인컬처	2	2							2					
	레 이 디 경 향	1	1							1					
	로 즈 저 널	2	2							2					
	민 들 레	2	2							1					1
	여 성 중 앙	2	2								1	1			
	싱 글 즈	2			2					2					
	월 간 미 술	1			1					1					
	러 닝 라 이 프	1			1					1					

매체유형	매체명	구분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월간지	월간SHAPE	2	2							2					
	부산대교지(회원)	2	2							2					
	전국버스노동자신문	1	1							1					
	레몬트리	1	1							1					
	모터트랜드	2	2							1					1
	소계	25	20		5					17	2	2			4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15	14		1					3	1	2	2		7
	오마이뉴스	8	8							4		2			2
	프레시안	2	2							1		1			
	쿠키뉴스	2	2							1					1
	인터넷시민의소리	2	2									2			
	인터넷e조은뉴스	1	1												1
	이타임즈	2	2										2		
	CNBNEWS	2	2							1					1
	브레이크뉴스	2	2												2
	이데일리	2	2							1					1
	프런티어타임스	1	1								1				
	데일리서프라이즈	6	6							2		2			2
	코레아포커스	1	1												1
	뉴스엔조이	3	3							3					
	데일리엔케이	2	2							2					
	폴리뉴스	1	1							1					
	마이데일리	1	1							1					
	메디컬투데이	2	2							1					1
	E B N	1	1							1					
	거제타임즈	1	1							1					
	디트뉴스24	1	1							1					
	인천뉴스	1	1												1
	이슈제주	3		3						2					1
	천안일보	2	2							1					1
	소통뉴스	4	4							4					
	부천타임즈	1	1							1					
	용인인터넷신문	2	2									2			
	울산노동뉴스	2	2									2			
	아라신문	1	1							1					
	머니투데이	1	1												1
	런아시아넷	1	1										1		
	디시뉴스	1			1					1					
	소계	77	72	3	2				6	34	2	13	5		23
총계		1,087	1,003	17	48	7	1	4		356	57	226	22	13	413

Ⅳ. 조정대상 기사 현황

매체유형별 조정대상기사 내용 현황

※ ()안은 %

매체유형	구분	기사내용	정치행정	경제	사회	과학환경	문화	의료건강	스포츠연예	노조	교육	언론	기타	합계
일간신문·통신	중앙지		115	15	88	3	3	3	8	4	23	8	12	282
	지방지		35		182	2		2			8		16	245
	경제지		15	17	5	3		2		2			2	46
	스포츠지		2		2			1	2					7
	특수일간지		5		1	2							1	9
	무료일간지				2		2						5	9
	통신		1		11		2	2					1	17
	소계		173	32	291	10	7	10	10	6	31	8	37	615
방송	전국방송		19	4	98	5	1	8	2		1	1	5	144
	지역방송		1		45			1			1			48
	케이블TV		2	1	19		1		1					24
	소계		22	5	162	5	2	9	3		2	1	5	216
주간지·주간신문			31	2	79	3	6	4	2		4	4	19	154
월간지			1		2		3	9		1	4	2	3	25
인터넷신문			17	6	38		4	2	3	2	3	2		77
합계			244 (22.4)	45 (4.1)	572 (52.6)	18 (1.7)	22 (2.0)	34 (3.1)	18 (1.7)	9 (0.8)	44 (4.1)	17 (1.6)	64 (5.9)	1,087

매체유형별 조정대상 기사의 종류

※ ()안은 %

매체유형	구분	기사종류	신청건수
일간신문·통신		스트레이트	508 (82.6)
		해설	23 (3.7)
		심층기사	21 (3.4)
		사설	18 (2.9)
		논단 및 칼럼	14 (2.3)
		인터뷰	14 (2.3)
		사진	10 (1.6)
		비평	2 (0.3)
		기타	5 (0.8)
		계	615 (100.0)
방송		뉴스해설	100 (46.3)
		뉴스내 고발프로	44 (20.4)
		시사고발프로	45 (20.8)
		교양정보	15 (6.9)
		드라마	2 (0.9)
		스포츠	2 (0.9)
		연예정보	1 (0.5)
		다큐멘터리	1 (0.5)
		기타	6 (2.3)
		계	216 (100.0)

매체유형별 취재원 분류

※ ()안은 %

매체유형 \ 취재원	기자 직접 인지 취재	민원 및 제보	사건의 당사자· 주변인물	민·형사 사건기록	보도자료 및 발표자료	통신 및 타매체 보도	회의 세미나 연구보고서	인터넷 사이트	기타	합계
일간지·통신	160	115	112	10	153	14	4	1	46	615
방송	49	56	38	4	58	1			10	216
주간신문	64	36	33		9		4	2	6	154
잡지	10	3	5						7	25
인터넷신문	27	20	9	2	11	2	3		3	77
합계	310 (28.4)	230 (21.2)	197 (18.1)	16 (1.5)	231 (21.2)	17 (1.6)	11 (1.0)	3 (0.4)	72 (6.6)	1,087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처리결과

※ ()안은 %

청구명	구분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정정	43	21(48.8)		7(16.3)	3(7.0)		12(27.9)
반론	13	10(76.9)					3(23.1)
손배	21	3(14.3)	2(9.5)	6(28.6)	2(9.5)		8(38.1)
계	77(100.0)	34(44.1)	2(2.6)	13(16.9)	5(6.5)		23(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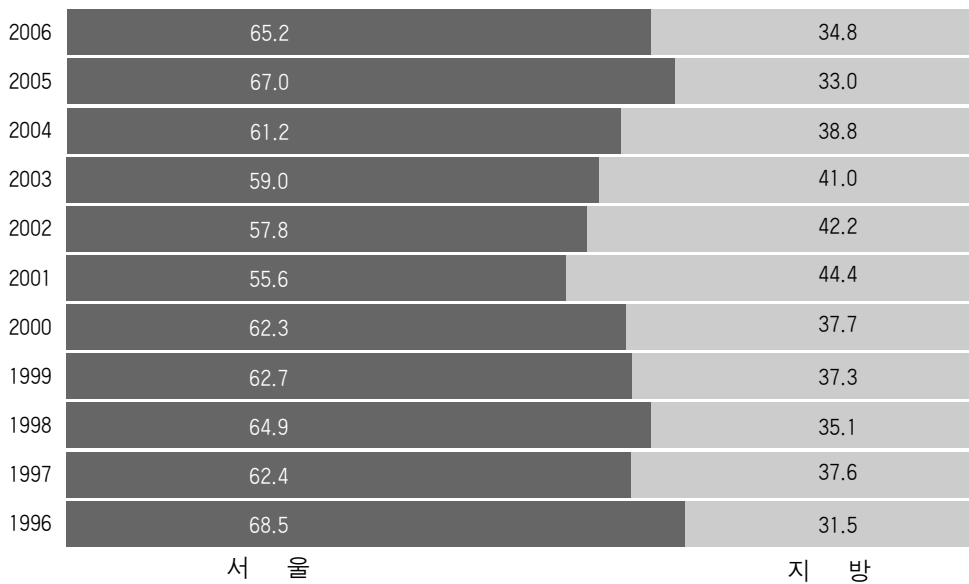
V.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

※ ()안은 %

중재부	구 분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서울중재부	709(65.2)	236(33.3)	49(6.9)	157(22.1)	16(2.3)	13(1.8)	238(33.6)
부산중재부	42(3.9)	15(35.7)		10(23.8)			17(40.5)
대구중재부	31(2.8)	10(32.3)		10(32.3)			11(35.4)
광주중재부	55(5.1)	6(10.9)		16(29.1)	1(1.8)		32(58.2)
대전중재부	29(2.7)	15(51.7)		2(6.9)			12(41.4)
경기중재부	113(10.4)	25(22.1)	4(3.5)	17(15.1)	3(2.7)		64(56.6)
강원중재부	14(1.3)	4(28.6)	1(7.1)		2(14.3)		7(50.0)
충북중재부	13(1.2)	7(53.8)					6(46.2)
전북중재부	50(4.6)	21(42.0)	3(6.0)	8(16.0)			18(36.0)
경남중재부	20(1.8)	14(70.0)					6(30.0)
제주중재부	11(1.0)	3(27.3)		6(54.5)			2(18.2)
계	1,087	356(32.8)	57(5.2)	226(20.8)	22(2.0)	13(1.2)	413(38.0)

서울·지방간 조정신청 구성비율추이



최근 5년간 중재부별 조정신청 현황

※ ()안은 %

연 도 중재부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
서울중재부	307	496	558	592	709	2,662 (67.2)
부산중재부	15	18	27	35	42	137 (3.5)
대구중재부	14	20	17	14	31	96 (2.4)
광주중재부	39	40	32	45	55	211 (5.3)
대전중재부	16	20	15	18	29	98 (2.5)
경기중재부	45	64	41	87	113	350 (8.8)
강원중재부	7	10	13	15	14	59 (1.5)
충북중재부	16	6	4	10	13	49 (1.2)
전북중재부	25	25	27	29	50	156 (3.9)
경남중재부	20	16	20	25	20	101 (2.6)
제주중재부	7	9	5	13	11	45 (1.1)
계	511	724	759	883	1,087	3,964 (100.0)

중재부별 피해구제율

구 분 중재부	청구건수 (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 건수	피해구제율 (%)
서울중재부	709	29	680	418	61.5
부산중재부	42		42	21	50.0
대구중재부	31		31	14	45.2
광주중재부	55	1	54	16	29.6
대전중재부	29		29	25	86.2
경기중재부	113	3	110	67	60.9
강원중재부	14	2	12	10	83.3
충북중재부	13		13	10	76.9
전북중재부	50		50	33	66.0
경남중재부	20		20	19	95.0
제주중재부	11		11	4	36.4
계	1,087	35	1,052	637	60.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피해구제율 추이

구 분 중재부	2004			2005			2006		
	조 정 건 수	피해구제 건 수	구제율 (%)	조 정 건 수	피해구제 건 수	구제율 (%)	조 정 건 수	피해구제 건 수	구제율 (%)
서울중재부	545	367	67.3	566	352	62.2	680	418	61.5
부산중재부	27	19	70.4	34	19	55.9	42	21	50.0
대구중재부	17	11	64.7	14	8	57.1	31	14	45.2
광주중재부	32	22	68.8	44	24	54.5	54	16	29.6
대전중재부	15	10	66.7	18	12	66.7	29	25	86.2
경기중재부	41	32	78.0	86	44	51.1	110	67	60.9
강원중재부	13	4	30.8	15	14	93.3	12	10	83.3
충북중재부	4	2	50.0	10	7	70.0	13	10	76.9
전북중재부	27	18	66.7	29	19	65.5	50	33	66.0
경남중재부	20	7	35.0	21	20	95.2	20	19	95.0
제주중재부	5	3	60.0	12	11	91.7	11	4	36.4
계	746	495	66.4	849	530	62.4	1,052	637	60.6

Ⅵ. 손해배상청구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 처리결과

※ ()안은 %

청구명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 권 조정결정	조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병 합 청 구	정정 손배	정 정 손 배	199	82	8	52	6	1	50
			199	18	7	51	6	1	116
	소 계		398	100(25.1)	15(3.8)	103(25.9)	12(3.0)	2(0.5)	166(41.7)
	반론 손배	반 론 손 배	16	3	1	4			8
			16			5			11
	소 계		32	3(9.4)	1(3.1)	9(28.1)			19(59.4)
	추후 손배	추 후 손 배	10	7		1			2
			10			1			9
	소 계		20	7(35.0)		2(10.0)			11(55.0)
	정정 반론 손배	정 정	19	6		6			7
		반 론	19	10	1	5			3
		손 배	19	1		6			12
	소 계		57	17(29.8)	1(1.8)	17(29.8)			22(38.6)
	정정 추후 손배	정 정	1	1					
		추 후	1						1
		손 배	1						1
	소 계		3	1(33.3)					2(66.7)
손배 단독청구			73	30(41.7)	13(18.0)	17(23.3)			13(18.0)
계			583	158(27.1)	30(5.1)	148(25.4)	12(2.1)	2(0.3)	233(40.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 ()안은 %

유 형		구 분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개 인		210	41(19.6)	18(8.6)	45(21.4)	5(2.4)	1(0.4)	100(47.6)
국가기관		0						
지방자치단		4	1(25.0)	1(25.0)	2(50.0)			
공공단체		4						4(100.0)
일반단체		45	1(2.2)	1(2.2)	12(26.7)	1(2.2)		30(66.7)
종교단체		3			3(100.0)			
기업체		41	5(10.6)		14(38.3)			22(51.1)
언론사		6			4(66.7)			2(33.3)
교육기관		5	1(20.0)					4(80.0)
계		318	49(15.4)	20(6.2)	80(25.2)	6(1.9)	1(0.3)	162(51.0)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 ()안은 %

침해유형	구 분 건 수	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명예훼손	260	21(8.1)	9(3.5)	73(28.1)	6(2.3)	1(0.4)	150(57.6)
신용훼손	3		1(33.3)				2(66.7)
초상권	42	23(54.8)	9(21.4)	4(9.5)			6(14.3)
음성권	7	4(57.1)	1(14.3)				2(28.6)
성명권	1			1(100.0)			
프라이버시	4	1(25.0)		1(25.0)			2(50.0)
기타	1			1(100.0)			
계	318	49(15.4)	20(6.2)	80(25.2)	6(1.9)	1(0.3)	162(51.0)

Ⅷ. 자동 소 제기 현황

연도별 자동 소 제기 현황

연도	구분 건수	청 구 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 손배	정정 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2005	9	2	4	1	2		2	7	2	3	1	3
2006	24	6	6	8	2	2	4	20	1	3	1	19
계	33	8	10	9	4	2	6	27	3	6	2	22

매체별 자동소제기 현황

매체	구분 건수	청 구 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 손배	정정 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국민일보	1			1				1	1			
동아일보	5	3	2					5		1		4
조선일보	1	1						1			1	
한겨레	1		1					1		1		
전북일보	1		1					1				1
시사저널	1				1			1				1
일요신문	1			1				1				1
프런티어타임스	1			1				1				1
교통환경신문	1				1		1					1
재외동포신문	1	1						1				1
전북대중일보	1	1						1				1
KBS-1TV	2		1			1	1	1		1		1
KBS-2TV	1			1				1				1
MBC-TV	3		1	1		1	2	1				3
Q채널	1			1				1				1
여성중앙	1			1				1				1
노컷뉴스	1			1				1				1
계	24	6	6	8	2	2	4	20	1	3	1	19

Ⅷ. 중재신청현황

※ ()안은 %

침해유형	구 분 건 수	청 구 명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명예훼손	2	1	1	
신용훼손				
초상권	2			2
음성권	1			1
성명권				
프라이버시	2			2
계	7	1	1	5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

상담신청유형

※ ()안은 %

연 도	상담건수	전 화	방 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상 담	기 타
2004 (4.1.~12.31.)	1,816	1,346	176	177	77	15	25
2005	2,353	1,815	267	147	94	16	14
2006	2,304	1,836	178	132	140	7	11
계	6,473	4,997 (77.2)	621 (9.6)	456 (7.0)	311 (4.8)	38 (0.6)	50 (0.8)

상담처리결과

※ ()안은 %

구 분 연 도 건 수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 체 종 결	기 타	총 계	*조정신청 접수
2004 (4.1.~12.31.)	1,816	1,151	533	91	183	103	11	2,072	318
2005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446
2006	2,304	1,719	286	59	297	36	145	2,542	555
계	6,473	4,533 (62.6)	1,373 (19.0)	213 (2.9)	726 (10.0)	181 (2.5)	220 (3.0)	7,246 (100.0)	1,319 (29.1)

* 상담처리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 결과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조정신청 접수율은 조정절차 안내 건수 대비 조정신청사건 접수비율을 의미.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피해유형

※ ()안은 %

구 분 연 도 건 수		피 해 유 형					
		명 예 훼손	신 해 훼손	초상권·성명권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 해	기 타	총 계
2004 (4.1.~12.31.)	1,816	1,034	153	137	15	527	1,866
2005	2,353	1,710	51	172	42	435	2,410
2006	2,304	1,384	118	224	65	594	2,385
계	6,473	4,128 (62.0)	322 (4.8)	533 (8.0)	122 (1.8)	1,556 (23.4)	6,661 (100.0)

*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총계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매체유형

※ ()안은 %

연 도	구 분 건 수	피 해 유 형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 송	월간지	통 신	인터넷	기 타	불 명	총 계
2004 (4.1.~12.31.)	1,816	641	201	565	35	33	103	13	333	1,924
2005	2,353	780	234	595	57	76	215	10	561	2,528
2006	2,304	750	247	575	58	64	282	15	408	2,399
계	6,473	2,171 (31.7)	682 (10.0)	1,735 (25.3)	150 (2.2)	173 (2.5)	600 (8.7)	38 (0.6)	1,302 (19.0)	6,851 (100.0)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신청인유형

※ ()안은 %

연 도	상담건수	개 인	일 반 단 체	회 사	교 육 기 관	종 교 단 체	공 공 단체 등	기 타	불 명
2004 (4.1.~12.31.)	1,816	829	141	229	28	7	47		535
2005	2,353	1,241	120	228	19	8	39	2	696
2006	2,304	1,084	135	267	25	9	48		736
계	6,473	3,154 (48.7)	396 (6.1)	724 (11.2)	72 (1.1)	24 (0.4)	134 (2.1)	2 (0.1)	1,967 (30.3)

월별 상담신청유형

※ ()안은 %

월	상담건수	전 화	방 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상담	기 타
1월	192	150	24	5	13		
2월	182	141	13	18	9		1
3월	205	160	22	6	14	3	
4월	236	195	11	19	8	2	1
5월	208	171	13	12	10		2
6월	206	160	11	20	13		2
7월	149	124	10	6	8		1
8월	183	147	11	8	17		
9월	207	165	19	12	9		2
10월	186	142	22	6	14		2
11월	184	143	15	12	13	1	
12월	166	138	7	8	12	1	
계	2,304 (100.0)	1,836 (79.7)	178 (7.7)	132 (5.7)	140 (6.1)	7 (0.3)	11 (0.5)

◇ 연도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1.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

연도별 조정처리결과

(1981. 3. 31.~2006. 12. 31.)

연 도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5)	1	2	20(2)
1982	50	19			19(5)		2	10(4)
1983	71	21			22(7)	1	1	26(8)
1984	54	12			29(8)	3		10(5)
1985	59	12			28(5)	4		15(7)
1986	49	14			10(2)	1		24(11)
1987	47	10			9(4)	1		27(2)
1988	55	16			12(5)		1	26(13)
1989	121	29			35(10)		6	51(21)
1990	159	42			43(10)	1	2	71(40)
1991	220	52			48(9)	3	1	116(43)
1992	381	81			79(12)	19		202(107)
1993	423	132			96(16)	8	2	185(84)
1994	541	162			127(10)	7		245(128)
1995	528	111			150(25)	26	3	238(124)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137)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108)
1998	602	226	14	10(2)	97(8)	5		250(106)
1999	641	244	11	18(2)	102(17)	24	5	237(92)
2000	607	198	10	15(2)	66(10)	14	2	302(156)
2001	659	229	6	23(3)	132(27)	18	2	249(133)
2002	511	182	18	17(3)	62(9)	8	1	223(101)
2003	724	287	15	15(1)	101(11)	27	3	276(158)
2004	759	283	46	22(6)	140(12)	13		255(148)
2005	883	334	31	20(4)	181(1)	19	15	283(160)
2006	1,087	356	29	28	226(2)	22	13	413(250)
계	10,321	3,351	192	180(25)	2,074(264)	242	66	4,216(2,148)
%	100.0	32.5	1.9	1.7	20.1	2.3	0.6	40.9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 임.

증재처리 결과

※ ()안은 %

구 분 연 도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증재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06	7		7			

연도별 피해구제율

구 분 연 도	처리건수 A	계속 · 기각 각하 · 계류 B	조정건수 (A-B)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취 하	소 계	
					동 의	이 의				
1981	44	3	41	9			12 (5)	20 (2)	41 (16)	39.0
1982	50	2	48	19			19 (5)	10 (4)	48 (28)	58.3
1983	71	2	69	21			22 (7)	26 (8)	69 (36)	52.2
1984	54	3	51	12			29 (8)	10 (5)	51 (25)	49.0
1985	59	4	55	12			28 (5)	15 (7)	55 (24)	43.6
1986	49	1	48	14			10 (2)	24 (11)	48 (27)	56.3
1987	47	1	46	10			9 (4)	27 (2)	46 (16)	34.8
1988	55	1	54	16			12 (5)	26 (13)	54 (34)	63.0
1989	121	6	115	29			35 (10)	51 (21)	115(60)	52.2
1990	159	3	156	42			43 (10)	71 (40)	156(92)	59.0
1991	220	4	216	52			48 (9)	116 (43)	216(104)	48.1
1992	381	19	362	81			79 (12)	202(107)	362(200)	55.2
1993	423	10	413	132			96 (16)	185 (84)	413(232)	56.2
1994	541	7	534	162			127 (10)	245(128)	534(300)	56.2
1995	528	29	499	111			150 (25)	238(124)	499(260)	52.1
1996	556	10	546	129	2	7 (1)	169 (21)	239(137)	546(290)	53.1
1997	490	12	478	161	10	5 (1)	79 (13)	223(108)	478(293)	61.3
1998	602	5	597	226	14	10 (2)	97 (8)	250(106)	597(356)	59.6
1999	641	29	612	244	11	18 (2)	102 (17)	237 (92)	612(366)	59.8
2000	607	16	591	198	10	15 (2)	66 (10)	302(156)	591(376)	63.6
2001	659	20	639	229	6	23 (3)	132 (27)	249(133)	639(398)	62.3
2002	511	9	502	182	18	17 (3)	62 (9)	223(101)	502(313)	62.4
2003	724	30	694	287	15	15 (1)	101 (11)	276(158)	694(472)	68.0
2004	759	13	746	283	46	22 (6)	140 (12)	255(148)	746(495)	66.4
2005	883	34	849	334	31	20 (4)	181 (1)	283(160)	849(530)	62.4
2006	1,087	35	1,052	356	29	28	226 (2)	413(250)	1,052(637)	60.6
계	10,321	308	10,013	3,351	192	180 (25)	2,074(264)	4,216(2,148)	10,013(5,980)	59.7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 임.

*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합의+조정결정 중 동의+조정결정중 이의·조정불성립결정·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게재된 건수)/조정건수

중재부별 조정신청건수

■ 조 정

구분 연도	청구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981	44	37	5	1					1			
1982	50	44	3		1		1	1				
1983	71	61	8		1		1					
1984	54	46	3		1	2	1	1				
1985	59	48	3	2		1	1	1	1		2	
1986	49	38	3				1	3	2		2	
1987	47	42	1	1	1		1		1			
1988	55	41	2	1	3	1		2	3	1	1	
1989	121	78	14	2	8	1	6		3	2	4	3
1990	159	110	12	3	7	3	10	1	5	2	4	2
1991	220	137	20	7	9	5	10	3	3	10	12	4
1992	381	233	21	7	15	11	41	6	12	14	19	2
1993	423	236	32	25	23	15	37	9	9	16	19	2
1994	541	348	21	19	23	21	46	5	16	17	19	6
1995	528	323	27	9	15	23	55	14	16	25	13	8
1996	556	328	27	13	35	23	66	8	17	18	18	3
1997	490	283	29	24	23	15	46	14	22	11	20	3
1998	602	335	24	22	61	18	62	14	23	19	18	6
1999	641	402	27	18	43	13	62	10	16	28	16	6
2000	607	378	23	29	28	27	52	14	21	18	15	2
2001	659	428	21	18	32	19	62	9	16	36	17	1
2002	511	307	15	14	39	16	45	7	16	25	20	7
2003	724	496	18	20	40	20	64	10	6	25	16	9
2004	759	558	27	17	32	15	41	13	4	27	20	5
2005	883	592	35	14	44	19	87	15	10	29	25	13
2006	1,087	709	42	31	55	29	113	14	13	50	20	11
계	10,321	6,638	463	297	539	297	911	174	236	373	300	93
%	100.0	64.3	4.5	2.9	5.2	2.9	8.8	1.7	2.3	3.6	2.9	0.9

■ 중 재

연 도	청구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006	7	7										

II.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2006. 12. 31.

연 도	구 분 시정 권고 건수	침 해 유 형									종 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 간 신 문	주 간 신 문	월 간 지	뉴 스 통 신	인 터 넷 신 문	방 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 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계 %	4,986 100.0	712 14.3	131 2.6	1,698 34.1	1,004 20.1	245 4.9	947 19.0	184 3.7	65 1.3		4,685 94.0	67 1.3	14 0.3	200 4.0	19 0.4	1 0.0

2006년도 시정권고 의결현황

1. 자체심의의결현황

구 분 간 별 계			개인적 범익침해					사회적 범익 침해			국가적 범익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적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음량, 음법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 타	
일간	중 앙	7				2		1	4		
신문	지 방	143	4	2	57	17	2	6	52	3	
뉴스통신		14			7				7		
주간	종합	3							2	1	
신문	지역	5			1	2			2		
인터넷신문		16			4	1		3	6	2	
계		188	4	2	69	22	2	10	73	6	
%		100.0	2.1	1.1	36.7	11.7	1.1	5.35	38.8	3.2	

2. 신청심의의결현황

구 분 간 별 계		신 청 유 형				처 리 결 과				
		개인적 범 익 침 해	사회적 범 익 침 해	국가적 범 익 침 해	기 타	시정권고	기 각	각 하	취 하	기 타
일간신문	16	12	3		1		6		10	
뉴스통신	3	1	2			1			2	
주간신문	3	3				1			2	
시사주간지	1	1							1	
방 송	6	4	2				1		5	
인터넷신문	12	8	4				4	1	7	
기 타	9	4	5						9	
계	50	33	16		1	2	11	1	36	
%	100.0	66.0	32.0		2.0	4.0	22.0	2.0	72.0	

언론조정신청사례

언론조정신청사례

지면 관계상 신청사례 원문의 일부가 수정 또는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신청인이 사기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T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TBC-TV : 「T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2005년 7월 26일 20:25)
내 용 :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발행부수가 거의 없는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사기 피의자에게 담당 판사와 잘 안다며 접근해 형량을 낮춰 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61살 전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모 주간신문 발행인인 전씨는 2002년 2월 사건으로 구속된 박모 씨의 사위에게 접근해 담당 판사가 고향 후배라며 형량을 낮춰 주겠다고 백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7차례에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이 지난 2005년 7월 26일 「TBC 프라임뉴스」에서 '신문사 발행인 사기구속'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주간신문 발행인인 전씨가 사기 피의자에게 담당판사와 잘 아는 사이라며 접근해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모 씨는 사건 피의자와 안면이 있는 친구가 470만 원을 주면서 부탁하여 담당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 피의자에게 접근하거나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 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사기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26일 의정신문 발행인 전모(61)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2002년 9월 이모 씨에게 접근, “담당 재판부에 말해 수감 중인 이씨의 장인 박모 씨의 형을 낮춰 주겠다”며 2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보도내용

매일신문 : 『“형 낮춰주겠다” 돈 받은 의정신문 발행인 구속』 (2005년 7월 26일자)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대구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처리결과 : 각 하

를 관련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4, 5명의 민원인에게서 사건 해결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 원씩 모두 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 혐의다.

검찰은 조씨가 금품을 받은 뒤 검찰청이나 변호사 사무실 앞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동아일보 : 『시민단체 간부가 사건해결 명목 금품챙겨』 제하의 기사 (2005년 1월 10일자 A12면)

내 용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법률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법개혁 관련 시민단체 간부 조모 씨(51·여)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5년 1월 10일자 A12면 『시민단체 간부가 사건해결 명목 금품챙겨』 제하의 기사에서 법률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법개혁 관련 시민단체 간부 조모 씨가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챘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이 변호사법위반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었던 것이며, 원심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장의 직권판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

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이 사건 신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기한은 같은 법 제 16조 제3항,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2005.7.10.이나 이 사건 신청은 2006. 1. 2.에 접수되어 그 신청기간을 초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6.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처리결과 : 각 하

하의 기사 (2005년 1월 10일자 A14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조선일보 : 『법조브로커 노릇 시민단체 간부 구속』 제

결 정 문

〈2006서울조정1의 결정문 참조〉

□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처리결과 : 각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2006서울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앙일보 : 『‘억울한 서민’ 울린 시민단체 간부 구속』
제하의 기사 (2005년 1월 10일자 10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결 정 문

〈2006서울조정1의 결정문 참조〉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처리결과 : 각 하

(2005년 1월 10일자 6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결 정 문

한겨레 : 『돈 뜯은 시민단체 간부』 제하의 기사

〈2006서울조정1의 결정문 참조〉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처리결과 : 각 하

자 A10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결 정 문

한국일보 : 『시민단체 간부가 “법률피해 해결” 금
품수수』 제하의 기사 (2005년 1월 10일

〈2006서울조정1의 결정문 참조〉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처리결과 : 각 하

제하의 기사 (2005년 1월 10일자 38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한국경제 : 『민원해결 빙자 수뢰 시민단체 간부 구속』

결 정 문

<2006서울조정1의 결정문 참조>

□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처리결과 : 각 하

월 10일 21:00)

내 용 : <2006서울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5년 1

결 정 문

<2006서울조정1의 결정문 참조>

□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처리결과 : 각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2006서울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5년 1월 9일
20:00)

결 정 문

내 용 : 〈2006서울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2006서울조정1의 결정문 참조〉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

구속』 제하의 기사 (2005년 1월 9일자)

청 구 명 : 정정청구

내 용 : 〈2006서울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2006서울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처리결과 : 각 하

보도내용

결 정 문

연합뉴스 : 『‘억울한 서민’ 울린 시민단체 간부

〈2006서울조정1의 결정문 참조〉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법률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

내 용 : 〈2006서울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피해구조연맹 (대표 조 ○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

〈2006서울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처리결과 : 각 하

보도내용

결 정 문

YTN : 「뉴스」 프로그램 (2005년 1월 10일)

〈2006서울조정1의 결정문 참조〉



안산시 공무원들이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공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안산시 (시장 송 진 섭)
피신청인 : 투데이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3.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투데이뉴스 : (1) 『안산시 공무원들 행정과실』 제하의 기사 (2005년 11월 22일자)

내 용 : 안산시 도시과 및 건축과 직원들이 고잔 신도시 〇〇〇〇타워, 상록구 〇〇 6차·7차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신청한 구비서류 등 뽕흙 처리 계획서를 검토할 당시 토양 검정과 뽕흙 처리 장소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실사치 않고 건축 허가를 내 주어 준공 검사의 문제점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중략)

특히,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주)〇〇주택 및 (주) 〇〇 종합건설이 건축 허가를 받아 지하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뽕흙을 불법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안산시가 건축 시설물에 따른 사용 승인 검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불법으로 반출된 흙을 원상 복구 시킨 후 준공 검사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략)

(2) 『안산시 특혜 행정, 감사원·사법기관 조사 불가피』 제하의 기사 (2005년 11월 23일자)

안산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의 편파 행정과 특정 업체인 (주)〇〇건설과 〇〇건설에게 특혜 행정을 하고 있어 감사원과 사법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후략)

(3) 『화성시 일대 오염 뽕흙 매립 원상복구 명령』 제하의 기사 (2005년 11월 24일자)

화성시는 오염된 뽕흙을 유출시켜 매송·비봉 일대의 매립 농경지를 오염시킨 고잔 신도시 〇〇〇〇타워, 상록구 〇〇 아파트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특히, 화성시는 이와 함께 23일 안산시에 건설사업 허가(사업 승인)시 사토처리 계획에 적합치 않을 시, 위법 시공된 사항을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중략)

23일 화성시는 또 다시 안산시에 대량의 토사반출 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우리 시와 유선 등으로 협의해 공사 시행상 시행착오 방지와 허가 내용을 위반한 불법매립 행위를 근절키 위해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오염된 뽕흙 문제가 화성시와 안산시 간의 환경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4) 『안산시, 〇〇건설 〇〇〇〇타워 특혜주기 위해 화성시 농민들과 공무원들 기만하고 죽여서야』 제하의 기사 (2005년 11월 28일자)

안산시 상록구 〇〇 아파트 주체인 〇〇주택과 고잔동 〇〇〇〇 타워 시공업체인 C건설 등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화성시 매송·비봉 일대 수만여 평에 수 년에 걸쳐 수백만t으로 추정되는 오염된 뽕흙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관청인 안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공사업체 비호에만 급급하고,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채질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일대는 경지 정리된 농업지역으로 보존이 절실한 상태지만 무분별한 성토 작업으로 인해 절대농지가 오염,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의 직무 유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관계 당국인 안산시가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단속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 같

은 불법 행위가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27일 본사 기동취재반이 지역농민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지에는 수년 동안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염도 등이 높은 빨흙 등 유독성 폐기물이 다량 발굴됐다. 이들 빨흙 폐기물은 주변 농지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 오염된 빨흙은 폐기물처리법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불법 매립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중략)

이처럼 화성 인근 농지에 각종 오염된 빨흙 등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의 온상이 된 것은 비용 절감을 노린 업체들의 도덕 불감증과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간의 결탁에 따른 ‘바주기식’ 행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이 염분이 섞인 빨흙을 매립하는 바람에 인근 농지가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담당자는 “빨흙 오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외면하고, “빨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략)

(5) 『아파트 분양 및 시공업체에게 덜미 잡힌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들』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5일자)

(전략) ‘오염 빨흙’을 ‘양질토’로 둔갑시킨 안산시 공무원.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들은 ○○건설과 ○○○○ 현장에서 갯벌 흙에 대한 토양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채 갯벌 흙이 발농사나 논농사 경작에 이상이 없다는 감언이설로 안산 시민과 국민들을 회롱하고, 환경전문가를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자리의 지하 터파기 갯벌 흙이다. 갯벌 흙 처리계획서 등 건축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업 시행자인 건설사측에게 농지에 반입이 돼도 농작물 생육과 성장 그리고 재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 보완 또는 반려해야 했었다. 그런데 안산시 공무원들은 ○○건설과 ○○종합건설에게 건축 허가를 해 주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농지에 반입해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바다(염전)에 버리거나, 폐기물 처리 매립지에 갯벌 흙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왜 상식선에서 해결할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건설과 ○○건설을 보호하기 위한 즉답만 하는지 알 수 없다. 안산시 공무원은 고잔지구가 바다를 매립해 택지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행정청이 행정 행위를 하면서 행정 행위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이 입증돼야 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정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들은 갯벌 흙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사도 아니한 채 ‘이상이 없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논농사를 짓는 갯벌 흙 일부만 염기가 소량이지, 1m이상 굴토하면 바다에 있던 염분이 남아 있어 경작 토양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고잔지구 아파트나 상가 지하 터파기는 최고 23m까지 굴착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지하실을 깊이 파면 지금도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다. (후략)

(6) 『○○에 덜미 잡힌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 불법적인 아파트 준공 허가』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8일자)

안산시가 ○○아파트와 관련, 불법 준공 허가를 강행하려 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불법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수 백억의 특혜를 준데 이어 민원 등을 무시한 채 사용 승인도 강행할 방침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 김○○ 도시과 공무원들은 지역 언론에서 불법 사항을 연일 집중 보도하고, ○○ 불법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여론을 무시한 채 업체 하수인 역할에 급급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전화하면 이들 공무원들은 신문에 불법이 보도된 것도 없고, 진정이나 민원, 불법 사항 등이 없다는 거짓말로 입주자들을 속이고 업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 신○○, 김○○는 행자부 감사 진행을 무시하고 날치기 준공 처리키로 하고, ○○의 요구대로 오늘(8일) 아파트 사용 승인과 함께 불법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 동안 안산시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상가를 허가해 주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으

면서도 ○○○○ 현장, ○○건설 아파트 등 공사업체와 유착해 행정청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특히, 업체 봐주기식 건축허가라는 문제점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후략)

(7) 『송시장도 ○○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2일자)

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은 준공 허가에 문제점 있다고 판단 반대 의사 표시

송진섭 안산시장이 탈법·불법 ○○아파트와 관련해 불법 준공 허가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안산시 건축과는 ○○의 요구대로 오늘(12일) 불법적인 아파트 사용 승인을 해 줄 예정이다.

송시장은 불법적인 아파트 준공 허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여론을 무시한 채 업체 하수인 역할에 앞장 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일고 있다.

안산시 건축과는 건축업자 우선주의 논리에 따라 지역의 환경 오염이나 주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인허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신○○, 김○○ 건축과 공무원들은 지역 언론에서 불법 사항을 연일 집중 보도하고, ○○ 불법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데도 여론을 무시한 채 업체 하수인 역할에 급급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안산시청 공무원이 아니라 ○○건설 직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행정 전문가와 시민 단체들은 신○○·김○○ 건축과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시장과 인사위원회는 즉시 (주)○○주택과 ○○건설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 공무원을 건축과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후략)

(8) 『경찰, 검찰은 안산시 건축과 직원 비리 조사해야』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9일자)

안산시 고잔지구 ○○○○ 타워 대규모 현장에서 오염된 갯벌 흙이 화성시 농지에 반출됐는데도 안산시 건축과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연대와 행정학 학자는 건축과 직원이 공무원으로서 자질도 없고, 업체와 공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부에서 직무 유기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시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부패된 건축직 공무원이 불법으로 반출된 갯벌 흙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 한 ○○○○ 현장에 대한 준공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후략)

(9) 『안산시 건축과 직원 ○○와 결탁 의혹 수사해야』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3일자)

안산시가 불법적인 ○○ 아파트 7차 준공 허가를 해 줄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여론을 무시한 채 준공 허가를 내줘 ○○ 하수인 역할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신○○·김○○ 건축과 공무원들은 지난 12월 9일 지역 언론에서 불법 사항을 연일 집중 보도하고, ○○ 불법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여론을 무시한 채 준공 허가를 내줘 이들 공무원들은 안산시 공무원이 아니라 ‘○○건설 직원’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부시장, 행정지원 국장 등이 불법 예치금을 거는 조건부로 준공 허가를 명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이들 건축과 직원들이 준공검사를 강행해 ○○주택 회장과 ○○ 측과의 결탁 의혹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후략)

(10) 『“안산시와 (주)○○주택 결탁 비리 밝혀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7일자)

감사원·검찰·의회·시민 등 나서 관련자 “일벌백계” 처벌 여론 비등

(전략) 인허가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뒷거래

안산시는 부정 부패의 행정청으로 꼴지를 달리고 있다. 불가 며칠전의 일이지만 안산시 하수과 7급이 역대 공사에서 공사편의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해 안산지청에 구속되는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안산시 건축과 등 공무원들은 (주)○○주택 및 ○○건설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품을 공여, 수수했을 것이라는 것이 행정 전문가와 시민 단체의 주장이다.

상사명령 어기고 ○○7차 아파트 준공 허가

하극상 쿠데타 징계할 수 없는 안산시

뇌물 공여와 수수가 없었다면 (주)○○주택 K회장에게 용적을 상향 조정에 대한 반출된 갯벌 흙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7차 사용 승

인 검사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설령 사용 승인 검사가 건축법만 준용이 된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산시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분명 부시장, 행정지원 국장, 도시건설계획 국장 등도 사용승인 검사를 할 때는 불법으로 반출된 갯벌 흙을 원상 복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시했지만 안산시 건축과 신○○, 김○○은 이를 무시하고 준공 검사를 해 주어 ○○주택과 ○○건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건축과 직원인 신○○, 김○○가 상사 명령을 어긴 채 하극상 쿠데타까지 일으키면서 (주)○○주택, (주)○○건설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있는가.

안산시 조직에 문제점과 아울러 뇌물 공여 및 수수의혹이 더 해가는 대목일 것이다.

공무원들의 위계 질서상 상명 하복은 목숨과 같은 것인데 왜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준공검사를 해주었는지 부시장, 국장 등을 얼마나 안산시 하부조직이 썩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명백한 하극상이며, 쿠데타를 일으킨 신○○, 김○○은 엄청난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부 조직의 쿠데타를 막기 위해 사용승인 검사를 행정시장인 부시장에 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의 입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11월 22일자 『안산시 공무원들 행정과실』 제하의 기사에서 안산시 공무원들이 뽕흙 처리 장소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실사하지 않고 아파트 허가를 내주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뽕흙 처리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사실은 적법한 행정절차임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11월 23일자 『안산시 특혜 행정, 감사원·사법기관 조사 불가피』 제하의 기사에서 안산시가 시공업체에게 특혜를 주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것처럼 기사화 하였으나, 확인 결과 안산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11월 24일자와 28일자에 『화성시 일대 오염 뽕흙 매립 원상복구 명령』, 『안산시, ○○건설 ○○○○타워 특혜주기 위해 화성시 농민들과 공무원들 기만하고 죽여서야』 제하의 기사에서 화성시가 안산시에 긴급 협조 공문을 보내고 원상복구 때까지 관련 건물 준공 허가를 불허키로 했으며, 뽕흙 처리를 놓고 지자체간 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화성시에도 일관적인 뽕에 대하여는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행정조치할 수 없고, 지자체간 분쟁 양상 조짐이나 관련 건축물 준공허가를 불허키로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뽕흙은 관련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반입지에서 성토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므로 안산시의 특혜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12월 5일자 『아파트 분양 및 시공업체에게 덜미 잡힌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들』 제하의 기사에서 안산시 공무원이 오염 뽕흙을 양질토로 둔갑시켜 업체에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주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토처리사항은 사업주체와 성토 토지주 사이의 계약이며, 반입지 행정기관의 개발행위허가에 의거 성토 및 부토 처리되는 사항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본보 12월 8일자 『○○에 덜미 잡힌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 불법적인 아파트 준공허가』 제하의 기사에서 안산시 도시과 공무원들이 행자부 감사 진행을 무시하고 ○○와 공모 날치기 준공 검사를 강행해 말썽이 일고 있으며, 오염뽕흙을 양질토로 둔갑시켜 업체에 부당이득을 주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아파트 사용승인은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뽕흙 문제는 건물 준공과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행자부의 감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12월 12일자 『송시장도 ○○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준공허가를 내줄 시 정치적인 명목이 우려되며, 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은 준공허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여론을 표실했고, 지역 언론에서 불법 사항을 연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여론을 무시한 채 하수인 역할에만 급급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최근 1개월간 이 문제를 다룬 매체는 본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은 준공 허가에 반대의사 표시를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12월 19일자 및 23일자 『경찰, 검찰은 안산시 건축과 직원 비리 조사해야』, 『안산시 건축과 직원 ○○와 결탁의혹 수사해야』 제하의 기사로 안산시 건축과 직원들이 상사 명령을 어기고 준공허가를 강행해 천문학적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등이 조건부로 준공처리토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어겼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아파트 준공은 책임 감리자와 각실과 협의에 의거 처리되는 법적 절차 사항으로 상사의 명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며, 또한 시공업체인 ○○건설과 결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12월 27일자 『“안산시와 (주)○○주택 결탁 비리 밝혀야 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업체에 수백억 특혜를 준 건축과 직원을 징계 못하는 것은 업체와 송 시장의 비호때문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특정 공무원 징계를 여론화시켜, 안산시와 공무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사과드립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안산시 시장 송 진 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번지

조정대리인 김 ○ ○, 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투데이뉴스신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90번지

대운빌딩 3층

대표이사 추 교 진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투데이뉴스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투데이뉴스 11월 22일자 [현장고발] - 벌휴, 토양 검정·처리장소 적법성 여부 실사 없이 건축 허가)과 같게하고,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19.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5. 12. 8.자 『○○에 덜미 잡힌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 불법적인 아파트 준공 허가, 행자부 감사 진행 무시하고 ○○와 공모 날치기 준공검사 강행 말썽』 제하의 기사와 2005. 11. 22., 23., 24., 28., 12월 7., 8., 19., 26., 27.자 등의 기사에서 안산 고잔 신도시 ○○○○, ○○ 6·7·9차 아파트 건축인허가 및 준공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위 기사에서 본지는 안산시와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들이 위 아파트 건축을 인허가 하면서 터파기 공사에서 나오는 오염된 뽕흙의 처리 장소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염된 뽕흙의 농지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없이 준공허가를 강행하려 해 말썽을 빚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특정 업체는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건축 허가시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뽕흙등에 대한 사토 처리 계획서는 건축허가 신청 구비서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오염된 뽕흙의 농지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여부는 준공허가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 안산시와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들은 고잔 신도시지역 아파트 인허가 및 준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 결탁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이와 관련 수사 당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신청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윤모 씨와 최근까지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해 찬
피신청인 : 일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일요신문 : 『“구속 직전까지 함께 라운딩했다”』 제
하의 기사 (2006년 1월 4일자 1~3면)

내 용 :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물 브로커’
윤○○씨가 최근까지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골프
를 친 것으로 밝혀져 윤씨와 이 총리의 관계에 의
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요신문〉은 이 총리가 최근까지 윤씨와 골프
를 쳤다는 제보를 입수. 윤씨와 친분이 있는 복수
의 인사들과 골프장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이를
단독 확인했다. 〈일요신문〉은 윤씨와 가까운 사이
로 알려진 6명의 측근 및 지연을 만났고 이에 대
한 주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증언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윤씨가 지난 11월
21일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함께 골프장에 드나
들었다. 이는 지난 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윤씨의 로비 행각에 대한 관련 첩보가 사
정기관에 보고된 이후에도 함께 골프를 쳤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윤씨와 가까운 한 인사는 “세
상이 다 아는 일이고 새로운 일도 아니다 이 총
리와 윤씨가 골프장을 자주 같이 다녔다는 것은
윤씨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고 단언
했다.

일각에서는 “위낙 발이 넓기로 유명한 윤씨의
행각에 비춰볼 때 현직 총리라고는 하지만 골프를
함께 쳤다는 것만으로 윤씨의 광범위한 로비 행각

에 연루된 것처럼 색안경을 쓰고 볼 수는 없지 않
겠느냐”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요신문〉은 윤씨와 이 총리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추적했다. (중략)

윤씨가 언제부터 이 총리와 관계를 가져왔는지
는 관련자들마다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 한 인사
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까워진 걸로 알
고 있다.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지만 아
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는 “윤씨로부터 지난 90년대 중반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가
깝게 지내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그 말
을 듣고 내가 ‘부럽다 가까운 사람이 총리가 됐
으니 든든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
도 했다.

“이 총리가 취임한 이후 (윤씨가) 총리공관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증언도 있다. 한 인사는
“(윤○○이) 총리공관을 자기 집처럼 드나든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4일자 1면~3면에
『“구속 직전까지 함께 라운딩했다”』라는 제목으로
이해찬 국무총리와 구속된 브로커 윤○○이 구속직
전까지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최근까지 윤○○과 골프회동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에
는 만난 일도 없고 골프를 치거나 하는 사적인 만
남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총리가 취임한 이후 (윤씨가) 총리공
관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증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다수의 증언을 토대로 취제한 사실 보도이므로 정
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해 시찰은 하지 않고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해 찬

피신청인 : 프런티어타임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4.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프런티어타임스 : 『이 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7일자)

내 용 :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 시찰은 하지 않은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 총리는 이날 폭설피해현장 확인차 전라북도 정읍을 방문 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내의 ㅈ식당에서 시장, 건설국장 등 시 관계자들의 브리핑만을 받은 뒤 ‘양주파티’를 가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7시경 정읍에 도착했지만 폭설피해현장 방문과 당초 예정돼 있던 정읍시청에서의 피해상황보고를 생략한 채, 정읍시 수성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한 식당에서 시.군.경 관계자들과 ‘양주파티’를 벌인 것.

이와 관련,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 식사에 반주 한 두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며 “‘양주파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이총리의 피해지역 방문을 학수 고대하던

한 시민은 “눈이 산처럼 쌓여 무너진 집과 축사들을 총리가 돌아보게 되면 제대로 보상을 해달라고 간청 하려 했으나 식당에서 보고만 받고 돌아갔다”며 원망했다.

이날 이총리 일행을 마중하기 위해 길에서 2시간 넘게 추위에 떨던 정읍시청의 한 관계자는 “10분이면 다녀 올수 있는 거리인데 식당에서 보고 받고 식사만 한 채 돌아갔다”며 아쉬워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프런티어타임스는 2005년 12월 27일자 메인화면 『이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지난 해 말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시찰은 하지 않고, 시내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청인은 폭설피해 보고를 받고 저녁식사를 한 후 바로 귀경하였으며 양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위 보도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총리로서의 명예가 훼손되어 프런티어타임스에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 건 : 2006서울조정12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해 찬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조정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

산정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원 창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2006년 2월 10일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2006년 2월 11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12.

□

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해외에서 이동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시켜 밀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4.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대전일보 : (1) 『교장이 학생들 시켜 밀수』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1일자 6면)

내 용 : 파행운영을 겪고 있는 천안시 ○면의 대안학교인 ○○○고의 조모 교장이 학생들을 시켜 밀수를 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충남 천안의 ○○○고 조 모교장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57일간 중국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이동수업을 하면서 출입국을 하던 50여명 학생들에게 전자제품과 농산물 보따리를 하나씩 나눠주는 수법으로 밀수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의원실을 방문,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후략)

(2) 『대안학교가 밀수까지 가르치나』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2일자 23면)

〈보도내용 (1)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대전일보는 지난 12월 21일자 6면 『교장이 학생들 시켜 밀수』, 22일자 23면 『대안학교가 밀수까지 가르치나』 제하의 기사에서 천안의 ○○○고 조모 교장이 중국에서 이동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전자제품과 농산물 보따리 등을 나눠줘 수화물로 위장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를 시켰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국 이동수업의 인솔책임자는 교감선생님이었고, 조모 교장은 당시 학교 법인의 이사장으로 중국에 가지 않았으며 학생들을 시켜 밀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5년 12월 21일자 6면 『교장이 학생들 시켜 밀수』 제하의 기사와 12월 22일자 23면 『대안학교가 밀수까지 가르치나』 사설에서 당시 인솔 책임자는 조모 이사장으로 현재 교장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란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당시 인솔책임자는 교감선생님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 2006년 1월 18일 6면 우측상단에 상가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천안 ○○○고, ...)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대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8일자 6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신문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 ○ ○ 외 24인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인천일보는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 이사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신문의 정상적 발행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5년 12월 16일자 1면에 『바른언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제목으로 최근 인천일보 파행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회사 간부들과 일부 기자들의 무단 장기 결근 및 집단 사표 제출로 원활한 신문제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사규가 정한 연가 사용 후 개별적 의사에 따라 정당히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일부 기자들이 집단사표를 제출, 신문의 정상적 발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회사 안팎에서 온갖 헐방과 음해를 자행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임을 밝혀드립니다.

보도내용

인천일보 : 『바른언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6일자 1면)

내 용 : (전략) 그러나 인천일보는 최근 벌어진 회사 간부들과 일부 기자들의 무단 장기 결근 및 집단 사표 제출로 원활한 신문제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가 오늘날 겪고 있는 혹독한 진통은 이미 기자협회보와 미디어오늘, KBS '미디어포커스' 등 미디어전문 매체들에 의해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9월 말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단행된 인사에 대한 일부 간부와 일부 기자들의 집단 항명에서 비롯됐습니다.

인천일보 이사회는 전 부사장인 박세호 현 대표 이사권한대행 체제를 출범시켜 사태수습을 시도했으나, '비위대' 소속 기자와 간부들은 마침내 집단 사표를 넘으로써 신문의 정상적 발행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조정에 앞서 다른 매체를 통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있어 정정 뿐만 아니라 반론 또한 게재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작명하여 운영중인 레스토랑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작명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집 수 일 : 2006. 1.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 『“레스토랑 이름도 맛깔나야죠”』 제하의 기사 (2005년 10월 6일자 E4면)
내 용 : 두부 요리전문 ‘두부다’ 체인 ‘내 전처의 요리비법’ 짓기도
(전략) 유 이사의 작품으로 알려진 서울 광화문의 레스토랑 ‘My Ex-Wife’s Secret Recipe’(내 전처의 요리비법)은 사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작품이다. 지금은 다른 주인에게 매각된 이 식당은 독특한 레스토랑 이름 때문에 화제가 됐다. ‘전 부인의 요리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혼한 뒤에도 그 맛을 잊지 못할까’ 하는 연상작용을 일으켰다. 유 이사는 “레스토랑의 컨셉이 ‘유럽식 가정식 백반’이었기 때문에 맛의 향수를 자극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이를테면 ‘전라도 할머니 국밥집’ 처럼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 조합의 임원들이 폭설에도 불구하고 관광성 외유를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나주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 ○)
피신청인 : 나주투데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집 수 일 : 2006. 1.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나주투데이 : 『공관장·선과장 무너져도 일본 관광 떠난 조합장』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일자 3면)

본 신문은 지난 2005년 10월 6일자 경제면에 『“레스토랑 이름도 맛깔나야죠”』 제목으로 ‘My Ex-Wife’s Secret Recipe’의 작명가와 소유주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작명가는 유○○ 씨가 아닌 레스토랑의 현 소유자인 최○○ 씨로 밝혀졌으며, 소유권도 현재 최○○ 씨가 가지고 있으며 경영자가 바뀐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6일자에서 보도된 내 전처의 비밀요리법(My Ex-Wife’s Secret Recipe)의 작명이 유○○ 씨인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다른 주인에게 매각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My Ex-Wife’s Secret Recipe’라는 상호는 공동창업 멤버들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단독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내 용 : 기록적 폭설로 배 과수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나주배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등이 관광성 외유를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배 농협 공관장 일부와 부덕동 선과장 천장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외유를 떠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복구를 위해 군·관·민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배 농협 건물이 무너진 가운데 이 모조합장과 임원등이 3박 4일 일본을 다녀와 조합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달 19일 대의원 대회에서 부덕동 선과장이 내려앉은 위기 상황에서 조합장과 수출 배

를 내지 않는 이사 3명까지 이번 일본관광에 포함돼 홍 모 조합원이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 홍 모 조합원은 “유통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직원 1명을 포함해 수출배를 내는 조합원에 한해 일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했다”며 “그런데 수출배를 전혀 내지 않는 이사 3명과 조합장이 동행한 것은 내년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어 홍 씨는 “조합비를 가지고 임원 3명을 임의적으로 이 모 조합장이 데려간 것 자체가 인심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나주 배 농협이 모조합장의 사기업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나주배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모(66)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전원(8명)과 대의원(6명), 조합원(16명) 등 모두 32명이나 지난 2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외유에 나섰다.

이들이 외유에 나선 때는 나주지역이 사상 최대 폭설로 조합원 등을 비롯한 관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일본시장을 개척한다는 명분으로 외유에 나섰으나 정작 원예시험장 견학과 배봉지, 배 선과장 견학 등 관련 일정은 일부에 불과했다.

모래언덕 길이가 15km에 달하는 일본 돗토리현 사구관광을 비롯해 르네상스 양식 건물인 인풍각, 장난감 박물관(와베라관), 요나고 물새공원 관광, 온천 등 관광 일색이었다.

특히 이들이 외유길에 오른 시기에 배농협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과장을 비롯해 공판장 일부가 붕괴돼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나주배원에농협 일본농업연수, 보도내용과 달라

배 선진지 견학을 위한 우수선도농가의 순수 농업연수로 밝혀져

• 내 용 : 본지가 1월 2일자 3면에 『공판장·선과장 무너져도 일본 관광 떠난 조합장』이란 제목과 ‘나주배농협 이 조합장, 임원 3명 대상자 아닌데도 데려가’란 부제목으로 나주배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32명이 폭설피해 이후에 일본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연수단이 출

발한 것은 폭설이 내리기 전으로 폭설피해와는 무관한 시점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출배를 전혀 내지 않은 임원 3명이 대상자가 아님에도 조합장이 선거 목적으로 인심을 써서 임의적으로 데려갔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1명을 제외한 임원 전원이 수출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수가 온천등 관광 일색이었다고 보도했으나, 온천은 숙박지였으며 인풍각, 요나고물새관광도 연수일정에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코스에서 제외되었고 대부분의 현지일정은 파머스마켓, 원예시험장, 도토리대학 (다나베교수 강의), 배 기념관, 농협선과장 견학 등 일정의 대부분이 순수한 농업연수로 알려져 보도된 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일본농업연수의 최초 계획은 2005년 사업계획에 잡혀 있던 것으로 폭설피해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번 연수로 FTA 체결에 따른 산지 경쟁력강화를 위해 나주시에서 건설 중인 산지거점유통센터(APC)의 배 선과시스템 및 수출 판매시장 견학과 배 재배기술 습득으로 나주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나주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6일자 1면)

내 용 : ‘나주투데이’ 1월 2일자 3면에 게재된 『공판장·선과장 무너져도 일본 관광 떠난 조합장』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배 농협 공판장과 선과장이 무너진 가운데 연수단이 일본으로 3박 4일 일본 관광을 떠났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실제 확인 결과 배농협 연수단은 공판장과 선과장이 폭설로 무너지기 이틀 전인 20일 새벽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보’에서는 배 농협 연수단이 2005년 사업계획에 따라 일본 농업연수 중에 갑작스런 폭설로 공판장 일부와 선과장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로 인하여 배 농협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인풍각과 요나고 물새관광이 연수

일정에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관광과 관련된 일정이 코스에서 제외돼 대부분 파머스마켓과 원예시험장, 도토리대학(다나베교수 강의), 배 기념관, 농협 선과장 견학 등 순수한 농업연수로 향후 나주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번 연수대상자는 공판장출하, 수출, 신용, 농자재이용 실적 최우수조합원과 나주시에서 추진 중인 산지거점유통센터(APC)건립에 대비해 유통분과대의원 및 수출추진위원, 임원 전원이 자비 50%, 조합지원 50%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아파트상가변영회가 체납관리비 해소를 위해 애쓴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려 해서 관리사무소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주○○타운변영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0.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상가변영회측은 또한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리소장을 채권팀장에 임명, 체납액중 1억 3000만원을 징수하라는 내용통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이를 반송할 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보도내용

전북일보 : 『체납관리비 ‘해고 공방’』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9면)

내 용 : 전주시 ○○동 ○○아파트상가 변영회와 관리사무소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아파트 상가변영회는 최근 상가들의 관리비 징수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 그만둘 것을 종용한 반면 관리사무소측은 그동안 성실한 근무를 통해 관리비 체납해소에 전력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상가변영회가 지난달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해고한데 이어 Y모 관리사무소장에게 사표를 내라는 구두통지를 하면서 부터.

상가변영회측은 Y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체납액이 13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이에 대한 노력 대신 오히려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 어려운 상가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만큼 Y소장을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제 목 : ○○상가 보도 관련 변영회측 반론
• 본 문 : 본지는 1월 5일자 9면에 『체납관리비 ‘해고 공방’』 제하의 기사에서 ○○동 ○○아파트상가 변영회가 “직원 2명을 해고하고, 성실한 근무를 통해 관리비 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한 Y모 관리사무소장을 오히려 관리비 징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 사표를 내라고 통보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영회 측은 “지금 현재 ○○상가는 62점포가 공실로 되어 있고, Y모 관리소장이 5년간 재직하면서 체납관리비 징수를 소홀히 하여 체납된 관리비가 13억에 이르고, 전기로 납부에도 어려움이 있어 다른 계정 예산을 전용하는 등 상가가 존폐위기에 놓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영회는 Y모 소장의 과오를 불문에 붙이고 상가가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정으로 Y모 관리소장에게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Y모 소장은 이사회의 결정통지문을 계속 반송시키고 이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직원들을 선동하여 상가업무를 마비시키려는 행동

을 하여 변영희가 이사회를 열어 관리소장의 불성실한 업무태도와 해사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사표를 낼 것을 통보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변영희는 “성실한 근무를 통해 체납해소에 전력을 기울였다면 어떻게 13억의 관리비 체납이 있을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밝히면서 “관리소장의 개인적 불성실과 해사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관리사무소 직원 전체와 변영희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게 보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원 두명이 관리사무소를 퇴직한 것은 공무원시험준비를 위한 자진 퇴사와 수습기간중에 사표를 낸 것으로 변영희가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주〇〇타운변영희
회장 이 〇 〇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북일보 9면 우측상단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체납관리비 징수 ‘해고 공방’)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0.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1월 5일자 9면에 『체납관리비 ‘해고 공방’』 제하의 기사에서 진북동 우성아파트 상가변영희가 “직원 2명을 해고하고, Y모 관리사무소장을 관리비 징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여 관리사무소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영희측은 “직원 두 명이 퇴직한 것은 공무원시험준비를 위한 자진 퇴사와 수습기간중에 사표를 낸 것으로 변영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며, 수차례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변영희의 통보를 수취거절한 관리소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통보한 것이지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과 변영희간의 대립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Y모 소장에 체납해소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인의 주장일 뿐 대다수 입주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폐염수를 무단 방류해 인근 포구의 어패류가 집단 폐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〇〇레저산업 (대표이사 강 〇 〇)

피신청인 :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주KBS-1TV : 「TV 패트롤 무·허·가」 프로그램
(2005년 12월 25일 19:30)

내 용 : “현재 골프장이 건설된 곳은 어김없이 불거져 나오는 문제가 바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인데, 만경강 하류 폐염전 부지에 골프장 건설이 진

행 중인 ○○골프장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곳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군산 하제 마을에는 어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연일 높다.

이곳 어민들은 수십년 동안 바다를 지키며 새우와 생합 등 어패류를 채취해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지난 여름부터 갑작스런 어패류의 폐사가 시작됐고, 현재는 모든 조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어민들은 이 같은 어패류의 집단폐사 원인을 폐염전 부지를 골프장으로 건설하는 과정의 농약과 폐염수로 꼽고 있다.

예년 같았으면 매일 어민들로 북적였을 군산의 하제포구, 취재팀이 이곳을 찾았을 때는 60여 척의 선박이 모두 정박해 있고, 사람들의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 만경강을 건너 김제 심포항이 자리잡고 있는데, 심포항은 하제와 마찬가지로 싱싱한 생합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다. 하제포구와는 달리 심포항에는 지금도 싱싱한 생합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골프장 측에서 방류한 폐염수는 외국산 양간디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제초제 등의 농약성분도 어느 정도 섞여 있었을 텐데, 이러한 폐수의 방류시기는 지난 4월인 반면, 환경검사는 지난 10월 27일에 이루어졌다. 환경조사 결과에서는 폐사가 집중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과 한 해만의 제한된 조사라는 점에서 조사지역의 환경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적혀있다. 조사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폐염수를 방류했던 것이 지난 4월이고, 7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환경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당연하다.

계속되는 공사와 소음으로 이제 이곳은 철새들도 찾지 않는 땅이 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전주KBS-1TV는 2005년 11월 25일 「TV 패트룰 무·허·가」 프로그램에서 ○○골프장 측에서 2005. 4. 농약성분이 포함된 폐염수를 방류하였기 때문에 하제포구에서 생합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골프장은 한국잔디연구소에서 권장하고 있는 저독성 농약을 규격에 맞게 사용하고 있고, 다른 골프장 공사 현장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되는 규모의 저류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탉방지망을 설치하여, 농약 성분이 포함된 물이 그대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골프장과 하제 지역 어민들 대표들은, “갯벌연구센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사연구소 서부분소” 등 3개 공인기관에 ○○골프장의 방류로 인해 하제 앞바다의 생합 등 어패류가 폐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해 줄 것을 의뢰하여, ○○골프장 내 저류조 및 하제 앞바다 생합 폐사지역에서 수질, 퇴적물, 생합 등을 채취하여 오염도 여부를 검사하였는데, 검사 결과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이 방류한 물로 인하여 생합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였다는 위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현재 ○○골프장은 많은 수의 철새가 도래하고 있고, 저류조에 숭어 등 많은 어류가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생합 등 어패류의 집단 폐사는 하제 앞바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방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만경강 너머의 심포 앞바다에서도 진행되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KBS전주방송은 2005. 11. 25. 「TV패트룰 무·허·가」 프로그램에서, ○○골프장 측에서 2005. 4. 농약성분이 포함된 폐염수를 방류하였기 때문에 하제포구에서 생합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였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골프장은 “하제 지역 어민들 대표들과 갯벌연구센터 등 3개 공인기관에 ○○골프장의 방류로 인해 하제 앞바다의 생합 등 어패류가 폐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해 줄 것을 의뢰하여, 이들 기관이 군산 골프장 내 저류조 및 하제 앞바다 생합 폐사지역에서 수질, 퇴적물, 생합 등을 채취하여 오염도 여부를 검사한 결과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골프장이 방류한 물로 인하여 생합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였다는 주장

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장은 또 “한국잔디연구소에서 권장하고 있는 저독성 농약을 규격에 맞게 사용하고 있고, 오탉방지망을 설치하여 농약 성분이 포함된 물이 방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1월 20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 전주방송 「TV 패트롤 무·허·가」 프로그램의 말미에 화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기사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위 반

론보도문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기사 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 줄 간격, 글자 간격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KBS-1TV : 「TV 패트롤 무·허·가」 프로그램
(2006년 1월 20일 19: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미등기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강원조정1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국 ○ ○
피신청인 : 강원도민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1.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강원도민일보 : 『부동산투기 사범 184명 적발』 제하
의 기사 (2006년 1월 4일자 3면)

내 용 : 강원지방경찰청은 3일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결과 114건에 184명을 적발,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천군 간동면에 모 부동산업체를 차려 놓고 브로커를 고용, 13만평의 토지를 20여억원에 매입한 뒤 50여억원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까지 포탈한 국모(51) 씨가 구속되고 정모(37) 씨 등 2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1월 4일자 3면에 『부동산 투기사범 184명 적발』 제목으로 화천군 간동면에 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브로커를 고용 13만평의 토지를 20여억원에 매입한뒤 50여억원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까지 포탈한 국모(51) 씨가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모(51) 씨는 13만평의 토지를 20여억원에 매입하여 50여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법원에서 부동산 명의 신탁법과 부동산업자 자기매매금지법으로 재판에 계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론보도신청인 국 ○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2006년 1월 4일자 사회면에 『부동산투기 사범 184명 적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모 씨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씨가 화천군 간동면에 부동산업체를 차려놓고 브로커를 고용, 13만평의 토지를 20여억 원에 매입한 뒤 50여억 원에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세금을 포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반론보도신청인 국 ○ ○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도민일보 사회면에 2006. 1. 25.까지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1월 21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미등기 전매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강원조정2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국 ○ ○
피신청인 : 강원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1.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강원일보 : 『부동산투기사범 평창 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4일자 5면)

내 용 : 부동산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략)

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일대 토지 13만평을 평당 13만원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평당 38만원에 팔아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자 국모(51)씨 등 23명이 적발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강원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강원일보는 지난 2006년 1월 4일자 사회면 『부동산투기사범 평창 최다』 제하의 기사에서 국모 씨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국씨가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일대 토지 13만평을 평당 13만원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평당 38만원에 팔아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신청인 국 ○ ○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일보 사회면에 2006. 1. 25.까지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강원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1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미등기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6강원조정3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국 ○ ○
피신청인 : 춘천KBS-1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1.
처리결과 : 취 하

월 3일 21:40)

내 용 : 〈2006강원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강원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춘천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해양수산부가 식약청과 협의없이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장관 오 거 돈)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식약청과 협의도 안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10월 12일 1면)
내 용 : 청와대가 해양수산부의 국내 민물양식 송
어와 향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발표 및 전면출하
중단과 관련, 경위서를 요구하고 진상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부가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
과 관련해 사전지도도 않다가 관련부서와 사전 협
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검출 내용을
발표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해양부 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 담당자를
문책할 방침을 밝혀 말라카이트 그린 파문이 갈수
록 확대되고 있다.

취재 결과 해양부는 지난 6일 국내 민물양식장
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됐다는 사실을 발표
하기 하루 전인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관계기
관 대책회의를 단 1차례 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이 회의에 정책 결정권이
없는 사무관 1명만 참석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
로 통보하는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
러났다. 해양부 쪽에서는 최○○ 차관보, 이○○ 수
산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식약청도 이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국내산 송어
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된 사실을 전
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해 10월 12일자 1면에 『식약청과

협의로 안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해양부는 지난 6일 국내 민물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됐다는 사실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단 1차례 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이 회의에 정책 결정권이 없는 사무관 1명만 참석해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수부는 국내 민물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됐다는 사실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5일 오후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장 등 관계관 4명이 식약청을 방문하여 식약청 위해정보관리팀장 등 2명과 국내산 민물양식어류에서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관련 업무협의를 가지면서 국내산 민물 양식어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대책에 대해 협의한 결과 생산단계의 송어·향어에 대한 출하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식약청은 유통 중인 것에 대하여 수거 검사하여 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일 오후에는 해양부, 식약청,

시·도, 지방해양청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향후 양식장 조사계획 및 기관별 협조사항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경향신문 지난 해 10월 12일자 1면 『식약청과 협의도 안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5일 오후 식약청을 방문해 향후 대책을 협의했으며, 회의에 식약청 팀장 등 2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2006년 1월 27일자에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재임용심사를 위해 제출한 논문이 재탕논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재탕논문 교수 재임용탈락 정당”』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전 대학교수에 대해 대학측이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린 것

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중곤·金仲坤)는 전 D여대 교수 한모 씨가 “D여대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해 본인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심사위의 재심 청구 기각은 정당하다”고 지난해 12월 28일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임용 심사 마감일 전 제출한 저서와 논문은 이미 발표한 논문들을 소재의 시간 순서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고는 머리말뿐”이라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월 3일자 사회면에 『“재탕논문 교수 재임용탈락 정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머리말만 바꾼 논문은 연구실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모 씨는 재탕논문이 아니라, 한모

씨가 지난 25년간 독일문학을 연구하면서 일관되게 구상하여 온 ‘독일문학에 그려진 여성의 삶’이라는 연구테마를 중심으로, 그동안 단편적으로 발표해 오던 개별논문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종합적 연구창작물로써, 그 학문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하나의 통합저서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자신의 치부를 위해 주차장 사용을 막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나주투데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2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나주투데이 : 『광주은행, 의료보험공단 민원인 불편 심각』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9일자 7면)

내 용 : 광주은행과 의료보험공단이 입주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이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공단을 찾는 민원인들은 출입구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가 하면 차량 주차는 물론 걸어서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은 건물 소유주가 광주은행과 의료보험공단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김모 씨 소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토지사용료와 주변 정비를 하고 승낙서를 받았다.

그러나, 의료보험공단이 입주한지 불과 10여일이 지나서 김모 씨가 돌연 주차장으로 사용을 승낙한 토지에 흙을 야적해 차량주차를 원천봉쇄했다.

이로 인해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보험공단 출입구마저 막아버리

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인근 도로가 심각한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략)

이와 함께 자신이 5년 동안 사용을 승낙한 부지에 대해서도 2년으로 사용기간을 단축하고 6백만원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할 것과 주변토지에 대한 보호망을 설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모 씨가 자신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했기 때문에 건물신축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 김모 씨의 일련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는 선을 넘어 다수의 시민을 불모로 자신의 치부를 노리려는 알팍한 상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12월 19일자 『광주은행, 의료보험공단 민원인 불편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은행과 의료보험공단이 입주한 건물의 토지 소유주가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흙을 야적해 차량주차를 원천봉쇄해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인근 도로가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토지소유주 김모 씨의 행동은 시민을 불모로 자신의 치부를 노리려는 알팍한 상술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모 씨의 주차장 폐쇄 조치는 건물 소유주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줄기차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해진 조치로서 사건의 발단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 소유주에 있는 것으로

토지 소유주의 일방적인 폐쇄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했음을 밝혀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나주투데이 2006년 2월 6일자 7면에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 크기로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김○○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2005. 12. 21.자 고소건은 이를 취소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나주투데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6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낙찰받은 후 불법으로 재 하도급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건설(주)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대한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한일보 : 『영광 체육사업 부실 우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9일자 6면)

내 용 : 영광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하도급을 주면서 최저 낙찰방식을 도입, 과다 경쟁으로 공사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입찰이 이뤄지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과다경쟁으로 하도급을 따낸 건설사들이 편법으로 재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하도급 의혹도 제기됐다. (중략)

또한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사중 토목공사를 최저 금액으로 하도급 입찰한 타 지역 A건설사가 재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A건설사 협력 업체로 둔갑시켜 불법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것.

토목공사 중 발파 공사는 원도급회사에 미 진동 발파 공법으로 설계단가 1입방미터 당 3만3천원인 공사금액이 A건설사에 하도급 되면서 1입방미터 당 1만5백원에 입찰됐으나 A건설사는 다시 4천5백 원에 재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나 발파 공사가 7분의 1수준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파공사에 1입방미터 당 5천원에 견적을 제출했던 모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업체는 5천5백원에 견적을 제출하였으나 4천5백원에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발파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4천5백 원에는 미 진동 발파공법으로 공사를 실행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도급 업체 A건설사 관계자는 “재 하도급을 주기위해 견적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재 하도급을 주지 않고 공사를 직영처리했다”며 “모든 공사는 직영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월 9일자 『영광 체육사업 부실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토목공사 시공업체가 불법 재 하도급을 주었다는 내용과 토목공사 시공업체의 관계자(현장소장)가 재 하도급을 주기위해 견적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불법 재 하도급을 받았다

는 사업자로 오인된 사람은 2004년 8월부터 토목
시공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
로 확인되었고, 토목시공업체의 관계자(현장소장)

가 재하도급을 주기위해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 각 분야별 단가를 알
아 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체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3.

처리결과 : 취 하

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005년 12월 22자 『10억
이상 체납자 1년새 두배로』라는 제목과 함께 ‘법
인최고체납자는 ○○건설’ 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
다.

이에 대해 ○○건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건설은 법정관리 상태의 △△
건설에서 분리 매각되어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분리 매각과정에서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건설이 부담하는 조세체납액
82,887백만 원은 2014년 말까지 변제유예 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물(국민은행 수
익증권 및 부동산)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의무
가 완결된 상태에 있어 ○○건설은 고액체납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 『10억이상 체납자 1년새 2배로』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2일자 2면)

내 용 : 국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가 1년새 2배 늘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2천5백억원을 체납,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랐
다. 정 전 회장과 아들인 보근(3남)·한근(4남)씨
등 세 부자가 모두 4천1억 1천만 원의 세금을 체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체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3.

처리결과 : 취 하

동아일보 : 『10억 이상 세금체납자 1년새 두배로
늘어』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2일자
A8면)

내 용 : 국세청은 21일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2135명의 명단을 22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 및 관보에 공
개한다고 밝혔다. (중략)

법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로 829억
원을 체납했다. ○○건설은 3년 전 △△건설에서 분

보도내용

리된 회사여서 개인과 법인 부문 최고 채납자 모두가 한보 관련자로 채워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동아일보 : 『납세 약속 장기고액채납자 국세청, 명

단공개 제외 추진』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6일자 B2면)

내 용 : 국세청은 25일 장기 고액 채납자라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를 약속했다면 고액 채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세청이 고액 채납 기업으로 분류한 ○○건설 측은 “△△건설 분리 매각 과정에서 떠안은 채납액 829억 원을 2014년까지 납부하도록 법원 명령이 내려졌고 담보물도 제공했으므로 고의적인 채납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3.

처리결과 : 취 하

조선일보 : 『정태수씨 3부자 세금채납 1·3·5위』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2일자 B2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채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3.

처리결과 : 취 하

한겨레 : 『10억 이상 채납자 1년새 2배로』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2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체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3.

처리결과 : 취 하

한국일보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2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체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3.

처리결과 : 취 하

취하 후 보도문

매일경제 : 『세금변제 약정기업은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5일자
A4면)

내 용 : 장기 고액 체납자라 해도 법원 결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고 변제를 약정했다면 고액체
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세청이 고액 체납 기업으
로 분류한 ○○건설측은 “△△건설 분리 매각 과정
에서 세금 체납액을 떠안은 데다 체납액 829억원
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변제하도록 법원 명령이
내려졌고 체납 채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고의적
인 체납 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 『10억이상 국세체납자 2배 늘어』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2일자 A4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체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K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2TV : 「KBS뉴스타임」 프로그램 (2005년 12월 22일 20:00)
내 용 : <2006서울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월 24일 21:00)
내 용 : ▷앵커 :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애매한 기업까지 포함시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김○○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 부도가 났던 △△건설을 인수한 뒤 재기를 꿈꾸고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해 말 이 업체를 세금 829억 원을 안 낸 최고액 체납기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모든 언론에 공개된 뒤 업체는 재건축 사업 수주에 실패하고 협력 업체들도 외면하는 데다 은행 대출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이○○(○○건설 회장) : “모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지난 △△시절 고생했던 그런 시절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데다가 완전히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 ○○건설이 △△건설을 인수할 당시 △△건설이 내지 않은 세금이 바로 829억원입니다.

그러나 ○○건설은 지난 2002년 849억원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2014년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았습니다. (중략)

국세청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체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3.
처리결과 : 취 하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5년 12월 21일 20:00)
내 용 : <2006서울조정1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 회사가 국세 고액체납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Ⅸ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Y T N : 「뉴스」 프로그램 (2005년 12월 21일 12:30)
내 용 : <2006서울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Y T N : 「4시뉴스」 프로그램 (2006년 1월 25일 16:00)

내 용 : 국세청은 장기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변제를 약정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세청의 고액 체납 기업으로 분류된 ○○건설은 법원으로부터 체납액 829억원에 대해 2014년까지 변제하도록 법원 명령이 내려진데다 체납 채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체납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어린이 안심 프로그램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비인격적 통제장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케어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도일보 : 『말 많은 ‘어린이 안심 프로그램’』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7일자 5면)
내 용 : 대전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안심 프로그램’이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비인격적 통제장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 1인당 월 사용료가 3,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시행업체를 결정하는 등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6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등하교시 학생들이 담임교사 책상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학생증을 체크하면 학부모 핸드폰에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학부모들은 문자를 보고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금은 학부모 핸드폰이나 집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초의 경우 상당수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월 3,000원에 달하는 사용료도 너무 비싸 특정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투명하지 못해 특정업체 봐주기 식의 유착관계 의혹마저 불려 일으키고 있다.

대전○○초 관계자는 “업체에서 처음에는 무료라고 설명했다가 한달간 시범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했다”며 “형편이 어려워 급식마저 굶는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간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5년 12월 7일자 5면 『말 많은 ‘어린이 안심 프로그램’』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학교를 거론하며 어린이 안심 프로그램 시행업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특정업체와 유착관계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시행업체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법률에 의거하여 구성된 구성원들과 학교장이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항이며, 특혜의혹과 유착관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교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중 “처음에는 무료로 설명했다가 한달간 시범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했다며 ‘형편이 어려워 급식마저 굶는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어린이 안심서비스는 한 달간 무료체험 사용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사용여부 확인을 거쳐 희망하는 학부모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5년 12월 7일자 5면 『말 많은 ‘어린이 안심 프로그램’』 제하의 기사에서 ○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안심 프로그램이 학생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비인격적 통제장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케어 측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에 의거 학부모 대표 7인, 지역인사 2인, 교사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혜의혹제기와 유착관계는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학교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으며 ○○의 어린이 안심서비스는 한 달간 무료체험 사용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을 거쳐 자유의사를 통해 희망자에 한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안전보험 서비스 협약으로 가입자에 대해 학교내의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등을 (8가지) 보장해주며 U-스쿨사업의 기반사업이라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6년 1월 26일자 4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대전 ○○초 등학교…)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중도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6일자 4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선불게임카드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부추긴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넷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K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2TV : (1) 「KBS8뉴스타임」 프로그램 (2006년 1월 12일 20:00)

내 용 : ▷앵커 : 미션 뉴스타임, 오늘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부추기는 게임 선불카드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인터넷 게임을 만류하지만 자녀들은 이 게임 선불카드만 있으면 부모 동의 없이도 맘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자칫 게임중독에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중략)

▷기자 : ARS나 휴대전화 결제와 달리 선불카드 쓰는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중2 학생 : “(요즘 학생들이 이 카드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동의 없이 쓸 수 있으니까요.”

부모의 결제 동의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선불카드는 거의 모든 문구점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게임 선불카드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수(박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중독예방팀장) : “게임을 하는데 아이들이 캐쉬충전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캐쉬충전카드가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거나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 선불카드는 20여 가지.

지난해 매출이 5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후략)

(2)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월

12일 21:00)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월 13일에 방송된 게임선불카드가 다른 게임 결제수단과는 달리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게임선불카드가 게임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게임선불카드는 부모동의 문제를 보완한 결제방식이며 다른 결제수단보다 청소년게임중독을 더 잘 조절할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게임선불카드가 게임 중독을 부추기고 있지 않다는 신청인측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하천조성사업 투수콘 공사를 전주시와 수의계약하여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전민일보 : (1) 『전주시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9일자 1면)

내 용 : 전주시가 일반경쟁 입찰로 구매가 가능한 관급자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특혜시비와 함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의견을 제시하고도 계약부서와 조달청이 결정한 것처럼 발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철저한 조사가 촉구되고 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삼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수콘크리트를 조달청을 통해 G사와 예정가격의 99.58%인 1억 1,949만 6,000원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이 최저가격찰제 방식의 일반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으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공급자제인 투수콘크리트는 삼천 둔치에 설치되는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로 포장자재로 규격이 일반화돼 있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특허나 신기술 제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수콘크리트는 용도에 따라 규격만 정해주면 제조사에 관계없이 품질과 규격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실제 전주시는 지난해 동일한 사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규격의 투수콘크리트를 구매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한 바 있다. (후략)

(2) 『전주시 특정업체 밀착 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0일자 1면)

전주시의 투수콘크리트 수의계약 특혜시비와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들의 특정업체와 밀착 의혹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도내 투수콘크리트 납품업체 A사에 따르면 전주시가 발주한 투수콘 구매입찰에서 낙찰돼 현장에 납품, 시공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G사의 시방서와 똑같은 시방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원도급업체를 통해 받은 투수콘크리트 시방서는 G사의 시방서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지와 차례만 없을 뿐 G사가 보유한 특허 제품에 대한 시방서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A업체가 납품한 자재는 규격만 같을 뿐 G사의 특허와는 전혀 무관한 제품이어서 시방서 적용은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일 G사가 수의계약하도록 한 부서의 시방서도 특허관련 내용과 일부 적용범위를 삭제하고는 나머지 내용이 모두 G사의 시방서와 동일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이 본보의 취재사실을 G사에 연락해 보도자재를 요청토록 하는 등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후략)

(3) 『삼천 투수콘포장 부실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3일자 15면)

최근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본보, 19일자 1면)을 받고 있는 전주시 삼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투수콘크리트 구매계약과 관련해 이번에는 올해 시공한 투수콘 포장공사가 부실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4년 12월 13일 최저가격찰제 방식의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투수콘을 구매, 올해 삼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으로 삼천동 농산물시장에서 팔복동 추천대교까지 둔치 산책로를 포장했다.

산책로는 보도 자전거도로용 투수콘크리트 포장도로로 휠터층 5cm, 기층 7cm, 표층 7cm 등의 두께로 시공하도록 설계됐다. 사용자재는 휠터층이 모래, 기층이 쇠석골재이며 표층 슬라브는 휨강도 25 kg/cm², 압축강도 180kg/cm² 규격의 투수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돼어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 한 결과 일부 구간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거나 시공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품질검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방서에 '표층 포설시 균일한 두께를 유지해 두께 변화에 의한 크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다짐은 공극 유지와 재료 분리를 방지하도록...'이라고 돼 있으나 두께가 설계에 미달하고 일부 구간에서 크랙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수축과 팽창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줄눈을 통해 표층의 두께를 실측한 결과 최소 4cm에서 최고 7cm로 두께가 균일하지 않았다.

또 일부는 두께가 설계 7cm에 미달했다.

다짐이 부실해 공극이 균일하지 않고 재료분리된 곳도 눈에 띄었으며 심지어 투수가 되지 않고 물이 피어있는 곳도 발견됐다.

줄눈의 처리가 부실해 간격이 설계보다 좁고 돌조각 등 비압축성 이물질 유입으로 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곳도 나왔다.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구간을 통해 기층재를 확인한 결과 재료분리 또는 비규격 자재가 포설부분이 확인됐으며 규격도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05년 12월 19일자 1면~2면 『전주

시 수의계약 특혜의혹』, 20일자 1면 『전주시 특정 업체 밀착의혹』, 23일자 15면 『삼천 투수콘포장 부실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일반경쟁 입찰로 구매가능한 관급자재를 수의계약해 특혜 시비와 함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수의계약 특혜시비 관련 업체와 담당공무원들의 밀착 의혹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시공한 투수콘 포장공사가 부실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주)○○의 제품 통상 설계단가는 214,500원(㎡)인데, 이번 계약은 약 156,000원(㎡)으로 설계단가 대비 73%에 계약되어 오히려 민수 또는 사급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매계약이며, 투수콘은 특성과 각 용도에 따라 제품 단가가 다를 수 있고, 투수콘의 용도에 따라 규격만 정해주면 제조사에 관계없이 품질과 규격에 차이가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리고 A사가 원도급 회사로부터 제시 받은 시방서의 문제는 전주시와 A사의 고유한 업무로 (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주)○○은 언론보도 무마를 시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삼천 투수콘포장 부실의혹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아직 포장되지 않은 구간의 필터층과 기층공사는 원도급사에서 하고, (주)○○은 표층에 대한 부분만 포장공사를 하고 있어 필터층과 기층공사는 (주)○○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기사를 게재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받아서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사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정은 물론 반론보도도 게재할 용의가 없다. □

신청인이 축사와 주택을 불법 증축하여 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좌 ○ ○

피신청인 : 전북매일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북매일 : 『법규무시 뻔뻔한 주인』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9일자 15면)

내 용 : 동네 한가운데 축사 건축으로 물의를 빚은 건축주가 이번에는 신축주택마저 하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마을 한 가운데 축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행정기관에 적발 된 후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 졌으나 축사 주인이 거부, 결국 법정비화

로 이어졌다.

8일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 산정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축사불법건축과 더불어 축사 주인 J모씨가 살기위해 신축한 주택도 하천법을 위반하고 건축했다”고 밝혔다.

J씨가 집을 신축한 장소는 이 마을 하천 제방 바로 옆에 신축해 기존 건물 뒤편이 제방 경계에 1m50cm가 떨어져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건축했다는 것.

이에 산정마을 주민들은 “김제시청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김제시청 주택과의 하천 관련 부서에서 건물일부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시청에서 기존의 축사에 불법성이 있으니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공사를 하라고 했지만 ‘절대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마을 이장에게 전달되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진정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1월 9일자 15면에 『법규무시 뻔뻔한 주인』 제하의 기사에서 김제군 금산면 구월리 J모씨가 축사를 불법증축하였고, 또한 주택을 신축하면서 하천법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J씨는 축사 주인과 주택의 소유자가

다름에도 확인 없이 보도하였으며, 축사주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동절기 폭설로 인하여 당국과 협의하여 원상회복 시기를 3월 이후로 연기해 놓은 상태이며, 원상회복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주택을 신축한 또 다른 J모 씨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2m50cm 이상 띄웠기 때문에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증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위법이 있었으나 이러한 위법사항을 해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가 병원 영리법인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직무대리 차관 송 재 성)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1) 『병원 영리법인 전면 허용』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2일자 1면)

내 용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병원 영리 법인의 설립이 전면 허용된다. 또 영리법인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 도입된다. (중략)

특히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은 병원들이 시장에서 경쟁,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해 해외 원정진료 수요 등을 국내로 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시장지배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외국 자본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 법인은 물론 국내 법인도 외국인 지분율이 10%만 넘으면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복지부와 재경부는 또 조만간 별도의 기구를 설

치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후략)

(2) 『의료서비스질 높여 국민건강 향상』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2일자 3면)

정부가 연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본격적인 의료 산업화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재정경제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을 서두른 반면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운 보건복지부의 유보적인 태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져 가는 병원들의 경쟁과 외국 병원의 국내진출,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가시화 등 의료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를 감안할 때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고 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외국 법인에 한해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국내 법인도 외국인 지분 10% 이상만 확보하면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 사실상 국내 법인에 대한 영리법인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2일자 1면 『병원 영리법인 전면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올 하반기부터 병원 영리법인의 설립이 전면 허용되며, 영리법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 도입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영리법인 병원설립의 전면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산업전진화위원회에서 영리법인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대체형 민간보험의 도입 검토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외국자본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에 한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도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인 신청인이 조합비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수산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수산신문 : (1) 『조감위원회는 비리은폐처(?)』 제하의 기사 (2005년 10월 17일자 1면)

내 용 : 장○○ 수협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이하 조감위)이 조감위 사무국 직원들이 적발해 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장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조감위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장 소속하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기구로 지난 2001년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관련 직원을 문책할 수 있고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장○○ 위원장은 ○○수협 김○○ 조합장에 대한 진정 사건과 관련, 조감위 사무국 직

원들이 감사한 내용을 며칠이 지나도록 처리를 않고 있다. 게다가 장 위원장은 변호사 3명에게 법률적 자문까지 받아 이 사건이 사기 횡령 배임 등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받았는데도 이를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임의로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와 만나는 것도 꺼리는 것이 감사의 기본인데 이것을 무시한 채 이해당사자와 만나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이미 감사위원장으로서는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후략)

(2) 『24일 ○○수협 문제 최종 결정』 제하의 기사 (2005년 11월 14일자 1면)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한달간 결정을 유보키로 했던 ○○수협 김○○ 조합장에 대한 형사고발 문제와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어떤 결정을 내릴지 크게 주목된다. 이는 조감위 사무국이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여 위원장에 넘긴 내용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위원들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3) 『조감위 △△수협 감사 처분 안 하기로』 제하의 기사 (2005년 11월 21일자 1면)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최근 △△수협을 감사했으나 감사처분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감위 관계자는 “△△수협 감사를 했으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원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확정시까지 조합장 선거를 정지한다고 밝힘으로서 감사처분을 판결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감위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현재 문제가 된 변상부분에 대해 “회원조합 징계? 변상업무처리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조감위가 똑같은 내용에 대해 하나는 결론을 내놓고 또 하나는 결론을 보류해 소신없이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협은 장○○ 전 조합장과 조합 측이 조합원 자격 변상문제를 놓고 3년 넘게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있어 조합장 직무 대행이라는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4) 『조합 감사위를 감사한다』 제하의 기사 (2005년 11월 21일자 1면)

일선조합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감위)가 해양수산부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조감위로서는 감사 담당자들이 감사를 당하는 치욕적인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략)

(5) 『조감위 ○○수협 조합장에 견책 결정』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5일자 1면)

(전략)조감위는 지난 29일 조감위 전체 회의를 열고 ○○수협 형사고발 문제를 협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25일 조감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한달간 결정을 연기한 바 있으며 지난 24일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위원인 조○○ ○○○○조합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함으로써 다시 회의를 연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략)

(6) 『“무슨 감사위원장을 두명씩이나...”』 제하

의 기사 (2005년 12월 12일자 1면)

최근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에 대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후략)

(7) 『조감위원장도 연임 제한 뒤야』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9일자 1면)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이하 조감위원장)과 상임감사위원장 임기가 차이가 나는데다 조감위원장은 연임 제한이 없는 등 형평에 차이가 나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수협중앙회 한 간부는 “중앙회에 2개로 나뉘어 있는 감사위원회를 통합해 하나로 만들고 감사위원장 임기는 단임으로 끝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 의견을 수렴,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감위원장이 연임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감사의 특성상 연임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제93호 2005년 10월 17일자 『조감위원회는 비리은폐처(?)』 제하의 기사에서 장○○ 조감위원장이 ○○수협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감사중 이해당사자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감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해당사자와 민원처리중에 식사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조감위사무국에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였다고 본지 제 96호 11월 14일자 『24일 ○○수협 문제 최종 결정』 제하 기사와 제97호 11월 21일자 『조감위 △△수협 감사 처분 안 하기로』, 『조합 감사위를 감사한다』 기사에서 비방한 바 있으나 수협법 제 145조에서 회원조합 임직원에게 징계요구는 위원회의 고유권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정기감사에서 조감위를 감사하는 것

은 치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본지 제97호 11월 21일자 기사에서 보도한 바 있으나 해양수산부 정기감사는 특정부서나 특정업무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아닌 수협중앙회 전반에 대한 감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97호 11월 21일자 기사에서 조감위가 △△수협민원감사를 실시하고서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도 못할거면 감사 왜 했나?” “감사해놓고 먼 산, 수협조감위 왜 이러나?” 등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수협민원사무처리요청 제 4조에 의거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민원대상이 아니므로 종결처리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99호 12월 5일자 기사에서 조○○ 감사위원이 입장이 곤란하여 불참한 것이라고 수협직원의 비난을 인용보도한 바 있으나, 조감위원회를 연기한적이 없으므로 불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본지 제100호 12월 12일자 기사에서 장○○ 조감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국장으로 재직시 자기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직제를 만들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장○○ 조감위원장은 수협법 개정으로 조감위 발족당시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여 조감위 발족과 무관함을 확인하여 바로잡습니다.

지 않고 있어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중 이해당사자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조감위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민원처리를 했으며, 이해당사자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본지 제100호(2005. 12. 12자)에서 장 조감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국장으로 재직 시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감위원장 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으나, 장 조감위원장은 수협법 개정으로 조감위 발족 당시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여 조감위 발족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지는 제93호에서 101호에 걸쳐 장○○ 조감위원장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기사중 일부 내용이 장 조감위원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수산신문 2006. 2. 6.자 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2005. 10. 17자)의 부제목 활자(위원장 적법...의혹설 제기)와 같은 크기로 가로 2단에 걸쳐 보도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 제 목 : 장○○ 조감위원장 관련 정정보도
- 본 문 : 본지 제93호(2005. 10. 17자)에서 장○○ 조감위원장이 ○○수협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

합의사항 이행결과

- 수산신문 : 『장○○ 조감위원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6일자 1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과음과 패륜행위로 신문사에서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종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종로신문 : (1) 『해임 : 취재부장 박○○』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3일자 1면)

내 용 : 상기인은 종로신문사 취재부장으로 근무 중 치유 불능의 과음으로 인한 장시일간 무단결근과 패륜행위(상사폭행) 등으로 2005. 10. 20. 해임 되었으므로 본사와는 무관함을 고지합니다.

(2) 『종로에 지역신문이 2개 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3일자 12면)

지금 종로에는 종로지역 신문사에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해고된 외지인이 종로에서 신문을 하나 만든다는 구설로 여러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무실 또는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며 배회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이나 서초구처럼 인구 5~60만 되는 지역도 지역신문이 2개 정도가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바 종로는 상주인구 18만 밖에 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 신문 2개사도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이 또 하나 생긴다는 것은 경쟁아닌 사할을 건 서로 죽이기 작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아남기 위해선 자사의 유익한 기사를 보도하게되고 정론직필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게될 것이다. 또한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되어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1월 13일자 1면 사고(社告)를 통해 ‘종로신문사 취재부장 박○○, 근무 중 치유 불능의 과음으로 인한 장시일간 무단결근과 패륜 행위(상사폭행) 등으로 2005. 10. 20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박○○ 전 취재부장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 사직하였던 것으로 정정합니다.

또한 동일자 12면 『종로에 지역신문이 2개 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 아래 종로타임즈 사전을 발행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종로타임즈의 창간이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보도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고,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를 하면 피신청인의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는 결과로 됨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단체가 탈법적으로 운영되는데도 시로부터 행정편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 YMCA (이사장 박 ○ ○)

피신청인 : 뉴스리더

접 수 일 : 2006. 1. 1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뉴스리더 : (1) 『○○ YMCA 자활기관 각종 규정 위반 ‘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9일자 10면)

내 용 : ○○YMCA가 위탁 운영 중인 ○○자활후견기관(이하 자활)이 지난해 마약류의 일종인 양

귀비 채배 의혹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운영상에도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에선 ○○시의 이례적인 솜방망이식 관리감독 시스템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본지 취재결과 ○○자활후견기관의 규정위반 사례는 적지 않았다. 자활은 지난해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년(60세)을 초과한 K씨를 채용, 중책을 맡겼다가 결국 규정위반으로 적발돼 최근 해임시켰다.

또 자활기관 소속 직원들이 ○○YMCA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업무에 빈번하게 동원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일부 직원은 ○○YMCA의 B모 이사장

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운전기사 노릇까지 했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자활기관의 전 관계자는 “자활 차량을 직접 운전해 B모 이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예약손님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몇 번 해본적이 있었다”며 “자활에서 돈을 받으면서 OYMCMA 업무를 병행해 본다는 게 도덕적으로 용서가 안됐지만 분위기가 어쩔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문제점을 O시에 얘기했는데도 모두 덮여졌다”며 “O시의 비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의혹을 삼았다.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르면 ‘자활기관은 지정된 법인이 관장과 연대해 후견기관 사업 및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나, 법인과는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엄연히 규정 위반이다.

더구나 자활기관 관장도 빈번히 OYMCMA의 업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자활 관장은 물론 소속 직원 모두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세금으로 받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 법인이라 할지라도 업무를 병행한다는 건 법 위법성을 떠나 도덕성에도 의문을 품게 한다. (후략)

(2) 『관공서 부지에 불법 가건물 ‘버젓’』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8면)

공무원이 늘 드나드는 동사무서 부지내에 OYMCMA의 불법 가건물이 2년 가까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O시는 그동안 단속한번 벌이지 않다가 본지에서 취재에 들어가서야 뒤늦게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는 등 철거수순을 밟고 있다.

O시는 또 O여성회관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댓가로 OYMCMA가 시에 지불해야 하는 연간 대부료(3억960백만원)도 60일 내 일괄 납부에서 연 4회 분납으로 방식을 변경, 재차 편의를 제공해줬다.

문제가 된 OYMCMA의 불법 가건물은 처인구 유림동사무소 부지내 자리잡고 있으며 5평 내외의 컨테이너 건물로 주로 의류등의 재활용품을 기증받아 소비자에게 환원, 또는 판매하는 녹색가게로 운영중이다.

지난해 1월 OYMCMA 제안후 동사무소와의 구

두협의에따라 들어섰으며, 현재는 OYMCMA 자원봉사단체가 운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신고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해 엄연히 서류상에는 없는 불법 가건물이다. 관공서 부지내에 불법 가건물이 2년 가까이 무단으로 방치된 것이다.

이와 관련, OYMCMA 전 관계자는 “사회단체가 불법 가건물을 관공서 부지에 설치하고, 관공서는 이를 눈감아 준다는 건 분명 잘못됐다”며 “OYMCMA B모 이사장이 이O 시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해왔던 것으로 보아 O시의 비호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OYMCMA B이사장과 이O 시장은 실제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OYMCMA 자활후견기관의 양귀비 재배의혹 사건이 터지기전까지 OYMCMA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O시와 OYMCMA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단순 실수였다”며 “자진철거 후 법적 행정절차를 밟아 다시 건립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OYMCMA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연간 대부료 징수방식 변경도 지나친 편의라는 지적이다.

O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OYMCMA가 여성회관 지하1층과 지상1,2층의 수영장, 스키스 등 스포츠 시설과 레스토랑, 탁아놀이방 등의 공간을 위탁 운영하는 댓가로 연간 3억960백만원의 대부료를 계약일(2004년 10월 8일)로부터 60일내에 징수키로 했지만 납부기일이 지켜지지 않자, 4회 분납 방식으로 변경해줬다.

이에 따라 OYMCMA는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60일내 징수’ 부담을 더는 편의를 누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뉴스리더는 지난 제94호 10면 『OYMCMA 자활기관 각종 규정위반 ‘의혹’』 제하의 기사를 비롯하여 제95호 8면 『관공서 부지에 불법 가건물 ‘버젓’』 기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OYMCMA 기관운영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보도한 바 있

습니다. ○○ YMCA가 ○○시로부터 대부료 징수방법에 관해서 편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위 보도로 인해 ○○YMCA의 명예가 훼손되었기에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스포츠센타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인 것이므로 손해배상 할 수 없다. ☐

○○ YMCA 소속 자활기관 직원이 이사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운전기사 노릇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뉴스리더
접 수 일 : 2006. 1. 1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뉴스리더 : (1) 『○○YMCA 자활기관 각종 규정 위반 '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9일자 10면)
내 용 : <2006경기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2) 『관공서 부지에 불법 가건물 '버젓'』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8면)
<2006경기조정3의 보도내용(2)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뉴스리더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자 10면 『○○YMCA 자활기관 각종 규정위반 '의혹'』, 2006년 1월 5일자 8면 『관공서 부지에 불법 가건물 '버젓'』 제하의 기사에서 ○○YMCA가 해당지자체의 특혜를 받고 있고 ○○YMCA 이사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자활직원이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사장과 ○○시장이 실제로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화함으로써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진 표)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표류하는 역사왜곡 대응』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0일자 19면)
내 용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문제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책 전략 연구기관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한다는 정

부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 이 재단은 청와대가 지난해 초 설립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기획단' (단장 김병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확대 개편하는 것, 이사장과 이사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략)

게다가 제작년 3월에 설립돼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고구려연구재단' 과의 기능 중복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고구려연구재단 측은 "재단 정관상 한중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문제까지 연구하도록 돼 있는 마당에 굳이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립할 이유가 뭐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예비비로 지원을 받던 고구려연구재단은 올해부터 '역사왜곡 대책 지원금'이라는 지정 항목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최광식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고구려연구재단을 확대 재편하는 방법이 자연스러운데 정부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설립준비위원회가 선정한 이사진에서 이사장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 반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사장과 이사를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많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가 지난 1월 10일 19면에 『표류하는 역사왜곡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까지 예

비비로 지원을 받던 고구려연구재단은 올해부터 '역사왜곡 대책 지원금'이라는 지정 항목으로 60억원을 지원받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사장과 이사를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많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제작년에 예비비로 지원을 받은 고구려연구재단은 작년부터 '중국역사왜곡대책'이라는 항목으로 6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1월 10일자 19면 『표류하는 역사왜곡 대응』 제하의 기사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과 이사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006년 2월 3일자 2면에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3일자 2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단월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구속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9.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KBS-1TV : 「930뉴스」 프로그램 (2005년 7월 19일 09:30)

내 용 : >아나운서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해 단월드를 비방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55살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부터 안티 단월드 카페 등 10개 카페와 사이트를 개설한 뒤 단월드 설립자와 운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5년 7월 19일자 「930뉴스」 프로그램에서 '단월드 비방 사이트 개설자 2명 구속' 제목으로 10개 카페와 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해 단월드를 비방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이모 씨가 구속되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모 씨는 3개의 카페를 운영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으며, 단지 카페 운영자로서 비방글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 건 : 2006서울조정30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1TV)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사장 정 연 주

조정대리인 ○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반론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KBS-1TV 11시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프로그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내보내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1.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2005년 7월 19일 「930뉴스」 시간에 '단월드 비방 사이트 개설자 2명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10개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해 단월드를 비방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이모 씨 등이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이씨는, 운영기간 7일의 자료저장용 카페 3개만을 운영하였을 뿐이라고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KBS-1TV :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2월 11일 11:00)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

사설 보육시설이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관련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꿀꿀이죽 분노’ 6,900명 서명 받아』 제
하의 기사 (2006년 1월 17일자 9면)

내 용 :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들이 발벗고 나섰다. 17일 서울 강북 구청에는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하라는 구민 6,900여명의 서명서가 제출됐다. (중략)

학부모대책위 공동대표 최○○(36·서울 강북구 수유동)·염○○ 씨는 지난해 한 보육교사의 인터넷 고발로 비롯된 ‘꿀꿀이죽 파문’을 돌이켜 생각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남은 음식들을 모아 돼지죽처럼 끓여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내부자 고발이 아니면 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엉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직접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사실 보육시설이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서도 관련기관의 감독은 전혀 받지 않는다는 규정의 허점을 파악했다. 또 관련법인 영유아보호법 등에 악덕 어린이집 원장 등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17일자 9면에 『‘꿀꿀이죽 분노’ 6,900명 서명 받아』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도된 학부모의 발언 중 ‘보육시설에 대한 관련기관의 감독은 전혀 받지 않는다는 규정의 허점을 파악했다’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사업안내에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불시점검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또한 ‘영유아보호법 등에 악덕 원장들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우선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법령이 올바른 것이며, 처벌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4조에서 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잘못된 보도임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서울시의 일부 어린이집이 영·유아 혼합반을 운영하는 것이 편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9.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서울신문 : 『어린이집 ‘편법’ 기승』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3일자 10면)

내 용 : 민간 보육시설인 서울의 일부 어린이집들

이 나이별로 영아반을 두지 않고 ‘혼합반’을 만드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중략)

게다가 실제로는 0세반·1세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 연령대의 영아가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세 미만의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1개 반당 월 45만 원~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세 미만의 영아반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혼합반’ 운영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아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략)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그나마 ‘혼합반’이라도 운

영해 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 부족에다 있는 보육시설에서도 만 2세 미만 영아를 꺼리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13일자 10면 『어린이집 ‘편법’ 기승』 제하의 기사에서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혼합반’ 운영이 편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것은 여성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적법한 운영 방식이며, ‘보육교사 채용부담을 덜기 위해 영아반 기피현상이 수두룩하다’는 보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아반 운영비로 1개 반당 45~60만 원의 서울시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0세 1개 반당 20만 원, 1세 1개 반당 15만원, 2세 1개 반당 15만 원이며, 지급기준은 반당 현원이 70% 이상일 경우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 건 : 2006서울조정32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 ○
조정대리인 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채 수 삼

조정대리인 ○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서울신문 10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영아반 나이 구분 없이 혼합반 운영, 교사채용 부담 등록 거부도 수두룩)과 함께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함께 하라.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31.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 지난 1월 13일자 『어린이집 ‘편법’ 기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아반 나이 구분 없이 혼합반 구성, 서울시는 2세미만의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1개 반당 45만~60만원을 지원”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여성부 지침에 따르면 0세와 1세 영아, 1세와 2세 영아는 혼합반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영아반 운영지원비도 1개 반당 15만~20만원 정도임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서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0일자 7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신청인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펴낸 괴벨스 평전이 괴벨스의 언론정책을 곁핥기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서평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겨레 : 『괴벨스 왜 ‘히틀러 나팔수’ 되었나?』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3일자 12~13면)

내 용 : (전략)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교양인 펴냄)은 독일민족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수백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의 심복 중 심복으로 선전장관을 맡아 독일, 유럽, 나아가 온 세계에 대재앙을 안겨주었던 인물 요제프 괴벨스 평전이다. (중략)

선전장관의 평전에서 독일의 미디어사를 기대한다면 실망이다. 언론정책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괴벨스는 라디오에 주목했다. 생긴 지 10년도 되지 않은 이 매체를 텔레비전이 발명되기 전까지 전체주의 국가에 자연스럽게 복무하며 대중선동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간주했다. 라디오만이 국민의 완전한 장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방송국망을 확장하고, 길거리와 광장에 ‘제국 스피커기둥’을 설치하고 저렴한 수신장비 생산을 추진했다. ‘국민 수신기’라 불리며 76마르크에 팔린 이 라디오를 사람들은 ‘괴벨스의 주둥이’라고 불렀다.”(418쪽) 반면 영화나 텔레비전의 제작과 활용에 관한 설명은 겉핥기거나 없고, 괴벨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러시아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1월 13일 12면에서 『괴벨스 왜 ‘히틀러 나팔수’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선전장관의 평전에서 독일의 미디어사를 기대한다면 실망이다. 언론 정책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따름”, “영화나 텔레비전의 제작과 활용에 관한 설명은 겉핥기거나 없는 반면, 괴벨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러시아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을 펴낸 교양인 출판사는 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첫째, 이 책에는 괴벨스의 언론 정책과 영화의 제작과 활용에 관한 설명이 매우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둘째, “텔레비전의 제작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 겉핥기라는 기사 내용과 “러시아에서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은 마치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 잘못된 정보가 이 책에 실려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써서 출판사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2일자 2면)

내 용 : 1월 13일치 책·지성 섹션 12면에 실린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교양인 펴냄)관련 책 소개 기사 본문= ‘영화나 텔레비전의 제작과 활용’은 ‘영화의 제작과 활용’으로, ‘러시아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러시아쪽의 폴란드 군인 학살’의 잘못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

웨딩업체의 서비스 문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2TV : 「KBS뉴스타임」 프로그램 (2006년 1월 18일 20:00)

내 용 : ▷앵커 : 대부분 인생에서 딱 한번 뿐인 결혼식이 엉터리 결혼 서비스 때문에 악몽이 돼버렸다면 그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서비스 때문에 울고 배상 문제로 또 우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지난 8일 결혼한 양○○ 씨 부부.

아직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어야 하지만 웨딩 업체와 싸우다 치쳐버렸습니다.

결혼 전 동의도 없이 화장과 사진 촬영 업체를 바꾼 것은 그야말로 약과였습니다.

결혼식날 촬영을 하기로 예식장과 계약했지만 어떤 일인지 촬영은 아예 없었습니다. (중략)

예식장에서는 촬영 업체에 촬영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예식장에서 여러 업체들과 협력을 맺으면서 배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이처럼 손해가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나서서 배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29살 박모 씨는 결혼정보회사에서 '하버드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재미교포'라는 남자를 만나 5년 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알고보니 다른 학교 치의학과

를 졸업한 화교였습니다.

결혼 정보회사가 박씨에게 상대의 학력이나 출신 등에 대해 부실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결혼정보회사나 예식 업체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좋은 날이니 만큼 좋게 좋게 지나가려는 생각에 꼼꼼히 계약을 살펴거나 정보를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방송은 지난 1월 18일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모 웨딩업체의 잘못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도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화면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미처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해당 웨딩업체와는 무관한 “이○○ 오데뜨”와 “○○○ 웨딩샵”의 상호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업체는 해당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드리며 시청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웨딩업체의 서비스 문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2TV : 「KBS뉴스타임」 프로그램 (2006년 1월 18일 20:00)

내 용 : <2006서울조정3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2006서울조정34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AM7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3.

처리결과 : 합 의

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
인 연관성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
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원

보도내용

AM7 : 『“잘 옮겼다” 소문나려면 현 직장서 더 잘
하세요』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일자
30면)

내 용 : 새해를 맞아 서울 시내 대형서점의 ‘자기
계발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직장인들. 이들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매우 현실적인 화두가 되
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2일자 『“잘 옮겼다” 소문나려
면 현 직장서 더 잘하세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
면서 대형서점의 ‘자기계발서’ 코너에서 책을 고
르고 있는 직장인들 사진을 참고자료로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진 속의 인물들은 이직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 AM7은 2006년 1월 2일자 ‘이직의
성공조건’의 기사에서 대형서점의 자기계발서적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직장인들의 사진을 게
재하였는데, 사진 속의 인물들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AM7 30면 매주 월요일
일터란의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
은(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2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같은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
년 2월 20일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2006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
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다
잡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A M 7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0일자 30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건설교통부가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관 주도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건설교통부 (장관 추 병 직)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관주도 범국민운동 추진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2일자 1면)

내 용 :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임기 후반 핵심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방식과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처음 확인됐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정당, 시민단체,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전국적인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지난해 이미 이 계획을 5일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참여형 도시 만들기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새로운 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청회를 거쳐 관련법을 올해 상반기 중 정비한 뒤 연내에 몇몇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민간이 참여하는 ‘참여형 도시 만들기 추진센터’를 설립해 지역 전략을 마련하고, 마을 단위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범국민 운동

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참여형 도시 육성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열린우리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략)

이에 건설교통부 이○○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연구 중”이라며 “행정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선거등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2) 『‘노무현식 새마을운동’ 성공 미지수』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2일자 3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9개월간 추진해 온 ‘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났다.

1960년대 이후 관(官) 중심의 ‘톱 다운(Top down)’ 방식으로 진행돼 온 도시 개발의 발상을 바꿔보려는 ‘실험’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한국의 도시환경 수준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해야 할 시도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도시의 내·외형을 동시에 바꾸려는 대형 사업인데다 주민들이 추진 주체가 되는 ‘운동’의 성격을 띤 만큼 선불리 추진하면 부작용도 예상된다. (후략)

(3) 『선거용 낚시 풀풀 나는 ‘참여형 도시’』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2일자 31면)

노무현 정부가 임기 후반기의 국토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참여형 도시 만들기’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전국 도시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분류해 주민의 참여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 나간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의 ‘새마을 운동’에 맞먹는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

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추진단도 구성된다. (후략)

(4) 『“선거 악용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3일자 1면)

청와대는 이달 말부터 ‘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론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5·31 지방선거와 내년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후략)

(5) 『‘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3일자 8면)

“취지는 좋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서두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였다. 확실적인 도시 개발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형 도시 개발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 및 문화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대통령 지시에 따른 중앙정부의 활동으로는 일본 세타가야(世田谷)구의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 운동과 같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보는 2006년 1월 12일자 1면, 3면, 31면에 『관주도 범국민운동 추진 논란』, 『‘노무현식 새마을운동’ 성공 미지수』, 『선거용 냄새 풀풀 나는 ‘참여형 도시’』, 2006년 1월 13일자 1면, 8면에 『“선거 악용 가능성”』, 『‘참여형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제하의 기사에서 마치 건설교통부가 선거용으로 관주도 도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나 확인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관주도 범국민운동”, “노무현식 새마을운동”, “선거용 참여형 신도시 만들기” 등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가 없었으며, 아울러 “참여형 도시 만들기 정책”이라는 용어는 본보가 임의대로 작명한 사항이며,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참여형 도시 만들기 위원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참여형 도시 육성계정 신설” 등도 검토과정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보도에 이미 반론을 실었기 때문에 정정·반론 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포스코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외압 논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손 ○ ○ 외 14인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3.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일요서울 : 『포스코 국세청 세무조사 외압논란』 제

하의 기사 (2006년 1월 10일자 4~5면)

내 용 : (전략)국세청 주변에서는 오는 1월 말경에 공시될 포스코의 추정액이 1천700억원대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에 포스코가 여권 핵심 실세 K씨에게 접근, 국세청의 검찰 고발 저지와 추정액 조정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포스코 세무조사와 관련해 여권 실세에 대한 은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 5년만에 벌인 포스코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초부터 30일간 벌여

졌다. 이번 조사는 사업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세무 조사였다. 문제는 9월초부터 3개월 연장돼 지난 12월 19일 끝난 연장 세무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가 평소 신뢰할 수 있는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매출을 약속하며 납품대금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과문이 예상된다.

포스코는 상품권으로 납품대금을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하청업체와 물품 매입채무는 없어지고, 대신 포스코 회계장부에는 주인 없는 돈이 쌓이게 된다. 이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이라는게 의혹의 골자다.

또한 포스코가 법인카드를 통한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상품권 구매가 아닌 일반 상품 구매 형태로 카드 결제를 통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탈루·탈세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략)

결국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가 3개월 연장된 배경에는 비자금 조성, 의도적 탈루·탈세 의혹, 하청업체와 불공정한 거래 방식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추정 금액에 상관없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포스코에서는 추정액을 감소시키거나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해 여권 실세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활동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과 포스코 직원간에 '검찰 고발'과 '압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는 사실이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벌어지던 지난 연말 국세청 직원과 포스코 직원은 대구시내모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심하게 다투 병원신세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까지 간 당사자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 2과 직원, 과문이 확산될 조짐이 일자 병원신세를 진 당사자는 과로로 입원한 것으로 해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1월 10일자 4~5면 『포스코 국세청 세무조사 외압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포스코의 추정액이 1,700억대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에 포스코가 여권 핵심 K씨에 접근 국세청의 검찰고발 저지와 추정액 조정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포스코가 국세청의 검찰고발 저지와 추정액 조정을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기사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며, 추정액이 1,700억대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포스코가 법인카드를 통한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을 현금대신 지급하였다는 정황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되었다”는 내용도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며, “정기 세무조사 후 3개월 연장조사를 통해 하청업체에 상품권 지급을 통한 불공정행위, 비자금 조성 혐의, 법인세 탈루·탈세 등의 혐의가 드러나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라는 보도는 사실확인결과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은 기사내용과는 다른 사유로 연장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지난 연말 국세청 직원과 포스코 직원이 대구시내 모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검찰고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심하게 다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과 직원이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으나, 국세청 직원과 포스코 직원은 조사 진행중에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툼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 사 건 : 2006서울조정38 정정·손배청구
2006서울조정39(2006서울조정38에 병합)
신 청 인 : 손 ○ ○ 외 15인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05-159
대표이사 고 재 구
조정대리인 김 ○ ○
2. 고 재 구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05-159
3. 홍 ○ ○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05-159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는 <별지 2>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요서울> 2면에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같은 활자크기로,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는 신청인 손○○, 한○○, 우○○, 이○○, 최○○, 박○○, 최○○, 백○○, 조○○, 이○○, 정○○, 김○○, 윤○○, 김○○, 황○○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위 피신청인은 위 돈을 2006년 3월 10일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2006년 3월 11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신청인 고재구, 홍○○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6. 2. 9.

<별지 2>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1월 10일자 4~5면에 게재된 『포스코 국세청 세무조사 외압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국세청이 포스코 또는 여권 핵심실세 K 씨로부터 검찰 고발 저지와 추정세액 조정을 위한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세청 공무원이 위와 같이 로비를 받거나 포스코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일요서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6일자 3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포스코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외압 논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홍 철 근)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3.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일요서울 : 『포스코 국세청 세무조사 외압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0일자 4~5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결 정 문

<2006서울조정38의 결정문 참조>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일요서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6일자 3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교양과목 강사인 신청인이 교양과목보다 종교 이야기로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디트News24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디트News24 : 『빛나간 대학 학점문화 ‘천태만상’』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0일자 교
육/문화/스포츠면)

내 용 : 이에 담당과목명과 교수의 성명까지 공개하며 불만을 제기한 학생도 있다. ‘당당한 ○○인’ 아이디명을 가진 학생은 지난 학기 교양수업을 듣고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았다. 어느 교회의 목사이기도 한 강사의 수업은 교양과목보다 ‘교회와 예수’ 등 종교적인 이야기가 수업의 주를 이루었다. 평소 강사의 자질을 의심해왔던 학생은 결국 전화를 걸었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성적기준을 이야기 해달라는 학생 질문에 강사는 “어디서 건방지게 교수한테 기준을 묻냐”며 “너는 일단 대인관계 자체가 잘못된 애다. 꼭 너같은 애들이 있어 피곤하다”고 말했다. 강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레포트를 다시 본 뒤 “너는 F감이다. 내 마음대로 점수 깎을테니까 기분 나쁘면 이의신청을 하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는 식의 말을 했다.

결국, 억울함이 극에 달한 학생은 “나 나름대로 학교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교수는 다시 전화를 걸어 “F로 내리지 않을테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 가자”며 마무리를 지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디트News24는 지난 2006년 1월 10일자 교육/문화/스포츠면 『빛나간 대학 학점문화 ‘천태만상’』 제하의 기사에서 한 학생이 교양수업에서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아 담당과목명과 교수의 성명까지 공개하며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 강사의 수업시간은 교양과목보다 ‘교회와 예수’ 등 종교적인 이야기가 수업의 주를 이루었고, 담당교수는 성적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학생에게 “F학점 감이니 마음대로 해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교양과목보다 ‘교회와 예수’ 등 종교적인 이야기가 수업의 주를 이루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담당강사가 학생에게 F학점 감이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생측의 일방적인 이야기와 게시판의 글만 보고 보도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디트News24는 지난 2006년 1월 10일자 교육/문화/스포츠란에 『빛나간 대학 학점문화 ‘천태만상’』 제하의 기사에서 당당한 ○○인 아이디명을 가진 학생은 지난 학기 교양수업을 듣고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았으며 어느 교회 목사인 강사의 수업시간은 교양과목보다 ‘교회와 예수’ 등 종교적인 이야기가 수업의 주를 이루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 담당 강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왔다.

본인과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강사가 교양과목보다 ‘교회와 예수’ 등 종교적인 강의가 주를 이루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적된 학생에게 F학점 감이라고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디트News24 2006년 2월 7일자 교육/문화/스포츠면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빛나간 대학 학점문화...)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디트News24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7일자 교육/문화/스포츠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 소속 연예인의 수영복 몸매가 화제가 된 것이 홍보전략 덕분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윤 ○ ○)

피신청인 : 스포츠서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스포츠서울 : 『이○○ 환상몸매에 ‘쑥스러운 고○○’』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1일자 19면)

내 용 : KBS 드라마 ‘○○○○’에 출연중인 고○○(18)의 수영복 몸매가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5일 이○○와 함께 수영복을 입은 장면이 방송됐는데요, 몸매로만 보자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이○○가 단연 눈에 띄었죠. 촬영장에서도 이○○의 몸매에 제작진이 놀랄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유독 고○○의 수영복 차림이 화제가 된 건 고교생인데다 소속사의 눈물겨운 홍보 덕분이었지요. 소속사는 방송 이후 고○○가 육감적인 몸매로 관심을 사로잡았다는 등, 방송 3사와 광고계에서 출연제의를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며, 섹시 화보집 등 황당한 제의가 쏟아져 고○○가 고민한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매주 2~3건씩 쏟아내 고○○가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올랐죠. 여고생의 수영복 차림 출연을 2주일 이상 우려먹어 그 나이 또래다운 모습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문○○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중략)

최근 한 10대 여자 신인모델이 광고계에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는 내노라하는 톱스타들이 모델인 광고에 ‘경력관리’를 위해 소속사에서 무료로 출연하겠다는 공을 들인 끝에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남자 신인모델과 커플로 캐스팅됐죠. 광고주와 광고회사는 남자 신인모델을 내세워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여자 모델의 소속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됐으며 보도자료를 돌린 겁니다. 남자 신인모델에 대해서는 한줄도 언급이 없었고 광고회사에서 자사 모델을 칭찬했다는 코멘트까지 지어내서 담았죠. 이 내용이 기사화되자 광고주와 광고회사는 당혹해했고 역대 계약금을 받은 남자 신인모델측도 황급히 보도자료를 냈죠. 이 여자모델은 지난해에도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CF에서 이번과 비슷한 행태를 보여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발끈했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스포츠서울은 지난 1월 21일자 19면에 『이○○ 환상몸매에 ‘쑥스러운 고○○’』제목으로 ‘KBS 드라마 ○○○○’에 출연중인 고○○(18)의 수영복 몸매가 화제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기획사에서 홍보전략으로 나온 결과라고 결론지었으며 그 내용으로 2주일 이상 우려먹어 동료 연예인인 문○○과 비교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텔런트 고○○는 실제로 아름다운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던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

하여 광고 섭외에 화보집 제의를 받아온 것이 결코 부풀려진 내용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꾸며낸 사실이 없으며 동료 연예인인 문○○과 대조를 이룬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기 에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스포츠서울은 지난 1월 21일자 19면에 연예가레터에서 10대 여자 신인모델이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협의없이 보도자료를 돌렸으며 광고회

사 의도와는 달리 함께 캐스팅 된 남자 신인배우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고 홍보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모든 홍보자료를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사전확인을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의도적이거나 임의대로 함께 캐스팅 된 남자 신인 배우를 빼고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오히려 광고주와 광고회사에서는 홍보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보도된 기사 사실 내용은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당혹케 하였다거나 발끈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고의로 휘발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섞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일보 : 『주유소 ‘불량석유’ 판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8일자 4면)
내 용 : 시너나 유사휘발유 등 가짜 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상당수 주유소가 대기업의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불량 석유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화성시 안석동 Y주유소는 ‘H’사 간판을 내걸고 휘발유와 석유화학제품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 판매했고, 동두천시 동두천동 D주유소는 ‘G’사 이름으로 경유에 등유 10%를 혼합해 판매했다 적발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18일자 사회면에서 『주유소 ‘불량석유’ 판친다』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Y주유소는 석유화학제품을 7:3 비율로섞어 판매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Y주유소는 2005년 3월 15일 휘발유를 사입한 대리점 기름이 가짜로 판명되었고, Y주유소는 인위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섞어 판매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경기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31일자 5면)
내 용 : 본보 18일자 4면 『주유소 ‘불량석유’ 판친다』 제하의 기사 중 화성시 안석동 Y주유소는 ‘H’사 간판을 내걸고 휘발유와 석유화학제품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 판매했다는 내용과 관련, 해당 주유소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

난해 3월 17일 시료를 채취한 결과 30%의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것은 사실이나 인위적으로 섞어 판매한 것은 아니라 거래처인 S대리점에

서 받은 기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자신들도 피해자로 불법석유판매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할머니가 숨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대한의사협회 (이사 김 ○ ○),
2. 경남의사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창원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창원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5년 11월 2일 21:00)

내 용 : ▷앵커 : 독감 예방주사 맞은 시진 데요, 접종을 한뒤 마비증세가 나타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 기자입니다.

▷기자 : 오늘 오전 경남 거제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66살 김모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 경남 창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뒤 팔 등의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충남 당진군의 한 보건소에서 70대 할머니가 독감 주사를 맞은 뒤 10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처럼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는 같은 종류의 백신에 대한 사용 중지 조치와 함께 해당 주사 약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안정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나 병원에서 독감 접종 때 환자의 지병이나 몸 상태를 묻는 문진은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둘러싼 독감예방 주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건행정의 핵심인 신뢰와 안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1월 2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잇따 독감 예방 접종 사고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경남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60대 노인이 갑자기 숨져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며, 잇따른 예방접종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6일 경남 창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뒤 팔 등의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충남 당진군의 한 보건지소에서 70대 할머니가 독감주사를 맞은 뒤 10여 시간 만에 숨졌다. 이에 경상남도도는 같은 종류의 백신에 대한 사용 중지 조치와 함께 해당 주사 약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안정성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나 병원에서 독감 접종 때 환자의 지병이나 몸 상태를 묻는 문진은 여전히 형식적이다.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독감예방 주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건행정의 핵심인 신뢰와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것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백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추후 의료 관련 보도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중한 보도를 할 것을 약속한다. □

신청인이 교육부가 자료제공을 기피해 힘들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평준화 보고서’ 참여자들 고백』 제하의 기사 (2005년 10월 30일자 1면)

내 용 : (전략) ◆“두 달 만에 연구”=교육부가 갑자기 평준화 관련 연구를 기획한 것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2001년 학업성취도를 분석,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가 심하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자료 발표 이후 평준화 논쟁이 거세게 일자 교육부는 이 의원 등을 상대로 학력 자료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자체적으로 학력 자료를 활용해 학력 격차를 보는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중략)

◆“교육부가 필요한 만큼만 공개”=이번 연구에 참가한 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학력 자료는 교육부가 필요한 만큼만 공개한다”며 “그 결정은 교육부가 한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실장도 “정부가 자료제공을 기피해 힘들게 자료를 구해 연구진에 줬다”고 밝혔다. 개발원의 다른 연구원은 “보고서 인쇄본이 나온 뒤 학력 정보가 담겨 있는 보고서를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돼 바로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위낙 정보 공개를 꺼리다 보니 연구원들이 주눅 든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5년 10월 29일자 1면에서 『‘평

준화 보고서’ 참여자들 고백』 제하의 기사에서 “두 달 만에 연구”=교육부가 갑자기 평준화 관련 연구를 기획한 것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2001년도 학업성취도를 분석,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가 심하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학력 자료는 교육부가 필요한 만큼만 공개한다”, 강○○ 연구실장도 “정부가 자료제공을 기피해 힘들게 자료를 구해 연구진에 줬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1) 평준화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친 연속 사업 중의 2년차 과제로 교육부와 무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체 기본연구과제이며, 2) 2004년 가을에 수행된 ‘교육격차 연구’는 교육부의 의뢰로 수행된 단기 수탁과제로서 평준화 연구와는 별개의 과제이며, 3)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강○○ 전실장은 “정부가 자료제공을 기피했다”고 한 적이 없으며, “학력 자료를 보유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평준화 연구를 수행 중이던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주선하여 연구가 성사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본지 2005년 10월 29일자 1면 『‘평준화 보고서’ 참여자들 고백』 기사와 관련 한국교육개발원 강○○ 전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평준화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체 기본 연구과제로 ‘교육격차연구’와는 별개의 과제”이며 “정부가 학력자료 제공을 기피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006년 2월 6일자 2면 ‘바로잡습니다’란

에 게재한다.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6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노인회 (회장 안 ○ ○)

피신청인 : 복지연합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6.

처리결과 : 합 의 (정정·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복지연합신문 : (1) 『또 굶아 터졌다!!...노인회 ‘불법 의혹 감사중’』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9일자 1면)

내 용 :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도 모자랄 ○○노인회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건물의 개·보수(리모델링)사업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검은 돈(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중앙회가 지난 2004년 10월 11일부터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에서 김○○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처리문제, 임원선출 절차 미흡문제, 기본재산 10억 원에 대한 법인登記부등본 미등록 문제 등 갖가지 불법과 편법행위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시정조치를 받은 지 1년 여만에 또다시 터져 나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노인회는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라는 오점을 벗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중앙회의 해체 요구와 국내 460만 노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행위로 치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국고를 ○○노인회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보조받았고, 이 사업은 ○○종합건설이 16억 원에 낙찰받아 2004년 6월부터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중앙회가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커미션을 챙겼다는 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략)

현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이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중앙회가 고소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소장의 내용에는 2004년 12월 당시 감리자로 근무하던 담당자에게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앙회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지원금 7천만원 상당을 배정받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중략)

한편 과거 안△△ 前 회장이 새로운 건물 신축을 추진할 당시 이를 반대하고 리모델링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現 ○○노인회 안○○ 회장의 리모델링 작품인 ○○노인회 중앙회 건물은 지난 여름 폭우에 건물에 물이 새는 등 부실공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의 끊이지 않는 비리의혹에 또다시 불이 붙고 있어 그 불뚱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초래되고 있다.

(2) 『○○노인회장, 재출마 반대성명 발표』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6일자 종합면)

최근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은 오는 2월에 있을 ○○노인회 중앙회장 선거에 現 안○○ 회장이 재출마의사가 있음을 인지하고, 성명서를 통해 안회장의 재출마를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지를 천명

하고 나섰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역사 속 대세는 바뀌어 가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장래를 위해 과거 친일파, 군부독재 인사들은 사회지도자로 안주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가장 존경 받는 어른을 모셔야 할 ○○중앙노인회 회장직에 ○○ 노인회원님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힐수 있는 안○○ 씨에게 더 이상 맡길수 없는 현 노인중앙회장 직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안 회장이 과거 제 5공화국 시절 정권유지를 위한 인종학살(삼청교육대) 가해 33사단장이었다는 점과 군부독재의 뿌리단체로 평가되고 있는 하나회의 회장이었던 점을 부각시켜 놓았다.

연합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대세를 확인한 후 더 이상 노인회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안 회장이 재출마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피해단체 임원들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월 9일자 1면에 『또 굶아 터졌다!!...노인회 ‘불법 의혹 감사중’』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노인회 중앙회가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경 관할부처의 감사를 받았고, 지난 2004년 10월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김윤희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처리 문제, 임원 선출 절차 미흡문제, 기본재산 법인등기부 미등록 문제 등을 제기하여 ○○노인회가 마치 불법과 편법의 온상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 추가지원금을 받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부실공사로 인해 폭우 때 건물에 물이 새며,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중앙회의 해체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앙회 건물 리모델링 문제로 지난해 12월경 관할부처(관련부처의 오기임)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중앙회 건물 리모델

링은 조달청의 입찰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결산보고 자료를 제출한 사실 외에는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는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리고 위 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 사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2004. 9. 22.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2005. 12. 28.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은 두 건의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니다.

나아가 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내용과 국고보조금 유용혐의는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실공사로 인해 폭우 때 건물에 물이 새는 사실도 없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중앙회의 해체요구가 있을 것이란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1월 16일자 종합면 『○○노인회장, 재출마 반대성명 발표』란 제목으로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의 성명서를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노인회 중앙회는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의 성명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 단체는 2003년 2월 26일 정기총회 때도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한 바 있고, 또한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도 형사고발해 무혐의로 기각처리되었던 내용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노인회 관계자는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이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문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제기하는 것은 현 안○○ 회장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한 안티세력과 합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복지연합신문 2006년 1월 9일자 1면 『또
 굶아 터졌다!!...노인회 ‘불법의혹 감사중’』 제하
 의 기사 중 ○○노인회 중앙회의 자체 건물의 리모
 델링 사업 과정에서 국고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유
 용한 혐의와 커미션 수수혐의로 관할부처의 감사
 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확인 결과, 이러한 혐
 의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보도에 대해 ○○노인회는 중앙회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조달청의 입찰과정을 통해 공정
 하게 선정된 업체가 공사를 했으며, ○○노인회가
 불법과 편법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와 바로잡습니다.

또한 건물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현 안○○ 회
 장이 고소당한 바는 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받
 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커미션을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가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부실공사를 한 바

없어 건물에 물이 샌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표적 감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해체요
 구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006년 1월 16일자 『○○노인회장, 재출마 반대
 성명 발표』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노인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의 재출마에 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
 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복지연합신문 2006년 2월 13일자 2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복지연합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이 결혼식 비디오촬영을 하지 않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2TV : 「KBS뉴스타임」 프로그램 (2006년 1월
 18일 20:00)

내 용 : <2006서울조정3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저희 뉴스타임에서는 지난 1월 18일 ‘신
 혼 두 번 올리는 웨딩 관련 업체들’이란 제목으로
 모 예식장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아 신혼부부
 의 불만이 크며, 이에 대한 배상규정에 없어 문제
 가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예식장 측에서는 비디오 촬영
 을 스튜디오에 3번이나 확인하였으나 스튜디오
 측의 과실로 인해 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
 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촬영요금의 3배
 를 배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었다고 밝혀왔습
 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청을 수용
 할 수 없다. ☐

신청인 조합이 상가의 용도를 속여 분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송 ○ ○)

피신청인 : 광주MBC-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6.

처리결과 : 취 하

록 건물용도가 지정돼 있어 식당과 같은 일반 상업에는 영업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청 관계자 : “한마디로 말하면 용도가 다 지정돼 있는 그런 시설물이다. 예를 들면 거기 는 자동차부품만 파는 곳이다”

19명의 상인들은 계약당시 부품조합 측이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조합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후략)

보도내용

광주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1월 22일 21:00)

내 용 : ▷앵커 :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단지에 입점하기로 한 상인들이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금을 내고도 1년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강○○씨는 지난해 이 광고를 보고 광주시 풍암동에 있는 자동차부품 단지에 식당을 운영하려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금을 모두 낸 강씨는 아직까지도 식당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구성돼 있다는 광고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자동차 부품 관련 업소에만 입주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자동차 부품 단지에 입점이 시작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대부분의 상점들이 입점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시다시피 상가 전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자동차부품 업소들만 입주하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본 문 : 본방송은 지난 2006년 1월 22일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장사하고 싶다” 제목으로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 분양상가의 용도를 속이고 분양하여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분양 1년여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입점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분양계약자들이 용도를 알지 못했거나 또는 추후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고 신청인이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 받기 전 상가용도가 자동차부품업에 한정됨을 알고 있었고 분양계약 시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업종에 관해 자동차부품관련 상가임을 알고 계약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서명날인 하였으며 분쟁 분양계약자들은 전체분양계약자들의 일부이고 그중 일부는 분양대금도 미납된 상태이며,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 상가 용도에 대하여 속이고 분양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시공한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가 이태리산 제품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거제타임즈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거제타임즈 : (1) 『아주공설운동장 시공 인조잔디는 이태리 ○○○ 브랜드 불인 ‘중국산’?』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8일)

내 용 : 아주공설운동장에 시공된 인조잔디가 이태리산 정품인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거제시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이태리 ○○○사 사장을 극비리에 불러 진품이었다는 확인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이를 무색케 하는 ○○○브랜드를 불인 중국산 제품이었음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거제타임즈는 아주공설운동장에 시공된 이태리 ○○○사 제품 인조잔디가 이태리제 정품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거제시는 이 제품이 홍콩에 있는 ○○○ 공장에서 생산됐으며, 아시아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부 홍콩공장에서 출하되며 이 또한 ○○○사 제품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본사는 ○○○사 제품의 정품여부에 대한 진의를 가리기 위해 추적을 계속한 결과 이태리 ○○○사 홈페이지에서 중국 홍콩에는 공장이 없으며, 중국사무소도 상하이에 있고 공장은 광둥성 회주시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거제시에 납품업자가 제출한 통관 서류에서 이 물건이 홍콩공장이 아닌 중국 광둥성 회주 공장에서 제작된 것임을 밝혀 내고, 거제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바 회주가 홍콩 경제특구에 속해 이를 홍콩공장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엄연히 홍콩은 자치구로서 별개의 행정단위이며 광둥성 회주경제개발특구는 본토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거제시가 밝히고 있듯이 중국현지 공장에서 제작된 삼성, 현대 제품도 꼭 같은 삼성, 현대 제품인 것과 꼭 같은 이치로 이 제품은 ○○○ 홍콩 공장에서 제작한 제품이므로 이태리 ○○○ 제품과 꼭 같다는 주장을 들었다. 그러나 삼성칼라텔레비

전 모니터가 한국에서 제작된 모니터 가격과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작된 모니터 제품이 시중 판매에서 약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할 지라도 이태리산 정품과 중국산 ○○○는 20%~30% 정도 가격차가 난다는 사실을 동종업체들로 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태리 본사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대신 제품의 품질, 기술력 등에서 이태리 본사 제품보다는 일부 성능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 시장 경제에서 저가로 매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지방서에는 분명히 이태리제 정품을 시공토록 해 놓고는 정작 시공은 중국회주공장에서 만든 ○○○ 제품을 통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엄청난 가격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후략)

(2) 『거제시,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관련 해명- ‘의혹해소 미흡’』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31일자)

(전략) 그리고 “인조잔디가 이태리제 정품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기사와 관련 현재는 세계화 시대로 다국적기업 성격상 여러 나라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브랜드가 품질보증과 그 회사의 신망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 브랜드라고 하였음에도 정품이 아니라는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본사는 이 제품을 ‘타사가 제조한 중국산 저가품’이라는 지적이 아니고 ○○○사 제품이지만 중국공장에서 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통상 같은 회사의 제품일지라도 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저가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후략)

(3) 『거제시는 인조잔디 관련 ‘수입관계서류를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4일자)

(전략) 인조잔디의 납품 및 시공을 하도급 받았던 E사의 관계자는 본사 기자의 질문에 대해 “회사의 업무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를 거부했으며, 자기들은 굳이 거제시에 이 사실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었다. 오로지 원도급 회사인 J모 건설에만 알리면 되고 일반상거래상 원가공개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해명이었

다. (중략)

그리고 이 회사는 거제시 아주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양산시 공설운동장, 철원군 공설운동장 등을 시공하면서도 일부 법정시비 등 말썽을 빚은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본사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참고자료로 취재 공개할 예정이다.

(4) 『거제시는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매입에 대한 의혹규명에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 본사가 '중국산'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에 대해 거제시는 당초 FIFA공인제품을 납품 받는 조건으로 발주하고도 이 물건의 검수와 시공과정에서 FIFA의 공인품 인정 여부는 시공사만 믿고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FIFA의 공인제품의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브랜드이름과 모델번호, 공인번호 등이 기록된 라이선싱면허증을 첨부토록 돼 있는데도 거제시는 이를 확인하지도, 이 라이선싱면허증도 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시공을 했던 남해군의 경우에는 브랜드명 Soccerpro 100 모델명 55mm인 FIFA 공인품이 납품됐기때문에 비록 중국 광둥성 회주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이였을지라도 이 라이선싱면허증을 첨부 제출 받았으나, 거제시의 경우는 브랜드명 Soccerpro 100 모델명 mix 55mm FIFA 비공인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라이선싱면허증이 애시당초부터 제시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준공시까지도 미제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건 관련서류가 경남도경에서 수사를 위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실무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만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 또 20인 제품 선정위원회는 회의일자, 회의기초자료, 회의록 등도 밝히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궁금증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J모 원도급사와 일괄하도급 관계에 대해 회계부서가 1차 지적을 해 놓고도 별문제가 없다며 시행부서가 그대로 묵인한 과정과 E사가 이 공사의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이미 거제시에 견적금액을 제시했던 사실이 확인돼 사전부

터 치밀한 로비에 의해서 진행됐을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시가 의혹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사인 E사는 2002년 양산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및 부대시설조성공사 (원도급자 C사)에 인조잔디를 납품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설계서에 있던 독일의 Polytan사 Monotex 50제품을 납품치 않고 네덜란드산 DD Soccergrass TD 50제품을 가격 변동없이 납품했다가 시 실무진과 협의후 오히려 고가품을 납품했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어쨌건 당초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 말썽을 빚은바 있으며, 2004년 10월에는 강원도 철원군 공설운동장 육상트랙공사와 관련해서도 재질이 천연탄성고무바닥재 두께 9mm, 13mm, 18mm, 25mm 폭 1.22~1.80m길이 20m 및 내화성을 갖춘 것으로 시방서에 돼 있었으나 상층부는 합성 및 천연고무 복합물, 두께 8mm, 12mm로서 폭 1.23~1.265m 길이 15.2m 물건을 납품했다는 시비가 일은바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공설운동장, 부천시공설운동장 시공에도 잡음이 있으며 남해군 인조잔디 공사에도 중국에서 출하된 ○○○제품이 납품돼 시비가 이는 등 말썽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 『거제시,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관련 입장 밝혀』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0일자)

거제시가 본사가 주장하는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시공과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10일 실무진을 통해 밝혔다.

시는 이 입장 설명에서 일부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정확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했으며, 공금증 해소에는 미흡하나 경찰청에서 종합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12월 28일자 『아주공설운동장 시공 인조잔디는 이태리 ○○ ○ 브랜드 붙인 '중국산'?』 제목으로 아주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가 ○○○사의 정품이 아니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의 정품이 아니라 그 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사의 정품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사가 중국에 라이선스를 빌려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은 ○○○사가 중국에 라이선스를 빌려준 적이 없고, OEM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사의 제품이 생산하는 공장에 따라 그 품질과 성능이 떨어짐으로 실제 시장 경제에서 저가로 매매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의 제품은 동일한 원자재와 동일한 기계로 생산하여 어느 곳에서 생산하더라도 그 품질과 성능은 동일하며 저가로 매매되지 않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시방서에는 분명히 이태리제 정품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업체가 시방서와 다른 제품을 시공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공업체는 시방서의 사양에 맞는 ○○○ 정품을 사용하였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사 사장을 극비리에 불러 진품이었다는 확인 답변이 무색케하는 ○○○ 브랜드를 붙인 중국산 제품이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 사장이 (주)○○○○○건설을 방문했을 때, 양해를 구한 후 거제시 아주공설운동장에 직접 방문하여 ○○○ 정품임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제조사 사장이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도하였으나, 현장에 방문한 사람이 ○○○사의 사장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거제시 아주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양산시 공설운동장, 철원군 공설운동장 등을 시공하면서도 일부 법정시비 등 말썽을 빚은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양산시와 철원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법정시비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역신문에서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사과문까지 게재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원도급사와 일괄하도급을 하였고 치밀한 로비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일괄하도급이 아니며 로비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양산공설운동장에서 시방서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하여 말썽을 일으키고, 철원군 공설운동장에 시방서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였고, 고양시 공설운동장과 부천공설운동장에서도 시공에 대한 잡음이 있으며, 남해군 인조잔디 공사에도 시비가 이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양산공설운동장, 철원공설운동장 및 남해군 인조잔디 공사에서 시방서에 적합한 규격제품을 시공 및 납품하였음이 밝혀졌고 고양공설운동장은 세계육상연맹에서 세계1등급 공인까지 받은 세계적인 경기장을 건설하였으며 문제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통과관련 기관을 통해 Soccerpro 100mix 55 with line (이하 생략)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통관관련 기관에서 확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1. 정정보도문

- 제 목 :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저희 거제타임즈가 지난 2005년 12월 28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는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사의 정품이며, 시방서대로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철원군 공설운동장 공사에서 시방서에 맞지 않는 제품을 납품했다는 보도내용은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반론보도가 이미 나갔으며 사과문 게재까지 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반론보도문

- 제 목 :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저희 거제타임즈가 지난 2005년 12월 28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는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관련 내용에 대해 시공사인 ○○○○건설측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사의 제품이 생산하는 공장에 따라 그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므로 실제 시장경제에서 저가로 매매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사의 제품은 동일한 원자재와 동일한 기계로 생산하여 어느 곳에서 생산하더라도 그 품질과 성능은 동일하며, 저가로 매매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와 일괄하도급을 하였고 치밀한 로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양산공설운동장, 고양공설운동장, 부천공설운동장 및 남해공설운동장에서는 시방서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하였으며,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시방서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였고 시공상 말썽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거제타임즈 초기화면에 한 달간(2006. 2. 4~2006. 3. 4.)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내용이 보이도록 한다. 단, 첫 일주일간은 메인 탑 위치에 각 제목을 게재하도록 한다. 제목 활자 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 중 <속보1>의 제목 (아주공설운동장 시공 인조잔디는 이태리 ○○○ 브랜드 붙인 '중국산')과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거제타임즈 : (1)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중 1.정정보도문 참조>

(2) 『아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4일자)

<합의사항 중 2.반론보도문 참조>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송 재 성)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3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혼혈인은 몇명? 아무도 모른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3일자 A3면)

내 용 : 한국에는 혼혈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다. 혼혈인 문제를 ‘나 몰라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통계를 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정부는 1978년부터 실시한 일부 혼혈인에 대한 생계비 및 학비 지원을 1998년 중단했다. 1998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은 이 제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혼혈인 관련 지원 정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13일자 3면 『혼혈인은 몇 명? 아무도 모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1978년부터 실시한 일부 혼혈인에 대한 생계비 및 학비 지원을 1998년 중단했다. 1998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은 이 제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혼혈인 관련 지원 정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혼혈인에 대해서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계, 중·고등 학생 학비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다가 2000년 10

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지 지난 1월 13일자 기사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혼혈인 관련 지원정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혼혈인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 정책은 없으나 2000년 10월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하여 혼혈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운

영하고 있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2006년 2월 17일까지 보도하되, 제목(바로잡습니다)크기와 활자는 사진식자 12.5포인트 고딕체로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방위사업청의 차기잠수함 사업이 핵잠수함 사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방위사업청 (청장 김 정 일)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3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일보 : 『한국, 핵잠수함 보유하나』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1면)

내 용 : (전략)핵잠수함 논란은 1일 출범한 방위사업청이 국방부로부터 넘겨받는 사업내용을 밝히는 과정에 잠수함 전력증강 사업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핵심내용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3조 744억 원을 들여 3척의 차기잠수함을 개발, 도입하는 사업(SSX)을 추진한다는 것, 2003년 핵잠수함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2004년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국방부가 공식 부인까지 한 SSX의 사업규모나 일정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척당 1조원 이상 드는 사업규모로 볼 때 SSX는 결국 핵잠수함 사업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익명의 무기 전문가는 “4,500톤 규모인 프랑스의 바라쿠다나 영국의 아스튜드급 공격형 핵잠수함 제작비가 1조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SSX는 핵잠수함으로 추진되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보가 지난 1월 5일자 1면 『한국, 핵잠수함 보유하나』 제하의 기사중 SSX사업인 KSS-Ⅲ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아니며, 현재 운용중인 209급 잠수함의 대체사업으로 독자 건조 추진 예정인 차세대잠수함 건조사업임을 밝혀드립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종합면에 합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분량, 크기 및 형식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방위사업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포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출범 2개월 방위사업청 김정일 청장』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7일자 6면)

내 용 : (전략)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수출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청장은 “국내에서 독자개발한 고등훈련기(T-50)의 중동 수출이 마무리 단계이며 중남아 국가에서 잠수함수입에 관심

을 기울이는 등 올해 10억달러의 방산수출이 예상된다”며 5억달러 목표치의 초과 달성을 낙관했다. 기밀유출사고의 단초가 됐던 본보(1월5일자)보도에 대해서는 “차기잠수함 사업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209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디젤 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하는 사업”이라며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했다. □

신청인 병원이 호흡곤란에 빠진 응급환자를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학교병원 (병원장 성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31.

처리결과 : 합 의(반론)

취 하(정정·손배)

보도내용

한겨레 : 『응급환자 의사없이 5시간 방치』 제하의 기사(2006년 1월23일자 11면)

내 용 : ○○대병원에서 한때 이 병원 의사로 근무했던 응급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지 6시간 만에야 기관내 삽관 기술을 받고 두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환자 가족들은 22일 당직의사의 즉장대응과 미숙한 기술이 심각한 상태를 불렀다고 주장하고, 병원 측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략)

이들은 또 “일요일 새벽이라 당직의사가 내과병동에 2명뿐이었고, 위급한 상황에서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환자 부인이 여러 차례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고, 다급해진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간호사실로 가서 중환자실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면, 성씨는 이날 0시경부터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해 간호사가 6차례 당직의사에게 알리고, 그때마다 의사는 간호사

에게 처방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오전 5시가 넘어 의사가 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고, 한 시간 가량 뒤에 다른 당직의사가 기도를 통해 호흡 보조기구를 넣는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다. 이 의사는 2차례 삽관에 실패했고, 이때 산소포화도(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비율로 90~100%가 정상치)가 40%까지 떨어졌다. 이 의사가 한 차례 더 삽관에 실패하고 마취과 의사가 와서 삽관에 성공하기까지 12분이 흘렀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기관내 삽관은 재빨리 해야 하는데, 12분이 지체됐다면 뇌손상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월 23일자 사회 11면에 『응급환자 의사없이 5시간 방치』 제하의 기사에서 ‘○○대병원에서 한때 이 병원 의사로 근무했던 응급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지 6시간 만에야 기관내 삽관 기술을 받고 두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환자 가족들은 22일 당직의사의 즉장대응과 미숙한 기술이 심각한 상태를 불렀다고 주장하고 병원측은 대응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기록지와 간호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간호기록지상 11월 22일 0시경에는 성○○의 외출 전부터 있었던 기침에 대해서만 호소하는 내용이 있을 뿐 심한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며, 성○○의 호소에 주

치의는 새벽 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한 기침을 호소하는 성○○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였고 폐 x-ray 사진 촬영, 동맥혈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새벽 5시 경에는 직접 방문하여 산소를 주입하는 등 수차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성○○은 새벽 5시 이전까지는 기침을 심하게 하였을 뿐 활력징후 무변화, 산소포화도 등이 정상이었으며, 또한 4시경에도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직접 간호사실로 와서 의사호출을 요구한 바는 없었고, 당시 간호사가 방문하여 상태 확인 후 주치의에게 알려 주치의는 구두처방을 내렸으나 성○○은 자신이 알아서 복용하겠다고 하는 등 이야기를 한 것 등으로 보아 당시 상황이 기사 보도와 같이 응급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한겨레신문이 지난 1월 23일자 사회 11면에 『응급환자 의사없이 5시간 방치』 제하의 기사에서 '○○대병원에서 한때 이 병원 의사로 근무했던 응급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지 6시간만에야 기관내 삽관 시술을 받고 두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환자 가족들은 22일 당직의사의 느장 대응과 미숙한 시술이 심각한 상태를 불렀다고 주장하고 병원쪽은 대응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학병원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에서 인용한 간호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지상의 기재내용 및 도표의 내용도 실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보도는 환자 측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한겨레신문이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의뢰과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병원을 실명으로 보도함으로써 ○○대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밝힌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1월 23일자 11면에 실린 『응급환자 의사없이 5시간 방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대병원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 환자에 대해 고의로 호출에 응하지 않거나 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방치하지 않았다. 5시간 동안 응급상황이라고 불만한 활력징후변화는 없었고,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기자를 상대로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2월 23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2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 실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대안공간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

청 구 명 : 정정·반론→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아트 인 컬처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3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아트 인 컬처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호 148~155면)

내 용 : (전략) 양조위 : 한동안 ‘대안공간 작가군’이라고 라벨을 붙이다시피해서는 대안공간들끼리 돌러가면서 전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안공간 작가군’과 대안공간들간의 집단적 사랑의 시기가 끝나고, 대안공간들이 기업에 러브콜을 던지는 시기가 왔나 봐요. ○○와 ○○○○의 염문설에 이어, ○은 ○○은행과, ○○○○는 ○○백화점이란뭔가를 모색 중이라면서요? 뭐 잘되면 좋지요.

장동진 :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대안공간 네트워크에 이런 규약이 있대요. “대안공간에서 전시를 한 작가는 1년안에 ‘대공네트워크’에 소속된 다른 대안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이 규약이 말뿐인 것 같아서 실제로 따져봤는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규약이 작동한 결과라기보다는 작가들이 1년에 두 번이나 개인전을 여는 일 자체가 드물어서 그렇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소위 ‘대안공간 작가들’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떠나버린 마당에, 뒤늦게 합류한 젊은 작가들에게만 그런 규약을 들이 밀다니 불공정해요. 자기네들은 좋은 거 다 해놓고 말야. (중략)

하워드 스톤 : 전 대안공간들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조직하곤 했던 친목단체 같은 집단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끼리끼리 놀고, 때 되면 그냥 모여서 전시하고.

플라 압둘 : 할아버지 세대들의 ‘○○회’들은 회원개념이라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피아가 명확히 나뉘잖아요. 헛갈리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대안공간 작가군은 그 경계선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게다가 전시공간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금도 여기저기서 먼저 타내니 더욱 문제지요 이젠 완전히 압력단체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중략)

데이비드 핫셀호프 : 전시홍보물에 보면 ‘후원: (주)○○○○산업개발’이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그 나저나, 갤러리는 작가 대접을 잘 해야죠. 오프닝에서 보니까 갤러리측의 감독·지원이 부족한 덕분인지 작품 설치를 마치지 못한 작가도 있더군요.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지옥불처럼 타오르던 모 작가의 눈빛.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류승범 : ○○가 공적자금을 끌어다 쓰는 대안공

간으로 남긴, 상업화랑으로 변신을 하건, 앞으로의 운영 목표와 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중략)

홍록기 : ○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산 집행에 관련해 연간 결산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해본 적이 없어요. 기금을 꽤 받은 해에도 대관전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꽤 후안무치했다고나 할까요. 기금사용 내역은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중략)

고현정 : ○○○○는 운영위원회제가 좀 흔들리면서 이상해졌어요. 윤○○ 전 이사장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균형이 안 맞는 달까요. 모 큐레이터의 사직 과정에서 잠음이 있었죠. 이 사진의 이름이 분명히 입구 유리문에 붙어있었는데, 하나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젠 싹 사라지고 없어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1월호 라운드 테이블면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안 공간 네트워크(사단법인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에 이런 규약이 있대요. ‘대안 공간에서 전시를 한 작가는 1년 안에 대공네트워크에 소속된 다른 대안 공간에서 전시할 수 없다’ (후략)”라고 적시하고 “대안 공간들이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던지는 시기가 왔나 봐요.(중략) 대안 공간 ‘○’이 ○○은행과(후략)”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안 공간 네트워크에는 보도에서 언급된 규약이란 것 자체가 없고 정관에도 작가의 전시를 제약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안 공간 ‘○’은 ○○은행과 일체의 지원 요청이나 후원에 대한 활동을 한 적이 없음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1월호 라운드 테이블면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안 공간들이 ‘끼리끼리’ 모여 활동하고 압력단체화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적시하고 대안 공간 네트워크 소속 ‘○○’가 제대로 감독 지원을 하지 못해 모 작가의 작품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

나지 못했으며 ‘OO’가 상업 갤러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안 공간 ‘O’의 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예산 사용에 의심이 간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대안 공간 ‘프로젝트스페이스 OOOO 다방’의 현관문에 붙어 있던 이사진 명단이 별다른 설명 없이 철거돼 의문이며 ‘프로젝트스페이스 OOOO 다방’의 전 이사장에게 집중된 힘의 불균형에서 운영위원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큐레이터 사직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발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안 공간 네트워크 측은 국내 대안 공간들이 공적 기금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양산하는 압력단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대안 공간 ‘OO’에서 있었던 모 작가의 작품 설치 실패 사건은 작가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고 ‘OO’가 상업 갤러리를 지향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대안 공간 ‘O’는 법인으로서의 회계기준에 맞춰 세무사로부터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안 공간 ‘프로젝트스페이스 OOOO 다방’의 현관문에 붙어 있던 이사진 명단은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주인에 의해 철거된 것이며 ‘프로젝트스페이스 OOOO 다방’의 전 이사장에게 힘이 집중됐다는 보도는 오보이며 운영위원 제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권고 사직된 큐레이터의 경우는 해당 큐레이터의 중대과오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잡지는 지난 2006년 1월호 라운드테이블 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라는 기사 중 사단법인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대안공간 네트워크)와 그 회원에 관한 내용에서, 익명 대담자의 발언 형식을 빌어, 첫째 대안공간네트워크는, 대안공간에서 전시한 작가의 1년 이내 재전시를 제한하는 규약이 있으며, 기금을 위한 압력단체로 변하는 것 같고, 둘째 대안공간 OO는, 갤러리 전시 중 감독지원 부족으로 작가가 작품설치를 마치

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상업화랑으로 진화하는 것 같고, 셋째 대안공간 O은, 후원을 받기위해 OO은행과 뭔가를 모색 중이며, 예산집행과 관련해 연간 결산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고, 넷째 OOOO다방은, 운영위원회제도가 흔들리면서 윤OO 전 이사장의 힘이 너무 강력해 균형을 잃었고, 모 큐레이터 사직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으며, 입구유리문에 붙어있던 이사진의 명단도 사라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첫째 대안공간 네트워크는, 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도 작가의 전시를 1년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는 대안공간 네트워크로 활동하다가 2005. 10.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대안적으로 공공의 이념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고, 둘째 대안공간 OO는, 갤러리 전시에서 감독지원 소홀로 작가의 작품설치에 지장을 준 경우가 없으며, 지금까지 비영리갤러리로서 상업행위를 한 적이 없고, 셋째 대안공간 O은, 전문예술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해 왔고, 기획대관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OO은행은 주거래 은행일 뿐, 넷째 OO은행에 대한 지원 요청이나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없고, OOOO다방은, 어느 한사람이 전횡할 수 없게 공동 운영위원회로 운영되어 왔고, 윤OO 전 이사장도 내규에 따라 성실히 소임을 다하고 퇴임하였으며, 모 큐레이터의 사직은 공식적 절차를 거친 징계조치에 따른 것이고, 이사진의 명단 철거는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아트 인 컬처 “라운드테이블”(원탁좌담) 우측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보도의 제목(“불타는 라운드 테이블”)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2006년 3월호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트 인 컬처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호 16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책광고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

처리결과 : 합 의

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홍보매체 선택시 TV·신문·인터넷·잡지·라디오 중 어느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매체가 효율적인지 협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며 광고배정 역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창구를 국정홍보처로 일원화 한 것은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경기일보 : 『국정홍보처의 ‘정책광고’ 간섭, 부당하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6일자 19면)

내 용 : (전략)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유료 정책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내용과 시기·예산·매체 운영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토록 한 것은 (중략)

협의 과정에서 개별 매체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TV·신문·라디오·잡지·인터넷 등 홍보 매체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 (중략)

하지만 광고배정 ‘창구’를 홍보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홍보처의 ‘입맛’에 따라 광고가 배정될 것은 불문가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26일자 19면 『국정홍보처의 ‘정책광고’ 간섭, 부당하다』 제하의 사실에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유료 정책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시기·내용·예산·매체운영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토록 했다”고 적시하고 “TV·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 등 홍보 매체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야”하며 “광고배정 ‘창구’를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공동명의로 광고를 시행할 경우에 내용·시기·예산·매체운영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하는 것이며 산하기관 독자 광고의 경

합의사항

•제 목 : 정정보도

•내 용 : 본보 1월 26일자 『국정홍보처의 ‘정책광고’ 간섭, 부당하다』 제하의 사실에서 ‘광고배정 창구를 홍보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광고배정은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창구를 홍보처로 일원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유료 정책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내용과 시기·예산·매체운영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토록 했다’는 부분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공동명의로 광고를 시행하려면’으로 바로잡습니다. 산하기관이 독자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TV·신문·라디오·잡지·인터넷 등 홍보매체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기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를 해야 한다’로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에 합의 후 7일 이내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20급으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실력 검증없이 대한펜싱협회 고위층 인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코치와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2인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3.
처리결과 : 조정결정 (반론) (신청인 이의신청)
조정불성립결정 (손배)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월 11일 21:00)

내 용 : ▷앵커 : 성형수술 파문을 일으킨 펜싱 선수에 대한 증징계 논란이 새로 선임된 코치의 자질과 임용배경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펜싱협회는 지난 9일 밤 남○○를 지도했던 이○○ 코치 등 3명을 내보내고 3명의 코치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 가운데 A모 신임코치의 자질과 임용 배경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펜싱인들은 A코치가 실력도 검증이 안 됐고 최근까지 펜싱계를 떠났던 인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펜싱관계자 : 실력이나 뭐 모든 면에서는 주목을 받아 본 적이 거의 없죠. 전 펜싱인들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기자 : A코치는 또 협회 고위층 인사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고위층 인사의 또 다른 아들은 지난해 선발전도 없이 대표팀에 선발돼 기존 선수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불만을 제기했던 남○○ 선수는 그때부터 고위층으로부터 크게 미움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2006년 1월 11일 「KBS뉴스9」 중 스포츠뉴스 프로그램에서 '사단법인 대한펜싱협회는 펜싱국가대표 남○○의 성형수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코치 3명을 해임하고 3명의 코치를 새로 선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협회의 고위층 인사의 아들이 코치로 선임되었고, 또한 그 인사의 다른 아들은 대표선발전도 없이 대표팀에 선발되었다고 방송한 바 있으나, 해당 당사자는 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해 와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2인

조정대리인 변호사 최 용 석, 최 병 천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1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조정대리인 ○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반론보도문을 이 조정결정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KBS-1TV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TV 비평 시청자데스크, 토요일」 말미에 방송하되, 그 내용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17.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11일 「KBS뉴스9」에서, 대한펜싱협회가 성형수술 파문을 일으킨 어느 펜싱선수와 관련한 문책으로 코치 3명을 경질함에

있어 협회 고위층 인사의 아들이 실력검증 없이 코치로 선임되었고, 그 인사의 다른 아들은 지난해 선발전도 없이 대표팀에 선발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들은, 부친이 펜싱계의 고위직으로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아들이 코치로 선임되거나 국가대표선수로 선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외교부 당국자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미국과 사전협의 했다고 시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외교통상부 (장관 반 기 문)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노컷뉴스 :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 압박에 밀렸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일자)

내 용 : 한국 정부는 미국과 스크린쿼터 감축협상을 벌여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음을 시인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개시차 미국을 방문중인 이○○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1일(미국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 등 4가지 요구를 하지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말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요구를 수용했음을 인정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스크린쿼터 축소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CBS 노컷뉴스는 지난 2006년 2월 2일자 보도에서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 압박에 밀렸다』 제하 기사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2월 1일 워싱턴 특파원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 등 4가지 요구를 했었고 작년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사전협의를 해왔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외교부 당국자는 상기와 같은 언급을 한바가 없고,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한미 FTA 출범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는 98년 한미 BIT 협상시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서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출범을 위해 특별히 작년부터 미국과 사전협의를 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노컷뉴스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5일자)

내 용 : CBS 노컷뉴스는 지난 2006년 2월 2일자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 압박에 밀렸다』 제목의 기사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2월 1일 워싱턴 특파원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와 쇠

고기 수입재개 등 4가지를 요구했고, 작년부터 스크린 축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해왔다고 시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상기와 같이 언급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스크린 쿼터축소 문제는 98년 한미 BIT협상시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출범을 위해 특별히 작년부터 미국과 사전협의 해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기획한 공연의 관람료가 과다경쟁과 한탕주의로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거품 빼면 얼마?』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3일자 20면)

내 용 : (진략) '가격 대비 만족도'라는 기준이 작동하면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가슴을 치는 노래, 유려한 프랑스어의 감미로움, 현대 무용의 총합 등 술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VIP 티켓 20만원'은 너무 비싸다. 가격만 단순 비교하자면 이 공연이 과연 영화 '왕의 남자'보다 30배나 많은 감동을 줄까. 프랑스 현지 공연 땀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7만~10만원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짜증이 난다.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극작가 한○○(29) 씨는 좋은 좌석은 아니지만 1만 5000원에 '노트르담 드 파리'를 관람했단다. 그런데 왜 한국에선 공연이 이렇게 비쌀까. 혹자는 몇몇 국내 공연기획사끼리 과다 경쟁을 하는 탓에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 그 몫이 고스란히 티켓에 반영됐다고 한다. 또 다른 이는 프랑스 제작사와 국내 수입사 중간에 낀 브로커가 수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원가가 높아졌다고

도 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공연이라기보다 이벤트로 생각해 '한탕'을 노린 국내 기획사의 욕심이 티켓 값을 올린 배경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지난해에도 VIP석을 20만 원에 팔았다. 뮤지컬로는 첫 20만 원대였다. 덩달아 다른 공연들도 값을 1,2만원씩 슬그머니 올렸다. 올해도 4월 무대에 올려지는 뮤지컬 하나가 티켓을 16만 5000원에 팔고 있다. 정식 공연장도 아닌 2,000석 규모의 체육관에서 하는 뮤지컬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가 지난 2006년 2월 3일 20면에 『거품 빼면 얼마?』에서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공연의 가격이 국내 공연 기획사들의 과다경쟁과 프랑스측 제작자와 브로커간의 수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원가가 높아졌고, 이는 '한탕'을 노린 국내 기획사의 욕심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최사인 (주)○○○테크놀러지는 티켓 가격 책정 근거로 삼았던 '국내 기획사의 과다경쟁'이나 '브로커가 수익을 챙겼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한탕주의 욕심으로 인해 티켓 값을 올렸다'라는 보도 또한 사실과 무관함을 밝혀왔습니다.

참고로 보도되었던 VIP 티켓은 2005년 25만 원에서 5만원이 인하된 20만 원이며, 2005년 13만 원이었던 S석 역시 12만 원으로 1만원이 인하된 가격임을 밝혀드립니다.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도발적 안무·노래·조명 객석 압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0일자 24면)

내 용 :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인 ‘노트르담 드 파리’는 관객에게 낯설다. 아니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익숙해있던 미국 브로드웨이나 영국의 웨스트 엔드 뮤지컬과 너무 다르다.

무엇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일까. 우리에게 익숙한 뮤지컬이란 대체로 이런 것들이었다. 안정적인 내러티브와 그 사이 사이 적절한 장소에 배치된 노래들, 충분히 예견되는 호흡, 그 지루함을 일탈하기 위한 호화로운 무대 스펙타클, 대칭적 구도의 군무와 그 한가운데서 스포트 라이트를 받는 주인공...

그러나 ‘노트르담 드 파리’는 다르다. 기존의 뮤

지컬이 타령조라면 이 공연은 엇박자의 자진모리다. 그만큼 도발적이며 자극적이다. 무대 뒤쪽에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선 무대는 현대조각만큼이나 미니멀하고, 조명은 무심하게 부드럽거나 신경질적이다. 상송과 록을 섞은 업 비트(up-beat)의 열정적 노래들은 뛰어난 가창력과 시적인 대사로 숨막힐 듯이 관객을 연속 공격해대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 없다는 듯 무대 한 편에서는 기존의 안무 구조를 해체해버린 포스트 모던한 춤의 순간들이 제멋대로 도약하고 명멸한다. 특히 전반부 20여분에서 방랑자들과 광인들의 군중장면에서 터져 나오는 브레이크 댄스와 공중돌기의 폭죽은 관객의 심장과 맥박을 제멋대로 뛰게 만들었으며, 에스메랄다의 치명적 매력을 그린 노래 장면(‘아름다워’ ‘사랑의 방향’)에서는 짓눌린 전율이 느껴졌다. (후략) □

농림부가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단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홍 수)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내일신문 :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일자 16면)

내 용 : 농림부가 1,200억 원 규모의 후계농업인 자금지원 사업을 하면서 장관이 회장을 역임한 농민단체에 평가자격을 부여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후계농업인간 상조를 위한 모임에 예산집행을 좌우할 자격을 준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특정 단체에 ‘이권’을 줌으로써 그들

안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농민단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대정부투쟁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림수’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내일신문은 지난 2월 1일자 16면에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특혜 논란』 제목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대해 농민단체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81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약 12만명의 후계농업인을 선발,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후계농업인들이 전업농 등으로 발전하였으나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도 농림부장관이 미래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전문가 등과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지난 '04년도 말에 마련된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방침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05년도에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후계농업인들에 대한 추가지원을 실시키로 정부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06년도 예산에 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을 반영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추진된 사업이며, 농림부장관이 특정 농민단체 출신이어서 새로이 도입된 사업이 아닙니다. 현 농림부 장관은 2005. 1. 4일에 취임하였고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이 사실을 반증합니다.

적격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 한농연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농연」을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이 '특혜'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후계농업인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2006년 2월 1일자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특혜 논란』 제하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기사에 대하여 농림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하여 2004년도 말에 마련된 '정예농업인력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으로서, 우수한 후계농업인을 선택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을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계속 성장·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위 사업의 사업자 평가 및 선정 과정에 포함된 것은 후계농업인들이 대부분 위 단체에 참여하고 있어 위 단체가 지원대상자를 잘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장관이 위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 2006년 2월 13일자 16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농림부, 장관이 회장 역임한...' 활자와 같은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일신문 : 『후계농업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3일자 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 ○ ○)
피신청인 : 시민의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6.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정정)

보도내용

시민의신문 : (1) 『'비민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30일자 1면)
내 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 전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사업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한 사업회의 문제는 송○○ 전 기념사업본

부 본부장 등 3명이 중징계를 당하고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연대가 긴급회의를 여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략)

내부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상층임원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상임이사가 예산수립과 집행 모두를 장악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상층 임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아래로부터의 기획과 시민사회와의 접촉, 건의와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업회는 상임이사가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고, 예산수립을 담당하는 기획실은 상임이사 직속이다. (후략)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체성 ‘흔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30일자 6면)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지난해 추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정체성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으로 내부 감사가 청구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체성 논란의 대표적인 사업은 지난해 기념사업회가 공식 참여한 ‘한·일 우정의 잔치’, 한·일 수교 40년, 해방 60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직된 이 대회는 양국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한다는 목표로 일본 각도시에서 지난 10월부터 오는 2월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한일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참배, 원폭피해자 문제 등 양국간의 외교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재일교포 1~1.5세대 10만여 명에게 삼계탕을 급식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었다.

특히 사업 예산의 대부분인 15억원이 삼계탕 급식에 사용됐다. 기념사업회 내부에서는 이 사업이 ‘삼계탕 프로젝트’라고까지 불리며 심각한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 기념사업회 전 사료관장은 “애초 이 행사는 한일 우정이나 평화교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삼계탕 사업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중략)

양 홍보팀장은 이에 대해 “삼계탕용 닭을 수입하는 업체는 3개 업체로 이 아무개 사무국장은 그

중 하나의 업체 사장일 뿐”이라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일 우정의 잔치 사무국에 문의하라”고 해명했다. (후략)

(3) 『직원 선거지원 진실게임』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30일자 6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이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당 실세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름 동안이나 도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11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했는데도 기념사업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2월이 돼서야 당사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선거운동 지원을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전 기념사업회 사료관장겸 연구소장은 지난 24일 합○○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문 아무개 상임이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합 이사장과 문 상임이사는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서 L 열린우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박 아무개 당시 기념관 건립팀장을 15일(10. 12.~10. 26.) 동안 비공식적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측은 “개인이 무단으로 한 것이지 지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박 팀장은 “할 얘기가 없다”며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중략)

송 본부장은 그날 저녁 “박 팀장 병가처리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최○○ 당시 사료관장과 상의했다”고 말했으며 최 관장은 “그 다음날 주례 팀장회의 직전 당시 이 아무개 당시 총무팀장이 합 이사장에게 ‘박 팀장 문제 처리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후략)

(4) 『‘기념’과 ‘계승’ 사이... 그러나 함께 가야 할 길』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30일자 7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겨난 성과물이다. 그런데 기념사업회 탄생을 두고 제민주화운동단체는 반대했다. 그들은 왜 반대했던 것일까?

애초 시민사회민중진영은 기념사업의 첫째가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명예회복 없이 기념사업부터 한다는 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략)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기념사업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구성과 관련해 계승연대이름으로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2000년에 발족한 계승연대는 유가협등 민주화운동관련 55개 단체가 속한 연대체다. 그러나 계승연대가 추천한 이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념사업회에 대한 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는 무산됐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진영은 2기 기념사업회와 조금씩 사업을 함께하게 된다. 그 대표적 예가 한해 한번 열리는 민족민주열사추모제에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2기가 출범하면서 사업회안에서도 ‘기념사업회가 이렇게 가선 발전이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단체들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사회 문제로 쌓인 골을 구체적 사업을 통해 메워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기 기념사업회가 1기에 비해 현실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기념사업회가 벌이는 사업은 학술적 연구와 자료수집 그 이상은 하지 못했다는 게 민주화운동진영의 대체적 평가다. (후략)

(5) 『‘직위해제’ 징계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30일자 7면)

더 큰 문제는 직위해제를 당한 양○○ 사료수집팀장이었다. 그는 12월 5일 20명 정도에게 기념사업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쓰면서 성명서를 첨부했다. 그 메일들은 지인들을 통해 퍼졌고 문 아무개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도 그 메일을 받게 됐다. 문 이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양 팀장을 불러 직위해제를 구두로 통보했다. 양 팀장은 26일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귀하를 26일자로 직위해제한다’는 직위해제 통보서를 전달받았으며 “그날 사내게시판 공지사항에는 ‘기념사업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고의로 외부인에게 발송한 행위’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양 팀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내용증명을 1월 12일 합○○ 이사장에게 보냈다. 그는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사유 및 근거조항 확인 요구서’에서 “직위해제 사유를 구

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를 제시할 것과 본인의 직위해제 조치가 징계인지 일방적인 인사권행사인지 근거조항과 함께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 기념사업회 홍보팀장은 “사업회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대량으로 밖으로 뱉다”며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전달한 역할은 조직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후략)

(6) 『“사업회는 운동조직이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30일자 7면)

(전략) 양○○ 기념사업회 홍보팀장은 이에 대해 “처음 기념사업회가 인사규정을 만들면서 여러 정부기관과 사업체의 사례를 취합해 만들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사업회의 계약직은 근로기간만 설정돼 있고 나머지 대우는 정규직과 똑같이 비정규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념사업회는 비정규직 위주의 채용형태에 대해서 ‘운동조직’임을 강조한다. 합○○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뜻을 대신 전한 윤○○ 안중근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합 이사장이 처음 이사장에 취임할 당시 기념사업회가 ‘철밥통’, ‘공기업화’ 돼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주변에 주지 않고 열심히 잘하면 같이 임기를 마치고, 자기도 주고 성과도 높이겠다는 뜻에서 합 이사장님 취임초기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의 이같은 고용방식은 내부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게 돼 2006년 채용부터 3급 이하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30일자 1면, 6면 7면의 기사를 통해 『‘비민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체성 ‘흔들’』, 『직원 선거지원 진실게임』 등의 기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비민주적운동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일고 있고, 광복6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한·일우정의잔치를 “이 행사는 한일 우정이나 평화교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삼계탕 사업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됐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고, 또한 직원 선거운동 관련기사에서는 최모 씨의 고발장 내용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기념사업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비민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고 기사의 제목을 붙인 것은 독자로 하여금 기사내용의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왜곡된 선입견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었고, ‘한·일우정의잔치’ 사업이 각 언론사 주일특파원, 주일한국대사관,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 등 다양한 관련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시켜온 경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하였으며, 또한 최모 씨의 고발장을 거의 그대로 기사에 인용하고, 최모 씨가 배포한 유인물이 ‘허위사실유포와 · 이로 인한 업무방해’로 고발되어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에 언급하지 않아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하게 할 수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험난했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동력과도 같았습니다. 민주화 인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땅의 민주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만들어졌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조직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신념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실현하는 일보다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어느 단체든 조직의 안과 밖에서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에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다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업 정신을 대내외에 선언하고자하는 뜻을 밝히는 마음으로 기념사업회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 방법론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약직 채용이라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민주화운동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직원들의 다짐이었습니다. 신뢰의 징표이자 순수성의 객관화인 것입니다.

전 사료관장 최 아무개씨는 계약 관계에서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무리한 계약 연장과 함께 조직에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씨는 조직을 음해하는 성명서를 만들어 전 언론사와 야당에 배포했습니다.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조작까지 담겨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비민주적이라는 것은 최씨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한·일 우정의 잔치’는 광복6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일한국대사관 등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관한 행사이며, 고생하신 재일동포 어르신들에게 점심으로 삼계탕을 대접하였는데, 최씨는 삼계탕 사업을 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하고 개인적인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 조직이 시킨 것처럼 최씨는 주장합니다. 그 어떤 명확한 정황과 증거도 없습니다.

최씨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신문>은 제634호(2006년 1월30일)에서 최씨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확인도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측의 입장을 왜곡하여 최씨의 성명서를 근거로 한 기사에 끼워 맞추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민주화 운동의 위대한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

의 순수성과 민주적인 면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취되는 과업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고비마다 민주주의 열망으로 함께 했던 여러분의 참여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시민의 신문 지난 1월 30일자 1, 6, 7면 『‘비민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하의 기사와 관련, 민주화운동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가. 미래 세대에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다짐한 사업회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업 정신을 대내외에 선언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는 마음으로 사업회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 방법론으로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약직 채용이라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민주화 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조직원들의 다짐이었습니다.

나. 한·일우정의잔치 사업은 광복6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일 한국대사관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관한 행사입니다. 고생한 재일동포에게 점심으로 삼계탕을 대접한 것이지 삼계탕 사업을 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다. 사업회 직원이 지난해 10·26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 무단 결근을 하고 개인적인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직원은 사직을 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민의신문 2006년 2월 20일자 6면 또는 7면에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활자와 크기는 사진식자 14포인트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민의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0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개방형 공무원제가 일부 퇴직 공무원들의 재임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조 창 현)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6.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동아일보 : 『퇴직자 ‘신분세탁’ 거쳐 재임용하기 도』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6일자 A8면)

내 용 : ▽개방형 직위는 퇴직공무원 재임용 수단=5일 본보가 입수한 중앙인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139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출신’은 58명(41.7%)인 반면 전현직 공무원 출신은 81명(58.3%)이었다.

하지만 민간인 출신으로 분류된 58명중에도 개방형 직위 임명 직전까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13명이나 돼 실질적으론 공무원 출신이 94명(67.6%)에 이르렀다.

9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으로 발탁된 K씨는 재경부 공보관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면서 재경부에 사

표를 냈다. 그는 이 기간을 ‘민간인’ 신분으로 기록해 개방형 직위에 응모하여 재경부에 원대 복귀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해 12월 6일자 A8면에 『퇴직자 ‘신분세탁’ 거쳐 재임용하기도』 제목으로 개방형 공무원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기용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개방형제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 임용하는 제도인데 본 신문이 ‘돈세탁’을 연상케 하는 ‘신분세탁’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제도 자체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듯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결 정 문

사 건 : 2006서울조정54 반론청구
신 청 인 : 중앙인사위원회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중앙인사위원회 빌딩
위원장 조 창 현
조정대리인 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윤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반론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A8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의 크기와 활자는 사진식자 12.5포인트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하라.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15.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 지난 2005년 12월 6일자 『퇴직자 ‘신분세탁’ 거쳐 재임용하기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개방형 공무원제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임용하는 제도로서 해당 직위를 반드시 민간인으로 충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가 자격이 없는 퇴직공무원을 민간인 출신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적으로 공직에 재임용한 것처럼 ‘신분 세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금강산 신입생 OT’를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총학생회의 이념성 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도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6.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세계일보 : 『“금강산서 신입생 ‘OT’ 김일성대생들 만나겠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8일자 사회면)

내 용 : 중앙대 총학생회가 올해 금강산에서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과 만나는 신입생 오리

엔테이션(OT)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중앙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올해 개강 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OT를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치고 김일성 대학 측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앞서 학생회는 재학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금강산으로 OT를 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김○○ 중앙대 총학생회장은 “술만 마시는 기존의 OT 문화를 바꿔보기 위해 기획했다”며 “반미 등 정치적인 얘기를 교환하려는 게 아니라 복측 대학생과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체험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신입생들이 참여하는 OT에서 북한 학생과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많아 학생회 내부에서도 최종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금강산 OT’에 대한 내용이 학내에 돌기 시작하자 학생들은 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중앙대 학생이라고 밝힌 도○○씨는 게시판에 “총학에서 금강산 OT를 추진해 신입생 전체에게 ‘투쟁가’를 부르게 하고 특정이념 교육을 한다면 그것을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무시 또는 외면한다면 학생회비 납부 거부나 납부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올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중앙대학교는 총학생회 주도로 금강산 OT를 추진했으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중앙운영위원들과의 내부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금강산 OT’가 무산되고 기존의 OT장소인 평창으로 가게 되었다.
- 2006년 1월 18일자 보도에서 총학생회는 전화통화 설문조사 결과가 재학생의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했으나 OT 장소가 ‘금강산’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 없이 찬성을 유도하는 질문이었다는 문제제기도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되었다.

성과주의에 치우쳐 OT의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신입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금강산’이 아니라 재학생과 신입생 동기들과의 만남과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가늠해 보는 자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강산 OT를 반대한다고 주장한 중앙대 학생도○○(법4) 씨는 총학생회가 한총련이라는 이념성을 띤 단체 소속이므로 금강산 OT를 가서 ‘투쟁가’를 부르게 하고 특정이념 선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을 뿐 그 이유만으로 금강산 OT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금강산 OT를 추진했을 경우 비용 문제나 질차상의 문제 등으로 불참하게 될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의무적으로 가게 되는 OT가 아닌 학기 중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강산이든 어디에서든 OT에서 신입생들에게 교가를 개사한 것이라며 투쟁가를 부르게 하고 특정 이념 선전을 한다면 학생회비 납부 거부나 납부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대표이사 사 광 기

조정대리인 지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세계일보 기사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세계일보 2006년

1월 17일자 사회면 “금강산서 신입생 ‘OT’ 김일성
대생들 만나겠다” 제하의 기사 (이하 이 사건 기
사라 한다)에서 신청인이 중앙대 총학생회에서 추
진하고 있는 금강산에서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이념 문제만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하였음을
전제로, 신청인이 올린 글의 일부만을 기사화함으
로써 보수반공청년으로 낙인이 찍혀 정신적 손해
를 입었다면서, 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
고 있다.

2. 판단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행사하는 권리인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신청
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과 다르지 않

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신청인 주장과 같이 신청인
이 중앙대 총학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에
서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이념 문제만으로 반
대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언
론 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조세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양극화 대책 되레 서민 올린다』 제하
의 기사 (2006년 1월 24일자 1면)

내 용 :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
부가 추진하는 각종 조세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폭
축소 △저소득층 소득 파악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종업원 임금 명세 제출 △소주세를 인상 등 목적
세 인상과 신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저소득
층에게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거꾸로 가는 양극화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동아일보는 2006. 1. 24일자 1면 『양
극화대책 되레 서민 올린다』 제목의 기사에서 양
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조세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
가 있고 조세감면 폭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대상
이 근로자 소득공제대상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정부는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을 위해 근
로자·농어민 및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감면을 줄
이거나 폐지할 계획이 없습니다. 비과세·감면 축

소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R&D 분야에 대한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농어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

전주시 교육청이 학내 전산망 공사를 발주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네트웍스(주)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전주시교육청 입찰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6일자 6면)

내 용 :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웃돈을 얹어 다른 업체에게 쥐여야 하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주시교육청이 학내 전산망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의 부품만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제한함으로써 수주업체가 공사를 포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오히려 낙찰가격보다 9%에 가까운 웃돈을 주고 특정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게 공사를 일괄 하도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수주업체가 부담함을 호소하고 있다.

학내 전산망공사와 관련한 특정업체와의 사전담합 의혹은 전주시에 이어 익산교육청에서도 제기돼 이 같은 입찰부조리가 만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전주시교육청이 발주한 학내 전산망공사를 기초가격(1억1,990만원) 대비 87.4%인 최저가격(1억440만원)에 수주한 (유)○○정보통신에 따르면 침입방지시스템 등 전체 공사비의 90% 상

당을 차지하는 10여가지 부품이 특정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만 사용하도록 제한됐다. ○○정보통신은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A/S확약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방서상에 명시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제조회사에 의뢰했지만 전주지역의 ○○네트웍스(주)라는 업체에게만 공급하도록 계약됐다는 답변과 함께 부품 공급을 거절당했다.

이후 ○○정보통신은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네트웍스에 시공을 의뢰하자 이 회사는 ○○정보통신이 수주한 낙찰금액 1억440만원보다 8.6%(900만원)나 많은 1억1,300만원을 요구했다.

○○네트웍스는 전주시교육청의 학내 전산망공사에 응찰, 기초가격 대비 98.4% 수준인 1억1,800만원을 써서 11위에 기록된 바 있다.

관련 업체는 특정부품을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명시한 뒤 ‘작업비’를 요구하며 공사권리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사전담합 사례에 해당한다며 전주시 교육청의 입찰행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반론보도문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2월 6일자 6면에 『전주시교육청 입찰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전주시교육청이 학내 전산망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의 부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고, ○○네트웍스(주)만이 이 부품의 전주지역 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공사수주업체가 부품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수주업체가 ○○네트웍스에 시공을 의뢰하자

수수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다. 이는 특정 부품을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명시한 뒤 ‘작업비’를 요구하며 공사권리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사전담합 사례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부품은 ○○네트웍스(주)가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떤 업체든지 제조업체로부터 부품과 제조자 공급증명원 및 A/S확약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 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사전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웍스(주)는 “자체적으로 부품가격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적정시공가격을 산정하여 전주시교육청의 전산망공사 발주에 응하였으나 다른 업체의 저가응찰로 인해 낙찰받지 못했다. 이러한 지나친 저가응찰로 인해 낙찰가격이 부품의 시장조달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낙찰업체가 시공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낙찰업체가 시공이 가능한 금액을 문의해 오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금액을 알려준 것인데도 마치 특정부품을 사용토록 발주처와 담합하고 작업비를 요구한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으며, 시공경험도 없이 부품가격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않고 무조건 저가응찰하여 공사를 수주하려는 업계

의 관행이 문제”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새전북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5일자 2면)

내 용 : 본지 2월 6일자 6면 ‘전주시교육청 입찰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주시교육청과 ○○네트웍스(주)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방서에 특정 부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네트웍스(주)는 “해당 부품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업체든 제조업체로부터 부품과 제조자 공급증명원 및 A/S확약서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 ○○네트웍스(주)는 낙찰 업체가 시공이 가능한 금액을 문의해 오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마치 특정 부품을 사용토록 발주처와 담합하고 작업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학내전산망공사’에 대한 시공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부품가격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저가에 수주하고 보자는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

신청인 회사가 주장한 여론조사가 다른 기관의 의뢰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마케팅○○○○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네티즌 10명 중 8명 “신문 1개 이상 읽어”』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7일자 A14면)

내 용 : 인터넷 세상이 활짝 열렸고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네티즌 10명 중 8명은 여전히 1개 이상의 신문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마케팅○○○○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네티즌 9만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종이신문 이

용행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주일 동안 매일 평균 10분 이상 읽어본 신문”을 묻는 질문에는 조선일보가 40.9%로 1위를 차지했으며, A일보(38.3%), B일보(31.9%), C신문(15.7%), D일보(9.7%) 순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월 7일자 A14면에서 『네티즌 10명중 8명 ‘신문 1개 이상 읽어’』 제하의 기사에서 ‘9만명 조사...열독률 조선일보 1위’라는 부제하에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마케팅○○○○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네티즌 9만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종이신문 이용행태 조사에서 조선일보의 구독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상기조사는 마케팅○○○○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기획조사의 일부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가 의뢰한 적이 없으며, 사전 허가 없는 인용으로 마케팅○○○○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6일자 A2면)

내 용 : 본지 2월 7일자 A14면 『네티즌 10명중 8명, 신문 1개 이상 읽어』 기사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종이신문 이용 행태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마케팅 ○○○○’(대표 김○○)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기획 조사의 일부로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가 의뢰한 적이 없으므로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단체의 회원들이 동국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자유개척청년단 (장관 최 ○ ○)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보수단체 난입, 무차별 학생 폭행 동국대 아수라장』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8일자)

내 용 :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는 8일 오전 동국대 본관 앞이 이념 충돌의 장이 됐다.

이날 본관 앞에서는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파면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강 교수 직위해제철회를 요구하는 동국대 학생들

이 불과 20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시위를 벌였다.

자유개척청년단,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나라사랑 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이사회가 열리기 40여분 전부터 나와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친북반역자 강○○를 즉각 직위해제, 파면해 영구히 교단에서 추방하라”며 “사법부는 강○○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해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강○○에 대한 정상적 법집행이 현실권력에 의해 좌절될때 국민저항권을 행사해 직접 강○○ 비호자들과 친북반역자 강○○를 응징할 것을 결의하자”고 소리 높였다.

이와 함께 강○○ 교수 사건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대책위원회도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동국대는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강의배정 철회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월 첫째주에 강의배정 과정에서 학교 당국에 의해 1학년 핵심교양과목인 ‘인권과 평화’가 강의에서 제외됐다”며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나 먼저 시위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생들의 시위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시위는 시작 3분여만에 한바탕 몸싸움으로 번졌다. (중략)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학생들 사이에 거센 몸싸움이 이어졌고 일부 욕설과 주먹질이 오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 같은 친북반역자가 어떻게 교수냐”면서 학생들을 밀치며 옥박질렀고 학생들은 “당신들이 뭔데 우리 의사 표현을 막냐”며 대응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인터넷신문 데일리 서프라이즈는 지난 2월 8일 자 『보수단체 난입, 무차별 학생폭행 동국대 아수

라장』 제하의 기사에서 “강○○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관한 자유개척청년단,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나라사랑시민연대 등이 강○○의 직위해제에 반대하는 동국대학교 대책위 학생들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자유개척청년단,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나라사랑시민연대 회원들은 동국대 학생들과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지만 무차별 폭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실 보도이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 □

영주시 선비촌 위탁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직영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손님을 독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3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개발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안동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안동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5년 11월 28일 21:00)

내 용 : ▷앵커 : 영주 선비촌 저자거리 상가들이 무기한 영업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선비촌 위탁업체가 직영 식당을 내 단체손님을 유치해 가는데다 임대료도 갑자기 20%나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기자 : 영주 선비촌의 명물인 저자거리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식당과 매점, 도자기, 은장도 공방 등 상당수의 상가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선비촌 안 저자거리의 11개 상가 가운데 9곳이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영주시로부터 선비촌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개발 측이 지난 9월, 직영식당을 내면서부터입니다.

▷상가관계자 : 단체손님 다 가. 우린 안돼.

▷기자 : 장사가 잘 안되는데다 체험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가 임대료가 1년만에 월 120만원으로 20%나 인상된 것도 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위탁업자인 ○○개발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데다 상가들은 무기한 영업중단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선비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28일 「MBC뉴스 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선비촌 저잣거리 상인들의 무단 파업사태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선비촌 위탁업체가 직영하는 식당에서 단체손님을 유치해가는 데다 임대료도 갑자기 20%나 인상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선비촌(주)○○개발에서는 사업장의 수익을 독점하려하지 않았으며, 단체 손님의 유치는 단체의 특성(인원,희망사항)에 따라 각 식당에 차례별 분배를 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임대료는 1년 단위 계약 체결이었으며, 계약의 만료 1개월전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 재계약을 하기위해 쌍방이 협의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선비촌 저잣거리에는 영업 중인 10개 상가와 미분양된 2곳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상가가 있으며, 이중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는 2곳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파업 시점 역시 관람객 이용 추이가 비수기로 접어드는 무렵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당시 주말을 이용해 선비촌을 찾은 관광객이 690명(유료510명/무료180명)으로, 파업전 주말인 11월 19일 1,515명(유료966명/무료549명), 20일 1,746명(유료1,264명/무료482명) 비해 크게 줄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월 임대료가 120만원이 되는 상가는 2005년 신규 계약상가와 무단파업에 참여치않은 식당 두 곳 뿐이었으며, 체험 상가는 임대료 20%를 인하하였습니다. 식당은 각 업주와의 협의 후 임대료 20%인상을 인정하고 재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보도내용이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후속(반론)보도는 수용가능하나, 정정·손배는 수용할 수 없다. □

영주시 선비촌 위탁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직영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손님을 독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4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개발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영주시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나...위탁업체 상가 “불협화음” 제하의 기사 (2005년 11월 28일자)

내 용 : 〈2006대구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대구조정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보도내용

영주시민신문 : 『도와주지 못할망정 손님까지 빼앗

〈2006대구조정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피신청인 주장

〈2006대구조정3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수용이 불
가능하다. □

신청인이 주택 용도 건물에서 불법으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3.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24일자 호남판 14면 『주택 용도
건물서 버젓이 술장사』 제하의 기사에서 ㄷ식당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둔갑시켜 술집과 식
당을 겸업하면서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주차난과 소음공해
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나 사실확인 결과, ㄷ식당은 관계 당국으로
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근린주택 2종지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밤 12시
까지 영업을 하면서 간단한 주류와 식사를 제공하
는 건전한 업소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 『주택 용도 건물서 버젓이 술장사』 제하
의 기사 (2006년 1월 24일자 14면)
내 용 : 전남 여수시 소호동 김아무개(54)씨 등
주민 27명은 23일 “주택가에 들어선 ㄷ식당이 주
택 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둔갑시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ㄷ식당은 2000년 5월 여수시 소호동 기존 건물 1
층 식당(29평) 옆에 10평 규모의 목조건물을 신축
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다. 기존 건
물은 전통 찻집으로 운영하고, 새 목조건물은 서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ㄷ식당은
2000년 9월까지 주택 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무
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략)
주민들은 “ㄷ식당이 주택가에 일반음식점(식당)
으로 허가를 받아 술집과 식당을 겸업하면서,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며 “목조건물의 심
야영업 때문에 주차난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
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ㄷ식
당은 식사를 취급하면서 부분적으로 술을 곁들여
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산맥〉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한겨레」 2006년 1월 24일자 호남판 『주
택 용도 건물서 버젓이 술장사』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산맥〉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여 왔으며, 심야에 소란
을 피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
다.
- 피신청인은 2006년 2월 2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
행하고 호남지역에 배포되는 〈한겨레〉 13면 또는
14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
사의 중간제목 ‘여수 소호동 주민 집단민원’과 동

일한 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박스기사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을 취하하고,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산맥>과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산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8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장이 수천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레저(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세계일보 : 『‘관광공 카지노’ 악전고투』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3일자 2면)

내 용 :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레저(주)가 지난 1월 말 서울 삼성동에 ‘○○○’ 코엑스 센터점을 오픈하고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을 시작했으나 본격 영업 한 달도 안돼 내외외환에 흔들리고 있다.

검찰이 ○○○○○○ 임직원의 카지노보안업체 선정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나선 가운데, ○○○의 시설 중 일부가 영업장 개설이 불가능한 용도로 밝혀져 14일 열리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지난 1월 27일 정식 개장한 ‘○○○’ 코엑스점은 당초 서울 강남 한무컨벤션 별관 2·3층에 국내 최대 규모로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판매 및 영업 시설’인 3층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현재 2층에는 테이블 45대, 머신 130대를 설치해 ‘반쪽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는 일일평균 고객이 500여명밖에

에 되지 않아 하루 수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관광공사 측은 이 때문에 적자 등을 이유로 신규 개장 예정인 부산 영업장과 서울 강북 영업장의 사업중단 여부를 한때 신중하게 재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민간 카지노업체는 ○○○의 개장에 따른 달러 및 경력 직원 스카우트로 영업차질을 빚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카지노협회는 “최근까지 ○○○카지노의 인력빠가기로 680여명이 이탈, 제주 지역의 경우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의 카지노업체인 파라다이스부산(주)은 지난해 12월 “달러, 마케팅 등 영업 핵심 인력에 대한 스카우트와 고객정보 유출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에 제소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세계일보는 2006년 2월 13일자 2면 『‘관광공 카지노’ 악전고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에는 일일평균 고객이 5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하루 수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였고, 관광공사측은 이 때문에 적자 등을 이유로 신규 개장 예정인 부산 영업장과 서울 강북 영업장의 사업중단 여부를 한때 신중하게 재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였고, 한국카지노협회는 최근까지 ○○○카지노의 인력빠가기로 680여 명이 이탈 및 달러, 마케팅 등 영업 핵심인력에 대한 스카

우트와 고객정보 유출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레저(주)는 하루 수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 않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 ○○○ 코엑스센터점 2·3층을 영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2층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매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업초기 단계에서 적자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관광공사측은 적자 등을 이유로 신규 개장 예정인 부산 사업장과 서울 강북영업장의 사업중단 여부를 재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는 현재까지 전문딜러의 경우 타카지노 업체 경력직은 221명(강원랜드출신 81명 포함)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신규직원을 채용해 기존 카지노업체 인력유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경력 및 신규 직원 전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원인 만큼 스카우트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카지노 관련 반론보도
- 본 문 : 본지 2월 13일자 『‘관광공 카지노’ 악전고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레저(주)는 최근 개업하여 아직은 수지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 부산점과 서울 강북영업점의 사업중단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인원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6. 2. 25. 까지 세계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본문활자와 같은 고딕으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카지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종갓집 땅을 처분하고 노모와 자식들의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4.
처리결과 : 합 의(정정)
취 하(손배)

보도내용

MBC-TV : 「꼭 한번 만나고 싶다」 프로그램 (2005년 9월 23일 19:00)
내 용 : (전략) 10년후,
▷나레이터 : 그 후 아버지는 젊고 예쁜 새 어머

니와 재혼을 하셨지만 나와 동생은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 이 한 밤중에 니가 여긴 웬일이냐?

▷아버지 : 죄송해요, 어머니. 부도가 났어요.

▷할머니 : 뭐?

▷아버지 :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저희들 여기있게 해주세요.

▷나레이터 : 그렇게 아버지는 새 어머니와 이복동생을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 야, 이 놈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 생겼어?

▷모두 : 하하하하

▷아버지 : 자, 가위, 바위, 보.

▷나레이터 : 어릴 땐 그토록 다정한 아버지였던

만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는 어느새 나에게서 정이 떠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 절대 안된다. 니 사업인지 뭔지 때문에 있는 땅 다 판지가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 : 그러니까 그 재산 다시 찾아야죠. 이 집만 팔면...

▷할머니 : 아범아.

▷새어머니 :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할머니 : 시끄럽다. 니가 어딜 끼어들어, 들길...

▷넌 내 며느리가 아니다. 알았냐?

아버지 : 차라리 나가겠습니다.

▷할머니 : 뭐야?

▷아버지 : 어머니랑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희가 나가겠다고요.

▷할머니 : 알아서 하거라.

▷아버지 : 대신 ○○이도 데려가겠습니다. 이제 ○○이도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됐으니 제가 데려가 공부 시키겠습니다.

▷할머니 : 니가 모처럼 애비노릇을 좀 하려나 보구나. 음...

서울 아버지네

▷나레이터 : 하지만 서울 아버지 집에 보내진 나는 고등학교는커녕 매일 가정부처럼 일만 해야했고...

1년후

▷박○○ :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 아이고 이게 누구냐. ○○이 아니냐.

▷박○○ : 할머니

▷할머니 : 아이고 ○○아. 아이고 내 새끼

▷나레이터 : 결국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난 늙고 병드신 할머니를 대신해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줄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혼자 심으로 간호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전남 진도

▷박○○ : 할머니, 할머니 눈 좀 제발 떠보세요, 예?

▷할머니 : 내가 니들한테 너무 죄가 많다. 이 할미 죄 때문에 니들이 너무 고생하며 살았어.

박○○ :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거두지 못한 저... △△이와 저 이렇게 크게 해 주신게 누구 덕분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 : △△아, 너 시집 가는 거 못 보구 죽는구나. 제일 가슴이 아프다.

▷박△△ : 할머니, 할머니 조금만 힘 내세요.

▷박○○, 박△△ : 할머니, 할머니...

▷나레이터 : 때론 아버지였고, 때론 어머니였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께서 저 세상으로 가시던 날, 나와 동생은 마치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9월 23일 방송된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두 번째 방송인 '40년간의 그리움'에서 박○○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를 내어 종갓집의 땅들을 처분해왔던 것처럼 표현했으나, 확인 결과, 그 당시 박○○의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에 게셨던 걸로 확인되었으며, 재연극과는 달리 노모와 자식들을 부양해 왔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박○○의 새어머니도 시어머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처럼 방송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박○○의 부친이 박○○의 친모와 헤어진 후 10년 만에 재가하신 터라 문중에서 모두 반겼으며, 전처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살피왔던 걸로 정정합니다.

극 중 1985년 박○○, 박△△ 두 손녀가 진도에서 할머니의 임종을 쓸쓸히 맞는 것으로 방영하였으나 할머니의 임종은 박○○이 이미 결혼하여 손주 둘까지 안겨드린 1996년 이었으며, 광주 하남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모든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임종을 맞으셨던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이 '아버지와 새 어머니 댁에 고등학교를 보내준다고 갔으나 가정부처럼 일만 해야 했다'는 내용이 방영되었으나, 이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며, 확인 결과 여건상 박○○은 친척집에서 중학교를 다녔으나, 그 중학교가 야간이고 졸업장이 인정이 안되던 터라, 이에 아버지도 몹시 상심하시며, 두고두고 가슴 아파 하셨다고 하며, 그 후 아버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간호 조무학원에 다니게 하셨으며, 지인을 통해, 광주기독병원에서 간호사로 취업하게 해주셨으며, 상당부분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이에 정정합니다.

극 중 아버지가 친모와 헤어진 10년 후 새어머니와 다 큰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으나 아버지의 재가가 10년 후라 그때는 아이가 없거나 갓난아이어야 하며, 이 또한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역측의 가능성이 있어 정정하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작년 9월 23일 방송된 '40년간의 그리움' 편 내용과 관련해 출연자 박○○씨의 이복동생은 1. 아버지는 사업등을 이유로 유산을 처분하거나 가산을 탕진한 사실이 없으며, 2. 할머니는 1996년 광주광역시

우산동 소재 하남주공아파트에서 많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였고, 3. 아버지는 전처와의 혼인기간 중 외도하지 않았던 바, 이는 박○○의 막내동생은 1965년생이고, 이복동생 중 맏이는 1971년생인 점으로 미루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은 이 보도와 관련 별도의 민·형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MBC-TV 2006. 3. 10. 이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프로그램 말미에 청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수퍼자막(아래서 위로 올라가는)으로 10초간 방송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꼭 한번 만나고 싶다」 프로그램 (2006년 2월 24일 19: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화성시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부일보 : 『화성 임대주택 건설 이제 그만』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3일자 19면)

내 용 :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화성지역 택지개발지구 예정지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 계획을 수립. 발표하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해당 지역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사업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화성시와 시의회 등은 주공과 토공 등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중재하고 있으나 결정권한이 없어 중앙정부에 붓

물처럼 터지는 주민 민원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중략)

토공, 주공 등은 건교부가 지구지정을 확정된 뒤 부지매입 등 사업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

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김○○ 차장은 “화성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무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주공 역시 임대아파트 사업 등은 공공의 목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건립 계획 변경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월 13일자 19면 『화성 임대주택 건설 이제 그만』 제목으로 토지공사 경

기지역본부 김○○ 차장은 “화성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무효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

부 김○○ 차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신청인 회사들이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주)○○건설 (대표이사 손 ○ ○)

2. (주)○○건설 (대표이사 유 ○ ○)

피신청인 : 우리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4.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우리일보 :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9일자 1면)

내 용 : 평택시가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용이지구(20만평) 도시개발사업에 특정 건설업체가 6만 여평의 아파트부지를 독점해 추진과정에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사업지구 전역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임에도 행정권한이 형식에 그쳐 매매에 따른 적법성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로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된 후 지역 건설업체가 토지와 주택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사업권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장이 시행자로서 혼용방식(환지 및 수용방식)에 따라 시행하는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인 J와 S건설사가 수백억의 자금을 동원해 토지를 매입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와 건설사가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제반 법규를 원칙대로 적용하거나 준수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위 건설사가 매입한 토지는 전체사업지구의 40%가 넘는 8만5천여평에 달해 환지계획에 따른 지분율로 용이동 93-3번지 외 105필지의 공동주택지를 사실상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의혹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 건설사에게 아파트 부지를 환지해준 경위다.

이는 공동주택 구역이 미확정 상태였음에도 사전에 특정 업체를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6만여평의 아파트부지 소유권자로 선정해 준 결과를 낳아 토지공급의 특혜시비를 부추기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5년 12월 19일자 1면에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 건설업체인 J와 S건설사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 건설사가 6만 여평의 아파트부지를 독점했으며, 공동주택구역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사전에 특혜를 받은듯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J와 S건설사는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매입한 토지도 8만 5천 평이 아닌 6만 4천여 평이며, 환지로 6만여 평의 아파트부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2만3,500여 평을 취득하였을 뿐, 위 건설사가 집단환지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성한 500자 이내의 반론 보도문을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 그대로 제1면에 보도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고 나머지 민사적인 배상도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우리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0일자 1면)

내 용 : 지난 2005년 12월 19일자 1면에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건설업체인 J와 S건설사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 건설사가 6만 여평의 아파트 부지를 독점했고 공동주택구역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사전에 특혜를 받은듯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J와 S 건설사는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건설사들이 집단환지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황우석 박사의 지지자를 마약중독자에 비유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SBS-R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5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SBS-R : 「진중권의 SBS전망대」 프로그램 (2006년 2월 6일 06:05)

내 용 : 지난 달 대구에서 있었던 음독사건에 이어, 지난 토요일 새벽에 한 남성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 재개’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분신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번 일이 황우석 박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마지막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태가 비판적으로 흐를수록, 황우석 지지자들의 대응도 극단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황교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 어느 신문은 이를 “강하게 믿고 추앙하던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후에 나타나는 충격의 후유증”이라고 분석했네요.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에 무게를 뒤서 현

실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정서에 무게를 뒤 전면 부정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 지는데”, 평소에 “정서적 측면에 기대는 사람들은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문제는 인터넷 사이트들입니다. 어느 대표적인 친노 사이트는 최근 황우석 지지자들이 모여 ‘사실’에 애써 눈을 감은 채 서로 간에 ‘믿음’을 강화해주는 해괴한 신앙의 공동체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황박사 비판자들의 이름을 적은 이른바 ‘매국노 살생부’까지 올라와 있더군요.

더 큰 문제는 방송입니다. 가령 KBS에서 내 보낸 어느 생방송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떠도는 황박사 지지자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공중파로 내보내, 믿음과 사실의 경계를 허물고, 믿음이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지요.

대중의 패닉. 우려했던 일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일어난 사건, 이 착란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한,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요. 극단으로 치닫는 황우석 신드롬. 이제라도 사회가 관심을 갖고 치유에 나서야 합니다. 마약은 황홀하고, 금단은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아프지 않은 치료는 없지요.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2월 6일 SBS-R 06:05 「진중권의 SBS전망대」 프로그램 “황우석 신드롬, 사회가 치유해야” 제하의 보도내용이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SBS(SBS-R)

서울 양천구 목동 920

사장 안 국 정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R 「진중권의 SBS전망대」 프로그램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6년 2월 6일 06:05 SBS-R 「진중권의 SBS전망대」 프로그램 “황우석 신드롬, 사회가 치유해야” 제하의 방송에서 한 남성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황우석 박사의 지지자들을 ‘마약에 절어 있는 중독자’에 비유해 황우석 박사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심대한 인격적 모욕감과 상처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행사하는 권리이므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위에서 본 ‘피해자’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하는 바, 이 사건 조정대상방송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 없고 신청인이 위 방송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것 없이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언론 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1.

<별 지>

2. 판단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게임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5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게임신문 : (1) 『박회장 이번엔 허위 이력 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11월 21일자)

내 용 : - 후보 이력서에는 2004년 ‘○○넷’ 경영
- 사업자등록증에는 2005년 1월에 공동 사업자로 추가

- 정회원 자격 1년 유지해야 중앙회장 출마 가

능 조항 위배

넷○○ 서부 출판 문제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박○○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이 이번엔 2005년 3월에 실시된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때 제출한 이력이 허위라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중략)

현행 협회 규정에 따르면 지회장은 해당지역에 6개월간 정회원으로 있어야 하며 지부장의 경우 1년 이상 해당지역에서 정회원으로 자격을 유지해야만 피선거권의 자격이 주어지며, 중앙회장의 경우 1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후략)

(2) 『박 회장 사업자등록증 공개 왜 질질 끄나?』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9일자)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박○○ 중앙회장 허위 이력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박 회장은 2000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PC방을 경영하지 않았다는 증언들과 증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허위 이력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박 회장 측근들의 증언과 본지 조사에 따르면 박 회장이 직접 경영한 사업체는 97년 1월 충남 서산에서 신발가게를 시작으로 99년 11월 18일 부천시 원미구에서 ○○○ PC방을 열었다가 2000년 9월 30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회장은 부회장 시절을 포함 4년여 동안 PC방 경영은 하지 않다가 2005년 회장 입후보를 위해 2005년 1월에 인투넷 PC방에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회장이 후보 이력서에 2004년부터 경영했다고 주장하는 ○○넷 PC방은 박 회장이 PC방을 연 시기와 같은 해인 99년 5월 15일에 박모 씨가 문을 열었다. (후략)

(3) 『“회원 자격도 없는 박 회장은 사퇴하라”』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9일자)

지난 8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게시판에는 본인이 서초지회장임을 밝히며 ‘현 중앙회장인 박회장은 자격도 없는 회장이니 사퇴하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협회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은 “서초지회장으로 현중앙회장인 박○○ 회장의 이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박 회장의 선거 참모로 뛰었으며 당선후 2~3

개월이 지나서 박 회장이 회원 자격도 없는 사람임을 알았다.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불찰에 대해 협회 회원과 대의원에게 용서를 빈다”라는 것이었다.

게재된 내용에는 그동안 게임신문에서 지적했던 1년 이상 PC방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추가로 선거 당시 한 PC방(부천소재 ○○넷 PC방)에서 두 명의 임원(중앙회장과 부친 부지회장)이 출마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참모임을 밝히는 서초지회장의 글에 대해 현재까지 박 회장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광주지부장은 게시판을 통해 “차기 이사회의 안건으로 박 회장 문제에 대해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005년 11월 21일자 『박 회장 이번엔 허위 이력 의혹』, 12월 19일자 『박 회장 사업자등록증 공개 왜 질질 끄나?』, 2006년 1월 9일자 『“회원 자격도 없는 박 회장은 사퇴하라”』 등 제하의 기사에서 현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이하 문협) 회장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몇 가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첫째로, 인문협 정관이나 협회 규정 중에 ‘1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회장 출마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로, 박회장은 2004년 7월경부터 박모 씨와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체결, PC방 운영에 종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회장 출마 당시 제출한 이력서 기재사항 중에 ‘2004년 ○○넷 PC방 경영’ 부분은 허위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로, 박회장은 회장으로 출마하기 전 1년 이상 법인PC방인 ‘○○’과 ‘○○넷 PC방’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내 용 : 본지 지난 2005년 11월 21일자 『박 회장 이번엔 허위 이력 의혹』, 12월 19일자 『박 회장 사업자등록증 공개 왜 질질 끄나?』, 2006년 1월 9일자 『“회원 자격도 없는 박 회장은 사퇴하라”』 등 제하의 기사에서 현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회장에 관한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인문협 정관이나 협회 규정에 ‘1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회장 출마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없고 다만 권고적 성격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만 대의원, 지회장, 지부장에 대한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증거로 동업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권위임약정서 등을 제출하면서 2004년 7월경부터 박모 씨와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체결, PC방 운영에 조사했고 회장으로 출마하기 전 1년

이상 법인 PC방인 ‘○○’과 ‘○○넷 PC방’의 공동 대표로 활동했으므로 회장 출마 당시 제출한 이력서 기재사항 중에 ‘2004년 ○○넷 PC방 경영’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게임신문 1면에 2006년 3월 7일까지 보도하되, 제목(바로잡습니다)크기와 활자는 사진식자 12.5포인트 고딕체로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게임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7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민원인에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다툼이 일어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여주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여주신문 : 『군청 사무실서 공무원과 주민간 다툼』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3일자 11면)

내 용 : 지난달 하순경 군청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허가증을 교부받기 위해 군청을 찾은 주민과 공무원간에 싸움이 벌어져 결국 공무원이 주민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략)

사건 당일 B씨는 군청 담당공무원인 C씨에게 허가증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C씨는 민원인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증 교부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간에 폭언이 오가다가 결

국 B씨가 공무원인 C씨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이에 C씨는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찾았는데, C씨가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자신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었다며 이에 “민원인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거친 소리를 했더니 C씨가 옷옷을 벗고 싸울 기세로 덤벼들어 “쳐볼테면 쳐봐라”며 머리를 들이냈는데 그것이 C씨의 얼굴에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씨는 허가증은 민원인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증 교부를 거절한 것인데, B씨가 막무가내로 허가증 교부를 요구했고 계속 거절하자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C씨는 허가증을 A씨에게 직접 발송했다고 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3일자 11면 『군청 사무실서 공무원과 주민간 다툼』 제하의 기사에서 “A씨가 B

씨를 시켜 산림훼손허가증을 찾아오는 과정에 C공무원과 폭언이 오가던 중, B씨가 머리로 C씨를 들이받았고, 이에 C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C씨가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거친 소리를 했더니 C씨가 옷을 벗고 싸울 기세로 덤벼 머리를 들이쳤는데 그것이 C씨의 얼굴에 부딪친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가 직접 수증갱신목적으로 입목벌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지 경계표식을 하지 않아 담당공무원 C씨는 서류보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이사로 문서가 반송되어 온 상태였고, 이후 찾아온 B씨는 자신이 A라며 허가증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신분증을 요청하는 C씨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학교가 전·편입한 학생 학부모들에게 강제성 기부금을 걷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4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6.
처리결과 : 취 하 (정정)
합 의 (반론)

보도내용

한겨레 : (1) 『부산 ○○○ 예고 ‘전·편입 장사’』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9일자 10면)

내 용 : 부산의 기독교계 사학재단인○○○학원(이사장 김○○)이 운영하는 예술고등학교가 편입학 또는 전입 학생 부모들에게 300만~500만원씩의 기부금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초·중·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규칙은 학교 관계자가 학부모에게 개별접촉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직·간접으로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인문계고에서 이 학교 1학년에 전학한 ㄱ양의 아버지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교감 선생님이 행정실장을 불러 함께 한 자리에서 후원금 얘기를 했다”며 “당장 현금이 없어서 계좌번호를 적은 뒤 나중에 직접 입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1000만원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500만원 정도씩 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확한 액수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500만원을 내야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말했다. (후략)

(2) 『부산 ○○○예술고 전면 재감사 학교 관계자 “기부금 매년 거둬”』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0일자 11면)

(전략)○○○예고의 기부금 모금은 1999년 개교 이후부터 거의 해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들 말로는, 99년 5월 학교법인이 부도나자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년 동안 전·편입생과 재학생 등 15명의 학부모에게서 300만~1500만원씩 1억19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해 재단의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것이다. (후략)

(3) 『기부금 받아 빚 갚고 이사진 갈등에 부실 경영』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3일자 10면)

(전략)부산시교육청은 99년 특별감사 결과 ○○○학원이 부도를 막기 위해 96년부터 교비회계와 육성회계, 공납금 등 17억8천만원을 학교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불법 전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학원은 부도 직전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신협, 학생저축금, 강사료 등도 인출해 사용했다. 채무 변제를 위해 교사연수비, 비품 구입비

등 지출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학부모들에게서 1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해 법인 빚을 갚는 데 쓴 사실도 밝혀졌다.

○○○학원의 현 이사회는 지난해 4월 이사장 취임 이틀 뒤 예중 교감을 직위해제해 90일간 교목실에 대기시킨 뒤 고교 평교사로 발령냈다. 7월 말엔 예고 교감 등 나머지 3개 학교 교감도 직위해제하려 하다가 반발이 거세자 예고 교감만 평교사로 발령하고 나머지 2명은 직위해제를 취소했다. 이사회는 이어 예고의 예술부장과 교무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연구부장에게 3개월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예고 음악부장·무용부장·미술부장 등 예중 미술부장을 모두 직위해제했다. 이 과정에 이사회는 김 이사장의 부인을 법인 기획이사로 임명한 뒤 예중·고 교장 직대로 선임했으나,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평교사 3명을 각 학교 교장 직대로 임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9일자 10면에서 『부산 ○○○예고 ‘전·편입 장사’』, 2월 10일자 11면 『부산 ○○○예술고 전면 재감사 학교관계자 “기부금 매년 거둬”』, 2월 13일자 10면에서 『기부금 받아 빚 갚고 이사진 갈등에 부실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예술고등학교 전·편입학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로부터 강제성 기부금을 제공받고 무원칙적인 인사를 행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2005학년도에 ○○○예술고등학교 전·편입학 학생수 21명중 학부모 5명이 기부한 것은 전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기부금 역시 정상적인 회계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재단의 잘못된 관행은

현 재단에서는 근절되어 모든 회계처리는 투명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며, ○○○학원 산하 4개 학교 교감들을 직위해제 시킨 적이 없으며, 예고부장들 역시 직위해제 시킨 적이 없이 현직에서 잘 근무하고 있고, 인사는 사립학교법과 ○○○학원의 정관에 따른 인사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행하여 졌음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2월 9일자 10면 『부산 ○○○예고 ‘전·편입 장사’』, 2월 10일자 11면 『부산○○○예고 전면 재감사 학교 관계자 “기부금 매년 거둬”』, 2월 13일자 10면 『기부금 받아 빚 갚고 이사진 갈등에 부실경영』 제하의 기사와 관련, 부산○○○예고는 “2005학년도 ○○○예고 전·편입학 학생 21명중 5명의 기부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고, ○○○학원 산하 2개 학교 교감들을 직위 해제시킨 적이 없으며, 예고 부장들은 2006년 2월말까지 보직을 유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3월 1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뮤지컬 ‘요덕 스토리’가 정부의 압력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통일부 (장관 이 종 석)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정부, 요덕수용소 뮤지컬까지 막는가』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6일자 31면)

내 용 :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의 참상을 드러내는 내용의 뮤지컬 ‘요덕 스토리’가 정부의 압력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다 못해 이제 예술작품인 뮤지컬까지도 북한의 당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호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지, 우리는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뮤지컬 ‘요덕 스토리’는 15개가 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중에 하나인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나와 시나리오를 보더니 ‘수위가 너무 높다’며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뮤지컬에 김일성 초상화와 북한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 것이 연출자 정○○ 감독의 ‘증언’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경험이 있는 탈북자 출신의 정 감독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뮤지컬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상식 수

준으로라도 존중하는 정부라면 제작진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독일 나치 정권 시절의 아우슈비츠수용소에 비견될 정도로 참혹하다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상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6일자 31면에 『정부, 요덕수용소 뮤지컬까지 막는가』라는 제목의 사실에서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살피기 위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요덕스토리가 무대에 오르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정부부처에서 시나리오를 보더니 수위가 너무 높다고 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뮤지컬에 김일성 초상화와 북한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하여 뮤지컬 요덕스토리 제작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기관 관계자가 정○○을 만나거나 뮤지컬 시나리오를 검토한 바 없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서 정정보도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뮤지컬 ‘요덕 스토리’가 정부의 압력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통일부 (장관 이 종 석)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남에서도 핍박받는 ‘요덕수용소’』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6일자 2면)

내 용 : <2006서울조정65의 보도내용 참조>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피신청인 주장

<2006서울조정6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65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대구교도소가 수감자의 일상적인 처우와 접견을 통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구교도소 (소장 김 ○ ○)

피신청인 : 레이디경향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레이디경향 : 『강○○ 단독 인터뷰』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호 222~225면)

내 용 : 영화 ‘홀리데이’를 계기로, 17년 전 ‘지강현 사건’이 대중의 뇌리에서 재생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개봉한 홀리데이는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대중의 호기심을 끌었다. 아울러 당시 사건에서 인질극 끝에 유일하게 생포된 탈주범 강○○에게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18년째 복역 중인 그를 지난 1월 17일 레이디경향에서 단독으로 만났다.

(중략) 영화와 관련해 그의 존재가 언론에 오르내리자 오히려 그는 교도소 내에서 가시방식에 있게 됐다. 교도소 측에서 재소자 관리 차원에서 그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급 모범수의 경우 통상적으로 교도관의 입회 없이 지인들의 면회가 가능하지만 현재 그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지인들의 면회가 거의 전면적으로 통제되고있는 상태다. 영화사 관계자들을 비롯해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면회가 불허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강○○ 씨의 남동생과 연

락이 닿은 기자는 대구교도소까지 그와 동행하여 강○○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접견을 신청하고 약 30분쯤 지나자 면회를 허락하는 방송이 울렸다. 안내된 접견실에 들어서자 투명한 벽 너머로 강○○ 씨가 걸어 나왔다. 나이보다 너댓 살쯤 어려 보이는 그는 하얗고 가름한 얼굴에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곱상한 모습이었다. 순간 지강현 등과 도피 생활을 할 때 그가 주로 여장을 했었다는 당시 기사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표정이 좋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교도관 때문이었다. 보통 강○○ 씨와 같은 1급수의 경우 가족은 물론이고 지인 접견시에도 입회자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날의 면회는 남동생을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이 입회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에 많은데 이렇게 입회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전날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을 때도 입회자가 들어왔다. 1급수인 나에게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영화사 대표가 면회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교도소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영화사대표가 면회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주자 그는 교도소 측에서 자신에게 또 거짓말을 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입회자가 있는 상황에서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또 안에서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출소까지 이제 1년 반남았는데 그동안 잘 견디고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저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됩니까. 가족이 면회를 왔는데도 입회자가 나선다면 제 기본적인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2월 발행판의 222면-225면에 『강○○ 단독 인터뷰』 보도에서, 1988년 탈주극 실제 탈주범 강모 씨와의 단독 인터뷰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지인들의 면회가 거의 전면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기사작성에서 “실제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씨와 전반적인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기사화하고, 또한 “대구교도소 측에서 영화관련 취재성 접견만 제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인들의 일반 접견까지 전면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대구교도소에서 특정 수용자를 부당하게 통제, 처우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의식을 오도하여 수용자 교정교화에 노력해 온 대구교도소의 노력을 왜곡시킨 사실이 있음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2월호에서, 기자가 영화 ‘홀리데이’의 실제 사건인 지강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강○○을 단독으로 만나 인터뷰 하는 과정 중 교도소측에서 채소자 관리 차원으로 강○○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여 현재 가족을 제외하고는 지인들의 면회가 사실상 불허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도소 측은, 당시 기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면회하였다가 강○○과 심층적인 의견을 나누지 못하고 퇴실하였고, 강○○에 대하여 일상적인 처우와 접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통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단지 영화와 관련된 접견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레이디경향 222면에서 225면 사이 우측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조정대상 보도의 부제목 “지강현 사건...”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2006년 5월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레이디경향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호 22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제주국제영어마을을 파행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제주조정1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코리아○○○그룹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한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라일보 : 『이름뿐인 금릉 ‘제주국제영어마을’, 파행 운영 일삼아 ‘물의’』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5일자 4면)

내 용 : 제주국제영어마을이 파행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물론 제주도의 이미지도 먹칠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K사가 복제주군 금릉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캠프는 지난 달 두차례 실시된데 이어 지난 13일 학생 4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캠프가 시작됐다.

하지만 애당초 주최측이 홍보했던 제반 시설과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미 1차에 참여했던 원어민 강사 8명중 7명이 불법 체류로 강제출국조치 당한 상태이고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기자재가 전무해 이들이 홍보하고 있는 인터넷 화상 영어체험 등은 꿈도 꿀 수도 없는 상태. 게다가 부모들과의 접촉을 금한다며 공중전화선까지 끊어버렸다.

이에 앞서 K사측은 수련원과 협의없이 임의로 건물시설을 변경하고, 사용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도 내지 않아 이미 수련원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방학을 맞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교사는 “영어마을이라면 기본적으로 학교수업과 달라야 했지만 차별화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허드렛일도 해야 했다”며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한 뜻깊은 영어체험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사는 모든 홍보활동에 제주도에서 후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심지어는 제주도CI로 그까지 버젓이 교재와 문서 등에 이용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후원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5일자 4면 『이름뿐인 금릉 '제

주국제영어마을', 파행운영 일삼아 '물의'』이라는 제하에서 제주국제영어마을이 파행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물론 제주도의 이미지에도 먹칠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제주국제영어마을 운영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학부모님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영어마을 교육과정프로그램에 인터넷 화상영어 체험학습은 없지만 영어권나라의 테마별(입국심사대, 비행기내부, 전철타기, 호텔, 은행, 우체국, 레스토랑, 슈퍼마켓, 홈스테이, 기숙사, 방송국, 신문사, 댄스홀) 가상현실을 만들어 학생들이 강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하며, 영어권나라 수학교실, 과학교실, 사회교실, 영어논술교실, 도서실 등의 교육환경 가상현실을 만들어 영어로 교육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무료 경품 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나도 모르게 리니지 가입”』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4일자 1면)

내 용 : (전략)해커 전문가는 “최근 중국 등 해외 해커들이 국내 주요 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구입해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회원 유치 및 이벤트 대행업체인 A사이트가 인터넷에서 무료 경품행사를 벌이다 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 등 범죄자들은 유출시킨 개인정보들을 이용해 피해자가 기존에 쓰던 사이트에 침입해 게임 머니 등 사이버 재산을 빼내 갈 수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4일자 중앙일보 1면 『“나도 모르게 리니지 가입”』 제하의 기사에서 온라인 회원유치 및 이벤트 대행업체인 A사이트가 인터넷에서 무료 경품행사를 벌이다 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사이트는 인터넷에서 무료 경품행사를 한적은 있지만 행사에 응모한 사

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2일자 2면)

내 용 : 2월 14일자 1면에 실린 ‘나도 모르게 리니지 가입’ 기사에서 온라인 회원 유치 및 이벤트 대행업체인 A사이트가 무료 경품 행사를 벌이다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A사이트로 오인당했다는 회사는 “무료 경품 행사 중 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회사는 “무료 시작되는 사이트가 거의 없어 보도 후 문의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신청인의 병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가 하반신마비를 일으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7.
처리결과 : 합의(정정·반론)
취 하(손배)

보도내용

서울일보 :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9일자 19면)
내 용 : 지난해 9월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

신경외과에서 어깨통증으로 외래진료중이던 이모 씨(36세, 순천시 ○○동)가 간호조무사의 엉덩이 주사로 인한 하반신 통증을 호소해 병원측의 권유로 입원 치료중 침대에서 일어서던 도중, 주사부위에서 혈종이 터져 왼쪽 하반신 마비가 와 병원측의 부담으로 관내 여러병원으로 (5곳) 이동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환자측의 요구로 순천시 소재 성가를로 병원에서 정밀 진찰을 의뢰하여 검진결과를 확인한 바 S병원측의 의료사고로 확인됐으나 S병원측의 무성의로 인하여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이모 씨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운전배달(공구상회)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몇 개월간의 통원 치료와 입원으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다”고 호소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4,000,000원

본보는 지난 2월 9일자 사회면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제하의 기사에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신경외과에서 어깨통증으로 외래진료를 하던 피해자 이모 씨가 간호조무사의 엉덩이 근육주사 후 하반신 마비가 와 순천 성가들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의료사고로 판명이 났으나 병원측 무성의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피해자 이모 씨의 하반신 마비는 사실이 아니었을뿐 만 아니라, 성가들로 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역시 의료사고로 판명난 바가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월 9일자 사회면에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제목으로 순천시 ○○신경외과 원장이 의료사고후 하반신 마비환자를 합의해 주지 않아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경외과 원장은 엉덩이 주사로 인한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는 없으며, 환자 이모 씨의 경우 왼쪽 둔부의 근육주사 후 6일째 내원하여 왼쪽 둔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봉소염으로 보고 치료를 하였고, 이후 왼쪽 다리에 다소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모 씨에게는 기왕증으로 추간관 팽윤의 과거력이 있어 국소 근육주사부위의 신경손상과의 연관성이 모호한 상태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료 공제회를 통한 조율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보 지난 2월 9일자 19면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제하의 기사에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신경외과에서 어깨통증으로 외래진료를 하던 피해자 이모 씨가 간호조무사의 엉덩이 근육주사 후 하반신 마비가 와 순천 성가들로 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의료사고로 판명이 났으나 병원측의 무성의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피해자 이모 씨의 하반신 마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신경외과 원장은 엉덩이 주사로 인한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는 없으며 환자 이모 씨의 경우 왼쪽 둔부의 근육주사 후 6일째 내원하여 왼쪽 둔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봉소염으로 보고 치료를 실시한 이후 이후 왼쪽 다리에 다소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기왕증으로 추간관 팽윤의 과거력이 있어 국소 근육주사부위의 신경손상과의 연관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의료공제회를 통한 조율 과정 중에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일보에 2006년 3월 7일 19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7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제주국제영어마을의 운영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제주조정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코리아○○그룹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한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집 수 일 : 2006. 2. 2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라일보 : (1) 『파행 운영 논란 ‘제주국제영어마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자 4면)

내 용 : 파행운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열악한 사업기반 속에서도 캠프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의혹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주체 K사는 어떤 업체?

16일 본보의 확인결과 캠프시행업체인 K사는 자본금 5천만원의 어학원운영업체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로 돼 있다. 바로 K사가 계약불이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청소년수련원이다. K사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어학원운영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나 수련원측과 다툼이 계속되던 올해 1월31일 본점을 수련원으로 이전했다고 신고했다.

K사의 이모 사무총장의 경우 대외적으로 사교육 경감대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전직 교원으로 구성된 회원들과 달리 이씨는 어학원운영자로만 알려져 있다.

▷자본금 5천만원의 법인이 국제영어마을 운영 가능한가?

어학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K사의 서울사무소엔 직원이 1명이다. 나머지는 ‘본사’로 불리고 있는 영어캠프로 나와있다고 하지만 캠프에는 이모 사무총장과 K사의 대표 겸 제주국제영어마을 총무로 돼있는 부인 김모 씨 외에 지도교사 3~4명이 전부다. 시설비용도 5억원이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수련원 내부 책상과 의자를 놓고 대형사진 등으로 꾸며놓은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수련원측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이뤄져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반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안산영어마을의 경우 경기도의 지원으로 5만3천여평의 부지에 연건축면적 4천여평에 달하는 옛 공무원수련원 시설을 모두 85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내부에는 도서관 방송실 음악실 등 일반교육시설 등

을 비롯해 체험시설과 함께 PC존 DVD존 휴게실 등을 모두 갖추고 편안한 숙소가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어민강사 30여명 등을 포함한 수준 높은 강사진이 교육을 마련하고 있고 참가비 또한 일주일사이 평균 10만원 이내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11박12일에 1인당 78만원씩의 참가비를 받았다.

▷제주도와 교육청 알면서도 조치안했나?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말 교육부로부터 K사가 서울지역 학교에 발송한 제주국제영어마을의 공문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제주도청 관광국 후원’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제주도에 확인결과 후원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구두로 통보했으나 별도의 현장실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의 경우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모 중학교의 전교장이었던 K씨가 제주국제 영어마을에 총책임 교사인 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 또한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K씨는 당시 제주도청 관계부서의 고위 공무원과 교육청의 고위직과도 친인척관계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청은 본보의 기사가 나간 다음날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되돌아오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학생·학부모들 피해우려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의 학부모들은 제주도의 후원이라는 말에 큰 신뢰감을 갖고 1인당 78만원인 캠프에 자녀들을 보냈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공중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자녀들과의 연락이 전면 금지돼 활동상황에 궁금증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3기 캠프의 한 학부모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주도청의 후원과 학교로 공문을 보내 모집하는 것을 믿고 직접 현장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믿음에 회의를 든다”고 밝혀 사실이 알려질 경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2) 『제주도 후원만 믿었는데...』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8일자 5면)

“외국 유학 보내지 않고서도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유학보내는 부모마음을 정말 이해하겠네요.”

17일 제주국제영어마을 캠프가 열리고 있는 북제주군 소재 제주청소년수련원을 찾은 서울 모 초

등학교 임모 군의 어머니 등 두명의 학부모는 울먹이며 이렇게 얘기했다.

지난 13일 어린 자녀들을 캠프로 보낸 뒤 아이들의 소식을 접할 수 없어 애를 태우다 이날 오전 영어마을이 홈페이지에 올렸던 도지사환영사를 삭제하자 불안감을 느껴 직접 캠프를 방문했던 것.

원어민 교사도 찾아볼 수 없고 10여명이 함께 머물고 있는 침실 등 시설을 확인한 학부모들은 홍보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에 격분, 아이들에게 짐을 싸게하고 영어마을 관계자를 찾아 항의했다.

학부모들은 “제주도의 후원이 사실이 아니었느냐? 어떻게 이런 사실과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공문으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느냐”며 답변을 요구했고 “아이들이 부모들과 연락을하지 못하게 한 것은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사무총장 등은 사무실 문을 걸어잠근 채 학부모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임군의 어머니는 “시설이 열악하고 아니고를 떠나 정직을 근본으로 여겨야할 교육자들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을 유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부모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 2명은 제주국제영어마을 사무총장과 대표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7일자 4면 『파행운영 논란 ‘제주국제영어마을’』 제하의 기사에서 파행운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의 사업배경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한 것은 제주도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어교육타운 설치를 위함이며 본사의 서울사무소에는 사무직원 5명과 원어민강사 10여명, 내국인강사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영어마을에는 운영 스태프 7명과 3기 학생 40명에 지도교사 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참가비는 서울영어마을(풍납동)의 경우 2주 캠프 80만원, 5박6일 캠프 12만원, 경기도안산영어마을의 경우 2주 캠프 675,000원 5박6일캠프 8만원이나, 제주국제영어마을은 2주캠프 79,000원(항공료포함), 5박6일캠프(제주도청 10만원 지원 예정) 10만원을 받을 계획일뿐, 지금까지 도청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K사가 전액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국제영어마을 운영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학부모님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영어로만 말하고, 영어로만 생각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위해 앞으로도 전화와 공중전화, 인터넷 사용은 금지할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8일자 5면 『제주도 후원만 믿었는데...』 제하의 기사에서 영어마을 참가자 학부모들이 현장을 찾아 캠프 운영중 드러나는 문제점에 불만을 가져 관계자를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상, 영어로만 말하고 생각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아이와 학부모간의 통화를 제한하였으나 이에 한 학부모가 영어마을 게시판에 아이들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올리라는 불만의 글을 올린 것이 “제주도청의 후원과 학교로 공문을 보내 모집하는 것을 믿고 직접 현장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믿음에 회의가 든다”는 내용의 기사로 보도되어 해당 학부모를 선동, 아이들 교육중에 임모군과 다른 아이를 강제로 퇴소 시킴으로써 제주국제영어마을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신청인이 직접 열악한 환경의 홈스테이 가정을 소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인일보 : 『못믿을 옛스승』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자 23면)

내 용 : 옛 담임교사의 소개로 미국으로 장기어학연수를 떠났던 한 중학생이 열악한 환경과 대우를 견디다 못해 4일만에 홈스테이를 그만두고 학교까지 옮겨야 했던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당국에 진정서를 냈다.

수원 모 중학교 3학년 A군이 미국으로 떠난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A군과 A군의 부모는 수원 모 초등학교 재학시절 만났던 B교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미국 폴맨이라는 소도시에 사는 B교사의 여동생 C씨를 찾아갔다. A군의 부모는 한달 홈스테이 비용이 대도시와 비슷한 200만원이나되고 입학할 학교의 학생수가 18명에 불과한 점, 이불과 수건까지 챙겨오라는 말에 의심이 들었지만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B교사의 말을 믿고 함께 출국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홈스테이용 주택은 오래된 20여평의 조립식 건물로 방도 3개 뿐이어서 A군은 C씨의 세아들과 함께 책상도 없이 침대 두개만 있는 비좁은 방에서 지내야하는 형편이었다. 또 A군의 학업을 도와줄 미국 모대학 교수라는 C씨의 남편도 알고보니 시간강사였다.

게다가 C씨는 집을 옮긴다며 홈스테이와 학비를 합쳐 한달 300만원씩 6개월치를 선납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A군의 부모는 일부 집만 챙긴 채 4일만에 지인이 사는 LA로 건너왔고 A군은 유학원의 소

개로 다른 랭귀지스쿨에 입학했다.

A군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상한점이 많았지만 B교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며 “도착 첫날 아들이 좁은 거실에서 침낭을 깔고 잘 때는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B교사와 여동생은 “오히려 A군 부모에게 이용당했다”며 휴대전화 임대료, 냉장고 구입비, 전화비, 미국인 친구집과 과외선생 등에 대한 정보수집비 명목으로 최소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B교사는 또 A군이 다니던 모 중학교에 전화해 “A군이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유학서류를 잘못 발급한 학교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A군이 고발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오히려 A군이 미국에 유학가기 위해 나와 동생을 이용한 것”이라며 “동생이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군이 다른 학교를 알아본다기에 학교에 문의전화를 한 것”이라며 “고발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7일자 23면 『못믿을 옛스승』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평소 B교사와 가깝게 지내면서 어학연수에 관해 많은 상담을 했으며 B교사의 동생 남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을 알고 그 쪽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 했었다. 그래서 B교사는 당사자에게 직접 상담을 하라며 동생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A군의 어머니는 3개월 이상 상담한 끝에 어학연수에서 유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B교사는 전화번호를 알려 준 것 외에는 관여한 바 없다.

학교와 계약하여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A군의 어머니는 학교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채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학교로 옮겼으며, B교사의 동생은 선납한 학비는 물론 홈스테이 비용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

신청인 단체가 운영 중인 수상법당이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69

청 구 명 : 정정보구

신 청 인 : ○○○○ ○○○ 방생법회
(대표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KBS 뉴스 9」 프로그램 (2005년 11월
18일 21:00)

내 용 : ▷앵커 : 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
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불법 수상 법당이 1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서울 잠실대교 상류 한강 상수원 보호
구역.

수상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물 위에 2층
짜리 법당이 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시주금을 내고 잉어를 방생하는
시설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 수상 방생시설이 떠있는 곳은 지난 95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강을 불법으
로 차지한 지가 10년째입니다.

법당 측은 지난해 말에서야 독점 둔치로 이전하
기로 서울시와 합의하고 이전 비용 3억 9천만 원
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의 직후 법당 측은 옮겨갈 위치를 다
시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당 관계자 : “계단이 40개나 돼서 너무 가
파르고 옆에 수상 스키장이 있어서 아주 쾌속으로
달려서 위험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독점 이전도 허용할 수 없
다는 강경 입장으로 선 회했습니다.

철거 시한은 이달 30일. 하지만 서울시는 불교계
반발을 우려해 철거 강행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5년 11월 28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10년째 수상법당’ 제목으로 불법 수상 법당 및
개인이 운영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불법 수상법당 및 개인
이 운영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서울시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독점수역으로 이전을 협
의중 이전장소 안전문제로 이전을 하지 못한 상
태이고 개인이 아니라 ○○○○ ○○○ 방생법회
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바가 없고
공익을 위한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면장인 신청인이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단체장들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2

청 구 명 : 정정보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함안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함안신문 : 『현직 면장 선거 개입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4일자 1면)

내 용 : 5.31 4대 지방선거가 100여 일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선거운동방지에 전력을 쏟고 있다.

지난 9일 산인면 모 식당에 D면사무소 면장이 지난 6일 내린 제설작업에 동원된 면단위 단체장 등 3~4명을 식당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군수가 동석하여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선거운동에 열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소문을 들은 취재진이 11일 오전 9시경 L면장에게 확인 전화를 하자 L면장은 그 자리에 군수가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별 뜻은 없었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열린 우리당 당원이다 라며 애써 부인을 하면서 도와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으며 대산면 내에는 마땅한 식당이 없어서 산인면 구석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말에 대해 박모씨(가야읍)는 면장이 자리를 만들어 연락을 했기에 그 자리에 군수가 참석한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또한 대산면 식당주인 김모씨는 면장이 그럴 수 있냐며 불경기에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대산면에는 마땅한 식당이 없어(?) 하면서 이상한 말을 남겼다. 대산면의 김모씨(구혜리)는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선거는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월 14일자 1면에 『현직 면장 선거 개입 ‘의혹’ 제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9일 산인면 모 식당에서 D면사무소 면장이 면단위 단체장 3~4명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군수가 동석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와 관련해 L면장이 참석한 사람은 모두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참석한 단체장과 면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군수가 “면장이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도 많이 도와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취재진이 확인전화를 하자 L면장이 “참석한 사람은 모두 열린우리당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으나 L면장이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산면 내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산인면 구석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일행 중 산인면에 용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산인면소재 식당을 이용했고,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월 14일자 1면에 『현직 면장 선거 개입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미흡하여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대산면 면장이 주관하는 식사자리에 군수가 동석하여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직면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군수가 선거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면장이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도 많이 도와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취재진과의 확인전화에서 대산면 면장이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은 ‘참석자 중에는 열린우리당 당원도 있는데 군수가 어떻게 부탁했겠느냐’는 답변이 왜곡 전달된 것입니다.

셋째, 대산면 면장이 산인면 소재 식당을 이용한 이유가 마치 대산면 내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서 그러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일행 중 산인면에 용무가 있는 사람이 있어 불가피하게 관내 식당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

는 함안신문 2006년 3월 29일자 1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현직 면장 선거 개입 '의혹' 제기)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함안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9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과학기술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과학기술부 (장관 김 우 식)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9개국 공동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과기부 “참여 포기”』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3일자 1면)

내 용 : 미국이 이달 들어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한 ‘원자력 독과점 체제’ (범 카르텔)에서 한국이 빠지게 생겼다. 우리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미·일본·프랑스 등 9개국이 지난해 서명한 ‘차세대 원자로(GenIV) 개발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는 14~16일 일 후쿠이현에서 열리는 ‘나트륨 냉각 고속원자로(SFR) 개발 프로젝트’ 서명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후략)

(2) 『과기부, 차세대 원자로 추후 서명 약속도 안해, 한국, 사업 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4일자 2면)

과학기술부는 14~16일 일본 후쿠이현에서 열리는 차세대 원자로(GenIV) 개발 서명식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할 때 추후 서명할지도 모른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가 이 약속을

이번 서명식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SFR)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과기부는 1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지시해 과기부 원자력국장과 함께 ‘GenIV 사업’의 한국공동대표인 원자력연구소 장문호 박사 명의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에 ‘서명식 불참’을 알리는 e-메일을 보냈다. 여기에는 ‘불참하겠다’는 문구만 들어있을 뿐 나중에 언제 서명하겠다는 일정 등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를 ‘앞으로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3일자 1면 『9개국 공동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과기부 “참여포기”』 제하의 기사와 2월 14일자 2면 『과기부, 차세대 원자로 추후 서명 약속도 안해, 한국, 사업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GenIV)’ 개발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고 “우리 정부가 나트륨 냉각 고속원자로개발 프로젝트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세대 원자로(GenIV)’ 개발 서명식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할 때 추후 서명할지도 모른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 나트륨 냉각 고속원자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차세대 원자로(GenIV)’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은 금번 일본 후쿠이현에서 있는 Gen-IV 국제포럼정책그룹회의의 냉각고속 원자로 시스템 약정 서명식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이는 참여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에 필요한 제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나트륨냉각고속 원자로 시스템 약정 추후 가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과학기술부는 2월 13일자 1면 『9개국 공동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과기부 “참여포기”』, 2월 14일자 2면 “과기부, 차세대 원자로 추후 서명 약속도 안해, 한국, 사업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보

도와 관련, 차세대 원자로 개발 6개 시스템 중 하나인 나트륨냉각고속 원자로(SFR)와 관련된 시스템 약정 서명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고, 나트륨냉각고속로를 포함한 차세대원자로개발계획 참여포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추후 참여 결정시 서명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3월 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제목은 고딕체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기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동아일보는 2006년 2월 22일자 1면 『2자녀 이상 맞벌이는 추가공제 혜택 그대로』 제목의 기사에서 부부 모두 봉급생활자인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금처럼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지만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추가공제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보도내용

동아일보 : 『2자녀 이상 맞벌이는 추가공제 혜택 그대로』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2일자 1면)

내 용 : 부부 모두 봉급생활자인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금처럼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추가공제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열리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피신청인 주장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그 결과를 보도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



열린우리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통령 노 무 현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국회정상화 협상 한나라의 완패』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일자 4면)
내 용 : (전략)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 운영에 힘이 든다. 책임 있는 보도, 품질 있는 보도가 아쉽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비대납 문제로 우리당이 압수 수색된 데 대해서는 “남의 계좌 추적은 다하지만 자기계좌 추적은 안하는게 검찰 아니냐. 당이 압수수색까지 당해 미안하다”고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3월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보는 2006년 2월 2일자 4면 『국회정상화 협상 한나라의 완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열린우리당 새 원내 지도부와 만찬 석상에서 “남의 계좌 추적은 다하면서 자기 계좌 추적은 안하는게 검찰 아니냐. 당이 압수수색까지 당해 미안하다”고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 대통령은 위 발언에 이어 “다음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검찰을 함부로 휘두르기 어려운 문화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겠느냐. (열린우리당에) 항상 미안한데, 지금은 우리도 회군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발언의 전체 취지는 최근 검찰의 행보는 참여정부 들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온 결과로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의 독립은 계속 보장되어야 하므로 열린우리당의 이해를 구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6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열린우리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통령 노 무 현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노대통령 “검찰, 자기계좌는 추적 안해”』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일자 6면)

내 용 : <2006서울조정7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7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중앙일보 :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4일자
2면)

신청 후 보도문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탈북자 구호 활동을 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4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함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2006년 1월
21일 22:55)

내 용 : (전략)

▷기자 : “임씨 씨는 모 탈북자인권단체 보호국
장입니다. 우리는 그가 진실로 중국의 탈북자들을
구원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탈북자 한○○(본명 김○○) 인터뷰>

▷기자 : “한○○ 씨는 지금도 그때 당한 고통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철을 모집하며 어렵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기자 : “한○○ 씨는 임씨에게 동생을 데려다
달라고 1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한국
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한
으로 북송되었고 사망했습니다. 임씨는 그런데도
한○○ 씨에게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끝내 돈을 돌
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자 김상철변호사
의 중개로 500만원을 돌려받고 200만원은 손실처
리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 “원래 한○○ 씨 여동생은 중국에 잠깐
와 한국에 간 오빠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러커들은 김△△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

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했습니다.”

<모탈북자인권단체 사무처장 송○○목사 인터뷰>

▷기자 : “임씨는 본부로부터 탈북자구출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원을 받았
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았습
니다.” (중략)

▷기자 :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이 임씨의 말을
믿고 친인척을 탈중국시켜 달라고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중략)

▷기자 : “임씨의 일을 했다는 조선족 브러커는
탈북자 한명당 70-100만원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합
니다. 그들은 탈북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삿속으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인터뷰>

▷기자 : “이 탈북자는 스스로 북경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는데 100달러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탈북자들이 탈중국에 드는 비용은 그렇게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성탈북자 이○○ (본명 김□□) 인터뷰>

▷기자 : “임씨는 이○○ 씨의 언니를 구원해 달
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되었고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돈도 돌려주지 않았
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임○○이 구출해준 남자 탈북자 인터뷰>

“임씨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안하고 있습니
다. 이들이 과연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말할 자
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2006년 1월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탈북 인권 단체의 희생자였다”는 제목으로 탈북자인권단체 간부인 임○○ 씨가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악용해 단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탈북자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임○○ 씨는 중국에 나와있는 탈북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금횡령이나 사기,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사고로 인한 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도 없고 약 1,000여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왔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1월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

그램 “우리는 탈북인권단체의 희생자였다” 방송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전 보호국장 임○○ 씨의 반론보도문입니다.

방송에서 임씨가 중국의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북한 주민을 강압적으로 탈북시켰으며,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 씨는 많은 애로를 극복하면서 1,000여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그것이 알고싶다」 2006년 3월 11일자 프로그램 말미에 제목과 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여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2006년 3월 11일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이 명 박)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1) 『서울시·건교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강남 집값 또 들쭉』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1면)

내 용 :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헛갈리는 주택정책으로 연초부터 서울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 가격 불안정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보조를 약속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현안 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용적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하는 등 모처럼만에 한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한달도 지나지 않아 깨졌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재건축 기본계획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재건축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건교부도 서울시가 여러차례 송과 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송과 신도시 개발 계획안을 확정지었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는 4일 공식적으로 송과 신도시 개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강남·북 균형개발을 막고 투기 바람만 불러오고 있다는 이유를 달고 있지만, 건교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불만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사업의 빛이 바랄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2) 『대책완비돼 적기 용적률 완화 왜 지금하나 선거용 선심행정』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3면)

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하면서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8·31부동산대책'에 덮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쟁점을 정리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서울신문은 지난 2006년 1월 5일자 1면에 『서울시·건교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강남 집 값 또 들쭉』이란 제목으로, 건교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현안 사항이 일어날 때 마다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달이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은 깨졌으며, 서울시는 지난 3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담은 재건축 기본계획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재건축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고 보도했으며, 같은 신문 3면에는 『용적률 완화 왜 지금하나, 선거용 선심행정』이란 제목으로 용적률 완화로 인하여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건교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합의한 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 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여 평균 15층 이하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은 추진하되, 평균층수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이며,

서울시에서 작성하여 공람 공고한 재건축 기본계획의 계획용적률은 3종일반주거지역(기존 2종 12층 및 3종지역)의 경우 210%로 계획 하였으나, 공람공고 및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기존 2종 12층 지역에서 3종으로 변경된 지역과 기존 3종 지역의 계획 용적률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기반시설이 양호한 기존 3종 지역의 경우 계획 용적률을 230%로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 과정에 있었던 사항으로, 재건축 기본계획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계획용적률을 210%로 하든 230%로 하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50%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건교부와 합의사항을 깬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가 건교부와 합의한 용적률 완화 불허 약속을 어기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줌으로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재건축 기본계획과 관련이 없는 지방선거를 연계시켜 선거용 선심행정이라는 과장 보도를 하였기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서울신문은 1월 5일자 1면 『서울시·건교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강남 집 값 또 들쭉』이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건교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사항은 ①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250%, 3종 주거지역은 250%→30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개정과 ②2종 주거지역의 층수를 평균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건교부와 합의를 깨고 3종

주거지역 내 강남권 10개 단지의 용적률을 230%로 상향조정하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서울신문 2006년 3월 11일자 1단 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1일자 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이 명 박)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1) 참조>

(3)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1월 7일 06:30, 07:30)

<보도내용 (1) 참조>

보도내용

KBS-1TV : (1)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월 6일 21:20)

내 용 : <2006서울조정7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7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2) 「KBS뉴스라인」 프로그램 (2006년 1월 6일 23:00)

재건축 문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측 입장도 반영했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의 조부가 일제시대 자작 칭호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남 경 필

피신청인 : 코리아포커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7.

처리결과 : 취 하

할 시간을 주셔야』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6일자)

내 용 : (전략)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후 2시 속개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기권하면서 일본 인권에 대해 과거 청산을 얘기하고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잣대가 아니냐”며 왜곡된 과거사 인식을 드러내 파문이 예상된다.

남 의원은 이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따지던 중 “(내재적 접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접근하면

보도내용

코리아포커스 : 『색깔론 휘몰아치기...이종석 “대답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서 기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인권에 대해서는 과거 청산을 애기고 식민주의를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 결의에 기권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그런 식으로 하면 국제사회에서 누가 우리를 신뢰하겠냐”며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 의원의 “이중잣대” 발언은 일본 식민주의 과거 청산을 북한 인권 문제와 동격으로 놓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 풀어가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다.

이번 발언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한·중·일 과거사 책임론’, 이계진 대변인의 ‘신사참배 관련 발언 논란’ 등이 있는 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한나라당 소속 당내·외 인사들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남 의원의 ‘이중잣대’ 발언은 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중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문제삼고 따진 뒤 이어진 발언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남 의원은 노 대통령 정권의 외교안보 수준이 아마추어적이라는 사례로 지난해 유엔 연설을 꼽으며, “식민주의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남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어떻게 유엔에서 19세기적 질서인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며 “제국주의같은 단어를 쓰는 것은 국제사회가 노무현 정권을 친북 좌파정부로 보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에 이어진 일제 식민주의 청산에 대한 과문 발언과 연결시켜 보면 ‘식민주의’라는 단어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태도가 엿보인다.

남경필 의원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 1기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 명단 발표에 참여하기 거부해, 명단에 포함된 일제시대 자작 남정철씨의 손자라는 유언비어가 돌기도 했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코레아포커스는 『색깔론 휘몰아치기...이종석 “대답할 시간을 주셔야”』 제하의 기사에서 남경필 한

나라당 의원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기권하면서 일본 인권에 대해 과거 청산을 애기고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잣대가 아니냐”며 왜곡된 과거사 인식을 드러내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남경필 의원의 조부인 남정철씨는 일제시대 자작칭호를 받았으며, 지난 2003년 민족정기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남경필 의원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 1기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 명단 발표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명단에 포함된 일제시대 자작 남정철씨의 손자라는 유언비어가 돌기도 하였다는 내용과 “남의원은 노대통령 정권의 외교안보 수준이 아마추어적이라는 사례로 지난해 유엔 연설을 꼽으며 ‘식민주의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남경필 의원의 조부는 남정철씨가 아닌 남상학씨이며 친일행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남경필 의원은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에서 ‘식민주의’라는 언급 자체가 없었으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코레아포커스 : 『남경필의원 조부행적 등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6일자)

내 용 : 1. 2006년 2월 6일 본지에 게재된 『색깔론 몰아치기...이종석 “대답할 시간을 주셔야”』 기사 중 <남경필 의원의 조부인 남정철씨는 일제시대 자작 칭호를 받았으며, 지난 2003년 민족정기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여과없이 인용한 것으로, 오보임을 밝힙니다.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로 남경필 의원님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1. 같은 기사 중 <“식민주의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나?”> 부분은 <“제국주의, 나라와 나라간의

지배 피지배 관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나?”>로 정정합니다.

2-2. 같은 기사 중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기권하면서 일본 인권에 대해 과거 청산을 얘기하고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잣대가 아니냐”>, <“일본 인권에 대해서는 과거 청산을 얘기하고 식민주의를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 결의에 기권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라는 부분은 <“북한

에 대해서는 내재적으로 이해를 하고 일본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과거 식민 행위 전범 등에 대한 반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어느 나라가 우리의 입장을 동조해 주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확대 해석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남경필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 및 그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영농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지를 타인에게 불법전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시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시민일보 : 『국유재산 관리에 구멍』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자)

내 용 : 경기도 화성시가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전대해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계약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유재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현재 W신문사 도청출입 기자로 재직중인 오 모 씨는 지난 1999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320-7번지 외 3필지 1만 5944㎡의 잡종지를 영농 목적으로 부인 박씨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P씨(실질경작인)에게 전대해 사용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당시 P씨가 경작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전대하면서 연간 백미 30가마(80kg)를 받기로 했으나, P씨가 부당하다며 매년4가마를 지불해 지금까지(2000년도 제외) 20여가마를 전대 댓가로 건네 받아 그 중 대부료로 135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씨는 2002년 5월 당시 자신의 소유였던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323의 7번지 소재 주택을 조모 씨에게 매매계약 하면서 화성시로부터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불하해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씨에 따르면 “당시 오씨가 자신의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여러 여건상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불하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대마저 금지돼 있는 ‘국유재산을 불하해주겠다’ 하고, 불하시 4,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시 담당 공무원이 2004년도 실태조사시 오씨가 아닌 P씨가 경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지난해 다시 오씨의 명의로 재계약을 해줬다.”며 “오씨가 기자 신분을 이용해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것 뿐만 아니라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관계법을 무시하고 화성시가 이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격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담당공무원은 “전임자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오씨가 국유지 불하시 지불키로 한 4,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택을 임의경매토록 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며 기자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악용했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의 권리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오씨를 검찰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7일자 『국유재산 관리에 구멍』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화성시가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전대한 오모씨를 비호해 동일 명의로 재계약을 해주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영농법인 설립당시부터 오씨부인 박씨가 경작책임을 지었으며 2005년 오씨 명의로 임대변경하면서 실 경작자인 조씨와 영농경작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 소송 중에 있

는 연유로 조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오씨가 국유지를 불하해 주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진술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 제보자와 당사자 간의 상호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씨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전대하여 이익을 편취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정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영농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지를 타인에게 불법전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투데이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투데이뉴스 : 『화성시, 국유재산 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자 2면)

내 용 : <2006서울조정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7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보 2월 17일자 『화성시, 국유재산 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와 관련 현재 W신문사 주재기자로 재직 중인 오모 씨는 기자신분을 이용해 알게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악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권리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투데이뉴스에 합의한 후 7일 이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대부 받아 전대’ 알고도 재계약한 사실 뒤늦게 밝혀져)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투데이뉴스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9일자 15면)

내 용 : 본보 2006년 2월17일(금)자 사회면 기사중 현재 신문사 주재기자로 재직중인 오모 씨가 기자 신분을 이용해 알게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

창기기에 악용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실과는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권리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기사에도 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로잡습니다.

본 기사를 취재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제보자의 말만 듣고 취재한 부분의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

무안신문이 무안군의 중국 투자 유치건에 대해 PR성 오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무안신문 (대표이사 박 금 남)

피신청인 : 목포투데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목포투데이 : 『中 수천억원 무안투자 뺨튀기? 실수?』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8일자 3면)

내 용 : 무안군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삼석 군수의 중국 투자유치활동 기간동안 중국의 평해그룹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했으나, 본사 확인 결과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본사는 이의 사실 확인을 위해 동행한 건교부 사무관, Kotra 직원, 중국 한국대사관, 중국측 관계자 및 한국측 관계자 등 10여 명을 인터뷰했다.

이에 따라 군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몇몇 언론사들이 이를 전국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전국 단위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투자한 해당기업들과 군의 발표에 따라 인근 지역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안기업도시개발(주)의 비용으로 서 군수 일행을 동행하고 PR성 오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들도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서 군수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국 자본 유치에 대한 현재까지의 국내 증거는 서 군수가 중국 측 인사와 찍은 사진과 언론에 공개한 투자 유치 상황보고서이다.

군은 투자협약서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목포투데이는 6일 서 군수에게 의문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부탁했으나 7일까지 답변이 없었다.

군이 투자활동으로 강조한 사진은 본사 확인결과 중국 선주시와 무안군과의 경제교류회 사진으로, 투자협약 조인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목포투데이는 지난 2월 8일자 3면 『中 수천억원 무안투자 뺨튀기? 실수?』 제하의 기사에서 무안군이 중국 투자유치활동 기간동안 중국 그룹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이것은 무안기업도시개발(주) 비용으로 서 군수 일행을 동행하고 PR성 오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의 책임이라면서 무안신문 1월 26일자 『무안기업도시 개발탄력』 제하의 기사를 사진으로 전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신문은 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 한 바 없고, PR성 오보 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PR 및 오보 기사를 쓴 대표 신문처럼 사진을 전제해 무안신문의 이미지 훼손과 막대한 경영피해를 초래하였음이 밝혀져 바로잡습

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

전주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신청인에 대해 자격시비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6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

처리결과 : 취 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 그러나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이사장의 자격시비와 자치단체 예속 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화재단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뉴스 한○○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월 9일자 프로그램 “전주문화재단 출범”제하의 보도에서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이사장의 자격시비와 자치단체 예속 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사장은 40여 년간 대학에서 후학을 길러낸 인격자이자 교육자로 대학 총장직을 역임하였고, 도시계획과 도시문화를 연구하여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긴 문화정책의 석학으로서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최상의 CEO라는 평가를 받고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대되어 임명되었으므로 이사장 자격에 전혀 손색이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보도내용

전주KBS-1TV :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2월 9일 07:30, 09:30)

내 용 : ▷앵커 : 전통문화중심도시인 전주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총괄하는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갈라져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전주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전주문화재단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지 2년만입니다.

구 서노송동사무소에 문을 연 전주문화재단은 이사장과 공채 출신 직원 4명으로 구성돼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 문화예술인의 지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될 예정입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올해를 문화예술 진흥 원년으로 삼고 전주를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전주문화재단 이사장) : 문화예술인들도 문화재단의 출범으로 문화예술정책이 일관되게

혼혈인은 직업군인이 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종재부

접 수 일 : 2006. 3.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혼혈인도 올부터 입대 가능』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0일자 8면)

내 용 : 한국계 혼혈인 하인스 위드가 미슈퍼볼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이후 혼혈인에 대한 각종 차
별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 사상 처음으로 혼
혈인 현역사병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6월 30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부칙에서 “올해 징병대상자인
1987년생부터는 혼혈인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사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혼혈인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면제)에 편입한다”는 병역법
조항에 따라 현역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었다.
(중략)

그러나 혼혈인은 여전히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은 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0일자 8면 『혼혈인도
올부터 입대 가능』이라는 제목 및 ‘하사관·
장교는 여전히 불허… 형평성 논란’이라는 부
제의 기사에서 혼혈인은 여전히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군 인사법 제9조 ‘임용’에는 ‘장
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하
고 시험과 전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
증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
조 ‘결격사유’를 포함 어떠한 조항에도 혼혈인에
대해 제약을 두는 내용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
다. 또한 ‘하사관’과 ‘현역사병’은 각각 ‘부사관’
과 현역 ‘병’이 올바른 용어이므로 이를 바로잡
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립니다

• 내 용 : 국방부는 문화일보 2월 10일자 8면 『혼
혈인도 올부터 입대 가능』 제하에서 “혼혈인은 여
전히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될 수 없어 형
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이 기사가 지
적한 현실인식을 존중하나, 장교·부사관을 모집하
는 군 인사법에는 혼혈인에게 제약을 두는 조항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이 기사의 부제 중
‘하사관’은 ‘부사관’이 올바른 용어이므로 바로잡
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006. 3. 17.자까지 6면 또는 7면에 상
가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24급 고딕체로,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6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교통사고를 낸 후 부하직원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비롯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27일자 9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에서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2004년 12월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공사 직원 김모씨였으며, 최사장 측이 피해자 김모씨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공사 직원은 공사 관련 규정에 의거, 전직 시험을 거친 후에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인사이동 되었으며, 사고기록상 동승자가 1명으로 기재된 것은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가 1명이라는 뜻이지 총 탑승자 수가 1명을 뜻하는 것은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전북일보 :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7일자 9면)

내 용 : 전북개발공사 최○○ 사장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도덕성에 시비가 일고 있다.

개발공사 최○○ 사장은 지난 2004년 12월 개발공사 관용차량을 전주에서 김제 방면으로 운전하다 서전주IC부근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탑승했던 A씨(73) 등에게 부상을 입혔으나 개발공사 직원 김모 씨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운전자로 기록된 김모 씨는 사고 당시 사무실에 있었다가 급히 호출을 받고 달려나갔다고 개발공사 전 직원이 증언했다. 운전직이 아닌 김씨는 사고당일 사전에 출장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피해자 A씨의 아들인 B씨(42)는 “보험처리과정에서 사고 운전자는 김씨가 아닌 최사장이라고 말했지만 보험사측은 사고현장에 뒤늦게 도착해 운전자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데다 사고차량이 법인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문제를 삼지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 조작 의혹이 빚어진 것은 당시 전북개발공사가 인쇄비 비리 사건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사장의 교통사고까지 더해질 경우 쏟아지는 안팎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운전자 바꿔치기 한 적 없다”

• 내 용 : 본지는 2월 27일자 9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에서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2004년 12월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북개발공사 최○○ 사장은 “사고 당시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사 직원이 운전을 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운운 하는 것은 비리혐의로 인사조치를 받은 직원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김모(73) 씨는 “당시 운전자는 젊고 키가 큰 사람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가해 운전자와 같이 타고 있던 나이든 사람(사장)과의 대화 내용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사측은 “직원이 사장을 수행하는 경우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기업카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출장명령을 내지 않고 있으며, 사고처리 보험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사고기록상 동승자가 1명으로 기재된 것은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가 1명이라는 뜻이지 총 탑승자 수가 1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받았다. 이로써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혹 주장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

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6년 3월 14일자 9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제기)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일보 : 『“운전자 바꿔치기 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4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교통사고를 낸 후 부하직원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 ○ ○)

피신청인 : 전주매일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2006전북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전북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2006전북조정7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전주매일 : 『전북개발공사 사장 ‘도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7일자 1면)

내 용 : <2006전북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매일 : 『운전자 바꿔치기 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4일자 1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신청인 회사의 창설멤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교육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〇〇수학 창설멤버, 자금횡령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8일자)

내 용 : '〇〇수학'의 창설 멤버인 신〇〇 씨가 자금횡령과 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고소당했다.

유·초등학생 대상의 교육프랜차이즈 전문업체인 〇〇(구 〇〇〇교육)은 28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전 대표인 신씨를 자금횡령, 폭력행사를 통한 업무방해, 인감위조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씨와 공모한 혐의로 배모 이사와 강모 전 이사로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략)

신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수학학원 프랜차이즈 사업과 교재 개발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때 수학 사교육계에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통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는 〇〇수학, 〇수학시리즈, 〇〇〇 학원 등의 많은 수학 교재 출판과 학원 설립에 관여, 이름을 날렸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8일자 『〇〇수학 창설멤버, 자금횡령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에서 〇〇수학의 창설멤버인 신〇〇 씨가 자금횡령 및 폭

력행사 등의 혐의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고소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신〇〇 씨는 〇〇수학 창설멤버가 아니며 〇〇수학 브랜드로 신뢰를 쌓아온 (주)〇〇교육과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 뉴스는 지난 2월 28일자 『〇〇수학 창설멤버, 자금횡령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〇〇수학의 창설멤버인 신〇〇 씨가 자금횡령과 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고소당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〇〇수학의 브랜드로 신뢰를 쌓아온 (주)〇〇교육은, 신〇〇 씨가 〇〇수학의 창설멤버도 아니고, 현재 〇〇수학이나 (주)〇〇교육과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연합뉴스에 제목(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과 본문 내용을 보도하되, 2006년 3월 2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어느 특정 일자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신청인 회사의 창설멤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〇〇교육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〇〇, 신〇〇 전대표 고소...』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일자 A28면)

내 용 : <2006서울조정8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8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지의 3월 2일자 A28면 『○○, 신○○ 대표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수학 출판사인 (주)○○교육은 신○○ 씨가 ○○수학 창설멤버도 아니고 현재 ○○수학 및 (주)○○교육과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한국경제 증권면에 보도하되, 제목(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은 2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3월 2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0일자 A2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의 심야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울산MBC-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6.

처리결과 : 취 하

멀다며 고장 수리를 잘 해주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료가 싸다는 심야보일러를 수백 만원을 주고 이중으로 들여놓는 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 : 몇번와서 이것만 수리해 놓고 못하겠다고... 돈을 180만원 내면 통을 새로 갈아놓겠다...

▷기자 : 심야 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10배가량 비쌉니다. (후략)

보도내용

울산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5년 12월 6일 21:00)

내 용 : ▷앵커 : 요즘 시골 농가를 살펴보면 첨단 태양광 집열판에다 고가의 심야 보일러까지 들여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방비 한 푼 더 아껴보려는 순박한 인심을 노린 알뜰한 상술에 속아서 놓은거라고 합니다.

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시골마을.

집집마다 고가의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고장이 나면 판매업체에서 거리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5년 12월 6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농민을 울린 심야보일러”라는 제목으로 고가의 심야보일러에 대한 고장수리비가 비싸 이를 설치한 시골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화면상에 전체 보도된 (주)○○의 태양열 온수기 및 심야보일러의 작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제조사 보일러에서 누수현상이 발생, 고장수리가 늦어졌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구례군 관급공사 발주 특혜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참고인인 신청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6

청 구 명 : 정정보도문

신 청 인 : 함 ○ ○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6.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남도일보 : 『구례 관급공사 비리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충격’』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1일자 12면)

내 용 :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구례군수의 폭행사실을 잘 해결해준 대가로 수해복구 공사를 받았다는 전직 지방일간지 기자의 주장(2월2일자 18면)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수해복구 관급공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직 지방일간지 최모 기자와 업자 이모 씨는 17일 오후 구례경찰서에서 가진 대질신문에서 이씨는 “(최기자가) 공사를 소개해 줬다”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소개해준 대가에 대해서는 “공사하면서 손해를 봐 리베이트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3년 4월께 1천만원 안팎 규모의 읍·면 발주 관급공사 4건을 소개 받았다는 업자 함모씨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대질신문은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6시간여에 걸쳐 비리를 폭로한 최모기자과 수해복구 공사를 소개받은 이씨 그리고 읍면 관급공사 4건을 소개받은 함모 씨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해복구 관급공사를 받은 또 다른 업자 박모씨는 이날 대질심문에 응하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21일자 12면 『구례 관급공사 비리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충격’』 제하의 기사에서 2003년 4월께 1천만원 안팎 규모의 읍·면 발주 관급공사 4건을 소개 받았다는 업자 함모 씨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계속 부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현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중인 사건으로 전체사실 중 일부만을 부각하여 보도하였으며 특정인을 지칭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6

청 구 명 : 정정보도문

신 청 인 : 함 ○ ○

피신청인 : (주)광주타임스신문사(남도일보)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84-6

대표이사 박 성 호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남도일보 지역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남도일보 2006년 2월 21일자 12면 『구례 관급공사 비리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구례군의 관급공사 발주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구례경찰서가 읍·면 발주 관급공사 4건을 소개받았다는 업자 함모 씨를 조사했지만 함모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업자 함모 씨로 지칭된 신청인은 자신은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인데, 신원을 노출시켜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나

뿐 인상을 심어주었으므로 오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2. 판단

‘언론중재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항 및 제14조 제4항 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
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이란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원보도에 대응할만한 실질적인 이익 내
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에
대한 보도내용은 신청인은 관급공사를 소개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전
체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전체기사의 취지,
신청인이 관급공사를 소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한 사실이 이미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추가로 정정보도를 통하여 얻을만한 실
질적인 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대로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사
실을 보도한 점으로 인해 신청인이 노출되고, 신

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 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한 보
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나아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역시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
인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
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이를 달리 소명하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해당 기사에서 정정보도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3. 결론

이에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언론중재및 피
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1
조 제2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9.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시장이 그린벨트 관련 결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6.

처리결과 : 취 하

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문이 뒤늦게 나돌아 공
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일 시와 직원들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달 24
일 시장 집무실에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자에 대
한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 현황을 결재받으러 온
도시건설국 소속 A팀장에게 ‘내가 나를 떨어뜨리
려고 걱정했냐’ 등의 폭언과 함께 정강이를 2~3
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보도내용

경기일보 : 『〇〇시장, 공무원 폭행 논란』 제하의 기
사 (2006년 3월 2일자 1면)

내 용 : 이〇〇 〇〇시장이 그린벨트내 이행강제
금부과대상자 관련서류의 결재과정에서 해당 간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〇〇시장, 공무원 폭행 논란” 관련 정정
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2일자 1면에 『〇〇
시장, 공무원 폭행 논란』 제목으로 이〇〇 〇〇시장

이 그린벨트 내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 관련서류의
결재과정에서 해당간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
문이 뒤늦게 나돌아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장은 그린벨트 이행강제금부
과대상자 관련서류의 결재과정에서 해당간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시장이 그린벨트 관련 결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6.
처리결과 : 취 하

경기일보 : 『○○시장, 공무원 폭행 논란』 제하의 기
사 (2006년 3월 2일자 1면)
내 용 : <2006경기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경기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이 교회 집사를 비롯한 신도들을 성추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뉴스앤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7.
처리결과 : 합 의

진술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노회는 전권위원
조사를 통해 최근 재판국을 구성했다.

박 집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최 목사가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 △성도들을 대상으로 강간
을 일삼았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 하나님의 일을 가장하여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 집사는 본인의 피해 사례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
기 위해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고소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히고 있다. (후략)

보도내용

뉴스앤조이 : 『6개월간 목사에게 성추행 당했다』 제
하의 기사 (2005년 10월 18일자)
내 용 : 전주시에 있는 A교회를 출석한 바 있
던 한 여집사가 계속적인 강간 행위로 인한 가정
파괴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이 교회 담임 최
아무개 목사(41)를 노회에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는 물론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 아무개 집사(38)는 지
난 6월 25일 합동(구 예장개혁) A노회에 고소장,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5년 10월 18일자 『6개월
간 목사에게 성추행 당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전
주시에 있는 A교회를 출석한 바 있던 한 여집사
가 계속적인 강간행위로 인한 가정 파괴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교회 담임 목사를 고소하였다

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목사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강간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고소장을 접수한 노회 재판국에서는 2006년 2월 13일 위 고소내용이 현실과 불일치하고 증거가 불충분함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뉴스앤조이〉 2005년 10월 18일자 호남면 『6개월간 목사에게 성추행 당했다』 제하의 기사)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한나라당 대변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추행 장면을 재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청 래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3월 2일 21:00)
내 용 : ▷앵커 :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놓고 여야가, 본질을 벗어난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옹호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OO 기자입니다.
▷기자 : 열린우리당은 최연희 의원 사퇴 촉구 에 이어 한나라당의 진실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중략)
이런 공방 과정에서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게진 한나라당 대변인을 뒤에서 껴안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데도 덮으려 하느냐고 공박하다 한 나라당으로부터 성추행 재연까지 하느냐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여·야 본질 떠난 정치공방”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과 관련한 보도 중,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게진 한나라당 대변인을 뒤에서 껴안은 모습을 보이면서’ 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게진 한나라당 대변인을 상대로 껴안은 모습 등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재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한나라당 대변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추행 장면을 재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청 래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3월 2일
20:00)

내 용 : <2006서울조정8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8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8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후유증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일보 : 『척추수술 과실로 재수술』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1일자 19면)

내 용 : 병원 치료가 잘못돼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 앞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0일 오전 10시경 인천 연수구 H병원 앞에서 조
모(53·여)씨를 비롯한 가족과 장애인연맹 인천시
지회 회원 등 20여명은 “조씨가 H병원에서 척추수
술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재수술을 받았다”며 집회를 갖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조씨측은 H병원에서 척추 수술후 염증치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위자료 등에 대한 적절
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해 6월 H병원에서 척추디스크 수술
을 받고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통증이
더 심해져 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했으나 상태

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H병원 관계자는 “치료상 병원의 과실
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치료비 외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2월 21일자 19면에 『척추수
술 과실로 재수술』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연수구 H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심각한 후
유증을 겪었으며,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장
애인 6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병원 앞에서 벌어졌으며, 병원 측
에서는 치료상 병원의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만 치료비 외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
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환자가 수술 후 제대로 치
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을 겪은 것이 아니며, 이 수
술로 인해 장애 등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병원이
치료상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한 바도 없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2월 21일자 19면에 『척추수
술 과실로 재수술』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연수구 H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으며,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장애인 6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병원 앞에서 벌어졌으며, 병원 측에서는 치료상 병원의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치료비 외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조모 씨는 지난 2005년 6월 H병원에서 척추 고정 수술을 받은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퇴원을 했으며 2개월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하여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자 담당 의사는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의학적인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염증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환자에게 염증 제거 수술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환자가 타병원에서 염증 제거 치료를 받

기 위해서 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후 받게 된 장애인 6급 판정은 수술 결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온 판정이 아니고,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판정이다.

따라서 환자 측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병원 측이 수술 후 치료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은 바가 없으며, 수술 2개월 후 발생한 염증 및 여러 가지 검사의 시행을 담당 의사의 의료과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환자 조모 씨는 H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액원에 해당하는 보상 및 위로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을 동원하여 협박 및 폭행, 폭언 등을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도의적인 면에서 책임감을 느껴 환자에게 일정 부분의 치료비 및 수술비용을 보상해 주고자하였지만, 환자 측에서는 병원 측이 제시한 보상 금액에 불만을 품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후유증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6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현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8.

처리결과 : 합 의

〈2006경기조정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경기조정15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현대일보 : 『디스크수술 후유증 외면 ‘말썽’』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4일자 15면)

내 용 : 〈2006경기조정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보 2005년 12월 14일자 15면 『디스크수술 후유증 외면 ‘말썽’』 제하의 기사와 관련 병원측은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한 바 없으며 담당 의사는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의학적인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병원측은 이와 관련해 의료과실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현대일보에 2006년 3월22일 1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조모씨...수술과실 인정하면서도 배상 없어)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

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현대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2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통계청과 노동부의 업종별 월평균 근로소득 통계의 오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통계청 (청장 오 갑 원)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일보 : 『못 믿을 통계청 통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3일자 A17면)

내 용 : 통계청의 업종별 월평균 근로소득 통계가 노동부의 통계와 53만 원까지 차이가 나 오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매년 36만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계를 내고 있는데 반해, 통계청은 약 7,500가구만 표본 조사하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가장) 직업별 통계에 따르면 2004년 교수, 과학자, 고용의사 등 전문가 집단의 월평균 근로소득(성과급 등 포함)은 337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노동부의 조사결과, 연간특별급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의 월평균임금은 284만 원이었다. 월평균임금의 20%를 차지하는 금액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중략)

회사원 정모(31)씨는 “오차가 큰 통계는 통계를 내지 않은 것만 못하다”며 “특히 임금통계는 근로

자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계창구를 일원화해서라도 보다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월 13일자 A17면에서 『못 믿을 통계청 통계』라는 제목으로 통계청의 업종별 월평균 근로소득 통계가 노동부 통계와 53만원까지 차이가 나 오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확한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양 통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계청에서는 양 통계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 및 집계대상이 서로 다른데 따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보도에서 비교한 통계는 통계청 「가계조사」의 가구주 소득통계와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임금근로자 임금통계입니다. 양 통계는 먼저 조사대상이 각각 ‘전체 근로자(일용·임시직 포함)’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로 서로 다릅니다. 게다가 보도에서 인용한 통계는 각각 ‘가구주(가장)만의 소득’과 ‘임금근로자 전체의 임금’을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구성비, 평균연령 등이 서로 다릅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조사결과 통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계조사」는 가계의 생활수준과 소비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용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양 통계를 일원화할 수 없으며, 통계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근로소득 통계 관련 통계청 반론
- 본 문 : 2006년 2월 13일자 『못 믿을 통계청 통계』 기사의 제목에 '못 믿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통계청의 '가계조사'

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수치의 차이가 통계의 정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한국일보 2006. 3. 22일자 A17면(경제)면에 제목은 고딕으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근로소득 통계 관련 통계청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2일자 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범위를 줄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여성가족부 (장관 장 하 진)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0.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여성가족부 맞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5일자 8면)

내 용 :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갖가지 성폭력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범위를 줄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범위를 새로 규정한다는 지침을 각 상담소에 전달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피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피해발생 뒤 1년 이내의 사건'의 피해자에게만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족 등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어린이

피해자 심리 치료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놀이치료기법, 미술치료기법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계는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 철폐 등 대책을 마련 중인 여성가족부가 어째서 성폭력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2월 25일자 8면에 『여성가족부 맞아?』 제하의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족 등에 대한 상담과 치료지원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어린이 피해자 심리치료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놀이치료기법, 미술치료기법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아동 성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미술치료·문화체험·심신회복캠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료전담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심리치료 등 집중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부모의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의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여성가족부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2006년 2월 25일자 8면 '성폭력피해 의료비 지원' 기사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부모, 가족 등에 대한 상담치료가 가능하며, 어린이 피해자의 심리치료기법인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도 여전히 지원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6. 3. 22일까지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성폭력 국가대책...줄여 논란)활자와 같은 크기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뇌물을 받아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전민일보 :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은 허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8일자 1면)

내 용 : 전북개발공사가 최○○사장의 교통사고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왜곡한 허위”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27일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최○○ 사장의 교통사고 운전자 바뀌치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해임된 직원의 보복성 허위제보”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인쇄업자로부터 불법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A씨를 해임키로 결정했다”며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사장이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 덮어씌운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

며 공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앞으로 어떤 일을 꾸며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A씨가 떴듯하다면 절차와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과연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인 정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사 사장의 교통사고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01년 1월 중순부터 12차례에 걸쳐 인쇄업자 C씨에게서 1년간 특정 아파트 분양 홍보와 관련한 홍보물 전량을 납품한다는 홍보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공사로부터 지난 16일 해임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28일자 1면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은 허위』 제하의 기사에서 공사 사장의 교통사고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을 제기한 A씨가 홍보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인쇄업자로부터 6,3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해임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는 돈을 받아 전달만 하였을 뿐 뇌물을 취하지는 않았으며, 해임과 관련하여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2006년 2월 28일자 1면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은 허위』 제하의 기사 중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인쇄업자에게서 홍보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6,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해임됐다”는 내용에서 A씨는

돈을 받아서 전달만 했을 뿐 뇌물을 취하지는 않았으며, 해임과 관련해서는 A씨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분쟁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민일보 2006년 3월 22일자 1면우측하단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공사측, 운전자 조작설 해명)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2일자 1면)

신청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싸게 땡처리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남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책으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외환 위기 직후에나 볼 수 있었던 땡처리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 『‘땡처리 아파트’ 속출』 제하의 기사 (2005년 10월 28일자 B2면)

내 용 : 8·31부동산 대책으로 신규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가보다 10~20% 가량 싼 가격에 나오는 미분양 아파트·오피스텔이 속출하고 있다. (중략)

서초동의 주상복합 ○○○○○도 77가구 중 회사 보유분 20가구를 분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에 매각 중이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빌도 197가구 중 30·31평형 미분양 가구를 15% 가량 싸게 분양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 팀장은 “8·31 부동산 대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조선일보는 지난 2005년 10월 28일자 2면 『‘땡처리 아파트’ 속출』 제하의 기사에서 8·31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가보다 10~20% 싼 가격에 나오는 미분양 아파트, 오피스텔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분양 받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 빌 아파트가 197가구 중 30·31평형 미분양가구를 15% 가량 싸게 분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위 아파트 단지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집값 하락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청인의 정신적, 경제적 손상을 입혔기에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고 공익목적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신청인 학생회가 학교 당국과 협의해 마련한 무료특강이 ‘등록금’ 인상분 환원 차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민대학교 38대 총학생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국민대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3.
처리결과 : 합의간주

보도내용

국민대신문 : (1) 『신·편입생 대상 무료 특강 참여율 저조』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일자 2면)

내 용 : 신입생 입학금 인상분(1인당 5만원)을 환원하여 개설된 ‘무료강좌’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학교 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입생 입학금 인상분(1인당 5만원)을 ‘무료강좌’로 환원받을 것을 결정한 후, 겨울방학 동안 신·편입생들이 무료 수강 할 수 있는 토익, 어학, 컴퓨터, 교양 등의 강좌가 개설됐다. 이에 총학과 학생지원팀은 학생들의 개인 이메일로 무료강좌 신청 안내 글을 보냈으며 학교 내 게시판에 안내 글 부착 및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등의 홍보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무료강좌를 신청한 학생인원이 매우 저조한 것. (중략)

총학생회장 김○○(경영·4)군은 “10만원 상당의 무료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환원금 그 이상의 이익을 얻기를 바랐지만, 신입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안타깝다”며 “이번 무료강좌로 사실상 신입생 등록금 환원은 모두 끝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2) 『학내 다양한 문제…언제나 국민대신문과 함께』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일자 10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매년 계속되었다. 714호(2000년 3월 6일자)에는 2000년도 등록금이 9.3%가 올랐고, 이에 총학생회가 ‘등록금 유보운동’을 전개했다. (중략)

2001년 6.8%, 2002년 6.5%, 2003년 7%, 2004년 6.9%의 등록금 인상은 계속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로 총학생회의 등록금 인상저지 운동은 대체로 학생들의 참여부족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그렇더라도 2002년과 2004년의 경우 기존의 학교 안보다는 1%, 1.7%씩 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05년에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분 2억원이 특별강좌로 환원되기도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일자 2면에 『신·편입생 대상 무료 특강 참여율 저조』의 제목으로 총학생회장 김○○군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번 무료강좌로 사실상 신입생 등록금 환원은 모두 끝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10면에 보도한 『학내 다양한 문제…언제나 국민대신문과 함께』 특집기사 중 ‘특히 2005년에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분 2억원이 특별강좌로 환원되기도 했다’를 ‘특히 2005년에는 신·편입생 입학금 인상분 2억원이 특별강좌로 환원되기도 했다’로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대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9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 신문사가 보도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간 당진시대 (대표이사 이 형 렬)
피신청인 : 당진뉴스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당진뉴스 : 『때이른 여론조사 보도 선거법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6일자 1면)

내 용 :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역
내 모 주간지가 보도한 출마예정자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선거법 위반 논란과 함께 결과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후보등
록도 채 마치기전에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시기
상조라는 지적과 아울러 오히려 유권자들의 판단
에 혼선만 주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일부 유권자와 출마후
보자 사이에서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저의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
정이다. (중략)

조사결과와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
란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떨
어지는 ARS 여론조사를 선택한 점, 1개 면당 100
여 명 안팎의 소수의견으로 평가가 이뤄진 점등을
들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6일자 1면에 『때이른 여론조사
보도 선거법위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내
모 주간지의 출마예정자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

거법 위반 논란과 함께 결과의 공정성 여부에 대
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후보등록도 채 마치
기 전에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지
적과 아울러 오히려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선만 주
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유권자와 출마후보자 사이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저의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
니다. 이외에도 “1개 면당 100여 명 안팎의 소수의
견으로 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정확성에 문
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후보등록 이후는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법상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있어 여론조사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며
“일부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서 ‘특정후보를 밀어
주기 위한 저의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한 내용 역시 사실
을 입증할 만한 근거없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는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로 받아들
일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고 “1개 면당 100여
명 안팎의 소수의견으로 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들
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의 경우 조사대상
읍·면이 1개 면이 아니라 군수의 경우 12개 읍·면
940명, 도의원의 경우 6개 읍·면 각각 766명, 719명
으로 상당수 언론에서 광역시도의 여론조사 대상자
수를 500~900명 정도로 잡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은 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6일자 1면에 『때이른
여론조사 보도 선거법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 내 모 주간지의 출마예정자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법 위반 논란과 함께 결과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후보등록도 채 마치기 전에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아울러 오히려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선만 주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유권자와 출마후보자 사이에서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저의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1개 면당 100여명 안팎의 소수의견으로 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후보등록 이후에는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법상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여론조사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며, “일부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서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저의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1개 면당 100여 명 안팎의 소수의견으로 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의 경우 조사대상 읍·면이 1개면이 아니라 군수의 경우 12개 읍·면 940명, 도의원의 경우 6개 읍·면 각각 766명, 719명으로 상당수 언론에서 광역시도의 여론조사 대상자 수를 500~900명 정도로 잡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은 수가 아니므로 위 보도에 대해 반론합니다.

반론보도신청인 당진시대 대표이사 이 형 렬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우리고장 당진뉴스 2006년 3월 27일자 2면 좌측하단에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조사결과 공정성 문제도…)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당진뉴스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민주당 영광사무소가 특정 후보에게 후원당원 명부를 유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전국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국매일 : 『민주당 영광사무실 후원당원 명부 유출』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0일자 15면)

내 용 : 5.31 지방선거 민주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 선정이 후원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후원 당원 명부가 영광군 민주당 사무실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후원당원 명부가 특정 민주당 후보에게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여론 조사 방식의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일부 예비 후보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여론조사 방식의 당초취지가 크게 흐려지고 있다.

이번 5.31 영광지역 선거는 군민 60%와 당원 40%(후원당원 50%, 일반당원 5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실시 후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후원당원 명부를 입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으며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명부확보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영광읍 A모씨는 후원당원 명부를 영광군 민주당 연락사무실 B모 사무국장이 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한 모후보에게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초의원 예비 후보중 C모씨는 “시중에 후원당원 명부를 일부 예비후보들이 소지하고 있어 어디에서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며 “B모

사무국장이 후원당원명부를 유출 시켰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으며 당원 명부 확보과정의 별의별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하고 있어 이번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잡음이 끝없이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10일자 15면 『민주당 영광사무실 후원당원 명부 유출』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

당 영광군 사무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후원당원명부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민주당 영광군 정당선거사무소에서 후원당원명부를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민주당 영광사무소가 특정 후보에게 후원당원 명부를 유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대한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한일보 : 『민주당 영광군 연락사무실 후원당원 명부 유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0일자 11면)
내 용 : <2006경기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경기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경기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대한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2일자 11면)
내 용 : 본보는 지난 3월 10일자 11면에 『민주당 영광군 영광사무실 후원당원명부 유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영광군사무소가 특정 후보에게 후원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확인 결과 유출된 명부의 출처는 민주당 영광군 사무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민주당 영광사무소가 특정 후보에게 후원당원 명부를 유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전광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광일보 : 『영광 민주당 사무실, 후원당원 명부 유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3일자 8면)

내 용 : <2006경기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경기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경기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전광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3일자 8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한나라당 최연희 전 사무총장과 이천시장 공천신청자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5.

처리결과 : 취 하

뤄진 이날 저녁 자리는 최 전 총장과 단체장 후보인 B씨, 그리고 L씨의 동생 등 6명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저녁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식사를 했으나 대화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식사비는 자리를 주선했던 L씨 동생이 40여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후략)

보도내용

경인일보 : 『이천서 시장공천 신청자와 접촉』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7일자 2면)

내 용 : 여가자 성 추행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탈당한 다음날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경기지역 한 기초단체장 후보 등과 만나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최 전 총장이 만난 이 인사는 지난 3일 마감한 이천시장 후보로 공천 신청서를 낸 인물이다.

6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달 27일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이천시에 소재한 한 호텔에서 시장 유력 후보 중 한명인 B씨를 만났다. 이날은 성 추행 사건으로 이미 당을 떠난 최 전 총장의 의원직 사퇴까지 대두, 정치 쟁점화된 날이었다.

지역 정가에서 널리 알려진 L씨의 주선으로 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7일자 2면 『이천서 시장공천 신청자와 접촉』 제하의 기사에서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과 이천지역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 B후보와의 저녁 식사 자리를 그 지역 정가에 널리 알려진 이○○ 씨가 주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씨는 최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공천신청자 B후보와는 최근 1년간 왕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위 두 사람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 만남의 자리를 주선했던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신청인이 폭력조직을 이용해 재산을 형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기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기매일 : 『조폭 내분에 ‘떨고있는 평택’』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3일자 19면)
내 용 : 조직폭력배들간 내부갈등이 주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가는 등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평택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A과 조직원 수십여명은 일주일째 전 두목격인 B씨를 찾는다며 호텔이나 유흥업소 등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녀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12일 주민들에 따르면 A과 실세였던 B씨가 대형 유흥업소 운영과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등 재력가로 급부상하면서 조직원들을 소외시켜 조직 내부의 불만이 극도로 팽배, 하극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B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자신의 조직원인 행동대원 Y모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다른 조직원을 시켜 다리에 중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A과 조직원이었던 C모(40)씨는 “B씨가 조직을 이용해 자산을 형성하면서 조직원들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자, 조직원들이 두목 B씨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략)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에 앞선 지난 3일 형사대를 평택으로 출동시켜 폭력배 검거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되돌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역수사대가 철수한 지난 5일 밤에는 B씨의 사주를 받고 전북익산, 수원, 화성 등지에서 몰려온 폭력배 수십여명이 시내 모 술집에서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13일자 19면 『조폭 내분에 ‘떨고있는 평택’』 제하의 기사에서 전 조직폭력배 두목인 B씨가 조직을 이용해 재산을 형성하면서 조직원들을 등한시, 조직원들이 B씨에게 적대감을 갖자, 다른 조직원을 동원해 행동대장을 폭행했으며, 조직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타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씨는 조직을 이용해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없으며, 전 행동대장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직원들의 반발을 제압하기위해 타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의 계약해지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8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OO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6.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정정·손배)

보도내용

KBS-2TV :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 (2006년
2월 12일 16:45)

내 용 : ▷나레이터 : 최재원의 양심추적 임금
체불과의 전쟁, 오늘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수원지
방노동사무소 곤란에 빠진 한 근로자가 도움을 요
청하며 노동사무소를 찾았는데...

▷배○○(노동부 감독관) : 위약금 20배라든가 조
금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박○○ :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리한 게 많아서 나중에 저도 탄 사람들한테 의
외해 보고 이러니까 계약서가 너무 엉터리라는 얘
기를 들었어요 저도.

▷나레이터 : 일반 체불사례와 달리 특이한 사안
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에 들어갔고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연주자로 일했던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이유로 이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중략)

▷배○○ : 우선 이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해지일로부터 3년간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됩니다.

▷원○○(노동부 감독관)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손해배상 규정인데요,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
면은 계약금의 20배를 지금 물어내도록 되어 있거든
요. 이게 무슨 봉건 노예사회계약서도 아니고, 근로자
의 취업에 자유를 정면으로 제안하는 이런 계약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가지고 전부 무효가 됩니다.

▷최재원 : 아!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계약금 위약금 뭐 20배에서 이천만원을 물어줘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시지요?

▷원○○ : 예, 물론이죠

▷최재원 : 아! 일단 다행이고요. 이제 사업주를

만나러 갈텐데 사업주도 좀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계약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
라겠습니다. (중략)

▷손○○(사업주) :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노
동부에서 그렇게 큰 사건입니까?

▷원○○ :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요 이 계약서 자
체가 지금 법을 상당히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분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나요?

▷손○○ : 근로자가 아니죠.

▷원○○ : 왜요?

▷손○○ : 우리는 연예인에 준하게 계약을 한거
고...

▷원○○ : 자! 이 분이 출·퇴근 의무가 있습니
까? 없습니까?

▷허○○ : 연습과 공연을 위한 출퇴근 의무가 있
습니다.

▷원○○ : 여기에 (중략)

▷원○○ : 여기 출근 시간 해가지고 지각

▷손○○ : 팀 연습 시간입니다. 팀 연습 기간에
늦게 오는데...

▷원○○ : 지각 사유서도 받았는데 뭘 출·퇴
근 의무가 없다고 얘기 하는 거예요?

▷손○○ : 그렇습니다. 팀 연습 시간을 위해서 4
명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허○○ :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인
간은 출·퇴근을 합니다. 집으로 출·퇴근을 하든,
놀러 출·퇴근을 하든...

▷나레이터 : 끝까지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는데...

▷원○○ : 일단 우리 의견은 뭐냐 하면은 이 분
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맞
다는 뜻이고, 그래서 근로 기준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첫째, 근로계약 기간을 위반했
다. 둘째 최저 임금도 위반 했다. 세 번째 위약 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위약예정, 위약금을 지급하
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근로기준
법 위반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할 겁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좋은나라 운동본부」는 지난 2월 12일 “최재원의 양심추적”,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라’ 코너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측에선 퇴직을 이유로 계약에 위배된다며 이천 만원을 요구하였다’는 표제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연주자 박씨는 공연을 이틀 앞 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박씨와 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이미 충분히 합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박씨의 주장만을 근거로 보도된 부분은 잘못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좋은나라 운동본부」는 지난 2월 12일 “최재원의 양심추적”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라’ 코너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측에선 퇴직을 이유로 계약에 위배된다며 이천만원을 요구하였다’는 표제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방송에서 보도된 연주자 박씨의 주장과 달리, 당사는 박씨와의 충분한 합의로 엔터테인먼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주활동과 관련한 임금과 위약금 및 지침 등 원칙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박씨의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당사가 재발방지를 위한 시발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박씨가 이유 없이 불응하고 공연을 이틀 앞 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보도된 일부 내용은 박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이에 따른 노동부의 ‘예비조사’의 결과만으로 편파 방송된 것인 바, 당사가 박씨의 단순한 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하였다거나, 먼저 박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 부분, 그리고 사업

주의 위반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당사는 비록 박씨와 당사간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할 것임을 이미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내 용 : 본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2일에 “최재원의 양심추적”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라’ 코너에서 체불임금과 위약금문제로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은 모 기획사 소속 연주자에 관한 내용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획사에서는 관행 및 연주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면 이 점에 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 위반부분은 충분히 시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3월 26일 방영되는 KBS-2TV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들 중 1인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하도록 한다.

•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2TV :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 (2006년 3월 26일 16:4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기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기매일 : 『폭력·고액 세금체납 등 비리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5일자 18면)
내 용 : <속보>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했던 평택지역 조직폭력배들 간 내분갈등은 한때 조직의 실세였던 B씨에 대한 조직원들의 불만감이 팽배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더욱이 B씨는 지난 2003년 경매비리사건이나 자신 소유의 땅들과 일부건물을 후배에게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하고 고액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비리의혹이 다분하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한 언론에서는 B씨가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1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15일자 18면 『폭력·고액 세금체납 등 비리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전직 폭력배 두목인 B씨가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해 고액의 세금을 탈세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씨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현재 영업의 부실로 세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폭력조직을 이용해 재산을 형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인천일보 : 『“폭력배 무서워 장사도 못해요”』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5일자 19면)
내 용 : <2006경기조정1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경기조정1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경기조정19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피신청인 주장

<2006경기조정19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회사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보일러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1) 『○○-○○○○ 보일러 성능 대결』 제
하의 기사 (2006년 3월 14일자 16면)

내 용 : 봄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보일러 성수기는 끝났지만 업체간 신경전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3월부터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규모 입찰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겨울 성수기에 이은 2라운드 경쟁전인 셈이다.

신경전의 중심에는 콘덴싱 보일러 생산 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콘덴싱 보일러는 밖으로 빠지는 배기열을 한번 더 난방에 사용하는 방식이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보일러로 알려져 있다.

콘덴싱 보일러는 사실 전체 시장 점유율이 6%에 불과하다. 가격이 10만~15만원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88년부터 콘덴싱 보일러를 생산하며 시장의 6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보일러가 콘덴싱 방식을 ‘대세화’ 하는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생산업체와 비생산업체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콘덴싱을 생산하는 업체는 ○○, ○○○, ○○○○, ○○기공이며 생산하지 않는 업체는 ○○○○보일러와 기타 군소업체다.

그 중에서도 신경전은 업계 1·2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과 ○○○○간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은 콘덴싱의 경제성을 강조한다.

○○ 관계자는 “배기열을 한번 더 활용해 연료가 15~20% 정도 덜 든다”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실험한 결과 일반 보일러는 가스비가 13만 8,480원이 나온 반면 콘덴싱은 12만 1,170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콘덴싱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보다 비싸지만 보일러 수명을 10년으로 감안했을 때 차액을 회수하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친환경성에 대해 ○○관계자는 “배기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물로 농축돼 대기오염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은 이러한 특성들을 강조하며 개그듀오 ‘○ ○’를 동원해 지난 겨울 대대적인 광고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보일러는 콘덴싱의 성능과 친환경성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콘덴싱 생산을 꾀 곳이 거부하고 있다.

○○○○ 관계자는 “콘덴싱은 공기를 덥히는 유럽에 적합한 방식일 뿐 온돌문화인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며 “업체들이 주장하는 연료 효율성은 최적 조건에서 실험해도 15% 이내 절약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 비싼 가격을 연료비로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측의 주장이다. (중략)

○○ 관계자는 “응축수는 주스보다 산성이 낮고 배기가스보다 덜 해롭다”며 “보일러 제품 중 콘덴싱만 유일하게 친환경마크와 에너지효율 최고등급을 취득했고 독일에서는 콘덴싱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측은 콘덴싱 보일러는 보급이 거의 안돼 기준이 덜 마련됐을 뿐이며 독일 사례는 예외적이라고 주장했다.

(2) 『보일러업체가 에어컨도 파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9일자 16면)

‘겨울 보일러 장사는 이제 끝. 여름 장사로 붙여 보자.’

○○, ○○○○, ○○○ 등 보일러 빅3가 겨울 성수기 시장이 끝나자 여름 냉방기 사업 대전에 본격

적으로 뛰어들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보일러. ○○보일러는 최근 다국적 에어컨업체○○○와 제휴를 맺고 ○○○ 에어컨을 3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중략)

○○의 최대 맞수인 ○○○○보일러는 '○○○'란 브랜드로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는 지난해 4월 ○○○에어콘 아산 공장을 인수하면서 냉방기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후략)

(3) 『보일러업계 왜 이래? 앞다퉈 고객마케팅』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자 17면)

보일러 업계가 '안하던 짓'을 하고 있다. 겨울 성수기가 끝나가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

○○보일러(대표 김○○)는 서울 서초동에 자사 제품 전시를 위한 통합 전시관을 개장했다. 업계 최초시도다. (후략)

(4) 『식어가는 보일러시장 콘텐츠제품만 고성장』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4일자 17면)

보일러 판매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지난해 콘텐츠 보일러 판매는 50% 증가했다.

전체 보일러 판매대수는 2004년 109만대에서 지난해 100만대로 8% 정도 감소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일반 보일러보다 단가가 10만여 원 이상 비싼 콘텐츠 보일러 판매가 크게 늘어 업계 전체 매출액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략)

하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교체수요를 중심으로 콘텐츠 보일러가 인기를 끌어 지난해 6만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4만대에 비해 50% 이상 성장한 수치다. 전체 보일러시장 점유율로는 100만대 중 6만대를 차지해 6%를 기록했다.

콘텐츠 보일러 판매 선두주자는 1988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보일러로 지난해 3만 5,000대를 팔았다. (중략)

여기에 콘텐츠 보일러와 개념이 비슷한 전기보일러도 판매가 급증해 보일러업계 실적 유지에 기여했다.

○○보일러 관계자는 “전체 판매량은 줄었지만 콘텐츠와 전기 보일러가 매출 유지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2004년과 비슷한 1,800억원의 매출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보일러를 주력 생산하지 않는 ○○○코리아와 ○○○○보일러도 고유가 덕에 중전 매출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략)

○○○○보일러는 연탄보일러 판매가 크게 늘었다. ○○○○보일러는 연탄보일러 생산을 중지했다가 2003년 말 재개한 바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3월14일자 16면 『○○-○○○ 보일러 성능 대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보일러의 이○○ 대표이사 사진을 게재하였고 콘텐츠보일러의 생산여부가 쟁점화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측에서 콘텐츠보일러의 연료절감 15%와 독일사례를 인정하고 있고 콘텐츠보일러를 생산하지 않는 보일러사는 중소기업과 ○○○○보일러뿐인데도 곳곳이 생산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 ○○○○보일러가 업계 1,2등을 다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현재 대표이사는 김○○사장인데 전임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잘못 보도하였으며,

고효율 보일러인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생산하는 ○○○○보일러가 콘텐츠보일러를 생산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여부가 쟁점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고, ○○○○보일러 측에서 콘텐츠보일러의 연료절감과 실제로 의무화 되어있지 않은 독일의 사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실제 콘텐츠보일러를 생산, 판매하지 않는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생산을 거부한다고 하고 40년 동안 부동의 1위인 ○○○○보일러와 차이가 많은 2위 ○○보일러가 1,2위를 다투다고 표현하여 두 기업이 비슷한 규모로 1,2위를 번갈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2006년 3월 9일자 16면 『보일러업체가 에어컨도 파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일러업체중 냉방사업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보일러로 보도하였으며, ○○과 ○○○○

가 맞수라는 표현으로 동등하게 또는 ○○보일러가 월등하게 냉방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은 에어컨을 올해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보일러는 2003년부터 보일러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냉방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라디오광고, 신문광고, 예약 판매 등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며, 설비업체 15,000명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비 교육을 시키는 등의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2006년 2월 17일자 17면 『보일러 업계 왜 이래? 앞다퉈 고객마케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보일러의 서초동 전시장에 업계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보일러, ○○○코리아, ○○기공 등에서 먼저 전시장을 개장, 운영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2006년 2월 14일자 17면 『식어가는 보일러시장 콘텐츠 제품만 고성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식어가는 보일러 시장에 콘텐츠제품만 고성장 하였으며, 특히 89년부터 판매한 ○○콘텐츠 제품이 50%의 고성장 하였으며, 전기보

일러가 콘텐츠보일러와 비슷한 구조로서 판매가 급성장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보일러는 연탄보일러 판매가 많아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콘텐츠보일러 전체 판매량의 2배, ○○ 콘텐츠보일러의 3.5배인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비롯하여 많은 제품이 고성장을 하였고, 절대 판매 수량이 적은 ○○ 콘텐츠 보일러의 성장만을 퍼센트화 하여 판매량이 많아보일 수 있도록 보도하였으며, 전기보일러는 콘텐츠보일러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써 한전의 제도적인 지원으로 모든 전기 보일러 판매회사의 판매량이 급증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으며, ○○○○보일러는 판매비중이 제일 낮은 연탄보일러가 아닌 거꾸로 타는 보일러, 전기보일러, 화목보일러 등 주력제품의 판매가 신장하여 매출액이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0원

□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1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0.

처리결과 : 합의 (반론)

취 하 (정정)

내 용 : ▷앵커 : 안동지역 폭력조직 두목이 공기총에 피살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안동시 율곡동 모 호텔 오락실에서 안동시 안기동 40살 박모 씨가 안동지역 폭력조직 두목 42살 조모 씨에게 공기총 두발을 쏘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오락실 영업부장인 박씨는 조씨가 호텔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조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2월 23일 06:00)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이 지난 2월 23일 '안동 폭력조

직 두목 공기총 피살' 제하의 기사에서 안동 모 호텔 영업부장 박모 씨가 평소 성인 오락실의 영업을 방해하고 업소 보호비 등을 갈취한다는 이유로 조모 씨를 공기총으로 쏘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모 씨는 사건 당일 오락실에 게임을 하러 갔을 뿐 금품갈취나 영업방해를 해 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공기총피살 조모 씨 영업방해한 적 없어
- 본 문 : 지난 2월 23일 경북 안동의 한 호텔오락실에서 42살 조모 씨가 공기총에 피살된 사건 기사 보도에 대해 유족측은 사망한 조씨가 오락실에 게임을 하러갔을 뿐, 평소 영업을 방해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말미(전국뉴스시간대)에 2006년 4월 13일까지 1회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 공기총피살 조모씨 영업방해한 적 없어)을 화면 하단에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통상의 기사 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자막으로 게재하고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 및 2006. 2. 23.자 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소속 기자 및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그들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KBS뉴스광장」프로그램 (2006년 4월 8일 06: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시스 : 『오락실 금품갈취에 앙심, 조폭 두목 총 쏘

살해』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3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뉴시스 : 『안동 모 호텔 오락실 총기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7일자)

내 용 : 본보 지난 2월 23일 『오락실 금품갈취에 양심, 조폭 두목 총 쏘 살해』 제하의 기사에서 안

동 모 호텔 영업부장 박모 씨가 평소 성인오락실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뜯어간다는 이유로 조모씨를 공기총으로 쏘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씨의 미망인은 조씨는 당일 오락실에 게임을 하러갔을 뿐, 평소 금품갈취나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0.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노컷뉴스 : 『“같은 세상 살기 싫었다” 업소 돈 갈취하자 공기총 살해』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3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8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92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전주시가 대형마트의 입점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해 소상공인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주시 (권한대행 부시장 이 경 옥)

피신청인 : 전북중앙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북중앙신문 : 『전주 ‘대형마트 점령’ ...지역상권 초토화』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자 13면)

내 용 : 전주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재래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외치고 있다.

재래시장은 갈수록 침체되고 로드샵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그칠 줄 모른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은 전주시가 대형유통점들의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허용해 결국 소상공인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도심상권의 붕괴가 심각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주진출을 희망한 외지대형유통업체는 거칠 것 없이 개점했다. (중략)

전주지역은 입점 의지만 있으면 인허가 등이 타 지역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것도 외지 대형자본가들이 군침을 흘리게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중소형 할인점 운영자 김모 씨는 “잇따른 대형유통점 개점이 기존상가와 골목상권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데 전주시는 서민들의 아픔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김씨는 또 “일부 선진국은 판매지역 제한,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통해 대형할인점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부천시는 물론 대전, 경북 영주시 등은 대형매장이 입점할 수 없도록 강력 규제해 중소 상인들이 살아갈 틈새를 만들어줬다”며 전주시의 무사안일 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도내에서도 최근 남원시가 대형유통점 입점을 지역상권이 죽는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7일자 13면 『전주 ‘대형마트 점령’...지역상권 초토화』 제하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해 소상공인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주시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하여 도내 최초('05.7)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역시 전주시의 규제가 부천, 대전, 경북 영주시의 그것과 비교할 때 가장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7일자 13면 『전주 ‘대형마트 점령’...지역상권 초토화』 제하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해 소상공인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하여 도내 최초('05.7)로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중소유통공동 물류센터 유치 및 건립 추진, 지역상권보호 TF팀 운영, 구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강하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신청인 대리인의 인터뷰 내용을 본 언론조정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중앙신문 경제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전주 ‘대형마트 점령’)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중앙신문 : 『“재래시장 살리기 대책마련 최선”』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4일자 7면)

내 용 : “재래시장의 정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하반기부터 발행 예정인 재래시장 상품권의 구매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9월 중에 건립,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중략)

이 과장은 이어 “대형 유통점으로부터 지역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판매시설의 입점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1천㎡이상, 준주거지역에서는 3천㎡ 이상에 대해 불허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대형마트 입점 제한 TF팀도 1월부터 가동,

행정절차 강화 등을 강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상인 스스로도 이제 대형마트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전문가를 초청 경영마인드 혁신 및 성공 마케팅 교육, 전국 우수점포 벤치마킹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전주시가 건설업체의 설계변경 승인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전주시 (권한대행 부시장 이 경 욱)

피신청인 : 전북중앙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북중앙신문 : (1) 『〇〇종합건설 ‘등록말소’ 취소 전망』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9일자 경제면)

내 용 : 〇〇건설은 지난 1월 16일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사전에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주택건설업자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〇〇건설은 즉시 면허등록말소금지 가 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 법원과 총리실 행정심판위로부터 모두 받아들이는 결과를 얻어냈다.

〇〇건설은 지난 2003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인봉지구에 400세대 규모의 ‘〇〇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12월 29일 준공, 현재 입주 중에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이 마치 부실시공에서 기인된 것 처럼 와전되면서 일부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〇〇종합건설의 명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략)

하지만 설계변경 허가기관인 전주시는 통상적으

로 걸리는 시일의 2배가 넘는 무려 52일만에 설계변경을 내주는 바람에 시공사는 장마철을 앞두고 감리자의 허락하에 부득이 매트시공에 나섰다. 이 같은 기초변경은 1999년에 발간된 건축행정 편람에서 ‘경미한 기초변경’이므로 정식 설계변경 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담당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감사 등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식 설계변경을 거치기 위해 전주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경미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하는 문제 즉, 정식 설계변경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52일만인 2004년 6월 30일 설계변경을 내주었다.

이과정에서 〇〇건설은 우기에 앞서 선시공에 나섰고 이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기초변경’으로 전주시에 적발돼 결국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당했다.

〇〇건설은 형사고발건에 대해서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기관으로부터는 건설업계에서 조차 의외로 받아들이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 (후략)

(2) 『전주시 향토기업 육성 외면』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0일자 경제면)

(전략) 이외에도 전주시는 지역의 한 중견 주택업체의 설계변경 승인건을 놓고 무려 52일 동안이나 지연시키기도 했다. 업체가 요청한 변경건의 경우 통상 10여일 전후면 처리되는 게 통례였다. 이 업체는 설계변경 요구 시 전문가의 진단과 당초보

다 더 많은 시공비를 감수하면서도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장마철과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전주시는 차일피일 변경승인을 미뤘고 장마철을 앞두고 다급해진 업체는 허가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가 선 시공해도 좋다는 구두허가를 내줘, 공사를 진행시켰다. 이 같은 상황속에 전주시는 당초 입장을바꿔 정식승인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업체를 고발했고 해당 업체는 강력한 이의제기를 통해 결국 설계변경 건을 52일만에 공식 승인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하자 없는 설계 변경건을 두고 고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는 게 이런 것인지, 외지업체를 유지하는 게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3) 『지역업체 공공택지 우선 공급 향토기업 보호 육성 ‘최우선’』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3일자 경제면)

(전략)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빠른 행정처리를 들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는 전주권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 업체가 제출한 설계변경승인 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함으로써 상대업체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두승인을 받은 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정식승인절차를 무시했다며 업체등록을 말소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전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등록말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전주시의 무리한 법집행에 경종을 울렸다. (후략)

(4) 『서민꿈 짓밟는 전주시』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0일자 6면)

(전략) 많은 시민들은 그 결정적 원인을 전주시가 서선택지개발지역 공동주택용지를 건설업체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데서 찾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의 균형발전과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에 나섰다. 당초 이때부터 전주권 아파트 분양가격은 천정부지로 높아졌고 지난해는 700만 원, 심지어 800만 원을 기웃

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주가 심각한 주택난으로 웃돈거래가 성행할 정도 공급이 부족한 것도, 획기적 개발로 투자가치가 높아진 것도 아니다.

3년 전 아파트 분양가격이 300만 원 안팎일 때는 30평이 1억 원이 채 안됐으나 현재는 2억 원도 넘는다. 서민들에겐 갑자기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9일자 『〇〇종합건설 ‘등록말소’ 취소 전망』, 3월 10일자 『전주시 향토기업 육성 외면』, 3월 13일자 『지역 업체 공공택지 우선 공급 향토기업 보호 육성 ‘최우선’』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의 한 중견 주택업체가 신청한 경미한 설계변경 승인신청을 전주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52일만에 설계변경 허가를 내줬고 그 사이 해당 건설업체가 우기에 앞서 선시공에 나선 것이 문제가 되어 고발에 이은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라는 해당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건교부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유는 ‘변경승인대상’으로서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주시의 현장조사 결과 설계변경신청 기간 중 해당 기초공사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주택법위반’의 지적, 조치에 따라 변경승인 처리하였으며, 위법사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권자인 전라북도지사에 의뢰하여 전라북도지사가 등록말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0일자 6면 『서민꿈 짓밟는 전주시』 제하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서선택지개발지역 공동주택용지를 건설업체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건설사의 고가분양 정책이 시행되었고 전주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많이 치솟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처럼 2005년도 분양된 11단지 5,192세대 중 평당분양가 800만원을 넘는 전주권 아파트는 없었으며, 7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전체의 0.2%에 해당하는 총14세대로서 이는 80여평이 넘는 극소수의 대형평형 고급아파트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가 서민

주택 보급에의 어려움을 가증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3월 9일자 경제면 『○○종합건설 ‘등록말소’ 취소 전망』 등의 관련 기사에서 “전주시가 ○○종합건설이 신청한 경미한 설계변경 승인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여 52일만에 승인신청을 해주었으며, 이에 업체에서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자의 구두허가를 받고 우기에 앞서 선시공 했으나, 전주시는 업체가 승인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발 및 등록말소처분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전교부에 질의한 결과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변경승인대상’으로서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전주시의 현장조사 결과 설계변경 신청기간 중 해당 기초공사가 상당부분 이

루어져 ‘주택법위반’으로 지적, 조치한 후 변경승인처리하였으며, 위법사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권자인 전라북도지사에 의뢰하여 전라북도지사가 등록말소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전주시는 “업체의 설계변경 승인신청이 중대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체와 협의한 후 전교부에 질의 회신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신청 후 44일만에 승인을 해주었으며, 업체가 선시공가능 여부에 대해 감리책임자에게 질의를 한 적은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허가를 해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중앙신문 2006년 4월 13일자 경제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종합건설 ‘등록말소’ 취소 전망)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중앙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4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익산시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업체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익산시농민연대 (상임대표 강 ○ ○)

피신청인 : 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민일보 : (1) 『익산 유기질비료 실효성 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5일자 10면)

내 용 :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수도작 재배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빠진 채 진행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유기질비료만으로는 우수한 친환경 쌀 재배에 한계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익산시가 굳이 유기질 비료만 한정해 공급을 추진한 배경을 놓고 농민단체가 특정업체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략)

게다가 익산시는 유기질비료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모집 공고안을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업체 자격기준안을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실효성 없는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른 자부담 9억에다 빠진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퇴비 구입 부담을 추가로 안게 돼 농가소득 현실을 고려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후략)

(2) 『농민연대 내정업체 선정』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3일자 시사면)

익산시가 친환경유기질비료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연대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국은 농민연대가 미는 업체를 유기질비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익산시는 농민연대가 제안한 1차 공고안을 무기력하게 그대로 수용했고, 농민연대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자체 선정한 4개의 업체를 시측에 권고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료공급업체의 반발을 산 것이다.

농민연대는 또 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 직후, 또 다른 자격기준을 정해 익산시에 공고토록 요구했고, 익산시는 검토도 없이 또다시 공고를 내는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

이는 모든 참여업체가 공개 된 이후여서 업체 성격을 보고 사후에 기준을 만드는 격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 맞는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어 농민연대와 업체들간의 결탁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게다가 익산시가 2차공고안에 합당한(농협중앙회 계통구매 계약서류 구비) 17개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려는 과정에서 농민연대가 자체심사결과 서류미비 등의 사유를 들며 4개업체로 압축해 달라고 요구하자 익산시는 4개업체를 굵은 글씨로 표기하고 나머지 13개 업체를 작고 가는 글씨로 표기해 확연히 구분되게 하는 등 무책임한 작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탈락한 19개업체들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농민연대가 탈락시킨 업체는 대부분이 국내 비료 시장을 이끄는 굴지의 대기업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수차례 검증받은 바 있어 탈락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농민연대가 선정한 업체가 모든 면에서 훨씬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농민연대가 처음부터 4개업체를 이

미 내정해 놓고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이용했다면 전면 사법처리돼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3) 『농민연대 문제 많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7일자 시사면)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월 15일자 10면 『익산 유기질비료 실효성 의문』, 3월 3일자 『농민연대 내정업체 선정』, 3월 7일자 『농민연대 문제 많다』 제하의 기사에서 농민연대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시측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대는 익산의 농민과 토질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시에 제안하고 시행을 추진한 단체로서 특정업체를 시측에 권고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실확인 결과, 유기질 비료의 품질이 농민들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관련 비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와 합의를 거쳐 이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였고 읍면동 대표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정리를 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전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3일자 15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5일 10면 제목 『익산 유기질비료 실효성 의문』, 3월 3일 시사면 『농민연대 내정업체 선정』, 3월 7일 시사면 『농민연대 문제 많다』라는 기사와 관련 농민연대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하여 시측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 익산시 농민연대(이하 농민연대)는 익산의 농민과 토질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시에 제안하여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기질비료의 품질이 농민들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선정과정에서 농민들 간의 혼란을 막기 위하

여 농민연대에서는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시와 합의를 마련하였고, 또한 읍면동 대표자들의 의견을 모아 기준과 원칙을 정리하였습니다. 농

민연대는 앞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익산의 농민과 토질 향상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0.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6서울조정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매일신문 : 『오락실서 공기총 쏘 살해』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3일자 6면)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6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영남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0.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정정)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영남일보 : 『영업방해 이유 총싸 숨지게』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4일자 6면)

내 용 : <2006서울조정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2월 24일자 6면 『영업방해 이유 총싸 숨지게』 제하의 기사에서 안동 모 호텔 성인오락실 영업부장 박모 씨가 평소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모 씨를 공기총으로 쏘 숨지게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망한 조

씨의 미망인은 조씨는 사건 당일 오락실에 게임을 하러갔을 뿐, 평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영남일보 6면에 2006년 3월 29일까지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영업방해 이유 총 쏘 숨지게)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

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영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5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T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0.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정정)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6대구조정6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TBC-TV : 「TBC 아침뉴스」 프로그램 (2006년 2월 23일 07:10)
내 용 : <2006서울조정91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TBC-TV : 「TBC 아침뉴스」 프로그램 (2006년 3월 25일 07: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강도를 당한 신청인의 얼굴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3월 13일 21:00)

내 용 : ▷앵커 : 손님이 드문 새벽 심야시간에 현금이 많은 편의점이 자주 강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편의점 15곳을 털면서 CC TV 본체까지 뜯어간 일당이 잡혔습니다.

▷리포트 : 복면을 한 2인조 강도가 들어와 흥기로 직원을 위협합니다.

곧바로 계산대로 가 현금을 챙긴 뒤 사라집니다.

편의점에 들어와서 도주하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피해 편의점 직원) : “갑자기 들어와서는 흥기로 위협하더니 금고 문을 열어라”

▷리포트 : 이렇게 편의점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25살 이모 씨등 2명이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한달동안 털은 편의점은 무려 15곳 빼어난 돈은 천여만원에 이릅니다. (중략)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모니터와 연결된 CCTV본체를 통째로 뜯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경향이 없던 이들은 편의점 2곳에서는 미처 CCTV를 뜯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붙잡은 경찰은 이제 편의점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CCTV를 설치하고 CCTV 본체는 뜯어갈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1TV는 지난 3월 13일 「KBS뉴스9」 프로그램 “편의점 전문털이 못 뜯는 CCTV에 찍혀”라는 방송에서 신청인이 강도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사건당시 녹화되었던 편의점 CCTV를 방송하여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추후 보복의 우려 등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편의점 CCTV에 찍힌 화면을 보도했으나, 신청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이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새만금 간척농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복토사업에 10조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새만금 농지조성에 10조 이상 들수도』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4일자 20면)

내 용 : 논 높이 해발 1m로 조성할 경우, 골재 8억4000만㎡(루베) 소요 추정

농림부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도 “간척농지 30cm 복토하라” 규정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간척지를 농사가 가능한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0조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수면 높이 이상의 농지를 조성할 경우 지반을 높이기 위해 대량의 골재 수요가 발생하고, 그 위에 농사가 가능한 흙을 덮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림부는 “간척사업은 매립사업과 달

리 별도의 토사매립 없이 기존 원지반을 정지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골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1999년 농림부 스스로 마련한 ‘농업토목 공사 표준시방서’는 ‘간척지 농지의 경우 암밀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20~30cm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장 ‘간척공사’ 내부개답 규정. 210쪽)

석산개발 후 인공골재 공급 =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는 “새만금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질 2만 8,000ha의 논을 계획도 간척지 높이인 해발 1미터로 조성하려면 8억 4,000만㎡(루베)의 골재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220mm 강우시(20년 빈도 강우) 거대한 간척지 논의 3일 이상(75시간) 물에 잠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략)

그러나 간척지 농민들은 갯벌면을 그대로 논으로 만들 경우 물빠짐이 안돼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영산강 간척지 환경과 농업을 위한 모임’ 박종기 회장은 “해남(영산강 간척지)의 경우 농민들이 직접 마사토를 논에 붓고 있다”며 “농지 조성 시 농림부 시방서대로 복토를 하지 않는 바람에 간척지를 분양받은 농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간척지는 토질이 나빠 질소 비료를 많이 뿌려야 하고, 이 비료 성분이 다시 담수호로 흘러들어 수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내일신문은 지난 3월 14일자 20면에 『새만금 농지조성에 10조 이상 들수도』를 제목으로 하여, “새만금 농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평균 2.5m의 복토가 필요(10조원 소요)하고, 농림부의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도 20~30cm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산강 간척농지의 경우 복토를 하지 않아 마사토를 논에 뿌리고 있다”는 점을 주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은 간척농지 조성공사의 특성과 새만금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간척농지는 특별한 복토없이 갯벌의 원지형을 정지(땅 고르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방식이며, 낮은 지대의 일부 농지는 홍수시 배수장을 통해 홍수를 배제하기 때문에 성토를 하지 않고도 농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토양을 분석하여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농지에 객·복토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된 객·복토량은 360만㎡로서, 기사화된 복토량 8억4천만㎡의 0.4%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내부개발 비용도 1조 3천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사내용에는 현행 설계대로 할 경우 홍수시 3일(75시간)간 농경지 침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새만금 간척농지의 강우시 배수는 최대한 자연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집중강우 또는 밀물로 인해 내수면의 수위가 높아져 일시 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낮은 지대 일부 농지에 대해서 배수장 7개소를 설치하여 배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20년 빈도의 홍수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영농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는 대호간척지 등 타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사내용은 새만금 사업의 설계내용과 상이합니다.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20~30cm의 복토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기사화하였으나, 현행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복토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간척지에 대한 지균(땅고르기) 공사시 성토되는 부분에 한해 암밀침하(장기 침하) 방지를 위하여 한꺼번에 많은 두께를 시공하지 말고 20~30cm 두께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방서를 인용하여 간척농지 전체를 20~30cm 정도 일률적으로 복토해야 한다는 내용은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아울러, 간척농지는 기초지반,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경작에 필요할 경우 일부 객·복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산강 간척지와 현재 계획된 새만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만금지구의 간척지 중 객·복토가 필요한 면적은 일부이며 그 양은 360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농지에

대한 복토가 필요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내일신문 : 『새만금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7일자 20면)

내 용 : 내일신문의 2006년 3월14일자 『새만금 농지조성에 10조 이상 들수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농림부는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서와 농업토목시방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서에는 다른 간척지구와 마

찬가지로 많은 양의 성토없이 갯벌을 정지(땅고르기)하여 농지를 조성하고 일부 낮은 지대의 농지는 배수장 7개소를 통해 홍수를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사화된 8억 4천만㎡의 0.4% 수준인 340만㎡를 객·복토하면 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아울러 농림부는 “농업토목 시방서에서는 땅고르기 공사시 성토되는 부분에 한해 장기 침하 방지를 위하여 20~30cm 두께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시방서를 인용하여 간척농지 전체를 20~30cm 정도 일률적으로 복토해야 한다는 인용 기사는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경기·인천버스의 서울시 진입 제한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이 명 박)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일보 : (1) 『서울시, 진입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6일자 1면)

내 용 : 서울시가 경기·인천버스의 서울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서울과 수도권을 버스로 오가는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버스와 경기·인천버스가 경계로부터 5~10km까지만 서로의 행정구역 안으로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3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버스 280개 노선과 인천버스 11개 노선을 이용해 서울로 진입하는 120여만명과 서울버스 101개 노선을 통해 외곽으로 가는 서울 시민 110만 명 등이 시 경계에서 환승해야 해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도심 교통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도심 진입차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버스 노선 변경 및 증차 등은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버스도 경기나 인천으로의 진입을 마찬가지로 제한할 방침”이라며 “지자체 간 진입거리를 효율적으로 제한할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새 제도 도입으로 환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승장 조성계획을 마련 중이다. (후략)

(2) 『서울시 “도심 교통혼잡 줄이려면 불가피”』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6일자 3면)

서울시가 경기·인천버스의 진입거리 제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도 백약이 무효인 서울 시내 교통 혼잡이 도사리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 전용 중앙차로를 신설하고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해 성공을 거뒀지만 최종 성공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3,500여 대에 달하는 경기·인천버스의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경기·인천버스의 도심 진입 제한으로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시 버스는 서울 시계 안에서, 경기버스는 경기도 경계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면서 “그래야만 노선 중복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낭비를 줄이고 소속 버스를 위한 합리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한국일보는 지난 2006년 3월 16일자 1면 및 3면에 각각 『서울시, 진입 제한 추진』 및 『서울시 “도심 교통혼잡 줄이려면 불가피”』란 제목으로, 서울시가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경기도버스 및 인천버스에 대한 서울시 진입 제한을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는 경기

도 및 인천버스의 서울시 진입제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간 환승체계가 완전히 구축될 경우 현재의 경기·인천 버스와 서울버스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 정도이며, 환승체계가 완전히 구축되면 경기도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를 간·지선체계로 구분하고 경기도 간선버스는 현재의 광역버스처럼 운행하고 지선버스는 환승체계와 연결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현재 서울시에서 당장 추진중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이 처가 쪽 여성들을 10여 년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1.

처리결과 : 합 의

처가 친인척 여성 6명을 상대로 성범죄 행각을 벌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3월 14일자 『“현직의사가 친인척 여성 성폭행”』 제하의 기사에서 현직 의사인 G씨가 80년대 중반부터 94년 사이 처가 친인척을 상대로 성범죄 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G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보도내용

인천일보 : 『“현직의사가 친인척 여성 성폭행”』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4일자 사회면)

내 용 : 현직 의사가 자신의 처가(妻家) 친인척 여성 6명에게 10여 년 동안 무차별적인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폭로됐다.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성폭행을 당한 친인척 여성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가슴에만 원한으로 묻어놔다. 그러다가 최근 가족들 모임에서 친척 여성 6명이나 같은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피해 여성들에 따르면 경기도 K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친인척인 의사 G씨(50대)가 지난 1980년대 중반~1994년 사이 모두 5남매인 자신의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2006년 3월 14일자 『“현직의사가 친인척 여성 성폭행”』 제하의 기사에서 현직 의사인 G씨가 80년대 중반부터 94년 사이 처가 친인척을 상대로 성범죄 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잘못 보도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6년 3월 30일 19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처

외삼촌 세자매 등 6명 피해사실 폭로)과 함께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이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기사는 삭제한다.
- 이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천일보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30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전주시가 광장 조성용부지를 장기간 무상대여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3

청 구 명 :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전주시 (권한대행 부시장 이 경 옥)

피신청인 : 전북중앙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 손해)

보도내용

전북중앙신문 : 『오거리 6호 광장 사실상 특혜』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7일자 18면)

내 용 : 전주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고사동 6호광장 조성 사업이 특징인에 대한 특혜로 점철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전형직 의원 (호자1동)은 6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6호광장 조성 사업이 해당 부지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특혜에 이어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특정업체에게 무상대여하는 것도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최근 철거된 6호광장 부지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 사용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것과는 달리 2차례에 걸쳐 사실상 무기한적으로 사용 연장된 것에 대해 건축사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사실상 특혜라고 지적했다.

해당 건축물이 지난 71년 15년간 사용토록 조건부 허가된 데 이어 지난 89년에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전까지로 사용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즉 전주시가 해당 건물주에 대해 3년으로 한정된 가설건축물을 무려 30여년이 넘게 사용토록 해줬다

는 것. 전 의원은 특히 무려 26억원을 들여 매입한 해당 부지를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사업자에게 20여년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도 사실상 특혜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민간사업자가 6호광장에 노트북형 메인무대 등을 설치하는 빛과 소리의 거리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도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오거리 일대가 심각한 교통혼잡은 물론 레이저광선에 의한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가 유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7일자 사회면에 『오거리 6호 광장 사실상 특혜』 제하의 기사에서 전주시에서 위법 부당하게 최근 철거된 6호광장 부지내 가설 건축물이 건축법상 사용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2차례에 걸쳐 사실상 무기한적으로 사용 연장된 것과 매입한 해당부지를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민간사업자에게 20여 년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도 사실상 특혜라고 보도하였으나, 오거리 6호 광장부지는 1938년 5월 9일 총독부 고시 403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었으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당시의 법령인 건축법 제47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8조 2항에 의거 건축물의 존속기간과 기타 필요한 부관을 붙여 15년간 사용토록 건축허가 되었고 또한 1987년 8월 25일 연장허가는 당시 관련법령인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전까지 건축물을 사용하고 사업시행시 자진철거하도록 조건부 허가 되었으며, 2005년 12월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해당 건물주와 협

의하여 자진철거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3년간으로 한정하여 허가되어야 하는데 전주에서 건물주에 대하여 특혜를 줘 30여년이 넘도록 사용토록 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에 의거 1992년 5월 30일 개정 시행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확인 없이 잘못 인용 보도된 사항이고, 또한 전형직의원의 '전주에서 매입한 부지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구도심과 연계사업을 추진한다면 특혜의혹이라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발언내용을 확대 보도하여 마치 매입한 광장부지를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대여하여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사실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다양한 사업계획을 공모하고자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제3자를 포함한 접수된 사업계획 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민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을 득한 다음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여 민간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거리 6호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거리 일대에 심각한 교통 혼잡과 레이저 광선에 의한 운전자 시야방해로 교통사고가 유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최초 제안자의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추측 발언하고 이를 인용보도한 것으로 앞으로 전주에서는 공고기간이 종료되고 최종 조성안이 확정되면 광장조성에 따른 교통량 분석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경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이 경 옥

피신청인 : (주) 전북중앙신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16
대표이사 이 창 승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북중앙신문 18면

우측상단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시소유지 특정업체에 '무상대여')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4.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2월 7일자 18면 『오거리 6호 광장 사실상 특혜』 제하의 기사에서 “6호광장 부지내 가설 건축물이 건축법상 사용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2차례에 걸쳐 사실상 무기한적으로 사용 연장된 것과, 광장조성사업을위해 매입한 해당 부지를 특정업체에 무상대여하는 것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가설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것은 1992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로서, 6호광장 부지내 가설 건축물은 최초 허가시 당시법령에 의거 15년간 사용토록 허가되었으며, 1987년 연장허가 또한 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전까지 건축물을 사용하고 사업시행시 자진철거하도록 조건부허가된 것으로, 2005년 12월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라 해당 건물주와 협의하여 자진철거 되었다. 광장조성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조성안이 확정되면 광장조성에 따른 교통량 분석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전북중앙신문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4일자 18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피신청인 주장

정정·손배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전주시가 여론수렴 없이 전매청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전주시 (권한대행 부시장 이 경 옥)
피신청인 : 전북중앙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전북중앙신문 : 『김완주 전주시정 뒷걸음질 직격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3일자 3
면)

내 용 :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최형재 후보가 전주시정 민선 2~3기를 이끌었던 김완주 현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후보들이 으레 내뱉는 상습적인 비판과 달리 최 후보는 그동안 시청내 12개 위원회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세부적인 총평에 나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 후보는 김 시장의 재임 시절인 '민선 2~3기 진단'이라는 자료를 통해 "민선 2기는 공무원 조직을 통한 일방적인 시정운영과 지역사회기득권층과의 교류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들고 "민선 2기는 1기에 비해 더욱 후퇴, 관료출신 단체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35사단 이전 추진 및 이전부지 개발 방향 등 지속추진을 비롯, ▲내실 없는 기업유치 ▲고밀도 개발허용 ▲전매청부지 및 종합운동장 개발방향 독단 결정 ▲공론화 거치지 않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 ▲시민 참여 유도 못한 각종 축제 ▲짬통 전주

▲아파트 분양가 폭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반론보도문

- 제 목 : 주민의견 수렴 개발방향 결정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 3면 『김완주 전주시정 뒷걸음질 직격탄』 제목의 '전매청부지 및 종합운동장 개발방향 독단결정'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전매청부지 개발방향 독단결정은 사실확인 결과 2003. 3. 6.일에는 KT&G측 및 지역 주민, 시의원등과 토론회를 개최, 2003. 3. 23일에는 TV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인구유입을 통한 구도심 및 중앙시장 활성화와 부족한 녹지 등 공간이 확보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공원조성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합의를 도출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전주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KT&G와 협의끝에 개발방향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2005. 6. 28.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조기사업착수토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며, 독단결정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자료집에 근거한 보도로서 정정요구 내용이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전주시가 여론수렴 없이 전주종합운동장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전주시 (권한대행 부시장 이 경 옥)
피신청인 : 전북중앙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전북중앙신문 : 『김완주 전주시정 뒷걸음질 직격탄』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3일자 3
면)
내 용 : <2006전북조정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 3면에 『김완주 전주시정 뒷걸음질 직격탄』 제하의 기사에서 민선2기는 1기에 비해 더욱 후퇴, 관료출신 단체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매청부지 및 종합운동장 개발방향 독단 결정 등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주시에서는 전주종합운

동장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위하여 2004년부터 교수, 시의원, 체육시설운영위원 등과 간담회 시행, 전문용역 연구소에서 2005년 1월에 기본구상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각계 교수 및 컨벤션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시행하였고,

종합운동장은 당초 전북도유재산으로 소유권이 전 등기 추진중에 있으며, 당초 전북도와 무상양여계약 체결시 체육대체시설 이행조건인 목적외 사용시의 대체체육시설 설치이행 등 전북도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완료 후 시민여론 수렴을 거쳐 전시·컨벤션센터, 도시공원, 호텔 등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밝혀져 '종합운동장 개발방향 독단 결정'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자료집에 근거한 보도로서 정정요구 내용이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연수구가 어린이들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급식운영일지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구청장 정 구 운)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4.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인천일보 : 『어른들 행정 편의에 아이는 마음속 상처』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1일자 19면)
내 용 : 인천 연수구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구 공부방)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린이들의 자필 서명이 들어

간 급식 운영일지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급식 지원을 받는 어린이들의 자필 서명 강요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른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인천의 기초단체 중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곳은 연수구가 유일하다.

20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 4곳 143명의 어린이에게 1인당 3천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수구는 매월 초 각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 여부가 표시된 일일 운영일지를 보고 받은 후 이용한 어린이가 숫자만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구가 어린이들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일일운영일지를 지역아동센터에 요구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늘푸른교실' 등 연수구 내 지역아동센

터는 자필서명이 심신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연수구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연수구는 지금까지 이를 고수하고 있다.

역시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계양구나 서구, 부평구, 남동구, 동구 등은 자필서명이 아닌, 선생님의 출석 표시로 대신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연수구, 급식지원 어린이 서명 요구 논란”에 대한 정정보도문
- 본 문 : 인천일보는 지난 3월 21일자 사회면에 『어른들 행정 편의에 아이는 마음속 상처』 제목으로 “인천 연수구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급식 운영일지를 요구하며, 이를 고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는 어린이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급식운영일지를 요구한 바 없고, 지역아동센터 일일운영일지 사용을 지도하였으며 기재내용 중 출석란에 아동 스스로 이름을 기재토록 하였을 뿐 급식지원을 위한 서명을 요구한 바는 없으며, 특히 아동 스스로의 출석체크가 아동의 인권침해로까지 확대 해석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아동 스스로의 출석기제가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안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지난 2006. 3. 14. 지도점검시 협의한 적이 있으나, 보도 내용은 이를 고수하겠다고 언급했기에 이 또한 바로잡습니다.

또한 인천의 기초단체 중 자필서명을 요구한 곳은 연수구가 유일하다는 내용도 보도사실과 달리 현재 이를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바로잡는 바입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 동춘동 원인재길 33호

대표자 구청장 정 구 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4가 18-1

대표이사 장 사 인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6. 3. 21.자 19면 『어른들 행정 편의에 아이는 마음의 상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피신청인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린이들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급식운영일지를 요구하고 이를 고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급식운영일지가 아닌 일일운영일지를 받았고, 이에 대한 위 지역아동센터의 시정건의를 받고 그 개선책을 협의 중이었지만 이를 고수할 의도는 없었으며, 그러한 일일운영일지의 요구는 신청인 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였을 뿐 더러 그러한 절차로써 수혜자인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별지)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다.

2. 판단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조정대상 보도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위 보도 당시 지역아동센터로부터 급식수혜 어린이들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일일운영일지를 받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종전에 같은 방식의 일일운영일지 등을 각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받고 있던 중 이러한 절차가 수혜 어린이들의 자존심 내지 인격권에 손상을 주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 등의 지적에 따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시정하여 수혜 어린이들의 자필서명이 없고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가 출결상황을 확인한 서면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하

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이 위 보도를 한 이후 신청인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이 받은 서면의 명칭 <일일운영일지>를 <급식운영일지>로 표현하고, 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이를 고수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보도하고, 이러한 절차가 인권침해의 소지 또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허위의 보

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에 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정정보도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3.

□

신청인 회사의 직원이 뇌물을 받고 회수불능 대출금을 변제받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의정부권역보증센터 (지점장 김 ○ ○)

피신청인 : 연천저널2580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연천저널2580 : 『‘부정행각’으로 얼룩진 ○○축협』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자 1면)

내 용 : (전략)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좀처럼 수그러지질 않는 ○○축협의 문제점과 더불어 축협 직원이 대출문제와 관련 대출을 해주면서 서류를 부실하게 받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부실대출이기에 신용보증기금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직원이 부실대출을 해주어 대출금 회수불능으로 만든 직원에게 책임을 물으며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금품으로 회수불능의 대출금을 변제해주는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서류를 조작하고 로비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변제를 받게했다는 부정행각이 축협관계자에 의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신용보증기금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월 17일자 1면에 『‘부정행각’으로 얼룩진 ○○축협』 제하의 기사에서 축협직원이 부실대출을 해준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금품으로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로비를 하여 서류를 조작하고 회수불능 대출금을 부정 변제받게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신용보증기금은 서류를 조작하거나 로비로서 대출금을 부정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으며, 본 기사와 관련하여 명예를 훼손한 신용보증기금과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관내 경쟁신문을 상습적으로 무단 수거해 폐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사하신문 (주)간 사하타임즈

종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사하타임즈 : 『지역신문 발행인이라는 자가 이래도 되겠는가?』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6일자 3면)

내 용 : 지난 2005년 12월 20일 밤 11시경 사하지역에서 본지 사하타임즈와 함께 유사지역신문인 사하신문을 발행하는 조모 씨의 소유차량 뒤 트렁크에 본지 사하타임즈가 수백 부 가량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사하타임즈 관계자들이 적발, 112에 신고했으며, 즉각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회하에 뒤 트렁크에 수북히 무단 수거된 사하타임즈 수백 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중략)

사하신문이란 제호(신문 이름)는 사하타임즈 발행인이 이미 10년 전인 1996년 6월경에 주식회사 사하신문으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사업자 등록을 했음은 물론, 문화관광부에 일반시사주간신문 '주간 월요사하신문'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을 하고 신문을 발행해왔으며, 이후 '주간 수요사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 2004년 7월경엔 '주간 열린사하신문'으로 다시 제호를 변경(이때부터 한동안 조씨는 발행인이 발행하는 신문의 제호에 '열린'이란 글이 들어갔다가 열린당 신문으로 매도하고 다녔다). 2005년 9월경엔 다시 조씨의 사하신문과 유사제호로써의 주민들 혼동을 피하기위해 '사하타임즈'로 제호를 변경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다.

따라서 2001년 말경에 발행인 밑에서 4개월여 광고영업을 했던 조 씨가 2002년경부터 사하신문이란 제호(당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무자격요건으로 일반시사지가 아닌 동네 생활정보지 성격의 특수지)로 등록하고 사하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한때나마 자신이 몸 담았던 언론사 발행인에게 있어 인면수심적 행위로 도의적으로 어긋남은 물론, 본지 사하타임즈의 발행주체사인 주식회사 사하신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또한 동일지역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유사제호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법행위라 할 수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2006년 1월 16일자 제6호 3면 『지역신문 발행인이라는 자가 이래도 되겠는가?』 제하의 기사에서 사하신문 발행인 조모 씨가 경쟁사 사하타임즈 신문을 상습적으로 무단 수거 폐기해왔으며, (주)사하신문 상호를 도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씨는 당시 이사중이었으며 사하타임즈 신문을 무단 수거 폐기한 사실이 없고, 사하타임즈 발행인 밑에서 광고 영업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특수주간지로 사하신문을 발행해 왔고 2001년 7월부터 일반주간지로 등록되었으므로 (주)사하신문 상호를 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월 16일자 3면 『지역신문 발행인이라는 자가 이래도 되겠는가?』 제하의 기사에서 사하신문 발행인 조모 씨가 경쟁사 사하타임즈 신문을 상습적으로 무단 수거 폐기해 왔으며, (주)사하신문의 상호를 도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하신문 발행인 조모 씨는 사건 당시 사무실 이삿짐을 나르는 중이었고, 이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사하타임즈 신문 수십 부가 사건에 찍힌 것일 뿐, 사하타임즈 신문을 무단 수거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씨는 또 (주)사하신문이 발행하던 '수요 사하신문'은 2000년 4월 25일 이후 발행이 일시 중단되었고, 조씨가 2001년 7월부터 '사하신문'을 등록, 발행해 왔으므로 상호 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씨는 (주)사하신문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 2000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수요 사하신문의 발행이 일시 중단되어 실

제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 4. 16.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사하신문'에 상자기사로 1회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경쟁사라 여긴...)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사하타임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6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관내 경쟁신문을 상습적으로 무단 수거해 폐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로즈저널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4.

처리결과 : 합 의

니다.

사하타임즈에서 제공한 사진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보도내용

로즈저널 : 『사하의 기인열전?!』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4일자 26면)

내 용 : <2006부산조정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2006년 1월호(통권 제2호) 26면 『사하의 기인열전?!』 제하의 기사에서 사하신문 발행인 조모씨가 경쟁사 사하타임즈 신문을 상습적으로 무단 수거 폐기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씨는 당시 이사중이었으며 사하타임즈 신문을 무단 수거 폐기한 사실이 없고, 게재된 사진 설명에서 '수북하게 무단 수거된'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사하타임즈는 4부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게재된 사진은 현장 사진이 아니고 일반사진에 합성된 사진임을 밝힙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월호 26면 『사하의 기인열전?!』 제하의 기사에서 사하신문 발행인 조모씨가 경쟁사 사하타임즈 신문을 상습적으로 무단 수거 폐기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하신문 발행인 조 모씨는 사건 당일 사무실 이삿짐을 나르는 중이었고, 이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사하타임즈 신문 수십 부가 사진에 찍힌것일 뿐, 사하타임즈 신문을 무단 수거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로즈저널의 합의후 최초 발행호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사하의 기인열전)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이 법인 설립자금 차용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4.
처리결과 : 합 의

값아야할 책임이 있다며 수원남부경찰서에 김씨와 J법무사를 고소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16일자 사회면에 『법인 설립자금 차용 ‘사기극’』 제목으로 “법무사 사무실 소개로 억대의 법인 설립자금을 차용해 쫓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기 사건 발생”, “민원서류 대행업을 하는 이모 씨(32)는 지난달 28일 J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자금을 차용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난 2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모 씨(45)를 만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J법무사는 이모 씨와 김모 씨 모두 만나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일뿐 아니라, 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해 주도록 의뢰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지난 2일 J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모 씨와 김모 씨가 함께 만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6일자 『법인 설립자금 차용 ‘사기극’』 제하의 기사중 ‘법무사 사무실의 소개로 억대의 법인 설립자금을 차용해 쫓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법무사측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에 2006년 4월 4일 2면 또는 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보도내용

경기일보 : 『법인 설립자금 차용 ‘사기극’』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법무사 사무실의 소개로 억대의 법인 설립자금을 차용해 쫓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수원남부경찰서와 J법무사 등에 따르면 민원서류대행업을 하는 이모 씨(32)는 지난달 28일 J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자금을 차용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난 2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모 씨(45)를 만나 농협중앙회 동수원지점에 주식회사 설립자금 1억원을 대신 예치해 준 뒤 다음날 농협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가 다음날인 3일 오전 11시께 J법무사에서 사무장 김모 씨(여)를 만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 김씨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받기 위해 약속장소인 농협으로 갔으나 김씨는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씨는 약속시간보다 1시간 앞선 오전 10시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을 농협에 제출해 법인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회사 설립자금 1억 원을 인출해 갔으며, 이후 김씨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김씨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이씨는 J법무사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업무가 진행됐기 때문에 법무사가 차용금 1억 원을

부제목(서류대행업자 “법무사가 공동책임”고소)과
갈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
게 한다.

• 이 건과 관련 민, 형사상의 소송은 제기하지 않
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4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남편이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해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기사삭제)

중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7.

처리결과 : 취 하

(2006년 2월 23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Y T N : 「오락실 직원 ‘금품 갈취’ 공기충 싸 살해」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한미 FTA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한 이유가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외교통상부 (장관 반 기 문)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내 용 :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제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
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자극을 받아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의 이런 방침 변경은 자국의 농축산업을 보호하
려는 것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미국의 4대 선결
조건 요구만 받아들이고 반대급부를 제대로 챙
기지 못했다.

외교통상부의 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의 단독 만남
에서 “우리가(2004년에) 캐나다를 상대로 자유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

보도내용

한겨레 : 『미 요구만 수용 실익 못 챙겼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5일자 1면)

한국에 협정체결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중략)

김 대표는 또 한국이 미국의 4대 선결조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반대급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전에 요청한 것이 없어 그렇게 됐다”고 다소 궁색한 설명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한겨레신문은 지난 2006년 3월 25일자 보도에서 『미 요구만 수용 실익 못 챙겼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미국의 4대 선결조건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반대급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 한미FTA 협상수석대표가 “우리 기업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전에 요청한 것이 없어 그렇게 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한겨레신문 기자는 “한국이 미국의 4대 선결조건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반대급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김 대표에게 한 바 없으며, 김

대표가 “(외교통상부가 4. 28.까지 한미 FTA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서면 접수키로 한 것과 관련) 그동안 우리 업계의 의견제출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협상에서 우리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이 많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언급을 마치 위 질문에 답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미간 연간 교역액이 700억불을 넘는 상황에서 양국간 크고 작은 통상 현안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바, 자동차배기가스기준 문제 등은 이런 취지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김○○ 대표와 인터뷰 당시 녹음을 해 두었고, 녹취한 내용을 토대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

송정산업단지 개발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토지 소유주 몰래 부지매각을 추진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 주식회사 (대표 이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기일보 : (1) 『‘토지주 몰래’ 부지매각 추진』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3일자 1면)

내 용 : 안성시로부터 송정산업단지의 민간개발업체로 선정된 C산업이 토지주들에게 보상도 하지 않고 행정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이를 부동산에 매각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시와 토지주, C산업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5월 산업단지 개발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뒤 지난 2000년 3월 조성사업 개발계획(안)을 C산업(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민간개발방식으로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 일원 36필지 도시계획외지역 3만 9천여 평에 송정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사업시행사로 지정받은 C산

업이 지난해 5월 도로부터 실시설계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업용지로 용도변경된 토지를 토지주들에게 보상비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10월 평택시 E도 부동산에 수십억원에 매각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업체는 낮은 보상가 제시로 토지주들과 매입협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심의를 신청하고 공람공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후략)

(2) 『송정단지 개발문건 곳곳 유출』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4일자 1면)

〈속보〉안성시로부터 송정산업단지 민간개발 업체로 선정된 C산업이 부지를 부동산에 매각·의뢰(본보 13일자 1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개발문건이 평택시 안중·포승·송탄 일대 부동산에 유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C산업 이○○ 대표(63)가 “매각·의뢰된 관련 서류들은 신원미상 인물의 사무실 침입으로 서류를 도난 당했거나 건설업자 방문에 의한 유출”이라고 주장하고나서 주목되고 있다. (후략)

(3) 『안성 송정산업단지의혹 밝혀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4일자 19면)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 일원 3만9천여 평의 송정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시행사의 석연치 않은 행태가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 안성시로부터 송정산업단지의 민간개발방식에 따라 개발업체로 선정된 시행사가 토지주들에게 의당 해야할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단지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에 땅매각을 의뢰한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다. 당연히 파문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국의 조치는 이상하게도 미온적이다. 행정주체로서의 해결 의지도 약한 것 같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후략)

(4) 『농지법 어기고 투자자 몰색』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4일자 1면)

〈속보〉안성시 서운면 송정산업단지 부지와 관련, 경기도와 안성시,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본보 22

일자 1면)한 가운데 C산업(주)측이 관련법상 대체농지 및 산림자원 조성비 등 10억여 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부천시 D건설사와 C산업(주)측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D건설사가 대체 농지를 비롯 산림자원 조성비 10억여원의 대납조건을 내세워 투자자를 찾고 이 과정에서 안성시 대덕면 S사에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선투자자를 제의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3월 13일자 『‘토지주 몰래’ 부지매각 추진』 제하의 기사 및 3월 14일자와 3월 24일자 송정단지 관련 기사에서 송정단지 민간개발업체가 토지주 몰래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개발문건을 곳곳에 유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허가와 관련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송정산업단지 부지는 매각할 수 없는 부지이므로 매각을 위한 개발 문건을 곳곳에 유출시킬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의 개발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2006. 3. 13자 『‘토지주 몰래’ 부지매각 추진』 제하의 기사 및 3. 14.자와 3. 24.자 송정단지 관련 기사에서 송정단지 민간개발업체가 토지주 몰래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개발문건이 곳곳에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허가와 관련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주민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정산업단지 개발 업자는 송정산업단지 부지는 매각할 수 없는 부지이므로 의도적으로 매각을 위한 개발 문건을 곳곳에 유출시킨 사실이 없으며, 또한 개발 허가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에 합의 후 7일 이내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되, 제목 활자 크기는 20급으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게시한 시정개혁촉구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
(지부장 강 ○ ○)

피신청인 : e-서부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e-서부신문 : 『법을 비웃으며 주민에게 도전하는 광명시공무원노조원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3일자)

내 용 : 초봄의 날씨가 완연한데도 광명시청은 아직도 긴 겨울인듯하다. 시청 앞 담장은 찌든때에 찌들대로 찌들은 가운데 공무원나리들께서 추운담장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겨울내 천연색의 플래카드가 끊임없이 나부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공무원노조가 광명의 부정부패를 막고 건전한 광명시를 만들겠다는 바람직한 구호부터 그동안 갖가지 구호가 수많은 주민들의 눈을 자극하였지만 그 플래카드의 부착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각한 공무원노조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를 위해 시민은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영세상인들이 피나는 돈을 들여 생업을 위해 설치하는 간판이나 플래카드는 법에 조금만 어긋나

도 가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시청사 앞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다니 공무원노조의 두 얼굴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

더욱이 최근 구호를 살펴보면 공무원이기를 거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수십억을 투입하고도 부실시공으로 사용도 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단지 시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도저히 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탈속에 숨어있는 오만한 자유를 부르짖으며 숫자의 힘을 믿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는 공무원노조의 집행부는 철면피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의 혈세 6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년간 공사를 한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동조차되지 않고 있는데도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외치며 기세등등한 공무원노조원은 지난 2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e-서부신문은 3월 13일자 『법을 비웃으며 주민에게 도전하는 광명시공무원노조원들』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의 현수막 게시는 본지 보도내용과는 달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득하고 행한 합법적인 시위의 한 방법이며, 불법한 행동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제기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이며, 사

업을 추진하도록 지시를 내린 광명시장의 정책적 실패부분을 광명시민에게 알려 혈세낭비를 줄이고 광명시장의 또 다른 실정을 막기 위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광명시지부의 정당한 시위였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7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

광명시 철산동 222-1

대표자 지부장 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e-서부신문사

광명시 철산동 464-11

대표이사 김 화 석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e-서부신문>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손해배상금으로 5, 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e-서부신문> 2006. 3. 13.자 <나팔수>라는 신문칼럼에 『법을 비웃으며 주민에게 도전하는 광명시공무원노동조합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시 청사 담장에 겨울내 여러가지 구호를 쓴 플래카드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불법이며 더욱이 그 내용 중에 광명시가 수십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한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동조차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백○○ 시장 한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이러한 졸속행정에 의한 예산낭비가 광명시 산하 여러 담당 실무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상당부분 있을진대 그 책임을 단지 시장에게만 전가하고 공무원 노조구성원인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광명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는 취지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와 같은 공무원노조의 현

수막 부착은 어디까지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고 행한 합법적 시위의 한 방법이었고,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광명시장의 정책판단의 오류를 지적하여 또 다른 시장의 실정을 막기 위한 정당한 내용이었다며 <별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언론피해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6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디까지나 그 존재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가치평가적인식의 표현인 의견, 감정, 논설, 비평 등과 대비되는 것을 말하며, 다만 그러한 비평,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평 등의 전제된 사실이 잘못 보도되었을 경우에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살펴보면 그 주된 내용은 신청인측 구성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솔선하여 법을 지키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그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엄중한 질책과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 내지 논평, 주장으로써 이른바, 위 법소정의 <사실적 주장>이 아닐 뿐 더러, 그러한 의견 내지 비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신청인측이 한 현수막의 부착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현수막에 쓴 내용 중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졸속행정에 의한 예산낭비와 관련하여 그 실무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진실하지 아니하여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행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에 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정정보도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2006. 4. 3.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회식자리에서 개별화물연합 전임 간부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교통환경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29.
처리결과 :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교통환경신문 : 『개별화물연 전무 불손한 언사 도마
위에』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0
일자 5면)

내 용 : 지난 16일 오후 개최된 전국개별화
물연합회(회장 안○○) 정기총회에서는 배○○ 전무
이사에 대한 불신임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배○○씨가 개별화물연합회 전무이사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2월 1일로 1년여밖에 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불신임 문제가 거론될만큼 난감
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신의
언사 때문이다.

개별화물연합회 전임 회장이었던 모씨에 따르면
배 전무는 지난 2월 하순경 있었던 연합회 직원들
과의 식사 자리에서 K도협회 이사를장을 거론하면서
노골적인 욕설을 하고 이날 식사를 함께 한 전임
D회장에게 “내게 도전하는 것이냐?”고 불손한(?)
발언을 하는 등 전무이사로서의 품위를 망각한 상
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20일자 5면에 『개별
화물연 전무 불손한 언사 도마위에』 제목으로 전
국개별화물연합회 배○○ 전무이사가 K도협회 이
사장에게 노골적인 욕설을 하고 전임 D회장에게
불손한 발언을 해 품위를 망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배○○ 전무이사는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품위를 망각한 것도 아닌 것으로 밝
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9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주간 교통환경신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61-7

한광빌딩 501호

발행인 정 화 순

조정대리인 장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별
지 기재 보도문을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교통환
경신문 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개별화
물연 전무 불손한 언사 도마위에 관련 반론보도)
활자크기는 조정대상 기사 부제목(총회에서 논
란…)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신청인은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6.

〈별 지〉

- 제 목 : “개별화물연 전무 불손한 언사 도마위에” 관련 반론보도
- 본 문 : 교통환경신문이 지난 3월 20일자 5면 『개별화물연 전무 불손한 언사 도마위에』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개별화물연합회 배○○ 전무이사가 K도협회 이사장에게 노골적인 욕설을 하고 전임 D회장에게 불손한 발언을 해 품위를 망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전무이사는 저녁회식을 마치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업계의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을 한 일은 있지만, 품위를 망각할 정도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부가 FTA 추진을 위해 미국의 요구대로 약값 재평가작업을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유 시 민)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1) 『미국 압력에 ‘약값 인하’ 중단』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4일자 1면)

내 용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약값 재평가’ 제도의 개정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대신 약값 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양보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을 추진해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회의에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협상의 걸림돌이 된다며 취소할 것을 요구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후략)

(2) 『FTA ‘링’ 오르기도 전에 의약품 주권 ‘백기’』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4일자 5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현안 중 하나인 의약품 가격 문제는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서비스 시장의 뼈대를 뒤흔들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의 약값 재평가 작업 포기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전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을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후략)

(3) 『국민 건강도 내던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4일자 19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농업과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서 얼마나 큰 역풍을 맞을지, “(본협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정부 다짐이 뜻대로 될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미국 압력에 ‘약값 인하’ 중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4일자 1면, 5면 및 19면에서 『미국 압력에 ‘약값 인하’ 중단』 관련 기사에서 우리정부가 2005년 하반기 건강보험 약가 재평가 제도 개정작업을 추진하던 중, 한-미 FTA

추진을 위해 미국의 압력을 수용, 제도 개정작업을 중단.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국민건강이라는 목표를 양보함으로써 FTA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의약품 주권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와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기사 제목과 달리 올해 3월 1일에도 약가 재평가를 시행하여 591억 원의 재정을 절감한 바 있으며, 2005년 하반기 당시에는 올해 3월 1일자로 인하 시행한 약가재평가계획 외에 별도의 방안을 추진한 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

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FTA를 위해 의약품 현안을 양보하거나 “의약품 주권”을 “백기” 양도했다거나 혹은 “국민 건강도 내던진”바 있다는 보도는 근거없는 것이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한겨레신문 3월 4일자 1면, 5면 및 사설 『미국 압력에 ‘약값 인하’ 중단』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측 한겨레신문은 5월 4일까지 신청인측 담당자와 인터뷰하여 보도한다. □

정부가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디지털시네마 전환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화관광부 (장관 김 명 곤)
피신청인 : 전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자신문 : 『문화부가 오히려 발목잡아』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4일자 2면)

내 용 : 정부가 민간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국내 디지털시네마 전환 사업의 발목을 오히려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 파일로 전환된 영화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려는 시도가 이미 복합개봉관 업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뒤늦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시네마 테스트베드를 구축·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미 복합상영관 업체들이 디지털영사기

(DLP)를 비롯한 관련 장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중이다. 일부 업체는 네트워크 전송 방식의 디지털시네마 상영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 주도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실효성과 함께 중복 투자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략)

문화부는 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디지털시네마 한국적 기술표준화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콘텐츠진흥원은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디지털시네마기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늦어도 내달에는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테스트베드사업 주체와 기술보고서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디지털시네마 사업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6년 3월 24일자 2면 『문화부가 오히려 발목잡아』 제하의 기사에서, 뒤늦게 문화부가 디지털시네마 테스트베드를 구축·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문화부 주도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실효성과 함께 중복투자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대두

되고 있으며, 문화부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디지털시네마 한국기술표준화 보고서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테스트베드 사업주체와 기술보고서 주체를 달리하여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화부는 이미 2005년 7월 “문화강국(C-Korea) 2010”와 같은 해 8월 디지털시네마 비전위원회를 통해 국내 디지털시네마산업의 정책육성의지를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발한 것으로 밝혀져 문화부가 민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네마 테스트베드는 극장의 상영뿐 아니라 촬영, 후반작업, 압축, 전송, 배급 등 일련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요소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환경이므로 복합상영관 업체들이 디지털로 상영할 영사시스템과 관련장비를 도입했다고 해서 테스트베드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내 디지털시네마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를 통해 디지털시네마 일련의 과정에서 자체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테스트베드는 장비 및 시스템 공급업체, 기술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장비와 기술개발, 시험방식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간의 혼란을 막고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다 많이 표준기술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네마 기술개발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국가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전략적 제휴방안을 모색해 왔던 사업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전자신문 : 『한국영화의 미래 ‘디지털시네마’』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1일자 26면)

내 용 : (전략)세계 각국은 디지털시네마로 전환하면서 향후 새롭게 전개될 영상산업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해 세계 제일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IT강국이라는 강점과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산업 미래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05년 디지털시네마 전환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을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 중 핵심과제로 발표했고 이어 8월에는 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전위원회를 출범, 지난 1월 비전위원회의 ‘디지털시네마 비전 2010’ 정책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총 490억 원의 국고를 투입, 본격적인 디지털시네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공공 분야에서 최소한 초기 추동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시네마 산업의 핵심 추진과제는 첫째 디지털시네마 기초 인프라 구축, 둘째 차세대 디지털시네마 기술 개발, 셋째 동아시아 표준과 글로벌마켓 선도를 위한 국제 교류, 넷째 우리 영화의 문화적 다양성과 향유 기회 확대, 마지막으로 디지털시네마를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확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육성 의지가 계기가 돼 그동안 고가 장비구입 등 투자에 소극적이던 민간기업들이 최근 복합상영관을 중심으로 상영시스템 분야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부의 디지털시네마 정책 발표 이전 DLP영사기와 서버 등 디지털시네마 상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스크린은 11곳에 불과했으나 정부정책 발표 이후 올해 3월 말 현재 48곳으로 급증했다.

문화부는 첫 사업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테스트베드는 촬영·후반작업·패키징·전송·상영에 이르는 전 부문에 걸친 기술환경 검증을 가능케한다. 주로 신기술 시험무대를 일컫는 테스트베드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 분야 등에서 기술개발과 산업안착촉진 효과를 얻은 바 있다.

국내에서 디지털시네마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술적 공통규범이 필요한데, 이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술과 장비를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수적이다. 대기업화된 배급사나 상영관들이 디지털시네마 상영을 위한 서

버와 프로젝트를 도입했다고 해서 테스트베드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영세 영화업체 그리고 새로운 장비와 기술 개발자 처지에서는 공공기관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시험환경이 요구된다.

중복투자자와 기술적 혼선 속에서 외국표준화를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영상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주도해 갈 미래를

위해서는 디지털시네마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산업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머지 않아 영상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본지 3월 24일자 2면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디지털시네마 사업, 문화부가 오히려 발목잡아’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밝힌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

국방부가 공개입찰 규정을 어기고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군인공제회에 위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나라사랑카드’ 현행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4일자 1면)

내 용 : 군인·군사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데다 특혜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이 공개입찰을 하도록 한 현행법규를 어긴 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위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과 국방부 일부 인사들은 13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해 5월 약정을 맺어 군인공제회에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맡긴 것은, 국가사무 위탁을 공개입찰로 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는 “행정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모를 거치지 않은 채 군인공제회와 위탁운영 약정을

맺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대통령령이 아닌 군인공제회법에 의거해 업무지시 성격의 약정서를 체결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위탁의 경우 군인공제회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이를 아끼려고 정식 계약 약정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한겨레신문 3월 14일자 1면에 『‘나라사랑카드’ 현행법 위반』 제하로 보도된 기사에서 “국방부가 공개입찰을 하도록 한 현행 법규를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군인공제회에 위탁”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상 위탁이란 행정기관이 가진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등 민간기관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상기 위탁업무가 아닌 순수 민자유치 형태의 사업(나라사랑카드 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본 인프라 구축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으로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국가예산의 투입 없이 병무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이며 05년 정부혁신우수사례로 선정, 국제정부혁신박람

회 출품되었으며 최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걷는 장면을 허락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남궁○○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1.
처리결과 : 합의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하여 주위 시선을 끌기 위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대생처럼 비취졌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짓궂은 말을 들었으며, 사진과 동일한 옷이나 짧은 치마는 입기 꺼려지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 『봄은 미니스커트와 함께』 제하의 보도 사진 (2006년 3월 23일자 2면)
내 용 :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젊은 여성들의 옷차림도 한결 산뜻해졌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대학가에서 진을 소재로 한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학생들이 주위 시선을 끌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학졸업할 때까지(휴학기간 포함) 한국경제신문을 무료로 배송한다.
-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경영학 관련 서적 10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소속 기자 및 임직원에게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그들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한·미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전략지침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대량 탈북·자연 재해 대응책 구체화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7일자 3면)
내 용 : 한·미 양국은 북한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양국군의 군사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 5029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이르면 다음달 중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2003년 이후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한 작전계획 5029-05 작성을 추진

하다 지난해 초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문제 제기로 작전계획화 작업을 중단한 뒤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에서 양국은 1999년 만들어진 개념계획을 작전계획 직전단계까지 구체화하되, 북한 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상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시나리오는 빼거나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주목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7일자 3면 『대량 탈북·자연재해 대응책 구체화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양국군의 군사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 5029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이르면 다음달 중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이것은 제목과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개념계획 5029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에 관해 협의 과정에 있으나,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따라서 빨라도 4월 중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문서에 서명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포괄적인 개념을 담은 계획문서이므로 대량 탈북·자연재해 대응책을 구체화할 수 없어”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3월 7일자 3면 『대량 탈북·자연재해 대응책 구체화한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현재 한·미 양국은 개념계획 5029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에 관해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4월 15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종합 2면에 위 보도문을 통상의 예에 따라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본 건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소속 기자 및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그들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언론인 주택조합 모집 책임자로 나서 동료 직원들을 가입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시사저널 : 『기자들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으니...』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8일자 40~42면)
내 용 : (전략) 기자가 이 사건을 입체 추적한 결과 김○○ 씨가 주도한 한남동 주택조합 사기 피해 조합원 가운데 언론인은 중앙 일간지와 방

송사 등에 소속된 기자·PD·아나운서 등 51명이었다. 그 가운데 KBS의 기자·아나운서·PD가 17명으로 가장 많다. 조합원 모집 책임은 KBS 박 아무개 아나운서가 맡았다. 박씨는 당시 모집책임이 되어 주로 후배 기자와 PD 등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했는데, 그의 권유로 조합원이 된 이들은 그동안 김○○씨의 사기 행각을 눈치채지 못한 채 적게는 2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기까지 조합 분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러나 정작 언론 분야 모집 총책임인 박아나운서는 지금까지 조합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가 낸 돈은 조합 운영비 3백90만 원이 전부, 초기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조합이었지만 그나마 조합원 자격조차 가질 수 없었던 박씨가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이다. 현재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박아나운서는 그동안 주요 조합행사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중요한 조합 관련서류에 자기 직인을 찍음으로써 책임자 역할을 해왔다.

자기는 조합 분담금 한 푼 안 내고 후배 직원들에게는 돈을 밀어넣게 한 뒤 지금까지 조합비상대책위원을 맡은 데 대해 박아나운서는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자까지 쳐서 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래 언론인 조합 대표였던 같은 회사 이 아무개 PD로부터 부탁받고 후배들을 조합원에 끌어들이는데 그가 외환위기 당시 명예퇴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언론인 대표를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중략)

김○○씨와 오○○씨가 주도한 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모집 대표들은 자금 지원까지 받았다고 한다. 한남동 주택조합장 오○○씨는 “언론과 국방부 모집책임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근 김○○ 씨를 구속한 뒤 오○○ 조합장을 업무 방해 따위 혐의로 기소한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초 한남동 주택조합 사업이 김○○씨의 사기극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박아나운서의 권유에 따라 조합원이 된 일부 KBS 기자들은 지난해 들어 사실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28일자 제857호 40~42면 『기자들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으니...』 제하의 기사에서 한남동 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해 모 방송사 박 모 아나운서가 당시 한남동 언론인 주택조합 모집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가입을 적극 권유했으며 한남동 연합 주택 조합장으로 모씨가 “언론과 국방부 모집책임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고 언급하면서 마치 박모 아나운서가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주택조합 언론인 모집 책임자는 박모 아나운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주택조합에 가입한 박모 아나운서의 동료들은 박모 아나운서의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 의해 조합에 가입했던 것이며 연합주택조합장 오모 씨가 언급한 2억 원은 언론과 국방부 모집책임이 아닌 주택조합원 모집전문 용역회사인 (주)○○에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1일자 제857호에서, 한남동주택조합 사기피해자들 중 KBS 조합원 17명의 모집책임을 KBS 박 아나운서가 맡았는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일부 모집 대표들은 자금지원을 받았고, 연합주택조합장이 “언론 분야와 국방부 분야 모집책임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 아나운서는 당시 언론 분야 조합원 모집책임은 자신이 아니었고, 연합주택조합장이 말했다는 용역비 2억 원은 조합원모집 용역회사인 (주)○○시티에 지급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시사저널 5월 1일자 까지 판권표시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크기로 보도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재건축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강원조정4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현 ○○
피신청인 : 원주투데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원주투데이 : 『○○아파트 재건축 또 ‘빠그덕’』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7일자 16면)

내 용 :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통해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 정상화를 선언했다.

총회를 통해 임시이사 체제를 마무리 하고 부족했던 임원진도 보강해 조합업무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현모 씨(48·여)가 임시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또 다시 조합 업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임시총회 결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게 소송제기의 이유.

이 때문에 원주시로부터 조합임원변경 승인을 얻고 정비업체 선정 등 정상적인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11월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도 용적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무상지분이 없어지게 된다.

조합에서는 이번 법적 소송이 정리되는 대로 재건축에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끝도 없고 실익도 없는 법적 공방이 자칫 재건축 무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3월 27일자 16면에 『○○아파트 재건축 또 “빠그덕”』 제하의 기사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현모 씨(48·여)가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과 함께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면서 또 다시 조합 업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임시 총회상 중요한 하자가 있다는 게 소송제기의 이유. 그에 덧붙여 오는 11월 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무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 사업 승인을 받아도 용적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무상지분이 없어지게 된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씨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인 무상지분(13평)을

지키기 위함이며, 당면 과제인 11월 말까지 착공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건축이 무산되고 용적률이 떨어지며 무상지분이 없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원주투데이 : 『본보 3월 27일자 16면 ‘〇〇아파트 재건축 또 빼그덕’ 기사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4일자 16면)
내 용 : 본보 지난 3월 27일자 16면에 보도된 『〇〇아파트 재건축 또 ‘빼그덕’』 제하의 기사와 관련, 〇〇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인 현〇〇

씨의 반론을 재개합니다.

기사에서는 〇〇아파트 재건축이 착공시한을 넘길 경우 재건축이 무산되고 용적률이 떨어져 무상지분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용적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지분이 없어진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조합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과 임원진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조합장에 낙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합원의 무상지분(13평)을 지키고, 공사착수 시한인 11월 29일까지 착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인 조합이 파업복귀 후 협상을 재개하면서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영 훈)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3.
처리결과 : 취 하

제 철회▲대량 징계방침 취소▲단체협상 재개▲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파업중 손실 150억여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또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한 노조원 200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한 상태다. (후략)

보도내용

문화일보 : 『철도노조 사실상 재파업...경부선 감축운행』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30일자 2면)
내 용 : 철도공사 노조가 회사측의 파업조합원 징계강행방침에 반발, 사실상 파업을 재개함에 따라 일부 열차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중략)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은 파업가담자에 대한 철도공사의 강경대응 방침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 복귀 후 협상재개와 함께 ▲직위 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30일자 2면에 『철도노조 사실상 재파업...경부선 감축운행』이라는 제목으로 철도노조 요구사항이 △직위해제 철회 △대량징계방침 취소 △파업기간중 임금 지급 등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노사 협상 재개와 징계최소화이며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철도노조의 현재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현장복귀 이후 사측이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협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근무지정을 한것에 항의하며, 출근 이후 총회투쟁을 전개한 조합원을 무단 결근 처리하지 말 것'이며 이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차량 분야에서 작업거부를 확산하고 있는 것은 파업 기간 선복귀 후교섭을 주장해왔던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조건 없는 복귀 이후 한달이 다 되도록 단체교섭을 재개하지 않고 그 동안의 사측이 제시해 온 협상안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으며 파업 종료 이후 노사관계의 정상화보다는 대량징계를 통한 노조 무력화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철도노조의 주요한 요구는 '노사협상 재개를 통한 자율적 단체협약 체결'과 '노사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징계와 손해배상 등 파업 후유증 최소화'입니다.

니다.

따라서 문화일보의 30일자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일자 2면)

내 용 : 지난 3월 30일자 문화일보 2면 '철도노조 사실상 재파업' 제하의 기사에서 "철도노조가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철도노조에서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 조합이 파업복귀 후 협상을 재개하면서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영 훈)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3.

처리결과 : 취 하

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106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신청 후 보도문

한국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6일자 10면)

내 용 : 3월 30일자 13면 철도노조 사실상 재파업기사 중 "철도노조가 노사협상재개,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무노동무임금 등 사내징계철회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관련, 철도노조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 『철도노조 사실상 재파업 돌입』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30일자 13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0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0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시장인 신청인과 말단공무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조간경남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간경남 : 『○○시장 면담요청 직원 맞아 입원』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30일자 3면)
내 용 : “시장님께 받을 돈이 있으니 만나게 해달라”, “뭘 말이나 차근차근 얘기하자”
말단 공무원이 현직시장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면담을 요구하다, 부속실 공무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보름이 지났으나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경 ○○시장 부속실, ○○시 공무원 A모 씨가 “시장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만나야 겠다”며 고함을 치며 막무가내로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다. (중략)

A씨가 시장실을 찾아 소란을 피워야 했던 이유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황 시장에게서 받을 돈이 있음을 B씨의 말에서 확인됐다.

기자가 B씨의 말을 인용해 재차 묻자, A씨는 그제서야 “젊은 놈(비서실 직원)이 나이도 새카만 게...그리 싫더라 그래서...”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3월 30일자 3면 『○○시장 면담요청 직원 맞아 입원』 제하의 기사에서 시장 부속실에서 ○○시청 공무원의 업무상 말다툼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시장이 이 다툼에 개입되어 있고 A씨와 금전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와 ○○시장간에는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와 정당의 공천을 앞둔 ○○시장의 명예를 실추시켜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 학교에 정상적인 학칙과 규정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서울○○○대학교 (총장 조 ○ ○)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비 리 멧들었던 서울○○○대 사태, 아직도 갈등 중』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7일자)

내 용 : (전략) 이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난 재단이 학교를 ‘떡 주무

르듯' 운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해 현재 많은 사이버대학들이 학내 분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사이버대학인 서울○○○대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는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소속 교수들이 직접 나서 '총장불신임'을 선언(2월 24일)한 상태다. 학생들 또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지난 21일부터 총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3월 새 학기 시작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대학 전 부총장이었던 황○○ 씨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교육부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결과 '학교폐쇄 게고조치'가 내려질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고통은 전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칙없는 서울○○○대, '규정 만들자' 요구도 목살"

사태가 불거지자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생과 교수 그리고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여기에서 임시총장(총장 직무대행)과 처장단을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 결과 학교는 점차 정상궤도로 돌아서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재단 측이 조○○ 박사를 새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학교운영 전반을 감시할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한 비대위가 학칙 등의 규정을 요구했지만 새 총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학교당국이 외부에 용역을 의뢰, 규정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 총장의 전횡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게 교협 측 주장이다. (중략)

"전 부총장 저지른 비리,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 몫"

학생들을 분노케 만든 어처구니없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 부총장인 황○○ 씨가 교비를 횡령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콘텐츠 제작비용을 부풀려 계약했던 대금 76억이 2006년 학교예산에 '부채' 명목으로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고등교육법에 적용받지 않는 탓에 학교 운영은 재단 전입금 한 톨 없이 학생들이 낸 등록

금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교수들이 '총장불신임'까지 선언하고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3월 27일자 사회면에 『비리 멧들었던 서울○○○대 사태, 아직도 갈등 중』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대학교가 학칙과 규정이 없고, 총장이 규정 제정의 요구도 묵살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학칙과 규정이 없고 규정제정 요구를 묵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서울○○○대학교 설립의 주요요건으로서 학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에도 보고된 바 있고, 작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규정 제·개정 작업을 해왔으며 2005년 10월에는 총장이 외부 컨설팅을 의뢰한 예도 있는 등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3월 27일자 사회면에 『비리 멧들었던 서울○○○대 사태, 아직도 갈등 중』 제목으로 전 부총장의 횡령을 위해 부풀려진 용역업체 콘텐츠 제작비용 76억이 학교 예산에 부채명목으로 잡혀있으며, 이를 학생 등록금으로 내려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서울○○○대는 용역업체의 콘텐츠 제작비 76억의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계법상의 이유로 예산에서 삭제하면 현행회계준칙에 저촉이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전 부총장의 횡령액과 과다 청구된 금액을 산정한 후 지불해야 될 금액이 있다면 감독 소홀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재단이 이를 변제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

청와대가 소득격차와 빈곤층 해소를 위해 “성장엔진에 브레이크를 걸자”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통령비서실 (실장 이 병 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성장은 빈곤에 가장 좋은 해독제』 제
하의 기사 (2006년 3월 10일자 34면)

내 용 : (전략) 경제성장이 이처럼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일자리와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해서, 성장이란 가치와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소득격차와 빈곤층 해소를 위해 ‘성장엔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고민은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아예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것이다. 국민자문회의 리포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있듯이, 한국경제가 적정 인플레이하에서 최대 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의 6.1%에서 지금은 4.8%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장엔진을 아무리 밟아도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경제인데, 무슨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인가.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말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넘어 경제가 과열될 때 할 수 있는 얘기다.

소득격차를 줄이고 빈곤층을 해소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은 성장 없인 불가능하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처럼 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황당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만들어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올리는 성장을 할 것이냐에 머리를 싸매야 한다. 잘사는 계층을 할 것이냐에 머리를 싸매야 한다. 잘사는 계층 20%에 대한 나머지 80%의 분노를 선동할 때가 아니다. 기업들은 마음을 놓고 투자하고 근로자들은 지식기술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경제성장’이란 말은 불온(不穩)한 단어가 돼버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6년 3월 10일자 변용식 칼럼에서 『성장은 빈곤에 가장 좋은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청와대가 “소득격차와 빈곤층 해소를 위해 성장엔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 ‘경제성장’이란 말은 불온한 단어가 되어버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청와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성장엔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없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필요하지만 일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면서 ‘성장이나 분배냐’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고, 성장과 복지(분배)는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는 의견·논평을 개진하는 칼럼보도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서울시장이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 테니스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이 명 박)

피신청인 : 한겨레

종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4.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1) 『이시장 폭우비상때도 테니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2일자 1면)

내 용 :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방재당국에 비상이 걸려 있던 2004년 7월 17일 오후 서울 남산 실내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2) 『2004년 폭우 ‘비상’ 때도 이시장 실내 테니스 쳐』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2일자 3면)

‘황제 테니스’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처럼 ‘부적절한 시기’에 테니스를 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이 시장은 토요일인 2004년 7월 17일 오후 남산 실내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쳤는데, 당시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방재당국에 비상이 걸려 있던 시기였다. (후략)

(3) 『테니스 출발 1시간여 뒤에야 서울시 재해비상근무 해제』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3일자 3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2004년 7월 제헌절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폭우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실내 테니스를 즐겼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22일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 끝난 뒤 테니스를 쳤다는 서울시 쪽의 해명과는 엇갈리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당시 이 시장이 오전 9시께 출근해 폭우 피해상황과 기상예보를 점검했으며 오전 10시 이후 보도부터 비가 안온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시장이 테니스를 친 시각은 기록상 오후 2시이지만 실제 친 것은 오후 3시 이후였고, 호우주의보가 이미 오후 2시에 해제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근무일지를 보면 비 피해에 대비한 시의 재해대책 근무가 해제된 것은 호우주의보 해제보다 훨씬 뒤인 오후 4시 30분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시간별 강우량을 보면, 오전 9시대에 시간당 3mm였던 빗줄기가 10시대에 7.5mm, 11시대에 14.5mm등으로 다시 굵어지는 등 오락가락했고 이날 전체 강

수량은 38mm였다. 비는 오후 3시19분에야 그쳤다. 김대변인은 “테니스장소가 시청으로부터 약 5분 거리, 재해대책본부로부터 2분 거리였다”고 말했다.

(4) 『잠원동 테니스장 공사비 부풀려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5일자 2면)

(전략)또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무단 건립한 잠원동 실내테니스장의 공사비가 평당 626만여 원으로, 인천국제공항(평당 430만 원)이나 판교새도시(평당 343만여 원)보다 200만~300만 원 가량 비싸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 테니스장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공사비가 과다책정돼 유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겨레〉 취재 결과, 잠원동 실내테니스장은 2005년 6월 ‘긴급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계약이 이뤄진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제한경쟁입찰이란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여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들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긴급’ 입찰을 낼 경우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10일에서 5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긴급입찰방식까지 동원해 테니스장을 서둘러 지으려고 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한겨레신문은 지난 2006년 3월 22일자 1면과 3면, 2006년 3월 23일자 3면 보도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방재당국에 비상이 걸려있던 2004년 7월 17일 오후 테니스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2004년 7월 17일에 37.5mm의 강우가 내린 것은 사실이나 12시까지 30.5mm가 내려 오후에는 비가 그친 상황이었으며, 기상청에서도 당일 14:00 서울지방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하였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테니스를 친 것으로 과장 보도되었고, 23일자 3면 보도 중 “비상 상황이 끝난 뒤 테니스를 쳤다는 서울시쪽의 해명과는 엇갈리는 사실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의 근무일지를 보면 비 피해에 대비한 시의 재해대책 근무가 해제된 것은 호우주의보 해제보다 훨씬 뒤

인 오후 4시 30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2004년 7월 17일 서울시는 재해대책 1단계 근무중이었으며 재해대책 1단계 근무는 상황실 근무자의 1/4인 20여명의 인원만이 비상근무하고 일반공무원은 평시와 같은 근무형태를 유지함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해대책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이명박시장도 당연히 재해대책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테니스를 친 것으로 오인되도록 과장 보도되었고, 25일자 2면 보도 중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무단 건립한 실내테니스장의 공사비가 평당 626만 원으로 인천국제공항(평당 430만 원)이나 판교신도시(평당 343만 원) 보다 200~300만원 가량 비싸다고 밝혔다. 공사비가 과다 책정돼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잠원동 체육관(연면적 943평)의 조성공사 예산은 54억이며 체육관의 실제 공사비는 4,636만 원으로 평당 공사비가 490만 원이므로 평당 공사비가 626만 원 소요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한겨레 취재 결과 잠원동 실내테니스장은 2005년 6월 ‘긴급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서울시가 긴급 입찰 방식까지 동원해 테니스장을 서둘러 지으려고 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잠원동 체육관 발주시 제한 경쟁 입찰로 발주한 것은 “철골 구조물 건축실적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이며, 긴급 입찰을 시행한 것은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일 뿐 어떠한 의혹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시장 이 명 박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정 태 기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 건 영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 2면 또는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2006. 3. 23일자 3면)의 소재목인 『이명박 시장 ‘폭우속 테니스’ 논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하게 보도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4.

<별 지>

• 제 목 : 서울시 관련 반론보도

• 본 문 : 본지는 지난 3월 22, 23, 25일자 서울시 관련 기사에서 ‘이명박 시장이 2004년 폭우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실내 테니스를 쳤고, 잠원동 실내 테니스장 공사비가 과다 책정돼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긴급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실내테니스장을 서둘러 지으려한 배경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이명박 시장이 테니스를 친 시점은 기상청이 서울 지방의 호우주의보를 해제한 이후였고, 조달청의 건축비 분석자료에 따른 체육관의 평당 공사비는 641만원인데 반해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공사비는 평당 490만원에 불과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테니스장 공사에 대해 긴급입찰을 실시한 것은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피했으며 입찰에는 338개 업체가 참여해 어떠한 의혹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한겨레 : 『서울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8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열린우리당 전라남도 의원 입후보예정자인 신청인이 민주당 경쟁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서남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서남신문 : 『이의원의 독특한 사람감싸기』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30일자 2면)

내 용 : (전략) 한편 모 후보는 “5월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인 열린우리당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입
지자의 선거운동 지원을 받고 있다” 등의 또 다른
구설수에 올라 민주당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
들고 있다.

현재 권후보 지원설에 지목된 열린우리당 목포
제2선거구 광역의원 입지자인 김모 씨는 당에서
사실을 확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기초의원 입지
자 정모 씨는 정황을 확인했으나 정씨가 소명을
통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우리당 목포당원협의회
는 정씨의 처리 방침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입지자인 김모 씨의 민주당후보 선거
지원설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권후보에 대한 목포
민주당의 적극적인 선거 지원에 과거 몸 담았던 우리
당의 선거 지원 등 끊임 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30일자 2면에 『이의원의 독
특한 사람감싸기』 제목으로 “권후보 지원설에 지
목된 열린우리당 목포 제2선거구 광역의원 입지자
인 김모 씨는 당에서 사실을 확인 제재를 가할 방
침이며...” “열린우리당 입지자인 김모 씨의 민주
당후보 선거 지원설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라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열린우리당 목포시 광역
의원 제2선거구에 공천 신청한 입후보 예정자 김
○○ 씨는 민주당 권후보가 탈당한 이후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조
차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
다. 이로 인하여 열린우리당 목포시 광역의원 제2
선거구에 공천 신청한 입후보 예정자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
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5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서남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1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정부의 임대형 민자사업이 건설업자들의 로비로 흔타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진 표)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3월 8일 20:00)

내 용 : ▷앵커 : 민간회사에 사회기반 시설을 짓도록 하고 정부는 대신 수 십년에 걸쳐서 임대료를 내는 BTL, 그러니까 임대형 민자사업은 정부가 지난 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기 진작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과정이 건설사들의 로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한OO 기자입니다.

▷기자 : 예정사업비가 965억 원에 이르는 충남 지역 국립 대학 기숙사 건립 사업.

지난 1월 9일 저녁, 이 사업권을 갖게될 건설사를 정하는 심의 위원 추첨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같은 날 오전, 사업 계획서를 낸 4개 회사 가운데, 모 건설 회사의 직원은 심의위원 '후보'에 등록된 한 대학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모 건설회사 직원 : 어느 분이 선정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교수님들 찾아뵙고...

▷기자 : 로비방지를 위해 철저한 비밀에 부친다는, 심의위원 후보 명단을 건설 회사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 건설회사 직원 : 교수님이 선정되시면요,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진짜 고맙습니다.

▷기자 : 심의 결과, 이 회사는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중략)

올해 시행에 들어가는 임대형 민자사업은 이런 국립대 기숙사와 사병 내부반 등 8조 3천억원 규

모입니다.

당장은 민간 자본이지만 향후 2-30년에 걸쳐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사업비는 물론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 일부 건설업자들의 전방위 '로비'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3월 8일, 「SBS8뉴스」 프로그램 〈기동취재〉에서 '충남 국립대 기숙사 사업 로비로 '얼룩''이란 제목으로 "심사위원 후보명단이 사전 노출되어 동 위원에게 사전 로비한 건설회사가 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민간자본유치 투자사업이 일부 건설업자들의 전방위 '로비'로 혼탁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충남 국립대학의 기숙사 사업을 조사한 결과 심사위원 후보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바 없고, 관련 대학의 심사위원 선정 및 평가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특정 건설업자가 한 지방대학 기숙사 사업의 심사위원 후보로 예측되는 한 사람에게 로비를 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정부의 모든 민자사업이 건설업자의 로비로 혼탁해진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보도에서 신청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TL사업은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사실에 입각한 보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문제가 생긴 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선동하여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기독교보

증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기독교보 : 『사설기관 ‘□□교회 헌법변호소’ 처리 어디까지 왔나?』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2일자 9면)

내 용 : (전략)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분쟁 중이던 2005년 7월 중순경, △△교회의 변호인 이름으로 밝○○ 목사가 발송한 유인물을 노회원들이 받아보면서부터. 유인물은 “밝○○ 목사에게 모든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사본과 함께 모 목사를 파렴치범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었던 것. (중략)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전권위원장 이○○ 목사의 지적처럼 “분쟁으로 노회와 시찰회의 지도를 받던 교회가 밝○○ 목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부터 화해보다는 노회 또는 시찰회와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는 문제다.

전권위원회의 모 장로는 그 폐해를 이렇게 지적했다.

“문제가 생긴 교회에 개입해서 일반 브로커처럼 활동하며 문제를 일으킨 목사 장로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선동해서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밝○○ 목사가 개입한 ○○교회는 둘로 쪼개졌고 △△교회는 목사가 손들고 교회를 떠났다. 이외에도 증거는 없지만 밝○○ 목사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교회가 여러 곳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반론보도문

기독교보 2006년 1월 14일자 9면 『사설기관 ‘□□교회 헌법변호소’ 처리 어디까지 왔나?』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밝○○ 목사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중 □□교회헌법변호소 사건관련 일지에 보면 “2005년 7월 중순, 밝○○ 목사가 △△교회 변호인 위임 및 모 목사 비판 유인물 노회원

에 배포”라고 보도하였으나, 사건관련 일지에서 말하는 유인물이란 △△교회의 호소문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제가 생긴 교회에 개입해서 일반 브로커처럼 활동하며 문제를 일으킨 목사 장로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하겠다. 그런식으로 선동해서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밝○○ 목사는 “개입”한 적도 없고, “일반 브로커처럼 활동”한 사실도 없고, “선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밝○○ 목사가 개입한 ○○교회는 둘로 쪼개졌고 △△교회 목사는 손들고 교회를 떠났다”고 보도하였으나, 밝○○ 목사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교회 문제로 목사나 교인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가 떠난 것은 당회-시찰회-노회 때문이지 밝○○ 목사와는 무관하며, 밝○○ 목사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교회가 여러 곳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교회 헌법변호소”에 대해 ○○○노회에서는 이미 작년 임시 노회에서 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모두 종결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기독교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 58-10

이사장 이 한 석

조정대리인 최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별지 기재 보도문을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기독교보 9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밝나라 목사의 반론보도)활자크기는 조정대상 기사 제목(사설기관…)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신청인은 정정 및 반론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3.

〈별 지〉

• 제 목 : 밝○○ 목사의 반론보도
• 본 문 : 기독교보 2006년 1월 14일자(제731호)
9면에 『사설기관 ‘○○교회헌법번호소’ 처리 어디
까지 왔나?』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밝○○ 목사
는 보도내용 중 2005년 7월 중순, 밝○○ 목사가
△△교회 모 목사 비판 유인물을 노회원에 배포
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생

긴 교회에 가입해서 브로커처럼 활동하며 목사
장로를 선동하여 사태해결을 어렵게 했다고 보도
되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고, ○○교회에 가입하였
다고 보도하였으나 ○○교회에 가입한 사실도 없
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보도문은 언론중재위
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기독교보 : 『밝○○ 목사의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9일자 9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시연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용지 분류기라고 잘못 보도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한국일보 : 『“지방선거 개표 시스템에 문제”』 제하
의 보도사진 (2006년 3월 22일자 2면)

내 용 : 2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5·31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분류기 공개
시연회를 갖는 도중 시민단체 회원들이 개표 시스
템의 선거 부정 악용 소지를 제기하며 고함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3월 22일자 2면에
중앙선거위 공개시연회관련 기사에서 전자개표기
를 투표용지 분류기로 잘못 보도하였기에 정정합

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이 중 승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
보 사회면(종합면) 우측 하단부에 별지 기재와 같
은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크기로 게
재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2006년 3월 22일자 2면에 “지방선거
개표 시스템에 문제” 제하의 사진설명에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분류기 공개 시연하였다고
보도한데 대해 신청인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용지 분
류기로 잘못 보도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

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입은 자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 혹은 언급되거나 개별적인 연관성 즉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에서 아무런 언급도 되어 있지 않고, 보도와 직·간접적인 관련성, 즉 개별적 연관성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을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투표지 분류기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동법 제21조 2항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3.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0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호남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호남매일 : 『나주금천농협 중국산 배 화분 판매 ‘말썽’』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9일자 6면)

내 용 : 나주금천농협이 이사회에 승인없이 특정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배 화분을 주문받아 알선해 주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이사회가 경찰에 고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28일 나주 금천농협 이사회에 따르면 A과수화분영농법인이 인공수분용 배(품명:설화리)화분을 수입한 후 한국인공수부연구소와 나주배연구소 금천

농협이 공동으로 수년간 임상실험을 통해 인공수분을 성공했다고 홍보하며 조합장을 비롯 금천농협 일부 직원들과 함께 알선·판매에 나서고 있으나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이같은 사실은 A영농법인이 최근 경기도 등지에서 홍보물을 통해 금천농협 명의를 도용, 주문이나 전화문의를 하도록 한 내용을 한 조합원이 발견, 제보해와 이사들이 직접 현장까지 가서 전단지 와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서 밝혀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천농협 이사 B씨는 “나주지역에서 살포한 홍보물에는 금천농협의 명의를 빼고 타 지방에서는 농협 명의의 주문 전화번호 등을 넣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또 검증되지 않는 화분으로 인해 타지역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 주산지인 금천농협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배 연구소측도 중국산 암리나 대향수 등의 화분은 임상실험을 한적이 있지만 설화리에 대한 연구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나주 배원협 관계자도 “검증되지 않은 화분으로

인공수분을 할 경우 활력이나 발화력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농가에 권장할 수가 없다”며 “가격이 반값정도 저렴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으나 아직은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천농협 조합장은 “주문 알선은 A영농법인 측에서 판매액의 10%를 알선 수수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조합 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지난 29일자 본보 지방판에 보도된 내용에 따라 ○영농법인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도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내용을 밝힌다.

‘설화리’ 품종을 ‘신고배’ 인공수분용 꽃가루로 전국 최초로 상품화한 ○영농법인은 이번 금천농협 명의도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천농협조합장을 비롯해 전무와 상무 등 임원들과 사전 수수료 10%를 지급하기로 약속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합 이사회의 주장만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보가 보도해 ○

영농법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영농법인 제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농가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확인 결과 ○영농법인 제품의 경우 지난해 4월 금천농협 이사들에게 3kg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상실험을 거쳤으며 지난달 15일 나주시 산포면 시설하우스에서 인공수분을 시험 실시한 결과에도 착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천농협 이사회가 ○영농법인을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후발업체의 악의적인 제보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1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전광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전광일보 : 『나주금천농협 이사회, 농협명의 도용 고발』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9일자 4면)

내 용 : 〈2006광주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피신청인 주장

〈2006광주조정10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2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광주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광주매일 : 『나주금천농협 ‘농협 명의도용’ 파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9일자 13면)
내 용 : 〈2006광주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취하 후 보도문

광주매일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8일자 1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3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취 하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남도일보 : 『나주 금천농협, 농협 명의도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30일자 10면)
내 용 : 〈2006광주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남도일보 : 『“나주금천농협 명의도용 아니다”』 제
하의 기사 (2006년 4월 12일자 10면)

내 용 : 전남 나주금천농협 이사회의 농협 명의
도용 주장 논란 등과 관련, 중국산 인공수분용 배
(품명 ‘설화리’)를 수입한 A과수화분영농법인측이
이사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진위여부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A영농법인은 명의 도용을 주장한 이사회
이사들에 대해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키로 해 명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의 도용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영농법인과 나주 금천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수분(꽃가루)을 상품화한 영농법인측은 금천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전무와 상무 등 임원들과 사전에 일정 수수료(10%)를 지급키로 한 뒤 주문처 명기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안성과 평택 등 일부 지역에 발송된 안내전단과 플래카드에 주문 문의를 금천농협으로 명기했으며, 도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이 영농법인은 밝혔다.

이 법인은 배 농가의 꽃가루 확보난 해소를 위해 상품화한 '으뜸 꽃가루'의 경우 지난해 4월 이 농협 이사들에게 3kg을 무상으로 제공, 직접 시험

까지 거쳤다고 덧붙였다.

또 개화기가 한달가량 빠른 나주시 산포면 비닐 하우스내 재배단지에서 인공수분 시험재배를 실시한 결과 높은 착과율을 보였다는 게 영농법인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영농법인측은 “이번 명의 도용 파문은 일부 이사들이 타 지역 꽃가루 수입업체와 연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게 됐다”며 “관련 이사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나주 금천농협 이사회는 자신들의 승인없이 특정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배 화분 주문과 문의를 받아 알선해 줬다며 A영농법인을 경찰에 고발해 물의를 빚었다. □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4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전남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전남매일 : 『특정업체 농협명의 도용 말썽』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9일자 7면)

내 용 : 〈2006광주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취하 후 보도문

전남매일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8일자 7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5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호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취 하

참조>

보도내용

호남일보 : 『나주 금천농협 명의 도용 ‘말썽’』 제하
의 기사 (2006년 3월 30일자 13면)
내 용 : <2006광주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취하 후 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호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1
일자 13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 조합이 금천농협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6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호남투데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취 하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9일자 15면)

내 용 : <2006광주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호남투데이 : 『특정업체 중국산 배화분 주문 알선』

<2006광주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

신청인 대학교가 교회에서 받은 지원금과 학생등록금의 일부를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 장 ○ ○)
피신청인 : 복음과 상황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복음과 상황 : 『기독교 사학은 안녕하신가』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호 18면)

내 용 : (전략)이런 현실은 사학법 개정이 더
이상 사학을 설립자 족벌이나 개인에 의해 제멋대
로 운영하고, 자금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

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에서 벌어진 횡령과公款유용 등으로 인해 사학이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나온 것도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족한 '사학수호법국민운동본부'에 고문으로 참여한 조○○ 목사(여의도 ○○○교회)가 이사장을 역임한 ○○대학교(총장 김○○, 조 목사 부인)는 기독교 사학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본이다.

○○대 재단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여의도○○교회로부터 각각 44억, 81억, 84억 6,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에서 학교로 들어간 금액은 49억, 58억, 58억 6,0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98년도와 99년도에 각각 22억 4,000만 원과 26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이 사라진 셈이다.

또한 당시 기획실장인 황 아무개 장로는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학생들이 낸 등록금 중에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학교 공사비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97년도에 4억, 99년도에 17억 원의 학생 등록금이 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교수 채용과정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심사에 있어 면접 비율(서류심사 15%, 공개강의 10%, 연구실적 15%, 면접 60%)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연구실적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사람이 교수로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비전공 교수가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2006년 2월호에 『기독교 사학은 안녕하신가』 제하의 기사에서 “○○대 재단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여의도○○교회로부터 각각 44억 원, 81억 원, 84억 6,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에서 학교로 들어간 금액은 49억원, 58억원, 58억원 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98년도와 99년도에 각각 22억 4,000만원과 26억원 5,000만원의 지원금이 사라진 셈이다”라고 보도하면서 마치 ○○대 재단에서 그 차액을 유용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교에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학교 법인이 여의도○○교회로부터 지

원받은 금액들은 1997년, 1998년, 1999년 각각 약 39억 원, 71억 원, 74억 원이며, 이중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건축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97년부터 99년까지 각각 약 49억 원, 58억 원, 58억 원 인바 ○○대학교 법인이 여의도○○교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과 ○○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된 금액의 차이는 법인운영비 및 법인회계에서 직접 건축공사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비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학교 공사비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97년도에 4억 99년도에 17억 원의 학생등록금이 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보도하여 학생등록금으로 학교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학교에서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직접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비회계의 적립금에서 건축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이며, 특히 전체 건축 공사비 약 221억 중 10% 미만인 약 21억 정도만 교비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이것은 건실한 재정 운영이고 학생등록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 2월호 『종교 사학이 건전하다고』 및 『기독교 사학은 안녕하신가』 제하의 기사에서 “○○대 재단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여의도○○교회로부터 각각 44억 원, 81억 원, 84억 원 6,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에서 학교로 들어간 금액은 49억 원, 58억 원, 58억 6,0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98년도와 99년도에 각각 22억 4,000만 원과 26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이 사라진 셈이다”, “학교 공사비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97년도에 4억 99년도에 17억 원의 학생등록금이 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교에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학교 법인이 여의도○○교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1997년, 1998년, 1999년 3년간 각각

약 39억 원, 71억 원, 74억 원이며, 이중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건축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3년간 각각 약 49억 원, 58억 원, 58억 원으로, ○○대학교 법인이 여의도○○교회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과 ○○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다른 이유는 학교회계 뿐 아니라 법인회계에서도 건축공사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이며 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직접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학교회

계인 교비회계의 적립금에서 건축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으로, 학생등록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며 특히 전체 건축 공사비 약 221억 중 10% 미만인 약 21억 정도만 교비회계에서 충당한 것은 건실한 재정 운영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5월호 「복음과 상황」에 위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복음과 상황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호 4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대학교가 교회에서 받은 지원금과 학생등록금의 일부를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 장 ○ ○)

피신청인 : 뉴스앤조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14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114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앤조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0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뉴스앤조이 : (1) 『기독교 사학은 안녕하신가』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4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114의 보도내용 참조>

(2) 『종교 사학이 건전하다고』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1일자)

신청인이 북한을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6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신 언 상

피신청인 : 데일리엔케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데일리엔케이 : (1) 『신언상 통일차관, “북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해”』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9일자)

내 용 :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9일 오후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창립 2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남북관계가 국보법 시대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시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중략)

신 차관은 “북한을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한다. 북한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북한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북핵문제라고 하는 거대한 암초 때문에 그 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가렸다”면서 “너무 억울하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평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2) 『대북정책, 왜 다람쥐 쳇바퀴인지 아세요?』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7일자)

지난 3월 9일 정부의 한 고위인사가 현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실로 주목할 만한, 필자가 보기에는 실로 놀랄만한 발언을 하였다.

그것은 신언상 통일부차관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창립 2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한 발언들이다. 그의 발언의 핵심은 다음 3가지다.

첫째, 국민차원의 남북교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북한사람들은 “자유로운 남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체제에 대한 회의와 지휘부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될 것”이라는 점, 즉 교류의 목적은 북한체제를 흔들어서 바꾸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둘째, 정권차원의 교류방식과 관련하여,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북한 핵문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노벨상 5개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김정인 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굴욕과 수모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북지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북한을 강압하면 조폭으로 변한다. 북한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현 정권의 대북지원은 조폭 경향이 있는 북한 정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9일자 정치외교면 『신언상 통일차관, “북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해”』 제목으로 신언상 통일부 차관이 “북한을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한다”고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확인 결과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압적인 방법은 북한을 조폭처럼 변하게 만들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17일자 논설&칼럼면 『대북정책, 왜 다람쥐 쳇바퀴인지 아세요?』 제목으로 신언상 통일부 차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첫째, 북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남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체제에 대한 회의와 지휘부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될 것”이라는 점, 즉 교류의 목적은 북한체제를 흔들어서 바꾸기 위해서라는 점이라고 하였으며, 둘째,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북한 핵문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노벨상 5개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역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굴욕과 수모는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평가하였으며, 셋째, “북한을 강압하면 조폭으로 변한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현 정권의 대북 지원은 조폭 경향이 있는 북한정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신언상 통일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첫째, 남북교류는 북한사람들로 하여금 남쪽 사회를 동경하게 하여 북한의 호전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며, 둘째,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존심만 내세우기 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내심 없이 북핵문제나 북한인권문제를 해결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셋째,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칫 북한을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3월 9일자 정치외교면 『신언상 통일차관, “북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해”』 제목으로 신언상 통일부 차관이 ‘북한을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한다.’고 인용 보도한 데 대해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압적인 방법은 북한을 조폭처럼 변하게 만들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4월 1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

행하는 <데일리엔케이> 섹션 B1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제목은 통상 사용되는 제목의 활자크기로 게재하되 고딕체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기사에 대해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4. 19일자 반론보도문을 통해 발언취지를 밝혀왔습니다. -반론보도문 바로가기」의 내용을 조정대상보도 『신언상 통일차관, “북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해”』 제하의 기사 하단에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3월 17일자 『대북정책, 왜 다람쥐 쳇바퀴인지 아세요?』 제하의 ‘홍성기의 시대세평’ 칼럼에 대해 통일부차관 또는 통일부 관계자의 기고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엔케이 : 『통일부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9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희귀애완동물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문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집으로 들어온 희귀동물, 알고 키우세요?』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5일자 D1면)

내 용 : 애완(愛玩)의 대상이라기엔 징그럽거나 끔찍하게 여겨져 왔던 동물들이 안방으로 성큼 들어왔다. 뱀, 이구아나, 도마뱀, 사슴벌레, 타란툴라

(왕거미), 족제비를 개량한 페릿 등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어린이들에게 자연관찰의 기회를 주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이색’의 차원을 넘어서 ‘희귀’에 가까운 이런 애완동물은 치명적인 독이나, 기생충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갈이나 타란툴라를 손으로 만지다가 물려서 큰 고생을 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 통계는 없지만 미국에선 해마다 약 400만 명이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에 걸린다고 한다. 서울대 수의대 신남식 교수는 “사육장 환경을 깨끗이 하고 정기적으로 구충을 해 주는 등 동물 위생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조선일보는 2006년 4월 5일자 D1면 『집으로 들어온 희귀동물, 알고 키우세요?』 제하의 기사에서 희귀동물들에게 기생충이나 독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청인에게 애완동물에 대한 취재를 한다며 취재요청을 하면서 희귀동물을 기르는 매니아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신청인이 직접 취재에 응해 주었는데, 보도내용은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질병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신청인을 기만하고 신청인의 샵 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고 있어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네이버에서 “문〇〇”이라고 검색했을 때 사건관련 기사를 무단전재하고 있는 블로그에 대해 삭제요청메일을 2006년 6월 1일까지 보내고, 동시에 그 메일을 신청인에게 보낸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1일 금 1,000,000의 이행지체금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6월 1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연 25%의 이행지체금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로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기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서울시의 시체육회 전용건물 매입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이 명 박)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서울시 체육회 건물 매입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4일자 2면)

내 용 : 서울시가 1백12억원짜리 시체육회 전용 건물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건물 매입은 이〇〇 시체육회 부회장이 이명박 시장의 주말 테니스 일정을 챙기던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 재무국 관계자는 3일 “체육과의 요청으로 시체육회 전용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며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매입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이시장 재임 중인 오는 5~6월로 매입시점을 잡고, 포괄예산을 사용키로 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포괄예산이란 투자가치가 높아 시간

을 다뤄 긴급히 구입해야 할 부동산 매입 등에 쓰이는 자금을 말한다. 전용건물 마련이 서울시체육회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포괄예산 투입 대상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경향신문은 지난 2006년 4월 4일자 2면에 『서울시 체육회 건물 매입 ‘특혜’ 의혹』이란 제목으로, 서울시가 1백12억짜리 시체육회 전용건물 매입을 추진중이며, 건물매입은 이〇〇 시체육회 부회장이 이명박 시장의 주말 테니스 일정을 챙기던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고하고, 시는 특히 이시장 재임중인 오는 5~6월로 매입시점을 잡고, 포괄예산을 사용키로 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포괄예산이란 투자가치가 높아 시간을 다뤄 긴급히 구입해야할 부동산 매입 등에 쓰이는 자금을 말하여, 전용건물 마련이 서울시체육회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포괄예산 투입대상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시 체육회 건물매입은 시체육인들의 오랜 건의에 따라 현시장 취임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서 시체육회 부회장의 로비에 의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시기 또한 서울 시의회의 의결 및 감정평가 등 협의매입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가 소요되어 5~6월경에 매입이 가능한 시점으로써, 시장재임기간 내에 체육회관을 매입하려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무국 포괄예산은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매년 일정액 이상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특정건물을 확정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매각의사, 건물가격 변동 등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많아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치 않고 포괄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혜의혹 및 포괄예산의 투입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기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 내 용 : 서울시는 본지의 지난 4월 4일자 2면

『서울시 체육회 건물 매입 ‘특혜’ 의혹』 기사와 관련하여, 체육회관 매입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울시 소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체육회 등에 유상임대하려는 것이고, 매입시기는 서울시의회의 의결,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지 이명박 시장의 재임기간과 무관하며, 포괄예산은 건물매입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은 항목에 통상 사용되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4월 25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제목은 통상 사용되는 제목의 활자크기로 게재하되 고딕체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시장조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작성한 세탁기 시장점유율 자료를 무단인용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마케팅서비스코리아(주)
(대표이사 ○ ○ ○)

피신청인 : 파이낸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 『○○스팀 세탁능력·에너지 절감효과 탁월』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7일자 35면)

내 용 : (전략) 이같은 제품력을 바탕으로 ○○전자 스팀 ○○은 올 상반기 스팀세탁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1.3%(○○○ Data 기준)를 차지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3월 27일자 『○○스팀 세탁능력, 에너지 절감효과 탁월』 제하의 기사 ‘○○전자 스팀 ○○은 올 상반기 스팀세탁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1.3%(○○○ Data 기준)를 차지했다.’는 보도에서 ○○○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장 점유율을 인용하였으나, 인용된 점유율의 조사 시점은 2005년 상반기이고, 조사 지역은 오프라인 5개지역

소매조사기준에 국한되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인용된 점유율은 ○○○마케팅 서비스의 공식 분류 기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신청 후 보도문

파이낸셜뉴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

년 4월 15일자 7면)

내 용 : 지난 3월 27일자 JOY+BRAND 大賞 ○○전자 스티프 ○○ 기사 내용 중 ‘올 상반기 스티프 세탁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1.3%(○○○ Data 기준)를 차지했다’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이며, ○○○ Data(서울,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소매시장 기준)를 ○○전자가 분석 인용한 것입니다. □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사건’을 헤드라인 기사로 올리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피신청인 : 런아시아넷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7.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런아시아넷 : 『靑 행정관 아내 살인의 4가지 미스테리』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2일자)

내 용 : (전략) 사건 발생 이후의 청와대의 행보도 너무 비정상적이다. 현직 청와대 고위직원이 패륜적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상 이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살인용의자는 물론, 살인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내연의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감추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경찰은 ‘쉬쉬’만 연발하면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시장 ‘황제 테니스’ 여론몰이와는 180도 다른 이중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와같은 청와대의 ‘쉬쉬’ 행보가 점차 빛을 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이매체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뉴스포털 사이트들이 일제히 작당하여 이슈를 묻어버렸기 때문이다. ○○○와 ○○은 거의 이틀동안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이번 사건이 리스트에 올

라와 있음에도 단 한번도 메인 헤드라인 기사로 올리지 않는 기민함을 보였다.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감춰놓았음에도 네티즌들이 용케 이를 찾아서 본 셈이다.

평소 센세이셔널한 기사라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편집에 반영하던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이다. 부디 이번 해프닝이 청와대와 국정홍보처 등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큰손 권력자들과의 유착 때문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쳐쓴’ 형국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3월 22일자 기사에서 『靑 행정관 아내 살인의 4가지 미스테리』 제목으로 ○○○가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사건’ 기사를 메인 헤드라인 기사로 올리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는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사건’ 기사를 메인 헤드라인 기사로 올린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최 ○○

피신청인 : 런아시아넷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1-158

발행인 이 명 현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런아시아넷>(www.runasia.net)의 초기화면에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게 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6. 3. 22.자 『靑 행정관 아내 살인의 4가지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가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사건’ 기사를 메인헤드라인 기사로 올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에 게재된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사건’ 관련 기사의 위치는 통상 언론사의 기사 중 메인 헤드라인 뉴스라고 지칭하는 기사의 위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2. 판단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 노조가 경영진의 약점을 빌미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현대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시장경제 혼드는 현대차 ‘구태경영’』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4일자 31면)

내 용 : 현대자동차그룹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은 물론이고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몽구 회장이 그제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룹 측은 예정된

출장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중략)

구태경영에 대한 외부의 ‘경고’가 적지 않았지만 현대차는 이를 흘려들었고 결국 위기를 자초했다. 현대차 노조가 연례파업을 벌여 높은 임금을 받아 온 데 대해 ‘현대차 경영진이 노조에 약점을 잡힌 탓’이라는 얘기도 일찌감치 나왔었다. 구태경영과 노조 이기주의가 사실상 ‘떡이사술’ 관계였던 셈이다.

아무리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썼거나 노조와 결탁했다면 이는 주주 권리 및 소비자 이익에 대한 침해다. 수사를 통해 비자금과 로비 명세가 낱알이 밝혀져야 한다. 정 회장과 현대차 관계자들은 마땅히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동아일보는 2006년 4월 4일 사설을 통해서 “현대차 노조가 연례파업을 벌여 높은 임금을 받아 온 데 대해 ‘현대차 경영진이 노조에 약점을 잡힌 탓’이라는 얘기도 일찌감치 나왔었다. 구태경영과 노조 이기주의가 사실상 ‘먹이사슬’ 관계였던 셈이다. 아무리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썼거나 노조와 결탁했다면 이는 주주 권리 및 소비자 이익에 대한 침해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경영진의 약점을 잡고 노사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노조의 이기주의와 구태경영의 먹이사슬 관계를 유지한 사실도 없고,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노조와 결탁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현대車 관련’ 사설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6년 4월 4일자 31면 『시장경제 혼드는 현대차 ‘구태경영’』 제하의 사실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노조가 경영진의 약점을 잡고 노사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고, 노조와 경영진은 먹이사슬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상관관계이며, 경영진의 비자금과 노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4월 2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토요일은 제외하고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제목은 고딕체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현대車 관련’ 사설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6일자 3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경찰관이었던 신청인의 아버지가 자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7.

처리결과 : 취 하

경찰은 임 경사가 평소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월 27일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는 유족들의 말에 따라 일단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5일자 12면에 우울증을 치료받은 경력이 있던 경찰관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결과 자살이 아닌 실족사로 판명되었습니다. 고인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이로 인해 상처받았을 유가족께 사과드립니다.

보도내용

부산일보 : 『우울증 치료 경찰관 물에 빠져 사망』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5일자 12면)

내 용 : 4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 덕두마을 앞 낙동강에서 부산 A경찰서 정보보안과 임모(50)경사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 박모(70·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취하 후 보도문

부산일보 :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1일자 35면)

내 용 : 본보는 지난 5일자 12면 '경찰관 물에 빠져 사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은 사망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탈진으로 인한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이번 기사로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유족에게 사과드리며 고인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

신청인이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두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파업 두둔한 철도공사 임원』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3일자 34면)

내 용 : 국민에게 짜증을 안겨준 철도노조 파업이 지난 4일 끝났다. 2,000명이 넘는 철도노조원이 직위해제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철도공사 경영진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옳을 것이다. 파업이란 극한적 행동은 노(勞)의 잘못만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중해야 할 철도공사 경영진 중 한 명이 철도공사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감사가 쓴 200자 원고지 14장 분량의 글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이번 파업의 목적이 '정부의 교통정책과 철도의 역할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나아가 "(이번 파업에서) 제일 나쁜 X이 누구였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더니 "보수 언론"이라고 자답하면서 "수만 명이 파업하면 뭐합니까? 언론이 한 줄 적당히 써버리면 그만 아닙니까?"라고 썼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번 파업은 정당한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 왜곡시켰다는 것이 된다.

김씨는 부평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지내다 2005년 철도공사 감사가 됐다. 한마디로 철도와는 관련 없는 '낙하산 인사'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노동운동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만일 이번 파업이 정당했다면 그는 파업 시작 전 청와대나 건설교통부, 하다못해 이철(李哲) 철도공사 사장을 설득했어야 옳다. 그래도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자리'를 걸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때나,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를 때나 이 사장이 노조에 강경 입장을 밝힐 때 침묵했었다. 사태가 수습되자 탄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글이 논란을 빚자 "내 글의 진의가 왜곡됐다"며 반발했지만 슬그머니 자신의 글을 삭제해버렸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한국철도공사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3일자 기사 수첩면에서 『파업 두둔한 철도공사 임원』이라는 제목으로 김○○ 한국철도공사 감사는 내부통신망에 '이번 파업이 정당했다, 이사장이 노조에 강경 입장을 밝힐 때 침묵했었다, 사태가 수습되자 탄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이 논란을 빚자 내 글의 진의가 왜곡됐다며 반발했지만 슬그머니 자신의 글을 삭제해버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감사는 파업이 정당했다고 이메일에 기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파업직전의 상황에서 불법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철 사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고, 불법파업을 막고자 노조 간부들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불법파업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고, 2월초에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간부들에게 ‘조직 안정화’를 강조하는 강의를 하였고, 3월 1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갈등양상이 드러나자 3월 3일 감사실 직원들에게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불법파업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요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또한 3월 8일자 이메일에서 ‘저는 절대로 부당한 파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라고 기술했다는 사실이나 이는 불법파업이 중

료되고 나서 파업 참가 직원들과 미 참가 직원사이의 갈등을 방지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등의 이유로 노조의 파업 사유 중 일정 부분은 명분이 있다고 기술했던 것이지 결코 노조에게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며, 또한 공사의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보낸 이메일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메일과는 달리 보낸 메일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학교에 정상적인 학칙과 규정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서울○○○대학교 (총장 조 ○ ○)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비리 명들었던 서울○○○대 사태, 아직도 갈등 중』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7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10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0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08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서울○○○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데일리서프라이즈 3월 27일자 사회면 『비리 명들었던 서울○○○대 사태, 아직도 갈등 중』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대학교가 학칙과 규정이 없고, 규정제정도 묵살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울○○○대학교(총장 조○○)는 대학설립의 주요요건으로 학칙과 각종 제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전 부총장의 횡령을 위해 부풀려진 용역업체 콘텐츠 제작비용 76억 원이 학교예산에 부채 명목으로 잡혀 있으며, 이를 학생 등록금으로 내려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서울○○○대학교측은 용역업체의 콘텐츠 제작비 76억 원의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임의로 예산에서 삭제하면 현행 회계준칙에 어

굿나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전 부총장의 횡령액과 과다 청구된 금액이 확정되고 지불해야 될 금액이 있다면 재단이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데일리서프라이즈 2006년 4월 24일자 사회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서프라이즈 : 『서울 ○○○대 관련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통일부가 납북자 가족 보상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6.25 전쟁 당시 납북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4

청 구 명 : 정정보도

신 청 인 : 통일부 (장관 이 종 석)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1.

처리결과 : 취 하

또다른 의원은 “지난달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 당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버스에서 장시간 머문 사건과 관련, 이종석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장관이 자신의 입지를 만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과주의에 집착해 무리하게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략)

보도내용

노컷뉴스 : 『설 자리 좁아지는 이종석 통일...여권 내부 비판론 확산』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5일자)

내 용 : 소장파들 “정경분리 원칙 흔들리면서 대북문제 갈수록 꼬여” 비판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중밀착이나 북-미 갈등 심화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묘한 정세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내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정간에는 ‘납북자 가족보상 특별법’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로 예정된 당정협의도 당에 의해 취소됐다.

정부가 특별법 지원대상의 범위를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로 확대하려 하자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석 의원은 “지원대상에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도 포함시킬 경우 정확한 대상자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4월 5일자 정치면 『설 자리 좁아지는 이종석 통일...여권 내부 비판론 확산』 제목으로 납북피해자 특별법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러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통일부가 납북자문제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납북피해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가 특별법 지원대상의 범위를 6.25 전쟁당시의 납북자로 확대하려 한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4. 3.(월) 예정된 당정협이가 “당정간 불협화음”으로 취소되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4. 3.(월) 예정이었던 당정협이는 4. 6.(목)로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지난 이산가족 상봉행사로 인해 “이종석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노컷뉴스 : 『이종석 통일부 장관 보도 관련 통일부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
일자)

내 용 : CBS가 지난 4월 5일자 정치면 『설 자리
좁아지는 이종석 통일...여권 내부 비판론 확산』
제목으로 납북피해자 특별법 및 이산가족 상봉행
사와 관련해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통일부는 납
북자문제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납북피해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정부
가 납북피해자 특별법(안) 지원대상의 범위를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로 확대하려 한다”는 보도 내
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정간 불협화음으로 4.
3.(월) 예정이었던 당정협회가 취소된 것”이 아니
라 4. 6.(목)로 연기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이산가족 상봉행사로 인해 “이종석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
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
습니다. □

외교통상부가 DJ납치사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수사기록 문서는 제외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외교통상부 (장관 반 기 문)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1.

처리결과 : 취 하

어버리기보다는 유보하는 게 상대방 제압에 유리
한 수단이라는 ‘정치전략’도 있을 수 있다. 일본
역시 현역 정치인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선배
들을 흠집 낼 이유는 없다. 이 사건을 두고 전개될
양국의 머리싸움이 불꽃 될 것 같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2월 8일 14면에 『‘DJ문서공개’
한·일 수싸움』 제목으로 “외교통상부는 DJ 납치
사건을 공개하면서 정작 사건 전말을 파헤친 수사
기록과 관련된 양국간 외교문서는 쏙 빼놓았다”,
“한국정부의 ‘외교문서 골라내기’는 반드시 국가
이익 차원만도 아닌 것 같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
며, 외교통상부는 1973년 및 1974년에 생산된 DJ
납치 관련문서 중 2004년 1월에 이미 공개된 2권
을 제외한 13권 전량을 모두 공개한 것으로 확인
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세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보도내용

세계일보 : 『‘DJ문서공개’ 한·일 수싸움』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8일자 14면)

내 용 : ‘김대중(DJ) 납치사건’을 둘러싸고 한
일 간의 ‘수 싸움’이 불 만하다. 양국 외교당국은
이 사건 공개로 미칠 파장과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꾸꿍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6일 정례적인 외교문서 공개 차원
에서 DJ 납치사건을 공개하면서 정작 사건 전말을
파헤친 수사 기록과 관련된 양국 간 외교문서는
쏙 빼놓았다. 누가 DJ 납치를 지시하고 실행했는
지에 대한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중략)

한국정부의 ‘외교문서 골라내기’는 반드시 국가
이익 차원만도 아닌 것 같다. ‘판도라 상자’를 열

14일자 2면)

내 용 : 본지는 2006년 2월 8일자 14면에 『DJ문서 공개 한·일 수싸움』 제목으로 “외교통상부는 DJ 납치 사건을 공개하면서 정작 사건 전말을 파

헤친 수사기록과 관련한 양국 간 외교문서는 속 빼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외교통상부가 DJ 납치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했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

조선일보가 커피전문점에 무인가판대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성 비판 기사를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손 ○ ○, 2. 김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일보 : 『선거철 편향보도가 두렵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9일자 29면)

내 용 : 며칠 전 한 일간지가 느닷없이 경제섹션 머리에 외국계 커피전문점이 로열티로 매출의 5%나 본국에 송금해서 문제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나름대로 사실과 정보는 있었지만,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나 현상, 또는 대단한 기획은 아니라는 점에서 왜 이 뉴스가 머리기사로 편집됐을까 다소 의외였다.

기사는 이 커피전문점의 과다한 로열티 송금 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과 순이익 증가에 비해 커피값이 비싼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에도 경제섹션 머리기사로 자장면값보다 비싼 커피값의 문제를 보도하면서 이 외국계 커피점을 겨냥하기도 했다. 왜 이 신문이 유독 특정 커피전문점을 겨냥한 비판과 공격 기사를 크게 게재한 것일까.

정통한 소식통들의 설명은 이렇다. 기사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커피전문점은 약 3년 전부터 전국 체인점 안에 무인 신문판매대를 설치했는데, 경쟁 신문을 독점적으로 비치·판매해 이 신문의 미움을 샀다는 것이다. 이 신문이 최근 부쩍 이 커피전

문점을 ‘공격’ 하는 기사를 빈번하게 실고 있는 진짜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신문의 행간을 읽어내는 이른바 고급 독자들은 취재원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소위 정론지를 자처하는 신문들마저 엉뚱한 기사와 악의적인 편집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하고 한탄한다.

한국 신문 가운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처럼 독자들이 신뢰하고 따를만한 정론지다운 정론지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신문사의 이해관계와 신문 기사의 공정성 가치를 쉽게 바꿔치기 하는 한국 언론의 수준 낮은 저널리즘 관행 탓이다. 아무리 비판 정신이 담긴 기사라 해도 거기에 신문사의 이해 관계가 내포돼 있다는 혐의를 독자들이 갖기 시작하면 기사도 죽고 신문사도 죽는다. 사람들은 신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사도 믿지 못하게 된 지 꽤 오래다. 최근 신문을 떠나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신문의 위기 현상의 근저에는 바로 신문 불신 풍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29일자 29면 최영재의 미디어비평 『선거철 편향보도가 두렵다』에서 조선일보가 커피전문점 ○○○○ 매장에 조선일보 신문 판매대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공격’ 기사를 실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소위 정론지를 자처하는 신문들마저 엉뚱한 기사와 악의적인 편집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하고 한탄한다”, “한국 신문 가운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처럼 독자들이 신뢰하고 따를 만한 정론지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신문사

의 이해관계와 신문 기사의 공정성 가치를 쉽게 바꿔치기하는 한국 언론의 수준 낮은 저널리즘 관행 탓이다”라고 주장해 마치 ○○○○ 관련 기사를 쓴 손○○, 김○○ 기자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손○○, 김○○ 기자는 ○○○○를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비판기사를 쓴 적이 없으며,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로 기사의 내용을 왜곡 보도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외적인 압력이나 의도에 의해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본 신문은, 조선일보가 ○○○○에 대해 다른 모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보도 태도를 견지해 왔으며, 본 기사가 지적한 두 건의 ○○○○ 비판 기사 역시 언론의 고유 기능인 정당한 비판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신문은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조선일보가 ○○○○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왜곡된 기사를 썼다고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와 손○○,

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데 대해 독자 여러분과 해당 언론사 및 기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취하 후 보도문

한국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6일자 29면)

내 용 : 3월 29일자 ‘최영재의 미디어비평’은 한일간지의 잇따른 특정 외국계 커피전문점 비판·공격 기사가 경쟁지의 해당 커피전문점 내 무인신문판매대 설치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처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칼럼이 지목한 이 일간지의 기자들은 “해당 커피전문점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비판기사를 쓰거나,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나 외적인 압력에 의해 왜곡 보도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최영재 교수도 칼럼 내용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

조선일보가 커피전문점에 무인가판대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성 비판기사를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손 ○ ○, 2. 김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1.
처리결과 : 취 하

머니투데이 : 『유력 일간지 기싸움에 ○○○○ ‘곤혹’』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3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1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2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조선일보가 커피전문점에 무인가판대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성 비판기사를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손 ○ ○, 2.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 (2006년 4월 1일 22:20)

내 용 : <2006서울조정1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12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1일 미디어포커스의 '이슈&비평' 코너에서, 조선일보가 ○○○○매

장에 가판대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속 기자들에게 ○○○○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싣게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의 담당 기자들은 가판대 문제 자체를 알지 못했고, 광고협찬에 내몰린 적도 없으며, 그동안 조선일보는 ○○○○에 대한 호의적 보도까지 공정하게 게재하였고, 문제된 기사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4월 22일 또는 4월 29일자 KBS-1TV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의 말미에 화면 하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 및 위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나가는 자막으로 처리(스크롤)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 (2006년 4월 29일 22:2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동료 여직원과 벚꽃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연인사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정정보도 ·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더데일리포커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조정결정 (손배)

보도내용

더데일리포커스 : 『벚꽃길 따라 사랑이』 제하의 보도사진 (2006년 4월 7일자 6면)

내 용 :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만개

한 6일 시민들이 벚꽃 나무 아래를 거닐며 완전한 봄을 즐기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7일자 6면에 『벚꽃길 따라 사랑이』 제하의 보도사진에서 두 남녀의 사진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진 속의 두 남녀는 단순한 직장동료의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가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여의도 벚꽃길 사진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7일자 6면에 『벚꽃길 따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두 남녀가 윤중로를 걷고 있는 사진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직장동료의 관계임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4월 2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더데일리포커스> 6면 좌측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제목은 고딕체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더데일리포커스 : 『여의도 벚꽃길 사진보도 관련 정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
월 21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결 정 문

사 건 : 2006서울조정12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더데일리포커스)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

대표이사 김 영 곤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위 돈을 2006년 5월 8일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2006년 5월 9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0.

□

신청인이 동료 여직원과 벚꽃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연인사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윤중로 벚꽃 활짝』 제하의 보도사진
(2006년 4월 11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12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연합뉴스는 지난 2006년 4월 11일자 『윤중로 벚꽃 활짝』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직장동료와 함께 윤중로를 걷고 있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두 사람을 연인관계로 묘사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위 보도로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으므로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2006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

을 때에는 2006년 6월 1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미지
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

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신청인이 교육부가 내정한 낙하산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세계일보 : 『경기대 이사장 ‘낙하산’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5일자 11면)

내 용 :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시 이사 체제의 경
기대 이사장에 열린우리당 출신 정치인을 내정, 이
학교 교직원과 교직원노조가 정치인 낙하산 인사
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경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손○○ 전 경기대
총장이 2004년 12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이○○ 열린우리당 강원도 원주시구당 위원장을 경
기대 관선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달 31일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교육부는 후임 이사장에 민
주당 국회의원과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 등을 지
낸 이○○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이사장 임시 권한대행으로 내정했다. 이 같은 사실
이 알려지자 경기대 직원과 직원노조는 “이○○ 이
사장에 이어 교육계와는 전혀 무관한 정치권 인물
이 또다시 낙하산 인사에 의해 파견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직원들은 특히 “정치권 인사가 이사장으로 파견
될 경우 손 전 총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이
어 비리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며 “교육계 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
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5일자 11면에 『경기대
이사장 ‘낙하산’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5·31 지
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이사장 후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수석
부의장이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장 권한대행으로
내정되었으며, 교육계와는 무관한 정치인 출신인사
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임시 이사장권한대행은 교육
부가 내정한 것이 아니라, 경기대 임시이사회에서
후임이사장 선임시까지 임시이사장 권한대행을
지정한 것이었으며, 이○○ 임시 이사장 권한대행
은 성공회대학 총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
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세계일보 : 『고침』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8일자
2면)

내 용 : 본지 2006년 4월 5일자 11면 『경기대 이
사장 ‘낙하산’ 논란』 기사 중 대학의 이사장 직무
대행은 해당 대학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므로
‘교육부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수석부의
장을 이사장 임시 권한대행으로 내정했다’는 내용
을 ‘경기대 이사회에서 이 수석부의장을 이사장
임시 권한대행으로 선임하였다’로 바로잡습니다.
또 이 수석 부의장은 과거 성공회대 총장을 역임
한 경력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교육부가 내정한 낙하산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2.

처리결과 : 취 하

참조>

취하 후 보도문

경인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0일자 19면)

내 용 : 경인일보 4월 5일자 19면 ‘경기대이사장 내정싸고...교직원노조 반발’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 경기대의 임시이사장 권한대행은 교육부가 내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대 이사회가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이○○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이사장 임시권한대행으로 선임할 뜻을 밝혔다”는 내용은 “경기대 이사회가 이○○ 수석부의장을 이사장 임시권한대행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의 잘못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보도내용

경인일보 : 『또 정치권인물을』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5일자 1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31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31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 회사의 과자가 아이들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2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제과 (대표이사 신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2TV : 「추적60분」 프로그램 (2006년 3월8일 22:05)

내 용 : 과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이들. 얼마 전 소비원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은 1주일

에 스낵과자류 3.3개, 사탕 · 초콜릿 · 껌류 3.6개, 아이스크림류 3.6개, 가공음료류 6.6개를 섭취하고 있다.

이제 과자는 아이들에게 밥보다 더 중요한 먹거리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것들을 먹고 몸이 아프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학교 앞 불량과자도 아니고 모두 유명 제과업체에서 만든 유통기간 내의 과자들이었다.

도대체 과자의 무엇이 아이들을 아프게 만드는 것일까?제작진이 과자의 이면에 숨겨진 검은 진실을 파헤쳤다. (중략)

■ 국내 최초 실험보고 - 과자가 아토피를 일으킨다

작년, 서울에 사는 어린이 10명 중 4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아토피 아이들 사이에서 과자가 아토피의 한 원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추적 60분〉이 국내 최초로 한양대 구리병원 소아과 오○○ 교수팀 외 4개 소아과 병원과 함께 과자 속 식품첨가물과 아토피의 관계를 실험했다.

우선 과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식품첨가물 7종을 선정했다. 적색 2호(타르계 색소), 적색 3호(타르계 색소), 황색 4호(타르계 색소), 황색 5호(타르계 색소), 차아황산나트륨(포백제), 안식향산나트륨(방부제), MSG(조미료)이다. 피부에 첨가물을 접촉해보는 반응 검사, 피부에 붙였다가 48 시간 후에 반응을 보는 패치 검사, 직접 먹어보는 식이 유발반응으로 실험해보았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패치 검사 인원 22 명 중 1가지 이상의 첨가물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21 명(96%), 7가지 첨가물 모두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도 1명(5%) 있었다. 또한 식이 유발반응에서는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과자 또는 주스를 먹었을 때 검사 인원 전원의 아토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3월 8일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제과식품주식회사 등 국내 제과업체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과자가 아이들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제과에서 생산·판매해 온 약 150여 종의 과자류 대부분은 본 방송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소인이라고 보도한 7가지 식품첨가물 가운데 적색2호와 황색2호, 안식향산나트륨 등 첨가물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17개 제품에 한해 1,2가지 첨가물만을 법규가 허용하는 법규내에서 일부 사용하는 등 적법한 법규와 제조기준에 따라 최소한도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왔으며,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과자제품을 생

산한 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사용한 광고의 제품으로 오인된 ○○제과의 ○○○ 제품은 본 방송에서 지적한 7가지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첨가물은 대부분 소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하거나 한꺼번에 대량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변할 수는 있기 때문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연구결과를 통해 사람이 매일 섭취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일일허용섭취량(ADI)을 지정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개별기준에 따라 섭취량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식품에 따라 사용량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본 방송이 보도한 타르계 색소(황색4호, 적색3호 등)는 과자나 사탕 등 어린이가 섭취하는 과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첨가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제과 등 국내 제과업체들은 국내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제품표시의무를 다해 왔으며, 미국의 FDA의 규정도 조미료, 향신료, 색소는 성분명이 없이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수적인 첨가물(가공첨가물)에 대하여도 성분표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제과 등 국내 제과업체가 생산·판매해 온 국내 과자제품이나 과자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 마치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아직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정정보도는 허용할 수 없다.

조성불성립결정 후 보도문

KBS-2TV : 「추적60분」 프로그램 (2006년 5월 10일 23:00)

내 용 : 지난 3월 8일 방영한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편에서는 국내제과업체에서 사용하는 일부첨가물의 아토피 관련 문제점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제과업체에서는 법규와 제조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왔고 제품표시의무도 다하여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과는 110종 제품 중 7개 제품,

○○제과는 150종 제품 중 17개 제품에 한해 방송에서 언급한 7가지 식품첨가물 중 1,2가지를 국내 법규와 제조기준에 따라 사용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기한 과자의 유해성 논란과 별도로 지난 4월 3일부터 생산되는 제과에는 식품첨가물 7가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천연소재로 대체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전직 제과업체 간부 안○○ 씨를 소개하면서 사용한 화면은 ○○제과의 ○○○제품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상은 ○○○제과와 ○○제과에서 보내온 반론보도문입니다. □

군인공제회가 군부대 PC방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3.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끈끈한 형제애』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6일자)

내 용 : (전략) 국방부 정보기획관실과 군인공제회 C&C명으로 2005년 2월부터 ‘중대 인터넷 학습방 구축/운영계획’을 만들어 각 부대에 배포하고 2개월 넘게 부대 내 실사 작업에 착수했다. ‘중대 인터넷 학습방 구축/운영계획’에 따르면 문서 각 페이지에 국방부 마크가 찍혀 있어, 실사 작업이 국방부의 협조 속에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공제회가 국방부와 협의없이 홍보 및 실사를 위하여 만든 문서로 국방부 결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군인 공제회가 문

서를 위조한 셈이고, 국방부는 문서를 위조한 군인공제회를 사업 파트너로 선택하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쟁 컨소시엄 업체는 사업제안 이후 육·해·공군 각 부대의 현장 실사를 일주일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실사 작업부터 불공정한 경쟁이 진행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군인공제회 C&C가 국방부를 사칭해서 사전 조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국방부”라면서 “불공정한 입찰이었을 뿐 아니라 허술한 군의 보안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방부가 2005년 9월 사업 제안공고를 내면서 조건으로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군인공제회와 계약서에서는 수익률 7%를 보장한 점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사이버 지식 정보방 사업 협상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인공제회에 실질수익률 7%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가 관리 운영권을 10년 동안 소유하고, PC사용료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정보기획관실 담당자는 “경쟁업체의 반발로 이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방부의 선택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라면서 “수익률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PC

사용료는 더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공제회 C&C 관계자 역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기본투자비용이 444억이지만 병사들의 PC사용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수익을 못 낼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수익 보장을 위해 PC사용료 조정도 가능한 상황에서 군인공제회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군인공제회는 PC방과 인터넷 전화 이외에도 전용선을 이용해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오히려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 PC방 사업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되는 나라사랑카드도 군인공제회 C&C와 연관이 있다. ‘사이버 지식 정보방 사업협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PC사용료는 카드 방식 결제를 선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나라사랑카드의 결제를 의미한다.

이 카드는 일명 ‘남자카드’로 불린다. 징병검사를 받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과 군에 있는 사병들에게 발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국방부는 남성카드에 병역증과 전역증을 대체하는 전자 신분증 기능과 현금 및 체크카드 기능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카드 발급기를 설치해 남성카드를 현장에서 발급 후 징병 검사시 신분 인증용으로 사용하고, 징병검사여비를 이 카드에 입금시켜 줄 방침이다.

결국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남성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군대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략)

세상과 단절된 군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한다고 해도 사병들의 PC사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사병의 늘어나는 월급이 PC방 사용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군인공제회C&C는 중대PC방 사업권을 따내면서 부속사업으로 인터넷 전화사업을 따냈다. 부대 내에서 사병의 핸드폰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은 감안할 때 인터넷 전화로 인한 수익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병 한 사람이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한 달에 3만원씩 만 사용한다고 해도 120억원(40만명×3만원) 정도의 매출이 잡힌다. 초기 시설비 투자로 손쉽게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세금이나 부모의 돈으로 사병의 주머니를 채워서, 그 돈을 다시 군인공제회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군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의무 복무라는 이유로 군 관련된 이권 사업은 흔히 대동강물로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운 사업”이라면서 “국방부가 군인공제회에 이권 사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인공제회는 민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마치 국방부와 동일한 정부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군을 업고 온갖 이권 사업에 뛰어들어 군인공제회는 제대로 된 감사도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6일자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끈끈한 형제애』라는 제목으로 군부대 사이버 지식정보방 사업자인 군인공제회가 “국방부 문서를 위조하고도 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군인공제회 C&C가 국방부를 사칭해서 사전 조사”를 했음은 물론 “실사과정이 불공정한 경쟁”, “군인공제회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등의 보도를 하였으나 아래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군인공제회는 국방부의 승인 하에 국방부와 공동 명의의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으므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으며, 실사과정에서 국방부는 타 경쟁 업체들에게도 실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군인공제회를 우대하는 “불공정 경쟁”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수익률 7%보장”은 실질 수익률(IRR) 7%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투자비 444억 원에 10년간 40억 원 즉 매년 4억원의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1%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7%의 수익률이라는 판단 하에 수익이 거의 없다는 군인공제회의 판단을

“거짓말”이라고 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나라사랑카드는 여자 군인들도 발급받으므로 남자카드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했으며, 1인당 2,000원의 카드 수수료로도 확정된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쏠쏠한 수익”을 챙긴다거나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내용도 연간 8억 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사실을 확인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합니다.

넷째, “사병 호주머니 털기”라는 보도도 공중전화나 빨래방 사용 시 사용자인 사병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와 유사하게 시중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인터넷회선 사용료(약 200원 정도 예상)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현실을 마치 군인공제회가 사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으로 왜곡 보도하였고 마지막으로 군인공제회는 민간기관이 아닌 국방부 산하기관 중 기타기관에 해당되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국방부 감사 등 법에 의한 감사와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자원하여 수감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제대로 된 감사도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인공제회의 사업 중 군과 관련된 사업은 당기순이익의 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군을 업고 온갖 이권사업에 뛰어든 군인공제회”라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끈끈한 형제애’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지난 3월 16일자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끈끈한 형제애』 제하의 기사 가운데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군인공제회C&C가 만든 ‘중대 인터넷 학습방 구축/운영계획’ 책자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충분히 논의한만큼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습니다.

“경쟁 컨소시엄 업체는 현장 실사를 일주일도

진행하지 못해 불공정한 경쟁이 진행됐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실사기관과 관련된 불공정한 경쟁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수익률 7% 보장”은 실질 수익률(IRR) 7%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투자비 444억 원에 10년간 40억 원, 즉 매년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실제 수익은 1% 정도 발생합니다.

나라사랑카드와 관련, 군인공제회는 이 카드가 군 의무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지만 여성군인(2005년 기준 사병의 0.5%)도 발급 받는 만큼 ‘남자카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며, 1인당 2000원의 카드 수수료도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산하기관 가운데 기타기관에 해당돼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국방부 감사 등 법에 의한 감사와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자원하여 받고 있으며, 군인공제회 사업 가운데 군과 관련된 사업은 당기순이익 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군을 업고 온갖 이권 사업에 뛰어든 군인공제회”라는 기사의 설명이 사실과 다릅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국방부·군인공제회 기사관련 알립니다」라는 제목을 표기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오마이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끈끈한 형제애”의 기사에 위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은 2006년 5월 10일까지 위 2·3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부장, 담당기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끈끈한 형제애’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의 과자가 아이들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제과
(대표이사 윤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3.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KBS-2TV : 「추적60분」 프로그램 (2006년 3월 8일
23:00)
내 용 : <2006서울조정13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3월 8일 「추적60분」 프로그램에서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제과 등 국내 제과업체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과자가 아이들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제과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약 112종의 과자류 대부분은 본 방송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소인이라고 보도한 7가지 식품첨가물 가운데 적색2호와 적색3호, 황색4호, 황색5호 및 안식향산나트륨 등 첨가물은 수년 전부터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7개 제품에 한해 2가지 첨가물만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사용하는 등 적법한 법규와 제조기준에 따라 최소한도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왔으며,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과자제품을 생산한 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적 60분」은 ○○○제과 등 국내 제과업체가 생산·판매해 온 국내 과자 제품이나 과자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 마치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아직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추적 60분」에서 한 아토피 피부염 실험은 이미 과자를 먹으면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킨 병력이 있는 특이체질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과자를 먹여 그 반응여부를 본 것인데도 마치 보통의 소비자들도 과자를 먹으면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식의 방송을 한 것은 실험의 기준과 방법,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과자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과를 비롯해 국내 제과업체들은 국내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제품표시 의무를 다해 왔으며, 미국의 FDA의 규정도 조미료, 향신료, 색소는 성분명이 없이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수적인 첨가물(가공첨가물)에 대하여도 성분표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3월 8일 방영한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편에서는 국내제과업체에서 사용하는 일부첨가물의 아토피 관련 문제점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제과업체에서는 법규와 제조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왔고 제품표시의무도 다하여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과는 110종 제품 중 7개 제품, ○○제과는 150종 제품 중 17개 제품에 한해 방

송에서 언급한 7가지 식품첨가물 중 1,2가지를 국내법규와 제조기준에 따라 사용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기한 과자의 유해성 논란과 별도로 지난 4월 3일부터 생산되는 제과에는 식품첨가물 7가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천연소재로 대체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전직 제과업체 간부 안○○ 씨를 소개하면서 사용한 화면은 ○○제과의 ○○○ 제품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상은 ○○○제과와 ○○제과에서 보내온 반론보도문입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5월 4일 이후 피신청인이 최초로 방송하는 「추적 60분」 말미(광고전)에 보도하되, 화면상단에 “○○○제과 ○○제과 반론보도문”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위 1항 기

재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과 ○○제과는 2006년 3월 8일자 방송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도청구(민법 764조에 기한 정정보도청구 포함)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2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2006년 5월 10일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성형외과 비전문의들의 미용수술을 부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회장 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4.

처리결과 : 조정결정(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2006년 3월 26일 23:00)

내 용 : ▷기자 : 과외수업하면 대학입시를 떠올리실 텐데요 의사들도 과외를 받고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의사 수강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역시 돈벌이가 가장 잘된다는 성형수술입니다. 특히 쌍꺼풀수술과 코 그리고 지방흡입술 등을 배우려는 의사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수술 과외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중략)

▷기자 : 이렇게 수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수술과외는 의사들 사이에서 세미나로 불립니다. 강남의 유명 개인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세미나는 대학입시로 치면 개인과외, 이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학원 과외도 있습니다. 바로 각종 성형 또는 미용의학 관련 학회에서 개최하는 성형수술 세미나입니다.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한 컨벤션센터 강당입니다. 줄잡아 백명 이상의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전면에 설치된 화면에 수술장면이 보입니다. 서울강남의 한 개인병원에서 진행되는 성형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좌는 눈밑 다크 서클의 지방을 제거하고 있는 수술. 환자는 20대 후반 여성, 화면 속 수술실엔 집도할 원장과 간호사 말고도 수술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앞서 개인병원에서처럼 수술을 직접 보려고 와있는 다른 병원의 의사들입니다. 수술실에서 틀어 놓은 라디오 소리까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눈에 마취제를 떨어뜨리면서 수술이 시작됩니다. (중략)

▷기자 : 이렇게 여기저기서 성형수술을 배운 의사들은 실제로 성형외과 병원을 개원해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기자 : 하지만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일 경우 홍길동 성형외과 의원으로 구청에 신고하고 간판도 그렇게 달면 됩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일반의이면서 성형외과를 하려면 홍길동 의원이라고 구청에 신고하고 간판에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적어야 합니다. 성형의 메카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의 보건당국에 성형외과 진료를 하겠다고 신고한 개인병원은 모두 369개였습니다. 이중 4분의 3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원한 병원이었고, 4분의 1인 86개 병원은 일반의 또는 성형외과가 아닌 다른 과 전문의가 개원한 병원이었습니다. 이들 8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병원. 이 병원 의사는 2002년부터 2005년 중반까지 대형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지난해 말 자신이 전공한 가정의학과 대신 성형외과 병원을 개원한 것입니다.

강남의 또 다른 성형외과. 원장은 지난 94년부터 2003년까지 병원 두곳을 거치며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7월 성형외과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강남의 이 성형외과 병원 원장은 흉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외과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다가 2000년 말부터 성형외과 병원을 개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성형으로 몰리는 이유는 한마디로 성형수술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벌이가 더 잘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중략)

▷기자 : 하지만 성형외과 개원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국○○(성형외과 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 상위 20%를 차지하고 있는 성형외과가 전체 성형외과 매출의 8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위 80%가 나머지 시장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심화된 양극화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거죠.

▷기자 :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는 등의 부작용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눈매를 고치겠다며 안해도 될 수술을 했다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기자 : 이 분은 이걸 어떻게 수술하면 되나요? 도대체

▷이○○(성형외과 전문의) :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래되는지... 나는 하고 싶어도 이래 못해. 배출은 너무 많이 되고, 갈 곳은 없고, 그러니까 개업으로 나오다보니 많은 프랙티스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자 : 돈벌이가 되는 성형외과로 몰리는 의사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쏠림 현상이 위험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6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의사들이 과외’에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미용수술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과외’를 하며 개원한 뒤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 있는 의사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미용외과 학회에서 개최한 <대한미용외과학회 2006 춘계 미용의 학연수강좌>를 촬영해 단체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부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미용수술은 성형외과 고유한 영역이 아니며 따라서 성형외과 전문의나 비전문의나 별도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의학 분야인데도 성형외과 전문의는 미용수술을 제대로 배운 데 반해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그렇지 못해 따로 미용수술 ‘과외’를 받을 뿐더러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 있는 의사인 것처럼 비쳐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한미용외과학회의 학술대회를 주최측의 사전 양해없이 촬영해 일부 편집 방영한 바 수술 의사와 환자의 모습이 노출되는 등 대한미용외과

학회 및 회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해 사과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9-5

정석빌딩5층

회장 임 ○ ○

조정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사(MBC-TV)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윤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MBC-TV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말미(당일 방송내용이 종료되고, 스텝스크롤이 나가기 직전)에, 진행자의 통상적인 속도의 멘트로 방송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6.

〈별 지〉

지난 3월 26일 「시사매거진2580」 ‘의사들의 과외’ 편을 통해 성형외과 비전문의들이 미용수술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과외지도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는 미용수술은 성형외과 전공의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미용수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실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성형외과 비전문의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총리의 골프 파문을 보고 받고 격노했으며 총리의 거취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통령 노 무 현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4.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골프포비 미수사건’ 노 대통령 격노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7일자

1면)

내 용 : 이해찬 총리의 5일 대국민 사과는 의의였다. 산불이 났을 때도, 물난리가 났을 때도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지만 사과하지 않았던 그였다. 그런 이 총리가 왜 갑자기, 그것도 사흘이나 지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죄송스럽게…”라며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실상의 사의를 표했을까. 그 배경엔 노무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노 대통령의 분노가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프리카 순방 일정이 없었더라면 당장 이 총리를 물러나게 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뭘까. 청와대에 이 총리 '3·1절 골프 건이 첫 보고된 것은 다음날인 2일 오전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 하지만 함께 라운드한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이 파악되기 시작하면서 청와대는 비상이 걸렸다. 그냥 넘겼다면 일과만파로 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즉시 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청와대 핵심참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경질하지 않고는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며 조기 진화 쪽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이 이렇게까지 번진것은 단순히 3·1절 날 골프를 쳤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불법 정치자금에 공모로 구설수에 올랐던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때문도 아니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사람들과 골프를 친 게 문제라면 대한민국의 상당수 대기업 오너와 전문경영인들은 전부 골프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냐”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고 말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날의 골프 모임을 만들었느냐에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 친목을 넘어 불순한 의도가 끼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중략)

요약하면 노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에서 비리 적발 기업인이 총리를 상대로 골프 로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는 게 사정당국의 판단이다.

이렇게 파문이 커지자 함께 골프를 친 다른 상공인들은 청와대 인맥을 통해 사정라인에 “우리가 주선한 자리가 아니다”며 해명을 시도했다. “R회장이 ‘총리가 내려오시니 꼭 참석해야겠다’고 해간 자리다” “당초 있던 약속까지 깨고 갔다” “어떻게 골프 모임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른다”는 식의 이야기가 전달됐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데 있다.

여권 핵심 인사는 “부산지역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병적이란 얘기를 들을 만큼 집중관리해 온 곳”이라고 말했다. 실제 얼마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이런 일도 있었다. ‘금품선거 징후가 있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된 것이다. 청와대는 당장 “문제가 드러나면 전원 구속시키겠다”고 지역에 경고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도덕성을 내세우고 있는 참여정부의 ‘안방’에서 불미스러운 일

이 구상됐다는 것 자체가 노 대통령을 화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3월 7일자 1면 『‘골프 로비 미수 사건’ 노 대통령 격노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하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노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에서 비리 적발 기업인들이 골프 로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여 노 대통령이 격노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노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 일정이 없었으면 당장 이 총리를 물러나게 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노대통령은 이 총리의 골프 파문을 보고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순방을 다녀온 후 판단할 예정이었을 뿐,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거나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는 즉흥적 문책성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우선적인 사실 관계의 파악 후 처리’라는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켜왔으며, 향후에도 이 원칙을 모든 인사 사안에 지켜갈 것이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3월 7일자 1면 『‘골프로비 미수 사건’ 노 대통령 격노했다』 제목의 기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이 총리의 골프 파문을 보고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순방을 다녀온 후 판단할 예정이었을 뿐, 보고 받고 격노했다거나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노대통령은 지금까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는 즉흥적 문책성 인사는 배제해 왔고, 향후에도 이 원칙을 인사 사안에 지켜갈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중앙일보 2006년 4월

21일 또는 24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1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아파트의 LPG공급 사업권을 놓고 업체-주민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돼 가스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 ○ ○)

피신청인 : 경상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상일보 : 『아파트단지 가스공급권 마찰』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6일자 16면)

내 용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아파트(3천가구)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 사업권을 놓고 기존 공급업자와 신규 계약업자, 주민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 최악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양산지역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중략)

기존 공급업체인 ○○에너지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가스공급관리 전문회사도 아닌데다 등록사업의 목적 또한 공사업을 주로하고 있어 입찰공고가 요구하는 ‘공급실적과 공급의 안전성 확보’에 전면 위배된다고 반발, 지난해 10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상대로 사업자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에너지 관계자는 “국내 가스집단공급 사업장 가운데 가장 큰 ○○아파트에 대한 가스공급을 경험도 없는 업체에 넘기려는 의도를 사전에 숙지, 입찰공고에 앞서 사업자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대표회의측은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급업체 선정에 투명성과 주

민안전을 확보, 적격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P씨 등 일부 입주민들도 “탱크로리 1대도 보유하지 않은 H가스기공은 가스공급 전문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3천가구를 책임지고 LPG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입주민 전원이 가스사용 당사자인데 사전 동의도 없이 공급업체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H가스기공을 상대로 지난 1월 사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대표회의측은 H가스기공과 함께 ○○에너지를 상대로 지난 1월 가스공급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아파트가 경매절차를 거쳐 임대에서 일반아파트로의 전환과 함께 계약기간이 종료, 기존업체와 계약했던 가스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됐다”며 “적법한 절차와 심사기준을 거쳐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3천가구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LPG 집단공급 사업권을 놓고 업체-주민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돼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 자칫 가스공급 중단사태 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대 책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16면 『아파트단지 가스공급권 마찰』 제하의 기사에서 ○○○○아파트에 대한 LPG집단공급 사업권을 놓고 신규-기존 업체-주민간 갈등이 법적싸움으로 비화돼 향후 가스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으며, 주민안전을

우선하여 공급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가스공급이 중단 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입찰 공고에 앞서 ○○에너지 측이 사업자 변경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실은 없었으며 ○○아파트 대표회의 측은 적법한 절차대로 신규업체를 선정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경상일보 : 『웅상○○ 가스공급원 마찰 일단락』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2일자 12면)

내 용 : 기존 공급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 이해관계, 일부 주민의 반발 등으로 야기된 경남 양산시 웅상읍 ○○아파트(3천가구)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권을 둘러싼 마찰(본보 4월 6일자 16면)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락 됐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 공급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주민 사이에 벌리논쟁을 일차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입주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지난 19일 기존 공급업체인 (주)○○에너지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결정문에서 ○○에너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차이를 종합 검토해본 결과 “○○에너지가 ○○아파트에 대한 가스공급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P모씨 등 일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신규공급업체로 선정된 K가스기공(주)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실을 검토한 결과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관한 가스집단공급사업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받아들여 “○○에너지는 양산시 웅상읍 ○○리 ○○○-○ ○○아파트 전세대에 대한 가스공급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

○○·○○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 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종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4.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종로신문 : 『종로구재개발 연합회 소속대표들 구청

방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7일자 1면)

내 용 : 지난 5일 종로구 재개발연합회(회장 배○○)소속 각지역 재개발 대표 등 10여명이 종로구청으로 김충용 구청장을 방문하고 재개발사업을 촉구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참여한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오랫동안 끌여온 ○○·○○ 뉴타운사업에 대해 지난 31일까지 민주적 방식에 의해 3차의 주민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났으며 주민 80%이상이 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젠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일만 남았으니

구청에서 바로 지정신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략)

한편 이날 구청장 면담 목적이 전제한 바대로 주민 80%가 원하는데도 계속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시급한 지정을 촉구한 자리가 되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7일자 1면 『종로구개발 연합회 소속대표들 구청방문』 제하의 기사에서 ○○·○○ 뉴타운 사업추진에 주민 80%이상이 찬성하였으며, 뉴타운 설명회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성황리에 끝났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매회 뉴타운 설명회는 시작 10여분 만에 끝이 났으며 1, 2차는 설명회 도중에 중단됐고 3차 역시 참가자로 동원된 인력들과 투기자들이 대부분으로 실제 참여한 소수의 주민은 다수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에서처럼 찬성주민이 80% 이상이 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보도를,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크기, 같은 위치(종로신문 656호 1면 우측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종로신문 : 『○○·○○ 뉴타운 사업 추진 난항』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1면)

내 용 : 종로 동부지역 ○○·○○ 뉴타운 지구 지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종로구청은 4월말 현재까지 뉴타운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후보지역 확정 고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뉴타운 반대 주민들(○○·○○ 뉴타운 반대 추진 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권○○)에 따르면 지난달 이명박 서울 시장과 이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이 시장이 찬성측 대표가 제출한 80%이상 서명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세한 설명회를 다시 실시하고, 충분한 설문조사를 통해 찬반 주민여론을 정확히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종로구와 서울시는 종로구민회관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구역별로 나누어 4회에 걸쳐 뉴타운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그러나 뉴타운 반대측 주민들의 거친 항의와 고성속에 짧은 시간에 끝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10여분도 안되는 시간에 쫓기듯 장밋빛 영상만 보여주며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 자리서 찬반 결정을 요구 했다”면서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주민들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뉴타운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지역 원주민들은 90%이상 본의 아니게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현재 살던 집을 처분,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을 갚고 나면 어디 가서 월세방도 얻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후략) □

신청인이 TV에 출연해 납복자 중 자진 월복자가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납북자를 자진 월북자라니』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4일자 14면)

내 용 : 납북자 가족과 관련 단체들이 “납북 피해자를 스스로 북한으로 간 월북자로 표현했다”며 정○○(45) 한국기자협회장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납북자가족모임과 피랍·탈북인권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정 회장이 1일 한 TV방송에 나와 지난달 금강산 이산상봉장에서 벌어진 북한 측의 취재 방해 사태에는 입을다문 채 모든 책임을 한국 기자단과 납북자 가족에게 덮어씌우려 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정 회장의 발언은 납북자 가족을 모독하고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공개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 회장이 출연한 KBS1-TV ‘미디어포커스’ 측이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이번 언론이 간과한 것은 이른바 의거 월북자와 자진 월북자”라며 “자진 월북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산가족 상봉장에도 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납북이란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납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북한의 취재 방해 등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략)

기자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납북은 입증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 발표 때도 협회 간부들이 반발했으며, 심지어 ‘정 회장 당신 개인 이름으로 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족뉴스부장을 지낸 정○○씨는 지난해 12월 40대기자협회장에 취임했다.

납북자 가족과 단체들은 6일 기자협회를 향의 방문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4일자 14면에 『납북자를 자진 월북자라니』 제하의 기사에서 “기자협회장이 TV출연 발언 물의, 납북자 가족모임, 사과·사퇴 요구”라는 부제로 한국기자협회장 정○○ 회장이 KBS-1TV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에 출연

해 지난 3월 금강산 이산상봉장에서 벌어진 북한 측의 취재 방해 사태와 관련, 언론이 의거 월북자와 자진 월북자를 간과하였으며 납북이란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자진 월북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산가족 상봉장에도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였으며, 확실한 근거 없이 납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금강산 남북이산상봉모임에서 벌어진 남한기자들의 철수 문제와 관련, 북한의 취재 방해 등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납북관계 보도제작 준칙을 준거틀로 삼자’의 기자회견 성명서와 관련, 기자회견 관계자를 인용해 정○○이 회장으로 있는 기자회견 간부들이 반발했으며, 심지어 정 회장 당신 개인이름으로 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 회장은 KBS-1TV 「미디어포커스」에 출연해서 상기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미디어포커스」 대본을 실제로 발언한 녹취록으로 잘못 알고 보도된 내용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협간부들 가운데 ‘정 회장 당신 개인 이름으로 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4월 4일자 14면 『납북자를 자진 월북자라니』 제하의 기사에서 정○○ 한국기자협회장이 TV에 출연, “이산가족상봉장에도 주로 그런 사람(의거 월북자 및 자진 월북자)이 많이 나온다”고 언급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정 회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방송에서 납북자를 자진 월북자라고 표현한 바 없으며 북한의 취재 방해 등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 역시 진행자가 질문을 한 바도 없고,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납북관계 보도제작 준칙을 준거틀로 삼자’는 취지였으며 당시 성명서 발표시 협회 간부들이 반발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4월 26일 또는 4월 27일자 2면 ‘바로 잡습니다’ 코너 첫머리에 다른 정정기사와 선으로 구분하여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등 ‘독점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충북조정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HCN 충북방송

(대표이사 김 동 운, 경 청 호)

피신청인 : 한빛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빛일보 : (1) 『HCN 충북방송 ‘횡포’ 도가 지나쳐』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6일자 1면)

내 용 : HCN충북방송(이하 HCN)이 ‘독점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해 말부터 충북지역 케이블방송 시장을 독점한 HCN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한 데 이어 시청률이 높은 일부 인기채널을 유료로 변경해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이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청주시역 각 소비자 고발센터에 빗발치고 있다.

HCN은 지난달 초 채널을 변경한데 이어 이달초 또 다시 채널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HCN은 기본형 서비스 상품에 편성돼 있던 드라마·스포츠채널 등을 ‘고급형’ 유료 채널 상품으로 변경, 기본형 상품 가입자들은 이 채널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고급형’은 ‘기본형’보다 가격이 5~6배 이상 비싼 채널 상품이다.

현재 매월 3천 원씩 HCN 시청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가 드라마채널을 보고 싶다면 컨버터(수신

변환장치) 보증금 3만 원과 매월 1만 8천 7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고급형’ 유료 채널 상품에 가입해야만 보고싶은 드라마와 스포츠를 볼 수 있다. (후략)

(2) 『HCN, 이번엔 수신료 ‘횡포’』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0일자 1면)

HCN충북방송(이하 HCN)이 ‘채널 횡포’ (6일자 1면)에 이어 이번엔 ‘요금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가입자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충북지역 케이블방송 시장을 독점한 HCN이 최근 일방적 채널 변경과 유료화를 일삼고 있다는 소비자 고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청주·청원 지역 일부 아파트단지별 수신료를 최고 100% 이상 인상, ‘이중적 요금인상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주시역 일부 아파트단지들은 연합체제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개별 방송수신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HCN과 ‘수신료 전쟁’을 치를 태세다. (중략)

이런 가운데 HCN은 최근 채널을 잇따라 변경한 데 이어 기본형 서비스 상품에 편성돼 있던 일부 인기 드라마·스포츠 채널 등을 가격이 5~6배 이상 비싼 ‘고급형’ 유료 채널 상품으로 변경했다.

드라마와 스포츠 등을 보고 싶다면 보증금 3만 원과 매월 1만 8천 700원의 이용료를 내라는 얘기다. 때문에 가입자들은 결국 HCN이 기본료 인상 및 ‘인기채널 유료화’로 요금을 이중으로 인상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HCN의 일방적인 배정영업 때문에 자체 방송수신시스템을 장착했다”면서 “최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HCN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지역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은 “올 초 HCN이 ‘보기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요금인상을 통보해 왔다”며 “채널 유료화에다 기본요금까지 인상하는 HCN의 이중적 횡포를 비난하는 주민민원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후략)

(3) 『HCN 충북방송 통합 전 ‘수신료 담합’ 적발』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1일자 3면)

HCN충북방송(이하 HCN)이 충북지역 케이블방송 시장을 독점하기 전인 지난해, 당시 경쟁사였던 ‘충북방송’과 ‘수신료 담합’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통합하기 전에는 경쟁사와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더니, 통합하고 나서는 ‘독점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당시 (주)청주케이블TV와 (주)충북방송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 관계에 있던 두 케이블방송사는 지난 2004년부터 수 차례의 실무자 모임을 갖고 수신료 조정 및 스크램블 채널운영에 대해 논의한 뒤 같은 해 11월 초 수신료와 스크램블채널을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후략)

(4) 『‘엉뚱한’ HCN충북방송』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2일자 1면)

HCN충북방송(이하 HCN)이 수신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 가입자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략)

안OO HCN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요즘 물가와 견줘 볼 때 수신료가 절대 비싼 것이 아니다”면서 “채널 변경을 값(수신료)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어 “채널 변경이나 수신료 인상이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나 부당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채널수와 수

신료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특히 “최근 방송위원회가 2008년까지 PP(프로그램 공급자) 수신료를 25%까지 올리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더 수신료가 올라가게 돼 있다”고 밝혀 향후 추가 수신료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5) 『방송·공정위 나서야』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3일자 1면)

(전략)방송위원회 측은 오히려 HCN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법적으로 채널편성권은 케이블방송사의 권한이므로 제재할 수 없다”면서 “방송사 측이 채널변경에 대해 약관 변경을 신고하면 그만이어서 승인이나 허가조차 얻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전공정거래사무소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수신료를 인상하고 채널을 변경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다”며 “HCN에 대한 독점 횡포 문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신중하게 판단해 직권 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의 입장대로라면 충북지역 케이블방송 시장을 독점한 HCN은 주민들의 ‘독점 횡포’ 여론과 상관없이 ‘채널권’과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소유한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1면 『HCN 충북방송 ‘횡포’ 도가 지나쳐』, 4월 10일자 1면 『HCN, 이번엔 수신료 ‘횡포’』, 4월 11일자 3면 『HCN 충북방송 통합 전 ‘수신료 담합’ 적발』, 4월 12일자 1면 『‘엉뚱한’ HCN충북방송』, 4월 13일자 1면 『방송·공정위 나서야』 제하의 기사에서 HCN이 최근 채널을 변경한 데 이어 기본형 서비스 상품에 편성돼 있던 일부 인기 드라마·스포츠 채널 등을 유료화(고급형) 시켜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자 기사에서 아파트단지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려는 것은 다른 목적을 띤 것으로 수신료 문제가 일부 거론된

것이지 HCN 때문만이 아니며, 율랑동 모 아파트 소장의 인터뷰 인용대목에서 HCN 측이 ‘보기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4월 11일자 기사에서 HCN충북방송이 수신료 담합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4월 12일자 기사에서 HCN충북방송이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였다는 내용은 일반 시청자의 시청료가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PP 수신료’를 두고 한 말이 잘못 기사화 된 것이라 밝혀왔습니다. 본지는 4월 13일자 기사에서 ‘충북지역 케이블방송 시장을 독점한 HCN은 주민들의 독점 횡포 여론과 상관없이 채널권과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HCN충북방송은 “케이블방송의 채널편성권은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이를 모두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없고 일정 부분 PP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며, 방송위원회로부터 권고와 지도감독을 받아가며 결정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HCN 충북방송의 반론보도문
- 내 용 : 한빛일보가 지난 4월 10일자 1면 머리 기사에서 HCN이 채널변경과 유료화를 일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채널변경은 채널사업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1년에 1~2차례 할 수밖에 없으며 유료화를 일삼는다는 표현은 부당합니다. 또한, 율랑동 모아파트 소장의 인터뷰 인용 대목에서 (HCN)이 ‘보기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했는데 어떤 직원도 그렇게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4월 12일자 1면 ‘사과한다면서 수신료 인상 거론’ 기사에서 충북방송 보도제작 본부장의 멘트 중 ‘앞으로 수신료가 더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HCN 충북방송은 ‘더 올라가게 돼 있다’고 말한 부분은 일반 시청자의 시청료가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PP 수신료’를 두고 한 말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4월 13일자 1면 ‘방송·공정위 나서야’라는 기사에서 ‘충북지역 케이블방송 시장을 독점한 HCN은 주민들의 독점 횡포 여론과 상관없이 채널권과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의 채널편성권은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이를 모두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없고 일정 부분 PP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며, 방송위원회로부터 권고와 지도감독을 받아가며 결정하므로 ‘독점 횡포’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주) HCN 충북방송

대표이사 김 동 운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빛일보 2006. 4. 25. 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4월 10일자 소재목 고덕활자 집단 대응 계획...)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빛일보 : 『HCN충북방송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금융감독원의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조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중소기업청 (청장 이 현 재)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경제 : 『정책자금 부정사용 근절해야』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4일자 35면)

내 용 :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을 편법으로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한 중 소형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뒤늦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책자금=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편법대출을 통한 부동산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개인사업자와 중소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빌려 부동산에 투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편법대출사례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8·31대책' 이후 투기지역내 부동산은 담보인정비율이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시설투자자금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 그 비율이 60%까지 인정된다. 일부 전문직·중소형 업체들은 이 같은 정책자금의 맹점을 이용해 추가로 돈을 빌린 뒤 운영자금이나 시설투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땅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썼다. 결국 기업을 유지운영하기보다는 업주 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정책자금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24일자 35면 『정책자금 부정사용 근절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을 편법으로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한 중소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8.31 대책으로 투기지역내 개인 주택담보부 대출 시 담보인정 비율이 60%에서 40%로 감소하자 일부 중 소형 업체들이 시설투자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여 60%의 담보인정비율로 대출받고 이를 땅이나 아파트 구입에 썼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사는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으로,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감독당국의 지도사항인 투기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 40%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은 대출담당자가 시설물의 설치 공사 진척상황을 확인한 뒤 자금 신청자가 아닌 시설공급자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기업이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월 24일자 35면 『정책자금 부정사용 근절해야』 제하의 사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과는 별개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소관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은 대출담당자가 시설물의 설치 공사 진척상황을 확인한 뒤 자금 신청자가 아닌 시설공급자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돼 있어 기업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5월 31일까지(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 '사람과 사람'면(광장) 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한다.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논설실장, 사설작성자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3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공천대가로 의심되는 거액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4월 15일 21:00)

내 용 : ▷앵커 : 한나라당 공천비리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남에서도 공천 장사가 이루어진 혐의가 포착돼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방의원 공천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인천시 중동 옹진 당원협의회장인 서○○ 전 의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을 통해 서○○ 전 의원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미화와 우리돈 등 5,000여 만원의 현금을 찾아내고 이 돈이 공천대가로 받은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서 전 의원은 어제 구의원 출마 희망자로부터 2,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천탈락자 : 서의원이 가방 받아들고 나는 돈

을 꺼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줬다.

▷기자 : 이에 대해 서 전 의원은 공천과 무관하게 빌린 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서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또 다른 출마 희망자로부터도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15일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전국곳곳 공천비리”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서○○ 전 의원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5,000여만 원 대의 미화와 우리 돈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서 전 의원은 공천과 무관하게 빌린 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서 전 의원의 차량에서 발견된 돈은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밝혀졌고 빌린 돈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학교의 재정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자유학교○○ (교장 옥 ○ ○)
피신청인 : 민들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9.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민들레 :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호 109~117면)

내 용 : (전략) 학교는 자급자족인 지역생태공동체를 지향하며, 동시에 돈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겠다며 무상교육을 천명하기도 했지요. 학부모에게는 한 달에 16시간의 노동과 학교 회의 참여, 자발적인 경제적 후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산골 폐교를 임대해서 꾸려나가는 학교 살림의 공색함을 알기에 대부분 매달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씩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지원을 했지요. 정말이지 교장선생님 말대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하는 심정이었다고나 할까요. (중략)

학부모들의 후원금(월 약 160만 원)과 일반후원금(월 약 150만 원), 부모들과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동(벼농사, 포도농사, 계절학교 일 등) 그리고 물품후원에 기반하고 있는 ○○의 무상교육 토대는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교 수입 중 가장 큰 몫은 계절학교 수입이지만, 이는 ○○생태공동체 기금이란 명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학교 자체 재정은 매월 300만 원 안팎의 후원금에 의지하고 있지요. 설상가상으로 1차로 떠난 가정들로 인해 확연하게 줄어든 부모후원금에 최근 기숙사의 건축비가 예상외로 더 소요되면서 학교가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고, 따라서 자연히 다시 부모의 후원금 이야기가 불거졌지요.

“무상교육이라 하여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과 안이함으로 ○○가 고려 대상의 맨 아래칸에 있지 않았다. 남들도 하는데 하물며 부모가...” 하면서 학교는 학부모가 빚을 갚아주길 바랬지요. 여지껏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원을 했지만, 그 이상을 또 하라니... 학교의 재정이 불투명하고 학교 재산이 오직 교장 앞으로 되어 있는 터에 가정에 부담이 갈 만한 돈을 후원금으로 내기에는 꺼림칙하기도 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상교육을 포기하고 학비를 내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략)

해마다 하겠다고 한 아이들의 발달에 관한 평가서도 없었고 토론 자리도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아

이들의 성장과정을 모른 채, 학교를 믿을 수 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2년이 지나 드러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타인에 대한 경의와 스스로를 낮추는 학교 이념과는 상반되게 동무들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다투고 시비를 가리는 아이로 바뀌어 있었고 부모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략)

○○를 나온 아이들은 대부분 일반학교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를 둔 한 가정은 강원도교육청이 공립학교로는 받아주지 않아 사립학교(○○초등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비도 ○○보다 덜 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대안학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에서의 짧은 경험으로 대안적인 교육 전체를 평가할 순 없겠지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호 109~117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으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충북 ○○에 있는 자유학교 ○○의 한 학부모 대표자가 기고한 글을 통해 해당 학교의 재산이 오직 교장 앞으로 되어 있어 학부모들은 필요에 따라 대출을 받아가면서 월 16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냈으며 학교 수입 중 가장 큰 몫은 계절학교 수입임을 보도하면서, ○○를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 일반 학교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고 교육비도 그 곳이 더 저렴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인 결과, 학교재산은 교육 행정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뿐 어느 특정인이 소유하지 않으며, 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계절학교 수입은 ○○생태공동체 수입이며, ○○생태공동체는 학교를 위해 먹을거리 생산, 기숙사 건축 등 학교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아홉 가정 학부모들의 후원금 합이 월평균 110만 원을 조금 넘고 자유학교 ○○는 기숙 및 공동체형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와 비교가 성립되지 않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자유학교 OO'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제43호 (2006년 1-2월호)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제하의 기고문과 관련하여 학교 재산 중 후원금은 교장이 아닌 자유학교 OO의 교무행정책임자 신OO 교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계열학교 수입은 OO생태공동체 수입으로 학교 재정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고 있고 기숙 및 공동체형 학교인 OO의 교육비를 일반학교의 교육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민들레> 45호 (2006년 5-6월호) 110면에 실린 기사의 종결부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제목은 고딕체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제목을 목차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민들레 : 『'자유학교 OO'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6월호 12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협회가 관련 업체들에게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비가입자를 고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이륜자동차환경협회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대한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9.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고발을 하고 있다.

이에 겁을 먹은 업체들이 A협회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할 경우 회원 가입비 30만 원과 월 회비 1만 원, 수거비 3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A협회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협회를 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해 많은 영세 이륜차 판매 및 정비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을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보도내용

대한일보 : 『이륜차 폐기물 처리업체, 회원모집 '말썽'』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8일자 6면)

내 용 :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환경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은 후 이륜차 판매업소와 정비업소 등을 찾아 다니며 무리하게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말썽이 일고 있다. (중략)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A협회는 타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이륜차 판매·정비업체들을 돌아다니며 회원으로 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28일자 6면 『이륜차 폐기물 처리업체, 회원모집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A협회가 광주, 전남지역 이륜자동차 판매업소, 정비업소 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발을 하고 있어 업소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륜자동차폐기물업체는 회원가입비를 받은 적이 없고 비회원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고발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8일자 6면 『이륜자동차 폐기물 처리업체, 회원 모집 '말썽'』 제목의 기사에서 이륜자동차 판매업소, 정비업소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발을 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폐기물 처리업체인 이륜자동차환경협회는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가입비등을 받은 적도 없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업

소에 대해 고발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한일보 2006년 5월 1일자 6면에 박스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 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판매업소 정비업소...) 활자크기로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한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대학이 학교 땅 소유권 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대표 한 ○ ○)

피신청인 : 진주KBS-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진주KBS-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6월 26일 21:00)

내 용 : >앵커 : 지난 2003년 출범한 함양 ○ ○대학이 땅 소유권 문제로 내분에 싸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마을의 소유권 분쟁과 성폭력 사건 등으로 올해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지난 2003년 생태 공동체를 목표로 함양에 자리를 잡은 ○○대학. 한 달에 천5백만 원이 넘는 후원금까지 받아온 이 학교는 그러나 지난해 2월 수억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땅이 경매에 넘어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등이

모금한 돈으로 겨우 학교를 되살리지만 학교 땅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면서 소유권 논란이 터졌습니다. (중략)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성폭력 문제로 학생 3명이 제적당하는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실험대학으로 주위의 부러운 시선을 받고 출범한 ○○대학이 몇 년 만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함양 ○○대학교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6월 29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대학) 설립취지 퇴색]의 제목으로 ○○대학이 땅 소유권 문제 등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확인 결과 소유권이 문제가 되어 학교가 내분을 겪은 적이 없으며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힘으로 설립한 ○○대학교는 설립 취지인 '지속 가능한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육을 꾸준히 지켜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보도내용 : 소유권 문제 관련 신청인측 반론을 포함하여 사실에 근거한 ○○대학의 참의미에 대한 신청인측 주장을 적극 반영한다.
- 보도시기 : 방송일자는 7월이전으로 하되, 신청인측이 원하는 일자를 적극 반영한다.
- 보도조건 : KBS-1TV 뉴스네트워크 시간에 전국권 방송하고, 전주KBS 9시 뉴스와 창원KBS 9시 뉴스 혹은 아침광장에 로컬 방송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6월
26일 21:00)

내 용 :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대학인 ○○대학이 일반대학과는 달리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대신 학술발표회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독특한 학력평가를 택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1명이 물 소비량 등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1학기 동안 조사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서는 1학기마다 자신이 공부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수와 동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중략)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대학은 지난 2003년 개교 후 학교부지 경매문제로 불거진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은 또, 다른 대학과의 학술교류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업을 펼쳐 생태 대학으로써 알찬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

신청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공천대가로 의심되는 거액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9.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인일보 : (1) 『서○○ 위원장 차안에 '뭉치돈'』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5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40의 보도내용 참조>

(2) 『'5·31 예고편' 이보다 더 나쁠수는 없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7일자 5면)

<보도내용(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4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14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인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번지
대표이사 송 광 석
조정대리인 안 ○ ○

2006. 5. 2.

〈별 지〉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인일보 1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경인일보 4월 15일자 1면 - 검찰 압수 수색...수천만원대 미화·엔화 발견)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6년 4월 15일자 1면 및 4월 17일자 3면의 서○○ 위원장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결과 서○○ 씨의 집, 사무실, 차량등에서 발견된 돈은 미화 약 5,000달러를 포함하여 우리 돈 1,000만 원이 안되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신청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공천대가로 의심되는 거액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19.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취 하 (손배)

(2) 『서○○ 前 의원 자가용서 ‘외화다발’』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5일자 15면)
〈2006경기조정29의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경기조정2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인천일보 : (1) 『인천만평』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5일자 3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경기조정29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결정문

〈2006경기조정29의 결정문 참조〉 □

대전서부경찰서가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강간치상범을 단순상해범으로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전서부경찰서 (서장 황 운 하)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뉴시스 : (1) 『‘강간범이 폭행범으로 둔갑’ 진정』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4일자)

내 용 : 경찰의 수사력 부재로 성폭행범이 단순 상
해범으로 둔갑,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경찰을 상
대로 진정서가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거센 항의와 진정
이 제기되자 재조사에 착수, 경찰력의 한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의 이중고 양산이란 비난을 받게 됐
다. (중략)

실제로 경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해 녹화진술이
나 여경을 동원한 수사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구대 조사만을 토대로 용의자를 풀
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피해자 가족이 수사결과에 반발, 민원
을 제기하자 재조사에 착수해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를 불렀지만 응
하지 않았고 용의자가 성폭행 시도 등에 대해 전
면 부인해 상해죄로 판단했다”며 “재조사에 들어
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
해서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2) 『경찰 수사 한계 많다-“목격자 진술 무시”』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6일자)

대전 서부경찰서의 20대 여성 폭행 피해사건 처

리를 두고 피해자에 이어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
다.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을 무시, 수사과정에서 이들을 제외시켰고 성폭행
범죄에 대해 취해야 할 기본 절차도 생략했다며
경찰 수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14일자 『‘강간범이 폭행범으로
둔갑’ 진정』, 4월 16일자 『경찰수사 한계 많다-“목
격자 진술무시”』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의 수사력
부재로 성폭행범이 단순 상해범으로 둔갑,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경찰을 상대로 진정서가 접수되
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러나 확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
당수사팀의 확인도 없이 피해자 가족 등 사건관계
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바탕으로 보도한 것으로 밝
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대전)〈속보〉20대 여성폭행 용의자, 강
간치상 입건-경찰, 공소유지 만전

• 내 용 : 〈속보〉지난달 11일 대전 서구 내동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폭행사건의 용의자가 강간치상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용의자 A씨에 대해 강간
치상 혐의로 사전영장을 신청했으나 “강간이 미수
에 그쳤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수사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당초 용의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강간치상 혐의점을 찾지 못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검거자와 피해자 소환조사 등 보강수사를 통해 강간치상 혐의점을 밝혀내 구속 영장을 신청했었다.

A씨는 지난달 11일 밤 11시 30분께 대전 서구 내동 모 교회주차장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순간 조수석에 밀어 넣고 폭행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당초 용의자의 범행 부인 등으로 상해 혐의를 적용, 입건했던 것이고 강간범을 폭행 범으로 둔갑시키거나 목격자 진술을 무시한 적은 없으며, 이후 관련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강간치상 혐의를 규명해 의법처리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5월 8일 0시부터 24시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뉴스> 사회면의 주요기사란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 : 『(대전)〈속보〉 20대 여성 폭행 용의자, 강간치상 입건-경찰, 공소유지 만전』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7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태안군 임산물생산단지 조성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서해안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서해안신문 : (1) 『태안군 집행과정 문제 드러나 사업 좌초 위기』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2일자 3면)

내 용 : 태안군이 2006년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지조성추진이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다는 여론이 일면서 일부 관계자들에게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05년에 추진된 이 사업은 총13억1천5백만원(국비 40% 도,군비 20%)을 투입해 태안군이 오가피와 야생화단지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과정에 관계자

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충남도청 산림과로부터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중략)

실제로 현재 오가피가 삭제된 사업장은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대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조모 씨의 임야를 비롯해 3명의 이름으로 이미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곳의 사업장은 서산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윤모 씨가 투자자들을 확보해 소원면 소근지산성터에 오가피체험농장을 추진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형적 부적합성 판결이 나와 사업이 어렵게 되어 지난해 묘목을 구입해 놓고도 아직까지 식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해온 오가피 묘목은 한주당 7백원대 인데 묘목상(공주 s농원)들이 사업대상자들과 결탁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가격을 속여 실제묘목구입을 한 것으로 둔갑해 한주당 시세차익을 엄청나게 남겨 정부지원금을 타내려는 의도가 드러나 주위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태안군은 묘목구입가격대가 얼

마인지, 사업대상자가 실제 농민인지, 오가피의 품질이 어떤 것인지, 식재가 된 후 얼마만큼 농업소득증대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연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 농민은 “현장방문도 없이 사업계획서만을 보고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의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략)

(2) 『책임지는 군정을 보여라』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2일자 4면)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12일자 3면 『태안군 집행과정

문제 드러나 사업좌초 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태안군이 오가피와 야생화단지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잘못된 행정으로 부동산 업자들에게 넘어가 버린 억울한 일이 벌어졌으며, 오가피 묘목은 한 주당 700원인데 묘목상(공주 s농원)들이 사업대상자들과 결탁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가격을 속여 실제 묘목구입을 한 것으로 둔갑해 한 주당 시세차익을 엄청나게 남겨 정부지원금을 타내려는 의도가 드러나 주위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업 대상자 모두 농민으로 밝혀졌고, 묘목대 시세차익의 정부지원금 불법유용에 관하여는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사업 준공 후 철저한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자금집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산림과에서 질타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내실 있는 사업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시달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병원이 단체건강검진을 소개한 불법알선업체에 대가를 지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병원 (원장 최 ○ ○)

피신청인 : 광주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광주일보 : 『유명 병원들, 단체검진 ‘뒷거래’』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7일자 7면)

내 용 : 대학병원 등 광주·전남의 유명 의료기관이 불법 알선업체와 짜고 단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주·전남 14개 병원이 건강

검진 불법 알선업체인 A·E사 등 2곳과 계약을 맺고 건강검진비의 10~20%를 수수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 ▲○○병원 ▲○○병원 ▲○○병원 등 광주 병원 4곳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조선대병원 등 나머지 1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알선업체로부터 관공서 및 기업체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소개받을 수 백만~수 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그 대가로 건강검진 수가(1인당 평균 25만원)의 10~2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건네주었다는 것이 다. (중략)

○○병원은 960명의 단체 건강검진을 실시, 1억 5천700만 원을 벌였으며 이중 1천700만 원을 업체에 전달했다. 이외 광주○○병원·○○병원도 각각 191명, 289명을 소개받아 4천여만 원의 영업이익을

봤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7일자 7면에 『유명 병원들, 단체검진 ‘뒷거래’』 제하의 기사에서 ○○병원이 불법알선업체로부터 건강검진을 위탁받아 그 대가로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대가로 제공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아 병원 관계자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병원은 일부 건강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검진을 위탁받아 단체검진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광주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4일자 8면)

내 용 : 본보는 지난 4월 17일자 7면에 『유명 병원들, 단체검진 ‘뒷거래’』라는 제목으로 ○○병원이 불법알선업체로부터 건강검진을 위탁받아 그 대가로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대가로 제공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아 병원 관계자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병원은 단체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관련업체로부터 대가를 제공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들이 외국자본인 소버린에게 돈을 받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3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대표 김 ○ ○) 외 4인

피신청인 : KBS-1TV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6. 4. 2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KBS스페셜」 프로그램 (2006년 3월 26일 20:00)

내 용 : (전략) ▷나레이터 : 이 단체는 소버린에도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제는 소버린이 SK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SK경영진을 비판하는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똑같은 사람들이 한 쪽에서는 영리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버린을 컨설팅해주고, 또 한 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측인 SK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다. 공적활동과 사적 이익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이다.

▷정○○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의 인터뷰 : “신청인 연구소가 정보를 유료로 서비스했고, 그 과정에서 소버린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 줬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언론과 대중 앞에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취득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팔고, 이런 것은 앞뒤가 다른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활동이라고가

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3월 26일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제목으로, 장○○, 김○○, 김○○, 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외국자본인 소버린에게 돈을 받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했고,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취득한 기업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장○○, 김○○, 김○○, 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소버린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았고, 시민운동의 명분

으로 SK 경영진을 공격한 사실이 없으며,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취득한 기업 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참여연대의 구성원인 신청인들이 외국자본을 위해 영리활동을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자정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며, 보도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해양수산부가 항만 물동량 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장관 김 성 진)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물동량이 2008년경의 300만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예측치는 이보다 한참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민자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망 등 기반 시설 예산을 신속히 배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동아일보 : 『항만 물동량 예측부터 ‘들쭉날쭉’』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3일자 16면)

내 용 : (전략) 해양수산부는 2011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인천항 227만8000TEU, 부산항 1510만4000TEU, 광양항 691만3000TEU로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항만 개발 및 운영비를 배정하는 ‘항만개발계획’이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물동량 산출 근거에는 송도 신항에서 처리될 물동량이 제외됐고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북한 물동량을 축소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고○○ 감사는 “인천항의 컨테이너

본 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 16면에 『항만물동량 예측부터 ‘들쭉날쭉’』라는 제목으로 “2011년의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277만8000TEU로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항만 개발 및 운영비를 배정하는 항만 개발계획이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또 물동량 산출 근거에는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북한물동량을 축소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해양수산부는 200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예측한 항만물동량에 대해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시장의 환경변화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고자 세계적인 항만수요 예측 전문기관인 영국의 OSC와 한국중합물류연구원(GLORI)에서 재점

검하여 2005. 11. 14 물동량 예측 결과를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항의 경우 2004년 KMI에서 2011년 기준으로 예측한 227만TEU보다 79만TEU 증가한 306만TEU로 재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항만간의 기능 및 항만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8개 무역항에 대한 중·장기 항만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 및 경제 교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은 동 공단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인천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라고 밝혀와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조세개혁 특위 위원장의 사의표명 이유가 관계자들과의 토론이 안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5

청 구 명 : 정정보구

신 청 인 : 1. 광 태 원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윤 성 식)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1.

처리결과 : 합 의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만 개발하는 작업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

그는 “그동안 조세특위위원장으로 한 일이 거의 없다”며 “(청와대 등과) 말이 안 통해 답답한 적이 많았다”고도 했다.

광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급진적으로 개편하는데 들어나는 세금을 주로 분배에 쓰려 한다는 점에 염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후략)

보도내용

동아일보 : 『곽태원 조세개혁특위 위원장 사의』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9일자 1면)

내 용 :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을 책임진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곽태원(郭泰元·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 위원장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략)

광 위원장은 분권위에 “세제개편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과의 토론이 거의 안되는 분위기여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 둔 상태에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19일자 1면 『곽태원 조세개혁특위 위원장 사의』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을 책임진 광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방향을 정해 둔 상태에서 회의를 했으며,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만 개발하는 위 작업에는 동참하기 어려웠고, 청와대 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과의 토론이 거의 안되는 분위기여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의를 표명했다”, “그 동안 조세특위위원장으로 한 일이 거의 없으며 (청와대 등과) 말이 안 통해 답답한 적이 많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곽태원 위원장은 조세개혁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한 일이 없으며, 위원회에서

의 토론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토론 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어떤 제약이나 간섭도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껏 해당 위원회에는 대국민 설득 논리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거나 관련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청와대 등과 말이 안통해서 답답한 적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보 4월 19일자 1면 『곽태원 조세개

혁특위 위원장 사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곽태원 위원장은 조세 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 내부 관계자를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사의는 대학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아일보 2006년 5월 8일자 2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대학교가 회계부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서울〇〇〇대학교 (총장 조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노컷뉴스 : 『서울〇〇〇대 재단이사장, 개인 소송에
교비 불법 전용』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6일자)

내 용 : 인터넷만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국내 최대의 사이버 대학인 서울〇〇〇 대학 재단이사장이 개인의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불법적으로 끌어다 쓰는 등 회계부정을 일삼은 것으로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CBS가 입수한 서울〇〇〇 대학의 영수증을 보면 이 대학은 지난해 12월 9일 모두 3건의 소송비용으로 3300만원을 지출했다. 1건의 형사 고소사건과 2건의 민사 소송에 각각 1100만원씩을 특정 범무법인에게 지급한 것.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에 제기된 소송이기 때문에 교비를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오〇〇 대외운영처장은 “소송 대부분이 학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송비용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 기록을 보면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형사사건은 엄모 재단이사장 개인이 모 대학 교수협의회에 의해 고소된 것이고 나머지 민사사건 2건도 소송 대상이 학교가 아닌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엄 이사장 개인과 재단이 부담했어야 옳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다. 이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하도록 한 현행법 위반이다. (중략)

구속된 전 황〇〇 부총장이 모 콘텐츠 제작업체와 허위 계약해 생긴 76억원의 채무가 엉뚱하게도 올해 학교 예산에 부채로 편성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학생들은 재단측이 교비를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므로 부채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수협의회소속 교수들도 이에 앞선 지난 2월 24일 총장불신임을 선언했다. 이들은 전임교원 23명의 재계약이 거부된 점과 교

비가 재단의 채무변제로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반발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서울〇〇〇 대 재단이사장, 개인 소송에 교비 불법 전용』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서울〇〇〇대 이사장이 개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교비로 이를 지급하는 등 회계 부정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콘텐츠 제작업체와 허위 계약한 76억원이 부채로 기장되고, 전임 교원 23명의 재계약이 거부되는 등 학내 사태의 심각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서울〇〇〇대는 법 인격이 없는 평생교육시설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재단 이사장이 피고소인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학교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내용의 소송 비용은 교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의 콘텐츠 제작비 76억의 경우 허위 여부를 떠나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 이를 임의로 예산에서 삭제하면 현행 회계준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〇〇〇대는 청구금액 자체를 부인하는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 청구된 금액을 제외한 후 순수한 콘텐츠 제작비만 산정하고, 이 금액에 대해 감독 소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재단이 책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임 교원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울〇〇〇대는 신규 규정 제정시까지 교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총장 결재를 통해 신분보장을 확실히 하였고 새로운 규정 통과시 계약의 소급 적용 원칙을 확실히 한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서울〇〇〇 대학교 반론보도
- 내 용 : 노컷뉴스는 지난 4월 6일자 서울〇〇〇대 관련 기사에서 서울〇〇〇대가 학교 수업과 관련된 콘텐츠제작비 76억 원을 학교 부채로 허위 기재했고, 전임 교원 23명의 재계약이 거부됐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〇〇〇대는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아니며, 아직 교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교원의 신분보장을 확실히 하였고, 새로운 규정 통과 시 소급적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6. 4. 27. 노컷뉴스 메인화면 하단에 “반론·정정보도 신청난”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서울〇〇〇 대학교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7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울시 신청사 재건축과 관련한 신청인의 인터뷰 중 하지도 않은 말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스포츠서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스포츠서울 : 『새 청사, 시민쉼터-관광명소로』 제하
의 기사 (2006년 3월 20일자 13면)

내 용 : 서울시청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
어난다.

일제시대 지어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본관 앞
쪽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나머지 증축건물(5층)은
철거한 뒤 그 자리에 22층 정도의 인텔리전트 빌
딩을 짓게 된다.

서울시청 이○○ 홍보담당관은 “현재 본관 증
축건물의 경우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안전도가
우려되는 데다 공무원 1인당 공간도 턱없이 부
족해(1인당 1.5평) 고층빌딩이 대안”이라며 “다
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
했지만 이 경우 2조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0일자 13면 『새청
사, 시민쉼터-관광명소로』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시청 이○○ 홍보담당관은 “현재 본관 증축건물
의 경우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안전도가 우려되
는 데다 공무원 1인당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1
인당 1.5평) 고층빌딩이 대안”이라며 “다른 지역
에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2조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시청 홍보담당관실
이○○은 위와 같이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는것
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서울시 새청사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20일자 『새청사, 시민쉼
터-관광명소로』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청 이○○
홍보담당관이 새 청사 재건축에 관하여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본지
기자가 이○○ 씨와 새청사에 관해서 한차례 통화
를 했을 때, 이○○ 씨는 청사가 낡아서 재건축을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자
료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임이 밝혀져 바
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5월 3일 또는 4일자 종합면에 위 보
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16포인트 태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서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2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일부 학교에서 두발을 문제삼아 내신에 불이익을 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진 표)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인권 공개는 ‘바리깡’ 폭력』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1일자 8면)

내 용 : 서울 O고교생 김모 군(18)은 최근 등굣길 두발단속에 걸려 머리카락이 잘렸다. 학교 교칙에 정해진 두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 김군은 뒤통수쪽에 소위 ‘고속도로’가 난 것 외에 별점까지 먹었다. 이 학교는 두발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깎는 식으로 내신성과 연계하고 있다. 김군은 “두발상태는 공부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을 하고 심지어 내신성적에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1일자 8면 『인권 공개는 ‘바리깡’ 폭력』 제하의 기사에서, 모 학교에서 두발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깎는 식으로 내신 성적과 연계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2006년 대한민국 아직도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수행평가는 교과학습 평가의 하나로 학습자들과 학습과정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며, 학생 생활지도 내용은 교과평가의 항목으로 반영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홈페이지([http://](http://nocut.idoo.net/photo/v63637)

nocut.idoo.net/photo/v63637)에 2005년 6월 19일 올라온 사진이 인용된 것으로 현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두발지도 관련 교육부 입장
- 내 용 : 본지 4월 11일자 『인권 공개는 ‘바리깡’ 폭력』 제하의 기사에서, 모 학교에서 두발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수행평가성적을 깎는 방식으로 내신성과 연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두발규정 위반 등 학생생활지도 사항을 교과학습평가인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없으며, 두발을 문제삼아 내신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5월 3일 또는 4일자 8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우측 사진의 ‘2006년 대한민국’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두발지도 관련 교육부 입장』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4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부당함 때문에 입주민들이 고발에 이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OOOO주택관리
(대표이사 한 ○ ○)

피신청인 : 전북중앙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북중앙신문 :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처벌을』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1일자 19면)

내 용 :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의

부당함에 대해 관리업체를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입주민들은 행정처분을 집행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지 5개월 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에 대해 처분을 무마시키려는 전주시의 무책임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전주시 평화동 ○○○○아파트 노인회에 따르면 아파트 내 시설설치공사와 관련 관리비를 횡령한 사건과 더불어 당시 아파트 관리위탁을 맡던 H회사도 법적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동대표 선출시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H사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무자격 동대표를 선출한 사건과 달에 6천300만 원씩 입금되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도 입주민 대표가 아닌 H사 명의로 해놓는 등 불법을 자행한 업체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략)

송○○(66) D아파트 노인회장은 “위탁업체를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업체의 계속된 부정행태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 가겠다”며 “수차례 시 담당자를 찾아가 공정하게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워선 압력 때문이라고 일축, 아직도 사건은 정체돼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1일자 19면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처벌을』 제하의 기사에서 “전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위탁업체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며, D아파트 노인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 불법사실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업체의 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관계자는 워선 압력 때문이라며 일축, 전주시가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아파트 내 시설설치 공사와 관련된 전 관리소장의 횡령사건은 회사가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하였고, 건설교통부로부터 경미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신을 받

았으며, 입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한 것으로 업체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 명의로 관리비 통장을 개설한 것은 H사의 정당한 업무이며, 노인회장의 공정한 법적 처리 요청이 워선 압력 때문에 정체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없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임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2006년 4월 21일 사회면에 『아파트 관리위탁업체 처벌을』 제하의 기사에서 “전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사건과 관련 아파트 관리위탁 업체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며, 이러한 불법사실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업체의 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워선 압력 때문이라며 전주시가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전주시 평화동 ○○○○아파트 노인회의 주장을 인용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인 H사는 “전 관리소장의 횡령사건은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장이 전주시에 제출한 행정처벌 요청을 취하하였고,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경미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관에도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중앙신문 2006년 5월 4일자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처벌을)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중앙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4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측근이 불법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안 상 수
피신청인 : 인천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뉴스 : 『안 시장 측근에 ‘현대계열사 불법로비자금’ 3억 유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6일자)

내 용 : 현대계열사 인천의 부평삼산동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인천시장의 측근에게 ○○의 불법로비자금 중 3억 원 이상이 흘러들어갔다는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인천시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로비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평 삼산지구 ○○타운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 인천시 최고위직의 측근이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안상수 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 사건의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금품 로비 의혹

이 제기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성진)도 보도자료를 내어 “○○삼산지구 ○○타운 부지용도변경과 관련 인천시 최고위직의 측근이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며 “금품로비의혹이 인천시 고위관계자,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안상수 시장을 비롯, 인천시는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인천뉴스는 지난 4월 6일자 메인면에 『안 시장 측근에 ‘현대계열사 불법로비자금’ 3억 유입 의혹』으로 인천시장의 측근에게 ○○의 불법로비자금 중 3억 원 이상이 흘러들어 갔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안상수 시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으로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인천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일자)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현대건설 계열사가 인천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인천광역시 (시장 안 상 수)
피신청인 : 현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현대일보 : 『인천시 공무원에도 3억 쫓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7일자 15면)

내 용 : 현대차 비자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계열사인 ○○가 인천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했다.

CBS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을 통해 3억 원 이상의 돈이 인천시 고위관계자 등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현대차 계열 건설회사인 ○○와 역시 같은 계열사인 ○○○○가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7백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천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3억 원 이상의 돈이 인천시 고위관계자 측근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용도변경 등 인허가를 위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돈의 전달 경로와 최종행방을 캐고 있다. (중략)

검찰은 현대차 계열사인 ○○와 ○○○○가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A씨를 통해 인천시 고위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현대일보는 지난 4월 7일자 15면 『인천시 공무원에도 3억 쫓다』 제하의 기사에서 현대 비자금 관련 건설계열사 '○○가 인천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 관계자들에게 3억원 이상의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음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인천시 공무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밝혀져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현대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8일자 15면)

내 용 : 현대 비자금 건설계열사 엠코 관련 인천시 공무원에 3억원 쫓다라는 기사가 지난 7일자 현대일보에 보도되기전 인천시는 공보담당관실은 중수부 기획담당관실에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사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후 기자실을 통해 해명 자료를 내보낸 것으로 밝혀져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립니다. □

신청인이 학급 반장에게 저소득층 학생명단을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광주MBC-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광주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3월 27일 21:00)

내 용 : ▷앵커 : 새학기를 맞아 학교마다 하고 있는 학생실태조사가 학생들간에 폭행사태로 번져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생 실태조사가 그 문제였습니다. 민○○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 주말 광주지역의 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 7명이 학급 반장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학생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이 알려졌는데 반장이 저소득층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친구들이 방과 후에 반장을 불러내 구타했습니다.

▷가해학생 : 돈 없는 그런 쪽으로만... 나쁜 쪽으로 욕을해서 그때 기분이 좀 상했어요.

▷기자 : 학생 실태조사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자료로 해마다 새 학기에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뤄진다는데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담임교사가 저소득층 학생명단을 반장에게 작성해오라고 시켰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담임교사 : 학생들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힘들죠.

▷기자 : 교육부는 이미 작년에 부모의 소득경도나 학력, 주거환경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은 학생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는 이런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참교육학부모회) :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즉석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면 어떤 아이들이 자기 생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기자 : 올바른 지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학생 실태조사. 지금처럼 공개리에 이루어져서는 부작용만 커갈 뿐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스크」 프로그램에서 “인권침해우려” 제목으로 모실업고에서 담임교사가 저소득층 학생명단을 반장에게 작성해 오라고 시켰다가 문제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담임교사가 저소득층 학생명단을 반장에게 작성해 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인권침해우려” 제목으로 모실업고에서 담임교사가 저소득층 학생 명단을 반장에게 작성해 오라고 시켰다가 문제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담임교사가 저소득층 학생명단을 반장에게 작성해 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광주MBC-TV 2006년 4월 29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의 광주MBC뉴스 시간에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4월 29일 2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뇌졸중 관련 기사에 신청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4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뉴스메이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뉴스메이커 : 『기온 떨어진 아침 뇌졸중 위험』 제하의 보도사진 (2005년 12월 6일자)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잡지는 지난 2005년 12월 6일자 헬스케어면에 『기온 떨어진 아침 뇌졸중 위험』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잡지는 지난 2005년 12월 6일자 헬스케어면에 『기온 떨어진 아침 뇌졸중 위험』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기사와 건강지 '월간 M'에 보도된 사진을 허락 받지 않고 게재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5월 22일까지 위 보도문을 뉴스메이커 80-95면 사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고딕으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 5. 22.까지 금100만원을 지급하며, 이행이 지체될 경우 1일 금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신청인과 대리인 임○○은 이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경향신문), 박○○ 기자 및 뉴스메이커 편집장 등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뉴스메이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6일자 88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인천시 로비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 대표를 소개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안 상 수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노컷뉴스 : (1) 『현대차 비자금 용처, 인천서 먼저 확인...대검 영향받나?』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6일자)

내 용 : (전략) 현대기아차 본사와 글로벌스, 현대오트넷 등 3개사 말고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던 검찰의 당초 입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그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3개 회사 외에 ○○ 등 나머지 회사는 대검 중수부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검찰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설계열인 ○○와 자동차 부품계열인 ○○○○의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져 이들 회사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처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회사의 건설로비에 대검 중수부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금융브로커 김○○ 씨와는 전혀

별개인 전직 국회의원인 A모씨가 개입한 정황도 상당부분 드러나 A씨를 고리로 한 제2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 ○○○○ 로비와 관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미 인천시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H모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3억 원 이상의 돈이 흘러들 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아파트 시공사인 ○○나 같은 계열사인 건설 시행사 ○○○○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아직까지 김○○씨와 A씨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 지는 드러난 게 없다.

두 명 모두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운영했었고 현대차 계열회사들의 로비와 관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로비행적이 주로 인천에서 포착돼 현대차 그룹경영을 자문하는 역할도 해온 김씨에 비해서는 현대차 계열사와 관련한 로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남 보성출신으로 안상수 시장의 2억 굴비상자 뇌물 사건 때 ○○건설 대표 이모 씨를 안 시장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역시 호남 출신인 김○○ 씨와도 지역연고와 현대차 계열사를 매개로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후략)

(2) 『○○, ‘또다른 브로커’ A씨는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6일자)

○○건설 인천시 로비 의혹 배후에 있는 A씨는 ‘2억 원 굴비상자 전달 사건’으로 구속됐던 ○○건설 이모 대표를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소개시켜줬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내사가 시작됐던 지난해 11월 갑자기 자신이 대표로 있던 구조조정회사를 정리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A씨는 15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돼 산자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친형도 광주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지내는 등 정치권과 깊은 연줄을 맺어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노컷뉴스는 지난 4월 6일자에 『현대차 비자금 용처, 인천서 먼저 확인...대검 영향받나?』, 『○○, ‘또다른 브로커’ A씨는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건설 인천시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그 배후에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A모씨가 개입되어 있으며, 전남 보성 출신인 A모씨는 ‘2억원 굴비상자’를 안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건설 이모 대표를 안 시장에게 소개시켜줬던 인물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는 안 시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며, 기사에서 거론된 ‘2억 원 굴비상자’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농림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영농교육’이 품목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농민신문
종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농민신문 : 『맞춤형 영농교육 ‘빠끗’ 품목별 특성 반영돼야』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0일자 1~2면)

내 용 : 농림부는 최근 일선 품목단체에 보낸 교육운영지침을 통해 품종 선택에서부터 해외연수까지를 포괄하는 일괄교육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품목별 단체가 자체 제시한 교육 내용보다는 농림부가 지침에서 제시한 성공사례, 후계농육성, 기술보급현장 지도 과정 등을 품목에 관계없이 필수교육내용으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해외연수, 해외 컨설턴트 초빙 전문기술교육을 품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교육 내용에 포함해 놓고, 해당 농가가 연수 및 컨설팅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해 불만을 사고 있다.

농림부의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농진청은 기존 교육과 유사한 보통교육을 전담하고, 농림부가 중농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를 상대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문 연구·지도기관과 정책수립기관의 역할이 뒤바뀌어 교육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육 내용도 중복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림부 자체 자료에서도 운영과정에서 양기관의 ‘품목별 전문교육’(농림부)과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농진청) 등은 중복된 내용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농림부는 정책 총괄 및 기획기능을 수행하고, 농진청이 교육사업 세부계획수립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맞춤형 영농교육을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농림부는 자조금사업을 실시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교육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자조금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들은 정부가 자조금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품목별 자율 교육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0일자 1~2면 『맞춤형 영농교육 ‘빠끗’ 품목별 특성 반영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농림부가 추진하는 품목별 전문교육사업에 대해 ‘품목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 ‘교육기관간 역할분담 제대로 안돼’,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품목별 자율교육을 해치고 있다는 ‘자조금 전용문제’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06년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전문교육은 각 품목단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농업교육 및 품목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사례 교육, 후계농 육성, 기술보급현장지도 과정 등 교육내용과 방식을 보다 내실화하여 확정한 것으로 해외연수나 해외컨설턴트 초빙교육도 선진기술 습득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여 품목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간 역할분담체계 또한 ‘06년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수차례 협의되어, 교육기관 간 중복교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부, 농진청, 농협 등 농업교육관련 기관의 협의체인 농업교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품목별 전문교육을 자조금 조성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본래 자조금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인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조금단체의 교육역량이 아직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자조금사업국고 지원비율보다 높은 60%의 국고보조율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농업교육 전문가 및 품목전문가의 교육심의를 통해 교육계획을 충실히 보완하여 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농민신문 : 『품목별 전문교육 내실있게 추진』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내 용 : ‘2006년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전문교육은 각 품목단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농업교육 및 품목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성공사례 교육, 후계농 육성, 기술보급 현장지도과정 등 교육내용과 방식을 보다 내실화하고 있다. 또 선진 기술 습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외연수나 해외 컨설턴트 초빙교육도 농림부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 품목별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해 운영하고 있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간에도 2006년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난해 수차례 협의해 교육기관 간 중복교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농촌진흥청·농협 등 농업교육 관련 기관의 협의체인 농업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품목별 전문교육을 자조금 조성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본래 자조금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인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조금단체의 교육역량이 아직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자조금사업의 국고 지원비율(50%)보다 높은 60%의 국고 보조율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교육 전문가 및 품목 전문가의 교육심의를 통해 교육계획을 충실히 보완해 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계획 및 방침에 따라 현재 품목단체·생산자단체 등은 지난해 하반기 심의 완료된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 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전문 평가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품목별 전문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농업교육체계에 농업인과 농민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

성폭행을 당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서울신문 : 『마포서 또 성폭행 사건』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1일자)

내 용 :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서울 마포 일대 연쇄 성폭행범을 쫓는 사이 이 지역에서 또 다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45분쯤 서울 마포구 상수동 한 하숙집에 복면을 한 남성이 침입, 혼자 있던 이모

(22·여)씨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마포·서대문 일대에서는 지난해 12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포경찰서는 연쇄 성폭행범을 검거하기 위해 6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마포경찰서는 연쇄 성폭행 사건도 해결 못한 채, 치안에 공백만 생겼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서울신문은 지난 3월 11일자 『마포서 또 성폭행 사건』 제하의 기사에서 6일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의 한 하숙집에서 오후 8시 45분경 복면을 쓴 한 남성이 침입, 혼자 있던 이모(22,여)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함께 연쇄 성폭행 사건의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치안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로 나이, 성, 사건시간, 집주소 등에 관한 피해자 개인 정보가 상세히 보도됨으로써 신청인 회사의 직장동료들까지 그 피해자가 신청인임을 모두 알게되었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2006. 5. 2.



성폭행을 당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YTN
증 재 부 : 서울제5증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조정결정

있습니다. 위 기사로 나이, 성, 사건시간, 집주소, 집 앞 사진 등에 관한 피해자 개인 정보가 상세히 보도됨으로써 신청인 회사의 직장동료들까지 그 피해자가 신청인임을 모두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Y T N : 『연쇄 성폭행 마포에 또 성폭행』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0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15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YTN은 지난 3월 10일자 『연쇄 성폭행 마포에 또 성폭행』 제하의 기사에서 6일 저녁 8시쯤 서울 상수동 한 가정집에 복면을 한 남성이 열려 있던 현관문으로 침입해 혼자있던 22살 이모 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YTN
서울 중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표 완 수

주 문 : 피신청인은 3,000,000원을 2006년 5월 16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



성폭행을 당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Ⅲ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4.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미궁』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0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15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중재152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노컷뉴스 : 『마포에서 또 성폭행 사건...연쇄사건

결 정 문

<2006서울중재152의 결정문 참조>

□

기획예산처가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두고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변 양 균)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미래인재 꿈꾸는 기획예산처』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0일자 13면)

내 용 : (전략)기획예산처는 지난 6일 청년무역
인 양성 사업의 예산 지원 중단을 예고했다. 성과
없는 해외인턴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
하지 않을 것이며, 산업자원부의 청년무역인력사업
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의 이 같은 결정은 미래를 보
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 폐지를 기정사실화하

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획연구용역’ 까지
맡겨 기초자료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3,000억여 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
기도 했다. 자기 식구에게는 돈을 펄펄 쓰면서 미래
인재에게는 푼돈(?)마저도 쓰기 인색한 꼴이다.
(중략)

예산처는 사업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청년무역
인력 중 대다수(60% 이상)가 무역업과 전혀 연관
성이 없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무역협회가 수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
사 결과 무역 관련 종사 인원은 약 73%로 나타나
는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

예산처는 지원대상 인력의 취업률(91.6%)이 일
반 청년층 취업률(91.8%)보다 낮기 때문에 취업률
제고라는 목표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그러나 취업률은 지난 2월 말 현재 98.9%에 달한
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은 예산처가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둔 연구용역이 이뤄

졌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 예산처가 처음부터 이 사업 폐지를 ‘기획’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KDI와 예산처 관계자는 “일부 수치 등에 오류가 있어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보고서 공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 결정에 기초가 된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0일자 13면에 『미래인재 꿈꾸는 기획예산처』 제하의 기사에서 “기획예산처는 청년 무역인력 양성 사업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획연구용역’까지 맡겨 기초자료를 왜곡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본 신문에서 보도한 기획예산처가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두고 KDI에 기획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일환인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관련부처가 참여한 투명한 평가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KDI의 보고서는 무역협회에서 제공한 기초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및 KDI가 기초자료를 왜곡하여 엉터리 분석을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오류가 있는 자료

를 잘못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특정사업의 중단을 마치 기획 예산처가 청년층 및 미래인력에 대한 투자 전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도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청년무역인력 양성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4월 10일자 13면 『미래인재 꿈꾸는 기획예산처』-청년무역인 예산지원 중단...KDI에 ‘기획용역’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 관련, 기획예산처는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두고 KDI에 기획연구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관련부처가 참여한 평가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고, KDI에서 분석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해외 인턴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5월 12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경제> 「기업과 증권」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도표제목(청년무역인 인력사업예산...)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청년무역인 양성 사업’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6일자 2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6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변 양 균)

피신청인 : 한국경제

증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수 일 : 2006. 4. 25.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선거에 나라살림 휘둘린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8일자 1면)

내 용 : 참여정부 들어 도입한 5년 단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형적인’ 형태로 짜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가 있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 1년 전 계획에 비해 대폭 증액됐는가 하면, 청년실업 예산이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돌려지는 등 중장기 발전 전략에 의한 재원 배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작성한 ‘2005~2009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 예산으로 지난해(1,691억 원)보다 79.7% 늘어난 3,039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제공되는 일자리 수는 2005년(6만 9,314개)의 두 배 수준인 13만 3,509개로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은 2004년도 ‘2004~2008년 중기 재정운용계획’ 작성 때의 계획(일자리 기준으로 5만 4,000개)보다 무려 150%나 증가한 것으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감안해 1년 만에 일자리 계획을 전면 재조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더욱이 지방선거 직후인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95억 원(3.1%) 줄여, 일자리 예산을 일관성없이 깎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가 2007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5.0%)보다 낮은 4.9%로 전망했다는 점이나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예산을 늘렸어야 했기 때문이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2007년 경기가 완전히 풀린다는 전제를 내세워 관련 예산을 줄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선거를 의식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표 있는’ 노인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200억 원(3만 5,000명 지원)에서 520억 원(8

만명)으로 160% 늘린 반면, ‘표가 없는’ 15세 청소년부터 지원하는 청년실업 예산은 7,885억 원에서 7,573억 원으로 312억 원(3.9%) 줄였다. 청년실업 예산은 청년실업률(15~29세)이 낮아질 때(2004년 8.3%→2005년 8.0%)는 예산을 증액(6,056억 원→7,885억 원)하더니, 올해는 고용 상황이 어려운데도 예산을 삭감한 셈이다.

이 밖에 정부가 올해 재정을 연중 고르게 배정, 집행키로 했으면서도 일자리 지원사업 등 민생 관련 사업 예산은 상반기 중 조기 집행키로 한 부분도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52만 7,000명이 혜택을 보는 87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9.4%(지원 대상 인원 기준)다.

김재훈 기획처 노동여성재정과장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짜다보니 이상하게 편성됐을 뿐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며 “올해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관련예산을 재편성하겠다”고 말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예산이 대폭 확충될 것임을 내비쳤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8일자 1면에 『선거에 나라살림 휘둘린다』 제목으로 “올 일자리 예산이 80% 확대되었으며 이는 ‘04~’08년 중기 재정운용계획 작성 때 보다 무려 150%나 증가한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감안해 1년만에 일자리 계획을 전면 재조정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본 신문에서 보도한 ‘04~’08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06년 사회적 일자리가 당초 5만 4천명에서 13만 4천명으로 증가(예산 80%, 인원 150%)한 것은 ‘05년도에 일자리 지원사업을 재분류하면서 기존 취약계층 지원으로 분류하던 8만 명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재분류했기 때문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선거 직후인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오히려 95억 원 줄여 일관성 없이 깎

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회를 통과한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07년 예산이 3,208억 원으로 금년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표 있는’ 노인 일자리 예산은 160% 늘리고 ‘표없는’ 청년실업 예산은 3.9% 삭감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년실업대책 지원대상이 만18세 이상으로 대부분 선거권(만19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의식해서 ‘표 없는’ 청년실업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의식하여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69.4%)키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빠른 시일내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조기집행을 실시해 왔으며 '06년도 상반기 조기 집행률(인원기준)은 69.4%로 '05년도 81.6%보다 오히려 낮아져 선거를 의식해 조기 집행 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선거에 나라살림 휘둘린다』 관련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지 3월 28일자 1면 『선거에 나라살림 휘둘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06년 사회적 일자리가 당초 5만 4천명에서 13만 4천명으로 증가한 것은 2005년에 일자리 지원사업을 재분류하면서 기존 취약계층 지원으로 분류하던 8만 명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분류했기 때문이고, 정부는 지방선거 직후인 2007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금년대비 5.6% 증가한 3,208억 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편성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5월 1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중기재정계획 기형적 편성)과 동일한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선거에 나라살림 휘둘린다’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2006년 5월 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돼지 위탁 사육농가에서 실시한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제주조정3

청 구 명 :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영농조합법인 ○○유통

(대표이사 김 ○ ○)

2. ○○사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이슈제주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5.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이슈제주 :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한 농가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0일자)

내 용 : ○○유통의 돼지 위탁 사육농가가 올 1월부터 콜레라 예방접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

격을 주고 있다.

북군 조천읍 선흘리에서 돼지 4,000마리를 ○○유통에서 위탁받아 사육하는 한 농가가 이달 초 제주도청을 찾아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했다’고 고백하면서 시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4년말 돼지 콜레라 항체 양성 반응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이 농가만 유일하게 올해 초부터 돼지 콜레라 백신 주사를 주입했는지 아니면 ○○유통과 돼지 위탁 사육농가가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저질러 온 것인지를 도·축정당국을 비롯해 전문기관, 사법당국이 함께 규명해야 할 문제로 분석됐다.

도청의 한 관계자는 “○○유통의 한 위탁농가에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했다고 자인한 것은 사실”이라며 “21일부터 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돼지 콜레라 백신 접종 시인’이 사실로 검증될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6개월여를 끌면서 ‘예방주사 맞은 돼지의 혈액이 사료에 섞여 전염됐다’는, 다시 말해 오염된 혈장과 혈분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를 단번에 뒤집는 단서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중략)

2004년 11월 돼지 항체 사태가 돌발하자 초기에는 ‘원인이 ○○사료에 있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이 당시 ○○사료 관계자는 ‘만일 다른 농가 돼지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어찌 하겠느냐’고 자신했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바로 다음날 모 농가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돼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농가의 돼지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사료에서 키우는 돼지만 이 문제가 아니고 도 전역에 걸친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는 추측이 싹을 틔웠다.

‘오염된 사료가 주범’이라는 마침표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변수였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양돈 농민들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돈축협과 대한양돈협회 제주도지회를 중심으로 양돈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0일자에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한 농가있다』는 제목으로 한 양돈 농가가 돼지콜레라 백신 주사를 주입했다고 게재하면서 ○○유통이 마치 그에 개입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유통은 위탁사육 계약을 맺은 특정 농가에게 돼지콜레라 백신 주사를 놓도록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0일자에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한 농가 있다』는 제목으로 한 양돈 농가가 돼지콜레라 백신 주사를 주입했다고 게재하면서 ○○유통이 마치 그에 개입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통은 위탁사육계약을 맺은 특정농가에게 돼지콜레라 백신 주사를 놓도록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사료는 해당 보도와 전혀 무관한 업체로 ○○유통을 ○○사료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료에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슈제주’ (www.issuejeju.com) 초기화면에 24시간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이슈제주에 보관되어 있는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한 농가있다』의 기사에 위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은 2006년 5월 10일까지 위 사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이슈제주 :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JU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권 오 승)

피신청인 : 폴리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폴리뉴스 : 『JU그룹, 김·경에 무차별 ‘돈 로비’』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7일자)

내 용 : 우리나라 다단계업체 회사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JU그룹>이 검찰과 경찰의 간부들에게 무차별 ‘돈 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뿌린 돈의 액수는 직위·직급에 따라 최하 5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인데, 특히 다단계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 관계자들까지 “검은 돈”에 매수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략)

다단계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 Y과장이 지난 2003년 12월 다단계공제조합실적평가때 JU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N사무관이 1천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위 K과장이 지난 2004년 4월 인터넷 사기수칙제정과 관련해 1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부서 H사무관 등 2명이 각각 수천만 원

의 돈을 JU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JU그룹 돈로비” 보도 중 공정위 관련 내용 정정보도문

-다단계 공제조합실적 평가나 금전 수수 없어

•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4월 17일자 『JU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 로비’』란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과장 및 사무관이 2003년 12월, 2004년 4월에 금전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공정거래위 과장 및 사무관이 지난 2003년 12월 다단계공제조합 실적평가 때 JU로부터 금전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그 시기에 공정위가 다단계공제조합 실적평가를 한 적도 없고 그 시기 전후로도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직원이 금전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 인터넷 사기수칙제정과 관련해사도 사실확인 결과, 공정위의 인터넷 사기수칙 제정은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피해예방 방법을 정한 소비자이용수칙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와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이득을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공정의 과장 및 사무관이 금전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JU그룹 돈로비” 보도 중 공정위 관련 정정보도문.

다단계공제조합실적 평가나 인터넷 사기수칙 제정은 돈로비 대상이 될 수 없어

•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17일 1면 『JU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 로비’』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과장 및 사무관이 2003년 12월, 2004년 4월에 금전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확인 결과, ‘공정거래위 과장 및 사무관이 지난 2003년 12월 다단계공제조합 실적평가 때 JU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보도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 실적 및 피해예방활동 등 공제조합 설립 후 1년의 운영성과가 크다는 점을 공정위가 정리하여 2004년 3월에 홍보한 적은 있으나 개별 기업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 직원이 금전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 인터넷 사기수칙제정과 관련해서도 사실 확인 결과, 공정위의 인터넷 사기수칙 제정은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피

해예방 방법을 정한 소비자이용수칙으로서 다단계 판매업자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기수칙 제정과 관련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이득을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과장 및 사무관이 금전을 받았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위 정정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른 것이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정보도의 근거로 아래의 보도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폴리뉴스(www.polinews.co.kr) 초기화면 세 번째 메인기사로 2006. 5. 4. 09:00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오도록 보도한다.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주제목(‘JU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로비’)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한다. 아울러 이 정정보도문에 대해서는 의무게재 기간이 지나더라도 독자들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폴리뉴스 : 『‘JU그룹 돈로비’ 보도 중 공정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5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경품사이트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정보를 돈을 받고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6.

처리결과 : 조정결정

MBC-TV :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6년 4월 25일 07:00)

내 용 : ▷앵커 : 고가의 경품을 내건 인터넷 사이트 ! 함부로 응모할게 아니었습니다. 경품에 응모했던 13만 명의 개인정보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유○○ 기자입니다

-화면에 경품○○ 사이트 전체 노출

▷기자 :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중인 한 인터넷 사이트!

대형 tv와 냉장고 심지어 현금까지 준다는 광고

보도내용

에 순식간에 2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응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한 통신판매업체 대표는 경품사이트 업체에 천만 원을 주고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사서 전화로 화장품을 파는데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 개인정보를 동의하에 가져온 겁니까?

▷피의자 : 그렇죠.

▷기자 : 경찰이 압수한 이 장부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 무려 13만 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사들인 통신판매업체 대표 34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25일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경품사이트 조심” 제목으로 경품사이트가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정보를 1천만 원을 받고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자료화면으로 보도된 경품사이트는 텔레마케팅 업체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사(MBC-TV)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양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영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MBC-TV 07:00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 다른 뉴스와 동일한 속도의 진행자 멘트로 방송하되, 화면 우측상단에 보도문의 제목(반론보도)과 ‘○○나라’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함께 보도한다.

2.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11.

<별 지>

•제 목 : 반론보도

•본 문 : 지난 4월 25일 한 통신판매업체가 경품사이트 업체로부터 회원정보를 구입한 후, 이를 통신판매에 이용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도 경품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품사이트업체는 돈을 받고 통신판매업체에 회원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MBC-TV :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6년 5월 25일 07:25)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생활정보신문이 광고의뢰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광고를 게재해 연쇄살인사건의 도구가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5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생방송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6년 4월 19일 7:30)

내 용 : (전략) ▷허 리포터 : 바로 어제였습니다. 천안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범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는데요. 돈 때문에 하루에 두 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 명씨는 사전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서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범행에 결정적 도구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생활정보지였는데요, 어떻게 생활정보지가 범행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1월 12일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20대 여성의 사체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살해된 방법도 다르고 면식도 없는 두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조○○ 강력1팀장 : 일단 요즘에 구직난 때문에 구인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아마 피해자들이 그걸 보고 쉽게 구직 차 나온 건데, 그런 것들 가지고 범행에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허 리포터 : 왜 생활정보지를 이용할 생각을 했대요?

▷조○○ 강력1팀장 : 그게, 범행 대상이 특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 하다 보니깐 쉽게, 쉽게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략)

▷허 리포터 : 이처럼 생활정보지를 믿고 이용하는 여성들이 잇따라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생활정보지 업체에서는 광고를 어떤 방법으로 접수했을까요? 전화를 걸어 구인광고를 직접 의뢰 해 보았습니까.

▷허 리포터 : 구인광고를 내려고 하는데요?

▷생활정보지 업체 : 저희 업체 처음 이용하세요?

▷허 리포터 : 네, 어떻게 해야 하죠?

▷생활정보지 업체 : 내용을 불러주시면 접수해 드

리거든요.

▷사회자 : 음.

▷허 리포터 : 간단한 내용을 말하고 난 뒤 필요한 금액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만 묻고는 더 이상 물어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금액 또한 저렴했는데요.

▷허 리포터 : 제 사무실로 연락해서 확인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생활정보지 업체 : 그것을 저희가 왜 연락을 드려야 하죠?

▷허 리포터 : 아, 그래요?

▷생활정보지 업체 : 예.

▷사회자 : 그런 구인광고 의뢰업체의 확인절차는 전혀 없다?

▷허 리포터 : 네, 그렇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이 지난 4월 19일 「생방송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연쇄살인 도구가 된 생활정보지'라는 제목으로 천안연쇄살인사건을 통해 생활정보신문의 광고를 매개로 결국 살인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생활정보신문은 어떠한 광고 필터링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활정보신문은 구인·구직 이용시 자체 PR광고나 인터넷공지를 통한 이용자 유의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며 생활정보신문협회의 윤리강령과 개별법규정에 의한 광고주 검증작업과 필터링을 통해 건전한 정보문화 유통에 주력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4월 19일 「생방송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허제의 현장 “연쇄살인도구가 된 생활정보지”> 방송 편에서 생활정보신문이 광고를 실으면서 광고주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결국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는 윤리강령과 개별 법규정에 의해 광고주 검증 작업과 필터링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등 광고

시 이용자 유의사항을 게재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 신문이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5월 8일 또는 5월 9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말미에 제목과 본문을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생방송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6년 5월 8일 07: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고령군청에 들이닥쳐 공무서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강 ○ ○ 외 2인

피신청인 : 경북일보

종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7.

처리결과 : 취 하

회두르던 시대의 경찰상이 재현된 것 같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밀어붙이기식 수사 문제아니냐 정정보도문
• 내 용 : 2006년 4월 19일 경북일보 13면 『“밀어붙이기식 수사 문제아니냐”』 제목으로 형사 3명이 고령군청으로 갑자기 들이닥쳐,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특별한 혐의도 없이 관계 공무서류 등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형사 3명은 고령군청 방문 시, 사전에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협조를 구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경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일자 13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경북일보 : 『“밀어붙이기식 수사 문제아니냐”』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9일자 13면)

내 용 :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중략)

지난 17일 오전 고령경찰서 수사과 직원 3명은 고령군청 모 부서를 찾아 모 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이 기록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담당 부서 공무원이 관계서류를 들고 오후에 경찰서로 자진 출두,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것.

이날 경찰은 공무원과의 1대1 대질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특혜 사실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등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일부 공무원들은 “행정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3명의 형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한 혐의도 없이 공무 서류를 요구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수사를 하는 모습이 마치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신청인이 운영하는 기획사가 기예공연을 한 중국인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기획사 관계자 : “행사가 완전히 박살이 났잖
아요. 투자 금액의 5분의 1도 안들어왔습니다.
수익이...” 이 기획사는 경기도 고양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인을 고용해 기예공연을
한 뒤,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기자 : 화려한 벚꽃잔치가 끝났지만, 추한 한
국인에게 사기를 당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중국인
들에게는 짙은 그림자만 남겼습니다.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4월
21일 08:00)
내 용 : ▷앵커 : 진해 군항제 때 기예 공연을
했던 중국인들이 기획사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20일째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와 군항제 주최 측은 배짱만 부리고 있습니
다.

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10평 남짓한
창고에 중국인 1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창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음식재료가 널부러져 있어
수용소를 방불케 합니다. 중국 하북성 기예단 단
원인 이들은 벌써 20일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
습니다. 이처럼 맨바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새
우잠을 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9일 끝난 군
항제 행사 때 기예 공연을 했지만, 기획사가 약
속했던 600만 원을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기예단 소속 통역사 :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
습니다. 우리들은 돈도 없습니다. 보다시피 다 어
린아이들이니까.” 가지고 왔던 돈이 거의 바닥나,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 하지만, 기획사 측은 기예 공연이 적자
를 봤다며, 오히려 큰소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진해군항제 중국서커스 관
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21일 「KBS뉴스광
장」 프로그램에서 “악덕 기획사 사기...발 목인 중
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진해군항제 때 기예공연을
했던 중국인이 기획사에게 사기를 당해 눈물만 흘
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당시 중국인들은 기획사
의 다음 행사를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기획사는
잠적하지 않고 다음 행사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
력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
이 기획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발이 묶였다’는
당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
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
다. □

신청인 조합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유령조합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가칭)○○동주택조합

(조합장 오 ○ ○),

2. 오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7.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을 얻어 1억 3천만 원을 낸 한 조합원은 “김○○씨와 조합 대표들에게 속았다. 이들을 형사 고소하고 개인 재산을 추적해 가압류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조합장은 “올해 안으로 조합이 제기한 모든 민사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므로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월27일에도 ○○동 ○○대 부지 일부인 1천 평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알 박기식’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보도내용

시사저널 : 『유령 조합 세워 3백억원 ‘꿀꺽’』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8일자 38~42면)

내 용 : 국방부·국정원·신문사·방송사 종사자들이 대거 조합원으로 있는 ○○동 ○○대 부지 아파트 건립 사업은 지난 3월 1일 구축된 전 ○○○○ 대표 김○○씨가 주도한 회대의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3백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은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을 길이 막혀 고스란히 사기피해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책임은 김○○씨와 김씨의 동업자로서 1993년 주택조합 결성 당시 조합장을 맡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 오○○씨에게 있었다. (중략)

문제는 조합을 믿고 꼬박꼬박 분담금을 납부한 일반 조합원들에게 김씨와 조합 대표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피해 확대를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이들이 추진해온 ○○동 주택조합 건립 사업은 대법원에 의해 1999년 8월 19일자로 ○○○○과 ○○대 사이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매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최종 판결이 남으로써 불가능한 사업으로 매듭지어졌다. (중략)

그동안 김○○씨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조합원 가운데서도 김○○씨의 조합을 이끌어온 핵심 대표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힌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빚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제857호 38면에서 표제로 『유령조합 세워 3백억원 ‘꿀꺽’』 제하의 기사에서 ○○동 주택조합이 김○○이 세운 유령조합이고 사기와 연류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조합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조합으로 유령조합이 아니며, 사기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서 “3백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은 사기피해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조합 건립사업은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최종 판결이 남으로써 불가능한 사업으로 매듭지어 졌다.”라고 보도하여 주택조합사업이 최종 판결로 인해 불가능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의 소유권이전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주택조합은 ○○○○과는 별개로 일부 필지에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법적권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7일에도 ‘알 박기식’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라고 하여 법적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신청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 또한 주택조합이 정당한 법적권리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가칭)○○동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오 ○ ○

2. 오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시사저널)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58-3

대표이사 금 창 태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사저널> 판권 표시면에 상자기사로 게재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8.

<별 지>

• 제 목 : (가칭)○○동주택조합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지 지난 3월 28일자 857호『유령 조합세워 3백억원 ‘꿀꺽’』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가칭)○○동주택조합은 현재 사업부지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조합원모집 및 조합비를 사용하여 토지매입 등을 수행한 주체로 인정되므로 실제 없는 유령조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동주택조합 건립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매듭지어졌다는 부분도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경찰인사 청탁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대통령경호실장)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4. 27.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동아일보 : 『“김○○ 경호실장 인사청탁 돈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7일자

6면)

내 용 :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대통령경호실장이 경찰인사 청탁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브로커 윤○○ 씨의 공범을 도피시킨 것으로 알려진 강○○ 전 경위의 계좌 추적 결과 2003년에 6,500만 원이 김○○ 울산 지방경찰청 차장에게 건너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돈은 다시 국가정보원 연락관 송모 씨를 통해 김 실장에게 갔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4월 7일자 6면에 『“김○○ 경호실장 인사청탁 돈수수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통령경호실장이 경찰 인사 청탁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주성영 의원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의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해 확인 결과, 김○○ 경호실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김○○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김○○ 경호실장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윤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

지 아니한 동아일보 2면 또는 6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金실장 “황당무계한 이야기”)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15.

<별 지>

• 제 목 : 김○○ 경호실장 돈수수 의혹 관련 증거 없어

• 본 문 : 본지 지난 4월 7일자 『“김○○ 경호실장 인사청탁 돈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김○○ 청와대 경호실장이 김○○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으로부터 경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주성영 의원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의 돈수수 의혹 관련 수사를 하였거나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드러난 바가 없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제주에 주택 두채와 토지 3필지를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현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

처리결과 : 취 하

택 두채와 토지 3필지를 가진 현○○ ○○○구청장, 강남 아파트와 분당 상가를 보유한 이○○ ○○○구청장이 자기 구에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 문○○ ○○○구청장, 양○○ ○○○구청장, 신○○ ○○○구청장도 같은 맥락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4월 28일자 7면에 탐사 보도 단체장 부동산 대해부 『재정자립 외치면서 납세는 판곳에』 제목으로 자기 소속 지자체에 재산세를 내지 않는 기초단체장으로 서울 구청장

보도내용

세계일보 : 『재정자립 외치면서 납세는 판곳에』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8일자 7면)

내 용 : (전략) 서울 구청장 중에서는 제주에 주

중에서는 제주에 주택 두채와 토지 3필지를 가진 현○○○○구청장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현○○○○구청장이 제주에 주택 두채와 토지 3필지를 가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세계일보 : 『고침』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2면)

내 용 : 김○○ ○○지사는 본지 4월 28일자 ‘단체장 부동산 대해부’ 7면기사 중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오피스텔, 경기 군포시 당동에 대지 54평을 갖고 있다”는 대목에 대해 “오피스텔은 소유가 아니라 전세이고 부인 명의의 군포 땅은 상속을 포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같은 기사에서 제주도에 주택과 땅을 가진 것으로 기술된 현○○ 서울 ○○○구청장은 부모가 고향인 제주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을 뿐 본인은 무주택자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

방위사업청이 군수물자 수입과 관련하여 156만 달러를 떼이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방위사업청 (청장 김 정 일)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일보 : 『156만弗 떼이고 한푼 못건진 국방부』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7일자 10면)

내 용 :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가 군수물자를 수입하려다 150여만 달러의 사기를 당하고 이를 되돌려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조달본부는 1999년 38만 달러 상당의 군용 안테나, 스프링, 베어링 등을 수입하기 위해 안모 씨가 대표로 있는 A사와 약정을 맺었다.

조달본부는 2000년에도 118만 달러 상당의 다른 군수물자를 역시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P사를 통해 수입하기로 P사와 약정했다.

A사와 P사는 모두 미국에 있는 회사였고 조달본부는 고품질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두 회사를 통한 물품 수입을 결정했다.

A사와 P사는 2001~2002년 조달본부와 계약한 물건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했다는 국내물류회사 H사의 항공운송장을 조달본부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 제시해 150여만 달러를 모두 받아갔다.

하지만 A사와 P사가 미국 등에서 보냈다는 물건들이 미국 제품이 아닌 국산 제품이었다는 사실이 2002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안씨가 국내 중소제조업자와 짜고 국내에서 비밀리에 제작한 국산 제품을 미국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것이었다. (중략)

국가는 “H사가 허위로 항공운송장을 발급했거나 위조되도록 방조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H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6일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테나 등 일부 품목은 H사가 실제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물품에 대한 항공운송장이 H사가 사용하는 양식을 이용해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H사가 허위 운송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 등이 항공운송장을 위조하도록 방조했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본 문 : 본보(한국일보) 지난 4월 7일자 10면 『156만弗 때이고 한푼 못건진 국방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실질적 손해배상 조치인 주채무자(해외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국제상사중재가 현재 심리중인 상태고 또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였으며, 이미 42만 달러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56만弗 때이고 한푼 못 건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반론보도 청구인 방위사업청장 김 정 일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본 문 : 지난 4월 7일자 10면 『156만弗 때이고 한푼 못건진 국방부』 라는 기사제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주채무자(해외계약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제상사중재가 현재 심리중인 상태고,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였으며, 이미 42만달러의 채권보전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부제목(군수물자 사기소송 패소) 활자 크기로, 본문 내용은 조정대상보도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2006년 5월 22일까지 위 1·2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0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서태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흥 ○ ○
피신청인 : 브레이크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브레이크뉴스 : 『서태지도 당했다 - 연예계 ‘주식광풍’』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6일자)

내 용 : 가수 서태지가 설립한 회사의 등기이사들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서태지 몰래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해, 회사의 경영권을 침탈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얼마전 영화배우 이영애의 독일행

출국 시간에 맞춰 ‘주식회사 이영애’ 투자를 공시했던 ○○○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태지가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연예계에 불고 있는 주식광풍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서태지가 연예기획사 (주)더○○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 (중략)

만일 이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주발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서태지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떨어지고, 더○○의 최대주주가 바뀌는 상황까지 벌어질 뻔 한 것이다. (중략)

서태지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더○○ 등기임원 세 명 중 서태지를 제외한 두 명은 서태지 몰래 이사회를 열어 1만 7천6백47주의 ‘주주배정 유

상증자' 실시를 결의한 뒤 이를 ○○○파트너라는 회사에 실권주 배정 형식으로 넘겼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유상증자로, 당연히 최대주주인 서태지에 게 우선권한이 있지만, 이들은 서태지 명의의 유상증자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인장을 조작, 날인하는 등 사문서 위조 행위를 저지른다.

이들은 이어서 1월 말에서 2월초 사이에 이루어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형식의 유상증자 역시 등기이사인 서태지에게는 이사회 소집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년 팬이라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서태지측은 12월 증자 이전에 더○○의 발행주식이 이미 정관상에 규정하고 있는 수권주식총수를 넘어서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개정이 없어 수권주식총수를 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무효사유는 있다는 것이다.

서태지측은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이번 유상증자를 공모한 더○○의 홍○○ 전 이사와 백○○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의 주동자로 알려진 홍○○ 이사는 2002년 9월 과장으로 서태지컴퍼니에 입사해 2년 7개월여 동안 서태지닷컴 관리 및 신규 사업 기획을 하다, 2005년 4월말 논현동 서태지 빌딩이 완공된 직후 (주)더○○의 이사로서 브랜드, 매니아페스티벌, 로봇, 캐릭터 사업 등의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그러나 서태지 팬들 사이에서는 서태지컴퍼니가 설립된 지난 5년 동안 40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누적 적자만 14억 원으로, 그동안 만성적자에 허덕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만한 조직운영을 쇄신할 기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태지 팬들에 따르면 연 매출액 2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YG가 직원수 20명이고, 그 유명한 에스엠도 87명에 불과한 반면, 연매출 9억 5천만

원인 서태지컴퍼니는 더○○ 직원 35명을 포함해 총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3월 6일자 경제면에 『서태지도 당했다-연에게 '주식광풍'』 제하의 보도에서 (주)더○○의 전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권을 침탈하려 시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것은 서태지 측의 일방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더○○의 이사들은 경영권 침탈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만일 이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주발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서태지의 지분율이 30%이하로 떨어지고, 최대주주가 바뀌는 상황까지 벌어질 뻔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주발행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어도 서태지의 지분율은 30%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며, 서태지는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태지 명의의 유상증자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인장을 조작, 날인하는 등 사문서 위조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하였으나, 조작여부는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보도에서 '서태지 측은 12월 증자 이전에 더○○의 발행주식이 이미 정관상에 규정하고 있는 수권주식총수를 넘어서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개정이 없이 수권주식 총수를 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무효사유는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수권주식총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연매출 9억 9천만 원인 서태지컴퍼니는 더○○ 직원 35명을 포함해 총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서태지컴퍼니의 직원은 1명도 없고, 더○○의 직원은 32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브레이크뉴스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2일자)

내 용 : 지난 3월 6일 본지 경제면에 실린 『서태지도 당했다 - 연에게 ‘주식광풍’』 기사와 관련해 더〇〇의 전 경영진은 기사내용이 서태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면서 자신들이 회사의 경영권 침탈을 시도했다는 내용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담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더〇〇 경영진이 지적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한 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측면과 함께 기사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 정중한 사과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다 음-

“신주발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서태지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떨어지고, 더〇〇의 최대주주가 바뀌는 상황까지 벌어질 뻔한 것”이라는 부분과 관련해 더〇〇의 전 경영진은 실제 신주발행이 예정대로 됐어도 서태지 본인 지분은 33%로, 30%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서태지컴퍼니)의 지분을 포함하면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태지 명의의 유상증자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포기각서를 임의로 작성해 인장을 조작, 날인하는 등 사문서 위조 행위를 저지른다”는 부분에 대해 더〇〇 전 경영진은 ‘서태지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서태지 측이 공언했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한 형사고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은 12월 증자 이전에 더〇〇의 발행주식이 이미 정관상에 규정하고 있는 수권주식총수를 넘어서고 있었다고 밝혔는데”라는 부분에 대해 더〇〇 전 경영진은 “더〇〇 발행주식은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수권주식총수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매출 9억 5천만 원인 서태지컴퍼니는 더〇〇 직원 35명을 포함해 총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더〇〇 전 경영진은 “서태지컴퍼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더〇〇의 직원은 32명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더〇〇 전 경영진은 “해당기사가 ‘이번 소동의 주동자로 알려진 홍〇〇 이사’라는 표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실명과 함께 단정적으로 표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며, 본지는 이 지적을 받아들여 당사자에게 정중한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

PC방형 도박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PC방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쿠키뉴스 : 『같은 PC방인데 들어가면 도박장』 제하

의 기사 (2006년 4월 13일자)

내 용 : PC방으로 위장된 불법 도박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슬슬 고개를 내밀던 ‘PC방형 도박장’이 몇 달 새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 바다이야기 등 기존의 성인오락실 영업을 대폭 규제하는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풍선효과’로 PC방형 도박장같은 변칙적 도박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S성인PC방.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듯 축하 화환들이 입구를 가득 채우

고 있었다. 한껏 카지노 분위기를 낸 50여 평 규모의 실내에는 벽면을 따라 PC가 죽 늘어서 있었다. 홀 가운데에도 두 개의 둥근 테이블에 각각 6대의 컴퓨터가 자리잡았다. 모두 바카라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들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16일자 사회면에 『걸은 PC방인데 들어가면 도박장』 제하의 기

사에서 PC방형 도박장이 급속 확산되고 있으며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버젓이 돈 거래를 하고 있다며 여러PC의 불법영업실태를 알리는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는 매장의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시하여 독자들의 오해를 가져왔으며 또한 게시한 사진도 쿠키뉴스에 저작권이 없는 무단 도용된 사진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에 게시된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미성년자인 신청인에게 돈을 주고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한 후, 범죄에 노출된 가출아동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
처리결과 : 각 하

▷김○○ : 조금 놀다가 나갈꺼예요.
▷PD : 가출은 왜 하게 됐어요?
▷김○○ : 집나간다고 하면 때리고 왜 집나가냐고 때리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온다고 하면 때리고 컴퓨터하면 공부하라고 때리고...
▷나레이터 : 아이들은 부모들에 대해서 심한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보도내용

SBS-TV :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2006년 3월 24일 22:55)
내 용 : ▷MC :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부분 훈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출한 학생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 가출 소년들은 가정과 사회의 노출속에 범죄의 재범에 놓여있습니다.
▷PD : 가출 많이 해봤어요?
▷김○○(본명:한○○) : 10번이상. 1학년때 전학오고 나서 좀하다가... 합하면 10번이상 해봤어요.
〈여자친구집. 담넘어가서...〉
▷PD : 여기 있을꺼예요?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저희 SBS는 지난 3월 24일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범죄의 그늘에 선 가출 아동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가출한 아동들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을 넘고,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앵벌이를 하는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가출 아동들이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방송사에서 촬영을 위해 돈으로 유혹하여 가출 아동들을 이용·연출한 것임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 건 : 2006서울조정16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SBS (SBS-TV)

서울 양천구 목동 820

대표이사 안 국 정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TV 「세븐데이즈」 프로그램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은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2006. 3. 24.(142회)자 〈세븐데이즈- ‘범죄의 그늘에 선 가출아동들’〉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인 신청인에게 돈을 주고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한 후, 신청인을 범죄에 노출된 가출아동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행위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한○○은 법 소정의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11.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문광부 BTL사업의 기본 구상용역을 수행했다는 전력을 내세워 건설·건축사에 로비를 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한국건설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한국건설신문 : 『브로커 손에 놀아난 ‘문광부 BTL’』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6일자 1면)

내 용 : 문화관광부 BTL의 기본구상용역을 수행했다는 전력을 내세워 건설·건축사에게 로비를 펼치고 있는 브로커 A씨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평가배점, 실적제한, 평가위원 선정 등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며 문광부 BTL 참여사에 접근한 혐의다. (중략)

대형건축사사무소 CM사업부에 소속된 A씨는 CM영업도중 알게 된 지자체공무원에게 접근했다. A씨는 기본구상용역(RFP초안)을 작성했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건설·건축사에게 로비를 펼쳤다.

A씨는 대형사에게 기술배점을, 중소사는 가격배점을 높이고 설계사에게는 실적기준을 조절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업계관계자는 “최종 RFP는 문화관광부 한국문

화정책원에서 결정짓지만 배점 및 실적기준 등 주요사항은 지자체 의견을 대부분 참조한다”면서 “A씨는 BTL사업에 무지한 지자체공무원을 대신해 상당부분 의견을 개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씨가 RFP에서 나아가 평가위원 선정에도 개입가능성을 시사하자, BTL사업에 처녀진출하려는 업체의 경우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소속 건축사사무소와 상관없이 각 컨소시엄을 돌며 개인영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A씨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BTL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4월 26일자 『브로커 손에 놀아난 ‘문광부 BTL’』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브로커 A씨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자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로비를 펼쳤으며 공무원 접대 또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는 기본구상에는 참여하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 및 설계사에 로비를 펼친 사실이나 평가위원선정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문광부 BTL’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제281호(2006년 4월 26일~5월 7일자) 1면 『브로커 손에 놀아난 ‘문광부 BTL’』 제하의 기사에서 브로커 A씨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는 문광부 BTL사업 기본구상에는 참여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 및 설계사에 로비를 펼치거나 평가위원선정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개입해 공무원 접대 또는 금품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건설신문> 2006년 5월 15일자 1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게재된 지면의 기사 부제목 ‘굴삭기 3만대...’와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건설신문>의 인터넷홈페이지(www.conslove.co.kr)에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위 보도문의 제목을 초기화면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건설신문 : 『‘문광부 BTL’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5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등에 대해 고소·고발한 것이 경영권을 노린 음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서 ○ 외 11명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북일보 : 『경영권 노린 음해 ‘빈축’』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일자 8면)

내 용 : ○○고속 일부 주주들이 수년동안 법원과 검찰에 현 대표이사를 음해하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고소·고발이 모두 사실확인 결과 무혐의 등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현옥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고속 주주 S씨 등 12명이 현 대표이사인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해임 △대표이사 사장직무정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3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S씨 등이 3차례에 걸쳐 전주지검에 고소·고발조치한 황 대표의 업무상 횡령과 명예훼손, 문서손괴 등 6건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처럼 황 대표에 대한 음해성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잇따른 것은 일부 주주들이 황 대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다른 주주들에게 심어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무능·부정직한 대표 해임 위한 정당한 주주 권리 행사”

• 내 용 : 본지는 2006년 5월 2일자 8면 『경영권 노린 음해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고속 일부 주주들이 수년동안 법원과 검찰에 현 대표이사를 음해하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이 제기한 고소·고발이 무혐의 등으로 판명됐는데, 이는 일부 주주들이 황 대표에 대한 음해성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여 황 대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다른 주주들에게 심어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고속 S이사 등은 “현재 ○○고속은 황 사장의 무능하고 부정직한 회사운영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리부장과 사전공모하여 관련 장부를 폐기하는 등 지능적으로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대표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황 사장을 고소 고발한 것이며, 횡령을 공모한 경리부장의 증거

인멸로 인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속 대다수의 주주들은 황사장의 결백을 믿는 사람이 없다. 검찰과 법원의 무혐의 처분 및 원고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및 항소할 것이며, 황사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고소·고발을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음해성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공금횡령등 책임묻기 위해 고소”

• 내 용 : 본지는 2006년 5월 2일자 8면 『경영권 노린 음해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고속 일부 주주들이 수년동안 법원과 검찰에 현 대표이사를 음해하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이 제기한 고소·고발이 무혐의 등으로 판명됐는데, 이는 일부 주주들이 황 대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고속 S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고소·고발한 것은 회사공금 횡령 등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음해성 고소·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히고, “황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경리부장이 관련 장부를 폐기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결정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황사장의 결백을 믿지 않을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무혐의 처분 및 원고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및 항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6년 5월 12일자 8면에 2단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경영권 노린 음해 빈축)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2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수입·판매하는 자전거의 결함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6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2006년 3월 31일 08:00)

내 용 : ▷진행자 : 멀쩡히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두 동강 나면서 타고 가는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공원이나 강변 같은데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크게 당한 분이 계세요.

▷리포터 : 네 지난달에 동호회 회원들과 여자친구와 함께 아파트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30대 남성이 자전거 프레임이 갑자기 두 동강이 나면서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달 11일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해운대를 향하던 중 자전거 한대가 프레임이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 납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부서지면서 사망했다면 단지 억세게 운이 나빴던 걸까요?

피해자는 사고 직전까지 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 저쪽 편으로 가고 있다가 이쪽 횡단 보도 부근에서 사람이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있어

갖고 그냥 단순한 저희는 뭐 교통사고인줄 알고 이쪽에 댔는데...

자전거 이쪽 연결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쪽에 본체...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 파손이되 갖고 두 동강이 난 상태였습니다. (중략)

▷리포터 :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 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터뷰 : 헤드튜브 상단에서 그 우측 어깨 부분까지 피로균열이 발생 성장한 피로파괴 파단면의 특징적인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예기는 그 상단 부분에서부터 그 피로파괴가 이제 진행된 걸로 볼 수 있죠.

▷리포터 : 그런데 취재 도중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자전거에 프레임 신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오토바이 사고 후 프레임 절단을 업체에 신고 했었다는 이씨!

이씨는 이때 자신이 끝까지 항의 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 자전거 원리상 앞에서 이제 충격을 받으면은 타이어 부분하고요, 쇼바라고 하거든요 충격바. 이 부분에서 충격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것은 원래 잘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근데 두부 잘려지듯이 나가게 된 것이지요.

▷리포터 : 사고를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에 자전거를 점검해본 ○○씨도 놀라운 사실을 확인 했는데요.

▷인터뷰(변○○) : 요 부분에 보면은요 금이 가 있어요. 예. 이번 사고 나가지고 저도 조마조마해 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많은 자전거에 똑같은 자전거에

또 금이...

지금 못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리포터 : 조금 전 변○○ 씨에 자전거 모습인 데요. 이렇게 균열이 가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못 봤더라면 큰일날 뻔 했겠죠?

이렇게 역시 같은 모델에 저런 균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녹취(이○○) : 차가 100키로 120키로 달리다가 타이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죠.

그 정도 700대... 3~4개면은 거의 뭐 전량 회수해야죠... 전량 회수나 전량 리콜 들어 가야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이 지난 2006년 3월 31일자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에서 <사람잡는 자전거, 갑자기 두 동강이 나다>라는 제목으로 도○○ 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도씨가 타던 자전거 프레임의 용접 부분의 결함으로 인한 절단이 사망원인이 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자전거에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도씨가 타던 자전거 프레임의 용접된 부분에서 균열 및 파단이 발생하지 않아 용접 결함에 의한 절단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으로 감정한 사실이 드러나 위 자전거에 결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도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5%이었고 안전구 등을 미착용하였으며, 방송에서 균열이 있는 것으로 보도한 변○○ 씨의 자전거는 실제 변○○ 씨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도씨의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이며, 사고가 난 자전거는 출고된 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피로 파괴'로 절단될 수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

정보통신부가 IT 전시관 개·보수 비용을 민간업체에 떠넘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보통신부 (장관 노 준 형)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정통부, 6개 기업체에 압력』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0일자 2면)

내 용 : 정보통신부가 자체 운영 중인 IT 전시관 개보수(改補修) 비용을 또 다시 민간업체에 떠넘기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통부는 “한국의 앞선 IT 기술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IT 전시관 운영은 민간업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업체는 “정통부가 자기들 생색을 내기 위해 해마다 구태(舊態)를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서울 세종로 청사 1층에 있는 IT 전시관인 '유비쿼터스(U) 드림관'의 설비 개·보수비와 운영비 42억 원 중 절반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삼성전자·LG전자·KT에 각각 5억 2,500만 원, SK텔레콤에는 3억 15,000만 원, KTF에 1억 5,750만 원, LG텔레콤 5,250만 원 등 6개 업체에 상반기 중으로 21억 원을 전액 납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임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의 주도로 2004년 초 문을 연 U드림관은 개관 이후 줄곧 말썽을 빚고 있는 시설이다. 정통부는 2004년 전시관 개관비 40여억 원을 민간업체에 전가시켰고, 지난해에도 전시관 개·보수비 중 10여억 원도 민간업체에 떠넘겼었다. (중략)

정통부는 이에 앞서 총리실·외교통상부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행사장에 IT 전시관 설치를 위해 민간업체에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떠넘겼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정통부 출범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민간업체에 행사비 2억 원 협찬 요구해 말썽을 빚었다.

(2) 『습관성 '손 벌리기'』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1일자 3면)

10일 본지에 정보통신부가 IT(정보기술) 전시관인 '유비쿼터스(U) 드림관'의 개·보수(改·補修) 비용 중 절반인 21억 원을 6개 민간업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업체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중략)

정통부의 습관성 민폐는 뿌리가 깊다. 정통부 전·현직 직원 100여 명은 최근 10여년 동안 휴대전화를 공짜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정통부는 지난해 가을 'IT 대·중소기업 한마당 행사'를 위해 '단골 물주'에 10억 원을 떠넘기려 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행사 때도 민간업체의 '자발참여' 형태를 빌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거뒀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조선일보사 2006년 4월 10일 2면 『정통부, 6개 기업체에 압력』 제하의 기사와 2006년 4월 11일 3면 기사수첩의 『습관성 '손 벌리기'』 제하의 기사에서 정보통신부가 청사에 마련한 IT전시관 개·보수 비용과 운영비 42억 원 중 절반을 관련 민간업체에 떠넘기고자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보도내용 중 정보통신부가 청사에 마련한 전시관의 개·보수 비용과 운영비용을 민간업체에 떠넘기고자 한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편향된 보도입니다.

유비쿼터스 드림전시관은 정통부장관과 관련업체 CEO간 간담회시 대내외적으로 국내 우수 IT기업의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하고, 일반국민에게 u-Life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 IT전시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민·관 협력하에 구축한 것입니다.

'04. 3월 민간기업 주도로 전시관이 구축된 이후 정부는 매년 운영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50:50 재원분담원칙에 따라 참여업체들은 '05년 9월 운영위원회에서 '06년도 분담비용(21억 원)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고,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06년도 개·보수비와 운영비(21억 원)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부가 전시관 시설물 교체비용을 관련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국내 우수 IT기술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 민·관 합의를 통해 추진된 전시관의 설립 취지를 훼손시키는 편향된 보도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초래하는 적절치 못한 보도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APEC 행사장에 IT전시관 설치를 위해 민간업체에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떠넘겼다는 보도 또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APEC 정상회의 공식 스폰서십의 모집절차를 거쳐 전시회 참가기업들을 결정하였으며, 기업들은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기업들은 각 회사 전시관의 규모 및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정통부·부산시 등은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전시

장 공간조성 등 공동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시회 참가기업은 APEC 21개국 정상, 각료, CEO 및 참석자 등 8만 5천명을 대상으로 DMB, WiBro 등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므로 정통부가 민간업체에 1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떠넘겼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니다.

피신청인 주장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기독교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가 기각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기독교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4.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기독교보 : 『반론보도란?』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9일자 9면)

내 용 : *반론보도란?

반론보도는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 관련자의 의견 및 반론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서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16조와 방송법 제91조에 의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하게 되는 ‘정정보도’와는 달리,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기사 관련자의 주장을 게재토록 하는 것입니다.

밝○ 목사는 4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본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해, 언론중재위원회는 4월 13일 심리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하고, 반론보도 청구는 밝○ 목사가 청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직원으로 조정결정 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밝○ 목사의 언론조정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기독교보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서 『반론보도란?』 제하의 기사로 “반론보도는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 관련자의 의견 및 반론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서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16조와 방송법 제91조에 의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보도하였으나,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미 폐지되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고, “반론보도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하게 되는 ‘정정보도’와는 달리,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기사 관련자의 주장을 게재토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또한 정정보도 청구가 기각당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밝○ 목사가 청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원으로 조정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것은 밝○ 목사의 주장 중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간결하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밝○ 목사의 동의하에 실린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박 ○ ○

피신청인 : (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기독교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 58-10

이사장 이 한 석

조정대리인 구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별지 기재 보도문을 <기독교보> 5월 27일자 9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 기사 제목(반론보도란?)과 같은 크기로하고, 본문활자크기는 본문과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18.

<별 지>

• 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보는 지난 4월 29일자 9면 『반론보도란?』 제하의 기사에서 반론보도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사 관련자의 주장을 게재하는 것이며, 밝○○ 목사가 본 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신청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각되고, 반론보도청구는 밝목사가 청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반론보도 직권 조정결정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어 폐지되었고, 밝○○ 목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는 조정결과, 정정보도를 기각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취지에 따라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조정결정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기독교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7일자 9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

정부 통계가 경실련 통계와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생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청인 : 건설교통부 (장관 추 병 직)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부동산값 상승 통계 경실련 1,152조 · 건교부 114조』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7일자 2면)

내 용 : (전략) 건교부 주장대로 참여정부 들어 1백14조 원 상승했다면 2003년(2천3백조 원)보다 4.9%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금까지 정부의 통계수치 중 이와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7.81% 올랐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현실화율은 90.9%였다. 결국 정부 통계대로라면 올해 현실화율은 100%가 넘는 오류가 생긴다.

특히 건교부의 2005년 공시지가(현실화율 적용)는 2천3백91조 원으로 2004년(2천4백8조 원)보다 0.7% 떨어졌다.

그렇지만 건교부는 지난해 '8·31대책'을 내면

서 전국 지가상승률이 2004년 3.9%, 2005년(7월까지) 2.76% 상승했다고 밝혔다.

결국 시민단체가 정부 통계를 반박할 수 있는 빌미를 정부 스스로 마련해 준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통계가 부처마다 다르고 분산돼 있어 제대로 된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은 2002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부터 나온 얘기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7일자 2면에 『부동산값 상승 통계 경실련 1,152조·건교부 114조』라는 제목으로 정부 통계대로라면 올해 현실화율은 100%가 넘는 오류가 생기며, 특히 '05년 공시지가는 '04년보다 0.7%가 떨어진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보도내용은 대

표성 없는 표본선정, 표본수의 절대부족(전국 2,790만 필지 중 132필지), 왜곡된 토지가격산정방식에 의해 산정된 경실련의 부정확하고 왜곡된 통계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정부에 대하여 정확한 부동산 통계자료를 생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의 부동산통계(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과학적인 방식에 의한 표본선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평가 등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도출되는 정확한 자료라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이미 조정대상기사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반론보도를 할 의사는 없다. □

신청인과 모 텔런트 사이의 사생활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일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일요신문 : 『중견텔런트 파렴치한 이중생활』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일자 14면)

내 용 : 인기 드라마에 점잖고 중후한 역으로 출연해 많은 중년 팬을 확보하고 있는 텔런트 J씨가 27세 연하의 한 여성과 9년여 동안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다 아이까지 낳았으며 최근 이 여인이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미 현재 부인과의 사이에 장성한 두 명의 자녀가 있는 J씨는 당초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최근 기자가 파악한 여성의 소재를 언급하지 못하게 이를 시인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이 아무개 씨로 수년간 J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다. 이씨가 지난 2005년 1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가사 8단독)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J씨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2년 7월 아들을 출산했지만 J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자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이씨는 아이를 낳은 이후 지금까지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해왔었지만 J씨는 이를 외면하며 양육비조차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씨는 아이를 낳은 것은 시인했지만 생활비 부분은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J씨는 지금까지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해 주며 생계를 도왔다

고 말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드라마에서는 지극히 건실한 부모 역할을 맡아 온 J씨의 실제 모습을 폭로한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97년 9월 이씨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C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부터다. 이씨에 따르면 이사 온 오피스텔 방 바로 이웃이 탤런트 J씨였다는 것. 당시 J씨는 가정 문제로 집에서 나와 이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이씨는 “이사 온 첫날부터 J씨가 나에 대해 깊은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며 “혼자 살면 식사를 제대로 챙겨먹기도 힘들다면서 아침에 늦잠 자는 나를 깨워 밥을 차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때만 해도 31세의 젊은 여성이던 이씨는 60세에 가까운 J씨의 호의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J씨의 태도는 일반적인 호의를 넘는 수준이었다. (중략)

이씨에게 있어 그를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은 불행의 신호탄이었다. 2001년 9월 이씨가 또다시 임신을 하면서 불행은 구체화돼 갔다.

이씨는 임신 사실을 J씨에게 알렸지만 이번에도 J씨는 단호하게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한 번의 중절수술을 경험한 이씨는 40이 가까운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 아이를 낳기로 결심, 홀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향에서 출산을 강행했다. 이씨는 “아들을 낳은 뒤 J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곧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며 “출산 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산후 우울증이 오는 바람에 아이와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아이를 출산한 뒤 이씨의 사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유일한 경제적 기반이었던 어머니가 파산하는 바람에 어머니 집에 얹혀살던 이씨도 덩달아 빚쟁이들을 피해 다녀야 했다. 2003년에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사글셋집을 구해 들어갔지만 사글세를 제때 내지 못해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이씨는 “누가 아이를 봐주지만 한다면 나가서 일이라도 해 볼 텐데 어머니가 빚쟁이를 피해 잠적하는 바람에 혼자 너무 힘들었다”며 “살던 곳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살지 않는 거의 폐가와 다름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눈시울

을 붉혔다.

이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네 살된 아들과 함께 이번 겨울을 난방도 안되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말한다. 이씨는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오면서 전채산 3만 원으로 조그만 전열기 하나 사고 나머지는 라면 등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것을 샀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얼마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돼 한 달에 30만 원 가량 나오는 덕분에 그나마 조금 살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일요신문은 지난 4월 2일자 14면 『중견탤런트 파렴치한 이중생활』 제하의 기사에서 중견탤런트 J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온 신청인이 아이를 낳은 이후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 기사화에 대한 자세한 상의나 통보도 없이 신청인의 나이, 거주 지역과 같은 개인 정보를 여과없이 노출시킴으로써 주변인들로 하여금 기사의 주인공이 신청인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서적 불안감을 야기하였으므로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일요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빌딩 14층

대표이사 신 상 철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6월 2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
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6. 5. 15.

□

신청인과 모 탤런트 사이의 사생활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여성중앙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손배) (피신청인 이의신청)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보도내용

여성중앙 : 『중견 탤런트 J씨 27살 연하 내연녀와
친자·양육권 소송에 휘말린 충격적인 사
연』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호 578~
579면)

내 용 : (전략) 아이가 친자임을 부정했던 것은
본인이 확실히 정관 수술을 했고, 당시 L씨가 자
신 외에도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L씨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는 것. 또한 J씨는
당시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한 것은 사업상 책을
집필하느라 조용한 곳을 찾은 것이지 결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었던 건 아니라고 말
했다. 자신은 단 한번도 먼저 L씨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당시 연극영화과 대학원을 다니
던 L씨가 영화감독을 하겠다고 해서 영화와 관련
된 조언을 하면서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L씨와 연
락이 두절된 것도 이유가 있다. 당시 목숨이 위태
로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실려가 대
수술을 받느라 뜻하지 않게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 이후 사경을 헤매다 건강을 회복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
신도 생활이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또한 수시로
100~200만 원의 돈을 보내 생계를 도왔고, 심지어
모 인터넷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주며 생계를 책임

지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즈음 L씨가 J씨의 집을 찾아오면서
그동안 쉬쉬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
려지게 됐다. 곤경에 처한 J씨는 이후 L씨와 완전
히 틀어졌고, 이에 격분한 L씨가 하루에도 100통
가까이 J씨의 휴대폰과 집으로 전화를 거는 바람
에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J씨는 L씨
가 소송을 걸기 전부터 오히려 먼저 친자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혹시라도 자기 아들이 맞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그 와중에
L씨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낸 것이고, 친자임이
밝혀지면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로는 성실
히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면 알수
록 복잡한 수수께끼 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 진실
은 하나일 텐데, 정답은 오리무중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호 578~579면 『중견 탤
런트 J씨 27살 연하 내연녀와 친자·양육권 소송
에 휘말린 충격적인 사연』 제하의 기사에서 유부
남과 내연의 관계를 맺어온 이모 씨가 2005년 1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어 승소하였으나 조
사결과 아버지가 중견탤런트 J씨로 밝혀짐에 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J씨의 인터뷰에서처럼 J씨가 이미 수술
을 통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외도를 저지를 당시에도 부인과의 사이가 별거 중
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이모 씨가 연극영화학과
대학원에 다님에 따라 J씨가 조언을 준 것이지 이
모 씨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더불어 J
씨가 이모 씨에게 계속해서 100~200만 원의 생활
비를 지급하였으며, 이모 씨가 J씨와 떨어진 것에

격분하여 하루에 100통 가까이 J씨의 휴대폰과 집으로 전화를 하여 생활을 방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사와 함께 게재된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의 사진은 위 보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엠엔비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6번지

중앙문화센터빌딩 1층

대표이사 김 원 태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6월 2일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15.

피신청인 주장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된 사항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의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가 포함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PR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통일부 (장관 이 종 석)

피신청인 : 국민일보

종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8.

처리결과 : 취 하

방북 합의'다. 그제 남북간의 현안, 북한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과제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기에 장관급 회담 의제로 삼았다는 것인가. 그나마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음달에 열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단다.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5억달러가 건네졌다고 하던데 이번에만 그나마 오라 할까. (후략)

보도내용

국민일보 : 『남북장관급회담 허상과 실상』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6일자 27면)

내 용 : (전략) 이처럼 남북 관계의 진전에는 역대 정부의 노력이 배었고, 무엇보다 국민적 기대와 지원이 뒷받침됐다. 특정인의 공적인 양, 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양 하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엇그제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 성과로 강조된 것이 'DJ 6월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6일자 27면 『남북장관급 회담 허상과 실상』 제목의 칼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문제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의제로 삼았으나,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음달에 열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의 정식의제에 포함시

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문제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의제로 삼았으나,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음달에 열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그날의 수통이 거기에...』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7일자 27면)

내 용 : (전략) 물론 6년 전의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사상의 일대 사건이었다. 또 거기서 나온 6·15 남북공동선언은 그간의 거듭된 실망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민족적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그날의 의식이 북한 당국의 민족사적 부채를 면해주는 절차일 수는 없었다.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북한 당국의 6·25 도발이다. 그것이 그 때 산화한 국군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도리고 의무다.

한껏 거드름 피우는 저들을 향해 건강도 좋지 않은 고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길을 나서

려 하고 있다. 그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재결합의 길을 닦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동족 당국들 사이라도 사리는 분명히 따져줘야 옳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북한 당국이 특별한 변화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 그게 그 쪽의 태생적 한계다. 계속 참고 달래면 언젠가는 이쪽을 믿어 홍금을 열어놓지 않겠느냐는 낭만적 기대는 개인들이나 가질 수 있다. 영구집권체제를 갖춘 북한을 상대로 5년단임의 정부가 선택할 전략은 되지 못한다.

오래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굵은 부위를 긁어내는 게 급선무다. 그런 다음에 몹시 고통스럽더라도 소독약을 발라 새로운 감염을 막고 상처 자리를 봉합하는 게 상식적인 순서다. 덮기에 급급하면 속으로 썩어들어갈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수술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5년 단임 정권들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해서 하는 말이다.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의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가 포함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통일부 (장관 이 종 석)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공동보도문에 없는 DJ 방북』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5일자 3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7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7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3일자 3면)

내 용 : 지난 4월25일자 문화일보 3면 『공동보도문에 없는 DJ 방북』 기사와 관련, 통일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정식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킬 계획이 애초에 없었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

대한체육회장이 정치인 출신으로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7
청 구 명 : 정정보구
신 청 인 : 대한체육회 (회장 김 정 길)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고원정의 스포츠 광장』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4일자 26면)

내 용 : 정치인 출신 체육단장들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우선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토리노 현지에서 연금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고 한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아깝게 동메달을 놓친 이규혁과 여자 500m에서 5위에 입상한 이상화를 예로 들면서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어도 정상급의 기량을 발휘한 선수에게는 연금을 주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선거에서 떨어지면 적당한 다른 자리를 물색해주는 정치판 출신다운 발상이 아닌가하는 알곳은 생각마저 든다. 앞서도 김 회장은 대한체육회장이 되자마자 IOC 위원을 노린다고 나섰다가 제대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2월 24일자 26면 『고원정의 스포츠 광장』 제하의 기사에서 객원 논설위원이 “정치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김정길 대한체육회 회장이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아깝게 메달을 놓친 선수들에 대해서도 연금을 줄 수 있도록 연금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복안을 밝혔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김정길 회장이 정치판 출신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며, 김 회장은 대한체육회장이 되자마자 IOC위원을 도전했다가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과 관련한 중앙일보 기사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와 김정길 회장이 협회 홈페이지와 CBS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으며, 김정길 회장의 IOC위원 출마는 IOC 내에서 영향력 있는 7명의 IOC위원의 추천에 따른 것이었고, 김 회장은 자격심의 과정을 무난히 통과해 향후 4년간 IOC위원 후보 자격을 획득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24일자 『고원정의 스포츠광장』 칼럼에서,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이 동계올림픽이 열린 토리노 현지에서 연금혜택확대 복안을 밝혔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것은 정치인의 선거공약을 연상케 하는 무책임한 공약이고 김 회장이 IOC위원을 도전했다가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 회장이 연금혜택확대를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김회장의 IOC위원 출마는 영향력 있는 7명의 IOC위원의 추천에 따른 것이었고, 김회장은 자격심의를 무난히 통과해 IOC위원 후보자격을 획득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경향신문> 2006. 5. 22. 자 2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광우병 감염소 판별을 위한 농림부의 ‘치아감별’ 방식이 비과학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프레시안 : 『미국 눈치만 보는 농림부, 황우석한테
배웠나』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8일
자)

내 용 :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유
력한 근거로 제시한 엘라배마 주에서 발견된 광우
병 소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판독했을 가능성이 제
기됐다. (중략)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 농민도 “치열로 나이
를 감별하는 것은 우시장에서나 사용하는 방법”이
라며 “19세기에 널리 썼던 방법을 21세기에 버젓
이 사용하고, 그것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라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린 데에 웃음만
나온다”고 농림부의 한심한 행태를 비판했다.

박상표 편집국장은 결론적으로 “이런 전문가들
의 의혹 제기는 농림부가 치열 분석을 통해 광우
병 소의 나이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구나 여러 차례 지적
했듯이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났다고 해서 미국
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엘라배마
주에 직접 가서 실시했다는 현지 조사 결과도 믿
을 게 못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갑 의원은 별도로 배포된 자료를 통해 “현
지 조사에 참여한 3인은 건국대 장병준 교수, 이종
현 중축개량협회 사무국장, 장기운 농림부 사무관”
이라며 “이들 이종현 사무국장을 제외한 두 사람

은 수의사이긴 하지만 치아 감별 전문가라고 보기
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계를 대표해 조사단에 참여한 장병준 교수는
취 간세포의 조직학적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
은 인물로 소의 해부학 전문가가 아니다. 다른 두
사람도 치열을 통해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8일자 『미국 눈치만 보는 농림
부, 황우석한테 배웠나』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
면서 농림부가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를 자의적으
로 해석하고 감염소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용한
치아감별법이 비과학적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미국 광우병 감염소
의 나이를 치아로 감별하는 것은 7,000여두의 소의
치아를 연구·조사한 자료가 축적된 것으로, 통계
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며 미국산 쇠고
기 수입은 국내 광우병 전문가들이 1년간의 검토
를 거쳐 국제기준보다 강화한 조건으로 결정한 것
으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졸속으로 수입을 재개했
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농림부는 미국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
고자 제주에서 방목하는 소의 치아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수의·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감염소의 치아와 동일지역인
알리마마주에서 사육하는 소의 치아를 조사·비교
하였으며 특히 2004년 12월 감염소를 구입할 당시
의 가축시장 매매 기록서에서 8세 이상이라는 것
을 확인하였음을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미국 눈치만 보는 농림부” 관련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8일자 기사에서, 농림부는 미국 앨라배마주 광우병 감염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밝혀져 미국산 나이 어린 소의 쇠고기 수입재개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광우병 감염소 나이확인에 사용된 치아감별법은 19세기에나 쓰던 비과학적 방법으로서 농림부가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판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부는, 소의 치아로 나이를 감별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고,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추가자료제공을 요청하여 국내 소의 치아와 비교조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의·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감염소와 다른 사육소의 치아상태를 비교조사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광우병 관련 기준은 매우 엄격하여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이라는 우리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가 수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국제수역사무국

(OIE)에서도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등 여러 나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이미 재개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프레스리안> 초기화면에 2006. 5. 22.부터 5. 23.까지 24시간 동안, 제목(미국 눈치만...)을 표기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게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프레스리안> 뉴스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미국 눈치만 보는 농림부...)와 링크시킨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프레스리안 : 『“미국 눈치만 보는 농림부”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2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부친이 사망하자 재산을 빼돌리고, 누나의 유산 상속분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7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SBS-TV :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2005년 11월 18일 20:55)

내 용 : (전략) ▷이○○ : 야 이놈아 니가 돈을 가져갔냐, 이놈아. 문 열어 친 형제예요. 이게 등기도 같이 돼 있어요. 근데 내 집인데도 이 놈의 새

끼가 문을 안 열어.

▷성우 : 뒤 늦게 재판에서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인정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접근마저 막고 있다는 것.

▷이○○ : 뽀뽀이 다 헤어져가지구 나는 발을 뽀고 잔다, 이놈아.

▷성우 : 이○○ 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남동생과 5년 간 소송을 계속 해왔다고 했다.

▷이○○ : 아버지가 폐암에서 침상에 앉아가지구 빙글빙글 돌아가고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노인네의 도장을 받아낸 거예요.

▷성우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이미 남동생이 명의를 자신 앞으로 돌리고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이 이씨 측의 주장.

▷이○○ : 다 현금화를 했거든요.

▷성우 : 자신의 상속권을 되찾기 위해 나섰을 때 이미 서류상 남은 유산은 남동생이 살고 있는 집

과 아버지의 산소가 모셔진 토지 정도였다고 한다. 뒤늦게 상속권을 청구한 이○○ 씨에게는 법적 유류분인 1/17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판결 내용에 만족할 수 없다는 이○○씨.

▷이○○ : 군청 바로 옆에 새 집이 생겼는데 집을 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거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고, 저한테 있던 돈 280을 갖고 해서 780만 원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갖다드린 거죠.

▷성우 : 그러나 자신이 기여한 재산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이 또 필요했다. 24시간 간병인으로 일하는 이씨에게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성우 : 게다가 이미 인정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이○○ : 여기 8년 만에 왔는데 이 문 땀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못 들어가요

▷성우 : 남동생은 공동명의자인 누나가 드나들지 못하게 아버지의 묘소가 모셔진 이 곳마저 막아두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5년 11월 18일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가족도 나 몰라라-상속분쟁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누나와 남동생 사이의 재산 상속 분쟁의 일례를 보이면서 남동생이 폐암으로 의식이 없는 부친에게 도장을 받아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을 빼돌렸으며, 누나가 아버지의 묘소를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두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미 2002년 법원판결을 통해 양자 간 재산 상속의 문제는 모두 종결되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산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며 남동생은 부친이 사망하기 전 농장관리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한 것일 뿐 누나의 묘소 출입을 막기 위함은 아니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가족도 나 몰라라-상속분쟁의 현주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5년 11월 18일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가족도 나 몰라라-상속분쟁의 현주소’ 제하의 방송내용 중, 남동생이 폐암으로 의식이 없는 부친에게서 도장을 받아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을 빼돌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누나가 아버지 묘소를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렸다는 방송내용에 대해 남동생 A씨는 부친이 사망하기 전 농장관리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한 것일 뿐 누나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금일 이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TV 「세븐데이즈」 150회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은 화면상단에 청색바탕에 흰색자막으로, 내용도 청색바탕에 흰색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2006년 6월 2일 23: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여동생 사진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0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4월 1일 21:00)

내 용 : ▷앵커 :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무려 10명이 살해된 사건, 그 진실만이라도 밝히기 위해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OO 기자입니다. (중략)

▷기자 : 20여년전인 지난 86년 9월부터 91년 4월까지 화성지역에서 살해된 여성들은 모두 10명. 그것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사무소 반경 3킬로미터 지역에서였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정확히 15년전인 91년 4월 3일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내일이면 15년인 살인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즉 내일이 지나면 범인을 잡더라도 현행범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고 반드시 진실만을 밝힌다는 각오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1TV는 지난 4월 1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날 마감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위 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의 여동생 사진을 방송에 내보내 고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신청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9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청합니다. □

국정홍보처가 언론보도를 비판하는 댓글달기 경쟁을 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의 인터넷 주소를 파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공무원은 정권의 ‘인터넷 홍위병’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5일자 31면)

내 용 : 공무원을 ‘언론과의 전쟁’으로 내몰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홍보처는 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국정브리핑’에 언론보도를 비판하는 댓글달기 경쟁을 시킨 것도 모자라 그 실적을 점검하겠다고며 공무원들의 인터넷 주

소(IP)까지 파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월 16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의 인터넷 주소를 제출토록 했다는 것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지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무원을 정권의 ‘인터넷 홍위병’ 줌으로 여기는 태도가 한심하다.

인터넷 주소 수집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주소는 중요한 사생활 영역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4월 25일자 31면에 게시한 『공무원은 정권의 ‘인터넷 홍위병’ 아니다』 제하의 사실과 관련, “홍보처가 언론보도를 비판하는 댓글 달기 경

쟁을 시키고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터넷 주소(IP)를 파악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정합니다.

홍보처가 IP 대역을 제출받은 것은 공무원들의 국정브리핑 방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IP는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실명으로 게시하고 있는 ‘국내언론보도종합’의 ‘부처의견 및 조치’(댓글) 경쟁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 부처 IP 대역으로는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 방문실적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사에서 지적한 ‘사생활 침해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본보 4월 25일자 31면에 게재한 『공무원은 정권

의 ‘인터넷 홍위병’ 아니다』 제하의 사실과 관련, 공무원 IP 대역을 제출받은 것은 공무원들의 국정브리핑 방문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IP는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실명으로 게시하고 있는 ‘국내언론보도종합’의 댓글과 관련이 없다고 국정홍보처가 알려왔습니다. 또 부처 IP 대역으로는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 방문실적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생활 침해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아일보 2006. 5. 19.자 ‘오피니언’면에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9일자 2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의 고급형 채널상품 할인 정책이 보급형 TV수신료 인상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충북조정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HCN 충북방송

(대표이사 김 동 운, 경 청 호)

피신청인 : 한빛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빛일보 : (1) 『HCN, 수신료 원상회복 거부』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8일자 1면)

내 용 : 최근 HCN충북방송(이하 HCN)의 수신료 인상과 채널변경에 대한 가입자들의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HCN이 고급형 채널상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해주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청주YMCA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이 같은 HCN의 공식 입장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HCN은 27일 ‘케이블TV 시청료 대폭 할인’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채널변경 등과 관련해 제기된 시청자들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 고급형 채널상품에 대해 내년 7월 말까지 요금을 할인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고급형 채널 상품을 보기 위해 월 1만 7천 원을 지불했던 시청자들은 단독주택 1만 원, 공동주택 단체가입자들은 5천 원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중략)

“지금까지 HCN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채널 및 수신료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그렇지만 27일 발표된 HCN의 입장은 오히려 수신료를 올린 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

(2) 『HCN은 소비자 현혹하지 말라』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1면)

최근 고급형 채널상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는 HCN충북방송(이하 HCN)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대한주부클럽 충북지회와 청주 YMCA 등 충북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행위일 뿐”이라며 반발, 향후 HCN 수신거부 운동까지 벌일 태세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6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HCN충북 방송의 케이블TV 시청료 대폭할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6개 시민사회단체는 HCN이 지난 3월14일 채널·요금 일방적 변경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HCN은 오른 가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마치 수신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내년 7월말까지 시청자들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지만 이는 시청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급형 채널가격을 1만 1천 원으로 책정한 것은 1만 8천700원으로 올리려던 것을 6천600원에서 1만1천 원으로 인상폭을 줄여 인상하는 것임을 밝혀라”며 “시청자들과 시민사회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8일자 1면 『HCN, 수신료 원상회복 거부』, 5월 3일자 1면 『HCN은 소비자 현혹하지 말라』 제하의 기사에서 HCN충북방송이 고급형 채널상품 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 단체의 언급을 빌어 ‘오히려 올린 꼴’이라 지적하고, 충북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HCN충북방송에 대한 입장 천명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하여 집단 수신거부운동을 벌일 태세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HCN충북방송 측은 이처럼 고급형 채널상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려는 의도는 최근 보급형을 고급형으로 전환한 기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써, 11년 전부터 고정되어 있던 고급형 채널상품 가격(1만 7,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이라 밝히며, 고급형 채널 요금의 할인을 고급형 채널 요금의 인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혀왔

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채널변경 논의과정 등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이미 약속한 만큼 ‘소비자 현혹’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HCN 충북방송의 반론보도문
- 내 용 : 한빛일보는 지난 4월 28일자 1면 『HCN, 수신료 원상회복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HCN 충북방송이 오히려 고급형 채널상품 할인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소비자단체의 언급을 빌어 ‘오히려 올린 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HCN 충북방송은 “11년전부터 고정돼 있던 고급형 채널상품 가격(1만7천원)을 이번에 보급형에서 고급형으로 전환하려는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하는 것이지 보급형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한빛일보는 5월4일자 사회면 『HCN, 완충녹지 무단훼손 물의』, “도로개설 콘크리트 포장...회사측 ‘아닌줄 알았다’”라는 부제의 4단 머리기사에서 ‘HCN충북방송이 완충녹지를 무단 훼손한 뒤 도로를 개설,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공사로 진입로 부분은 완충녹지에 해당되지 않았고 측량 결과 인근 완충녹지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도로 개설 시점도 수개월 전이 아니라 올 4월 3일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으며 HCN 충북방송에 유감을 표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빛일보 2006. 5. 26.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4월 25일자 반론보도문 제목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지 <공동합의문>을 작성하여 이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빛일보 : 『HCN충북방송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사육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개발이 금지된 ‘완충녹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충북조정3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HCN 충북방송

(대표이사 김 동 운, 경 청 호)

피신청인 : 한빛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한빛일보 : 『HCN, 완충녹지 무단훼손 ‘물의’』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4일자 3면)

내 용 : HCN충북방송(이하 HCN)이 ‘완충녹지’를 무단 훼손한 뒤 도로를 개설,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도시계획 입안시 우선 지정되는 완충녹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현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는 완충녹지를 불법 훼손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HCN은 완충녹지를 훼손한 데다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 놓고 진출·입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일 취재진과 청주시가 공동으로 확인했다.

HCN은 수 개월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53에 위치해 있는 사육과 지북사거리에서 목련공원 방향 도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폭 4~5m, 길이 10~20여m)를 불법 개설, 임직원 및 민원인들의 차량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진출·입로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될 완충녹지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HCN은 이같은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완충녹지 훼손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HCN 관계자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물어볼 필요 없지 않느냐”며 답변을 피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콜센터) 때문에 지북정수장 방향 출입로가 없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서 “완충녹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본보취재진과 동행해 현장을 확인한 청주시는 HCN에 완충녹지 원상복구 이행 명령을 내린 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5월 4일자 3면, 『HCN, 완충녹지 무단훼손 ‘물의’』 “도로개설 콘크리트 포장...회사 측 ‘아닌줄 알았다’”라는 부제의 4단 머리기사에서 HCN충북방송이 완충녹지를 무단 훼손한 뒤 도로를 개설,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문제의 공사용 진입로 부분은 완충녹지에 해당되지 않았고 완충녹지라도 정당한 명분이 있는 경우 법절차를 거쳐 점용허가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며 개설 시점도 수 개월 전이 아니라 4월 3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보도 직전 HCN 관계자가 지적도를 들고 본 신문 편집국을 방문해 완충녹지가 아니라고 해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20,000,000원

합의사항

〈2006충북조정2의 합의사항 참조〉

한빛일보 : 『HCN충북방송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6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다이어리를 판매한 커피전문점 때문에 신청인 회사의 수첩 매출이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사 (대표이사 이 ○)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2

처리결과 : 합 의

채널로 부상했다는 얘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월 24일자 14면 『커피전문점 새 유통채널로 뜬다』 제하의 기사에서 다이어리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커피전문점 때문에 지난해 다이어리 업체인 ○○사의 수첩 매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다”며 “일각에선 스타벅스가 ○○사의 최대 경쟁업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한다”고 전했고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는 매장 수를 발판으로 다른업종군까지 위협하는 강력한 유통채널로 부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사는 스타벅스가 커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용 판촉행사로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는지 또한 이윤이 생기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의 경쟁업체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으며 스타벅스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적이 없는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 『커피전문점 새 유통채널로 뜬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4일자 14면)

내 용 : 스타벅스, 커피빈 등 커피전문점이 강력한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해 7만여 권의 다이어리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장 수가 144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장 당 약 500권이 팔려나간 셈이다.

권당 1만원인 다이어리는 스타벅스가 현지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자체 제작한 것으로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중고생은 물론 젊은 여성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엔 각각 5만권씩 판매됐다. 스타벅스는 다이어리의 인기가 높아 올해 8~9만 권으로 제작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중략)

업계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때문에 지난해 다이어리 업체인 ○○사의 수첩 매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다”며 “일각에선 스타벅스가 ○○사의 최대 경쟁업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한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는 매장 수를 발판으로 다른 업종군까지 위협하는 강력한 유통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2월 24일자 14면 『커피전문점 새 유통채널로 뜬다』 라는 제하에 보도된 기사 중 - 업계 관계자는 “커피 전문점 때문에 지난해 다이어리 업체인 ○○사의 수첩 매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다” -라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름으로 정정보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서울경제〉 2006년 5월

22일자 이전까지 14면(산업면)에 게재한다.

서울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9일자 14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의 사주가 자신의 사업에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호남매일신문 (대표이사 구 ○ ○)

피신청인 : 인터넷시민의소리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재차 확인된 셈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10일자 『이번엔 호남매일 사주 ‘부동산 사기’ 구속』 제하의 기사에서 호남매일신문 사주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에 구속돼 지역 일간지 사주들의 비리와 도덕성이 의심받는 가운데 호남매일신문의 사주 김○○ 씨와 대한매일 사주 박○○ 씨 등이 자신이 사주로 있는 언론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자신들에 불리한 여론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회장은 호남매일신문에 광고비 출연 등 자금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신문제작에 따른 편집권을 침해하거나 회사경영에 전혀 관련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사업에 호남매일신문을 끌어들여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을 막는 도구로서 사용한 적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인터넷시민의소리 : 『이번엔 호남매일 사주 ‘부동산 사기’로 구속』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0일자)

내 용 : 대한일보 사주 박○○씨의 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에 지역 일간지 호남매일신문 사주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에 구속돼 지역 일간지 사주들의 비리와 도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9일 ‘기획부동산’ 사기로 200여억 원을 챙기고 회사 공금 2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그룹회장을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그룹 계열사 사장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사 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략)

호남매일신문 사주인 김씨나 대한매일 사주인 박○○씨와 같은 이들이 자신이 사주로 있는 언론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자신들에 불리한 여론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가능하나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다단계업체 투자설명회에서 사업자들을 속이는데 주도적으로 간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한국마케팅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 일 : 2006. 5.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마케팅신문 : 『교수 수난시대』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30일자 2면)

내 용 : 나라안이 연일 '황우석 쇼크'로 시끄럽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에서부터 정치권 로비설, 연구비 사용처 논란 등 한국사회가 한 국립대학교 교수의 행적으로 인해 들끓는 '흔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단계 업계에도 최근 이같은 한 대학 교수의 행적이 논란의 도마위에 오르 내리고 있다.

C대학의 네트워크마케팅 CEO 과정 주임교수를 지낸 이모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다단계 B사의 고문으로 참여해 투자설명회에서 사업자들을 속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B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을 적용해 사기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이 교수를 포함해 18일 현재까지 총 13명을 기소한 상태다.

대학교수가 기업의 고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시 될 순 없다. 하지만 이 교수의 경우 그가 처한 업계 내 위치와 역할을 짚어볼 때 이번 기소건은 우리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준 건 사실이다. 그동안 '학계 전문가'로 통할만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있던 그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 교수는 현재 다단계 시장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수거래분야의 전문위원장을 맡아 오고 있고, 특수판매공제조합 내에서는 지난달 20일 결성된 '불법다단계추방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중이며, 모 전문지에서는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런 그가 '불법다단계 추방'을 외치며 불법업체 근절에 앞장서야 할 시간에 정작 불법업체(?)로 의심 받고있는 기업의 투자설명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한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B사로 부터 2개월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30일자 2면 『교수 수난시대』 제하의 기사에서 C대학의 네트워크마케팅 CEO 과정 주임교수를 지낸 이모 교수가 다단계 B사의 고문으로 참여해 투자설명회에서 사업자들을 속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교수가 다단계 B사의 투자설명회에서 사업자들을 속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회사의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원



중학생인 신청인의 자녀들이 유부녀를 성희롱하여 그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8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이○○ 외 2인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재부 : 전북중재부

접수 일 : 2006. 5.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북일보 : 『격분한 남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5일자 8면)

내 용 :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평화동 Y중학교 4층 복도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이 학교 학생 A군(15·중2) 등 3명을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로 김모 씨(38)를 불구속입건하였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학교에 인접한 자신의 집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아내에게 A군 등이 학교 창가에서 “엉덩이 좀 보게 이쪽으로 돌려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으며 둔기로 마구 폭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학생들을 폭행한 김모 씨는 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15일자 8면 『격분한 남편』 제하의 기사에서 “김모 씨(38)가 평화동 Y중학교 학생 3명이 빨래를 하던 자신의 아내에게 학교 창가에서 “엉덩이 좀 보게 이쪽으로 돌려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으며 둔기로 마구 폭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학생들을 폭행한 김모 씨는 아

이들이 자신을 보고 “와봐”라고 하는 정도의 사소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둔기를 들고 학교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해 두부가 함몰되는 등 3~6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에서는 아이들이 아내에게 성희롱을 하여 폭행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전북일보 : 『야유만 했을 뿐 성희롱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6일자 8면)

내 용 : 지난 12일 자신의 아내 등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남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한 전주 Y중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이 “애들이 야유는 했지만 성희롱을 한 적은 없다”며 가해자의 폭행 동기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15일 “성희롱 운운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 아이들은 성희롱을 한 적이 없고 장난삼아 야유만 했을 뿐인데 김씨가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

중학생인 신청인의 자녀들이 유부녀를 성희롱하여 그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2인

피신청인 : 전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라일보 : 『성적 수치심 유발 철없는 중학생 마구 폭행』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5일자 6면)

내 용 : <2006전북조정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전북조정1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전라일보 : 『성폭행 당한 중학생 학부모들 “성희롱 아닌 야유였다” 반박』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7일자 6면)

내 용 : 지난 12일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욕설을 했으며 김모(38)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주시내 Y중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일부 야유는 했지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

는 말은 아이들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6일 학부모들은 “정희룡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장난삼아 야유를 했을 뿐인데 김씨

가 자루걸레를 휘둘러 학생들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밖에 “김씨가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에게까지 폭행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의 ‘교과서 외형 개선 방안’에서 새 교과서 용지와 눈 건강과의 관련성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진 표)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한겨레 : 『화려한 새 교과서, 눈 건강 해칠수도』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4일자 12면)

내 용 : 원색의 화려한 교과서가 어린 학생들의 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안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초·중등 교과서를 모두 원색으로 인쇄하기로 하고, 인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 용지를 더 하얗고 반질반질한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과서 외형 개선 방안’을 보면 새 교과서 용지는 기존 용지보다 흰 정도를 나타내는 ‘백색도’는 10% 가량, 종이에 빛이 반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광택도’는 50% 가량 높아진다.

판형자율화와 디자인 강화 등까지 포함한 교과서 외형개선에는 학부모들의 직접 부담분 75억여원과 교육부 예산을 합해 모두 1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돈은 좀 들지만, 원색이 잘 재현된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안과 전문의들은 인쇄용지의 백색도와 광택도가 증가하면 인쇄 효과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빛 반사율과 대비감도도 높아져 인쇄물을 읽는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중략)

교과서 교체가 학습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은 맞을까? 서울 역삼동 좋은사람들 성모안과의 박성진(40) 원장은 “종이의 백색도와 광택도가 높을수록 대부분의 교실에 설치된 형광등 불빛이 잘 산란돼 학생들의 눈에 눈부심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며 “이는 시력 약화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집중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학습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교육부의 교과서 외형 기준 변경과정에서 개진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교과서 용지와 눈 건강과의 관련성은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형 기준 변경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결정된 탓이기도 하다.

기준 변경 실무자인 정○○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사무관은 “용지를 바꿔도 학생들의 눈 건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교과서 용지 개선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눈 건강과 관련해 검토한 근거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4일자 12면에 『화려한 새 교과서, 눈 건강 해칠수도』 제하의 기사에

서 새로운 교과서가 학생들의 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면서, 교육부가 교과서의 외형 기준 변경 과정에서 교과서 용지와 눈 건강과의 관련성은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선진국의 사례와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눈 건강에 관해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과대학 안과 교수로부터 '새로운 교과서 용지와 기존의 교과서 용지를 비교한 결과 눈부심 현상이 증가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시력 저하 혹은 근시의 유발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대표자 장관 김 진 표
조정대리인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정 태 기
조정대리인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보도문을 이 조정결정

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백색도·광택도 올리려면 화학물질 더 써야)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2.

<별 지>

- 제 목 : 새 교과서 용지와 눈 건강 관련 교육부 입장
- 내 용 : 본지 4월 24일자 『화려한 새 교과서, 눈 건강 해칠수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새 교과서에서 채택한 용지는 일본 등에서 사용중인 교과서 용지에 비해 광택도 및 백색도가 높지 않아 학생들의 눈 건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한겨레 : 『반론 심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

신청인이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부산일보 : 『김병호 의원 계좌 추적』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6일자 1면)

내 용 : (전략)부산경찰청 수사과도 15일 한나라당 부산 모 구청장 후보가 같은 지역 국회의원 측에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후보자와 가족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부산 모 구청장 후보 A씨와 가족들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계좌에 대한 자료를 압수 거래내역과

계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동생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지역에서 공천경합을 벌이다 떨어진 B씨에게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은 “이미 여러차례 나온 흑색 선전에 불과하다”며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경찰이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16일자 1면 『김병호 의원 계좌 추적』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부산 모 구청장 후보 A씨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동생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동생은 현재까지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 후보자로부터 어떠한 돈을 받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 구청장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국제신문 : 『한나라 후보 또 돈공천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6일자 1면)

내 용 : <2006부산조정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부산조정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16일자 1면 『한나라 후보 또 돈공천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부산 모 구청장 후보 A씨가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측근 B씨를 통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동생 C씨에게 6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현재까지 지역구 공천과 관련하여 B씨로부터 돈을 받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구청장 후보 및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제신문 2면 하단에 2006. 5. 24.까지 1회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과 본문의 활자체 및 활자 크기 등은 국제신문 2006. 5. 16.자 2면 하단의 ‘바로잡습니다’ 보도문 게재형식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제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연간 승강기 사고발생 건수가 수십만 건에 달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장관 정 세 균)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서울경제 : (1) 『승강기 설치단계서 감리제 도입』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32면)

내 용 : 대부분의 도시인은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욱 빈번히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승강기 사고 발생건수는 수십만건에 달한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의 낙후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승강기 설치단계에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정밀안전진단제도를 채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는 보수업체의 과당수주경쟁, 검사기관 다원화, 노후승강기의 안전진단, 낮은 기술수준의 조립·설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는 안전 위협에 노출돼 있는 반면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승강기 소유자들은 사후관리 부실, 건축물과의 부조화 등으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2) 『노후 승강기 많아 대비책 마련 절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32면)

“승강기 보수시장 규모는 1년에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간 8,000~9,000억원에 이릅니다. 안전 강화를 규제로 인식해서는 안됩니다.”

최○○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80년대

분당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들어선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가 노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안전 강화를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3일자 32면에 『승강기 설치단계서 감리제 도입』, 『노후 승강기 많아 대책 마련 절실』 제하의 기사에서 “연간 승강기 사고 발생건수는 수십만 건에 달하며, 승강기 이용자는 안전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반면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승강기 소유자들은 사후관리 부실, 건축물과의 부조화 등으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승강기 인명사고는 '04년도 24건 등 연간 수십건에 불과하며, 승강기 관리자는 설치 후 관련법에 의해 사후관리를 하고, 사고발생시 이용자는 제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제목의 기사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정정보도합니다.

신청 후 보도문

서울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9일자 32면)

내 용 : 본지 3일자 32면 ‘승강기 안전관리 국제세미나’ 기사 가운데 “승강기 안전사고는 2004년 28만 9,814건이 발생해 2000년 18만 6,578건보다 55.5%가 증가했다”는 내용은 승강기 설치대수의 증가치를 잘못 전달한 것이어서 바로잡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건수는 2000년 3,727건에서 2004년 5,5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화성호가 수질악화로 인해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농촌공사 (사장 안 종 운)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7.

처리결과 : 취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화성호 수질악화, ‘제2시화호’ 우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0일자 5면)

내 용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서 우정면 매항리 사이의 바다를 막는 화성호 간척사업이 수질악화로 제2의 시화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략)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수질보전대책이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있다. 당장 인구가 2만명 이상 늘고 폐수 발생량이 600톤 증가했는데도 예전 계획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

◆시화호만큼 수질악화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성호 수질이 시화호만큼 악화됐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9ppm, 총 질소농도 0.569ppm, 총 인농도 0.050ppm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호소수질이 COD 기준 3등급으로 2002년 환경조사보고서에서 예측한 수질보다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화성호살리기 시민연대는 하루 2차례 이상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호소가 아닌 해역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등급 외’ 수질이라는 지적이

다. 특히 부영양화에 큰 영향을 주는 인의 경우 3등급 기준인 0.03ppm의 거의 두배가 되는 0.05ppm에 달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화호도 지난해 평균 수질이 COD 4.2ppm으로 ‘등급 외’다.

같은장소에서 측정한 화성시 자료를 보면 절망적이다. 시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측정한 결과, COD는 7.08~14.80ppm을 오갔고 총 질소는 0.475~1.242ppm, 총 인은 0.080~0.240ppm으로 공사 측정치보다 2~5배 더 높았다.

이에 따라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2년 이후 매년 적조가 발생하고 있다. 어장이 황폐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인근 바다에서 잡히던 굴은 아예 사라졌고 조개, 꽃게, 우럭 등은 예전의 10~30%로 급감했다. 당연히 3,500여명의 어민들은 일터를 잃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내일신문 5월 10일자 5면에 『화성호 수질악화, ‘제2시화호’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화성시 지역에 인구가 2만명 이상 증가하고 폐수 발생량이 600톤 이상 증가했는데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수질보전대책을 예전 그대로 고집하고 있고, 수질은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호소가 아닌 해역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농촌공사의 조사결과를 인정하더라도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등급 외’이며, 또한 화성시가 '05. 6월에서 10월까지 화성호 내에서 측정한 수질결과치는 같은 장소에서 한국농촌공사가 측정한 측정치보다 2~5배 더 높았으며,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2002년 이후 매년 적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한국농촌공사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첫째, 상류유역의 변화된 환경을 수질보전대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것은 “시민연대”에서 보고서를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3년마다 수립하는 연동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 나온 오염원 변화조사 최종용역보고서(2006.2)를 보면 인구는 2000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는 2,277명이 증가하였고, 폐수발생량은 545톤/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연대의 중간보고서에 실린 잘못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둘째, 수질기준과 관련하여 한국농촌공사에서 측정한 화성호 수질측정치는 '05년 평균 COD 3.7ppm, T-N 0.609ppm, T-P 0.045ppm으로서, '05. 9. 8.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의 호소 및 해역 수질 기준상 Ⅲ등급으로 분류돼 ‘등급 외’라는 보도는 화성호살리기 시민연대의 개정이전 자료를 보고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셋째, 한국농촌공사가 수질을 측정한 같은 장소에서 화성시가 측정한 수질측정치는 공사의 측정치보다 2~5배 높다고 보도하였으나 환경부 주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의 협약사항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환경부 호소환경조사기법을 준수하여 유입하천 6지점, 호소 9지점, 해역 2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있고, 수질측정결과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화성시의 자료는 1지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 대표성 및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방조제 끝막이공사 이후 적조가 발생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적조현상은 해수온도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안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성호의 경우 방조제 설치 이후에 발생된 현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화성호 수질대책을 위해 남양천 등 상류부하천수질은 환경부와 지자체, 담수호 내부는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1,542억 원(상류대책 964, 호내대책 578)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질개선대책은 3년마다 오염원 변화에 따라 연동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더 이상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배수갑문을 개방해 해수를 유통시킬 계획임을 밝힙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내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9일자 15면)

내 용 : 내일신문은 5월 10일자 5면에 『화성호 수질악화, ‘제2시화호’ 우려』라는 제목으로 화성시 지역 인구가 2만명 이상 증가하고 폐수발생량이 600톤 이상 증가했는데도 기존 수질보전대책을 고집하고 있고,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등급 외’이며 같은 장소에서 측정한 화성시의 수질결과치가 한국농촌공사의 측정치보다 2~5배 더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공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현재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은 상류유역의 변화된 환경에 따라 3년마다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오염원 변화조사 최종용역보고서(2006년 2월)에서 2000년과 비교할 경우 화성시 인구가 2005년에는 2,277명이 증가했고, 폐수도 545톤/일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사는 시민연대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둘째, 2005년 9월 8일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의 호소 및 해역수질기준에 따라 화성호 수질은 Ⅲ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 외’ 수질보도는 시민연대의 법 개정 이전 자료를 보고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셋째, 화성시의 수질자료는 배수갑문 부근 1개 지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것으로 대표성 및 신뢰성이 낮은 반면, 한국농촌공사는 환경부 호소환경조사기법을 준수해 호소 9개 지점 등 총 17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있고, 수질측정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호 수질대책은 상류부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담수호는 농림부와 농촌공사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1,542 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수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배수갑문을 개방해 해수를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

신청인의 집이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조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7.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국민일보 : 『집값이 10만9000원』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4일자 8면)
내 용 : “나는 값을 잘 몰라. 그냥 내 집이 제일 이여.”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조사된 전북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최모(67·여)씨의 집.

건축물대장에 5.5평으로 나와 있는 이 집은 공사 가격이 10만 9,000원으로 발표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조사된 서울 이태원동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 저택(85억 2,000만 원)과는 7만 8,165배 차이다.

이 집이 지어진 때는 1930년대 초. 시집온 뒤 평생 이 집에서 살았다는 최씨는 3년 전 아흔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를 여의고 지난해엔 남편과도 사별해 혼자 살고 있다.

그동안 집 내부는 몇 차례 수리했지만 겉모습은 30여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얼마 전 아들 딸들이 방과 부엌을 조금 넓히고 방 1개와 수세식 화장실을 더 들여놓았다. 전체 집의 크기는 개조한 창고와 텃밭까지 합쳐 15평 정도이다. 하지만 주변 땅값이 2~3만원이어서 합쳐 봐야 4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씨는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시원하다”면서 “겨울엔 외풍도 없고 살기 편하니 좋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국민일보는 지난 5월 4일자 8면 『집값이 10만 9000원』 제하의 기사에서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 개별주택공시가격에서 신청인의 집이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주택 사진과 신청인의 주소, 성명,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1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대표이사 노 승 숙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6월 25일까지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1.

□

신청인의 학원이 수강료 환불 약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PR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교육그룹
(대표이사 민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개인 사정으로 수강 포기해도 미리넨 학원수강료 돌려줘야』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5일자 11면)

내 용 :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이 안됩니다’ 등 수강료 환불을 제한하는 부당 약관을 사용한 학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을 제한하는 내용을 수강증이나 영수증에 표기한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들 중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외국어학원, 광안 ○○외국어학원, ○○○○ 동작어학원, (주)○○○교육그룹, 국가○○○학원, ○○○고시학원, (주)디지털○, ○○학원, (주)○○○아카데미, (주)○○가이드다.

공정위 주순식(朱舜植) 소비자본부장은 “수강료를 미리 냈지만 개인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학원들이 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을 넣었더라도 이는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계약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6개월 학원비를 미리 냈을 때 2개월 2일간 수강한 이후 개인 사정으로 나머지 강의를 듣지 못한다면 3개월치 수강료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은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교육그룹 수강료 환불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5월 15일자 사회면 A11면에 『개인사정으로 수강 포기해도 미리넨 학원수강료 돌려줘야』 제목으로 ○○○교육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강료 환불 약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실확인 결과, ○○○교육그룹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현 학원법 18조 3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2개월 이상 수강일 경우 수강개시 이후 환불 요청 시 해당월은 환불이 되지 않으며, 다음월은 환불이 되는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학원 수강 후 중도 포기 시 무조건 환불이 된다는 식으로 보도하여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동아일보 : 『취업-영어교육 동시에』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9일자 2면)

내 용 : 취업준비생과 전직(轉職)을 원하는 직장인을 위해 취업교육과 영어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퓨전 강좌가 나왔다.

○○○ 어학원과 취업포털 업체인 스카우트는 취업에 필요한 인터뷰 방법, 이미지 메이킹 등과 회화, 토익 등 영어 강의를 결합한 ‘잡펀드-PDP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강좌를 최근 선보였다. (후략) □

신청인의 학원이 수강료 환불 약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89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교육그룹
(대표이사 민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8.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6서울조정18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8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조선일보 : 『학원 중도 포기뎀 수강료 돌려받으세요』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5일자 2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188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

신청인의 학원이 수강료 환불 약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PR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교육그룹
(대표이사 민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8.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8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188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중앙일보 : 『학원 수강료, 강의 시작전 취소 뎀 모두 돌려줘야』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5일자 2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88의 보도내용 참조>

취하 후 보도문

중앙일보 : 『취업·영어 교육을 동시에』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0일자 4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88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작고한 신청인의 부친이 안락사 허용 논란에 관해 인터뷰한 것으로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2006년 3월 6일 08:44)

제 목 : ▷앵커 : 자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락사 논란 이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할까? 같이
한번 고민해주시시오.

▷리포터 : 지난 24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명옥 의원이 불합리한 생명연장 치료
의 중단,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소극적 안락사를
합리화하자는,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 여
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생명윤리
논쟁의 현장, 어떤 내용이었는지 취재해 보았습
니다.

생명 경시풍조인가 존엄사인가? 불합리한 생명
연장 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이 발의되면서 생명 윤리 문제가 다시 공론화 되
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병원, 이곳에서 우리는 말기암으로 인
해 고통받고 있는 한 환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가 앓고 있는 병은 쓸개에 암이 생기는 담낭
암, 환자의 80%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무서운 병
이었는데요. 이분 역시 더이상의 치료방법이 없어
죽음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중략)

▷보호자 : 항암이라든가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대부분 말기암 환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몇 년 쯤 더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깐,
저희는 그 희망을 갖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런데 그런분들이 저희 같은 상황에 처해서 병원에
갔을 때 입원을 못하고 퇴원을 강요 당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고...

▷리포터 : 말기암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초차
입원을 거부당했던 그들. 하지만 병이 더 심해지면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를 여
쭈어 봤는데요.

▷환자 : 글썄요, 그것은 아직 생각 안해 봤는
데... 더 살고 싶은 모양이죠.

▷리포터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의사 출
신인 안명옥 의원은 의원 9명이 동의를 받아 의
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환자
나 그 가족의 치료 중단 요구가 있거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치료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명될 경
우, 의료 심사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
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
능한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
은 금전적인 손실과 환자 가족들에게겐 고통을 가
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생명 연장 치료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요. 그렇다면 생명 연장 치료는 무엇일까요? 현
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가진 환자
가 사망에 임박했지만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 의
사가 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연장
치료의 중단은 의료계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3월 6일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에서 “생명인가, 죽을 권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안락사법안상정 논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 등의 보
조 수단 등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뇌사 상태의 환
자에게 적용하는 소극적 안락사에 관해 설명하면
서 방송에 보도된 담낭암 환자 김○○씨는 당초
중증질병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강조하는 취
재를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고인
이 된 환자가 마치 안락사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인 것처럼 보도 한 점, 환자와 가족들의 명
예와 인격을 훼손한 점을 깊이 사과드리는 바입
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의원부인이 받은 ‘명품 8중세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9일자 12면)

내 용 :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의 부인 신은경씨가 구청장 공천 희망자 측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해외 명품들이 화제다.

‘밍크털로 장식된 로베르토까발리 코트(650만 원 상당), 양주 루이13세(300만 원), 샤넬 핸드백(230만 원), 테두리가 밍크로 된 세이블 캐시미어 숄(100만 원), 발렌티노 숄(30만 원), 발렌티노 스카프(50만 원), 구찌 머플러(40만 원), 페라가모 넥타이 2개(24만 원).’

이는 신씨가 올해 1월 4일 자신의 집 앞에서 성 OO 전 서울 중구청장의 부인 박모 씨의 인척 장모(58·여·구속) 씨에게서 한꺼번에 받은 명품 8종류의 목록이다. 검찰이 16일 장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목록이 들어 있다. 일반인에게 는 이름조차 생소한 물건들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宋鑾燁)는 “신씨가 받은 8종류의 명품은 모두 1,424만 원어치”라며 “신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체리 1상자도 ‘덤’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장씨는 명품을 건넨 이들 뒤 강남구 압구정동 모 일식당에서 박 의원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미화 21만 달러(약 2억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식사를 마친 뒤 식당 주차장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21만 달러가 든 쇼핑백을 신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을 박 의원도 보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씨는 다음날 이 돈을 장씨에게 돌려줬다.

장씨는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신씨가) 돈이 적어 돌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사흘 뒤 신씨를 다시 만나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도 주려고 했지만 신씨가 ‘현금이 좋다’고 해 3억 원을 준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씨는 “실제로 3억 원을 건네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19일자 12면 『의원부인이 받은 ‘명품 8중세트’』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박성범의원 부인 신은경씨가 5·31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공천 청탁과 관련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외 명품들이 모두 8종으로 1,424만 원어치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검찰은 해당 물건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씨를 구속하여 조사 중이며 보도내용은 일방적으로 장씨가 주장하는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문으로, 상기물건은 박 의원 부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에 일방적으로 전달되었고, 이들에게 직접 반환이 불가능하여 지난 3월 중 한나라당 감찰단에 영치시켜 현재 검찰이 압류하였으며, 장씨가 전달했다는 이른바 선물은 실제가격이 크게 부풀려지고 매입영수증이 조작된 것으로 박 의원 부부는 이들에 대한 일체의 영득의사가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취 하

조선일보 : 『명품의 유혹』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9일자 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취 하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7일자
2면)

내 용 : 5월 19일자 15면 『신은경씨에 명품 세트
줬다』 기사에서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신
씨가 서울 중구청장 공천희망자 측 장모 씨에게서
공천청탁과 함께 8종의 해외 명품을 받았다는 내
용은 장씨의 구속영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영장 내용은 장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기사에 언급된 명품은 실제 물
건과 차이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박 의원 측은
“장씨는 박 의원 부부가 외출했을 때 물건을 집에
두고 갔으며, 박 의원 부부는 물건을 개봉하거나
일절 사용하지 않고 한나라당 클린센터에 보관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 “장씨가 21만 달러가 든 쇼
핑백을 선물로 가장해 건넬 때 박 의원 부부가 돈
인 줄 알고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박 의
원 부부는 21만 달러 일체를 그 다음날 즉시 장씨
에게 되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내용

중앙일보 : 『신은경<박성범 의원 부인> 씨에 명품
세트 줬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9일자 15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취 하

한겨레 : 『의원 부인 명품 밝혔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9일자 3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19일자 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보도내용

피신청인 주장

한국일보 : 『명품의 덫』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6서울조정192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경향신문 : 『“박성범 의원에 명품8종 선물”』 제하
의 기사 (2006년 5월 19일자 9면)

<2006서울조정1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취 하

국민일보 : 『여성 뇌물은 명품이 최고』 제하의 기
사 (2006년 5월 19일자 8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9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취 하

서울신문 : 『명품부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9
일자 8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X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세계일보 : 『명품 8종 뇌물세트』 제하의 기사 (2006
년 5월 19일자 7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본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추후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를 반
영하여 그 수사 결과에 따른 추후보도를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제1항에 따라 추후보도를 게재
한 경우, 신청인들은 2006년 5월 9일자 피신청인의
사회면에 게재된 신청인들과 관련된 기사(명품 8종
뇌물세트)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포기한다. □

문화관광부가 장·차관의 독일 방문시 대표팀 선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축구협회에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1

청 구 명 : 반론→정정청구

신 청 인 : 문화관광부 (장관 김 명 곤)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동아일보 : 『이참에 한건...황당한 태클』 제하의 기
사 (2006년 5월 19일자 1면)

내 용 : ‘장관과 차관이 월드컵 축구대회기간 중
독일 현지로 격려차 가는데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문화관광
부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고 당혹감을 느꼈다.

월드컵 대회가 시작되면 대표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불문율.

그러나 2006 독일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
하려는 정부 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
고 있다.

문화부는 물론 국정홍보처, 국가정보원 등이 월
드컵을 앞두고 자기 부처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
기 위해 축구협회에 각종 문의와 협조 공문을 쏟
아내고 있는 것.

문화부는 특히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 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재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
내달라고 축구협회에 요청해 대표팀 격려보다는
장차관 홍보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취재 기자단 명
단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수들을 최대
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격려 행사를 가질 예정
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5월 19일자 1면에 『이참에 한건...황당한 태클』 제목으로 문화부 장·차관이 독일로 격려차 가는데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축구협회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부 장·차관 독일 방문시 선수를 만나게 해 달라고 축구협회에 요청한 바 없으며,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대표팀 격려보다는 장·차관 홍보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취재진 명단을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본분관의 공식 요청에 의해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하였으며, 월드컵 취재 우리나라 기자단 간사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문화관광부 장·차관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1
청 구 명 : 반론→정정청구
신 청 인 :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대표자 장관 김 명 곤
조정대리인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아일보 1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대한축구협회에 어이없는 요구 쏟아져)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6.

<별 지>

- 제 목 : 언론중재위 조정결정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2006. 5. 19.자 기사에서,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대표팀 선수들과의 만남을 요청하거나 한국 취재진의 신상명세를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는 축구협회에 장·차관의 독일 방문시 선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고, 사실확인 결과 문화관광부의 취재진 신상명세 요청은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이 독일 지자체의 한국기자단 유치제외에 대한 입장을 문의해 왔기에 대한축구협회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월드컵 취재 기자단 간사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문화관광부가 딱지상품권을 묵인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문화관광부 (장관 김 명 곤)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1) 『문광부 근거없이 업체서 100억대 걷어』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1일자 22면)
내 용 : 경품상품권 발행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가 상품권업체로부터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걷는가

하면 딱지상품권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도 수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광부는 가맹점이 없어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용으로 쓰일 것이 예상되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정하고 최근까지 100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왔다. 사용처는 ‘게임물 등급심사’와 ‘성인 오락실 단속 비용’ 등이다.

게다가 민간 보증업체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기만 하면 경품상품권으로 지정해 준 것으로 드러나 ‘딱지상품권을 허가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11월부터 문광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에 공문을 보내 “미자격 상품권 발행업체라도 지급보증만 받으면 경품상품권 업체로 지정되는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2) 『불법 게임기 정부 심의 버젓이 통과』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6일자 22면)

경품제공 법정한도를 150배 초과한 오락기가 정부의 심사를 버젓이 통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지만 적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해당 게임기를 출시한 게임업체는 1년만에 3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등 대박을 떠뜨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내일신문은 지난 5월 11일자 『문광부 근거없이 업체서 100억대 걷어』 제하의 보도에서 “딱지 묵인 대가 100억원 걷었다. 문광부는 가맹점이 없어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용으로 쓰일 것이 예상되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정하고 최근까지 10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왔다”라고 보도하였으나, 문화부는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 이용문화 정착과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2002년도에 도입한 바 있고, 2005년 7월 경품용 상품권의 유통건전화를 도모하고 불법적인 환전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제도 관련 행정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불법 환전용으로

쓰일 것이 예상되는 딱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사·전산감리인 등 민간 외부전문가와 함께 지정요건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하여 지정하고 있고, 더욱이 경품용 상품권의 유통 건전화를 위한 표시장치 개발 등 대응책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한 임의적 행정사무의 경우, 제공한 행정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하는데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는 고시 및 운영지침 등 적법한 위임입법의 절차에 따른 것이며,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는 지정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지정받을 수 있는 임의적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딱지묵인 대가로 걷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 보증업체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기만 하면 경품상품권으로 지정해 준 것으로 드러나 딱지상품권을 허가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은 여러가지 지정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며, 지급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또한,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이외에도 상환실적이 있는 문화·관광 관련 가맹점을 최소 100개 이상 확보하고 상품권 관리를 위한 전자적 장비 및 관리시스템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도입 자체는 가맹점이 없어 환전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는 딱지상품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딱지상품권을 허가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11월부터 문광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에 공문을 보내 ‘미자격 상품권 발행업체라도 지급보증만 받으면 경품상품권 업체로 지정되는 현실’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지급보증은 지정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지급보증과 여타 지정요건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거쳐 지정하고 있고 또한, 가맹점 확보 여부, 무자격업체 또는 지정요건 미달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지정기관인 게임산업개발원의 업무이며, 지급보증기관은 해당업체의 신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

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법 게임기 정부 심의 버젓이 통과라고 보도하였으나,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법정 민간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영등위의 고유권한인 심의에 대해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게임기를 정부가 심의 통과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내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7일자 21면)

내 용 : 본지 5월 11일자 『문광부 근거없이 업체서 100억대 건어』 및 5월 16일자 ‘불법 게임기 정부 심의 버젓이 통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는 상품권의 유통 건전화와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급보증과 함께 문화·관광관련 가맹점을 최소 100개 이상 확보하고 상품권 관리를 위한 전자적 장비와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지급 보증기관은 지정요건의 하나인 해당업체의 신용여부를 판단하며, 지정요건 미달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업무인 점을 회신한 바 있으며, 보증기관의 정당한 제도개선 요구를 ‘묵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민간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영등위의 고유권한인 심의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없기에 불법 게임기를 정부가 심의 통과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의 집이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조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12면)

내 용 : <2006서울조정18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18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70년 지났어도 살기 좋으면 됐지”』

피신청인 주장

정정보도 내지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할 의사는 있지만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 □

신청인 위원회들이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송 하 중) 외 4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조선일보 : 『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7일자 34면)

내 용 : (전략) 최근 대한민국 법원은 몇몇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것은 보기보다 심각한 문제다. 법률가는 감정, 이념, 역사관, 정치색, 기타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인물이나 기관이 작성한 것이든 그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 즉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판결의 근거로 작용할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사법권의 중요한 역할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재판장 밖에서도 사태는 심각하다. 21세기 초엽의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설치 근거가 없는 각종 위원회들이 헌법과 국민생활 속으로 마구 침투하며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위원회 통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권력의 제도화’라는 입헌주의 헌정(憲政)의 기본 질서를 흔들면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손보고, 동북아시대위원회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의 국가운영 시스템을 무시하고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군 작전시설의 건설공사 중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등을 자체적으로 발표한다. 이 정책들의 소관부서이자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공식기구인 법무부, 외교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산업자원부는 위원회들이 발표한 정책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6년 4월 27일자 「아침논단」에서 『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 대통령직속인 각종 위원회들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하면서 주요 정책들을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위원회들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등 법령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교수·기업인·시민단체 및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채택된 정책들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정책기획위원회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위원장 송 하 중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위원장 윤 성 식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 종로구 적선동 122-1

위원장 성 경 릉

4. 동북아시대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위원장 이 수 훈

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서울 중구 남창동 51-1

위원장 이 해 동

위 신청인들의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 태 진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변호사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 2면에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아침논단'과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하되, 상자 기사 형태로 게재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1.

<별 지>

• 제 목 : '아침논단-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 관

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4월 27일자 「아침논단」에서 『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직속인 각종 위원회들이 법률의 근거 없이 설치되고, 감사원의 정기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그 외의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교수·기업인·시민단체 및 자치단체장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장관 등 정부위원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5·31 지방선거에 공천할 수 있는 시·구의원 절반 이상을 신청인의 보좌관·비서관으로 채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 진 화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지역구 절반을 보좌관·비서관 공천』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1일자 6면)

내 용 :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2004년 총선 때 서울 영등포갑에서 당선된 초선이다. 그의 지역구에서 5·31 지방선거에 공천할 수 있는 시·구 의원은 모두 10자리다.

고 의원은 이 중 절반을 자신의 보좌관, 비서관 출신으로 채웠다. 시·구의원 공천은 공천심사위에서 결정하나 지역구 의원의 의견이 거의 100% 반영된다.

이 지역에서 공천할 수 있는 시의원은 2명이다. 이 두자리는 모두 고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돌아갔다. 그 중 한 명은 얼마 전까지 보좌관으로 등록돼 있던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고 의원의 운동권 시절 '동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이들과 경합 끝에 낙천한 이들도 한 명은 보좌관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과거 고 의원의 홍보를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8명의 구 의원 공천자 중에는 고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전 비서관, 지구당에서 일했던 전 보좌관, 고 의원 비서관의 학교동창 등이 포함됐다.

이런 고 의원의 공천 행태를 비판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미루자 고 의원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왜 빨리 확정하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그 덕인지 고 의원의 '사천(私薦)'은 그대로 통과됐다. 중앙당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2) 『사과 상자 속 현금 다발과 맞바꾸는 공천』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2일자 31면)

(전략)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할 수 있는 시·구의원 열 자리 중 절반을 자신의 前 보좌관 2명, 운전기사로 일했던 前 비서, 운동권 시절 ‘동지’, 자기 비서의 동창으로 채웠다. 조선인 고 의원은 스스로 당내 개혁세력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해 왔고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의 도덕성 경쟁에서 완패했다.”고도 했다. 우리 정치판에서 ‘도덕성’ 이니 ‘개혁세력’ 이니 하는 말이 얼마나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6년 4월 21일자 6면에 『지역구 절반을 보좌관·비서 공천』이라는 기사 및 4월 22일자 사설에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공천할 수 있는 시·구의원 후보는 모두 10명인데, 고진화 의원은 그 중 절반을 자신의 보좌관, 비서 출신으로 채웠고, 그 과정에서 고 의원의 공천 행태를 비판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미루자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왜 빨리 확정하지 않느냐”며 항의하여 공천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영등포갑 선거구에서 공천된 한나라당 시·구의원 후보 중 고 의원의 보좌관 또는 비서 출신은 모두 4명이고,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시·구의원 공천은 한나라당 서울시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것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 없으며, 위 공천자들은 개인적으로 공천신청을 하여 공천심사위원회의 공

정한 심사 결과 공천자로 최종 결정되었을 뿐 고 의원이 공천 과정에 특정인을 추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고, 의원총회에서 “왜 빨리 확정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지역구 절반을 보좌관·비서 공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6년 4월 21일자 “영등포갑 고진화 의원 지역구 절반을 보좌관·비서 공천” 기사 및 4월 22일자 관련사설과 관련 고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공천된 한나라당 시·구의원 후보 중 고 의원의 보좌관·비서 출신은 4명이고,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시·구의원 공천은 한나라당 서울시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것이고, 고 의원 개인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특정인이 공천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6년 6월 9일까지 6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게재된 지면의 기사 부제목 ‘영등포갑 고진화 위원’과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3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을 비만체형 독자 대표로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과 신체 사이즈 및 신상정보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싱글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싱글즈 : 『정말 살찌는 체질은 따로 있는 걸까?』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호)

내 용 :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를 달고 사는 사람의 식단을 살펴보면 열이면 아홉은 매끼 고칼로리의 식사를 한다. 아니 뎌 굴뚝에 연기는 안 난다. 먹었기에 찼던 거지. 절대 당신 부모님의 탓이 아니었던 것이다.

유전적인 요소로 인해 원래 살찌는 체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 비율은 정말 낮다. 결국 살이 찌고 안 찌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 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살이 찼던 사람은 그만큼 많이 먹는다. 또한 고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고,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많이 먹는 사람은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단지 하루에 필요한 열량에서 초과된 부분만 연소될 뿐이다. 그러므로 살이 빠지길 원한다면, 반드시 식사량을 줄이자.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잡지는 지난 5월호에 『정말 살찌는 체질은 따로 있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독자모델 황○○ 씨의 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사전 약속을 어기고 게재하였으며, 참고자료인 식단마저 기자의 의도대로 과장되게 임의 수정하여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사 작성자인 윤○○ 기자는 황○○ 씨가 기사를 보고 느꼈을 모멸감 및 수치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는 본인의 기사를 위해 정보를 조작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및 사과문
- 본 문 : 본지 2006년 5월호 『정말 살찌는 체질은 따로 있는 걸까?』 제하의 기사에서 독자모델 황○○ 씨의 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하였으며, 참고자료인 황○○ 씨의 식단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황○○ 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싱글즈 2006년 7월호 15면~35면 사이의 ‘애독자발언대’란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중의 “표준체형 독자 대표” 활자와 동일한 활자로, 본문은 동기 기사 내용 중 “난 물만 먹어도 살이~부모님의 탓이 아니었던 것이다.”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6월 15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싱글즈 : 『정정보도 및 사과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호 24면)

내 용 : <싱글즈> 2006년 5월호 ‘정말 살찌는 체질은 따로 있는 걸까’라는 기사에서 독자 모델 황○○ 씨의 몸무게 등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하였으며, 참고 자료인 황○○ 씨의 식단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황○○ 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2
처리결과 : 취 하

월 18일 21:00)
내 용 : <2006서울조정192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5월 18일 21:00)
〈2006서울조정1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댄스경연대회에서 춤추는 장면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스포츠서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2
처리결과 : 합 의

스포츠서울21은 2006년 5월 22일자 연예면에서 댄스 배틀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옷을 훨훨 벗어던지고’, ‘비키니 속옷 차림으로’ 라고 표현해 신청인의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7,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스포츠서울 : 『비키니 댄스여왕』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2일자 22면)
내 용 : ‘미미’ 라는 예명의 참가자는 옷을 훨훨 벗어던지고 비키니 속옷차림으로 관객을 압도했다. 과감한 노출 덕분인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져 이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6월 30일까지 700,000원을 지급한다.
-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06. 6. 8. ☐

신청인이 민사 분쟁 상대방인 공무원에 대한 음해성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경기도민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기도민일보 : 『민사 분쟁 상대방 공무원에 음해성 문자』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15면)

내 용 : 인천강화경찰서는 2일 민사 분쟁 중인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 상대방이 근무하는 군청 홈페이지 등에 음해성 글을 게재한 조모(34)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05년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민사소송 중인 A모(39)씨가 공무원인 것을 알고 강화군청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에 음주운전한 전력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수십 회 전송한 혐의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본지는 5월 3일자 15면 『민사 분쟁 상대방 공무원에 음해성 문자』 제하의 기사에서 조모 씨가 민사 분쟁 중인 상대방의 공무원 신분을 악용하여 군청 홈페이지에 음해성 글을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 조사내용에 음해성 글을 게재하였다는 내용과 음주전력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은 없으며,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 정통방법 위반으로 송치된

것으로 밝혀져 이에 정정보도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2006. 5. 3자 15면 『민사 분쟁 상대방 공무원에 음해성 문자』 제하의 기사에서 조모(34) 씨가 민사소송 중인 공무원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음주 운전한 전력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수십 회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모 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도민일보에 2006년 6월 9일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인천 강화署, 30대 입건)으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도민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9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채우는 것을 반대한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3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KBS-2TV : 「KBS뉴스타임」 프로그램 (2006년 2월 22일 08:00)

내 용 : ▷앵커 : 여자 초등학교 살해사건에 이어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가 성 범죄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지금 바빠졌는데요.

이참에 성 범죄자를 추적하는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조치까지 마련돼야 한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 기자! 아무래도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죠?

▷기자 : 네, 아동 성추행 범죄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추행 범죄는 신체에 해악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에 비견될 만한 범죄라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목소립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전 같으면 범죄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거론되지 못했던 파격적인 대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앞다퉈 내놓고 있는 사회악 근절 대책들을 취재했습니다.

▷시민 : “매장시켜야 한다! 광화문에 세워 놓고 사람들이 혼내줘야 한다. 이런 범죄자에게 인권은 1%도 고려하면 안된다.” (중략)

▷기자 : 정치권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우선 전자 팔찌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데요.

상습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서 출소 후에도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것. 이는 이미 지난해 4월 한나라당에 의해 법안이 발의돼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내용입니다.

▷진수희(한나라당 의원/지난해 4월) : “성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처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하지만 당시 국가 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열린 우리당 일부 의원 등이 가해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죠.

▷오○○(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지난해 4월 한두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낙인찍는 건데... 이건 완전히 현대판 주홍 글씨다... 파시즘적 발상이다.”

▷기자 : 이에 법안 처리도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는데요.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법안만 실시됐어도 이번 용산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며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피신청인은 2006년 2월 22일 오전 8시 KBS-2TV

「KBS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성추행범에 전자팔찌? 화학적거세?”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위 문제에 관하여 2005년 4월에 피신청인 소속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편집·방영함으로써, 위 보도를 접한 사람들에게 마치 신청인이 피해자 인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해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네티즌들로부터 이른바 ‘악플’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법한 보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조정대리인 ○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돈을 2006년 6월 20일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2006년 6월 21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1.

□

신청인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 PR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0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전자상가 찾아가서 작동해보고 사세요』 제하의 보도사진 (2006년 3월 22일자 17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매일경제는 2006년 3월 22일 『전자상가 찾아가서 작동해보고 사세요』 제하의 기사에 신청인의 작품 활동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는데 이것은 저작권자인 신청인의 허락도 없었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저작권법 침해행위이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상의 피해까지 입고 있으므로 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6월 15일까지 금 600,000원을 지급한다.
-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매일경제 섹션(틴매일경제)에 신청인의 캐릭터(‘더 잭’) 문화상품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되, 그 크기는 원 보도기사와 비슷하게 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더 잭(the Jack)’ 단어, 캐릭터 사진, 신청인의 현재까지 예술활동이 캐릭터산업에 이바지한 점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애꾸눈으로 외계인과 대결』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1일자 17면)

내 용 : 종긋 세운 귀, 그 중 한쪽에는 껌맨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눈 한쪽을 완전히 가려 약간 무섭게도 보이는데 전생에 무술을 연마하다가 생긴 상처 자국이란단.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무섭다기보다는 귀엽다. 입술을 오므리고 있는 토끼 같은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두 번 환생해 외계인을 물리친 뒤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 약자들을 도우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이 캐릭터의 이름은 ‘더잭(The Jack)’이다.

블로그를 통해 이름을 알린 뒤 지금은 대학로에서 갤러리 전시와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그리고 세계 각지를 돌면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후략) □

학자금 대출을 실시할 때 신용상태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진 표)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대출 학자금 떼어먹지 못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6일자 12면)

내 용 :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대출금을 효과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5일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고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추후 기업체에 취직했을 때 이 기업체에 학자금 대출 사실을 통보하고 월 급여에서 대출 상환금을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이 대출을 다른 채무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략)

공사가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을 실시할때 신용상태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은행이 예전부터 실시해온 학자금 대출은 2006년 3월 현재 연체율이 2.15%에 달해 일반 가계 대출 연체율 1.65%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학생들은 신용상태 파악이 어려운 데다 학자금 대출이 신용대출이어서 대출 상환 규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추후 부실화로 이어지고, 이 경우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2학기부터 실시됐으며 현재까지 1조 5,000억 원이 대출된 상태다. 금리는 연 7.1%가 적용되며 학생들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거나 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이 대출금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반론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지가 지난 4월 26일 『대출 학자금 때어먹지 못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학자금대출은 지난해 2학기부터 실시됐으며 현재까지 1조 5000억원이 대출된 상태다. 금리는 연 7.1%가 적용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대출액은 1조 3,554억 원이 대출되었으며, 금리는 7.05%(06년1학기)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공사가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을 실시할 때 신용상태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은행이 예전부터 실시해온 학자금대출은 2006년 3월 현재 연체율이 2.15%에 달해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 1.65%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자금대출을 실시할 때 학생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연체정보를 통해 신용상태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심사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이 예전부터 실시해온 학자금대출은 대출자 선정이 은행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대출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2006년 3월말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0.9%로 국민은행에서 취급한 이차보전 학자금대출의 연체율 2.15%나 일반가계 대출 연체율 1.65%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매일경제 :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4일자 12면)

내 용 : 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 제도의 학생신용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득이나 직업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생의 금융거래정보, 학교정보 등을 사용해 개발한 것으로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나쁘게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자금 대출을 실시할

때 학생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연체정보를 통해 신용 상태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실시해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2학기부

터 2006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은 총 1조 3,554억 원이 이뤄졌다. 금리는 연 7.05%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0.9%다. □

신청인이 시의원 선거사무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수도권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수도권일보 : 『선거사무실 폭력으로 얼룩』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4일자 정치경제면)

내 용 : 공명식 남양주 시의원 선거사무실에 부녀자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공의원 선거 사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경 광전리 소각잔재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의 여자 4명이 공의원의 선거사무실에 침입, 홍보물 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 부녀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온갖 추태를 부리며 시비를 걸더니 잠시 후 남녀 20~30명이 몰려와 매립장 반대운동에 불참하냐고 항의하며 선거용 홍보물을 찢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침입할 때부터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됐

으며 1시간 가량 후 투쟁위원들은 매립장에서 사용하던 방송차량의 짐을 내린 뒤 M 정당 K 후보 사무실로 발길을 옮겼다는 것.

이는 상대 후보측의 비방, 흑색선전등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자정넘어 복면을 쓴 괴청년 15명 가량이 공명식 시의원 선거사무실에 몰려와 계란을 투척하고 건물외벽에 설치한 플래카드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5월 14일자 정치경제면 『선거사무실 폭력으로 얼룩』 제하의 기사에서 광전리 소각잔재 매립장 반대투쟁위원 여자 4명이 남양주 시의원 선거사무실에 침입하여 홍보물 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 부녀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시비를 걸더니 잠시 후 20~30명이 몰려와 매립장 반대 운동에 불참하냐고 항의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부녀자들은 집회 후 비를 피하기 위해 시의원의 사무실에 들렀던 것이며,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은 아르바이트 부녀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정부내 갈등관리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통령비서실 (실장 이 병 완)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정부내 갈등관리시스템 부재』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8일자 1면)

내 용 :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경찰의 행정대집행(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은 참여정부 갈등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주민들과 꾸준히 대화했다’고 강조했지만 200여 명의 부상자와 60여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동안의 대화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반증한다.

참여정부는 초기 갈등관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갈등관리체제로 재편, 중요한 갈등에 대한 책임관리를 시도했지만 적어도 평택문제만큼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중순 이후 평택문제에 대한 갈등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최근에는 정부도 참을만큼 참았다는 기류가 대세였다”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청와대 인사가 ‘제 식구 챙기기’식으로 흐르면서 갈등관리 자체가 부차적으로 됐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6년 5월 8일자 『정부내 갈등관리시스템 부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갈등관리의 제도화와 책임 관리를 표방해왔지만, 최근 평택 사태와 관련하여 주민의 정확한 요구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갈등예방에 실패하였고, 지난해 중순 이후 문제해결을 사실상 포기해왔다면 이는 집권 후반기 청와대 인사가 ‘제 식구 챙기기’식으로 흐르면서 갈등관리 자체가 부차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그동안 정부가 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통하여 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과 150여 차례 이상 간담회 등을 열고, 시민사회수석 등도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가지는 등 꾸준한 대화와 갈등해결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특별법 제정, 양도세 적용 완화, 150만평 대토 제공, 대양학원과 임차농의 40년 분쟁 해결, 300억 주민지원기금 신설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고, 지난해 중순 이후에도 2005년 6월부터 시작된 협의매수의 비율을 다른 공공사업의 평균을 상회하는 79%까지 이끌어 냈고, 7월에 대토 제공 방침을 확정하고, 11월에 대양학원과 임차농의 분쟁을 해결하고, 7월 이강철 수석의 면담, 11월 황인성 수석의 면담 등 갈등관리를 계속 진행시켜왔으며, 시민사회수석 교체 등 청와대 인사가 갈등관리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내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7일자 2면)

내 용 : 본지는 2006년 5월 8일 『정부내 갈등관리시스템 부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평택 사태와 관련 ‘주민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갈등 예방에 실패했고, 지난해 중순 이후 문제해결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부가 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통하여 주민, 시민단체 등과 150여 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수석 등도 여러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꾸준한 대화와 갈등해결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특별법 제정, 양도세 적용 완화, 150만평 대토제공, 대양학원과 임차농의 40년 분쟁해결, 300억 주민지원기금 신설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지난해 중순이후에도 2005년 6월부터 시작된 협의매수의 비율을 다른 공공사업의 평균을 상회하는 79%까지 이뤄냈고, 7월에 대토 제공방침을 확정하고, 11월에 대양학원과 임차농의 분쟁을 해결하고, 7월 이강철 수석의 면담, 11월 황인성 수석의 면담 등 갈등관리를 계속 진행시켜왔으며, 시민사회수석 교체 등 청와대의 인사가 갈등관리에 미친 영향은 없다.’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수립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사무처장 송 민 순)
피신청인 : 주간동아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주간동아 : 『참여정부 위기관리시스템 구멍 송송』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6일자 26~
28면)

내 용 : (전략) 정부는 2004년 6월 행정자치부의
소방국과 민방위 재난통제본부, 방재관실 등을 별
도로 분리해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해 11월 270여 개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수립했다. 매뉴얼을 만
든 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

NSC는 “실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부 각 부처
와 기관이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동절차와 조
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상
황 예문, 보고·전파 양식, 대국민 발표문 등 각종
현황과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NSC는 이어 매뉴얼 수립 배경에 대해 “피해가
날로 대형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위기의 특성을 고
려할 때 모든 위기 유형에 대해 사전에 대응책을
강구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NSC의 기획·조정 아래 39개 정부기관이 공동
작성한 참여정부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문
가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소방방재청이 기
대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SC의
위기대응 매뉴얼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위
기관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허점투성’이라는 것.

용인대 김○○ 교수(경호학과)는 “화재와 일부

인적 재난 및 테러는 소방방재청, 가스와 원자력은
산업자원부, 산업현장의 인적 재난은 노동부, 각종
시설물은 건설교통부 등 재난 형태에 따라 소관
부처가 전혀 다르다”면서 “해당 부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복합성 재난이 일어날
경우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
했다.

일례로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대규모 폭력시위
가 벌어질 경우 소관 부처는 과연 어디일까. 외국
인 노동자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법무부와 노
동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많
지만 현 정부의 시스템상 주도적으로 사태를 수습
할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
다. 사후 수습 단계가 이런 상황인데 사전 예방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을 리는 만무하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 재난에 대해서는 완전 무방비 상
태”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방방재청의 역할
도 기대 이하다. (중략)

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NSC의 위기대응 매뉴얼
은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포함됐을 때 일정한 지역에 ‘소개령(疏開
令)’을 내려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원론적
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경찰과 군 병력이 언제 어떻게 동원
되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결과적으로 아무도 없는 텅 빈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조차 고민
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지
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주 방위군을 투입해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치
안을 유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태풍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단지 복구 지원만을 위해 군을 투입해왔
다. (중략)

한림대 왕○○ 교수(응급의학과)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무사 안일한 행태를 비판했다.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일일 것이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처럼 기계적인 접근에는 문제가 있다. 위기나 재난은 결코 매뉴얼에 정리돼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왕 교수는 “해당 부처에 매뉴얼을 대입시켜 끊임없이 훈련해야 조금이나마 매뉴얼을 만든 의미라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6년 5월 16일자 제535호에서 『참여정부 위기관리시스템 구명 승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센터가 지난해 11월 250여 개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수립했으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위기관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허점투성이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 집단 폭력시위 등 복합성 재난이 일어날 경우 혼란이 생기고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소지가 큼에도 주도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2)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 재난에 대해서는 완전 무방비 상태이며,

(3)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포함되었을 때 일정한 지역에 소개령을 내려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치안유지 등을 위하여 경찰과 군 병력이 언제 어떻게 동원되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단지 피해복구 지원만을 위해 군을 투입할 뿐이고,

(4) 해당부서에 매뉴얼을 대입시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함에도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폭력시위 같은 소요 또는 폭동 등에 대비하여 ‘소요·폭동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인 경찰청을

비롯하여 NSC,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방부, 법무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기무사,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각 정부기관별로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2) 미래형 위기에 대하여도 ‘남북 교류·협력 관계 발전에 따른 각종 우발사태’, ‘고속철도 대형사고’, ‘신종 전염병 발생·확산’,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기’, ‘대규모 사이버 침해’ 등에 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고,

(3) 태풍 등 풍수해에 관하여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주민 대피 이외에도 예방, 위기, 대응, 복구 등의 각 단계에 따라 각 기관별로 책임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실무매뉴얼’은 풍수해 위기수준에 따라 재난대책본부 및 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12개의 탐색구조부대, 8개의 재난구조부대를 편성·대기시켜 자치단체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지역으로 출동하여 긴급 대피활동 및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활동 및 피해복구 지원, 이재민 구호지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재해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절도, 약탈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4) ‘국가 위기대응 통합연습 기본기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뉴얼에 따른 통합연습을 실시하도록 하여, 2006년 5월까지 6개 위기유형의 통합연습이 실시되었고, 올해 말까지 총 14개 유형의 통합연습이 추가 실시될 예정이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2006년 5월 16일자 『참여정부 위기관리시스템 구명 승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1) 본보는 ‘위기대응 매뉴얼’이 미래형 위기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라고 보도하였으나, ‘남북 교류·협력 관계 발전에 따른 각종 우발사태’, ‘고속철도 대형사고’, ‘신종 전염병 발생·확산’,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기’, ‘대규모 사이버

침해' 등에 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고,

(2) 해당부서에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국가 위기대응 통합연습 기본기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뉴얼에 따른 통합연습을 실시하도록 하여, 2006년 5월까지 6개 위기유형의 통합연습이 실시되었고, 올해 말까지 총 14개 유형의 통합연습이 추가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NSC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폭력시위 같은 소요 또는 폭동 등에 대비하여 '소요·폭동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인 경찰청을 비롯하여 NSC,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방부, 법무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기무사,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각 정부기관별로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2) 태풍 등 풍수해에 관하여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주민 대피 이외에도 예방, 위기, 대응, 복구 등의 각 단계에 따라 각 기관별로 책임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실무매뉴얼'은 풍수해 위기수준에 따라 재난대책본

부 및 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12개의 탐색구조부대, 8개의 재난구조부대를 편성·대기시켜 자치단체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지역으로 출동하여 긴급 대피활동 및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활동 및 피해복구 지원, 이재민 구호지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재해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절도, 약탈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6월 1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동아에 상자기사로 30쪽 이내의 적절한 위치(광고부분 제외)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부제목('실무매뉴얼'은 서랍속에서 쿵쿵... 신종 재난 뎀 책임 소재도 불분명)의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 본문의 크기로 한다.

• 위 1,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간동아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2006년 6월 20일자 2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부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성 범,

2. 신 은 경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라인」 프로그램 (2006년 5월 18일 23:00)

내 용 : <2006서울조정1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1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의 동생이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TJB-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TJB-TV : (1) 「TJB종합뉴스」 프로그램 (2006년 5월 14일 20:25)

내 용 : ▷앵커 : 생활고를 겪어오던 30대가 어린 세 딸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또, 천안에서는 딸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논산시 관촉동의 한 원룸 주택,

어제 오후 4시쯤 이곳에 사는 34살 김모 씨가 세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집안에 있던 6살과 5살, 3살박이 딸들에게 먼저 농약을 먹이고, 자신도 곧바로 농약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현장을 발견한 가족들의 신고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아버지와 막내 딸은 중태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고 최근에는 아내가 가출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가족 : 8, 9일 지났다 집나간지...

일 마치고 아내 찾으러 돌아다니다 못찾으니깐 애들하고 죽는다고...

▷기자 : 경찰은 아버지 김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세 딸과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TJB아침뉴스」 프로그램 (2006년 5월 15일 06:30)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TJB-TV는 2006년 5월 14일 「TJB종합뉴스」 프로그램과 15일 「TJB아침뉴스」 프로그램에서 생활고를 겪어오던 30대가 어린 세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없이 인터뷰 장면을 보도하였습니다. 신청인에게 사건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방송에 보도된다는 말도 없었고,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아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조카들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송보도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보도와 관련한 모든 청구 (손해배상 포함)를 포기한다. □

국세청이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특별조사로 전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세청 (청장 이 주 성)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6.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두산 특별 세무조사』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7일자 1면)

내용 : 국세청이 두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특별조사로 전환하고, 금감원이 최근 두산산업개발의 2,800억 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특별감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오너전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한 다음에 이뤄진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형제의 난’ 관련 검찰 조사 직후 두산그룹 10 여개 계열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 조사를 특별조사로 전환했으며, 조사 기간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국세청은 검찰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두산그룹의 추가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특별조사는 주로 검찰의 고발 조치에 따라 실시되며, 통상 회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사의 지난 2월 27일 1면 『두산 특별 세무조사』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종전 “특별세무조사”를 2003년 5월, 이미 폐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청 특별조사가 주로 검찰의 고발조치에 따라 실시되고 통상 회사경영진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이뤄진다는거나, 국세청이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특별세무조

사로 전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는 특정인의 발언이나 언론보도와는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어 그로 인해 조사중인 사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세금탈루혐의 포착이나 조사기간 연장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세무조사 집행과정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관련 언급 다음에 국세청이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특별조사로 전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 2. 27.자 기사에서, 국세청이 두산그룹에 대해 정기조사를 돌연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로 일컬어지던 유형의 세무조사는 이미 폐지되었고, 세무조사가 특정인의 발언 등에 따라 조사내용이나 과정이 변경되지 않으며, 조사기간연장은 통상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6월 9일까지(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본문보다 한단 큰 글자 크기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보도 본문의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주한미군인 신청인들이 시민을 폭행한 후 택시에 시민을 매단 채 달아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01000 41000 외 3인
피신청인 : KBS-1TV

증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9.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4월 15일 21:00)

내 용 : ▷앵커 : 술에 취한 미군이 또 사고를 났습니다.

빼앗은 택시에 시민들을 매단 채 내달렸습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술에 취한 미군 4명과 19살 이모 씨 사이에 말다툼이 붙은 것은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몸을 부딪친다며 시작된 말싸움은 주먹다짐으로 이어졌고 행인 20여 명이 몰려들자 당황한 미군들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화가 난 이씨와 행인 박씨가 택시에 매달려 막 아셨지만 술에 취한 미군들이 택시를 빼앗아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목격자) : “미군이 한국 사람을 때리더니 택시를 잡아타고...”

▷기자 : 이씨와 박씨는 차량 뒷문에 매달려 20미터나 끌려갔습니다.

이씨는 다리와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미군들의 도주는 2킬로미터나 이어졌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경찰이 공포탄을 쏘며 앞을 가로막으면서 2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미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 면허 취소 수칩니다.

경찰은 입건한 미군 4명을 미헌병대에 넘기고 함께 싸움을 벌인 이씨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15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미군, 택시 빼앗아 시민 매달고 도주’ 제목으로 시민과 술에 취한 미군 4명이 몸을 부딪친다며 말싸움 도중 주먹다짐이 벌어졌고, 미군 4명이 택시를 빼앗아 시민을 매단 채 내달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시민이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미군이 쳐다보자 시민들이 파이프 등으로 집단폭행을 하였고 이에 미군들이 폭행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운전기사가 내린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내려진 택시창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달려들어 미군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KBS는 지난 4월 15일 「KBS뉴스9」에서 ‘미군, 택시 빼앗아 시민 매달고 도주’라는 제목으로 미군들이 택시를 빼앗아 시민을 매단 채 내달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미군측은 미군들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택시를 탔으나 운전기사가 내려버려 택시를 운전하고 간 것이고, 자신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씨 등이 택시창문을 통해 자신들을 잡고 놓지 않아 택시에 매달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6월 18일까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KBS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TV비평 시청자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6월 10일 1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주한미군인 신청인들이 시민을 폭행한 후 택시에 시민을 매단 채 달아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ㄱ000 ㄴ000 외 3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9.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4월 15일 21:00)

내 용 : <2006서울조정2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2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2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MBC는 지난 4월 15일자 9시 「MBC뉴스데스크」에서 '택시에 매달고 질주' 제목으로 ㄴ000 일병 등 미군 4명이 시민을 택시에 매달고 수십미터를 달아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측은 자신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씨 등이 택시창문을 통해 자신들을 잡고 놓지 않아 택시에 매달리게 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6월 15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피신청인이 17시에 방송하는 MBC-TV '저녁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MBC뉴스」 프로그램 (2006년 6월 8일 17: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주한미군인 신청인들이 시민을 폭행한 후 택시에 시민을 매단 채 달아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ㄱ000 ㄴ000 외 3인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9.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Y T N :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2006년 4월 15일 14:00)

내 용 : <2006서울조정2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2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2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YTN은 지난 4월 15일 「뉴스와이드」에서 ‘술취한 미군, 시민 폭행 후 택시 훔쳐 달아나다 잡혀’ 라는 제목으로 미군들이 택시를 빼앗아

시민을 매단 채 내달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병사들은 이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싸우던 중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택시를 탔으나 운전기사가 내려버려 택시를 운전하고 간 것이고, 자신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씨 등이 택시창문을 통해 자신들을 잡고 놓지 않아 택시에 매달리게 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6월 10일 피신청인이 오후 2시에 방송하는 YTN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Y T N :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2006년 6월 10일 14: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농림부가 농업계와 사전협의 없이 공매자격을 완화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세계일보 : 『“정부가 쌀시장 교란 앞장” 농민 반발』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5일자 14면)
내 용 : (전략)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쌀을 보관, 관리하는 데만 연간 300억 원 이상이 들 전망이어서 재고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수입쌀 공매규정 완화 조치 등을 통해 수입쌀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통공사는 지난 9일 밥쌀용 수입쌀의 낙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판용 수입미곡 공매입찰 참가자격 완화 공고’를 통해 ▲연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농수산물 도소매업체, 대형식당의 참가 허용 ▲중도매인 매출액 제한 삭제 ▲공매횟수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등 입찰참가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최저 낙찰가도 국내 쌀의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밥쌀용 수입쌀 공매자격을 갖춘 업체 수는 기존 90여 개에서 240여 개로 대폭 늘어났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협의도 없이 공매 완화 조치를 했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수입쌀 공매 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쌀 원산지 위조를 많이 하는 영세상인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수입쌀 부정유통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한다.

전농과 한농연 등 농업인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

서를 내고 “정부가 수입쌀 공매 확대에 앞서 부정 유통 방지대책을 먼저 내놓는게 순서”라며 “농림부가 농업인들과 협의도 없이 공매 참가자격을 완화해 대책 없이 시중에 풀릴 경우 수입쌀의 국산 둔갑을 부채질하고 국내산 쌀 값을 폭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 2006년 5월 25일자 14면에 『“정부가 쌀시장 교란 앞장” 농민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입쌀 공매 확대문제를 보도하면서 농림부가 연간 3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수입쌀 재고관리 비용 때문에 농업계 협의도 없이 공매자격을 완화하였고, 부정유통방지 대책에 속수무책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공매참가업체 자격완화 조치에 대하여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 유통시켜야 하는 쌀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한편, 10년간의 관세와 유예기간 동안 수입쌀이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향후 관세화

이후에 올바른 대응을 통한 우리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시판용 수입쌀의 연간 보관·관리비용은 5억 5천만원 정도(추정)라고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공매완화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농림부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매자격 완화에 대한 논의와 공개과정을 거쳤다고 밝혀왔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수입쌀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양곡관리법 개정, 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왔으나, 일부 사례만을 부각·보도하여 국민들에게 마치 정부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진실과 다르게 보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농림부 관료가 확인해 준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이며, 조정 대상 기사의 하단에 농림부 당국자와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찬반 주장을 실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할 의사가 없다. □

신청인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흥기를 휘두른 지씨의 취직을 알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교 흥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지씨, 與의원 사무실에 취업 청탁』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4일자 1면)

내 용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흥기를 휘두른 지○○(50) 씨가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

하고, 열린우리당 의원 측을 찾아다니며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지씨는 열린우리당 김교흥(인천 서-강화 갑)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2차례 찾아가 “내야 할 벌금이 많은데 돈을 벌 수 있도록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진명제 보좌관은 “지씨에게 ‘알아보겠다’ 고만 말했다”면서 “이후 지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인천의 한 구의회 의원은 이날 “보름 전 지씨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A, B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명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뒤를 봐줘 정수기업체인 C사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후략)

(2) 『지씨 친구 “지씨 지인들에게 용돈 얻어 생활”』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4일자 3면)

(전략)

그는 “‘휴대전화 이용 요금을 내지 못해 정지를 당했는데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돈을 얻어 다시 개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지씨로부터 ‘국회의원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씨는 오랜기간 수감생활을 한 탓에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정치인들을 민원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씨가 정수기 회사에 취직한 뒤 전화를 걸어 곧 부장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자랑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정수기 판매 교육을 받았았을 뿐”이라며 “정수기 회사에서 100만 원이 넘는 정수기를 구입해야 수당을 지급하고 정식사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뒀다고 얘기했다”고 말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5월 24일 1면, 3면 『지씨, 興의원 사무실에 취업 청탁』, 『지씨 친구 “지씨 지인들에게 용돈 얻어 생활”』 제하의 기사에서 김교홍 여당위원이 지씨의 취업을 알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김교홍 의원은 취직을 알선한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지씨의 취업알선을 부인하는 신청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기 때문에 정정 또는 반론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직에서 부당 해고된 신청인이 임기만료로 사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재외동포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30.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재외동포신문 : 『본지 인사발령』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7일자 1면)

내 용 : 재외동포신문 김○○ 이사는 주총결과에 따라 2006년 4월 4일로부터 임기만료되어 사임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재외동포신문은 2006년 4월 17일 1면에 『본지 인

사발령』 제목의 기사로 “재외동포신문 김○○ 이사는 주총 결과에 따라 2006년 4월4일부로 임기만료되어 사임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사임한 바 없고, 재외동포신문 이사겸 편집국장으로서 이사직은 임기만료되었다해도 이를 계기로 편집국장직을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당해고소송을 5월 16일자로 제기한 상태이므로 편집국장직을 사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재외동포신문

서울 종로구 권농동 128

대표이사 이 형 모

조정대리인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별지 기재 보도문을 <재외동포신문> 6월 30일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제목(본지 인사발령)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8.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 4월 17일자 1면 『본지 인사발령』 기사와 관련, 김○○ 이사가 스스로 사임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 잡습니다.
- 위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

입니다.

법원화해결정 후 보도문

재외동포신문 :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0~19일자 1면)

내 용 : 본지는 2006년 4월 17일 1면에 『본지 인사발령』이라는 제목의 공고기사로 “재외동포신문 김○○ 이사는 주총결과에 따라 2006년 4월 4일부로 임기 만료되어 사임했습니다”라고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임은 ‘임무를 내어놓음’이라는 뜻인데 김○○ 씨는 그렇게 한 바가 없고 경영진에 의해 부당해고 당해 편집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사 겸 편집국장으로서 이 사직은 임기만료되었다 해도 이를 기회로 편집국장직을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편집국장 부당해고소송을 5월 16일자로 법정에 냈습니다.

그러므로 김○○ 씨가 사임했다는 4월 17일자 기사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반미이념 투쟁차원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

법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문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평택 범대위가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8일자 35면)

내 용 : 2002년 효순·미선양이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숨진 사건은 이 땅에 반미운동을 상시화·전국화·조직화하는 계기였다. 바로 이 효순·미선양 사건의 전위로 나섰던 ‘여중생 범대위’ 소속단체 52개 중 33개가 평택 미군기지 범대위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소요가 현지 농민의 농지 경작권과 무관한 반미 이념투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중략)

평택 범대위 홈페이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썼다. 그들이 지금 안전부절 못하고 몸 달아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위라는 뜻이다. 몸만 대한민국 영토를 딛고 있을 뿐 그들의 마음속 조국은 따로 있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5월 18일자 35면 『평택 범대위가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제하의 사실에서 2002년 결성된 ‘미군장갑차 여중생 故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 국민대책위원회’에 속한 단체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도 속해 있다는 사실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현지 농민 농지 경작권과 무관한 반미이념 투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고, 또한 평택 범대위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몸 달아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위이며 몸만 대한민국 영토를 딛고 있을 뿐 그들의 마음속 조국은 따로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요구했던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두 범대위에 함께 속한 단체가 많다는 사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운동이 평택 주민과 무관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평택 주민들도 일부 반미단체가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장해 왔으며, 70명의 평택 주민들은 농지 경작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월 전국평화순례단에 동참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

에 북한 선제공격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전쟁의 참극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경고한 것이고, 범대위가 오로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위에 몸달아 한다거나 몸만 대한민국 영토를 딛고 있을 뿐 그들의 마음속 조국은 따로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5월 18일자 35면 『평택 범대위가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평택 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반대는 현지 농민의 경작권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선제공격 계획에 반대하고자 한 것일 뿐, 반미이념투쟁 차원이거나, 김정일 정권의 안위만을 우려하거나, 마음 속에 조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선일보> 2006년 6월 15일자 이전까지 2면에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통상의 1단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도의원 후보자인 신청인이 지역신문에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완도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완도신문 : 『지역신문에 전달한 ‘현금’ 말썽』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2일자 3면)

내 용 : 도의원 출마 예정자가 지역신문 기자에게 전달한 현금을 기자가 선관위에 신고해움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완도군선관위에 따르면 “W신문 김모 국장이 민주당 완도군도의원 출마 후보 예정자 이모(61)씨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후보가 지난 8일 오전 9시30분께 김씨가 편집국장으로 있는 W신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중략)

이에 이 후보는 “제561호 5월5일자 W신문에 선거사무실 개소식 관련기사와 사진이 실려 있어 신문사 사무실에 있는 여분의 신문 50여 부를 가져오면서 신문 값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W신문은 1년 구독료가 4만 원이고 월 구독료가 3천500원으로 이 후보는 지난해 8월11일에 2005년 12월말까지 구독료가 완불됐고 2006년 4월까지

14,000원만 미납된 상태로 선관위조사에서 밝혀졌다.

완도군선관위는 11일 현재 조사과정이 끝나는 이번 주 중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5월 12일자 3면에 『지역신문에 전달한 ‘현금’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도의원 출마예정자가 완도W 신문에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아직 선관위에서 조사중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것 처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국세청이 론스타 코리아를 세무조사한 것이 미 세무당국의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세청 (청장 이 주 성)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5.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IRS, 국세청에 긴급통보』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8일자 1면)

내 용 : 지난해 국세청이 론스타 코리아를 세무조사한 것은 미 세무당국의 제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긴급 요청을 받았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화송금 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스티븐 리가 본인과 자신의 어머니 등의 계좌를 통해 미국에 수만~수십만 달러를 계속 송금하고 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제보였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1만 달러 이상 금액이 송금되면 자금 출처를 철저히 확인한다. 도박이나 마약, 테러와 관련된 불법자금인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 국세청은 즉각 스티븐 리와 관련자의 계좌를 추적했다. 국세청은 스티븐 리가 론스타 코리아뿐 아니라 본사에서도 돈을 빼돌려 모두 70억 원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찾아냈다. 또 탈세와 외화 도피혐의까지 포착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사의 지난 4월 18일 『IRS, 국세청에 긴급통보』라는 제하의 기사 중 “지난해 국세청이 론스타 코리아를 세무조사한 것은 미 세무당국의 제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긴급요청을 받았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화송금 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스티븐 리가 본인과 자신의 어머니 등의 계좌를 통해 미국에 수만~수십만 달러를 계속 송금하고 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제보였다. 한국 국세청은 즉각 스티븐 리와 관련자의 계좌를 추적했다. 국세청은 스티븐리가 론스타 코리아 뿐 아니라 본사에서도 돈을 빼돌려 모두 70억 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찾아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참여정부의 투명한 사회건설 의지, 내·외국자본 차별없는 과세방침에 입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탈루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것이며 미국 IRS로부터 스티븐 리를 비롯한 어떠한 정보도 받은 바 없는 등 보도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와 당초 기사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4월 18일자 1면 기사에서 지난해 국세청이 론스타 코리아를 세무조사한 것은 미 세무당국의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국세청은 IRS(미 국세청)으로부터 론스타 또는 스티븐 리 관련 정보를 받은 바 없으며, 내·외국자본간 차별없는 과세방침에 입각하여 조세탈루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것일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5월 12일 또는 5월 13일자 2면 ‘바로잡습니다’ 코너 첫머리에 다른 정정기사와 선으로 구분하여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남측대표가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집 수 일 : 2006. 5.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서해상 DMZ’ 北에 제안』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8일자 2면)

내 용 : 1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속개된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측대표는 지상에

서의 비무장지대(DMZ)와 비슷한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을 북측 대표에게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남측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에, 현재의 북방한계선(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중간쯤에 새 경계선을 긋고 이 구간 전체를 ‘공동수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북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5월 18일자 판문점 공동취재단

과 공동 명의로 『‘서해상 DMZ’ 北에 제안』 제
하로 보도하면서 “제4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남
측대표는 지상에서의 비무장지대(DMZ)와 비
슷한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을 북측 대
표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
실이 아닙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남측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
이에 현재의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중간쯤에 새 경계선을 긋고 이 구간 전체를 ‘공
동수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북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지의 보도로 인해 국방부와 합참이 북
측의 제안을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정밀 검토한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0일자
6면)

내 용 : 문화일보 5월18일자 2면 ‘서해상 DMZ
北에 제안’ 기사와 관련, 국방부 남측대표는 새 해
상경계선 설정이나 공동수역안 등을 북측에 제안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골프장에 고용된 신청인이 주민들 몰래 대형 지하관정을 파 지하수를 끌어가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남해시대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남해시대 : (1)『OOOOOO그룹 그리고 남면공동체』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3일자 15면)

내 용 : (전략) 이제 남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OOOOOO그룹일 수밖에
없게 됐다. OOOOOO그룹의 재가를 받지 않고 남
면인 스스로 어떤 일의 추진을 결정할 수 있을 것
인가? 외지 유입자본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토착
화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토착 주민들의
생활의 궁핍함이며 철학의 빈곤함이다. 외지 유입
자본에 고용된 몇몇 공무원 출신 마름은 충견에
가깝다. 그들에 의해 여론은 조작되고 조작된 여론
에 의해 토착의 것들은 힘없이 제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그 모든 과정과 장면들을 영화처럼 확인시켜

주는 무대가 남면이다. (후략)

(2) 『남구주민 골프장 관정 원천봉쇄키로』 제하
의 기사 (2006년 5월 23일자 6면)

주민들 몰래 대형 지하관정을 파 지하수를 끌어
가려다 주민들에게 발각됨으로써 거센 반발을 불
러일으킨 골프장 개발업체 OOOOOO에 대해 남
면 상가마을 주민들이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남면 상가 남구마을 주민들은 지난 19일 마을회
관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관정을 개발한 전남면장
김OO씨가 군행정 책임자 앞에서 스스로 관정을
폐공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의
해 OOOOOO은 골프장 개장 일정에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4월 3일자 15면 『OOOOOO
그룹 그리고 남면공동체』, 5월 23일자 6면 『남구주
민 골프장 관정 원천봉쇄키로』 제하의 기사에서
“주민들 몰래 대형관정을 파 지하수를 끌어가려다
주민들에게 발각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주민 몰래 관정을 판 것이 아니라, “해당마
을 임원진과 사전협의를 하였고, 혹시라도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인근지역 농업용수에 영향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인근지역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아 관계당국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하수를 굴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 중 “외지 유입자본에 고용된 몇몇 공무원 출신 마름은 충견에 가깝다. 그들에 의해 여론은 조작되고 조작된 여론에 의해 토착의 것들은 힘없이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였으나, 여론조작은 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마름”과 “충견” 등의 용어로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23일자 6면 『남구주민 골프장 관정 원천봉쇄키로』 제하의 기사 중 전 남면장 김○○ 씨가 주민들 몰래 대형 지하 관정을 파 지하수를 끌어가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 김○○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지하 관정의 굴착은 상가북구마을 임원진과 사전협의의를 하였고, 혹시라도 본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인근지역 농업용수 등에 영향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인근지역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아 관계당국의 적법한 절차를 취득한 후 행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남해시대 2006년 6월 20일자 6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남구주민 골프장 관정 원천봉쇄키로)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남해시대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0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양평군 선관위가 군수 출마 후보자를 고발조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 경 록)
피신청인 : 하나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하나로신문 : 『한○○군수 선거법위반 10여건 적발』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4일자 1면)
내 용 : 무소속 양평군수 출마 후보자인 한○○ 군수가 지난 16일 사전조직구성과 관련하여 선거

법 위반으로 양평선관위에 의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정식 고발조치 되었다. 이로써 여주지청에 3번째 소환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10여건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어 주민들이 도덕성 결여에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특히 방송 광고비 예산내역과 항목이 홍보계가 아닌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판촉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직접적 판촉목적과는 다르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편법을 이용한 예산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평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의 공약 이행사항을 선거기간 중에 집중 광고하는 것은 속셈이 뻔히 보이는 선거용 홍보라고 밝혔다.

양평선관위는 방송광고 관계 정황이 단체장 선거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이 유권해석을 의

되었다고 밝혀 결과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2006년 5월 24일자 1면 『한○○군

수 선거법위반 10여건 적발』 제하의 기사에서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수사의뢰를 한 것이며, 또한 양평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의 공약사항이행 등 특정후보자 정책에 대해 평가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의 미술대전 입상에 대해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정읍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5
처리결과 : 취 하

전에서도 대회 관계자의 작품이 출전되고 상을 받아서 문제가 됐으며 결국은 수상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심사위원들을 섭외하는 등 대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행사하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대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도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정읍신문 : 『갑오동학 미술대전 심사 공정성 의심』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1일자 8면)
내 용 : 동학 미술대전 관계자의 수상을 놓고서 일부 참가자들은 불만과 함께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나섰다.
모름지기 선비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 잡지 말라’는 말과 ‘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도 말라’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2006갑오동학미술대전에서는 이 대회 부운영위원장 유○○ 씨의 문인화 작품 2건이 ‘우수상과 입선’을 차지한 것.
이에 대해서 한 중견예술인은 “얼마 전 전주 도

본지는 2006년 5월 31일자 8면 『갑오동학 미술대전 심사 공정성 의심』 제하의 기사에서 부운영위원장 유○○ 씨가 작품 2점을 출품하여 우수상과 입상을 차지해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출품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었고, 보도 내용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검증 없이 보도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신청인이 성인오락기 제작회사의 직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5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2,000,000원

합의사항

보도내용

시사저널 : 『‘성인오락’ 구설 오른 서울대 총학생 회장』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6일자 36면)

내 용 : (전략) 성인오락기로 때돈을 번 ○○프라임은 직원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주었다. 직원 이 ○○ 씨(서울대 3학년)는 자신의 블로그에 “전 직원에게 3개월에 한 번씩 해외 여행을 지원해주고…, 오늘은 29만 원짜리 스키복을 전 직원에게 뿌렸다”라고 자랑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6일자 『‘성인오락’ 구설 오른 서울대 총학생회장』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대학교 이○○ 학생을 ‘○○프라임 직원’으로 소개하고, 이○○ 씨의 블로그에서 동의없이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프라임 소속이 아님을 밝히며, 동의없이 글을 인용한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지난 6월 6일자 『‘성인오락’ 구설 오른 서울대 총학생회장』 기사에 언급된 이○○ 씨는 ○○프라임 직원이 아니라 12월 7일 ○○프라임에 인수 합병된 ○○○○○○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독자한마당’ 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중간제목(‘바다 이야기’ 음향 직접 제작) 활자 크기로, 본문내용은 조정대상보도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2006년 6월 26일까지 위 1·2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위 1항 기재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0일자 독자한마당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통일부 (장관 이 중 석)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대기업들 ‘개성공단 스트레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1일자 1면~3면)

내 용 : 정부 당국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기업들도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게 도와달

라”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을 기피하는 상당수 대기업은 정부의 요청을 ‘사실상의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략)

대기업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입주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후략)

(2) 『개성공단 분양 대기업 설명회 취소』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2일자 1·6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다음 달 초 대기업들을 상대로 열기로 했던 ‘개성공단 분양 설명회’를 전격 취소했다.

전경련은 ‘통일부가 전경련에 대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를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했다’는 내용이 본보에 보도된 11일 조건호 상근부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와 관련해 대기업이 압박감을 느낀다면 굳이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계획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달 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여는 개성공단 분양 공동설명회와 별도로 6월 초 대기업 상대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11일자 1, 3면에 『대기업들 ‘개성공단 스트레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전경련에 대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해 상당수 대기업은 이를 사실상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또한 5월 12일자 1면, 6면에 『개성공단 분양 대기업 설명회 취소』라는 제하 기사에서 “전경련은 5. 11.자 보도와 관련, 조건호 상근 부회장 주재 긴급 임원회를 개최, 통일부와 토지공사가 요청해 열 계획이었던 대기업 대상 개성공단 분양설명회를 전격 취소” 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부는 전경련에 대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아울러 5. 11.자 보도와 관련 대기업 대상 개성공단 분양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바 없으며 전경련에서도 부회장 주재 긴급 임원회의의 개최는 물론 정부요청으로 대기업대상 분양설명회를 추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
다. □

신청인 학교법인이 이사장의 회계부정사건을 폭로한 직원들을 권고사직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박 ○ ○),
2. 박 ○ ○

피신청인 : 경기방송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기방송 : (1) 「6시취재현장」 프로그램 (2006년 3월 6일 18:00)

내 용 : ▷앵커 : 네, 집중 취재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파주 모 사립학교에서 내부 비리를 폭로해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들이죠? 이들은 모두 부모와 처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30~40대 가장들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월급 한푼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데 있

습니다. 저희 경기방송은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 이들의 고단한 싸움과정을 들어 보고 이 사학에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OO 기자!

▷한OO : 네.

▷앵커 : 이 문제 학교... 어디에 있는 학교죠?

▷한OO : 경기도 파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모 학교법인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5명이죠? 이 해직 당했다는 직원들이 5명인데, 이유가 뭐지요?

▷한OO : 네 이들은 법인 행정실이나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인데요, 지난 2003년 이 학교 이사장이 창립자의 3남에서 4남으로 교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 22명이 전직과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이에 직원들은 이같은 인사 조치가 부당하며 재단이 1억 여원을 횡령했다고 양심선언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영자측은 양심선언자 5명을 직위해제 또는 파면하는 중징계를 단행하면서 이들의 고단한 법정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후략)

(2) 「6시취재현장」 프로그램 (2006년 3월 7일 18:00)

▷앵커 : 네 집중취재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이 어제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주의 한 사립 학교 이사장이 공금 횡령혐의로 교체되면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학법인의 각종 논쟁거리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OO 기자!

▷한OO : 네. 한OO 입니다.

▷앵커 :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났지요? 좀 정리해주시지요?

▷한OO : 네. 먼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감정가 13억 9천만 원 상당의 땅을 11년 전 미국 시민권자인 차남에게 매각한 경위가 석연치 않습니다. 법인은 세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땅을 팔아 학교 시설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경기도교육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땅에 대한 감정가는 13억 9천100만 원이었으나 11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계약은 95년 3월, 소유권 이전은 보름 정도 뒤인 94년 4월 했는데 대금은 1

년 뒤인 96년 2월에 완납했습니다. 땅값을 다 내기도 전에 소유권이 넘어 갔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땅값을 몇 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쪼개 20여 차례 나누어 납부했습니다. 땅을 팔아 마련한 현금도 당초 사용하기로 한 것과 달리 집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년이 지나서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법인 이사장이 차액 2억 9천100만 원을 개인 변상토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차액 2억 9천100만 원에 대한 3년치 이자를 받았는지, 사실상 증여 같이 보이는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결국은 감정가보다 땅을 싸게 팔은거구요 그 땅값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런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정상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군요.

▷한OO : 네, 이사장의 4남이 임원 취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를 수령하기도 했는데요 이같이 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이해할 수 없는 회계처리가 있었습니다.

▷한OO : 네... 4남은 지난 2003년 11월 이사 임기가 만료돼 현재까지 이사 승인 신청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인 차량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사까지 딸린 상태로 제공받아 자가용 처럼 사용하다, 도 교육청으로 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으나 그 이후는 확인 단속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여 역시 상근 이사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나 4남이 월 수백만 원씩 받아오다 노조 반발로 반납했습니다. 급여 수령이 어렵자, 친구 박모 씨를 이사로 대신 등재해 1년간 4천여만 원을 편법 수령해 온 혐의로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6시취재현장」 마이크출동 기획취재를 통하여 “사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방송된 내용 중 ‘파주의 P학교 교직원 22명이 전직과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사승인이 취소된 법인 이사가 법인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방송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교직원 22명이 전직과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이사가 이사승인 취소된 사실도, 법인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련 학교법인과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 1에게 50,000,000원, 신청인 2에게 1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사학비리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마이크출동 기획취재를 통하여 『사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 방송된 내용 중 파주의 P학교 교직원 22명이 전

직과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부분은 총 6명이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권고사직이 아닌 의원면직 및 징계해고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2003년 학교법인 이사장이 설립자의 3남에서 4남으로 교체되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에서는 법인이사가 이사승인이 취소된 것과 법인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경기방송에서는 앞으로도 공정보도와 사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6월 19일까지 경기방송 「6시취재현장」 프로그램 중 마이크출동 코너 첫머리에 방송하되 위 제목과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또한 경기방송 홈페이지 뉴스면에 위 보도문을 2006년 6월 19일부터 7일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원 조정대상기사에도 링크시킨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 회사가 일본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OO골프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최 ○ ○, 홍 ○ ○)
피신청인 : 일간스포츠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7.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일간스포츠 : 『가짜 일본 골프장 내세운 회원권 사기 조심하세요』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6일자 12면)
내 용 : 국내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일본 골프장 회원권'이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주간지 다이아몬드지는 최신포에 '한국 골프붐 과열로 가공의 골프회원권 등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지금 한국에는 일본의 유명 골프장 회원권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주간지는 "한국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부킹이 어렵자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일본으로 골프투어를 떠나는 한국 골프관광객이 연간 1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을 상대로 가짜 일본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는 한국 업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이아몬드지에 따르면 한국의 한 업체가 일본에 7곳의 골프장을 인수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내고 개인회원 1,500만 원(약 150만엔), 부부회원 3,000만 원(약 300만엔)의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7개의 골프장

은 ○○○○와 ○○○, ○○○○○(이상 북해도), ○○
의 ○○○○(도치기현), ○○○○○, ○○○○○○○(이상
가후현), 그리고 ○○○○○○○(가고시마현) 등이다.

그러나 이 주간지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더니 한국의 한 업체가 인수했다는 이들 7곳의 골프장은 단 한군데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골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가짜 일본 골프장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5월 16일 12면에 『가짜 일본 골프장 내세운 회원권 사기 조심하세요』 제목으로 일본의 주간지 다이아몬드지를 인용 한국 의 한 업체가 일본의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 하고 있으니 사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 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 씨는 일본 내 6개 골프장을 사실상 소유하며 경영하고 있고, 일본 가고시마현 소재 ○○○○ CC는 현재 인수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6일자 기사에서, 일본의 주간지 '다이아몬드'지에 의하면 한국의 한 업체가 일본 내 골프장 7곳을 인수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내고 유령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일본의 (주)OCC의 대표이사 이OO(재일교포)이 일본 내 6개 골프장을 인수하여 사실상 소유·경영하고 있고 일본의 OOOOCC도 현재 인수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지는 (주)OO골프그룹코리아와 (주)OCCC에 확인 없이 이를 보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상 없이 일본 내 골프장 회원권이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스포츠> 2면 우측 하단에 2006년 6월 27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간스포츠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9

신청인이 증평군 공무원들에게 위장 전입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충북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 〇 〇

피신청인 : 증평괴산저널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수일 : 2006. 6.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증평괴산저널 : (1) 『선거 앞둔 공무원 위장전입 처벌 요구』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9일자 1면)

내 용 :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지난 26일 증
평균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집단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며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이 신속히 조
사해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최○○ 도당 선대위 대변인은 “증평군 제5투표구 투표인 명부를 보면 증평군 공무원 77명이 증평군

청이 위치한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를 주소로 하고 있고 또 증평군 보건소에 16명, 농업기술센터에 10명, 군청 간부 자택에 2명 등 총 105명이 위장 전입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이들의 전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에 이뤄졌다”며 “거주할 수 없는 건물에 공무원이 집단으로 전입한 것은 현직군수의 강요가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무소속 유OO 후보를 비난했다. (중략)

유OO 후보의 ‘구더기’ 발언에 한나라당 증평군 도의원후보와 군의원 후보자들이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CJB 주관으로 개최된 증평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OO 한나라당 군수후보가 “지역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의회나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유OO 후보는 “행정을 질질 끌 수 없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OO 후보는 “구더기가 군민을 말하는 것이냐 군의원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었다.

이 소식을 접한 한나라당 증평군 도의원후보와 군의원 후보자 9명은 지난 24일 유OO 후보에게 3만여 증평군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후략)

(2) 『김OO 후보 좋은공약 최다선정』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9일자 2면)

도내 시장·군수 후보 중 김OO 증평군수 후보의 공약이 가장 많이 좋은 공약으로 선정돼 정책선거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충북연대에서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 자치단체장 21명을 대상으로 정책공약을 제출받아 각 대학 교수 및 시민단체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제출한 정책공약을 검증·평가한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후략)

(3) 『정책을 보고 선택하자』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9일자 2면)

(전략) 다가올 5·31 지방선거는 진정 이사회, 이 나라 주인이 우리 유권자라는 걸 각인시키는 선거 혁명이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증평시민회가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의 일환으로 증평군 현안에 대한 정책의제에 대해 군수 및 도지사 후보가 답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누굴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이 설 것이다.

또 5·31지방선거충북연대에서 충북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이는 유권자들이 과거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과 갖추지 못한 공약, 그리고 좋은 공약을 선별해 주고 있어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있다. 새롭게 시도되는 유권자운동인지라 약간의 문제성도 있겠지만 혁신적인 선거문화다. (후략)

(4) 『농업인단체 군수후보자 규탄 성명』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9일자 4면)

증평군 농업인 단체에서는 지난 25일 증평군수 출마 후보자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증평 농업인단체 임원과 회원들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증평군수 후보자들에게 증평군 농업정책 공약과 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농정토론회를 한 달여 간에 걸쳐 준비했지만 일부 군수 후보자들이 시간부족을 이유로 토론회를 거부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중략)

한편 시간부족을 이유로 농정토론회 부불참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무속 연OO, 유OO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5) 『증평군수후보 TV토론 이모저모』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9일자 8면)

(전략)

▲김OO 후보 공약에 패널 모두 긍정적 평가

패널 두 명 모두 김OO 후보의 성실한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연OO 후보의 짧은 답변에 사회자, 패널 질타

패널 두 명 모두 연OO 후보 답변이 짧고 불충분해 할당된 토론시간 맞추느라 패널이 더 힘든 지경이라고 질타.

▲유OO 후보의 시행사업을 공약으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

이OO 패널은 유OO 후보의 공약인 “보건복지타운 조성은 이미 실행중 사업”으로 앞으로 할 것에 대한 무게 중심으로 둔 것이 공약인데 이는

공약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유후보
곤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5월 29일자 1면에 『선거 앞둔 공
무원 위장전입 처벌 요구』 제목으로 현직 군수가
선거를 위해 공무원들을 강제로 집단전입하게 하
고 유○○ 군수 후보자가 평소에 군민과 군의원을
구더기로 생각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유○○ 군수 후보자는 강
제로 공무원을 집단위장전입 시킨 사실이 없으며
TV토론회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의
발언은 진실이 왜곡, 과장된 것으로 평소에 군민과
군의원을 구더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면의 『김○○ 후보 좋은공약 최다선정』, 『정책을
보고 선택하자』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것은 특
정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보도였음을
인정하며 사과드립니다.

3면의 『농업인단체 군수후보자 규탄 성명』 제하
의 기사에서 토론회의 무산 책임은 유○○ 후보자
와 연○○ 후보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8면 『증평군수후보 TV토론 이모저모』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것 또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게재된 것으로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증평괴산저널이 5. 29.자 1면 『선거 앞둔
공무원 위장전입 처벌 요구』 제하의 기사중 유○
○ 후보가 “행정을 질질 끌수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 없다” 라고 답변한 내용은 군민과
군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또한, 현직 군수가 선거
를 위해 공무원들을 강제로 집단전입게 했다는 내
용은 전국 공무원노조 증평군 지부가 “지난 2003
년 8월 30일 개청한 신생군으로 재정 자립도가 열
악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더 교부받기 위해 노
조차원에서 타시군 및 신규직원의 본청 전입을 호
소하는 이메일을 전직원에게 보냈다”고 성명서에서
해명한 바 있어 유○○ 군수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증평군수 유 ○ ○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증평괴산저널 2006. 6. 26.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
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5월 29일자 소재목크
기(충북연대 정책공약 평가에서)를 고딕활자로 하
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증평괴산저널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국세청이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세청 (청장 이 주 성)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세금으로 국민 협박하고 갈라놓을 것
이나』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4일자

30면)

내 용 : 이 정부는 세금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면 세금을 더 건졌다고 하고, 무슨 문제만 터지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선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흡사 무한정 돈이 나오는 화수분으로 알거나, 온 국민을 잠재적 탈세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중략)

5월 4일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는 9,420명 전원에 대해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겠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세무조사 만능주의의 극치다. 국세청이 판교신도시에 대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내놓은 초강경 대책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도 어렵거니와 징세권의 남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가 지난 3월 24일자 30면 『세금으로 국민 협박하고 갈라놓을 것이냐』 제하의 사설에서 “5월 4일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는 9,420명 전원에 대해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겠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세무조사 만능주의의 극치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확인 결과,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신고내용 등 각종

자료를 통해 탈세가능성이 있는 자를 일부 엄선한 후 이들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할 예정”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4일자 사설에서 5월 4일 판교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겠다는 국세청 발표가 세무조사 만능주의의 극치라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판교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신고자료 등을 통해 일부 탈세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 우측 하단에 2006년 6월 26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의 제목과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하되 상자기사 형태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지역가꾸기 사업예산을 계획도 없이 무원칙적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시 상가변영회 (회장 남 ○ ○)
피신청인 : 전남타임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남타임스 : 『○○시 지역가꾸기 사업 예산 먼저 갖다 쓴 단체가 임자?』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8일자 5면)

내 용 : ○○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 지역가꾸기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원칙없이 추진됐던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가꾸기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주

최가 되어 침체된 마을 및 거리를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의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사업의 본래 취지와 방향에서 벗어나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이 시행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동 상가입구 화단가꾸기 사업은 지난 2005년 2월 ○○시상가변영회에서 화분을 이용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가를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 시보조금 2천만 원과 자부담 5백만 원을 포함해 총 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상가변영회의 사업추진 과정에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상가변영회로부터 사업 계획 설명을 듣고 난 후 “화분을 이용해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난방지 차원에서 영구적 보존이 가능한 대형화분이나 꽃탑 등을 설치해 화단을 조성할 것”과 “지역가꾸기 사업을 상가에 국한하지 말고 ○○를 알리는 상징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가변영회는 이를 무시하고 주민자치위와 전혀 사업을 공유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같은 해 7월경에 사기화분 200여 개를 구입, ○○ 시내 터미널~매일시장 상가입구에 화분을 놓아두는 방식의 화단을 조성했다.

상가입구에 화단을 조성한지 5여 일 만에 주민자치위의 도난 예상에 부합이라도 하듯이 대부분의 화분을 도난당했다.

이에 상가변영회에서는 다시 국화화분을 구입하고 국화로 화단을 대체했지만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더더구나 상가변영회는 서울 양재동 공판장과 과천 화훼단지 도매시장 등 외지에서 화분을 구입,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상가변영회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자치센터를 배제하고 ○○시와 상가변영회가 직접 거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업의 투명성 여부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에서는 상가변영회의 상가입구 화단가꾸기 사업이 자부담 사업인줄만 알았지 시비가 지원됐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됐다”면서 “2006년 사업신청과 관련 ○○시에서 지난해 사업 결산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입구 화단가꾸기 사업을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는 “○○시가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사업을 어떻게 한지도, 얼마를 갚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명분없는 심의를 하겠느냐”며 “상가변영회로부터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전혀 보고 받지 못했었고 사업계획 변경도 수차례 요구했지만 상가변영회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자치위에 사업을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느냐”며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8일자 사회면에 『○○시 지역가꾸기 사업 예산 먼저 갚다 쓴 단체가 임자?』란 제목으로 ○○시의 지역가꾸기 사업이 일부지역에서 원칙없이 추진됐던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시 상가변영회는 상가 앞 꽃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원칙대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업을 공유하였고, 대부분의 화분을 도난 당했다고 했는데 이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으며,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 또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장에서 직접 도매가격으로 구매하여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외지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은 구매하고 나머지를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외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비는 ○○시에서 편성된 예산이었으며, 이를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업이었고,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중소기업청 (청장 이 현 재)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서울경제 : 『중기 “지원 오히려 축소” 반발』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일자 29면)

내 용 : 정부가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보증서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금 대비 1,000분의 1까지 지역신보에 출연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의 개정안으로 1,000분의 0.4만 지역신보에 출연하고 1,000분의 0.6은 중·대기업 위주로 보증서를 주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토록 추진, 지역 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면서 이처럼 금융기관의 출연을 의무화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오히려 신보와 기보 출연을 추진, 지역 상공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신보와 기보는 이미 현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 대비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출연받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의 5월 3일자 29면 『중기 “지원 오히려 축소” 반발』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

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기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1,000분의 1까지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안으로 1,000분의 0.4만 지역신보에 출연하고 1,000분의 0.6은 중·대기업 위주로 보증서를 주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토록 추진하여 지역 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역신보재단법에 규정되어 있는 ‘1,000분의 1’은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근거 및 한도를 정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안은 이 ‘1,000분의 1’ 범위내에서 출연요율을 ‘1,000분의 0.4’로 정하고 있는 바, 출연요율의 한도인 ‘1,000분의 1’과 확정 출연요율인 ‘1,000분의 0.4’의 차이에 해당하는 채원(0.6/1,000)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무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된다고 해석한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신보의 출연근거는 신용보증기금법령에서, 기보의 출연근거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으로는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출연금 확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서울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8일자 29면)

내 용 : 본지 5월 3일자 29면에 보도된 『중기 “지원 오히려 축소” 반발』 기사와 관련, 중소기업청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규정돼 있는 출연요율 1,000분의1은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근거 및 한도를 정한 것이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그 범위내에서 1,000분의 0.4

로 정한 것이며 출연 요율의 한도인 1,000분의 1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1,000분의 0.6은 신보 및

기보 출연과 무관하다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 □

중학교의 원어민 영어수강료가 지역 내 영어학원의 평균 수강료보다 비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진 표)

피신청인 : 국민일보

종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국민일보 : 『‘방과후 학교’ 학원보다 비싸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9일자 1면)

내 용 :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일부 프로그램 수강료가 학원비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상대적인 고가 수강료, ‘황제’ 보충수업, 학원과 이면계약 등 방과후 학교 탈선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6월 초부터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과후 학교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로 확대돼 5월 현재 전국 99%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을 되살리자는 것이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참관할 정도로 방과후 학교의 모범사례인 서울 봉천동 ○○중학교가 운영하는 ○○○학교의 초·중학생 대상 원어민 영어 수강료는 주 5시간 수업에 월 10만 원이다. 동작교육청 관내 영어학원의 2005년 주 5

간 평균 수강료 7만 8,700~9만 1,800원보다 비싸다. ○○중 인근 J학원과 D학원의 주 5시간 영어 수업료는 각각 7만 원과 9만 원으로 파악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5월 19일자 1면에 『‘방과후 학교’ 학원보다 비싸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학교의 원어민 영어수강료는 주 5시간 수업에 월 10만 원이다. 동작교육청 관내 영어학원의 2005년 주 5시간 평균수강료보다 비싸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원어민 강사의 수업 시간 등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학원 수강료 기준고시가 및 주변학원의 수강료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2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장관 김 진 표

조정대리인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민일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대표이사 노 승 숙

조정대리인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 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국민일보> 2면에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인 '교육부 전면 실태조사'와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하되, 상자기사 형태로 게재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국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유전 매입을 위해 교통세 일부를 에너지세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장관 정 세 균)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1) 『해외유전 매입위해 세제개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0일자 1면)

내 용 : 정부가 해외 가스전과 유전 매입에 적극 나선다.

29일 산업자원부와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해외 유전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교통세 중 일부를 에너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후략)

(2)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쟁점』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30일자 5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유전·가스전 매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100% 대한민국 소유' 유전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통세 가운데 일부를 유전 매입기금으로 활용할 경우 현재 논의중인 교통세 개편 방안도 달라지게 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30일자 1면 및 5면에 각각 『해외유전 매입위해 세제개편』,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쟁점』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5월 19일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유전·가스전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교통세 중 일부를 에너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개최된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해외 유전·가스전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교통세 중 일부를 에너지세로 전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9일자 2면)

내 용 : 산업자원부는 본보의 지난 5월 30일자 1·5면에 각각 게재된 『해외유전 매입 위해 세제개편』,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쟁점』 제하의 기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개최된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해외 유전·가스전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교통세 중 일부를 에너지세로 전환토록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

군립합창단장인 신청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7
청 구 명 : 추후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전일보 : (1) 『군립합창단, 보조금 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1일자 13면)

내 용 : [鳥致院]연기군립합창단(단장 이○○)이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합창단원들에 따르면 사회단체로 등록된 군 합창단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각종 연주회 개최 등 행사진행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왔다.

군 합창단은 90년부터 운영돼왔지만 96년 군립합창단이란 사회단체로 등록, 군으로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아왔다.

단원들은 “보조금 지급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며 “그동안 모임의 결산보고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원들은 특히 “이와는 별개로 연주회 개최시 티켓을 판매해 거둔 돈과 공연시 들어온 찬조금, 대회시상금 등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했다.

합창단은 운영관리를 위한 명문화된 관리회칙이나 규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2) 『연기군립합창단 단원 땀질구성』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2일자 13면)

연기군립합창단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회 출전을 앞두고 타 지역에서 응급처방

식으로 단원을 급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급조된 단원들에게는 한 사람당 사례비와 교통비로 20여만 원씩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나 합창단이 파행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대전일보는 지난 2005년 8월 1일자에 게재된 『군립합창단, 보조금 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연기군립합창단이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군립합창단(단장 이○○)은 2006년 3월 17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그 혐의를 완전히 벗었으므로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7월 25일 총회에서 합창단장과 지휘자로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2,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대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3일자 15면)

내 용 : 대전일보는 2005년 8월 1일자 13면에 『군립합창단, 보조금 유용 의혹』, 8월 2일자 13면에 『연기군립합창단 단원 땀질구성』이란 제하의 기사를 각각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유용의혹 부분은 2006년 3월 17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기사내용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은 당사자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임을 밝힙니다.

대전일보는 기사에서 연기군립합창단장의 실명

을 거론했고 반론권을 주지 않았으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당사자인 이○○ 단장과 연기군립합창단에 사과합니다. □

군립합창단장인 신청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8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연기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2.
처리결과 : 합 의 (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연기신문 : 『보조금 횡령 관련해 의혹 파장』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22일자 1면)
내 용 : <2006대전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6대전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대전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5년 8월 22일자 1면에 『보조금 횡령 관련해 의혹 파장』 제하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유용 의혹 부분은 2006년 3월 17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연기신문 2006년 7월 3일자 2면 좌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은 조정대상 기사의 중간제목(단원들과 단장의 엇갈린 주장의...)의 고딕체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기신문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군립합창단장인 신청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Ⅲ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9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2.
처리결과 : 합 의 (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도일보 : 『공금횡령·내부분열 등 연기군립합창단 잡음』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1일자 18면)

내 용 : <2006대전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6대전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대전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5년 8월 1일자 18면에 『공금횡령·내부분열 등 연기군립합창단 ‘잡음’』

제하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유용 의혹 부분은 2006년 3월 17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사내용 중 L씨가 연기군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은 당사자의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임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6년 6월 27일자 18면 좌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임시단장 독단적 운영...)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7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군립합창단장인 신청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V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0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2

처리결과 : 합 의 (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연기군립합창단 보조금 불법사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2일자 18면)

내 용 : <2006대전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6대전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대전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2006대전조정8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7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농림부가 이미 특허등록까지 마친 상황버섯 발효주에 대해 수억 원의 연구비를 중복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홍 수)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3.
처리결과 : 합 의

이 기술은 연구과제 지정 9개월 만인 2004년 3월 기술개발사업 참여 기업인 ○○○○○○ ○○○(대표 정 ○○) 측에 이전됐고, '○○○○'이라는 이름의 제품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특허등록 및 제품생산 2년 후인 올 2월 뒤늦게 연구기간을 5개월 단축시키는 동시에 지원금 중 2,100여만 원을 회수했다. (후략)

보도내용

한국일보 : 『술취한 농림부?』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7일자 8면)

내 용 : 농림부가 이미 개발돼 특허등록까지 된 술의 연구·개발비로 수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림부는 기술의 원천을 놓고 동의대와 분쟁을 빚고 있는데도 홈페이지 성과전시관에 지원 성공사례로 실어 놓아 과대포장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의 술은 지난해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공식건배주로 선정됐던 상황버섯 발효주 '○○○○'. 특허청과 동의대 등에 따르면 상황버섯 발효주 제조기술은 2000년 3월 동의대 A교수(현 동아대 교수)가 개발, '버섯으로부터 유래한 알코올 가수분해효소를 함유한 균사체 및 이를 이용한 알코올성 음료 및 주류'라는 제목으로 특허 출원했다.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이 기술은 2004년 2월 학교법인 동의학원 명의로 특허등록됐다.

그러나 A 교수 등은 2003년 3월 '버섯 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코올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주류개발'이란 제목으로 농림부에 첨단기술개발사업 연구 과제 지정을 신청, 3년간(2003년 7월~2006년 7월) 2억 1,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았다.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당시 중복여부를 조사했으나 필터링되지 않은 채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 2006년 6월 7일자 8면에 『술취한 농림부?』라는 제목과 “특허까지 낸 상황버섯 발효주 2년간 모른채 연구비 2억지원”이라는 부제의 기사로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시 중복여부를 조사했으나 필터링되지 않은 채 연구과제를 선정했으며, 농림부는 특허등록 및 제품생산 2년 후인 올 2월 뒤늦게 연구기간을 5개월 단축하고, 지원금 중 2,100여만 원을 회수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동 연구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인 동의대학교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이미 특허출원 사실과 선행연구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므로 특허출원된 것을 모르고 과제를 선정,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또한, 주 연구내용이 버섯균사체로부터 알코올을 생산하는 특허기술을 기초로 하여 기능성 주류의 대량생산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 약리성분 등 기능성물질 분석, 동물실험을 통한 효능 적용시험,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는 기술 등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이므로 특허기술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연구기간을 단축한 실체사유는 제품을 개발, 상품화하는 등 협약당시의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인 동의대학교에서 조기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조기완료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미집행 연구비 2,900만 원을 회수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농림부 관련 반론보도
- 본 문 : 본지 6월 7일자 8면 『술취한 농림부?』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부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을 하면서 특허까지 낸 상황버섯 발효주에 대해 다시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올 2월 뒤늦게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2,100여만 원을 회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연구비 지원 당시 이미 관련 특허가 출원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농림부가 연구지원한 것은 상황버섯 발효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발효주 상품을 개발하는 기술이어서 특허

출원 내용과 농림부가 지원한 상품화기술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농림부가 연구기간을 단축한 것은 뒤늦게 중복된 연구임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연구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연구가 조기 종료됐기 때문이며, 회수된 지원금은 미집행된 잔여 연구비 2,900만 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한국일보 2006. 6. 23.자 8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특허까지 낸~연구비 2억지원〉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3일자 1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용인시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을 잘라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용인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용인신문 : 『선거후폭풍 후폭풍 우려 ‘술렁’』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5-11일자 4면)

내 용 : 5·31지방 선거가 끝나면서 각 자치단체에 인사 후 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용인시도 마찬가지.

일부 공직자들이 현직 단체장에게 보이지 않게 보험(?)을 들었다가 선장이 바뀌면서 ‘살생부’ 명단이 나뉜다는 소문이 무성해지자 공직자 사회가

좌불안석.

실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시장 당선자 부인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잘라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말해 술렁거리는 분위기를 반증.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5-11일자 4면에 『선거 후폭풍 후폭풍 우려 ‘술렁’』 제하의 기사에서 ‘시장 당선자 부인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잘라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시장 당선자 부인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었으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져있다’는 소문은 잘못된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

니다.

신청 후 보도문

용인신문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6일~7월 2일자 4면)

내 용 : 본지 632호 4면 이러쿵 저러쿵 코너에 실린 『선거후폭풍 후폭풍 우려 ‘술렁’』이라는 기사와 관련 서○○ 용인시장 당선자 측이 반론을 제기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 당선자 측은 『선거후폭풍 후폭풍 우려 술렁』이라는 기사 중 ‘시장 당선자 부인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잘라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져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며 “서 당선자 부인은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소문의 근원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시장이 교체됨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인사이동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안감이 와전된 것으로 추측한다”며 “항간에 나도는 살생부 등은 있지도 않고서 당선자 또한 갈라진 공직사회를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서 당선자는 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당한 인사이동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

함안군 소속 공무원인 신청인이 운동장 사용 신청을 하러 온 축구관계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함안아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4.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경남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경남조정7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함안아라신문 : 『축구 함안 명성 사라지나... 동계유치실적 도내 하위권』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4일자 4면)

내 용 : 〈2006경남조정7의 보도내용 (2)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함안아라신문 : 『최○○ 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5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함안군 소속 공무원인 신청인이 운동장 사용 신청을 하러 온 축구관계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아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아라신문 : (1) 『내 ○○○가 두쪽이 나도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9일자)

내 용 : 함안군의 한 공무원이 운동장 사용 신청을 하러온 외지 축구관계자에게 “○○○가 두 쪽이 나도 안된다”는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있다.

공설운동장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에게 국내 여자축구팀의 코치가 운동장 사용 승인 신청차 방문한 것은 지난 27일 오후, 여왕기 대회 일정을 조금 앞두고 함안에 온 이 축구팀의 코치는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운동장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구두로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은 “지금 (잔디를) 보식 중이니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코치는 “경남 FC팀도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 팀도 잠시만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팀이 경남을 연고로 하고 있는 점을 봐서라도 편의를 좀 봐달라”고 재차 주문했다는 것.

이 말에 이 6급 공무원은 “경남이 꼭 함안밖에 없느냐. 김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함안에 와서 이러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이 코치가 “여왕기 같은 대회를 유치해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고 따지자 담당 공무원은 “내가 유지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 듣는 이를 기겁하게 했다는 것이다. (중략)

또 다른 군민은 “양 쪽에서 설령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공무원이 그런 고압적인 자세나 폭언을 하는 것은 손님더러 오지말라는 얘기”라며 “바로 이 점이 함안군의 축구연수원이 남해에 댈진 데 이어 함천에도 댈쳐져가는 이유일 것”이라며 비난했다.

(2) 『축구함안 명성 사라지나... 함안 스포츠 마케팅 '위기'』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6일자)

지난 해 겨울 경남을 찾은 동계 전지 훈련팀이 1,000개를 넘어서는 약진을 보인 가운데, 함안은 63

개 팀 1,15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축구 함안의 명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략)

본지는 이 기사에서 “공무원이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에게) 고압적인 자세나 폭언을 하는 것은 손님더러 오지말라는 얘기”라며 “바로 이 점이 함안군의 축구연수원이 남해에 댈진 데 이어 함천에도 댈쳐져가는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함안군은 이 공무원을 징계하기는 커녕, 오히려 “민원인이 좀 심해서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게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3) 『최○○축구연수원장 7시간여 걸친 대수술 받고 가료중』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8일자)

지난 2002년 개최된 한일월드컵 대회에서 조직위원회 경기부장의 중책을 맡아, 사실상 4강 신화의 숨은 주역으로 활약한 바 있고, 1997년 전국 최초로 함안축구연수원을 설립, 함안축구인프라를 전국에 알린 최○○ 대표팀 감독이 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7시간 여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을 위한 치료 중에 있다.

최 원장은 지난 5월의 여왕기 대회때 팀을 이끌고 함안에 왔으나, 운동장 관리 공무원의 폭언 등으로 심각한 심적 타격을 입었으며 서울로 귀성하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최 원장은 서울로의 귀성에 앞서 함안축구연수원과 관련 “이제 군민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할 상황에 왔으며 함안군이 (축구연수원측을) 어떻게 기만해 왔는지를 밝힐 시점에 다다랐다”고 말한 바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9일자 『내 ○○○가 두쪽이 나도 안된다』, 5월 6일자 『축구함안 명성 사라지나... 함안 스포츠 마케팅 '위기'』, 6월 8일자 『최○○축구연수원장 7시간여 걸친 대수술 받고 가료중』 제하의 기사에서 함안군의 한 공무원이 운동장 사용 신청을 하러 온 외지 축구관계자에게 “○○○가 두쪽이 나도 안된다”, “경남이 함안 밖에

없느냐. 김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다 있는 데 왜 함안에 와서 이러느냐”라는 등의 폭언을 가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응대하여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함안 스포츠 마케팅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최○○ 축구연수원장 역시 심적 타격을 입어 결국 수술에 이르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현재 함안군의 스포츠 마케팅 업무는 문화관광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동계전지훈련은 통상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하여 팀을 유치하고, 문제가 된 시설관리담당 부서는 문화관광과로부터 통보받은 팀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할 뿐, 동계훈련에 참가하는 감독 및 그 외 축구 관계자와는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4월 29일자 『내 ○○○가 두쪽이 나도 안된다』 제하의 기사, 5월 6일 『축구함안 명성 사라지나... 함안 스포츠 마케팅 ‘위기’』 제하의 기사, 6월 8일 『최○○축구연수원장 7시간여 걸친 대수술 받고 가료중』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함안군 체육시설담당 공무원인 최○○씨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기사내용 중 “경남이 꼭 함안 밖에 없느냐. 김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함안에 와서

이러느냐”고 담당공무원이 말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모 축구단의 코치가 전국체전 경남 대표라고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꼭 운동장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관계로 3일전에 보식한 함안운동장을 사용하여야되느냐 전국체전 경남대표이면 창원, 양산시 등 인근에 소재한 운동장도 사용 가능하므로 인근에 소재한 운동장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함안군 공무원인 본인이 민원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때문에 함안스포츠 마케팅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최○○ 축구연수원장이 심각한 심적 타격을 입어 결국 수술에 이르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터넷)아라신문 초기화면에 한달간(2006년 6월 26일~7월 26일)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내용이 보이도록 한다. 단, 첫 일주일간은 메인 TOP위치에 게재한다. 제목활자 크기는 이전 조정대상기사 중 4월 29일자 제목(내 ○○○가 두쪽이 나도 안된다)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라신문 : 『최○○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6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통영시가 신청인의 장인 소유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명 주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봉래극장 터 공영주차장 철차 무시』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4일)

자 7면)

내 용 : 통영시가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건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조성사업 터의 절반 이상을 매입해 놓고는 자체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정(사업폐기)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이 때문에 시가 시의회를 설득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생략한 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 전체 부지의 절반이 넘는 땅을 미리 사 놓고 정작 주차장 건립계획은 백지화해 버려 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옛 봉래극장만 시민 세금으로 사줬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특히 봉래극장이 지역구 김명주 국회의원의 장인 집안 소유여서 이래저래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14일자 7면 『봉래극장 터 공영주차장 절차 무시』 제하의 기사에서 ‘특히 봉래

극장이 지역구 김명주 국회의원의 장인 집안 소유여서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명주 국회의원은 봉래극장 매입과 전혀 관련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6년 6월 26일자 7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시장 권한...)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7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학교 급식의 만족도가 낮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진 표)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학교급식 ‘찬밥 신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1일자 11면)
내 용 : (전략) 대부분의 초·중·고교생이 학

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있지만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한 ‘서울시 학교 급식 운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연구책임자 김정래 연구원)에 따르면 급식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학생은 10명 중 3명 선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개발원은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1,138명을 대상으로 급식과 관련해 ‘매우 만족한다’에서 ‘매우 불만이다’까지 5단계로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를 배포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1일 11면 『학교급식 찬밥신세』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한 서울시 학교 급식 운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급식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학생은 10명 중 3명선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보고한 시기는 2003년 12월이며, 급식만족도 조사 시기도 2003. 8. 26~9. 3.로 2006년 현재의 학교 급식에 만족도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신청 전 보도문

한국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2일자)

내 용 : 5월 11일자 11면 『학교급식 ‘찬밥신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와 관련, 설문이 이뤄진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적에 따라 설문시기를 첨부합니다.

설문조사가 행해졌던 시기는 2003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로,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급식에 대한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지방 선거 공천과 관련해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골프채 등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명 주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5.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한나라당 ‘공천 장사’ 경남서도?』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4일자 1면)

내 용 : 수도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단체장 공천 장사 의혹이 터져 나온 가운데 경남에서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남지방경찰청 5·31 지방선거 전담반은 13일 아침 9시를 전후해 고성 출신 도의원 공천을 희망했던 정모 씨와 정씨의 사무장 노릇을 했던 다른 정모 씨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 (중략)

이번 압수는 정씨 등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김명주(고성·통영) 의원에게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골프채 등을 건넸다는 제보가 경찰에 입수

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제보내용을 보니 개연성이 높고 금품이 건네진 경위 등이 특정(特定)이 돼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 수색에 대해서만 사실로 확인해 봤을 뿐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만 했다.

제보자 모씨에 따르면 제보 내용은 △사무장 정씨가 김 의원 측근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측근의 급여 다섯 달치 1,500만 원을 입금했다 △골프채 두 세트를 모씨를 통해 건넸다 등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14일자 1면 『한나라당 ‘공천 장사’ 경남서도?』 제하의 기사에서 사무장 정씨가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 측근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측근의 급여 다섯 달치 1,500만 원을 입금하고 골프채 두세트를 모씨를 통해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 의원은 이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4일자 1면에 『한나라당 ‘공천 장사’ 경남서도?』라는 제목과 “‘국회의원에 수천만원’ 제보 내용 개연성 높아”라는 부제목하에 사무장 정씨가 김 의원 측근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측근의 급여 다섯달치 1,500만 원을 입금했다, 골프채 두 세트를 모씨를 통해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명주 국회의원은 이 사

건과 무관함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하여 김명주 의원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6년 6월 26일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권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2006년 4월 14일자 1면의 다른 기사제목 (“아이들의 어머니 돌려줘 감사”)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7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드라마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도용해 현상범 포스터에 실으면서 강간미수범이라고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실제로 강간미수범이 아니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영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범죄자로 오해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 및 신청인 가족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돈을 2006년 7월 14일까지 지

보도내용

MBC-TV : 「닥터깽」 프로그램 (2006년 5월 4일 22:00)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5월 4일 「닥터깽」 프로그램에서 강간미수죄의 현상범 포스터에 신청인의 사진을 본인의 허락 없이 도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2006년 7월 14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6.



신청인이 서울대 총학생회장 탄핵에 대해 찬성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6년 6월 13일 06:26)

내 용 : ▷앵커 : 이력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황○○ 씨가 결국 총학생회장 직을 잃었습니다.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서울대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열어 어젯밤 11시쯤 학생회 간부 43명이 발의한 총학생회장 황○○ 씨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총학생회장 탄핵은 서울대 개교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유는 황씨가 자신에게 둘러싼 의혹을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학생회 간부 : 해명하는 과정을 해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을 바꾸고 진정한 사과가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기자 : 황씨는 탄핵 결정에 대해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받아들이겠으며 학생회장직에 미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수십 여개의 화려한 이력 등을 앞세워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황

씨는 지난달 한총련 공식 탈퇴를 선언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력이 부풀려졌고 성인게임업체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본방송은 2006년 6월 13일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서울대 총학생회장 탄핵' 제하의 방송에서 신청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방송하여 음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총학생회장 탄핵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한쪽 의견에 치우칠 수 없어 양쪽 의견을 공정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찬성하는 입장의 발언만을 보도하였고 인터뷰 역시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신청인의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7월 14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폐기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휴대전화 자판 특허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이 특허 괴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으이구~이 특허괴물들...』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7일자 1면)

내 용 : (전략) 세계IT(정보기술)업체가 ‘특허 알박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허 선점(先占)한 뒤 주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특허 알박기’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업들이 바로 특허침해 소송을 일삼는 ‘특허 괴물’(페이턴트 트롤·patemt troll)들. 특허 괴물들은 보통 생산 라인이나 영업 조직은 두지 않는다. 변호사 몇 명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부도 기업의 특허를 경매 등을 통해 사들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중략)

국내에서도 등장 시작= 개인 발명가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천지인’ 방식 휴대전화 자판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굳이 A씨를 ‘특허 괴물’이라 몰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지만, 대기업과의 특허 전면전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삼성전자 근무 경험이 없지만, 지난 1990년대 말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기에 특허를 신청했었다. A씨는 삼성전자에 승소할 경우, 최고 9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씨는 또 천지인 특허 분쟁 외에도 한글 도메인 업체인 넷피아와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글 도메인이란 인터넷 주소창에서 영어가 아닌 한글

만 쳐도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서비스. 법원이 ‘넷피아의 특허를 무효화해 달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글 도메인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7일자 1면 『으이구~이 특허괴물들...』 제하의 기사에서 세계IT(정보기술)업체가 특허를 선점한 뒤 주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 알박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소개된 국내 개인 발명가 A씨는 삼성전자와의 분쟁에서 먼저 삼성전자로부터 특허 사용 요청을 받고 회사가 작성한 특허 사용 계약서에 서명한 후 삼성전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A씨의 ‘천지인 자판’ 기술을 도용, 침해하자 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넷피아닷컴과의 분쟁은 특허권 선점 등의 문제와는 다른 해당 특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업자간의 분쟁일 뿐이며 이 부분은 ‘특허 괴물’ 등으로 표현되는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기사에서처럼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해당 특허 관련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는 것이 아닌 넷피아닷컴의 서비스 제공만이 불가능해 질 뿐 기타 한글 주소 서비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특허로 신기술을 선점한 뒤 소송을 통해 거액을 요구하는 소위 ‘페이턴트 트롤’을 다룬 본지 6월 7일자 1면 기사와 관련하여 개인 발명가

A씨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소송은 A씨가 신기술을 선점해 거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삼성측이 A씨가 발명한 특허를 사용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네티피아닷컴과의 분쟁은 특허 무효소송이 아닌 양자간의 공유 계약에 대한 소송으로서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A씨에 의한 인터넷 한글주소서비스 제공은 계속될 것이다.’

• 피신청인은 6월 29일 또는 6월 30일자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최근 국내기업들도 비슷한 소송 잇따라 긴장)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부산 금정구 구의원 당선자의 실종사건을 방송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얼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6.

처리결과 : 합 의

사람 점잖고 좋은 분인데 칠순에 지역일꾼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박○○ 당선자나 그 외 몇몇 분이 공천 자급에 연루되어서 공천받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가 파다했지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MBC-TV :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2006년 6월 6일 09:00)

내 용 : ▷앵커 :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1주일이 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금정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박○○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지난 5월 12일에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후 지금 25일 동안 실종된 상태입니다. (중략)

▷앵커 : 박 당선자의 실종을 두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발단은 선거 시작 전부터 시끄러웠던 박 당선자의 공천 현금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 풍문이 많이 돌았어. 확실히 모르는 데 공천 현금을 주고 받았다고 소문이 돌았지

▷인터뷰 (한나라당 금정구의원 공천 탈락자) :

MBC-TV는 지난 6월 6일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에서 ‘실종된 당선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부산시 금정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박○○ 후보의 실종에 관해 보도하면서 5·31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신청인의 클로즈업된 얼굴 및 신청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유세차의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당선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천 관련한 부정적인 소문을 확인하고 있어 공천 탈락자와의 인터뷰를 방영하면서 해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인의 사진을 내보내 신청인의 공천에 문제가 있었던 것과 같은 연상작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청인은 석달 여동안의 예비, 본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 실물, 사진, 현수막, 명함 등을 통해 41만 영등포 주민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며 정직과 진실, 신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으로서 위 방

송은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7월 15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해당 프로그램의 부장 명의로 다음 내용의 사과문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 내 용 : 지난 6월 6일자 본 프로그램에서 부산 금정구 구의원 당선자의 실종사건을 다루면서 배경화면에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의 유세장면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 후보로 나온 정○○ 후보를 클로즈업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국세청 관계자가 론스타에 대한 과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세청 (청장 이 주 성)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론스타 세금추징 더 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7일자 14면)

내 용 :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스타타워빌딩 매각 등과 관련, 론스타 펀드에 1,4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도로 다른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지난해 말 론스타 펀드 등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10여건의 세금 추징 및 검찰 고발로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당시에 론스타 펀드에 대해서는 일부만 세금을 부과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최근 세금을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 펀드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종결됐지만 법률적 검토와 증거자료 확보, 세

목별로 세금부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세금 추징을 통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1월 착수한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엘리트 쇼트 론스타 펀드 부회장이 2002년 10월 당시 외환은행장에게 보낸 “서울에 있는 스티븐 리(론스타 한국법인 대표)가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한 협상을 대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확인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사의 지난 3월 27일자 14면 『론스타 세금추징 더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론스타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한적이 없으며, 개별납세자에 관한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원칙임을 알려와 당초 보도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고침』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3일자

2면)

내 용 : 본보 3월 27일자 14면 『론스타 세금추징 더 있다』 ‘국세청 1,400억 원의 탈세 혐의 추가 확인 제목의 기사 내용과 관련, 국세청은 론스타 과세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고 개별

납세자에 관한 과세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원칙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본보 보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

국세청이 까르푸에 대한 세무 조사계획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8

청 구 명 : 정정보도문

신 청 인 : 국세청 (청장 이 주 성)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어디 무서워서 기업 하겠습니까』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4일자 35면)

내 용 : (전략) 주한 외국 기업은 더 불안하다. 이랜드가 까르푸 인수를 한다고 발표한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국세청은 까르푸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언론에 흘렸다. 세무조사에 이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 관계자는 “요즘 지독한 악몽을 꾸는 기분”이라고 묘사한다.

세금도 많이 내고 세계에 한국을 빛낸 경영인들이 왜 교도소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걸어가는 잠재적 범죄자(?)가 됐을까. 어쩌다가 한국에 큰돈을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이 출근길에 ‘오늘도 무사히’를 기도할 지경에 왔을까.

한 주한 미국 기업인은 “한국에는 헌법 위에 떠벌,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론스타 사태를 예로 들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수조 원의 매각 차익이 발생하자, 반(反)외세적인 국민정서가 형성되면서 국부(國富) 유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자극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재경부나 국세청이 규정을 바꿔서라도 론스타에 과세하려고 덤벼들었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

널은 1면 머리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이런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경고메시지로 해석했다. 이 미국 기업인은 “미국이 론스타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보복이라도 단행한다면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사의 지난 5월 4일 35면 태평로 『어디 무서워서 기업 하겠습니까』라는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까르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고 세무조사방침 등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고 있으며 론스타에 과세하기 위하여 규정을 변경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음을 알려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를 것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국세청이 제시하는 ‘외국계펀드’ 관련 기사를 자료 제공 후 일주일내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외국계 펀드 조사 관련해서 국세청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어디 무서워서 기업 하겠습니까』 제하의 기사와 관련된 이 사건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

국세청 관계자가 론스타에 대한 과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세청 (청장 이 주 성)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6.
처리결과 : 합 의

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3월 25일 6면 『한국에 고정 사업장... 1조원 추정 가능』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세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의지는 변함없으나, 국세청에서 1조 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밝힌 바가 없기에 이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7월 5일까지(토요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게재한다.
- 위 1,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론스타 과세 자신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5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37의 보도내용 참조>
(2) 『한국에 고정 사업장... 1조원 추정 가능』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5일자 6면)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2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참여정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희 범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6.
처리결과 : 합 의

국민일보 : 『대통령과 장관 독대 줄어들어 생각달라도 설득 어려웠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8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4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24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의 5월 18일자 이희범 전 산자부장관의 대학원 특강 관련 기사에서, 참여정부에서는 장관의 대통령 독대가 사라져 언론이 막혀 차질이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이 전 장관은, 과거에는 주로 독대 방식이었으나 폐단이 있어 참여정부에서는 협의체 회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취지였을 뿐, 참여정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국민일보 2006년 6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 신문 2면 우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의 크기와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대학총장시절 교육부~정책 투명해야)과 동일하게 하고, 본문의 크기와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하게 하여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참여정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희 범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장관들 대통령 독대 힘들어 정책 생각 달라도 설득 못해』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8일자 1면)

내 용 : 참여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은 17일 “참여정부 들어 장관들이 대통령과의 독대가 힘들어져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주최한 ‘장관 리더십 특강’에서 “이전에는 독대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참여정부 들어서서는 협의체로 의사가 결정됐다”며 “장관 입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대통령과 하고 싶지만 독대가 힘들어 최고 통치자와 생각이 달라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장관으로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내 뜻을 전하기도 했고 정책과 관련해 내 뜻을 관철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강에서 “참여정부 이전에는 대통령수석 비서관이 독대에 참여해 수석에게 힘이 실렸으나 참여정부 수석들은 현황 파악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일부 장관들의 무소신과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산자부 장관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적극 추진하면 대체로 단명했고 모 장관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6개월 만에 단명하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무소신으로 장기 근무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5월 18일자 1면 『장관들 대통령 독대 힘들어 정책 생각달라도 설득 못해』 제하의 기사에서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연에서 “참여정부 들어 장관들이 대통령과의 독대가 힘들어져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도 설득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식을 비판하였고, 의욕적으로 일한 장관은 단명하고,

무소신 장관은 장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회범 전 산자부 장관은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하여서는 “과거에는 주로 독대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여러 폐단이 지적되어 참여정부에서는 주로 협의체, 회의체 방식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고, 필요시 독대 보고 방식을 병행하게 되었다. 본인은 원전 문제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몇 차례 독대보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는 뿐, ‘참여정부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비판한 바 없으며, 의욕적 장관은 단명하고 무소신 장관은 장수한다는 본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원전 수거물 및 처분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장관직을 그만두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예시한

것일 뿐, 참여정부의 공직사회가 무소신으로 일관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9일자 8면)

내 용 : 이회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본지 5월 18일자 1면 『장관들 대통령 독대 힘들어 정책 생각 달라도 설득 못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대통령 독대가 필요한 때가 있어 몇 차례 독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말했으며 참여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군인공제회가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불법으로 대행하고, 제휴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약속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군인공제회 (회장 조 영 호)
피신청인 : 주간동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주간동아 : 『카드 불법대행에 80억원 부당이익』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7일자 30면)

내 용 : 특수공익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인 군인공제회(조영호 이사장)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불법으로 대행하고, 향후 10년간 8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제휴은행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군인공제회는 3월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매년 8억 원씩, 10년간 8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문제점은 사업 전반에 걸쳐 드러났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인공제회와 체

결한 ‘관리운영대행 약정서’ 자체가 현행법상 이뤄질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것.

국방부 법무관실에 따르면 ‘대행’과 ‘위탁’은 전혀 다르다. 대행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실무를 대행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실무에 따른 법률적 효과나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다. 여기서 행정기관이 정부라면, 대행기관은 정부 산하기관에 해당한다.

반면 위탁은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 또는 민간기관 등에 맡기는 것이다. 법률적 효과나 책임은 일차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다. 이때 위탁계약자 선정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체결한 관리운영대행 약정서는 이 두가지 중 어떤 경우라도 문제다. 대행계약이라고 해도 문제고, 위탁계약이라고 해도 문제인 것.

대행계약은 군인공제회가 국방부 산하기관이어야 가능하다. 군인공제회 측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방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군인공제회 홍보팀 양○○ 차장은 “군인공제회법 및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

령 등에 근거할 때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산하기관 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정부 산하기관 적용범위에 군인공제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략)

또 하나의 문제인 군인공제회가 제휴은행으로 선정한 신한은행과의 계약 내용이다. 국방부 법무 관리관실은 군인공제회가 신한은행과 6월22일 체결한 가계약 내용 중 신한은행에 대한 주거래은행 지원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관리운영대행 약정서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11월 22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나라사랑카드 제휴은행 선정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법무관리관실의 요구를 100% 반영해서 신한은행과 최종협상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주간동아’가 임종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 간 ‘최종협상결과’ 문건을 보면 군인공제회는 법무관리관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카드 1매당 2,000원씩 수수료를 군인공제회에 제공기로 결정했다. 연간 40만 매 발행이 기본조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8억 원씩, 계약기간 10년 동안 모두 80억 원의 수수료가 군인공제회의 수익금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27일자 30면 『카드 불법대행에 80억원 부당이득』 제하의 기사에서 군인공제회가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불법’으로 대행하고, 향후 10년간 8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제휴은행으로부터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매년 8억 원씩, 10년간 8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산하기관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나라사랑카드 관리운영 대행약정이 체결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협상 과정에서 국방부가 군인공제회에 지시한 사항을 100% 이행하여 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과의 계약에 의거 인력운영 등의 경비는 군인공제회가 부담함으로써 매년 8억 원, 10년간 8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국회에 거짓보고를 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와 통합전산망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유 ○ ○)

피신청인 : 교통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교통신문 : 『매매聯 전산망 이중계약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5일자 5면)

내 용 : 통합전산망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가 이미 전산업체로 선정된 미디어 ○○○○(주)와는 별개로 (주)○○○○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중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주)OOOO가 직원을 구하기 위해 한 채용 사이트에 올린 구인광고 중 ‘기업연혁 및 실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1월 여의도 OO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긴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 및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 진출 계획을 세우고, 지난 4월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와 포털사이트 구축 업무 컨설팅 및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연합회와 (주)OOOO 측은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기업이 인채채용을 하면서 회사소개 자료에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사실을 올려놓을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중략)

이와 관련, 유OO (주)OOOO 사장은 “잡 코리아에 소개된 회사 연혁 자료는 직원들의 명백한 실수였다”면서 “연합회와 OOOO와는 MOU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사장은 다만 “매매업계의 제시·매도 프로그램 구축은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며 내심 미디어 OOOOO(주)의 기술력의 한계를 꼬집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15일자 5면 『매매聯 전산망 이중계약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서 통합전산망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이미 전산업체로 선정된 미디어 OOOOO(주)와는 별개로 (주)OOOO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중계약’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연합회와 주식회사 OOOO는 MOU를 작

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합회의 조직은 각 시도의 조합장들이 이사 및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계약관련 사안은 관례상 총회의결을 거쳐 합의되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시도의 조합장이 모르게 연합회장 단독으로 MOU를 체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OOOO는 해당 연합회와 MOU를 체결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교통신문 : 『이중계약 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2006년 6월 23일자 자동차면)

내 용 : 신OO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회장은 연합회가 (주)OOOO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통합전산망 구축사업과 관련된 신 회장과 의 일문일답.

-최근 통합전산망의 운영 업체를 둘러싸고 일부 잡음이 있었는데.

▲연합회가 (주)OOOO와 이중계약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 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 회원들도 모르는 (주)OOOO와 어떻게 MOU를 체결할 수 있었겠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현재 연합회의 통합전산망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체로 (주)□□□□와 계약 체결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총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부결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 역시 틀린 얘기다. 시도조합 회원들의 승인 서명 절차가 남아 있어 계약 체결 중에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주)미디어 OOOOO와의 계약 역시 회원들의 승인서명을 통해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다시 말하지만 부결된 것은 아니다. (후략) □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 예산을 사회 간접 자본투자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피신청인 : YTN

종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9.
처리결과 : 취 하

계에서 2조 원씩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해 갚아나가기로 했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보도내용

Y T N : 『공적자금 상환 예산 전용 검토』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5일자)

내 용 : 정부가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 예산 3조 2천억 원을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열린우리당이 어제 당정 협의에서 공적자금 상환 예산 3조 2천억 원을 내년에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활용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2008년에 실사를 통해 초과 금액을 계산한 뒤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대우계열사 등의 기업 가치가 올라 공적자금 상환 부담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여 정부는 그동안 인위적인 경기 부양 대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공적자금 상환 예산 전용 검토는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말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세우면서 회수가 어려운 69억 원 가운데 20조 원은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49조 원은 25년동안 일반회

본지는 지난 6월 15일자 『공적자금 상환 예산 전용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공적자금 상환 예산 3조 2천억 원을 인위적인 경기 부양대책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2007년도 일반회계 출연예산을 줄여 이를 인위적 경기부양용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Y T N : 『공적자금 상환 예산 전용 안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2일자)

내 용 : 정부는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 예산 3조 2천억 원을 당초안대로 예산에 모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공적자금 상환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회간접자본이나 복지 등 재원 배분이 불가피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어 여유가 있는지 그동안 검토했지만 당초 예정대로 공적자금을 갚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 예산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전용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건설사 명의의 허위 시공참여 의향서를 배포하여 물의를 빚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
(본부장 성 운 기)

피신청인 : 경기신문
종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1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기신문 : 『주공 허위건설사 내세워 말썽』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2일자 사회면)

내 용 :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안양 7동 재개발사업 시행을 추진하면서 국내최대 건설사들 명의를 허위 시공참여 의향서가 게재된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은 주공측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시공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주공측이 대기업을 이용, 주민들을 현혹해 시행권을 따내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략)

주공측은 이에 지난달 말쯤 A3 용지크기의 홍보물에 '주택공사 재개발사업 대형시공사 참여의향서 제출!' 이라고 적시하고, 국내 굴지의 S사, D사 등 10여개 건설사의 참여의향서 공문을 함께 실어 각 가정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 홍보물에 게재된 이들 건설사의 공문 제출사실을 확인한 결과 S사 공문은 서울지역 재건축 사업 참여의향서였고, 또 다른 D사의 경우 주공측에 덕천마을 재개발 시공참여 의사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영건설사 시공을 추진중인 덕천마을 조합추진위 등은 “주공측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의 가짜 시공참여 의향서를 마치 덕천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날조했

다”며 “공기업의 기업윤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2일자 『주공 허위건설사 내세워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안양7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최대 건설사들 명의를 허위 시공참여 의향서가 게재된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에 반대하는 측이 해당 사업에 대형시공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공사 사업에 대형시공사가 참여의향을 보여오고 있음을 총체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허위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참여의향서를 허위로 날조한 사실이 없으며, 대기업을 이용하여 주민을 현혹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 □

국기원 연수원에 재직 중인 신청인이 자격시험 예상문제집을 만들어 원내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국제태권도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국제태권도신문 :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나』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9일자 2면)

내 용 : 돈에 눈이 먼 연수원 직원의 눈에는 연수생은 말 그대로 ‘봉’ 이었고, 연수원은 그런 ‘봉’ 들이 제돈 써가며 모여드는 목 좋은 시장에 불과했다.

지난달 16일부터 국기원(이사장 엄운규)에서 실시된 제140기 3급 사범지도자 및 제39기 3급 생활

체육지도자 교육에서 국기원 연수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연수생을 대상으로 예상문제집을 만들어 연수원 주변 태권도 용품점은 물론이고 강의실에서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략)

실제 이번에 연수를 받은 한 연수생은 “(연수생)충무를 통해 구입했다.”고 말했다. 구매 이유는 “시험이 당장 코앞에 닥쳤는데 불안한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샀다.”고 말해, 시험을 앞둔 연수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국기원 직원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적절한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취재에 응한 한 태권도 관계자는 “정확히 언제인지 연도는 알 수 없지만, 판매한 해수는 대략 7~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연수생을 상대로 한 문제집 판매가 연수원 내에서 공공연하게 장기간 지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략 7년 전 당시 가격은 1만 원, 올해 판매된 가격은 1만 4천 원으로 물가인상에 따라 가격도 올려받았다.

이 문제집의 겉면에는 현재 저자의 표시가 없고, 책의 맨 뒤에 오모 부장을 저자로 표시하고 있다. (중략)

그렇다면 당시에는 어떻게 팔았을까?

지난해 연수생과 이미 연수를 받고 일선 관장이 된 연수생들은 “이론 수업 시간에 책을 소개하고 즉석에서 판매가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작년까지는 수업시간에 강의실에서 판매한 것이다.

문제집 판매와 관련해 취재에 응한 한 관장은 “그래도 올해는 밖에서 파니까 많이 나아진 것 아니냐?”고 말해, 연수원을 더 이상 신성한 교육기관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자격증을 얻기 위한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략)

또한 연수원 직원들이 각종 자격연수 과정에 가입해 친분이 있는 연수생은 우대하고 있다는 소문도 이번 사건을 통해 조사해볼 소지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이 틀리게 없다. 윗물이 흐린 국기원이 윗물만 흐린 줄 알았더니, 아랫물도 만만치 않다.

염운규 이사장의 해외단증 발급과 관련한 20%

수수 문제로 윗물을 흐렸다면, 이번 문제집 판매를 통해 흐린 윗물을 고스란히 받은 아랫물도 윗물만큼 흐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9일자 2면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나』 제하의 기사에서 국기원 연수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연수생을 대상으로 예상문제집을 만들어 연수원 주변 태권도 용품점은 물론 강의실에서도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연수원 내 이론수업시간에 연수생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즉석에서 판매가 이뤄진 적은 없으며, 현재 책자의 겉표지에는 도서출판 ○○으로 저자가 표시되어 있고 해당 문제집 판매와 내부 직원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자격연수과정에 가입해 친분이 있는 연수생을 우대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국기원 연수원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6월 9일자 2면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나』 제목의 기사에서 국기원 연수원 오모 부장이 연수생을 상대로 강의실에서 문제집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모 씨는 수업시간 중에 연수생들에게 책을 소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된 문제집에 대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를 지난 2005년에 이미 도서출판 ○○에 양도한 바 있어서 연수원 직원들과 교재판매 이익금을 ‘나눠먹기’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 7. 14.까지 국제태권도신문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인 ‘판매기간은~모든 척 했나?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제태권도신문 : 『국기원 연수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신인 여가수가 벌인 강도피해자작극이 사전에 계획된 마케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6
청 구 명 : 정정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마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마이데일리 : 『○○의 강도 자작극과 자폭마케팅』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7일자)
내 용 : 최근 지하철역에서 강도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이것이 자작극이라고 밝혀진 여가수 ○○을 보면서 떠 오른 것은 연예계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자폭 마케팅이다.

○○은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쯤 소매치기가 커터 칼(문구용 칼)로 옆구리를 위협해 지하철 선릉역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얼굴을 때리고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수사 결과 자작극으로 밝혀졌고 이후 ○○은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생방송을 앞두고 몸상태가 안좋았다. 라이브를 해야 하는데 심적으로 불안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작극이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그날 방송을 피하고 싶었다. 일이 커진 후 불안

해서 잠도 못 잤다. 열심히 음악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고 집안 사정도 어려워 힘들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경찰의 말을 인용해 ○○의 강도 피해 자작극에는 자신을 알리려는 마케팅 의혹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7일자 『○○의 강도 자작극과 자폭마케팅』 제하의 기사에서 ○○의 자작극 사건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연예계의 자폭마케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을 알리려는 마케팅 의혹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은 신인의 입장에서 자주 오지 않는 생방송 출연기회에 대해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경우 입게 될 피해를 염려하여 벌인 즉흥적인 사건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인터뷰 형식을 통하여 ○○이 자작극을 벌인 이유가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고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한다. □

검찰직원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충북조정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청주MBC-TV

중 재 부 : 총복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청주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6월 2일 21:00)

내 용 : >앵커 : 검찰청 경비원이 검찰 전산망에 접속해 수배 중인 사기 용의자의 지명수배를 해제시켜 준 여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기자 : 청주지검 정문 경비를 서는 40살 이모 씨는 지난 2월 검찰 전산망에 몰래 접속해 사기혐의 용의자 권모 씨의 지명수배를 해제 시켜줬습니다. 벌금을 내러 여러차례 청주지검을 드나들어 안면이 있던 권씨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원경찰인 이씨가 검찰 전산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청주지검은 업무가 바쁠 때 청원 경찰이었던 이씨에게 검찰 징수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경비를 서면서 작년 여름부터 10개월간 지검 징수계에서 업무도 함께 봤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 : 정식은 청원경찰인데 여기 업무가 워낙 바빠다보니까 인력 보강할 처지는 안되고 하니까 그냥 (중략)

>기자 : 청주지검은 이씨를 구속 했지만, 청원경찰이 검찰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긴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 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청주MBC-TV는 지난 6월 2일 「MBC뉴스데스

크」 프로그램에서 청주지방검찰청 징수계에 근무해 오던 경비원이 사기 혐의자 권모 씨의 부탁을 받고 검찰 전산망에 몰래 접속하여 권씨의 지명수배를 해제시켜 준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근무하는 재산형집행계 사무실의 내부 및 신청인의 모습과 함께 문제가 된 경비원이 청원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계의 업무가 바빠 부득이하게 근무하게 되었다고 말한 신청인의 목소리를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낸 바 있습니다. 위 방송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신청인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사건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거나 방송 경위에 대한 직장 내부에서의 해명을 요구받는 등 그동안 쌓은 사회적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개인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받았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인터뷰 내용을 방영한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의 내용을 담아 2006년 7월 6일 이전에 전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사과문

김○○ 귀하

2006. 6. 2일 저희 청주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방송된 ‘구멍 뚫린 전산망’ 보도와 관련해 귀하께 동의 없이 인터뷰를 내보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더 이상 같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제작에 유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국방부 장관이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대통령 정례보고 때 보고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응)
피신청인 : 동아일보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尹국방 “감군-軍개편 속도조절해야”』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7일자 1면)

내 용 : 국방부가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의 추진 속도를 국방예산 및 대북군사전략을 고려해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 보고에는 지난해 9월 확정된 ‘국방개혁 2020’의 추진 일정과 함께 대규모 병력 감축 및 군 구조개편을 시행하면서도 대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장기적으로 국방예산의 안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7일자 1면 『尹국방 “감군-軍개편 속도조절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의 추진 속도를 국방예산 및 대북군사전략을 고려해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감군’과 ‘軍개편’ 등 국방개혁의 속도조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추진의지 역시 확고한 만큼 군구조 개편 계획 등은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9일자 2면)

내 용 : △7일자 1면 『尹국방 “감군-軍개편 속도조절해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8일 대통령 정례보고에서 병력감축과 군 구조 개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없으며 ‘국방개혁 2020’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의 패션브랜드를 타 회사에서 수익성이 떨어져 정리된 브랜드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종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란제리 비중늘려 이익률 높일 것』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9일자 20면)

내 용 : (전략) 이 사장이 지휘봉을 잡은 옛 쌍

방울은 더 많이 변했다.

회사명이 트라이브랜드로 바뀌었다. 사명을 바꾸면서 회사 주가는 액면가를 넘어섰다. (중략)

트라이브랜드는 올해 안에 가두점 100개를 추가로 개설하고 중국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이호림 사장은 직원들에게 ‘3·3·3’을 약속했다. 3년 안에 매출이 3,000억 원, 주가 3만 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사장은 ‘군살빼기’에 돌입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던 ‘○○○’, ‘○○○○’ 등 겉옷 사업을 모두 정리했다. 방적사업도 철수했다. 유희 부동산을 매각한 것도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9일자 20면 『란제리 비 중늘려 이익률 높일 것』 제하의 기사에서 트라이브랜즈(구 쌍방울) 사장이 군살빼기에 돌입했으며 이를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던 ○○○○ 등 겉옷 사업을 모두 정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주)○○○는 지난 2000년 우리사주 조합결정, (주)중앙중금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트라이브랜즈(구 쌍방울)와는 별개의 회사로 패션 브랜드 및 외식브랜드 사업을 전개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의 패션브랜드 ○○○○가 현재까지 트라이브랜즈가 운영해 온 의류브랜드의 하나로써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기독교인들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공략법을 마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4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단월드 (대표이사 차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3.
처리결과 : 취 하

제안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의 단월드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신입회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략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후략)

(2) 『‘단월드’ 31%가 기독교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0일자)
〈보도내용(1) 참조〉

보도내용

국민일보 : (1) 『‘단월드’ 주의하세요』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0일자 21면)

내 용 : (전략)

단월드는 기수련과 뇌호흡 등 ‘민족 전통의 심신수련’을 가르치는 ‘명상 교육기관’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맞지 않는 면이 많아 기독교인이 참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략)

단월드는 또 신입회원의 절반 이상이 기존 회원의 소개를 통해 가입하지만,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인터넷이나 지하철 광고와 단월드 관련 책자를 통해 단학수련을 접하고 가입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신입회원의 확보를 위해 “연령별 종교별 등 특성과 성향에 따른 신입상담법 노하우를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0일자 21면 『‘단월드’ 주의하세요』, 인터넷 『‘단월드’ 31%가 기독교도』 제하의 기사에서 ‘단월드가 신입회원의 확보를 위해 연령별, 종교별 등 특성과 성향에 따른 신입상담법 노하우를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의 단월드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신입회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략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단월드의 ‘신입회원 성향 분석’ 내부 보고서에는 ‘신입회원 연령별, 학력별, 종교별, 지역별 등 특성 및 성향에 따른 신입상담법 등 노하우를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필요시 검색하도록 지원’이라는 통상적인 내용들만이 적혀 있을 뿐, 기독교인들의 단월드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별도의 공략법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사에 게재된 단월드 가입자의 종교별 분포도에 의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단월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국민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30일자 25면)

내 용 : 본보 6월 10일자 21면 『단월드 주의하세

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단월드는 “기사에서 보도한 보고서에는 ‘신입회원 연령별, 학력별, 종교별, 지역별 등 특성 및 성향에 따른 신입상담법 등 노하우를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필요시 검색하도록 지원’이라는 통상적인 내용만 적혀 있을 뿐, 기독교인들의 (주)단월드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별도의 공략법을 마련하였다는 보도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본보는 이 기사의 인터넷 보도시 (주)단월드의 요구를 받고 위 제목을 『단월드 21%가 기독교도』라고 수정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

한약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엄 ○ ○)

피신청인 : 보건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보건신문 : 『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2일자 4면)

내 용 : 한약은 효과가 미미하면서 부작용이 심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가 지난 4월 29일 전국 성인 남녀 831명(도시거주자 721명, 농촌거주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약 복용 후의 효과·부작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약을 먹고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87.1%나 달했고, ‘효과를 봤다’고 응답한 사람은 12.9%에 불과했다.

특히 한약을 먹고 자주 겪게 되는 부작용으로

‘소화불량’ (232명), ‘가슴이 두근거렸다’ (195명), ‘헛배부름’ (172명), ‘설사’ (161명), ‘뱃속이 답답하다’ (161명), ‘얼굴이 부었다’ (155명), ‘피부가 가려웠다’ (146명)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가슴이 항상 답답하다’ (137명)거나 ‘변비’ (134명)와 ‘살이 더 찼다’ (129명), ‘머리가 무거웠다’ (124명), ‘가스가 많았다’ (101명), ‘눈이 충혈됐다’ (94명), ‘부정맥이 나타났다’ (37명), ‘심장병이 더 악화됐다’ (25명)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약을 직접 먹어본 249명 가운데 ‘효과가 있었다’ (52명), ‘효과 없이 부작용만 있었다’ (96명), ‘악화됐다’ (30명), ‘효과 모르지만 부작용이 있었다’ (81명) 등으로 답해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만 212명이나 됐다.

이들은 주로 한의원(701명)과 한약방(120명), 한약국(47명), 민간(44명)에서 한약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의 효과를 본 연령층은 6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살이 찼을 경우가 많았다. 70대 이상 노인층일수록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았다. 노인층은 젊은 층에 비해 자연치유력이 미약해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젊은 여성의 경우 한약을 먹고 살이 찼을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신부전증 또는 호르몬 부작용으로

여겨지고 있다.

부작용을 질병별로 분류해보면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게 위장질환이다. 한약을 먹을수록 위장기능이 나빠지고, 만성위장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60대의 한 남자는 모 유명한의사로부터 보약을 한제(20첩) 지어 5~6개월가량 먹었는데, 한약만 다려 먹으면 구역질과 위통, 소화불량, 전신 피곤, 설사가 나타난다고 호소했다. 이 남자는 보약을 먹지 말고 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수십만 원을 주고 산 것이 너무 아까워서 억지로 먹었다고 한다.

이처럼 위장장애가 심하다는 것은 위장뿐만 아니라 전체 내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선 위장에서 대장에 영향을 주고, 직접 간장에 영향을 주면서 곧바로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신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대뇌와 전체 신경, 호르몬에까지 영향을 주는 엄청난 폐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한약을 먹고 위장병이 생겼거나 위장장애가 생겼다면 간장, 심장, 신장 등 장기와 호르몬 계통, 자율신경, 대뇌 등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도 한약을 먹으면 위장병이 생기며, 만성위장장애를 갖고 있을때 한약을 먹을수록 위장병을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한약을 먹었을 경우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약효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22일자 4면 『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라는 제목으로 고려수지침학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수지침학회의 설문조사는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려수지침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설문조사결과치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증상은 한약에 의한 부작용이다”라고 보도한 것은 전문적인 판단이나 관련 학술적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한약효과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22일자 4면에서 『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라는 제목으로 고려수지침학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첫째, 고려수지침학회의 설문조사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려수지침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둘째, 위 부작용 사례들은 한약복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학문 또는 임상적으로 전혀 인정된 바가 없고, 설문조사 항목에 있어서도 환자의 부작용 상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 환자의 기왕력 유무, 환자의 특이체질 여부 등 응답자의 부작용과 한약복용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항목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신문에 게재된 설문조사지에 의하면 한약부작용을 응답자의 경험의에도 응답자가 타인으로부터 들은 경우를 응답에 포함시켜 위와같은 사례가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학 또는 의료에 대하여 비전문매체인 보건신문이 설문조사 결과치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응답자가 몇%였다”라는 식으로 통계를 인용보도하는 범위를 넘어서 임의로 “이러이러한 증상은 한약에 의한 부작용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립니다.
- 내 용 : 본지 5월 22일자 4면에 보도된 『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 제하의 설문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려수지침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 기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약은 근본적으로 질병의 치료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므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및 복약지도에 엄격히 따른다면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7월 2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보권신문 5면에 게재한다.
- 위 1,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위 1항 기재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담당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보권신문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7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외환은행 매각결정 과정에서 론스타에 스톡옵션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1)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4월 6일 21:00)

내 용 : >앵커 :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사외이사들이 자신들의 스톡옵션을 챙기는데는 사실상 목을 매다시피 했던 것으로 KBS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 당시 이사회 의장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지난해 말, KBS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사외이사들이 받은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정○○ 당시 이사회 의장 등은 미리 예정된 스톡옵션을 정상적인 절차로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취재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2003년 8월 26일 간담회 회의록입니다.

매각계약 체결 하루 전인 이날 이○○ 당시 행장은 스톡옵션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매각자문사 측 역시 스톡옵션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킵니다.

그런데도 정○○ 당시 이사회 의장은 행장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이 될 론스타 측에 스톡옵션을 요구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측 매각자문을 맡았던 신○○ 전 모건스탠리 전무는 당시 론스타 측이 미국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러냐며 불만을 표시해 한국적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넘어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당시 정○○ 이사회 의장이 먼저 스톡옵션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해와 굉장히 당황했으며 내부적으로 큰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2)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4월 10일 21:00)

>앵커 : 외환은행 매각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 대통령경제보좌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을 결사반대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스톡옵션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우선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

보좌관이 매각을 반대했나 여부입니다.

정 보좌관은 지난 해 10월 국회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반대할 수 있는 것은 다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KBS가 확보한 8건의 당시 이사회나 간담회 회의록에는 정 보좌관이 반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론스타와의 협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장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 은행장도 매각을 반대한 이사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본 방송이 2006년 4월 6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정○○ 현 청와대경제보좌관 등 2003. 8. 당시의 사외이사들에 대하여 “스톡옵션에 목맨 외환은 사외이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안건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를 정정하여 보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본 방송은 2006년 4월 10일 「KBS뉴스9」 프로그램 “정○○ 의장, 외환은 매각반대 안했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결사반대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부분과 “KBS가 당시 확보한 8건의 이사회나 간담회 회의록에는 정보좌관이 반대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론스타와의 협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장성명까지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정보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4월 6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정○○ 현 청와대경제보좌관 등 2003. 8. 당시의 사외이사들에 대하여 “스톡옵션에 목맨 외환은 사외이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였으나, 2003. 8. 당시 외환은행 사외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 현 청와대경제보좌관은 당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의 부여는 은행 내부의 사정상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정관과 2000년 이후 시행해온 성과보상모범규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

본 방송이 2006년 4월 10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정○○ 의장, 외환은 매각반대 안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당시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및 간담회에서, 외환은행의 매각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며, 론스타로의 매각에 대하여 정○○ 의장의 성명서에서 은행업이 주업이 아닌 론스타가 어떠한 경영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외환은행을 건설한 우량은행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계속 주시하겠다는 밝히고, 경영계획을 요구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신청인은 본 신청을 취하한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 김○○, 이○○, 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 11471)은 취하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6년 4월 6일 저녁 9시뉴스 및 같은 달 10일 저녁 9시뉴스 시간에서, 신청인과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에 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에 관한 보도를 할 때에 그 공적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고, 그 평가를 절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하도록 한다.

다만, 한국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사건에 관한 검찰수사나 감사원 감사과정 등에서 신청인에 관하여 명백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사전에 신청인 또는 사무실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

국세청이 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소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세청 (청장 이 주 성)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브레이크 없이 번지는 외국자본 혐오증』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6일자 A31면)
내 용 : (전략) 외환은행을 팔아 수조원 차익을
남긴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탈세논란을 계기로 국
세청·검찰·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일제
히 칼을 뽑아들었다. 국세청은 론스타는 물론 이
참에 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 1,200곳과 외국
인 투자기업 4,900곳도 조사하겠다고 하고, 공정
위는 주요 외국기업 5~6곳의 담합·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국회는 얼마전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둔 외국기업의 투자수
익에 세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외국기업이 누리던 조세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
의 소득세법과 외환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6일자 A31면 『브레이크 없이
번지는 외국자본 혐오증』 제하의 기사에서, 국세청

이 외환은행을 팔아 수조 원 차익을 남긴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탈세논란을 계기로 론스타는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 1,200곳과 외국인 투
자기업 4,900곳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
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관련 업무는 조사와는 상
관없는 세적정비 또는 실태확인 업무이며, 그 대상
범위도 일부에 한정됨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국세
청은 사실내용과 같이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1,200곳과 외국인 투자기업 4,900곳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5월 6일자 A31면 『브레이크 없이
번지는 외국자본 혐오증』 제하의 사실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 연락
사무소에 대해 일상적으로 해오던 세적정비 또는
실태확인을 하는 것일 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6
년 7월 7일자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
월 7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의 아들이 숙제를 안했다는 꾸지람을 듣고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김 ○ ○ 2. 윤 ○ ○
피신청인 : TJB-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TJB-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6년 6월 9일 20:00)

내 용 : ▷ 김○○ 앵커 :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1살 짜리 초등학생이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 기자 : 어젯밤 10시쯤 대전에 한 아파트 입구에서 11살 김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군은 이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숙제를 안 했다며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은 뒤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주민들은 김군의 가정이 평범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략)

▷ 김○○ 기자 : 실제로 숨진 김군은 평소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동생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 인터뷰 : 엄마가 잘 안 해줘서 뭐지? 김밥도 못 먹고 막 밥도 못 해와가지고 그런데 뭐지? 그 홈페이지다가 죽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 김○○ 기자 : 아이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평소에 아이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눠 정서적인 교감을 가져야 어린이 우울증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TJB뉴스 김○○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방송이 지난 6월 9일 「8시뉴스」 프로그램에 11살짜리 초등학생 김모 군이 숙제를 안했다고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난후 자살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익명의 초등학생(6학년)과 인터뷰 과정에서 사망학생이 부모가 도시락을 싸주지 않고, 김밥을 싸주지 않아 홈페이지에서 죽고 싶다는 내용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망한 김군은 엄마가 당일 저녁 9시 30분쯤 집에 귀가한 후, 학교생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뿐, 꾸지람을 듣거나 야단을 맞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터뷰한 초등학생도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님이 밝혀졌고 그 학생과 홈페이지를 주고받은 사실조차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TJB 대전방송 2006년 7월 14일 저녁 8시 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은 배경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 단, 기일을 지체할 경우 지체 1일당 금 500,000원의 금원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5,000,000원을 2006년 8월 7일 까지 지급하되,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2006년 8월 8일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TJB-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6년 7월 14일 20: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웅천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을 부설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건설(주) (대표이사 김 ○ ○)

2.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유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도일보 : 『웅천하수종말처리장 부설시공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3일자 17면)

내 용 : 웅천 하수종말처리장 개거구간이 부설시공 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 되고 있다.

이 구간의 구조물 되메움은 8km 이상 지점에서 재료를 채취한 후 순 성토(좋은흙)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터파기시 나온 준설토(뺨)로 되메움을 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웅천 하수종말처리장은 178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2004년 착공해 오는 2007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과 ○○엔지니어링에서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 현장은 C-1라인(농수로 개거구간)구조물 시공 후 되메움을 하여 2차선 8m도로로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

특히 설계상에는 농수로 개거구간은 되메움 하여 도로를 만드는 노상층은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 다짐질률이 95% 이상 나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은 지지력이 없는 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곳 도로를 포장한 후 표면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표층이 균열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부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시공업체는 설계도에도 이곳은 차집 관로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뺨) 2,379루베는 사토처

리하게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사를 불법 매립해 부설시공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곳 현장이 책임 감리현장일지라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은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여론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웅천하수처리장 부설시공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4월 3일자 17면에 『웅천하수종말처리장 부설시공 의혹 제기』라는 제목 및 「구조물 되메움에 뺨사용」 도로균열 등 부작용 우려라는 부제로 공동도급사 ○○건설과 ○○이엔지가 농수로 개거구간을 되메우기 하면서 지지력이 없는 뺨을 사용하여 추후 포장면이 균열이 발생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부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차집관로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뺨) 2,379루베는 사토처리 하지 않고 불법 매립해 부설시공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있어 이는 감리단 및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공동도급사 ○○건설(주) 및 (주)○○엔지니어링은 농수로 개거구간 되메우기 재료로 뺨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차집관로 공사시 발생된 토사(뺨) 2,379㎡는 전량 사토처리돼 부설시공이 아닌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6년 7월 15일자 지역1면에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소제목(구조물 되

메움에 뺄 사용...)의 고딕체로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웅천하수처리장 부실시공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5
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법사위에 소속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3

청 구 명 : 조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임 중 인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육 심화!

예결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에 우선이 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배치를 할 그런,

자막 : 특혜를 주는 등 유인책 제시하지만 ‘법
사위 배정 반발’은 큰 상황

자막 : 열린우리당 상황도 마찬가지로 6월 20일,
의원총회. (후략)

보도내용

Y T N : 「뉴스Q」 프로그램 (2006년 6월 21일 18:30)

내 용 : >안경을 원내 수석 부대표 : 아- 아울러
서 우리 최대의 관심사인 우리 의원님들의 상임위
배정도 금주 중에 배치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자막 : “최대 관심사인 의원님들 ‘상임위’ 배정
도 금주 중에”

자막 : 상임위, 법안 심사하는 국회 내 17개 위
원회 의원들의 ‘희망’ 고려해 지도부가 배정... 그
런데!

신청이 아주 부진한데는 법사위에 두 분이 하셨
고, 환노위에 두 분이 하셨고, 정무위에도 두 분만
신청하고,

자막 : 일부 ‘알짜’ 상임위는 지원자 폭증. ‘법
사위’ 등 몇몇은 크게 미달!

상당히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실
정입니다. 따라서,

자막 : “상당히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실정!”

자막 : 특히 ‘법조 출신’이 주로 가는 ‘법사위’
는 앞으로 ‘변호사 겸직’ 불가! 의원 개인 수입
감소!

의원님들의 지원이 저조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자막 : 때문에 의원들의 ‘법사위 기피’ 현상이 더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21일 「뉴스Q」 프
로그램에서 돌발영상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 임종인이 국회 법사위에 소속되면 변호
사 겸직을 할 수 없어 개인 수입이 감소되므로 법
사위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는
내용의 동영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국회의원 임종인은 국회 법사위에 소속
되기 전인 2005. 11. 23. 이미 변호사 휴업신고를
한 상태로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고 법사위에
소속되더라도 개인 수입 감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사위를 기피하고 있
는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 신청인을 특정하여 명
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
상을 수용할 수 없다. ☐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원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향신문 : 『교수도 학생도 ‘더듬’...핵심내용 “넘어가”』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7일자 9면)

내 용 : #1. ㄱ대의 ‘수리물리학’ 시간. 원서를 보며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지만 책을 보고 읽는 수준이었고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는 학생도 교수도 진땀을 뺐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고 불만을 떠뜨렸다.

#2. ㅇ대의 사회학 전공과목인 ‘지식사회학’은 텍스트를 영어 원문으로 읽고 학생들이 소규모로 토론을 벌이는 수업. 하지만 번역서를 읽기에도 난해한 저작을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 벅찬 데다 학생들의 영어실력도 부족했다. 기초적인 의견교환만 하다 결국 교수·학생 합의 아래 한국어로 토론수업을 진행했다.

주요 대학들이 글로벌화 명분 아래 영어강의의 비중을 급격히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천차만별인 데다 일부 교수들은 영어강의를 소화할 역량이 없다. 영어에만 집착한 나머지 부실한 강의로 이어지는게 현실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27일자 9면 『교수도 학생도 ‘더듬’...핵심내용 “넘어가”』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 영어강의의 그늘 준비 안 된 부실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대학 강의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천차만별이며 교수들의 영어수업 역량도 떨어지면서 부실강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 ㅇ대의 사회학 전공과목인 ‘지식사회학’은 기초적인 의견교환만 하다 결국 교수, 학생간의 합의 아래 한국어로 토론수업을 진행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학생들이 질의시 영작이 어려운 부분을 한국어로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학교 영어수업 규정상 허가된 부분으로 모든 평가는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대학 영어강의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6월 27일자 9면 『교수도 학생도 ‘더듬’...핵심내용 “넘어가”』 제목의 기사에서 ㅇ대 사회학과와 ‘지식사회학’ 영어강의가 학생들의 능력 부족 등으로 기초적인 의견교환만을 영어로 하다가, 교수·학생 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식사회학’ 강의에 대해 교수와 학생이 한국어로 수업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며, 기초적인 의견교환뿐만 아니라 전체 토론수업이 영어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 7. 12.까지 조정대상기사가 올라진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에 피신청인 명의의 공문을 통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경향신문 2006. 7. 7.자 9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중 ‘준비 안된 부실수업’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7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이 불투명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변 양 균)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천문학적 재원 어디서 나오나』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2일자 A3면)

내 용 : 정부가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총 540조 원이 소요되는 10여개 대형 국책사업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개편, 저소득 근로자 지원, 노인요양보험 등 새로 추진될 복지예산사업도 많아 국가 재정의 급속한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30%선을 넘어선 상태여서 앞으로 투입될 천문학적 국책사업 비용의 상당 부분은 후세들이 갚아 나가야 할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새로운 대형 사업들이 추가돼 총 11개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4년에 자주 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사업, 미군부대 이전, 국가균형발전계획, 농업·농촌대책이 발표됐고, 2005년엔 행정복합도시의 구체 계획이 나왔다. 올해엔 6자회담에 따른 대북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이 더해졌다. 이들 사업에 드는 비용은 건당 최소 6조 원대(대북 지원)에서 최대 289조 원(국방개혁 전력증강사업)에 달

한다.

이들 11개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총 재정비용은 540조 원이 넘는다. 계명대 윤영진 교수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의 부실문제뿐 아니라 대형 사업들의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략)

지난 7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각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을 보면 총 251페이지 계획서 가운데 재원 조달을 설명한 부분은 딱 한 페이지뿐이다. 그나마 내용도 “비과세·세 감면을 축소·폐지하고 세출(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애매모호한 얘기뿐이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6월 12일자 A3면 『천문학적 재원 어디서 나오나』 제하의 기사에서 현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대형국책사업 11가지를 열거하면서, 이들 사업의 총 재정규모가 540조 원을 넘으나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불투명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 중 재원대책이 불투명하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독자들에게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불신감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보도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농업·농촌대책, 국토 균형발전 등 미래한국의 성장을 위해 지금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공청회, 국회보고, 입법 과정등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이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재원대책이 불투명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열거한 11개 대형 국책사업들은 향후 최장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기된 사업규모 540조 원은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05~'30년까지의 정부의 사업비 총규모 7,760조원(추정치)의 6.9% 수준,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05~'09년 사업비 가용재원 규모가 777조 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제기된 국책사업들의 사업추진비는 150조 원(+ α) 수준으로, 정부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기획예산처 반론

• 내 용 : 본지 6월 12일자 A3면 『천문학적 재원 어디서 나오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기사에 언급된 공공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 재원배분의 기본 틀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재원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 재정이 부담 가능한 규모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선일보 2006. 7. 7.자 B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정부 사업계획만~고스란히 국민부담'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기획예산처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7일자 B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미국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확인을 위해 농림부가 실시한 ‘치아감별’ 방식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8.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내 나이 묻지마! 미친 소 그냥 먹어?』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일자)
내 용 : 농림부 박○○ 축산국장은 5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쇠고기 작업장 37곳의 방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수출승인 대상 작업장을 6

월 7일 발표할 것”이라며 “6월 하순께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보건의료연합,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 사이에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의 쟁점이 되었던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세번째 광우병 소의 나이확인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 생명과 식품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의 치아(dentition)는 품종, 지역적 위치, 유전

적 특성, 먹이, 질병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개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대적 나이를 추정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출생기록이 담긴 문서(documentation)가 없을 경우 절대적 나이를 판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국 광우병 소 나이판정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 우리 농림부에 보내온 자료들을 비교 검토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지난 3월 13일 미국 농무부(USDA)는 앨라배마 주에서 미국내 세번째 광우병(이하 BSE) 양성 소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역학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과학적·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해당 소가 열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소가 1997년 사료금지법 이전에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중략)

예를 들면, 신뢰도 95.5%의 '정상분포도'에서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암소는 '정상(95.5%)'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는 이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 (4.5%) 영역에 속한다.

즉,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 소는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9,500만 마리의 소 중에서 '비정상' 적으로 BSE에 감염된 특이한 경우다. 그런데 이러한 소의 치아를 건강하고 평균적인 '정상분포' 내의 치아와 비교하여 절대연령을 측정할 수 있을까?

게다가 미국 측에서 보내온 치아사진 자료들 사이에도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부는 지난 4월 13일, 4명의 조사관을 제주도로 출장보내 '치아조사'를 실시했다.

농림부의 조사의 내용은 제주도에서 8~13세 사로레, 앵거스 암수 7두의 치아를 촬영한 사진 7장을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와 비교하여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 판정을 한 것이 전부다.

그리고 농림부는 4월 19일~23일, 미국 BSE 감염 소 나이 확인을 위해 3명의 조사관을 미국 현지로 파견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사는 통계학적으로 전혀 유의미성이 없는 난센스에 불과하다.

결국 치아조사에 의한 나이 판정은 '고무줄'과

같아서 미국 정부는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소가 열살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는 여덟살 이상이라고 판정하였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미국은 1997년 반추류에 동물성 사료 투여를 금지하는 법을 기준으로 고무줄을 늘려 열살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반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농림부고시 제2006-16호)> 제21조 단서조항에 사료규제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준으로 여덟살 이상이라고 판정하였다.

과연 미국 농무부와 한국의 농림부는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맞출 수 있는, 전세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신기술을 개발했단 말인가? 한미 정부는 하루빨리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맞출 수 있는 '특허 고무줄(?)'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일자 『내 나이 묻지마! 미친 소 그냥 먹어?』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알라바마 주에서 확인된 세 번째 BSE 감염소의 나이확인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 생명과 식품안전에 해칠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림부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미국 BSE 방역조치, 쇠고기 안전조치 등을 평가·활용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정상분포도를 인용한 통계학적인 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상분포도를 이용하여 마치 통계적인 조사를 거친 양 왜곡했으며, BSE 감염으로 소의 치아가 비정상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BSE 감염소의 치아가 정상소와는 다른 것처럼 왜곡보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내 나이 묻지마! 미친 소 그냥 먹어?” 관련 농림부의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일자 초기화면에 『내 나이 묻지마! 미친 소 그냥 먹어?』 제하의 기사에 대해,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미국 BSE 방역조치, 쇠고기 안전조치 등을 평가·활용하였고, 아울러 BSE 감염여부는 통계학적인 정상분포도 및 치아상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 초기화면에 2006. 7. 7.부터 7. 8.까지

24시간 동안, 제목(내 나이...)을 표기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게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오마이뉴스〉 뉴스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내 나이 묻지마...)와 링크시킨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반론보도문 “내 나이 묻지마! 미친 소 그냥 먹어?”』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7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신인 여가수가 벌인 강도피해자작극이 사전에 계획된 마케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24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보도내용

문화일보 : 『“뜨다면 물불 안가려” 스타病 만연』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0일자 1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46의 보도내용 참조〉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15년 전 신청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월간미술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월간신문 : 『월간미술 30년, 역대 記者들이 말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호 70~77면)

내 용 : 1990년 당시 <월간미술> 팀원들. 왼쪽부터 이○○(기자), 김○○(기자), 김○○(기자), 김○○(당시 동서박물관장), 이○○(디자이너), 김○○(국장), 이○○(부장), 한사람 건너 홍○○(기자), 이○○(교정), 서○○기자는 사진을 찍느라 빠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본지는 지난 5월호 『월간미술 30년, 역대 記者들이 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월간미술』이 처음 만들어지던 무렵”이라는 제목으로 30주년을 맞은 월간미술지가 미술전문지로서 오랜 세월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른 것을 축하하고 그간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의미에서 前『월간미술』 이○○ 부장의

회고 글을 실으면서 1990년 당시 『월간미술』 팀원들의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인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청인의 초상권이 침해당해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7월 25일까지 대표이사 명의로 다음 내용의 사과문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되, 대표이사 개인서명을 기재한다.

• 내 용 : 본지 지난 5월호 75면에 실린 ‘1990년 당시 월간미술 기자들’ 제목의 사진에서 이○○님의 이름을 이○○○으로 오기하고 사진게재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아 본의 아니게 심적 고통과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월간미술을 대표하여 이○○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웅천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관망세로 전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웅천발전협의회 (회장 최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9.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웅천 폐기물매립장 해법찾나』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6일자 17면)

내 용 : 민선 2기부터 지루하게 미뤄져왔던 웅천폐기물 매립장이 관련 법률과 사업주가 바뀌며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결과 타결의 실마리가 잡혀 지역현안을 둘러싼 민원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중략)

지난 1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요건이 대폭 간소화됐으며 환경부의 유권해석도 “민원을 이유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고 밝혀 폐기물 허가와 관련 다소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자 사업자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 지난 2일 보령시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략)

사업주는 지난 2004년 11월 사업장을 인수하고 사업을 위한 사업장 주변 부지를 확보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주민들이 요구하던 암거박스의 안전성에 대해 구조물 안전진단을 마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허가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그동안 무조건 반대를 외치던 주민들도 “허가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한발 물러선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기간 내 해결될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26일자 17면 『웅천 폐기물매립장 해법찾나』 제하의 기사에서 웅천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이 간소화되었고 환경부도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반대 주민들도 관망세로 전환해 기간 내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환경부에서는 아직 사전 환경성검토 중이며, 주민들의 반대와 매립장의 제방 및 우수통수로의 안전성 문제, 웅천천 하류의 담수호 오염 문제, 소하천 정비법 저척, 불법건축물 및 처리시설 사용 불가능 등 허가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령시에서는 반력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폐기물 사업자는 지난 6월 1일 허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5월 26일자 17면에 『웅천폐기물매립장 해법찾나』, ‘환경부 ‘하자없다’ 유권해석...반대 주민들도 관망세 전환’ 제하의 기사에서 그동안 무조건 반대를 외치던 주민들도 ‘허가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환경부의 ‘하자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내용은 웅천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며, ‘반대 주민들이 관망세’로 전환했다는 내용도 상당수의 반대 주민들이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2006년 7월 12일 이전까지 2면에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재목(보령시 처리결과 주목)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보도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더운 여름철 신청인들이 음료수를 마시며 걷어가는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5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구 ○ ○ 외 2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대구 더위의 위력?』 제하의 사진 (2006

년 5월 31일자 A12면)

내 용 : 대구 더위의 위력?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를 보인 30일 낮 대구 도심 동성로에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손에손에 음료수를 들고 때이른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본지는 지난 5월 31일자 A12면 『대구 더위의 위력?』 제하의 사진에서 신청인들이 컵에 든 음료수를 먹으며 길을 걷어가는 모습을 담아 더위와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얼굴을 찡그린 신청인들의 모습을 다소 희화화된 모습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진은 신원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신청인들은 촬영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위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추후 신문에 게재될지의 여부조차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청인들의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을 중앙일간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도사진과 관련

한 놀림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6,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6년 7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합해서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본지 지난 5월 31일자 대구·경북면에 실린 『대구 더위의 위력?』 제목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신청인에게 사진게재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아 본의 아니게 심적 고통과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사진기자 등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농림부가 농협의 신용사업과 유통사업을 분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집 수 일 : 2006. 6.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겨레 : 『농협 신용-유통분리 본격논의 수협 사례 둘러싼 신경전 '팽팽'』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9일자 17면)
내 용 :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문제가 물 위로

떠올랐다. '신-경 분리안'의 농림부 제출시한(30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농협·농림부도 분리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농협 쪽은 사업을 분리하면 추가 자본금 확충 등에 7조 6천억 원이 필요해 당장은 분리가 어렵다는 견해다. 사실상 사업 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신경분리는 2001년 수협중앙회가 먼저 했는데, 이를 놓고도 찬반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중략)

농림부 쪽은 수협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신경분리가 경제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2006년 6월 19일자 17면에 『농협 신용-유통분리 본격논의, 수협 사례 둘러싼 신경전 ‘팽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부, 분리시 수협처럼 경제사업에 도움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입장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 본지의 자체확인 결과 농림부에서는 상기 입장을 제시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한겨레 : 『반론 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5일자 2면)

내 용 : 본지 6월 19일치 17면 『농협 신용-유통 분리 본격논의 수협 사례 둘러싼 신경전 ‘팽팽’』 기사와 관련해서 농림부는 농협이 신용-경제 분리를 하게 되면 “수협처럼 경제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고창군수가 자수 박물관측의 공예촌 건립 요청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창군 (군수 이 강 수)

피신청인 : 고창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고창신문 : 『고창군! 공예촌과 장인촌 조성해 관광단지 만들어야』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0일자 8면)

내 용 : (전략) 고창자수를 유지하기 위해 타 시군의 단체장들은 혈안이 돼있었다. 함평의 이석형 군수는 일찍이 고창자수를 보고 “이같이 중요한 작품이 함안군에 있으면 업고 다니겠다”며 “3대째 전통 가업을 계승하며 맥을 이어가고 있는 박물관은 대한민국에 하나고 이 자수가 함평을 먹여 살릴 것이다”라며 고창자수에 대한 애정을 쏟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석형 군수는 3개월 동안 박봉희 원장을 쫓아다니며 예산으로 680억 원을 따냈으니 함평으로 가자는 좋은 제안을 받았었다. (중략)

함평군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다. 이석형 군수와 이강수 군수가 자수박물관에서 만나 고창자수를 발전시킬 수 있고 고창을 살릴 수 있

는 좋은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강수 군수는 상식밖의 이야기를 꺼내 오히려 박 원장이 낮 뜨거울 정도였다고 한다.

또, 정읍시청의 직원도 자수를 보고 말 그대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고창자수를 유지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추진단장, 과장, 계장, 담당자 등 7명이 박물관으로 찾아와 커다란 조감도를 펼쳐가면서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주는데 박 선생은 내심 깜짝 놀랐을 뿐더러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한다. 타시군의 러브콜이 쇄도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박 선생은 오로지 고창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뿌리쳤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은 어떠한가? 박 원장은 이강수 군수를 수차례 찾아가 “타지역에서 우리를 데려 가려고 안달이 났는데 내가 고창을 떠나면 역적이 된다”며 “군수님이 박물관 부지와 공예촌과 장인촌을 지어주신다면 우리 고창은 전 세계적인 인파로 북적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돈이 없으니 거기서 지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말로 일색.

박 원장은 함평과 정읍에서는 땅부지까지 대주고 예산도 준다는 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3대째 가업을 이으며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자수를 고창군은 무관심과 홀대로 지켜져야 하는 역사적인 문화를 사장시키고 있으니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강수 군수는 지난 2002년 군수선거 때 고창에

공예촌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4년의 임기동안엔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고창자수를 등안시 했었다고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0일자 8면 『고창군! 공예촌과 장인촌 조성해 관광단지 만들어야』 제하의 기사에서 공예촌 조성을 위해 전남 함평군이 예산 6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읍시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고창전통자수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반면, 이강수 군수는 함평군수와 만난 자리에서 상식밖의 이야기를 하고, 자수박물관측의 공예촌 건립요청을 무시하는 등 오히려 지역 문화유산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남 함평군이 추진중인 사업은 사업비 8천만 원에 불과한 공가인 고택을 개보수한 자수등의 전통체험형 숙박시설이며, 정읍시는 공예방 조성을 위해 경주, 청주, 통영의 공예방을 방문하였을 뿐 고창은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는 “공예촌 건립과 관련하여 함평군수와 만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군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을 들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여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고, 고창군청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공예촌 사업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6월 20일자 『고창군! 공예촌과 장인촌 조성해 관광단지 만들어야』 제하의 기사에서 공예촌 조성을 위해 전남 함평군은 예산 6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정읍시가 고창자수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반면,

이강수 군수는 함평군수와 만난 자리에서 상식밖의 이야기를 하고, 자수박물관 측의 공예촌 건립요청을 무시하는 등 등한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각 지자체에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이들 지자체는 대규모 공예촌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평군의 경우 예산 8천만 원을 들여 공가인 고택을 개보수해 자수등의 전통체험형 숙박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읍시는 예산 5억 원 규모로 100평 정도의 공예방을 건립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한편 이강수 군수는 공예촌건립과 관련하여 함평군수와 만나 의견을 나눈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함평군수와 만난 자리에서 상식밖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예단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확보방법, 부지매입 등 제반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군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하여 마치 이강수 군수가 비상식적인 사람인 것처럼 비쳐지게 하고, 고창군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6년 7월중에 발행되는 고창신문 8면 우측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고창자수 홀대 전통의 맥 끊길까 우려)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기자를 상대로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고창신문 : 『‘고창자수 홀대 전통의 맥 끊길까 우려’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9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 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1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노지킴이’ 자처한 ‘노빠주식회사대 표’』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정 치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6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26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26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 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262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액 참조> □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 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4.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정정·손배)

보도내용

문화일보 :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수차례 재판받 아』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7면)
내 용 :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과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으로 법원에서 수차례 재판을 받았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6, 17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끊임없이 회자되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 = 유 의원은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뒤 학생 운동을 시작했다. 유신 정권이 막을 내린 직후인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 하다 구속되면서 제적된 후 강제징집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이후 4년만인 84년 당국의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복교 허용조치로 대학으로 되 돌아와 복학생협의회장을 맡았다. 그러나 그해 9월 17일부터 10일간 서울대 학생들이 학내에서 비서 울대생 등 4명을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오인, 감

금 폭행해 부상을 입힌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 연루돼 유 의원은 구속돼 1년 6개월의 형을 살았다. 당시 유 의원이 감옥에서 쓴 ‘항소이유서’는 유명세를 탔다. 유 의원은 항소이유서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정의했다. 그러나 전모(51)씨 등 당시 피해자들은 2004년 4월 “유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항소이유서’에서 당시 사건 피해자들을 ‘프락치’로 지칭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프락치 사건’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의원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1월 5일자에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수차례 재판받아』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부터 검찰수사 및 법원판결 등 사실확인 결과, 민간인 4명은 정보원 프락치가 아니며, 서울대 여러 학생조직단체 간부들의 감금조사, 폭행·고문·강요, 조작·왜곡·테러 등으로서 허위로 조작·왜곡된 사건으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명칭은 서울대 간부 학생들의 민간인 고문, 조작·왜곡 사건으로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6. 1. 5.자 정치면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수차례 재판받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모(51)씨는 이 기사에 언급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서울대 간부학생들 민간인 고문 및 자백 강요 사건’이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8월 9일까지(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면에 게재한다.
-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편집국장 및 이○○ 기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KBS가 정치적인 이유로 개그맨 심현섭을 자사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6.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조선일보 : 『KBS 공정성 붕괴, 사장 임명방식서 비릇』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9일자 A10면)

내 용 : (전략) 강○○ KBS 감사가 최근 집필을 끝낸 ‘KBS와 권력’(서교출판사)을 통해 “KBS에

서 ‘땡전뉴스’의 속성은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권부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쉴 새 없이 꾸며지고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사를 쓴 유재천 한림대 교수는 “KBS 내부의 권력과의 야합을 있는 그대로 남긴 기록”이라고 말했다.

강 감사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대통령과 모습이 닮은 탤런트 박용식씨가 방송 금지를 당했다면, 노무현 정권에선 정권의 코드 구현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배제 당했다”며, 이회창 후보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던 개그맨 심현섭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나 김동건, 이계진, 박찬숙 등의 프리랜서 MC가 자리를 잃은 사례를 거론했다.

시대별로 구성된 이 책은 5공 시절 9시 뉴스 초반 소위 ‘땡전 뉴스’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시간대 KBS2 프로그램을 일부러 재미없게 만든 이야기나, 87년 12월 대선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들고 나올 만한 핫이슈를 사전에 터뜨리는 ‘김 빼기용’으로 ‘생방송 심야토론’을 긴급히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스스로 ‘고해성사’라고 부른 이러한 고백은 방송의 이미지 조작이 얼마나 은밀하게 자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해 방영된 ‘불멸의 이순신’은 노 대통령이 원작을 즐겨 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 긴급 기획됐다”고도 말했다.

인사방식도 사람만 바뀌었을 뿐 정권에 줄 세우기를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 강 감사는 방송 공정성 붕괴의 원인을 사장 임명방식을 비롯한 인사(人事)에서 찾고 있다. 그는 “정 사장 취임 이후 노조 간부 출신 중 팀장 이상으로 중용된 인원은 전체 179명 중 33명으로 18.4%를 차지한다”며 “이는 이전 사장들이 권력의 실세와 관련된 인물을 중용하거나 특정 인맥을 중용했던 편향적 인사와 마찬가지로”라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19일자 10면 『KBS 공정성 붕괴, 사장 임명방식서 비롯』 제하의 기사에서 강○○ KBS 감사가 곧 출간할 예정인 ‘KBS와 권력’에 대해 소개하면서 강 감사가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 대통령과 모습이 닮은 탤런트 박용식씨가 방송 금지를 당했다면, 노무현 정권에선 정권 코드 구현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배제당했다며 이회창 후보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던 개그맨 심현섭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나 김동건, 이계진, 박찬숙 등의 프리랜서 MC가 자리를 잃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개그맨 심현섭과 김동건, 이계진, 박찬숙 등의 프리랜서 MC는 정권코드에 맞추기에 의해 자리를 잃은 바가 없으며 특히 심현섭의 경우 현재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9면 우측상단부에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6년 6월 19일자 A10면 『KBS 공정성 붕괴, 사장 임명방식서 비롯』 제하의 기사에서 개그맨 심현섭이 정치적인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개그콘서트 담당피디인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입은 자란 그 보도내용에서 언급되거나 개별적인 연관성 즉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본 건 조정대상 기사에서 직접 거명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조정대상 기사와 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신

청인을 피해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언론 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14.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노대통령이 원작을 즐거 읽었다는 이유로 긴급 기획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6.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조선일보 : 『KBS 공정성 붕괴, 사장 임명방식서 비롯』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9일자 A10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6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19일자 10면 『KBS 공정성 붕괴, 사장 임명방식서 비롯』 제하의 기사에서 강○○ KBS 감사가 곧 출간할 예정인 ‘KBS와 권력’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난해 방영된 ‘불멸의 이순

신’은 노 대통령이 원작을 즐겨 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 긴급 기획됐다고 말한 발언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노 대통령이 모 방송사 예능프로에서 원작 ‘칼의 노래’를 언급하기 오래 전부터 후속 대하드라마 기획을 위해 ‘삼별초’와 ‘이순신’ 관련 서적을 검토하고 작가들과 접촉해왔던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 기획, 연출시 회사 및 특정 정치집단으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간섭이나 압력을 받은 바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9일자 기사에서, 최근 ‘KBS와 권력’을 집필한 강○○ KBS 감사가 지난해 방영된 ‘불멸의 이순신’은 노 대통령이 원작을

즐거워 있었다고 한 직후 긴급 기획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KBS의 담당 피디는 '불멸의 이순신'은 2002년부터 기획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작가를 섭외하여 준비한 후 여건이 갖추어진 시기에 방영한 것일 뿐, 노 대통령의 언급이나 정치적인 이유와는 무관하게 제작 방영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선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7월 2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4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비현실적인 산업단지법 규정으로 인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 가짜 공장들이 넘쳐 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금천 아울렛 타운에 웬 가짜공장들?』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5일자 17면)

내 용 : 서울 가산동 서울디지털국가사업단지(옛 구로공단) 내 금천패션타운에 '무늬만 팩토리형'인 아울렛 몰이 넘쳐나고 있다.

패션업체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이 지역 아울렛 몰에 입점하기 위해 가동하지도 않을 공장을 형식적으로 입주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만 판매시설을 둘 수 있다는 산업단지법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단지 지정제도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천패션타운은 옛 구로공단 2단지 지역으로 외환위기 이후 수출 의류업체들이 공장을 비운 자리에 아울렛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형

성됐다. 현재는 마리오아울렛을 비롯한 대형 아울렛 몰이 여럿 생겨나 공단의 옛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옷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아울렛 매장들이지만 대부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는 지역이 여전히 산업단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공장용지로서 용도가 다른 지역인 만큼 패션타운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을 풀어달라"는 입장인 반면, 산단공은 "서울에 남은 마지막 국가산업단지로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아울렛업계 관계자는 "패션·유통업체들이 '30%룰' 때문에 단지 3개층 규모의 아울렛 몰을 하기 위해 2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산업단지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비효율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15일자 17면 『금천 아울렛 타운에 웬 가짜공장들?』 제하의 기사에서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만 판매시설을 둘 수 있다"면서, "금천패션타운에 아울렛 매장이 대부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제

대로 된 공장 하나 없는 지역이 여전히 산업단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관련법에 의해 산업단지 내에 자가공장이 없더라도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금천패션타운에는 정보통신업체 등 여타 공장들이 적법하게 세워진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15일자 17면 『금천 아울렛 타운에 웬 가짜공장들?』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대형 패션아울렛 물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현실 외면한 산업단지 규정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용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구조고도화시키기 위하여

고도기술산업, 벤처사업, 지식산업, 연구개발업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위법 아울렛 매장의 해결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당초 용도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한국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3일자 18면)

내 용 : 한경 6월15일자 17면 『금천 아울렛 타운에 웬 가짜공장들?』 기사와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금천 아울렛 타운 입주지역)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고도화시키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위법 아울렛 매장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용도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연합회가 뉴타운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지지성명서를 구청에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뉴타운추진연합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겨레 : 『○○·○○동 뉴타운 지정 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4일자 10면)
내 용 : 3차 뉴타운 후보지인 ‘○○·○○ 구역’이 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종로구 균형발전추진단 이○○ 과장은 “뉴타운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지

난 2일부터 찬성-반대 대표를 정해 협의하고 있으나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략)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종로구가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아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 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의 권○○ 부위원장은 “뉴타운을 찬성하는 쪽에서 주민 1,337명의 지지 성명서를 종로구청에 올렸는데 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515명이 중복 기입하거나 또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271명이 재개발 해당이 되지 않는 고층아파트 주민이어서 60%가량 허위로 드러났다”며 “종로구나 서울시가 이를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역은 ○○1~3동·○○동 4개동에 25만 5,700평 규모이며 1만 4천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4일자 10면 『○○·○○동 뉴타운 지정 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에서 ○○○·○○뉴타운 지정을 찬성하는 측에서 허위 내용의 서명서를 종로구청 쪽에 제출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서명서는 종로구청 쪽에 제출된 것이 아니며 서명자가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서명자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3일자 12면)
 내 용 : 지난 6월 24일치 10면 『○○·○○동 뉴타운 지정 갈등 심화』 기사에서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지서명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서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서명을 받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빌딩을 지으면서 돈을 모으는 추진위원회 청와대와 정부고위직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 ○ ○, 박 ○ ○, 정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 『60억 빌딩 건립추진위에 정부 고위인사 대거 참여』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30일자 3면)

내 용 : 대표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상임대표 남윤○○)이 60억 원짜리 건물을 세우기로 하고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 행사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측 고위 인사들이 추진위원 등으로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서 기업대표 등으로부터 11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발족식에는 7명의 건립추진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과 61명의 건립추진위원(이하 추진위원)이 초대됐다. 청와대에선 조현옥 균형인사비서관(2급)과 신미숙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추진위원에 포함됐다. 조 비서관은 발족식에도 참가했

다. 청와대 참여혁신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주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은 공동위원장이자이다.

행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이해경 위원장이 추진위원으로 참가했다. 두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관이고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국가 인권위원회 정강자·최영애 상임위원(차관급)과 정연순 차별시정본부장, 국무총리실 김애령 여성청소년과장도 추진위원이다. 사법부의 경우 전수안 대법관 후보 지명자가 추진위원에 포함됐다.

열린우리당에선 이미경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이경숙·이은영·장향숙·홍미영 의원은 추진위원으로 참가했다. 이 밖에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과 강지원·이세중 변호사 등이 공동위원장이자이다.

28일 발족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앞으로 돈을 내겠다는 약정을 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참가한 U기업 대표 M씨가 10억 원을 약정했다.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이 3,000만 원,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이 1,0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정했다. 다른 인사들도 대부분 1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집행위원장인 여연의 남윤○○ 대표는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추진위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후원금을 내도록) 권유하는 ‘이끌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와 “추진위원들은 본인이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일 뿐”

이라고 정정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30일자 3면 『60억 빌딩 건립추진위에 정부 고위인사 대거 참여』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60억 원짜리 건물을 세우기로 하고 발족식을 열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측 고위 인사들이 추진위원 등으로 참가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미래센터가 여성연합만을 위해 새롭게 신축되는 고가의 건물이 아니며 15개의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안임을 밝혀왔습니다. 건립추진위원으로 참여한 정부 인사들은 과거 오랫동안 여성운동에 참여해왔던 인사들로 여성연합은 이들의 직책을 이용해 공적인 지원을 얻을 생각이 전혀 없고 이들 역시 여성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일자)

내 용 : 6월 30일자 3면 『한국여성단체연합 60억 빌딩 건립추진위에 정부 고위인사 대거 참여』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이 3,000만 원을 약정했다’는 ‘1,000만 원을 약정했다’로 바로잡습니다. ‘조현옥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여연 회원단체 대표 출신’이란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현옥 비서관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전 대표 출신입니다. 또한 ‘여연 회원단체는 28개’가 아니라 ‘29개로’ 바로잡습니다. 여연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해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여연이 알려 왔습니다. □

신청인 연합회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연합회를 이용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
(대표 김 ○ ○)

피신청인 : 한국목재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7.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한국목재신문 : 『인천 제재업체, 폐기물처리 ‘뜨거운 감자’』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일자 1면)

내 용 : 인천 서구 제재단지에 최근 ‘오라는 손님’은 오지 않고 뜻밖의 ‘불청객’들이 찾아와 제재업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는 환경부의 ‘사업장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인천시 또는 관할부처 및 제재업체가 관행상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점을 포착, ‘일부 제재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감시원과 병행 단속할 수 있으니, 재활용업연합회를 이용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제재단지를 순회 중이다.

다수의 제재업체들은 이 연합회의 행동이 환경보호나 공익의 목적보다는 단순히 회원사의 영리를 위한 것 같다는 지적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1일자 1면 『인천 제재업체, 폐기물처리 ‘뜨거운 감자’』 제하의 보도에서 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가 환경부의 ‘사업장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일부 제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감시원과 병행 단속할 수 있으니, 재활용업

연합회를 이용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는 폐기물관리법 준수를 위한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고 제재업체를 방문해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은 있으나 연합회를 이용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은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자원재활용업연합회'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1일자 1면 『인천 제재업체, 폐기물처리 '뜨거운 감자'』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 준수를 촉구하는 업무협조 공문을 제재업체들에게 보내고 직접 방문해 이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으나, 재활용업연합회를 이용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연합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경감시단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목재신문 2006년 8월 1일자 1면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와 같은 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의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목재신문 : 『'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골재 채취용 바지선을 운항하면서 어장을 망가뜨리고 황폐화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OO해운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7.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도일보 : 『보령모래채취장 주민 명든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일자 17면)
내 용 : 죽도어민회(회장 장○○) 소속 어민들이 D해운이 남포면 월전리 골재 선착장을 운영하면서

어망과 부표 등을 망가뜨리고 선착장 폐수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 했다.

어민회는 D해운이 바지선을 운항하면서 무분별하게 항로를 이용해 어민들이 바다에 설치해놓은 어망과 부표 등을 망가뜨리고 분실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모래 선착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인근 어장이 황폐해 지고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해양수산부 충남도청 보령시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령시에 따르면, D해운은 지난 6월 5일부터 오는 5일까지 보령시로부터 바다모래채취 등록업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하고 지난달 30일까지 모래선착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복구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업체는 모래선착장 3개월 전에 D해운을 운영하던 전 회사로부터 모래선착장 허가 연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수하여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항소중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D해운으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유린당하고 있다며 죽도어민회 소속 26명이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어민회 회장 장○○ 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로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보령시는 6월30일까지 원상복구 완료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D해운은 원상복구명령기간 동안 복구는 하지 않은 채 불법을 자행하여 시는 2회에 걸쳐 보령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청관계자는 “7월1일부로 원상회복대집행을 강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2006년 7월 3일자 중도일보 및 인터넷신문에 『보령모래채취장 주민 명든다』는 대체목과 “죽도어민회 D해운 불법영업에 어장황폐화 집단민원”이라는 소제목하에, D해운이 남포면 월전리에서 골재선착장을 운영하면서 운항하는 바지선이 무분별하게 항로를 이용해 어민들이 바다에 설치해놓은 어망과 부표 등을 망가뜨리고 분실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선착장폐수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 업체는 모래선착장 3개월 전에 D해운을 운영하던 전 회사로부터 모래선착장 허가 연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수하여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D해운은 보령시의 원상복구명령기간동안 복구는 하지 않은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D해운은 위 월전리에서 모래채취장을 운영한 바도 없고 모래채취장으로 인해 주민을 명들게 한 바도 없었으며, 단지 월전리에서 골재와 모래를 선착하고, 선착된 모래를 제염하였을 뿐이고, 서산시와 인근도서로부터 모래와 골재를 운반하는 바지선은 항시 규정된 항로를 이용하여 운행하였고 어

민들이 적법히 설치한 어망등을 망가뜨린 사실이 없으며, 또한 D해운이 운영하는 골재나 모래를 선착하는 시설과 모래를 제염하는 시설은 모두 폐수가 유출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제염시설의 경우 설치하던 초기에 어장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오해가 있었고 이를 우려한 보령시가 제염시설에 대하여 연장불허의 조건까지 붙였지만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결과 주변어장은 물론 주위의 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D해운은 그동안 민원을 받은 바 없이 원만하게 위 시설을 운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부근의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고 포장하여 인근주민들의 편익에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보령시가 D해운의 기간연장신청을 반려하여 현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의 2006. 7. 3.자 중도일보 및 인터넷신문에 『보령모래채취장 주민 명든다』는 제목과 “죽도어민회 D해운 불법영업에 어장황폐화 집단민원”이라는 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당사자인 D해운은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하여왔다.

D해운은 위 월전리에서 모래를 채취하거나 모래채취장을 운영한 바도 없습니다. D해운은 단지 서산과 태안에서 채취된 해사를 위 월전리로 운송하여 제염작업을 거쳐 보령, 부여, 서천 등의 공사현장의 건축용 모래로 공급하여 왔고, 도서지방에 필요한 골재를 위 작업장에서 선적하여 운송하였을 뿐입니다.

D해운이 운영하는 골재나 모래의 선착시설, 모래제염시설은 모두 폐수가 유출될 수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모래제염시설은 청정지역인 태안해저에서 채취된 해사의 염분을 민물로 씻어 내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모래제염시설의 설치 초기에 어장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오해가 있었고 보령시가 허가 당시 이를 우려하여 연장불허의 조건을 부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결과 주변어장은 물론 주위의 환경이나 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주는 시설이 아니라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D해운은 그동안 주위로부터 민원을 받은 바 없이 원만하게 위 시설을 운영하여 왔고 일부 어민이 항로까지 침범하여 설치된 어망에 대한 부당한 피해요청도 대승적으로 모두 보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추어 D해운이 기간연장을 받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는데 뜻밖에도 2005. 12. 14. 보령시가 기간연장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D해운은 이러한 뜻밖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D해운의 자체조사결과, D해운의 운영에 불만을 가진 인근 죽도의 어민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보령시와 귀사에 유포하였고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상당부분 반려처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해운은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차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증거에 의하여 모두 밝힐 예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위 반려처분으로 말미암아 처분이후 전 직원이 해고되고 작업장은 황폐화되어 현재

부도 직전의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D해운은 그간에 있었던 이와 같은 몇 차례의 귀사의 보도는 이를 일과성으로 보아 묵과하였지만, 조사결과 위 보도들도 행정심판 무렵에 맞추어 보도되었고, 이번의 보도 역시 D해운이 사운을 건 법원재판의 재판기일이 지정된 이 시기에 맞추어 보도되었기 때문에, D해운으로서는 생존권보호의 절박한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귀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와 같이 반론보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D해운은 위와 같이 반론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6년 7월 25일 이전까지 17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면의 고딕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위 반론보도문을 인터넷신문(www.joongdoilbo.co.kr)의 지역판에 중도일보 보도일부터 3일(72시간)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2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산업자원부가 바이오디젤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장관 정 세 군)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프레시안 : 『산자부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것 아

닌가?』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5일자)

내 용 : 산업자원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바이오디젤유 사용의 확대를 약속해 놓고서 정작 정책은 이를 축소하는 쪽으로 변경해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레시안>이 지난 5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내 수송용 연료의 석유 의존도는 99%에 달해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 (2006년 3월부터 시작된) 정유업계와의 자발적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2008년 6월 이

후에 바이오디젤유의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어 “BD5(바이오디젤유 5%+경유 95%)를 의무화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04년 2.08%에서 2008년 2.62%로 증가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바이오디젤,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2011년까지 보급률 5%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정 장관의 보고는 실제로 정책이 진행되는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는 내용이었다. 산자부가 당시 추진하고 있던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으로는 정유업체와의 자발적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2008년 6월 이후 현실적으로 BD5를 의무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산자부는 7월 3일 고시를 발표해 아예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BD0.5(바이오디젤유 0.5%+경유 99.5%)만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시 제11조). 그나마 자가주유시설을 갖춘 버스, 트럭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BD20(바이오디젤유 20%+경유 80%)의 보급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에 불과하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산업자원부는 본보 7월 5일자 『산자부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것 아닌가?』 기사와 관련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2008년 6월 이후에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고 BD5를 의무화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8년 2.62%로 증가한다고 부연 설명하였다는 보도와 BD20의 보급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후속기사에서 이미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해 보도한 바 있다.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신청인의 반론을 다시 보도할 용의가 있으나, 예컨대 ‘원래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형식의 반론은 보도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CCTV에 찍힌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KNN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0.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K N N : 「뉴스아이」 프로그램 (2006년 7월 7일 20:00)

내 용 : ▷앵커 : 심야에 귀가하는 여대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 2명이 경찰

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검거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큰 몫을 했습니다.

▷기자 : 지난 달 26일 새벽,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입구를 지나는 22살 이모 양을 2명의 괴한이 뒤따라잡니다. 괴한들은 갈고리를 이용해 이양의 목을 나뒤통 뒤 납치했습니다.

이양을 태운 납치범의 차량이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양은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납치돼 성폭행 당한 뒤 귀금속등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겼습니다.

이양의 납치범들은 CCTV 화면을 추적한 경찰에게 결국 붙잡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NN은 2006년 7월 7일 「뉴스아이」 프로그램에서 여대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의 검거에 CCTV가 큰 몫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모습과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를 방송해 신청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3,000,000원의 손해배상

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 7. 18.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 회사가 변질된 제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업 (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 (1) 『○○유업 ‘○○○○’ 변질 사고』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7일자 1면)
내 용 : ○○유업의 대표적인 히트상품인 ‘○○○○’를 마신 소비자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변질된 제품으로 인한 사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모 편의점에서 ○○○○를 사먹은 A씨는 시큼한 맛이 나는데다 냄새도 이상해 판매점에 항의했다가 이같은 사고로 반품되는 제품이 다량임을 판매직원을 통해 알게됐다. (중략)

또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없이 회사측이 판매를 재개했다는 점이다.

○○유업 관계자는 “6월 말 판매된 일부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클레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제품을 일부 회수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우유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이다 보니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이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제품을 판매했던 모 편의점 측은 “제품을 팔다 보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판매를 중지하고 ○○유업에 원인 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현실적으로 보관 과정상의 문제점은 있을 수 없다”고 ○○유업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후략)

(2) 『‘쉬쉬’ 일관… 해명도 없어』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7일자 12면)

○○유업의 대표적인 상품인 ‘○○○○’에서 제품이 변질되고 이물질이 생긴 사고는 명확한 규명이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급식사고에 이어 젊은층이 즐겨 먹는 음료에서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사측에 문제가 생기자 일부 제품에 대해 단순한 회수 조치외에 아무런 해명이 없이 사건 자체를 쉬쉬하며 재판매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후략)

(3) 『○○유업 도넛은 ‘도덕불감증’』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0일자 1면)

(전략) 9일 현재 ○○유업측은 지난 6월 말 ‘○○○○’ 컵커피 제품이 변질돼 복통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 후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여전히 제품을 판매·유통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

유업의 행태에 소비자의 분노가 번지면서 ‘불매운동’ 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등 사회단체들은 본지 보도 이후 곧바로 진위여부 파악에 나서 ○○○○의 변질유통을 확인하고 이익 창출에만 매달리는 ○○유업 측의 ‘도덕불감증’을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5월의 사고와 달리 유통기한을 조작한 제품이 아닌 정상적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제조와 유통의 전과정을 검증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7일자 1면, 12면 『○○유업 ‘○○○’ 변질 사고』, 『‘쉬쉬’ 일관… 해명도 없어』와 7월 10일자 1면 『○○유업 도넛은 ‘도덕불감증’』라

는 제목으로 최근 ○○유업이 불량 ○○○○ 제품을 판매, 유통시키고 이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업측은 현재 해당제품은 10여년간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한 장수브랜드로서 철저한 위생, 관리감독 하에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제조공정상의 문제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확인 결과 해당제품과 관련해 유통기한을 조작한 사실은 없었으며, 판매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원인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언제나 교환, 환불, 보상 등 철저한 고객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00,000,000원



신청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CCTV에 찍힌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1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7월 7일 21:00)

내 용 : 〈2006부산조정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8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8월 5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담당기자 등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CCTV에 찍힌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Ⅲ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1.

처리결과 : 합 의

〈2006부산조정8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SBS-TV : 「SBS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6년 7월
8일 06:11)

내 용 : 〈2006부산조정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8월 5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담당기자 등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허락없이 진료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덧씌워 신청인이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전주MBC-TV

중 재 부 : 전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주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6월 29일 21:35)

내 용 : ▷아나운서 : 건강보험진료기관인 한

의원에서도 한약 탕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이 만만
치 않습니다. 분명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들이 있는
데도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들 약의 처방을 외
면해 결국 환자들의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중략)

▷기자 : 한의사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를 처방할 경우 조제료는 하루 160원, 하지만 한의
원에서 직접 조제한 탕약의 경우 약값의 기준이
없다보니 마음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험약 약제를 처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
니다.

▷한의사 : “간단히 표현하면 저저(보험약)를
드리고 160원을 버느니 나름대로 한약을 권유해서
드신다면 그쪽으로 가는게 영업적인 부분에서 우

위죠...”

▷기자 : 이에 따라 보험약제는 사실상 환자의 구매능력에 대한 한의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쓰이기도 안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 “이 약을 드리면 일반약이 안나가요. 약을 줄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약을 못 사드릴 분들, 촌에서 오신 분들이나 영세민들 어차피 약 못 사드릴 분들은 드려요.”

▷기자 :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들의 하루분 세 봉지의 약값은 평균 1,500원에서 2,000원대

감기몸살이나 소화불량 등 주요증상을 보험약제로 처방할 경우 진찰료 5,800원과 약값 2,000원 안팎 여기에 침 까지 맞는다 해도 전체진료비는 15,000원이 넘지않고 이에 따라 환자부담금은 3,000원이면 됩니다.

▷한의사 : “환자입장에서는 3천 원만 내면 한방전문의한테 진료받고 치료받고 물리치료에 약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깐 좋죠.”

▷기자 :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렴한 약

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험약제들이 외면받으면서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고 제약회사들은 하나둘 매출이 저조한 보험약제의 생산을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정○○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방송은 지난 6월 29일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집중취재 ‘한의원, 보험약제 외면’ 제하의 보도에서 한의원들이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들이 있는데도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들 약의 처방을 외면해 환자들의 부담만 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한의사의 보험약에 대한 설명 부분은 화면상의 인물과 녹음된 음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양원 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잘못해 놓고 책임을 요양원측에 떠넘기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3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기신문 : 『○○○보건소 막나가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8일자 5면)

내 용 : ○○○보건소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한 후 지출보고자료 정산을 잘못해놓고 사업비 일부를 환수하려는 과정에서 악성 루머

를 퍼뜨려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검찰과 경찰에 사업비 지출에 따른 허위정보를 제공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보건소와 정신복지시설에 따르면 ○○○요양원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건물증축을 위해 지난해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요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로 선정돼 사업예산 5억여 원을 지원받아 당초 2층 건물에 2개층을 증축, 4층으로 시설을 단장했다.

○○○요양원은 지난해말 적법하게 사업을 완료하고 보건소에 사업비 정산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건축비와 부대비를 합산해 정산해야 함에도 실수로 건축비만 취함, 요양원에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며 8천53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보건소는 이같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해 ○○○요양원을 곤경에 빠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8일자 5면 『○○○보건소 막나가네!』 제하의 기사에서 ○○○보건소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한 후 지출보고 자료 정산을 잘못해 사업비 일부를 환수하려는 과정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말썽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건소는 ○○○요양원이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계획서와 설계도대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요양원이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도면과 준공 내역서와는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사업비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및 정산결과보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제출을 요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제보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8일자 5면 『○○○보건소 막나가네!』 제하의 기사에서 ○○○보건소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한 후 지출보고 자료 정산을 잘못해 놓고는 사업비 일부를 환수하려는 과정에서 악성루머를 퍼뜨려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확인된 내용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김○○ 계장은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해왔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왔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신문에 2006년 7월 24일자 5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요양원 기능보강시설물 선정되자 ‘배아파’)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요구 부분은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4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제품홍보와 영업은 뒷전이며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테크놀러지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컴퓨터타임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컴퓨터타임즈 : 『○○○·○○ 인지도 바닥에 ‘쿵’』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0일자 10면)

내 용 : 새롭게 그래픽카드시장에 진출한 업체들이 진입 장벽이 높음을 실감하고 있다.

그래픽카드에 새롭게 사업을 전개한 ○○○코리아(이하 ○○○)와 ○○테크놀러지(이하 ○○테크)가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총판 도소매 업체들은 “이들 두 업체는 제

품만 출시할 뿐 홍보는 뒷전이라서 판매가 타 동계제품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영업 마케팅에 있어서도 ○○○, ○○테크 영업사원이나 마케팅 직원들은 그냥 오갈 뿐이지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전략이 없다고 꼬집었다. (중략)

○○테크는 새로운 홍보 마케팅의 일환으로 'PC방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총판 소도매 업체들에겐 PC방 ○○작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오히려 이들 총판 소도매 업체는 매장에 나와 채고 정리와 청소나 같이 하는게 훨씬 좋은 홍보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가뜰이나 △△테크놀러지 '짜퉁'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테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부채

를 꼬집는 말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10일자 10면 『○○○·○○ 인지도 바닥에 '쿵'』 제하의 기사에서 ○○테크놀러지가 그래픽카드시장에 새롭게 뛰어들어 제품만 출시한 후 제품홍보와 영업은 뒷전이며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없어서 △△테크놀러지의 '짜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테크놀러지는 제품을 출시 할 때마다 온라인 벤치사이트를 중심으로 제품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매월 200% 이상씩 성장하고 있고, 'PC방 ○○작전'은 PC방 점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패키지와 제품이름은 △△테크놀러지와 전혀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폐지와 금리동결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재정지출 늘려 경기부양』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7일자 A1면)

내 용 : 올 하반기 경기가 하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정부가 6일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기 부양형(浮揚型) 경제운용 계획을 내 놓았다. 또 열린우리당은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채수찬 의원 등 의원 40명이 5년 이상 장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지출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근로자·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는 전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열린 우리당이 요구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대폭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없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지출할 주요 재정사업비 규모를 작년 하반기(67조 3,000억 원)보다 20조 원(29.7%)가량 늘린 88조 8,000억 원 규모로 책정,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사업비는 도로·공공건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대규모 국책사업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경기부양 대책의 초점을 맞춰 올 하반기에 600만평 규모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월까지 서울 강북 지역에 2~3개 광역재개발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연말까지는 6개 고속도로를 민자(民資)사업으로 조기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추거나 적어도 더는 올려선 안 된다는 방침

을 정했고, 정부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최근 물가상승 우려를 명분으로 잇따라 금리를 올려온 한국은행과 마찰이 예상된다. (후략)

(2) 『與주도 강력한 ‘경기 살리기’ 예고』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7일자 B1면)

(전략) 여당의 주문은 ▲금리인상 억제 ▲재정투자 확대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 ▲영세자영업자 소득세부담 경감 등 전형적인 경기부양책들을 담고 있었다.

6일 재경부는 여당의 16개 요구사항 중 15개 항목을 반영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수정본’을 정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한 열린우리당 주도로 하반기에 재정·금융·세제·기업정책 등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조선일보는 지난 2006년 7월 7일자 A1면 『재정지출 늘려 경기부양』 및 B1면 『與주도 강력한 ‘경기 살리기’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당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연내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경기위축을 초래하는 금리인상을 억제하거나 금리동결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올 하반기에 지출한 주요 재정 사업비 규모를 작년 하반기보다 20조 원 늘린 88조 8,000억 규모로 책정,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내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마련 작업을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

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정책금리의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권한이며 정부가 금리동결 추진에 합의한 바도 없으며, 정부는 하반기의 주요 재정사업비 규모를 88조 8,000억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재정조기집행을 실시하지 않아 재정지출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반론보도 청구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7. 7.자 A1면 『재정지출 늘려 경기부양』 기사와 관련, 정부는 금리동결 추진에 합의한 바 없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내 폐지 및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7월 26일까지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B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부제목(당·정하반기 경제계획)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 본문의 크기로 한다.
-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5일자 B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외교통상부 (장관 반 기 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정부 ‘개성공단 한국산’ 포기 방침』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1일자 A1면)

내 용 : 정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인정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할 방침이라고 10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일단 한·미FTA에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포기하고 향후 6자 회담 정상화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2006년 7월 11일자 1면에서 『정부 ‘개성공단 한국산’ 포기 방침』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정부는 추후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7월 11일자 1면에서 『정부 ‘개성공단 한국산’ 포기 방침』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한·미 FTA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의제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한·미 FTA 협상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1차 협상 이전에 우리 측이 준비한 협정문 초안에 역외가공 특례방식으로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차 협상에서 미측에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협상 의제화한 바 있으며, 금번 2차 협상에서도 우리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위하여 소관분과인 원산지분과에서 협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고(원산지분과 협의는 7.11부터 이틀간 예정), 추후 협상에서도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1일자 B2면)

내 용 : 본지는 7월 11일자 A1면에 『정부 ‘개성공단 한국산’ 포기 방침』이란 제목으로 정부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한미 FTA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의제라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며, 한미 FTA 2차협상에서도 역외가공 방식에 의한 개성공단의 특례관세 부여 필요성을 미측에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축협이 400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서 ○ ○)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2.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기신문 : 『“○○○축협 비리의혹 수사하라”』 제하
의 기사 (2006년 2월 20일자 4면)

내 용 : ○○○축협 조합원들이 육가공 공장 부지
매입을 비롯한 조합의 각종 현안 처리과정과 관련,
비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
다.

특히 조합원들은 조합이 창립 후 400여억 원 이
상의 부실채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해
에는 도내 18개 조합 중 종합업적 평가에서 사실
상 최하위인 17위를 했는데도 많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합원을 기만하고 조합장을 비롯
한 직원들이 1억 9천500만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나누어 갖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19일 ○○○축협 일부 이사와 대의원, 조합원들
에 따르면 ○○○축협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가득
차 있는데다 방만한 운영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
해 있으나 개선할 기미가 전혀 없어 근본적인 비
리척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
다.

이들은 ○○○축협이 지난 2003년께 육가공 공장
부지로 매입한 ○○○시 ○○읍 ○○리 소재 공장부
지와 관련, 시가 보다 월등히 비싸게 매입한 과정
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제기 부문의 사실여부에 따라 실거래가 신
고의무 위반여부와 세금 탈세 여부 등 일파만파로
확대될 수도 있어 관계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조합원 1천36명에게 나누어 줄 냉온풍기 구
입과 관련, 회사 관계자들은 100대 이상 구입시 1
대당 7만 8천 원씩 이라고 밝혔는데도 조합은 1대
당 1만 4천 원이나 비싼 9만 2천 원에 구입하는
등 차액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지점에 근무하던 A모 씨가 고
액을 횡령하고 속칭 카드깡을 하는 등 수천만 원
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으나 지난해 일정액 변제와
의원면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2002년도에는 △
△지점에서 용도폐기해야 할 10만 원권 수표가 유출
된 사고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나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B지점에 근무하던 C모 과장은 지난해
10월 부하 여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해 물의를 빚었는데도 승진시켜 다른 지점으로 보
내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인사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경기신문은 지난 2월 20일자 4면 『“○○○축협
비리의혹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축협
조합원들이 육가공공장 부지매입을 비롯한 조합의
각종 현안 처리과정과 관련, 비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합이 창립 후 400여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으나, ○○○축협은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사실
이 없으며, 도내 18개 조합 중 종합업적 평가에서
사실상 최하위인 17위를 했다고 하였으나, 종합업
적 평가의 경우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점
중에서 절반 이상 되고, 그중 판매사업 및 유통혁
신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축
협의 경우 판매사업 및 유통혁신 부분에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평가가 낮을 수 밖에 없었
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신 ○○○축협은 신용사
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반증하
는 결과로 05년도 조합실태평가 1등급, 조합 종합
평가 2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축협 일부 이사와 대의원, 조합원들이
근본적인 비리척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
청하기로 했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
사요청을 한 적이 없고, 육가공 공장 부지 매입 과
정은 정당한 의결을 통해 적정하게 매입된 것이며,
조합의 고유 업무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탈세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냉온풍기 구입은 이사회에 결정으로 적정가격에 매수한 것이며, 고액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일정액 변제와 의원면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하였으나, 전액을 변상 조치시키고 의원면직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직원을 승진시켜 다른 지점으로 보냈다고 했으나, 다른 지점으로 전출 후 승진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8,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20일자 4면 『“○○○축협 비리의혹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

여 사실 확인결과, ○○○축협은 400여억 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었으며, 또한 보도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법 처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에 본지는 23년간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축협측과 1,260명의 조합원, 임직원 및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신문에 2006년 7월 24일 4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조합원 “철저한 수사 통해 의혹 해소” 진정서 제출키로)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4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방음벽을 불법으로 철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전철기지창옆 아파트 방음벽철거 책임
공방』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일자 8면)
내 용 : 방음벽이 철거돼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책임질 주체가 없다. 주민대

표와 성북구청, 국민고충처리위 등 관련자들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 석관동 D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수도권전철 기지창이 생기기 4개월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장모(70)씨 등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 2개의 방음벽 가운데 1개를 철거하면서 비롯됐다. 당초 성북구청은 철로변 방음벽 철거는 인접 5개동 주민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3분의 2 동의만으로 방음벽이 철거됐다. 주민대표의 민원을 받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성북구청은 적절한 행정절차였으며 책임을 회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중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장씨는 2004년 8월 “2개 방음벽 중 1개를 철거하면 여유 공간 4,000여 평에 산책로를 만들 수 있다.”고 주민을 설득, 주민의 3

분의 2에 해당하는 1140가구로부터 방음벽 철거 동의를 받아냈다. 장씨는 주민 동의서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5일 성북구청에 방음벽 철거 허가 민원을 냈다. 하지만 그는 11월 15일 '철도변 인접 5개동 전원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자 장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성북구청 불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방음벽을 철거하기 전에 측정한 '방음벽 2개 가운데 1개를 없애도 소음규제법이 정한 기준치보다 낮은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영진환경산업주식회사의 보고서도 제출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일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2개 방음벽 가운데 1개를 철거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성북구청에 보냈다. 성북구는 같은 달 27일 방음벽을 허물기 시작해 그 해 3월 27일 철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5일 기지창이 들어왔고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중략)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담당자였던 J모 조사관은 "장씨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고 방음벽 한 개를 허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주민 100% 동의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봐 구청에 허가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 성북구청 주택과 B계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유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민 365여 명은 최근 장씨가 주민동의를 허위로 만들었다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장모 씨가 그동안 주민대표로 있으면서 불필요하게 아파트 시설물을 교체한 것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3일자 8면 『전철기지창옆 아파트 방음벽철거 책임공방』 제하의 기사에서 D아파트의 방음벽이 철거되어 입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방음벽 철거가 불법으로 자행되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성북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철거된 방음벽은 석계역

지하철 1호선과 경의선 철도의 소음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당초에는 철도기지창이 없었으므로 기지창 소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D아파트 입주 이후 철도 시설공단에서 이문차량기지창이 건설되어 철도기지창 소음 방지를 위해 기존방음벽 안쪽, 즉 기지창 안쪽으로 추가 방음벽에 설치되어 기존 방음벽은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택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청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방음벽을 철거하였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3일자 기사에서, 석관동 D아파트의 방음벽이 부적절하게 철거되어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주민대표와 관련기관이 서로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기지창 건설로 추가 방음벽이 설치되어 기존의 방음벽이 무용지물로 방치됨에 따라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적법하게 철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서울신문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하여 2006년 7월 3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여름철 피부화상을 초래하는 사례로 신청인이 상의를 벗고 달리는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Running Life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4.
처리결과 : 합 의

Running Life는 2006년 7월호 『자외선 극복 여부가 가을 대회 성적을 좌우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옷을 벗고 달리는 사진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Running Life : 『자외선 극복 여부가 가을 대회 성적을 좌우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호 18면)

내 용 : 달림이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과 기록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는 건강으로 보답 받지만 나이라는 한계에서 오는 피부의 잡티와 주름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여름 훈련 시 겪게 되는 자외선은 피부노화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2006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1,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Running Life」를 2006년 8월호부터 1년간 신청인이 활동하고 있는 4개 마라톤 동호회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인은 4개 마라톤 동호회의 주소, 대표자를 특정하여 2006년 7월 25일까지 피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KBS의 ‘생방송 시사투나잇’ 이 정권 편향적인 보도로 160여회나 심의팀의 지적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비롯』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9일자 A10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6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6월 19일자 10면에 『“KBS 공정성 붕괴, 사장 임명방식서 비롯”』 제하의 기사에서, 특히 ‘시사 투나잇’의 경우 편향성 문제로 160여회나 심의팀의 지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며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 『“KBS 공정성 붕괴, 사장 임명방식서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편향성 문제로 160회나 지적을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산자부 장관이 한미 FTA관련 협상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장관 정 세 균)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4.
처리결과 : 취 하

협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의 협상 의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통상 협상의 기본자세가 아닌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7월 11일자 31면에 『정부, 한미 FTA 타결 의지 있나』라는 제목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거나 ‘과거 한일 FTA 협상처럼 깨질 수 있다’는 등 협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협상의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통상 협상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보도내용

세계일보 : 『정부, 한미FTA 타결 의지 있나』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1일자 31면)
내 용 : 한미 FTA 2차 협상이 어제 시작됐다. 이제 협상단은 물론 정부도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협상에만 전념할 때다. 그런데 한명숙 국무총리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협상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거나 “과거 한일 FTA 협상처럼 깨질 수 있다”는 등

국세청이 수입차 판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판매내역 제출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세청 (청장 전 군 표)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4.
처리결과 : 합 의

조선일보 : 『수입차딜러 세무조사 추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일자 1면)

내 용 : 국세청이 수입차 판매업체와 딜러들에게 최근 3년6개월간의 판매내역에 관한 세무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규모 세무조사를 추진했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은 외제차를 구입한 법인뿐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략)

보도내용

1일 본지가 입수한 국세청의 '승용자동차 판매 현황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 요청'이란 공문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쯤 수입차 판매업체 12곳과 평화자동차·한성자동차·도이치모터스 등 수입차 딜러 83곳 등 총 95곳에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외제승용자동차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수입차 판매상들은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수입자동차협회 등을 통해 국세청에 항의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가 6월 2일자 1면 『수입차 딜러 세무조사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국세청이 수입차 판매업체와 딜러들에게 최근 3년 6개월간의 판매내역에 관한 세무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규모 세무조사를 추진했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산 및 수입자동차 제조·판매업체에 승용차 판매현황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한 것은 수입차 딜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거나 대규모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의료비 등 부당공제 실태파악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로서, 국산 또는 수입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여 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산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 제조·판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정대상기사에 대하여 작성한 반론취지의 입장을 200자 원고지 3매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인의 투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오피니언란에 게재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국세청 일상적 업무였을 뿐』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8일자 29면)

내 용 : 6월 2일자 조선일보 1면 『수입차 딜러 세무조사 추진』이라는 기사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을 밝힌다. 기사는 "국세청이 수입차 판매업체와 딜러들에게 최근 3년6개월간의 판매내역에 관한 세무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규모 세무조사를 추진했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 국세청이 수입차만 세무조사를 추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산 및 수입차 판매업체 모두에 판매현황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대규모 세무조사가 아니라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 파악을 위한 국세청의 일상적 업무였다. □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일반 면세점보다 환불이나 A/S가 번거롭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대한항공 (대표이사 이 종 희)

피신청인 : SHAPE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HAPE : 『another tour』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호 184면)

내 용 : (전략) 일반적으로 시내 면세점은 물론 공항 면세점과 제주 면세점 등 모든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기내 면세점이 가장 저렴하다. 기내 면세점은 입국편에서도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다니는 불편함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 주체할 수 없는 쇼핑의 욕구로 인해 트렁크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게다가 구입과 함께 항공사 마일리지까지 적립할 수 있으니 썩 먹고 알 먹고, 반면 단점이라면 일반 면세점에 비해 종류가 부족하고, 환불이나 A/S가 굉장히 번거롭다는 것이다. 신라, 동화, 코엑스, 위키힐, 파라다이스 등의 시내 면세점은 물건을 공항에서 인도받아야 하지만 다양한 품목과 멤버십 서비스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7월호 Smart Shopping Tip 칼럼에 국내 면세점 쇼핑 노하우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을 일반 시내면세점과 비교하여 “환불이나 A/S가 굉장히 번거롭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기내면세 판매는 대부분 400달러 이하(입국시 면세품 제한 가격임) 품목으로 이루어져 입국시 세관에 유치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어 승객들의 환불 및 교환 요구시, 바로 면세품을 납품하는 국내 Agent를 통해 일괄 처리가 가능해 국내에서 가능한데 반하여, 시내 및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품 하자 등으로 교환할 경우에도 교환된 면세품을 반드시 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시 인도받도록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어 기내 면세점이 일반

면세점보다 환불 및 교환 등의 조건에 있어서 훨씬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S의 경우도 기내면세점이든 시내나 공항면세점이든 구입한 장소에 따라 A/S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 브랜드별 A/S 센터에서 처리하므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7월호 184면 ‘Smart Shopping Tip’란 『another tour』 제하의 기사에서 기내면세점이 일반 면세점에 비해 환불이나 A/S가 굉장히 번거롭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대한항공 기내면세점과 일반 면세점은 환불 및 A/S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SHAPE> 2006년 9월호 독자란 핫라인면에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정정보도문)는 조정대상기사 사진설명(대한항공 스카이숍 베스트5)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HAPE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호 핫라인면)

신청인이 판매상과 결탁하여 불량 영양제를 구입해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10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고성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8.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고성신문 : 『영양제 잘못 쳐 농사 망쳤다』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21일 3면)

내 용 : “다 지어 놓은 농사를 영양제 한 번 잘못 치는 바람에 망쳤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최○○씨는 지난 연말께 ○○면 한명품 작목반에서 지급한 방울토마토 영양제를 친 후 잎이 오그라들고 열매가 성숙되지 않아 수천만 원 어치의 피해를 입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중략)

특히 ○○한명품 작목반에서 문제의 영양제 ‘아그리 켈프’를 구입할 때 해당 농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작목반장 최모 씨가 일방적으로 구입, 농가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영양제는 동고성농협에서 작목반 지원사업으로 지급되는 150만 원과 작목반 자체 사업비 150만원 등 총 300만 원 어치가 구입됐다.

이에 일부 작목반원들은 “영양제를 구입할 때는 해당 농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구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장이 혼자서 결정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판매상과의 검은 결탁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심의 목소리마저 흘러 나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1일자 3면에 『영양제 잘못 쳐 농사 망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면 한명품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급한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면 한명품 영농조합 작목반장 최모 씨가 판매상과 결탁을 맺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작목반장 최모 씨는 판매상과 뒷거래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 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1일자 3면에 『영양제 잘못 쳐 농사 망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면 한명품 영농조합(법인)의 농사가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면 한명품 영농조합 작목반장 최모 씨가 판매상과 검은 결탁을 했다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작목반원들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작목반장 최모 씨가 농약 판매상과 검은 결탁이나 뒷거래 사실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에 정정보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고성신문 2006년 7월 28일자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진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마암면...)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고성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8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문발전위원회가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장 행 훈)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9.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발전기금 논란’ 신문발전위 반론에 대한 의문점 4가지』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7일자 10면)

내 용 :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위원장 장행훈)가 4일 올해 신문발전기금 사업예산 157억 원의 우선지원대상자로 12개 언론사를 선정해 발표한 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친여 성격의 신문과 인터넷언론에 지원 대상이 편중돼 있고 지원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신발위는 5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했다며 반박자료를 내는 등 반론을 폈다. 논란의 쟁점을 짚어본다.

▽올해 지원액은 157억? 65억? =신발위는 “총예산 250억 원 중 157억 원을 사업예산으로 잡았으나 올해 사용액은 41% 수준인 65억 5,000만 원이다. 시설 도입 등에 지원하는 63억 원은 연리 3%의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직접 지원 사업비다”라고 밝혔다. 남은 예산 91억 5,000만 원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된다는 게 신발위의 설명이다. 신발위는 올해 기금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하지만 지원금보다 이월금이 더 많은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임을 보여 준다.

신발위는 또 직접지원 예산을 올해 7억 원에서 내년엔 130억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발위 관계자는 “신문산업이 어려우니 직접지원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언론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정된 신문사들에는 갚을 필요가 없는 130억 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유례없는 개별 신문사에 대한 선별 지원=신발위는 공적기금을 지원 받은 언론사가 권력감시와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존에도 신문사들이 신문판매 부가세 면제, 우편료 감액, 윤전기 도입 시 관세 감면, 취재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 왔다는 점을 내세워 반박했

다. 이미 국가의 지원을 받아 왔는데 추가 지원을 받는다고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언론학자들은 신문산업 전체에 주는 지원과 일부 신문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신문 육성을 위해 전체 신문사에 혜택을 주는 것은 각 신문의 논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별 신문사를 특정 기준에 따라 선정해 혜택을 줄 경우 해당사가 지원을 받기 위해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략)

▽기금 지원 선정기준의 모호성=신발위는 지원사를 선정할 때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 운영 △상업광고 연간 50% 이하 △자료 신고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여부 △연수 제도 운영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반 등 항목에 각 50~150점을 부여해 1,000점 만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신발위는 ‘사회적 책임’ ‘공정성 조항’의 세부 사항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지역감정을 조장했는지 △시민단체나 학계로부터 편파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문윤리위원회의 지적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또는 시정권고 등을 구체적 심사 자료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물의를 일으켜야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 정치적 편향성을 띤 일부 언론운동단체가 특정 신문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정부기관이 일부 신문에 집중적으로 중재 신청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중재 건수 등이 객관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발위의 정체성=정부기구가 아니라 여야 신문협회 언론학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라는 것이 신발위의 주장. 하지만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체 위촉하는 위원 3명을 포함해 정부 몫의 추천인사가 6명이나 돼 정부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동아일보는 7월 7일자 10면에 『‘발전기금 논란’

신문발전위 반론에 대한 의문점 4가지』 제하의 보도에서 “신발위는 올해 기금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하지만 지원금보다 이월금이 더 많은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다. 신발위는 직접지원 예산을 올해 7억 원에서 내년에 130억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신문사들에는 갚을 필요가 없는 130억 원이 돌아가는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신문발전위원회가 2007년 기금지원 사업비를 2006년에 비해 늘려 책정한 것은 신문발전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한 ‘신문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신문협회 등 신문업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책정한 것으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란 표현은 옳지 않으며 또한 신문법 제34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업비로 책정된 131억 원 중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개별신문사에 대한 지원은 신문법 제9조(독자권익위원회)와 언론중재법 제6조(고충처리인)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및 고충처리인 운영 지원’ 사업과 ‘첨단편집제작 시스템 도입 지원’ 사업 등에 48억 원, 신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터넷신문 진흥에 20억 원이 편성, 이 밖에 △신문유통구조 개선과 NIE 교육 지원, 소외계층 등 구독료 지원, 신문윤리심의 사업 지원 등 신문법 제34조(기금의 용도)에 규정된 유통구조개선과 언론공익 사업 등에 63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 “선정된 신문사들에는 갚을 필요가 없는 130억 원이 돌아가는 셈이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 육성을 위해 전체 신문사에 혜택을 주는 것은 각 신문의 논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별 신문사를 특정기준에 따라 선정해 혜택을 줄 경우 해당사가 지원을 받기 위해 눈치를 볼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문발전위원회가 개별신문사에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은 신문발전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지원을 원하는 신문사에 원하는 금액을 모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며, 특정기준에 따라 선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신발위가 지원사를 선정할 때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조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면서 신문윤리위원회의 지적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또는 시정권고 등을 구체적 심사 자료로 삼았다고 밝혔

다. 어느 정도의 물의를 일으켜야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 정치적인 편향성을 띤 일부 언론운동단체가 특정 신문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정부기관이 일부 신문에 집중적으로 중재 신청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중재건수 등이 객관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으나, 2006년 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은 현재가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신문법과 동법 시행령 근거 조항에 따라 만든 것으로 신문발전위원회는 지원기준을 공지하면서 선정 심사는 각 항목별로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평가에 대한 심사자료로 언론중재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준수 여부는 1,000점 만점에 40점에 불과해 이 기준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 “정부기구가 아니라 여야 신문협회 언론학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라는 것이 신발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체 위촉하는 위원 3명을 포함해 정부 몫의 추천인사가 6명이나 돼 정부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도하였으나, 신문발전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 한국신문협회·전국언론노조·한국언론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되고, 여야와 신문업계, 학계, 언론단체에서 추천하는 6인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촉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정부 몫의 추천인사가 6명이나 돼 정부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반론보도문

동아일보는 7일자 A10면에서 신문발전위원회가 직접지원예산을 내년에 13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선정된 신문사들에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 130억 원이라고 보도했으나, 신발위는 이를 68억으로 밝혀왔습니다. 7일자 사설에서 신발위는 ‘4일 157억 원의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5일 65억 5천만 원으로 밝혀왔으며, 신문법에

따른 심사를 통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사를 선정했고 모든 신문사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정정보도문

같은 기사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3인을 포함해 정부쪽 추천 인사가 6명이나 돼 정부 의도대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정부쪽 추천 인사는 3명으로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8월 9일까지(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보 오피니언 3면에 게재한다.

•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 및 논설위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4일자 2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문발전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장 행 훈)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현재 결정 비슷한 장행훈 ‘신문발전’ 위원장』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7일자 31면)

내 용 : 신문발전위원회는 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중앙 일간지 2곳,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 3곳, 그리고 일부 지방지와 잡지 등 모두 12개사에 157억 원의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핵심조항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신문발전기금 지원 방식’이 위헌이라고 결정한지 엿새 만이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은 현재 결정문을 보고서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감행했는지 궁금하다.

독자들이 선택한 신문을 발행부수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위헌’이라고 현재는 밝혔다. 따라서 신문발전위원회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가 현재 결정 취지에 맞는 대체입법을 한 뒤에 그 내용에 따라 신문발전기금 문제를 처리했어야 옳다.

장 위원장은 정부측 참고인으로 현재에 나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재판관 9명은 전원일치로 ‘신문시장의 구도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자유로운 신문제도에 역행한다’고 판시했다. 장 위원장이 헌법 재판관 전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사적(私的) 소신에 따라 ‘혈세로 조성된 수백억 원의 기금’을 주물러 신문시장을 왜곡하려 든다면, 아무리 권력이 비호하더라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문발전위는 정권이 신문시장에 대한 개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위헌 조항이 적지 않은 신문 악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설치한 기구다. 그런데도 현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문발전위 설치와 신문발전기금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訴願)을 각하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신문발전기금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신문발전위는 그 명칭과는 달리 독자가 선택한 신문을 의도적으로 차별해 언론을 애완건으로 길

들이려는 반(反)시장·친(親)정권 기구이므로 개
폐를 다시 따져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동아일보는 7월 7일자 31면에 『현재 결정 비웃
는 장행훈 ‘신문발전’ 위원장』 제하의 사설에서
“신문발전위원회는 12개사에 157억 원의 신문발전
기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하는 2006년 신문발전기금은 최고한도액 기준
으로 모두 65억 5천만 원이며, 전체 사업별 기금운
용 편성 규모가 157억 원으로 밝혀졌고 “독자들이
선택한 신문을 발행부수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
자’로 추정하고 이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위헌’이라고
현재는 밝혔다. 따라서 신문발전위 측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가 현재 결정 취지에 맞는 대
체입법을 한 뒤에 그 내용에 따라 신문발전기금
문제를 처리했어야 옳다”고 보도하였으나 현재 결
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신문법 제17조는 일반일간
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시
장점유율을 산정하도록 했기에 시장지배적사업자
에 해당하는 신문사는 없었으며, 지난 6월 2006년
신문발전기금 지원신청 마감때까지 일간신문사들
이 모두 발행부수를 신고하지 않아 2005년 시장지
배적 사업자 추정은 불가능했고 또한 헌법재판소
는 신문발전기금 관련 조항인 신문법 제33조(신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와 제34조(기금의 용도,
단 제34조제2항제2호는 위헌 결정), 제35조(기금의
관리·운용)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
졌고 따라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법에 따라
신문발전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신문발전위원회가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신문발전기금은 신문법과 동법 시행령 근거

조항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
는 것이며, 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집행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이
사적 소신에 따라 기금을 주물러 신문시장을 왜곡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발전위는 정권이 신문시장에 대한 개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위헌조항이 적지 않은 신문 약
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설치한 기구다.”라고 보
도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신문발전위원회 관련 조
항인 신문법 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제29
조(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장위원장은 신문발전기금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업자는 신문
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지원기준에 따
라 신문발전위원들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
해 선정한 것으로 신문발전위원회가 2006년 신문
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업자 선정 시 어떤 신문
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없고 모든 신문사
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장행훈 위원장
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써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
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282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4일자 2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문발전위원회가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장 행 훈)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정부 돈받고 정부 비판할 수 있겠나”』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5일자 A5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8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28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7월 5일자 A5면 『“정부 돈받고
정부 비판할 수 있겠나”』 기사와 관련하여 신문발

전위는 7월 4일 157억 원의 신문발전기금을 지원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7월 5일 지원규모가 65억
5천만 원이고, 신문법에 근거한 조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문발전위
는 또 본지 7월 6일자 사실과 관련하여 신문발전
위원들은 신문법에 따라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다
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8월 9일까지(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
보 2면에 게재한다.
-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2,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 및 논설위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
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문발전위원회가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장 행 훈)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정권과 친여 여론, 국민 세금으로 무슨
거래하나』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5일
자 A5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8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28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284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문발전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장 행 훈)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권력 편드는 신문 세금으로 지원하는
나라』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6일자
30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8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28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7월 6일자 『권력 편드는 신문 세
금으로 지원하는 나라』 사실과 관련, 신문발전위원
회는 “2006년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신문법
조항에 의거한 지원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
됐고, 모든 신문사에게 신청기회가 제공됐다”고 밝
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8월 9일까지(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
보 2면에 게재한다.
-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2,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 논설위원에 대한 정
정보도청구·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
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평택범대위 자문변호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천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평택범대위 자문변호사, 공익사업
선정위원 참가』 제하의 기사 (2006년 7
월 13일자 1면)
내 용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
회(평택범대위)’에 자문하는 변호사가 정부 보조
금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행정자치부의 공익사업선
정위원회 위원으로 평택범대위 소속단체를 지원
단체로 선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밝
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범대위 소속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결정을 주도한 공익사업선정위의 천○○ 위원은 평택범대위 관련 사건을 자문하는 변호사로 확인됐다.

이 두 단체는 5월 폭력 시위에 참가했으며 천 위원은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평택범대위 회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두 단체는 올해 초 공익사업선정위에 ‘사회통합과 평화’ 관련 사업을 벌이겠다며 지원금을 신청했고, 공익사업선정위는 5월 분야별 평가 작업을 거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1억 원(3년치)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2,000만 원(1년치)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통합과 평화 분야의 평가에는 천 위원과 다른 1명 등 2명만 참여했으며, 천 위원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한 사실상 최고 점수인 86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는 85점을 줘 이들 단체가 지원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원 단체로 선정되는 커트라인은 평균 72.5점이었으며 다른 위원이 이 두 단체에 준 점수는 71점과 74점이었다.

이에 대해 천 위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평택범대위 소속으로 시위에 참가하는지 몰랐다”며 “지원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후략)

(2) 『신청단체 인사가 지급결정 ‘회한한 심사’』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3일자 3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회원 중 폭력시위로 입건된 사람들을 변호하며 자문한 변호사가 행정자치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범대위 소속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결정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 보조금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천 위원의 높은 평가 점수로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신규사업이다. 신규사업은 심사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된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사업은 전년도 활동

실적 평가가 좋지 않아 올해 심사과정에서는 10점, 감점을 받았다.

그러나 천 위원은 본인이 평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줘 두 단체가 각각 총점 86점과 85점의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사회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조정, 진행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해 지원금을 받았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폭력 시위를 벌인 범대위에 참여했던 단체가 평화문화를 명분으로 돈을 받은 것이 눈길을 끈다. (중략)

평택범대위에 참가한 단체로 지원금을 받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도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북한의 미사일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문제는 북-미 간의 적대관계에서 비롯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1997년 창립된 뒤 남북 여성교류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운동을 벌였으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이○○ 위원장이 이 단체 출신이다.

(3) 『미사일 발사 찬양 단체에 세금 퍼주는 정부』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3일자 31면)

(전략) 이 단체는 북한 정권 ‘앵무새 노릇하기’에 드는 돈을 남쪽 정부에서 얻어 쓰는 걸 떼떽하게 여기는지 궁금하다. 북의 미사일 발사를 ‘민족의 저력을 외세에 보여 준 일’로 찬양할 정도라면 차라리 북쪽의 지원금을 타 쓰는 편이 옳지 않겠는가. 역시 평택 폭력시위에 가담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라는 단체도 정부 지원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기구는 행자부 산하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다. 평택에서 벌어진 반미 폭력시위에 가담한 단체에는 높은 점수를 주어 국민 세금을 지원하고, 탈북자를 돕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바로 이 위원회다. 이 기구의 위원장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출신인 이○○ 씨다. 또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자문변호사는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제 눈에 물대기’를 할 코드 성향 인사들을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행자부다.

친북반미 폭력운동이 ‘지원 대상 공익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속살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그 실체에 섬뜩함마저 느끼게 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동아일보는 지난 7월 13일자 기사에서 『평택범대위 자문변호사, 공익사업선정위원 참가』 제하 범대위 단체에 최고점 정부 보조금 받게 해줘 ‘공동선언연대 등 2곳에 1억, 2,000만 원씩 지원’이라는 부제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에 자문하는 변호사가 정부 보조금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행정자치부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평택범대위 소속 단체를 지원단체로 선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는 평택범대위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바가 없으며 미국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업 내용을 심사하여 한국 내에서 평화문제의 중요성과 그 사업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업내용을 평가하였으며 평택범대위의 소속 2개 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지원금은 이들 단체의 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업 그 곳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사업 내용의 감독만 철저히 하면 그 지원금은 단체의 다른 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변호사는 이들 두 단체에 자문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9일자 6면)

내 용 : 13일자 『평택범대위 자문변호사, 공익사업선정위원 참가』, 『신청단체 인사가 지급결정 회한한 심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천〇〇 변호사는 평택범대위에 소속된 자문변호사는 아니며,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평택범대위 시위 관련자들에게 대한 법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 천 변호사는 보조금 지급 단체로 결정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인사가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봉사활동을 빙자해 보조금을 타내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1

청 구 명 : 정정·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사)녹색어머니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 이 ○ ○)

피신청인 : 한국기자연대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추후·손배)

보도내용

한국기자연대 : (1) 『정관에도 없는 교통봉사 녹색

어머니회, 전국파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교통캠페인, 교통질서의식 고취 등 운영 이념과 정관에도 전혀 관계 없는 녹색어머니회를 빙자하여 지역별로 지회를 모집, 순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해 자신의 산하단체라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진정과 함께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인천 일부 경찰서에 자신이 밀어주는 지역단체 회장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라고 전화를 하고, 자신이 임명한 단체가 해체 되었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순수 봉사단체를 떠나 압력단체 행사가

지 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사)녹색어머니회 중앙회 부회장 이모씨는 본 기자연대 (본보 7월 3일자) 질문에 대해 “환경부로 등록된 단체로 정관에는 교통캠페인 등에 대한 사업목적이 없어 올해 서울시에서 별도로 교통캠페인 사업을 등록, 서울에서는 교통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인천지역이 많은 말썽을 빚고 있어 현재 감사에 들어 갔다”고 밝혀, 현재 이 단체에 가입된 교통봉사단체는 정관과 전혀 무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부회장은 본 기자연대 단체 등록현황에 대한 질문에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는 경찰청 산하 초등녹색어머니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환경부 산하 본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밝혀, 순수 교통봉사단체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어 관련기관의 강력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중략)

3일 인천 중구 교통봉사단체 회원들은 본 한국기자연대에 제보를 통해 “인천 연수구 녹색어머니회 L모씨가 지난 2005년 자신들을 위장 회원으로 동원하여 서류를 조작, 연수구청에서 보조금을 타내 공금을 유용하였다”면서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한 민원을 3일 연수구청에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회원은 “L씨가 지난해 중구회원들을 위장 동원하여 보조금을 타낸 5백58만 원 중에 현수막, 식대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한 Y,S,L씨 등에 대한 강사료도 지급되었는지 여부관계 등 허위공문을 작성하여 보조금을 타낸 경위 등에 대한 관련당국의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인천연수 녹색어머니회, 구 보조금 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9일자 사회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을 빙자해 일부 기초단체에서 보조금을 타내고,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기초단체별 관련당국의 강력한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라는 단체명이 환경 녹색어머니회 등 수개에 이르고 있어, 지역별 결성과정에

명칭계제를 두고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데다, 일부 개인에 의해 명칭을 바뀌가며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까지 밝혀지고 있어 위장 봉사단체에 대한 관련당국의 전반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7월 4일자와 7월 9일자 사회면에 『정관에도 없는 교통봉사 녹색어머니회, 전국과문』과 『인천연수 녹색어머니회, 구 보조금 유용 의혹』 제목으로 교통캠페인, 교통질서 의식 고취 등 운영 이념과 정관에도 전혀 관계없는 녹색어머니회를 빙자하여 지역별로 지회를 모집, 순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해 자신의 산하단체라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진정과 함께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 회장이 운영하는 (사)녹색어머니인천광역시지부의 정관과 인천광역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인천광역시녹색어머니연합회도 정관 사업목적에 ‘교통캠페인 봉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봉사활동을 빙자로 일부 기초단체에서 보조금을 타내, 유용했다’는 보도는 잘못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한국기자연대 2006년 8월 2일 및 3일

에 걸쳐 초기화면에 게재한다.

한국기자연대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일자)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방부 장관이 북한미사일 발사 사실을 실무진에게 알리느라 대통령에게 늦게 보고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尹국방 “실무진에 알리느라 靑보고 늦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7일자 A8면)

내 용 : △안영근(열린우리당) 의원=“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사전에 수차례 조정회의를 해 봤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보였을 수 있다.”

▽김명자(열린우리당) 의원=“한국은 북한 미사일의 직접적인 당사자인데도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늦게 사태에 대응했다.”

▽윤 장관=“저희가 다 준비해 봤고 알고 있어서 여유를 갖고 한 거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즉각 대응을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여유론’으로 대응하다 못매를 맞았다.

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도 더 지나서야 관련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실무 요원들에게 먼저 알려 줘야했기 때문”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못했는지 열린우리당 의원들까지 나서 윤 장관을 질책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일부러 여유 있게 보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며 “준비가 다 됐다면 즉각 기민하게 움직여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자 의원은 “(그런 답변이)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7월 7일자 A8면 『尹국방 “실무진에 알리느라 靑보고 늦었다”』 제목의 기사에서 7월 6일 국방위 위원의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이 “실무요원에게 알려줘야 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국방장관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날 국방위 위원들이 대책회의 시간이 늦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윤 장관은 ‘나라별 시스템과 대응방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조치가 늦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정하고, 우리는 사전준비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회의에 우선하여 시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환경부가 가동이 중단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 합격판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9

청 구 명 : 정정보도

신 청 인 : 한 경 부 (장관 이 치 범)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국제신문 : 『정신나간 환경부』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0일자 6면)

내 용 : 환경부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이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 잡음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 221곳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206곳에 대해 합격판정과 함께 우수시설 평가를 내렸다. 울산 북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합격 판정을 받았고, 위탁관리 업체는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청의 이 시설은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평균 30t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35t보다 용량이 적게 설계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초 약속과 달리 가동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 주민들의 항의로 지난 5월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이 시설과 관리업체에 대해 우수 시설 및 우수 업체로 선정, 주민들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원화시설 인근 울산시 북구 중산동 주민들은 “설치 당시부터 논란이 됐고 가동 후에도 자주 말썽을 일으킨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선정 기준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7월 10일자 6면 『정신나간 환경부』 제하의 기사에서 환경부가 울산북구의 고장난 쓰레기시설에 정기검사 합격판정을 내린 데 이어 이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해 잡음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울산북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05. 7. 7. 준공되어 '05. 9. 12. 시설검사에 합격하였으나, 금년 9월 초로 예정된 정기검사를 앞두고 악취방지시설 등의 보수를 위하여 가동중단 중에 있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합격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동 시설이 정상가동 중에 있을 때 실시된 우수 사료·퇴비 공모전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가동중단 상태에서 시설운영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7월 10일자 6면 『정신나간 환경부』 제하의 기사에서 울산 북구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9월 정기검사를 앞두고 아직 합격판정을 하지 않았고, 이 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우수업체 선정은 가동중단상태 이전 상황이므로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제신문 2면에 2006. 8. 1.까지 1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제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실명과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8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재테크의 정석’ 찾느라 ‘작업의 정석’ 뒷전이죠』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1일자)

내 용 : (전략) 부동산 투자로 덕을 봤다는 파이낸셜어드바이저 최○○씨(36·가명). 2년간 매월 40만 원씩 부은 적립식펀드가 지금은 원금 960만 원과 투자수익을 합해 1,500만 원이 돼있다. 연초 들어간 일본펀드는 불행히도 20% 손실을 봤다. 단기로 생각하고 투자한 일본펀드가 비자발적 장기투자가 돼버렸다고 너털웃음을 짓는다. 직업 때문에 사돈의 친척 포트폴리오까지 주문을 해준다는 최씨는 개인연금펀드를 추천했다. 실사 투자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환급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투자 기회가 줄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1년에 한번입니다. 여러번 움직이기 어려운 투자 대상인 만큼 1년에 한번만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기회가 없지는 않아요. 무조건 발로 뛰고 공인중개업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적어도 2~3명 정도요. 중요한 건

너무 어리숙해 보이면 좋지 않은 물건으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쪽 생리를 몰라도 조금은 아는 척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클럽 멤버들에게 용인 동백 분양을 추천한 것도 췌시다. 그는 신규 청약하려는 클럽회원들에게 화성 동탄과 하남 풍산을 추천했다. (중략)

경제적 독립을 위해 바지런히 뛰는 준비된 싱글들. 근로소득만으로 먼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지금의 20-30대에게 성공적인 투자는 결혼에 골인하는 것만큼이나 경시할 수 없는 목표다. ‘작업의 정석’과 ‘재테크의 정석’을 함께 다져가는 이들. 2006년 대한민국 미혼 남녀의 자화상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머니투데이는 지난 7월 21일자 『‘재테크의 정석’ 찾느라 ‘작업의 정석’ 뒷전이죠』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과 정면사진을 보도하였고 보도 내용도 취재 당시 설명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신청인을 마치 돈에 눈이 어두워 연애를 하지 않는 냉혈인간으로 비취지게 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8월 18일까지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이 정부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종 석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종재부
접 수 일 : 2006. 7.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이종석 장관 “인수위 멤버는 내가 챙긴다”』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3일자)

내 용 : 현 정부의 통일안보정책을 관장하는 핵심 인사들이 5.31 지방선거 전날에 서울 시내 고급 한정식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우리는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인수위 멤버는 내가 챙긴다”면서 정부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으로 구성된 이 모임의 ‘좌장’ 격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이날 술자리에서 “인수위 멤버는 내가 챙긴다”면서 마치 이날 참석한 안○○ 국가정보원 ○○실장의 승진발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과 안 실장은 16대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 통일안보분과에서 각각 인수위원과 부처 파견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23일자 『이종석 장관 “인수위 멤버는 내가 챙긴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인수위 멤버는 내가 챙긴다’면서 정부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인수위 멤버는 내가 챙긴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3일자 기사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인수위 멤버는 내가 챙긴다’면서 정부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시 참석자들에 의하면 이 장관이 ‘인수위 멤버는 내가 챙긴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초기화면에 위 제목으로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0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천안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5.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천안일보 : 『일부지역 당선자 불법선거 시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4일자 초기화면)

내 용 :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일부지역에서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천안시 기초의원 선거 중 성환/입장/성거·두정 지역의 경우 “스후보의 공천과정과 선거운동 중 금품살포,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후보는 당초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도 5월 4일 마지막 공천확정 당일 공천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있다가(일부신문에 보도) 자정이 다되어서야 공천을 받는 등 공천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스후보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후보의 사무장이 새벽에 돈봉투를 차에 싣고 모 아파트지역으로 이동중인 것을 상대후보의 운동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운동과정 중에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스후보자의 지역 주민들은 “스후보자가 과거 과실치사(교통사고)로 구속된 경력이 있는 등 갖가지 송사문제의 중심인물인 점을 들어 전과기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과사실 확인을 위한 민원인의 사실확인 신청이 접수돼 경찰에 확인을 의뢰해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이 지난 6월 14일자 초기화면 『일부지역 당선자 불법선거 시비』 제하의 기사에서 천안시 기초의원 선거 중 성환/입장/성거·두정 지역의 스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일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스후보의 사무장이 돈봉투를 차에 싣고 이동 중인 것을 상대후보 운동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과거 과실치사로 구속된 경력이 있는 등 갖가지 송사문제의 중

심인물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스후보는 공천과정에서 한나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공천 확정되었고, 선거운동 기간 중 사무장이 돈봉투를 차에 싣고 이동하였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송사문제에도 연관된 적이 없어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천안일보(인터넷신문 www.caibo.com)에 2006. 8. 2. 09시부터 1개월 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초기화면 우측상단에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크기(일부지역 당선자...)와 같게 하여 상자로 표기하고, 제목은 본문화자와 같게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연결되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와 댓글내용은 2006. 8. 2. 09시부터 삭제한다.
- 신청인은 이견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천안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일자 초기화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1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6.

처리결과 : 합 의 (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앙일보 : 『“서세원 씨 비리는 허위 제보였다”』 제하의 기사 (2005년 10월 27일자 12면)

내 용 :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02년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 ‘개그맨 서세원씨가 방송사 PD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씨 회사 전 직원 이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이씨의 제보 내용을 기사화한 모 일간지 기자 H씨(35)와 이를 검찰에 알린 시민단체 대표 이모(40)씨 등 4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씨 등 세 명은 불구속입건됐으나, H기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서씨 회사의 경리로 일하다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뒤 이듬해 7월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가 진행되자 H기자를 만나 ‘서씨가 이사 하모 씨를 통해 PD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허위 제보했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추후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005년 10월 27일자 12면에서 『“서세원씨 비리는 허위 제보였다”』 제목으로 서세원의 전 경리인 이모 씨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뒤 허위진술로 서세원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 씨는 그 당시 신용불량자가 아니었

으며,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였고 또한, 검찰 수사 결과 지난 10월 27일자 보도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추후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2005년 10월 27일자 12면 『“서세원 씨 비리는 허위 제보였다”』 제하의 기사에서 서세원씨 회사의 경리로 일하던 이모 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이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아울러 이모 씨는 당시 신용불량자가 아니었으며,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006년 8월 7일자 이전까지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추후보도문)는 조정대상기사 사진설명(해고당한 직원이 거짓말)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2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일보 : 『“서세원 비리제보 전 직원이 부풀려”』
제하의 기사 (2005년 10월 27일자 A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6서울조정2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2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신청 후 보도문

한국일보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8일자 10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91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이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3
청 구 명 : 추후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6.
처리결과 : 합 의 (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5년 10월 26일
20:00)
내 용 : <2006서울조정2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6서울조정2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2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액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추후보도문
- 내 용 : SBS는 지난 2005년 10월 26일 「SBS8
뉴스」 ‘경찰청, 서세원 비리제보는 거짓’ 제목의 보
도에서 서세원씨 회사의 경리로 일하던 이모 씨가
회사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방송사 피디들
에게 서씨가 돈을 준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해 경
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5일 무
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씨
는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8월 3일 피신청인이 방송하
는 SBS-TV 「SBS8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
되 위 보도문의 제목(추후보도문)은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
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8월 3일
20:4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V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4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6.
처리결과 : 합 의 (추후)
취 하 (손배)

〈2006서울조정2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2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29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Y T N : 「YTN24」 프로그램 (2005년 10월 26일
18:00)
내 용 : 〈2006서울조정291의 보도내용 참조〉
Y T N : 「YTN24」 프로그램 (2006년 8월 4일 16: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보도내용

Y T N : 「YTN24」 프로그램 (2005년 10월 26일
18:00)
내 용 : 〈2006서울조정2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신청인이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V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5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YTN STAR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6.
처리결과 : 합 의 (추후)
취 하 (손배)

〈2006서울조정2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2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29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YTN STAR : 「STAR뉴스」 프로그램 (2005년 10월
27일 14:00)
내 용 : 〈2006서울조정291의 보도내용 참조〉

YTN STAR : 「STAR뉴스」 프로그램 (2006년 8월 4
일 14: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신청인 단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찬양한 친북반미 폭력운동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6
청 구 명 : 반론 · 손해청구
신 청 인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6.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평택범대위 자문변호사 공익사업
선정위원 참가』 제하의 기사 (2006년 7
월 13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287의 보도내용(1) 참조>

(2) 『신청단체 인사가 지급결정 ‘희한한 심사’』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3일자 3면)
<2006서울조정287의 보도내용(2) 참조>

(3) 『미사일 발사 찬양 단체에 세금 퍼주는 정
부』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3일자 31면)
<2006서울조정287의 보도내용(3)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동아일보는 2006년 7월 13일자 1면, 3면 기사와
31면 사설에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공익사업선
정위원회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에서 선정되었으며, 사설에서는 “미사일 발사 찬양
단체”로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천 위원이 평화여성회에
85점을 줘 지원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평화여성회는 이
미 다른 심사위원으로부터도 커트라인이 넘는 점

수를 받아 천 위원의 점수 덕분에 결정적으로 지
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3면 『신청단체 인사가 지급결정 ‘희한한 심사’』
제목으로 보도하였으나, 평화여성회의 인사가 심
사를 한 바 없고,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폭력 시위를 벌인 범대위에 참여했던 단체가 평
화문화를 명분으로 돈을 받은 것이 눈길을 끈다.
또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미 진행되어 2,000만 원
이 지원됐다”라고 하였으나, 평화여성회는 1997년
출범 이후 비폭력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심성훈련,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평화문화캠페인 등 평화문
화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평화문화가
‘명분’이 아니라 평화여성회의 주요활동 중 하나
이며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에 이미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
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서와 관련
하여 평화여성회는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주민의
삶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평화에 심각
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
결되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평화여성회’ 반론
- 본 문 : 본지 7월 13일자 ‘범대위 단체에 최고
점, 정부보조금 받게 해줘’ 기사 및 사설 등의 보
도와 관련,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행자부의 공익
사업선정 평가에서 특정 위원의 평가와 관계없이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정부보조
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됐으며, 평택
범대위 소속이긴 하지만 비폭력 평화행사를 진행
했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평화 해결

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친북반미폭력시위단체가 아님을 밝혀 왔습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한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동아일보 2면에 2006. 8. 17.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고덕활자로 게재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평화여성회’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여성단체협의회 총무직을 사임한 이유가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투서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3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나주투데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나주투데이 : 『여성단체 이모회장 익명의 투서로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0일자 4면)

내 용 : 전국주부교실 나주시지회 이모 회장의 신상에 관한 투서가 유포돼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아울러 여성단체협의회 총무를 맡아 왔던 이모 회장이 지난달 총무직을 사임했던 배경이 투서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말 여성단체협의회장 앞으로 이모 회장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적은 내용의 투서가 익명으로 2차례 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본지에도 지난 4일 같은 내용의 투서가 배달됐다.

발신인을 이모 회장의 영산포 선후배사이라고 칭하면서 보낸 익명의 투서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앞으로 이모 회장이 여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중략)

아울러 이모 회장은 “여협 총무직은 개인적인 일이 너무 바빠서 사임하게 됐던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총무직 사임은 투서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여성단체 몇몇 회원들로부터 투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여협에서 투서를 문제 삼아 총무직 사임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모 회장의 여협총무직 사퇴는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투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10일자 4면 『여성단체 이모회장 익명의 투서로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전국주부교실 나주시지회장 이○○ 씨의 반론문을 게재합니다.

올 3월 이후부터 우리 주부교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잡음을 끌어안고 모임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던 것이 었그제입니다.

저를 위해하려는 괴문서로 인해 우리 전국주부교실 나주시지회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송구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회장인 저의 부덕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요.

저를 향한 무기명의 문서들이 여러 곳으로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일부 저를 헐뜯는 괴문서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도덕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도 없고, 아니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변으로부터 돌을 맞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한사람입니다.

그 괴문서가 표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직접 어느 누구와 만나 대면해도 저는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악의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제 살이 뜯어 먹혀도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헐뜯는 괴문서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저는 전국주부교실 나주시지회의 명예와 또한 제 가족,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신문기사의 말투대로 하자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의적인 표현으로 저에게 다시 위해를 가한다면 앞으로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참겠습니까?

우리 주부교실 회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주부교실의 단합을 위해 지금까지는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또다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하거나 투서가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인간적인 절망감을 그 사람에게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께 저의 부덕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 나주시지회 회장 이 ○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반론을 광고문의 형식으로 무료로 게재할 수 있지만 반론보도문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 □

소방방재청이 강원지역 집중호우 시 상황판단을 잘못해 위기경보를 뒤늦게 발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소방방재청 (청장 문 원 경)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2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쑥대밭된 뒤 ‘경계령’... 위기경보 누락』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8일자 9면)

내 용 : 50명의 사망·실종을 낸 중부지역 집중호우에 국가위기경보시스템도 누락을 부렸다. 상황

판단에 대한 오류로 위기경보를 뒤늦게 발령하는 등 재난 상황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국가 위기경보등급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경계’ 경보를,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4일부터 강원과 경기, 서울 등 중부지역에 내린 300mm 안팎의 집중호우로 인제군과 평창군에서는 산사태와 갑자기 불어난 계곡과 하천급류에 휩쓸려 10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되는 등 16일 오전 6시 현재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2,000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과 781채의 주택 파손·침수, 정전과 급수중단에 이어 영동고속도로

강릉~원주간 양방향을 비롯, 동해안을 잇는 국·지방도 7개 노선 11구간에서 교통 통제가 실시되는 등 전국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상태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태풍때와는 달리 ‘관심’이나 ‘주의’ 등의 경보 대신 인명피해가 대규모로 확인된 16일 오전 곧바로 경보제도 도입이후 처음인 ‘경계’ 경보를 내렸다.

태풍이 아닌 집중호우에 따른 위기경보도 이번이 처음일만큼 피해 상황이 심각했지만 그에 앞서 상황 판단의 오류 및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이다. (후략)

위기경보 ‘경계’는 국가주권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지는 등 국가위기로의 발전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발령하는 것으로 7. 15.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7. 16.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한 것이고, 경보발령 이전에 이미 한 발 앞선 재난대응의 원칙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중부지역 집중호우에 국가위기 경보시스템도 녹장을 부렸다. 상황판단에 대한 오류로 위기경보를 뒤늦게 발령하는 등 재난상황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소방방재청은 본보 7월 18일자 9면 『쑥대밭된 뒤 ‘경계령’... 위기경보 녹장』 기사와 관련 국가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보상액이 과거보다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소방방재청 (청장 문 원 경)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3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국민일보 : 『과거보다 축소 형평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9일자 2면)

내 용 : 강원도 인제군 등 5개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 18곳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과거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이 완화된 대신 피해규모 대비 복구비 지원비중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데다 주민들의 사유재산 피해보상액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피해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태풍 예위니아와 집중호우 결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 18곳의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6,656억 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반드시 떠안아야 하는 88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20억 원 중 지자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피해액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정부 복구지원비는 2,886억~4,67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0년 동해안 산불화재 당시 2명이 사망하고 27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규모의 두 배가 넘는 678억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지원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중략)

이처럼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일반 재해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

정, 보상기준을 재산피해액의 50~8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국민일보는 지난 7월 19일자 2면 『과거보다 축소 형평성 논란』 제하의 보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기초자치단체 총피해액 6,656억 원 중 정부의 지원금은 2,886억~4,67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 2000년 동해 산불과 비교 지원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일반재해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보상기준을 재난피해액의 50~8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에서는 금번 태풍과 호우

피해지역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액보다 많게는 200%가 넘게 지원될 것이므로 단순 비교하여 지원 비중이 크게 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법 대통령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는 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기준을 재산피해액의 50~80%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보상기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 추가 지원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해양수산부가 안전성에 대한 검토없이 포르말린을 어류용 기생충 구제제로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9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청장 김 성 진)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3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양식광어 기생충 잡으려고 포르말린 투약?』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4일 자 사회면)

내 용 :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양식어류의 기생충 약으로 써도 될까?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양식어류의 기생충 약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해양수산청에 내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공문은 해양수산부가 외부 연구용역팀에 조사연구를 맡겨놓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려보낸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외부 연구용역팀은 포르말린 안전성 논란이 일자 해양수산부가 관련분야 전문가로 꾸린 팀이다. (중략)

포르말린은 37% 포르말데히드 수용액으로, 중합방지를 위해 8~12%의 메탄올을 첨가한 무색 투명한 액체다. 다량을 복용하면 심장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이다. 쉥케(schenke) 보고서 (1981년)에 따르면 공기 중 30ppm 농도에서 1분간 노출되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100ppm 이상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포르말린은 동물실험을 통해 발암성이 입증됐으며 ▲유전적 변이 ▲호흡기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중추신경 질환 ▲여성의 월경 불순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내분비 교란물질)

이다. (중략)

국립수산물 연구보고서<화학처리에 따른 성장기 넙치(광어)의 급성독성 효과>(1997)에서도 “포르말린,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중 포르말린은 다른 둘에 비해 저농도에서도 치사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 매우 유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략)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에 참여한 박세창 서울대 수의과 교수(수생동물질병학)는 “이 지침은 미국의 사용지침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어종을 송어·연어를 제외한 어종, 보리새우, 어류의 수정란으로 나누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광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르말린을 기생충 구제제로 허가하기 전에 어종에 따른 효능, 잔류 그리고 환경적 연구까지 마쳐야 했는데 아무런 연구기반 없이 사용을 허가했다”며 “전문인력의 판단이 배제된 채 수산 공무원과 수산질병관리사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투약행위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략)

특히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침을 내린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어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르말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지도계몽을 목적으로 빨리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생동물(어패류) 질병 전문가들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승인된 포르말린 기생충 구제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지도 지침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며 “포르말린 사용 지침을 내린 해양수산부의 이번 조치가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초래해 ‘광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어민들에게 제2의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같은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포르말린(1% 이상 함유) 취급시 유독물 영업등록 및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하는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포르말린의

원료인 포름알데히드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고 배출허용기준(20ppm) 초과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름알데히드’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로 발암의심 물질로 알려져 있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르말린을 사용한 식품의 가공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인 양식어류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잔류기준’이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류의 체내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혐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간의 휴약 기간만을 정했다”고 답변했다.

더구나 배출기준도 총량에 대한 구체적 규제 없이 ‘어류 수정란’의 경우 소독용수의 10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고, 그외 어류의 경우 소독용수의 2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뉴스는 지난 7월 4일자 사회면 『양식 광어 기생충 잡으려고 포르말린 투약?』제하의 기사에서 포르말린 안정성 논란이 일자 해수부에서 관련 전문가로 꾸린 팀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외부 연구용역팀은 2005년 10월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이후, 해수부에서 “미승인 약품 사용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대, 부경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용역팀이며, 포르말린은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다량을 복용하면 심장 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로서 동물실험을 통해 발암성이 입증되었고 유전적 변이, 호흡기성 질환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라고 하였으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포르말린은 어류의 기생충 구제를 위하여 물에 희석(20~100배), 약용용으로 사용하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보고서에서 포르말린은 저농도에서도 치사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 매우 유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수산과학원은 어류의 약제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성실험

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생충 구제를 위한 포르말린 용법 및 용량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해양수산부의 지침은 “미국의 사용지침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광어가 큰 문제인데, 포르말린을 기생충 구제제로 허가하기 전에 어중에 따른 효능, 잔류 그리고 환경적인 연구까지 마쳤어야 했는데 아무런 연구기반 없이 사용을 허가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해수부의 지침은 국내 실험결과와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용법·용량 등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다만 약품의 사용기준을 설정할 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 FDA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포르말린에 대한 용법·용량 등 사용 및 배출기준을 설정, 수산용 의약품으로서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판단이 배제된 채 수산공무원과 수산질병관리사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투약행위를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도하였으나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동물의 질병발생시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이며,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고, 승인된 포르말린 기생충 구제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지도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연구 용역팀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 양식장에서 기생충 구제제로서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포르말린을 사용토록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포르말린(1%이상 함유) 취급시 유독물 영업등록 및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국내 양식어장에서는 0.015-0.025% 수준으로 희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니며, “어류 수정란의 경우 소독용수의 10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고 그 외 어류의 경우 소독용수의 20배 이상 희석해 배출토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에 대하여 수산과학원에서 포르말린을 처리한 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일정기간후 포르말린은 용해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포르말린이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류에 대하여는 소독용수의 20배 이상, 어류 수정란에 대하여는 소독용수의 100배 이상 희석하여 배출토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오마이뉴스 : 『적정한 포르말린 사용은 큰 문제 없어』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9일자)

내 용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5년 10월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이후 ‘미승인약품 사용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해 12월 외부 연구 용역팀을 구성했다. 서울대와 부경대, 군산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연구 용역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으로 포르말린을 포함한 미승인 약품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다시 말해 이 외부 연구 용역팀은 최근 포르말린 안전성 논란으로 인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아니다.

이들 외부 연구 용역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르말린은 미국을 비롯한 EU, 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 어류의 기생충 구제제, 전염성 아가미병의 치료제 등으로 수산용 의약품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본에서는 복어 등의 기생충 구제제로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 2003년 7월 30일 약사법을 개정한 이후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어란의 경우 2005년 7월 31일 이후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했다.

‘포르말린’은 무색이며,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HCHO) 37%가 물에 녹아있는 혼합물질로서 공기 중 산화되어 개미산(Formic acid, HCOOH)으로 변화되고, 최종 무해한 이산화탄소 및 물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르말린의 잔류성과 관련해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포르말린을 처리한 어류(조피볼락, 넙치, 뽕장어)를 조사한 결과, 처리 2~3일이 경과 후 포르말린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피볼락’은 포르말린 300~500ppm에서 3시간 약욕 후 3일 경과된 다음에 검출되지 않았고, ‘넙치’는 포르말린 300ppm에서 3시간 약욕 후 2일,

‘뱀장어’는 포르말린 400ppm에서 24시간 약육 후 2일 경과 다음에 포르말린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외에서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는 ‘수산용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포르말린의 경우 출하 시 휴약기간(2~3일)을 준수하면 어류에 잔류, 또는 축적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체내에서 단시간 내에 배설되므로 어류체내 잔류로 인한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NADA 140-989)

현재 미국에서는 포르말린을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포르말린을 양식어류 소독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경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위해 사용한 ‘포르말린사육수’에 대한 배출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50ppm으로 처리한 경우 10배 희석한 후

양식장 밖으로 배출(≒25ppm)하며, 1,000~2,000ppm으로 처리한 경우 75배 희석 후 배출(≒13.3~26.7ppm)하도록 설정했다.

올해 5월 17일 시행한 해양수산부 지도 지침은 이러한 국립수산물학원의 실험결과와 국내 양식장에서 포르말린 사용 실태 파악,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용법용량 및 배출수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전에 수의과학검역원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지침은 양식장에서 어업인이 어류의 약육용으로 포르말린을 사용 후 배출할 때,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류의 경우 소독용수의 2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도록 했다. 어류 수정란의 경우 소독 용수의 10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도록 기준을 설정했고, 어업인에게 준수하도록 했다. □

신청인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시공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시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 ○ ○)

피신청인 : 조간경남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3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조간경남 : 『○○아파트재건축조합, 시공사 ‘임의변경’ 물의』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3일자 4면)

내 용 : ○○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조합장 김 ○ ○)이 아파트를 재건축 중이던 당초 시공사를 두고 새 시공사를 임의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축법상 시공사 변경 시 당초 계약한 사업주체

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청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시공사를 임의로 재선정하고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측과 재계약한 (주)○○산업개발(대표 박○○)도 당초 계약 및 시공사인 ○○기업(주)측에 사전 협의나 재계약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시공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지난해 12월 아파트주민들의 계약·중도금 납부 불이행과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한 시공사의 자금경색으로 지하 1, 2층과 지상 6층까지의 골조공사만 마치고는 시공이 중단됐다.

이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주민 총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재선정 할 시공사를 물색해 왔으나 적당한 시공사를 찾지 못한 채 5개월여 공사가 중단돼 왔다.

재건축조합은 지난 5월 시공사인 ○○기업(주)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주)○○산업개발과

시행·시공을 재계약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기업(주)는 “조합측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재선정, 불법시공을 계속해 법적소송을 하고 있다”며 조합의 부당성을 고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7월 13일자 4면에 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기업을 임의로 배제하고, 부도덕하게 사업자 변경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시민아파트 재건축 사업조합은 (주)○○기업의 무책임한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조합 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중합건설을 선정하였으며, (주)○○기업과는 수십차례 협의 및 서면 통지에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최종 해약 통지를 하고, 지상 4층까지의 골조공사에 대해서는 창원 지방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거쳐 감정을 완료하여, 사업자(시공사)변경을 하고 승인권자인 마산시청에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 7. 13.자 사회면(4면) 『○○아파트 재건축조합, 시공사 임의변경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당초 시공사인 ○○기업(주)측에 사전협의나 재계약에 대한 통보도 하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시공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에서는 당초 시공사인 ○○기업(주)측에 수십차례 협의 및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해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간경남 2006년 8월 9일자 4면에 상가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진 조정대상기사의 다른제목(우리도 일할만큼 수당주세요)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신청인이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간경남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9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0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3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부산일보 : 『홈쇼핑서 저질 日産 간고등어』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2일자 8면)

내 용 : 국내 유명 홈쇼핑업체와 대형 할인점에서 국산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값이 싼 일본산 고등어 십억 원대 분량이 국산으로 둔갑된 채 판매돼 온 것으로 드러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일부 업체의 ‘원산지 속이기’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 농수산물을 구입하려는

보도내용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 광역수사단은 12일 일본산 고등어 수백t을 수입, 순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뒤 유명 TV홈쇼핑사와 대형할인점 등을 통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수산물 수입업자인 G물산 대표 김모(38)씨와 가공업체인 E사 대표 박모(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입해 들여온 고등어 537t(시가 12억 7천만원 상당)을 부산 서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동 선별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E사에 납품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이를 반찬용 간고등어 제품으로 가공한 뒤 '100% 순수 국내산'이라는 허위 상표를 포장에 부착, G홈쇼핑과 H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일본산 고등어는 국산에 비해 맛이 떨어지고 비린내가 많이 나는 등 품질이 낮아 국내산 고등어의 절반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제품을 취급한 홈쇼핑업체와 할인점 등이 이들과 공무, 일본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해 왔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과 거래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부산일보에 지난 5월 12일자 8면『홈쇼핑서 저질 日産 간고등어』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유명 홈쇼핑에 일본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가공 판매해서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가공은 하였으나, 포장하거나 판매는 하지 않았으며, 수입업체와 짜고 판매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조사 중에 이미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도되어 홈쇼핑과의 거래가 모두 중단되었고, 신청인의 사업체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으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어 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공익을 위한 보도이며,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를 기사화 한 것이므로 추후보도와 더불어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해 줄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1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31.

처리결과 : 취 하

국제신문 : 『수입고등어 국내산으로 속여』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2일자 10면)

내 용 : <2006부산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2

20:25)

청 구 명 : 손배청구

내 용 : <2006부산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KNN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31.

<2006부산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피신청인 주장

K N N : 「뉴스아이」 프로그램 (2006년 5월 12일

<2006부산조정10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3

5월 12일 21:00)

청 구 명 : 손배청구

내 용 : <2006부산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부산MBC-TV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31.

<2006부산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피신청인 주장

부산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2006부산조정10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4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청 구 명 : 손배청구

피신청인 : 부산KBS-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3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부산KBS-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5월
12일 21:00)

피신청인 주장

내 용 : 〈2006부산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2006부산조정10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납골당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신평리가 일불사와 약정서를 체결하고 공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최 ○ ○,
2. 최 ○ ○

피신청인 : 충청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

처리결과 : 취 하

일불사 관계자는 “신평리에 지역발전기금을 이
미 기부했고 서울시 예하 6개 구청과 금산군 발전
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했으나 자
치단체장(금산군수)이 지방 선거를 의식, 지난 3월
부터 처리를 미뤄와 파문이 확산됐다”며 강한 불
만을 토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2006년 6월 23일자 1면 『서대산 일
불사 ‘납골당’ 마찰』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불
사 최인근 마을인 신평리간의 약정서가 공증돼
있어 납골당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었다’, 일불사 관계자는 ‘신평리에 지역발전기
금을 이미 기부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
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신평리는 일불사와 약정
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역발전기금을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기에
정정합니다.

신청 후 보도문

충청신문 : 『기사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9일자 1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충청신문 : 『서대산 일불사 ‘납골당’ 마찰』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3일자 1면)

내 용 : 서울시 6개 구청과 납골당 분양매매계약
약정서를 체결한 서대산 일불사에 ‘서울시 추모의
집’ 설립을 둘러싸고 이를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
는 금산참여연대와 동조하는 시민단체,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참여연대와 인근 6개 마을 주민들이 주
장하고 있는 고압전력선 설치와 유류탱크의 시설
은 현장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았으며, 납골당이
화장터로의 시설변경은 일불사주지(법명 성진)와
일불사 최인근 마을인 신평리간의 약정서가 공증
돼 있어 납골당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는 설득력
이 없었다는 논리이다.

신청인이 폐기물 매립장을 매입하는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 (2006년 7월 30일 22:20)

내 용 : ▷앵커 :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불법 특혜 의혹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업자가 매립장 터를 매입하고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대출이 이뤄지고 국책은행은 부풀려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실상 보증인 역할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부실공사로 매립장 완공마저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략)

▷기자 : 녹산공단 폐기물 매립장은 팔릴 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씨는 토지공사와 수익계약으로 이 매립장 터를 사들였습니다.

토지공사는 이 땅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수익계약으로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이미 낙찰된 업체를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직원의 실수로 낙찰업체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져 수익계약으로 박씨에게 매립장 터를 다시 팔았다는 설명입니다.

▷토지공사 관계자 :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으면 빨리 바로 잡아서 정상적으로 돌리는게 업무처리하는데 정당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 박씨는 240억 원을 주고 산 매립장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360여억 원을 불법 대

출받았습니다.

대출한도가 한 사람에 80억 원으로 제한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중략)

▷기자 : 박씨가 필요했던 자금은 저축은행 불법 대출금과 이자, 그리고 공사비 등 5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대출문제가 불거진 뒤 박씨는 수백억 원대의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편드를 이용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되자 매립장의 사업성을 내세워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박씨에게 지난 3월 자금을 만들어 준 곳은 산업은행과 자회사인 산은 자산운용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먼저 이 매립장을 담보로 1,027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행해줬습니다.

이어 사는 자산운용은 이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사모편드를 만든 뒤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650억 원의 자금을 박씨에게 융통해줬습니다.

결국 산업은행 측이 편드의 수익을 보장해 준 것이 박씨의 자금조달을 그만큼 쉽게 만들어 준 셈입니다.

▷산은 자산운용 관계자 : “폐기물 사업은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토공에서 입찰해서 빼내기가 어려운거지 누구든지 그것만 가져오면 어느 정도 땅 짚고 헤엄치기와 비슷한 사업구조로 봤습니다.”

▷기자 : 하지만 산은이 내세운 수익성을 뜯어보면 부실과 의혹투성입니다.

투자 제안서에는 전국 28곳의 폐기물 매립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포화상태라 녹산 매립장의 매립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제외한 목표 수익률은 연 7-8%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은 자산운용 관계자 : “환경부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갖고 분석했습니다. 첫째에 20만톤 정도는 가능하겠단, 20만톤이면 톤당 6만원 잡아도 12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억 원을 5년 잡으

면 얼마입니까?

▷기자 : 하지만 매립장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산시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은 당초 녹산 산업단지와 신호 산업단지, 그리고 부산 신항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이 세 곳을 뺀 다른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20만톤을 시작으로 연간 2-30만톤씩 매립해 5년 만에 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도 무립니다. 박씨가 부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엔 녹산공단 등 세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연간 8만여 톤 정도 매립한다고 돼있습니다.

결국 매립량을 늘려서 수익률을 부풀린 뒤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풀려진 사업계획을 근거로 천억 원대의 수익증권을 발행해준 산업은행은 부실한 펀드의 보증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중략)

▷기자 : 매립장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는 박씨가 매립장을 사들인 뒤 급조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시공 경험이 없을 뿐더러 공사비를 과다 집행할 위험성이 있다는 게 신용평가회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 평가담당자 : “내용을 보면 공사비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자금 빼먹는게 있거든요, 관계사인데, 당연히 이거 절대 안된다 그렇게 까지 얘길 했던 거거든요.”

▷기자 : 무리하게 진행된 폐기물 매립장 펀드는 결국 부실공사라는 예견된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난 3월 펀드의 투자자 모집이 끝난 지 한 달도 안돼 매립장 독이 터졌습니다.

무리한 터파기로 만조 때 바닷물이 유입돼 제방이 붕괴된 것입니다.

▷매립업체 사장 : “1년이 걸려야 되는 공기를 넉달이면 된다 그러고 넉달도 안된다 그러는 겁니다. 기술자들이 빨리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독이 터진 겁니다. 한 120M가 터진 겁니다.”

▷기자 : 지난 5월부터 시작하던 매립은 올해 안에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독 붕괴에 따른 추가공사비만도 150여억

원에 이릅니다.

펀드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해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략)

▷기자 : 박씨 주변의 인물들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박씨가 만든 폐기물 매립업체 사장은 모 정당 부산시당의 고위 간부입니다.

▷매립업체 사장 : “내가(박씨) 부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형님이 전화해서 좋다고 하라고 그랬잖습니까? 문 회장이 그 업을 하고 있고 형님이 좀 알 거니까 일을 좀 해주십시오, 나는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을 맡은 겁니다.”

▷기자 : 박 사장이 언급한 ‘문 회장’은 전 부산시장과 친인척간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 전무는 현직장관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씨는 이 땅을 사들인 이후 매립장으로 용도가 지정돼 시설 완공 전에는 팔 수 없는 매립장 터를 놓고 여러차례 매각협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후략)

(2)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7월 30일 21:00)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6. 7. 30.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매립장 공사”라는 제목으로 박모씨가 부산 녹산 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았으며, 산업은행 측에게 사업성을 부풀려 자금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토공이 1차 낙찰자선정을 취소한 것은 토공 내의 자문번호사의 자문의견에 따른 것이며,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낙찰업체를 떨어뜨린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대출받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상호저축은행 측에게 있고, 부지 매입 및 대출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등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의 내사결과 아무런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씨는, 부산 녹산단지 내의 폐기물 매립

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영업구역의 제한사항이 없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한 이후에는 타지역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타지역으로부터의 매립이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니며, 현재 대부분의 매립장은 전국 단위로 매립사업을 하고있어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결코 사업성을 과장한 것은 아니며, 박씨가 부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연간 폐기물을 8만여 톤이라고 하였으나 산은자산운용은 20~30만 톤이라고 추정한 것이므로, 산은 측이 부풀려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실상 보증인 역할까지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비를 누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매립장의 부실공사는 펀드 조성 훨씬 이전의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펀드조성 또는 무리한 공사진행과 관련이 없고, 주변인물의 하나로 소개된 문희장은 전 부산시장 친인척이 아니며, 매립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압력을 넣거나 부타를 한 사실이 없고, 전무로 있는 현직 장관의 동생은 매립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는 이 사건 매립장 공사를 금년 9월말 경 준공될 예정이므로 투자자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
처리결과 : 취 하

동아일보 : 『일본산 고등어 국산으로 속여 대량유통』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2일자 경제면)

내 용 : <2006부산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
처리결과 : 취 하

조선일보 : 『일본산 고등어 국내산 둔갑 유통업자 검거』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2일자 사회면)

내 용 : <2006부산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18:00)
내 용 : <2006부산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Y T N : 「YTN24」 프로그램 (2006년 5월 12일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수용가능하나 손해배상은 할 수 없
다. ☐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의 기사 (2006년 5월 12일자)
내 용 : <2006부산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연합뉴스 : 『日 고등어 국내산으로 불법 유통』 제하

피신청인 주장

<2006서울조정303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영아 사체 유기사건 용의자의 회사 동료인
신청인의 말을 무단 녹취하고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3.
처리결과 : 합 의

DNA 분석 결과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입니다.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7월 26일 21:00)

내 용 : ▷앵커 : 프랑스 마을의 영아 사체 유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련자들이 해외로 출국했거나 또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용의선상에 두고 있는 사람은 휴가 동안 집을 봐준 프랑스인 친구 P 씨입니다.

침입 흔적이 없는 데다가 집이 비어 있는 동안 P씨가 이 집을 드나든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씨는 지난 21일 프랑스로 휴가를 갔고 한 달 뒤에나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P씨 회사 동료 : 지금은 일단 저희하고 안 계시니까 저희쪽에서 지금 얘기해 드릴 사람은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략)

▷기자 : 필리핀인 가정부의 경우에는 전화도 정지돼 있어 경찰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난 13일 이 집 현관 앞에서 백인 소녀를 봤다고 이웃 주민이 말했지만 작년부터 CCTV가 녹화되지 않고 있어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기 시신에 대한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7월 26일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마을의 영아 사체 유기사건과 연관이 있는 관련자들이 해외로 출국했거나 행방이 묘연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경찰이 용의선상에 두고 있는 사람은 휴가 동안 집을 봐준 프랑스인 친구 P씨라며 P씨의 회사 동료인 신청인과 이야기 나눈 내용을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하여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회사 관계자들은 신청인이 회사 방침에 어긋나게 직접 인터뷰를 한 것으로 오해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커다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2006년 8월 21일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2006년 8월 22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낙동강에서 검출된 퍼클로레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치 범)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1) 『낙동강서 발암물질 대량검출』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8일자 A39면)
내 용 : 정부가 최근 태풍 예위니아와 장마 전선의 ‘물폭탄’ 이후 낙동강 수역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갑상선과 암을 유발하는 인체 유해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두려운 나머지 국민의 건강을 불모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순 환경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낙동강 주요 취수장 수질을 점검한 결과 미국 환경청 기준을 초과하는 다량의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배출원을 추적해 보니 구미공단 모 입주업체에서 이 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마가 끝난 뒤 정확한 수치를 다시 측정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배출업체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중략)

환경부는 이달 초 낙동강 주요 취수원에서 다량의 퍼클로레이트를 검출하고서도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의 경우 이전에도 유사 사례가 많아 주민들의 걱정이 심각한 편”이라며 “국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한 후 그간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2) 『발암물질 다량검출 한달간 ‘쉬쉬’』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9일자 A1면)

낙동강에서 갑상선 암 등 질병을 유발하는 치명적 유해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다량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 낙동강에서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됐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한 달 가까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낙동강 일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미국 환경청 음용수 권고기준 24.5mg/L를 무려 50배나 초과하는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되는 등 낙동강 유역 대부분 방류수에서 퍼클로레이트가 나온 것으로 밝혀져 이번 사태가 ‘제2 페놀사태’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후략)

(3) 『과문 커지는 ‘낙동강 발암물질’』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1일자 A39면)

갑상샘(갑상선) 손상과 호르몬 이상을 초래하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영남지역 1,000만여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다량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남, 대구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등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배출허용 기준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퍼클로레이트가 발암 물질이 아니라는 주장만 거듭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략)

사태가 발생한 후 환경부는 사건 축소에 급급해 비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해명자료 등을 통해 퍼클로레이트가 발암물질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28일자 A39면 『낙동강서 발암물질 대량검출』, 7월 29일자 A1면 『발암 물질 다량검출 한달간 ‘쉬쉬’』, 7월 31일자 A39면 『과문 커지는 ‘낙동강 발암물질’』 제하의 기사에서 환경부의 수질 검사 결과, 낙동강 주요 취수장에서 발암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미국 환경청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장마를 틈타 구미공단업체가 배출한 듯하며, 환경부가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퍼클로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퍼클로레이트는 발암물질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과다 노출 시 갑상선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수질검사 결과 낙동강 주요 취수장인 매곡, 드류 등에서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되었으나 미국 환경청의 음용수 권고 기준(24.5ppb)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퍼클로레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기준이 없고 우리나라도 먹는물 수질기준이나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기업체가 장마철에 고의적으로 낙동강에 배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퍼클로레이트에 대한 정기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고, 먹는물 감시 항목에 퍼클로레이트를 추가할 계획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사업에 퍼클로레이트를 이미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낙동강 발암물질 대량검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28일자 『낙동강서 발암물질 대량검출』, 31일자 『과문 커지는 ‘낙동강 발암물질’』 제하의 기사에서 낙동강 주요 취수장에서 발암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미국 환경청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퍼클로레이트는 과다 장기 노출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긴 하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발암의심물질, 발암가능물질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며 환경부의 수질검사 결과 검출된 퍼클로

레이트는 미국 환경청의 음용수 권고 기준(24.5ppb)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환경부는 퍼클로레이트에 대한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먹는 물 감시항목에 퍼클로레이트를 추가할 계획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6년 8월 25일까지 발행하는 <매일경제> 39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2006년 7월 29일자 1면(발암물질 대량검출 한달간 ‘취취’)의 소제목 ‘정부, 낙동강서 세차례 확인...’과 동일한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낙동강 발암물질 대량검출’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2일자 A3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 교사 교육용 교재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전교조 교사교육용 교재 북한역사책 내용 베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6일자 1면)

내 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지난해 교사 교육용 통일교재를 만들면서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83년 펴낸 ‘현대조선역사’를 상당 부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통일교재는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여과 없이 소개하는 등 북한의 역사관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며, 김일성의 항일투쟁활동 중 북한이 날조한 내용까지 그대로 인용했다. (중략)

이 교재는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해 전개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혁명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조선역사 165쪽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다.

또 6·25 전쟁과 관련해 이 교재는 ‘김일성은 6월 26일 전체 인민들을 위한 방송연설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 과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역시 현대조선역사 274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후략)

(2) 『北날조 ‘김일성이 조선혁명군 조직’ 사실인양 소개』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6일자 3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지난해 통일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강연한 자료는 북한의 대표적 역사 교재인 ‘현대조선역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 그렇지만 강연 자료 어디에도 이를 인용했다는 표시는 없다. 특히 이적성 시비를 피하려는 듯 원문에 나오는 ‘김일성’의 이름을 대부분 빼 오히려 주제사상을 교묘하게 미화하고 있다는 게 이 자료를 분석한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북규명위·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의 설명이다. 제 교수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재는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이 날조한 역사관을 정당화 또는 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강연 자료의 상당 부분을 1983년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펴낸 ‘현대조선역사’에서 인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대조선역사는 1988년 남한의 출판사인 ‘일송정’이 550쪽 분량으로 발간했으나 출판사가 없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 절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까지 이 책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었다.

일송정은 이 책의 서문에서 ‘현대조선역사가 북한에서 발행된 서적임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 안목으로 읽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 부산지부의 강연 자료에선 이러한 설명이나 비판적 시각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김일성이 1934년 결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활약상이나 항일무장투쟁의 의의, 광복 직후 북한 정세, 6·25 전쟁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현대조선역사를 거의 그대로 베꼈다. (후략)

(3) 『“선군정치는 성공한 정치체제” 강조… 北주

장 그대로 되풀이』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6일자 3면)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학교 교재 제3장은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미화 찬양하는 내용 일색이다.

선군정치는 ‘당보다 군을 우선시하며 군에 의지해 혁명의 위업을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독특한 통치 방식. 최근에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 단장이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재는 ‘북-미 핵 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선군정치의 개념을 소개한 뒤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선군정치의 위력 등을 설명했다.

특히 교재는 미주통일학연구소장 한호석 씨의 논문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반도의 정세’를 인용해 선군정치를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26일자 정치면에 『전교조 교사교육용 교재 북한역사책 내용 베꼈다』, 『北날조 ‘김일성이 조선혁명군 조직’ 사실인양 소개』, 『“선군정치는 성공한 정치체제” 강조… 北 주장 그대로 되풀이』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지난해 교사교육용 통일교재를 만들면서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83년 펴낸 ‘현대조선역사’를 상당 부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는 북한 바로 알기 차원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교사들이 인용한 ‘현대조선역사’는 1983년 북한이 펴낸 역사책이긴 하나, 1988년에 국내 ‘일송정’ 출판사에서 발행한 서적이며, 현재 국내외 역사학자들의 저술에도 인용되는 자료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는 김일성이 조선혁명군을 조직했다고 사실인 양 소개하지 않았으며, 선군정치는 성공한 정치체제라고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

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 교사 교육용 교재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북한 역사책 토씨까지 베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6일자 4면)

내 용 :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2005년 10월 교사용으로 제작한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 (1983년) 일부분을 그대로 발췌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총 92쪽 분량의 자료집 중 3분의 2 이상이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현대조선력사’에서 토씨까지 그대로 베껴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재는 전교조 부산지부통일위원회 소속 각급 교사들 세미나용 교재로 제작됐다. 1983년 북한에서 펴낸 ‘현대조선력사’는 1988년 한국에서도 일송정이라는 출판사가 출간했다. (후략)

(2)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 교재 북한 역사책 베껴 만들어』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7일자 31면)
〈보도내용 (1) 참조〉

(3)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극렬 노조 테러』 제

하의 기사 (2006년 7월 27일자 31면)

전교조 부산지부가 작년 10월 교사 교재용으로 만든 ‘통일학교 자료집’이 상당부분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를 베껴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미화하고 6·25를 조국 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일종의 친북 학습서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 장군이 그 늙은 용자를 나타냈다”느니 “이북인민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세금제도에서 해방된 행복한 인민”이라느니 하는 바보 천치 같은 소리로 가득하다. 이걸 만든 전교조 부산지부는 작년 11월 APEC 정상회의 때 온갖 천한 욕설을 동원해 APEC의 비난 동영상 만들어 수습자료로 쓰겠다고 나섰던 장본인이다. (중략)

전교조는 ‘선생님’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가짜 선생님, 선생님이로 위장한 싸움꾼의 집단이다. 북한의 선전물을 베끼고 외우고 거기에 무릎꿇고 절하는 기괴한 모습은 과거 여러 극렬운동들이 보여준 말기 증상과 똑같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결단해야 한다. 내 아이만 전교조의 발톱을 피하면 된다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장래와 우리자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전교조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4) 『전교조 사이트는 ‘北찬양 해방구’』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7일자 5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각 지부 홈페이지에 북한 찬양글이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본지 확인 결과, 부산지부는 물론 전교조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

이지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 가운데 친북 성향의 글 혹은 북한 원전을 그대로 전재한 글이 한둘이 아니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에 “김일성 주석의 노작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민족자주권 수호차원에서 봐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은 듯한 글이 도처에서 눈에 띄었다. 전교조 경북지부 통일위원회 자료실에 올려진 ‘한반도 핵문제 교양백서(2005)’에는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원한 수령’인 김일성 주석이 개척하고 전진시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방식”이라는 ‘정세동향’(2004)의 주장이 그대로 실려 있다. 또 “미국이 인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북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 “이 북의 핵무기 보유 및 증산을 민족자주권 수호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26일자 정치면에 『북한 역사책 토씨까지 베꼈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 교재 북한 역사책 베껴 만들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극렬 노조 테러』, 『전교조 사이트는

‘北찬양 해방구’』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지난해 교사교육용 통일교재를 만들면서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83년 펴낸 ‘현대조선역사’를 상당 부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는 북한 바로 알기 차원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교사들이 인용한 ‘현대조선역사’는 1983년 북한이 펴낸 역사책이긴하나, 1988년에 국내 ‘일송정’ 출판사에서 발행한 서적이며, 현재 국내외 역사학자들의 저술에도 인용되는 자료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친북 ‘주체사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선군정치는 성공한 정치체제라고 찬양하지 않았고, 전교조 사이트에 북을 찬양하는 글을 포함한 북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전직 구청장이었던 신청인이 박사학위 지도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주고 그 대가로 학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0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지도교수 김병준’ 부적절 처신』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1일자 1면)

내 용 :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인 2001년 서울 ○○구청에서 거액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당시 진○○ 구청장은 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김 부총리는 진 전구청장의 지도교수였다.

김 부총리팀은 2001년 3~8월 국민대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21세기 ○○ 비전을 위한 행정수요조사' 연구용역을 받아 9월 ○○구청에 보고서를 냈다.

김 부총리가 소장이었던 국민대 지방자치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제출한 두뇌한국(BK)21 사업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용역비는 1억 500만 원이지만 김 부총리의 학진 이력서에는 4,7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의 용역비로는 매우 규모가 크편”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구청장은 '지방행정 행정수요과악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써 2002년 2월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국민대 겸임교수로 위촉됐다. 그는 김 부총리팀의 보고서의 조사 통계표 등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통계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는 데이터의 출처를 '○○구청행정수요 조사'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팀은 7월 16일부터 20여 일 동안 주민 1,008명, 통반장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논문은 설문 시기를 10월로 적었다.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제자가 장으로 있는 구청에서 연구용역을 받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한 논문을 통과시켜 준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이라며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후략)

(2) 『용역비 1억 500만 원-4,700만 원 엇갈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1일자 4면)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 논문지도 학생인 현직 구청장에게서 연구용역을 받고, 이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쓴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켜 학위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

까. (중략)

○○구청이 연구용역을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자체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500만 원 이하. 종전에는 3,000만 원이었으나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

통상 인문사회계열 분야의 학술 연구 용역비는 1,500만~2,000만 원 수준이다. 김 부총리 연구팀이 받은 연구비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다는게 중론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31일자 1면 『지도교수 김병준' 부적절 처신』 제목의 기사와 인터넷 '동아닷컴'의 보도를 통해 제목과 소제목, 내용, 그림, 도표 등에서 진○○ 씨의 실명을 게재하면서 마치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김병준 지도교수에게 일억원이 넘는 거액의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물을 인용하여 박사학위를 받음으로서 학위를 매수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진○○ 씨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이전인 1997년도에 공개입찰방식으로 수주한 '○○발전5개년계획'이 2001년에 마무리되는 바 후속계획을 세우기 위해 '21세기 ○○비전을 위한 행정수요조사'의 용역이 발주되었고, 용역비는 4,800만 원이었으며, 발주는 ○○의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수주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보의 기사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당한 진○○ 씨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전직 구청장이었던 신청인이 박사학위 지도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주고 그 대가로 학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종재부
접 수 일 : 2006. 8.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0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09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조선일보 : 『제자가 1억대 연구 맡겼다』 제하의 기
사 (2006년 7월 31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09의 보도내용 참조〉

피신청인 주장

〈2006서울조정309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 중인 국제정책포럼이 대규모 자축, 호화 파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노 무 현)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종재부
접 수 일 : 2006. 8. 8.
처리결과 : 합 의

주년을 기념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국
내외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정책
포럼 행사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셰라톤워커히로
텔에서 개최한다. (후략)

(2) 『미숙아 年 1,000명 숨지는데 저출산쫓는 호
화 파티?』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5일자 A27면)
(전략)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출범 1주년 기념행
사를 호텔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한다. 외국의 전직
국가수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저명인사도 초청할 모양이다. 이 행사 덕에 몇 명
의 아이가 더 태어날까.

무슨 현안이 생길 때마다 혈세(血稅) 쓰는 위원
회 만드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특기(特技)라고 할
만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이
위원회는 발족 후 9개월 되던 지난달 저출산·고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아이도 안생겼는데 3억원짜리 돌잔
치?』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5일자
A1면)
내 용 : 본보가 4일 입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 업무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 이란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범 1

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기본계획조차 아직 성안이 안 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3억 원짜리 위원회 생일잔치'라니, 지금도 숨져 가고 있을지 모르는 미숙아가 가여울 뿐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아이도 안생겼는데 3억 원짜리 돌잔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5일자 1면 『아이도 안생겼는데 3억 원짜리 돌잔치?』와 27면 『미숙아 年 1,000명 숨지는데 저출산쫓는 호화파티』 제하의 기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3억 원짜리 호화 자축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와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and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국제포럼 행사를 기획한 것이며, 다만 행사일자는 위원회 1주년에 맞추는 것이 의미 있다는 차원에서 9월로 기획한 것입니

다. 이러한 국제 정책포럼 행사를 자축행사나 돌잔치로 규정한 것은 국제포럼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보 7월 5일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중인 국제정책포럼이 대규모 '자축행사'나 '호화파티'가 아닌, 선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학술적 정책세미나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8월 23일까지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사진식자 12.5포인트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생기는 여름철 여성 질환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이를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미니스커트 病!』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8일자 9면)

내 용 : (전략) 거리는 온통 미니스커트 바람이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미니스커트 열풍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여성들만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냉방병과 각종 여성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거의 모든 실내에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고 실내 온도 역시 적정 수준인 25~27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인 20도 안팎을 유지하다보니 오히려 추위에 떠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밖은 폭폭 찌지만 실내는 시베리아를 방불케 하는 온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이다. 냉방병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두통과 오한

같은 감기 증세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고 치마 등 얇은 옷을 입다보니 이런 증세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각종 여성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란병원 산부인과 박명진 과장은 “미니스커트 등 얇은 옷은 생리 중일 때는 자궁주위의 체온을 떨어뜨려 생리통을 악화시킨다. 여성들은 날씨가 덥더라도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 여성의 하복부 및 엉덩이에 남성보다 많은 피하지방이 있는 것은 여성의 자궁과 난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 부분의 지방은 한번 차가워지면 여간해서 따뜻해지지 않으며 또한 한번 따뜻해지면 잘 식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복부 및 엉덩이의 과다한 노출은 지방층을 통과하는 혈액을 차게 만들면서 자궁, 난소 등의 내생식기를 차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생긴 냉증은 불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복부의 과다한 노출은 복부팽만, 배탈, 설사, 감기, 피부건조각화증, 피부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경향일보는 지난 8월 8일자 『미니스커트 病!』 제하의 기사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생길 수 있는 각종 여성 질환과 여름철 건강관리에 관해 보도하면서 2001년 경향신문 매거진 X ‘대학생 명물’란에 실렸던 신청인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사와 사진은 경향신문 인터넷판과 포털사이트 다음에도

게재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며 신청인의 사진 옆에는 ‘질염 예방을 위한 7가지 필수 제안’이라는 기사가 실리는 등 그 내용 또한 다소 선정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위 보도로 인해 신청인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90,000원을 2006. 8. 30.까지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한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 1일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향신문을 평생동안 무료로 배송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레이디경향을 1년동안 무료로 배송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 및 직원에 대한 정정청구·반론청구·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Health’ 난에 미니스커트 병’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0일자)
내 용 : 경향신문은 8월 8일자 K9면 ‘Health’ 난에 미니스커트 병을 다루면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여성의 사진을 본인의 동의없이 게재, 본의 아니게 심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끼쳤습니다. 당사자에게 사과드립니다. □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 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다수가 안된다면 장관 안하는게 낫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8일자 4면)

내 용 : (전략) 서울대 프락치사건 관여 의혹=1984
년 발생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일명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당시 유 내정자가 주동자로 지목
돼 복역까지한 만큼 폭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

• 본 문 : 본지 2월 8일자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
인사청문회 기사와 관련, 기사에 언급된 '서울대
프락치사건'은 '서울대 간부학생들의 민간인 고문
및 자백 강요사건'으로 바뀌 불러야 한다고 이 사
건 피해자인 전모(51)씨가 알려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1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 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I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증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8.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6서울조정3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31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서울신문 : 『여 “복지위시절 책임진 발의 전무”』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8일자 5면)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1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 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증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야 “서울대 프락치 사건 책임져라”』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8일자 5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13의 보도내용 참조>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매일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4일자 7면)

<2006서울조정31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1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마산MBC-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9.
처리결과 : 합 의

- 8월 말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추후보도문안을 협의하여 방송한다.
방송내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 방송시간은 원방송이 나간 뉴스시간대로 한다.
- 방송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보도내용

마산MBC-TV :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6년 5월 15일 07:10)
내 용 : <2006부산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마산MBC-TV :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6년 8월 31일 07:35)
내 용 : 부산지방검찰청은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에 판매했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생선 가공공장을 운영하던 박씨가 일본산 고등어를 가공 포장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을 통해 판매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1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나라(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진주MBC-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9.
처리결과 : 합 의

참조>

보도내용

진주MBC-TV :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6년
5월 15일 07:40)

내 용 : <2006부산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2006경남조정12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진주MBC-TV :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6년
8월 31일 07:30)

<2006부산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한국산업은행이 부풀려진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부실펀드를 보증하고,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산업은행 (총재 김 창 록)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 (2006년 7월
30일 22:20)

내 용 : <2006서울조정3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30일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매립장 공사”라는 제목으로
박모 씨가 부산 녹산 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사업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부풀려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펀드의 사실상 보증인 역할

을 수행하였으며, 폐기물 반입이 가능한 지역이 녹
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및 부산신항만
등 세 곳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펀
드의 수익률을 과장하였고, 신용평가회사의 투자위
험 경고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시키는 등 자금
주선과정에서 박모 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은, 단지 담보물을 관리
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며, 펀드에 대한 어떠한 보
증을 하거나 사업자에게 어떠한 대출을 해준 사
실이 없으며, 폐기물 매립장은 환경청이나 부산시
로부터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및
부산신항만 등 세 곳에 대해서만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제한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외의 다
른 곳으로부터도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받아
그에 따라 매립장 설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
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본건 펀드 설정과 관련하
여 관련 법규 및 내외규를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투자자에게 불의의 손

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KBS-1TV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2006년 8월
18일 19:00)

내 용 : 지난 달 30일 KBS-1TV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폐기물 매립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은 매립장 펀드와 담보물을 관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매립업자에게 보증을 서 주거나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산업은행은 또 펀드 설정과정에서 법규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방부가 전투군무지원부대를 통폐합하고, 주요간부를 민간인으로 공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군부대장도 민간인 공채』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5일자 39면)

내 용 : 후방병원, 보급창, 정비창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36개 전투군무지원부대가 수술대에 오른다.

이들 부대 중 일부가 폐지돼 몇 개의 부대로 통합되며, 민간 경영노하우도 적극 도입돼 부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직원들은 외부 공채로 선발된다. 이들의 연봉도 성과에 따라 수천만 원씩 차등 지급된다.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책임운영기관제’를 내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책임운영기관제는 경쟁촉진·민간경영기법을 접목해 군부대를 민간기업처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중략)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저비용·고효율 경제군을 목표로 한 ‘국방계획 20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분야·부대는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역 장성급(소장) 군인이 맡아온 이들 부대의 부대장과 팀장(대령) 등 주요 간부들도 공채를 통해 민간인 중에서 뽑게 된다. 국방부는 이들에게 인사·조직·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 대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기로 하는 등 성과평가시스템을 실시해 제도시행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부대장급을 기준으로 5,000만 원(연봉) 정도의 기본 급여를 지급하고, 성과가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급의 격차를 수천만 원씩 뒤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간인 부대장 군 책임운영기관, 통·폐합계획은 없어”

• 내 용 : 본지 7월25일자 사회 A39면의 『군부대장도 민간인 공채』 제목의 기사에서 “이들 부대 중 상당수가 폐지돼 몇 개의 부대로 통합”, “팀장(대령) 등 주요 간부들도 공채”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책임운영기관제도는 국방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상부대에 대한 폐지 또는 통합계획을 갖고있지 않으며, 부대장(CEO)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계획으로 주요간부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사는 부대장급의 급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시행
키로 했다”는 내용도 사실은 「국방개혁 2020」을
근간으로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20년
까지 연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와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25일자 『군부대장도
민간인 공채』라는 기사에서, 전투근무지원부대 중
일부가 폐지돼 몇 개의 부대로 통합되고 부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외부 공채로 선발된다고 보
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책임운영기
관제도’와 관련해 대상부대가 통폐합되는 것은 아
니고 부대장 외에 주요간부는 민간인 공채대상이

아니며 부대장 급여 체계는 구체적 논의가 없고,
이 제도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매일경제 사회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 크
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
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8월 28일(토요일, 공
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군부대장도 민간인 공채’ 관련 반론보
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1일자
3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장애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별도의 교육비를 청구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신문 : 『어린이집 보육비 이중청구 ‘뻔뻔’』 제
하의 기사 (2006년 7월 4일자 2면)

내 용 : 정신지체 2급 장애아인 수현(가명·11·
여)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버지(40)는 지난달
딸을 데리러 갔다가 분한 생각이 들었다. 수현이가
어린이집 거실에 이불도 깔지않은 채 잠자고 있었
기 때문. 꼬박꼬박 돈을 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인근에 있는 다른 어
린이집을 찾아갔다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곳 관계자가 “보육시설에서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를 받았을 경우 정부가 보육사업 보조금 전
액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회비를 낼 필요가 없
다”고 말했던 것. 수현이 아버지는 지난 16개월간
어린이집에 매달 9만 원씩 회비를 냈었다.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수현이를 맡겼던 흥어린이
집은 정부로부터 수현이 몫의 ‘장애아 무상보육료’
총 185만 3천 원을 17개월간 지원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5년 7월 4일자 2면 『어린이집 교
육비 이중청구 ‘뻔뻔’』 제하의 기사에서 흥어린이
집 원장이 정신지체 2급 장애아의 보육비와 관련
하여 정부로부터 ‘장애아 무상보육료’ 명목으로
보육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장애아동의 학부모로부
터 회비 9만 원을 별도로 받아오는 등 보육비를
이중으로 청구해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그리고 여성부의 장애아 보육료 관련 지침에 의하면 ‘취학 후’ 장애아동의 교육비와 관련해 보육비 수납단가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보육비 외에 별도의 보육비를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능어린이집이 당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장애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료로 당시 보육비 수납단가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 단가 외 학부모로부터 별도의 교육비를 받은 것은 이중청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추후보도문
- 본 문 : 매일신문은 지난 2005년 7월 4일자 2면 『어린이집 보육비 이중청구 ‘뻔뻔’』 제하의 기사에서 능어린이집이 정신지체 2급 장애아의 보육비

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장애아 무상보육료’ 명목으로 보육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장애아동의 학부모로부터 별도의 보육비를 받은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게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취재한 결과, 동구청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수납하는 실 보육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납할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미 내렸던 보육비 반환명령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돼 이중청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사회면에 2006년 8월 29일까지 보도하되, 제목(추후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사진식자 18포인트 고딕체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 1, 2를 이행할 경우, 신청인은 본 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해 피신청인 및 편집국 기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신문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8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도난 문화재를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앙일보 : 『도난 문화재 웃돈 받고 되팔 문화재위원』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5일자 17면)

내 용 : 14일 오후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위원장 황평우)는 비통한 심정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 미술사를 가르치는 현직 교수이자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인 H씨가, 즉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전문가가 되레 도난 문화재를 웃돈을 받고 되팔 것을 개탄하는 내용이었다.

사정은 이렇다. 문화재청은 12일 경북군위군 인각사에 있었던 ‘복장(服裝) 발원문’ 한 점을 경주

모 대학의 교수가 소장하다가 인각사에 매각한 것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인각사는 신라 선덕왕 11년(64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찰. 문화재청은 도둑맞은 ‘발원문’을 H교수가 구입해 소장했다가 사찰 측에 판 것을 ‘장물’로 판단해 회수했다.

1688년 만들어진 ‘발원문’은 인각사 극락전 건립을 맞아 사찰과 지역,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글이다. 극락전 불상 안에 모셔졌던 것으로 언제 도둑맞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2004년 극락전 보수를 위해 불상을 옮길 때 복장 유물이 없어진 걸 알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지난해 11월 H교수가 ‘인각사 유물이 발견됐는데 사찰 측에서 사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유해 왔다”며 “두 달 뒤 돈을 마련해 발원문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스님을 통해 일단 유물을 회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H교수가 해당 유물을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골동품상에게서 다른 유물과 함께 구입했다가 값을 올려 사찰 측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형사는 “H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서류를 곧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H교수가 처음부터 인각사 유물임을 알고 사들였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5일자 17면 『도난 문화재 옷돈 받고 되판 문화재위원』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미술사를 가르치는 경주 모 대학의 현직 교수이자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인 H씨가 도난 문화재인 ‘복장(服裝) 발원문’을 옷돈을 받고 되팔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H씨는 ‘복장 발원문’을

옷돈을 받고 되판 것이 아니라, 인각사 주지 스님의 의뢰를 받아 한국고미술특별전에서 구입하였으며, 또한 ‘복장 발원문’은 장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4월 15일자 17면 『도난 문화재 옷돈 받고 되판 문화재위원』제하의 기사에서 경주 모 대학의 교수이자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인 H씨가 도난문화재인 ‘복장(服裝) 발원문’을 옷돈을 받고 되팔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H씨는 ‘복장 발원문’을 옷돈을 받고 되판 것이 아니라, 은혜사 주지 스님의 의뢰를 받아 한국고미술특별전에서 구입한 것이고 ‘복장 발원문’은 장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문화면에 2006년 8월 25일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8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드라마 단역배우로 출연하면서 제출한 프로필 사진을 동의없이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1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MBC-TV : 「오버더레인보우」 프로그램 (2006년 8월 9일 21:55)

내 용 : (전략) ▷최사장 : 후보는?

▷상현 : 저번에 말씀드린 세명...

▷최사장 : (짜증난) 무슨 세명, 불독이랑 암코양이랑 얼굴 다 뜯어고친 그 셋? 개네는 다 잘라버리라구 했잖아, 가망 없다고!

▷상현 : 오디션을 다시 할까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8월 9일 「오버더레인보우」 프로그램 제5회에서 드라마 속 연예인 기획사가 새롭게 결성하려는 신인 여가수그룹의 멤버를 정

하는 프리젠테이션에서 '걸파워 프로젝트'라 하여 여성 3인의 사진을 내보내던 중 '신○○'라는 가명으로 신청인의 프로필 사진을 동의없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신청인은 얼마 전 해당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였고, 방송사에서는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프로필을 성(性)만 변경한 채로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함으로써 드라마 방영 후 신청인은 주변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폄하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2006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2006년 9월 1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김 양식업자인 신청인이 노숙자들로 외딴섬으로 유인해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0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4.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8월 3일 20:00)

내 용 : ▷앵커 : 섬으로 끌려가 죽도록 일한다는 현대판 노예 풍문,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외딴섬으로 유인해 수년 간 강제노역을 시킨 김 양식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방송 권○○ 기자입니다.

▷기자 :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면의 섬마을 중동리.

컨테이너에 새까맣게 그을린 남자들이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테이프로 도배질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대구시 진천동 49살 김모 씨 등 3명은 매달 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이 넘게 섬에 갇혀

지내 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중노동과 육설.

하지만 이들은 돈 한 톨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만 6천만 원, 이들을 노예처럼 부린 업주는 뒤늦게 합의를 제의했습니다.

현대판 노예 생활은 노숙자 중 1명이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섬에서 쫓겨나면서 알려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김 양식장 업주 4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노숙자를 섬으로 소개해 준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8월 3일 「SBS8뉴스」 프로그램 “외딴섬 강제노역”이라는 제목으로 김 가공 공장주 김씨가 인부들을 섬으로 유인하여 감금하고 17시간에 걸친 강제노역을 시키고 공장이름과 생산·판매 중인 상표까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씨는 인부들을 섬으로 유인한 사실이 없으며, 17시간에 걸친 강제노역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상호와 상표까지 그대로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1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외딴섬 강제노역’ 관련 반론보도

• 본 문 : 지난 8월 3일 「SBS8뉴스」에서 대구방송이 제작한 ‘외딴섬 강제노역’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남 신안군 증도면의 김 가공 공장주가 노숙자들을 외딴섬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강제노역 시켰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가공 공장주는 인부들을 섬으로 유인한 사실이 없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화면에 나온 ‘OO돌김’ 상호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 8. 31. 20:00에 방송되는 SBS-TV 「SBS8뉴스」 20시 20분 이전 전국 뉴스 시간에 보도하되, 진행자가 통상속도로 낭독하고, 보도문의 제목(‘외딴섬 강제노역’ 관련 반론 보도문)을 화면에 계속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과는 별도로 신청인을 다시 취재하여 신청인이 2006년 새로 출시할 ‘△△돌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신청인의 김 양식장을 홍보하는 내용을 4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여 2007. 1. 31.까지 17시30분~18시에 방송되는 SBS-TV 「생방송투데이」 프로그램에 방송하며, 프로그램 개편이 있는 경우 동일 시간대에 합의한 내용을 보도한다.

• 위 1, 2, 3항의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8월 31일 20: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여름철 일사병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야외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신청인들을 몰래 촬영,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1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이 ○ ○,

2. 최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SBS-TV : 「생방송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6년 8월 9일 06:40)

내 용 : ▷여앵커 : 이 같은 폭염이 계속되자 더위를 먹고 어지러움증이나 설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 더위로 탈진을 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2002 의학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앵커 : 안녕하십니까?

▷의학전문기자 :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 더위를 먹어서 일사병으로 숨진 사람이 올해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전문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사병, 우리가 더위병이라고 하는데요 햇볕을 강하게 쬔게 되면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몸은 땀을 많이 내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낮춰야 하지 않습니까? 낮추는 과정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어야 됩니다. 평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서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되는거죠.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중략)

▷의학전문기자 : 특히나 이런 더위에 축구나 농구 같은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열배 이상 열을 받게 되어 체온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내기 위해서 심장이 많이 뛰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땀별에서는 되도록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은 서늘한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무시기 전에 걷기나 체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 잠도 아주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또 수시로 이온 음료나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드시면(소금을? 그렇죠) 땀으로 통해 빠져나가는 수분을 보충하고 염분 그리고 전해질까지 좀 보충해 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SBS-TV는 지난 8월 9일 「생방송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더위를 먹고 일사병으로 숨진 사람이 올해 유난히 많았다고 보도하면서 야외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여름철 축구나 농구 같은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고 땀을 내기 위해 심장이 많이 뛰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신청인들의 모습이 방송에 나감으로써 마치 신청인들이 위험을 초래하는 격한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로 비취졌을 뿐만 아니라 회사 근무시간 중 잠깐의 여유를 틈타, 하게 된 농구 게임이 마치 근무시간에 놀러나간 나태한 사원들로 잘못 해석되어 주변인들로부터 핀잔을 듣는 등 신청인들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습니다. 위 보도로 인해 신청인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기자 개인 명의로 위로금을 지급할 생각은 있으나 회사 명의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북한의 마약과 탈북자에 관한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신분과 사진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월간조선 : 『북한 아오지탄광촌 일대에 국군포로 300여 명 집단 거주』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호 148~153면)

내 용 : 『중국을 통해 북한산 마약이 한국으로 대량 반입되고 있고, 한국인의 월북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포로들은 함경북도 아오지탄광촌 일대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300여 명에 달합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거주하면서 지난해까지 국내 정보기관의 현지 정보원 역할을 해 온 張모 (51·남) 씨는 월간조선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정보기관 관계자는 張 씨에 대해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우리 정보기관의 중국 현지 정보원 역할을 했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수하는 등 정보기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張씨가 국내 정보기관 정보원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 정보기관 관계자는 『2005년 말경 張씨의 개인적인 문제가 드러나 정보원 역할을 그만두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張씨는 그동안 중국 길림성 일대에서 탈북자나 중국 및 북한의 정부기관 관계자, 고위 군인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張씨는 수차례 북한으로 들어가 직접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고 한다.

-언제부터 중국에서 정보활동을 하게 됐습니까.

『2002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내 정보기관의 정보원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정보활동을 했는지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부의 정보를 수집

했고, 중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정보를 빼냈습니다. 한국 내 일부 불순세력들이 중국으로 올 경우,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업무를 하기도 했구요』

-한국내 불순세력이라면 주로 어떤 인물들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불순세력으로 분류돼 중국에서 행적을 추적했던 인물 중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도 있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월간조선은 2006년 7월호 148~153면 『북한 아오지탄광촌 일대에 국군포로 300여 명 집단 거주』 제하의 기사에서 4년간 중국에서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신청인의 인터뷰 중 중국을 통해 북한산 마약이 한국으로 대량 반입되고 있고, 한국인의 월북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군포로들은 함경북도 아오지탄광촌 일대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눈만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상반신 사진을 기사에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청인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 응한 것은 신청인의 사적인 문제를 제보하기 위함이었으며 국가 보안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민간에 공개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위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직업, 나이, 성씨, 거주지 등 신분이 노출되어 신변의 위협이 예상될 정도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청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원공개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7.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온몸으로 응원해요』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4일자 A16면)

내 용 : 4년전 한·일 월드컵의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왼쪽부터 태극기로 만든 옷을 입고 응원하는 여성,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등에 보디페인팅을 한 축구팬, 축구공 귀걸이를 하고 합성을 지르는 여성 팬의 모습.

(2) 『찰카! 월드컵 응원사진 공모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일자 A1면)

조선일보가 2006 독일 월드컵 응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생생한 장면들을 여러분의 카메라에 담아 보내주십시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조선일보는 지난 5월 24일자 A16면 『온 몸으로 응원해요』, 6월 1일자 A1면 『찰카! 월드컵 응원사진 공모전』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민국 대 세네갈의 평가전 경기를 관람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이를 온·오프라인 기사와 광고 등

에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로 인해 신청인은 조선일보사의 광고모델로 오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액세서리 브랜드의 홍보용 전단지에 무단으로 얼굴이 실리는 등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차례 초상권을 침해받았으므로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2006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2006년 9월 30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4.

□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스포츠서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스포츠서울 : 『포효하라 한국축구!』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4일자 4면)

내 용 : '열정과 감동, 그리고 새로운 독일신화!' 2006독일월드컵 최종 엔트리 확정 뒤 처음 가진 세네갈과의 평가전부터 한국 축구팬의 열정적인 응원전도 뜨겁게 점화됐다. 2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FIFA월드컵 트로피와 독일월드컵 마스코트인 골레오, 격려문구를 담은 플래카드 등 다양한 소품을 동원한 응원에서부터 페이스 페인팅

까지 개성만점의 응원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스포츠서울21은 지난 5월 24일자 4면 『포효하라

한국축구!』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민국 대 세네갈의 평가전 경기를 관람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클로즈업된 상반신 사진을 내보내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인터뷰 하였으나 ‘된장녀’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7.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보도내용

시사저널 : 『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5일자 46~49면)

내 용 : (전략) 패션지는 이들을 ‘뉴요커를 꿈꾸는 여성들’, ‘코스모폴리탄을 꿈꾸는 여성들’이라 부르며, 유행이나 트렌드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우대한다. 그런데 후자의 글을 유포하는 네티즌은 이들을 ‘된장녀’라는 해괴한 조어로 부르며, 비하 및 조롱의 대상으로 깎아내린다.

된장녀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여자들’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 욕설 ‘젠장’이 인터넷상에서 ‘된장’으로 변용되면서 ‘젠장녀→된장녀’로 바뀌었다는 설, 서양 문화·서양 남자에 무분별하게 열광하지만 근본은 결국 토종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들을 비하해 일컫는 말이라는 설 등이 그것이다.

분명한 것은, 코스모폴리탄이든 된장녀이든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젊은 여성들이 우리 주변에 출현했으며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해서 ‘스타벅스 세대’라는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한 이 여성층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특성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주목된다.

패션지 <앙앙> 편집장 한성미 씨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급속히 개방되고 어학 연수 등으로 외국 문화를 접한 여성들이 늘면서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로 상징되는 이른바 뉴요커식 라이프스타일이 젊은 여성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씨의 말마따나,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이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여성들은 ‘뜬금없이’ 인터넷에서 촉발된 이른바 된장녀 소동을 이해할 수 없어한다. 개인의 ‘취향’ 문제를 왜 ‘허영’으로 치환해 매도하느냐는 것이다. 먼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대학생 신○○ 씨(23)는 거의 매일 스타벅스에 간다. 학교 다닐 때는 공장 시간을 주로 이용한다. 이유는?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할 공간이 필요해서이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부차적 이유이다. “하루 종일 답답한 학교 도서관에 있는 것은 내 체질이 아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스타벅스 커피값으로 한달에 7만~10만 원 정도를 쓰는 만큼 부담이 상당하지만 그녀는 스타벅스 다니기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

지난해 미국 보스턴에서 10개월간 어학 연수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스타벅스 단골이었다. 나중에는 종업원들과 친해져 스키 여행까지 함께 다녀올 정도였다. 그녀는 당시 경험 덕분에 스타벅스로 상징되는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미국 대학생들은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한다. 그런데 기숙사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갑갑하고 활동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찾게 되는 장소가 학교 잔디밭이나 스타벅스였다”라고 신씨는 말했다.

거대 도시 서울에서도 그는 ‘나만의 공간’을 찾

아 스타벅스를 드나들게 된다고 말했다. 여자 혼자 책을 읽거나 밥(주로 샌드위치)을 먹고 있어도 어색해 보이지 않는 흔치 않는 공간, 그런 곳이 그녀에게는 스타벅스이다.

이 글로벌 커피 체인점이 한국에 등장하기 전에는 신씨도 커피숍을 주로 찾았다. 신씨에 따르면, 커피숍은 상대가 있어야 자연스러운 공간이다. 그런데 갈수록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조율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뉴요커인 서울리언이건 마찬가지이다. 다들 바쁘게 도심을 오가는데 그 속에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자리’를 오롯이 제공한다는 스타벅스의 마케팅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 캐리(사라 제시카 파커)는 구두 사 모으기가 취미이다. 월세가 부족해 세든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서도 그녀는 ‘마놀로 블라닉’ 수집을 멈추지 못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권OO씨(25·취업 준비생)는 구두 사 모으는 것이 삶의 기쁨이다. 속옷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하는 그녀는 속옷도 열심히 수집한다. 특히 에메필(Aimerfeel)브랜드를 좋아해 이 일본제 속옷만 20벌가량을 모았다.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6개월간 어학 연수를 받는 동안에도 그녀는 틈만 나면 버룩시장과 중고 가게를 뒤지고 다녔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손톱·발톱 가꾸기에도 남다른 애착을 보인다. 이것도 하나의 의상이고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돈 주고 네일 아트를 하는 것도 아니다. 독학한 대로 직접 손톱·발톱을 손질하고 색칠한다. 혹시 남자 친구나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냐고? 절대 아니라고 권씨는 주장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느낌이 통하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통한다고 느낄 때 만족스럽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한때 영어학원을 다녔던 그녀는 매일 무늬가 바뀌는 자신의 손톱을 보고 동료 수강생이 “시간이 남아도나 봐요”라고 했을 때 정말로 기분이 상했다고 회고했다. 권씨에 따르면, 그녀는 결코 시간이 남아 자신을 가꾸는 것이 아니다. 일을 최우선으로 하되, 화장하고 옷 차려 입고 손톱·발톱 가

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녀는 잠을 한두 시간 덜 자는 쪽을 택한다고 했다.

잠을 선택할 것이냐, 몸 가꾸기를 선택할 것이냐는 권씨가 생각하기에 전적으로 가치관의 문제이다. 삶을 놓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뿐인데도, 자신과 가치가 다른 이를 가차없이 매도하는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상처도 받게 되지만 그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자신을 사치스럽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내가 가진 것 중 솔직히 명품은 거의 없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을 사기 위해 그녀는 한 달 생활비인 30만 원의 3분의2 가까이를 매달 기꺼이 투자한다고 했다. 자신을 꾸미는 데 돈을 쓰는 대신 그녀는 먹는 사치를 포기했다. 외식은 사절. 자취집에서 현미·잡곡밥에 김치·야채 반찬을 주로 해 먹으며 식비를 절약한다고 권씨는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시사저널은 지난 8월 15일자 46~49면 『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 제하의 기사에서 뉴요커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일부 여성들의 생활상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공개하는 취지로 인터뷰하였던 처음과는 달리 기사가 ‘된장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중점을 두면서 신청인이 마치 ‘된장녀’인 듯한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본 기사가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로 게재되면서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리플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사전에 동의없이 신청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중재합의

- 본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속력 있는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기로 한다.
- 양 당사자는 중재부에서 내리는 중재결정이 사

법적인 최종 판단으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점을

충분히 알고서 본 합의에 도달하였다. <2006서울중재1 참조> ☐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인터뷰 하였으나 ‘된장녀’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7.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2006서울조정3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중재합의

• 본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속력 있는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기로 한다.

• 양 당사자는 중재부에서 내리는 중재결정이 사법적인 최종 판단으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점을 충분히 알고서 본 합의에 도달하였다. <2006서울중재2 참조> ☐

보도내용

시사저널 : 『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5일자 46~4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해양수산부가 특정 방수복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장관 김 성 진)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7.

처리결과 : 합 의

내 용 : 해양수산부가 방수복 제작업체인 M사의 형식승인과 방수복 제작과정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적극 방어하고 있어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초 M사가 제작한 방수복에 대해 제품생산을 허가하는 형식승인기준 즉 인장강도가 기준치(71kg/50mm)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제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M사를 비롯해 형식승인을 취득한 4개 업체의 방수복을 수거해 재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수부는 M사 등 2개사에 대해선 인장강도 기준치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 반면 2개사는 기준에 못 미친다며 형식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혹제기, 즉 M사의 방수복에

보도내용

노컷뉴스 : 『해양수산부 왜 이러나, 특정업체 비호에만 급급해』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7일자)

대한 인장강도 오차 폭이 너무 크게 허용했다든가 방수복 크기가 작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해수부는 별 문제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잇따라 내렸다.

또 최근 방수복의 손장갑 부분의 원단이 형식승인 당시 제조사양서와 다른 원단으로 제작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방수복 원단의 인장강도 기준을 어겼다고 형식승인까지 취소했던 해수부가 이제는 태도를 바꿔 손이나 발부분의 보온성이 다소 떨어져도 괜찮다며 본래 인장강도기준을 어기고 다른 원단으로 제작해도 된다는 모순 되는 유권해석을 한 셈이 된다.

해수부는 이도 모자라 인장강도 시험은 원단이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방수복 아래와 윗부분을 당기는 재봉선 강도 검사로 봐야 한다며 M사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놓았다.

이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특정 방수복 업체를 적극 비호하는 듯한 해수부의 행태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해수부가 잘못을 개선하기 보다는 덮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량 방수복 사태가 두달 이상 장기화되며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7일자 『해양수산부 왜 이러나, 특정업체 비호에만 급급해』 제하의 기사에서 해수부가 방수복 제작업체인 M사의 형식승인과 방수복 제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방어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비호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수부에서는 부산 CBS 노컷뉴스 기사에 게재된 방수복 사진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방수복 착용 사진 중 “SOLAS규정: 성인치수(50-150kg)”는 M사의 제품에 표기된 것으로 SOLAS에는 치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장강도 기준치 통과여부는 정부공인 시험기관(한국기계연구원)의 시험결과에 의하여, 부

적합 업체에 대하여 해수부에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만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고, 인장강도의 오차범위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형식승인시험 기준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았으며, 방수복의 크기는 허용공차 범위내에서 제조사양서의 도면과 실제 제작된 방수복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M사의 제조사양서에는 손 장갑 부분에 다른 원단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한국기계연구원에 보관 중인 형식승인시의 공시품을 확인한 결과 당초 시험 시부터 몸체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손 장갑 부분은 강도보다는 손을 원활히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형식승인시험시 손발부분에 대해서는 성능시험기분에 의한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방수복의 몸체와 손 장갑이 붙어 있는 일체형, 분리형 등 형태가 다양하며 손 장갑의 재질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M사의 방수복은 법령의 명백한 위반사실이 없고, 방수복의 성능에도 문제가 없어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형식승인취소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해수부는 관련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잘못을 덮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해수부 반론] 특정 방수복업체 비호한적 없어
- 내 용 : 지난 8월 7일자 노컷뉴스에 실린 『해양수산부 왜 이러나, 특정업체 비호에만 급급해』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인장강도 기준치 통과여부는 정부공인 시험기관(한국기계연구원)의 시험결과에 의하여, 부적합 업체에 대해 우리 부에서 청문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만 형식승인을 취소한 것입니다.

인장강도의 오차범위는 관련규정상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며 형식승인시험 기준상 기준요건 이

상을 만족하였을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방수복의 크기는 제조사양서의 도면과 실제 제작된 방수복이 차이가 있었으나 우리부 실측결과, 방수복 크기 범위는 허용공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M사의 제조사양서에는 손장갑부분에 다른 원단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한국기계연구원에 보관중인 형식승인시의 공시품을 확인한 결과 당초 시험시부터 몸체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손장갑 부분은 강도보다는 손을 원활하게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형식승인시험시 손발부분에 대해 성능시험기준에 의한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방수복의 몸체와 손장갑이 붙어 있는 일체형, 분리형 등 형태가 다양하며 손장갑의 재질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M사의 방수복은 명백한 법령의 위반사실이 없고, 방수복의 성능에 문제가 없어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형식승인 취소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기사에서 방수복 사진을 해양수산부가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

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 피신청인은 노컷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해양수산부 왜 이러나, 특정업체 비호에만 급급해』에 위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은 2006년 8월 31일까지 위 2·3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정정 및 반론보도문〉 해수부 반론, 특정 방수복업체 비호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31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마을 보수 지원금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 이장과 주민들 간에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충남 연기군 ○면 ○○1리
(이장 신 ○ ○)

피신청인 : 연기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기신문 : 『○○1리 이장과 주민들간의 ‘갈등심화’ 그 뒤에 ○면사무소?』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4일자 1면)

내 용 : 연기군 ○면 ○○1리는 현재 이장과 주민들간에 군에서 지원받은 노후보수 군지원금 ‘이천만 원’ 사용내역에 대한 의문제기와 마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불만 등으로 마을 이장 해임까지 거론되며 주민들간에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면 ○○1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장과의 갈등 발단은 작년 가을 복지후원단체인 노인실버본부 사단법인 사.나.섬.세의 후원으로 노인실버대학을 설립하게 되는 설명회의 시작과 더불어 작년 마을기금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보고회의때 사용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사용내역의 의문제기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리 마을회관 2층에 위치한 사단법인 사.나.섬.세의 후원대학인 노인실버대학은 노인회 부회장 2

천2백만 원 지원, 마을 노후보수 군지원금 이천만 원, 그외 5백여만원의 지원금으로 2006년 4월 7일 개관식을 가졌으나 5개월도 안된 현재, 교실 천정의 누수로 인해 빗물이 벽을 타고 창문틈으로 들어오고 있어 주민들은 ‘부실공사, 허술한공사’라며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 윤모 씨는 “노인대학에 바닥심야보일러 설치와 벽에 방수를 한것이 1천7백만 원, 한전 비용이 2백여만 원, 총 이천만 원의 군지원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보일러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은듯 싶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고, 주민 이모 씨는 “여러업체에 보일러를 문의하여 저렴한 곳으로 해야 할 것을 한곳에 모두 공사를 맡겨 한 이율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이장은 “실버대학 공사는 두군데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곳에 공사를 맡겼다며 영수증과 모든 자료가 있고 모두 떼떳하게 사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군지원금외에 ‘마을기금 사용처’ 내용 중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1리 주민들은 “2004년 ○면사무소 직원야유회 20만 원, ○면사무소 준공식 마을찬조금 50만 원, 면민 체육대회 성금 납부 30만 원, 강습여단 텐트 2개 증정 74만 원” 등을 지적하며 “마을에 낙후된 부분을 수리하고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저소득 노인들이나 청소년 등 마을 주민을 위해 써야지 왜 면민체육대회나 찬조금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신 이장의 자질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신 이장의 지출내역 영수증 ‘○면사무소 준

공식 마을찬조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50만 원은 헛집에서 ○면사무소 면장과 직원들의 회식비(회와 술 등)로 나갔음이 밝혀졌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인정함으로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면사무소 면장은 ‘준공식 마을찬조금’으로 회식한 사실이 없으며, 야유회비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 다수의 의문점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 이장은 ○면사무소 준공식 당시 총무일을 보고 있던 임모 씨에게 직접 50만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당시 총무과 직원인 임모 씨에게 확인한 결과 “잘 기억나질 않는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일관함으로서 그 의문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14일자 1면 『○○1리 이장과 주민들간의 ‘갈등심화’ 그 뒤에 ○면사무소?』 제하의 기사에서 연기군 ○면 ○○1리 이장과 주민들간에 군지원금 이천만 원 사용내역에 대한 의문제기와 마을기금 사용처에 대한 불만 등으로 마을이장 해임까지 거론되며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리 이장은 노인대학 보수를 위해 군지원금이나 강습여단 텐트 증정, 면사무소 찬조금 등을 지출하면서 마을임원 및 총회의 동의를 얻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 주민들과 어떠한 갈등을 빚은 바 없고 해임이 거론된 바도 없어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이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임의로 발췌 보도하면서 글을 취지를 왜곡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효원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18.

처리결과 : 함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호 원 : 『거짓의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06년 제 71호 58~65면)

내 용 : (전략)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들 공감하는 것은 있었다. 바로 통·폐합으로 인한 밀양대생들의 피해. 그만큼 밀양대생들의 피해는 분명했다.

캠퍼스 곳곳 이정표, 학과 게시판, 안내문이 ‘부산대학교’로 바뀐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밀양대로 입학한 새내기가 1,217명이었던 반면 올해는 한 명도 없다. 따라서 동아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1학년 커리큘럼은 폐지되었고, 졸지에 1학년으로 복학한 학생들은 2학년 수업을 들어야 했다. 또한 통·폐합에 따른 총장 단일체제로 인해 지난 2월 28일 밀양대 이상학 전 총장은 4년이 아닌 1년을 임기로 퇴임하였고, 기존 밀양대 교직원들도 부산대 소속으로 고용 승계된 지 오래. 그래서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학적 상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는 밀양대에는 밀양대 건물도 없고, 밀양대 ‘총장’도 없으며, 밀양대 교수도, 밀양대 직원도 없다. (결코 과장하는게 아니라) 밀양대라는 추상적인 이름으로 남은 개체라고는 오직 ‘학생’과 ‘하수도뚜껑’ 뿐인 듯하다.

뿐만 아니라 “통합 전 밀양대 본부에서 전국산업대학교협회의 협의에 따라 통합과 상관없이 결정” 되었다는 밀양대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에는, 이미 폐지된 기성회의, 이미 부산대 기성회장 이사로 재직 중인 ‘밀양대학교 수입정수관 밀양대학교 기성회장’이 명시되어 나왔다. 또한 이원화한다던 행정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의 전체예산의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밀양대 총학생회나 언론사 등의 자치기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장학금도 줄어들었고, 조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산업대 특성상 낮에는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움의 길을 걷던 야간 학과 210여 명과 야간 대학원 340여 명 그리고 산업대학원, 평생교육원 등 약 962명에 대한 지원도 없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밀양대생들에게 쏟아진 것은 되레 ‘무조건적인 졸업장 수여’에 대한 봇물 같은

반대였다. 대체 왜 그랬을까?

자계에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부산대생들이 그랬다.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밀양대의 커리큘럼이 부산대의 커리큘럼보다 미비하다는 것은 사실(fact)입니다.”

“졸업장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학업 성과를 입증해주는 문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산대학교 졸업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아니다. 밀양대 졸업장 받을 수 있다. 꼭 애초부터 밀양대 졸업장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졸업장은 아무나에게 주는 공공재가 아니다. 적어도 대학교 졸업장은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은 이에게 주는 이익과 마찬가지로이다. 적어도 우리 학우들이 그 졸업장 판다고 밀양대 생들에게 피해 입힌 적은 없다. 그러니 보상할 필요조차 못느낀다”

“(졸업장은) 발전이나 도태냐 그 최종 결과물이 다.”

“무조건적인 졸업장 수여와 미비된 조건 하에서의 부산대 학적 적용은 기존 부산대학우들의 피해를 불러와 이후 더 큰 갈등과 불이익을 줄 것이며 무조건적인 거부는 통합시스템에 대한 득만 생각하고 실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학벌주의 입장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다. 학벌주의는 ‘조건 있는 학위’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며, 차별이란 부산대 구성원들도 하지 않는 것을 밀양대생에게만 요구할 때이다.”

“어쨌서 밀양대생들은 ‘부산대학교의 학칙’을 요구하면서, ‘부산대학교의 학칙’을 수용하는 것은 그리도 인색한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쨌서 밀양대생들이 합의를 하지 않은 통합은 부각시키면서, 부산대 재학생들의 합의를 통과하지 않는 학적수여는 정당화하는가.” 등등.

부산대생들이라면 ‘옳다구나’ 고개를 주억거릴 만한 논거들이다. 이 얼마나 바른 단어들인가. 선뜻 정직하고 믿음이 가는 이 단어들에 반대할 용기가 안 난다. (앗, 나도 넘어갈 뻔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제71호 58~65면 『거짓의 사람들』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대와 밀양대의 통합을 둘러싼 밀양대생의 부산대 졸업장 수여 문제로 일어난 학내분쟁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글이 대학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재학생들의 글을 일부 인용하면서 피인용자 임○○ 씨 외 다수의 학생들은 부산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가 학교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의 자신의 글이 인용됨에 있어 부분 발췌로 인해 원 글 취지가 왜곡 해석되었고 피인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공개됨에 따라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밝혀왔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임○○ 씨를 포함한 피인용자들은 본 교지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른 주제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학벌우월주의나 무조건 졸업장을 거부한 사실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제71호 58면 『거짓의 사람들』 제하 기사에서 밀양대생의 부산대 졸업장 수여와 관련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실명과 함께 인용된 임○○(정보컴퓨터공학부 02)씨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임○○씨는 자신이 주장한 ‘졸업장 학위의 실재론’과 관련하여 그것이 학벌주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원 게시물의 글은 학위에 대한 실재론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용영어, 실용컴퓨터 등의 절차만으로 학위 수여를 하는 것은 두 학교 학생들의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킬뿐 대안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씨는 또, 자신은 밀양대학생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포괄적인 부산대학교 학사과정 편입을 주장하였고, 그런 선택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을 뿐, 원문 기사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학벌우월주의’나 ‘무조건 졸업장 거부’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주장이 〈효원〉에서 시비하고자 하는 입장의 논거로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글을 본지가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효원’ 제72호(2006. 가을호)중 ‘자유게시판 토론 문화’ 관련 특집기사 최초 간지면 다음 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철회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효 원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제72호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안양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 ○ ○)

피신청인 : 안양광역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안양광역신문 : 『공동주택관리 무법천지』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7일자~8월 2일자 1면)

내 용 : 안양1동 〇〇〇〇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들이 공동주택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정족수를 인위적으로 꺾 맞추어 용역발주 계약을 하는 등 무법천지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사법관계당국과 감독행정관청인 안양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명이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안양1동 〇〇〇〇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2005년 12월 기준 11명)는 승강기 유지보수 5년 장기계약 업체를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5억 3천2백8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의결정족수 2/3(12명)를 채우지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〇업체를 선정하여 선정사와 결탁 의혹을 던져주고 있어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관리규약 제7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17명)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선출된 동대표 11명으로는 수의계약 조건에 인원이 충족치 못한 상황에 처해 급기야 지난해 12월 말 관리규약을 구성원 전원 찬성을 구성원 2/3(12명)이상 찬성으로 급히 개정하였던 것.

의결정족수 12명을 맞추기 위해 동대표 아닌 조 〇〇 씨를 포함시켜 서명을 받는 등 1개동에 1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데 2명으로 하여 금 동의서명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통과가 된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실속있는 용역업체 선정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계약이 급하다는 핑계로 10월 중순경에 의결했지만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또한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인준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부회장 등 임원진 구성도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있어 감독관청인 안양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업무정지가 처분 등 이에 합당한 요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는 3년차 하자보수 종결을 위한 합의서안을 상정하면서도 관리규약 제24조 의결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부결된 안건을 몇 분 후에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여 3년차 하자보수

종결 합의서안을 서둘러 의결 처리하는 등 시행사와 결탁의혹을 던져주고 있어 안양시는 이에대한 명쾌한 법리해석과 함께 당초 식재기로 했던 수백 그루의 조경수 나무식재의 행방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사실을 밝혀 바쁜 일상속에 입주민들이 관심을 소홀하기 쉬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27일자~8월 2일자 1면 『공동주택관리 무법천지』 제하의 기사에서 안양 1동 〇〇〇〇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원진의 정족수를 조정하고, 5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의결하는 등 관리규약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사법관계당국과 감독행정청의 지도감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인준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 ③항에 따라 동별대표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이고, 당시 선출된 11명의 임원 2/3 이상의 찬성과 주민 50% 이상의 동의에 의해 2005년 관리규약이 개정된 것이지 엘리베이터 계약 체결을 위해 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사업은 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3기 동대표회의 출범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지속적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매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주민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위 수의계약은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2006년 7월 27일자 및 8월 2일자 안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도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측에서는 지금까지 계약 등 모든 업무를 공개적으로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주민 재산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안양광역신문에 9월 7일이내 2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안양1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안양광역신문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31일자~9월 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386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논술시장을 석권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손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2.

처리결과 : 합 의

거듭한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권 386들은 대체 어떻게 강남의 논술 시장을 석권하게 됐을까. 혹시 그들이 과거의 운동권적 사고방식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건 아닐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11일자 6면 『‘본고사 금지’가 이들을 키웠다』 제하의 기사에서 386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논술 시장을 석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대치동 논술학원의 수업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진에 실린 학원강사는 기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 『‘본고사 금지’가 이들을 키웠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1일자 6면)

내 용 : 강남의 사교육 논술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대형 논술학원의 1년 매출이 100억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백억 원은 족히 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개인적인 논술 과외까지 감안하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 거대한 시장의 승자는 1980년대의 386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다.

강남 입시 논술시장의 양대 봉우리인 유레카와 초암을 비롯해 C, N, H 학원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학원들을 움직여 가는 주력이 바로 386 운동권이다. 강남의 논술 명문학원 중 비운동권 출신이 대표강사인 곳은 몇 안 된다.

사교육 시장이 번성한 가장 큰 배경은 널뛰기를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8월 11일자 6면에 『‘본고사 금지’가 이들을 키웠다』 제목의 기사에 실린 사진 속 학원강사는 기사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9월 13일까지 위 기사가 실려있는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 상의 사진을 삭제하

고,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실려 있는 해당 사진을 삭제하도록 요청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9월 13일까지 (토, 일요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게재한다.

• 위 1, 2,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에 대한 반론보

도청구·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육군이 마련한 병영체험 행사에서 비교육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수도권군단 (단장 박 종 달)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기신문 : 『어린이에 총 쏘는 법, 동심 죽인 병영체험』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일자 1면)

내 용 : 육군이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평택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병영체험 행사에 초등학교생들까지 초청,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등 비교육적인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중략)

이 행사에서 군은 어린이들에게까지 레이저 소화기 사격, 서바이벌 장비 체험, ‘총 쏘는 법’ 등 어린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자랑삼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51사단장 명충식 소장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예정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부대에서 병영체험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학생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극기력을 향상시켜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큰 일꾼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병영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병영체험 행사에는 어린이들까지 초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에게도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등 비교육적 훈련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육군수도군단 예하 51사단은 보도 자료를 통해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한 병사가 군복을 입은 평택 관내 A초등학교 김모 어린이(10)의 고사리 손을 잡고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진을 언론에 홍보했다.

사진 속의 김모 어린이는 군복 차림에 전투모까지 갖추고 사선 앞에서 총의 가늠자와 목표물에 눈을 고정 시킨채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이다.

한 주민은 “민·관 유대강화를 위한 병영체험 행사는 이해 할 수 있지만 10살짜리 꼬마에게 ‘사람 죽이는 법’과 다름 없는 ‘총 쏘는 법’을 가르친 행위는 섬뜩한 마음마저 들었다”라고 성토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1일자 1면 『어린이에 총 쏘는 법, 동심 죽인 병영체험』 제하의 기사에서 육군 수도권단 예하 51사단에서 병영체험 행사에 초등학교생들까지 초청,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등 비교육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수도권단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평택지역 주민을 부대로 초청, 어린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자랑삼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병영체험 행사는 부대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평성지역 주민대상 군·경 합동의로 봉사기간에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입소하여 부모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가 '레이저 소화기 사격'을 하는 장면은 지역 기자들이 촬영하여 보도한 것이지 부대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특히 일반소총이 아닌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순 레이저 소화기 사격이었음에도 이를 마치 어린이가 일반 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것으로 확대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더욱이 이번 병영체험은 서바이벌 사격뿐만 아니라 안보교육, 군 장비 견학, 군악연주, 특공무술 시범, 체육활동, 나의 결의 다짐 등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우리군의 강건한 모습을 보고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스스로 인내력과 극기력을 함양하는 교육적 차원의 실습이었으며, 참가한 부모와 자녀들 모두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정성을 다해 지원해준 부대에 감사표시와 함께 내년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2006. 8. 1.자 1면 『어린이에 총 쏘는 법, 동심 죽인 병영체험』 제하의 기사에서 육군 수도군단 예하 51사단에서 병영체험 행사에 초등학생들까지 초청,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등

비교육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자랑삼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수도군단은 이번 병영체험 행사는 부대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평성지역 주민대상 군·경 합동의로 봉사기간에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입소하여 부모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된 것이며, 또한 어린이가 '레이저 소화기 사격'을 하는 장면은 지역 기자들이 촬영하여 보도한 것이지 부대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된 소총은 일반소총에 레이저를 부착한 소화기로 사격 연습이 아닌 레이저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병영체험은 서바이벌 사격뿐만 아니라 안보교육, 군 장비 견학, 군악연주, 특공무술시범, 체육활동, 나의 결의 다짐 등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우리군의 강건한 모습을 보고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스스로 인내력과 극기력을 함양하는 교육적 차원의 실습이었으며, 참가한 부모와 자녀들 모두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정성을 다해 지원해준 부대에 감사표시와 함께 내년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6년 8월 30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어린이에 총 쏘는 법, 동심 죽인 병영체험)으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신문 : 『〈동심죽인 병영체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3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시계가 정체불명의 가짜 명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2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또 가짜 명품시계?』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4일자 10면)

내 용 : ‘○○○ 앤 ○’ 명품 시계 사기극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18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 이라고 떠들던 G시계가 상당 부분 허위 또는 과장 광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략)

◆ ‘18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 생긴지 5년에 불과=초고가 시계 G. 지난 2003년 ○○○ 당시 ○○ 국가 대표 감독에게 540만 원짜리 시계를 협찬하며 유명해진 이 브랜드는 2002년 한국에 상륙해 강남의 유명 백화점에 매장을 열었다. 현재는 청담동에 30여 평 규모의 고급 매장을 갖고 있다. 시계 가격은 최저 200만 원대부터 다이아몬드가 박힌 제품은 1,800만 원이 넘는다. (중략)

하지만 본지 취재팀이 이 시계의 본사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시에 확인한 결과, 이 회사의 영업등록증은 2004년 2월에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사 이모 사장은 “3대째 보석 세공을 해온 집안이며, G시계를 생산한 것은 지난 2001년부터”라고 해명했다. 이탈리아에서 5년 전 시작했다가 지난 2004년 스위스로 옮겼다는 얘기다. 그는 “180년 부분은 홍보대행사의 실수”라고 말했다.

G사가 내세운 ‘달레시오’란 창업인물도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이 사장은 “달레시오가 누구냐”는 질문에 “4년 전 본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실었을 뿐 나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고는 G사 본사 대표라며 이탈리아인 M씨를 소개했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던지자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누구냐?”고 반문했다. (후략)

(2) 『스위스 ‘한국 명품시계’ 진상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6일자 9면)

한국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짜 스위스 명품 시계 사건과 관련, 스위스시계협회가 정식으

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시계협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 사건과 관련해 스위스 시계 업계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나 역시 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 시계의 실물을 입수하고 생산공장 등을 조사해 진상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협회 차원에서 ○○○○○사의 홈페이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략)

(3) 『스위스 시계만 수백종... 전문가도 다 몰라』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6일자 9면)

‘○○○ 앤 ○’에 이어 ‘○○○○○’까지, 잇달아 터져나온 가짜 명품 시계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두 사건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베껴 만드는 기존의 ‘짝퉁’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거나 정체 불명의 브랜드를 들여온 뒤 허위·과장 광고와 호화 마케팅을 통해 명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 가짜 명품 시계가 판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중략)

○○○○○를 입점시켰던 백화점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모두 환불조치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 한국 수입사인 ○○○은 가짜 명품 의혹을 제기한 본지에 대해 14일 “정정보도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4) 『환불... 신흥브랜드 입점 까다롭게...』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7일자 8면)

가짜 명품 시계를 입점시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홈쇼핑 업체와 백화점들이 사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차례 방송을 통해 ○○○○○ 시계 80여 개를 판매한 A홈쇼핑 업체는 보도가 나간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시계를 구매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전체 환불액은 2억 원이 넘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8월 14일자 10면 『또 가짜 명

품시계?』 제하의 기사에서 G사의 명품 마케팅 수법으로 2003년 당시 ○○국가대표 감독에게 540만 원짜리 시계협찬, 강남 유명 백화점 명품관을 돌아가며 입점, 2005년 8월 고급 매장 오픈, 수시로 연예인을 동원해 호화판 쇼케이스 진행, 2005년 인기 가수에게 스폰서를 제의하는 등 연예인 수십 명에게 협찬하였으나, 사실은 18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이라고 떠들던 이 시계가 상당 부분 허위 과장 광고였고, 생긴지 5년에 불과하며, 이 시계 가격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제품은 1,800만 원이 넘으며 180년 전통 의혹에 대해 I사 사장은 3대째 보석 세공을 해온 집안이며, 시계를 생산한 것은 지난 2001년부터라고 해명했으나 스위스 본사의 정체도 의문이며, 제네바의 있는 본사의 정체도 의문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G시계가 백화점·홈쇼핑에서 수천만 원에 팔린 사실이 없고, 창업자라고 소개한 인물은 실존 인물이며, 연예인을 동원해 호화판 쇼케이스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18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이라고 한 적도 없으며, G시계가 고가이기는 하나 1,8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스위스 본사는 G시계를 한국에 수출하는 회사로 실존하고 있으며, I사가 그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사실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8월 16일자 9면 『스위스 ‘한국 명품시계’ 진상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짜 스위스 명품시계 사건과 관련, 스위스시계협회가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G시계는 스

위스 끼아소에 본사와 공장을 둔 진품 브랜드 시계로 가짜 스위스산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스위스 시계만 수백종... 전문가도 다 몰라』 제하의 기사로 이번 가짜 명품시계 사건은 기존의 ‘짜퉁’ 수준을 넘어 정체불명의 브랜드를 들여 온 후 허위 과장 광고와 호화 마케팅을 통해 명품으로 둔갑시켰으며, 백화점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모두 환불조치를 해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G시계는 국내에서 제조하여 제3국을 통해 스위스에서 수입된 것처럼 조작된 가짜 스위스산 시계와는 전혀 다르고 G사를 입점시킨 백화점들도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8월 17일자 『환불... 신흥브랜드 입점 까다롭게...』 제하의 기사에서 G시계를 판매한 A홈쇼핑 업체는 보도 직후 대책회의를 갖고 구매 소비자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모든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오징어 TAC 실시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 발족이 신청인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하 ○ ○

피신청인 : 수산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수산인신문 : 『오징어 TAC 표류?』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7일자 1면)

내 용 : (전략) 내년 초부터 오징어 TAC를 실시하기 위해 소형 오징어 어선 어업인들로 구성된 ‘오징어채낚기실무자연협회’를 끌어들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새 협의체 발족을 위해 오징어채낚기연합회의 해산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수산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

한국수산회 한 관계자는 “새로운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오징어채낚기연합회를 해산하고 새 협의체가 구성돼 협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모씨가 월급(월 3백만원) 보장을 요구하면서 연합회의 해산을 미루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은 모씨를 새 협의체 사무국장으로 영입해서 일을 맡기려고 하는 반면 실무자연협회 관계자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다”면서 “이러다간 그 사람 때문에 새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이와 관련, 지난 1일 포항에서 열린 해수부, 대형기선, 대형선망, 동해구기저, 채낚기연합회, 실무자연협회, 한국수산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벌이기로 했으나 모

씨의 새 협의체 사무국장 영입에 반대하는 실무자연협회 관계자들이 조업 때문에 불참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게 한 관계자의 전언.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수산인신문은 지난 8월 7일자 1면 『오징어 TAC 표류?』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 초 오징어 TAC를 실시하기 위해 오징어채낚기실무자연협회를 해산하여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연합회를 이끌고 있던 모씨가 급여문제를 두고 연합회의 해산을 미루고 있어 새 협의체 발족이 어려워져 한국수산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회는 회칙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그 해산이 결정되는 것으로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3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후속보도나 기고문은 수용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양주경찰서가 지역 언론이 행한 의도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양주경찰서 (서장 김 덕 기)
피신청인 : 경기북부시민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기북부시민신문 : (1) 『경찰, <양주신문> 봐주기 수사』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7일자 3면)

내 용 : 경찰이 언론의 의도적인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두달 넘게 수사를 벌이다 ‘협의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놔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양주경찰서는 5.31지방선거 당시 <양주신문>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일삼고, 이같은 여론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 발행부수보다 1.5배 이상 부풀려 발행 배포했으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양주신문>은 5월22일자 신문에서 ‘더피플’이라는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기관의 5월17~18일 조사결과를 근거로, 양주시의원 가선거구의 경우 “한나라당 원대식 후보가 24.3%의 지지를 받으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

수한 <가선거구 여론조사 보고서>를 보면, 원대식 후보의 고향인 은현면에서 무려 120명을, 반면 회천1동은 13명만 편중 조사하는 등 인구비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조사였음이 드러났다. <양주신문>은 5월15일자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법으로 ‘더피플’에 의뢰(5월10~11일)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 회천1~2동을 주무대로 활동해온 당시 열린우리당 이흥규 양주시장 후보의 회천1동 지지도는 0%라는 이해 못할 결과가 나왔다. <양주신문>은 이같은 신문을 통상 발행부수보다 1.5배 이상 부풀려 발행 배포했다. (후략)

(2) 『여론조사 장난쳐도 문제없단 말인가』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7일자 7면)

(전략) 이번 지방선거는 유독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때문에 선관위와 후보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웠다. 지난 3월 말 대전시에서는 구청장 후보를 돕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조작해 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여론조사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왔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고, 이 일에 대해 정식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선관위와 수사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27일자 3면 『경찰, <양주신문> 봐주기 수사』, 7면 『여론조사 장난쳐도 문제없단 말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양주경찰서가 <양주신문>의 엉터리 여론조사 및 뺑뺑이 신문 살포사건에 대해 두 달 넘게 수사를 벌이다 ‘혐의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봐주기’ 수사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양주경찰서는 주임검사의 지휘아래 관계자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수사하였으며, <양주신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2006. 7. 27.자 3면에서 『경찰, <양주신문> 봐주기 수사』, 7면 『여론조사 장난쳐도 문제없단 말인가』 등의 기사에서 양주신문의 5.31 지방선거 여론조사 발표와 관련된 선거법위반에 대해 양주경찰서가 두 달 넘게 수사를 벌이다 혐의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의견을 내놔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주경찰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였으며, <양주신문>을 봐주기 위해 수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북부시사신문 2006년 9월 7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혐의부족” 불기소)으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북부시사신문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지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신청인 단체가 ‘불순한 세력’ 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윤 ○ ○ 외 5인

피신청인 : 양천방송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4.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양천방송 : 「이런일 저런일」 프로그램 (2006년 8월 10일 21:40)

보도내용 : ▷연○○ (○○1-1지구 주택재개발 추진 위원장) : 순수한 취지를 갖고 있는 분들과는 대화하기 쉬운데... 외부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전문적으로 다니는 끈들이 있습니다.

▷임○○ 교수(○○○○대학 신학부) : 그분들 그런 불순한 세력, 끈들이 어떤 부류인지 압니다. 어떤 운동행태와 활동행태를 하는지 압니다. 주체자들에게 삶의 대책을 주는 것. 특별이주단지나 특별 분양권을 주면 그런 불량한 끈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사회자 : 불온한 세력에게 특권을 부여해서 혜택을 준다면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임○○ 교수(○○○○대학 신학부) : 지킴이들을 부추키고 따라다니면서 지킴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소위끈들 불순한 세력들이 있어요. 기존 내 지역 지킴이 원주민에게 특별이주단지나 특별분양권을 주면 불순한 운동세력들이 끼어들지 못해요. 특별 분양권 같은 것을 주지 않아서 지킴이들이 개발과 함께 쫓겨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외부에 도움을 청하게 되요. 그러면 그들은 와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되요. 그러면 감금같은 것보다 더한 상태도 되지요. 특별분양권을 줘야 불량한 세력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되요. 쓸데 없는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고 화합하여 웰빙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전문 지킴이, 끈들이 전혀 끼어들지 못하도록 원주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10일 「이런일 저런일」 프로그램에서 “재개발뉴타운 어디까지 왔나”

라는 제목으로, 방송참여자들과 사회자가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가운데 특히 외부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 그 외부 단체를 일컬어 “외부의 불순한 세력”, “불온한 세력”, “불량한 운동세력”, “부축이는 끈” 등의 표현을 써서 강조하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의 회원인 ○○3동의 반대대책위원들은 “외부불순세력”, “부축이는 끈” 등으로 표현한 보도 내용은 다른 지역의 소위 ‘지킴이’를 지칭한 것인 바, 자신들과는 무관하며,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정상적인 시민단체로서 소위 “외부의 불순한 세력”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회원들과 함께 순수한 의도로 자신과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협력해 나가는 합법적인 단체로서 ○○3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윤 ○ ○
2. 박 ○ ○
3. 전 ○ ○
4. 도 ○ ○
5. 김 ○ ○
6. 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CJ CableNet 양천방송
서울 양천구 신정3동 1254
대표이사 이 관 훈
조정대리인 정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양천방송 시사토론 「이런일 저런일」 프로그램에 별지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이 유 : 1.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양천방송 2006년 8월 3일자 시사토론 「이런일 저런일」 제하의 방송에서 신월동재개발뉴타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신청인들을 불순한 세력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입은 자란 그 보도내용에서 언급되거나 개별적인 연관성 즉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어 반론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본 건 조정대상 보도에서 직접 거명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조정대상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어 신청인들을 피해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언론 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1.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영상홍보원의 인사 및 제작을 청와대와 외부인사가 좌지우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영상홍보원 (원장 정 구 철)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이백만 씨-靑, 제작-인사 좌지우지』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7일자 A5면)

내 용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등 정부 홍보라인 실세들의 외압으로 지난해 3월 중도 사퇴한 장동훈 전 영상홍보원장은 국정홍보처와 청와대 등의 제작 및 인사 전횡을 막으려다 결국 밀려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KTV 프로그램 제작에 장기간 참여한 한 인사는 16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상홍보원의 인사 및 제작, 진행자 임명까지 이백만 당시 국정홍보처 차장(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청와대가 좌지우지하는 파행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인사의 얘기.

“이백만 차장은 영상홍보원 제작국에 와서 ‘이 사람을 섭외하라’, ‘이 사람은 빠라’, ‘프로그램은 이런 것으로 해라’ 등등 여러 가지를 간섭했다. 한 국정책방송 KTV는 당연히 누구 쓰라고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특히 인사는 기본적으로 원장이 해야 하는데, 영상홍보원은 (이 차장이) 내부 인사까지 다했다. 장전 원장이 그만두고 공석이 된 원장 자리를 공모했는데 이미 누가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했고 결국 그가 됐다.

새 원장 취임 후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방송제작팀장에도 방송 경험이 없는 육사 출신의 국정홍보처 직원이 임명됐다. 반발은 있었지만 결국 아무 소리 못했다. PD들이 TV제작 경험이 없는 팀장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PD 몇 명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출신인 정찬용 씨를 메인 프로그램인 ‘정찬용의 정책포커스’ 진행자로 선정하고 (일반 출연료의)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줬다. 플러스알파까지 줬다는 소문

도 돌아왔다. 당시 '정찬용 씨 진행자 기용'이란 보도자료까지 냈고... 원장, 방송제작팀장, 메인 프로그램 진행자가 모두 방송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17일자 A5면 『이백만 씨-靑, 제작-인사 좌지우지』 제하의 기사에서 KTV 프로그램 제작에 장기간 참여한 익명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백만 전 국정홍보처 차장과 청와대가 영상홍보원의 인사 및 제작, 진행자 임명까지 직접 관여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백만 차장과 청와대는 영상홍보원의 제작과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후임 원장도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선임되었으며, 기사에서 거론된 영상제작팀장 재임시 사직한 PD는 한명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찬용 전 대통령인사수석의 출연료는 영상홍보원의 제작비 지급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KTV는 정책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방송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영상홍보원 반론
- 내 용 : 본지 8월 17일자 영상홍보원 관련 기사에 대해 영상홍보원은 이백만 당시 국정홍보처 차장과 청와대가 홍보원 운영에 월권과 인사전여를 한 일이 없고, 방송제작팀장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직한 방송제작팀 PD가 없으며, 출연료는 제작비 지급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아일보 2006. 9. 4.~7. 자 중 A6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정책반대 장면 가위질 ~'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영상홍보원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A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정부가 '동원호 선원 납치사건'의 협상을 동원수산 측에 떠 넘기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외교통상부 (장관 반 기 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4.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6년 7월 25일 23:05)
내 용 : (전략) ▷이모현 : 지금 정부에서는 해

적들이 협상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미 PD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 그건 우리 정부가 동원호를 납치한 해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해적들은 언론을 끌어들여서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런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중략)

▷나레이터 : 소말리아 해적단과 한국 협상단의 협상과정은 전화와 팩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300여 명의 하라테레 마을에 단 3대뿐이라는

유선전화기. 그런데 그나마도 연결 안 되는 때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한번 전화통화를 하려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몇 시간씩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하라테레 마을에서 영어를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협상은 더더지고 있었습니다.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해적단의 상대인 동원수산의 협상단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소말리아의 인접국인 케냐 나이로비에 있다가 얼마 후 옮겼다는 것입니다.

▷황용기 : (동원수산) 상무님은 거기서(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 협상을 하시는 거죠?

▷동원수산 관계자 : “계속 거기서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호텔에서 협상만 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길거리마다… 텔레비전 안 보셨습니까? 동네마다 다 총 들고 있는데… 원활하게 (협상)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나레이터 :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해적단은 동원호를 억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중에 협상이 타결돼 석방할 때 한국의 회사측에 그 비용들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석 달 동안 한국 정부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상대했을까?

▷모하메드 압디 아프웨니 해적두목 : “이들동안 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최성식 선장 : “중국(국적의 조선족) 선원이 우리 배에 3명 있거든요. 이디오피아의 중국 대사관에서 그 3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귀국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적 두목이 그러더라고요. 선원들을 한꺼번에 보내겠다. 하물며 중국교포 선원 3명도 중국에서 신경 써서 연락해서 보내가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나레이터 : 정부는 사건 직후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 : “정부는 동원호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동원수산 측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납치범들의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협상의 진전이 매우 더딘 형편입니다. 무장단체들의 성격이라든가 정체에 대해서 계속 파악 중에 있고요”

▷나레이터 : 더구나 납치범들이 동원호 관련 한국언론 보도를 인터넷을 통해 파악하면서 국내 여론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정책홍보팀 관계자 : “소말리아 쪽에서 언론 플레이 하고 그런게 있어요.”

▷나레이터 : 그러나 현지에서 본 상황은 달랐습니다. 해적본부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고는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구식 라디오 한 대뿐. 인터넷은 커녕 노트북도 처음 보는 듯 신기해 했습니다. 외교 채널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과연 해적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한 것일까?

▷최성식 선장 : “해적 두목 집에 3개월 있으면서 쫓 지켜봤거든요. 자기나라 글씨도 몰라요. 정부에서 나서서 관여만 했어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입 다물어라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선 해결 하려는데 루트(협상경로)를 모르잖아요. 당장 매일 전화상으로 해서 해결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나레이터 :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돈을 요구하는 납치단체와는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외교통상부 영사와 관계자 : “협상 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동원수산이다. 소말리아 현지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요, 지금 현지에서 협상하는 건 아니죠. (소말리아 현지에는 아무도 안 가 있습니까?) 네. 벌써 예전부터 소말리아 과도정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장관 접촉은 현지(케냐 대사관)에 있는 우리 대사를 통해서도 하고, 최근에는 (과도정부측과) 유선 접촉을 했죠. 전화 접촉.”

▷나레이터 : 정부가 최근까지 조속한 석방 노력을 촉구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소말리아의 과도정부. 그렇다면 이번 사태 해결에 과도정부는 과

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 과도정부의 수산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지역 라디오를 통해 한국 어선 나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산 압셀 빠라 수산부 장관 : “최근 해적들이 조업 허가서를 받은 타국 선박들을 나포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재 과도정부는 해적들을 단속할 여력이 없다. 해적들은 아무 배나 잡아들이고 있지만 과도정부는 이들을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다”

▷알리 무사 AFP 동아프리카 담당기자 : “지금 누구도 소말리아 해안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없다. 과도정부가 장악하지 못한 지역에 조업 허가권을 쫓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결국 힘없는 과도정부가 발행한 조업 허가권 때문에 한국 선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1991년 이래로 소말리아에 전국을 장악한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행한 조업 허가권은 의미가 없다.”

▷나레이터 : 지난 7월 1일자 외교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사건 후 석 달이나 흐른 지금에도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중략)

▷이모현 : 방송을 준비하며 저희는 외교통상부에 여러번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송 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 국내언론의 동원호 보도는 우리 협상단 입지를 약화시켜 해적들만 이롭게 할 수 있고 또 일개 프리랜서 PD의 검증되지 않은 취재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MBC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미 PD,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 취재의 시작이 단순히 저널리스트로서 호기심이었지만 취재의 진행과 주도는 선원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있었을 뿐이었고 또 현장에 있었을 뿐입니다. 선원들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가족들의 기다림,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를 바랐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동원 628호,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모현 : 어려운 취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에게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도 해적들과 직접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고 협상의 실

질적인 주체를 동원수산으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일개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협상이 막바지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협상이 90% 진척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PD수첩 “피랍 100일 소말리아 동원호 -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 (2006년 7월 25일 방영) 관련 외교통상부 반론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5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프리랜서 김영미 PD가 ‘동원호 선원 납치사건’에 대해 소말리아에서 현지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가 해적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김영미 PD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정부가 해적집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고 현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정부가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를 동원수산으로 떠넘기고 있으며, 협상과정이 전화와 팩스로만 이루어져 협상장기화를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본 방송의 비판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동원호 피랍사건 발생 3일 만인 4월 7일, 납치범들이 Somalia Marine으로 일컫는 “모하메드 압디 아프웨니에” 휘하의 해적들임을 파악하여 당일 외교부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였고, 이들의 과거 납치사례를 정확히 분석한 후 조속한 선원 석방에 유용한 현지 정보에 대해 주재공관과 재외공관 등을 통해 다각도로 상세히 파악하면서 협상에 임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확립된 국제관례와 수집·분석된 현지 정보에 의거 “동원수산과 해적간의 직접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이번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수립하고, 불법 해적집단과의 협상주체로

나선 동원수산과 사건발생 직후부터 해결시점까지 협상의 전 과정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협상이 현지가 아닌 나이로비와 두바이에서 긴박하게 진행된 것도 해적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우리 협상단은 협상중개인을 소말리아로 파견코자 적극 제안하였으나 해적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전화와 팩스에만 의존하여 몇 주일씩 허비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하루에도 수차례씩 팩스 송수신이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사건발생 직후 며칠 만에 유사사례 분석 및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며, 정부는 소말리아 과도정부는 물론, 이슬람법정연대의 북진동향, 이들이 사건해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 모든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협상에 임하였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노력 외에도, 영국인 협상전문가 고용 등 수많은 조치들을 협상전략상 비밀리에 취하여 왔다고 밝히고,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접촉, 외교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은 의당 해야만 하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PD수첩' 프로그램이 동원호 선원 석방교섭의 막바지 단계에 방영됨으로써, 우리 협상단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협상타결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본 방송이 협상기밀에 해당하는 석방금액 내용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은 향후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납치범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외교통상부

서울 종로구 도림동 95-1

장관 반 기 문

조정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권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MBC-TV <PD수첩> 프로그램에 <별치>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12.

<별 치>

• 제 목 : 「피랍 100일 소말리아 동원호」 관련 외교통상부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5일 방영한 「PD수첩」 동원호 관련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납치 해적단 실체파악 부실, 소말리아 현지협상 부재, 유명무실한 과도 정부 의존, 전화와 팩스에만 의한 협상방법, 그리고 정부가 협상주체를 동원수산으로 떠넘긴 것 등으로 인해 협상장기화가 초래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의 경우 정부가 해적들과 직접협상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 것이고 협상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으며 특히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은 해적들의 요구로 두바이와 나이로비에서 전화로 협상이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오히려 우리측이 소말리아 현지 협상중개인 파견을 제안하였으나, 해적들이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정부와 동원수산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협상이 지연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협상이 전화와 팩스에만 의존하여 몇 주일씩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와 팩스 송수신이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례와 소말리아 현지정세 등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분석과 전문가 조언에 기초하여, 사건발생 직후부터 해결시점까지 동원수산과 긴밀히 협

력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알려 왔습니다. 정부는 현지와의 빈번한 일일 교신은 물론, 영국인 협상전문가 고용 등 피랍선원들의 안위를 위해 협상전략상 당시에는 공개할 수 없었던 조치들을 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소말리아 과도정부 접촉도 의당 했

어야만 하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본 방송의 동원호 관련 보도가 동원호 선원 석방교섭의 막바지 단계에 반영됨으로써, 우리 협상단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협상타결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신청인농협 임원진이 허위의사록을 이용하여 법인 등기를 하고 타 농협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최 ○ ○)

피신청인 : 무등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무등일보 : 『○○농협 합병추진 주체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7일자 17면)

내 용 : 인근 농협들과 피 흡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 ○○농협의 합병추진 주체가 허위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농협의 한 조합원이 이 농협의 전무 B모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뒤늦게 밝혀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해 11월 말 예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당시의 이사들을 부실경영을 이유로 총사퇴토록 요구한데 이어 지난 2월 3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또 임기 말에 이른 B모 조합장까지 선거도 없이 3월 15일 물러나도록 요구했다”는 것.

또 “이같은 요구로 무주공산이 된 지난 3월 15일 이 농협의 B모 전무가 대의원 총회도 없이 C모 씨 등 6명의 새 이사들을 선임 한 허위의사록을

만들고 서명자들의 인장까지 승인도 없이 새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이어 “조작된 이 허위의사록을 이용, 법인등기까지 한 뒤 이 농협 운영권을 사실상 이양 받아 흡수합병을 희망하는 주변의 다른 농협을 찾는 등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 고발된 ○○농협 B모 전무는 “등기등재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임원선거는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와관련, “지난 5월 21일이 합병시한이었으나 이달 21일까지 연장 받았는데 그 때까지 대상농협이라도 결정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파산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7일자 17면에 『○○농협 합병추진 주체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농협의 전무 B모 씨가 조작된 허위의사록을 이용, 법인등기까지 한 뒤 이 농협운영권을 사실상 이양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21일까지 합병시한을 연장받았는데 그때까지 대상농협이 결정되지 않으면 파산의 길로 가게 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농협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절차에 의거 투무표당선을 마쳤기 때문에 당선된 임원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단지 변경등기를 하

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불필요한 허위의 서류가 작성 제출되었을 뿐이고, 조합간의 합병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합병의 의지만 있으면 농협중앙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11월 21일까지 합병기일 연장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농협과의 합병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설사 합병대상농협을 결정하지 못한다 해도 파산이 아닌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며 이는 자율합병이 아닌 강제합병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교회 총재가 중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선교회 (대표 양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 후」 프로그램 (2006년 7월 13일 23:05)

내 용 : ▷오프닝 : 적색수배, 50억 이상의 사기, 살인, 마약 등의 강력 범죄자 중 해외 도피 사범들에게 내려지는 1급 수배령. 지난 99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해외 선교를 이유로 잠적한 ○○○ 총재 정○○. 그러나 해외에서도 그의 엽기적 행각은 계속 되어왔는데. (중략)

▷성우 : 성폭행 논란 외에도 사기, 횡령, 폭력 교사 등의 혐의로 2003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정○○. 여권마저 압수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어떻게 그는 유유히 주변국을 떠돌며 엽기적 행각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의 법률 자문으로 현직 검사가 참여하고, 수차례 검거 기회까지 노친 수사당국. 능력의 부족인가? 의지의 부족인가? 이땅에서 죄짓고 외국에서 유유히 암약하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집중 취재합니다.

▷앵커 : 지난 두 주 동안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과 그 관련자들을 추적 보도했습니다. 계속되는 제보를 바탕으로 뉴스 후는 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해외 도피중인 인터폴 한국인 적색 수배자 정○○ 씨를 취재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 기자. 정○○ 씨는 지금 해외 도피중인데요, 그 도피중인 해외에서 또 성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면서요?

▷기자 : 네. 우리에게도 ○○○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정○○ 씨는 한 선교 단체의 설립자이자 지금도 그 단체의 총재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성폭행 혐의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선교회 총재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막으려는 ○○○ 신도들도 몰려와 회견장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여성들은 지난 3월 ○○○ 선교활동을 위해 중국에 갔다가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중략)

▷기자 : 당시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주장에 따라 검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정씨는 돌연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해외 선교 활동을 하러 간다는 것이 명목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유럽, 대만 등 해외 곳곳에서 선교를 한다는 정씨의 모습은 영상물로 만들어져 국내 교회로도 보내졌습니다.

▷선생님 음성 : 이곳은 UCLA대학입니다. 캠퍼스를 지금 걸어가면서 조각 공원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기자 : 동시에 그를 둘러싼 성폭행 논란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2001년엔 대만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대만 검찰의 내사를 받았고, 2001년 말
레이시아와 2003년 홍콩에서 국내 여신도를 성폭
행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증언이 하나 둘 나오면
서 일본 언론도 정○○ 씨 행적을 뒤쫓고 있습니다.
(중략)

▷조○○ 별장 관리인 : 태권도 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간 지 오래되었는데, (정 총재님
은?) 정 총재님은 제3국으로 간지 오래 되었어요.
거의 두 달 다 되었어요. (어디로요?) 모르죠. 그
건.

▷기자 : 그는 이곳에서 또 다시 모습을 감추었
습니다.

▷앵커 : 네, 정○○ 씨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현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있었던 것은 분
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정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요?

▷기자 : 네, 취재진이 피해 여성들이 머물렀다
는 숙소와 그 태권도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였는
데요, ○○○ 신도들에게 촬영했던 테이프를 빼앗기
고 감금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측은
유감스럽지만 그 폭력을 행했던 신도들의 신원을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 네, 그 검찰이 사실상 이 수사에서 손
을 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어떻게
정씨에 대한 송환 작업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
습니까?

▷기자 : 네, 중국 공안이나 우리 경찰 모두 성
폭력 사건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우리 경찰이 강조
하고 있는 수사 공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양 공항에서 탈출 여성들의 신고를 접한 사흘
뒤인 4월 7일, 중국 공안은 정○○ 씨의 천산 별장
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한 여성의 몸에

서 정액이 검출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안이 도착한 별장에는 정○○
씨와 핵심 신도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13일 「뉴스 후」 프로그램에
서 지난 99년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
가 시작되자 돌연 해외 선교를 이유로 잠적한 ○○
○ 총재 정○○이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
황에서도 해외에서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라는 명
칭은 '○○○○○ ○○○○○○○ ○○○○○'에서 앞 글
자를 딴 ○○○○○선교회의 애칭으로 정○○ 총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정씨는 1999년 6월, 2000년
3월, 2001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입국하여 그간 혐
의를 받아 오던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은 뒤 정
상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 방송에서처럼 여성의 몸에서 정액이 검출되거
나 피해여성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증
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
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는 피해여성과 현지의 병원 등에서
확인한 사실이며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정정보도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진해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제주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해군제주기지사업단 (단장 강 승 식)

피신청인 : 제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제민일보 : 『해군기지가 지역상권 잠식 경제효과 ‘허상’』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일자 7면)

내 용 : (전략) 고도제한이 상당히 완화됐지만 최근까지도 1~5구역으로 분류돼 구역에 따라 건축 시설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진해시 최대 상권인 중앙시장 인근 건축물들이 대부분 2층 이하인 이유다. 고도제한이 완화됐지만 새로운 중심지인 신시가지도 아직까지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04년 6월 신시가지권(풍호동)으로 터를 옮긴 진해시청 건물도 고도제한에 묶여 2층 규모다. (중략)

한국주유소협회 진해시협의회(회장 박○○) 관계자는 “해군관계자 인구비중이 40%에 육박하는데 부대내에서 짠 연료를 판매하면 매출액의 70%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며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해군이 지역경제를 도산시키려 한다”고 분노했다.

“해군은 복지시설이라며 이미 해군회관을 통해 노래방, 식당, 숙박업까지 운영해 지역상권을 잠식시키고 있으며 최근엔 목욕탕까지 추진하다 업계 반발로 무산됐고 진해 예식장이 모두 문을 닫은 이유도 해군의 복지회관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2005년 5월 발표한 ‘하순항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에서 해군의 소비지출로 연간 지역경제에 미친다는 총예산 2,570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다름아닌 유류비(1,322억 원)라는 분석은 ‘지역경제 활성화’ 구호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까지 진해시 최대 상권 중앙시장은 중심점포만 영업 할 뿐 1년 넘게 문을 닫은 점포가 줄을 선다. 최근 몇 년 사이 해군 교육사령부가 상당부분 이전,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는데다 신시가지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옛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그나마 목 좋은 점포도 매출액이 70% 이상 떨어졌다는 상인들의 아우성이 그냥 하는 말

이 아니다. 주변 유흥업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더디고 어민들은 조업피해까지 감내하는 진해시. 더구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잠도에선 UDT의 각종 폭파훈련이 버젓이 진행되고 불법시설물에 상인들의 비명은 이어진다. 군 기무사의 철저한 통제로 군기지 주변의 자유로운 왕래조차 힘든 군사도시 진해의 오늘은 서글픈 현실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8월 2일 7면 『해군기지가 지역상권 잠식 경제효과 ‘허상’』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 관련 해군은 진해시를 군과 지역 주민이 상부상조해온 대표적인 군사도시 사례라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진해시처럼 제주 주민과 해군이 상부상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진해시 최대상권인 중앙시장 인근 건축물들이 대부분 2층 이하’, ‘진해시청 건물도 고도제한에 묶여 2층 규모’라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진해시 최대상권인 중앙시장 인근 지역은 고도제한이 없어 이미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많이 있으며, 진해시청 주변도 마찬가지로서 인근에 이미 15층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현재도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해군교육사령부가 상당부분 이전, 현재는 명맥만 유지’라고 하였으나 해군 교육사령부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이전을 하겠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진해시는 군 기무사의 철저한 통제로 군기지 주변의 자유로운 왕래조차 힘든 군사도시’라고 하였으나 진해시는 지역주민과 군이 오래전부터 상부상조해온 대표적 군사도시로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내부로는 들어올 수 없으나 주변은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으며 특히 군항제 기간이나 각종 시민행사시는 부대 내부를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부대를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해시 잠도는 소유가 명백히 해군임에도 주민

의 거주를 허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구역은 주거지와 500m 가량 이격되어 있으며 주민이 접근할 수 없으나 주민안전을 고려 훈련시 사전 홍보, 경고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군기지 내 건축 중인 주유소는 왕복 22km에 이르는 진해 군항의 특성을 고려 장병복지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진해시와 사전 건축협의를 거쳤으며 군 장병 대상 주유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군사시설인 복지시설로서 이는 개발 제한구역에서도 군사시설로서 제반 건축

이 가능하고, 대부분 자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오랜 요구에 의해 추진되어 평일 주간 중에만 운영되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군은 현재 군사기지법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에도 만약 건설을 하더라도 고도 제한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으며 진해시처럼 지역주민과 군이 상부상조할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방위사업청이 전방 철책선 경계 시스템 설치 사업자로 삼성을 선정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방위사업청 (청장 이 선 희)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시사저널 : 『전자 철책 사업도 삼성 밀어주기?』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8일자 36~37면)
내 용 :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올 들어 잇따라 방위 사업 분야에서 독주하는 현상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6월23일 전방관측소(GOP) 과학화 경계 사업자로 '삼성에스원, 삼성테크윈, 삼성SDS' 컨소시엄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업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삼성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략)

문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원칙과 내부규정은 물론 상식이 무시되는 이상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초 국방부 방사청에서는 입찰 업체들에 국산 장비여야만 요구 성능 충족 기준

에 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삼성 컨소시엄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국산 기술로 생산한, 성능이 입증된 감시 장비들을 제안서에 담아 제출했다. 대부분 광망식과 자력식 첨단 감시 장비들이었다. 그러나 삼성에스원 컨소시엄은 수입 감시 시스템(이스라엘 트랜스 시큐리티 사의 F-5000)을 제출했다. 국내에서 조립 생산할 테니 국산 장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본사 제품은 에스원이 국내에 설치한 적이 있지만 조립 생산품은 아직까지 선보인 점이 없어 '가상의 장비'인 셈이다.

삼성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의혹은 단일 감시 시스템 제안 요구를 위배했다는 데서도 불거졌다. 5월10일 방사청은 입찰 업체들을 상대로 이 사업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가질 때 무조건 한 개 기종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SK C&C, 데이콤, 넥스원퓨처, 휴니드테크놀러지, S&S에이스, 한전KDN 등 다른 입찰 참가 업체들은 감시 시스템을 자력식 또는 광망식 중 한 개 기종만으로 제출했다. 반면 유일하게 삼성에스원 컨소시엄만이 이스라엘 광그물망에 보태 미국 화이버 센시스 회사에서 생산한 '광케이블 진동'도 같이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에스원은 휴전선 철조망 본체에는 광망을, 최상단과 철책 아래 땅속에는 광케이블 진동을 각각 수입해 깔겠

다는 제안이었다. 결국 방사청 요구 기준을 맞춘 업체들은 탈락하고 위배한 업체가 선정된 꼴이다. 다른 입찰 참가 업체들이 명백한 ‘삼성 밀어주기’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략)

올해 들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방위 사업 분야의 특혜 시비는 비단 GOP과학화경계사업에서만 대두된 것이 아니다. 5월29일 방사청은 삼성물산으로부터 K-1 방독면 59억 원어치의 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직후인 6월 1일 법원은 기존에 납품한 방독면의 문제점을 들어 삼성물산을 ‘부당 납품업체’라고 확정 판결했다. 결국 방사청은 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서둘러 추가 계약을 체결해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삼성 밀어주기라는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

초법적인 삼성의 힘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방위 사업 분야에서도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18일자 36~37면 『전자철책 사업도 삼성 밀어주기?』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장비를 구매하는 ‘국내구매’ 방법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단일 감지시스템은 15.3km 전 구간에 동일한 감지시스템

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삼성에스원을 포함하여 4개 업체가 복합 감지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K-1 방독면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삼성물산이 아닌 삼공물산이기에 ‘GOP경계과학화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삼성 밀어주기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GOP경계과학화사업 관련 기사 중 K-1 방독면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삼성물산이 아닌 삼공물산이기에 ‘방위사업청의 삼성 밀어주기’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2006년 9월 19일자 이전까지 판권표시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부제목(국방부, 무리한 업체…)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문화부 장관 재임시 성인 오락실 인·허가 및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동 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9.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도박나라’ 만든 정동채 前장관, 작년 興 진상조사 요구도 거부』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5일자 1면)
내 용 : 정동채(鄭東采)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부각되

고 있다.

정 전 장관이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2004년 7월 ~ 2006년 3월)하면서 성인오락실 인·허가 및 경품용 상품권 문제에 대해 주요한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 국정 실패로 이어졌고, 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열린우리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3선 의원이다.

24일 국회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2005년 3월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22곳의 선정 과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반대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실태 조사를 하고, 미비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당시 정 장관이 ‘사업 시행 초기라 우여곡절이 많지만, 내게 맡겨달라’고 제동을 걸어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당시 이미 22개 업체 선정을 놓고 부적격·특혜 시비가 제기되던 상황이었고, 결국 석 달 뒤인 6월 인증업체들의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22곳 모두 인증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광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는 관리·감독을 못한 문화부 장관 책임”이라고 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은 6월 21일 국회문광위에 출석해 “허위신고 업체는 모두 선정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8월에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할 때 인증이 취소됐던 7개 업체를 다시 발행업자로 지정했다. 불과 두 달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성인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도 정 전 장관 재임 때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동채 前 장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5일자 1면에 『‘도박나라’ 만든 정동채 前 장관, 작년 興 진상조사 요구도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정동채 前 문화관광부 장관이 성인오락실 인·허가 및 경품용 상품권 문제에 대해 주요한 정책결정을 내린 것이 국정실패로 이어졌으며, 2005년 3월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22곳의 선정 과정에 대한 여당원들의 진상조사요구에 반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성인오락실 인허가에 대한 정책은 1999년 2월 8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의 제정과 2001년 5월 24일 재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04년 7월에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동채 前 장관은 ‘성인오락실 인·허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속기록에 의거 정동채 前 장관은 문화관광위원들의 질문에 “감사가 오면 당연히 받겠다”고 수차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 진상조사요구를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동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7

조정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6년 9월 11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인증취소)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7.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8월 25일자 1면 『‘도박나라’ 만든 정동채 前 장관은 장관, 작년 興 진상조사 요구도 거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동채 국회의원은 성인오락실 인·허가 문제에 대해 정책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조선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1일자 2면)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

신청인이 문화부 장관 재임시 성인 오락실 인·허가 및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동 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도박나라’ 만든 정동채 前장관, 작년
興 진상조사 요구도 거부』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5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3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정동채 前 장관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5일자 1면에 『‘도박나라’ 만든 정동채 前장관, 작년 興 진상조사 요구도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정동채 전 장관이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22개 업체를 인증취소하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8월에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할 때 인증이 취소됐던 7개 업체를 다시 발행업자

로 지정하여, 불과 두 달 만에 말을 뒤집었다”, “성인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 위원회에 통과 한 것도 정 전 장관 재임 때였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채 前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5년 7월에 발표된 지정제도는 2004년 12월에 발표한 인증제도와 다르므로 “기존 고시에 의한 선정제도와 이 고시에 의한 지정제도는 그 성질을 완전히 달리하고 이 지정제도는 새로운 내용을 신설한 고시에 의거한 것이므로 허위자료 제출업체들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부여함에 별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법무법인 정평)을 바탕으로 지정제도를 위탁 시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동채 前 장관이 인증이 취소되었던 7개 업체를 다시 발행업자로 지정하였다는 본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성인게임물인 ‘바다이야기’는 정 전 장관 때 심의가 통과되기는 하였지만 법률상 독립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사행성 게임업체와 관련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신청인 병원의 계열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병원 (대표 이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3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게임 개발업체 사외이사 말아』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1일자 2면)

내 용 : (전략) 명씨는 20일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게임·애니메이션 개발업체인 ○○엔터테인먼트의 사외이사를 맡은 적이 있으나 도박산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주)○○엔터테인먼트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임인 ‘○○○’ 등을 개발한 업체다. 명씨는 2000년께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스톡옵션 등 어떤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략)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상장기업인 ○○약품을 인수한 ○○○병원의 17개 계열사 중 하나다. ○○○병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유명해졌으며 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병원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대검의 공적자금수사반은 2003년 이 병원의 이○○ 원장과 부인 김○○ 씨 소유의 ○○○창업투자가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1억 9,000만 원의 자금을 제공한 것을 밝히기도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8월 21일자 2면 『게임 개발업체 사외이사 말아』 제하로, 전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박공화국과 ○○○병원, ○○약품이 깊은 관

련이 있는 듯한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사행성 오락업체와는 100%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상장기업인 ○○약품을 인수한 ○○○병원의 17개 계열사 중 하나다”라고 하였으나 ‘○○엔터테인먼트’는 ○○○병원의 계열사가 아니며, 2005년 10월 6일 공시로 계열사에서 제외돼 현재 ○○○병원이나 ○○약품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엔터테인먼트’는 ○○통과, ○○퀴즈 등을 하며 레벨을 올리는 ‘○○○’와 같은 게임류를 개발한 곳으로 사행성 오락게임과는 무관한 업체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 전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2일자 2면)

내 용 : 8월 21일자 2면 『게임 개발업체 사외이사 말아』 기사에서 명씨가 사외이사를 맡은 (주)○○엔터테인먼트는 ○○○병원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현행 법상 계열사에 해당되지 않기에 바로잡습니다. ○○○병원은 2004년 ○○약품공업을 인수한 뒤 ○○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로 편입했지만 지난해 10월 ○○약품공업의 최대 주주인 김○○ 씨가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이 48.9%에서 9.2%로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지분율이 10% 미만이면 계열사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진해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제주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해군본부 (참모총장 남 해 일)

피신청인 : 제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3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제민일보 : 『해군기지가 지역상권 잠식 경제효과 ‘허상’』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일자 7면)

내 용 : <2006제주조정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제주조정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해군기지가 지역상권 잠식...』 관련 해군본부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일자 7면 『해군기지가 지역상권 잠식 경제효과 ‘허상’』 제하의 기사에서 대표적인 군사도시인 진해시가 건축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군학교의 이전으로 최대상권인 중앙시장은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해군이 그린벨트지역에 불법논란을 일으키며 영업용 주유소 설치를 추진해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는 2005년 8월 진해시의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중앙시장 및 진해시청 인근에 상당수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고, 현재도 건축 중으로 중앙시장의 경기침체는 해군기지와의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군 교육사령부를 이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대가 없고,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내부로는 들어올 수 없으나 주변은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으며 군사 훈련 시에는 주민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해군기지 내 건축 중인 주유소는 불법시설물이 아니며 장병복지 차원에서 설치한 복지시설로서 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군사시설로서 제반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제민일보〉 2006년 9월 11일자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소제목 ‘군사도시에서 살아가기-진해’와 동일한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의 1,200자내외 기고문을 〈제민일보〉 2006년 9월 18일자 오피니언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민일보 : 『「해군기지가 지역상권 잠식...」 관련 해군본부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면사무소 공무원인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함안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3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함안신문 : 『공무원 부동산 투기 ‘물의를’ 제하의 기

사 (2006년 8월 17일자 1면)

내 용 : (전략) 지난해 9월 ○○면사무소 산업계 김모 담당(6급)은 모 부동산을 통해 땅을 평당 95만여 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에 대해 김모 담당은 지난 6월 경 모 부동산을 통해 평당 150~160만 원에 팔아 (매각)줄 것을 의뢰하고, 얼마 후 ○○부동산 측에서 땅값을 얼마에 받던지 지주에게는 평당 145만 원을 쥐어 줄 것을 제안하자 김모 담당은 법정 수수료만 주면 되지 부동산에서 왜 평당 5~10만 원을 뒤킵기 하려느냐 하면서 말썽이 났다는 것. 취재진과 김모 담당과의 대화 중 모 부동산이 땅값을 많이 받아

내게는 평당 145만 원을 주려는 것은 부당하며 수
수료에도 문제가 있음을 말했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일반인도 아닌 6급 공무원
원이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한 땅을 몇 개월 만에
평당 150만 원에 되팔면 평당 5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며 의
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중장기개발계획 정보를
일반인보다 공무원이 먼저 알고 있다고 항의했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8월 17일자 1면에 『공무원 부동
산 투기 ‘몰의’』 제목으로 ○○면사무소 산업계 김
모 담당(6급)이 평당 95만 원에 매입한 땅을 2개
월만에 150만 원에 매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였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면 산업담당(6급) 김모 담당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
는 함안신문 9월 7일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공무원
부동산 투기 ‘몰의’)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
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함안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7일자 1면, 9월 29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울산 남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단독 입찰했다가 주민들이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자 계약을 철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주)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김 ○ ○),

2. (주)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광역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광역일보 : 『남구 B-01지구 재개발 사업자 계약 철회』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1일자 1

~2면)

내 용 : 울산 남구 주택재개발과 관련, B-01지구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가 무리하게 선정한 건축
사무소인 ○○과 ○○이 주민들의 견적서공개 요구
에 돌연 계약을 철회했으며, 지난 18일 오전에는
주민대표 30여 명이 남구 건축과에 잘못된 추진위
의 구성과 주민배제에 따른 행정조치를 바라며 항
의하기도 했다.

○○과 ○○이 견적서를 공개하지 못하고 계약을
철회한 것은 경쟁입찰과정에서 다른 업체와의 가
격보다 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입찰로
강행, 이를 추진위가 받아들였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본보의 연일 보도에 공개가 불가피해지자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신문에 재공고를 고지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추진위는 22일 주민총회와 관련, 책자

를 다 만든 상황이고 이들 업체선정 인준 안을 무리하게 올린 상태여서, 주민총회 이후에 공고하게 된다면 주민을 배제한 독단적인 업체선정 이어서 이래저래 난감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이들 업체에게 “방해하면 가만 두질 않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받아왔다.”며 “계속 이런 경우, 현재 이들의 모든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조만간 폭로 하겠다”고 본지에 전해왔다.

지난 18일 오전 주민대표라 밝힌 30여 명은 남구정 건축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주민 200여 명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전달했다. 주된 내용은 추진위 구성에 있어 전체세대수 10%의 대표가 추진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도 18세대 중 10명이 추진위원이 되는가 하면, 500세대에만 1명이 위원으로 뽑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21일자 1~2면 『남구 B-01지구 재개발 사업자 계약 철회』 제하의 기사에서 울산 남구 주택재개발과 관련, B-01지구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가 무리하게 선정한 건축사무소인 ○○과 ○○이 주민들의 건적서공개 요구에 돌연 계약을 철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건축사 사무소와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단독입찰도 아닌 경쟁입찰로서 입찰에 참여한 한쪽 업체의 서류 위조로 판명되어 나머지 업체의 과반수 찬반으로 업체 선정이 진행되었고 가격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8월 21일자 1면 『남구 B-01지구 재개발 사업자 계약 철회』 제하의 기사에서 단독 입찰 강행, 가격문제 등 건축사 선정방법 및 계약과 관련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해당 건축사 사무소와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단독입찰도 아닌 경쟁입찰로서 입찰에 참여한 한 쪽 업체의 서류 위조로 판명되어 나머지 업체가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입찰가격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역일보 2006. 9. 11.자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1일자 2면)

내 용 : 본지 8월 21일자 1면 『남구 B-01지구 재개발 사업자 계약 철회』 제하의 기사에서 단독 입찰 강행, 가격문제 등 건축사 선정방법 및 계약과 관련된 보도를 한 바 있으나, 해당 건축사 ‘계약’은 ‘가계약’이었고 단독입찰이 아닌 경쟁입찰로 다른 업체의 서류 미비로 나머지 업체가 추진위의 찬반을 물은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입찰가격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을 바로잡습니다. □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5.7%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3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교통부 (장관 추 병 직)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실제론 5.7% 올랐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9일자 1면)

내용 : 서울 강남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올 3월 이후 6월까지 평균 14.4% 떨어졌다는 건설교통부의 통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시점인 3월과 6월의 아파트 거래 물량이 크게 차이 나는 데다 지역별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24일 공개한 아파트 실거래가격 자료를 토대로 본지가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 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오히려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8·31, 3·30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잘못된 통계 방식=건교부는 실거래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 3개 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한 3월 2,252만 원에서 6월 1,927만 원으로 14.4%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강남 3개 구에서 3월 신고된 2,491건의 실거래가를 아파트 크기별로 평균치를 구한 뒤 다시 전체 평균을 냈다. 문제는 6월의 거래 건수가 503건으로 3월의 20%에 불과한 데다 비교 대상 아파트들이 평형·지역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통계에 포함됐던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가락동의 주공·시영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도곡렉슬 등의 고가 아파트 등이 6월 통계치에선 대거 빠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라 이들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한산해진 탓이다. 따라서 이런 식의 계산법으로 3월의 평당 평균가격이 시장의 동향과 무관하게 6월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제대로 계산하면=본지가 3월에 이어 6월에도 거래가 이뤄진 지역의 183가구 114개 평형의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건교부 발표와는 달리 5.7%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대비 6월의 평당 가격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이

1% 하락했지만 3월과 6월에 함께 거래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면 가격은 오히려 8% 상승했다. 건교부는 또 강남 3개 구에서 40평이 넘는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격은 3월 최고치에 비해 6월엔 22.4%나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 또한 3월과 6월 동시에 거래가 이뤄진 지역의 아파트로 국한하면 정부 발표와는 반대로 5.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건교부 발표보다 하락률이 더 커진 경우도 있었다. 잠실동 주공5단지 36평형은 7.7% 하락했다는 건교부 발표와 달리 8.7%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서울 강북 14개 구, 수도권 5개 신도시, 6개 광역시의 실거래가 추이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작성했다. (후략)

(2) 『3월 거래 아파트와 단순 비교』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9일자 8면)

건설교통부의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안정만을 강조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잘못된 통계=건교부의 조사 결과는 기준시점의 표본과 비교 시점의 표본이 일치해야만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통계의 기본원칙을 어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3월의 집값과 6월의 집값을 비교하려면 비교 대상 주택이 같거나, 적어도 같은 지역이어야 한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 같은 원칙을 무시했다. 6월의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3월의 5분의 1로 줄었는데도 똑같은 차원으로 비교한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29일자 1면 『실제론 5.7% 올랐다』, 8면 『3월 거래 아파트와 단순 비교』 제하의 기사에서 강남 3개 구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5.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14.4% 떨어졌다고 공개했다면서, 이러한 조사결과는 건교부가 통계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

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본지의 주장처럼 분석 대상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3월과 6월에 동시 거래된 경우만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첫째, 금년 상반기에 거래된 1,794개의 평형 중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극소수(114개)의 평형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대단지로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인기 아파트로 이러한 일부 표본을 통해 강남 3개 구 전체 아파트 가격이 5.7%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둘째, 동일 평형이라도 동, 층, 향, 내부수리상태 등에 따라 최고 20~30%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데 동일 아파트

가 반복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동일 평형이라는 이유로 표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셋째,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가격만을 분석하였다. 건설교통부 분석결과, 3월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저가매물 위주로 거래되어 4월부터 평당 평균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격하락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중앙일보의 지적 때문에 건교부가 아파트 실거래가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교통부 (장관 추 병 직)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 『건교부, 공개 방식 바꾼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31일자 2면)

내 용 : (전략)하지만 건교부는 통계 왜곡의 발단이 된 평당 평균가격의 산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 토지기획관은 “일부에서 건교부의 평균가격 산출 방식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현행 방식을 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 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격이 3~6월 14.4%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는 3월의 거래 건수는 2,491건이었지만 6월의 거래 건

수는 503건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 기획관은 “건교부도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을 기본적으로 비교분석 단지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히려 본지가 건교부의 통계가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사용한 방식이다.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호수는 다들 지라도 같은 지역, 같은 단지, 필요하다면 동까지 같은 아파트를 다 뽑아내 값이 실제로 평균 14% 정도 내려갔다면 중앙일보 자료에 대해 반박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박 기획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을 예로 들며 “3월에 비싼 곳은 9억 9,000원까지. 대체로는 9억 원에서 9억 5,000원에 거래됐으며, 6월에는 9억 원 전후에 거래신고가 됐다”고만 답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31일자 2면 『건교부, 공개 방식 바꾼다』 제하의 기사에서 본지 실거래가 통계 왜곡 지적(8. 29.) 이후 건교부가 공개방식을 바꾼 것

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8. 24. 실거래가 공개 보도시 '일정 분량이 축적될 때까지 분기별로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번 공개시에는 '층'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는 등 공개정보를 확대하고 주기도 단축키로 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밝혔으나 중앙일보는 지난 8월 29일 『강남 집값이 5.7% 상승했다』는 보도 이후

건교부가 공개방식을 바꾼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교부가 공개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실거래가 공개는 거래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중앙일보의 지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통계청이 정책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경기종합지수를 왜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통계청 (청장 김 대 유)

피신청인 : 파이낸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 『통계청 경기지수 왜곡』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8일자 4면)

내용 :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면서 구성지표 가운데 수출액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활동지수와 내수출하지수를 추가하는 등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수출액을 빼고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서비스업과 조정이 쉬운 내수지표의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통계를 정책성과 포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중략)

그러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국내 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수출 등 대외경제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액을 구성지표에서 빼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 산업연구원(KIET) 주력산업실장은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면서 일반적으로 수출액을 제외한 것은 우리 경기에 미치는 수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면서 “내수와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고려해 추가만 하면 될 것을 수출액까지 제외한 것은 경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통계청 경기지수 왜곡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2006년 8월 28일자 『통계청 경기지수 왜곡』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 개편시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수출액을 빼고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서비스업과 조정이 쉬운 내수지표의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정책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통계를 정책성과 포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첫째, 수출을 제외한 것은 기존의 산업생산지수나 가동률 지표가 수출경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수출을 포함시키는 경우 경기지수의 흐름이 GDP 등 다른 지표의 흐름과 상이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 제외하였고, 둘째,

실제 실질수출의 월평균 성장률(1999년~2005년)은 1.3%로 서비스업활동지수의 월평균 성장률 0.6%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출을 제외한 개편 후 지수가 오히려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수출을 제외함으로써 통계청 경기지수를 정책성과 포장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의 말을 빌어 경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는 내용에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결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파이낸셜뉴스 : 『경제통계 개편 이해방법』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7일자)

내 용 : 최근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경제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경기 논쟁이 시작되더니 결국 경기, 그 자체가 아닌 경기종합지수라고 하는 지표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종합지수를 개편했다. 그런데 개편된 지수의 흐름이 기존 지수와 다르게 나타나면서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의 의도성'에 대한 작은 논쟁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필자는 통계지수의 개편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중략)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이며 이용자의 불편을 이유로 통계를 개편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 통계는 더 이상 경제현상을 설명하지 못해 버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용자 불편은 있지만 개편을 통해 정확성을 추구해야 한다. 통계가 개편된다고 해서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고쳐지지 않고 고인 물처럼 있는 통계가 신뢰성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기종합지수도 서비스활동지수와 같이 경기분석에 유용한 새로운 지표가 등장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개편돼야 한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개편을 인정하고 통계를 분석해야 한다. 오히려 이용자는 통

계의 개편 여부보다는 제때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 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계 개편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같은 현상을 측정하는 유사 통계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개편된 통계가 관련지표와 밀접성이 더 높아졌다면 그 개편은 의도적이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통계를 개편했다는 것만을 놓고 비난하기보다는 개편된 통계가 관련된 통계와 얼마나 밀접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왜 경기종합지수 동행지수 구성지표에서 수출을 제외시켰을까. 이는 제조업에서 생산된 상품은 수출되거나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수출이 산업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에 반영되었다고 통계작성기관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단의 유효성은 경기종합지수를 구성지표의 이론적 중요성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등의 주요 경기 관련 지표와 비교하고 밀접한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0년에도 경기종합지수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다. 이 당시 많은 경제분석자들은 신경제를 말하면서 향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시 경기선행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일부 분석자들이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리 경제에서 커지고 있는 서비스업중이나 금융부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제조업관련 지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었다. 당시 경기선행지수가 나쁘게 나온 것은 M3, 제조업부문에 기인한 것으로 경기선행지수의 하락 신호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정보기술(IT)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흐름과는 잘 안맞았지만 결국은 경기선행지수를 이용한 판단이 주관적 판단보다는 우월했음을 나타낸다.

국가통계는 국가의 제도적 틀을 설정·유지하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 일관된 국가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경영의 기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계를 개편했다는 이유만으로 통계를 불신하기보다는 개편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통계를 만들기 위한 논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를 만들기는 쉬워도 통계의 신뢰성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이다. 물론 통계작성 당국도 개편과정의 체계화를 통해 통계이용자들의 개편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신청인 대학교가 교수들의 예배참석을 감시할 목적으로 대강당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강남대학교 (총장 윤 ○ ○)
피신청인 : 교수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교수신문 : 『현대판 판옵티콘의 재현...학교 교회만
참석 유도』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12
일자 대학면)

내 용 : 최근 '이찬수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강
남대(총장 윤○○)가 감시카메라로 교수들의 예
배 참석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
다. 게다가 대학 교회 예배 참석률을 인사 평가
에 반영해 종교가 없는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
다.

강남대의 '우원 기념관' 1층 대강당은 예배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배당 입구 정면에 돔
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논란이 시작됐던 것.

허남일 강남대 교수협의회장은 "교회 출석여부
가 업적평가에 반영된다"며 "매번 출석을 부를 수
없으니 출석체크를 위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출석체크를 전혀 안하는데
도 출석여부를 대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 보면
CCTV로 출석여부를 파악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발언도 덧붙였다.

"교회 출석을 통해 얻게 되는 업적평가 비중이
적어서 교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
가 종교문제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 허 교수의 설명이다.

교수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출석부를 통해 예배
참석을 증명했으나, 예배 출석부는 없어진 지 오래
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교수들의 허위출석
기재가 적발돼 학교에서 출석부를 없애고 교회 입
구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
다. (중략)

지난 4월 교수신문이 소개했듯이, 강남대의 교수
업적평가 가운데 봉사영역 점수 계산방식은 독특
한 면이 있다. 교원인사개발처에 따르면, 교수들은
예배 1회 참석에 0.5점의 봉사점수를 받고, 1년(48
주)이면 24점을 받게 된다. 이는 재임용을 위한 봉
사점수 커트라인 20점(재임용 30점)을 상회하는
점수.

교수들은 "신학대학도 아닌 일반 종합대학인 강
남대가 점수를 미끼로 기독교로의 발걸음을 요구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전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교수신문은 지난 6월 12일자 대학면에 『현대판
판옵티콘의 재현...학교 교회만 참석 유도』 제목으
로 "강남대 교수협의회장은 '교회 출석 체크를 위
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다'고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대 교수협의회장은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교회에 CCTV는 설치
되어 있다"고 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출석체크를 전혀 안하는데도 출석여부를
대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 보면 CCTV로 출석여
부를 파악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발언도 덧붙였
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은 '교내에 소문은 있으

나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교수신문은 지난 6월 12일자 대학면에 『현대판 판옵티콘의 재현...학교 교회만 참석 유도』 제목으로 “교수들의 허위출석 기제가 적발돼 학교에서 출석부를 없애고 교회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대는 “우원관 대강당은 1,000여 석의 규모를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서 학교의 주요 행사들과 집회, 문화예술 공연, 학술집회, 학생채플, 강의, 대학교회 예배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원관 설립 당시 이러한 각종 행사와 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내에 monitoring camera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실내 모니터용 카메라는 각종 공연장은 물론 대형 집회장소나 교회당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밝

혀왔습니다.

또한 “교수들은 신학대학도 아닌 일반 종합대학인 강남대가 점수를 미끼로 기독교로의 발걸음을 요구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강남대는 “교수업적 평가의 봉사영역 중 기독교 창학 정신 구현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교수들이 대학교회 예배, 학생채플, 신학부 예배, 교직원 예배 등에 참석한 회수를 참조하여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배참석 점수가 교수 업적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그 또한 필수항목이 아닌 자율적 선택항목이기 때문에 학교당국에서 교수들의 교회 출석을 강요할 이유가 없고 또한 그 항목평가를 위해 '감시카메라'까지 동원해야 할 필요는 더욱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익산○○축제운영본부가 옥외광고물 및 인쇄물 공모·심사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익산○○축제 운영본부
(본부장 정 ○ ○)
피신청인 : 소통뉴스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소통뉴스 : 『축제 광고물, 특정업체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1일자)
내 용 : 지난해 열렸던 ○○축제가 지역정체성이

결여된 천편일률적인 타유사축제 프로그램 나열에 불과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의 독특한 산업자원과 문화·예술자원을 상호 연계해 ○○축제를 생산적인 콘텐츠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졸속 축제에 머물게 된 원인에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축제에 관한 공무원들의 텃빈 마인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진단도 뒤따른다. (중략)

익산○○축제 2006 옥외광고물 및 인쇄물 제작 공모 공고가 불성실하고 불투명한데 따른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공모를 마감하고 19일 D컨

셉과 D기획 등 두개의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공모공고 내용 가운데 '선정방법'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본부 소속 특정인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행정기관이 게시하는 공고의 경우 선정방법을 비롯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 입찰가격평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는 규격을 준수하고 있으나, 익산○○축제 2006 옥외광고물 및 인쇄물 제작 공모는 '참가자격 서류심사 및 실적증명, 실질심사방식(비공개)' 사항에 그치는 선정방법만을 명시하는데 그쳐 부적절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초래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축제 광고물특혜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소통뉴스는 지난 8월 21일 『축제광고물, 특정업체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개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익산○○축제 2006 운영본부'가 옥외광고물 및 인쇄물 제작업체 공모·심사가 투명하지 못하고 업체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축제 운영본부 측은 심사과정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한 것으로 밝혀졌고 특정업체 특혜의혹 역시 전혀 근거 없는 사실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제 목 : “○○축제 광고물 특혜의혹 및 예산편성 관련 반론문”

·내 용 : 소통뉴스는 8. 21.자 『축제광고물, 특정업체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진행된 '○○축제 옥외광고물 및 인쇄물 제작업체 공모' 과정이 불투명하여 심사의 불공정성, 특정업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으며, 8. 24.자 『○○축제 엉망 진창 시민혈세 '줄줄'』 제목으로 ○○축제 운영본부가 각종 예산을 중복 또는 과다편성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제광고물 심사위원장인 전주대 김 ○○ 겸임교수는 총평을 통해 “○○축제의 역사적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고 주 컨셉인 '사랑'의 이미지에 맞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이미지의 조화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선정작은 아치의 전체적인 형태와 로고가 역동적이며 웅장한 느낌을 주고, 포스터의 문양과 이미지 등에서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고 선정이유를 밝히고,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의 디자인은 크리에이티브한 요소와 전체적 조화에서 조금씩 부족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축제 운영본부 측은 “옥외광고물과 인쇄물 제작업체 공모 심사 과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이런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행사추진 주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제 진행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과 예산집행에 있어 ○○축제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축제운영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통뉴스(인터넷신문, www.sotongnews.com)에 2006년 9월 14일 12:00부터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방식과 동일하게,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할 때까지 지속하여 게재하되, 메인화면 중앙과 좌측 기획란에 제목(축제광고물 특혜의혹 및 예산편성 관련 반론문)을 표기하고, 제목 밑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문입니다.”라고 표기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되, 제목의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축제광고물, 특정업체 특혜의혹”)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보도한다. 단 2006년 9월 14일 12:00부터 5일간은 메인화면에서 위 보도문을 볼 수 있게하고, 그 이후는 기획란에서 조정

대상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소통뉴스 : 『〇〇축제 광고물 특혜 의혹 및 예산편성 관련 반론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익산〇〇축제 운영본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익산〇〇축제 운영본부
(본부장 정 ○ ○)
피신청인 : 소통뉴스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소통뉴스 : 『〇〇축제 엉망진창 시민혈세 ‘줄줄’』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4일자)

내 용 : (전략) 지역축제는 고유한 정체성을 담아내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통합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2006 〇〇축제 프로그램은 지역인프라 참여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데다 예산조차 소모적 경비를 곳곳에 중복 편성하는 등 엉망진창이라는 지적이다.

축제전문가들은 〇〇요를 특화해 ‘만남과 사랑의 도시 익산’의 정체성을 저변에 확산시키고, 신분과 시공을 뛰어넘는 〇〇과 〇〇의 천년 사랑을 〇〇마 및 보석, 석재산업 등으로 승화시켜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와 산업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와 〇〇축제추진위 운영본부는 〇〇요를 민속동요제로 특화시켜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요청한 〇〇제전위의 뜻조차 묵살하고, 소모성 일색의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운영본부는 특히 올해 축제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신들의 인건비를 대폭 인상시켜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중략)

운영본부는 또 최근까지 소위원회 조차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축제진행상황을 나몰라라 방치한 채 외지에서 사적인 일에 매달려 있는 총감독의 인건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해 지탄을 받고 있다.

이는, 소위원회 회의에 위원을 검직하고 있는 실무진들만 참석, 사안마다 감독과의 전화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결론을 유보하는 등 축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회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운영본부는 특히,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컴퓨터를 구입해 사무환경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 냉장고의 경우는 짧은 기간 임대해 쓰면 되는데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용품 구입하겠다고 9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다. 추진위 소위의 예산 심의에 참여한 서〇 교수는 “물품구입비를 비롯한 통신비 회의비 등의 경상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하다”며 생산성 있는 예산으로 재분배할 것을 촉구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〇〇축제 엉망진창 시민혈세 ‘줄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소통뉴스는 지난 8월 24일자 『〇〇축제 엉망진창 시민혈세 ‘줄줄’』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개막준비가 한창인 ‘익산○○축제 2006’ 운영본부가 각종 예산을 중복 또는 과다편성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축제 운영본부 측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각각의 프로그램에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같은 예산편성안은 ○○축제추진위원회 소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의결 통과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6전북조정24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소통뉴스 : 『○○축제 광고물 특혜의혹 및 예산편성 관련 반론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학원이 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부실한 음식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악몽 같았던 필리핀 어학연수”』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14면)

내 용 : “오늘은 밥에서 개미가 나와 라면을 사 먹었어요.”

여름방학 중 필리핀 세부 막탄섬에서 열리는 영어캠프에 초등학교 3학년 딸(9)을 보냈던 이모(37·서울 서초구 서초동) 씨는 8월 초 딸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밥을 지을 때 쌀을 씻지 않아 개미가 무더기로 들어갔다는 것. 밥에서 세제 냄새까지 난다는 말에

이씨는 말을 잃었다.

같은 캠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딸을 보낸 이모(39·여·서울 서초구 잠원동) 씨는 “아이들끼리 술을 마시거나 남학생 여학생이 한데 섞여 잠을 자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며 무책임한 학생관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 캠프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20여 명은 현재 어학원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증거 자료를 모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준비 중이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필리핀 어학연수가 늘면서 일부 어학원이 준비 없이 영어 캠프를 진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필리핀이 어학 캠프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미국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데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

문제가 된 서울 양천구의 P어학원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4주 과정의 영어캠프 수강생을 모집했다. 당초 모집 인원은 40명이었지만 참가 인원은 모두 80명 선. (중략)

현재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어학원은 600여 곳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수

강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국에 등록한 어학원은 131곳, 일정 교육여건을 갖춰 필리핀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어학원은 74곳에 불과하다.

필리핀에 본사를 둔 P어학원은 이민국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본보가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입수한 등록 업체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필리핀 어학연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4일자 14면에 『“악몽 같았던 필리핀 어학연수”』라는 제목으로 여름 방학 중 필리핀 세부 막탄섬에서 열리는 영어캠프에서는 수강생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혼숙을 해도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어학원은 이민국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식사가 일부 부실하였으나 바로 시정하였고, 학생들이 술을 마시거나 혼숙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해당 어학원도 이민국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9월 4일자 14면 『“악몽 같았던 필리핀 어학연수”』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어학원이 이민국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민국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어학원측은 학생들이 술을 마시거나 혼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9월 22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과 ○○○○○어학원(대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기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울지방노동청이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집중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노동청 (청장 임 현 택)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겨레 :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노동부, 증거자

료 찾았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2일자 2면)

내 용 : 노동부가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여럿 확보해 집중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21일 “새로운 자료가 많이 확보돼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 쪽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노동부와 철도공사, 여승무원 등을 교차 취재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청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의 상당수는 공사가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작업과정 전반을 직접 지휘·감독한 정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2004년 3월 작성한 ‘케이티엑스 고속열차 여승무원(열차팀장) 업무프로세스’ 문건을 보면, 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역할을 승무원 관리감독으로 규정하고, 여승무원들은 열차팀장으로부터 업무를 분담 받고 지시사항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다. 열차팀장의 지휘·감독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청은 열차팀장이 직접 작성한 ‘여승무원 시정요구서’ (2005년 10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8월 22일자 2면에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노동부, 증거자료 찾았다』라는 제목으로

- “노동부가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여럿 확보해 집중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21일 ‘새로운 자료가 많이 확보돼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 쪽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노동부와 철도공사, 여승무원 등을 교차 취재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청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의 상당수는 공사가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작업과정 전반을 직접 지휘·감독한 정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열차팀장의 지휘·감독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청은 열차팀장이 직접 작성한 ‘여승무원 시정요구서’ (2005년 10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 “KTX 여승무원 측에 의하면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청에 불법파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여럿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현재 새로이 확보된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겨레〉가 철도공사, 여승무원 등을 교차 취재한 결과, KTX 여승무원 측에서 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작업과정 전반을 직접 지휘·감독한 정황들을 담고 있는 상당수의 자료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KTX 여승무원 측에 의하면 열차팀장의 지휘·감독과 관련해, 열차팀장이 직접 작성한 ‘여승무원 시정요구서’ (2005년 10월) 문건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경찰 간부인 신청인이 성인오락실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6.

처리결과 : 취 하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9월 4일 21:00)

내 용 : ▷앵커 :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과 오락실 업주가 서로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의혹을 말끔히 씻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 기 잡니다.

▷기자 : 공동투자자들끼리 내분을 벌인 바다이

보도내용

야기 가맹점입니다.

갈등이 증폭되면서 폭력배를 동원한 세싸움까지 벌어졌고 지난달 초,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상인 : “한 20일 넘게됐죠. 형사들이 왔다 갔다하기에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내부 조사한다고...”

▷기자 : 그런데 은평서의 한 강력팀장이, 소환 조사를 받은 해당 업주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경위급 간부가 한 성인오락실과 유착돼 있다는 실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포서는 본격적인 수사 대신 청문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다 서로 모른다는 양쪽의 진술을 듣고 보름만에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후략)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4일 「KBS9뉴스」 프로그램에서 ‘업히고 설켰나’ 제목으로 서울 마포 경찰서 경위급 간부가 한 성인오락실과 유착돼 있다는 실명 제보가 들어왔으며, 경찰서에서는 본격적인 수사 대신 자체 조사를 벌여 조사를 종결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제보는 실명이 아닌 익명이었고, 해당 경위급 간부는 성인오락실과 무관한 강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 자체감찰에서 업주측 통화내역까지 제출받아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유착사실이 전혀 없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50,000,000원



신청인 대학교 노조원들이 파업과정에서 보직 교수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6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대학교지부 (대표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6.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 반론)

보도내용

조선일보 : 『○○○대 폭력노조』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4일자 35면)

내 용 : 한국○○○대 노조 200명 조합원의 파업이 120일을 넘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파업 피곤증이 생겼다며 일주일 쉬고 하겠다고 일제히

휴가를 갔다고 한다. 세계 파업사에 오를 희극이다.

노조는 직원 인사 · 징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 종전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사 · 징계위는 학교 측 5명 노조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 주장대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면 노조의 허락 없인 직원 인사도, 징계도 불가능한 것이다. ○○○대 단체 협약엔 '예산상 이유로 노조원 임금을 현재보다 저하시킬 수 없다(69조)' 같은 황당한 내용도 있다. 이 나라 노조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단체협약을 신임총장이 개정하려 하자 노조가 파업을 벌였다. (중략)

노조원들은 특하면 행정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횡포도 부린다. 어떤 여직원은 “누구는 60바늘 꿰맸다는데 80바늘 꿰매게 해줄까 보다”라는 폭언까지 들었다고 한다. 이런 행패를 막으려다 기획조정처

장·총무처장·교무처장·산학협력단장이 폭행을 당했다. 학생들이 파업 좀 그만하라고 성명서 내고 서명운동 벌이다 못해 노조 사무실 문에 못질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4일자 35면에서 『○○○대 폭력 노조』라는 제목으로 한국○○○대학교 직원노동조합 200여 명의 파업에 대한 보도 중 직원 인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 이기 때문에 노조의 허락 없이 직원의 인사, 징계가 불가능하다. 단체협약을 신임총장이 개정하려 하자 노조가 파업을 벌였다. 노조원들의 행패를 막으려다 보직교수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한국○○○대학교의 직원 인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이므로 노조가 실질적 인사, 징계권을 가진 사실이 없으며,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수 취지가 '인사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임이 밝혀졌고, 노조의 파업은 학교당국의 단체협약 위반(부당인사 및 부당해고), 단체협약 해지통보, 노조원에 대한 노조탈퇴 중용협박 및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맞선 합법적 쟁의행위이며, 일부 보직교수들의 노조원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은 양측의 충돌로 발전해 쌍방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지 지난 8월 4일자 한국○○○대 노조 파업관련 사설에서, “직원 인사·징계위의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 이라서 노조 허락 없이 직원의 인사 징계가 불가능한데 이를 신임 총장이 개정하려 하자 노조가 파업을 벌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임이 밝혀졌고 한국○○○대 노조 측은, 의사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인 것은 특정인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고 노조파업은 학교 측의 일방적 인사 및 해고, 단체협약 해지통보 및 단체교섭거부, 노조원의 탈퇴중용 등에 맞서기 위한 것이며 파업 중 폭행 문제는 노사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한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선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조정합의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2호)로 하여 2006년 9월 2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언론중재위 조정 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부산해경이 무허가 수상레저업자들의 불법영업을 목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해양경찰청 (청장 권 동 욱)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국제신문 : 『무허 제트스키 ‘해상 무법자’』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7일자 6면)

내 용 : 성수기를 맞아 피서객들로 붐비는 해수욕장에 일부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동호인과 무허가 업자들이 해변을 드나들며 질주,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수상오토바이족의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해양경찰은 ‘동호회 활동의 일환일 뿐 불법행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수영구청과 119수상구조대는 6일 해수욕장 내 해변에서 100m 안쪽은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수상오토바이를 탄 남자들이 해변까지 들어와 해수욕 중인 여성들을 유혹하거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수상오토바이를 탄 남자들이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뒤 납치해갔다는 신고가 바다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 이후 1시간가량 뒤에 일행에게서 되돌아온 해당 여성들이 성추행과 납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수상오토바이족들이 무단으로 해변까지 들어온 게 확인됐다.

해운대구청은 이들 수상오토바이족이 해수욕 성수기인 이달 들어 모습을 나타냈으며 평일에는 오후 3~4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청과 119수상구조대는 최근 해수욕객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을 단속해줄 것을 부산해경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경은 단속을 외면한 채 오히려 해운대구청 측에 수상오토바이족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해변에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전사고와 불법영업을 우려한 구청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수상오토바이의 해상길 개설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해상통로가 동쪽 끝에 마련돼 있다.

특히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일부 수상레저동력기구 업자들이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진이 6일 오후 확인한 결과 여러 업체 측에서 수상오토바이는 한 번 타는 데 1만 5,000원, 마나나보트와 땅콩보트는 1만 원을 받고 피서객들을 유치하고 있었다. 현재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는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 내 각각 1곳에 불

과하다.

단속업무를 맡은 해경은 이들이 동호회 활동이라고 주장,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허가업체 여부에 대한 간단한 문의전화와 현장확인만 거치더라도 수상오토바이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는 게 119수상구조대와 해운대구청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해경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탄 남자들은 동백섬 방향에서 자주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뤄 광안리해수욕장이나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이들이 출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수욕객 안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무허 제트스키 ‘해상 무법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8월 7일자 6면에 『무허 제트스키 ‘해상 무법자’』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피서객들로 붐비는 해수욕장에 수상오토바이 동호인과 무허가 업자들이 해변을 드나들며 질주해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해양경찰은 안전관리에 소극적이고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양경찰은 하계 피서철 3개월간(6. 1.~8. 31.) 불법수상오토바이 및 무허가 수상레저영업행위를 집중단속 했으며, 이 기간동안 수상오토바이족의 여성납치 및 성추행사건과 수상레저동력기구 업자의 무허가 영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8월 7일자 6면 『무허 제트스키 ‘해상 무법자’』 제하의 기사에서 해양경찰이 부산지역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소극적이고, 무허가 제트스키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은 하계 피서철 동안 불법수상 오토바이 및 수상 레저 영업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 했으며, 무허가 수상레저 업자와 유착 의

혹이 있다는 기사 제목은 과도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제신문에 2006. 9. 22.까지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제신문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노컷뉴스 : 『차량정보 4천건 유출하고 향응 받아』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4일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모시청 직원 김모(41)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자에게 서울과 수도권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자료 3천 9백여 건을 제공해 주고 1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공영주차장 업주들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시청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주차요금 납부 통지서’를 만들어 차주들에게 발송해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9월 4일자 사회면에 『차량정보 4천건 유출하고 향응 받아』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모시청 직원 김모 씨 등 11명이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업자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개인신상정보를 유출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고양시 소속 김○○ 씨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고양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수탁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 및 미출차한 차량의 차적조회를 의뢰받고 공무수탁사인인 노상주차장 관리자에게 차적조회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이는 고양시의 세외수입 증대와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公衆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일산경찰서의 조사 과정에서도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0일자 지역면)

내 용 : 본보 2006년 9월 4일자 『차량정보 4천건 유출하고 향응 받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고양시 소속 41살 김모 씨는 공무수탁사인 노상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등록원부를 제공해 준 것은 업무 협조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어떤 향응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의 예산 집행을 신청인이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형 준

피신청인 : 부산KBS-1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부산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9월 4일 21:00)

내 용 : ▷앵커 : 게임관련협회로부터 억대의 협찬금을 받고, 부산시도 3억 원이나 지원한 부산 국제디지털문화축제는 사실상 박형준 의원 측과 서울의 특정이벤트사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정황이 열린우리당의 진상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양○○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달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제2회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박형준 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총집행액은 모두 9억 2천7백만 원, 이 돈 가운데는 오락실 상품권 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협회로부터 협찬받은 1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자 박형준 의원은 축제의 조직위와 집행위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의원(기자회견) : 모두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 협찬 이런 것은 사무국과 트라이앵글, 특히 트라이앵글이 주관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 하지만 열린우리당 조사단의 확인 결과 디지털축제 조직위원회는 서울의 주식회사 ○○ 이벤트사와 박형준 의원 측이 사실상 주도했고 조직위 부산지사는 박형준 의원 사무실로 밝혀졌습니다.

(중략)

▷기자 : 결국 박형준 의원의 기자회견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디지털축제에 부산시도 거금 3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오락실 관련업체와 굴지의 대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시 측도 잘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9월 4일 「KBS뉴스9」 프로그램 '예산집행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박형준 의원의 기자회견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오락실 관련업체와 굴지의 대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예산집행의혹 책임을 축제의 조직위와 집행위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박형준 의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는 2005년 6월 28일 인가·설립된 부산시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금년 행사대행업체인 '트라이앵글(주)'가 자체적으로 하며 그 재정출납은 법인 단위에서 부산시의 보고 및 감사를 받는 등 박형준 의원은 재정문제에 관한 한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부산KBS-1TV : 「KBS뉴스」 프로그램 (2006년 9월 12일 07:30)

내 용 :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지난달 14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한 'KBS 부산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박형준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진상조사단 조사내용을 근거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제예산 집행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부산 뉴스는 지난 4일, 게임 관련협회 협찬금 1억 원과 부

산시민의 혈세 3억 원 등 모두 9억 원이 넘는 축제 예산을 서울의 특정 이벤트사와 박형준 의원 측이 주도적으로 집행했고, 그 과정에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열린우리당의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계획에 따라 신청인 사업단이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단장 박 경 서)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8.

처리결과 : 합 의

설종합계획의 주체인 국방부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현재 한·미 양국은 평택 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 작성 총 4단계 중 3단계인 중간MP(Pre-Final Master Plan)를 작성, 검토중에 있으며, 한·미간의 협상속에 정상적으로 시설계획을 작성중에 있고,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평택 미군기지 시설 규모에 지극히 부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 『美軍, 평택 시설계획 전면 보류』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일자 1면)

내 용 : 주한미군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정부에 이양기로 결정함에 따라,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분간 마스터플랜 논의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9월 1일자 1면 『미군, 평택 시설계획 전면 보류』 제목의 기사에서 ‘주한미군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정부에 이양기로 결정함에 따라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분간 마스터플랜 논의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평택 시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9월 1일자 1면 『미군, 평택 시설계획 전면 보류』 제하의 기사와 관련 ‘평택 시설종합계획’의 주체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현재 한·미 양국은 평택 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 작성 총 4단계 중 3단계인 중간MP(Pre-Final Master Plan)를 작성중에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평택 미군기지 시설 규모에 지극히 부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면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2006년 9월 19일까지(토요일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통상적으로 <조선일보> 2면에 게재하는 ‘밝혀왔습니다’ 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5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교회가 이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49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교회 (담당목사 유 ○ ○)

피신청인 : 기독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기독교신문 : 『끝나지 않은 이단과의 전쟁』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3일자)

내 용 : 총회는 지난 해 두 공동체 합동 내지는 가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겪었다. 한 공동체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한 집단은 동기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거부하였다. (중략)

예 총회는 그 집단을 거부했는가? 그들은 그동안 우리 총회에 진입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총회의 유력인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집회에 강사로 세웠고, 그들의 지도자를 우리 신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 총회의 여론은 그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대세였다.

그 첫째 이유는 그 집단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의 사상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 저만치 탈선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교단의 정서나 의식은 그들의 변화를 용납할 수준이 아니었다. 물론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이질적인 궤변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성숙한 모습을 감지할 수 없었고 더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한다는 게 다수의 목소리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회개하거나 고친 과거의 흔적이 없다. 다만 완강하고 줄기차게 그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부정할 뿐이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서 널리 형제로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은 남아 있다. 그 증거로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그들을 단 한 번도 공격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 다만 그들이 우리 총회에 진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모아서 토론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둘째는 총회 진입에 실패한 후의 그 집단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지난 총회때 이 문제로 회의장 안에서는 총대들이, 밖에서는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안팎으로 힘을 모아 그들을 거부했다. 그들은 그 이후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총신에 있는 교수를 고발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형사 및 민사로 고발했다. 그뿐만 아니다. 총회의 게시판에 들어와 떠들어 대는 그들에게 대항한 의로운 젊은 목사의 아이디어를 추적, 형사 고발하여 일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명예 훼손 소송을 두 건이나 진행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5월 23일 『끝나지 않은 이단과의 전쟁』 제하로 게재된 김○○ 목사의 글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인 ○○○○교회나 설립자 박○○ 목사에게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내용이 있어 진실규명 차원에서 부득이 반론을 게재합니다.

첫째, 필자는 총회에서 합동을 이룬 개혁신교단에 대해서는 ‘공동체’라고 지칭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설립자에 대해서는 ‘집단’, ‘집단의 창

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장로교의 신앙과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교회를 모욕하였으며, 둘째로 ○○○○교회 측이 총회에 진입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합동교단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조건을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했을 뿐이며, 이후 노회와 교단적 차원에서 ○○○○교회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필자는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그들을 단 한번도 공격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자기모순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넷째로 ○○○○교회가 총회가입 실패로 인한 분풀이로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총신에 있는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총회전에 고소를 당한 것이며, 학생들을 고소한 이유는 참기 힘든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총회현

장에 게시하였기에 그들을 계도하고자 한 것이었고, 필자가 언급한 ‘총회 게시판에 들어와 떠들어대는 그들에게 대항한 의로운 젊은 목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교회를 비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신에 있는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1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학생 또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교회가 이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회 (담당목사 유 ○ ○)
피신청인 : 기독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기독교신문 : 『본질을 바꿀수는 없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6일자)

내 용 : (전략) 2005년 9월 제9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기 총회를 마친 이후 ○○○○교회 측은 교단 영입 반대를 외친 학생들과 교수를 법적으로 고발하고, 또 최근에 총신대학교 총장과 신학대학원 교수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교회 측에 권면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성숙한 모임이라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거두기를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교단의 신학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우리 교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자체 결정에 대하여 ○○○○교회는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교회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학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하여 우리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진심으로 있다면, 총신대학교 신학교수들이 연구하고 지적한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교회 앞에서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기독교신문은 지난 8월 16일자 ‘열린광장’란의 기고를 통해 이○○ 목사가 ○○○○교회에 대한 주장 내용들에 대해 ○○○○교회는 다음과 같이 반론해

왔습니다.

필자는 본 교회에 대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할 것과 교단의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하고, 아울러 “총신대학교 신학교수들이 연구하고 지적인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 교회는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대 교수들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총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불법이며, 그 내용 역시 법원에 의해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불법적인 자료를 그대로 베껴다시 퍼한 것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과 달리 총신대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는 신학적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불법과 부당한 왜곡을 자행한 교수들이야말로 자신들의 불법성을 고백하고, 교회 앞에 사죄해야 하며, 정상적인 절차와 자격조건을 구비하여 가입한 교회에 대해 ‘가입취소’라는 결정을 한 합동교단의 자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교회가 총신대 교수를 상대로 190억 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회 (담임목사 유 ○ ○)

피신청인 : 기독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8.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기독교신문 : 『이단 연구작업에 ‘죽쇄’ 총회차원 ‘보호망’ 시급』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1면)

내 용 : ○○○○교회측 교수 19명 상대 190억 소송 “신학자 역사적 의무 지켜야...긴급대책 필요”

(중략) 2005년 6월 7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회가 설악산에서 열렸다 한 안건이 초저녁부터 자정이 다가올 무렵까지 교수들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박○○ 씨로 대표되는 ○○○○교회(당회장 유○○·옛○○교회)가 서북노회를 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을 교단의 신학 교수로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대의와 원칙에는 이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를 어떻게 표명할지를 두고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그 자리에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히 대처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했었다. 그렇지만 결국 교수회는 총회 기관지 기독교신문에 ‘박○○ 씨에 대한 연구 보고’를 제목으로 박씨의 신학사상에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단가입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다음날 이 성명은 기독교신문에 광고로 실렸다.

그리고 이후 열린 그해 9월 제90회 총회는 이들 신대원 교수들의 신학 연구 보고서를 그대로 총회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 교회의 ‘신학 선생’ 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본연의 임무’를 총회가 인정한 것이며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를 총회의 권위 있는 문서로 채택한 것이었다.

그런데 처음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교회(대표자 당회장 유○○)와 박○○ 씨가 지난해 6월 7일 당시 교수회에 있었던 신대원 교수 18명과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와 도서배포금지가 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피소된 이들 18명은 당시 안식년으로 교수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교수들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수들을 제외한 신대원 교수 전원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지난 9월 6일 보도된 『이단 연구작업에 '족쇄' 총회차원 '보호망' 시급』이라는 기사에서 '신대원 교수들의 신학연구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교회의 '신학선생' 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본연의 임무'를 총회가 인정한 것이며"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총신 교수들이 교회의 '신학선생'이라거나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임의적인 연구보고서 작성과 개입이 '본연의 임무'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총신대학교는 합동 교단의 '직영신학교'로서 총회의 지도를 받는 신학교이며, 신학교 교수 또한 총회의 강도사 인준과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19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피소되어 있다는 기사 또한 사실 손해배상 총 액수가 10억 원 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교회 관련 정정보도
- 본 문 : 본지는 지난 9월 6일자 ○○○○교회 관련 기사에서 ○○○○교회가 총신대 교수들을 상대로 19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교수 19명을 상대로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기독교신문 9월 27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재목 '교수 피소...' 활자와 동일한 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독교신문 : 『○○○○교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통일부가 음주운전 사고 경력이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국장으로 임용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통일부 (장관 이 종 석)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똑같은 음주사고... 그때 그때 다른

인사』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30일자 1면)

내 용 : 음주운전 사고로 면직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넉 달 만에 정부부처 국장급으로 임용을 앞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반면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안보정책 비서관 임용에 탈락한 뒤 신설된 비선호 직책을 맡아 근무 중이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 기준이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동권 출신의 전 민화협 간부=통일부는 최근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기획관에 전 청와대 안

보정책수석실 김○○ 행정관(3급)을 임용키로 결정했다. (중략)

한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일부의 다른 개방직 임용처럼 당연히 내부 출신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어 이상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이종석 장관이 NSC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점을 들어 이 장관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게 아니면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민간 심사위원까지 참여해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 『임용심사 자료서 음주사고 났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31일자 1면)

고위 공직자 임용·승진 시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준을 알고도 통일부가 김○○(42)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국장급 임용 심사를 할 때 음주운전 사실을 심사 자료에서 뺀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김 전 행정관은 4월 15일 음주운전 중 교통 사고를 내 택시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심사위에서 음주운전 사실 논의 안 됐다”= 통일부 박○○ 혁신재정기획본부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특정 정보를 얘기하면 심사에 지장을 줄까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략)

통일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엄격한 인사기준을 알았으면 당연히 음주운전 사실을 심사자료에 포함시켰어야 했다”며 “다른 기관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과거 개방직 임용 때와 달리 통일부 내부 출신의 경합자가 없었던 데 대해서도 “사실상 김 전 행정관을 내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30일자 1면에 『똑같은 음주사고… 그때 그때 다른 인사』 제하 기사에서 “통일

부는 최근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기관에 전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김○○ 행정관(3급)을 임용키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김씨가 이종석 장관이 NSC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점을 들어 이 장관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 씨를 임용키로 통일이부가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종석 장관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지는 8월 31일자 1면에 『임용심사 자료서 음주사고 났다』 제하 기사에서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을 알고도 통일부가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국장급 임용 심사를 할 때 음주운전 사실을 심사 자료에서 뺀 것으로 30일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통일부는 직무수행능력만을 평가하며, 음주운전경력 등은 통일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검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통일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장관 이 ○ ○

조정대리인 양 창 석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1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원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라.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14.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도록 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 희 상

피신청인 : 시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시민일보 : (1) 『문희상, 사법부 옥죄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8일자 종합면)

내 용 : 여권 실세가 자신의 정치적 맞수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개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지낸 문희상(의정부 갑)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고등법원 제10형사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내용은 자신의 정적인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돼 오는 2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7일 시민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서 문 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낙선자 및 선거참여자의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호지부지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홍 전 의원에게 ‘정당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이 홍 전 의원에게 중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의원은 당의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8월에도 2심 재판부에, 20여 장에 걸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피고인 홍문종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 의원의 바람처럼 2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원중 부장판사)는 홍 전 의원과 선거보좌관음 모(35)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특히 당시 홍 전 의원에게 25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던 2심 부장판사가 이후 대법관으로 영전(?)해 ‘보은인사’라는 의혹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문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두번째로, 고법선고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것이다. (중략)

문 의원은 또 여당 당의장 재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한 일간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같은 당 강성종(의정부 을) 의원으로부터 사건번호와 재판관·주심판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쪽지를 전달 받아 읽고 있는 문 의원의 모습을 보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한 손 안에 쥐어진 이 시대 사법부의 실상’이라는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권위도 원칙도 실종된 잇달아 나온 ‘80만 원짜리 선거법 위반 벌금’의 의문이 대중 짐작되는 한 장의 사진”이라면서 “문희상 의원의 한 손에 재판사건번호와 담당 판사이름이 적힌 쪽지가 쥐어지듯 지금 이 정권의 손에는 쥐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실제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지

난 4월 27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강성중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홍문중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는 17대 총선부터 갑과 을 두 선거구로 분구됐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홍 전 의원이 의정부 지역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 의원 구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던 것이다. (후략)

(2) 『선거가 끝났으니 惡緣도 끝내시지요』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8일자 오피니언면)

(전략) 집권당 당의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문 의원은 당의장 재임 중에도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당시 그는 장장 20여 장의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홍문중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엄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문 의장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인가.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비서 실장을 지낸 이후 집권당의 당 의장에까지 오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을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에 대해 문 의원측은 “의견서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의견반영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압력용 의견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9월 7일자 인터넷과 9월 8일자 종합면 『문화상, 사법부 옥죄기』, 오피니언면 『선거가 끝났으니, 惡緣도 끝내시지요』이라는 제목 하에 문화상 의원이 재판부에 개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홍문중 전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2심 부장판사가 이후 대법관으로 영전(?)해 ‘보은인사’라는 의혹과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법은 강성중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 본지는 문 의원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홍 전 의원이 의정부 지역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 의원 구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화상 의원은 합법적인 법률 절차에 따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에 그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인사에도 개입한 적이 없으며, 홍문중 전 의원의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강 의원 구제에 나선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문화상 의원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반론으로 보도할 수 있으나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1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대구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8.

처리결과 : 합의 (반론)
취 하 (정정·손배)

보도내용

대구신문 : 『“4살 딸애가 성적 괴롭힘 당했는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대구의 한 어린이집 여자원생이 같은 반 남자원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나 원생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4일 A(38)씨는 최근 4살난 딸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A양이 신체 일부에 물이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목욕을 하기 싫어 피병을 부리는 줄 알았던 A씨는 다음날 밤 잠에서 깬 딸이 불꺼진 방을 보며 “오빠가 껌껌한 화장실에서 만졌어”라면서 그자리에서 소변을 본 것을 보고서야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눈치 챘다.

이미 아이의 신체 중요부분은 퉁퉁 부어 있었다. A씨는 “딸 아이를 지난 7월부터 대구 동구 D어린이집에 보냈지만 담임 교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살 남자 원생이 호기심으로 딸아이가 소변 보는 것을 훑쳐보고 급기야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 아이가 상습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다.

원장 조모 씨는 “A양이 화장실에서 팬티를 올리지 못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6살짜리 남자원생이 도와주다 넘어져 중요 부위에 상처가 생긴 것으로 안다”며 “특히 A양은 평소 심한 아토피염을 앓아 신체 중요부위 주위를 손으로 자주 긁었었다”고 해명했다.

대구 동구청은 A씨가 이같은 내용을 알리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덮어 두려다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조사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 면하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9월 4일자 사회면 『“4살 딸애가 성적 괴롭힘 당했는데…”』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 동구 D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에 의해 4세 여아에 대한 ‘성적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관리 감독해야 할 어린이집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 사건은 6세아에 대한 화장실 지도 시간에 4세 여아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아동들간의 단순 몸싸움이었을 뿐 ‘성적 괴롭힘’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D 어린이집이 원생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대구신문은 지난 2006년 9월 4일자 사회면 『“4살 딸애가 성적 괴롭힘 당했는데…”』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 동구 D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에 의해 4세 여아에 대한 ‘성적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관리 감독해야 할 어린이집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이 사건은 6세아에 대한 화장실 지도 시간에 4세 여아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아동들간의 단순 몸싸움이었을 뿐 ‘상습적인’ ‘성적 괴롭힘’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어린이집 측은 “어린이집 내 화장실은 아이들이 원내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환하게 불이 켜져있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45명이나 되는 원생들이 항상 드나들기 때문에 ‘껌껌한 화장실’에서 ‘상습적인’ ‘성적 괴롭힘’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대구신문은 지난 2006년 9월 4일자 사회면 『“4살 딸애가 성적 괴롭힘 당했는데…”』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 동구 D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에 의해 4세 여아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어린이집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D어린이집 측은 “당시 이 사건을 쉬쉬한 것이 아니라 여자 아이 부모님하고 사건이 일어난 직후, 두 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한 결과, 여아에게 물어보니 ‘오빠가 만졌어’라고 대답했고 남아에게 물어보니 ‘화장실에서 기다리는데 안 비켜줘서 밀었어요’라고 하여 남아에게 주의를 주었다”며 사건발생 후 적절한 조치

를 취했으므로 ‘쉬쉬’ 운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구신문 사회면에 2006년 9월 20일까지 보도하되, 제목글자(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글자(어린이집 원장·구청 “증거없다”...은폐 의혹)와 같게 하고 본문글자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본문글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구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6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부천시가 발주한 공공건물 신축공사에 저질자재가 사용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천시 (시장 홍 건 표)
피신청인 : 부천자치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부천자치신문 : 『중2동 ‘책마루도서관’ 부설시공』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2일자 11면)
내 용 :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부천시가 발주한 공공건물 건축공사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시방서와 다른 저질자재를 사용, 공사업체들의 배를 불리며 예산이 낭비되어 온 것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자재 입고 시 당연히 거쳐야 할 자재 검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부당 행위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시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 위에 올라 문제가 커지고 있다. (중략)

포천석이 중국산 석재로 ‘둔갑’

그러나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외벽의 마감재인 석재가 당초 설계상 재료인 포천석이 아닌 저가의 중국산으로 둔갑돼 시공되고 있음이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시의원(중12동)에 의해 적발돼 부설시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중략)

또한 이와 함께 공사 시방서에 자재항목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포천석류/마천석류’라고만 두루 뭉실하게 표기한 후 건축심의를 통과 공사 실행 시에는 제품단가가 낮은 중국산 수입석을 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관급공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명 끝부분에 애매모호한 류(類)자를 붙여 표기한 후 품질이 낮은 저가인 중국산 수입석으로 사용한 것은 명확히 결재권자를 우롱한 불순한 의도가 내재된 불법 행정은 아니냐”며 “일반적으로 류(類)에 대한 해석은 해당 재료와 비슷한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계약서 등에 정확한 제품명

시가 당연한 것이며, 포천석류에 대해서는 국내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건설·건축전문분야에서 품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중국산을 포천석류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적문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용어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산은 철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m당 포천석이 2만 9,000원에 비해 중국산은 m당 약 1만 8,000원으로 약 1만 원의 원가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시공 후 6개월~1년 사이에 외부로 녹물에 배어 나오는 등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돼 건축업자들은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포천석 시공부분까지 중국산 시공

그러나 문제는 더 큰 곳에서 발견됐다. 실제로 현장에 입고된 석자재를 확인한 결과 당초 공사 시방서 내역에 명시된 전체 석공사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건물 외벽 마감재만이 중국산이 아니라 엄연히 포천석으로 명시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석재까지도 저가인 중국산으로 100% 사용하여 시공되고 있음이 드러나 총체적인 부실시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리감독 당사자인 부천시는 이러한 사실을 본지와외의 현장 동행과정에서 뒤늦게 확인, 관급공사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2006년 8월 10일, 2006년 8월 12일자 11면 『중2동 ‘책마루도서관’ 부실시공』 제하의 기사에서 부천시가 마감자재를 실제 계약서와는 품질이 다른 저가의 중국산 석재로 임의 변경 시공하여 부실시공 등이 우려된다는 부천시의회 이환희 의원의 의견을 중점 부각 보도하여 부천시가 고의로 부실시공을 유도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책마루도서관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 산출한 예상공사비는 약 27억 원으로 사업비를 약 4억 원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고가자재를 중심으로 삭감하면서 석공사 부분에서도 포천석 일부분을 수입석으로 교체 설계하기로 한 것이며, 수입석을 사용하기 위하여 석자재 품명은

화강석으로 규격을 포천석류로 표기하였으며, 이는 설계단가의 기준이 되는 정부공인 물가자료지에 따라 공통적으로 수입석은 류자를 붙여 포천석류라 표기하고 국내산은 포천석으로 구분 표기하는 것으로 설계내역서에도 중국산은 포천석류로 표기한바, 중국산 화강석 사용은 정당하며 임의로 중국산 석재로 둔갑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국내산 포천석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시에따라 m당 44,200원이나, 본 설계에 반영된 수입산 포천석류 공사 설계가격은 m당 32,200원으로 국내산으로는 시공이 불가한 금액이며, 더구나 시공사에 낙찰된 금액은 m당 27,933원으로 중국산으로 시공하더라도 시공사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석재에 필요한 품질은 표준시방서에 압축강도 60kg/cm² 이상, 흡수율 30%이하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반입된 자재의 시험성적서상 압축강도는 1,526kg/cm², 흡수율 0.39%이며, 일반 국내산 포천석 압축강도는 1,143kg/cm², 흡수율 30%로 중국산과 국내산의 품질을 비교한바 중국산 석재 품질이 국산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급속한 노후화가 우려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부천자치신문은 2006. 8. 10.자 『중2동 ‘책마루도서관’ 부실시공』과 관련한 후속보도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한다.

“부천시는 중2동 책마루도서관 외벽마감재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은 예산상의 제약 때문이었으며, 중국산 석재를 사용했다하여 건물이 하자가 있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부천자치신문 : 『“시정부, 의회 공동으로 석재비리 밝히자”』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4일자)

내 용 : 부천시 관계자는 “중국산 수입석을

시공했다하여 건축물이 부설시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국산 수입석이 옛날과는 다르게 현재는 일정 품질기준을 통해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중국산 수입석이라 해서 무조건 저 품질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중2동 책마루도서관 외장마감재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은 예산상의 제약 때문이었으며, 중국산 석재를 사용했다하여 건물이 하자가 있는 부설시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후략) □

부천시가 발주한 공공건물 신축공사에 저질자재가 사용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천시 (시장 홍 건 표)

피신청인 : 부천타임즈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8.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경기조정4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6경기조정45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부천타임즈 : 『부천시 관급공사 포천석이 중국산으로 둔갑 시공』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0일자)

내 용 : 〈2006경기조정45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부천타임즈 : 『이환희 시의원 중국산 석채사용 관급공사 ‘특별조사반 구성’ 요구』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6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한 업소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세청 (청장 전 군 표)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취 하

문화일보 : 『“단속공무원 오락실 덕 수입 좋다고 웃더라”』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5일자 3면)

내 용 :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다. 영화에 나온 그대로 투갑스였다.”(성인오락실 업자) “성인 오락실 때문에 개국 이래 가장 수입이 좋다.”(단속 경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사회적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공무원-업주 간 ‘유착·공

보도내용

생관계'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당국의 단속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몰린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뇌물 등 공무원 비리를 역으로 낱알이 밝히고 있다. (중략)

이씨는 세무서 공무원에게도 돈봉투를 건넨다고 말했다. 그는 “보름전에 세무서에서 서울시내 오락실 27곳을 선정해 매출 조사를 했다”며 “오락기 100대 이상 업소가 대상이었는데 사전에 로비한 업소들은 미리 알고 오락기를 99대로 맞춰 조사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세무서 공무원에게 평소엔 인사를 해 두면 세무조사에 걸릴 일이 없다”며 “오락실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돈봉투를 미리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가 지난 8월 25일자 3면 『“단속공무원 오락실 덕 수입 좋다고 웃더라”』 제하의 기사에서 ‘그는 “보름전에 세무서에서 서울시내 오락실 27곳을 선정해 매출 조사를 했다”며 “오락기 100대 이상 업소가 대상이었는데 사전에 로비한

업소들은 미리 알고 오락기를 99대로 맞춰 조사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히 오락기 대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종 과세자료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수집된 게임의 유명도, 게임장 소재 위치, 영업일수, 일일 영업시간 및 게임장 면적을 포함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출누락 혐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전국의 5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업소의 로비로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0일자 7면)

내 용 : 국세청은 문화일보 8월 25일자 3면 『“단속공무원 오락실 덕 수입 좋다고 웃더라”』 제목의 기사와 관련, “매출조사 대상이 된 성인오락실은 각종 과세자료 및 게임의 유명도, 게임장 위치, 영업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출누락 혐의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자이며, 업소의 로비로 조사 대상이 자의적으로 바뀔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을 집단폭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종합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1)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8월 23일 07:30)

내 용 : ▷앵커 : 전기안전공사 감사원 2명이 안전에 하자가 있는 전력설비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자 시공업체 직원들이 감사원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안전을 경시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의 결과입니다.

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전기안전공사 감사원 2명이 공장에 새

로 설치된 변압기를 검사하다 시공업체 직원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불합격 처리를 내린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리) : “저를 넘어 뜨리고 발로 밟고 했어요. 도망갔는데도 뒤쫓아와 또 때리고”

▷기자 : 검사결과 변압기와 연결돼 있는 접지 시설이 잘못 설치돼 접지 저항도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시공업체는 불합격 판정이 내려질 때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략)

(2) 「KBS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2006년 8월 23일 19:00)

〈보도내용(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8월 23일 「KBS뉴스광장」, 「KBS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전기 안전 불합격 판정에 보복 폭행’ 제하로 전력설비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공업체 직원들이 전기안전공사 검사원을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자가 접지 저항 값 측정을 전기설비와 무관한 타인 소유의 장소에서 실시하자, 수전실 설치업체와 시공업체 직원 등이 재측정을 요구하였고, 검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해당 시공업체는 집단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사실은 더더욱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8월 23일 KBS-1TV 「KBS뉴스광장」 및 「KBS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전기 안전 불합격 판정에 시공업체직원들이 검사원을 폭행했다고 보도한 데 대하여 시공업체에서는 전기안전공사 직원에게 적정한 지점에 재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로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10월 7일까지 KBS-1TV 시청자 ombudsman프로그램 중에 위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되, 화면 하단에 제목 및 위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지나가는 자막으로 처리(스크롤)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TV비평 시청자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9월 30일 1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경기일보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들 적발』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4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경기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0일자 5면)
내 용 : 본보 6일자 4면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11명 입건’ 제하의 기사와 관련 고양시 소속 김모
씨는 공무수탁사인 노상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등록
원부를 제공해 준 것은 업무 협조차원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김씨는 항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동아일보 : 『‘박○○ 로비 의혹’ 이번엔 밝혀질까』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A12면)
내 용 : 재계는 물론 정·관계 인사들과 교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제2금융권의 마당발’ 박○○
(51) 씨가 검찰에 전격 구속되면서 박씨가 관계한
여러 사건으로 불뚝이 튀고 있다.

서울중앙지급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5일 전
굿모닝시티 회장 윤○○ 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
고 자신이 팔 권한도 없는 상가를 넘겨주겠다고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로 박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분양 사기 혐의로 실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씨는 2002년 당시 법정관리중이던 H건설의 인
수 자금을 구하던 윤씨에게 H건설 소유 상가 11곳
을 재개발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50%(400억
원 상당)를 받기로 하고 J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윤
씨가 200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
고 있다. (중략)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한두 건이 아니
다.

먼저 박씨는 윤씨의 H건설 인수 자금을 끌어다
준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2003년 1월에는 H건설 상가 9곳을 넘겨주겠다고
사업가 정모 씨에게서 228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
고 있다.

최근 약 1,300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새로
운 ○○’ 대표 권○○(43) 씨와의 관계도 수사 대상
이다. 검찰은 박씨가 권씨에게 B상호저축은행 등
을 통해 20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
로 50억 원과 경기 성남시 제1공단 복합단지 개발

권 45%를 넘겨 받은 부분을 집중조사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성남 제1공단 부지의 용도 변경 및 개발 인허가 과정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4월 박씨가 J상호저축은행을 165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계약금 55억 원만 지급한 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사금고처럼 이용한 과정 역시 수사 대상이다.

박씨는 또 다른 상호저축은행 대출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동아일보는 지난 9월 6일자 A12면에서 『‘박○○ 로비 의혹’ 이번엔 밝혀질까』라는 제목으로 박○○이 이른바 ‘이용호게이트’나 ‘굿모닝시티’ 등 대형 비리사건의 배후인데도 그동안 형사처벌을 피해왔고, 굿모닝시티 윤○○ 씨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양도 권한이 없는 상가를 팔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거물 금융브로커”가 아니며,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엄청난 ‘로비’를 하였다거나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굿모닝시티 대표 윤○○ 씨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양도 권한이 없는 상가를 팔겠다고 속인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윤씨로부터 H 소유 상가 개발 이익금의 50%인 40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억여 원의 은행대출을 알선해 주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상가 매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윤씨가 박○○에게 200억을 투자하면 400억을 남길 수 있다며 동업을 제의해 와, 박씨 본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이지 윤씨에게 대출을 알선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와 관련해 피해만 보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2003년 정모 씨에게 임의 매도할 수 없는 H 상가 9곳의 인수권을 수익계약 방식으로 양도해 주겠다고 속여 매각 계약을 체결해 그로부터 228

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횡령 혐의로 구속된 건설사 대표 권모(43) 씨에게 2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그 대가로 수익 원의 커미션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조정대리인 안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별지 기재 보도문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1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금융권 마당발...)활자크기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8.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6일자 A12면 『‘박○○ 로비 의혹’ 이번엔 밝혀질까』 보도와 관련해 박씨는 굿모닝시티 대표 윤○○ 씨에게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양도권한이 없는 상가를 넘겨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윤씨의 동업 제의로 200억 원을 투자했으나 피해만 봤다고 밝혀왔습니다. 박씨는 2003년 정모 씨에게 상가양도 대가를 받거나, 건설사 대표 권모 씨에게 대출알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은 금융브로커가 아니며 정·관계에 로비를 한 사실도 없고 이용호게이트나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년 9월 5일자 8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문화일보 : 『브로커 박○○ 구속』 제하의 기사 (2006

결 정 문

<2006서울조정356의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합 의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9월 6일자 『‘굿모닝시티’ 부실
수사 의혹』이란 기사에서, ‘이용호게이트’나 ‘굿모
닝시티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박○○ 씨의 구
속에 대해 보도했으나, 박씨는 거물 금융브로커가
아니고 정·관계 로비를 한 적도 없으며, 굿모닝시
티 대표 윤씨로부터 대출알선대가로 상가권리 50%
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
이며, 정모 씨를 속여 230억 원을 챙겼다거나 권
모 씨로부터 불법대출알선대가로 개발사업권의
45%를 받았다거나 용도변경 등을 위한 로비를 하
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다투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서울신문 2면 우측 하
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
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9월 29일(토요일, 공휴일

보도내용

서울신문 : 『‘굿모닝시티’ 부실수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10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제외)까지 게재한다.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9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5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합 의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9월 6일자 기사에서 ‘이용호게이트’나 ‘굿모닝시티 사건’의 개입의혹을 받았던 박○○ 씨의 구속에 대해 보도했으나, 박씨는 거물 금융브로커로 대형사건에 개입한 바 없고, 굿모닝시티 대표 윤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상가권리 50%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이고, 상가매매 사기를 했다거나 권모 씨로부터 대출알선대가로 부지개발사업권 일부를 받았다고나 용도변경을 위한 정·관계 로비에 연관되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세계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9월 29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보도내용

세계일보 : 『거물금융브로커 박○○ 씨 구속 후폭풍』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7일자 2면)

합의사항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거물금융브로커 박○○ 씨 구속』 제
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A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2) 『천안지역 230억 대출에도 개입』 제하의 기
사 (2006년 9월 6일자 A10면)

<2006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9월 5일자 『거물금융브로커 박○
○ 씨 구속』이라는 기사와 『천안지역 230억 대출에

도 개입』이라는 기사에서, ‘이용호게이트’나 ‘굿
모닝시티 사건’의 배후의혹을 받았던 박씨에 대해
보도했으나, 박씨는 대형비리사건의 배후가 아니
고 거물 금융브로커로 정·관계 로비를 한 적도
없으며, 굿모닝시티 윤○○ 씨에게 대출을 알선하
고 커미션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출
받아 투자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모 씨의 돈을
가로챌 바 없고, 권모 씨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50
억 원 이상을 받았거나 천안지역 저축은행들의
대출에 개입되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
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선일보 2면 우측 하
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
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9월 29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금융브로커 박○○ 씨 구속』 제하의 기
사 (2006년 9월 6일자 10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9월 6일자 10면 『금융브로커 박○○ 씨
구속』 제하의 기사와 관련, 박씨 본인은 금융브
로커가 아니며 이용호게이트와 굿모닝시티분양
사기사건의 배후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
습니다. 또 굿모닝시티 윤○○ 대표의 ○○상가

인수 및 대출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정 모 씨에게 양도권한이 없는 상가를 팔겠다고 속인 적도 없으며, H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권OO 씨에게 대출 사례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중앙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9월 29일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O O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뉴시스 : 『굿모닝시티 200억 대출, ‘금융브로커’ 박OO씨 구속』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박OO 씨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뉴시스 지난 9월 5일자 『굿모닝시티 200억 대출, ‘금융브로커’ 박OO씨 구속』제하의 기

사와 관련하여, 박OO 씨는 본인은 거물금융브로커가 아니며 ‘이용호게이트’나 ‘굿모닝시티’사건의 배후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씨는 굿모닝시티 윤OO 씨가 OO상가에 대한 동업계약을 제의해와 200억 원을 투자한 것일 뿐 윤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03년 정 모 씨에게 양도권한이 없는 상가를 팔겠다고 속인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OO상호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건설사 대표 권모 씨에게 2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억 원의 커미션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02년 말 S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윤OO 씨에게 5억 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9월 25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동안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뉴시스>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시스 : 『박OO 씨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5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금융브로커’ 박○○씨 거액 사기 구속』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연합뉴스 : 『박○○씨 ‘거액사기’ 구속기소』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5일자)

내 용 : (전략) 이에 대해 박씨는 “윤씨에게 대
출을 알선해 준 것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자신의
돈과 저축은행 대출금을 윤씨에게 투자한 것이고
알선 대가는 커녕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만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상가매매 사기 혐의에 대해 “정씨와 상
가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으로 230억 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상가 전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윤씨가 모두 가져가 사용한 것이므로 본인이 가로
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구속 당시 자신이 거물급 금융브로커로
보도된 점 등에 대해 “폭넓은 정관계 인맥을 바탕
으로 엄청난 로비를 했거나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건설사 대표 권모 씨로부
터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의 인허가 과정에서 로
비를 해 주고 개발사업권 45%를 넘겨받기로 했다
는 점도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미 “손해볼것 없다” 속전속결 손떼기』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8일자 3면)

내 용 :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에서 하루라도 빨리 손을
떼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듯하다.

각종 첨단 전력 보강을 비롯해 한국군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2012
년 이전에는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힘
들고 또 환수하더라도 제대로 행사하기 곤란하
다는 사실을 잘 아는 미국이 ‘2009년안’을 고집하
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론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경기 평택시
이전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시기를 고려하고

한국군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게 미국 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시작전권을 가능한 빨리 한국군에 넘겨주는 게 미국에 유·무형의 실익을 가져다 준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다. (중략)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40% 이하에서 50%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전시작전권을 가져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에 걸맞게 비용도 많이 부담하라는 게 미국 측의 논리라는 것.

럼즈펠드 장관은 윤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를 '공정한(equitable)수준의 방위비 분담'으로 표현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중략)

국방부는 다음 달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와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 미국을 설득해 '2012년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전력 보강과 군 조직 개편을 통해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2009년은 너무 이르기 때문.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국방부 입장
• 내 용 : 본지 8월 28일자 3면의 『미 “손해볼것 없다” 속전속결 손떼기』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한·미 양국이 9월 말 예정된 SPI와 10월 SCM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실제 서한에 방위비 분담에 대한 'equitable(공정한)'이라는 용어는 주한미군의 주 목적이 한국방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미측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지휘관계의 협의와 관련한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비율이 몇%인가는 미측의 개념이며, 우리는 참고자료로서 청취는 하고 있지만 논쟁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1) 『윤국방 편지에 대한 답신』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8일자 1면)

내 용 :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2009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통고 서한은 윤광웅 국방장관이 지난 7월 한·미보안정책구상회의(SPI) 후 한국측 입장을 담은 서한을 먼저 보낸 것에 대한

답신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럼즈펠드 장관이 일방통고식으로 서한을 보내온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국방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측이 작통권 환수 시기를 성급하게 거론하다 '방위비 공평분담 요구'라는 '혹'까지 붙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후략)

(2) 『'자주'의 대가는 천문학적 '자금'』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8일자 6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서신 교환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뚝은 '돈 문제(방위비 분담)'로 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서신만 보고 작통권 환수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널

드 럽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신을 통해 밝힌 ‘공평한 분담(equitable share)’에 대해서도 “단순히 수치상 5:5로 내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경제 능력에 맞게 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미국이 결국 ‘작통권 환수’에서 한국측의 의견을 들어주는 대신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키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당분간 스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략)

(3) 『‘명품 환수’의 허영』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8일자 30면)

현실적 상황에 대한 냉정한 자기 판단이 결여된 소유욕이나 과시욕, 이것이 허영심이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계획에 대해 허영심의 발로라는 비판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이유도 안보 현실의 합리적 진단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의 실현’, ‘군사주권의 회복’ 등 허허로운 치적 쌓기식 구호만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의 당위성으로 강조되는 인상이다.

전시 작통권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은 국가주권의 꽃이라는 현 정부의 1차 방정식은 국민적 이상이 감성을 겨냥하고 있다. 단독행사라는 객관적 표현을 제쳐두고 빼앗긴 물건을 되찾는다는 의미의 ‘환수’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자체가 적잖이 자극적이다. 국토분단과 무력대치 상황, 역사적 배경 등은 무시한 채 전 전시 작통권이 없는 지구상의 유일 국가가 한국이라는 식으로 국민적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한다.

미·일 군사동맹의 경우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병립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작통권을 보유한 ‘불평등한’ 한·미 군사협력체제와 단순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 작통권이 기실은 군 통수권자인 양

국 대통령과 합동참모의장의 지휘·지침을 받아 행사되는 ‘공동소유 형태’임은 굳이 외면한다. 한미연합사체제가 군사 협력관계의 세계적인 모델케이스라는 평가는 도외시킨 채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육군 대장이라는 외형만 부각시킬 뿐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한국도 이제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서 ‘자주국방이라는 명품’을 소유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강조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국방개혁안 등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 제시도 빼놓지 않는다. 그러나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정밀타격 등 제반 분야의 대북억지력 구축에 드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국방부 입장
- 내 용 : 본지 8월 28일자 1면의 『윤국방 편지에 대한 답신』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국방부는 “럼즈펠드 장관이 일방통고식으로 서한을 보내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교서한인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6면에 보도된 『‘자주’의 대가는 천문학적 ‘자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소요비용을 별도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국방개혁 2020’ 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밝히고,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명품 환수’의 허영』이라는 논설위원의 칼럼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의 여건과 능력,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은 한반도 전쟁억제력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 재 부 : 서울제1종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6서울조정364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조선일보 : 『럼즈펠드 “2009년 작통권 이양” 통보』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8일자 1면)

<2006서울조정364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중앙일보 : 『“전작권 2009년 한국군에 이양”』 제하
의 기사 (2006년 8월 28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6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364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이번엔 워싱턴에서 김○○ 특파원입니다.

▷기자 : 미 행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외교 경로와 언론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는
입장은 걱정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 공방으로까지 번지는데 대
해 작지 않은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럼즈펠드 장관이 한 달 가까이 더 남은 실무 논
의를 제치고 직접 편지를 보낸 데에서 조기에 미
국의 최종 입장을 못박아 논란을 끝내자는 뜻이
읽혀집니다.

특히 이번 편지가 부시 대통령이 참석해서 작통
권 문제를 거론한 전군 야전지휘관회의 직후 이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보내졌다는게 관심
거리입니다.

작통권 이양 문제를 한국과의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보도내용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8월 27일
자 20:00)
내 용 : ▷앵커 : 작전통제권에 대한 양국의 실
무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왜 서둘러서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무엇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
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국방부 입장
- 내 용 : 지난 8월 27일 「SBS8뉴스」에서 럽즈펠

드 미 국방장관의 서한에 대해 “실무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럽즈펠드가 서둘러서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윤광웅 장관의 편지에 대한 답신의 성격으로서 보내온 것이며, 외교서한에 대해 일방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입원중인 동료 조합원 돕기 모금활동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전국버스노동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국버스노동자신문 : 『지부장이 이럴 수가!』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8일자 2면)
내 용 : 서부운수노조 이○○ 조합원이 지난 5월 3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운동을 하다 넘어져 전치 12주의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입원중인데, 작년에는 노모가 중풍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1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치료를 받고 있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를 돕기 위해 동료 82명이 311만원의 모금을 하였다.

조합원들이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이 모금과정에서 서부운수 노조지부 지부장이 모금 서명인 명부를 두 번이나 치웠는데, 이러한 고초를 겪어 가며 일주일 동안 90여 명의 부조금 서명을 받아 놓은 것이 이번에는 순간에 통째로 없어져 다시 서명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박○○ 노조 조직부장은 기사대기실에서 새로 모금서명을 받던, 이○○의 근무 교대자인 정○○ 조합원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리면서 모금을 방해했고, 이에 대해 지부장은 “노동조합에서 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모금활동에 대한 서명부는 치울 수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를 본 한 조합원은 “동료 간의 상호부조는 노

동조합의 본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하지 않으면 동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부장도 동료기사들의 모금 연명서를 치울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리고 조직부장의 폭언과 행패는 스스로 노동조합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노력 산하 노조집행부는 패륜아들의 집단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사에서도 2개월 이상은 안 된다던 이○○의 휴직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마당에,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도우려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이다”라고 격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진행한 조합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정○○ 지부장도 10만 원을 부조하여 82명의 동료기사들이 311만 원을 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가슴 뿌듯하다”며, “협조해주신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전국버스노동자신문)은 2006년 7월 18일자 2면에 『지부장이 이럴 수가!』란 제목으로 “서울 서부운수 노조원들이 골절로 입원중인 동료를 돕기위해 311만 원을 모금했으나, 노조집행부는 방해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지부장은 제일 먼저 모금에 동참하였고 모금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서부운수 지부장” 반론
- 본 문 : 본지는 지난 7월 18일자 2면 『지부장이 이럴 수가!』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서부운수 노조 지부장이 골절상으로 입원중인 동료 조합원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방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운수 노조 지부장은 제일 먼저 모금행사에 참여했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합원들을 고려하여 모금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모금하라고 권고하였을 뿐, 모금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국버스노동자소식〉 2006년 10월호 2면에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서울 서부운수노조원)과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국버스노동자신문 : 『서부운수 지부장 반론』 제하 의기사 (2006년 10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경기신문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11명 입건』 제하 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4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취하 후 보도문

경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0일자 4면)

내 용 : 〈2006경기조정47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4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기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매일 : 『공무원이 개인정보 ‘술술’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1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취하 후 보도문

경기매일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0일자 2면)

내 용 : 본지 2006년 9월 5일자 19면 『공무원이 개인정보 술술』 제하의 기사와 관련된 고양시 소속 공무원 K씨의 경우 노상 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량등록원부를 제공해준 것은 업무협조차원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와 관련 K씨 등 3명의 공무원은 항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항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0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기도민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도민일보 : 『개인정보유출 · 뇌물수수 공무원 무더기 적발』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15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취하 후 보도문

경기도민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15면)

내 용 : <2006경기조정49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항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1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증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경인일보 : 『공무원 9명·위탁업자 적발』 제하의 기
사 (2006년 9월 5일자 1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기호일보
증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기호일보 : 『주차장 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제하
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4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취하 후 보도문

기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5면)
내 용 : 〈2006경기조정49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수도권일보
증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수도권일보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11명 입건』 제
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15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취하 후 보도문

수도권일보 : 『뇌물받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정보
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9일
자 14면)

내 용 : <2006경기조정49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X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우리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우리일보 : 『일산서, 뇌물수수 공무원 11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23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취하 후 보도문

우리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0일자 21면)

내 용 : <2006경기조정49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일보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무더기 적발』 제
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1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취하 후 보도문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인천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2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내 용 : <2006경기조정49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중부일보 : 『차량소유자 개인정보 유출 향응받은 공
무원 10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6년 9
월 5일자 18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취하 후 보도문

중부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
월 20일자 18면)
내 용 : <2006경기조정49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평화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평화일보 : 『뇌물받아 개인신상정보 넘겨준 공무원들
경찰에 무더기적발』 제하의 기사 (2006
년 9월 5일자 15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취하 후 보도문

평화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
월 21일자 2면)
내 용 : <2006경기조정49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신청인 병원이 보안당국의 시정조치를 묵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공항에 ‘구멍’ 낸 ‘○○○병원’』 제하
의 기사 (2006년 9월 8일자 8면)
내 용 : 김포공항 내 상업시설물인 ‘○○○병원’
이 보안관리가 허술해 공항보안에 위협을 주고 있
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고도 2년째 시설보완 요청
을 묵살해 오고 있는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중략)
병원측은 같은 해 11월 지적 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으나 보안당국은 시설보완이 여전히 미흡하다
며 2005년 4월, 7월 잇따라 시정을 촉구했다. 그래
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건설교통부는 보안 경
계시설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공항보안 담당자
를 문책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
낙연 의원의 김포공항 보안실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의원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시설
에 외부인 침입이 가능한 시설물이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병원이 보안당국의 시정
조치를 몇 년째 묵살할 만큼 과연 힘이 있는 곳이
냐”고 말했다.

보안당국의 관계자는 “현재 ○○○병원 보안은
건강한 성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항 계류장
으로 침입할 수 있는 상태”라며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뒤 이를 공항상황실에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8일자 8면에 『공항에 ‘구멍’ 낸
‘○○○병원’』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병원이 김
포공항 내 보안당국의 보안사항 지적 및 시정조치
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김포공항 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보안당국의 시정조치를 묵
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당국의 지적에
대해 수시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병원의 시설로 인하여 김포공항
보안에 위해를 가할 만한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
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

월 28일자 2면)

내 용 : 경향신문 9월 8일자 8면 『공향에 ‘구멍’ 낸 ‘○○○병원’』 기사와 관련, ○○○병원은 상업시설물이 아니며, 2005년 7월 건교부 보완요구는 ○○○병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낙연 의원 발언은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들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병원은 보안당국의 시정요구를 묵살하지 않았으며 보안당국의 지적에 대해 수시로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시청 직원인 신청인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자에게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아시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4.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아시아일보 : 『고양시 개인정보유출 뇌물수수 공무원 검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1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아시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1일자 19면)

내 용 : 〈2006경기조정49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배식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다친 아이의 부상 사실을 숨겨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취취’』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부산 ○○구의 한 대형 유치원어린이집에서 2살 난 아이가 배식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다쳤는데도 이를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9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숨겨온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중략)

황씨는 지난해 아들(만 3살)을 B유치원어린이집 종일반(오전 9시~오후 5시)에 맡겼는데, 2005년 10월 4일 오후 평소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집에 온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황씨에 따르면 아들을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어린이집, 2살난 어린이 추락사실

안고 온 담임선생님은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고 병원에서 발목 엑스레이를 찍었으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과 함께 시럽 3일분을 줬다는 것.

그날 밤 황씨는 아들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들면서 부어오르자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황씨 아들은 오른쪽 다리에 гип스를 한 뒤 통근치료를 받았고, 황씨는 6일 뒤 엉덩이에 난 멍자국이 커지자 사진을 찍어놓았다.

황씨는 그 뒤 어린이집으로부터 “사실, 현장을 보지는 못했고 아이가 종일반에 바지를 벗은 채로 누워 울고 있었다며 치료비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 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9만 4,000원)를 받았는데, 유치원 측은 보험회사 측에 “책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사진관을 운영하는 황씨의 남편이 올해 7월초순께 사진관에서 유치원 교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B어린이집유치원에서 지난 해 배식구에 아이가 떨어져 끼인 적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는 것.

황씨는 남편으로부터 그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사건이 떠올라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당시 찍었던 ‘엉덩이 사진’을 내밀며 따졌다. 이에 어린이집 측에서는 아들이 배식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배식엘리베이터 입구는 평소에는 닫혀 있어야 하고, 배식 할 때만 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05년 10월 4일 오후 2시께, 배식엘리베이터 입구가 열려 있었고 이때 황씨 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4층에서 3층으로 떨어졌다는 것. 깜깜한 곳에 떨어진 황씨 아들의 울음 소리를 듣고 교사들이 달려와 구조했다고 한다.

황씨는 “그날 사고로 인해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말도 급하게 더듬으며, 손가락질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밝고 명랑한 모습이었는데 그날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던 것 같다. 앞으로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8월 2일자 사회면 『어린이집, 2살 난 어린이 추락사실 ‘쉬쉬’』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 OO구의 한 대형 유치원어린이집에서 2살 난 아이가 배식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다쳤는데도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9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숨겨와 논란을 낳고 있으며 “그날 사고로 인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말도 급하게 더듬으며, 손가락질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모습의 아이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배식 엘리베이터에 아이가 떨어지자마자 교사가 즉시 발견, 조치했으며 의사의 정밀진단 결과 심각한 부상은 없었고 다만 오른쪽 다리 부분에 경미한 찰과상 및 좌상을 발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 6일 만에 완치됐으며 사고 어린이의 어머니가 완치된 것을 확인한 후 보험 회사 측과 어린이집 원무과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건 은폐 의도는 없었으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학부형이 놀랄 것을 우려하여 선의로 책상에서 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

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4.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직접 물어보자”』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온라인 격투기 게임에서 시비가 붙자 서울에서 경남 진주시까지 내려가 실제로 싸움을 벌인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대학생과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진주 모 고교 3년 서모(18)군 등 중고교생 5명을 8일 불구속 입건했다.

서 군 등은 온라인에서 자주 게임을 해 온 부산 모 대학 1학년 김모(18) 군 등 3명이 “직접 만나서 한판 붙자”며 지난달 22일 오후 1시반경 ○○시 ○○동 모 아파트 공터로 찾아오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과 사이버머니 12만 5,000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중략)

이 과정에서 김군 등이 속한 ‘○○길드’가 서군 등이 속한 ‘○길드’에 계속 지면서 놀림을 당하자 화김에 속칭 ‘현피’(인터넷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온라인을 벗어나 현실에서 만나 직접 싸우는 것을 의미)를 제안해 진주까지 와서 싸움을

했다.

○○길드 소속으로 함께 폭행당한 이모(15) 군은 서울에 사는 중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현실 대결을 벌이기 위해 진주로 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본지는 지난 9월 9일자 『“직접 물어보자”』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직접 만나서 싸우자”고 말한 후 진주까지 내려갔으며 이모 군도 싸움을 위해 동행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과 폭행당사자가 속한 온라인 게임의 특정 길드명 및 신청인의 학교 소재지와 학년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중재합의서

•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속력 있는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로 합의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기로 한다.

• 양 당사자는 중재부에서 내리는 중재결정이 사법적인 최종 판단으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점을 충분히 알고서 본 합의에 도달하였다. <2006서울중재3 참조> □

○○솔루션이 행자부의 IT 감리컨설팅을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행정자치부 (장관 이 용 섭)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국방·재경·행자부 등서 수주』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8일자 1면)

내 용 : 국세청 출신 권모(48)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모친이 지분을 보유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솔루션이 2001년 이후 국세청·한국은행 등 정

부기관의 정보기술(IT) 감리·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밝혀져 '뒷 배경'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중략)

28일 한나라당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소속의 김양수 의원에 따르면 2001년 10월 ○감리엔컨설팅과 ○○○컴이 합병한 ○○솔루션은 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국방부·국세청(2002년), 산업은행(2003년), 한국은행(2004년) 등 정부기관과 집중적으로 IT 감리 컨설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28일자 1면 『국방·재경·행자부 등서 수주』 제하의 기사에서 ○○솔루션이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집중적으로 IT 감리컨설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솔루션이 설립된 2001년 10월 이후 행정자치부가 이 회사를 감리업체로 선정하여 직접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8. 28.자 1면 『국방·재경·행자부 등서 수주』 제하의 기사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솔루션과 직접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10월 16일까지 (토, 일요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면에서 5면 사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IT기술감리·컨설팅...)활자크기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일까지 1일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기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1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미국 게임아이템 거래업체에 매각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베이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게임아이템 회사 팔아 530억 '대박'』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1일자 A15면)
내 용 : 한국 게임업체 인수·합병(M&A)에서

대박이 터졌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국 최대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인 ○○○베이의 최대주주인 김○○ 사장(40)이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미국게임 아이템 거래업체인 '△△△닷컴'에 ○○○베이를 800억 원에 팔았다. (중략)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정부가 게임 아이템 거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 채비를 갖춘 상황에서 △△△닷컴이 한국 ○○○베이를 인수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최근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했

다. 이런 가운데 미국 회사로 아이템 거래 사이트 대부분이 넘어가면, 정부 규제가 적용되기 힘들어진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11일자 A15면 『게임아이템 회사 팔아 530억 ‘대박’』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인 ‘△△△닷컴’이 ○○○베이를 800억 원에 인수했으며, 정부가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베이는 ‘△△△닷컴’에 인수되지 않았고 ○○○베이의 대표이사인 김○○의 지분을 ‘△△△닷컴’에 매각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정부가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환경부가 세운 대기환경개선책에 근본적 오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6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치 범)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서울신문 : (1) 『“서울 미세먼지 주범 車 아닌 中 오염물질”』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1면)

내 용 : 국가 대기정책의 근간을 흔들 만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서울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은 ‘중국발 오염물질’이며, 이 때문에 경유자동차 규제 등 국내대책에 초점을 맞춘 현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 시행 중인 수도권대기개선폐합대책 (2005~2014년)의 방향과는 판이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신문이 압수한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 (환경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발 오염물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

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외부공개를 금지해오다 최근에야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연구팀이 서울 종로구의 대기측정망에서 27개월 동안 포집한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 2차 오염물질인 황산염(23.8%)과 스모그 에어로졸(19.2%), 황사(6.7%) 등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운행에 따른 영향은 휘발유차 13%, 경유차 1.4% 등 15% 미만이었다. (중략)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 대기정책의 근본 토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도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경유차의 오염 기여도 역시 정부 추정치가 턱없이 높다는 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대기개선폐합대책을 확정하면서 ‘휘발유차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며, 경유차가 서울 전체 미세먼지의 66%를 배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5조 원으로 책정한 대기개선 사업비 가운데 4조 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 개조 등 이른바 ‘경유차 대책’에 집중시켰다. 경유차 대책의 타당성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후략)

(2) 『예산 4조원 ‘경유차 대책’ 실효성 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4면)

(전략) 개선대책은 자동차, 그 가운데서도 경유차에 집중됐다. 정부는 그 근거로 ‘서울 미세먼지의 67-73%는 자동차가 배출하며, 자동차 중에선 경유차가 100%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시했었다. 자동차와 공장·소각장 같은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근거해 자동차의 미세먼지 오염 기여율을 산출해 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당시에도 대기전문가들에겐 액면 그대로 먹혀들지 않은 게 사실이다. 수도권 대학의 한 교수는 “너무 기대치가 높은 억측이어서 당시 발표된 정책에 대한 신뢰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전문가도 “정부가 대기개선 정책수단과 비용을 ‘경유차 잡기’에만 쏟아부었는데,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정책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집단의 이런 불안감은 서울 미세먼지와 관련한 ‘미스터리’ 때문이다. ‘오염도가 이렇게까지 높은 것은 자동차 요인으로만 볼 수 없다. 더 큰 다른 원인이 숨어있을 것’이란 의문이었다. 외국의 대도시 사례가 주로 거론돼 왔다. 한 대기전문가는 “미국 뉴욕시나 LA,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서울처럼 자동차가 많지만 미세먼지가 20~30 μg 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서울시가 60~70 μg 까지 치솟는 것은 결정적인 다른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도영 교수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의문을 푸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국내에서 처음 규명된 연구결과여서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정부로선 현재 수립된 수도권 대기정책의 타당성,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 악화의 다른 새로운 원인이 밝혀진 만큼 기존의 처방책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팀에 참여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승묵 교수는 “자동차가 이산화질소나 이산화황, 오존 같은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미세먼지는 사정이 달라서 정부나 서울시가 자동차를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오염농도는)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번 연구의 성과”라고 말했다.

자동차(휘발유+경유차)가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에 기여하는 비율이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70%가량이 아니라 14%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선 연구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여서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교수는 “이산화질소의 2차 오염물질인 질산염 같은 애매한 요인을 자동차에 포함시키더라도 미세먼지 오염기여율은 25%를 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가 대기정책 수립에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이번 연구는 여러 정책분야에 적잖은 과장을 예고한다. 자동차 연료비 상대조정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려온 경유값 인상정책과 교통세 가운데 상당부분을 수도권대기질 개선비용으로 쓰겠다는 정부계획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도심내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정책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 학계인사는 “백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부인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3) 『예산4조원 날릴판』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1면)

수도권대기정책이 근본적 오류에서 출발했다는 연구결과가 환경부 연구용역을 통해 또다시 확인됐다.

자동차의 서울 미세먼지(PM10) 오염 기여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 연구팀의 결과와 엇비슷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최근 이런 연구결과를 보고받고도 “경유차가 서울 미세먼지의 66%를 배출한다.”는 기존주장을 고수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회장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는 4일 “서울 미세먼지를 2년 동안 포집해 화학성분·배출원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합한 자동차 전체의 오염 기여율이 1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략)

김신도 회장은 “그동안 학계에선 자동차 오염기여율이 (정부 발표보다)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여러번 내놓았다. 그럼에도 정부·서울시가 다른 오염원은 외면한 채 자동차 대책에만 매달리고 있

어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경유차가 66%를 배출한다는 수도권대기정책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경유차에 집중시켜 놓고 나중에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후략)

(4) 『경유차 대기오염기여율 10배 차이』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3면)

(전략) 대기환경학회는 지난주 정부 담당자와 대기분야 학계인사 등을 상대로 중간발표회를 갖고 현 대기정책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도 비슷한 비율로 배출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동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울대팀은 초미세먼지(PM2.5)만 분석했지만, 대기환경학회는 직경 10 μ m(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인 미세먼지(PM10)도 시료를 채취해 동시에 분석했다. 수도권대기질정책이 PM10을 기준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연구결과,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시 남구에서 자동차(경유차+휘발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에 기여하는 비율은 각각 10%와 15%, 초미세먼지 오염기여도는 19.3%와 25%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수행한 경희대 김동술 교수는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구성비는 4.5대 5.5의 비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오염기여율은 환경부 발표의 8분의 1~12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후략)

(5) 『서울 대기오염 원인 제대로 밝혀라』 제하의 사설 (2006년 9월 5일자 31면)

서울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중국발 오염물질이라는 연구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이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이므로 나름의 권위를 가진 연구결과라고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에 따른 오염 영향은 15% 미만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비의 80%를 경유차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잘못 배분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확산모델을 통해 분석하면 경

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이 66%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대팀은 수용모델을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조사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듯 벌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한다. 어느 쪽 연구결과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한 전면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자동차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몇 년 전부터 대기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둘러싼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지는 지난 9월 4일자 1면 『“서울 미세먼지 주범 차(車) 아닌 중(中)오염물질”』, 4면 『예산 4조원 ‘경유차 대책’ 실효성 의문』 제하의 기사, 9월 5일자 1면 『예산 4조원 날릴판』, 3면 『경유차 대기오염기여율 10배 차이』 제하의 기사와 31면 『서울 대기오염 원인 제대로 밝혀라』 제하의 사설에서 대기오염에 관한 일부 연구 용역의 인용과 일부 학자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량 중 경유차의 배출비율이 턱없이 높다는 주장을 제시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의 대기오염저감 대책에 예산을 잘못 투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도에서 인용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경유차 미세먼지 오염 기여율은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에서 산정한 인위적인 오염원에 대한 경유차의 배출량 비율과는 서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의 예산을 날릴 판이라는 보도는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비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사실 보도이므로 정정·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신청인들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외 1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법조브로커 비리’ 전 판·검사 등
5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4
일자 A12면)

내 용 :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
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3일 수입카펫 판매업
자 김○○(58·수감 중)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
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46) 전 대법원 재판
연구관, 박○○(48)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
(44)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이○○(42·경정)
전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장 등 4명을 불구속 기
소했다. (중략)

현재 변호사 개업 중인 박, 송 전 부장검사는 검
찰 재직 때 김씨에게서 사건청탁을 받고 각각
1,400만 원과 8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후략)

(2) 『“판검사때 비리 드러난 변호사 등록취소”』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3일자 A12면)

(전략) 변협은 지난달 28일 정례 상임이사회에
서 최근 법조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
부해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이 등록심사위에 회부한 변호사는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58·수감 중) 씨에게서 사건 청탁
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된 박○○(48·전 수원지검 부장), 송○○(44·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 변호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동아일보는 지난 8월 24일자 A12면 『‘법조브로
커 비리’ 전 판·검사 등 5명 기소』, 9월 13일자
『“판검사때 비리 드러난 변호사 등록취소”』 제하
의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실명을 공개해 신청인들의 심각한 인
격권 침해 및 명예를 훼손당해 이에 신청인들에게
각각 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는 공공의 관심사항을 공익적 목적
에서 보도한 것이며, 신청인들은 공인이므로 국민
의 알권리를 위해 실명으로 보도했다. 따라서 신청
인의 손해청구에 응할 수 없다. □

신청인 단체 출신 영등위 위원들이 성인 오락기 부실 심의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사)○○○○○○○실천운동
(이사 우 ○ ○),
2.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5.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한겨레 : (1) 『영등위 주무르는 ‘파벌’』 제하의 기
사 (2006년 8월 26일자 5면)

내 용 : (전략) 특정 시민단체 회원이 2003년부터 연이어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을 맡고 있는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전·현직 위원인 이○○·권○○·나○○·곽○○ 씨는 모두 '○○○○○실천운동' 출신이다. 이들은 고도의 사행성 오락기 허용의 책임을 문화부와 단속기관에 넘기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 (후략)

(2) 『일부영등위원들 ‘남탓만’』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6일자 5면)

일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이 ‘도박공화국’을 부른 책임을 줄곧 ‘남 탓’으로만 돌리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략)

이들 위원들은 “문화부가 등급분류 세부규정 가운데 사행성 부분의 완화를 요구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반복했으나, ‘영등위가 문화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는 만큼 결국 영등위가 규정을 완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가 의지가 부족했던 건 인정한다”(이○○ 전 영등위원)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씨는 “문화부가 연금과 조직을 잃지 않으려고 사행산업에 집착했다. 업계와 문화부 직원이 그대로 유착돼 있다”고 주장했다. (후략)

(3) 『‘도박산업 규제’ 외치던 시민단체 ‘○○○’』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5일자 인터넷판)

시민단체인 ‘○○○○○실천운동’(○○○) 소속의 전·현직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책임 떠넘기기’를 주도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은 도박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전국적으로 3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모아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영등위 게임제업용게임물 소위원회에 4명의 위원을 추천해 활동하도록 했다. (중략)

○○○ 출신의 이○○ 전 위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성인오락기 심의를) 함부로 못한다”며 부실심의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3년여 동안 성인오락기 심의 소위에는 언제나 ○○○ 회원이 참여해 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25일자 인터넷판 『‘도박산업 규제’ 외치던 시민단체 ‘○○○’』 제하의 기사와 8월 26일자 5면 『영등위 주무르는 ‘파벌’』, 『일부 영등위원들 ‘남탓만’』 제하의 기사에서 ○○○ 출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들이 영등위를 주무르는 파벌의 주체이자 영등위의 부실 심의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인 것처럼 보도했으며 ○○○이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앞장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 출신 영등위원들이 영등위의 부실 심의를 주도하거나 영등위의 문제점의 핵심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만든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 건 : 2006서울조정3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사단법인 ○○○○실천운동
이사장 우 ○ ○
조정대리인 이 ○ ○
2.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정 태 기
조정대리인 양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1.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 조 흥

피신청인 : 포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7.

처리결과 : 취 하

리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지는 지난 9월 11일자 8면 『“전시작전권 조기 회수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통일시대 시민교실’ 특강 도중 “전시작전권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포천신문 : 『“전시작전권 조기 회수해야”』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1일자 8면)

내 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회장 이중희)는 9월 6일부터 1개월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중략)

9월 6일 오후 4시 첫 강의는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이 ‘통일시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를 통해 고조흥 국회의원은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왜곡은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을 빨리

신청 후 보도문

포천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0일자 1면)

내 용 : 본지 제352호 8면 고조흥 국회의원 특강 관련 기사 중 제목 “전시작전권 조기 회수해야”를 “전시작전권의 조기환수를 유보해야”로, 본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를 “현재 추진중인 전시작전권의 조기환수를 유보하여야 한다”로 바로잡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신청인이 가스공급권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무등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5.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정정)

무등일보 : 『‘가스 공급권’ 놓고 대립』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17면)

내 용 : 완도지역의 한 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주방·난방용 가스 공급권 확보를 위해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 등을 앞세워 기존 업체를 흠집내기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주민들은 최근 선임된 입주자 대표가 자신의 형이 운영중인 업체에 가스공급권을 주기 위해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보도내용

일부에서는 금품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완도읍 ○○아파트 주민들은 4일 “지난 7월 선입된 입주자 대표 A(39)씨가 시공사의 부도로 관리·경영체제가 허술한 틈을 이용, 자신의 형이 운영중인 H가스에 영업권을 주기 위해 기존 업체를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가스공급권’ 확보를 위해 H가스 대표와 관리사무소 측이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아파트 입주주민들은 “가스 공급권 확보를 위한 H가스 대표의 친 동생이 주민 대표를 맡는 것은 문제가 많아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방해와 금품 수수 등 가스공급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주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철저히 밝혀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완도 ○○아파트 주민과 입주자대표 ‘가스공급권’ 놓고 대립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5일자 17면에 『‘가스 공급권’ 놓고 대립』이라는 기사에서 ‘○○아파트 주민과 입주자 대표가 대립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가 H사에 가스공급권을 주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에서는 금품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아파트 주민들과 입주자대표가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입주자대표가 아니라 기존 가스공급업체와 아파트 주민과의 대립이며, 가스공급권을 둘러싼 금품요구 사례 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무등일보는 지난 9월 5일자 17면 『‘가스 공급권’ 놓고 대립』 제하의 기사에서 가스공급업체 변경을 두고 아파트 주민 모두와 입주자 대표가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가스공급업체의 주장만을 보도한 것으로, 사실은 입주자 대표가 대표 자리를 맡

기 전부터 계량기가 빨리 돌고 가스비가 많이 나와 한국기유화실험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계량기 불량으로 판정되어 가스공급업체에 과계측 부분에 대한 금액 환불과 계량기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을 미루다 몇몇 주민에게만 환불해 주었고, 교체한 계량기도 신품이 아닌 중고품을 사용하여 신품 교체를 요구하자, 교체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행은 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가스공급업체를 불신하던 중 입주자 대표가 변경되었고, 대표 변경 후에도 가스공급업체의 잘못이 시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로 가스공급계약 해지 문제를 논의 중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은 가스공급권과 무관한 사항으로, 현 입주자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5일자 17면 『‘가스공급권’ 놓고 대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완도 ○○아파트 주민과 입주자 대표가 가스공급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으며, 입주자 대표가 자신의 형이 운영중인 업체에 가스공급권을 주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에서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인 배모 씨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현 가스공급업체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입주자 대표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며, 가스공급권, 금품수수 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무등일보 2006년 9월 25일자 17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주민 “대표가 특정업체에 영업권 주려한다”)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무등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5일자 1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의 모교와 같은 재단 소속의 타학교가 개교 52주년을 맞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〇〇〇신학교동문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목사장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5.
처리결과 : 취 하

(총장 문〇〇 목사)는 8월 31일 오전 11시 광주캠퍼스 교정에서 학교 및 교단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50주년기념관’ 착공감사예배를 드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2일자 1면에 『‘서울△△50주년기념관’ 착공예배』 제하의 기사에서 “개교 52주년을 맞는 서울△△대학교(총장 문〇〇 목사)는”이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개교 52주년을 맞는 학교는 서울〇〇〇신학교이며 서울△△대학교는 개교 21주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보도내용

목사장로신문 : 『‘서울△△50주년기념관’ 착공감사예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일자 1면)
내 용 : 개교 52주년을 맞는 서울△△대학교

자동차 회사 지점장인 신청인이 차량 대금을 횡령하고 이를 유흥비로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8.
처리결과 : 합 의

사에 입금해야 할 차값 중 4,800여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립살롱 술값 등으로 사용했다. 게다가 황 지점장은 이 업자에게 청와대 경호실 한 간부의 차값까지 대납하도록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략)

이러한 반응과 관련, 일부에서는 황 지점장이 ○○자동차의 최고위 간부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지점장은 인테리어 업자인 옥아무개 대표에게 인도에 진출한 ○○자동차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언급하면서 차량 구매를 제안했다. (중략)

문제는 황 지점장이 보내온 정산서에서 일어났다. 옥 대표가 입금한 금액과 황 지점장이 정산서에 적시한 금액이 달랐던 것. 황 지점장이 보내온 정산서에는 대표가 구매하지 않은 청와대 경호실 한 간부의 차량까지 포함돼 있었다. (중략)

하지만 황 지점장은 실제 잔금보다 1억 9,000여만 원이나 더 많은 3억 2,000만 원을 옥 대표에게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차 지점장, 고객 차값 4,800여만 원 횡령』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2일자 사회면)
내 용 : ○○자동차의 한 지점장이 고객의 차값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립살롱 술값 등으로 탕진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동차 △△지점의 황아무개 지점장은 지난해 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11대의 차를 팔았으나 본

청구했다. 심지어 옥 대표가 현금으로 총 1억 6,209여만 원(2005년 9월 1일까지)을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황 지점장은 정산서에 1억 1,930만 원 혹은 1억 4,330만 원으로 다르게 적시했다. (중략)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황 지점장은 “옥 대표가 해탈라고 해서 그렇게 정산한 것”이라고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무지도팀은 지난 3월 감사를 벌여 황 지점장이 약 4,845만 원을 본사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즉 황 지점장의 차값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오마이뉴스>의 확인취재에 “정상적으로 차량대금이 처리되었다”고 밝혀 황 지점장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황 지점장이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립살롱 술값 등으로 썼다는 점이다. 황 지점장이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4,845만 원 중 술값으로 쓴 금액만 1,020만 원에 이른다. 한 번에 380만 원어치 술을 마신 적도 있다. (중략)

또한 옥 대표는 원래 차량 11대만 구입했지만, 황 지점장이 정산서에 슬그머니 청와대 경호실의 중견 간부인 김씨의 차값까지 포함시켰다. 사실상 옥 대표에게 김씨의 차값을 대납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중략)

게다가 옥 대표는 김씨의 부인이 황 지점장을 통해 차량을 교체했을때도 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씨의 부인은 2,100여만 원 하는 ○○○차량을 1,700여만 원 주고 산 것으로 확인됐다. 즉 차량을 싸게 구매한 만큼의 차액을 옥 대표가 부담했다는 얘기다. (중략)

결국 황 지점장이 옥 대표에게 차를 팔기 위해 청와대의 중견 간부 김씨를 그에게 소개했고, 김씨가 주 인도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옥 대표의 인도사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공을 인정해 황 지점장과 옥 대표가 김씨의 차값 대납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12일자 사회면 『○○차 지점장, 고객 차값 4,800여만 원 횡령』 제하의 기사에서 황모 지점장이 공사수주를 미끼로 차량

구매를 제안하고 청와대 경호실 간부를 등에 업고 차량 구매대금을 강요했으며 차량대금 4,800여만 원을 횡령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황모 지점장이 횡령한 차량대금 일부를 립살롱 술값 등에 사용했으며 청와대 경호실 간부와 그 부인의 차 값 대납을 요구하고 ○○자동차 최고위 간부와 가까운 사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차량 구매대금 대납을 강요하거나 공사수주를 미끼로 차량 구매를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황모 지점장이 차량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청와대 경호실 간부, ○○차 최고위 간부와 가깝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차 △△지점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오마이뉴스는 9월 12일자 『○○차 지점장, 고객 차값 4,800여만 원 횡령』 제하의 기사에서 ○○차 △△지점장인 황모 씨가 고객의 차값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립살롱 술값 등으로 탕진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황모 씨는 차량 대금 4,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황 씨는 차량 대금 일부를 립살롱 술값 등에 사용한 바 없고 공사수주를 미끼로 옥모 씨에게 차량 구매를 제안했다거나 청와대 경호실 간부를 등에 업고 차량 구매대금 대납을 강요한 바도 없으며 ○○차 최고위 간부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9월 29일 9시부터 18시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오마이뉴스>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하고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삭제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음란물 사이트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OO플라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관음사(?)로 들어간 의사 573명』 제하
의 기사 (2006년 7월 26일자 A10면)
내 용 : (전략)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OO플라자’라는 음란물 인터넷 사이
트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지난해 5월 4일 유
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다시 음란물 카페를 개
설해 음란 소설과 사진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26일 A10면 『관음사(?)로 들어
간 의사 573명』 제하의 기사에서 “OO플라자라는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더라
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OO플라자는 음란물과 관련없는 의사 전용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이며 경찰의 단속에 걸린 사
실이 없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안모씨
가 음란물 카페를 OO플라자에 개설한 사실도 없
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경찰 수사관련자료 확인결과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
르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대학이 등록금을 유용하고 교비를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서울OOO대학교 (총장 조 ○ ○)
피신청인 : 동국대대학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9.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보도내용

동국대대학원신문 : 『당신은 ‘교수’라는 직업이 안정
적이라고 보십니까?』 제하의 기
사 (2006년 9월 4일자 4면)

내 용 : (전략) 최근 서울OOO대학교(총
장=조OO) OOOO학부 이OO 교수가 재단의 비리
를 칼럼에 실어 그 불온성을 발성했다는 이유로 재
임용에서 탈락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 실제로 이 대
학은 인가기준에 훨씬 미달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담보제공과 교비 횡령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가 칼럼을 통해 제기한 재단의 비리는 빙산
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OOO대
학은 교육부 감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OOO대학 이OO 교수를 직접 만나 전해들은 바
에 따르면 외부에 드러난 것 말고도 사태의 심각성

은 상상을 초월한다. ○○동 ○○○대학을 들어서는 순간 방문객을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이 하나 있다. 감시카메라가 그것이다. 도난의 위험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소위 젊음과 자유의 공간이라는 대학건물에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사실은 설령 그 필요성을 인정할지라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 말고 더욱더 난감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그동안 그 대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학교 측이 주관하는 ‘보안검사’라는 것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대학은 육군사관학교의 산하기관인가? 아니면 아주 먼 옛날의 ‘황우석사단’처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보관 중이거나 하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보안검사’라는 구시대의 악습을 동원하면서까지 구성원의 입과 귀를 막아야 했던 절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나 다를까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학부생의 활발한 활약상을 소개하던 ○○○○부 ‘자유게시판’은 사태가 발생한 직후 재빠르게 차단되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울○○○대학은 ○○○대학이 아니라 ‘폐쇄회로’ 대학이었던 것이다. (중략)

실제로 이 대학의 구성원 대부분은 “생활현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공부를 계속해야 할 시기를 놓친” 만학도이다. 그런 그들이 “대학졸업장에 대한 어리석은 자각지심”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해 열심히 벌어서 입금한 등록금을 절없는 대학재단은 거리낌 없이 유용해버렸다. 이것은 사기행각, 그것도 만학도의 ‘꿈과 희망’을 담보로 한 추악한 사기행각이나 다름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9월 4일자 『당신은 ‘교수’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대학교 재단이 등록금을 유용하고 교비

횡령을 일삼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재단이 등록금을 유용하고 교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교비 횡령은 전 부총장의 개인적 비리로 이를 학교와 재단 측에서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횡령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조사 결과에서도 전 부총장 개인적인 비리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9월 4일자 『당신은 ‘교수’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대학에서는 교내 언론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컴퓨터 보안검사를 실시하며, 게시판을 통제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외부인 출입 및 학교 기물 도난 방지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출입구 외부에 설치한 것으로 내부인 통제 기능은 없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달한 보안 준수 지침에 따라 바이러스, 해킹, 불법 소프트웨어 등을 막기 위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적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 보안검사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학부 게시판은 학년이 발급된 재학생만 열람이 가능한 곳인데 ○○○○학부 게시판만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어 본래 설정대로 전환한 것으로 교내 언론활동 억압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중재합의

• 쌍방 당사자는 피신청인 발생의 동국대학원신문 2006년 9월 4일자 4면에 게재된 『당신은 ‘교수’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청구 중재신청사건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합니다. <2006서울중재4 참조> □

신청인이 공사를 맡은 건설사로부터 민원해결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증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19.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동아일보 : 『혹 떼려다 ‘더 큰 혹’ 붙인 건설업체』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7일자 10면)
내 용 : “시위를 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지 뭐니까.”

지난해 6월 서울 ○○구 ○동의 한 동네는 이상한 소문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인 오모(65) 씨 부부가 슈퍼마켓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터널굴착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더니 건설회사에서 돈을 줬다는 것이었다. (중략)

소문의 진실은 이랬다.

지난해 3월 오씨는 터널공사로 소음과 함께 먼지가 심하게 일자 부인을 데리고 공사현장에 가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 12일부터 9일간 공사장비 앞에 드러누워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 예정된 공사기간이 빠듯했던 H건설은 오씨에게 중재안을 내놓았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13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 모두 3,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단 조건이 있었다. ‘현장의 민원 해결을 약속하며 협조할 것.’ 오씨는 흔쾌히 이 약정에 합의한 뒤 3개월간 300만 원씩 째깍한 수입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 얘기를 전해들은 주민들이 공사현장으로 몰려가면서 일이 틀어졌다.

H건설은 주민들의 시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오씨에게 넘겼다. 민원해결을 하지 못했으니 돈도 줄 수 없다는 것이 H건설의 주장.

당연히 오씨는 펄쩍 뛰었다. 당시 약정 내용은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시위를 중단하고 앞으로 다른 주민들의 시위가 있으면 이를 H건설에 알려주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오씨는 지난해 9월 H건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약정금 지급 소송을 냈다. 오씨는 소장에서 “약정체결 이후 시위를 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시위 내용도 H건설에 귀띔해 줬으니 H건설은 계속 3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민성철 판

사는 고심 끝에 양쪽의 주장을 절반씩만 받아들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7일자 10면 『혹 떼려다 ‘더 큰 혹’ 붙인 건설업체』 제하의 기사에서 ○○구 ○동 도로개설 공사 과정에서 동네 슈퍼마켓 주인인 오모 씨가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시위를 벌인 후 건설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서 ‘현장의 민원 해결을 약속’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사가 다른 주민들의 항의에 시달리게 됐고 이에 오모 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자 오모 씨가 소를 제기, 1심 재판부로부터 양 측 모두 균등한 책임이 있으므로 약정금의 반만 건설사가 오모 씨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오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이고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10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고딕으로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하게 보도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8.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 8월 7일자 10면 『혹 떼려다 ‘더 큰 혹’ 붙인 건설업체』 제목의 기사와 관련, ○○구 ○동 도로개설 공사장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오모 씨는 자신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로 한 것은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만 다른 주민들의 민원을 막아 주는 대가는 아니라면서 현재 1심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라고 알려 왔습니다. □

대전시 유성구청이 설치한 풍력발전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해 예산낭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중앙매일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0.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앙매일 : 『유성구청 갑천변 가로등 ‘무용지물’』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1면)

내 용 : 유성구청이 지난 5월, 갑천변에 설치한 풍력발전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성구청은 야간에 갑천변에서 조깅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을 위해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가로등을 1본에 1천 3백만 원씩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10본을 세웠다.

유성구에 앞서 중구가 증촌동 중앙고 뒤편 하상도로변 공원에 세운 가로등 가격이 1주에 3백만 원~4백만 원인데 비해 터무니 없이 고가인 유성구 풍력발전 가로등은 그러나 풍력이 예상 기대치에 못미쳐 전력 생산을 못하고 프로펠러는 단지 가로등 장식품 역할만 하고 있다.

당초 설계도라면 프로펠라에서 발생하는 예상전력은 400W로 가로등 1본의 공급가는 일반 가로등 가격에 버금가는 270만 원이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이다.

가로등 설치업체 관계자는 “해안가와 산 정상에서는 바람을 이용한 전기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갑

천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풍속이 약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먹구구식 용역과 설계 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로 담당공무원과 설치업체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의혹의 눈초리와 함께 꼬집었다. (중략)

유성구 담당공무원은 “풍력발전가로등을 설치했으나 시험결과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현재는 경관가로등으로 변경해 설치했다”며 “사후조치 보다는 시설유지에 신경을 쓰는 형편”이라고 궁색하게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9월 5일자 1면에 『유성구청 갑천변 가로등 ‘무용지물’』이라는 제목으로 ‘유성구 풍력발전 가로등은 풍력이 예상기대치에 못미쳐 전력생산을 못하고 프로펠러는 단지 가로등 장식품 역할만 하고 있다. 가로등 설치업체관계자는 “해안가와 산 정상에서는 바람을 이용한 전기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갑천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풍속이 약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먹구구식 용역과 설계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로 담당공무원과 설치업체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의혹의 눈초리와 함께 꼬집었다.

유성구 담당공무원은 “사후조치보다는 시설유지에 신경을 쓰는 형편”이라고 궁색하게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갑천변의 경관용 가로등의 블레이드는 발전용이 아닌 순수경관용으로 부착된 것이며 블레이드를 포함한 가로등 전체에 대

한 설계는 전문업체의 용역설계에 의해 전기 및 건설공사 등은 정부표준품셈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등을 적용했으며, 관급자재는 조달청 입찰에 의하고 도급분은 제한경쟁전자입찰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 설치업체와 공무원간의 결탁이 전혀 없었고 예산의 낭비 또한 없었으며, 사후조치보다는 시설유지에 신경을 쓰는 형편이라고 말한 사실 또한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6년 9월 5일자 1면에 『유성구 풍력발전 가로등 ‘무용지물’』 제하의 기사에서 유성구 풍력발전 가로등은 풍력이 예상기대치에 못미쳐 전력생산을 못하고 프로펠러는 단지 가로등 장식품 역할만 하고 있다는 내용과 가로등 설치업체 관계자의 ‘갑천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풍속이 약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먹구구식 용역과 설계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로 담당공무원과 설치업체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멘트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갑천변 가로등의 블레이드는 발전용이 아닌 경관용으로 부착한 것이며, 블레이드를 포함한 가로등 전체에 대한 설계는 전문업체에 용역에 의해, 전기 및 건설공사 등은 정부표준품셈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등을 적용했으며,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구입의뢰하고 도급분은 제한경쟁전자입찰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낭비나 설치업체와 공무원간의 결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매일 2006년 9월 29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가로등 10분 가격...)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매일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화관광부 (장관 김 명 곤)

피신청인 : 전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남일보 : (1) 『‘아(亞)전당’ 보상금은 눈먼돈?』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1면)

내 용 :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 인근 대형 학원 등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이른바 ‘보상가 부풀리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부 학원의 수강생 수 허위기재 등 편법을 동원해 보상금을 과다수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이처럼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보상금도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면서 건립부지에 포함된 대형학원과 상가 등이 영업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보상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실제로 옛 전남도청 주변 상인과 주민들 사이에는 대형 학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인근 상가에 비해 2배 이상의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중략)

이 과정에서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출한 영업장부, 세금신고서와 이밖의 공적인증자료는 감정이 산출에 큰 영향을 미쳐 보상 대상자가 영업실적 등을 부풀린 허위장부를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보상가를 올릴 수 있다.

주민 고모(30) 씨는 “옛 도청 뒤편에 위치했던 한 입시학원은 평당 1,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평당 600만 원 가량의 보상에 그친 인근 상가와 주택소유주들 사이에 보상금 산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2) 『국립 아(亞)문화전당 보상 어떻게 이뤄졌나』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3면)

(전략) 주민들은 해당 학원이 공시지가를 높이면서 최근 몇 년간 보상에 대비해왔고, 이로 인해 인근 상인과 2배 이상 차이나는 보상금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주민들은 이같은 사례가 일부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들은 사전에 문화전당 건립시설 보상을 알고 있었던 일부 사람들의 경우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각종 부풀리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후략)

(3) 『“보상비 형평성 문제 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7일자 1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 옛 전남도청 인근 토지·건물소유자들이 보상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잇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주민들은 보상직전 일부 건물의 공시지가가 급상승한 점과 보상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선정, 보상금 책정 등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개별 감정평가액 산출자료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 동구 광산동과 서석동 주민들에 따르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에 편입된 옛

도청주변 토지·건물소유자 10여 명이 지난달 25일께 광주지법에 토지 및 건물 보상 감정액 재평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중략)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한국감정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보상업무 설명자료를 통해 토지 보상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손해를 안보는 보상’ 방침을 밝혔음에도 실제로는 공시지가 위주로 보상이 이뤄진 데 대한 불만도 높다. (중략)

주민 조모(46) 씨는 “문화전당 건립부지 보상이 사전에 총액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개별 보상작업을 벌이다 보니 특정건물이 시가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건물의 보상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보상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 산출자료의 전면공개와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 『‘아(亞)전당’ 꼬리무는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8일자 1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보상과 관련된 의혹이 연일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 발표 직전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높은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옛 전남도청 인근 건물주가 문화전당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주민 김모(35·광주 동구 서석동) 씨는 “지난해 보상협의회 구성 당시 대형 건물주가 포함되고 보상대상지 주민이 아닌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재구성을 요구했으나 시·구청 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

하지만 이 가운데 토지소유자 대표로 협의회에 참여한 A씨 소유 대형 토지의 공시지가가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02년 1㎡당 138만 원에서 이듬해 253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돼 이를 토대로 인접 토지에 비해 높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밖에 보상협의회 위원 B씨는 경매 건물을 헐 값에 사들인 뒤 보상을 통해 수십억 원의 차액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한 건물 소유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소송을 낸 보상 토지 소유 주민들은 보상협의회의원으로 직접 참여했거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유자들이 인접 건물 등에 비해 훨씬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실상의 특혜를 누렸다는 점을 거론하며 회의 과정에서 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후략)

(5) 『보상금 이중적 잣대?』 제하의 칼럼 (2006년 9월 11일자 19면)

(전략) 최근들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영업권 등의 보상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동일 상권에 위치한 건물의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 보상금 등이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또 20년 가까이 된 완전 노후화된 건물은 평당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12년된 건물은 그 절반 정도인 150만 원에 그쳐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급기야 성난 해당 지역주민들이 법원에 모상금 책정에 대한 산출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략)

(6) 『아(亞)전당 보상액 감정평가서 “산출내역 누락됐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3일자 1면)

(전략) 주민들은 지난해 토지·건물·영업손실 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됐다고 문화전당 보상사무소 등에 감정평가 산출근거자료 공개를 요구, 답변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평가내역이 누락됐다고 반발해왔다. (중략)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법제처의 법령해석결과를 인용, “감정평가업자가 보상법 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 및 가격산정요인 등 평가의 실질적 근거를 제기함이 없이 단지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보상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후략)

(7) 『‘한 뿔 채기기’ 국민혈세 축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4일자 3면)

〈동일상권 감정가 차이 커 형평성 ‘어긋’〉

〈산출 근거 자료·세부내역 등 공개 시급〉

〈보상금 형평성 논란〉 (중략)

〈영업손실금 부풀리기〉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9월 6일자 1면과 3면 보도에서 아시아문화전당 보상금은 눈먼돈이고 부풀리기·허위신고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고 9월 7일자 1면 보도에서는 건물주 입김따라 보상금이 천차만별이며 보상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9월 8일자 1면 보도에서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 토지, 건물주의 입김이 작용하여 꼬리무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어 9월 11일자 19면에서 보상금 이중적 잣대를 거론하였습니다. 계속하여 9월 13일자 1면 보도는 보상액 산출근거누락, 9월 14일자 3면 보도에서는 보상금문제를 그동안의 의혹을 중심으로 재차거론하였습니다. 2006년 9월 6일부터 2006년 9월 14일에 걸쳐 8일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자 중 1명이 허위장부 제출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물주들이 서류조작하여 제출한 허술한 감정평가로 국민혈세가 축나고 동일상권의 감정가 차이가 커 형평성이 어긋나며, 보상평가 산출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세부내역 등의 공개가 시급하다고 하면서 영업실적 등을 부풀린 허위장부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보상가를 올릴 수 있는 등 보상금 산정이 이중적 잣대로 이루어져 관련 의혹이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보상사무소와 평가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도 협의사실이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보상물건의 산정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사정에 따라 소유자가 생각하는 주관적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산정되었고,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는 행정정보 공개원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공정한 보상업무의 위해 어떠한 청탁도 거부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빛낼 국가중요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자인 문화관광부는 보상업무뿐 만아니라 향후 공사과정에서도 국민의 행정참여 및 다양한 행정 정보공개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아시안은 물론 세계속의 문화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남일보 2006년 10월 9일자 2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9월 6일자, 대형학원 편법동원 포착...)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경찰서가 관내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서 (서장 이 ○ ○)

피신청인 : 전북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0.

처리결과 : 취 하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19일자 9면 『‘귀 어둡고 발 느린’ ○○경찰』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H병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었고 H병원에 입원 중인 K모 씨 폭행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H병원은 ○○경찰의 점검 대상 보호 시설이 아니며 K모 씨 폭행사건은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관련 범죄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전북도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5일자 9면)

내 용 : 본지가 지난 9월 19일(화)자 9면(사회2면)에 『‘귀 어둡고 발 느린’ ○○경찰』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1)H병원에 입원중인 K모(42)씨가 지난 6월 폭행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보도되기 전 경찰에서는 지난 9. 14.

보도내용

전북도민일보 : 『‘귀 어둡고 발 느린’ ○○경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9면)

내 용 : ○○경찰이 입원중인 환자가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지 14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등 지역현안에 어둡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북도내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경찰은 이 병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더욱이 사고 당일 경찰이 출동했으나 2일 후에 이 병원에 사망자와 유사한 증세로 입원중인 K모(42)씨가 지난 6월 병원근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수사에 착수하는 등 미흡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17:00에 관련 범죄정보 입수 동시 수사에 착수했고, 2)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경찰은 이 병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보도내용

은 “H병원은 점검대상 보호시설이 아닌데도”마치 점검대상 시설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보도되었음을 바로잡습니다. □

주요 국도상에 설치된 과적단속용 카메라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건설교통부 (장관 추 병 직)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8월 5일 20:00)

내 용 : ▷앵커 : 최근 주요 국도를 중심으로 과적차량을 잡기 위한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세금 수십억 원이 들어간 이 비싼 장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 경기도 장호원에 있는 한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 대형 포클레인을 실은 트럭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과적 혐의 단속 카메라가 경고음을 울리며 사진촬영이 자동으로 되어야 하지만 장비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 이곳 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적 혐의 차량 사진입니다.

영뚱하게도 승용차들이 과적혐의 차량으로 촬영됐고 한 소형 경차의 무게는 51.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략)

경기도 양평에 있는 또 다른 검문소. 이곳은 아예 기계를 꺼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8월 5일 「SBS8뉴스」 ‘기동취재’ 코너 “과적단속카메라 무용지물” 제목의 보도에서 장호원, 양평 등 주요 국도상에 설치된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06. 6. 30. 당시 장호원 검문소는 CCTV 오작동에 수리를 위한 A/S로 일시적인 오류상태에 있었고, 양평검문소의 과적 단속용 CCTV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 및 화면은 당시 낙뢰로 인한 작동 불능 상태에 있던 홍천검문소의 차량감시용 CCTV를 촬영한 화면을 대신 보도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과적단속 정정 및 반론
- 내 용 : 지난 8월 5일 「SBS8뉴스」에서 ‘무용지물 CCTV’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 중 양평의 한 검문소의 고장난 CCTV 화면은 홍천 안보검문소의 것으로, 양평검문소의 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수리가 끝난 장호원검문소 외에 전국의 과적단속용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10월 3일까지 SBS-TV 「SBS8뉴스」 중에 제1항의 내용을 방송하되, 조정대상보도(‘무용지물 CCTV’)를 보여주는 동시에 화면 하단에 제목 및 위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나가는 자막으로 처리(스크롤)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10월 3일 20: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아파트의 스포츠시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세금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5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스포츠인수위원회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경인일보 : 『“고의누락·특혜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1일자 19면)

내 용 : 성남시가 ○○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시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거액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소유권 이전이 이뤄질 당시 담당 구청간부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져 고의누락과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략)

○○○○스포츠클럽은 대형 수영장과 사우나, 헬스, 스쿼시, 실내골프장 등으로 이뤄졌으며 1천여 평에 가까운 대형 시설로 시세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할구청인 ○○구청은 이에 대한 수익원(4억여 원 추정) 상당의 취득·등록세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설사와 입주민들은 ‘스포츠시설의 경우 사실상 입주민들을 위한 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소유권 변경에 따른 관련자료 수정을 위한 정액세 3만 6천 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특히 스포츠시설 소유권 이전이 추진될 당시 ○○구청 세무담당 간부가 같은 ○○○○ 분당에 거주했다가 이후 이사한 것으로 나타나 고의적으로 세금부과를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11일자 19면 『“고의누락·특혜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에서 ○○○○ 단지 내 스포츠 시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거액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누락했으며, 담당 구청 간부가 ○○○○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져 고의누락 및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의 스포츠 시설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공용취치 등기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정액세만 부과되는 것이 맞고 담당 구청 간부가 고의누락 내지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 및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 9월 11일자 19면 『“고의누락·특혜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취득세 부과 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관할 ○○구청에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부과를 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고의누락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구청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니다.

특히, 〇〇〇〇 입주민들은 〇〇〇〇개발 측의 부당한 조치로 외부인이 3년 동안 단지 내에 출입함으로써 보안 및 생활불편 피해를 겪어왔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인일보 2006년 10월 10일 18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관할구 “입주민을 위한 공용부분”)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0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장학금과 특강비를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〇〇〇〇

피신청인 : 한국방송대학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방송대학교보 : (1) 『부산총학회장 공금유용... 사용처 몰라?』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2면)

내 용 : 〇〇〇〇 부산지역총학생회장(이하 부산총학회장)의 공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산지역대학 3층 영상강의실에서는 제6차 운영위원회의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〇〇〇〇 부산총학회장은 “학술진흥재단장학금 일부와 학생들에게 받은 특강비를 부산지역총학생회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후략)

(2) 『부산총학회장 공금유용 내역 공개』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8일자 2면)

부산지역총학생회(회장 〇〇〇〇, 이하 부산총학)는 지난 7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〇〇〇〇 부산총학회장의 학술진흥재단장학금(이하 학진장학금)과 특강비 유용과 관련한 감사 내역을 밝혔다.

〇〇〇〇 부산총학회장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금액은 640여만 원, 이중 학진장학금은 270만 원, 기말시험 특강비는 37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진장학금의 경우 9명분의 장학금 중 2명 분은 수석부회장과 실무부회장이 각각 명의를 빌려 받았고, 5명 분은 찬조금 명목으로 부산총학회장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총학회장이 임의로 선정한 유아교육과 2명분도 포함돼 있다. 장학금 유용문제가 불거지자 3명 분의 장학금은 본인에게 반환했고, 2명 분은 부산총학 계좌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말시험 특강비와 관련해서는 총입금액 375만 원 중 220만 6천340원을 총학경비로 지출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로 부산총학은 사무국장이 직위 해제됐고, 수석부회장과 실무부회장은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〇〇〇〇 부산총학회장은 “모든 것을 원상태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4일자 2면 『부산총학회장 공금유용... 사용처 몰라?』 제하의 기사와 9월 18일자 2면 『부산총학회장 공금유용 내역 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총학회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학술진흥재단장학금(이하 학진장학금) 일부와 학생들에게 받은 특강비를 부산지역총학생회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학진장학금 및 특강비 유용과 관련한 감사 내역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총학회장이 유용한 금액은 640여만 원이고 학진장학

금의 경우 9명분의 장학금 중 2명 분은 수석부회장과 실무부회장이 각각 명의를 빌려 받았고, 5명 분은 찬조금 명목으로 부산총학회장이 받았으며 기말시험 특강비 일부를 총학경비로 지출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총학 사무국장이 직위해제 됐으며 부산총학회장이 모든 것을 원상태로 환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부산총학회장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학진장학금 및 특강비를 부산지역총학 생회 자금으로 사용한 바 없으며 학진장학금 및 특강비 유용과 관련한 감사내역으로 밝혀진 것은 학진장학금 집행내역과 특강비 집행 내역 등 1학

기 감사 내역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부산총학회장이 유용한 것으로 보도된 금액 640여 만 원은 유용한 금액이 아닌 학진장학금과 특강비를 전부 합친 금액이며 학진장학금을 수석부회장과 실무부회장이 명의를 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찬조금 명목으로 받은 5명분은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기말시험 특강비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등의 의결로 대학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산총학 사무국장은 이미 지난 7월 초에 자진사퇴했고 부산총학회장이 모든 것을 원상태로 환원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의 동의없이 수술장면을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보도내용

SBS-TV : 「SBS스페셜」 프로그램 (2006년 9월 10일 23:00)

내 용 : (전략) ▷성우 : 6개월이 지나 대학생이 된 ○○이를 다시 만났다. 생리 첫날인 데도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그동안 생리통이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우리는 ○○이의 생리통이 어느 정도로 호전이 되었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실에 갔던 ○○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속이 메스꺼워 헛구역질을 했다가 정신을 잃고만 것이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이는 간헐적으로 복통을 호소했지만 맥박과 혈압 심전도 등 모든 것은 정상이었다.

○○이는 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일까? 응급실

로 옮겨지는 동안 ○○이는 정신을 되찾았다. ○○이가 쓰러진 건 생리통때문이었다.

▷민○○(가명) :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준 약을 먹고 시간마다 먹어서 안아픈줄 알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아팠는데 갑자기 오후 되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성우 : 우린 ○○이를 먼저 산부인과 진찰부터 받게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이의 자궁에서 혹이 발견되었다.

▷의사 : 이거는 혹 같은데요, 입원해야돼요. 잘못해서 터지거나 꼬이면 응급 수술해야 됩니다. (중략)

▷의사 : 초음파를 보니까 우측에 달걀 사이즈 만한 혹이 있어요. 자궁내막증일 가능성이 80~90%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생리통이 심했을 것이고, 그냥 방치하면 터진다거나 꼬여서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중략)

▷성우 : 의료진은 여전히 망설이는 ○○이네를 설득해서 자궁안을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다. (중략)

▷의사 : 보호자를 좀 만나게 해줘요. 사진 갖고 보호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자궁내막증이 아주 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

린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더 진행이 돼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든가 그러면 아이를 못 갖게 될수도 있고 또 생리통이 심해서 생활하는데 곤란을 겪을수 있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중략)

▷의사 : 여기보면 빨강게 보이는 것들이 자궁내막증 병소들입니다. 이런것들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렇게 주위조직을 파괴시키고 나중에 나팔관, 난소, 자궁들이 유착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서 혹을 형성하고 혹이 터져서 응급수술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고, 이런것들이 여기에 신경절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자궁내막증이) 있으니까 생리중에 생리통이 심할 수밖에 없는거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사건 방송이 지난 9월 10일 23:00 「SBS스페셜」 ‘환경호르몬 습격’ 프로그램에서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은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적절한 처리없이 방송해 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중재합의

• 쌍방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2006년 9월 10일 23:00에 방송된 SBS스페셜 『환경호르몬의 습격』 보도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사건에 관형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합니다. <2006서울중재5 참조> □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의 횡포를 보도하면서 그와 관련없는 신청인의 대리점을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안동 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2.
처리결과 : 취 하 (조정결정 후 취하)

보도내용

안동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9월 1일 21:00)

내 용 : ▷아나운서 : 이동통신 대리점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큰 맘 먹고 휴대전화를 마련한 농촌 노인들에게 값비싼 요금제와 각종 부가서비스를 몰래 가입시키는가 하면 가입비까지 이중으로 청구했습니다. (중략)

문제대리점(자막)

▷기자 : “요금제는 왜 ‘실버’로 안 돼있고, ‘삼삼’ 요금제로 돼 있죠?”

▷대리점 : “첫 달에는 그렇게 하는게 정책이에요”

다른대리점(자막)

▷기자 : “원래 실버 하려면 삼삼을 한 달 하나요?”

▷대리점 : “아니오, 처음 듣는 얘긴데요.”

▷기자 :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리점 측 설명은 더 황당합니다.

문제의 대리점(자막)

▷기자 : “부가서비스도 한 달 의무?”

▷대리점 : “한달은 아니고 며칠만요.”

▷기자 : “두번째 달도 청구가 됐는데?”

▷대리점 : “그렇리가...”

▷기자 : 자신들의 휴대전화 판매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동통신 대리점 횡포 여전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사는 지난 9월 1일 MBC 9시

「뉴스데스크」 방송분 중 ‘이동통신 대리점 횡포 여전’ 과 관련하여 촬영된 대리점은 실제 문제의 대리점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정정보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조정대리인 박 중 기

피신청인 : 주식회사 안동문화방송

(안동 MBC-TV)

안동시 태화동 709-1번지

대표이사 이 상 근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정정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보도하는 안동문화방송(안동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안동뉴스 시간 말미에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푸른색 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게재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그 다음날로부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9.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9월 1일 「뉴스데스크」 시간에 안동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이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값비싼 요금제에 가입시키거나 가입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나온 안동시 ○○동 소재 ○○○통신은 이 방송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절반을 행정직으로 발령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2년간 책 60권 발간 성과 불구 해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7일자 6면)

내 용 : (전략) “고구려재단에 몸담았던 연구인력 20명이 동북아재단으로 들어 갔다. 그중 10명은 연구직으로 갔지만 나머지 인력은 엉뚱한 행정직으로 갔다. 이게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 (중략)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동북아재단의 연구실장을 공직자가 맡았다. 상식적으로 연구재단의 연구실장이라면 당연히 전문가인 학자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연구라는 게 학자가 맡아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그걸 왜 공무원들이 차고 앉았나? 동북아재단은 이런 문제를 언론에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자기들 잘

못이 드러나는 셈이 되니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9월 7일자 6면 『2년간 책 60권 발간 성과 불구 해산』 제하의 기사에서 “고구려재단 연구원 20명 중 10명은 엉뚱한 행정직으로 발령”이라고 보도하고 “동북아 재단의 연구실장을 공직자가 맡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 연구재단의 연구원 18명과 직원 9명을 전원 채용할 예정이고, 연구원을 행정직으로 발령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 18명 중 14명은 연구실에, 4명은 전략기획실 및 교류홍보실에 배치한 것”이며, 이는 “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동북공정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연구실장 직책은 추후 공개채용을 통해 충원할 예정이며 현재는 바른역사기획단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재단 설립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장 대리로 임시 근무하고”있으며,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은 설립 작업 진행중으로 실장급을 포함한 간부구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3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교육인적자원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절반을 행정직으로 발령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5.

처리결과 : 합의

동북아역사재단 측은 “정확한 인력 배치는 알지 못하지만 연구 인력 중 전략기획실, 행정실, 교류홍보실에 각각 1~2명씩 배치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사 문제를 시인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가 9월 6일자 『고구려 연구 손 놓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17명 중 절반 행정직 발령”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 연구재단의 연구원 18명과 직원 9명을 전원 채용할 예정이고, 연구원을 행정직으로 발령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 18명 중 14명은 연구실에, 4명은 전략기획실 및 교류홍보실에 배치한 것”이며, 이는 “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동북공정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보도내용

세계일보 : 『고구려 연구 손 놓았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1면)

내 용 : (전략) 학계는 지난달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하고 동북아시아의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출범했다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 연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흡수된 17명의 고구려연구재단 연구 인력 태반이 행정직으로 밀려난 게 이를 방증한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의 9월 6일자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중 절반 행정직 발령’이란 기사에 대해 교육 인적자원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연구재단의 연구인력을 승계할 예정이고 연구원 18명 중 4명을 전략기획실·교류홍보실에, 4명을 1·3연구실에 배치한 것은 동북공정 문제에 학술 연구와 함께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세계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10월 1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대 계파대립 파행』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7면)

내 용 : 대학 설립에 참여했던 개신교 관계자가 교육부에 대학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학의 설립위원 가운데 한 명인 개신교 장로 박모(88) 씨는 ‘법인이사들에 의한 대학재정 부실화와 주도권 다툼에 대한 특단 조치 요망’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냈다.

박씨는 진정서에서 “○○대학이 학교법인 이사들에 의해 교육재정이 부실화되고, 이사장 및 학장선출 등과 관련해 ○○·○○의 각 지역계파간 대립으로 대학이 파행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씨는 지난 2001년 학교법인 ○○○○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허가 조건으

로 교육부에 제출한 ‘수익용 기본재산 연차 확보’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03년도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대학의 학교법인을 허가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고, ○○대학은 ○○과 ○○의 90여 개 교회로부터 50억 8,000만 원을 기부 받아 수익용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해마다 받아오던 10억 원 상당의 국가지원금마저 지난 2003년부터 중단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고지원으로 충당했던 실습교육장비 및 소모품과 교직원 연금 등이 고스란히 학생부담(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4일자 7면 『○○대 계파대립 파행』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법인 ○○○○학원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계파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대학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으며, 법인 이사들에 의해 대학재정이 부실화되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되지 않아 10억 원 상당의 국가지원금이 중단되어 그 동안 국고지원으로 충당했던 실습교육

장비 및 소모품과 교직원 연금 등이 고스란히 학생부담(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대학 설립위원이라고 주장하는 박모(88) 씨가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진정서를 제출한 박모 씨는 ○○대학 설립위원이 아니며 법인 및 대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 ○○대학 내 계과간 갈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원은 설립이후 금융기관이나 사학진흥재단 등으로부터 대학재정 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받은 일이 없으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노회 회원이 매년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지원금은 학생들의 실습교육장비 구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대학 운영 정상”
- 내 용 : 본지는 9월 4일자 『○○대학 계과대립 파행』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이 이사장·학장 선출과 관련 ○○·○○노회 계과간 대립으로 대학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으며, 대학재정이 부실화되고, 수익용기본재산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박모

(88) 씨가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이사장과 학장은 ○○노회 출신으로서 ○○노회가 일방적으로 선출하여 계과대립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대학은 설립이후 재정부족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 ‘재정부실’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노회가 매년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진정인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없이 보도되어 학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대학은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새전북신문 2006년 9월 29일자 7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대학 계과대립 파행”)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새전북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9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5.

처리결과 : 합 의

전북일보 : 『○○대학 또 내분』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8면)

내 용 : <2006전북조정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전북조정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합의사항

〈2006전북조정27의 합의사항 참조〉

전북일보 : 『“〇〇대학 운영 아무 문제없다”』 제하
의 기사 (2006년 9월 29일자 14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사행성오락 관련 상품권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종 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여야중진에 후원금 뿌렸다』 제하의 기
사 (2006년 8월 22일자 A1면)

내 용 :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원과 우상호 대
변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사용된 경품용 상품
권 업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21일 조선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4~
2005년 고액 후원금 기부자 명단과, 문화관광부로
부터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받은 19개사 중
주요 주주 및 임원 명단이 공개된 일부 업체를 분
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중략)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작년 2월 같은 회사의
김〇〇 이사에게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조선일보는 지난 2006년 8월 22일자 A1면 『여
야중진에 후원금 뿌렸다』 라는 제목으로 이종걸
의원도 작년 2월 (주)한국문화진흥의 김〇〇 이사
에게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바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기사
로서, 사실은 후원인 김〇〇은 이종걸 의원에게 후
원금을 보낸 2005년 2월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주)한국문화진흥의 이사가 되었으므로 후
원금 낼 당시는 상품권업체인 (주)한국문화진흥
의 이사가 아니었고, 이종걸 의원은 (주)한국문화
진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저희 조선일보사는 허위기사로 인
하여 이종걸 의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준 점
에 대하여 반성하며 동시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
을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의 8월 22일자 ‘바다이야기 관련
상품권업체들 후원금’ 기사에서, 이종걸 의원이
2005년 2월 상품권업체인 (주)한국문화진흥의
김〇〇 이사로부터 (주)한국문화진흥 이사가 된
것은 금년 5월이므로 이 의원이 상품권업체로부
터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
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선일보 2면 ‘바로잡
습니다’ 코너의 맨 앞부분에 2006년 10월 23일(토
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
월 18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수원시가 시장 소유 아파트 단지를 피하기 위해 애초 결정된 분당선 노선을 주민 협의 없이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원시 (시장 김 용 서)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부일보 : (1) 『“분당선 연장선 수원시장 소유 아파트 피해 직선노선 곡선으로 바꿨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19면)

내 용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택가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가 분당선 연장노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김용서 수원시장 소유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 당초 안(案)에서 주택가를 지나는 방향으로 변경, 확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8일 수원시 매탄3동 주민들은 지난 2005년 확정된 분당선 수원지역 구간 노선 중 매탄동 230여m 구간이 주민들도 모르게 당초 매탄동 ○○아파트를 지나는 직선 계획에서 변경돼 매탄동 주택가를 지나는 곡선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주민 10여 명은 “김 시장 소유의 아파트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시장의 아파트가 노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날 김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향의 방문했다. (후략)

(2) 『분당선 노선 반발 주민들 “주민설명회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0일자 19면)

(전략) 분당선 연장 노선 관련, 매탄동 주민들이 결성한 ‘매여울 목소리’ 김○○(65) 회장은 19일 “분당선 연장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매탄동 일대가 곡선화된 점이

드러났다”며 “분당선 노선 선정에 대해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등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분당선 연장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주민들은 노선 확정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정작 재산상 피해를 당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노선 결정 등에 대해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특히 주민들은 매탄동 지역 분당선 연장 노선이 당초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김용서 수원시장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피하여 결정된 점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후략)

(3) 『수원시장 ‘분당선 민원’ 직접 소명하라』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1일자 17면)

(전략) 수원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지하철 분당선 연장노선 결정 과정에서 김 수원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물론 김 시장 개인재산과 깊이 관련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의 소유로 돼 있다는 ○○아파트를 피하기 위해 직선을 접고 곡선으로 바꿨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19일자 19면 『“분당선 연장선 수원시장 소유 아파트 피해 직선노선 곡선으로 바꿨다”』, 20일자 19면 『분당선 노선 반발 주민들 “주민설명회 없었다”』 제하의 기사 및 21일자 17면 『수원시장 ‘분당선 민원’ 직접 소명하라』 제하의 사실에서 현 수원시장 소유의 아파트가 위치한 단지를 피하기 위해 노선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수원시장이 승인해 노선이 확정됐고 분당선 노선 확정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분당선 연장선 노선은 현 수원시장이 수원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인 2001년 6월 9일 철도청이 제시한 노선 계획 원안대로 수원시가 협의해 통과·결정됐으며 분당선 노선에 관한 주민설명회 역시 일간언론사에 개최 공고를 내고 철도청 주관으로 2003년 8월 21일 관계자 및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 및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9월 19일자 19면 『“분당선 연장선 수원시장 소유아파트 피해 직선노선 곡선으로 바꿨다”』, 9월 20일자 19면 『분당선 노선 반발 주민들 “주민설명회 없었다”』 각각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수원시는 노선 결정시기는 김용서 시장이 수원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인 2001년 4월 25일자로 이미 철도청에서 현재의 곡선노선으로 계획하여 수원시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수원시장이 그 외 소

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피하기 위해 직선을 곡선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노선결정과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한겨레신문”과 “중부일보”에 2003년 8월 13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철도청 주관으로 2003년 8월 21일 14시에 수원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시의원, 시관계자, 철도청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6년 10월 10일 18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매탄3동 주민들 의혹 제기...시장실 항의 방문도)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반론·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0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특허 등록기간 단축에 초점을 둔 현 특허행정이 외국 기업에 유리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특허청 (청장 전 상 우)

피신청인 : 전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6.

처리결과 : 취 하

다. (후략)

(2) 『특허 등록때 권리범위 명확히』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5일자 3면)

(전략) 그러나 현행 국내 특허제도는 오히려 외국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일정 부분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원일부터 등록일까지의 기간이 외국에 비해 유난히 짧은 현행 특허행정이 오히려 외국 특허권자들의 공세에 앞장서 길을 터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략)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은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4~5년 걸린다”며 “5년 뒤 지급해도 될 로열티를 굳이 당해연도에 낼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인터넷디지털 등 해외 특허권자의 특허등록 시 권리 범위를 정확히 명시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보도내용

전자신문 : (1) 『심사 신중 기하라』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5일자 1면)

내 용 : (전략) 그러나 외국 기업의 특허 출원을 가급적 지연시키거나 신중하게 처리하는 미국·일본 등과는 달리 국내 특허당국은 등록기간 단축에 행정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특허 심사 및 등록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

다. 권리 범위를 최대한 축소시킨다면 국내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15일자 1면 『심사 신중 기하라』와 3면 『특허 등록때 권리범위 명확히』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특허 당국이 특허 등록 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특허심사 및 등록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현행 국내 특허 제도는 자국보다는 오히려 외국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외국처럼 특허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의 기간을 현재보다 늘리면 국내 기업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며 권리범위를 축소시킬 경우 국내 기업들이 지재권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 측은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전경련이 조사한 국내기업의 74% 역시 10개월 이내의 조기심사를 희망하고 있고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연간 약 1조 5천 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 결정한 정책이며 공업 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 의해 내외국인을 차별해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특허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특허청 측은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된다고 하여 로열티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허 심사관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고 외국 기업의 출원이라 하여 부당하게 권리범위를 축소시키는 등 다른 출원과 차별하여 심사할 수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전자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4일자 2면)

내 용 : 지난 9월 15일자 본지 1·3면에 각각 게재됐던 『심사 신중 기하라』 및 『특허 등록때 권리범위 명확히』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특허청은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은 전 세계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정책”이라며 “국내 특허제도가운데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뒷거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제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일보 : 『○○ ‘하수관거 공사’ 시끌』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0일자 6면)

내 용 : ○○시가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을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특정기술을 보유한 업체

로 제한했다가 관련업체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뒤늦게 공고를 취소했다. (중략)

오○○ 시의원(44)은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공고를 내고 입찰을 추진한 것은 특정 업체와의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만일 시 예측대로 입찰이 됐다면 혈세를 그냥 낭비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지난 9월 20일자 6면 『○○ ‘하수관거 공사’ 시끌』 제하의 기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공고를 내

고 입찰을 추진한 것은 특정업체와의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만일 시 예측대로 입찰이 됐다면 혈세를 그냥 낭비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하는 시의원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시에서는 조달청에 계약의뢰시 모든 하수관 전체보수공법 신기술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특정업체와 뒷거래를 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기획예산처가 왜곡된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장 병 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영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2030’』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8일자 A3면)

내 용 : 지난달 말 정부는 복지국가 청사진으로 ‘비전2030’을 발표했다.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2030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소개했다. 왜 하필, 세대가 바뀌는 24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뒤인 2030년을 목표로 정했을까.

이런 궁금증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정부는 ‘비전2030’을 준비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 기간을 묻는 질문에 2030년을 지적한 응답자는 24.4%였고, 67.4%의 응답자는 2015년을 선택했다. 10명 중 7명 꼴로 당장 9년 뒤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비전 2030’을 만든 기획예산처 관련자에게 “왜 국민들이 원하는 2015년이 아니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발표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정부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도 있

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 한가지, KDI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만약 귀하가 선진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하고, ①미국과 같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수준은 낮지만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②북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내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 중에서 고르도록 했다. 그 결과 67.8%가 2번을 선택했다. 이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이 늘더라도 복지 혜택이 많아지는 국가를 선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한 선호도를 일반 국민의 일반적 선호도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렇게까지 통계를 왜곡하면서 국민들에게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반론보도문

- 제 목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8일자 A3면에 『영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2030’』 제목으로 ‘비전2030’ 수립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민들은 정작 2015년까지의 청사진을 원하였으나, 정부는 203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민이라는 특정상황을 전제로 한 선호도를 일반적인 선호도로 둔갑시켰으며, 유럽형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비전2030’ 준비 과정에

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하자 없는 통계자료이며, ‘비전2030’ 보고서는 특정 경제모델을 홍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2015년까지만의 비전을 제시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2016년, 총인구가 줄어드는 2020년 이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2015년을 포함하는 2030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설문조사시 사용한 ‘이민을 간다면’이라는 가정은 상황설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기술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9월 18일자 A3면 『영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2030’』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비전 2030’에 대해 KDI 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경제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만든 통계로 작성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경제섹션 2면에 2006년 10월 25일까지(토요일제외) 위 보도문을 종전 쌍방 반론 보도해온 양식에 따라 게재하되, 제목은 본문활자크기보다 한 급수 큰 크기의 고딕체로,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0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환경부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환경부 장관의 입장을 고려해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을 연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치 범)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한·미 이상기류의 핵심은 미군기지 오염치유 문제?』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9일자 5면)

내 용 : (전략) 한·미가 지난 2004년 말 2011년까지 59개 미군기지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뒤 환경오염 치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 협상단은 국내 기준에 따른 환경 치유 뒤 반환을 요구

한 반면 미국 측은 한국, 일본, 독일과 맺은 SOFA 규정대로 KISE(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범위를 넘어서는 오염은 치유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그러다 올초 지하저장탱크 제거 및 주위 오염토양 제거·처리, 사격장 불발탄 제거 등 8개항을 추가 해결하는 선으로 물러섰다. 5개 오염기지에 대해선 지하수의 기름오염피도 제거하는 ‘바이오슬러핑’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측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지난 3월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환경부 실무자는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미측은 “한국이 미국을 기만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 이후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당시 환경부 장관(건강관리공단이사장 내정)의 대구지역 출마를 감안, 5·31 지방선거 이후로 협

상을 늦추라는 주문이 정부협상단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에서 8월 29일자 5면 『한·미 이상기류의 핵심은 미군기지 오염치유 문제?』 제하의 기사에서 “환경부 실무자는 긍정 검토 했으나 청와대가 최종결정유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우리정부에서는 SOFA합동위원회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 SOFA환경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환경부, SOFA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방부 등 정부내 3개 부처가 협력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미측과 협상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5·31 지방선거 이후로 협상을 늦추라는 주문이 협상단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확인 결과, 미국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협상을 계속 진행하게 된 것이며, 우리정부에서는 당초 하나도 치유할것이 없다는 미국정부를 설득하면서 보다 나은 수준의 환경치유협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지난 1년여 동안 협상을 진행, 7월 14일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부분적인 협상을 타결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8월 29일자 5면 『한·미 이상기류의 핵심은 미군기지 오염치유 문제?』 기사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와 관련, 정부가 5·31 지방선거에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출마한 것을 감안해 미국과의 협상을 늦췄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청와대가 환경오염 치유문제 협상에 직접 간여하거나 결정을 유보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으며,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의 대구시장 출마 또한 한·미 협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006년 10월 18일까지 서울신문 5면에 보도하되, 제목 활자는 고딕으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7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고서방에서 경매된 ‘송조표전총류’가 도난품으로 암거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박 ○ ○,

2.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문화제가 털린다 - 도난, 불법유통실태 진

단』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28일자 4면)
내 용 : (전략) 국보급 문화재로,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경매시장에 나왔다가 현재 경기도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는 <송조표전총류>도 도난품인 게 확실해 보인다. 본래 10권이 한묶음인 <송조표전총류>는 암거래 되는 과정에서 여러 다발로 분책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3억 5천만원의 입찰가로 경매에 부쳐졌다가 박물관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매업자는 경주 양동마을 ○아무개 씨가 책을 내놨다고 했지만 책이 쪼개진 정황 등을 볼 때 도난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고서 전문가들은 <송조표전총류>가 워낙 고가인 국보급 문화재여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자 분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난 도굴된 문화재가 박물관에 일단 들어오면 본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일은 더욱 힘들어진다. '박물관'이라는 공신력에 기대어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책임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6월 28일자 4면에 『문화재가 털린다 - 도난, 불법유통실태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고서방(대표 박○○)에서 경매로 유통되었던 경주 양동마을 ○아무개가 내놓은 '송조표전총류'가 도난품이고 암거래되는 과정에서 여러 다발로 분책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경주시 양동마을에 사는 이○○ 씨가 조상대대로 전해 온 위 '송조표전총류'를 ○○고서방(대표 박○○)에 판매 위임하였고, 위 '송조표전총류'는 경매를 거쳐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으로서, 도난품이거나 암거래된 사실이 없으며, ○○고서방(대표 박○○)에서 도난품을 경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6월 28일치 4면 『문화재가 털린다 - 도난, 불법유통실태 진단』

• 본 문 : 경기도 박물관 소장 중인 <송조표전총류>는 경주시 양동마을 이아무개씨가 대구의 ○○고서방(대표 박○○)에 판매 위임해 경매를 거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한겨레 2006. 10. 13.자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고딕으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2006 가합9699호 손해배상청구등의 소를 취하하며, 이 사건과 관련 별도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www.hani.co.kr 에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2006. 10. 13.까지 위 1항의 보도문을 추가하여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주최한 마라톤대회에 시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추가지원을 해 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용인신문사

피신청인 : 용인인터넷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용인인터넷신문 : (1) 『지역 Y신문 주최 마라톤대회 공무원 통장이체 자금지원 적극 개입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5일자)

내 용 : 누구의 돈인데 이렇게 집행하여도 문제

가 없는가?

이 기사는 현재 정산절차를 마친 용인관광마라톤 대회에 대하여 용인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조금 1억 원 이외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여 취재 편집 중입니다. (후략)

(2) 『지역 ‘Y’ 신문주최 마라톤 대회 공무원 적극 개입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8일자)

용인시 공무원들의 시예산 집행에 도덕적 불감증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상부지시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지원을 하였던 것인지 돈의 출처에 대하여 이를 감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2005년도 예산집행과 2006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회계 처리한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이중삼중으로 시민의 혈세를 사기업에 지원하고 있어 이를 두고 시민들은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략)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하고서도 용인시는 각부서별로 참가비가 아닌 지원금을 따로 하였고 2005년 4월 6일 용인시장이 시의 예산에서 보조금이 아닌 10,69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료에서도 일반기업체의 행사에 용인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또 다시 1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한것이 확인되고 있다.

과연 용인시장이라는 명의의 이 돈이 용인시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한 세금인 공금인가? 아니면 개인돈인가? 를 의문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5년 4월 4일 추가로 450,000원과 75,000원을 입금시켜 왜 이중삼중 입금을 했는지 공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수지지역 상현동 사무소에서는 4월 6일 75,000원과 600,000원을 입금하였고, 성북동에서도 125,000원을 추가로 입금조치하는 등 용인시장이 10,690,000원을 입금한 4월 6일을 기점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용인시 고위관계자들이 각동 동사무소에 지시하였는지 시민들이 의혹을 갖게 한다.

그러나 2005년도 마라톤대회에서 지원을 하던 각부서에 용인시장으로 서정석 시장이 당선되고 2006년도 관광마라톤 대회에서는 5.31 지방선거가 있어 5월에서 6월로 개최가 미루어지면

서 2005년도 각부서에서 지원하던 금액이 전액 입금되지 않는 등 웃지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2006년도 용인시 공무원들이 지원한 금액을 보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1,290,000원과 30,000원을 5월 4일 용인시의회에서 600,000원을 지원한 것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도 5월 9일 입금표에 문제의 명단이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박○○ 이라는 이름으로 5월 9일 입금된 금액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치고는 많은 3,030,000원이었고, 하루가 지난 다음날인 5월 10일 다시 박○○으로 30,000원을 입금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 하여본 결과 박○○은 용인시 여성공무원으로써 용인시청 ○○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 그 많은 자금에 대한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중략)

또한 수지구의 수지출장소, 성북동, 상현동 등 Y신문에 입금시킨 금액을 보면 처리한 은행이 일괄적으로 역삼동 축협으로 밝혀지고 있어 수지구 관내 은행에서 입금을 시키지 않고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처인구내의 은행에서 입금을 시켰는지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다.

상현동의 관계공무원은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아 누가 입금을 시킨것인지는 모르지만 상현동 사무소에서 입금한 것은 아니라고 답을하여 용인시 특정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동사무소 명의를 조직적으로 한 은행에서 일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당 신문사에서 계좌추적을 통하여 입금시킨 은행의 코드를 확인한바 공보실과 용인시장 명의로는 용인시청 안의 농협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이었고 각동사무소의 입금은 처인구내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입금시킨 자료가 포착되어 조직적으로 한 은행에서 일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략)

특히 통장에 나타나지 않는 동사무소와 읍사무소는 행사 당일 직접 접수하였다는 증언을 하고 있어 마라톤 대회에 시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중략)

그러나 Y신문사에서는 참가신청자를 4,500명으로 예상하였고, 예산도 함께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산 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입금처리되어 있는 명단은 1,000여 명으로써 3,500여 명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행사 당일 접수하고 입금한 내역이 별도로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신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실제 참가자 숫자와 참가비 수입을 확인하여야 할 공보실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신문사의 정산보고만을 믿고 감사보고를 완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후략)

(3) 『용인신문 모 기자! 검찰청에 고소하겠다 협박전화』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용인인터넷신문사에서 기획취재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Y신문 소속 기자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청에 고소를 하겠다며 휴대폰 전화로 기사를 삭제시켜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과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략)

문제의 발단은 용인신문사에서는 2005년도 마라톤 행사 후 시보조금 정산절차를 기한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시의회와 지역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있었다. 또한 2006년도 행사는 5월에 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쳐질수 있어 선거가 끝난뒤 개최하였다. (후략)

(4) 『공보실! 용인 관광마라톤 대회 정산절차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1일자)

(전략) 공보실에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취합하여 입금시켰다는 내용 중에서 참가자들의 현황을 보면 1인당 15,000원으로 계산을 할때 누락되어 있는 수지구보건소 6명 90,000원, 농업기술센터 7명 105,000원, 여성회관 4명 60,000원, 포곡읍 6명 90,000원, 남사면 20명 300,000원, 이동면 12명 180,000원, 백암면 10명 150,000원, 유림동 18명 270,000원 동부동 4명 60,000원, 도시건축과 3명 45,000원 등 입금액이 빠져 있다. 이렇게 자료를 확인하여 보면 공보실에서 당시 3,030,000원을 입금시킨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

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15일자 『지역 Y신문 주최 마라톤대회 공무원 통장이체 자금지원 적극 개입 드러나』, 18일자 『지역 Y 신문주최 마라톤 대회 공무원 적극 개입 드러나』, 19일자 『용인신문 모 기자! 검찰청에 고소하겠다 협박전화』, 21일자 『공보실! 용인 관광마라톤대회 정산절차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 제하의 기사에서 용인신문이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용인시 공무원들이 적극 개입해 불법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특정 부서와 공무원의 이름을 적시해 이들의 불법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보도했고 용인시 공무원들이 마라톤 참가비를 상부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냈으며 그 돈은 공금이었고 마라톤 현장 접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일에 이중삼중으로 입금이 이루어져 불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며 지방선거로 인해 2006년 마라톤대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입금을 하지 않았고 명단 누락 의혹과 협박전화가 있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통장에 입금된 돈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낸 참가비이며 강압적으로 독려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접수를 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특정 날짜를 전후해 참가비가 입금되는 것은 마라톤 대회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지방선거로 인해 마라톤 대회에 공무원들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선거일 20일 전에 공무원들의 참가신청이 이미 마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명단 누락 의혹이나 협박전화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공기로 가는 자동차를 곧 상용화한다고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업무대행 이사 고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9월 20일 21:00)

내 용 : ▷앵커 : 이른바 공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며 투자자를 모았던 한 기업인이 이제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기름대신 공기로 가는 엔진, 이른바 공압식 엔진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회사입니다.

곧 상용화가 된다면 주주들을 모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자동차 회사와 합작을 했고 올 초까지 상용차 완제품을 받기로 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현지 회사는 자동차 생산 능력이 없는 개조 공장, 이들이 보내온 검사 보고서에는 엔진 효율이 낮아 실망스럽다고 쓰여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직 외교관은 자신도 이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직 주한 A국 대사 :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줄도 몰랐다. 사진이 찍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홍보책자에 쓰이는 것을 허락한 적 없다.” (중략)

▷기자 : 또 국정원도 캄보디아 정부에 조 회장의 강제 추방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9월 20일 「KBS뉴스9」 프로그램 ‘공기 엔진 신화, 사기 혐의로 몰락’ 제하의 보도에서 네덜란드의 한 자동차 회사와 합작한 A 회사가 올 초까지 상용차 완제품을 받기로 했다고 홍보했으며 합작한 네덜란드 회사는 자동차 개조 공장에 불과하고 A회사의 제품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으며 전직 주한 A국 대사가 “A회사의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고 국정원이 A 회사 전 대표의 강제 추방을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회사는 ‘공압식차량 상용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올 초까지 상용차 완제품을 받기로 했다고 홍보’한 사실은 없었으며 네덜란드 회사가 보냈다는 보고서의 내용 역시 객관적인 자료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전직 주한 A국 대사와 A회사는 사업계약(선임고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해외 방송과의 인터뷰도 진행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국정원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A회사 전 대표의 강제 추방을 공식요청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자료를 보도한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할 수 없다. □

신청인 부처가 시행 중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1) 『알맹이 없는 농촌관광마을사업, 비슷한 프로그램 난립 관광객 외면』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6일자 1면)

내 용 : 정부 각 부처가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2000년부터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사업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한 채 곪돌고 있다.

6개 부처별로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비슷한 프로그램의 마을이 난립해 관광객이 찾지 않는, 이름만 관광마을인 곳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마케팅이나 사후 지원이 없어 당초 취지와 달리 농가 소득에 보탬도 되지 않고 있다. (중략)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업 성과는 초라하다.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17곳의 관광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0% 미만인 가구가 53.8%, 10~30%인 가구가 14.7%로 대부분을 차지해 소득 기여도가 낮았다. (후략)

(2) 『2억 들인 체험마을 연수입 1천만 원』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6일자 5면)

(전략)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억 원을 받은 마을 주민들은 1년동안 마을회관 보수, 마을길 단장, 체험 농장·산책로·숙박시설 조성 작업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하지만 지난해 관광 수입은 고작 1,000만 원, 첫째라지만 들인 품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에 마을 주민들의 실망감은 컸다. (중략)

시·도별 사후 지원도 없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3개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도별 지원이 단 39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까지 각 부처가 집행한 국고 지원금 629억 원과 향후 들갈 1,086억 원까지 총 1,715억 원의 국민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질 판이다. (중략)

특히 2001년과 2002년에 지정된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지난해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각각 4,258원,

8,538원에 불과했고 2002년 지정 아름마을도 7,596원으로 1만 원이 채 안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16일자 1면 『알맹이 없는 농촌관광마을사업, 5면 『2억 들인 체험마을 연수입 1천만 원』 제하의 기사에서 “부처별로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비슷한 프로그램의 마을이 난립해 관광객이 찾지 않는 마을이 대부분이며, 또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마케팅이나 사후지원이 없어 당초 취지와 달리 농가 소득에 보탬도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05년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찾은 방문객수는 마을당 1만 2천여 명, 농촌체험관광 매출액은 마을당 2억여 원에 이르며, 연수입 1천만 원 미만인 마을은 일부(5.3%)에 불과하다”며,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합의하여 마을협정을 맺고 사업추진의향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경쟁력 있는 마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만 늘리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시 2억 원의 지원 이외 마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을 이끌어 나갈 인력육성 및 역량증진, 홍보·마케팅, 사후지원, 제도적 기반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2일자 2면)

내 용 : 농림부는 본보 9월 16일자 1면에 보도된 『알맹이 없는 농촌관광마을사업, 비슷한 프로그램 난립 관광객 외면』 기사에 대해 “지난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는 마을당 1만 2,000여 명, 매출액은 마을당 2억여 원에 이른다”며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 이 사업은 농가소득의 한 부분으

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추진

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육성, 역량증진, 홍보·마케팅, 사후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살인사건 용의자의 회사동료인 신청인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9.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네. 그러면 쿠르조씨가 그때 날짜로 보내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전화 주세요.

▷SBS-TV : 여보세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SBS-TV 는 지난 9월 23일 「SBS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취 및 방영을 해 신청인의 인격권 및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2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SBS-TV : 「SBS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2006년 9월 23일 22:55)

내 용 : 간 고등어는 누가, 왜 배달 시켰나?

또 한가지 의문점은 쿠르조씨가 가족들 없이 혼자 일시 귀국한 상황에서 장기간 먹어야하는 간 고등어를 주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문업체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중략)

▷SBS-TV : 혹시요, 간 고등어를 선물로 주려고 하신거예요?

▷간 고등어주문자 : 어, 아니예요.

▷SBS-TV : 어, 혹시 그러면 장 루이씨한테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간 고등어주문자 : 그렇죠. 그분이 부탁을 해서 제가 주문을 해 드린거고 그런 거예요.

중재합의

•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속력있는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로 합의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기로 한다.

• 양 당사자는 중재부에서 내리는 중재결정이 사법적인 최종 판단으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점을 충분히 알고서 본 합의에 도달하였다. <2006서울중재6 참조> □

신청인이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BS-TV : 「SBS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2006년 7월 29일 22:40)

내 용 : (전략)

▷한○○ : 제가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지도... 그 사람 말처럼 제가 이 사회 쓰레기인 것처럼 되게 비참했어요.

▷진행자 : 올해 대학 졸업반인 한○○양. 그녀는 대학에 갓 입학한 스물살에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넘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 : 한달에 한 세 번 네 번이요.

많게는 네 번이고요. 엄청 두들겨서 팬다는 정도로 그런 식이었거든요.

머리채도 뜯겨보고요. 대결레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한 번 맞아도 봤고 그 다음에 물 떠놓고 머리 담그는 물고문 같은 것도 당해보고 테니스 라켓 같은 것으로 맞아보고, 테니스 공 같은 것을 던져서 맞기도 했거든요.

▷진행자 : 서로 싸우다 감정이 격해 벌어진 몸싸움이 아닌 그야말로 고문과도 같았던 폭행속에 맞는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는 ○○양.

▷한○○ : 자기가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가... 아무튼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왜 맞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남들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

못한 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그때마다 폭행은 심해졌고 ○○양은 점점 무기력해져 갔답니다.

▷한○○ : 한번은 뛰쳐나갔는데 잡혀서 더 맞았거든요. 때릴 때 반항 못하게 묶어 놓고 때린 적도 있었거든요. 넥타이 끈이라든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주종관계라고 하죠. 그 사람 말 안들으면 큰일난다.

내가 다친다라는 게 좀 더 강해서 무서워서 그런(헤어지자는) 말을 못 꺼냈어요.

(중략)

▷진행자 : 결국 학교를 휴학하고 몰래 이사를 한 끝에 겨우 벗어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도 그때의 공포가 남아있다는 ○○양. 이처럼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처럼 폭력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를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이 지난 7월 29일 「SBS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위험한 데이트' 편에서 한○○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J양의 전 남자친구로 보도된 이는 어떠한 데이트 폭력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캐나다가 NAFTA 체결 후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M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한 덕 수)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W」 프로그램 (2006년 9월 15일 23:50)
내 용 : ▷진행자 :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FTA 타결을 위해서 그 협상과정을 빨리 진척시켜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상속도를 빠르게 하는 과정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우리 한국의 이익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W는 그동안 세 차례 미국과 FTA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들을 방송한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체결한 나프타가 캐나다 사회에 미친 영향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를 구한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한 브라이언 멀루니 전 캐나다 수상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캐나다 지식인들의 반론도 취재했습니다. (중략)

▷기자 : 액션 센터라고 불리는 이곳은 캥코사 실직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 덕은 실직 후 2년간 5개의 직업을 전전했다. 나프타 이후 생겨난 일자리는 파트 타임과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중략)

▷기자 : 비정규직 또한 급격히 늘었다. 1991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5%가 비정규직이었는데, 1996년에 11.6%로 증가하였다. (중략)

▷기자 : FTA 체결 후 캐나다 사회복지정책은 미국식으로 하향 평준화됐다. 89년 캐나다의 실업자 중 87%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00년에는 고작 36% 실업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갔다. (중략)

▷기자 : 밴쿠버에서 홈리스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임대료와 집마련 비용은 점점 높아졌지만,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엄격해졌다. 밴쿠버는 지난 3년간 홈리스의 수가 2배로 늘었다. 밴쿠버 뿐 아니라 토론토도 극빈층과 홈리스의 수가 급증했다. 최소의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숙자생활을 하기도 한다. (중략)

▷기자 : 20년 동안 평균 노동자의 소득이 7% 증가한 반면, 상위 1%의 계층의 소득은 113%나 증가했다. 악화되는 소득의 양극화는 복지 국가인 캐나다의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80년대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가 전세계 1위였던 캐나다는 8위로 하락했다. (중략)

▷장 이브(캐나다 시민회 무역담당관) : “캐나다에 대한 97%의 투자는 기업 인수이다. 그저 미국 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나 인프라 구축 없이 캐나다 회사들을 인수하는 것뿐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9월 15일 「W」 프로그램 ‘깨어진 약속 - 캐나다 FTA’ 제하의 방송에서 캐나다에서는 캐나다-미국간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실업 급여 수혜자가 감소하고 빈곤층이 크게 증가했으며 인간개발지수(HDI) 역시 급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캐나다 기업의 대다수를 인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았으며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분석 보도하면서 캐나다의 예를 보면 미국과의 FTA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캐나다의 정규직 일자리는 NAFTA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업률 역시 지난 3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소득 격차의 확대는 FTA 때문이 아니라 캐나다 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신규이민자 중 저소득층 비율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혜자 감소는 FTA와 별개로 누적된 재정적자와 실업보험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에서 비롯된 것이며 빈곤층 비율 역시 FTA 체결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개발지수에 관한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며 미국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비율은 13%이고 미국기업의 인수로 투자 증가 및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캐나다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미국과의 FTA나 NAFTA에 의해서만 발

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사실 보도이므로 정정·반론보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해외로 밀반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KBS수요기획」 프로그램 (2006년 7월 26일 23:40)

내 용 : (전략) ▷기자 : 사건은 지난해 국정원에 접수된 한 통의 제보로 시작 됐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최첨단 바이오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무당거미의 강력한 천연 단백질 분해효소를 사료나 의약품에 활용하는 이 기술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돼 일찌감치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바이오 분야 신기술이었다.

▷박사 : 지금까지 거미에서 미생물이 발견되고 보고된 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처음. 학술적 의미 이외에 이것들이 경제적으로 산업화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는 특징이다.

▷기자 : 현재 전 세계 효소 시장의 규모는 약 6조 원.

상용화만 된다면 그 시장을 선점해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개발에 참여한 핵심 연구원과 직원이 이유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고, 그 직후

그들이 세운 회사에서 비슷한 기술로 개발된 제품이 출시됐다는 것이었다.

즉시 국정원 산업보안 정예팀이 소집됐다. (중략)

최근들어 국정원은 증가하는 IT, 반도체 등 첨단 기술분야 유출 사건에서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팀장 : 그러나 이들에게도 최초의 바이오사건은 쉽지 않았다.

▷팀장 : 처음 딱 봤을때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 그렇게 나오니까 천연 단백질 분해효소란 자체를 모르지 않나. 개념자체를. 천연 단백질은 알겠는데 분해효소는 뭔가. 분해는 알겠는데 효소는 뭔지.

▷기자 : 제보의 심각성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바이오 분야의 전문지식 없이는 사건 개요를 파악하는 일조차 어려웠다.

수십 권의 논문을 읽는 일부터 업무가 시작됐다.

▷오요원 : 관련자들 논문은 다 찾아 봤는데 처음 봐서 모르겠더라. 또 읽어도 모르겠고 가서 인터넷 찾아보고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보고...

▷기자 :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방문에 정보기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있던 사람들은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생물협회 : 활동자체가 노출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관계자가 와서 첨단 기술, 바이오 등에 관심갖고 대화를 시작하고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관계의 시작과 전개. 아! 산업 활동 촉진이라는 쪽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구나 하고 놀라기도...

▷기자 :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

인지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됐다.

국정원 해외 지부를 통해 검증한 결과, 이 기술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독보적인 바이오 기술임이 확인됐다.

▷팀장 : 조사해보니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됐고 바이오쪽 상용화가 어려워, 그런데 바이오쪽에서 상용화된 몇 개 안되는 기술이라는게 몇 달 공부하다보니 알게 된 것.

▷기자 : 용의자들의 의심스런 정황들이 포착됐다.

그들이 출시한 제품이 피해업체의 기존 제품과 상당히 유사했다.

더 심각한 내용도 확인됐다.

문제 회사의 등기부 등본에 피해업체의 해외 직원인 외국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양요원 : 일단 이게 단순 국내 기업간의 문제가 아니고, 해외로까지 유출되서 국가경제에 안 좋은 영향 미칠수 있다는 고민까지 되면 사실 그날만큼은 잠이 잘 안와, 너무 늦은건 아닌가. 유출된 건 아닌가... (중략)

▷기자 : 담보를 거둬하던 사건에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엮혀있던 실타래를 풀어줄 결정적 정보가 입수됐다. 한 벤처사업가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국정원에 비디오테이프 하나를 제보한 것이다.

사업차 해외에 나갔던 이 사업가에게 한 외국인 이 기술 유출을 알선했 주겠다고 제의를 했다는 것.

제보 화면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화면 속에 등장한 알선자는 바로 바이오 사건의 외국인 용의자였던 것이다.

▷조팀장 : 비디오를 보니까 이 기술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되려는 기도를 알게 된 거죠 아까 나왔던 ○○국인 ○○○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서 기술 유출하려는 정황을 확인한 거죠

▷기자 : 용의자들이 갑자기 해외로 출국했던 이유도 단서가 잡혔다.

해외 첩보망을 통해 입수한 양해각서에서 국내 외의 몇 개 업체가 기술유출을 피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이 포착된 것이다.

그런데 양해각서 내용을 확인하던 중 새로운 사

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제3의 업체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기술 유출을 기도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유통을 담당할 회사인지 확인 작업이 필요했다.

공개된 정보 만으로는 업체의 연관성을 파악할 길이 묘연했고, 접근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기로 했다.

두 요원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로 위장해 해당 업체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끌어낼 적절한 지식이 필요했고, 준비는 밤을 새는 공부로 이어졌다.

▷오요원 : 그쪽 분야 사람들 만나려면 그쪽 기본지식 갖고가야. 기존지식 갖고는 대화 10분도 이 끌어내기 힘들어. 특히 우리가 알고 만나는데 아니라 처음 만나는 입장. 그사람 수준 못되더라도 그 사람 따라갈 정도의 지식은 갖고가야.

▷기자 : 다음날 두 요원이 제3의 업체가 위치한 지방을 찾았다.

한 벤처타운에 위치한 제3의 업체.

이 업체 역시 바이오관련 업체다.

▷오요원 : 사장님 되십니까? 저희가 M&A관련해서 주식 투자했는데...

▷기자 : 소액 투자자로서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다.

▷제3의업체 : 제품 개발한 것들은 저희가 리서치 한뒤에 개발한 것들도 있구요... 외국에서 이런 거 이런거 하면 살 수 있다 해서 산것도 있고, 어떤건 이것처럼 소 뒷걸음질 치다가 만든것도 있어요. 지금은 외국쪽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기자 : 제3의 업체가 유전자를 변형시켜 주는 업체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양요원 : 보니까, 그 업체, 제3의 업체가 이런일 하는 업체더라. 변형하는 업체. 당연히 그럼 변형 해주니까 10프로 틀린거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대로 쓰면 안되잖아. 100프로니까. 바로 걸리는거지. 10프로 의혹이 해소되면서 그때 기분, 막혔던 머릿속 막혔던 뭔가가 하나 뚫리는듯한 희열 느껴.

▷기자 : 마침내 어긋나있던 사건의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때맞춰 외국인 용의자의 입국소식까지 전해졌다.

팀원 모두가 공항으로 소집됐고, 하나둘씩 요원들이 모여들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6일 「KBS 수요일기획」 프로그램 ‘최초공개-국정원’ 제하의 방영물에서 주식회사 ○○○(이하 용의자)과 주식회사 ○○포커스(이하 공모자)가 해외로 유출하려고했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세계 최초의 기술적 가치가 있는 미생물이며 엄청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용의자가 중국인과 공모하여 해외 기술 유출을 시도했으며 용의자와 관련있는 제3의 업체(공모자)를 거론하면서 ‘기술 유출을 위해 단백질의 10%를 변형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세계 최초의 기술적 가치

가 있다고 보도된 단백질 분해 효소는 이미 30여년 전에 발견된 기존의 미생물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내에서 이미 여러 기업이 상용화 및 시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는 중국인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풀려나 중국으로 귀국한 상태이며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원래의 단백질을 10% 변형시키고도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기술 유출용 단백질 변이체는 만들 수도 없고 또 만들어진 적도 없음이 드러났고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므로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해외로 밀반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포커스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26일 23:40)

내 용 : <2006서울조정39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9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KBS-1TV : 「KBS수요일기획」 프로그램 (2006년 7월

피신청인 주장

<2006서울조정399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한강유역환경청이 미8군이 배출한 유독성 폐기물을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손 희 만)

피신청인 : 일간환경

종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일간환경 : 『미8군 배출 PCB 불법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2·23일자 1·2면)

내 용 : 미8군 부평기지에서 발생한 15톤 가량의 유독성폐기물 PCB 처리를 두고 국내업체와 계약을 하고는 배출자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수출국에 동의를 얻어 처리했는지, 배출국이 미국으로 한국의 경유 동의를 받고 제3국으로 수출했는지에 대해 배출자인 미군과 수집운반계약을 한 ‘ㅇ’업체 및 인허가 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 모두가 관련 사실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 은폐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중략)

미8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3국을 통해 처리하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발생할지라도 미군 명의로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국내 관할청에서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경유 동의서를 발부받아 무역 대행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에서 발생한 유독성폐기물이 한국 정부로부터 경유 동의서를 취득하지 않고 한국영토를 경유할 경우 운송 과정에서 불법매립과 차량사고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신속히 대처할 수 없고, 사고 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 때문에 PCB의 처리를 맡은 수출자가 과연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세관을 통관해 수출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돼야 하지만 현재 관련자들이 적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불어 미군 측과 수집운반 계약을 맺은 ‘ㅇ’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있어 배출자가 미군이 아닌 한국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장돼 수출될 가능성과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처리될 개연성까지 안고 있다.

현재 미군 측과 PCB 처리계약을 맺은 ‘ㅇ’업체

는 폐기물 처리계약을 하면서 ‘한국의 언론 및 외부에 비밀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관할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업체 보호를 내세워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중략)

또한 당초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은 “업체와 미군의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보호 차원에서 허가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 미8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배출자신고를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 영토에서 발생했으니 한국이 배출자가 돼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폐기물 담당계장 역시 “정식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7일 후 공개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한강유역청장 협조 하에서도 “관련서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제차 “대한민국 영토 중 치외법권 지역인 미8군부대에서 발생한 유독성 폐기물의 배출자는 누구냐?”고 묻자 “미국이 배출자이며 경유 국가는 이집트와 벨기에이고 최종 도착국가는 프랑스”라고 밝혀 당초 한국이 배출자라도 무관하다는 말과 달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22·23일자 1·2면 『미8군 배출 PCB 불법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내 미8군에서 배출된 PCB 폐기물을 수출함에 있어 국내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이 수출국이 아닌 경유국이 되어야만 하고, 수출자가 미8군에서 배출된 것이 아닌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처리 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이 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답변을 번복하거나 배출자가 미군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여부 및 경유국의 사전 동의 여부 등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 사실을 은폐하고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한국 내 미8군에서 배출된 PCB 폐기물 수출에 대한 수출국 자격문제는 유해폐기물에 관한 국가 간 협약에 의거, 한국이

수출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운송과정에서 사고발생시 한국이 경유국이 될 경우 국내 경우에 관해서만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지만 한국이 수출국이 되면 폐기물 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내법상 폐기물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서 법에 따라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시 국내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므로 폐기물 수출자가 임의로 불법 수출하거나 음성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관할기관이 배출자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복하였다는 보도내용도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수출국의 개념을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할기관이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의 9월 22·33일자 『미8군 배출

PCB 불법 의혹』 기사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미8군 배출 PCB 폐기물에 대해 바젤협약 등에 따라 한국이 수출국으로서 폐기물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여 국내법에 따른 사고처리 및 위반사항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한 경유국으로서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기관의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은 업체가 미8군 폐기물을 한국업체 폐기물로 위장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음성적 처리를 한다는 것은 관련조약의 규정상 어려운 일이며, 관할기관 미8군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는 미군, 배출(수출)국은 한국이라고 하였을 뿐 배출자에 관한 답변을 반복한 바 없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부분적으로 비공개를 통보했을 뿐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환경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하여 2006년 10월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간환경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0·2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조합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군산림조합 (조합장 이 ○ ○)
피신청인 : 아시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아시아일보 : 『자연훼손 사업? 자연보존 사업?』 제

하의 기사 (2006년 9월 13일자 사회면)
내 용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경산연)가 국내 제일의 숲체험장인 잣 향기 푸른 교실 조성으로 지난해 대상 지역 계곡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계곡일부가 장마에 유실되는 등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경산연에 따르면 ‘잣 향기 푸른 교실’이 조성될 사업내용에 숲 관찰로 및 숲 체험학교 등 주변 인근 계곡 폭이 너무 좁아 장마 시 범람의 위험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곡

의 일부를 확장하는 토목공사를 했다.

그러나 관련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오탁수가 발생, 소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계곡 일부가 유실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산연이 전문 건설사업자가 아닌 ○○군산림조합(조합장 이○○)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아시아일보는 2006년 9월 13일자 사회면 『자연훼손 사업? 자연보존 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갯 향기 푸른 교실’이 조성될 사업내용에 숲 관찰로 및 숲 체험학교 등 주변 인근계곡 폭이 너무 좁아 장마 시 범람의 위험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곡의 일부를 확장하는 토목공사를 했다. 그러나 관련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경산연 관계자는 “소하천의 경우 관련청의 점용허가를 몰라 못했으며, 오탁수 발생의 경우는 최소한 오염을 시키지 않는 편에서 공사를 진행했으나 차후 공사 시 오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산연은 전문 건설업자가 아닌 ○○군산림조합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림조합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계곡 폭이 너무 좁아 장마 시 범람의 위험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곡의 일부를 확장하는 토목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집중호우 시 임야와 중경지에 피해가 극심한 황폐개천의 바닥과 기슭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

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하였으나, 본 사업의 사업지는 하천이 아닌 임야로 되어 있어 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본 사업은 산림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인 사방사업으로서 산림조합법과 사방사업법에 따라 ○○군산림조합에서 실행하였기 때문에 ‘전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산림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3일자 사회면 『자연훼손 사업? 자연보존 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갯 향기 푸른 교실’과 관련하여 ○○군산림조합은 사방사업을 시행할 자격을 갖춘 산림토목기술자를 보유한 전문기관이며, “갯 향기 푸른 교실”사업과 관련한 토목공사는 관련법에 의해 하천 또는 산지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집중호우 시 피해가 심한 계천의 바닥과 기슭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행하는 <아시아일보> 면에 2006년 10월 20일까지(토요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소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0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정식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강원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강릉KBS-1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강릉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9월 19일 21:00)

내 용 : ▷앵커 : 알고 계셨습니까? 정동진에 있는 ○○○○가 정식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결국 무허가 상태에서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정동진의 명물, ○○○○

객실만도 200개가 넘고, 각종 식음료 업장에 유류 전망대 사업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준공검사조차 받지 못한 건물입니다.

정동진 관광의 대명사인 이 건물은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정식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체도로 건설을 조건으로 도에서 건물을 임시로 사용토록 했지만, ○○○○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02년 이후로 임시사용 인마저 철회됐습니다.

3억여 원에 달하는 부과금도, 4년에 걸친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자 지난 8월에서야 겨우 납부한 것입니다.

○○○○ 측은 사업 초기, 인근 군부대의 초소를 이전해주기로 하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준공 검사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9월 19 「KBS뉴스9」 프로그램 '○○○○ 4년째 배정 영업' 제하의 보도에서 ○○○○ 측이 지난 4년간 정식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을 해왔고 대체도로 건설을 조건으

로 도에서 건물을 임시 사용토록 했지만 ○○○○ 측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02년 이후로 임시사용마저 철회됐으며 3억 원에 달하는 부과금도 4년에 걸친 법정 싸움에서 패소해서야 납부하고 ○○○○ 측이 사업 초기 인근 군부대 초소를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준공 검사 자격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지난 2002년 ○○시에서 건축물사용중지명령을 내려 ○○○○ 측이 법원에 건축물사용중지명령처분취소 신청을 했고 이에 법원은 확정 판결시까지 ○○시의 사용중지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려 이에 따라 ○○○○ 측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대체도로 건설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고 3억 원에 달하는 부과금은 당시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관계로 ○○시가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측이 고의로 부과금을 내지 않았다는 보도는 맞지 않으며 ○○○○ 측이 군부대 이전을 약속한 사실도 없고 이와 준공 검사 자격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9일자 「KBS뉴스9」에서 ○○○○의 불법영업에 대한 보도 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은 ○○○○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 후인 2006년 7월경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KBS-1TV '9시 지역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2006년 10월 25일까지 보도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정정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

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강릉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0월
20일 21:00)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주유소의 유사휘발유 판매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강원조정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강릉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강릉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9월 26일 21:30)

내 용 : (전략) >기자 : 강릉과 속초의 8개
주유소에서 콩기름과 폐식용유가 섞인 경유를 판
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정유사를 통해 기름을 공급받으려면 수천만 원
을 선입금해야 하는데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정상
유통 경로를 지키지 않고 저유소 기름을 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주유소 측은 인근 저유소에서 받은 기름을 그대
로 가져다 팔았을 뿐 유사석유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기름을 받은 주문진의 저유소입니다.

강릉지역에 단 한 곳뿐이어서 강릉과 주문진 일
대 모든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 저유소는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
니다.

강원도는 본점이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
도로, 경기도는 판매소가 강원도에 있다는 이유로
강원도로 서로 관리 책임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름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아 누가 유사석유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녹취록)

>기자 : 그동안 유류 시료채취 받은적 있었습
니까?

>신청인 :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 이 회사에 입사한지는 얼마나 됐습니
까?

>신청인 : 2년 됐습니다.

>기자 : 그럼 2년 동안 한번도 받은적 없습
니까?

>신청인 : 예!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번도
검사 같은거 받은적 없습니다. 기존에는 어땠는지
잘 몰라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기자 :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사건 방송은 지난 9월 26일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유사 석유판매 주유소 적발' 제하의 보
도에서 신청인에게 인터뷰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하고 아무런 사전 동의없이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음성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신청인의 인격권 및
명예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12,000,000원의 손해배
상액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강원조정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강릉문화방송

강릉시 포남2동 1091-6

대표이사 조 승 필

조정대리인 최 승 규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 11. 10.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1.

□

신청인 재단이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뉴스리더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스리더 : (1)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4일자 1면)

내 용 : ○○시가 또 난개발을 묵인하는 건축허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논종을 사고 있다. (중략)

○○시는 지난 17일 S병원 측이 ○○구 ○○동 산 ○○번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녹지)에 53평(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7평) 규모의 의원급 의료시설 1동의 건축을 허가했다.

이 지역은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어겨 대규모 전원주택개발로 난개발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개발업체의 도산 후 임야의 소유권이 S병원으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개발이 진행,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략)

(2) 『○○시 ○○동 일대 임야에 건축허가 ‘말썽’』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4일자 8면)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어겨 대규모 난개발을 조

장했다는 지적을 받은 ○○시 ○○구 ○○동 일대 임야가 소유권이 S병원으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난개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이 일대에 S병원이 신청한 의원급 의료시설 건축을 최근 허가하자 토지 소유주와 환경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자체 오수정화시설로 정화한 오폐수를 인근 주민들과 대형 음식점의 취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곡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중략)

건축허가 과정에서 S병원 측은 지난 7월 당초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무산된 이 부지 지하에 매설된 우수 및 오수관을 사용하기 위해 전 소유주와 합의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한 뒤 계곡을 거쳐 하천에 방류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의료시설 건축물에서 방류기로 한 계곡 일부는 개인 소유인 ‘사유지’인데다 하루 500여명 이상이 식수로 이용하는 취수 음용지역이다.

또 구거부지(하천)의 하단부 또한 시민단체의 박모 이사장이 20여 년 전부터 연간 700만 원대 점용허가 사용료를 납부하면서까지 주민들의 맑은 샘물 용도로 잘 보존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에 대해 S병원 L모 이사장은 “생활하수 방류가 계곡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허가를 못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 『허가 취소 3개월만에 또 개발승인?』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7일자 1면)

(전략) 또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이 부지 일대에 300여평 규모의 의료시설을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 진입도로의 사유지 동의 여부를 놓고 쟁점화되자 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자문의견을 목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허가를 받은 H의료재단의 L모 이사장은 최근 '리더'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노인복지의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OO시 관계자도 "수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혀 자연녹지지역(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수정법과 연결개발규제를 피해나가면서도 특혜의 소지가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중략)

더구나 OO시는 지난 2003년에도 같은 부지내의 임야 3,920㎡(1,186평) 및 9,800㎡(2,965평) 등 모두 3만 2,262여㎡를 4차례에 걸쳐 개발행위를 승인했다가 개발업체의 도산으로 지난 5월 개발행위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허가취소된지 3개월만에 바뀐 토지소유주에게 하수관로 등의 문제를 외면한 채 또다시 무리하게 건축을 허가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 (중략)

OO시는 또 지난달 17일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승인하기 전 단계에서 건축허가의 중요한 요소인 "개발지 진입 도로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 고문 변호사의 유권해석(자문)을 삭제한 채 허가신청자인 H의료재단에 질의회신 공문으로 보내진 사실이 드러나 건축허가 과정에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

건축허가를 받은 H의료재단의 L모 이사장과 S병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하수관로는 토지소유주가 차단하는 바람에 자체정화시설로 설치하면서 위치를 옮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4) 『OO시, 고문 변호사 의견도 목살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7일자 3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이뤄진 OO시 공

무원의 이상한 건축허가 행정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OYMCBA 박OO 이사장 소유의 OO구 OO동 산 OO 일대 4만여 평의 임야가 S병원 의료재단 명의로 지난해 11월 넘어가면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중략)

토지를 매입한 H의료재단 측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노인복지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1차적으로 의원급 의료시설 건축에 나섰으나, 해당 임야의 진입로와 하수관로 관통지역 등이 박 이사장 소유의 사유지를 거치게 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중략)

특히 OO시는 건축허가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개발지 진입 도로를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 고문 변호사의 유권해석(자문)을 무시한 채 허가신청자인 H의료재단에 질의회신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리더' 취재를 통해 확인되면서 건축허가 과정에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OO시가 시 고문 변호사에게 질의회신 받은 '도로가 폐지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내용 중 '나' 항목에는 "해당 도로가 사유지 상에 건설된 도로라면 도로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OO시 OO구 도시건축과는 건축허가 신청자인 H의료재단으로 발송한 지난 5월 11일자 공문을 통해 이 부분을 제외한 채 '가'와 '다' 항목만 넣어 사유지상의 도로 이용 동의가 없어도 무방하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OO구는 한술 더 떠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진입로에 대한 사용동의 등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삽입,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는 반대로 질의회신을 보냈다. (후략)

(5) 『편법 동원된 개발 행위 언제까지...』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7일자 8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시 ○○구 ○○동 산 ○○ 일대 개발과 관련한 사업자와 인근 토지주 간 분쟁의 한 가운데는 ○○시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추진될 경우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결과를 피해나가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편법 전원주택 개발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돼 문제가 된 부지에 ○○시가 또다시 개발허가와 절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다면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현재 토지 소유자 간 분쟁까지 있는 임야에 계속 하수 방류 계획 등 이해안되는 건축허가 부분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 『폐지된 도로에 허가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4일자 8면)

○○시가 ○○동 산 ○○ 일대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사유지 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초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부지 전체가 취소되면서 건축허가 부지와 붙어있는 도로도 동시에 취소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략)

이 때문에 의료시설 건축허가 부지인 ○○동 산 ○○ 및 ○○번지와 붙어있는 개발지역 임야의 도로는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돼 사실상 폐지된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도로대장’에만 살아있는 것을 토대로 산 ○○ 일대에 연면적 297평 규모의 건축을 허가했다. (중략)

건축허가를 받은 H의료재단측은 “지난 2003년 12월 ○○시가 도로로 지정 공고해 현재 도로 대장에 기재돼 있다”면서 “건축법 2조를 보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해관계자는 바로 ○○의료재단이다. 우리가 오히려 돈을 들여 부지를 복구하고 있으며, 신설 의료법인이 공익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도로의 토지주가 하수관로와 도로 70m를 끊어버리는 등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24일자 1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8면 『○○시 ○○동 일대 임야에 건축허가 ‘말썽’』 제하의 기사, 9월 7일자 1면 『허가취소 3개월만에 또 개발승인?』, 3면 『○○시, 고문변호사 의견도 묵살 ‘의혹’』, 8면 『편법 동원된 개발 행위 언제까지...』 제하의 기사 및 9월 14일자 8면 『폐지된 도로에 허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의료재단이 의료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개발현장 진입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등 시설물 건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의료재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진입도로 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관련 진행과정에 어떠한 편법 및 의혹도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뉴스리더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9일~25일자 4면)

내 용 : 지난 8월 24일자 1면 『“○○시, 아직도 정신못차렸나”』 제하의 기사 및 8면 『○○시 ○○동 일대 임야에 건축허가 ‘말썽’』, 9월 7일자 1면 『허가취소 3개월만에 또 개발승인』 3면의 『○○시, 고문변호사 의견도 묵살 ‘의혹’』 8면 『편법 동원된 개발행위 언제까지...』 9월 14일자 8면 『폐지된 도로에 허가 ‘논란’』 등 연속 보도된 ‘리더’ 기사와 관련, 의료법인 ○○의료재단(○○○○병원)측은 “건교부와 ○○시 ○○구 등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과정에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없었다”면서 “진입도로 역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통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는 허가 신청”이라고 ‘리더’ 편집국에 반론을 주장하며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무단형질변경 및 오페수 방출 등의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인천일보 : 『불법 레미콘업체 단속 소홀』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1일자 17면)

내 용 : 남양주시 ○○읍 ○○리 산 ○○-○에 위치한 S레미콘이 관리지역에 대한 무단형질변경 및 오페수 방출 등 불법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S레미콘은 지난 2006년 2월 24일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터널발파로 인한 토사석(암석)을 매입한 뒤 파세기로 파세해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토사석(암)을 ○○리 ○○관리지역에 불법 야적하고, 인근 지역 산○-○, 산○-○ 일대 임야 601㎡를 무단형질변경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와 함께 S레미콘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페수를 규정에 따른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 보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S레미콘이 위치해 있는 ○○읍 ○○리 ○○고개가 급경사로 인해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고개 근처에 레미콘 공장 입구가 개설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모 씨는 “레미콘차량과 골재트럭 등의 비산먼지로 인해 평소 목이 많이 아프며 빨래를 널지도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들의 등하교 때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9월 21일자 17면 『불법 레미콘업체 단속 소홀』 제하의 기사에서 남양주시 ○○읍 ○○리 산 ○○-○에 위치한 S레미콘 공장은 흘러나오는 오페수를 무단방류했고 급경사인 ○○고개 근처에 레미콘공장의 진출입로가 개설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S레미콘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육체적·생활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S레미콘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페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장의 진출입로 확보·사용 역시 모두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고 인근 주민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품 상당수의 효능이 부풀려진 채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제약협회 (회장 김 정 수)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복제약 약효 또 뺨뺨졌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75개 복제의약품
(카피약)의 약효 정보가 조작된 사실이 또 드러났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복제의약품의 약효정
보 조작 여부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75개 약
품의 정보가 조작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고 발표했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29일자 사회면에 『복제약 약효
또 뺨뺨졌다』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75개 복제의약품(카피약)의 약효 정보가 조
작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는 해당 제약기업들이
복제약 약효를 뺨뺨기 한 사실이 없고 복제의약품
약효 정보를 조작한 사실도 없으며, 생동성 시험기
관의 자료불일치 문제와 의약품 약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국산의약품은
모두 K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에서 관련 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있으며 정부
가 약효와 안전성을 인정한 정품이기 때문에 시판
중인 약 중에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는 약은 존재
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품 상당수의 효능이 부풀려진 채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제약협회 (회장 김 정 수)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9월
28일 21:00)

내 용 : ▷앵커 : 복제약들 가운데 상당수가 원
래 약보다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엉터리 약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시험기관
들이 복제약의 효능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자 :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품의
상당수가 효능이 부풀려 채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 ○○제약과 ○○○
○ 등 유명회사 제품을 포함해 모두 115개 의약품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서 약효가 조작된 것으
로 확인했습니다. (중략)

시험기관들은 복제약의 효능을 부풀린 채 자료
를 만들어 제약사들에게 넘겨줬고 식약청은 이 자
료만 믿고 판매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40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MBC-TV :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6년 10월
17일 06:00)

내 용 : ▷앵커 : 정부는 지난달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에 대해서 일부 시험결과가 조작됐으며 무더기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면밀한 검증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자입니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 문제가 있는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280여 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란 제약사가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기관을 통해 오리지널 약과 성분 등이 동일한지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생동성 시험에 문제가 있더라도 약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제약은 생동성 시험 이외에도 국가가 규정한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판매되는 만큼 시중에 팔리는 약들은 일단 안전함이 입증된 제품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국산의약품이 불신을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자 : 제약업계는 따라서 생동성 시험문제만으로 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좀더 면밀한 재검증 과정에 필요하다고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약업계는 또 생동성 시험 과문을 계기로 제조 시설과 시험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연구 개발은 물론 의약품의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품 상당수의 효능이 부풀려진 채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PR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제약협회 (회장 김 정 수)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BS-TV : (1)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9월 28일 20:00)

내 용 : <2006서울조정403의 보도내용 참조>

(2)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9월 28일

20:00)

“오리지널 약? 밀가루 약? 같은 ‘약’ 일까?”

(전략) 복제약은 오리지널과 약효가 같다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복제약들이 이런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또, ‘밀가루약’이라는 약도 있는데요.

오리지널 약과 성분은 똑같지만 약효는 크게 떨어지는 약을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40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SBS-TV : 「SBS8 뉴스」 프로그램 (2006년 10월 24일 20:00)

내 용 : ▷앵커 : 이번 4차 협상에서도 의약품 분야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체가 이번 협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현격한 입장차이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FTA 협상을 지지했던 제약업체가 입장을 바꿔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집착하면서 의약품 특허 범위 확대와 같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수(한국제약협회 회장) : 의약품 시장을 다국적 제약기업에 내주는 것은 제약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잃는 중대 사안이다.

▷기자 : 제약업체는 또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하게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제약사의 매출 성장이 급격히 감소해 2년간 9천6백억 원 정도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측에 협상전략을 수정할 것과 복제약의 가격인하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문경태(한국제약협회 부회장) : 우리 국내 제네릭 사업이 다 고사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주문하는대로 비싼 약재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 제약업체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 수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신청인 연합회가 언론중재위에서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사) 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
(이사장 김 ○ ○)

2. 김 ○ ○

피신청인 : 한국목재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한국목재신문 : 『재활용업연합회, 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일자 사설면)

내 용 : 본보 7월 1일자에 ‘인천 제재업체, 폐기물 처리 뜨거운 감자’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자원재활용업연합회의 회장은 명예훼손과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본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중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기사내용이 정정보도 대상은 아니나 연합회를 취재하지 않고 보도한 점을 들어 편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본사는 이 점을 인정하고 반론보도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 취하해 일단락했다.

자원재활용업연합회 측은 정당한 홍보활동이었다고 하지만 방문 받은 제재소에서는 위협적이었다고 말했으며, 본사의 취재확인을 통해서도 다분히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명예환경감시증을 가슴에 착용하고 들어간 사실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권이 있는 자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보이게 달고 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다”고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밝혔다. 이 연합회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 연합회가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본사의 취재가 모 단체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법지식과 언행을 한바 있다.

우리는 법을 지키라고 홍보하는 연합회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이권이 분명히 있는 단체는 홍보활동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견해다.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라면

다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일자 사설면에 『재활용업연합회, 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 제목으로 ‘중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본보 7월 1일자 『인천 제재업계, 폐기물 처리 뜨거운 감자』라는 기사내용이 정정보도대상은 아니다’, ‘재활용업연합회는 반론보도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 취하였다’, ‘연합회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 연합회가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권이 분명히 있는 이 단체는 홍보활동에 좀더 신중하게 활동해야 한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내용이 정정보도대상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으며 연합회가 반론보도문 보도에 합의한 적은 있으나 취하 대상이 되는 내용(민, 형사상 책임포함)도 없을 뿐더러 취하한 사실도 없으며 연합회가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는 이권단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재활용업연합회”관련 정정보도

• 본 문 : 본 지는 지난 8월 1일자 사설면 『재활용업연합회, 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청구한 기사는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어서 반론보도로 합의 취하되었고, 연합회 회장이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중재위원회에서 연합회가 신청한 조정대상 기사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회장이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목재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사설란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화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와 링크시킨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청구와 목재신문 7월 1일자 1면 『인천 제재업계...』 제하의 기사 및 8월 1일자 사설 『재활용업연합회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관련된 형사상 고소를 취하 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목재신문 : 『‘재활용업연합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6일자 2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해썹기준원 설립이 농가들의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농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농민신문 : 『해썹기준원 설립 ‘산넘어 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7일자 8면)

내 용 : 농림부가 주도하고 있는 해썹(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기준원 설립이 농가들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농림부는 축산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일 발기인대회를 마친 다음 25일 총회 및 이사 선임을 마무리해 해썹 기준원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연직 이사로 참여키로 한 축산단체장이 농가 부담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20일 발기인서명을 미뤄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최근 기준원장 연봉의 과다 책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중략)

또 농림부가 해썹 기준원 설립 때까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축산단체에 2,000만 원을 요구한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농민신문은 지난 9월 27일자 8면에 『해썹기준원 설립 ‘산넘어 산’』 제목으로 해썹기준원 설립에 대해 농가들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해썹기준원은 '04년 7월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수립시 해썹 적용 대상을 사육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및 해썹 평가기준 등을 통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썹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공무원의 담당인력으로는 해썹지정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별도의 전담 조직을 통하여 수행키로 하고 ‘(가칭) 축산물해썹기준원’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설명회, 준비인 모임, 발기인 모임 등을 주선하였고 축산단체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해썹 지정비용, 기준원장 연봉 등은 책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해썹기준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앞에서 언

급한 모임외에도 관계기관과 축산단체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단법인의 주체는 회원이며, 회원들이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하여 정관,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해썹 지정비용과 급여 등도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사단법인 축산물해썹기준원은 창립되었으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관 등 규정이 의결되었고 기준원장도 선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사항의 결정은 회원들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해썹기준원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 및 연구검토 내용,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농림부의 입장을 취재 보도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농민신문> 2006년 10월 31일자 이전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와 링크시킨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농민신문 : 『해썹기준원 안전성 향상 주도해야』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7일자 9면)

내 용 : 농림부가 18일 사단법인 ‘축산물 해썹기준원’ 설립을 정식 허가하면서,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는 축산업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썹기준원은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대상을 사육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늘어나는 해썹 지정 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올 6월 해썹기준원 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설립 작업을 주도해 왔으며, 9월 28일 창립총회를 거쳐 이달 18일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11월 초순께로 예상되는 농림부의 지정고시 절차만 마무리되면, 축산물 해썹기준원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해썹기준원은 주요 사업으로 해썹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해썹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펼치고 기타 기준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해썹이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조직과 인원의 한계 등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축산물 해썹기준원 설립을 계기로 사육·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주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행과장은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위생과 안전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썹기준원은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림부는 축산물 해썹기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신청인이 가스공급권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무등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2006년 9월 5일자 17면)

내 용 : <2006광주조정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광주조정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합의서대로 반론보도를 했으므로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 □

보도내용

무등일보 : 『‘가스공급권’ 놓고 대립』 제하의 기사

세무서장인 신청인이 지역경제인들과 수차례 만찬 및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부일보 : 『○○세무서장 술자리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0일자 4면)

내 용 :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공평한 세부담 실현 등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할 세무서장이 관내 경제인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져 구설수에 오르내려.

안OO OO세무서장 등 일부 과장 등은 지난달 12일 오후 관내 모 식당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만찬을 가진데 이어 이날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갖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특히 안 서장은 만찬이 있는 술자리에서는 경제인들과 고스톱 등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접대성 모임이 아니냐는 지역 사회에 뒷 말을 남기고 있기도.

지역의 한 경제인은 “안 서장이 경제인들의 모임중에 OO에서 정년을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조세징의를 실천해야 할 서장이 지역 경제인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지며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10일자 4면 『OO세무서장 술자리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서 OO세무서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지역경제인들과 만찬을 가진데 이어 이날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갖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당일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장 회의 및 간담회가 15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되고 있었고, 지역 경제인들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안 서장은 만찬이 있는 술자리에서는

경제인들과 고스톱 등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10일자 4면 『OO세무서장 술자리 구설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결과 안 서장은 OO지역 경제인들을 자주 만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으며, 이 기사와 관련 안 서장은 경제인들과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전혀 없고 9월 11일 오후 지방경제인간담회 이후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직원들과 함께한 것이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6년 11월 2일 4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지역 경제인과 자주 가자)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요구 부분은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감사원이 참여정부 들어 3년간 정부가 낭비한 예산이 39조 원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장 병 완)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1) 『나랏돈 낭비 심하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3일자 1면)

내 용 : (전략) 이처럼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중복과 중도 하차가 반복되면서 나랏돈이 눈먼 돈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전문가들과 계산해봤더니 참여정부 들어 3년(2003년 2월~2006년 4월) 동안 이런 식으로 새어 나간 예산낭비만 52조 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 『줄인다더니 오히려 늘어』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3일자 A5면)

방만한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참여정부의 낭비 사례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폐지되었거나 통합됐어야 할 기금들이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정비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예산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기금의 자산운용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중략)

또 통합 대상이 정비되지 못해 낭비된 예산은 유사한 기금끼리 중복되는 기금관리비를 기준으로 하면 2,660억 원이고 중복된 사업비로 계산하면 4조 969억 원에 달한다.

기금 관리가 일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예산낭비로 꼽힌다. (후략)

(3) 『39조 허튼 데 쓰고 정부 덩치만 키웠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3일자 A5면)

참여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와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씹씹이를 키우기만 해 여기저기서 나랏돈이 새고 있다는 경고음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면서 2006년 인건비가 2004년에 비해 33.3%나 늘어나는 가 하면 방만한 투자 사업, 나눠먹기식 예산, 정책·업무 실패 등으로 낭비된 예산도 39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 등으로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9월 13일자 A1면, A5면에 『나랏돈 낭비 심하다』, 『줄인다더니 오히려 늘

어』, 『39조 허튼데 쓰고 정부 덩치만 키웠다』 제하의 기사에서 ‘참여정부 기간 내 감사원이 지적한 낭비성 예산만 39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감사원은 예산낭비 규모가 39조 원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감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폐지돼야 할 기금들이 정비되지 않아 낭비된 예산이 약 4조 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기금이 통·폐합되더라도 각 기금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나 민간부문에 이관되어 수행하게 되므로 기금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4조원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예산 낭비 규모 사실과 달라
- 본 문 : 9월 13일자 A1면, A5면의 예산낭비기사 관련, 기획예산처는 감사원 감사결과서에서 일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예산 낭비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표명한 바 없으며, 기금이 통·폐합되더라도 개별 사업은 계속 수행하게 됨을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2006년 10월 25일까지 A5면 내지 A7면에 박스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활자로 하되 크기는 11포인트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용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예산낭비 규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3일자 A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전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라일보 : 『○○대학 파행 운영』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5면)

내 용 : 군산 ○○대학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학교법인 설립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가 수년째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학의 설립위원인 박모 씨(88)는 지난달 29일 '법인이사들에 의한 대학재정 부실화와 주도권 다툼에 대한 특단 조치 요망'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01년 ○○대학의 학교법인을 허가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 소득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운영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은 군산과 익산의 90여 개 교회로부터 50억 8,000만원을 기부 받아 수익용 자산으로 충당하는 교회기부금 모금계획을 제출, 허가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매년 받았던 10억 원 상당의 국가지원금이 지난 2003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했던 실습교육장비 및 소모품, 교직원연금분담금, 의료보험분담금 등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학교법인 허가 당시 기부금 모금 계획서

에 올라 있던 일부 교회가 기부모금 사실을 부인, 임의 조작된 계획서로 학교법인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학 정상 운영
- 내 용 : 본지는 9월 4일자 『○○대학 파행 운영』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이 수익용재산 확보를 외면해 국가지원금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했던 실습교육장비 및 소모품, 교직원연금분담금, 의료보험분담금 등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부금 모금 계획서 조작 의혹 등이 있다”며 박모(88)씨가 교육부에 제출한 “법인이사들에 의한 대학재정 부실화와 주도권 다툼에 대한 특단 조치 요망”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이사 정수는 15명으로 정관에 의해 법인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 계파간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대학은 설립 이후 금융기관이나 사학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재정부족으로 대출을 받아본 사실이 없어 재정부실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현재 정통부, 중소기업청, 농림부 등에서 매년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가지원금으로는 학생들의 실습교육장비 외는 사용할 수 가 없어 소모품, 교직원연금분담금, 의료보험분담금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 모금 계획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 제62회 춘계 정기노회 1차 임시노회에서 결의하였던 사항으로 임의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학 측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 ○○○○학원 설립허가 조건으로 군산노회가 매년 출연하기로 한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대학 측을 음해하는 진정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되어 학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대학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전라일보 : 『○○대학 정상운영』 제하의 기사
내 용 : 본보가 9월 4일자 보도한 『○○대학 파행운영』 등의 기사와 관련, ○○대학 측은 “이사장과 학장이 군산노회 출신으로서 익산노회가 일방적으로 선출하여 계파대립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대학은 설립 이후 재정 부족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 ‘재정부실’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과 관련해서는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군산노회가 매년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며, 교비유용 여부는 진정인의 일방적 주장으로서, 진정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돼 대학 학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대학은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군산노회 은퇴 장로인 박모 씨는 대학재정 부실화 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부에 군산기독학원 이사들이 전원 물러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진정을 했었다. □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민일보 : 『“○○대학 특단의 행정조치 필요”』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15면)
내 용 : <2006전북조정2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전북조정2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전민일보 : 『○○대학 정상운영』 제하의 기사

내 용 : 박모(88)씨가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이 수익용 재산 확보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국가지원금이 중단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연금 분담금 등을 충당하고 있다’는 진정서 인용보도 <본보 9월 4일자>와 관련, 진정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재정 부실과 기부금 모금계획서 임의조작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은 설립 이후 대학재정부족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기부금 모금 계획서 역시 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 제62회 춘계 정기노회 1차 임시노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임의조작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났다.

또 국가지원금으로는 학생들의 실습교육장비 이외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교직원연금분담금 등을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와 관련 군산노회가 매년 출연키로 한 기부금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 측을 음해하는 진정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되어 학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영양사인 신청인이 잔반이 섞인 음식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충북조정6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한빛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빛일보 : 『진천 ○○초 영양사 학대 파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15일자 3면)

내 용 : “영양사 선생님이 ‘개밥’ 을 억지로 먹여
급식시간이 무서워요.”

충북 진천군의 한 시골초등학교가 급식문제로
발각 뒤집혔다.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난 3월 이
학교 영양사로 부임한 A씨가 지난달 초부터 이 달
초까지 잔반을 섞은 음식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
였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14
일 주장했다. A씨가 교실 한쪽에 비치된 음식물
수거통 앞에서 기다리다가 잔반을 버리러 오는 학
생들의 음식물을 한 데 섞어 해당 학생에게 강압
적으로 먹였다는 게 본보 취재진과 만난 학생들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이 음식을 ‘개밥’ 으로 표현했다. 학생
들은 특히 A씨가 식사 중 잡담하는 학생들에게도
심하게 손찌검을 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섞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버텨도 A
씨의 강압에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울먹였다.

취재 결과 이 음식을 먹은 일부 학생들은 며칠
동안 구토에 시달리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행동
에 대해 참다못한 학생들이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
로 촬영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5월 15일 3면에 『진천 ○○초 영양
사 학대 파문』 이라는 제목 및 ‘잔반 음식 억지로
먹이고... 안 먹으면 때리고...’ 라는 부제로 영양사
가 폭행과 구타, 손찌검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영양사는 순수한 교육적인 편
식 지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구타 손찌검 등
은 있지도 않았으며, 아동복지위반 혐의로 진정된
바 영양사는 조사결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내사 종결 처리되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
다. □

신청인이 지리정보원 좌표 변환 프로그램 오류에 대해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9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전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자신문 : 『GSI 데이터 부실화 우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8일자 11면)

내 용 : 건설교통부의 측지계 측량 계산 프로그
램이 계수상의 오류로 정확한 변환이 이뤄지지 않
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환된 모든 수치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GSI) 데이터베이스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

◇무엇이 문제인가=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 산하 국토 지리정보원장(원장 손봉균)은 측량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지좌표계’를 내년부터 기존 도쿄측지좌표계에서 세계측지좌표계로 바꾸면서 이에 따른 기존 좌표체계의 변환 프로그램(NGI-PRO, Ver1.6)을 마련 배포중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7개의 전국단위 좌표체계 변환계수 중 일부가 부정확해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새 좌표값에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

변환 프로그램 오류는 구지도와 신지도간 불일치를 야기한다. 특히 현재 대축척지도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가 시행중인 새 도로명 부여사업에도 큰 타격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왜 문제인가=좌표체계 변환계수의 부정확성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다. 변환계수에 따라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 얻어지는 변환값이 달리 나오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의 용역 제작자인 윤○○ 성균관대 교수는 “이 프로그램은 국지적으로 사용 가능한 국지좌표계 변환계수일 뿐”이라며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를 전국 단위 좌표변환계수와 프로그램으로 고시해버리는 바람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후략)

본지는 2006년 9월 8일자 11면 『GSI 데이터 부실화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측량법 시행에 따른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지좌표계’를 내년부터 기존 도쿄 측지좌표계에서 세계좌표계로 바꾸면서 이에 따른 기존 좌표체계의 변환프로그램(NGI-PRO Ver1.6)을 마련 배포중이며, 이 프로그램에 7개의 전국 단위 좌표체계 변환계수 중 일부가 부정확해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새 좌표값에 오류가 발생, 주요 원인은 변환계수의 부정확성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용역 제작자인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이 프로그램은 국지적으로 사용 가능한 국지좌표계 변환계수일 뿐이라며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를 전국 단위 좌표변환계수와 프로그램으로 고시해 버리는 바람에 곤혹스럽다라고 보도하였으나 (NGI-PRO Ver1.6) 프로그램은 측량협회에서 2002년에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으로서 윤○○ 교수가 용역제작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또한, 윤○○ 성균관대 교수와 인터뷰를 하거나 자료를 송부받아 기사화 한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에, 윤○○ 성균관대 교수와 관련 없는 사실을 기사화하여 성명권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이 지면을 통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50,000,000원

□

신청인이 한 남성과 지하철에서 말싸움을 하는 동영상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0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3.

처리결과 : 조정결정

KBS-2TV : 「KBS뉴스타임」 프로그램 (2006년 10월 4일자 20:00)

내 용 : ▷앵커 :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 사이의 거친 말다툼이 해외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

보도내용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 사이에 고성이가가더니... 곧 욕설이 난무합니다.

결국 서로 나이와 배움, 가정 교육까지 들먹이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친 말다툼...

과연 이 살벌한 싸움의 원인은 뭘까?

사건의 발단은 바로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의 발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중 교통 수단 1위인 지하철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하고 그만큼 빈번한 실수들...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자리에 앉을 때나 앉은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좁고 사람들로 가득찬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딪힘과 그로 인한 불쾌감은 자칫하다간 쉽게 시비로 이어집니다.

이같은 일들을 피할 수는 없을까?

▷성○○(경기도 성남시) : “그냥 한 마디 미안하다면 될 걸 괜히 크게 키워서 그런 거 같아요. 보통 외국같은 경우는 사소한 것도 익스큐즈미라며 미리미리 넘어가는데... 서로 배려가 없다고 해야 할까”

▷기자 :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의 크고 작은 부딪힘을 겪게 되는 지하철과 버스 안.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막히고 짜증나는 고향가는 길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교통문화의 푸른 신호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배려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 같지만 현실 속에선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2TV은 지난 10월 4일 「KBS뉴스타임」 프로그램 ‘지하철에서 막가는 사람들’ 제하의 방송에서 지하철 안에서 다투고 있는 중년 남성과 젊

은 여성의 동영상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남자가 주변사람에게 싸움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과 여자가 남자에게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는 부분, 지하철에서 내린 여자가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는 장면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원본에서는 중년 남성이 상대여성에게 끝까지 욕을 하고 있는데도, 방송에서는 남자가 욕한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은 채, 여자가 소리 지르는 부분만 나오도록 편집, 방송하여 신청인은 음성권이 침해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싸움의 당사자가 신청인임을 다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직무대리 김 홍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 11. 10. 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5.

□

신청인이 한 남성과 지하철에서 말싸움을 하는 동영상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디지털인사이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3.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디시뉴스 : 『막장 지하철 동영상? 인터넷이 ‘들썉’』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일자)

내 용 : ‘찍벌남’, ‘개똥녀’ 등 지하철 관련 사건들이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드는 사례가 네티즌들에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 촬영된 이른바 ‘막장 지하철’ 동영상이 바로 그 현장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동영상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빠른 속도로 유포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영상을 살펴보면 한 중년의 남성과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이 둘의 대화(?) 내용을 미뤄 짐작했을 때 싸움의 발단은 중년의 남성이 여성의 발을 밟으면서 시작된 듯 보인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험악하게 변지며 둘의 대화 내용이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남성은 “계집년은 욕이 아니야”부터 “××년”에 이르기까지 온갖 욕설을 사용하며 상대 여성을 비난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여성도 “나잇값 좀 하세요”, “때려봐 그러면” 등의 말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승객들의 심기도 편하지 않다. 남성의 옆 좌석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은 “옆에서 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못봐 주겠어”라고 언성을 높이더니, 이 둘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본다. 주위에서 만류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한번 얼룩진 지하철 속 풍경은 여성이 하차하기까지 결국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디시뉴스는 지난 10월 3일자 『막장 지하철 동영상? 인터넷이 ‘들썉’』 제하의 기사에서 “동영상을 살펴보면 한 중년의 남성과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로 욕설을 퍼 부으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원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을 하는 사람은 중년 남성이며, 여성이 욕하는 부분은 없는데도 서로 욕설을 한 것 같이 보도하였고, 기사와 함께 동영상 캡처 사진을 게재하여 주변 사람들이 신청인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기사삭제 요청과 함께 8,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6년 10월 27일까지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1월 1일까지 각 인터넷언론(별지목록 기재)에 실려 있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한다.
- 피신청인은 위 1·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기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 회사가 수수료 문제로 모든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OO (대표이사 홍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10월 12일 21:00)

내 용 : ▷앵커 : 경기도지역의 후불교통카드가 다음 주부터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수료 인상문제를 둘러싼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와 신용카드 회사의 갈등 때문인데 당장 다음 주 출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경기도 수원역 버스정류장.

후불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뽁 소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말이 나옵니다.

▷인터뷰 : 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인터뷰 : 이거 왜 안 돼요.

▷기자 : 이유는 경기도지역 버스의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와 신용카드 회사의 갈등 때문

시스템 사업자인 ○○측은 신용카드에 교통 결제를 후불에서 선불로 바꾸고 수수료도 버스비의 1.23%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들이 무리한 요구라며 거부하자 최근에 발급된 일부 신용카드에 교통결제 기능을 중지한 것입니다.

▷신용카드사 관계자 :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가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교통카드 서비스를 중지했습니다.

▷기자 : ○○ 측은 협상이 실패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 버스요금 결제기능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자 : 협상이 안 되면 15일에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카드 관계자 : 예, 그렇게 통지했습니다.

▷기자 : 경기도에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사람은 450여 만명.

교통카드 서비스가 끊길 경우 다음 주 월요일 경기도 지역의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MBC뉴스 서○○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경기도 교통후불카드 분쟁〉 관련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사는 2006년 10월 12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경기도 교통후불카드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 교통카드사업자인 (주)○○와 신용카드간의 갈등으로 인해, (주)○○가 10월 15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여 10월 16일 경기도 출근길의 대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서비스는 국민은행에 대해서만 중단되었으며, 이는 (주)○○의 일방적인 중단이 아닌 국민은행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협상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기존카드의 수수료는 이미 서울지역에서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카드사간 계약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국민은행을 제외한 7개사에 제의한 결과 수용의사를 밝혔고, 선불형 전환도 고객의 사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불편이 없다고 밝혀왔으며, 16일까지 서울과 동일한 수수료 수준으로 협의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카드사용 중단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협상 타결 후 후속보도는 수용 가능하나 현재 반론보도를 해 줄 수는 없다. □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는 신청인 딸의 진료장면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SBS-TV : 「SBS스페셜」 프로그램 (2006년 9월 17일 20:55)

내 용 : ▷진행자 : 한 대학병원 소아과의 내분비 클리닉

▷취재기자 : 몇 명이나 되는거죠?

▷간호사 : 명수로는요. 한 52명 정도 되거든요.

▷진행자 : 내분비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들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성조숙증. 또래보다 키가 컸던 송이도 3학년 겨울방학 때 생리를 시작해서 병원을 찾아왔다.

▷의사 : 이번에 얼마나 컸는지 볼게요. 저번에 146이었는데...

▷진행자 : 송이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4개월만에 키가 2.5센치미터나 자란 송이. 그러나 빨리 자란 것은 키뿐만이 아니었다. (중략)

▷진행자 : 그렇다면 성조숙증은 푸에토리코만의 문제일까? 또래 보다 키가 컸던 송이는 가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 1월 생리를 시작했다.

▷윤송이(가명) 엄마 : 세탁기에 넣기 전에 (빨래를) 보잖아요. (생리가 끝날 무렵처럼) 색깔이 그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한 3일, 조금씩 3일 하더라고요.

(의사가 송이의 가슴을 진찰하는 장면)

▷진행자 : 서둘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송이의 몸은 발달 정도가 제 또래 보다 훨씬 앞질러 있었다.

▷이○○ 교수('K' 대학병원 소아내분비내과) : 너

무 진행을 한 상태여서 병원에 왔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발달이 많이 됐어요. 자기 나이는 9살 6개월 정도 됐는데 뼈 나이는 12살, 13살 가까이 됩니다. 조기 사춘기라기 보다는 성조숙증입니다. 그만큼 가슴발달이 많이 돼서 왔어요. 몇 달 후에 다시 X-ray를 찍고 골 연령체크를 해서 (호르몬 억제 주사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 때 다시 판단을 해야죠.

▷진행자 : 송이처럼 지나치게 이른 성적 발달은 일단 한 번 발생하면 돌이켜 지지 않는다. 송이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찾아 사춘기를 늦추는 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고 있다. 지금은 가슴은 물론 키와 몸무게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대로 두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또래 보다 키가 작게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SBS-TV는 지난 9월 17일 「SBS스페셜」 프로그램 '환경호르몬의 습격2' 제하의 방송에서 성조숙증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SBS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신청인의 딸에 대해 출연 섭외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성조숙증의 원인들과 대처 방안들을 가르쳐 준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송에서 신청인의 딸 가슴부분을 그대로 내보내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동의하에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주민대표인 신청인이 공무원을 상습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충북조정7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증재부
집 수 일 : 2006. 10. 16.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동양일보 : 『공무원 상습구타 주민대표 어찌나...』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9일자 3면)

내 용 : 혐오시설 건립에 협조적으로 해당인사를
법대로 처리할 경우 현안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이
거나 방해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언제까지 공무원을 자신의 ‘하녀’ 쯤으로
인식하며 특하면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이 주민대
표의 비위를 맞춰야 될지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은
폭발지경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광역시쓰레기매립장 주민협
의체 대표 조모 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4일
오전 11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 들러 박모 과장
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서너 차례 폭행을 가했다.
비치된 화분이 파손될 정도로 소란을 피우자 경찰
도 출동했다. 조씨는 이날 박 과장에 전화를 걸어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인사도 안 하느냐”는 등의
대화를 하다 격분, 구청을 직접 찾아 폭언과 함께
손으로 머리를 서너 차례 가격, 병원을 찾아 진료
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박 과장을 폭행한 이유는 ‘추석인사’ 가
아니라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등 청주권 주요인사
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기공식 때 내빈 소개를 하면서 자신을 빼 놓은 것
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게 청내 안팎의 여론이다.

게다가 소각장 건립을 위해 찬성편에 서서 시 측
의 입장을 대변했으나 그 흔한 감사패 하나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앙금이 가시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조씨가 이날 저질른 범죄는 폭
력행위를 비롯해 업무방해, 공공기물파손 등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

특히 조씨가 공무원들에게 손찌검이나 폭력을
행사해 말썽을 빚은 것이 이번뿐 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지난해엔 청주권 생
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과 기

능직 직원을 발로 차는가 하면 동사무소 등에 들
러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면 고성과 폭언은 물론
손찌검을 하기 일쑤로 ‘행정기관의 권위를 실추’
시키고 있다고 관련 공무원들은 전한다.

청주시가 이처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조씨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립장을
운영하거나 소각장을 건립하는 데 그가 반대할 경
우 쓰레기 반입 등에 차질을 빚기 때문으로 ‘법과
현실’을 사이에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한 공무원은 “아무리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조를 한다해도 특하면 욕설과 폭행을 하는 조씨
에 대해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할지 모르겠
다”며 “공무원 노조가 앞장 서 이 같은 부당행위
에 대해 침묵하는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씨가 광역쓰레기매립장 건립 때도
찬성편에 서서 시를 도와줬으나 그 이면에는 매월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 주민대표를 맡고 있지
않느냐”며 “소각장이 기공식을 갖기까지 찬성 반
대를 오가다 결국 시측의 입장에 선 것은 현안해
결이라는 순수성보다는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소각장 부대시설 사업권 등에 대한 실리를 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9일자 3면에 『공무
원 상습구타 주민대표 어찌나...』라는 제목으로
‘주민대표인 조모 씨가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인
사도 안하느냐”는 등의 대화를 하다 격분하여 구
청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심한 욕설과 함께 손으로
머리를 서너 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폭행한 이유는
‘추석인사’가 아니라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등 청
주권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주권 광역
쓰레기소각장 기공식 때 내빈 소개를 하면서 자신
을 빼 놓은 것에 대한 불만이며 소각장 건립을 위
해 찬성편에 서서 시 측의 입장을 대변했으나 감
사패를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행위, 업
무방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동사무소에 들러 고

성과 폭언 손찌검하기 일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조씨가 광역쓰레기매립장 건립 때도 찬성편에서 서서 시를 도와주었으나 그 이면에 매월 적지않은 돈이 지원되는 주민대표로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소각장 부대시설 사업권 등에 대한 실리를 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 대표 조OO 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의 허위, 추측기사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 10. 9.자 3면 『공무원 상습구타 주민대표 어찌나...』, 10. 19.자 3면 『청주시 공무원 폭행 주민협 대표 횡령혐의로 기소 재판결과주목』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청주권광역시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조OO 씨는 청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기공식 때 내빈 소개를 하면서 자신을 빼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박모 과장을 폭행한 것이 아니며,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소각장 부대시설 사업권 등을 염두에 두고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마을 창고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1,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출받은 돈은 현재 모두 변제한 상태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양일보 2006. 10. 23. 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10월 9일자 소제목 '협오시설 건립 협조...' 크기와 같은 고딕체로 게재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인방송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경인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OO, 신 OO)
피신청인 : 기자협회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6.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기자협회보 : 『서울경찰청, 경인방송 금품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1일자 1면)
내 용 :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당시 OOOO가 심사에 관여했던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인방송사 선정 당시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이 전해졌다는 투서가 접수돼 지난달부터 수사 2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 당시 심사위원 명단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방송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물론, OO OO 간부의 비자금 조성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

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OOOO 비자금 조성 등으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인방송 관계자는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경찰 쪽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인방송 금품의혹 수사’ 관련 정정 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1일자 1면에 『서울경찰청, 경인방송 금품의혹 수사』 제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당시 OOOO가 심사에 관여했던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OOOO는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에 그와같은 투서가 접수돼 조사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경인방송 금품의혹 수사’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보 지난 10월 11일자 1면 『서울경찰청, 경인방송 금품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OOOO는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OOOO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에 그와 같은 투서가 접수돼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기자협회보> 2006년 11월 1일자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13포인트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기자협회보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1, 2, 3항을 이행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자협회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경인방송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 ○)
피신청인 :기자협회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6.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기자협회보 : 『경인방송 금품의혹 수사』 제하의 기

사 (2006년 10월 11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4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41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414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414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자협회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안산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티켓다방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동명의 다방 상호를 자료사진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이코노미스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이코노미스트 : 『외국인 노동자에 '성 배달' 성업』 제
하의 기사 (2006년 8월 8일자 42면)

내 용 :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각종 유흥
업소에서 음성적인 매매춘이 늘고 있다. 외국인 노
동자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화성 일대에는
은밀히 매매춘까지 하는 티켓다방이 급증하고 있
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
산 외국인 밀집지역에 불고 있는 티켓다방 열풍을
취재했다. (중략)

안산시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티켓
다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 다방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비롯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
와 함께 대학가 자취촌 주변에도 티켓다방이 급

속히 늘고 있어 영업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티켓다방 업주는 시간당 일정액을 받고 여종업
원에게 음료 배달을 시키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음료 배달을 명목으로 여종업원
을 불러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것을 '티켓을
끊는다'고 말해 티켓다방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업
태는 대개 매매춘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특별법이 발표되기 이전 2004년 9월께에
는 안산 지역에 총 216개의 다방이 있었다. 이 법
이 발효된 후 티켓 영업을 하는 다방이 많이 생겼
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 다
방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적은 상록구에는 2년 전보
다 다방이 100개가량 줄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
자가 밀집해 있는 단원구에는 2년 동안 155개의
다방이 새로 생겼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
는 경기도 화성시에도 2년 동안 125개의 다방이
문을 열었다. 이들 다방은 대부분 티켓 영업을 하
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월 8일자 42면 『외국인

노동자에 ‘성 배달’ 성업』 제하의 기사로 안산시 공단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티켓다방이 성업 중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티켓다방으로 들어가는 여종업원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사진에는 다방 상호가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다방입니다. 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방은 배달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도 위 보도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불법 매춘을 하는 티켓다방으로 오해하고 있어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어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람

• 본 문 : 본지 8월 8일자 42면 안산 일대 티켓다방 관련 기사에 게재된 ‘○○다방’ 사진은 원곡동 소재 ○○다방이 아니며, 원곡동 ○○다방은 티켓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 11. 7.자 이코노미스트 『독자편지』 난에 보도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이코노미스트 : 『알람』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7일자 10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제기한 아파트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강원조정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1. 최 ○ ○, 2. 현 ○ ○

피신청인 : 원주투데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7.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원주투데이 : 『재건축 ○○아파트 11월부터 이주 시작』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9일자 15면)

내 용 :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입주민 이주가 11월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은 지난달 27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 이주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조합 측은 이번주부터 분양공고와 함께 분양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1월 초부터 1차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리처분 총회는 다음달 중순경 계획하고 있다. 이주비는 세대당 2천 500만 원씩 무이자로 대출 가능토록 추진중이다.

이○○ 조합장은 “사업승인 만료일인 다음달 29일 전 착공 신고를 할 방침이다”며 “군 지사 이전에 따른 발전가능성 때문에 분양도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장 및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원 현모 씨(48)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류중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재건축 ○○아파트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9일자 15면에서 『재건축 ○○아파트 11월부터 이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11월 초부터 1차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리처분총회는 다음달 중순경 계획하고 있다. 조합원 현모 씨(48)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류중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합원 현모 씨(48)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류중이 아니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재건축 ○○아파트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9일자 15면에서 『재건축 ○○아파트 11월부터 이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11월 초부터 1차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리처분총회는 다음달 중순경 계획하고 있다. 조합원 현모 씨(48)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류중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현모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조합장 및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제시한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이 현재 서울 고등 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 이 모 조합장 및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계약, 이주와 분양 공고를 내고 업무를 추진하는 등 조합원의 정당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 조합장 직무대행인 최모 씨가 현 ○○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과 집행부를 뇌물 수수 및 배임죄로 고소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라○○ 이사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의 진정서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와 같은 법적 문제의 판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추진되는 조합의 모든 업무는 추후 조합원의 불이익과 조합의 양분화라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강원조정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1. 최 ○ ○

2. 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원주투데이

강원 원주시 단계동 881번지

대표이사 오 원 집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가. 주위적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신청인이 발행하는 원주투데이 10. 09.자 15쪽 이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목차 부분에 제목 <재건축 ○○아파트 11월부터 이주 시작 관련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쪽수를 다른 목차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제목 활자 크기 <재건축 ○○아파트 11월부터 이주 시작 관련 정정보도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나. 예비적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신청인이 발행하는 원주투데이 10. 09.자 15쪽 이내에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목차 부분에 제목 <재건축 ○○아파트 11월부터 이주 시작 관련 반론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쪽수를 다른 목차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제목 활자크기 <재건축 ○○아파트 11월부터 이주 시작 관련 반론보도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하라.

이 유 : 1.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원주투데이 2006년 10월 9일자 15면 『재건축 ○○아파트 11월부터 이주 시작』 제하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서 신청인들이 제기한 재건축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류 중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므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 사건 기사 중 신청인이 문제삼고 있는 “조합장 및 이사 선출을 위한 임

시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원 현모 씨(48)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류 중이다”라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신청인들이 제기한 재건축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신청인들의 항고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할지라도, 조합원 현모 씨(현○○)가 제기한 주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이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류중이고, 이 사건 기사에서 ‘소송’도 본안소송인 위 무효확인소송이라고 보여질 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은 보도내

용에 관한 반론보도가 아닌 전혀 별개의 새로운 내용이므로 신청인들의 반론보도청구 역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9.

〈별지 1〉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지 2〉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 회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장 과정에 인사전횡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레저(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정중복 “외국인카지노 개장 금품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8일자)

내 용 : 외국인 전용카지노 개장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인사전횡 등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중복(鄭鍾福)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

료를 통해 “올 상반기 개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곳을 관리하는 G사(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의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안감시 시스템 장비 도입과 관련해 지난 2월 22일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는 58억 원어치의 슬롯머신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제시되지 않은 평가 방법으로 업체를 평가하는 등 기술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고, 대규모 인력을 단기간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 내용을 수차례 변경하였으며 직급상향조정을 경영진이 판단하는 등 불합리하게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업체가 영업장 사용을 위한 제반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임대료 15억 원을 부당지급했고, 카지노 고액권의 불법적 반출방지를 위해 설치한 검색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

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국회가 끊임없이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신규사업장 개장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도박장화되는 와중에 증설을 강행한 정부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연합뉴스는 2006년 9월 28일자 정치면에 국회 문광위 정종복 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G사(한국관광공사 자회사)에 금품수수 및 인사전횡 등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G사는 금품수수 및 인사전횡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감사 결과를 왜곡 또는 과장해서 보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G사가 지난 2월 22일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하여 임직원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비리여부가 있는지 G사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알려왔으며, 직급상향조정을 경영진이 판단하는 등 불합리하게 직급을 조정했다는 인사 전횡 관련 내용에 대해 딜러 교관 등 간부로 이루어진 “교관선발 및 직급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력있는 교관요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직급을 조정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15억 원은 임차보증금(보증금 15억 원, 월 임차료 5억 원)으로 임대료 15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카지노 고액권의 불법적 반출방지를 위해 설치한 검색대가 작동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내용은 2월 당시 개장되었던 코엑스센터점

에서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현재 3개 영업장 검색대는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연합뉴스 : 『관광공사 자회사, 정종복의원 주장 반박』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내 용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 외국인 카지노 3곳을 운영하고 있는 G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회사의 금품수수 및 인사전횡 비위를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G사는 “정 의원의 보도자료는 관광공사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왜곡, 과장한 것으로 당사자가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지난 2월 모 방송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속 직원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사는 또 “경영진이 불합리하게 직원의 직급을 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사는 딜러 교관 등 간부로 이뤄진 ‘교관선발 및 직급조정위원회’를 구성, 실력 있는 교관요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직급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료 15억 원을 부당지급했다는 내용도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실과는 맞지 않다”면서 “카지노 고액권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검색대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난 2월 개장한 코엑스센터 점에서 일시 작동하지 않았을 뿐 현재 3개 영업장 모두 검색대가 정상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청인이 호화주택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tN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t v N : 「리얼스토리 묘」 프로그램 (2006년 10월 15일 23:00)
내용 : “대한민국 1% 럭셔리 하우스를 공개한다”는 방송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tvN은 지난 10월 15일 「리얼스토리 묘」 ‘대한민국 럭셔리 하우스’ 제하의 영상물을 방영하면서 신청인에게 “여러 곳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내·외

부를 비교·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취재목적을 밝히고 “인터뷰 없이 내·외부만 30분 정도 촬영해 가면 된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제 방송은 신청인과 가볍게 이야기 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하는 등 마치 신청인이 호화주택에 살면서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은 아랑곳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왜곡·편집해 내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인격권 및 명예를 크게 침해받았기에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11월 9일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

경찰 폭행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검찰청 출신인 신청인의 로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BN-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8.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손배)

보도내용

MBN-TV : 「mbn뉴스」 프로그램 (2006년 9월 19일 16:00)
내 용 : ▷앵커 : 정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한 PC방 업주에 대한 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검찰청 출신의 변호사로 밝혀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강○○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달 불심검문에 나선 홍모 순경과 김모 경장.

검문에 불응하는 PC방 업주 박모, 이모 씨와 승강이가 벌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순경은 팔꿈치에 맞아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입니다.

재청구한 영장도 ‘죄질은 나쁘지만 구속사유가 안된다’며 기각됐습니다.

▷김○○(변호사) : “실형 선고 받죠.” (실형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기각시키려면 상당한 로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모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

이모 변호사는 담당검사와 함께 근무하다 지난 2월 개업했습니다.

▷성남지청 관계자 : (이○○ 변호사가 2월까지 여기서 근무했나요) “네, 그렇죠.”

▷김○○(변호사) : (압력 행사 소지가 있나?)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 법원으로 안 넘기죠. 약식 벌금 가겠다는 거지.”

▷기자 : 취재가 시작되고 사건이 구설에 오르자 검찰은 뒤늦게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어 터진 범조비리에 국민의 사법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조계 스스로가 되돌아봐야할 시기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9일자 「mbn뉴스」 프로그램에서 “정북 경찰 폭행하고도 석방... 전관예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청 출신 변호사가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여 검찰에서 경찰을 폭행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차례나 기각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함께 근무한 바가 없고, 정당한 변호활동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불분명하고 그 방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범조비리나 전관예우와는 무관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매일경제TV 주식회사
서울 중구 필동 1가 30-1
대표이사 장 대 환
조정대리인 장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엔(매일경제TV) 17시 「mbn뉴스」 프로그램에 별지의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bn.co.kr)의 첫화면에, 별지의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함께 본문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bn.co.kr)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와 위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할 때, 별지의 보도문도 함께 보이도록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

〈별 지〉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9. 19.자로 “정북 경찰 폭행하고도 석방... 전관예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청 출신 변호사가 로비나 압력을 행사하여 검찰에서 경찰을 폭행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함께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 부당한 로비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한 변호활동을 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MBN-TV : 「mbn뉴스」 프로그램 (2006년 11월 7일 17:00)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피신청인 주장

손해배상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경주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고속도 휴게소 ‘경주빵’ 모두 가짜』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일자 9면)

내 용 :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경주빵’이 전부 유사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방현 검사는 2일 고속도로 휴게소 76곳에 유사 경주빵을 공급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박아무개 씨(54·부산시 금정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부산 금정구에 ㄱ식품이라는 식품회사를 차려놓고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6곳 등에 연간 3억~10억 원어치의 유사상표를 붙인 빵을 공급, 판매한 혐의를 사고 있다. 박씨는 포장에 자신의 회사 이름을 표시했지만 상표 등록된 경주빵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경주빵이 전 공정을 수작업으로 해 경주지역에서만 소량 유통되는 점을 악용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맛이 전혀 다른 빵을 대량 판매해 경주빵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제품 변질로 인한 피해사례가 생겨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고속도로 ‘유사 경주빵’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3일자 9면에서 『고속도 휴게소 ‘경주빵’ 모두 가짜』라는 제목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기사에서, 박모 씨는 타인의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경주빵’의 명칭과 동일한 ‘경주빵’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은 물론 경주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모 씨는 자신이 사용한 ‘경주빵’이라는 명칭이 상표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상표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유사상품’ 또는 ‘가짜상품’이 아니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본 문 : 10월 3일자 9면 『고속도 휴게소 ‘경주빵’ 모두 가짜』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박모 씨는 자신이 제조한 빵은 ‘가짜상품’이 아니며, 타인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현재 재판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1월 2일까지 사회면 또는 지역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8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경주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1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부산일보 : 『고속도 휴게소 ‘경주빵’ 가짜』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일자 8면)

내 용 : <2006서울조정42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42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 10월 3일자 8면 『고속도 휴게소 ‘경주빵’ 가짜』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박모 씨는 자신이 제조한 빵은 ‘유사상품’이나 ‘가짜상품’이 아니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부산일보에 2006. 10. 27.까지 보도한다.
- 신청인은 위 1, 2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 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다른 법률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부산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6일자 2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수익성 지분재산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3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전북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북도민일보 : 『군산 모대학 준폐위기』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8일자 4면)

내 용 : 지난해 비위 사실이 드러나 대학 핵심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었던 군산 A대학이 최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약속한 수익성 지분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익성 지분재산 확보 계획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지원금 및 정원충족, 편성이사 파견 등 다각적인 행정제제조치를 강행할 뜻을 내비쳐 자칫 준폐위기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정책관실에 따라

면 군산 A대학이 기존 H재단법인에서 현재의 K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설립조건으로 50억 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9 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A대학에 대해 연간 20~30억 원 규모로 지원되던 국가 예산지원을 지난 2003년부터 전면 중단하고 나섰으며 수익성 지분재산 확보가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관선이사 파견 등 추가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가지원금 중단 등 각종 행정제재조치로 이 대학측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5년 이내에 재단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제재조항까지 시행할 것으로 보여 추후 진행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 관계자는 “국가지원금 중단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재단측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반론보도문

본지는 10월 18일자 4면 『군산 모대학 존폐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OO대학이 수익성 지분재산 확보계획 미충족으로 국가지원금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선이사 파견과 ‘5년 이내에 재단설립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재단측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OO대학은 설립 이후 금융기관이나 사학진흥재단 등으로부터 대학의 재정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본 사실이 없어 ‘재정압박’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익용기본 재산 확보”를 위해 2001. 6. 30.자로 학교법인 OOOO학원 설립허가시 허가조건으로 군산노회 회원이 매년 출연하기로 한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 중이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선이사 파견, 재단설립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05. 4월경 OO대학의 제3자영입(매각여

부)에 대하여 법인과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나, 2005. 11. 26.자로 새로운 학장이 선출된 이후 제3자 영입 문제는 없었던 일로 되었으며, 법인에 임원을 파송하는 익산노회는 제3자 영입을 철회하기로 결의하고 OO대학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OO대학 관계자는 “대학측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근거없는 주장으로 진정서를 내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학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OO대학은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OO대학 운영 정상”

• 내 용 : 본보가 10월 18일자 보도한 “군산 모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 미이행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과 관선이사 파견 등 제재위기, 3자매각 검토” 기사에 대해, OO대학 측은 “설립 이후 금융기관이나 사학진흥재단 등으로부터 대학재정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본 사실이 없어 ‘재정압박’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제3자영입(매각여부)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2005. 11. 새로운 학장이 선출된 이후 이 문제는 없었던 일로 되었으며, 법인에 임원을 파송하는 익산노회는 제3자 영입을 철회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군산노회가 매년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OO대학은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재 OO대학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재단설립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도민일보 2006년 10월 27일자 4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군산 모대학 존폐위기”)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

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전북도민일보 : 『〇〇대학 운영 정상』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7일자 4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수익성 지분재산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3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〇〇〇〇학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전북중앙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북중앙신문 : 『군산 〇〇대 벼랑끝』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8일자 14면)
내 용 : <2006전북조정3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반론보도문

<2006전북조정3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반론
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〇〇대학 운영 정상”
- 내 용 : 본보가 10월 18일자 보도한 “〇〇대학

이 수익성 기본재산 확보계획 미이행으로 인한 관
선이사 파견 등 제재위기” 기사와 관련, 〇〇대학 측
은 “〇〇대학은 설립이후 금융기관이나 사학진흥재
단 등으로부터 재정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본 사실
이 없을 정도로 건실하고, ‘수익성기본재산 확보’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허가 조건으로 군산노회 회원이
매년 출연하기로 한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
구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〇〇대학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7학년도 신입
생 모집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재 〇〇대학에 대
해 ‘관선이사 파견, 재단설립 취소’ 등의 제재조치
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중앙신문 2006년 10월 27일자 14면에 게재하
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군산 〇〇대
벼랑끝)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
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중앙신문 : 『“〇〇대학 운영 정상”』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7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건설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종을 입법화하면서 정비업체와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을 맡기려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교통부 (장관 추 병 직)
피신청인 : 경향신문

증 재 부 : 서울제3증재부

접 수 일 : 2006. 10. 19.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1) 『거꾸로 가는 중고차 성능점검제』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2일자 14면)

내 용 : 지난해 도입된 중고차 성능점검과 품질 보증제도가 정비업체와 중고차 매매업자의 결탁 등으로 실효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정비업체와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을 맡기는 쪽으로 법령개정을 할 방침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후략)

지난해 2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은 판매업자가 중고차 구조장치의 성능과 상태를 기록한 성능점검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능점검 기관중 한 곳인 정비업체가 중고차 매매상과 짜고 점검을 하지 않고도 엉터리 기록부를 교부하거나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기록부를 교부해 이를 믿고 산 피해자만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1월 성능점검업 신설을 법제처에 통보했다가 돌연 폐기한 뒤, 최근에는 중고차 매매업자, 정비업자 등이 회원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설립을 허가하고 사실상 성능점검 업무를 부여했다. 당초 이 단체는 수차례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비영리 법인은 성능점검업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었다.

건교부는 조만간 성능점검을 '정비업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2) 『중고차 성능점검제 개악 강행』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3일자 16면)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점검제도의 폐해에 대해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12일 정비업체와 매매업자에게 중고차 성능점검을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

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에 대비, 법령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정비업체와 매매업자간 결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능점검업을 '정비업의 일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체가 회원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가 성능점검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협회는 지난 8월 설립허가됐다. (후략)

(3) 『“중고차 성능점검 입법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4일자 10면)

정비업체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중고차 성능점검을 맡기도록하는 내용의 '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성능점검 폐해를 더욱 가중시키므로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10월 12일, 13일, 14일 3회 연속하여 『거꾸로 가는 중고차 성능점검제』, 『중고차 성능점검제 개악 강행』, 『“중고차 성능점검 입법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정부가 정비업체와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을 맡기는 쪽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될 것에 대비 법령개정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조치이며, 또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 협회에 대해 설립을 허가하여 성능점검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 사실확인 결과

- 성능상태점검 업무는 지금까지 법적근거 없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성능점검자가 허위·부실점검 및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 미보증시 처벌법규 미비로 법집행을 할 수 없어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개선하고자 한 것이고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은 정비업종과 유사함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의 일종으로 업종화 하자는 것으로 성능점검업을 정비업체

와 매매업자에게 맡기려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 성능점검단체로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고 건교부 「비영리법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1

청 구 명 : 정정청구(변경된 청구명:반론청구)

신 청 인 : 건설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장관 추 병 직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대표이사 고 영 재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향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경향신문 「바로잡습니다」란의 통상적인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

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

<별 지>

• 제 목 : 건설교통부 반론보도문

• 본 문 : 10월 12~14일자 중고차성능점검업 관련 기사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중고차 성능점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부실·허위점검시 처벌토록 할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0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

주민대표인 신청인이 마을공동기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충북조정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9.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동양일보 : 『청주시 공무원 폭행 주민협 대표 횡령

혐의로 기소 재판결과 주목』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9일자 3면)

내 용 :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을 수차례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대표가 마을공동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공소 사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주민협의체 대표 조모 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동 모 통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6월 30일 농협 서청주 ○○동지점에서 ○○동마을회 소

유의 마을 창고를 담보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조씨는 마을회의 동의를 얻어 이모 씨에게 2억 500만 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8월 5일 전액 돌려 받았다.

조씨는 이 돈을 같은 날 안모 씨에게 6,000만 원, 홍모 씨에게 2,000만 원, 최모 씨에게 1,000만 원 등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조씨는 청주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박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일 피소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주흥덕경찰서는 조씨에 대한 공무원 폭행사실을 추가로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공무원 폭행 사실을 보도한 본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청주상당경찰서에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10월 19일 3면 『청주시 공무원 폭행 주민협 대표 횡령 혐의로 기소 재판결과 주목』이라는 제목 및 ‘오는 23일 청주지법서 1심재판

경찰 추가폭행 포착 수사 확대’라는 부제로 청주 권 광역쓰레기주민지원협의회 대표 조○○ 씨가 마을공동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결과가 주목되며, 청주흥덕경찰서는 조씨에 대한 공무원 폭행사실을 추가로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횡령한 부분은 변제하였고, 추가폭행 포착수사 확대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

합의사항

〈2006충북조정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폭탄주를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내일신문 : 『폭탄주에 빠진 ○○세무서』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일자 1면)

내 용 : ○○세무서가 폭탄주 좋아하는 서장으로 인해 근무기강이 엉망이다.

전 서장 때의 자영업자 조사실적 1위, 체납세 징수실적 1위는 빛 바랜지 오래다. 9월 말 끝난 체납세 징수실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근무 환경도 망가졌다. 여기 저기 담배꽂초가 버려져 있고 화장실 청결상태도 엉망이다.

지난 7월 부임한 안모 서장은 세원1·2과, 조사과, 총무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들과 돌아가며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요해 전 직원이 폭탄주를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회식비용을 부담했다. 100만 원이 넘는 카드 결제 때문에 지금도 부인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직원이 있다. (중략)

안 서장은 지난달 21일에는 ○○세무사협회 간부

들과 어울려 2차까지 가는 술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청장회의를 설명한다는 명분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협회 회장단과 몇몇 운영위원이 참석하고 세무서에서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2일 1면 『폭탄주에 빠진 ○○세무서』 제하의 기사에서 ○○세무서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근무기강이 엉망이 되었고, 과별 회식시 폭탄주 마실 것을 직원들에게 강요하였으며, 회식비도 일부직원이 부담하게 하였고, 또한 ○○세무서장은 세무사협회 간부들차 2차까지 가는 술자리를 마련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세무서는 9월 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이 중부청 관내 26개 세무서 중 5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직원화합을 위해 마련한 과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포함하여 140여 명의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더구나 회식비는 서장이 지급한 것으로 일부직원에게 부담시킨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세무사협회의 간부들과의 식사가 끝난 후 2차 술자리는 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세무서 관련 정정 및 반론
- 본 문 : 10월 2일자 1면 ○○세무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안모 전 ○○세무서장은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폭탄주를 강요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으며, 또한 안 전 서장은 세무사협회 간부들과 2차 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1월 1일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안 마시면 인사 불이익”...)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일신문 : 『○○세무서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1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대학교가 그룹웨어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서울○○대학교 (총장 조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한국○○대학교에 ○○, 네트워크 설치』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5일자 15면)

내 용 : 홈그룹웨어 전문업체인 ○○(대표 김○○)이 한국○○○대학교(총장 조○○)에 그룹웨어 패키지 모델인 ‘마을’ 서비스를 공급한다.

김○○ ○○대표와 조○○ 한국○○○대학교 총장은 지난 20일 ○○본사 회의실에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은 한국○○○대학교에 학부별 마을, 교수협의회 마을, 교수 마을을 각각 구성했다.

학부 마을은 학부별 교수와 학생을 관리하고 교수협의회 마을은 대학 모든 교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교수 마을에서는 담당 교수들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2006년 7월 25일 『한국○○○대학교에 ○○, 네트워크 설치』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중 한국○○○대학교는 서울○○○대학교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과 서울○○○대학교가 ○○의 그룹웨어 패키지 모델인 ‘마을’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미 학부별 마을 교수협의회 마을, 교수 마을을 구성하는 등 학생 및 대학의 모든 교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서울○○○대학교는 ○○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없을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공급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과의 양해각서는 서울○○○대학교의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와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에서 서울○○○대학교에 제공하였다는 서비스인 학부마을, 교수협의회 마을, 교수마을은 학사 및 행정, 교직원 관리 시스템으로서 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자 중요한 시스템으로 기사에서는 마치 서울○○○대학교에 아직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도되어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신청인 대학교가 그룹웨어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서울○○○대학교 (총장 조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증 재 부 : 서울제4증재부
접 수 일 : 2006. 10. 20.
처리결과 : 취 하

한국경제 : 『그룹커뮤니티 마을 서비스 ○○·한국○○○대 계약』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5일자 14면)
내 용 : <2006서울조정42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42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 대학교가 그룹웨어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서울○○○대학교 (총장 조 ○ ○)
피신청인 : 전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0.
처리결과 : 취 하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1일자 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42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보도내용
전자신문 : 『한국○○○ 대학교에 ○○, 그룹웨어 공급』
〈2006서울조정42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개발한 사행성게임 개조방지장치가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 우 종 식)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0.
처리결과 : 합 의

▷게임업계 관계자 : 업계 입장에서는 지난 2월에 공청회때 여러가지 개선 의견을 이야기 했습니다. 4월에도 해킹이 우려되고 개·변조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달 삼성 SDS와 또 다른 표시 장치 개발 계약을 몰래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후략)

보도내용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10월 17일 20:00)
내 용 : ▷앵커 :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문화관광부가 사행성 게임물의 개조와 변조를 막기 위한 표시 장치 즉, 일종의 게임 블랙 박스에 대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어서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지난달 13일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바다 이야기 게임기에 부착된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직접 시연했습니다.
이 장치는 항공기의 블랙 박스처럼 투입한 금액과 상품권 배출 현황을 기록할 수 있어, 게임물의 개조와 변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억 원을 들여 반년 만에 만든 이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의 게임들을 보호한다며 표시 장치가 게임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설계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행성 게임 개조방지 장치 ‘무용지물’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0월 17일 「SBS8시뉴스」 프로그램에서 “사행성 게임 개조방지 장치 ‘무용지물’” 제목으로 게임산업개발원이 3억 원을 들여 반년 만에 만든 표시장치가 무용지물이며,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삼성 SDS와 또 다른 표시장치 개발 계약을 몰래 체결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게임산업개발원은 공청회 등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 협·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였으며, 삼성 SDS컨소시엄과는 표시장치 개발계약이 아닌 ‘경품용 상품권 종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표시장치는 4개월간의 해외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정보공개요청설명회 등을 통하여 설계된 것으로 국가 표준 보안 알고리즘 SEED 적용, 물리적 봉인 등 8단계의 보안구조를 갖고 있어 해킹

과 개·변조가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내 용 : 지난 17일 「SBS8뉴스」에서의 사행성 게임 개조방지를 위한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서, 개발자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을 통해 기능을 보완했고, 8단계 보안구조로 해킹과 개·변조가 어렵게 설계되어 사행성 방지에 유용하며, 삼성 SDS 측과의 계약은 '경품용 상품권 종합관리시스

템ISP' 사업에 관해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SBS-TV 「아침 7시 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2006년 11월 6일(토요일, 일요일 제외)까지 보도하되,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10월 30일 20: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신문이 대학생 선호도 조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메트로신문사

(대표이사 남 궁 호, 김 영 군)

피신청인 : 더데일리포커스

종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더데일리포커스 : 『포커스는 독자 사랑먹고 큰 나무』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6일자 36~37면)

내 용 : (전략) 최근 한 무료신문이 전문지의 설문조사를 인용, 자사의 신문이 '대학생 선호도 1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대학생 선호도에서 2위와의 격차가 무려 19%포인트로 커졌다'면서 이를 근거로 "무료일간지 시장에서 직장인들은 물론 젊은 독자층에 가장 인기있는 '젊은 신문'임을 입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대학생 선호도 조사결과를 이처럼 제멋대로 직장인과 나아가 젊은층 전체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조사결과 자체에 대한 진위뿐만 아니라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자의적 분석 등의 의혹을 스스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포커스신문 애독자들이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진위를 밝혀 다시는 '통계수치를 통한 자화자찬식 보도의 구태'가 무료신문시장에서만은 재현되지 않게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더데일리포커스는 지난 10월 16일자 36~37면 『포커스는 독자 사랑먹고 큰 나무』 제하의 기사에서 메트로 신문이 한국대학신문의 '대학생의식조사&기업이미지 및 상품선호도' 조사에서 대학생 선호도 1위를 했으며, 2위와의 격차가 19%포인트라며 이를 근거로 무료일간지 시장에서 직장인들은 물론 젊은 독자층에 가장 인기있는 신문임을 자랑했으나, 메트로 신문이 이러한 대학생 선호도 조사를 제멋대로 확대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조사결과 자체에 대한 진의뿐만 아니라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자의적 분석등의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메트로 신문은 한국대학신문이 전국 대학생 2,001명을 대상으로한 '전국 대학생의식조사&기업이미지 및 상품선호도' 조사 무료종합일간지 부문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고, 2위와의 격차 또한 19%포인트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 메트로 신문은 "한국대학신문의 '전국 대학

생 의식조사' 무료신문 선호도 기사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보도했으며 '제멋대로' 확대 해석하지도 않았고 '자의적으로 분석' 하지 않았다"면서 직장인 등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리서치 2006년 1라운드 열독률조사에서 무료신문 중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대학신문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 이를 근거로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 등 젊은 독자층에 가장 인기있는 신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정정·손배 청구는 물론 반론청구도 수용할 수 없다. □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를 하루만에 뒤바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박 찬 옥)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종합지 매출 1위라 뽑았다” 선정이유 하루만에 뒤집어』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1일자 A2면)

내 용 : (전략)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전산 선정(전산프로그램을 돌려서 뽑는것)'의 결과라는 전날 국세청 설명과 달리, 이날 박 청장은 "전산선정 후 언론사 유형별로 매출액 1위 신문사를 선정했다"고 말해 특정 언론사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략)

박 청장은 간담회에서 "전산분석으로 뽑은 조사 대상 언론사 중 종합지·경제지·방송사를 유형별로 나눈 뒤 매출액이 가장 큰 1위 기업을 골랐다"고 말을 바꿨다. 신문업계 1위인 조선일보를 염두에 두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박 청장은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외형 1위 언론사를 했으니 다음조사 대상은 외형 2위나"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순위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조선일보와 매경·KBS는 '매출 1위'를 이유로 선정했다면서 다음 번 대상은 매출액이 기준이 안될 수 있다고 말해 잣대의 이중성을 자인(自認)한 것이다.

그는 "추가조사 때는 꼭 이번에 정한 식대로 언론 유형별로 한다거나 (매출액) 우선 순위대로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린다"고 말해 기준이 수시로 뒤바뀔 수 있음을 시인했다.

◆ '정치적 의도성'에 대한 입장 뒤집어

박 청장은 또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말해,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의 발언을 뒤집었다. 전 청장은 지난 7월 인사 청문회에서 "지난 2001년 언론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실시됐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었다.

전 청장뿐 아니라 국세청 간부들은 전날 기자들 취재에 대해 "일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5년 전 세무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에는 정치성이 없다"고 언급, 최소한 2001년 세무조사의 정치성은 인정했었다. 이 같은 전날까지 국세청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박 청장이 '정치성'을 전면 부인하고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선정기준 공개는 끝내 거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둘러싼 의혹에도 불구하고, 박 청장은 끝까지 구체적인 기준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전산분석으로 선정하는 기준에 소득신고율·부가가치율 등 20가지가 있지만, 세무조사를 기피하는데 악용(惡用)할 여지가 있어 구체적 기

준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박 청장이 조사대상 선정 근거로 내세운 ‘전산선정’에 대해서는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산분석으로 선정된 업체에 조사를 나가보면, 폐업했거나 부도난 업체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10월 21일자 A2면에 『“종합지 매출 1위라 뽑았다” 선정이유 하루만에 뒤집어』 제하의 기사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대상자를 국세청이 처음에는 ‘전산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가 ‘매출 1위’여서 선정했다고 하루만에 선정이유를 뒤집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착수시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와 매경·KBS는 ‘매출 1위’를 이유로 선정했다면서 다음 번 대상은 매출액이 기준이 안될 수 있다고 말해 잣대의 이중성을 자인한 것이며 기준이 수시로 뒤바뀔 수 있음을 시인했다”고 한 것과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0.20.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번 조사 착수 대상은 매출액이 기준이 안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 확인 결과 언론사 유형별로 선정된 조사대상자 수

가 다르고 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그때그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무조건 언론사 유형별로 매출액 2순위 업체를 조사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군표 국세청장이나 국세청 간부들이 최소한 2001년 세무조사의 정치성은 인정했었다”고 하였으나 국세청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가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법인에 대한 정당한 세무조사라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사대상 선정 근거로 내세운 ‘전산 선정’에 대해서는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일부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게재한 것으로써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선정하는 것은 조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과학적인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으로 선진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당국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사실 보도이므로 반론 보도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협회가 심사 비리와 승부조작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부산일보 : 『부산태권도협 부정 심하네』 제하의 기

사 (2006년 10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부산태권도협회(이하 부태협)의 일부 고위간부들이 승품·승단 심사에 조직적으로 개입,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부태협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일부 부태협 원로들과 전직 간부들은 “승품·단 심사비리는 부태협의 고질적 병폐로 최근까지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진정서를 지난 8월 사법당국에 제출했다.

본보 취재진이 입수한 2005년 5월 25일자 부태협의 ‘심사조정위원회 의결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열린 제2회 승품·단 심사에서 심사부위원장인 J씨와 심사분과위원 K씨가 현 협회이사 L씨의 부

탁을 받고 1단 승단심사에 불참한 응심자 2명을 참가한 것으로 조작했다. 현 부태협 이사이자 채점 위원인 K씨와 N씨, H씨도 L이사의 부탁을 받고 문제의 불참 응심자 2명의 채점표에 점수를 기록, 합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부위원장 J씨는 또 친동생이 운영하는 도장의 1단 응심자 1명이 불참하자 같은 방법으로 합격처리했다. 부태협의 원로관장 L씨도 또 다른 채점위원 L,K,J씨에게 청탁, 불참한 4품 응심자 2명의 채점표에 점수를 조작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심사조정위원회 의결록에는 이 밖에도 채점위원들의 채점기록 누락 및 오기 등 불투명한 일처리로 응심자 17명이 탈락처리되는 등 지난해 4월 열린 승품·승단심사에서만 13명의 협회 관계자들이 연루돼 응심자 22명의 합격·불합격 판정이 뒤바뀐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부태협은 자체조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도 심사 부정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빈번히 이뤄져 위험수위에 오른 승품·단 비리 근절을 위해 상벌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는 협회 사무국의 권고도 무시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10월 16일자 사회면에 『부산태권도협 부패 심하네』라는 제목 및 '심사 안하고 승단·합격 불합격 뒤집기', '고위간부들 조직적 개입 내부문건 확인'이라는 부제하에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가 승품·승단 심사에서 조직적으로 개입, 불참한 응심자를 참석자로, 채점기록 누락 및 오기 등 불투명한 일 처리로 응심자를 탈락처리 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의 일부 임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였으나, 이미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의 자체 심사 조정 위원회에서 일부 임원들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시정하였으며, 채점기록 누락 및 오기 등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정정을 하였던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으며, 아울러 본 신문의 기사로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자일리톨 껌이 치아건강을 해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총치예방연구회 (회장 송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4.
처리결과 : 각 하

보도내용

한겨레 : 『부드러운 고발프로 강하게 먹힌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9일자 27면)
내 용 : (전략) 19일 방송에서는 서울시내 패스트

푸드점 15곳을 조사해보니 음료수 속의 얼음에서 변기 물보다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15만 원짜리 수입화장품의 원가는 단돈 7천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이 폭로된다. 26일에는 치아 건강을 해치는 자일리톨 껌, 피부관리실에서 파는 화장품에 대한 실험결과를 공개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자일리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10월 19일 27면에 『부드러운 고발프로 강하게 먹힌다』라는 제목 하에 '26일에는 치아 건강을 해치는 자일리톨 껌에 대

한 실험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자일리톨은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치의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본지도 작년 하반기 충치예방캠페인을 통해 자일리톨을 치아 건강에 유익한 성분으로 소개한 바가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충치예방연구회

서울 종로구 사간동 69 영정빌딩 5층
회장 송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정 태 기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문화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006. 10. 19.자 문화면 『부드러운 고발프로 강하게 먹힌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 방송사의 고발프로그램이 치아건강을 해치는 자일리톨껍에 대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는바,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취지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위 법률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이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권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이 그 주장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은 부적법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소기업중앙회가 본국으로 돌아간 네팔연수생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재입국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용 구)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4.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1) 『“중기중앙회 등 고용허가제 대행 반대”』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8일자 12면)

내 용 :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 관련제도가 일원화된 다. 그러나 정부가 부작용을 양산했던 산업연수생제 주관기관들을 고용허가제의 대행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려해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2004년 12월 네팔 연수생 286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금씩 바꿔 재입국시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연수생 송출수수료가 3천~1만달러로 규정보다 최대 4배 가량 높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리·감독엔 소홀하고 송출 이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2001년 국감에서는 산업연수생 이탈 방지용 보증금 등을 차량 구입비, 콘도 회원권,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유용한 일도 밝혀졌다. (후략)

(2) 『불신 키우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9일자 3면)

(전략)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생 추천기관들이 고용허가제에 관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기관들은 연수생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 채 이권만 신경쓴다는 비판을 수없이 받았다. 심지어 이탈을 막는다며 연수생들에게 강제로 들게 한 적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샀다. 추천기관은 돌려주지 않은 강제적금의 액수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는 연수생들에 대한 부실한 상담 실태까지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런 기관들이 고용허가제에 관여하게 한다는 건 이주노동자 정책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본지는 지난 10월 18일자 12면에서 『“중기중앙회 등 고용허가제 대행 반대”』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04년 12월 네팔 연수생 여권위명 사건의 당사자로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연수생 송출수수료를 규정보다 최대 4배 가량 높게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네팔 연수생 여권위명 사건과 관련이 없고 경찰에 적발된 적도 없으며, 송출수수료도 중소기업중앙회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국 송출기관에서 항공료 및 출국수속·사전교육·국내지사운영 및 사후관리 등의 비용으로 해당 송출국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

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회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본지는 지난 10월 19일자 3면 사설에서 『불신 키우는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이탈을 막는다며 강제로 들게한 연수생의 적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돌려주지 않아 연수생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연수생의 미해지 적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은행에 휴면계좌 상태로 남아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본인이라면 정보제공이나 적금인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정정보도
- 본 문 : 본지 지난 10월 18일자 12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기사 중 ‘네팔연수생 불법재입국과 연수생 송출수수료 과다 징수’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0월 19일자 31면 사설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생들의 적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연수생들의 미해지 적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은행에 휴면계좌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2006년 11월 3일자 한겨레 사회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2006년 10월 18일치)의 부제목 ‘시민단체~줄어들 것’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3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개발한 원전 복수기에 적용된 금속제품이 대법원에서 특허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1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4.
처리결과 : 합 의 (정정·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한겨레 : (1) 『한수원, 특허취소 금속제품 고집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6일자 10면)

내 용 :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원전
복수기 제작에 “국내 신기술”이라며 적용을 고집
해온 금속제품이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특허취
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 제품은 1984년 국내의 한 대학 B교수가 개
발해 특허를 받았으나, 2002년 대법원에서 “기존
제품과 비교할 때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은 뒤 특허심판원에 항소했
다가 결국 2004년 8월 11일 20년의 특허기간이 만
료됐다. (중략)

이와 관련해 신고리 1·2호기 원전의 복수기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은 복수기 튜브재료 선정 1
년 전인 2003년 9월 9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한수원의 방침에 따를 경우) 특정 제작사와
수계약으로 자재를 구매할 가능성이 커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수원 쪽이 제시한 요건에 맞는 재질은 SR-
50A밖에 없었다. 두산중공업은 또 “SR-50A는
복수기 설계 규격(HEI)에 등재돼 있지 않아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설계 데이터 적용 및 성능
보증의 어려움이 있다”며 제작상의 어려움도 밝
혔다.

(2) 『원전 4곳 냉각기 ‘대충수치’로 제작중』 제
하의 기사 (2006년 7월 28일자 12면)

(전략) 그러나 <한겨레>가 입수한 신고리 원전
복수기의 ‘열폐기 계통 최적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전기술은 티타늄 70%와 슈퍼스테인리스
스틸(SR50A) 30%로 이뤄진 이 복수기를 설계하
면서 재질을 슈퍼스테인리스스틸(SR50A)까지
티타늄으로 보고 전열 면적을 계산했다. 이는
SR50A의 ‘열전달값’이, 복수기·열교환기의 공
인된 설계 규격인 ‘미국열교환기협회(HEI) 코
드’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원전 복수기
설계 전문가는 “신고리·신월성 원전에 복수기
튜브 제품으로 선정된 SR50A의 경우, 열전달값
을 알 수 없어 정밀한 설계는 불가능하다”고 말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인해 (원전 복
수기 제작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SR50A와 유사한
재질로, HEI에 올라있는 미국 제품 AL6XN의 열
전달값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복수기
를 설계할 경우 열전달값을 넉넉하게 잡아야 해
복수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1990년대 두산중공업(당시 한국중공업)의 원
전 복수기 제작 실무자였던 한 인사는 “근본적으
로 이런 문제는 한수원이 SR50A의 적용을 고집하
면서 생겼다”며 “당시 관련 회의 때마다 두산 쪽
은 ‘SR50A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수원
(당시 한전) 쪽은 ‘위에서 추진된 일이니 SR50A
를 쓰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회의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7월 26일자 10면에 『한수원,
특허취소 금속제품 고집했다』라는 제목으로 국내
한 대학의 B교수가 개발한 금속제품인 SR50A의
특허가 취소되었고 이 제품은 복수기 설계 규격

(HEI)에 등재돼 있지 않아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설계 데이터 적용 및 성능 보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28일자 12면에 『원전 4곳 냉각기 ‘대충수치’로 제작중』라는 제목으로 SR50A의 열전달값이 복수기·열교환기의 공인된 설계 규격인 미국열교환기협회(HEI) 코드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리·신월성 원전에 복수기 튜브 제품의 정밀한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제품의 특허무효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한 미국열교환기협회(HEI)는 미국내 관련업자들로 이루어진 민간 기구로서 원전 건설에 있어서 복수기·열교환기의 공인된 설계 규격이 아니므로 그 등재 여부와 제품의 안전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원전 복수기 관련 반론보도

• 본 문 : 본지 지난 7월 26일자 10면 『한수원, 특허취소 금속제품 고집했다』기사와, 7월 28일자 12면 『원전 4곳 냉각기 ‘대충수치’로 제작중』 기사에서 국내 한 대학의 H교수가 개발한 금속제품인 SR50A의 특허에 대해 대법원에서 특허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 제품은 복수기 설계 규격(HEI)에 등재돼 있지 않아 설계 및 성능 보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H교수는 이 제품의 특허무효소송은 대법원 판결 뒤 특허청구 범위가 정정되어 다시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한 미국 열교환기협회(HEI)는 미국 내 관련업자들로 이루어진 민간 기구로서 원전 설계에 있어서 복수기·열교환기의 공인된 설계규격이 아니므로 그 등재 여부가 제품의 안전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6년 11월 6일자 한겨레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2006년 7월 26일자)의 부제목 ‘냉각기 제작업체 반대 목살’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기사와 관련 별도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원전 복수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6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가평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가평군지회 (회장 조 ○ ○)

피신청인 : 경인매일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인매일신문 : 『가평 ‘재즈축제’ 특혜 시비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2일자 12면)

내 용 : 가평군이 재즈축제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면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특정단체를 개

입시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4일간 자라섬 일대에서 개최한 재즈페스티벌 행사에 가평군음식업지부(지부장 김○○)가 주최한 음식대축제행사 푸드존에 자격요건이 안되는 ○○○중앙회 가평군지회(지회장 조○○)부녀회원들을 참가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시적 조리장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야시장격의 행사이므로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고 전하고 특정단체의 개입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음식축제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 M씨는 “가평군 관내 음식점에 종사하는 업주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회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지난 지방 선거에 앞장서 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보답으로 밀어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회는 지난 9일 가평군이 주최한 제39회 군민의날 행사에서도 먹거리장터에 참여해 내빈 등의 식사를 제공 하는 등 이권사업에 개입돼 가평군청이 비호하는 이익단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12일자 12면에 『가평 ‘재즈축제’ 특혜 시비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가평군 ‘재즈축제’와 관련하여 음식축제 푸드존에서 자격요건이 안되는 ○○○가평군지회 부녀회원들을 참가시켜 논란이 되고 있고 ○○○지회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 앞장서 운동한 보답으로 가평군이 음식축제행사 시 밀어준게 아니냐는 기사와 제39회 군민의날 행사에도 먹거리 장터에 참여해 내빈 등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이권사업에 개입돼 가평군청이 비호하는 이익단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가평군○○○ 부녀회는 정당하게 참가비를 음식업지부에 지급하고 음식점교육을 수료한 후, 푸드존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평소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하여 봉사하는 ○○○회원들이 지난 5.31 선거기간 동안 자신의 소신과 성향에 따라 후보자를 위해 개인의 지지의사를 표명했을 뿐, ○○○지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한편, 군민의 날 행사 시 6개 읍면의 부녀회는 각 면 체육회, 자치위원회에서 재료비를 제공 받고 각 면민들을 위해 중식제공 봉사를 하였을 뿐, 내빈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가평군청이 비호하는 이익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10일자 12면 『가평 ‘재즈축제’ 특혜 시비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결과 ○○○가평군부녀회는 ‘재즈축제’ 행사 전, 가평군 음식업지부가 푸드존에 참가할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한 다음, 부스를 배정 받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평소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하여 봉사하는 ○○○회원들이 지난 5.31 선거기간 동안 자신의 소신과 성향에 따라 후보자를 위해 개인의 지지의사를 표명했을 뿐, ○○○지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군민의 날 행사 시 6개 읍면의 부녀회는 각 면 체육회, 자치위원회에서 재료비를 제공 받고 각 면민들을 위해 중식제공 봉사를 하였을 뿐, 내빈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가평군청이 비호하는 이익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인매일 2006년 11월 22일 1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음식대축제 행사 ‘○○○지회’ 참가 업체들 반발)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인매일신문 : 『‘가평 재즈축제’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3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간병사들에게 극심한 노동착취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회복지법인 ○○원
(대표이사 김 ○○)
피신청인 : 울산노동뉴스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울산노동뉴스 : (1) 『봉사와 희생속에 감춰진 극심한 노동착취』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4일자)

내 용 : (전략) 대부분 50대에서 60대인 간병사들은 1인당 평균 20여 명의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극도의 과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반 병원의 경우 이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환자 1명당 1명의 간병사가 배치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비율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간병사들은 환자들의 특성상 식·음료 수발은 물론이고 대·소변 처리와 목욕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간병사들이 직접 염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후략)

(2) 『나이 원에 찾은 고된 직장』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6일자)

(전략) 병동당 1명의 수간호사와 4~5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재활병동과 중환자실의 경우는 병원 옆에 있는 재활원 수용자 중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수용자가 1명씩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환자실의 경우,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알코올 소독 등 시신후송을 위한 기본처리를 간병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고역이라고 했다. (중략)

그렇게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받는 월급

은 기본급 50만 원 선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실 수령액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 열악한 임금수준인데도 지난 3월경 재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퇴직금 정산방식을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휴무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그런 가운데 5월에 지급된 임금명세서를 받고 불만이 터졌다. 동료 간병사들과 논의를 했지만 대부분 소극적이었다.

“5~6년 전에 간병사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다가 전원 해고된 일이 있었거든요. 오래 일하신 분들은 그 후에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면서 나서길 꺼려했어요.” (후략)

(3) 『○○재활병원 조합원 병원 앞 연좌시위 진행』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4일자)

(전략) 4년간 ○○재활병원에서 일을 했다는 이○○(67세) 조합원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7월 말에 사직했다. 그러나 그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월급명세서에서는 고용보험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 알아보니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나이에 죽어라 일만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후략)

(4) 『소처럼 일시키고, 개처럼 몰아붙이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일자)

(전략) 조합원 중 한 사람은 건강이 나빠져 퇴직을 한 상태인데 고용 보험을 타기 위해 오늘 병원을 두 번이나 들어갔었다.

58세의 간병사는 병원이 산 중에 있어 차편도 좋지 못해 택시를 타고 다녔단다. 병원에서는 고혈압으로 더 이상 자세하게 소견서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58세의 간병사는 울산과 병원을 두 번씩 다니고 나니 힘들어 밥맛도 없다고 한다.

67세의 간병사에게는 1년 반 동안 고용보험 넣는다고 임금에서 떼어 놓고도 가입조차 하지 않고, 58세의 간병사에게는 소견서를 자세하게 적어 달라는 것을 더 이상은 적어 줄 수 없다며 고용보험 타먹기 어렵게 하고 할머니 간병사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8월 14일자 『봉사와 희생속에 감춰진 극심한 노동착취』 제하의 기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간병자가 직접 염을 하기도 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재활병원은 장례식장도 아니고 사망자 발생시 염을 할 수도 없고, 염을 시킨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 16일자 『나이 쉰에 찾은 고된 직장』 제하의 기사에서 중환자실의 경우,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알코올 소독 등 시신후송을 위한 기본처리를 간병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고역이라고 했으며, 5~6년 전 간병사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다가 전원 해고된 일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재활병원에는 중환자실이 없으며, 또한 사망 환자에 대한 알코올 소독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5~6년 전 임금인상을 요구하다 해고된 직원도 없는 것으로 밝

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9월 14일자 『○○재활병원 조합원 병원 앞 연좌시위 진행』 제하의 기사에서 4년간 ○○재활병원에서 일을 한 이○○ 조합원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직했고, 그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매달 보험료는 빠져나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 간병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65세가 되면서 고용보험 자격예외자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다음부터는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 『소처럼 일시키고, 개처럼 몰아붙인다』 제하의 기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넣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수용 가능하나 정정보도·손배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핵우산 제공여부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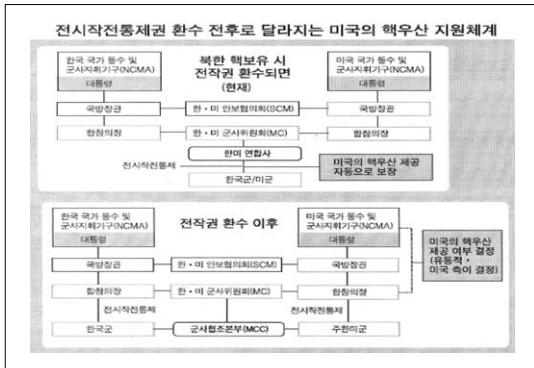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미국 “전작권 예정대로 2009년 이양”』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2일자 6면)

내 용 : 미국 행정부는 20·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할 공동성명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명의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지속 제공과 방위 공약을 재확인'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미국의 한 관리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SCM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09년 한국에 이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후략)



은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미 국가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이는 매년 한미 국방장관간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공약으로 재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38차 SCM 공동성명에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12일자 6면에서 『미국 “전작권 예정대로 2009년 이양”』 제하로 보도한 기사 상단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후로 달라지는 미국의 핵우산 지원체계’ 제목의 도표를 게재하면서 ‘전작권 환수 이전인 현재는 미국의 핵지원 체계가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자동으로 보장되지만, 환수 이후에는 핵우산 제공여부가 미 측에 의해 결정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8일자 2면)

내 용 : ◆10월 12일자 6면 『미국 “전작권 예정대로 2009년 이양”』 기사의 도표에서 왼쪽 그림은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입니다. 또 도표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은 연합사령관 관할이 아니라 한·미 정부의 합의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 전술통신체계 와이브로 기술접목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주간동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주간동아 : 『어설픈 와이브로 동작 그만』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10~12면)

내 용 : (전략) 군대는 야지(野地)를 이동하며 훈련하고 작전한다. 특히 전시(戰時)에는 주둔지와 전혀 다른 곳에서 작전해야 하므로, 전투부대의 통

신체계는 100% 무선으로 이뤄져야 한다. 휴대전화나 와이브로처럼 기지국과 교환기(전화국) 사이를 유선으로 연결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육군은 군사령부에서 연대급 사이 제대(梯隊)를 연결하는 무선통신체계로 ‘스파이더(Spider)’를 운용하고 있다. 1996년 육군은 이 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00년부터 기초적인 연구에 들어가 올해 3월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 전술통신체계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무선통신 개량사업 계획을 확정지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안 된 3월 21일 국방부가 돌연 이 사업의 순연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방부 내에 ‘국방 와이브로 연구단’을 만들었는데, 6월 23일 이 연구단은 ‘TICN에 와이브로 기술

을 접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올렸다. 외형상으로는 국방부가 TICN에 와이브로를 접목할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연구한 뒤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자,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중략)

와이브로는 TICN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동영상은 물론이고 데이터링크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기지국 통달 거리는 스파이더의 20분의 1, TICN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와이브로 기지국의 출력을 올리면 좀 더 나아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기지국 차량과 이를 지키는 부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체계를 30년 동안 운용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일까? (중략)

한마디로 군용 와이브로 체계는 민간용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개발돼야 하는데 국방 와이브로 연구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간과했다. 그리고 와이브로 개발을 독려해온 정보통신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업에 와이브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민간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와이브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방산업체가 아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소란스러워졌다. 민간업체가 방산물자를 바로 개발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므로 이 일을 감독하고 추진해야 할 두 기관은 자신이 없어진 것. 민간업체가 개발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두 기관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반대 목소리가 특히 높은 두 기관의 관계자 5명을 주목하자, 국방부와 방사청 주변에는 "국방부가 와이브로 반대 '5적(敵)'을 꼽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5적으로 거론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돌기 시작했다.

민간업체로 하여금 와이브로 기술이 접목된 TICN을 개발하게 하자는 것은 진대제 장관 시절 정보통신부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진 장관은 이른바 '황금박쥐' 멤버의 일원으로 꼽혔던 노무현 정부의 실세 장관이었다. 그는 또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시절 와이브로 개발에 매진했던 사업가이기도 했다. (중략)

와이브로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난점을 해결하려면 어디에선가 이를 구축하고 가동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시험장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군 통

신망이다. 군에서 집행되는 통신 예산을 활용해 와이브로를 가동해보고,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량해 군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쉽고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을 만든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유사시에 대비한 군이 그러한 시험장이 돼야 하느냐는 것이 방사청과 국과연 TICN 개발에 참여해온 방산업체, 그리고 합참이 반대하는 논거다.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은 거의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흥미로운 것은 외견상 국방 와이브로 연구단의 건의로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마치 자신이 이 아이디어를 낸 듯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6월 21일 윤 장관은 이 사업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 와이브로 연구단 연구결과를 방영하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주의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19일자 10~12면 『어썰폰 와이브로 동작 그만』 제하로 와이브로(WiBro) 원천기술을 접목한 군 전술통신체계 개발추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올해 3월 TICN 사업을 확정했다고 하였으나, 이 사업은 이미 1996년에 소요결정되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개념 연구 후 탐색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으며, 또한 방사청과 국가연, 방산업체, 합참 등이 와이브로 기술 접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고 하였으나 이들 기관들은 와이브로 기술자체의 TICN 적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개방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강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와이브로 반대 5적을 꼽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의 의지가 정권의 실세를 통해 국방부에 전해져 추진되었다"는 내용은 2005년 와이브로 기술 국방적용이 국방정보화 협력과제로 선정돼 지난 2월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군용 개발에 대한 검토를 간과했다고 보도

하였으나 국방 와이브로 연구단은 전술 환경하에
서의 군용장비 운용 요구조건 충족여부 등 제반사
항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검토하였고, 와이브로의
통달거리가 TICN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내용
은 전파환경에 따라 통달거리가 가변적인 와이브
로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
다. ☐

육군 제1군사령부가 야전군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에 대해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강원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육군 제1군사령부 (사령관 김 병 관)

피신청인 : 강원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강원일보 : 『북핵긴장 벌써 풀렸다...“군 여유만만”』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3일자 5면)

내 용 : 북한이 핵실험 이후 외부성 논평을 통해
‘물리적 대응’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제1
야전군사령부가 자체행사에 1,000여 명에 달하는
장병들을 동원해 군(軍)조차 안보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1야전군사령부(사령관:김병관 대장)는 12일
오후 2시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야전군 페스티벌
2006’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의
전군 24시간 비상 경계태세 강화 지시에도 불고,
김병관 사령관을 비롯해 부사령관, 참모장, 군수처장
등 1군사령부 내 수뇌부가 대거 참석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10월 13일자 5면 『북핵긴장 벌써 풀렸다...“
군 여유만만”』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1야전군사
령부가 자체행사에 1,000여 명에 달하는 장병들을
동원해 군조차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이 일
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야전군 페스티벌 행사를
주관한 제1야전군에 따르면, 야전군 페스티벌 행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제1
야전군의 위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가질수 있는 막연한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민
관군 안보공감대를 형성하여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히 한다는 취지하에 시행한 행사로서 특히, 현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즉각적인 군사대비태
세 유지를 위한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진
행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야전군 페스티벌’ 관련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 지난 10월 13일자 5면 『북핵긴장
벌써 풀렸다...“군 여유만만”』 제목의 기사와 관
련, 제1야전군사령부에서는 ‘야전군 페스티벌’ 행
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군의 위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관·군의 화
합·친선행사를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
히 하기 위한 행사였으며, 특히 현 안보상황을 충
분히 고려하여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
한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2006년 11월 9일까지 강원일보 2면 내지 5면에 박스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10월 13일자 5면 <“평소 심층교육하면 자살률 줄일 수 있다”> 제하의 기사 부제목(“한림대 생사학원 밝혀”)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강원일보 : 『‘야전군 페스티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7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상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 당시 조건과 다르게 속임수 분양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OO건설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제신문 : 『OOOO 상가 속임수 분양』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5일자 6면)

내 용 : 부산 동래구 온천동 OOOO 스카이뷰 오피스텔 상가 입점 예정자들이 분양 당시 조건과 다르다며 입점을 거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양 대행사인 OO 측과 계약했던 지하 1층 51세대 입점자들은 2003년 분양 당시 지하철 미남역과 연계된 백화점식 상가라는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으나 조건과 달라 큰 재산 손실을 보게 됐다며 OO건설과 OO측을 시경찰청에 고소했다.

스카이뷰 오피스텔 입점자들은 24일 회사 측이 상가 등의 전용률을 66.54%로 기재해 허가를 받았으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전용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입점자

비대위 대표 조모(46) 씨는 “평당 1,000만 원이나 주고 6.83평을 분양받았는데 실제 가보니 3평 정도 밖에 안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하 1층 상점 입점자들은 지하철 역과 바로 연결된다는 광고를 믿고 분양을 받았으나 실제와 달라 과대광고에 속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백화점식 메머드급 상가라고 설명했으나 상점마다 독립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허술한 간이 칸막이가 설치돼 있을 뿐인데다 냉난방 시설, 배수시설, 환기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입점자들은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10월 25일자 6면에 『OOOO 상가 속임수 분양』이라는 제목 및 ‘온천동 스카이뷰 전용률 등 계약조건과 달라’라는 부제로 (주)OO건설이 분양대행사인 OO을 통해 상가를 분양하면서 전용률을 허위로 속이고 상가내부 시설도 마무리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주)OO건설은 (주)OO에 상가를 일괄매각하였으며, 분양 행위 및 광고 내용, 상가 전용률, 상가내부시설 등의 문제는 (주)OO건설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학원이 산업체위탁교육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1) 『미용학원 수강생 전문대 부정입학』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1일자 1면)
내 용 :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를 악용, 서류 등
을 위조해 수강생들을 전문대학에 부정입학시킨
대형 미용학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은 이 같은 부정입학 사례가 관행화돼 있다는 첩
보를 입수,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 전반에 대해 수
사할 방침이다.

서울 수사경찰서는 미용학원인 ‘O뷰티스쿨’ 영
등포 본원에 대해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실시, 임
금지불 장부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O뷰티스쿨 대표 이모 씨(36)와 경리실장 이모
씨(33)는 지난해 ‘100% 합격이 보장된다’며 수강
생들을 모집한 뒤 이 학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B대학(전문대) 패션관련 학과 등에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으로 40명을 정원의 입학시킨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O뷰티스쿨은 진학을 원하는 수강
생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을 위장납입하는 수
법으로 서류를 위조해주고 기존 수강료의 2~3배
에 해당하는 3백90만 원~5백90만 원을 받았다. 지
난해 1월과 9월에는 입시설명회도 가졌다. O뷰티
스쿨은 전국에 20여 개 가입점을 둔 대형 미용학
원 체인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B대학 모학과 1학년에 합격

한 정모 양(19)의 경우 수강료 5백90만 원과 고용
보험 가입비 30만원 등 총 6백20만 원을 이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2) 『교수가 100% 합격 보장』 제하의 기사 (10
월 21일자 8면)

“편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전화로 말씀드리긴 곤
란하네요. 일단 직접 오셔서 얘기하시죠.”

19일 취재차 만난 O뷰티스쿨 담당자의 입에서는
놀라운 얘기가 튀어나왔다. ‘산업체 위탁 교육생’
으로 대학(전문대)에 가고 싶다고 밝히자 “조건에
상관 없이 100% 진학을 보장한다”고 호언장담한
것이다.

기자가 밝힌 조건은 일반적인 산업체 위탁 교육
생 지원자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단 6개월 이상
의 재직 경력이 없었고, 해당분야 경험도 전혀 없
었다. 그러나 상담원의 답변은 명쾌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21일자 1면에 『미용학원 수강
생 전문대 부정입학』이라는 제목으로 산업체위탁제
도를 악용해 대형 미용학원이 기존수강료의 2~3배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미용학원은 교육청
에서 제시한 금액내에서 수강료를 받았으며 산업
체 위탁교육과정으로 보내준다면 기존수강료의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이
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10월 21일자 8면에 『교수가 100% 합격 보
장』이라는 제목으로 미용학원의 담당자가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으로 조건에 상관없이 대학에 보내준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본 내용은 산업체 위탁교
육과정에 대한 상담이 아니며 O뷰티스쿨에서 상담
받은 내용은 일반 전문대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산
업체위탁교육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보도

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조정대상보도는 신청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도한 것이며,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
이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승인할 수 없다. □

신청인 교회 소속 장로가 경북노회 재판국 목사에게 재판을 잘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구○○교회 (당회대표 이 ○ ○)

피신청인 : 목사장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목사장로신문 : (1) 『대구○○교회(통합) 당회, 나 목사 생존권 위협』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9일자 1면)

내 용 : 경북노회(통합) 재판국에서 시무해임 처분을 받고 현재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여 심리가 진행중인 나○○ 목사에 대한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아 가족 전체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 처해있다.

나 목사는 설교의 이단성 문제로 경북노회(통합)재판국에 제소 된 후 직무정지를 받았지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노회의 기소위원회의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나 목사의 재판건은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이단성이 없다는 결정으로 노회에서 직무정지를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후략)

(2) 『대구○○교회 나목사 반대편에서 금품 제공』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4일자 1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총회재판국원 L목

사에게 보내진 금품을 다시 그 돈을 보내준 대구○○교회 Y장로에게 되돌려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14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회의석상에서 재판국원 L목사는 대구○○교회 재판을 잘 봐달라는 대구○○교회 Y장로의 청탁과 함께 보내온 금품을 되돌려 보냈다고 공개했다.

대구○○교회 나 목사 재판건으로 나 목사 반대편의 Y장로가 서울강북지역의 C목사를 통하여 금품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L목사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없어 Y장로에게 되돌려 보냈다고 그 진상을 밝히면서 송금 영수증을 근거자료로 공개하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재판국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동안 대구○○교회의 재판건 때문에 금품 수수설 등이 계속 제기 되어 왔으나 그 근거가 들어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이 다른 재판국원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한편 교계 내에서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나 목사를 반대해온 대구○○교회 교인 30여 명은 L목사가 목회하는 경기도의 P시에 있는 ○○교회에 항의차 방문하였으나 송금영수증 등의 물증을 본 후 금품수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로써 재판청탁을 위한 금품수수사건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목사장로신문은 2006년 8월 19일자 1면 『대구○○교회(통합) 당회, 나 목사 생존권 위협』 제하의 기사에서 나 목사가 설교의 이단성 문제로 경북

노회 재판국에 제소 된 후 직무정지를 받았지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당회에서 불신임되어 재판국의 직무정지까지는 봉급 및 수당이 지급되었고 해임 본안 소송 이후 퇴직금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14일자 1면 『대구〇〇교회 나목사 반대편에서 금품 제공』 제하의 기사에서 “나목사를 반대해 온 대구〇〇교회 교인 30여명은 L목사가 목회하는 경기도의 P시에 있는 〇〇교회에 항의 차 방문하였으나 송금영수증 등의 물증을 본 후 금품수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로

서 재판청탁을 위한 금품수수사건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대구〇〇교회에는 시무장으로 중 Y장로는 없으며 송금 영수증 확인 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〇〇〇미디어에 주식 일부를 매각한 신청인 회사가 부실회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〇〇드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7.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이데일리 : 『〇〇〇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사 뺑뺑기 출자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내 용 : 〇〇〇미디어가 M&A(인수합병)뒤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자료를 토대로 부실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게 출자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회사와 회사 감사가 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 엔터테인먼트로 변신한 회사들도 이같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강〇〇 〇〇〇미디어 감

사는 지난 18일자로 김〇〇 대표이사와 심〇〇 재무담당이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감사는 김 대표와 심 이사가 〇〇인사이드와 〇〇엔터테인먼트, 〇〇드림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회사들의 주식평가 가격을 과다하게 부풀린 자료를 토대로 인수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감사는 이들이 〇〇인사이드 약 18억 원, 〇〇드림 약 12억 원 등 총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고 강변했다. (중략)

강 감사에 주장에 따르면 〇〇인사이드 지분 50%는 3억 원의 가치가, 〇〇드림 지분 20%는 가치가 거의 없는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19일자 증권면에 『〇〇〇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사 뺑뺑기 출자논란』 제목으로 ‘강〇〇 〇〇〇미디어 감사는 〇〇〇미디어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이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강 감사는 김 대표와 심 이사가 〇〇인사이드와 〇〇엔터테인먼트, 〇〇드림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회사들의 주식평가를 과다하게 부풀린 자료를 토대로 인수를 집행했다고 주장했으

며, 강 감사에 따르면 ○○드림의 경우 약 12억 원 등 총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게 입혔고 지분의 20%는 가치가 거의 없는 셈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드림은 부실한 회사가 아니고, ○○○미디어가 ○○드림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평가 가격을 과다하게 부풀린 자료를 토대로 인수한 바도 없으며, 현재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드림 지분 20%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드림 반론] 주식인수 관련 부실의혹 사실과 달라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9월 19일자 증권면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사 뺑뺑기 출자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강○○ ○○○미디어 감사의 주장을 인용해 ○○드림과 관련하여 부실회사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드림은 ○○○미디어가 ○○드림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평가 가격을 부풀

린 자료를 토대로 인수한 바 없으며, 현재 드라마 제작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드림 지분 20%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강 감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데일리’ (www.edaily.co.kr)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아울러 이데일리가 기사를 제공하는 증권사 HTS 및 인터넷포털에도 같은 기사를 표출한다.

• 피신청인은 이데일리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사 뺑뺑기 출자 논란”제하의 기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1월 9일까지 위 2·3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위 2·3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 및 담당 기자 등 소속 임직원에게 본 보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이데일리 : 『○○드림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3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상영할 영화에 대해 경찰청이 미리 알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문 ○ ○, 홍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반미단체에 농락당한 경찰』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6일자 2면)

내 용 : 25일 오후 7시 서울 미군동 경찰청사 건너편 의주로 공원. 20여 명의 시위대와 500여 명의 경찰이 맞섰다. 하얀 대형 스크린을 앞세운 시위대는 ‘대추리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경찰청사 앞에서 상영하겠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이 행사가 영화 상영을 가장한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했다. 결국 한시간의 실랑이 끝에 시위대가 자진 해산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공동대표 문○○ 신부·홍○○목사, 이하 평통사) 서울지부는 8월 30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제1회 평화영화제(26~29일)를 열 테니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옛 남영동 대공분실)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악명 높았던 대공분실의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평통사는 여중생사건 범국민대회, 평택 대추리 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다.

그러나 사단이 벌어졌다. 9월 18일 상영작 영화 목록을 받은 경찰은 영화제 개막작이 ‘대추리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택 대추리는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할 곳으로 시민단체·주민과 경찰이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을 빚은 곳이다. 이를 배경으로 2005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대추리·도두리 주민의 생활을 50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영화가 ‘대추리의 전쟁’이다. 뒤늦게 평화영화제의 실상을 파악한 경찰은 9월 28일 장소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임국빈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경찰의 진압장면만 부각시킨 영화를 경찰건물에서 상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 평통사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2006년 10월 26일 2면에 『반미단

체에 농락당한 경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 9월 18일에야 영화제 개막작이 ‘대추리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평화 영화제의 실상을 파악, 서울 평통사와 평화영화제 장소사용을 불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서울 평통사 측에 허가가 났다고 말한 시점에 이미 평화 영화제에서 ‘대추리 전쟁’을 상영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미리 알고 있었고, 따라서 ‘뒤늦게 평화 영화제의 실상을 파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8일자 2면)

내 용 : 10월 26일자 2면 『반미단체에 농락당한 경찰』 기사와 관련, 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9월 18일 이전 ‘평화영화제’의 상영작 중 ‘대추리의 전쟁’이 포함된 사실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본지에 알려왔습니다. 확인 결과 경찰은 당초 설명과 달리 9월 6일 평통사의 장소 대여 요청 공문을 접수하면서 평화영화제 상영작 목록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기사 중 “9월 18일 상영작 목록을 받은 경찰” “뒤늦게 평화영화제의 실상을 파악한”이란 표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롯데쇼핑과 M&A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1) 『롯데쇼핑, ○○○ 인수 추진』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8일자 1면)

내 용 : 홈쇼핑 사업에 진출한 롯데쇼핑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업계 2위인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 MSO 업계 1

위 태광산업 계열 티브로드와 마찰을 빚었던 롯데쇼핑이 ○○○을 인수하면 우리홈쇼핑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홈쇼핑 업계 1위 자리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략)

(2) 『롯데, ○○○ 인수 추진 왜?』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8일자 31면)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10월 18일 1면의 『롯데쇼핑, ○○○ 인수 추진』, 31면의 『롯데, ○○○ 인수 추진 왜?』라는 기사를 통하여 롯데쇼핑과 ○○○커뮤니케이션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양 회사 간에 인수·합병(M&A)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매일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5일자 2면)

내 용 : 2006년 10월 18일 1면 『롯데쇼핑, ○○○ 인수 추진』기사와 31면의 『롯데, ○○○ 인수 추진 왜?』라는 기사에 대해 ○○○측에서는 롯데쇼핑측과 M&A와 관련된 어떠한 인수협상도 진행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M&A 추진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영천시가 불법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1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영천시 (시장 손 이 목)
피신청인 : 신라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3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신라일보 : (1) 『영천시, 산폐물소각장 허가 농산물 판로막혀 생계막막』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2일자)

내 용 : 영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는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해 최근 인근 주민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을 비롯,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대구지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대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중략)

이어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농·축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형편에 소각장 가동으로 인

해 농산물과 축산물의 판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영천시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략)

(2) 『‘영천시장은 주민 우롱 말라’』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3일자)

민선 4기 출범을 알리는 손이목 영천시장 취임식이 지난 3일 시민회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손 시장은 취임인사에서 “지난 선거에서 표출된 이웃간의 반목과 질서를 이 순간부터 버리고 뒷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전 시민이 사랑으로 뭉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손 시장의 인사말 대로라면 지난 선거에서 시장을 지지하지 않은 모든 사람도 다 껴안고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손 시장의 인사말은 거짓말이 됐다. 기자가 ‘영천시 도남동 N폐기물소각장허가’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다.

소각장 공사 허가를 영천시와 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슬그머니 내 준 것이 엄청난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후략)

(3) 『죽음 부른 무모한 ‘독선행정’』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6일자)

이번 사태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것은 손이목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일방적으로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민들이 집단 반발하게 된 것이다. (중략)

반면 손이목 영천시장이 이 소각장을 허가할 당시 산업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 줬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후략)

(4) 『‘걸어서 청와대까지’ 원정시위』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4일자)

시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영천시(시장 손이목)의 무모한 독선행정을 죽음으로 고발했던 한 시민의 장례마저도 우롱 당하자 손 시장의 거짓말에 분노한 미망인이 장례날 고인의 유해를 안고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청와대와 언론기관을 목표로 서울까지 걸어서 가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손 시장이 도남동 산업폐기물 허가를 주민 몰래 내준 것이 화근이 되어 지난 14일 소각장 반대집회 도중 ‘분신’ 사망한 김모 씨의 장례절차를 두고 시장과 협상한 끝에 시장의 사과문과 “고인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치르면 시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손시장의 약속을 믿고 지난 7일 장례를 치렀지만 시장의 약속은 장례날 까지도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장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알박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

고인을 우롱하고 두번 죽이는 시장의 행위와 고인의 뜻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걸어서 13일 현재 도착한 곳이 영동이다. (후략)

(5) 『손이목 영천시장 또 망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1일자)

(전략) 영천에서 걸어서 12일째 시위를 하던 미망인이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에서 쓰러져 평택 모 병원에 입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손이목 시장은 모 국장, 모 시의원과 함께 미망인이 입원한 병실을 18일 밤 11시쯤 찾아갔다.

유족인 고인의 동생에 의하면 손 시장은 병실을 찾아와 건강을 걱정하면서 미망인에게 “이번 사태와 모든 원인은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 위원들에게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언에 대해 유족들은 “손 시장의 발언은 유족과 비대위를 이간질 시키는 행위이며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우리가 무엇때문에 평택까지 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후략)

(6) 『유해안고 걸어서 청와대까지 미망인 서울도착 후 탈진입원』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전략) 손 시장은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각각 2,000만 원씩 시에 낸 성금과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모금한 1,000여만 원이 넘는 성금도 아직 유족측에 전달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에 창구동에 사는 박모(48) 씨는 “유족을 위해 순수하게 모은 성금을 아직까지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성금을 이용해 유족을 우롱해서는 더욱 안된다”고 손 시장을 비난했다. (후략)

(7) 『영천시, 산림훼손에도 준공검사』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4일자)

경북 영천시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 산림을 훼손한 현장 준공검사를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해 3월 5일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산 159번지와 166,168번지 일대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 1,219평과 축사, 진입도로 2,203평에 대해 산지전용 준공검사를 했다.

건설주 측은 진입도로부분과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50여 평 이상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8) 『영천 한약축제 ‘빛 좋은 개살구’』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8일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제4회 영천한약 축제가 ‘한약축제’와는 거리가 먼 알맹이 없는 축제로 끝나자 이제는 한약축제가 필요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천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6억 5,000만 원을 투입, 한방산업을 영천주력산업으로 수렴하려 했지만, ‘웰빙과 한방의 만남’이란 주제를 무색하게 만든 5일 동안 행사내용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수 있는 북한 예술단, 외국 민속공연 등을 위주로 진행했고, 낮시간 공연장은 관광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영천에 거주하는 일부 관광객만 덩그러니 남아 관람석을 채우는 모습들로 축제를 대신했다. (후략)

(9) 『사설 경호원에 둘러싸인 ‘시장’』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1일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딘가 티가 난다는 말이 있다.’

도남동 산업폐기물 소각장 허가와 관련, 행사장에 일부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항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행사장에 참석하는 손이목 시장주변에 정복을 단정이 차려입은 사설경호원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입장해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든 것이다. (중략)

한약축제 마지막 날도 경호를 받으며 뒤쪽 출입구로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무엇이 시장을 이토록 위축되게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자기 몸 보신에만 급급하는 시장은 시민들의 아픔을 알 턱이 없다. 시민의 대표자라고 부르짖지 말고 투명한 행정을 떠나가길 바랄 뿐이다. (후략)

(10) 『“기상천외의 파격인사” 반발』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3일자)

손이목 영천시장이 개발이 불가능한 자양댐 수변구역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경북도 농업 7급 직원을 전입시켜 3계단이나 높은 4급 상당의 농촌기술센터장에 보임시켜 직원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중략)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1인 시위까지 벌이는 등 극한 사태까지 빚어졌으나 낙하산인사는 그대로 시행돼 일각에서는 손 시장과 J모 직원과의 모종의 의혹까지 불려일으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7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영천시의 폐기물소각장 허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소각장 공사 허가를 영천시와 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슬그머니 허가를 내 준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폐기물 처리업허가업무지침에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허가과정에 있어서도 한 치의 의혹도 없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2006년 7월 13일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천시가 사업 승인을 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영천시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허가로 인하여 농산물 판로가 막혀 생계가 막막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산업기술원에 다이옥신 배출수치 검사를 의뢰한 결과 허용 기준치에 비해 훨씬 낮게 나왔으며, 영천도매시장, 능금농협공판장, 영천농협공판장에 1일 2만여 상자가 출하되고 있고 가격은 예년에 비해 20~40% 이상의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며, 외지 상인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산물 판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셋째 손이목 영천시장이 소각장을 허가할 당시 산업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줘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폐기물처리법 허가 업무처리 지침에도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넷째, 시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영천시의 무모한 독선행정으로 도남동 산업폐기물 허가를 주민 몰래 내준 것이 화근이 되었으며, 김OO 장례절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고인을 우롱하고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결과, 소각장에 대한 산업기술원에 다이옥신 배출수치 검사를 의뢰한 결과 허용기준치에 비해 훨씬 낮게 나왔으며, 유족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6년 7월 26일 장례를 치르기로 협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손이목 시장 또 망언』이란 제목에 시장, 국장, 시의원 1명과 함께 고인의 미망인이 입원한 병실에 손이목 영천시장이 또 “분신사망”비대위에 책임을 떠넘겨 유족이 분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손이목 영천시장은 고인의 미망인이 입원한 병실에 건강이 걱정되어 위로차 방문하였으며, 요구사항 청취 및 시 형편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여섯째, 손시장은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각각 2,000만원씩 시에 낸 성금과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모금한 1,000만원이 넘는 성금도 아직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영천시에서 유가족에게 기탁된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장례를 마치자마자 미망인이 바로 서울로 도보시위를 하러 갔으며, 그후에도 유족 측에서 위로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여 성금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곱째, 영천시는 건설주 측이 신녕면 치산리 산 168번지의 2필지에 종교 부대시설 및 진입로 등의 목적으로 산지 전용하여 150여 평 이상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였는데도 준공검사를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결과, 우리시 산림과에서 조사한 결과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수리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2006. 8. 31일 현장 조사와 2006. 9. 13일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 준공검사 이후인 2005. 8월 상순경 사찰부지 보호를 위하여 포크레인 장비로 작업하던 중 산림형질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여덟째, 영천시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6억 5,000만 원을 투입 한방산업을 영천 주력산업으로 수립했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북한 예술단, 외국공연 등의 일부로 진행되어 영천에 거주하는 일부 관광객만 덩그러니 관람석을 채웠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우리시에서 개최한 한약축제와 과일축제가 5일간에 걸쳐 5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시민들로부터 알찬 축제로 평가받았으며 아홉째, 손이목 시장 주변에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사설경호원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입장해 시민들을 의아하게 하였고 한약축제 마지막 날도 경호를 받으며 뒤쪽 출입구로 슬그머니 빠져나갔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축제의 원만한 진행

과 시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벤트 회사와의 계약에서 경비용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이며, 영천시장을 위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열 번째, 손이목 시장이 개발이 불가능한 자양댐 수변구역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농업7급 직원을 전입시켜 3계단이나 높은 4급 상당의 농업기술센터장에 보임시켜 직원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농촌지도직은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농촌지도직에는 7급이라는 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기술센터장이 3계단이나 높은 직급도 아니며 시장과 직원과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사과드리며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폐기물소각장 허가 관련 영천시 측 반론보도문
- 본 문 : 신라일보는 지난 2006년 7월 12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영천시의 폐기물 소각장 허가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신라일보는 소각장 공사 허가를 영천시와 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슬그머니 허가를 내 준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영천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폐기물 처리업허가 업무지침에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도남동 소각장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허가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둘째, “영천시는 건설주 측이 신녕면 치산리 산 168번지의 2필지에 종교 부대시설 및 진입로 등의 목적으로 산지 전용하여 150여평 이상 불법으로 산림훼손 하였는데도 준공검사를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영천시에서는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수리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 2006. 8. 31일 현장조사와 2006. 9. 13일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 준공검사 이

후인 2005. 8월 상순경 사찰부지 보호를 위하여 포크레인 장비로 작업하던 중 산림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셋째, “손이목 시장이 개발이 불가능한 자양댐 수변구역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농업7급 직원을 전입시켜 3계단이나 높은 4급 상당의 농업기술센터장에 보임시켜 직원들로부터 집단반발을 사고 있으며 손시장과 직원과의 모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영천시에서는 “관련 인사는 영천시가 당면한 전원주택 개발을 위하여 학식이 풍부하고 소신과 책임감이 확고한 우수 공무원을 발탁한 것으로 시장과 직원 간의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라일보 시민사회면에 2006년 11월 17일까지 보

도하되 제목(폐기물소각장 허가 관련 영천시 측 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2006년 8월 21일자 『손이목 영천시장 또 망언』 제하의 기사)의 소재목(『시관계자 “미망인 건강걱정 병원 방문” 주장』)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라일보 : 『폐기물소각장 관련 영천시 측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7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외고 유학반 디렉터였던 신청인이 사직 후 유학학원을 차리자 학생들이 대거 학원으로 이동해 남은 학생들의 수강료가 대폭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3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3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외고 유학반 월 수강료 170만원』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7일자 17면)

내 용 : 학부모 김영수(가명) 씨는 지난달 말 아들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청구서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9월치 수업료가 170만 원이었다. ○○외고 어고등학교 1년인 김씨의 아들은 이른바 ‘유학반’인 영어과에 다니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입학 때부터 외부 강사가 맡고 있는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대학과목 선이수’(AP) 관련 과목 등 5~6과목을 수강했다.

강의료는 월 20만~3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유학반을 책임지던 강사(디렉터) 박은주(가명)씨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유학반은 파행을 거듭했다. 박씨가 강남에 유학학원을 차리자 일부 유학반 학생들이 이 학원으로 빠져나갔다. 전체 70명이던 유학반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학원 강의료 듣기 시작하자, 남아 있는 학생들의 강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학부모들이 별도 조직을 만들고 돈을 따로 걷어 강사의 기본급과 수강료를 주면서 유학반을 운영해 왔다”고 털어놨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17일자 17면 『○○외고 유학반 월 수강료 170만원』 제하의 기사에서 ○○외고 1학년 유학반을 책임지던 디렉터 박은주(가명, 신청인)가 학교를 그만둔 후 강남에 유학학원을 차리자 유학반 학생들의 상당수가 박은주가 설립한 유학학원으로 빠져나갔으며 그 결과 남아있던 학생

들의 강의료 부담이 늘어나 9월에는 1인당 170만 원에까지 이르는 등 ○○외고 유학반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는 한편, ○○외고 학부모들은 별도 조직을 만들고 돈을 따로 걷어 유학반 강사의 기본급과 수강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외고 유학반 디렉터였던 박은주는 2006년 2월 사직 후, 1학년 유학반을 담당하지 않았고 ○○외고 유학반을 담당하던 강사 중 일부가 유학학원을 세웠으나 박은주는 해당 학원 설립이나 강의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외고 유학반 1학년 학생 중 10여 명만이 주말을 이용해 유학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것이고 ○○외고 방과 후 수업의 수준과 내용이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쳐 일부 학생들이 학교 유학반 수업의 일부 과목 수강신청을

철회한 결과 남은 학생들의 수강료 부담이 늘어났으나 1인당 1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으며 ○○외고 유학반은 학교가 직접 운영, 감독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돈을 따로 걷거나 강사료를 직접 지급하면서 유학반을 운영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가능하나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 □

외고 유학반 학부모인 신청인들이 유학반 파행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외 8인

피신청인 :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3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겨레21 : 『유학반은 치외법권인가』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6일자 38~40면)

내 용 : ○○외고 유학반을 둘러싼 소문은 서울 강남구 ○○동의 학원가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반감금’ 했다는 말이 나오고, 학교 허락 없이 사실 강좌가 개설되는가 하면, 학교 강사가 밖에서 학원을 차리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등의 말이 나돌았다. 대한민국의 학교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중략)

“올해 3월 유학반 디렉터(director)를 맡고 있는 김미숙(가명) 교사가 교원직을 사퇴한 뒤부터였어요. 교원 신분에서 사실 강사 신분으로 바뀌어 자유로워진 김씨가 1학년 디렉터 업무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김 디렉터 아래의 유학반 강사들도 줄줄이 사표를 냈어요.” (중략)

이 학부모는 “디렉터와 강사가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통에 1학기 내내 1학년 유학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불거졌다. 학교를 나간 강사 6명이 5월 22일 강남 ○○동에 자칭 ‘유학대안학교’인 ○○학원을 열고, ○○외고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벌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1학년 학생 10여 명은 물론 2·3학년 일부 학생까지 이 학원에 출입하고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중 일부 강사는 당시에 ○○외고 2·3학년 수업에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에 들어온 사실강사를 따라 학생들이 학원을 찾아가 공부하는 꼴이었다.

취재진이 10월 12일 강남교육청에 확인해보니

이 학원의 대표는 ○○외고 유학반 카운슬러(디렉터 아래에서 입학 상담·추천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음)인 김진숙(가명)씨로 나타났다. 김진숙씨는 디렉터 김미숙씨의 친동생이다. 이에 대해 김미숙씨는 “동생(김진숙)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중략)

8월 10일 저녁 학부모 30여 명은 학교를 방문해 장○○ 전 교장에게 “김미숙씨와 이하 강사진이 학교에 돌아와 1학년 수업을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는 이미 이들의 뒤를 이을 2학기 신입 디렉터와 강사진을 구두 계약으로 구했다며 요청을 거부했지만, 학부모들은 막무가내였다. (중략)

“학부모 30여 명이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장 전 교장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학부모들이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교장이 교실에서 나가려 하자 이를 막았어요. 교장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외고 교사들이 당시 사건을 조사해 만든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학부모들은 △강사료 지급을 전적으로 학부모들이 하니까, 강사 채용과 인사권은 학부모가 가져야 한다 △학교쪽 CMS 계좌가 아닌 학부모 통장으로 강사료를 모아 지급하겠다 △김미숙을 디렉터로 다시 채용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새벽 2시까지 5시간 이상 교장을 물리적으로 감금하고 샷대질과 욕설을 퍼부으며 화장실까지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무엇이 학교와 학부모, 학교와 유학반 사이를 벌려놓았을까. 한 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학기 초 학교 쪽에서 학교 정규 부서인 국제부가 유학반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여태껏 편법적으로 일부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 수업을 해왔던 관행을 없애고, 학부모가 직접 디렉터와 강사에게 주던 강사료를 학교가 수납하겠다고 유학반에 통보한 것입니다. 학교로서도 교육부 지침을 따라야 하니까요.”

하지만 미국 대학에 ‘올인’ 하는 학부모들은 이 조치가 반가울 리 없었다. 강사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학교 회계로 처리되면, 강사들의 소득세 등에서 수입상의 차감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략)

지금은 어떨까. 현재 ○○외고 유학반은 ‘이중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와 마찰을 빚은 학부모들이 운영하고 있는 ‘김미숙 유학반’과 학교가 초빙한 새 디렉터와 강사진을 중심으로 한 ‘학교 유학반’. 이렇게 학생들이 두 패로 나뉘어 똑같은 수업을 다른 두 교사에게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략)

사교육이 학교를 지배하는 기이한 상황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취재진이 여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학교와 유학반 강사진 사이에 그 어떤 계약서조차도 없었다. 또한 유학반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업료도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모아 학원 강사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유학반 가입신청서를 제작해 학생들로부터 강의 신청을 받고 있었다. (후략)

○○외고는 방과후 학교의 폐해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이다. 방과후 학교가 적절한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공교육 체제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략)

○○외고는 높은 입시교육열로 무장한 사교육 세력에 학교가 당할 재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16일자 38~40면 『유학반은 치외법권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외고 유학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학반 디렉터였던 김미숙(가명)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1학년 유학반 디렉터 업무를 거부한 채 소속 강사들을 한꺼번에 이끌고 나간 후, 외부에 사설학원을 차려 ○○외고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벌이고 있으며 ○○외고 1학년 학부모 30여 명이 김미숙의 복귀와 강사 채용 및 인사권 등을 학부모에게 이양하라고 요구하며 5시간 동안 교장을 반감금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1학년 학부모들이 학교 정규 부서인 국제부가 유학반을 관리함으로써 편법적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유학반 수업을 해왔던 관행을 없애고 학부모가 직접 돈을 건어 디렉터와 강사에게 수강료를 지급하던 것을 학교 회계로 처리해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유학반

운영방침을 바꾸자 학교 측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현재 ○○외고 유학반은 이중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유학반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강료와 가입신청서를 학부모들이 직접 담당하는 등 ○○외고 유학반 사태는 방과 후 수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유학반 디렉터 김미숙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유학반 운영 제도 변경과 강사진 교체가 ○○외고 유학 프로그램의 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제도 변경 방침 철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퇴를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외고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유학반 강사들이 외부에 사설 학원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김미숙의 동생 김진숙(가명)은 학원의 실제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외고의 바뀐 유학반 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진 몇몇 1학년 학생들이 해당 학원을 찾았던 것으로 밝

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30여 명의 1학년 유학반 학부모들이 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행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이중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학반은 학부모들이 학교와 관계없이 사설학원처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의사를 존중해 디렉터와 강사를 채용하고 교과목을 승인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8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그 외는 수용할 수 없다. ☐

대전시가 ○○상가 건물을 2010년까지 철거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 ○)

피신청인 : TJB-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생태하천 살리기 사업을 위하여 두 건물의 철거를 2010년까지는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8월 29일 「TJB뉴스」 프로그램 ‘○○상가 등 2010년까지 철거’ 제하의 방송에서 대전시가 ○○상가의 철거작업을 2010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전시가 2010년까지 ○○상가 철거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상가 철거방침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정보도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

보도내용

TJB-TV : 「TJB뉴스」 프로그램 (2006년 8월 29일 20:25)

내 용 : 대전 ○○테파트와 ○○상가의 철거작업이 오는 201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중략)

대전시는 ○○상가의 경우 3백명이 넘는 상가주민들과 개별협의를 해야 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비전문의들의 성형 기술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임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
처리결과 : 합 의

지 못하다는 전제 하에 성형외과 비전문의들의 시
술로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객
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국민일보 : 『비전문 의사 기술이 3분의 1』 (2006년
9월 7일자 9면)
내 용 : 하루가 멀다 하고 성형외과가 들어서는
압구정동은 ‘성형 1번지’로 불린다. 하지만 성형외
과의 3곳 중 1곳은 비전문의가 시술하고 성형수술
에 따른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이 압구정동 일대
로 알려져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7일자 9면 『비전문 의사 기술이
3분의 1』 제하의 기사에서 성형외과 비전문의들의
시술로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미용성형수술 분야는 성
형외과 고유 영역이 아니며 따라서 성형외과 전문
의나 비전문의 모두 별도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의학 분야인데도 성형외과 전문의는 미용성형수술
을 제대로 배우는데 반해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그렇

합의사항

- 제 목 : 성형수술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9월 7일자 9면에 ‘빼곡’ 『비
전문 의사 기술이 3분의 1』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
여 대한미용외과학회는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의
하여 성형외과 비전문의도 미용성형수술을 할 수
있으며, 비전문의의 시술이 의료사고 발생의 주원
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006년 11월 20일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소
제목 ‘의료사고 빈발...피해자 소송등 잇달아’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
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비전문의들의 성형 기술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임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성형수술 1번지’ 강남 ‘의료분쟁 1번지’ 시끌』 (2006년 9월 7일자 A13면)
내 용 : (전략) 이처럼 성형외과 수술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데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문의가 수술을 해도 환자가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아 마찰을 빚는데 최근에는 비전문 일반의가 병원을 개원하는 사례가 많아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44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44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44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4일자 A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비전문의들의 성형 시술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임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쿠키뉴스 : 『압구정역 반경 1km 성형외과 400곳... 150곳은 비전문의, 경찰 “의료분쟁 심각”』 (2006년 9월 7일자 사회면)
내 용 :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형수술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지만 성형수술 관련 의료 사고 및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의가 병행 진료 등의 방법으로 성형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성형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압구정동 신사동 등 강남지역 성형외과 400여 곳 중 150여

곳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 “비전문의 성형외과 개원이 늘면서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44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44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쿠키뉴스 : 『성형수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불법 피부관리실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그와 관련 없는 신청인의 피부관리실을 촬영·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의 불법화장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불법화장품 취급 피부관리실이라고 촬영해 방영한 임○○ 스킨케어는 불법화장품 취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소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6년 10월 26일 19:20)
내 용 : (화면 : 불법화장품)
▷나레이션 : 이 정체불명의 화장품을 구매한 곳도 강남의 한 피부관리실이었다.
▷제로맨 : “저 곳이 바로 이 문제의 화장품을 팔았던 피부관리실입니다.”
“이 피부관리실은 여전히 영업중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을 돌려 신청인의 피부관리실(임○○ 스킨케어)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
(이후 이어지는 피부관리실 내부 촬영장면과 인터뷰한 원장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피부관리실이 아님)

합의사항

- 지난 10월 26일 「불만제로」에서는 정체불명의 불법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임○○ 스킨케어’는 방송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MBC-TV 2006. 11. 23. 일 ‘불만제로’ 프로그램에 진행자의 통상적인 속도의 낭독으로 후 CM 이전에 방송하되, 문제된 장면(제로맨이 불법 화장품 취급업소를 가리킨 후 걸어가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함께 보도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하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별도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이 지난 10월 26일자 방송에서 정체불명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6년 11월 23일 19: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달마도를 판 돈으로 웅장한 절을 지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5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신동아 : 『5천억 시장, 달마도의 진실 - 구도의 예술
혼은 간데없고 부적상술만 판친다』 제하
의 기사 (2006년 11월호 350면~368면)

내 용 : (전략) 표구사, 화랑 등 업계에서 추정하
는 달마도 관련 시장은 연 5,000억 원 규모. (중략)

직접 그리지 않고 판화로 찍어낸 달마도가 TV
홈쇼핑에서 시간당 1억 5,000만 원어치씩 팔리고,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달마도를 사
기 위해 하루 수천 명이 관광버스를 대절해 유명
화가를 찾아 나선다. (중략)

달마도가 구복과 수맥차단용 그림으로 본격적으
로 팔려 나가기 시작한 시점은 SBS ‘토요미스테
리극장’이 1998년 1월과 2월 ○○ 김○○ 화백의 인
생 스토리와 그가 그린 달마도의 수맥차단 효과를
연속 방영한 이후부터라는 것. (중략)

달마선원 측은 “달마도에서 기가 나오냐”고 물으
면 멍멍하게 “그렇다”고 답하지만 “수맥이 차단되느
냐”고 물으면 “방송을 보라”고 권한다. 한 네티즌이
달마선원 카페 게시판에 “○○ 달마 그림의 수맥차단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냐”고 묻자 달마선원 측은
“인터넷 야후 검색창에 ‘○○ 달마도’를 치시면 웹문
서에 모 시인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수맥파
가 차단되는 동영상도 나온다. 직접보라”고 했다.

모 시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실제로 동영상
플레이어가 달려 있다. 제목은 ‘SBS 토요미스테리
극장 신비의 달마도’ 동영상을 작동시켜 그 내용
을 보니 김 화백의 달마도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
킨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었다. (중략)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진행방식의 시사적 성격
과는 달리 객관성 면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다. (중략)

하지만 이는 김 화백과 그가 소개한 사람들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극화하거나 그대로
중계한 것이다. (중략)

특히 김 화백을 잘 안다는 사람들은 김 화백이
지난 30여 년간 달마도를 그렸다는 대목에 대해서
도 의문을 표한다. (중략)

시청자에게 김 화백의 달마도에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각인시킨 것은 방영 8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
넷에 동영상도 떠돌아다니는 ‘토요미스테리극장’ 36
회분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을 본 한 제보자가 ‘토요
미스테리극장’ 제작진을 찾아오는 부분으로 시작된다.
자신을 수맥전문가라고 소개한 이 사람의 제보 내용
은 “첫번째 프로그램이 나오는 TV 화면을 보는 순간,
김 화백의 달마도에서 많은 기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달마도는 수맥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음이 확실하다. 이를 내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 당
시는 수맥(수맥파)의 해로움에 대한 학자들의 논문이
속속 등장하고, 이에 따라 전혀 검증되지 않은 수맥과
차단 관련 상품이 쏟아져 나오던 무렵이다. (중략)

그런데 이 프로그램 제보자와 해당 제보가 사실
임을 증명한 전문가가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의심
을 불러일으켰다. TV를 통해 본 달마도에서 엄청
난 기를 느꼈다는 대목도 황당하지만, 제보 내용을
제보자 자신이 증명하도록 한 행태는 더욱 이해하
기 힘들다. (중략)

김 화백은 이곳에 대웅전과 종각, 재실 등 건물
4채로 구성된 ‘○○사’라는 절을 세웠다. 웬만한 사
찰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규모. 김 화백이 그림
을 그리는 달마선원도 그 안에 있다. 김화백은 달
마도를 팔아 번 돈으로 자신의 생가 터 주변땅을
매입하고 그 일부에 웅장한 절을 지어 주지 스님
(조계종)을 모셨다(등기부상 토지·건물 소유주는
김 화백의 아들). (중략)

윤씨 가족 3명에게 판매할 달마도 3개를 그리는
데 걸린 시간은 9분 20초. 달마도 하나를 그리는 데 3
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김 화백은 한 작품씩 그
리는 것이 아니라 3장의 화선지를 올려놓고 글씨, 달
마의 얼굴 윤곽, 눈과 코, 수염을 각각 따로 그려넣었
다. 완전 분업체계가 이뤄진 ‘달마도 공장’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고서화 감정이 진○○(KBS ‘진품명품’ 감
정위원, 예림화랑 대표)씨는 기자가 가져간 ○○ 달마
도를 보고 “예술 외적인 가치는 모르겠지만, 예술적
가치는 논할 수 없는 그림”이라고 잘라 말했다.

달마선원에서 구입한 ○○ 달마도가 수맥 또는 수
맥파를 차단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중략)

수맥전문가들은 “작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린
달마도에서 기나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달마도로 인해 흐르던 수맥
이 끊기거나 수맥파가 차단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사코 수맥차단 실험에 난색을 표한것. 한국수맥협회 대전교육원 김○○ 원장은 “결과가 뻔한 실험을 하라는 것은 수맥인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실험을 끝내 거절했다.

간신히 다른 두 사람을 설득해 방송에 나온 방식 그대로 실험을 했지만 L-로드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수맥과가 차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중략)

SBS ‘토요미스테리극장’ 담당 PD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상으로 달마도를 그려주는 김 화백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방송이 이렇게까지 악용될 줄은 몰랐다. 김 화백이 달마도를 돈을 받고 팔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방송을 할 때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이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깝다. 달마도가 이처럼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방송 제작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중략)

달마도를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기업형으로 판매하는 스님도 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하게 보는 달마도는 ○○스님(○○선교중)이 제작한 ○○기(氣) 달마도, 인터넷에는 이 달마도를 판매하는 쇼핑몰만 20여 개에 달한다. 한 점당 가격은 14만 8,000원. (중략)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에 이어 달마도 광고방송이 나간 후 ○○스님의 달마도가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추측은 가능하다. 방송이 나간 지 4개월 후인 올 1월 9일부터 21일까지 ○○홈쇼핑은 총 7회(1회당 방송시간 1시간)에 걸쳐 ○○스님 ○○기 달마도를 정식 상품으로 판매했다.

결과는 놀랍다. 1시간에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 ○○스님 달마도 한세트(달마도 그림 액자와 카드, 열쇠고리 등) 가격이 14만 8,000원이므로 시간당 약 1,000점씩 총 7,000점 이상이 팔려 나간 셈이다.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이 나간 후 각 인터넷 쇼핑몰에는 방송 내용에 나온 ‘행운과 병 치

료’ 효과에 더해 ‘수맥과 차단효과도 있다.’는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중략)

광고와 홈쇼핑에 나온 달마도 그림은 ○○스님이 그린 그림을 판각한 후 금가루로 찍어낸 판화, 즉 영인본(影印本)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호 350~368면 『5천억 시장, 달마도의 진실·구도의 예술혼은 간데없고 부적상술만 판친다』 제하의 기사에서 달마도 관련 시장은 연 5천 억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달마도로 유명한 ○○ 김○○ 화백이 달마도를 판 대금으로 절을 세웠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달마도를 그리고 있으며 달마도가 수맥과를 차단시킨다는 내용으로 방송출연을 하였으나 그 실험결과는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화백은 달마도 시장이 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라는 것은 다소 과장된 내용이며 불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절을 세운 것이고 달마도를 그리기 위해 새벽 참선을 하는 등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방송출연은 방송사 측이 요청해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측에서 수맥전문가를 섭외했고 ‘수맥과’, ‘기’ 등의 용어는 해당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홈쇼핑을 통해 7시간 만에 11억 원 어치 팔린 달마도가 실은 판화본이었다는 내용은 김 화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달마도 제작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밝히고 자신은 달마도를 부적으로 팔지 않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

신청인 단체가 축제 기간 중에 천막을 임대해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5.18 민주유공자 ○○동지회
(회장 고 ○ ○)

피신청인 : 전남타임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남타임스 : 『축제(祝祭)인가 축재(蓄財)인가!』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7일자 7면)
내 용 : (전략) ○○지역 또한 5·18 동지회라는 단체가 있으며 여기에 속한 동지들의 당시의 의식적 역할에 회의적 시각의 시민들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이비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데, 이쯤에 거창한 ○○강 문화축제현장에서 술판 등을 위한 천막 50여 동을 ○○시의 특별한 제재도 없이 천막 1동당 1,000,000원씩 도합 5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긴 단체가 ○○지역 5·18 동지회라 한다면 그들의 진정성에 대하여 시민들은 심각하게 의심치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마땅히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27일자 7면 『축제(祝祭)인가 축재(蓄財)인가!』 제하의 칼럼에서 5. 18 ○○동지회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 주최로 열린 ○○강 문화축제에서 천막 50개동을 임의로 임대하여 1개 동당 100만 원씩 5천만 원의 임대료를 챙겼으며 5.18 ○○동지회 내에 사이비 회원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5.18 ○○동지회에서는 천막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임대료를 챙긴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이비회원이 있

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전남타임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0일자 2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7일자(제307호) 7면에 본지의 김○○ 편집국장이 기고하는 김○○ 칼럼 내용 중에서 “5.18 민주유공자 ○○동지회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가 개최한 ○○강 문화축제 기간 중 천막 50개동을 임대하여 주고 천막 1개 동당 100만 원씩 5,0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5·18 동지회에 사이비 회원이 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5·18 민주유공자 ○○동지회에서는 ○○강 문화축제당시 천막을 임대하여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돈을 받아 챙긴 사실도 없고, 사이비회원을 거론한 부분은 오보였음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 잡습니다.

금번의 기사로 인하여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하신 5·18 유공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아울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며 신문윤리강령 또한 철저히 지키는 언론사가 되겠으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독자 여러분께도 약속드리겠습니다. □

신청인이 판매하는 흙이 아무 효과도 없는 엉터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9월 28일 21:00)

내 용 : ▷앵커 : 전국 공원묘지에서 비싼값에 팔리고 있는 ○○토라는 흙이 있습니다. 안장되는 시신에 좋다고 선전돼 왔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검증된것이 없다고 합니다.

▷기자 : '○○토'. 시신을 안장할 때 사용하면 후손들까지 편안하게 해준다고 알려진 흙입니다. (중략)

유골의 변색을 막아준다, 수맥을 차단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게다가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상품화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묘지에 ○○토를 납품해 온 업자 도...

▷○○토 납품 업자 : “(이 흙을 써야 유골이 깨끗하게 보존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수맥 차단 효과는?) 수맥은 차단할 수가 없죠.”

▷공원 묘지 관리사무소 관계자 : “검증 효과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써보신 분들만 알겠죠.”

▷기자 : 유가족들에게 ○○토를 팔아 온 공원 묘지 측도, 모두 이 흙의 효과를 자신하지 못합니

다.

취재를 완강히 거부하던 ○○토 제조 업체도 결국 ○○토의 효과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토 제조업체 대표 :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어요. 검증된 자료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각적인 효과가 큰거죠. 효과가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기자 : 이 ○○토는 보통 하관 직전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의 심리를 이용해 판매돼 왔습니다. (중략)

아무런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토는 지난 10년 동안 매달 천 포대 이상 팔려 나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9월 28일 「KBS뉴스9」 프로그램 “현장추적-유가족 현혹하는 정체불명 ‘○○토’” 제하의 방송에서 아무런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토’가 지난 10년 동안 매달 천 포대 이상 팔려나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토’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각종 파충류 및 나무뿌리 등의 침투를 막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농림부가 특정 민간업체에 전원마을조성사업 관련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홍 수)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 (1) 『2년된 민간업자 펜션사업 '대통령

상' 주고 거액 지원』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6일자 1면)

내 용 : 한 민간 펜션분양 업체가 2004년부터 추진해오던 영업 사업이 특별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농림부의 예산 수십억원을 지원받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특혜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사업을 정부지원 사업으로 걸모양만 바꿔 출품한 전원마을 조성모델은 지난 15일 끝난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에서 1등인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중략)

펜션업계 한 관계자는 “〇〇과 〇이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정부지원 사업으로 탈바꿈하면서 큰 혜택을 입게 됐다”며 “이는 노후의 안락한 삶을 위해 농촌 이주를 계획하는 전원마을 입주 희망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후략)

(2) 『지자체-민간업자에 ‘명석 갈아준격’』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6일자 3면)

정부가 도시민의 농촌 이주 및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시작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사업계획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땅 투기’나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민간업자의 전원마을 사업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농림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중략)

〇〇군의 전원마을 소개자료인 〇〇〇〇힐과 펜션업체 〇〇과〇의 2004년 홍보물을 비교하면 두 가지 사업이 결국 같은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중략)

농림부 관계자는 “〇〇마을(〇〇힐)은 이미 22명이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10필지를 추가로 모집해 진행하는 별도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 중에 〇〇과〇 직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〇〇과〇은 이미 2004년 전원단지 22필지(필지당 400여 평)를 22명에게 분양했고 이번에 추가로 분양하는 10필지도 결국 이 회사가 소유했던 것이므로 〇〇마을과 〇〇과〇이 연관이 없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중략)

펜션업계 관계자는 “〇〇군이 농림부의 지원을 받는 전원마을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〇〇에 전원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업자와 군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26일자 1면 『2년된 민간업자 펜

션사업 ‘대통령상’ 주고 거액 지원』 및 3면 『지자체-민간업자에 ‘명석 갈아준격’』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민간업체가 2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펜션단지개발계획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특혜 의혹이 있으며 특정 민간업체가 〇〇전원〇〇의 땅을 소유·분양하여 부당이득을 얻었고 특정 민간업체 직원이 〇〇전원마을 토지소유자로 둔갑한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측은 〇〇전원마을조성사업은 특정 민간업체가 추진해오던 펜션단지개발계획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〇〇전원마을사업 예정지역에 이주·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전원〇〇조성사업 신청을 토대로 〇〇군에서 예산을 신청해 중앙정부가 지원한 것이고 〇〇전원마을부지를 특정 민간업체에게 분양한 바 없으며 해당부지를 특정 민간업체나 해당 민간업체의 직원이 소유한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전원〇〇선정 관련 농림부의 반론
- 본 문 : 본지는 10월 26일자 1면, 3면 ‘농림부의 전원마을 선정’ 관련 기사에서 특정민간업체가 2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펜션단지개발계획을 정부가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농촌에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농어촌 시·군에서 20가구 이상의 마을을 조성할 경우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장 등 기초인프라 설치비용을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부지구입 및 주택건축 등은 입주자가 부담 한다”고 설명하면서, “〇〇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특정민간업체가 추진해오던 펜션단지 개발계획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동 사업 예정지역에 이주·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신청을 토대로 〇〇군에서 예산을 신청하여 중앙정부가 특혜없이 적법하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6년 11월 20일

자 아시아경제 3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2006년 10월 26일자 3면)의 부제목
'편법동원에~진상조사 시급'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와 동일하게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경제 : 『전원마을 선정 관련 농림부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0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부산KBS-1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부산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0월
4일 21:30)

내 용 : 세계 기네스 기록 보유자들이 참가하는
'2006 기네스 축제 한마당'이 개막을 하루 앞
두고 취소됐습니다. 벅스코는 축제 조직위원회 손
모 위원장이 본행사와 부대행사 입점 업체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함에 따라 축제가 취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0월 4일 「KBS9뉴스」 프로그램
'부산기네스 축제 개막 하루 전 취소' 제하의 방
송에서 축제 조직위원회 손모 조직위원장이 행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9월에 입점업체 2곳으
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기인 초대비 및 홍보비로
이미 지급되었고 10월에는 계약금을 받은 사실
이 없으며 또한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
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손배요구를 수용할 수 없
다. ☐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KNN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 N N : 「KNN뉴스아이」 프로그램 (2006년 10월 4일 20:25)

내 용 : <2006부산조정2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부산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피신청인 주장

<2006부산조정23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의 측근이 성인오락 사업과정에 불법개입하고 소속 보좌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8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미 경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7.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조선일보 : 『정동채 · 이미경 의원 측근 수사』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A1면)

내 용 : ‘도박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열린우리당 정동채(鄭東采) 의원과 이미경(李美卿) 의원 측근이 사행성 게임물 심사 과정과 상품권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중략)

검찰은 이미경 의원실이 게임업체와 상품권 업체의 부탁을 받고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단서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실의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30일자 1면 『정동채 · 이미경

의원 측근 수사』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은 이미경 의원실이 게임업체와 상품권 업체의 부탁을 받고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단서 등도 확보했다”며 “검찰은 최근 이 의원실의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미경 의원실은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으며, 이미경 의원실 보좌관이 최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10월 30일자 A1면 『정동채 · 이미경 의원 측근 수사』 기사와 관련, 현재까지 이미경의원실 보좌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2006년 11월 23일까지 A2면에 위 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및 크기는 고딕 4호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기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3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재단이 서류날조와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4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사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e조은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e조은뉴스 : (1) 『“○○대군 지하에서 통곡한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사는 ○○대군의 유덕을 기리고 장학사업과 재산의 유지관리 등과 같은 목적으로 1970년 비영리 재단으로 ○○대군과 종인들이 돈을 모아 산 부동산과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됐다.

허나, 재단법인 ○○사의 기본재산인 토지가 이모 이사장의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기 위해 매매되고 있으며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 관련자 이모 씨는 2006년 10월 25일 문화관광부에 ‘○○사 이사장 비리관련’ 청원서를 접수시켜 ○○사의 비리를 폭로했다.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이모 씨가 ○○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세금 환급으로 받은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하나, 이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의혹은 증감됐다.

이모 이사장은 재단의 자금이 없다면서 마지막

남은 ○○동 11,572평의 땅마저 매각하겠다고 2006년 9월 23일 4대 일간지에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를 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취소되었다.

이모 이사장은 부동산 브로커인 변모 씨와 공모하여, ○○사 소유 부동산을 싼 가격에 매도-매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류를 날조하고 이를 통해 법원에서 임의조정에 합의, 땅을 매각했다. (중략)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본법인의 정관 제25조에 따라 ‘반드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허나, 이모 이사장은 이를 어기고 개인이 허위낙찰 서류를 근거로 임의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이모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11,572평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임의조정 함으로써 변씨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었고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당초 법인소유의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 ○○사에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7억여 원 정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이모 이사장은, 법인이사들을 속여 양도세가 165억 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청원서에 따르면, 이모 이사장은 이사회에 “내가 알고 있는 여성세무사를 통해 로비하면 70억~8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세무사 보수는 절감액에 대한 8% 정도 주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이모 이사장은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와 관련된 비리가 2004년 2월 서

울고등경찰청의 결정에 따라 드러났다.

이 결정에 따르면, “세무사 박모 씨를 통해 이미 예상세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기고 이사회에 예상세액이 165억 원이라고 이사들을 기망하여 결의를 받아 박모 씨와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이사장으로서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이어, “세무사 박모 씨가 감세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억(8%)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함은 업계의 관행에 현저히 위배되며 적절한 임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무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잔금지급이 끝나고 통상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지만 미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 박모 씨와의 공모여부가 사실상 확실하다.

당시 몇백만 원에 불과한 세무사 보수비를 14억 7천만 원으로 부풀려 지불하여 업무상배임 및 횡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2006년 5월 10일 이사회에서 이모 이사가 “재단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자, 이에 ‘○○사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 1항에’에 의거 이사장의 직권으로 해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토의나 표결 없이 결정, 이모 이사의 이사직을 해임했다. (중략)

이모 이사장은 ○○대군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2004년 당시 주무관청이었던 서울시에 여러번 기본재산처분승인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매번 반려했다. 이에 이모 이사장은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던 ○○대군의 토지를 보통재산으로 정관 변경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04년 4월 23일 정관 변경신청을 했다. 비리의 의혹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중략)

그때 당시 주무관청이었던 서울시에서 4. 23일 접수하고 승인해줬던 정관변경은 5. 13일의 공문서에 의해 공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모 이사장이 매각했던 땅마저도 비리의혹이 짙다. (후략)

(2) 『비리의혹투성이 ‘○○사’ ... ‘무혐의’ 왜?』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5일자 사회면)

(전략) 이에 따라 그동안 의혹만 무성하던 ○○

사 비리의혹이 조만간 감사기관의 수사의지 여하에 따라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수습여 건에 달한 민형사상 고발사건이 단 한 건만 형사벌금형으로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로 사건자체가 종결단계에 있었다는 점을 미뤄볼 때 무혐의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검찰=피고’ 간의 결탁 여부에 따른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중략)

○○사의 이모 이사장이 5,000만 원 횡령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모 이사장은 이△△의 고발로 귀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 2004년 6월 15일경 이모 씨의 주선으로 위 사건의 고발인인 이모 씨에게 5일 이내에 금 2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중략)

또한 ○○사는 몇 차례 걸쳐 변호사 수임료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고 고소를 당했지만 매번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레저건설과 ○○사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변호를 맡은 강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수임료를 15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30일자 사회면 『“○○대군 지하에서 통곡한다”』 제하의 기사 및 11월 5일자 사회면 『비리의혹투성이 ‘○○사’ ... ‘무혐의’ 왜?』 제하의 기사에서 재단법인 ○○사의 기본재산 토지를 이모 이사장이 개인적인 영리를 취득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도 없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임의조정함으로써 변모 씨에게 막대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모 이사장이 법인 소유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될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부풀려 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세무사와 공모해 세무사 보수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모 이사장에게 반발하는 재단 이사를 임의로 해임했으며 서울시와의 검은 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 관련 민형사상 고발 사건이 한 건을 제외하

고는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음에도 검찰과의 결탁 설을 제기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불했으며 이모 이사장이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재단 소유의 기본재산 토지는 법인 소속 이사 및 감사와의 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고 변모 씨와의 임의 조정과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모 이사장이 세무사와 공모했다는 부분 역시 검찰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재단 이사장이 임의로 이사를 해임하고 서울시와의 검은 거래를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변호사 수임 과다 책정 논란, 검찰과의 유탁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과다 책정 논란, 검찰과의 유탁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e조은뉴스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2일자 사회면)
내 용 : 본사는 2006년 10월 30일 인터넷e조은뉴스 포토뉴스란 및 2006년 11월 5일자 조은뉴스 제269호 1면내지 3면에 『“○○대군 지하에서 통곡한다”』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사의 토지 처분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보도하고, 이어 『비리의혹투성이 ‘○○사’ … ‘무혐의’ 왜?』라는 제목으로 추가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①재단법인 ○○사는 재적 이사·감사 만장일치로 변모 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한 고소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②그리고 세무사와 공모하여 법인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종결되었음이 밝혀졌고, ③또한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일부이사들에 대해서도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④서울시와의 검은 거래 의혹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⑤수십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두 승소하고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⑥아울러 본사는 재단법인 ○○사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확인결과 모두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사는 위와 같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에만 의존하여 기사를 게재하게 되었던바, 검찰관계자 및 관련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본사는 언론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할 것을 독자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

보건복지부가 검증되지 않는 실손형 보험제도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유 시 민)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1) 『청와대 눈가린 복지부』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1면)
내 용 :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개선과 관련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올려 대통령의 판단을 오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특히 업계와 관련 부처가 이익을 제기하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정책을 강행했다. (중략)

문제는 노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민간요법 보험이 본인 부담을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보험업계는 물론 보험관련 정책당국은 배제됐다. (중략)

특히 유 장관은 이후 권오규 부총리 등이 최종 결론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2) 『복지부 “협의했다” 타부처 “무슨소리”』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3면)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 보장 전면 금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중 하나는 관련업계는 물론 관련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관련업계에 부처와 협의할 때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뒤돌아서서는 이를 전면 무시한 채 ‘독불장군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업계 등의 주장이다. (중략)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은 물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충분히 거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과 병원 등 관련업계뿐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 보장 전면 금지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 (중략)

보험업계 역시 철저히 소외되긴 마찬가지였다. 실손형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7월 11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내용이 보도된 후에야 본인 부담금 보장 전면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손보사들은 곧바로 유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 지난해 8월 18일 유 장관과 손보사 사장단의 회동이 이뤄졌다. 당시 유 장관은 손보사 사장들에게 “앞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에 보험업계 관계자를 참석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후략)

(3) 『복지부도 “검증된 수치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3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량 및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실손형 상품 허용은 건강보험제도의 골격을 훼손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업계에도 손해다. (근거로) 실손형 보험이 건보 재정을 연간 최소 2,400억 원~최대 1조 7,000억 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1일 의료산업전진화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 오도를 이끈 것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 주장과 근거로 제시된 수치가 실증분석 없는 막연한 가정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30일자 1면 및 3면에 『청와대 눈가린 복지부』, 『복지부 “협의했다” 타부처 “무슨소리”』 및 『복지부도 “검증된 수치 아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실손형보험 관련 검증 안 된 자료를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판단을 오도했다”는 내용과, “정책을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 및 보험관련 정책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험관련 전문기관 및 OECD(2004) 권고사항 등 국·내외의 각종 실증자료를 광범위하게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27회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회의 및 보험업계 면담 등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업계 및 보험 관련 정책당국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현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정정보도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

특정인사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신청인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 영 희)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한 달도 안 돼 붙었다 떼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8일자 6면)

내 용 : 지난달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요지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3주일이 지난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시 여성청소년가족부와 별도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를 설치키로 의결하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보위에는 위원장을 비롯, 11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면 일정 수의 상임위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청소년위원회를 여성가족부와 통합했다 뺐다 한 것이다. (중략)

한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부처 통합에 반대하는 청소년계 전문가들에게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위원회 만들기 좋아하는 정부의 위원회 증독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국민이 납득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8일자 6면 『한 달도 안 돼 붙었다 떼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기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결의하고 한 달도 채 안돼 여성청소년가족부와는 별도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부처 통합에 반대하는 청소년 전문가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고 위원회 만들기 좋아하는 정부의 위원회 증독증”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조치일 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청소년 조직을 또 다시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상설 심의기구로 소속 위원 역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임 민간인 신분이므로 특정 인사에게 자리를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6일자 2면)

내 용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본지 11월 8일자 6면 『한 달도 안 돼 붙었다 떼었다』라는 제목의 취재일기에 대해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청소년 정책 중에는 매체·업소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 공개 대상자 등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이 있다. 현재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합의체 기구이므로 별도의 심의기구가 필요 없지만 여성청소년가족부가 되면 산하에 민간 전문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심의기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보호정책 집행 업무와 심의·결정을 함께 수행하던 과거 청소년보호위원회와는 다르다. 또 ‘통합 반대자들에게 자리 챙겨주기’ ‘정부의 위원회 증독증’이라는 기사의 비판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비상설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

신청인 단체가 산업연수생들로부터 수십만 원의 송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용 구)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2TV : 「KBS시사투나잇」 프로그램 (2006년 11월 7일 24:30)

내 용 : ▷진행자1 : 지난 13년간 시행되 온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연수생제도가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됩니다. 그동안 송출을 담당했던 단체들의 비리와 반인권적인 행동으로 잡음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바뀐 제도에서도 그 단체들이 그대로 일을 한다고 해서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를 주장하는 캠페인이 20여 일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략)

▷기자 : 시민단체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이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충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중략)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지난 94년부터도 산업연수생제도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연수생들의 업체파견과 교육, 사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명목하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주와 연수생으로부터 1인당 수십만 원의 연수관리비와 송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행보증금과 예금이자 등의 소득을 합치면 지난 10년간의 총수입은 94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이같은 막대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기자 : 지난 1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을 찾은 베트남인 응우엔씨, 그녀는 현재 2개월째 실업상태이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 매달 사후관리비를 납부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연수생 : 2개월이 넘을때까지 일자리도 없고 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로 전화를 걸었는데 한국말만 하기 때문에 무슨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도움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1월 7일 「KBS시사투나잇」 프로그램 “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허가제 개입 중단 논란” 제하의 보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수생으로부터 수십만 원의 송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용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생으로부터 매달 사후관리비를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수생으로부터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매년 정부의 승인하에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사용해왔고 현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사용내역을 밝혔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생으로부터 사후관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송출기관이 연수생 관리를 위한 국내지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간첩 수사에 강력히 반발한 여권 386들의 압력으로 인해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이 병 완)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1) 『盧정권 ‘친북기조’와 ‘386 간첩단’』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7일자 31면)

내 용 : (전략) 우리는 피의자들이 노 정권의 386
핵심들과 수시로 교유해온 점을 각별히 주목한다.
특히 386 운동권 출신 여당 정치인 사무실에서 이
들간 포섭이 이뤄졌다고 한다.

공안부재 상황에서 그나마 “국가 안보에 관한
한 한치의 틈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온
김승규 국정원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한 것도 예사
롭지 않다. (후략)

(2) 『김국정원장 사퇴의 전말, 대북 포용론자와 같
등 ‘폭발’』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1면)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이 드
러나고 있다. 김 원장의 사의는 ‘386 간첩단 사건’과
대북 정책노선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중략)

김 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간첩사건 수사 같
은 것은 김 원장의 철학이다. 나라를 위한 것이다”
고 단언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여권 386 세대
들에게 왜 코드를 안 맞추느냐. 지금 시점에 왜 간
첩사건을 공개하느냐고 그러지만, 김 원장의 생각
은 다르다”고 말했다. (중략)

김 원장에 대한 여권내부의 견제가 심했음을 시
사했다. (후략)

(3) 『核실험 후 靑·통일부-국정원 충돌』 제하

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4면)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퇴 이면에는 2가지 대립전
선이 존재했다. 첫째는 대북 정책을 놓고 청와대
통일부 등 여권 핵심과 김승규 원장 등 국정원 내
대북 강경론과 간 갈등이다. (중략)

청와대는 북한 핵실험에도 대북 포용정책은 지
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석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외교
안보 라인 개편과 무관하게 포용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의 뜻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러나
“해도 너무한다”며 대북 정책 수정론을 펼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을 놓고 국정
원장과, 청와대·통일부의 시각이 배치된 것이다.
사실상 김 원장의 경질설 사의표명은 여기에서 직
접적으로 연유한다. (중략)

국정원 내 일부 간부들이 여권 내 386 인사 등
핵심세력과 교감하며 김 원장을 고립무원의 처지
에 빠뜨렸다는 시각이다. (후략)

(4) 『2007대선까지 붉게 물들이려한 ‘386 간첩
단’』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31면)

(전략) 피의자 5명은 김정일을 한 마음으로 모
신다는 뜻을 모았다는 ‘일심회(一心會)’ 멤버들로
서 노 정권의 386 핵심들과 친분이 깊다고 한다.
(중략)

‘자유의 적(敵)’ 이 대한민국을 휘저어온 것이
‘386 간첩단’ 사건의 본질로 드러나고 있다. 비상
한 각오로 ‘자유의 적’을 색출하고 의법처벌함으
로써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해야 할 노 정권이 수
사를 지휘해온 김승규 국정원장을 중도하차시키고
후임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후임이 정말 중요하
다”는 김 원장의 언급이 바로 ‘코드인선’ 경계를
에두른 표현이라고 믿는다. (후략)

(5) 『김승규 원장측 “타의에 의한 사퇴”』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1일자 7면)

김승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공식 발표와 달리 자발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한게 아니라, 경질됐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원장 측근은 31일 “말로만 사의표명이지, 경질이다”고 밝혔다. 김 원장 사퇴배경을 놓고 김 원장 측과 여권 주류 및 국정원 내 비(非)김승규그룹이 강하게 충돌하는 와중에 김 원장 측이 “사퇴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였다”고 공개한 것이다. 이에따라 “외압은 없었다”는 청와대 등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 사퇴에 대한 외압작용설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후략)

(6) 『386간첩단 수사하는 ‘김승규 국정원’ 흔들지 말라』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1일자 31면)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26일 사의 표명이 ‘386 간첩단 사건’ 수사와 관련한 386 출신 권력 핵심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외압설’에 대해 청와대는 “소설같은 이야기,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10월 27일자 31면, 10월 30일 1, 4, 31면, 10월 31일 7, 31면 등에서 최근 국정원 ‘간첩 수사’의 피의자들은 ‘청와대 386’들과 수시로 교유하는 등 깊은 친분관계에 있고, 이들 청와대 인사들이 국정원 수사에 반발하면서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어 김 원장이 사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최근 국정원 수사의 피의자들이 ‘청와대 386’과 교유하는 등 친분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김승규 국정원장은 외교안보 진영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사의를 표명한 것일 뿐, 청와대가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개입하거나 국정원장이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반론이 보도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정정은 물론 반론보도도 수용할 수 없다. □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간첩 수사에 강력히 반발한 여권 386들의 압력으로 인해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이 병 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정치권 386, 국정원에 압력”』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8일자 A3면)

내 용 : 386운동권 출신 간첩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정치권의 386들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27일 “386 전체가 국정원을 공격하는 양상”이라고 실토했다. 그는 국정원을 공격하는 386 세력들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 같은 ‘외부 압력’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사가 마치 권력 핵심과 정치권의 386들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언론에 비쳐 수사가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정원과 정치권에 포진한 386들 간 대립관계가 형성되면 외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후략)

(2) 『‘간첩단’ 발표 바로 다음날, 왜 김원장이 辭意를...』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8일자 A5면)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을까. (중략)

국정원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

권 여러 곳으로부터 ‘견제’를 받았고, 김 원장이 고민 끝에 수사내용을 공개하고 사퇴하는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386 비서진과 열린우리당의 386 의원들이 견제의 당사자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후략)

(3) 『‘386 간첩단’ 수사 도중 물러나는 국정원장』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8일자 A35면)

(전략) 사퇴 시기가 미묘하다 보니 국정원 수사에 대한 정권 내 386들의 반발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간첩 혐의자들은 80년대 운동권 경력을 공유한 정치권과 청와대 386 인맥과 넓은 교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실제로 국정원에선 “정치권 386들로부터 압력이 세계 들어온다. 386 전체가 국정원을 공격하는 양상이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중략)

김 원장이 자신의 교체가 임박해지자 수사를 독려하고 밀어붙여 썰기를 박아놓고 물러나려 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후략)

(4) 『국정원 내부갈등 불거지나』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A3면)

국가정보원장 후임 인사와 386운동권 출신의 간첩 사건 수사를 계기로 국정원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략)

국정원 관계자는 “현 정권의 권력 핵심 인사들과 인맥이 두터운 간부들이 발탁될 경우 국정원 운영 과정에서 ‘코드’를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의 한 의원도 “별다른 정치적 후원 세력없이 호남 안배 차원과 국정원의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용된 김 원장이 그동안 권력핵심과의 ‘코드’를 배경으로 한 고위 간부들과 정책적 갈등을 빚었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일부 고위 간부들은 각각 권력 핵심의 부산출신과 386 인사 또는 정치권 실세,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들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 안팎에 비쳐지고 있다. (중략)

간첩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들 고위간부들을 통로로 정치권 386들의 입김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5) 『“압력說 맞다” vs.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A4면)

(전략) 청와대 측은 어차피 지금 김 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이 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느라 앞으로 한 달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원장을 물러나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여기에도 국정원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 베테랑들인 국정원 수사관들이 영향을 받아 수사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마디로 김 원장이 386들의 압력으로 물러났다는 것은 근거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정부소식통들은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은 간첩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27일야 노 대통령이 사표를 받았다는 것이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원장의 입장이 수사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 정부소식통은 “이미 김 원장이 간첩단 사건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하자 수사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더구나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할 뜻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압력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6) 『청와대 이틀만에 “황당한 얘기”』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A4면)

(전략) 29일에도 오후 4시쯤에야 윤태영 대변인이 나서서 “황당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틀이나 뒤늦게 해명을 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28일자 A3, A5, A35면 및 10월 30일자 A3, A4면 등에서 김승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386 비서진’ 등을 비롯한 여권의 386들이 최근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승규 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사퇴하게 된 것이고, 청와대는 27일부터 제기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틀이나 지난 30일야 뒤늦게 해명을 한 것은 뭔가 걸리는 것

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승규 국정원장은 외교 안보 진영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사의를 표명한 것일 뿐, 청와대가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개입하거나 국정원장이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은 없으며, 청와대는 의혹제기가 있는 27일 당일부터 의혹을 강력히 부

인해왔으며 이들 뒤 뒤늦게 해명한 것은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신청인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명품 8종 선물세트’를 받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성 범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명품 받고 살아남은 의원』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9일자 8면)

내 용 : (전략)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명품 8종 선물 세트’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물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의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어 선거법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수재죄

만 인정한 것. (중략)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구청장 공천, 청탁과 함께 820여만원어치 고가 선물 세트를 받은 경우여서 사실상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지는 지난 11월 9일자 8면 『명품 받고 살아남은 의원』 제하의 기사에서 박성범 국회의원이 “‘명품 8종 세트’를 받고도 ‘살아남아’”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명품 8종 세트’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이미 확인된 사안을 왜곡해 박 의원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광고와 달리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김치를 묵은지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XXXXXX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MBC-TV

증 재 부 : 서울제1증재부
접 수 일 : 2006. 11.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6년 11월 2일 19:20)

내 용 : (전략) >해설자 : “묵은지를 숙성시키는 시간” 불만제로가 제대로 된 묵은지를 찾아 나선 시간도 좀 되어간다. 참 많은 식당을 가 보았다. 유명한 식당도 가 보았다. 전통의 방식, 오랜 숙성으로 유명한 체인점에선 보기만 해도 식욕이 도는 광고를 내보낸다. 향아리 속에 담긴 묵은지를 상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돈다. (중략)

>해설자 : 그 많은 묵은지를 다 땅속에? 불만제로는 그 맛있는 광고들을 확인하러 나섰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김치제조가 한창이었다. 묵은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별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김치가 어떻게 묵은지로 숙성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묵은지는 특별하게 숙성되고 있었다.

(김치공장 지배인과의 인터뷰)

>지배인 : 이게 ○○○체인점 앞으로 담가 놓은 거라고.

>리포터 : 이 상태에서 숙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배인 : 한 이틀.

>리포터 : 이틀?

>해설자 : 이 공장에서 유명한 체인점으로 들어간다는 묵은지. 이렇게 밖에서 이틀간 숙성된 것이란다. 그럼 대체 이 광고의 키포인트 향아리는 어찌된 일인가?

>지배인 : 하루에 일주일에 100톤짜리 향아리 물어놓고 당신 할 수 있겠어?

>리포터 : 그러니까.

>지배인 : 못 하는 거야. 못하고, 우리도 전시장으로 다 해놔야. 그거 전시용이야. 그거 힘들어가지고 안 맞아 품값하고.

>리포터 : 여기 있는 묵은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지배인 : 1년 8개월짜리.

>해설자 : 이곳에 일 년 팔개월짜리 묵은지를 저

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조일자는 올해 7월로 표시되어 있다. 3개월 짜리 묵은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 강한 자부심.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더 깊이 확인 들어가 보았다. 묵은지를 납품하고 있다는 또 다른 김치공장. 납품되는 묵은지를 찾아보았다.

(묵은지공장 직원과의 인터뷰)

>직원 : 이게 체인점으로 들어가는 3개월 숙성된 묵은지입니다. 이거.

>리포터 : 3개월 조금 넘은 거예요?

>직원 : 네, 좀 더 된 겁니다.

>해설자 : 유명한 체인점에 납품하고 있는 세 곳의 공장 중 두 군데는 실제 광고 내용과는 달랐다. 유명한 체인점 본사 사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묵은지 체인점 본사 사장과의 인터뷰)

>사장 : 저희가 이렇게 100% 8개월 이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100% 다 향아리 숙성을 시킬 수 있는 그 양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발과 향아리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100% 여력이 안 됩니다.

>해설자 : 여력이 안 되면 문제는 간단하다.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는 이런 과장 광고는 안하면 되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사장 : 이에 대해선 저희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중략)

>김○○ : 묵은지 유명 체인점에 경우에는 8개월 이상 제대로 숙성된 묵은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묵은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만 그런 건데 마치 100% 묵은지 전부 다 그런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1월 2일 「불만제로」 프로그램 ‘묵은지, 정체를 밝혀라’ 제하의 방송에서 모 유명 묵은지 체인점 향아리에서 저온으로 수개월 동안 숙성시키지 않고 상온에서 단 이틀 숙성시킨 김치를 묵은지로 속여 판매하고 있고 1년 8개월 동안 숙성시켰다는 묵은지의 제조일자가 올 7월로 표시되어 있는 장면을 방영했으며 자신이 판매하는 묵

은지 모두를 8개월 이상 제대로 숙성된 목은지 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방송에 보도된 모 유명 목은지 체인점은 실제로 향아리에서 저온으로 최소 8개월 이상 숙성시킨 목은지를 판매하고 있고 다만 일부 메뉴에 따라 저온밀폐 숙성용 냉창고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목은지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온에서 단 이틀 숙성시킨 김치를 목은지로 속여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제조일자가 올 7월인 김치를 촬영한 후 1년 8개월 된 목은지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도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며 향아리 목은지 생산의 특성상 넓은 밭과 많

은 향아리가 소요되어 일부 메뉴에 있어서는 저온 냉장 숙성 목은지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향아리 목은지도 생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모 유명 목은지 체인점이 향아리 목은지는 전혀 판매하지 않으면서 100% 향아리 목은지만 판매하고 있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도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3.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연합뉴스 : 『부산기네스축제 개막 하루전 취소』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4일자)

내 용 : <2006부산조정2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부산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 기 서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3.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8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3.
처리결과 : 기 각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부산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노컷뉴스 : 『‘2006부산기네스축제’ 하루 앞두고 취
소, 손모 조직위원장 계약금 받은 뒤 잠
적』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4일자)

내 용 : 〈2006부산조정23의 보도내용 참조〉

결 정 문

〈2006서울조정457의 결정문 참조〉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이타임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3.
처리결과 : 기 각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부산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부산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이타임즈 : 『부산기네스축제 하루 앞두고 취소』 제
하의 기사 (2006년 10월 5일자)

내 용 : 〈2006부산조정23의 보도내용 참조〉

결 정 문

〈2006서울조정457의 결정문 참조〉



신청인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과정에서 매각에 대비한 이면합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0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3.
처리결과 : 합의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 『OO노조, 걸으로는 매각반대, 속으로
는 매각대비 이면 협상』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9일자 2면)

내 용 : OO은행 노동조합이 매각 후 합병을 전
제로 한 이면 합의를 회사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
인됐다.

OO은행 노조는 그동안 갖가지 명분을 내걸면
서 줄곧 은행매각 자체를 반대해온 점에 비추
어, OO은행 노조의 이런 이중적 행동은 회사발
전이라는 ‘대의’ 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
기’에 급급한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이기적
태도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라는 빈축을 사
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임단협을 진행중인 OO은
행 노사는 노조 측이 은행명 변경 및 핵심자산 처
분시 노사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은행발전
협약’ 체결을 새롭게 요구하고 나서 협상중인 것
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노조는 합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
조조정에 대비,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고용안전협약
체결도 함께 요구했다.

은행명 변경과 부동산 등 핵심자산의 처분이 매
각과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
안하면 OO은행 노조가 △△은행 매각이후 합병과
정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계 전문가는 “OO은행 노동조합이 걸으
로는 매각 자체를 반대하면서 이면으로는 합병을
전제로 한 이면계약을 회사와 추진하는 것은 노동
조합으로서 가져야 할 ‘회사와 노조원의 공생·발
전’이라는 원칙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지
나치게 매몰되어 회사는 어떻게 되던 나만 살면된
다는 이기적 사고에 함몰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지는 지난 9월 29일자 2면 『OO노조, 걸으
로는 매각반대, 속으로는 매각대비 이면협상』 제
하의 기사에서 OO은행 노동조합이 마치 걸으로
는 매각을 반대하면서 실제로는 매각 후 합병을
전제로 경영진 측에 이면합의를 요구하는 이중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
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OO은행 노동조합은 정상
적인 임단협 과정에서 기존의 은행발전협약과 고
용안전협약의 개정을 협의하였을 뿐 새로운 협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이면합의를 요구한 사실은 없
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OO은행 노동조합 반론
- 본 문 : 9월 29일자 2면 OO은행 노조 관련 기사
에 대해 OO은행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임단협 과
정에서 기존의 은행발전협약과 고용안전협약의 개
정을 사측과 협의하였을 뿐 새로운 협약체결을 요
구하거나 합병을 전제로 한 어떠한 이면합의도 요
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1월 29일까지 아시아경제 2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같은 일자 같
은 면의 “김○○의원 의원직 상실” 기사의 부제목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활자 및 크기와 동
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하는 조건으
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
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아시아경제 : 『○○은행 노동조합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4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관내 경쟁신문의 상호를 도용하고 무단 수거해 폐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주간 사하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주간 사하신문 : 『지역신문 발행인이라는 자가 이래도 되겠는가?』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일자 8~9면)

내 용 : 지난 2005년 12월 20일 밤 11시경, 사하지역에서 엉터리신문을 발행해온 조○○의 소유차량 뒤 트렁크에 사하신문에서 발행한 신문이 수백 부 가량 적재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여 112에 신고했으며, 즉각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회하에 뒤 트렁크에 수북히 무단 수거된 사하타임즈 수백 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중략)

본지 발행인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1996년 6월에 '주식회사 사하신문' 법인설립과 동시에 '사하신문'을 창간했으며, 조씨는 2001년 말경에 본지 발행인 밑에서 7개월여 광고영업을 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조씨는 2002년경부터 본지와 동일제호인 '사하신문'이란 제호(당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무자격요건으로 일반사자가 아닌 동네 생활정보지 성격의 특수지)로 등록하고 똑같은 사하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중략)

본지의 발행주체사인 '주식회사 사하신문'의 상호도용에 해당하며, 또한 동일지역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동일제호 무단사용에 해당하는 비열하고 야비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씨는 2005년 4월경에 본지 발행인에 의해 부산지방법원에 '제호사용중지가처분신청'과 사하경찰서에 '절도·횡령·사기' 등으로 고발된 바도 있었는데, (중략)

본지 발행인이 모든 법적소송을 취하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지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맹약조차 무시하고 불과 열흘 후에 또 다시 '사하신문'이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여 본지 발행인에게 약을 올리듯이 내밀었던 것이다.

끝내 사하신문이란 제호를 포기하고 '사하타임즈'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던 본지 발행인을 자꾸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는 언행을 일삼기에 지난 2006년 4월에 사하경찰서에 '절도·횡령·업무방해' 등으로 재차 고발했으며, 다시 부산지방법원에 '제호사용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중략)

본지 발행인이 1996년 6월에 창간한 것보다 2년 반 앞서 사하신문을 창간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중략)

2006년 4월 24일 조○○ 자신이 본 발행인에게 "앞으론 사하지역에서 '사하'자가 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지 않겠다. 부산시청 문화공보과에 등록되어 있는 사하신문 제호등록을 자진 말소하겠다"라고 써준 각서는 물론 2006년 5월 16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은 사하신문을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드러내놓고 사하신문 제호를 남용하고 있음은 물론, '사하신문 발행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지는 10월 1일자 8~9면 『지역신문 발행인이라는 자가 이래도 되겠는가?』 제하의 기사에서 사하신문 발행인 조○○ 씨가 경쟁사 사하타임즈 신

문을 상습적으로 무단 수거 폐기해왔으며, (주)사하신문 상호를 도용했고, 계속 ‘사하신문’ 제호를 사용하여 발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주간)사하신문’의 제호는 ‘주간사하신문’이며, 사하신문발행인 조○○은 사하수요신문 김○○ 발행인 밑에 근무한 적이 없고, 그 당시 사하수요신문은 1999년 3월 31일부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상태로 무등록 상태였고 신문은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본지는 지난 2006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어기고 잘못된 보도를 하였으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닥치는대로 수급폐기해 온 몰염치한 인간”, “인간같지 않은 쓰레기”, “사이비기자 조○○” 등의 악의적 보도를 한 바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 지난 10월 1일자 8~9면 『지역신문 발행인이라는 자가 이래도 되겠는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 11. 21.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확인결과 사하신문 발행인은 조○○이므로 본지 제호를 ‘주간 사하신문’으로 정정합니다.

사하신문 발행인 조○○은 사하수요신문 김○○ 발행인 밑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사하수요신문은 1999년 3월 31일부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상태이며, 계약 이후 신문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6년 3월 31일 언

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어기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등 잘못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수급 폐기해 온 몰염치한 인간”, “인간같지 않은 쓰레기”, “사이비 기자” 등은 잘못된 표현임을 밝힙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등 100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앞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겠으며, 언론윤리강령, 일반보도준칙, 보도자료 검증, 미확인보도 금지원칙, 답변의 기회, 진실 근거원칙, 반론의 기회, 과대편집 금지 원칙을 지키며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사하신문 8면에 2006. 12. 16.까지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녕마주이처럼...) 크기와 같게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문화공보과에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사하신문” 제호 등록을 모두 취소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올린 피신청인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며, 향후 사하신문이라는 제호의 사용을 포기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앞으로 쌍방 모두 이 건 신문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고소 내지 소송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간 사하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6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시와 유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투취개발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내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4.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내외일보 : 『토취장 타용도로 변경해 말썽』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9일자 7면)

내 용 : ○○도와 ○○시가 합작 허가한 진사 국
도변 가시대 우량 임지와 우량 농지 수만평이 토
석채취로 인해 산자락이 잘리고 울창한 숲들이 베
어져 나가 흉한 모습을 6년째 드러낸 가운데 ○○시
의 특별비호 속에 3번씩이나 타용도로 변경해 준
사실이 드러나 유착의혹과 함께 주민들의 진정 또
한 끊이지 않는 등 말썽이 확산되고 있다. (중략)

농지의 허가조항 8항, 복구방법 및 정도에 의하
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 후 복구 기
한 이내까지 농작물경작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흙
으로 복토하는 등 당초보다 우량한 농지로 복구하
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연장허가를 내줘 업자와의 유착 의혹까지 사
고 있다. (중략)

골재채취육상골재허가를 또 내줘 ○○시 관계 부
서간이 서로 짜고 업자배불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이처럼 ○○시의 마구잡이식 연장허가 때문에 ○○
마을 진모(39) 씨와 또 다른 진모 씨 등의 주택이
토취장 내 발파로 인해 벽에 균열이 생긴 것은 물
론 이모(80) 씨의 지붕도 발파 파편에 맞아 구멍이
생기는 등 주민들이 ○○경찰서에 진정까지 내고 대
립각을 세우고 있는 등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 1
차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담당했던 H씨는 당시 취
재 기자가 타용도변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있을
수 없다고 해놓고는 최근에는 윗 사람의 지시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연장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11월 9일자 7면 『토취장 타용도로 변경해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시와 토석채취업자 유
착의혹을 제기하고 ○○시의 마구잡이식 연장허가

와 토취장 내 발파로 인해 ○○마을의 일부 주택
벽에 균열이 생긴 것은 물론, 기타 피해가 발생했
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시와 ○○토취개발
(주)의 유착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토취
장 허가과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발파로 인한
마을 피해 또한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 토취장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 11월 9일자 7면 ○○ 토취장 관련 기
사에 대해 (주)○○토취개발은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시와의 유착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
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토취장 허가과정에서도 별다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1월 29일까지 내외일보 사회면
에 위 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
상기사의 부제목(“마구잡이 연장허가로 주민들 피
해”)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12월 15일까지 본 건 기사와 관련하
여 신청인의 입장을 밝히는 신청인의 명의로 된
1,200자 이내의 기고문을 내외경제 오피니언란에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을 이행하
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며 이 사건 보
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외일보 : 『○○ 토취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9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주택사업을 등한시하고 비상식적 경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OO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 O O)
피신청인 : 경향게임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향게임스 : (1) 『게임은 망해도 돈은 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4일자 53면)

내 용 : (전략) 전문가들은 “OO엔터테인먼트는 시작 당시부터 사업 확장에만 신경 썼을 뿐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다소 미비한 점이 많아 의구심이 발생됐다”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력 사업은 뒤로 하고, 주식 투자를 위해 매진한 듯 보인다”고 비꼬았다. (중략)

한때 관련 업계에서는 OO엔터테인먼트의 재정 상황이 악화돼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이 OO 사장이 인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후략)

(2) 『‘OO’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2일자 53면)

(전략) 결국 오픈베타 이후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초기화라는 쓰나미로 인해 ‘OO온라인’은 난항을 겪어야만 했다. 더욱이 OO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개발중인 ‘△△△ 온라인’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진행해 ‘OO온라인’은 서자 취급을 받으며 서비스됐다. 하지만 ‘△△△ 온라인’은 현재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새로운 게임임을 부각시키고자 기존 유저들의 모든 정보를 단숨에 초기화 해버린 것. 더욱이 유

저들에게 보상으로 내놓은 것은 ‘기간제 아이템’. 유저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중략)

이에 OO엔터테인먼트에 문의를 해봤지만 현 시점(10월 13일 16시 45분)까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때문에 한때 ‘OO찬가’에는 스피트핵이 난무했으며, 지금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략)

(3) 『OO, 회사 가기 두렵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5일자 53면)

(전략) 당초 OO엔터테인먼트는 OO닷컴을 통해 포털사업과 ‘OO찬가’, ‘OO카드’ 등을 서비스하며, 게임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6월 OO닷컴의 철수를 시작으로, OO닷컴 웹팅과 게임사업부 마케팅팀 대부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채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지난 2004년 시작된 게임산업은 현재까지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경영상의 악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유료 서비스에 돌입한 게임이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다.

또한 얼마 전 OOOO의 주식을 매각하고 게임사업에 전념하겠다는 이OO 사장의 발표에 의하면 기업이 존폐위기를 겪어 직원들을 정리하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24일자 53면 『게임은 망해도 돈은 번다?!』, 10월 22일자 53면 『‘OO’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및 11월 5일자 53면 『OO, 회사 가기 두렵다』 제하의 기사에서 “당초 OO엔터테인먼트는 시작 당시부터 사업 확장에만 신경 썼을 뿐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다소 미비한 점이 많아 의구심이 발생됐다”, “OO엔터테인먼트의 상황이 악화돼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말이 흘

러나올 정도였다”고 보도하고 ‘○○찬가’에 대해서 개발사를 무시하고 퍼블리셔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채 회사를 그만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엔터테인먼트가 주력 사업은 뒤로 한 채 주식 투자를 위해 매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퍼블리셔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직원들을 정리하고 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경향게임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0일자 53면)

내 용 :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되어 게재된 기사에서 본문 중 “○○닷컴 웹팀과 게임사업부 마케팅팀 대부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채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사건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피켓 시위를 벌여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4.

처리결과 : 합 의

사무실 앞 등에서 피켓시위를 비롯한 실력행사를 대신해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5년 1월 9일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돈 받고 시위한 시민단체 간부 구속’ 제하의 보도에서 “사법개혁관련단체 간부 조모 씨가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피해 해결 명목으로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고, 조씨가 시민단체를 이용해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검찰청과 변호사 사무실 앞 등에서 피켓시위를 비롯한 실력행사를 대신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모 씨는 피해 해결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가로챈 사실이 없고 검찰청과 변호사 사무실 등 앞에서 피켓시위를 비롯한 실력행사를 대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 밝혀졌습니다.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5년 1월 9일 21:00)

내 용 :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시민단체 간부로 활동하면서 억울한 법률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채권 혐의로 사법개혁 관련 단체 간부 51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년 전부터 사건 또는 법률 관련문제를 호소해 오는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피해 해결 명목으로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자신이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검찰청과 변호사

합의사항

• 제 목 : 추후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2005년 1월 9일 「‘돈 받고 시위’ 시민단체 간부 구속」 제목으로 “조씨는 자신이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검찰청과 변호사 사무실 앞 등에서 피켓시위를 비롯한 실력행사를 대신해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조씨에 대한 재판 결과 조씨가 돈을 받고 피켓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12월 9일까지 「TV속의 TV」에 보도하되, 제목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방송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에 대한 나머지 추후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TV속의 TV」 프로그램 (2006년 11월 25일 12: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조합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가구공장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비료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남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중부일보 : (1) 『○○축협 폐기물로 비료 제조』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2면)

내 용 : (전략) 그러나 축협은 원목 톱밥 대신 인천의 D상사와 남양주 마석 M상사에서 가구공장 폐기물인 방무목, 가공목, MDF(중밀도섬유판) 등을 연간 비료 생산량의 60%인 9천여t을 구입해 비료를 제조했다. 특히 축협은 주배합 원료로 사용한 MDF 가루가 발암성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퇴비제조의 주원료로 사용했다.

(후략)

(2) 『○○군 ‘폐기물비료’ 목인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일자 1면)

○○축협(조합장 남○○)이 가구공장 폐기물로 축분비료 수십만t을 만들어 ○○군에 판매,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군은 수억 원의 톱밥 구입비를 별도 지원하는 등 목인과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략)

축협이 연간 구입하는 톱밥 1천200여 대 중 60%가량인 700여 대분을 M, D상사에서 구입해 비료를 제조하고 원목톱밥가격 기준으로 연간 1억 5천여만 원 등 6년 동안 10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30일자 2면 『○○축협 폐기물로 비료제조』, 11월 1일자 1면 『○○군 ‘폐기물비료’ 목인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축협이 원목 톱밥

대신 발암물질이 함유된 MDF 등을 포함한 가구 공장 폐기물을 구입해 비료로 제조하고 이를 농가에 10여 년간 제공했으며 OO군에 가구공장 폐기물로 만든 비료를 팔아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OO군으로부터 수억 원의 톱밥구입비를 지원받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구입하는 가구공장 톱밥은 전부 원목을 가공할 때 산출되는 톱밥으로서 방부목이나 MDF 가공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OO군과 OO축협 간에 특혜의혹이 있

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요청을 수
용할 수 없다. □

신청인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음 성 직)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1)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1월 7일 21:00)

내 용 : ▷앵커 : 2조 원대의 초대형사업이 서울 시장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내부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OO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이른바 ‘에스-비즈’ 사업,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 모든 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사업입니다. (중략)

그러나 철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도시철도공사가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략)

뒤늦게 이를 확인한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사 측에 시장과 의회의 동의없이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계약체결을 계획했던 도시철도공사와 OO 측의 핵심관련자들은 자리를 피했고 잘 모른다는 얘기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 : “아직 진행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된 사인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자 : 문제가 커지자 도시철도공사 측은 서울시장의 최종 승인을 받겠다고 물러섰습니다. (후략)

(2)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11월 9일 06:00)

▷기자 :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 전부를 특정 기업에게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는 이른바 에스비즈 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은 2조 원에 가까운 초대형사업의 운영권을 특정 기업에게 통째로 넘기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면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략)

이르면 이번 주 계약을 체결하려던 도시철도공사는 할 말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다. (후략)

(3)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1월 9일 21:00)

(전략) >기자 : KBS가 입수한 당시 인수위원회 사업보고서입니다.

광고와 임대사업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고 특정 업체에 네 개 노선 전부를 20년 동안 넘기겠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당시는 사업자를 공모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중략)

음성직 사장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9월 13일에 2차 보고를 합니다.

이때도 ○○ 리테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만 있을뿐 20년간 지하철 네 개 노선을 ○○에 모두 넘긴다는 대목은 역시 없었습니다. (중략)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이 이 사업의 핵심을 뻔 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음 사장은 묵묵부답입니다.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사무실을 잠근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중략)

서울시 주변에선 음성직 사장이 고의로 핵심내용을 뻔 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

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11월 14일 06:00)

(전략) >기자 : 지하철 5, 6, 7, 8호선 운영권을 특정업체에 장기간에 넘기는 이른바 에스비즈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감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집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문제의 사업의 핵심 내용을 빼고 보고한 경위와 배경입니다.

지하철 5,6,7,8호선 전부를 20년 넘게 한 업체에 넘기기로 사업자 공모 이전에 이미 확정됐는데도

왜 시장보고 때 누락했냐는 겁니다. (중략)

2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사업이 뭔가에 쫓기는 듯 성급하게 진행된 과정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우선협상의대상자로 선정된 ○○ 리테일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들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사가 음성직 사장이 중요 사업내용을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1월 7일 「KBS뉴스9」 프로그램 “서울지하철 ‘2조 사업’ 전면 중단” 11월 9일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지하철 운영권 특정업체 매각 재검토” 및 「KBS뉴스9」 프로그램 “도철, 서울시에 핵심내용 보고 누락” 및 11월 14일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서울시 ‘지하철 운영권 사업’ 특혜 운영 감사” 제하의 보도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 전부를 특정 기업에게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는 이른바 ‘S-Biz 사업’을 서울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추진했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서울시장에게 핵심 내용을 빼고 보고하는 등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에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S-Biz 사업’과 관련해 이미 4차례에 걸쳐 서울시장에게 보고했으며 5, 6, 7, 8호선 및 전동차, 148개 역사 운영권 전부를 특정업체에 매각한다는 보도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특수법인을 선정, 148개 역, 1,561량 전동차를 활용해 임대, 상가, 광고 등의 부대사업만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서 도시철도 운영권을 전면매각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1개 사업자에게 20년간 통째로 넘기겠다” 등의 핵심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들이 원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2006년 8월 20일 22:40)

내 용 : ▷유○○ 기자 : 이제 겨우 다섯 살 된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징그러울 정도로 엄마 몸을 구석구석 핥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갑내기 아이는 어른들의 성행위를 흉내냅니다. 그런가하면 여섯 살 사내아이는 누군가 커다란 주사기로 자신을 자주 아프게 했으며 부엌칼을 들고 범인을 잡으러 가자며 흥분합니다. 이쯤 되면 당황하지 않을 부모들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원생의 어머니 : 애가 갑자기 여기로 뛰어가더니 이 칼로 “엄마 이거 들고 죽이러 가자 엄마 빨리 가자” 막 신발을 신는 거예요. 애가, 그래 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거는 엄마가 부엌에서만 쓸 수 있는 칼이라고.

▷유○○ 기자 : 예전엔 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올 3월부터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어린이집을 함께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설마하며 데려간 아동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인형을 내주자마자 바지를 벗겨버립니다.

▷어린이집 원생 : 애 누구예요?

▷상담원 : 개 운전하는 아저씨데? (중략)

▷유○○ 기자 : 인형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사라는 말에 강렬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중략)

▷상담원 : ○○이가 운전기사 아저씨 ○○를 깨

물었어?

▷어린이집 원생 : 네 엄청 많이 그랬어요.

▷유○○ 기자 : 아이는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략)

▷유○○ 기자 : 엄마는 그저 한바탕 꿈이었으면 할 뿐입니다.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 된 것만 7명, ○○도 그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집 원생 : 따라 아저씨가요 ○○ 만졌어요.

▷유○○ 기자 : 따라 아저씨가 누구야?

▷어린이집 원생 : 운전사 아저씨가요.

▷유○○ 기자 : 아이의 진술이나 행동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보입니다. (중략)

▷유○○ 기자 : 어린이집 원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펄쩍 뛩니다.

▷유○○ 기자 : 담당 교사는 변태적인 성행위도 강요도 전면 부인 했습니다.

▷유○○ 기자 : 운전사가 아이들을 성추행 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이 지난 8월 20일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도대체 무슨 일이’ 제하의 방송을 통해 모 어린이집 어린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라 밝힌 제보자 측에 치우쳐 마치 모 어린이집 소속 직원들이 성추행에 가담하고 이를 묵인한 것처럼 방송해 모 어린이집 원장 및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수
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공천헌금을 받아 한나라당에서 출당조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성 범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세계일보 : 『‘제 식구 감싸기’ 병 도진 한나라당』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7일자 23면)
내 용 : (전략) 한나라당의 처신은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왜 기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최연희 의원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성범 의원을 탈당시키고, 수해골프 과문에 휘말린 홍문

중 전 경기도당 위원장을 제명했는가. 문제가 된 인사들을 당에서 내보내지 않을 도리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11월 17일 『‘제 식구 감싸기’ 병 도진 한나라당』 제하의 사설에서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성범 의원을 탈당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박성범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탈당시킨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해 본인 의사에 따라 탈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으나, 박성범 의원은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보수단체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1월 8일 21:00)
내 용 : ▷앵커 :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자금지원과 취업보장을 내세워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측은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략)

▷기자 : 부산의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현직 학장의 연계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영대학 학장이자 보수단체 회원인 강모 씨를 통해 비운동권 후보와 접촉한 뒤 자금 지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부산 D대학 비운동권 총학 후보 : “학장님이 그 사람을 먼저 만났거든요. 후원자를 연결 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1월 8일 「KBS뉴스9」 프로그램

‘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뉴라이트 개입 논란’ 제하의 방송에서 보수단체가 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하면서 “부산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현직 학장의 연계 의혹이 제기” 됐으며 “○○대학 학장이자 보수단체 회원인 강모 교수를 통해 비운동권 후보와 접촉한

뒤 자금지원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부산 모 사립대 ○○대학 현직 학장으로 소개된 강모 교수는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한 자금 지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CNBNEWS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CNBNEWS : 『대선후보 진영 고정간첩 활동 중』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7일자)

내 용 : 최근 적발된 386 세대 중심의 간첩단 사건의 핵심인 ‘일심회’.

이들 조직과 연계된 인사들이 지금 일부 대통령 후보 측근에서 참모로 활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CNB 저널’은 지난 광역지자체의 부지자체장을 지낸 J씨등의 주변인물에 대해 공안당국이 극비리에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의 측근 참모로 활동중인 J씨는 80년 Y대 학생운동권출신으로 이번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S씨와 같은 대학출신으로 미 문화원사건을 주도한 삼미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들 두 사람은 구속되기 전까지도 자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광역시의 주요 기밀이 북측으로 노출된 것으로 공안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대선후보의 참모로 활동 중인 J씨는 대선후보에

게 386 출신들을 소개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부시장에 올랐으며 부시장의 직책을 갖고 일부 좌익 인사들을 만났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7일자 『대선후보 진영 고정간첩 활동 중』 제하의 기사에서 ‘CNB 저널’의 기사를 인용, J씨가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J씨는 일심회와 연관이 없으며, 공안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선후보에게 386 출신들을 소개해주면서 부시장에 올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 전 ○○정무부시장 관련 정정보도
- 본 문 : 본지는 지난 11월 17일 『대선후보 진영 고정간첩 활동 중』 제목의 기사에서 ‘CNB 저널’의 창간호 기사를 인용, “최근 적발된 386 세대 중심의 간첩단 사건의 핵심인 ‘일심회’ 조직과 연계된 인사들이 일부 대통령 후보 측근에서 참모로 활약 중이며, 광역지자체의 부지자체장을 지낸 J씨

등의 인물 주변에 대해 공안당국이 극비리에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 정무부시장을 지낸 정 ○○씨는 ‘일심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간첩단에 연계되어 활동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제목을 2006. 11. 30.일 09:00시부터 2006. 12. 1일 24:00시까지 CNBNEWS 초기화면(<http://www.cnbnews.com>)에 접속 후 모니터 상에 처음 나타나는 화면)에 게재하되, 제목

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게재시한이 지난 후에도 기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각각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CNBNEWS : 『정정보도-정○○ 전 ○○정무부시장 관련』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30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 ○)

피신청인 : CMB 광주방송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CMB광주방송 : 「시사포커스 열린광주」 프로그램 (2006년 9월 24일 08:00, 14:00, 21:00
2006년 9월 25일 08:00, 14:00, 20:00
2006년 9월 26일 11:00, 17:00, 23:00
2006년 9월 27일 09:00, 15:00, 21:00
2006년 9월 28일 08:00)

내 용 : (전략)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수도관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방송이 나간 후 해당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다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도관 교체공사 금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주민들에게 공고했으나 현재는 6억 3천만 원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 금액이 갑자기 1억 8천만 원이나 차이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치회 측은 처음 공사금액을 책정할 때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책정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중략)

▷질문 : 네. 공사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같은 조건의 모델이 없어 공사비용을 업체에 의해 결정했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그런데 공사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에서든 문제가 있다면서요?

▷답변 : 네. 공사 입찰공고와 현장 설명회 때 제시했던 고가수조라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부스타라는 방식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 업체로 최종 선정돼 현재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 자치회가 한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서를 보면 공사범위는 각동 입상관 입하관 입상분기관, 지하횡주관 옥외 지하매설 기계실 급수 설비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 부분은 고가수조 방식으로 입찰을 하라는 내용이며 부스타 방식을 뜻한다면 입상관이라는 명칭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치회가 입찰공고엔 분명히 고가수조 공법을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입찰참가업체들은 전부 고가수조 공법으로 입찰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사에 선정된 곳은 부스타 방식을 제시한 업체로

결정된 것입니다. (중략)

▷질문 : 네. 그렇다면 공정한 방법을 통해 공사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사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답변 : 네. 자치회와 관리사무소 측은 공사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공사를 위해 감리사를 선정했는데 감리사가 고가수조 방식보다는 부스타 방식이 실용적이고 공사비가 1억 2천만 원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입찰공고 때 제시한 공법이 아닌 부스타 방식으로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와 관리사무소 측은 현장 설명회에서 부스타 방식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다른 입찰업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사를 선정 후 감리사가 부스타방식이 저렴하고 실속이 있다고 했다면 자치회가 1차로 선정한 입찰참가업체에 부스타공법으로 견적서와 설계도를 다시 제출 하라고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부스타 방식을 제시한 업체로 공사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탈락한 다른 업체들은 처음부터 동일한 공법과 조건에서 입찰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결과에 승복하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찰방식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냐며 주장했습니다. (중략)

▷질문 : 현장 설명회에서도 입찰 업체들로부터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서요?

▷답변 : 네, 공사 현장 설명회에 1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 현장 설명회에서 업체들은 발주처가 제시해야 할 설계도와, 자재의 재질, 시방서부분이 빠져있다고 이의를 제기 했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발주처가 각 입찰업체에 공평하게 제시해 모든 업체가 같은 조건에서 입찰을 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현장 설명회에 이 부분이 생략돼 있다고 입찰참가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자치회가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 후 각 업체에 다시 통보를 하기로 했지만 결국 다른 업체들에게는 전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중략)

▷질문 : 그렇다면 최종 공사업체로 선정된 공사 업체는 어떠한 업체인가요?

▷답변 : 우선 자치회와 관리사무소가 공사입찰

참가자격으로 자본금 5억 이상, 최근 공사 실적은 10억 이상인 업체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회가 보유한 업체별 제출 서류심사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 업체는 자본금 5억에 최근 공사 실적이 39억 9천7백만 원이라고 입찰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작성한 광주지역 시공능력순위표를 보면 이 업체는 전체 141개 회원사 중 최하위로 공사시공능력이 0 원인 상태의 업체였습니다. 반면 입찰에 탈락한 업체 중에는 공사시공능력이 12위로 약 56억 원, 50위로 약 18억 원의 공사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우수한 공사능력이 있는 업체를 제쳐두고 최하위에 있는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됐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치회나 관리사무소 측은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밖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중략)

▷질문 : 이렇게 자치회와 관리사무소의 운영방법들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자치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자치회의 세력으로부터 음해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청회 개최 요구도 묵살 당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활동하고자 해도 그 대표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사실상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이젠 선뜻 나서서 주민들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략)

▷질문 :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나요?

▷답변 : 네, 이런 아파트 분쟁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에는 각 자치단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광주 다섯 개 자치구 가운데 분쟁조정 기구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가 사유재산이어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해 아파트 자치회의 관리규약마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마음대로 수정하며 애매모호한 규약으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동대표의 정원은 표기돼있지만 선출하는 방법은 표기되지 않아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동 대표를 선출했는지 자치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회

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뽑힌 동대표 중에서 다시 동대표가 선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관계인 자치회장과 동대표가 자연스럽게 결탁해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방영한 「시사포커스 열린광주」 ‘광주 H아파트 자치회 비리 의혹 공동재산이 새고 있다’ 제하의 방송에서 H 아파트 자치회가 수도권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예정 금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공사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 당시 ‘고가수조’ 방식을 입찰업체에게 주문했으나 실제로는 공사 시공 능력이 없고 ‘고가수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입찰한 특정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특혜 및 담합 의혹이 있고 H 아파트 자치회의 아파트 관리 및 자치회 운영이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반발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H 아파트 자치회가 각종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공사 예정 금액이 주민들에게 공고한 것과 다른 것은 공고 금액에 부가세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합산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합산할 경우 자치회가 공고한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공사 방식을 ‘고가수조’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턴키’ (Turn-Key) 방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택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사 실적과 관계없이 참가자격 조건에 맞고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라면 공사계약을 맺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선택한 것에 있어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H 아파트 자치회가 편법과 부정,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협박하고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반발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

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CMB광주방송은 2006년 12월 17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다음 내용을 3회 이상 방영한다.
 - 내용 : ○○2차아파트 수도권 교체공사 관련한 내용 중 신청인의 입장
-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균형있고 적절한 시각에서 보도하되 1회 방송시간 25분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도록 한다. 방영 2~3일전에 신청인 측에 통보한다.
- 방송 초입부에 프로그램의 제작 경위를 충분히 밝힌다.
- 위 방송을 방영하지 않을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이 건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CMB광주방송 : 「시사포커스 열린광주」 프로그램 (2006년 12월 24일 08:00 외 16회)

내 용 : (전략) 지난 9월에 저희가 ○○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자치회의 운영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문제점들을 제보해와 관련 내용을 방송했었는데요, 당시 방송내용에 자치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 아파트 자치회가 반론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중략)

답변) 네, 저희가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송했던 ‘광주 ○○구 H아파트 자치회 비리 의혹, 공동재산이 새고 있다.’라는 제목의 방송내용에 대해 광주 ○○구 H아파트 이○ 주민자치회장이 본 방송사의 보도내용은 업체선정에 불만을 품은 탈락업체와 일부 주민의 허의제보에 기초한 보도이며 주민자치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반론보도를 요청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CMB광주방송에서는 현 주민자치

회와 현 자치회를 불신임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있고 적절한 시

각에서 보도하고자 광주 ○○구 H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후략) □

신청인이 시청 구내이발소에서 불법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3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광주드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광주드림 : (1) 『시청에 파고든 불법 영업』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5일자 1면, 2면)
내 용 : ○○시청 구내 이발소에서 버젓이 무자
격 안마 행위가 이뤄지고, 칸막이 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행정기관 내에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불법
이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후략)

(2) 『“도덕적 불감증 놀라워라”』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6일자 4면)
(전략) ○○시당은 논평에서 “시청 구내 이발관
에서 버젓이 무자격 안마행위가 이뤄졌고, (중략)
그는 또 “이발소 업주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
임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박광태
광주시장도 공식적으로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염미봉 대표는 “시청 지
하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
느냐”며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그것
도 시청 지하 건물에서 불법 안마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중략)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시민들은
외면하면서 자신들은 버젓이 불법 시설을 갖춰 놓
고 안마를 받았다는 것은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지는 지난 11월 15일자 1·2면 『시청에 파고
든 불법 영업』 및 16일자 4면 『“도덕적 불감증 놀
라워라”』 제하의 기사에서 ○○시청 내 구내이발소
가 밀실을 차려놓고 불법 안마영업을 한다는 내용
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시청 구내이발소에서
불법 안마 영업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판매장 이전 집단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6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 철 두)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0.
처리결과 : 합의 (반론)
취 하 (정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후」 프로그램 (2006년 11월 2일 23:40)

내 용 : ▷기자 : 저희 인고지신 게시판에 올라온 제보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디지털 산업단지 내에 금천패션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계신 상인이 올린 제보입니다.

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단하고 한 쇼핑몰 업체 때문에 이곳에 중소상인들이 위기에 내몰렸다는 내용입니다. 제보내용을 확인해 보러 갔습니다.

▷제보내용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내 전시장매장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타 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불법판매장을 합법화, 양성화하기 위하여 '03년부터 추진된 "판매장 이전 집단화사업"이 당초의 취지를 잃어버린 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특정부지제공업체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중소 참여업체에게는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어 제보합니다. (중략)

▷기자 : 사실 이 금천패션타운은 실제로 그동안 불법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산업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옷을 파는 상업시설은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단 측에서 단속도 했지만 중소기업체들의 생존하고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까 일종의 방임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바에야 아예 한곳에 모아서 집단화 시키고 이곳을 패션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자 이렇게 공단과 업체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참여업체사장 : "이전 집단화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이전을 집단으로 같이 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한 곳에, 한 부지에 특혜를 주고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 : 자, 특혜는 무엇이고 갑자기 일반분양

은 또 무엇일까요? 애초에 사업이 논의될 때는 공단지역에 큰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두 업체가 두 개의 쇼핑몰을 짓고 나머지 업체가 여기에 입주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곳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쇼핑몰을 짓게 됨으로써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보게 됐다는 거죠. 약 2천평 남짓한 땅을 산업단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받아냈으니까 그런 주장이 제기 될 만도 하지요?

▷기자 : 더군다나 기존에 업체들을 우선 입주시키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모든 점포를 일반분양 하려 한다고 하니까 기존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지난 11월 2일자 「뉴스후」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판매장 이전 집단화사업'이 당초의 취지를 잃어 버린 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특정부지 제공업체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중소 참여 업체에게는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인터넷 제보 내용의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판매장 이전 집단화사업'은 그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점과 당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을 감안, 당면 현안 해소를 위해 위법 의류판매장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 곳으로 이전시켜 집단화하고, 기존공장은 당초 산업단지의 목적에 맞게 공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져 특혜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관련 반론보도

• 본 문 : 지난 11월 2일 「뉴스후」에서 보도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판매장 이전 집단화사업’ 내용과 관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판매장 이전 집단화사업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난립한 의류판매장들을 한곳으로 이전·집단화시키는 사업으로서, 관련 법규 및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업체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 12. 9일 MBC-TV 「TV속의 TV」 프로그램 종료멘트 직전에 방송하

되, 진행자는 통상 속도로 낭독하고, 낭독 중에는 제목(서울디지털산업단지 관련 반론보도)을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조정대상기사에서 보도된 화면을 함께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TV속의 TV」 프로그램 (2006년 12월 9일 12: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분양한 상가에 부실시공 및 분양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서울일보 : (1) 『상가 분양 사기, 투자자만 피해』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상가분양에 따른 과장, 허위 광고와 이에 따른 피해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미에서도 분양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의 근린상가 ‘○○○’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분양업체에 사기당했다”며 계약 취소는 물론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중략)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분양업체인 ○○○은 상가 4층에 ○○시네마가 입점하니 영화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슈퍼마켓 등에 투자하면 높은 투자 가치가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지난해 10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상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 및 분양업체인 (주)○○○과 위탁경영 관계에 있는 ○○시네마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구입해 상영관으로 입장하는 관람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하는 등 횡포를 부린다는 것.

확인 결과 ○○시네마는 ‘자신들이 운영 판매하는 식음료 외 외부 음식을 절대 반입 금지한다’는 문구의 표지판을 매표소 및 상영관 입구 곳곳에 설치, 관람객들의 거친 항의와 반발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가 하면 일부 관람객들은 매점 등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분양업체는 슈퍼마켓에서 취급, 판매하는 상품이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되는 상품들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투자자를 현혹, 애당초 무리한 계약을 중용했다는 것이다.

(2)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2일자 사회면)

(전략) 당시 감리를 맡았던 ○○건축이 사용검사 관련서류 등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미시로부터 허가받았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후략)

(3) 『구미 ‘○○○’ 건축물 ‘부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8일자 사회면)

사기분양과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주)○○○의 근린상가 '○○○'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건축물 부실 시공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중략)

이에 따라 입점주들은 ○○○에 사실을 알리고 경비를 부담하더라도 진단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사기분양 의혹으로 시작된 파행이 결국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선택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중략)

검사결과도 주목된다.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은 책임기술자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제거와 재시공, 피복두께 부족부분 콘크리트 덧치기, 콘크리트 표면의 도장 등을 비교 검토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강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지는 지난 9월 11일, 9월 12일 및 10월 28일자 사회면에 『상가 분양 사기, 투자자만 피해』, 『감리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구미 '○○○' 건축물 '부실'』 제하의 기사에서 (주)○○○이 분양하는 건물의 분양, 준공과정 및 구조상 하자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분양절차 및 감리 관련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준공된 건물의 안전진단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0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Q채널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1.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기다렸다 꼬셨죠 그래피티 같이하자.

-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죽은 친구들과 ○○ 사진, 일본 방송 모습, -

▷김C : 그리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 미순의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오는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친구 4명을 잃었고 ○○씨는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보도내용

Q채널 : 「휴먼스토리 레인보우」 프로그램 (2006년 10월 30일 23:00)

내 용 : ▷김C : 몸은 불편하지만 누구보다 왕성하게 그래피티 디자인 업체를 꾸려가는 형제같은 친구 ○○씨입니다.

▷지△△ : ○○라는 친구가 어렸을때부터 학교의 영웅이었어요. 되게 멋있는 친구라 인기두 많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강했던 친구 같아요.

그 친구 나오길 기다렸다가 그래피티 한 사진들을 몇장 준비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보여주면서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사건 방송은 지난 10월 30일 「휴먼스토리 레인보우」 프로그램 '세상을 향해 쏴라' 제하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신청인이 거부의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은 신청인의 모습과 과거사진들을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당시 사고로 사망한 친구들의 사진과 잘못된 사고 경위를 소개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중앙방송 주식회사(Q채널)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문 연
조정대리인 최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00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2006년 12월 15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
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6. 11. 30.

□

비전문의들의 성형 시술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임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44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보도내용

Y T N : 「YTN뉴스」 프로그램 (2006년 9월 7일
15:00)
내 용 : 〈2006서울조정441의 보도내용 참조〉

피신청인 주장

공익적 목적의 보도이며 보도로 인해 신청인 단
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손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비전문의들의 성형 시술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임 ○ ○)
2. 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오늘아침」 프로그램 (2006년 9월
8일 08:48)

내 용 : (전략) ▷앵커 : 강남 압구정 쪽은 성형
천국이랍니다. 근데 부작용 때문에 요즘 많이 시끄
럽다구요?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강남 압구정 일대에는 한 건물 건너 성형외과 간판이 보일 정도로 아주 성형외과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만큼 성형사고도 많다고 합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성형부작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중략)

▷리포터 : 그렇다면 왜 이런 성형부작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을까요?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을 진료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민3 : 저는 다 전문가가 한다고 믿었는데, 여태까지...

▷시민1 : 저는 그 부분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도덕성이 의심되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리포터 :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강남 일대에 성형외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여부를 문자 대답을 회피하면서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말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중략)

▷리포터 : 또 다른 병원에서도 역시 간호사의 말을 통해 강남일대 비전문의 성형외과의 실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OO성형외과 관계자 : 그러니까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 성형수술 받으시더라도, 그냥 의사도 있잖아요. 전문의 과정을 안 거친 분들이 많이 개원해서 성형외과 걸어놓고 하시거든요.

▷취재기자 : 근처에도 있어요?

▷OO성형외과 관계자 : 네.

▷취재기자 : 간판 보면 모르나요?

▷OO성형외과 관계자 : 간판 보면 절대 몰라요. 사실 불법이거든요. 자기 전문의 아니면서 성형외과 하면 다 불법인데...

▷리포터 :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문의와 비전문의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건데요.

▷김OO(성형외과 전문의) : 전문의끼리도 천차만별의 실력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은 선생님들은 어떤 근거로 또 어떻게 성형수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의문시 되는 입장입니다. (중략)

▷리포터 : 네. 강남 압구정동 일대 성형외과 세

곳 중 한 곳은 비전문의가 시술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만큼 부작용의 우려가 크니까요. 소비자들이 잘 알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포터 : 네. 요즘은 고등학교 선물로 쌍꺼풀 수술해 드리고 아버님 댁 환갑선물로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할 만큼 보편적이 됐기는 하는데, 이렇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비전문의들도 등장하고 뭐가짜 등장해서 이런 피해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형외과 잘못된 거는 참 구별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원인도 살피기가 어려워서 의료분쟁으로 가는 게 많은데요. 몇몇 의사들에 실수로 생긴 의료분쟁은 오히려 제대로 된 전문의들께서 구체적으로 보상액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만드셔서 자정운동도 펼치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44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1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44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신청인2가 요구한 손해배상액

사건 방송이 지난 9월 8일 「생방송오늘아침」 프로그램 '죽음을 부르는 성형부작용' 제하의 내용을 방영하면서 신청인2의 병원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현행법상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을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신청인2가 비성형외과 전공의로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성형부작용과 관련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등으로 인해 신청인2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

비전문의들의 성형 수술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3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6년 9월 19일
23:05)

내 용 : (전략) ▷이○○ PD : 안녕하십니까? 이○○입니다. 외과 의사가 보톡스 수술을 하고, 또 산부인과 의사가 모발 이식을 하는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기가 들면 내과 전문의가 치료하고,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그리고 이가 아프면 치과 전문의가 치료하는 것이 의사에 대한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내용은 이런 우리의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성형이 돈벌이가 되면서 타과 전문의들이 너도나도 성형외과로 바꾸어서 개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까지 산부인과 의사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성형외과가 돼서 성형수술을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런 행위가 위법은 아닌지 또 의료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는지 박○○ PD가 취재 했습니다. (중략)

▷PD : 그런데 가족들을 더 황당하게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수술했던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 분명 성형외과라고 돼있고 명함도 성형외과인데 의사만은 산부인과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전○○(가명) 성형수술 피해자 : 몰랐죠. 성형외과라고 돼 있었죠. ○○○ 성형외과... 기가 막혔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남의 얼굴을 이렇게... 고름 들었다고 췌고, 고름 들었다고 췌고... 치료 할 줄도 모르고... (중략)

▷PD : 그렇다면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어떻게 성형외과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의사 : 제가 수술을 좀 하니깐 그쪽(성형외과) 가서 같이 좀 한건 있죠.

▷PD : 성형외과는 어디서 좀 배우셨어요?

▷의사 : 네. 친구하고 좀 같이 하면서 좀 하게 됐죠.

▷PD : 친구가 성형외과를?

▷의사 : 네

▷PD : 처음 하실 때는 어디서?

▷의사 : 처음에는 같이 했죠. 친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배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깐 큰 문제가 없죠.

▷PD :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현재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PD : 다시(전문 과목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의사 : 그렇죠. 이쪽이 자기 분야니까 낫잖아요. 편하잖아요. 또(성형외과) 사고가 많이 나는 분야니까... 그쪽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분야더라고 해 보니까 여기야 그렇게 뭐 있어요? 내 전공인데. (중략)

▷이○○ 프로듀서 : “누가 께매도 상관없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의료법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어떤 부문에 진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당연히 성형외과 전문의인 줄 알고 수술을 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의료계에서 조차 비성형외과 전문의의 성형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 혹시 성형외과 진료를 받고 있는 시청자가 계신다면, 여러분은 혹시 그 의사가 정말 성형외과 전문의 인지, 아니면 산부인과 전문의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PD : 이른바 대한민국 성형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거리,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28%, 서울의 60%가 이곳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성형외과 전문의의 비율은 어느 정도 일까? (중략)

▷이○○ 성형외과 전문의 : 지금 ○○시내에 다섯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비전문의죠. 그러니까 1대 1 이죠. 비율이...

▷PD : 운영 면에서 타격을 받으시나요?

▷이○○ 성형외과 전문의 : 타격이 크죠. 그렇지 만 어떻게요. 의료법상 자기네들(비성형외과 전문 의)을 말릴 수가 없는 걸... (중략)

▷PD :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만든 대한미용외과학회, 30여 명으로 시작된 회원수가 5 년 만에 1,200여 명을 헤아려 성형외과 전문의 수 1,4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이○○ 프로듀서 : 우리는 의사가 환자에게 자 기가 성형외과 의사인 양 속이는 모습을 봤습니 다. 어쩌다가 우리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전 문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자 들이 실력보다는 전문의라는 자격증만 따지는 선 입견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선입견은 단지 선입견일 뿐일까요? 성형과는 무관한 의사들이 성형외과를 개업할 때 시술을 위한 교육과 충분한 임상 실험은 하고 환 자를 맞는 건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 아 봤습니다. (중략)

▷PD : 성형수술 강좌에 몰려 든 사람들, 최근 의료계에 영역파괴 바람을 타고 비보험 종목인 미 용 종목에 몰려 있는 한국 개원가의 현 주소를 보 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비만은 거의 전 과에서 취 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중략)

▷PD :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의원 10곳 중 3 곳에 경영난 극복을 위해 다른 과목으로 영역을 확대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비만 치료를 선택 했 다고 합니다. 국민의 제1차 진료를 담당해야 할 개 원의들이 의술이 아닌 기술의 무한 경쟁지대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중략)

▷이○○ 프로듀서 : 의사들이 다른 부분의 진료 를 할 때 법적으로 좀 규제를 하거나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PD : 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공공 의료체 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법이 개입 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별 의사의 선택을 법으 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이 의사로서의 윤리 의식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저 버리지 않는 방향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 PD :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런 식의 영역 파괴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PD : 다른 나라에서도 의료계에 영역 파괴 현 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곳으로만 쏠려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 습니다. 바로 그 안정된 의료체계와 인력 수급 문 제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정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44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44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피신청인 주장

양 측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했으므로 정정·반론 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세계기네스축제 조직위원장인 신청인이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영남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영남일보 : 『부산 기네스 축제 하루 앞두고 취소』 제
하의 기사 (2006년 10월 5일자 10면)
내 용 : <2006부산조정23의 보도내용 참조>

<2006부산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부산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연합뉴스 측과 기사송고계약하에 연
합뉴스 측이 작성한 기사를 받아서 그대로 전재했
을 뿐이다. 따라서 연합뉴스가 정정보도를 게재하
지 않는 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의 1대 주주가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넘기는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경인방송 (주) (대표이사 김 성 재)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시사저널 : (1) 『그는 정말 미국을 위해 일했나』 제
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6면)
내 용 : 지난 10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장에서, ○○○○ 회장이자 경인TV 1대
주주인 백○○ 씨가 미국 측에 국내 정보를 지속적
으로 제공해왔다고 폭로한 신○○ 전 경인TV 대표
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또 신○○ 씨가 비
밀 교육을 받았다고 지목한 사무실의 등기부등본
에, 미국 국방부에서 최고의 한국통으로 알려진 리
처드 롤리스 부차관보가 대표이사로 올라 있었던
내막은 무엇일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의 실체를 입
체적으로 추적했다. (후략)

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54면~57면)
(전략) 이처럼 잘나가던 그가 전혀 어울리지 않
는 일로 위기를 맞았다. ‘국내 정보를 미국에 넘겼
다’는 의혹을 받으며 ‘애국자’와 ‘매국노’의 갈림
길에 섰기 때문이다. 과연 그의 본모습은 무엇일까.
‘백○○ 의혹’이 세간에 공개된 것은 지난 10월
31일이다. 백희장과 함께 경인TV 대표를 맡고 있
던 신○○ 씨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에서 “백○○ 회장이 국내 여러 사람으로부터 정보와
문서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그가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
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폭로하며 관련 문건 두
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중략)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47번이나 문건을
보내온 D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46번째
까지는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
느냐”라고 백 회장을 힐난했다.

백 회장의 인맥·활동과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
은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이상엽 2차장이다. 국감장에서 백 회장
은 “경기경찰청장을 할 때부터 이상엽 씨를 알고
지냈다”라고 증언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의
인척인 이씨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경찰청
장을 지냈다. 신○○ 경인TV 전 대표도 “백 회장
은 국정원과 경찰 고위직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해

(2) 『‘백○○ 미스터리’ 누가 진실을 말하나』 제

놓고 있다. 이들로부터 수시로 정보 보고를 받고 있다고 여러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과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〇〇빌딩 1501호 사무실의 정체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이 차장이 백 회장과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국가 공무원들이 백 회장에게 국가 정보를 유출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넘어가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 쪽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백 회장은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김장환 목사의 소개로 차기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도 알게 되었다.

김〇〇 경인TV 부회장은 “백 회장이 사업을 한 지 40년이 넘는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알게 되는 것 아니냐.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전달했다는 신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백〇〇 의혹’과 관련해 주목되는 곳은 신 전 대표가 정보원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울 중구 소공동 〇〇빌딩 1501호이다. 백 회장이 자신에게 15층에 가서 미국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갔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 현황과 조직 체계, 한반도 주변 정세 흐름 등이 주된 교육 주제였다고 한다. 신씨는 “〇〇빌딩 15층에서 〇〇〇〇 해외담당 고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일대 일 교육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 등 우수한 대학을 나온 직원들이 정보도 수집하고 종합·분석·번역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인TV 대표에게 왜 이런 교육이 필요했고, 〇〇〇〇 회장은 왜 이곳으로 그를 보낸 것일까.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1501호의 〇〇〇〇 〇〇〇〇코퍼레이션은 컨설팅 회사이다”라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회사설립 목적이 ‘사업 개발 자문 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와 있었다. (중략)

하지만 이 사무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에서 드러난다. 대표이사인 리처드 P. 롤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반도 군사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상대인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이다. 신 전 대표는 국감에서 “백회장은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보를 잘 안다고

했고, 롤리스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인사가 〇〇〇〇 해외담당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사람 역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씨가 지목한 ‘〇〇 〇〇 해외 담당 고문’은 〇〇〇〇〇〇 배 아무개 사장으로 추측된다.

백 회장은 국감에서 “롤리스는 옛날에 사업관계로 알게 되었다. 최근에 만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〇〇빌딩 한 관계자는 “롤리스는 국방부 차관보로 가기 직전까지 1501호에서 일했다. 그가 배 사장과 식사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1501호를 매개로 한 백회장과 롤리스의 관계가 새삼 주목되는 이유다. (후략)

(3) 『사무실 주인은 롤리스 부차관보였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58면~60면)

(전략) 흥미 있는 것은 리처드 P 롤리스를 설명한 부분이다. 넬슨보고서는 리틀 테이블 4인방 중에서 으뜸가는 한국통으로 롤리스를 꼽으며 “그는 자체적으로 코리아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썼다. 코리아 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연구팀이 있다는 뜻이거나, 자체 첩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할 뿐이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그 ‘코리아 팀’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백〇〇 〇〇〇〇 회장이 수집한 한국 정부의 동향 정보가 바로 롤리스 부차관보를 통해 미국 정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넬슨 리포트의 그 코리아 팀과 같은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서울 한복판에 ‘롤리스 코리아 팀’이 존재했던 것이다. (중략)

제브 부시는 과거 〇〇〇〇 미주 지사에 근무하며 백〇〇과 인연을 맺었다. (중략)

테레제 샤향이 롤리스 그룹의 타이완 책임자라면 한국 쪽 책임자는 과연 누구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사안이다. (중략)

배 아무개 씨는 ㄱ사의 사장인데, ㄱ사의 사무실 주소가 〇〇〇〇〇〇 사무실과 같은 소공동 〇〇빌딩 1501호다. 배사장이 바로 신〇〇 씨가 지목한 백〇〇 사장의 해외고문일 가능성이 높다. (중략)

백〇〇 회장이 모은 한국 정부 동향 첩보가 배 사장에 의해 번역되어 리처드 롤리스에게 보고된

다. 백 회장의 보고내용의 전모는 알 수 없지만, '넬슨 리포트' 같은 정보 보고와는 차원이 다른 첩보였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지는 지난 11월 21일자 6면 『그는 정말 미국을 위해 일했나』, 54면~57면 『'백○○ 미스터리' 누가 진실을 말하나』 및 58면~60면 『사무실 주인은 롤리스 부차관보였다』 제하의 기사에서 ○○○○ 회장이자 경인방송 전 공동대표인 백○○ 회장이 국내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넘기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백○○ 회장의 사진을 표지에 싣고 백○○ 회장의 지시로 신○○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가 ○○○○ 해외담당고문으로부터 정보원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백○○ 회장과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관계에 대해 보도하면서 백○○ 회장이 국내 동향 정보를 롤리스 부차관보와 ○○○○○○○○○○에 전달하고 있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백○○ 회장과 ○○○○○○○○○○, 롤리스 부차관보, 부시대통령 사진을 차례로 연결해 백'백○ 회장이 한국의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으며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제브 부시가 ○○○○ 미주지사에 근무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백○○ 회장의 얼굴을 담은 표지사진은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재된 것이며 백○○ 회장의 해외담당고문의 존재와 신○○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에 대한 정보원 교육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 ○○○ 배모 사장이 백 회장의 해외담당고문이며 배모 사장을 통해 롤리스 부차관보에게 한국 국가정보를 건네고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는 백 회장이 대표로 있는 ○○○○의 해외투자 및 시장진출 등을 조사해주는 컨설팅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제브 부시가 ○○○○ 미주지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백○○ 회장이 한국의 국가정보를 미국에 전달하는 '스파이' 일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넘기는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 (대표이사 백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시사저널 : (1) 『그는 정말 미국을 위해 일했나』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6면)

내 용 : <2006서울조정474의 보도내용 (1) 참조>

(2) 『'백○○ 미스터리' 누가 진실을 말하나』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54면~57면)
<2006서울조정474의 보도내용 (2) 참조>

(3) 『사무실 주인은 롤리스 부차관보였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58~60면)
<2006서울조정474의 보도내용 (3)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47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피신청인 주장

<2006서울조정474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474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이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넘기는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3) 『사무실 주인은 롤리스 부차관보였다』 제하
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58~60면)
<2006서울조정474의 보도내용 (3)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47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시사저널 : (1) 『그는 정말 미국을 위해 일했나』 제
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6면)
내 용 : <2006서울조정474의 보도내용 (1) 참조>

(2) 『‘백○○ 미스터리’ 누가 진실을 말하나』 제
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54면~57면)
<2006서울조정474의 보도내용 (2)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474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피신청인 주장

<2006서울조정474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 신문에 대통령이 발전기금을 내자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신청인 신문 구독 확장 운동에 동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정 태 기)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1.
처리결과 : 취 하

조선일보 : 『연재소설이 야해서 신문 끊는다는 청와
대』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7일자
A35면)

내 용 : (전략) 그런가 하면 정권에 호의적인 신
문을 위해서는 남의 눈도 개의치 않고 국민 세금
을 퍼붓고 맨발로 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대
통령이 월급을 떼 한겨레신문 발전기금을 내자 고
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그 신문의 구독확장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후략)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7일자 A35면 『연재소설이 야해서 신문 끊는다는 청와대』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월급을 때 한겨레신문 발전기금을 내자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그 신문의 구독확장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때 한겨레신문 발전기금을 내고자 했지만 한겨레신문이 이를 고사해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한겨레신문의 구독확장운동에 동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3일자 A2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7일자 『연재소설이 야해서 신문 끊는다는 청와대』라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월급을 때 한겨레신문 발전기금을 내자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그 신문의 구독확장운동에 동참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한겨레신문발전 기금을 내려고 하였으나 한겨레신문의 고사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한겨레신문측은 일부 공직자가 한겨레신문 구독확장운동에 참여한 것은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위원회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조작·왜곡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한 덕 수)

피신청인 : KBS-1TV
종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2.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KBS-1TV : 「시사기획 씬」 프로그램 (2006년 11월 20일 23:40)

내 용 : (전략) ▶한덕수 (한미FTA체결 지원위원장) : 자유무역협정이 총 이행이 되고 나면 이행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성장률은, 경제규모는 7% 정도 경제규모가 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중략)

▶나레이터 :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제가 한 작

업은 국책연구원이나 정부에서 주장한 수치를 똑같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재현을 했는데 재현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조작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거죠. 실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중략)

▶나레이터 : FTA 체결 직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미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FTA 이후 2.9%에서 4.09%로 크게 높아졌다는 정부의 설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취재팀은 먼저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FTA 이전, 이후로만 돼 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균을 낸 것인지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만든 국책연구소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채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 팀장) : 연대를 표시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걸 잘 모르겠네요. 연도가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나레이터 : 이번에는 정부와 국책연구소가 자료를 인용했다는 UN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캐나다 성장률 평균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캐나다의 경제성장률 평균을 낸 기간은 1994년부터 2000년 까지.

성장률이 높았던 기간에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친 2001년부터의 자료는 평균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해를 1994년으로 놓고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해는 1994년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FTA가 발효된 1989년부터 5년 동안 캐나다는 마이너스 성장과 0%에 가까운 성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FTA 이후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해는 누락하고 높았던 해만 계산해서 평균치를 조작한 것입니다.

▷홍○○(○○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 정부 보고서를 보면 기간설정이 전혀 안돼 있고 자기들이 유리한 기간만 평균을 내서 발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경제 분석의 기본도 안돼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레이터 : 취재진이 이처럼 캐나다 경제성장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정부 측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한덕수(한미FTA체결 지원위원장) : 굉장히 혼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캐나다는 89년이고 멕시코는 93년이고,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을 혼동시킬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레이터 : 정부는 FTA가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열쇠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멕시코 섬유산업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말한 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덕분에 멕시코의 섬유산업이 고도화되고 수출도 대폭 늘었을까.

그러나 멕시코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섬유산업의 실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한 섬유공장입니다.

섬유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쓰던 기계들은 방치돼 있고 여기저기 버려진 원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공장을 폐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최근에는 망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 공장을 새로 인수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중략)

2000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멕시코 섬유산업의 어려운 사정을 정부는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닐까.

2004년 국책연구소가 내놓은 FTA 관련 자료입니다.

멕시코 섬유산업의 붕괴 원인을 자세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FTA 이후 값싼 임금을 이용해 바느질을 하는 봉제산업을 특화했던 멕시코.

덕분에 잠깐 동안은 수출이 늘었지만 대신에 원단은 미국에서 사다 써야 하는 구조가 심화됐고 결국 인건비가 더 싼 중국과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 밀려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국책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안○○(멕시코 현지 섬유공장 사장) :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섬유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레이터 : 이처럼 멕시코 섬유산업이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멕시코 섬유산업이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자료만 제시하면서 모범적인 산업고도화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략)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캐나다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해 미국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심쩍은 통계치는 정부 자료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책연구소가 함께 펴낸 자료에는 FTA 체결 직후 호주의 대미수출 증가율이 1.5배나 높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호주의 대미 수출은 FTA 직후 2005년 한 해 동안 무려 2억 달러, 2,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자료에는 왜 호주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돼 있을까.

호주와 미국 FTA는 2005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 자료는 2004년에 FTA가 시작된 것처럼 연도를 바꿔치기해 버렸습니다. 유리한 통계치만 끌어내서 FTA 성과로 내세우는 또 다른 조작 사례입니다.

실제 통계가 이런데도 정부는 FTA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략)

▷한덕수 (한미FTA체결 지원위원장) :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고 철폐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의 통상마찰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제 좀 우리 수출업체들이 마음놓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나레이터 : 캐나다의 철강산업은 한때 미국보다 강력한 경쟁력으로 미국시장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캐나다의 철강산업은 미국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캐나다의 첨단 철강공장들은 이미 캐나다를 떠나 미국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목재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FTA 이후 미국은 캐나다 목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국의 목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FTA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하퍼 총리가 미국과의 FTA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자 그제서야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캐나다 목재업체들이 큰 손해를 보고 공장 문을 닫거나 미국으로 본사를 옮긴 다음이었습니다.

199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멕시코도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략)

우리 정부는 FTA가 체결돼 한국 기업이 미국에 더 많이 팔린다 해도 미국의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나석권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기획 총괄팀장) : M&A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고도화, 또 선진화에 각 업종별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레이터 : 그렇다면 제조업체의 절반이 넘는 51.8%를 외국에 팔아버린 캐나다는 어떤 선진 경영기법을 배웠을까.

캠코는 캐나다의 최대 가전회사였지만 하루아침에 공장이 폐쇄돼서 직원 800명이 한꺼번에 해고됐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제 다국적 유통기업에서 임시직을 전전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FTA 이후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캐나다 최대의 가전업체인 캠코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캐나다의 가전업체들이 미국과의 FTA 이후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제조업 직원들의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캠코를 사들인 미국의 거대기업 G사는 이익이 줄어들자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캐나다의 자존심이었던 가전회사 캠코가 미국기업의 이익 논리에 따라 조각나고 이리저리 팔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올 여름에는 캐나다에 진출해 있던 포드사가 생산라인 하나를 폐쇄해서 1,2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략)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리하게 각색된 일부 정보만을 제시하면서 감춰진 절반의 진실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한미 FTA만 체결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던 수치들은 과연 믿을 만한 것들일까요. 한국 정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10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7% 이상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대의 추가 성장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연구기관은 바로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에서 경제예측 프로그램을 들여와 FTA 효과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미국 무역위원회도 지난 2001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나온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고작 0.7%포인트.

같은 FTA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내다본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중략)

▷김삼정 (국회의원/FTA특위 위원) : 기업주가 계속 경제효과 분석에 사용한 근거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작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레이터 : 조작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보고서를 직접 만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미 FTA 담당 팀장은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연구보고서 작성을 책임졌다는 전직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작 의혹을 확인하자 자신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보고서는 분명 국책연구소에서 나왔지만 정작 관련 연구원들은 서로가 자신들이 만들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성자도 없이 의혹만 키워가는 국책연구소의 FTA 보고서.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도 이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과 FTA만 체결하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1월 20일 「시사기획 씬」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제하의 방송을 통해 정부가 캐나다-미국간 FTA 발효시점이 89년인데도 89년 이후 향후 5년간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캐나다-미국간 FTA 발효시점을 94년인 것으로 바꿔치기 했으며 FTA를 산업구조 고도화의 열쇠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멕시코의 섬유공장을 예로 들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책연구소가 함께 펴낸 자료에는 호주-미국 FTA 체결 직후 호주의 대미 수출이 1.5배 높아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호주-미국 FTA가 2005년 1월에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대미 관련 통계를 2004년에 FTA가 시작된 것처럼 연도를 바꿔치기 해 유리한 통계치만 끌어다 쓴 것이며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선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으나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위원장의 “FTA가 이행되면 경제규모가 7% 정도 늘지 않겠나”는 발언 뒤에 연이어 대학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수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덕수 위원장이 경제성장률 문제나 통상 마찰 문제에 대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듯 발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부는 캐나다-미국간 FTA 체결 시점이 1989년임을 명시하고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캐나다 경제성장률 수치를 제시하는 등 수치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적이 없으며 방송이 NAFTA와 관련해 보도한 멕시코 섬유공장 사례는 NAFTA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호주의 대미 통계 중 유리한 통계만 끌어다 쓴 것이라는 보도는 방송에서 인용한 보고서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해당 프로그램이 제대로 인용하지 않은 데서 나온 오해로 밝혀졌고 한덕수 위원장이 행한 인터뷰 내용 중 경제성장률 7%에 관한 언급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수치의 조작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한덕수 위원장이 “굉장히 혼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캐나다는 89년이고 멕시코는 93년이고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을 혼동시킬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한 부분은 취재진이 캐나다 경제성장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이 FTA를 체결한 시점과 캐나다가 NAFTA를 체결한 시점의 구분에 대한 답변으로 밝혀졌고 FTA가 체결되면 양국의 통상 마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발언은 FTA가 체결되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방송이 예를 든 몇몇 특정사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KBS가 지난달 20일 「KBS뉴스9」, 「시사기획 씬」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한·미FTA 각색된 미래’,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캐나다·미국 간 맺어진 FTA 효과로 인한 경제성장률 수치에 대하여 NAFTA 발효 시점인 1994년 전후의 실질 GDP성장률을 비교하여 산정한 것일 뿐 연도를 누락하거나 미·캐나다 FTA의 발효 시점인 1989년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호주·미국 간에 맺어진 FTA 효과와 관련한 정부 측 자료는 호주·미국 간의 FTA 발효 시점을 전후로 비교한 통계가 아니라 FTA 협상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일 뿐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FTA 효과분석은 미국무역위원회

가 이용한 정태분석프로그램과는 다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동태분석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어서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을 뿐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12월 18일 11시 40분에 방송하는 KBS-1TV 「씬」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아나운서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시사기획 씬」 프로그램 (2006년 12월 18일 23:4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성인오락실 상품권 업체 선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 신청인의 측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7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동 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정동채·이미경의원 측근 수사』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0일자 1면)
내 용 : ‘도박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열린우리당 정동채(鄭東采) 의원과 이미경(李美卿) 의원 측근이 사행성 게임물 심사 과정과 상품권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중략)

검찰은 지난해 정 의원의 측근 Y씨가 상품권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Y씨를 불러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이 업체와 접촉한 것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후략)

(2) 『정동채의원 측근 곧 소환 조사』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31일자 8면)

(전략) 검찰은 Y씨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권 업체 선정 과정 등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Y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Y씨가 정 의원을 대신해 업체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전 보좌관에 이어 사행성 오락사업 급팽창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의 측근까지 수사 대

상에 오름에 따라 이번 수사는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후략)

(3) 『‘정동채 장관’은 과연 몰랐나』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4일자 5면)

(전략) 검찰은 13일 정 의원의 측근 유모 씨에 대해 이번 주중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성인오락실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부터 최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유씨에게 상품권 업체로 지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경영 상태가 극도로 부실했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상품권 업체로 지정돼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동향 출신인 정 의원과 유씨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2002년 대선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보를 달리한 사람이다. 이후 유씨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를 정 의원의 최측근 인사로 파악하고 있다. 유씨는 국회 문화관광광위에서 6년간 보좌관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0년 5월 정 의원 보좌관을 그만뒀다고 한다. 유씨는 2002년 대선 무렵 정몽준(鄭夢準) 의원 캠프의 부대변인을 했지만, 최근 예술 관련 케이블TV의 사장을 맡는 등 자신의 ‘전공’ 분야로 되돌아왔다. 검찰은 유씨가 케이블TV 사장으로 가게된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물론 유씨가 정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개인적으로 돈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업체 측이 상품권업체 선정에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유씨에게 로비를 한 것이 아니라 유씨를 통해 그 ‘윗선’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문에 검찰도 “아직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후략)

(4) 『정동채의원 前 보좌관 사전영장』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8일자 8면)

(전략) 유씨는 상품권업체인 CS클럽코리아 측으로부터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7,000만 원과 법인카드를 받는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보좌관을 두 차례 지낸 유씨는 현재

문화예술 관련 케이블TV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의원 측과도 깊은 친분이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관계자는 “정 의원은 최근 유씨가 2002년 대선에서 다른 후보를 밀면서 유씨와 만난 적도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틀린 말이며 양측은 꾸준히 교분을 이어 왔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유씨를 정 의원의 최측근 인사로 보고 있으며, CS클럽코리아가 성인오락실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 정 의원이 직접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후략)

(5) 『정동채의원 측근 구속』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8면)

‘도박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일 상품권 업체로부터 1억 3,7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열린우리당 정동채(鄭東采) 의원 측근인 유○○(43) (주)예술TV 사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높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해 상품권 업체인 CS클럽코리아로부터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업체로 지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회사 법인카드 5,200만 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정 의원의 보좌관을 두 차례 지내고 국회 문화관광광위에서 6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점으로 미뤄, 유씨가 정 관계 인사들과 CS클럽코리아를 직접 연결시켜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후략)

(6) 『수천만원대 뭉치돈 또 유입』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2일자 8면)

‘도박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열린우리당 정동채(鄭東采) 의원의 측근인 유○○(43·구속) 예술TV 사장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의 뭉치돈이 여러 차례 유입된 단서를 확보했다.

유씨는 전날 상품권업체인 CS클럽코리아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

며, 유씨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자금 성격 등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지난 CS클럽코리아와 다른 상품권 업체들이 성인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이 넓은 유씨를 통해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추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씨의 구속영장에 “유씨는 정 의원 보좌관 정당의 주요 당직자, 정치관련 단체 간부를 지내고, 향후 국회의원 출마 등을 위해 꾸준히 인맥을 관리해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이 형성돼 있다”고 적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동채 의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30일자 1면 『정동채·이미경의원 측근 수사』 10월 31일자 8면 『정동채의원 측근 곧 소환조사』, 11월 14일자 5면 『‘정동채 장관’은 과연 몰랐나』, 11월 18일자 8면 『정동채 의원 前 보좌관 사전영장』, 11월 22일자 8면 『수천만원대 뭉치돈 또 유입』이라는 제하들의

기사에서 현재 구속수감된 유○○ 예술TV 사장을 정동채 의원의 보좌관을 두 차례 역임한 측근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정동채 의원의 측근으로 언급한 유○○ 예술TV 사장은 1996-2000년까지 정동채의원의 보좌관을 한 차례만 하였으며, 지난 2000년 5월 정동채 의원실에서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02년 대선 이후, 정동채 의원과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였고, 더불어 정동채 의원과 유○○ 예술TV 사장은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유○○ 예술TV 사장은 정동채 의원의 측근도 아니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일부 정정은 수용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지 않으면 정정 역시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국유지 불하 후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시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4.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시민일보 : 『국유지 불하 사기 ‘뽕 주의’』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7일자 18면)

내 용 : 최근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응으로 인신 구속과 더불어 당선무

효 형이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군수의 친동생이 국유지 불하를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말썽을 빚고 있는 ○○군수의 친동생이 “형이 군수이기 때문에 국유지 불하와 함께 용도변경은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또 다른 피해자와 더불어 군수의 직접 개입여부의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정○○ ○○군수와 경기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 권모 씨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3년 3월 ○○군 ○○면 ○○리에 소재한 ○○계곡 인근 토지 2,000여 평을 조경용도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이 체결된 후 ○○군수의 동생인 정모

씨는 “계약된 토지에 대해 불하 후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불하와 용도변경 등에 필요하다는 비용조의 금품을 2회에 걸쳐 800만원을 피해자 권씨에게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건네받은 정씨가 5~6개월이 지나도록 국유지 불하하는커녕 아무런 소식도 없자 피해자 권씨는 국유지 불하에 관한 모든것을 포기하고 정씨에게 지급한 돈을 요구했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7일자 18면에 『국유지 불하 사기 ‘뽕주의’』 제하의 기사에서 “〇〇군수 친동생 꼬임에 의정부 주민 피해”라는 부제로 〇〇군수 친동생인 정모 씨가 권모 씨에게 국유지를 불하해주고 불하 후 용도변경까지 해 줄 수 있다고 금품을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받았으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돈의 반환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대부계약의 사실도 없으며 군수동생은 전혀 관여하거나 알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〇〇군 국유지불하 사기’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 지난 11월 17일자 18면 『국유지 불하 사기 ‘뽕주의’』 기사에서 〇〇군수 친동생이 국유지를 불하해주고 용도변경까지 해 줄 수 있다며 의정부에 사는 권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〇〇군수의 동생인 J모 씨는 권모 씨를 알지 못하며, 권모 씨와 대부계약을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정보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시민일보 2006. 12월 1일자 18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〇〇군수 친동생~주민 피해’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민일보 : 『‘〇〇군수 국유지불하사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제이유그룹의 기업인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제이유와 10억대 거래 혐의』 제하

의 기사 (2006년 11월 25일자 A1면)

내 용 : (전략) 검찰은 또 박〇〇 경찰청 〇〇국장이 2004년 제이유그룹의 S기업 인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제이유그룹 측에서 최소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24일 “검찰이 이 비서관과 박〇〇감에 대해 사법처리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중략)

박 〇〇감도 “2002년쯤 제이유 측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4년까지 2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로 5,200만 원을 돌려 받은 게 전부다. S기업 인수 등의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2) 『제이유 ‘뇌물 게이트’ 뇌관 터지나』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5일자 A3면)

이○○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가족이 다단계업체 제이유 그룹과 10억 원이 넘는 돈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져 제이유의 정·관계 로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이비서관 측은 “청와대 비서관직 사의와 검찰 수사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으나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이비서관 외에도 박○○ 경찰청 ○○국장이 제이유 측에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제이유 로비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제이유 로비 수사가 진행된다면 경찰, 정치권 등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중략)

박○○ ○○감의 경우엔 2004년 제이유그룹 주주도 회장이 S사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M&A(기업인수·합병)가 성사된 뒤 고향 후배 법조인인 정모씨를 통해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나 박 국장은 “2002년에 제이유 측 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2004년에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박○○ ○○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5일자 A1면 『제이유와 10억대 거래 혐의』, A3면 『제이유 ‘뇌물 게이트’ 뇌관 터지나』 제하의 기사에서 박○○ ○○감이 2004년 제이유그룹의 S기업 인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제이유그룹 측에서 최소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박○○ ○○감은 제이유그룹의 S기업 인수를 도와준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고, 또한, 검찰에서 박○○ ○○감에 대하여 소환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가 신청인 언론사의 기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3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나주뉴스 (대표이사 김 경 식)
피신청인 : 광주MBC-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광주MBC-TV : 「MBC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6년 11월 16일 07:10)

내 용 : ▷앵커 : 저희 방송에서는 이번 주부터 “내고장 이모저모” 시간을 통해 다양한 시·군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언론 문제로 시끌시끌한 나주시 소식입니다.

김○○ 기자입니다.

▷기자 : 나주지역 한 인터넷 신문의 기자입니다.

나주시가 야적비 수매에 선심성 예산을 썼다는 의혹 보도가 연속된데 이어 나주시장의 검찰 소환 소식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야적비 수매는 단체장의 재

량권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내용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나주시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검찰에 고발한 이 해 당사자라며 언론이 기사도 쓰고 고발도 하나냐는 입장입니다.

해당 기자는 엄연히 시민 자격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기자의 현실 참여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 인터넷 매체는 사망한 신 시장 장모의 계좌가 비자금 계좌로 쓰인 의혹이 있다며 보도를 했습니다.

나주시는 참을 수 없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한 첫 고발건입니다.

그러나 해당 인터넷 매체는 신 시장이 기사를 쓴 기자를 폭행했다며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9만여 명의 소도시 나주시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는 모두 40여 명.

문제가 된 이 인터넷 매체는 기존 언론사들이 나주시의 부패를 제대로 꼬집지 못했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벌여 왔다고 주장합니다.

정당한 언론 취재에 대한 탄압인지 악성 보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인지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광주MBC-TV는 지난 11월 16일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내고장 이모저모’ 코너의 ‘언론과 전쟁, 누가 피해자인가?’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나주시장과 인터넷 매체 나주뉴스와의 갈등에 관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광주MBC-TV가 보도한 내용 가운데 나주시장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가 나주시장의 각종 비리의혹을 기사로 쓴 나주뉴스 박모 기자였다고 보도하면서 시장의 무혐의처분과 관련해서는 나주뉴스가 이를 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나주시장의 검찰 소환 조사 및 무혐의 처분에 따른 고발 당사자는 나주뉴스 기자가 아닌 다른 제3자로 확인됐으며, 나주뉴스는 나주시장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보도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광주MBC-TV의 왜곡된 보도로 나주뉴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공영방송의 보도 규칙을 준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방송된 화면과 멘트 내용을 동시에 보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는 보도였으므로 신청인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국유지 불하 후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경기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7.

처리결과 : 취 하

경기매일 : 『형이 군수라서...』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7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48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48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이 1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7.

처리결과 : 취 하

용의자를 알고 있는 성폭행 범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공소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성폭행 주장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공소권도 없어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흥기에 얼굴을 다친 환자가 신고를 꺼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보도내용

부산일보 : 『이런 일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3일자 8면)

내 용 :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가 1년만에 집 주변에 다시 나타나 치근덕거리자 흥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공소권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가 집주변을 서성거리자 흥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로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공원에서 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B(52)씨가 집주위를 배회하며 자신을 모독한다고 흥기를 휘둘러 얼굴에 16cm가량의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A씨는 “종교활동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1년 전 함께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바람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당시 수치심과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악몽같은 기억 속에서 고통받아 왔는데 B씨가 최근 집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 히죽히죽 웃는 등 빈정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역시 “피해자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11월 3일자 8면 『이런 일도...』 제하의 기사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가 1년만에 집 주변에 나타나 치근덕거리자 흥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가해자 A씨(37,여)는 “1년 전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바람에 B(52)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B씨는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A씨 주변에 나타나 치근덕거리거나 괴롭힌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흥기에 얼굴을 다친 B씨가 신고를 꺼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확인 결과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한 다음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부산일보 :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5일자 31면)

내 용 : 지난 11월 3일자 본보 8면 ‘30대 여자 1년 전 성폭행 당한 남자에게 흥기 휘둘러’란 제목

의 기사와 관련, 기사에서 B씨로 언급된 오모(52)씨는 “A(37)씨를 성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

며, “피해를 당한 후 병원직원이 아니라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1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부산KBS-1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7.

처리결과 : 취 하

3일 21:40)

내 용 : <2006부산조정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부산조정2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부산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1월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

신청인이 1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부산MBC-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7.

처리결과 : 취 하

11월 3일 21:00)

내 용 : <2006부산조정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부산조정2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부산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

신청인이 1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2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KNN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7.
처리결과 : 취 하

3일 20:20)
내 용 : <2006부산조정26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K N N : 「KNN뉴스아이」 프로그램 (2006년 11월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부산조정2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4구역 재개발 주민총회에서 ‘정비구역변경’ 안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4구역바른재개발실천연합
(대표 윤 ○ ○)
피신청인 : 주거환경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주거환경신문 : 『○○4구역 정비구역 변경 결정』 제
하의 기사 (2006년 11월 15일자 8면)
내 용 : ○○4구역이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주
민 동의 절차를 가졌다.

작년 5월 주거정비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4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
원장=김○○)는 그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
립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역내에 위치
한 도로 폐도 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로로 인해
분리되는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시키는지 여부
를 논의해왔다.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한 추진위는 부지 제
척에 대해 조합원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략)

현재 ○○4구역은 단지 안에 위치한 폭 12m 도
로로 인해 225번지 일대와 206번지 일대로 나뉘어
져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서울시 관련 부서 등으로

부터 도로 폐도 여부를 타진했지만 협의 결과 불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폐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하나의 사업계획이 아닌 두 부지를
대상으로 각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야한다.

협의 결과에 대해 추진위는 ‘두개의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시키느냐’와 ‘구역면적의 축소를 가져
오는 부지 제척을 택할 것인지’ 양자간에 적지 않
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김○○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 협의 결과 두 개
의 건축계획을 진행하는 것보다 면적은 축소되
지만 단일화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
견에 따라 206번지 일대를 제척하기로 결정됐다”
고 밝혔다.

이날 총회장에는 206번지 일대 주민들로 보이는
소유자들이 참석자들로 상당수 참석해 반대 의사
를 나타냈지만, 결국 투표를 통해 제척 여부를 가
리게 됐다. 오후 4시 30분경 안건에 대한 질의 응
답 및 심의를 마친 추진위는 투표를 시작했다. 투
표 결과 정비구역변경 및 축소 건에 대해 찬성
149명 반대 84명 등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동
의를 얻어 안건이 통과됐다. (중략)

도로 폐도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다. 정식 정
비계획안을 접수하기 이전 서울시 관련 부서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등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았다. 그 자문 결과 도로 폐도는 불가능하며, 단
지를 둘로 분리해 각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야한
다는 의견을 들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15일자 8면 『〇〇4구역 정비구역 변경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〇〇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행 도중 구역 내에 위치한 도로 폐도 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로로 인해 분리되는 분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시키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주민 총회에서, 206번지 일대를 제척하기로 한 안건이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정상 통과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〇〇4구역바른재개발실천연합은 해당 주민투표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정비구역 제외예정 대상인 206번지 일대 주민들과 주 사업지역인 225번지 일대 주민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206번지 일대 주민들만이 그 일대를 제척하기로 한 회의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아니며 225번지 일대의 일부 주민들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쟁점이 된 12m 도로의 폐도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폐도가 불가능하다는 〇〇4구역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의 발언은 최종확정된 것이 아니며 위 실천연합은 도로 폐도는 가능하며, 구청 도시관리국장 및 도시개발과장의 의견 역시 이에 일치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〇〇4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〇〇4구역바른재개발실천연합' 측 입장을 취해·보도하되, 〇〇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관할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상 필요에 따라서 206번지와 225번지를 구분하는 12M 도로의 폐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포함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주거환경신문 2면 내지 8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중 현 추진위원장의 인터뷰 제목("정비구역 변경 가장 합리적 선택")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분량은 조정대상기사 중 현 추진위원장의 인터뷰 기사 분량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거환경신문 : 『도로 폐쇄, 끊이지 않는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5일자 8면)

내용 : 〇〇4구역을 둘러싼 도로 폐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〇〇4구역 추진위는 지난 달 10일 총회를 개최해 구역 일부를 제척시키는 구역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제척 대상 부지 소유자들과 구역내 일부 소유자들이 제척반대를 위한, 대규모 민원을 준비하고 있어 정비구역 변경절차를 둘러싼 추진위와 반대 주민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〇〇4구역내 〇〇동 3가 206번지 일대를 제척시키는 정비구역 변경절차는 구역 내 위치한 폭 12m 통과도로의 폐도 여부로부터 시작됐다. 당초 추진위는 도로를 폐도해 하나의 건축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치른 서울시 사전 자문결과 도로 폐도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제척 여부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진위의 제척 방침에 반대하는 일부 225번지 주민들과 206번지 일대 주민들은 〇〇4구역 바른재개발실천연합(대표=윤〇〇)을 구성, 도로 폐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천연합 측 이〇〇 씨는 "성북구청 도시개발과장 등 관계자가 '도로를 폐도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도로 폐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밀어붙이는 것이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도 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실천연합 측 의견의 요지는 폐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 206번지 일대를 제척시키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도로 폐도가 최종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분리된 두 개의 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할 사항인데,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제외시키는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후략) □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신상을 노출하고 인터뷰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PD저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PD저널 : 『‘OOOO’ OO감독, 신입 PD 폭행』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2일자)

내 용 : SBS 드라마 <OOOO>의 현장에서 PD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40분에 일어난 폭행사건은 ‘OOOO’의 OO감독이었던 이모 씨가 촬영 진행과정에서 신입 PD에게 가한 것이라 충격이 크다.

폭행 피해자인 박모 PD는 “사건 직후 이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감독은 전투 장면을 위해 보조출연자 120명을 요청했으나 현장 사정상 80명의 보조출연자를 섭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작업을 중단하고 술을 마시러 내려갔다. 이런 이 감독의 돌출행동을 만류하던 박 PD는 오히려 이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에 SBS PD들은 즉각 OO감독의 사과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 감독은 “OOOO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 과정에서 물적·인적 지원이 미비해 전투 장면을 찍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심지어는 내가 전투 장면을 찍을 땐 조감독 한 명도 지원해 주지 않아 특히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감독은 “감정이 앞서 촬영현장의 선배로서 때린 것을 인정한다”며 “작품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PD저널은 지난 11월 22일자 『‘OOOO’ OO감독, 신입 PD 폭행』 제하의 기사에서 SBS드라마 ‘OOOO’의 촬영현장에서 일어난 PD 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 없이 기사화하고 개인 신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변인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기사의 주인공임을 인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실제 인터뷰하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 보도함으로써 직장 동료들로부터 편견을 듣고, 상사들로부터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받게 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습니다. 위 보도로 인해 업무상 손해와 더불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다음 내용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한다.

• 내 용 : 본지 11월 22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SBS 드라마 ‘OOOO’ PD이신 박OO님과 그 가족 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PD저널에서는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프로그램 제작에 열중하시는 박 OOPD님과 같은 프로듀서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으며 이를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경위와 관계없이 PD저널을 대표하여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이 고용허가제 시행 이전보다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용 구)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고용허가제 시행후 이탈률 10배 급감』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3일자 4면)
내 용 :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이 고용허가제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근로자 이탈 현황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5만 7,850명 중 이탈자가 1,714명으로 이탈률이 3.0%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은 2.30%로 8개월 만에 0.7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전체 체류자가 6만 7,032명에 달하는 산업연수생은 지난 8월 말 현재 2만 3,144명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이탈률이 무려 3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연수생의 이탈률은 지난해 말 40.0%에서 8개월 사이에 5.5%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23일자 4면 『고용허가제 시행후 이탈률 10배 급감』 제하의 기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이 고용허가제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은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제조업 분야 산업연수생의 이탈률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보다 오히려 1.1% 포인트나 낮은 1.9%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3일자 『고용허가제 시행후 이탈률 10배 급감』이라는 기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이 고용허가제보다 10배나 높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지난 2년간 입국인원 대비 이탈률은 고용허가제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제조업 분야 산업연수생의 2년간 입국인원 대비 이탈률은 1.9%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헤럴드경제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12월 29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러시아선교사 파송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신 ○ ○,
2. 이 ○ ○
피신청인 : 순례자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30.
처리결과 : 합 의

절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9일자 4면 『동정』란에, 신○○(이○○) 목사의 현지 사정으로 러시아 선교사 파송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당회가 받아 들였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신 목사 부부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러시아 현지 선교사의 동의를 문제되어 ○○교회가 몽골 선교사로 가도록 권유하면서 러시아 선교를 후원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신 목사 부부와 ○○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현재 신 목사 부부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러시아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순례자 4면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동정란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12월 27일까지 발간되는 어느 회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순례자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7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거리를 걷는 신청인의 뒷모습을 허락없이 촬영하고 웃차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레몬트리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레몬트리 : 『레깅스와 졸바지, 한 곳 차이』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호 134면)

내 용 : 의상은 나름대로 잘 입었지만 레깅스는
정말 졸바지를 떠올리게 한다. 7부 정도로 입다가
9부로 내려입으니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레몬트리는 지난 10월호 134면에 『레깅스와 졸바지, 한 곳 차이』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거리를 걷고 있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과 함께 “의상은 나름대로 잘 입었지만 레깅스는 정말 졸바

지를 떠올리게 한다. 7부 정도로 입다가 9부로 내려입으니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라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사진은 신청인의 허락 없이 촬영되었고, 패션 감각이 떨어지는 여성의 예시로써 무단 게재되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600,000원 상당의 룸바 생산 로봇청소기를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일까지 위 물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600,000원과 이 돈에 대한 2007년 1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FTA 체결 효과에 대해 분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 경 태)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1.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시사기획 씬」 프로그램 (2006년 11월
20일 23:40)

내 용 : <2006서울조정4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11월 20일 「시사기획 씬」 프로그램에서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을 FTA 전후로 비교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해는 누락하고 높았던 해만 계산해서 평균치를 조작하였다고 보도하고, 동 보고서가 호주 FTA 체결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바꿔치기한 조작사례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FTA 효과분석 결과인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나온 경제성장률 예상치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조작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며 NAFTA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0년의 실질 GDP 성장률 공식에 의해 산정하여 비교한 것으로 연도 누락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 보고서는 호주 FTA 체결시점이 아닌 FTA 협상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호주 FTA 체결시점을 바꿔치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FTA 효과분석은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한 동태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미국 무역위원회가 이용한 정태분석 프로그램과 다른 것이므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제성장을 예상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캐나다 경제성장을 비교시에 연도를 누락하여 평균치를 조작하고, 호주의 FTA 체결시점을 2005년으로 바꿔치기 하였으며, FTA 효과분석결과에 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취재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못 방송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478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시사기획 씬」 프로그램 (2006년 12월 18일 23:4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군공무원인 신청인이 특정 건설회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전북대중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4.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전북대중일보 : 『군청간부-S건설 ‘밀착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9일자 1면)

내 용 : ○○군에서 발주했던 각종 공사가 군의 고위간부가 개입한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현직 ○○군 고위 간부가 지난 5·31 지방선거 후 정무직 비서실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면서 새로 건축된 ○○청정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별관 2층으로 거처를 마련하면서 부터다.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 관내 S전자에서 구입한 후 100여만원 상당한 물품대금을 무주읍에 소재한 S건설 업무이사인 C씨가 은행계좌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회사와 비서실장과의 유착관계에 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S건설은 지난해 8월 ○○군 관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구, ○○임도, ○○지구, ○○지구 등 4개소 수해복구공사를 총 공사비 32억 7천여만 원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로 밝혀져 ○○군민들의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

더욱이 S건설이 수해복구공사를 착공한 시점인 지난 2월을 전후해서 비서실장은 두 자녀를 외국에 조기 유학 보냈으며 고급 증형차를 구입해 타고 다녀 의혹이 실체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29일자 1면에 『군청간부-S건설 ‘밀착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군의 한 고위 공무원이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개입하는 등 S건설과의 유착관계가 증폭되고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대금 역시 S건설에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S건설의 수해복구공사 착공 시점을 전후하여 두 자녀를 외국에 조기 유학 보내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군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수해복구공사 당시 해당 공무원은 도내 일간지 주재기자로 활동하며 복구공사에 개입하거나 S건설과 유착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으며, 자녀의 외국유학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집안 가족들의 권유로 결정되었으며 학비 역시 다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승용차는 할부로 구입하였고, 가전제품 구입대금은 건설업체 관계자가 대납한 것이 아니라 고위간부의 아내가 지불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관리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건설사 유착의혹 사실무근” 반박
- 내 용 : 본보 11월 29일자 보도한 『군청간부-S건설 ‘밀착의혹’』기사와 관련하여 ○○군의 해당 간부는, “수해복구공사 당시 도내 일간지 주재기자로 활동하며 공사개입이나 유착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으며, 자녀의 유학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의 권유와 비용부담으로 1년간 어학연수를 보낸 것이다. 승용차는 기자채직시 할부로 구입한 것

으로 건설회사와 유착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전제품 구입대금 100만 원에 대해서도 총 40만 원의 대금을 이삿짐을 옮겨 준 후배에게 건네주어 무통장 입금한 것이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은 관리를 목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어떤 의혹을 살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대중일보 2006년 12월 15일자 1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군청간부-S건설 ‘밀착의혹’)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본 합의 이후 신청인과 관련된 기사를 추가로 게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에는 보도할 수 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대중일보 : 『“건설사 유착의혹 사실무근” 반박』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5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4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뉴시스 : 『“연기로 안보이는데 성에도...” 소방관 눈

가리는 공기호흡기』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9일자)

내 용 : (전략) 안면마스크에 성에가 끼면 소방관의 구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북소방서 구조대원인 김○○ 소방관은 “성에가 끼면 일단 시야확보가 잘 안돼 구조활동에 지장이 많다”면서 “조명을 비쳐도 잘 안보이는데 성에까지 끼면 환자 구출 후 탈출 때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종로소방서 장비관리팀 관계자는 “배테랑 소방관들이야 공기호흡기의 압축공기를 적절히 조절해 성에 끼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이 역

시 완전제거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긴박한 구조현장에서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에쯤은 큰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 조○○ 장비계장(소방령)은 “어차피 구조현장은 칠흑같은 어둠 때문에 명암만 구분될 뿐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성에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호흡기를 공급하는 S업체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당 150만~170만 원선인 공기호흡기 가격안에서는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하지만 제품 설계단가에서부터 공기호흡을 통해 성에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9일자 『“연기로 안보이는데 성에도…” 소방관 눈 가리는 공기호흡기』 제하의 기사에서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공기호흡기 면체(안면마스크) 부분에 온도차로 인한 성에가 뿌옇게 끼어서 소방관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긴박한 구조현장에서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에쯤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차피 구조현장은 칠흑같은 어둠 때문에 명암만 구분될 뿐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성에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인터뷰에 응한 조○○ 씨는 공기호흡기 면체의 성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차피”라는 표현과 “성에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소방 공기호흡기 관련).
• 내 용 : 지난 11월 29일 『소방관 눈 가리는 공기호흡기』 기사 중 소방방재청 소방령 조○○씨가 “공기호흡기에 성에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공기호흡기 면체에 끼는 성에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 12. 14일 계약된 언론사에 송고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2006. 12. 14일 09:00시부터 2006. 12. 15일 09:00까지 뉴시스 홈페이지 초기화면(www.newsis.com)에 접속 후 모니터 상에 처음 나타나는 화면)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각각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2006. 11. 29.자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며, 기사 공급계약을 맺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드림위즈 등)에 공문으로 기사 삭제를 요청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시스 : 『<바로잡습니다> 소방 공기 호흡기 관련』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4.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연기땀에 안보이는데 성에까지...”
소방관 눈 가리는 공기호흡기』 제하
의 기사 (2006년 11월 29일자)
내 용 : <2006서울조정48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48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488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488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메디컬투데이 : 『<바로 잡습니다> 소방 공기호흡기
관련』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4
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동사무소가 민원인용 주차장을 인근 유통업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인천 부평구 000동사무소
(동장 이 ○ ○)
피신청인 : 아시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시아일보 : 『동사무소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제
하의 기사 (2006년 11 28일자)
내 용 : (전략) 약 1여 개월 전에 동사무소 앞
전 현대백화점 건물에 모유통업체가 입소하면서 1
백여 평에 달하는 000동사무소의 민원인들 차량
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이 업체를 찾는 손님들이 타
고 온 각종 자동차가 2중 3중으로 하루종일 주·정
차 되어 있어 정작 동사무소를 찾아온 민원인들은
아예 주차를 포기하거나 먼거리에 차를 두고 동사

무소로 걸어와서 일을 봐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렇게 부평구 000동사무소 마당 주차장이
주야로 모유통업체 차량들로 난장판을 이루고 있
어 이곳을 왕래하는 주민들과 각종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주더니 10여일 전부터는 어떻게 된 일
인지 동사무소 마당옆에 전입동장이 설치해놓았
던 대형꽃향아리 여러 개를 누구의 지시인지 전
부 철거시키고 특정업체 손님들이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000동 책임자는 과연 누
구를 위해 근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동
민들의 원성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8일자 『동사무소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부
평구 000동사무소가 특정 유통업체 봐주기식으
로 동사무소 앞의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고 꽃 박
스를 일부러 철거시켜 특정업체손님들의 주차장으

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동사무소에서도 유통업체의 개업으로 인하여 왕래하는 차량들의 혼잡으로 동사무소 앞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청 교통과에 주차단속을 요구하였고, 유통업체의 관련자에게 유통업체 직원소유의 차량이 장시간 동사무소 앞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통하여 주지시켜 달라고 두 차례나 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 앞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을 파악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꽃박스 설치(2006. 4월 설치)도 전임동장이 아닌 현 동장이 설치하였으며 꽃박스가 도로변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번 철거도 꽃이 시들고 차량의 왕래가 많아짐에 따라 지나는 차량에 꽃박스가 깨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꽃박스를 치워놓은 상황이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시의회 연수지에서 여인과 함께 숙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3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목포투데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목포투데이 : (1) 『의회 제주도 연수 두명의 여인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0일자 4면)

내 용 : 8대 의회 제주도 연수에서 무슨 일이? 진실 혹은 거짓?

8대 목포시의회가 의회 업무 파악을 위해 지난 달 말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온 제주도 연수에서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사적 행동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K와 S의원은 누가 거짓말을 하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고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면 소문의 근원지를 추적하는 등 의회가 진실과 거짓을 규명하기 위한 신경전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K와 S의원이 제주도 그랜드호텔 스위트룸에서 모 여성들과 숙박을 했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부터다. (후략)

(2) 『바람둥이 ○○○ 의원입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7일자 4면)

“바람둥이 ○○○ 의원입니다”

최근 목포시의회 제2회 연수에서 등장한 속칭 ‘목포시의회 두 명의 여인 사건’에 대해 언론계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목포시의회 A의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법이 바뀌어서 지역 정가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듣는 사람들의 황당함과 어리둥절, 실망감과 더불어 여러 취재기자들에게 전해진 이런 말이 뒤따라 더 실소를 자아냈다.

“언론에 보도만 돼봐, 명예훼손죄로 잡아 넣겠어” (중략)

보도 이후 진실을 규명하자는 의원들도 있었다. 소문의 근원이 된 두 명의 여인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서 의회차원에서 명예를 되찾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사태는 진실과 거짓. 그 실체를 둘러싼 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의회라는 제도적 장치에 진입한 이상 의회 내에 존재하는 선후배의 신뢰와 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함이 핵심이 아닐까?

이해 당사자들은 간부 의원들의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같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같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취재 과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를 깊이 반성할 일이다.

(3) 『시민들 “제주도 연수 실체 밝혀라” 비판』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7일자 4면)

제주도 목포시 의회 연수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두 여인들의 실체와 의회차원의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은 의원들 연수회 주변에 어떻게 여인들이 접근했는지와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을 맴돌았는지, 아니면 의원이 먼저 접근했는지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본보 보도 이후 목포시의회 전직원으로 역시 “목포시 의회 전례에 없던 사건으로 재선 삼선 의원들도 안하는 그런 큰 행동을 어떻게 조선의원이 할 수 있느냐”며 “시민단체 뿐 아니라 의원들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상을 규명해 의회 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서OO의 사생활과 정치인들의 책무』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1일자 3면)

목포시의회 서OO 의원이 기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하기 전부터 “가만히 안 놔두겠다”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이야기 했던 터이니 새로운 것도 없다. 다만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것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었다니 다소 김이 빠진 느낌이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서OO 의원의 고소장에서 “홍미위주의 정확하지 않은 음해성 뜬 소문만 듣고 사실과 다른 사생활을 침해하고 부풀려서 매도하는 형태의 기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자는 서OO 의원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뜬 소문만 듣고 기사를 쓴 사실도 없다. 기자가 관심있는 일은 지방

의회 의원들의 유급화까지 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제주도 연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취재거리다. 왜냐하면 유급화도, 의회 연수도, 기자가 그동안 낸 세금까지 포함된 국민의 혈세로 이뤄졌고, 서씨가 과거와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공인이기 때문이다.

전과자라는 다소 특이한 경력(?)을 갖고서도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서씨는 당선되면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석에서 이야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20일자 4면 『의회 제주도 연수 두명의 여인은 누구?』, 9월 27일자 4면 『바람 등이 ○○○ 의원입니다』, 『시민들 “제주도 연수 실체 밝혀라” 비판』, 10월 11일자 3면 『서OO의 사생활과 정치인들의 책무』 제하의 기사에서 제8대 목포시의회 제주도 연수에서 K와 S의원이 모 여성들과 호텔에 숙박을 하는 부적절한 사적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기사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서OO 의원은 해당 보도와 전혀 관계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소문의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어떤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1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민 ○ ○

2. ○ ○ ○ ○ ○ (주) (대표이사 민 ○ ○)

피신청인 : EBN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EBN : 『〇〇 〇〇〇, 연말 인사 앞두고 ‘술렁’』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9일자)

내 용 : 연말 정기임원 인사를 앞두고 〇〇그룹 물류회사인 〇〇 〇〇〇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민〇〇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눈에 띄는 경영성과를 보이지 못한 〇〇 〇〇〇가 최근 불거진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에 휘말리며, 최악의 시련기를 보내고 있다. 2~3년 전 소위 잘나가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에선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민〇〇 대표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중략)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물류업계 내 〇〇 〇〇〇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으며, 그룹 내의 입지도 점점 흔들리고 있다.

특히 민 대표에 대한 불만은 회사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리더십은 물론, 경영 능력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〇〇 〇〇〇를 잘 안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〇〇 내부에선 그동안 물류전략, 택배본부장 등을 두루 거친 민 대표에 대한 기대와 신망이 컸으나, 부임 이후 민 대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실망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달 갖는 회사 내 〇〇〇〇 OB멤버들과의 모임에서도 민 대표에게 직접 불만을 성토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은 민 대표의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관련 업계와 일부 보도에 따르면, 〇〇 〇〇〇는 하도급회사와의 계약변경을 통해 유가보조금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〇〇 〇〇〇는 협력회사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는 방법

을 알려주고, 단체로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〇〇 〇〇〇 측은 유가보조금에 전혀 간여한 바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화물차주들의 뚝인 유가보조금을 자사의 호주머니에 채웠다는 점에서 〇〇 〇〇〇는 물론, 〇〇그룹까지 도덕적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EBN은 지난 11월 29일자 『〇〇 〇〇〇 연말 인사 앞두고 ‘술렁’』 제하의 기사에서 연말 정기임원 인사를 앞두고 〇〇 그룹의 물류회사인 〇〇 〇〇〇가 술렁이고 있으며 특히 민〇〇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경영능력과 리더십 등 자질이 부족하여 회사 경영실적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에 관해 회사 내부에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사회적 평판과 신용을 저하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취재로 ‘업계의 의견을 인용한다’라는 형식을 빌어 신청인의 경영성적을 교묘하게 폄하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영세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여 관련 기관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허위 보도를 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〇〇 그룹 전체의 경제적 신용 및 명예가 현저히 손상되었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피신청인이 운영 중인 인터넷매체에서 삭제하고, 이 사건 기사가 제공된 모든 인터넷 포털업체에 기사제공을 철회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

익산시가 고병원성 시와 관련된 살처분 작업에 담당공무원은 배제하고 환경미화요원들만 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익산시 (시장 이 한 수)

피신청인 : 뉴시스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스 : 『“힘없는 미화요원만 살처분 투입”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9일자)

내 용 : 전북도와 익산시가 고병원성 AI와 관련된 살처분 작업에 담당 공무원은 배제하고, 미화요원을 대거 투입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29일 익산 함열과 황등 지역에 대한 살처분 작업장에 공무원과 (주)하림 직원, 인력공사인부 등 총 97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차 발생지역인 함열에는 민간인 20명과 하림직원 20명, 공무원 4명 등 총 44명, 2차 발생지역인 황등에는 미화요원 49명과 공무원 4명 등 총 53명이 투입돼 모두 97명이 살처분·매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발표는 취재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이 실제 투입에 앞서 살처분 교육이 이뤄진 익산시 보건소에 대해 취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 인원 중 미화요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함열지역에는 인력공사 인력 20명과 오후에 하림직원 14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고 투입돼 모두 34명이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황등지역에 투입된 공무원은 1명도 없으며, 미화요원 51명만이 작업을 실시해 전체적으로 이날 투입인력은 총 85명이다.

결과적으로 관계 당국이 “일당을 지급하고 구한 인력공사인부와 미화요원만 투입하고 공무원은 없다”고 발표할 경우, 비난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허위 발표를 한 셈이 된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29일자 『“힘없는 미화요원만 살처분 투입”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전북도와 익산시가 고병원성 AI와 관련된 살처분 작업에 담당

공무원은 배제하고, 미화요원을 대거투입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황등 지역 살처분 작업장에 투입된 공무원은 1명도 없으며, 미화요원 51명만이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관계 당국이 위 작업에 미화요원만을 투입하고 공무원은 투입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할 경우에 받게 될 비난을 염려하여 나중에는 미화요원 49명과 공무원 4명 등 총 53명이 투입돼 살처분·매몰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허위 발표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힘없는 미화요원만 살처분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AI 살처분 작업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익산시를 위해 (주)○○공사 최○○대표와 회사에 소속된 환경미화요원들이 시내 외곽 도로 청소보다는 AI 사태 해결이 시급한 것 같다며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현장에 투입된 것이고, 황등 지역에 투입된 공무원 4명은 1차 발생지역(함열) 살처분 투입 과정에서 교육 및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당일 보건소 교육 및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대해 익산시에서는 허위 발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전 보도문

뉴스 : 『이한수 익산시장, 살처분 현장 방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30일자)

내 용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발병과 관련, 살처분 지역이 확대되자 필요 인력확보가 사태의 조속 해결을 위한 관건이 되고 있다. (중략)

이에 앞서 익산시는 지난 25~29일까지 연인원 450명(공무원 86, 하림 136, 인력 98, 기타 130)을 동원, 1, 2차 AI 발생농가 인근의 가금류 15만 5,140수를 살처분 매몰했다.

익산시는 살처분 지역 확대에 따라 내달 19일까지 1일 160명(연인원 3,200명)과 포크레인 등 장비(연 316대)를 동원, 살처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살처분 지역이 크게 늘어나 군과 경찰의 병력 지원 없이는 작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한수 익산시장은 내달 1일 살처분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AI 발생 이후 각종 정부와 국회의원, 타 시

도 등에 대한 보고와 현장 상황 점검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 시장의 이날 결정은 살처분 인력 구성의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익산시의회 의원 10여 명과 익산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임원 16명도 같은날 살처분 현장에서 일손을 돕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날도 AI발생 현장에는 공무원 6명과 인력공사인부 29명 등 35명이 동원돼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신청인이 국정감사 도중 성매매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3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5

처리결과 : 합 의 (정정·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한겨레21 : 『“검찰 잘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4일자 10면)

내 용 : 처음 시리즈가 시작됐을 때 그 남자를 주목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성매매 전도사’ 한나라당 김○○ 의원. 그는 올해 여성가족부 국감에서 ‘짙은 안마’ 유행어를 대히트시키며 성매매 3중세트를 완성하는 기업을 토했다. 2004년, 그는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성매매를 완전히 중단시킬 경우 30살을 전후한 결혼 적령 시기까지 성인 남성들이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말했고, 2005년엔 “성매매를 금지할 바엔 자유연애를 통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여자가 남자의 해결 도구냐”며 여성단체들이 흥분했고, “대체 우리를 뭘로 보냐”며 남성들도 흥분했다. 2006년, 그는 유사 성행위로 관심 범위를 확장했다. “유사 성행위를 성행위로 보지 말고, 안마를 좀 짙게 하는 것으로 파악해 단속을 재고할 수 없겠냐!” 이름하여 ‘짙은안마!’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14일자 10면 『“검찰 잘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하의 기사에서 “처음 시리즈가 시작됐을 때”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김○○ 의원이 2004년 이후 매년 성매매단속을 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특히 2006년에는 “유사 성행위를 성행위로 보지 말고, 안마를 좀 짙게 하는 것으로 파악해 단속을 재고할 수 없겠냐!”라고 마치 성매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성매매 전도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속기록 등 사실확인 결과, 김○○ 의원은 성매매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과격한 성매매금지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내용의 일부를 왜곡, 과장해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김○○ 의원 반론보도문 및 발언 요약본
• 내 용 : 지난 11월 14일자 10면 『“검찰 잘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나라당 김○○ 의원은 “본인을 ‘성매매 전도사’라고 표

현한 것과, 평소 국감과 상임위에서 「성매매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 해외출장 성매매 등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을 성매매를 옹호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4년, 2005년, 2006년도 해당 발언의 국회 속기록 요약본을 신습니다.

- 피신청인은 제1항 및 속기록 요약본을 게재하기로 하되, 속기록 요약본의 내용은 신청인의 원 발언 취지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인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2월 26일(화)까지 한겨레21 <독자와 함께>색선에 위 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원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처음 시리즈가 시작됐을 때”)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단, 색깔은 검정색으로 한다), 본문은 조

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를 취하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21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6일자 10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해양수산부가 인장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불량방수복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장관 김 성 진)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노컷뉴스 :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미봉책 그쳐』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2일자)

내 용 : 해양수산부가 최근 방수복 인장강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형식승인시험 기준에 관한 법규를 개정했지만 방수복에 사용되는 원단고무 상당수가 불량품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이에 따라 그동안 현실성이 없는 인장강도 기준

으로 발생했던 불량 방수복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장강도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불량 방수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냐하면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방수복 원단고무가 상당수 불량인 경우가 많아 아무리 좋은 제작방법으로 방수복을 만들어도 불량제품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방수복 제작 전문가는 최근 국내 6개 방수복 업체의 원단고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7%인 4개 업체의 원단고무 재질이 당기면 쉽게 부서지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옷이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불량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불량 원단고무로 만든 방수복은 실제로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착용을 할 수 없거나 입더라도 제대로 방수가 안돼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고 있다.

이 전문가는 해양수산부가 인장강도기준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정작 가장 중요한 불량 원단고무
의 문제점을 간과했다며 이번 법 개정도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소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일관할 경우
불량 방수복 문제는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2일자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미봉책 그쳐』 제하의 기사에서 해양
수산부가 최근 방수복 인장강도를 완화하는 내용
으로 형식승인시험 기준에 관한 법규를 개정했지
만 방수복에 사용되는 원단고무 상당수가 불량품
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에 될 수 없으며, 한 방
수복 제작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최근 6개 방수복
업체의 원단고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7%
인 4개 업체의 원단고무가 당기면 쉽게 부서지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옷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는 불량품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장강도 문제와 관
련 방수복 검증결과 및 외국의 관련기준, 시험기
관, 검사단체 및 관련업계의 공식적이고 객관적
인 의견을 반영하여 인장강도 기준을 개정하였
으며, 방수복의 고무원단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
장시험시 당겼을 때 파단점에 도달하기 전에 원
단고무가 먼저 파단되어 인장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온력 시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나 현재까지 인장시험에 합격한 방수복 원단
중에 인장시 고무부분이 파단된 사례는 발생하
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고무제품의 특
성상 장기간 시일이 경과할 경우는 경화되거나
수축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선박검사시 또는 승선
검사시에 구명설비(방수복 등)도 확인하여 부적
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
음을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11월 22일자 인터넷 뉴스면에 실
린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미봉책 그쳐』 제목
의 보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 다음과 같은 반
론을 제기해왔습니다.

(1) 우리부에서는 인장강도 문제와 관련 방수복
검증결과 및 외국의 관련기준, 시험기관, 검사단체
및 관련업계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
하여 인장강도 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방수복의 고무원단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장시
험시 당겼을 때 파단점에 도달하기 전에 원단고무
가 먼저 파단되어 인장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보온력 시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현
재까지 인장시험에 합격한 방수복 원단 중에 인장
시 고무부분이 파단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고무제품의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옷이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불
량품으로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 고무제품의 특성
상 장기간 시일이 경과할 경우는 경화되고 수축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선박검사시 또는 승선점검시에
구명설비(방수복 등)도 확인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초기화면에 24시
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
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 피신청인은 노컷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해수부, 불량 방수복문제 미봉책에 그쳐”』
에 위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토, 일요일
제외) 위2·3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 ‘해수부 불량 방수복문
제’ 관련 해수부의 반론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5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인구 비례만을 기준으로 청양군의 공무원 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2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본부
청양군지부 (지부장 유 ○ ○)

피신청인 : 청양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청양신문 : 『군, 인구비례 공무원 수 도내 최고』 제
하의 기사 (2006년 11월 27일자 24면)

내 용 : 청양군이 인구와 비교해 공무원 수가 도
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감소는 도내에서 3번째, 노인인구 비율
은 도내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청양군 인구는 3만 4천577명으로 공무원 수
가 555명이다.

계룡시의 경우 인구가 3만 5천907명으로 공무원
수는 315명.

인구는 청양군 보다 계룡시가 1천330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청양군이 240명이
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청양군의 인구 감소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양군은 2004년 3만 5천828명에서 2005년 3만 5
천144명, 2006년 6월 말 현재 3만 4천817명으로 계
속 줄어 충남도 평균 인구가 0.3% 늘어나는 것과

는 큰 대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략)

노인인구의 증가도 청양군의 어려움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청양군 총 인구 3만 4천577명
중 노인인구가 8천610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4.9%로 나타나 충남 평균 노인인구 비율 13.6%보
다 월등히 높았으며, 충남도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0대 이상의 노인도 1천205명으로 인구비
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27일자 24면 『군, 인구비례 공
무원 수 도내 최고』 제하의 기사에서 청양군의 인
구 감소율은 도내 3위, 노인인구 비율은 1위이나
비슷한 인구의 계룡시와 비교해 공무원 수가 2배 가
까이 많아 도내에서 1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내용
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 청양군지부에서는 해당 조사가 적정 공무원
수를 집계시 지역면적, 행정 기관 수 등을 복합적으
로 고려하여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인구비
례만을 토대로 청양군 공무원수가 타 자치단체와 비
교하여 제일 많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참고자료로써
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보도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
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기사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모습을 무단 촬영한 뒤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조 ○ ○

2. 이 ○ ○

피신청인 : 더데일리포커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더데일리포커스 : 『“응 난데, 첫눈 봤어”』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일자 3면)

내 용 : 서울 등 중부지방에 30일 오전 중 눈이 내리면서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신이 급증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와는 무관하게 신청인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동의 없이 기사에 내보냄으로써 신청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마치 신청인들이 업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잡담을 나누는 것으로 보여져 직장 동료들로부터 근무태만을 우려하는 질타를 받게 하는 등 신청인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청구합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함박눈이 내린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신량이 평소보다 급증했다. 이는 앞서 첫눈이 내렸지만 이번 눈이 일과 시간대에 내린 데다 적설량을 기록할 정도로 내리는 등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사실상의 첫눈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SK텔레콤의 수도권 지역 음성통화 발신건수는 3,374만 5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간대에 비해 16% 증가했으며 문자메시지도 1,549만 8천 건으로 22%가 늘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더데일리포커스는 지난 12월 1일자 3면 『“응 난데, 첫눈 봤어”』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동부지방에 11월 30일 오전 중 눈이 내리면서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신이 급증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와는 무관하게 신청인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동의 없이 기사에 내보냄으로써 신청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마치 신청인들이 업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잡담을 나누는 것으로 보여져 직장 동료들로부터 근무태만을 우려하는 질타를 받게 하는 등 신청인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500,000원을 2006. 12. 29.까지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기일 다음날부터 지급할 때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 및 직원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이 동성로로 이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대구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 ○ ○
피신청인 : 영남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영남일보 : 『대구의 ‘명품진료’』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일자 1면)

내 용 : 대구 수성구에 있던 피부과 전문병원인 ○○스킨 ○○○○는 최근 중심가인 동성로로 이전했다.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고객들 때문이다. 아무래도 중심가라야 찾아오기 쉽고 편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 피부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일자 1면에 『대구의 ‘명품진료’』 제목으로 대구 수성구에 있던 ○○ ○○피부과가 동성로로 이전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수성구의 ○○○○피부과는 이전한 적이 없으며 성○○ 원장이 1998년 12월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수성구 지산동에서 ○○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며 진료 중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동성로에 ○○스킨 ○○○○피부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수성구 ○○스킨 ○○○○피부과는 존재하지 않는 병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1일자 1면 『대구의 ‘명품진료’』란 제목으로 ‘대구 수성구에 있던 피부과 전문병원인 ○○스킨 ○○○○가 최근 동성로로

이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 ○○○○ 피부과 의원’은 이전한 것이 아니라 이 병원을 성○○ 원장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민○○ 원장이 대구 동성로에 ‘○○스킨 ○○○○’란 명칭으로 피부과 의원을 새로 개원한 것으로 성○○ 원장은 대구 수성구에서 ‘대구 ○○○○ 피부과 의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영남일보 1면에 2006년 12월 26일에서 12월 28일 사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탈모 치료·미세제건술·위암수술 등 명성)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영남일보 인터넷판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영남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8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성공회대가 운동권 경력자들을 대거 교수로 특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 성 수)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7.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동아일보 : 『이○○ 씨 ‘마음의 행로’』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A38면)

내 용 : (전략) 남한 군사정부를 ‘통일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그에게 통일의 주체는 적화(赤化)만을 추구해 온 북한 정권이었던 셈인가. 이씨는 “민주화를 이루어 낸 것은 정말로 대단한 보람”이라고 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인사말에서 밝히고 있고, 성공회대 총장 시절엔 운동권 경력자들을 대거 교수로 특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21일자 A38면 『이○○ 씨 ‘마음의 행로’』 제하의 기사에서 이○○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성공회대 총장 시절엔 운동권 경력자들을 대거 교수로 특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성공회대학교는 대부분의 교수채용에 있어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시 신모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 모두가 공채를 거쳐 채용되었고, 공채시 학과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면접을 본 뒤 이사회가 최종심사를 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절차를 지키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시에는 학과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에 이를 제청하면 이사회가 최종심사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총장이 독단적으로 대학 교수를 채용할 수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의 지난 11월 21일자 『이○○ 씨 ‘마음의 행로’』라는 배인준 칼럼 중 성공회대 교수 채용과 관련, 대학교 측은 교수임용을 원칙적으로 공채를 통하여 공정하게 해왔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아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12월 2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성공회대가 운동권 경력자들을 대거 교수로 특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 성 수)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7.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조선일보 : 『운동권에 가산점, 대거 교수채용...』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자 5면)
내 용 : (전략) 이 후보자는 성공회대 총장 때 투옥과 운동 경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좌파 지식인들을 대거 교수로 임용해 오늘날 성공회대를 좌파 지식인의 메카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감옥살이를 한

신○○ 교수를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고, 정○○(정치학) 조○○·김○○(사회학) 교수 등을 임용한 것도 이 후보자였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도 이 총장 시절 교양학부 겸임교수를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21일자 5면 『운동권에 가산점, 대거 교수채용...』 제하의 기사에서 이○○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성공회대 총장 재직시절 투옥과 운동 경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좌파 지식인들을 대거 교수로 채용해 오늘날 성공회대를 좌파 지식인의 메카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감옥살이를 한 신모 교수를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고, 정○○(정치학), 조○○·김○○(사회학) 교수 등을 임용한 것도 이 후보자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총장 시절 교양학부 겸임교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성공회대학교는 교수채용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자체가 없으며, 교수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학과의 심사를 거친 후 총장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총장이 이사회에 후보자를 제청하고 이사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공정한 채용절차가 준수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의 지난 11월 21일자 기사에서 이○ 씨가 94년 성공회대 총장을 맡아 운동권에 가산

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거 교수를 채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대학교 측은, 교수채용에 가산점 제도는 없고 총장 전권이 아니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이사회가 공정하게 결정해 왔으며, 성공회대가 좌파 지식인의 메카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선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12월 2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플라스틱 용기에서 성조숙증과 요도하열의 원인이 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플라스틱주방용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집 수 일 : 2006. 12.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리앤 헌(43세, 생리통환자) : 플라스틱 병 안에는 에스트로겐을 흉내 내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켜요.

▷나레이션 :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플라스틱류 사용금지.

집안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모두 치우고, 유리 와 옹기그릇으로 바꾸었다. 플라스틱류에 들어있다는 프탈레이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후략)

보도내용

SBS-TV : (1) 「SBS환경스페셜」 프로그램 (2006년 9월 10일 23:05)

내 용 : ▷나레이션 :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생리통을 고치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녀는 몸 안의 독성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 물은 모두 특수 제작된 유리병에 들어있다.

유리병만을 쓰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2) 「SBS환경스페셜」 프로그램 (2006년 9월 17일 23:05)

(전략)

▷프레데릭 봄살박사(콜롬비아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 이것은 아기젓병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투명한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 병입니다. 이것을 가열하게 되면 비스페놀A가 병에서 나와 병 속의 내용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레이션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젓병은 열

을 가하게 되면 비스페놀A라는 화학물질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동물실험 결과 임신 초기와 출생한 직후의 새끼가 비스페놀A에 노출되면, 2차 성징이 빨라지는 성조숙증이 생기고 비만이 나타났다. 국내외의 많은 실험결과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컵병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됐고, 오래 쓴 병일수록 비스페놀A의 양은 증가했다. (중략)

▷나레이션 : 유치원에 다니는 큰 아이까지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는 이런 방법으로 밥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

우리는 요도하열이었던 ○○이네 집도 찾아가 보았다.

기름 병, ○○이네가 즐겨먹는 반찬은 기름을 두른 볶음요리라고 했다.

우리는 기름병을 가져와 분석을 의뢰했다.

냉동 된 밥도 쌍둥이네가 늘 해오던 방법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역시 분석을 의뢰했다. 여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검사결과 밥과 기름 모두에서 동물 실험에서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DEHP가 검출됐다. 환경호르몬은 우리생활에 아주 깊게 파고 들어와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테오 콜번박사(환경생태학자, '도둑 맞은 미래' 저자) : 보다시피 가구들은 오래된 중고 기구들을 샀고요. 1949년에 결혼했는데 저건 1949년 제품이고, 저건 1800년대 제품이예요.

그리고 부엌에서는 유리와 도자기 제품만 사용합니다. 보다시피 다 유리 아니면 도자기예요.

▷나레이션 : 그녀는 제대로 알기만 하면 환경호르몬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테오 콜번박사(환경생태학자, '도둑 맞은 미래' 저자) : 스테인리스, 유리...

▷나레이션 : 그녀는 할머니가 쓰시던 쇠로 만든 지짐판을 아직도 쓰고 있었고, 냉장고에는 오직 유리병뿐이었다.

▷테오 콜번박사 : 플라스틱 그릇은 안 쓴다니까요, 절대로...

하지만 여기부터는 플라스틱의 도시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는 수 없어요!

이건 제 선글라스인데요. 비스페놀A로 만든 거

예요. 어찌겠어요. 쓰긴 써야 하니까 모니터, 전화기,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안에도 유해물질이 있고요.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SBS 환경스페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0일, 9월 17일 「SBS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서 “환경호르몬의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1부 생리통과 2부 성조숙증 및 요도하열의 주요 원인을 환경호르몬으로 단정하고 합리적인 검증절차가 생략된 채 사실을 과장, 왜곡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것을 암시하여 이들 질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생리통과 성조숙증 및 요도하열의 주요 원인은 의학계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의 환경호르몬은 자연계(실내 공기, 먼지, 물, 음식물)에서도 충분히 흡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플라스틱 용기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객관성이 확연히 부족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생리통을 치료하는 과정에 플라스틱류에 들어있다는 프탈레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모두 치우고, 유리와 용기그릇으로 바꾸는 것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용기들을 박스에 담아서 폐기하는 장면에 사용된 제품들은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식약청에서 1989년부터 이들 식품 용기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프탈레이트가 검출될 수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게다가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컵병은 열을 가하면 비스페놀A라는 화학물질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동물실험 결과 임신 초기와 출생한 직후의 새끼가 비스페놀A에 노출되면, 2차 성징이 빨라지는 성조숙증이 생기고 비만이 나타났으며, 국내외의 많은 실험 결과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컵병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비스페놀A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현재까지 규명된 바가 없

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으며, 폴리카보네이트 컵의 비스페놀A 용출 시험 확인 결과, 검출된 양도 식약청 허용 기준치의 20,000분의 1에 불과한 극미량으로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고,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장시간 끓이지 않는 일반적인 사용 조건하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용기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외, 기름병과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에 해동한 후 환경호르몬에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검사 결과, 밥과 기름 모두에서 동물실험에서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DEHP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실험에 사용된 폴리프로필렌 소재 플라스틱 용기 자체에서는 분자구조상 프탈레이트 환경호르몬이 절대 검출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름을 담은 PET병도 사실확인 결과, 소재 자체가 프탈레이트 환경호르몬에 검출될 수 있는 분자 구조가 아니어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

성공회대가 운동권 경력자들을 대거 교수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 준 수)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이○○ 통일, 적당치 않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1일 10면)

내 용 : (전략) 기독교 사회주의는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민권을 확대하려는 사상이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성공회대 총장 시절 기독교 사회주의의 구현이란 명목 아래 투옥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 신○○ 등 친북좌파 인사들을 대거 교수로 끌어들었다. 권력투쟁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암약할 공간 마련이 중요하다는 그랑시의 친자구조론을 떠올리는 대목이다. 친북좌파 세력을 심기 위해 기독교 사회주의를 채용했다는 의구심을 낳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후보자

가 주체사상과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들먹이며 친북좌파 학자들의 활동공간을 그토록 적극 제공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1일 10면 『이○○ 통일, 적당치 않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성공회대 총장 시절 기독교 사회주의의 구현이란 명목 아래 투옥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 신○○ 등 친북좌파 인사들을 대거 교수로 채용했고, 친북좌파세력을 심기 위해 기독교 사회주의를 채용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성공회대가 친북좌파 학자들의 적극적인 활동공간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위 대학교는 교수채용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자체가 없으며, 교수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학과의 심사를 거친 후 총장과 교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총장이 이사회에 후보자를 제청하고 이사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공정한 채용절차가 준수되고 있음이 밝혀져 이

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6년 11월 21일자 『이○○ 통일, 적당치 않다』 제하의 사실과 관련하여, 성공회대학교는 교수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제도 자체가 없고 친북좌파 학자들의 활동공간을 적극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이○○ 전 총장이 재직당시 신입교

수 채용을 위한 총장면접심사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나 관련 투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했을 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헤럴드경제>에 위 보도문을 2006년 12월 19일자 2면에 게재하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게재시 제목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재단이 개최한 행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재)문화엑스포 (이사장 김 관 용)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뉴시스 : (1) 『양코르-경주엑스포 ‘엑스포는 그림의 떡’』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2일자)

내 용 : (전략) 이번 양코르-경주세계문화 엑스포 2006이 열리는 캄보디아 시엠립주 양코르는 11월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무더위가 시작됐다.

따라서 이곳 국민들은 점심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내리쬐는 햇빛에 거리를 걸을 수 없을 정도여서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관람시간을 국민들이 활동하는 오후 3시 이후부터 밤늦게까지로 맞춰 변경했다.

(2) 『양코르-경주엑스포, 김관용 지사 ‘푸대접’』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2일자)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공동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북지사가 21일 개막식날 행사장 입장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하자 푸대접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수십억 원의 거액을 투자해 주관하는 행사인데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

실제 이 행사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는 캄보디아 측 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속한 부총리)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이날 행사 때는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경찰차량의 경호 없이 차량 한 대만 지원받았다.

사실상 이날 개막식에 노무현 대통령과 캄보디아 훈센 총리 등 국가 원수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행사장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고 출입증인 비표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김 지사는 전날 프놈펜에 노 대통령이 캄보디아 현지교민들을 초청한 만찬에 참석했다가 캄보디아 측의 수행 없이 승용차로 행사장으로 이동해 출입증인 비표를 받지 못

했던 것.

이를 알 리 없는 캄보디아 측 경비는 수시로 김 지사 차량을 막았고 이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에 경북도가 6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VIP대접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무시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후략)

(3) 『〈양코르-경주엑스포〉경북도-경주시 ‘갈등’』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5일자)

(전략) 백상승 경주시장은 지난 21일 캄보디아 양코르에서 열리고 있는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경상북도-경주시 홍보관’을 관람 하다가 경주와 관련된 홍보물이 제대로 돼 있지 않자 김관용 경북도 지사에게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소동은 백 시장이 행사장 입구에서 50여m에 설치된 ‘경상북도-경주시’ 홍보관에서 안동 하회탈춤과 고령 대가야 고분 사진 등이 정면에 자리하고 있자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시작됐다.

또 백 시장은 밖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석굴암과 불국사 사진만 달랑 전시해 놓은 것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동 주최자인 경주시를 안중에도 넣지 않는 처사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개막식에 참석했던 경주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경주시가 무려 예산을 20억 원이나 지원했는데도 경북도가 경주문화엑스포를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후략)

(4) 『아직도 준비중인 ‘양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6’』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6일자)

지난 21일 개막한 ‘양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장에 한국 무용공연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아직도 한창이다.

(5) 『〈양코르-경주엑스포〉‘엑스포 관람 경비 과다 책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6일자)

(전략) 대구에서 캄보디아까지 이동은 중국 중부항공인 전세기로 홍콩을 경유해 왕복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 나와있는 각 여행 상품중 최고 35만 원이면 될 수 있는데도 여행사가 65만 원이라

는 폭리를 취하도록 해 여행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경주시도 시청 공무원 130여 명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씩 무려 1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엑스포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까지 4차례에 나눠 관람할 예정으로 있어 행사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캄보디아 현지 여행사와 서울등지의 여행사 관계자들은 “4박 5일 일정이면 60여만 원으로 충분하다”며 “여행사가 폭리를 취하는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략)

(6) 『경주문화엑스포 주체성 부각 없는 행사 ‘비난’』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6일자)

(전략) 현지 여론마저도 8만여 명의 작은 도시에서 대한민국을 광고했지만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해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주문화엑스포가 신라 천년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지향할때 경주의 주체성을 부각할만한 것이 없다는게 행사를 둘러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홍보나 경북도와 경주시 홍보는 되겠지만 캄보디아에서까지 문화컨텐츠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화사회로 가기 전 정보사회를 뛰어 넘어 국민소득 200달러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문화연계성을 논한다는것 자체가 행사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중략)

여기에다 문화 외교 사업을 위해서는 현지 우리 교민들과의 대화와 교감을 갖어야 하는데 현지 정서를 모른채 기대치만 설정 들뜬 기분에 행사를 치루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번 ‘양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6’은 입장료가 비싸서 관람객 30만 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이 캄보디아 내 각국 공관등 외국 기업체등을 통해 입장권 3만장을 강매해 지난 25일 현재 내외국인 3만명이 입장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관람객이 얼마나될지 미지수다.

(중략)

여기에다 연중 날씨의 평균 기온이 25-26℃라고는 하지만 행사기간인 11월부터 1월까지 낮 기온이 35℃ 이상으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저녁시간대이나 반짝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대부분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2일자 『앙코르-경주엑스포 ‘엑스포는 그림의 떡’』, 『앙코르-경주엑스포, 김관용 지사 ‘푸대접’』, 11월 25일자 『〈앙코르-경주엑스포〉경북도-경주시 ‘갈등’』, 11월 26일자 『아직도 준비중인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06’』, 『〈앙코르-경주엑스포〉‘엑스포 관람 경비 과다 책정 논란’』, 『경주문화엑스포 주체성 부각 없는 행사 ‘비난’』 제하의 기사에서 문화외교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와 경주시, (재)경주문화엑스포 등이 공동 투자하고, 지난 21일 캄보디아 시엠립주 앙코르에서 개최한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06’ 행사의 진행모습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6의 현지 관람시간이 오후 3시에서 11시 사이로 변경되었다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이는 현지 기후 특성상 한낮에는 일사량이 너무 높아 대부분 주민들이 야외 활동을 삼간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애초에 관람시간을 오후 3시 이후로 잡았고, 중간에 운영시간을 변경한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관용 경북지사의 현지 개막식 행사장 입장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하는 등 푸대접을 받았다는 기사에 대하여, 이는 사실이 아니며 김 지사는 비표가 붙은 고급 의전차량으로 정식 입장하였고, 이를 둘러싼 실랑이는 없었으며 행사의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아닌 4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앙코르-경주엑스포〉경북도-경주시 ‘갈등’』 제하의 기사에 실린 사진은 행사가 개최되기 전의 사진이며, 경주시의 지원금은 10억 원으로 홍보관에는 불국사석굴암 보문단지, 첨성대, 신라토

기, 화랑원화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국 무용공연광장조성을 위한 공사가 개막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개막식이 끝난 후 VIP석을 해체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행 경비가 과다 책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여행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없고, 조직위가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주 인구는 현재 72만 명으로 국민소득 1인당 GDP가 2005년 기준 454달러이고, 경북통상을 통해 현지에서의 식당과 기념품점을 운영하고 각종 문화체험 행사에 교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서교감에 힘쓰고 있으며, 앙코르-경주엑스포 입장권 3만매 강매는 사실이 아니며, 개막 후 5일 동안 관람객은 3만 3천262명으로 주로 저녁시간에 관람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뉴시스 지난 11월 22일~26일에 보도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 관련 기사 중 아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앙코르-경주엑스포 ‘엑스포는 그림의 떡’』 제하의 기사의 경우 앙코르와트 기후특성을 고려, 당초부터 엑스포 관람시간을 협의해 결정한 것이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앙코르-경주엑스포, 김관용 지사 ‘푸대접’』 기사의 경우 김 지사가 비표가 붙은 고급의전차량으로 행사장에 입장했고 어떤 실랑이도 없었기 때문에 푸대접을 받은게 아닙니다.

홍보관에서 경주시를 홀대했다는 기사는 엑스포 홍보관에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신라토기 등이 들어있어 사실과 다릅니다.

『아직도 준비중인...』이라는 사진은 개막식이 끝난 후 VIP석의 해체장면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것이고 『엑스포 관람경비...』 기사의 경우 여행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직위가 특혜를 줬다는 것도 근거가 없음을 밝힙니다.

특히 캄보디아 시엠립주 인구는 보도된 것과 달리 현지 한국 대사관 자료로 72만명, 1인당 GDP는 2005년 기준 454달러이며 입장권 3만매 강매는 사실무근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뉴스' (www.newsis.com) 초기화면에 24시간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2월 29일까지 위 2·3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8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KTX광명역의 무질서한 주차난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11월 21일 21:00)

내 용 : ▷앵커 : KTX 광명역,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말이 아닙니다.

주변 6차선 차길은 아예 주차장으로 변해버려서 잦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는지 장○○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 KTX광명역 바로 옆에 있는 6차선 도로.

차들이 달려야 할 차도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빈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이 되면서 원

래 있던 신호등은 있으나마나 하게 됐고 길이라도 건너려면 이렇게 차 사이를 비집고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공간이 너무 좁아 엉금엉금 속도를 줄이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후진에, 좌회전에, 주차하는 차까지.

제각각 움직이는 차들 때문에 엉키고 막히고.

도로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합니다. (중략)

▷기자 : 주차했다가 차를 훼손당했다며 역무실로 찾아와 화풀이를 하는 일도 비밀비제합니다.

▷정○○ (광명역 이용객) : 나 같은 경우 벌써 두번째 당하는 건데 전에는 그냥 넘어 갔는데 오늘은 열받아서 차까지 다 찌그러졌잖아. 택카차 기사가 그러는데 자기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와서도 (핑크난 차) 벌써 2백대 견인해 갔다는 거야.

▷기자 : 이렇게 도로에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이유는 광명역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입니다.

광명역 주차장의 수용가능 차량은 1,600여 대로 주말이면 3,000대 넘게 차량이 몰려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행렬은 무려 800m가 넘게 이어집니다.

KTX광명역 이용객들은 지방에 가려는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

문제는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철이 아예 없고 버스편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KTX를 타고 지방에 가려면 별 수 없이 승용차를 몰고 와야 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11월 21일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KTX광명역 주차실태에 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실명으로 방송에 내보내 신청인의 음성권과 초상권을 침해하고, 신청인을 불법주차를 하고도 그 피해를 역사 측에 묻는 몰지각한 이용객으로 묘사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1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고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2007년 1월 6일까지 MBC-TV 12:00 <TV속의 TV> 중에 <별지> 보도문을

방송하되, 원 조정대상보도(「KTX광명역, 주차장된 6차선 도로」)를 보여주는 동시에 화면 하단에 제목을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기일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취하하고,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담당기자 등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별 지>

• 제 목 : 뉴스데스크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11월 21일 「MBC뉴스데스크」의 광명역 주차실태 보도와 관련해 정○○ 씨는 광명역 주변에 불법주차를 한 사실이 없으며, 광명역 측이 임시주차장으로 홍보한 곳에 주차하였다가 차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고, 방송된 화면은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보도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고려인을 돕는다며 지원받은 국민성금과 국가지원예산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

(이사장 황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2TV : 「추적60분」 프로그램 (2006년 10월 18일

23:05)

내 용 : 2년 전 국내에 있는 한 민간단체가 독립군의 후예인 고려인을 돕겠다며 만든 전단지입니다. 대표적인 고려인 구호 단체로 잘 알려진 고려인돕기운동본부는 대부분 국민성금과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고려인돕기운동본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이 단체는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인터넷에는 이 단체와 관련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간부직을 지내다 탈퇴했다는 한 인사를 만나 소문이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고려인돕기운동본부 前 간부 : (활동 목적의) 대부분일 수도 있고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그거죠. 교회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죠. 고려인 돕기 운동회라는 것은...

또 다른 탈퇴자는 국민들이 모아 준 성금과 구호 물품이 고려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탈퇴자 : (고려인돕기운동본부가) 도와 달라 그래서 자금 받아 가지고 영수증 처리해서 서류로만 해놓고 실제로는 뒤로 빼돌려서 그들의 자체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부분 쓰여졌다고 봐야죠. (중략)

이 종교 단체의 지도자 박모 씨,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고려인 돕기 운동회를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1994년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에 따르면 박씨는 지구종말이 1년 남았으며 종말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4년 박씨의 종교 단체는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농촌을 되살려야 한다며 '한농복구회'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왔습니다. (중략)

▷MC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 성금과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현지 고려인을 돕고 있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 단체는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

러나 법원은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진실에 부합한다는 상당한 소명이 있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려운 해외 동포를 돕자는 데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심 어린 국민들의 성의가 약속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중략)

건물 2층 고려인협회 사무실, 키르키즈스탄에 살고 있는 약 2만 명의 고려인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7년째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씨.

▷기자 : 고려인돕기운동회라고 들어 보셨어요? 고려인돕기운동회.

▷강 : 그런거 못 들어 봤어요

▷기자 : 그 농장을 만들어서 여기 고려인들한테 그 농사일을 가르치고 같이 먹고 살고 이런다는데.

▷강 : 아니...

▷기자 : 아니예요? 전혀 아니예요?

▷강 :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고려인협회에서 알지요

다음날, 고려인돕기운동본부가 지원했다는 한민족 학교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민족 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은 차로 네 시간 거리.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바다 같은 호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중략)

취재진이 찾아간 것은 금요일 오후. 농장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만 정문 앞 표지판에서 한민족 학교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 안에서 고려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중략)

▷취재진 : 여기 고려인들이 있어요?

▷이○○ (KS 돌나라 한농 농장 대표) : 우리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농사 기술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시키죠. 러시아말이 통해야 되니까.

▷취재진 : 고려인은 말 통역 정도 하는 거네요?

▷농장대표 : 그렇죠. 통역하고 농사 지도하고.

▷취재진 : 안녕하세요? 일하세요?

▷농장인 : 네, 일합니다.

▷취재진 : 어디서 오셨어요?

▷농장인 :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에게 빨리 떠나줄 것을 요구한 사람도 조선족이었습니다.

다. (중략)

2002년 10월 키르키즈스탄 한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차이카 농장 근처에서 조선족 30대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고, 확인 결과 농장에 일하러 온 140명의 조선족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 마을 사람들은 차이카 농장을 종교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중략)

당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종교청에서 키르키즈스탄 내무부 상부에 올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도 농장 안에 중국인이 많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조사를 벌인 종교청 직원은 외국에서 온 통역 담당 고려인 부부가 있었을 뿐 현지 고려인은 아예 못 봤다고 했습니다. (중략)

2003년 돌나라 한농에서 발간한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박씨는 탈출한 중국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차이카 농장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고려인돕기운동본부가 지원해 온 농장안의 한민족 학교에서는 누가 후원금품을 전달 받아 사용해 온 것일까? (중략)

한 자동차 회사는 소형 승용차 24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차량은 두 대뿐. 운동본부의 관계자는 일부 차량의 부품을 팔아서 고려인을 돕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의류 지원도 많았습니다. L사가 5년 동안 고려인돕기운동본부에 지원한 옷은 수천 벌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지원된 옷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한민족 학교에는 현지 고려인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이 학교에서 한글 교육과 한민족 교육문화를 전수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내용은 충실했을까? 이 학교에 6개월 동안 다닌 적이 있다는 한농북구회 회원 자녀를 통해 교육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키르키즈스탄 한민족 학교 前 학생 : 주로 교주의 말씀 시간이 3분의 2정도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한글이든지 그런 거.

다른 할머니의 방에 가 봤습니다. 이 방 주인 할머니 역시 사할린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

습니다. 책꽂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특정 종교 단체 관련 서적들입니다.

▷할머니 : ○○ 선생님(박○○)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MC : 고려인돕기운동본부에서 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분명히 고려인을 위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지에서 고려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성금이 지원된 양로원에는 특정 종교의 상징이 그려져 있고, 또 연락처에는 모두 같은 성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종교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중략)

▷MC : 2천억 원이 넘는 국민 성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개인 돈이라면 저렇게 허술하게 처리했겠습니까? 자, 이○○ PD! 이 고려인돕기운동본부가 제출한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영수증을 제출한 겁니까?

▷이PD : 고려인돕기운동본부에서 처음에는 영수증을 구하기 어려워 현지에 있는 한 회사에 사용내역을 알려주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현지에서 공증을 받은 영수증이라며 새로운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설사 그 영수증이 맞다고 하더라도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MC : 자,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국민 성금은 그렇게 대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전하고 싶군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이PD : 민간 봉사 단체의 활동에 대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은 순수성과 헌신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려인돕기운동본부가 고려인을 위해 애를 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민 성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프로그램에서는 2006년 10월 18일에 사단법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가 고려인을 돕는다며 국민성

금 등을 지원받아 이를 유용하였거나 대부분 자신이 속해있는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시설이나 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방송은 허위 정보를 유포시킨 제보자들의 말만 믿고 취재를 시작하여 방송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고려인돕기운동본부는 55만 고려인동포의 현지 자립정착을 지원하고 교류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순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단법인 제466호, 외교통상부 등록 제16호 NGO이자 재정경제부 지정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서 그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었거나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며, 사단법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는 현재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 21개 시설 및 지역을 대상으로 폭넓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동포지원단체로서 「추적60분」이 지적한 행정자치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업체 등으로

부터 지원받거나 기탁 받은 금품 등을 유용하거나, 위 금품 등의 대부분을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시설이나 그 회원들을 위하여 지원한 사실이 없고, 한민족 동포들을 위해서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송내용으로 관련단체 및 수많은 고려인 동포들에게 물심양면의 큰 피해를 끼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는 현지에서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정정보도할 수 없고 반론의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반론보도도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동료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3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광주PBC-R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광주PBC-R : (1) 「뉴스」 프로그램 (2006년 7월 7일 10:05)

내 용 : ▷앵커 : 여수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여성 사회복지사를 원장이 성추행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여수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이곳은 부모가 없는 90여 명의 아동들이 사회복지사의 도

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학에서 노인복지를 전공한 21살 A씨가 이곳에 들어온 건 지난해 6월. 대학시절 틈틈이 봉사활동을 했던 터라 그리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사와 동시에 원장인 37살 B씨는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을 건네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4월부터는 원장실에서 성폭행이 이뤄졌습니다.

2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도 A씨와 비슷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지만 상급자인 B씨의 보복이 두려워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A씨가 경험한 이 시설의 분위기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A씨는 현재 여수성폭력상담소에 있는 쉼터의 보호를 받으며 B씨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략)

경찰은 현재 동료 사회복지사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평화방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 6시 5분에 방송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PBC 뉴스 김OO입니다.

(2) 「함께하는 세상, 오늘!」 프로그램 (2006년 7월 7일 18:05)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광주 PBC-R은 지난 7월 7일 「뉴스」, 「함께하는 세상, 오늘!」 프로그램에서 여수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여성 사회복지사 A모 씨를 성

폭행한 혐의로 복지시설 전 원장 B모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모 원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추후보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으로부터 피해입은 피해자가 고등검찰에 항고한 상태이므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추후보도할 수 없다. □

장수군이 ‘농산물홍보전시관’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3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장수군 (군수 장 재 영)

피신청인 : 전북대중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1.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전북대중일보 : 『입찰공고 공문변조 파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7일자 1면)

내 용 : 장수군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안)가 사실과 달리 급조된 것으로 밝혀져 장수군은 물론 도내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장수군이 본보 기사를 읽고 군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농산물홍보전시관」 별관 2층을 전자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임대한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공문서를 급조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급조된 허위공문서는 『장수군 공고 제2006-427호』로서 원래 공고사항은 「주춘마을 전통공공시설 초가이영공사」이지만 급조된 공문서도 같은 공고번

호로서 공고사항은 「장수전통식품 전시판매장 2층 관리자 입찰」건으로 표기되어 있어 급조의혹이 있다. (중략)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은 용도가 변경될 수 없다”고 전제하며 “다만 애초신청했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물을 짓기 전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만 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민 K씨는 “농산물홍보관 별관 2층에서 지난 7월경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7월경에 별관 2층으로 세탁기가 배달 된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도 살지 않았는데 왜 지난 7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가 부과됐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7일자 1면 『입찰공고 공문변조 파문』 제하의 기사에서 장수군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안)가 사실과 달라 급조된 것

이라고 보도하면서 “장수군이 본보 기사를 읽고 군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농산물홍보전시관」 별관 2층에 대해 전자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임대한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공문서를 급조했으며, 전시관이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 무단 용도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본 공고안은 지난 10월 31일 군공고 대장에 기재 후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전자온비드에 11월 1일에 게시 의뢰한 사항으로 온라인상의 전자입찰 기록은 변조할 수 없고, 위 전시장은 ‘전통식품, 특산품 등의 전시·판매’ 사용목적 하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아 지금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전북조정3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장수군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군수 장 재 영

피신청인 : 전북대중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38

대표이사 이 희 석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북대중일보 1면 우측하단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입찰공고 공문변조 파문) 활자 크기와 같게,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0.

<별 지>

• 제 목 : 입찰공고 공문변조 파문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12월 7일자에 『입찰공고 공문변조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장수군이 본보 기사를 읽고 「농산물홍보전시관」 별관 2층에 대해 전자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임대한 것처럼 공문서를 급조했으며, 전통식품·특산품전시판매장이 행정자치부 승인없이 무단 용도변경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실확인 결과, 장수군의 입찰공고는 10. 31.자에 군 공고대장에 기재한 후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전자온비드에 11. 1.에 게시의뢰한 사항으로서 온라인상 전자입찰 기록은 변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장수군 공고 제2006-427호』로서 원래 공고되었던 「주촌마을 전통공공시설 추가이영공사」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단말기 입력 실수로 인해 『제2006-437호』로 기재되어야 할 「농산물홍보전시관」 별관 2층에 대한 전자입찰건의 번호가 『제2006-427호』로 잘못 기재된 것이며, 농산물홍보전시관은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신청인 병원이 응급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찰과 뒷거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의료법인 ○○의료재단(○○병원)

(관리인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9월 28일 21:30)

내 용 : ▷앵커 :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사고현장에 쏜살같이 달려오는 한 병원의 응급차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과 경찰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OO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 마포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구급차가 급하게 출발합니다.

20분가량 걸려 도착한 곳은 서울 양평동의 교통사고 현장.

근처 5분 거리에 병원들이 있지만 구급차는 1분 1초가 아쉬운 응급환자를 태우고 자기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소방서 관계자 : 교통사고 현장에 직접 소방차를 갖고 가면 아주 사고 현장에 득달같이 달려오는 게 OO병원 응급차량입니다.

▷기자 : 이 병원의 작년 4월 입원환자 목록.

82명의 환자 가운데 64명.

즉 80% 가량이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인근 주민 : 교통사고 전문병원이에요.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았어요.

▷기자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병원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병원 관계자 : (교통사고가 나면) 담당경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 병원 연락처로 전화를 주죠.

▷기자 : 교통경찰만 연락을 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형사와 직원들은 치료가 필요한 폭행사건 관련자들도 우선적으로 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대가는 금품과 각종 혜택이었습니다.

병원은 이렇게 데려온 환자가 입원하면 5만 원, 그렇지 않으면 2만 원씩을 해당 경찰관에게 지급했다고 이 내부자는 증언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평균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제보를 해 준 사람들이죠.

▷기자 : 아예 경찰을 위한 특별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보험처리가 되는 질병은 전액 무료, 경찰관 가족도 병원비를 30%씩 깎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품을 받았다는 마포서와 서대문 경찰관 50여명을 찾아가보았습니다.

알고는 지냈지만 뇌물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중략)

▷기자 : 하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마포경찰서 간부들은 본서 교통과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일부가 작년 말까지 병원 측과 부적절한 금품거래를 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MBC-TV는 지난 9월 28일 「MBC뉴스 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경찰이 브로커”라는 제목으로 마포구의 한 개인병원이 경찰과 뒷거래를 하며 근처 병원들보다 먼저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이송해간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병원은 경찰과 부적절한 금품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2004년 3월 18일 MBC-TV에서 “사람잡는 응급차”로 동일한 내용을 방영한 이후, 법원소송을 거쳐 2006년 5월 3일 관련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요구한 843억 원이 선심·민원성 예산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심 상 정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大選, 총선앞둔 ‘선심·민원성 예산’ 3조 5천억』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5일자 A4면)

내 용 :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16개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470여 건,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민원·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가 4일 국회 예산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상임위가 증액한 민원·선심성 예산은 2조 4,600억여 원, 예결위가 증액요구한 예산은 1조여 원이었다. 민원·선심성 예산이란, 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나 상임위 관련 사업, 각종 단체 연관 예산으로, 선거에서 표와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원안보다 증액 요구한 예산은 총 600여 건, 5조 3,000여억 원에 이르러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에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조 4,000억여 원이 늘었으나 예결위에서 대부분 깎였다. 국회가 대규모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은 것은 내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관계자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중략)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36건에 1조 2,636억 원의 증액요청을 했고, 한나라당은 86건에 1조 2,052억 원이었다. 민주당 9건에 860억 원, 민주노동당 4건 843억 원, 국민 중심당 5건 344억 원 순이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5일자 A4면 『大選, 총선앞둔 ‘선심·민원성 예산’ 3조5천억』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6개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470여 건,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민원·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4건에 843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심상정 의원은 문화·예술활성화사업비 2억 원, 수산업발전기금 200억 원, PSO 보상비 636억 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시설장비보강지자체 보조금 5억 원 등과 같은 서민지원 예산을 요구했을 뿐, 선심·민원성 예산의 증액은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6일자 A2면)

내 용 : 본지 5일자 A4면 『大選·총선앞둔 ‘선심·민원성 예산’ 3조 5,000억』 기사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시간벌지 저소득층을 위한 철도벽지노선 지원, 수입수산물 피해 어민 지원 등 서민 지원 예산을 요구했을 뿐, 선심성 예산 증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전직 치안감 출신 변호사인 신청인이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대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종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치안감만 3명’ 떨고 있는 경찰』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7일자 10면)

내 용 : 경찰이 제이유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저런 제이유그룹 리스트에는 수십명의 경

찰 인사 이름이 올라 있다. 현직 치안감만 3명이다. (중략)

이들 외에 제이유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지방경찰청의 ㄱ치안감, 경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업한 ㄴ씨 등도 모두 방배경찰서장 경력을 갖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7일자 10면 『'치안감만 3명' 떨고 있는 경찰』 제하의 기사에서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 리스트에 오른 수십명의 경찰인사들 중에는 현직 치안감 3명 외에 지방경찰

청의 ㄱ치안감, 경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업한 ㄴ씨 등 전직 방배경찰서장 경력을 가진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서 거론된 전직 치안감출신 ㄴ변호사는 제이유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전직 치안감 출신 변호사인 신청인이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대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배서장을 지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7일자 8면 『한의상씨가 정·관계 연결고리』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제이유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에 연루된 한의상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정·관계 로비 명단 12명 중에 전·현직 경찰관은 6명이었으며, 이중 4명이 방배경찰서와 관련된 인물로서 전직 치안감 출신 A변호사는 1997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방배서장을 지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기사에서 거론된 전직 치안감출신 ㄴ변호사는 제이유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보도내용

서울신문 : 『한의상씨가 정·관계 연결고리』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7일자 8면)

내 용 : (전략) 한씨는 통신다단계업체 한초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다단계에 뛰어들었으며 회사관할 서울 방배경찰서 행정자문위원을 지내며 경찰과 인연을 맺었다.

검찰이 한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정·관계 로비 명단 12명 중에 전·현직 경찰관이 6명 나왔다.

이 중 4명이 방배경찰서와 관련된 인사들로 드러났다. 전직 치안감 출신 A변호사는 1997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현직 B(52)치안감은 9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한씨와 5,000만 원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C(50) 치안감은 2000년 1월

아시안게임 참관을 위해 도하를 방문한 수원시 공무원들이 추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수원시 (시장 김 용 서)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노컷뉴스 : (1) 『“술·여자 없어?” 수원시 공무원, 도하서 추태』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5일자)

내 용 : 아시안게임 참관(?)차 카타르 도하에 온 수원시청 소속 일부 공무원의 ‘추태’가 현지 교민과 선수단 관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4일(한국시간) 남자농구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 바스켓볼 인도어홀에는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 7-8명이 경기장에 나타났지만 정작 경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경기는 보는 등 마는 등 하던 이들 중 일부는 현지 교민으로 보이는 한국인에게 다가가 “이곳에 여자 있는데는 없느냐, 술 파는 데는 없느냐”며 묻고 다녔다. (중략)

이들의 언행에 눈살을 찌푸리던 한 교민이 “자 체경비로 왔느냐”고 묻자 “어떻게 자체경비로...”라며 자리를 피했다.

이들을 가이드했다는 모씨는 “이들을 안내하는 도중 현지 여성들에게 ‘이쁘다’, ‘좋은데..’ 등 성희롱적인 농담을 자주해 불안해서 혼났다”며 “만일 카타르인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었으면, 당장 체포됐을 것”이라며 주위에 있는 기자에게 “자체하도록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후략)

(2) 『도하추태, 수원시 공무원들 거짓말 속속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6일자)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카타르 도하 추태 보

도와 관련, 수원시가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도하에서의 이들의 추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지 교민인 A씨에 따르면, 자신이 수원시청 공무원이라고 밝힌 인사가 “현지 가이드를 잘못 만나 3일째 호텔방에서 뒹굴고 있다”며 “4일 두바이로 갈 예정이어서 도하에서의 마지막 밤이니 술도 팔고 좋은 곳(?)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고용한 현지 가이드는 카타르 항공 파트타임 승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민 A씨는 술 파는 곳은 없어 민속춤 추는 곳을 권유했지만, 이 공무원은 “함께 온 지역 유지들을 접대해야 하니 그럼 두바이에 여자와 술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말해 A씨는 결국 한국인이 경영하는 단란주점과 ‘사이클론’이라는 나이트클럽을 알려주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5일자 『“술·여자 없어?” 수원시 공무원, 도하서 추태』, 12월 6일자 『도하추태, 수원시 공무원들 거짓말 속속 드러나...』 제하의 기사에서 아시안게임 참관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 간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 일부가 경기에는 관심이 없이, 술과 여자를 찾는 추태를 보여 현지 교민과 선수단 관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수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나눈 상대는 현지교민이 아닌 국내 모기업 직원 배모 씨로, 한국인인 그가 6개월 전 도하에 도착했을 당시 현지 적응이 어려워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도하에는 놀 곳이 없지만 두바이에 가면 관광할 곳이나 술집 등이 많다고 안내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이드 모씨의 말처럼 수원시 공무원 일부가 현지 여성들에

게 성희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출장 공무원들의 경비는 시청국외경비가 아닌 전액 자부담이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독일 마을 조성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0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남해군 (군수 하 영 제)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2006년 9월 17일 22:40)

내 용 : (전략) ▷기자 : 한반도 남쪽 끝자락 경상남도 남해군, 해상국립공원이 자리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독일 교포들의 정착촌 독일마을은 태평양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산자락에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인 이국적인 독일식 주택들의 아름다운 초가을 오후, 평온한 마을 풍경과는 전혀 판판으로 마을회관에서는 격한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회의가 열린 회관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주민회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중략)

▷기자 : 어려웠던 시절 떠나보내 국민을 잊지 않고 끝까지 쟁기는 조국, 독일마을은 그런 고마운 조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된 독일마을, 그런데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던 김두관 당시 남해군수가 2002년에 물러나고 새 군수가 취임하면서 독일 마을은 빼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해군청이 믿을만하다고 정해준 주택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광부로 독일에 건너가 목회자가 된 이승준 목사의 집은 지금 4년째 공사중입니다. (중략)

▷기자 : 이미 입주한 독일 교포들이 민박업에 반대하면서 마을에 사는 한국인 친척들과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중략)

▷기자 : 당초 남해군은 10년 안에는 같은 독일 교포들 외에는 팔거나 빌려줄 수 없다는 지침을 세웠지만 지금은 있으나마나한 지침이 돼 버렸습니다.

▷김○○(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사인(개인)간에 계약을 자기들끼리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려움이 있죠.

▷기자 : 의료센터건설, 119비상 호출시스템 구축, 독일식 공원조성, 독일식 상점, 독일 빵집, 독일 교포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화려한 계획들은 2003년을 전후로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몇 안 되는 교포들을 위해 예산을 쓸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독일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국의 약속을 믿고 귀국한 교포들

▷타이스 영숙(62세, 독일교포) : 다 안 지켜졌어, 여기가 정착 마을. 우리 교포정착 휴양마을이라는 게 이것부터 틀린 거예요.

▷기자 : 지금 독일 마을에서 계획대로 된 건 간판과 독일식 지붕뿐입니다.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김두관 당시 남해군수와 지금의 남해군수를 만났습니다. 왜 잘못됐는지부터 서로 달랐습니다.

▷김두관(前 남해군수) : 적어도 내가 판단하고 내 느낌은 전임군수가 했던 일이라고 방기한 거라

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자 : 잘못된 예측이라고 봐야합니까?

▷하영제(남해군수) : 전반적인 평가는 조금 성급했다고 봅니다.

▷기자 : 책임공방은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MBC-TV는 지난 9월 17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조국이 이럴 수가...”라는 제목으로 남해군 독일마을과 관련하여 “주민회의가 아수라장으로 되어 결국 주민회의는 시작도 못해”, “남해군청이 민을만 하다고 정해준 주택시공업체가 부도가 나”, “이미 입주한 독일 교포들이 민박업에 반대하면서 마을에 사는 한국인 친척들과 싸움이 잦아”, “남해군은 10년 안에는 같은 독일교포 외에는 팔거나 빌려줄 수도 없다는 지침을 세웠지만 지금은 있으나마나한 지침이 돼 버려”, “의료센터건설, 119비상 호출시스템구축, 독일식 공원조성, 독일식 상점, 독일 빵집, 독일교포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화려한 계획들은 2003년 전후로 모두 백지화 돼”, “지금 독일마을에서 계획대로 된 건 간판과 독일식 지붕뿐”, “책임 공방은 정치적 논란으로 까지 번져” 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남해군수는 주민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주민간의 다툼보다는 「시사매거진 2580」 취재진이 주민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취재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며, 부도난 주택시공업체는 남해군에서 지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입주자 개인이 계약한 업체이고, 입주한 독일교포 모두가 민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한 9가구 중 8가구가 민박업을 신청하여 민박을 하고 있으며 10년 안에는 같은 독일교포외에는 팔거나 빌려줄 수도 없다는 지침은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75억여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시설, 오폐수처리장, 전기·통신, 마을회관, 전광대, 주차장, 관리실 등 공공사업을 완료 하였고, 의료센터건설, 119비상호출시스템구축은 산발적인 입주와 아직 입주하지 않은 독

일교포들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입주 추이를 보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독일식 공원조성, 독일식 상점, 독일 빵집, 개인박물관 등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아직까지 마을이 형성되지 않아 투자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제든지 투자가가 나타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현 군수와 독일마을 조성계획이 당초부터 갖고 있던 문제점과 그동안 남해군에서 추진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음에도 편집되어 보도되지 않아 전 군수가 입안했던 사업을 현 군수가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을 방기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메리칸 빌리지와 저팬타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전국 20개시군(22곳)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독일마을 조성사업과는 근본 취지와 목적 등이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지난 9월 17일 「시사매거진 2580」 ‘남해군 독일마을 사업’에 관한 보도에 대해 남해군은, 현재까지 75억여 원의 예산과 남해군청의 노력으로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은 이미 완료되었고, 전 군수가 입안한 독일마을 조성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현 군수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MBC-TV 「TV속의 TV」 프로그램 말미에 2007년 1월 10일까지 보도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반론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TV속의 TV」 프로그램 (2006년 12월 30일 12: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제이유그룹 사업자로 활동하며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집 수 일 : 2006. 12. 1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시사저널 : 『남이 하면 비리, 내가 하면 비즈니스?』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2일자 34~
36면)

내 용 : (전략) 예를 들어 ○○○ 안○○ 대표이사
사장의 부인 임아무개 씨(56) 사례가 그렇다.

임씨는 2003년 6월부터 2006년 3월 8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제이유 사업자로 가입해 활동했다. 임
씨는 자신을 동명이인 사업자와 구별하기 위해
‘임○○’라고 불렀다. J는 제이유그룹의 머리글자
다. 임씨는 ‘디렉터’ 직급이었는데, 이는 자기 라
인 아래에 ‘마스터’ 사업자를 세 명 이상 둔 상위
사업자를 뜻한다. 임씨는 마스터 10명 이상을 두었
다.

제이유 사업자 가운데 임씨를 ‘열성 회원’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다. 임씨를 2004년 가을께 리
츠칼튼 호텔 지하 2층 그랜드볼룸 월례 만찬장
에서 보았다는 한 제이유 관계자가 있었다. 그날은
에이전트 세 명 이상을 추천한 우수 사업자를 초청
해 축하하는 자리였다. 당시 임씨의 남편은 ○○○
전무였다. 주수도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임씨의
적극성을 소개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했다고 한다.

임씨는 <시사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수도
회장이 예전 학원 선생을 하실 때, ○○아파트 부녀
회를 상대로 영어 교습을 한 적이 있다. 그 인연으
로 알게 되어 2003년께 친구 따라 모임에 한두 번
간 것이 전부다. 매출액은 2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 수당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수당을

받는 국민은행 통장으로 물품 구매를 같이 했기
때문에 총 수당을 얼마 받았는지 알기 힘들다. 이
익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사저
널>이 파악한 임씨의 매출액은 최소 6천여만 원이
다. 구매 금액의 150%를 현금수당으로 받는 관행
과 활동 시기(2003년)를 고려하면 임씨가 받은 수
당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도 가능하다. 임씨
는 “남편이 이 사업을 알고 나서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에 실제 활동한 것은 몇 달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제이유그룹은 ○○○와 여러 차례 후원 사업도
함께 했다. 모금방송 <희망을 보냅니다> 프로그램
을 후원하는가 하면, 청춘 버라이어티쇼 <가슴을
열어라>에 주수도 회장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2003년, 2004년 대중상 시상식을 ○○○ 프로덕션과
제이유프로덕션이 공동 주관했고 ○○○는 중계료
를 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12일자 34~36면 『남
이 하면 비리, 내가 하면 비즈니스?』 제하의 기사
에서 ○○○ 대표이사 사장 부인인 임○○ 씨가 2003
년 6월부터 2006년 3월 8일까지 2년 9개월간 제이
유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에 이르는 수당을 받았으며, 부인의 활동에 힘입어
제이유그룹과 ○○○와는 여러 차례 후원사업을 함
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임○○씨의 실제 활동기간은 2003년 도
중 몇 개월에 불과하며 받은 수당 역시 7,684,546원
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TV의 「희망을 보
냅니다」 모금 방송과 청춘 버라이어티 쇼 「가슴을
열어라」 프로그램에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이 직
접 출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2003~2004
년 대중상 시상식은 영화인협회가 주관한 것으로
○○○는 중계료만 받았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

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환경부가 CNG 버스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치 범)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집 수 일 : 2006. 12. 15.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KBS-1TV : (1)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1월
10일 21:00)

내 용 : (전략) ▷앵커 : 환경부는 CNG 버스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쉬쉬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 환경부가 지난 2003년 12월에 제작한 CNG 차량 평가 요약 보고서입니다.

CNG 버스 두 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경유 차량과 비교해 801%, 4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 기타 오염물질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만든 외부 공개용 보고서 복사본입니다. 여기에는 어찌된 일인지 포름알데히드 배출량 부분은 빠졌습니다.

▷평가 참여 관계자 : 보고서에는 실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로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에 어떻게 아마 좀 해서 실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리포트 : 요약보고서와 외부용 보고서가 다른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말을 피합니다. (후략)

(2)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11월 11일 06:00)

▷앵커 : 도심의 대기오염의 주범인 디젤버스를 대체해 도입된 천연가스 연료 즉 CNG 버스가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CNG 버스에서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내뿜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리포터 : 날로 심각해지는 매연공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0년 공해 물질을 내뿜는 경유버스 대신 무공해 버스인 천연가스 즉 CNG 버스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육안으로도 ADO 경유 차량과 CNG 버스와의 매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연이 크게 줄었다는 이 CNG 버스는 말 그대로 무공해일까?

운행중인 CNG 버스에서 배기가스를 채집했습니다.

정부가 공인하는 한국화학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엔진의 불완전 연소로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사회문제가 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방식에 의한 수치는 2000년식 CNG 버스에서 평균 세제곱미터 당 34 밀리그램...

한 차량에서는 최고 45 밀리그램 즉, 40 피피엠까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3 피피엠 정도만으로도 기관지

등에 염증을 일으키고, 20 피피엠에서는 호흡곤란, 40피피엠에서는 기도 손상, 그리고 50 피피엠에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중략)

▷양○○(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 : 경유차량 대비해서 CNG 버스는 열 배 이상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한 규제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CNG 버스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촉매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4년에 도입된 6천여 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환경부 교통문제연구소) : 이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4년 이전 버스에 대해서는 조사 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리포터 : 정부는 CNG 버스도입으로 눈에 보이는 미세 먼지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CNG 버스 발암물질 배출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KBS-1TV는 지난 11월 10일 「KBS뉴스 9」, 11월 11일 「KBS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발암물질 내뿜는 무공해 CNG 버스”, “CNG 버스 발암물질 배출 쉬워”, “무공해 버스가 발암물질 배출”이라는 제목 하에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지칭된 포름알데히드의 배출부분이 누락된 연구보고서 복사본과 연구 참여자의 기억에 의한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정부에서 CNG 버스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의 배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연구보고서에는 포름알데히드 배출사실이 누락되지 않았고, 환경부가 포름알데히드 배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개용 보고서를 별도 작성한 바 없으며, 연구보고서는 이미

2003년 11월에 공개되어 환경부가 CNG 버스에서 포름알데히드 배출 사실을 쉬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CNG 버스 발암물질 배출 관련 반론보도문

•내 용 : KBS-1TV는 지난 11월 10일 「KBS뉴스 9」, 11월 11일 「KBS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발암물질 내뿜는 무공해 CNG 버스”, “CNG 버스 발암물질 배출 쉬워”, “무공해 버스가 발암물질 배출”이라는 제목 하에 연구보고서 중 일부 사실만을 인용하여 디젤버스 보다 CNG 버스가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내뿜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차종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는 CNG 버스가 디젤버스에 비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나, 발암위험성이 포름알데히드에 비해 훨씬 큰 미세먼지(PM)는 100%, 벤젠이 포함된 BTEX는 66% 이상 저감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 탁월하게 유리함에도,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배출된다는 사실만으로 CNG 버스가 디젤버스에 비하여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표자 장관 이 치 범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1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조정대리인 전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KBS-1TV 「KBS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별지1>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KBS-1TV 「뉴스광장」 프로그램 말미에 <별지2>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4.

<별지 1>

- 제 목 : 'CNG 버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KBS는 지난달 10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환경부가 CNG 버스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은폐하려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환경부가 포름알데히드 배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개용 보고서를 별도

로 작성하거나 CNG 버스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감춘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별지 2>

- 제 목 : 'CNG 버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KBS는 지난달 10일 「KBS뉴스9」, 11일 「KBS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환경부가 CNG 버스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은폐하려하고 있고, CNG버스가 디젤버스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내뿜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CNG버스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환경부 의뢰로 작성된 용역보고서에 의해 공개되어 환경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CNG 버스가 디젤버스에 비해 포름알데히드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름알데히드보다 발암위험성이 큰 미세먼지와 벤젠 등은 오히려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CNG 버스가 디젤버스보다 인체에 더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좌파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문화계 左편향 바로잡기 나선 문화미래포럼』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8일

자 A47면)

내 용 : 문화가 정치와 이념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는 집권 초 문화혁명을 연상케 하는 '문화계 새판 짜기'를 강행했다. 우선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의 요직들이 좌(左)편향적인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문화권력'을 쥐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예산도 코드에 따라 편중 배정됐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특정 이념이 창작활동에 반영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1일 출범하는 문화미래포럼이 문화계의 이런 좌편향을 바로잡고 정치로부터 문화예술의 순수성과 다양성을 지키겠다고 나서서 주목된다. 문화에

술인 70여 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가 밝힌 실상은 충격적이다. 복거일(소설가) 대표는 “문화예술인 단체가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나 민족문화작가회의 등 ‘민족’을 강조하는 단체 일색이며, 중도 보수적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이 미약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민예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가한 좌파 단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민족문화작가회의는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 혐의 발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 소속이거나 편향된 이념 성향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민 세금인 예산의 편파적 집행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의 소속 단체나 자신에게 지원금을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18일자 A47면 『문화계 좌편향 바로잡기 나선 문화미래포럼』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은 한미자유무

역협정(FTA)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가한 좌파 단체이며,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가 민예총과 민족문화작가회의의 소속이거나 편향된 이념 성향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위원들 자신의 소속 단체나 자신에게 지원금을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예총은 찬반의견이 오가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하여 좌파집단인 것은 아니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자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상이 진행될 것을 촉구하는 행위였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 중 민예총 소속은 2명에 불과할뿐더러 대다수 위원들이 민예총과 민족문화작가회의의 소속이 아니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모 의원 등에게 지적된 위원들의 자기단체 지원 배정 문제는 자금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 오해임을 해당기관에 이미 해명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현 정부 들어 출범한 문화예술위원회가 진보진영 문화예술인들만으로 구성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5.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신동아 : 『‘코드진보’가 거머쥔 대한민국 문화권력』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호 23~242면)
내 용 : (전략) ‘편파 인사’란 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진보 진영 사람들이 문화단체의 요직을 ‘점수’해버린 것을 일컫는다.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 임명은 현 정부가 취임 초부터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인 문화계 ‘새판 짜기’의 완결편이었다. 먼저 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이창동 씨가 문화부 장관에 임명되어 문화행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문화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문예진흥원(現 문화

예술위원회)은 원장에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인 소설가 현기영 씨가 임명됐고, 사무총장에는 작가회의 소속 시인 강형철 씨가 임명됐다. 문화관광부 산하 정책 연구기관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엔 시민단체인 문화연대 소속의 미술이론가 이영욱 씨가 취임했다. 문화행정, 지원, 이론 연구기관을 장악한 데 이어 실무적인 문화기관에 해당하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국악원까지 진보 진영이 싹쓸이한 것이다.

당시 연극인 100인 성명에 참여한 한 인사는 “인민군이 남한을 무력 점령하더라도 민심 수습을 염두에 둔다면 이처럼 무모하고 안하무인식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코드’에 맞춰 단체장들을 임명하느라 바쁘던 문화관광부 관리들의 입에서는 주저 없이 “우리는 지금 혁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나머지 문화계 인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편파 인사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서서히 잦아들고 말았다. (중략)

2005년 9월 정식 출범한 문화예술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인 문학평론가 김병익 씨를 비롯해 강준혁(문화기획자), 김연호(출판인), 김정현(화가), 김현자(무용가), 박신의(미술평론가), 박종관(민예총 충북지회), 전효관(전남대 교수), 정완규(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한명희(한국민족음악가연합 이사장) 씨가 위원들이다. 이들 가운데 과거 예술단체를 대표해온 한국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속 인사는 정완규 씨 한 명뿐이다. 나머지는 소위 진보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분석이다. (중략)

올해 한국예총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5억 8,000만 원으로 민예총과 같은 액수이다. 민예총은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4년에는 65%가 늘어난 5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국예총은 오히려 0.85% 삭감됐다.

겉으로는 똑같은 액수를 민예총과 한국예총에 평등하게 나눠준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예총은 전국에 700여 지회를 거느리며 12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 견주어 민예총 소속 예술인은 10만여 명에 불과하다. 숫자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액수를 지원한 것이다. (중략)

현 정권 아래서 문화계의 실세는 민예총과 문화연대이다. 민예총은 한국예총의 반대 진영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한국예총과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소수 세력이었다.

1988년 창립된 민예총은 ‘민족예술의 구심점’임을 앞세운다. 산하단체들의 이름을 보면 맨 앞에 ‘민족’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이들의 단체 소개글에는 ‘해방 이후 민주화와 함께해온 문화예술운동의 성과를 대중화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한다. 부정적 과거유산의 극복과 사회개혁을 통해 민족문화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한다. 남북문화 교류에 힘쓰며 통일문화를 끊임없이 준비해 통일의 시대를 열어간다’고 써어 있다.

민예총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빈번하게 발언해왔다. 지난 5월에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주장을 발표했고 4월에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다. (중략)

좌파 진영은 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을 필두로 거의 모든 문화권력을 장악하다시피 했다. 이들은 문화계 행정, 자금, 이론 영역을 한 손에 쥔 상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호 230~242면 『‘코드진보’가 거머쥔 대한민국 문화권력-“인민군이 남한 점령해도 이렇게는 못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개혁진형의 문화예술인’들이 음모적으로 추진하여 성사시킨 기구로 분석하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과 문화연대,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노문모) 모두가 한 부류이며, 이른바 진보진영이 우리나라 문화행정, 지원, 이론연구기관을 장악한 데 이어 실무적인 문화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국악원까지 싹쓸이하였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예총이 민예총에 비해 회원 숫자와 규모가 훨씬 큼에도 동일한 기간문예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구성을 소개하며 위원 중 한국예총 소속인사는 정완규 씨 한명으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진보성향’에 치우쳐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예총은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란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국내 기간문예단체에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조직이며

예술계 전체의 중지를 모아 오랜 논의 끝에 조직된 것이고,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노문모와 같은 정치적 성격을 띤 단체가 아니며, 문화부 38개 산하기관 중 4~5개 기관장의 교체만을 두고 국내 전 문화영역을 진보진영이 싹쓸이 하였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기간문예단체의 지원금 책정은 단체의 지부 개수나 회원 수만을 고려한 단순한 산술계산만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문화예술위원회는 민예총, 문화연대, 한국예총, 한국연극협회, 한국음악협회 등 다양한 인적 구성 요소로 결속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1회빌딩 5층

조정대리인 염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신동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동아> 2007년 2월호 230면에서 242면 사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소제목(문화계 새판 짜기 완결편)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별 지>

• 제 목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의 반론 보도문

• 내 용 : 신동아 2006년 12월호 『‘코드진보’가 거머쥔 대한민국 문화권력-“인민군이 남한 점령해도 이렇게는 못한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기사는 ‘인민군이 남한 점령해도 이렇게는 못한다’라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인사의 말을 제목으로 달아 자극적이고 편향된 인상을 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들이 직접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예술계의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민간합의 기구이다. △민예총과 문화연대, 노문모(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가 한 부류라고 보도되었으나,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단체가 지향하는 바와 구성원에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결성된 ‘노문모’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민예총이 한국예총과 비교해 규모가 다른 데도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배정받아 편파적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민예총과 한국예총을 단순히 지부나 회원수 등 산술적인 면에서만 비교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위세가 대단하고 요란한 움직임에 비해 성과는 별로였다고 인용 보도하였으나, 근거가 희박한 평가이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신동아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호 242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데려간 연수생들을 방치하여 국제미아신세로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 용 달)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11월 18일 20:00)

내 용 : ▷앵커 : 2년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미국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교육은커녕 벌써 2년째 오도 가도 못 하는 떠돌이 신세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미국 동부 뉴저지의 한 영어학원, 한국인 7명이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은 송출업체를 통해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고 영주권 취득까지 도와주겠다는 약속에 일인당 1만 7천 달러, 2천여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말부터 들었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밤에 12시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으니까 먼저와 계시던 분이 나오시더니 “어, 왜 오셨어요 사기인데” 미국에서 처음 들은 한국 사람 말이예요.

▷기자 : 방값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김모 씨(피해자) : 방값이 나왔는데 보니까 8천 불이 밀려 있는 거예요. 안 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동시에 짐을 싸서 하루에 다 도망 나왔어요.

▷기자 : 계약했던 물리치료사 면허 강의는 금새 끝났고 6개월짜리 영어 강의는 녀달만에 중단됐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영어학원에 등록해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일부는 1년에 2천8백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대기 위해 불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들을 미국에 보낸 송출업체는 올해 3월 파산했습니다.

공단 측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 직원 :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포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수생들이) 한번 더 해보겠다고 한 부분이 일단 있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기회를 한번 드린 거였어요.

▷기자 : 무책임한 해외 인력 송출업체와 산업인력공단을 믿었던 피해자들만 국제미아 신세로 떠돌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SBS-TV 지난 11월 18일 「SBS8뉴스」 프로그램에서 “‘국제미아 2년’ 미국 간 물리치료사들”이라는 제목 및 “송출업체 사기에 공단 측도 나몰라라”라는 부제 하에 2년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미국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으며 약속한 교육은커녕 2년째 오도가도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연수과정을 직접 운영한 것은 공단과 연수과정 운영계약을 체결한 연수업체이며, 공단의 중재 노력에도 연수생 본인의 선택에 의해 미국에 체류하기로 결정하였고 국제미아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공단의 사전 승낙없이 비밀취취하여 보도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해외취업알선, 연수, 해외인턴과정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해외취업관련사업 내지 행사를 취재·보도하되, 공단 팀장급 이상 간부의 직접 인터뷰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전협조 및 협의토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월 31일까지 SBS-TV 「8시뉴스」 중에 제1항의 내용을 방송하되, 분량은 진행자 멘트를 포함하여 최소 1분 30초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기일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본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포기하며,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7년 1월 20일 21:22)

내 용 : ▷앵커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해외 취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T와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국내 청년 실업자는 37만 명에 달합니다.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28살 김○○ 씨는 대기업 대신 일본 IT업체 취업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김○○(일본취업 연수생) : 갔다 와서 한국에서의 대우 조건도 더 좋을 것 같고, 저로서는 일본어도 배우고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자 : 일본 IT업체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수 업체는 서울에만 6곳입니다.

열 달 동안의 교육 과정을 마친 연수생들의 일본 취업률은 평균 82%.

연봉 수준도 국내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IT분야에서만 올해 안에 1천여 명이 일본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인력이 크게 부족한 일본에서도 한국 인력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입니다. (후략) □

신청인 재단이 토지처분과 관련해 비리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사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e조은뉴스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e조은뉴스 : 『철웅성 ○○사, 30여 차례 무혐의 신고
록 깨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30
일자 1~11면)

내 용 : 30여 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사건에도 모두 검찰 선에서 무혐의 종결처분을 받았던 ○○사 이모 이사장에게 처음으로 납득할만한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졌다.

2004년 2월 서울고등검찰청의 한 검사는 동료검사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사 이모 이

사장의 세무비리의혹에 대해 “업무상횡령죄가 농후하다”며 재기수사를 지시했다. (중략)

이상과 같은 점을 더 조사하면 배임의 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미진으로 만연히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와같은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원처분 검사는 피항고인이 세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 금액을 횡령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항고인이 박○○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물증을 찾기 어렵고, 박○○이 제출한 보수 12억 7,000여만 원의 소비내역에 관하여 보더라도 그 중에는 동인이 피항고인 딸 이○○ 명의의 임야 매수 대금조로 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장지급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다른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 자금이동 경로 등도 애매하여 횡령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첫째, 피항고인의 새마을금고 경리장부와 수표대장을 조사하여 피항고인이 박○○에게 교부하였다

고 하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피항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입금 처리한 다른 수표로 바꾸어서 항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표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피항고인은 자신의 딸 이○○ 명의의 땅 매도자금으로 위장하여 금 3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박○○이 제출한 보수금 사용내역서 중 기록제 1664-1675에 편철된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을 살펴면 위장매매 의혹이 짙다.

박○○과 피항고인도 위 땅 명의자가 피항고인의 딸이라는 점을 일체 숨기고 있고 위 명의인인 이○○도 자신이 피항고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피항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있다. (중략)

그리고 대금지급 방법도 2회에 걸쳐 1억 원, 2억 3천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어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므로 위 이○○의 위 땅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을 밝혀 위 땅이 실질상 피항고인 소유인지 여부를 밝히고 박○○이 대금을 지급한 수단, 경로 등을 밝혀 위장매매 여부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박○○이 2002. 2. 20. 건물주 최○○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임대계약서와 영수증(1649, 1650)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위장거래임이 엿보인다. (중략)

넷째, 박○○은 2002. 12. 21. 금 2억 원, 5. 13. 금 9억 7,7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보관한 상태나 사용내역이 극히 애매하다. 이는 피항고인이 일부만 보수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횡령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송금 처리 등을 한 의심이 든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30일자 1~11면 『철웅성 ○○사, 30여차례 무혐의 신기록 깨져』 제하의 기사에서 “고검-‘업무상횡령죄 농후하다’ 재기수

사명령”이라는 부제로 재단이사장의 비리 및 재단법인 ○○사의 토지 처분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본지에 게재된 재기 수사명령인 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4570호 사건에서의 재기수사명령결과와 서울중앙지검에서 2004형제12578호로 재기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처분이 있었고, 이에 불복한 고소인들의 항고, 재항고 결과도 서울고등검찰청 2005불항243호 및 대검찰청 2005재항721호로 혐의없음처분되어 종결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사는 2006. 11. 30. 발행된 시사주간지 조은뉴스 제273호 재단법인 ○○사와 관련하여 『철웅성 ○○사 30여 차례 무혐의 신기록 깨져』라는 제목하에 ‘고검 업무상 횡령죄 농후하다. 재기수사명령’이라는 부제목으로 재단이사장의 비리 의혹 및 재단법인 ○○사의 토지처분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① 2004. 2. 서울고등검찰청의 한 검사는 동료검사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사 이모 이사장의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농후하다며 재기수사를 지시했다고 마치 최근에 새로운 재기 수사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2004형제12578호로 재기 수사한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② 세무사는 지급받은 수입료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할 것이 예상되자 수입료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맞추기 위해 이사장 딸 명의의 부동산을 세무사가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단말기를 조작해서 입·출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지출, 송금 및 수년간의 수입, 지출 등이 적법, 투명하게 처리되었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e조은뉴스 2007. 1. 17.자(제279호) 5면에 원색의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재단법인 ○○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e조은뉴스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7일자 24면)

내 용 : 본사는 2006. 11. 30. 발행된 시사주간지 조은뉴스 제273호의 재단법인 ○○사와 관련하여 『철웅성 ○○사 30여 차례 무협의 신기록 깨져』라는 제목하에 ‘고검 업무상 횡령죄 농후하다. 재기 수사명령’이라는 부제목으로 재단이사장의 비리 의혹 및 재단법인 ○○사의 토지처분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① 2004. 2. 서울고등검찰청의 한 검사는 동료검사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사 이모 이사장의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농후하다며 재기수사를 지시했다고 마치 최근에 새로운 재기 수사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2004형제12578호로 재기 수사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고, 이에 불복한 고소인들의 항고, 재항고 결과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② 세무사는 지급받은 수입료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할 것이 예상되자 수입료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맞추기 위해 이사장 딸 명의의 부동산을 세무사가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단말기를 조작해서 입,출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지출, 송금 및 수년간의 수입, 지출 등이 적법, 투명하게 처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③ 세무사 사건으로 이모 씨가 고소됐을 때 노량진경찰서도 경찰이 조사를 했고, 기소취지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담당검사는 전화로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검찰의 압력에 의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확인 없는 보도였습니다. ④ 서울시 정관변경으로 수천억을 챙기라고 하여 재단법인 ○○사의 정관을 변경시켜주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수천억을 챙긴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재단법인 ○○사는 서울시의 적법한 절차로 정관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사는 위와같은 사실확인 없이 2006. 11. 30. 발행된 시사주간지 조은뉴스 1면부터 11면 이슈면의 경찰청과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재단법인 ○○사의 결탁의혹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위와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으며,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려를 끼친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이웃 상인의 생선을 훔쳤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여과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K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TV : (1) 「KBS8뉴스타임」 프로그램 (2006년 10월 16일 20:00)

내 용 : ▷앵커 : 수산시장에서 활어 등 상습적으로 훔쳐온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상인들이 참다 못해, 폐쇄회로 TV를 확대해 살펴봤는데, 알고보니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임OO 기자입니다.

▷기자 : 이른 새벽,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30대 남자가 배달온 활어 다섯 상자를 인심 쓰듯 옆집 수족관에 부어주더니 한 상자는 슬그머니 자기 수족관에 쏟아 붓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수족관에서 몰래 광어를 꺼내 팔려다 흥정이 깨지자 자기 수족관으로 생선을 밀어 넣습니다.

옆집 횡감을 팔아주고, 돈은 자기가 챙기기도 합니다.

이웃 상인들은 최근 번번이 수족관 속 활어들이 사라지자 폐쇄회로 카메라 위치를 바꾸고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피해자 : 우리 광어가 저집에 넘어가 있는거예요. 아닌데... 이걸 아닌데... 한번 봐보자.

▷기자 : 화면에 잡힌 용의자는 다름아닌 옆 가게 주인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천만 원 어치의 생선을 훔쳐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 비밀비재하게 시장에서는 고기들이 많이 없어져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주인 없는 기회가... 우발적으로.

▷기자 : 경찰은 김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OO입니다.

(2)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0월 16일 21:00)

〈보도내용 (1) 참조〉

(3)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10월 17일 06:00)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TV는 지난 10월 16일 「KBS8뉴스타임」, 「KBS뉴스9」, 10월 17일 「KBS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이 활어 등을 상습적으로 도난당하자 가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폐쇄회로 화면에 찍힌 범인을 잡았는데 다름 아닌 옆집 가게 주인이었다고 보도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하여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며, CCTV 자료화면 또한 원본 그대로 방영하여 주변인들에게 신분 노출되는 등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2007. 1. 12.까지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한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 및 직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

‘일심회’ 사건 수사과정에 신청인의 이름이 등장해 공안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8.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일심회 보고서-靑비서관 수차례 등장』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7일자 A1면)

내 용 :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 씨가 국가정보원에 체포될 당시 자택 등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의 A 비서관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A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장씨의 대북 보고 문건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또 공안 당국은 장씨가 북한에 보낸 암호 문건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이 A 비서관을 통해 입수된 것인지도 내사하고 있다. (중략)

A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일해 오다 올해 2월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후략)

(2)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7일자 3면)

공안당국이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문건에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이들이 정권의 심장부까지 접근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동안 공안 당국은 일심회 사건 구속자 5명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면서도 핵심 인물인 장○○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 USB에 들어 있는 방대한 분량의 암호문 해독을 통해 청와대 A 비서관 등 정치권 인사가 일부 문건에 등장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장씨의 대북 보고 추정 문건 등에 A 비서관이 여러 차례 등장한 사실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장씨의 문건들에 담긴 여러 가지 정보의 수준과 질을 따져 봐도 A 비서관이 등장하는 문건의 내

용이 비교적 고급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중략)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상) 충격”이라고 말했다.

내부 간부 회의에서는 여러 차례 “정부 내에, 국정원 내에 간첩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공안 당국 관계자들은 장씨가 북한에 보낸 보고서와 관련해 한결같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A 비서관 등을 포함해 386 운동권 출신 중 현 정권 핵심에 포진한 인사들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보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7일자 1면 『일심회 보고서-靑비서관 수차례 등장』, A3면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간첩혐의로 기소된 ‘일심회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 씨가 국가정보원에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의 A 비서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였고, 공안당국은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A 비서관을 소환하여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일심회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이나 검찰이 입수한 문건에 A 비서관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고, 공안당국이 A 비서관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들의 딸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충북조정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최 ○ ○,
2. 박 ○ ○
피신청인 : 청주MBC-TV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청주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11월 20일 21:50)
내 용 : 어제(19) 오후 1시 50분쯤 청주시 개신동 26살 최모 여인이 자신의 아파트 욕실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여제가 최여인의 32살 된 남자친구 박모 씨의 어머니 생일이었고, 최 여인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함께 인사를 가지 못하게 되자, 박씨에게 “살 이유가 없다”고 문자를 보낸 점으로 미뤄, 최 여인이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청주MBC-TV 지난 2006년 11월 20일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청주소식 중 ‘공무원 시험 낙방한 20대 여인 자살’이라는 보도에서 최모 여인이 남자친구 박모 씨의 어머니 생일에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져 인사를 못 가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청인들의 딸(최모 여인)은 공무원 시험을 본 경험도 없으며, 위 보도는 유가족의 동의없이 방송되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 된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10,000,000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야비파구룡요가 조선막사발 가마터가 아닌 웅기가마터로 판명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진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진주신문 : 『조선막사발 터 논쟁 ‘종지부’』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2일자 1면)

내 용 : 진주신문이 해외취재를 포함한 ‘기획취재’를 통해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던 일본의 국보 도자기 ‘조선막사발(진주막사발.이도다완)’ 복원사업이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였다.

사천시가 88억 원을 들여 추진한 ‘사천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사남면 가야비파구룡요(김○○ 씨 운영)에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도다완 가마터’라고 알려졌지만 도요지, 즉

가마터가 발굴되지 않아 사천시 '사천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하지만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2군데 중 사천시 사남면 가마터만 조사되고, 곤명면 가마터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곤명 가마터'가 '조선막사발 가마터'로 인정될 경우 조선막사발 복원 사업은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런 결정은 사천시가 지난 3월 30일 '사천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복원사업 중단과 이 사업을 위해 확보키로 한 88억 원의 예산 도예센터 건립 ▷사업 추진 당시 조사예정지로 결정됐지만 조사가 없었던 사천시 곤명면 발굴 조사 예산 500만 원 확보 ▷'이도다완 가마터 또는 아가노 도자기 고향 인정이란 공식용어 사용 금지' 등이다. (중략)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천 곤명요 김△△ 씨는 "김○○ 씨의 역사 왜곡"이라며 강력주장하면서 "김○○ 씨의 도요지는 도자기가 아닌 웅기가마터로 판명됐다"고 지난 6일 본지에 기고문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사천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김○○ 씨의 가야비파구룡요에서 도요지가 발견되지 않아 사천막사발 복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됐다"고 잘라 말했다. "공식 결과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즉 김○○ 씨가 가마터라고 주장하는 곳에는 가마터가 발견되지 않고 도자기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2002년께 사남면 가야비파구룡요를 시굴조사했지만 조선 막사발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조선막사발 가마터도 발견되지 않아 입증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12월 12일자 1면에 『조선막사발 터 논쟁 '종지부'』란 제목으로 사천시가 88억 원을 들여 추진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이 김○○ 씨가 운영하는 가야비파구룡요가 발굴조사에서 조선막사발이 나오지 않아 사천시에서는 공식 포기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김○○가 경영하는 가야비파구룡요와는 무관한 것이며, 아울러 조선막사발 복원사업을 위한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2006년 3월 30일에 있었던 사천시 간담회는 그 참석자 또한 외부인 4명 뿐이었고 그 어떤 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야비파구룡요와 「조선막사발 복원사업」은 전혀 다른 것이며 '웅기' 가마터가 아닌 고급 도기가마터로 바로잡으며 김○○ 씨가 경남매일에 게재하는 「고려다완 이야기」도 본지에서 잘못 다루어 명예를 훼손시킨 점 깊게 사과하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6년 12월 12일자 1면 『조선막사발 터 논쟁 '종지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 및 '가야비파구룡요'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의 반론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알려 드리며, 김○○ 씨께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12일자 1면에 『조선막사발 터 논쟁 '종지부'』 제하의 기사로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내용을 보도합니다.

첫째, 사천시가 88억원을 들여 추진한 '사천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이 김○○ 씨가 운영하는 가야비파구룡요에서 가마터가 발굴되지 않아 사천시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천시의 자체사업이 아니며 사업이 공식적으로 포기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사천시가 지난 3월 30일 '사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 간담회'에서 복원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으나 그 간담회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리

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었습니다.

셋째, 간담회 내용 중 ▷복원사업 중단과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하기로 한 88억원의 예산 도예센터 건립 ▷사업추진 당시 조사예정지로 결정됐지만 조사가 없었던 사천시 곤명면 발굴조사 예산 500만 원 확보 ▷‘이도다완 가마터 또는 아가노 도자기 고향 인정이란 공식용어 사용금지’ 등은 실제 거론이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간담회 참석자로 보도한 내용은 참석대상자와 참석자가 혼동되어 정확한 것이 아니었으며 참석자는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천 곤명요 김△△ 씨의 기고문을 인용하여 김○○ 씨의 도요지가 도자기가 아닌 옹기가 마터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김○○ 씨는 옹기가마터가 아닌 고급 도기가마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

이 발행하는 진주신문 2007년 1월 2일자 1면 좌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중 ‘조선막사발 터 논쟁’과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이견 조정대상기사가 실린 2006년 12월 12일자 5면 김△△ 씨의 기고문과 같은 크기의 신청인 기고문을 2007년 1월 2일자 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진주신문 :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자동차 BMW3 시리즈를 타는 남자가 좋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7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모터트렌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모터트렌드 : 『이런 차 이런 남자가 좋아보인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호 feature면)

내 용 : BMW3시리즈를 타는 남자가 좋아요. BMW의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세련되면서 지적이잖아요. 날렵한 느낌이 드는 실루엣도 좋고요. 그런데 왜 3시리즈냐고요? 5시리

즈나 7시리즈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남자는 웬지 소비도 과할 것 같아 부담스러워요. 저에게 맞지 않는 옷 같다고 할까요? 연인이라면 서로 닮기도 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야 하는데 생활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소외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끌리기도 하겠지만 비싼 차를 탄다고해서 여자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요. 만약 BMW3를 타는 사람이 대시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선은 만나볼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싶다가보다 차를 타보고 싶다는 게 정답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언제 BMW를 타보겠어요? 차가 곧 남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반영은 한다고 봐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좋은 차를 타는 남자들이 능력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능력있는 남자가 좋겠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잡지는 지난 2006년 11월 모터트렌드 feature면에 『이런 차 이런 남자가 좋아보인다』라는 제목으로 BMW3시리즈 타는 남자가 좋다는 내용으로 BMW3시리즈 타는 남자라면 한번 만나보겠다는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OO 씨는 BMW3시리즈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BMW3시리즈 타는 남자가 좋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6년 11월호 feature면

『이런 차 이런 남자가 좋아보인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OO 씨가 BMW3시리즈를 타는 남자라면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한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씨는 BMW3시리즈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했을 뿐, BMW3시리즈를 타는 남자가 좋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모터트렌드 독자란(your say)면 우측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7년 2월호에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월 10일까지 각 인터넷언론(다음, 네이버, 디씨인사이드, 오늘의유머)에 실려 있는 해당 기사를 삭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모터트렌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호 your say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해대교 참사를 다룬 프로그램에서 피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김 ○ ○
2. 성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2TV : 「VJ특공대」 프로그램 (2006년 10월 6일

21:55)

내 용 : ▷나레이터 :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된 남편의 생사 확인 아내와 아들도 절박한 마음에 한가닥 희망을 놓지는 않았다.

▷김○○ : 60정도 초록색 잠바. 아니 그린색 잠바

▷장례식장 관계자 : 여자예요?

▷김○○ : 아니요 우리 남편이에요.

▷장례식장 관계자 : 남편이세요?

▷김○○ : 네 그린색 잠바 입었거든요.

▷장례식장 관계자 : 네 네, 그린색 잠바.

▷김○○ : 네 목걸이 했어요.

▷장례식장 관계자 : 네 목걸이 하신분 계세요.

▷김○○ : 어~어떻게?
▷장례식장 관계자 : 그린색 잠바요?
▷나레이터 : 내 남편, 내 아버지가 그 끔찍한 현장에 있었을까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성○○ :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장례식장 관계자 : 예, 조금만 계세요.
▷장례식장 관계자 : 잠바 입으신 분이 없는데요. 여기는요
▷김○○ : 아니, 아저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 :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김○○ : 목걸이, 있다고
▷장례식장 관계자 : 남자 목걸이 있어요 그런데 옷을 안 입었어요.
▷장례식장 관계자 : 몰라요. 그건 다 타가지고... 머리가 좀 벗겨 지셨나요?
▷성○○ : 머리가 어느 정도요?
▷장례식장 관계자 : 벗어진것 같던데
▷성○○ : 키가 좀 작고요.
▷장례식장 관계자 : 키는 좀 작은 편이에요.
▷김○○ : 아이~난 몰라 어떻하니 ○○아!
▷장례식장 관계자 :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어 보여요?
▷성○○ : 60이요.
▷장례식장 관계자 : 60은 안돼 보이던데.
▷김○○ : 보여주세요. 우리.
▷장례식장 관계자 : 보여드릴 테니까.
▷김○○ : 네 보여주세요.
▷성○○ : 가만 있어 내가 볼테니깐.
▷김○○ : 아니야 내가 봐야, 내가봐야 알아 어떻게...
▷나레이터 : 어찌먼 아침에 멀쩡이 배웅하던 남편을 낯선 곳에서 형제 없는 죽음으로 마주해야

할 상황
▷장례식장 관계자 : 아줌마랑 아들만 들어가세요.
▷성○○ : 고모랑 고모부세요.
▷김○○ : 네
▷나레이터 : 그래도 설마 설마 했건만
▷성○○ : 머리가 많이 빠져 가지고..., 여기가 똑같다.
▷나레이터 : 마지막까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은 오열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2TV 지난 2006년 10월 6일 21시 55분에 「VJ특공대」 '서해대교 참사기록' 방송에서 서해대교 참사의 사건개요 및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방송 중 유가족 실제 모습을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방송에서는 여과없이 실제 상황을 보도하면서 유가족의 모습 중 음성이 그대로 나왔으며 신분 확인 과정에서 언급된 성명도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사체를 확인하고 나왔을때 명확히 인터뷰를 거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밖에서 나와 동의 없이 촬영을 실시해 방송하여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어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6년 12월 29일까지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유방암 수술 女軍’ 피○○씨 소청 끝내 기각돼』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4일자 A8면)

내 용 : ‘대한민국 여성 헬기조종사 1호’ 피○○(52) 씨와 공군 조종사 35명이 제기한 인사소청이 국방부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국방부는 13일 ‘중앙 군인사 소청 심사위’를 열고 유방암 수술로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판정이 내려져 지난달 29일 전역한 피○○ 씨가 제기한 인사소청과 공사 42기 출신 공군조종사 35명이 전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인사소청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씨와 공군조종사들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피씨는 1978년 소위로 임관해 육군 항공병과에 자원, 1981년 첫 여성 헬기 조종사가 된 뒤 2002년 유방암을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퇴역명령을 받고 지난달 29일 퇴역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14일자 기사에서 『유방암 수술 女軍’ 피○○씨 소청 끝내 기각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 중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는 피○○ 예비역 중령이 아니라 김○○ 예비역 대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 예비역 중령은 두 번째 여성 헬기 조종사입니다.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최초 여성 헬기조종사는 김○○ 예비역 대위』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4일자 31면)

내 용 : “원칙을 지키고 진실이 밝혀지는 세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는 유방암 병력이 문제가 돼 지난해 말 전역 처분을 받았던 피○○ 예비역 중령이 아니라 김○○(52) 예비역 대위인 것으로 한국항공학교를 통해 2일 확인됐다. 김○○ 예비역 대위는 피 전 중령에 대한 보도가 있는 후 사실관계를 묻는 사람이 많아 바로잡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후략) □

신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5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사법부가 엄정해야 시위문화 바꿀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3일자 35면)

내 용 : 서울 도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반대하며 폭력 시위를 벌인 7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법시위 전력(前歷)이 있는 이들 피의자들은 6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명동 일대 차로를 점거한 채 과격 시위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진압 경찰의 헬멧을 뺏는 등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채증(採證)되기도 했다. (후략)

(2) 『검찰수뇌부 “사법독제” 격앙』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9일자 1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참여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최모 (28) 씨 등 6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18일 또다시 모두 기각되자 검찰 수뇌부가 “사법독제”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3) 『폭력시위에 따뜻한 사법부, 賞 주는 민주화』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0일자 39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때 진압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1차 영장이 기각된 7명 중 6명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마저 거부된 것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시위의 폭력성과 가담 정도도 중대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사법 독제’라며 법원을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폭력시위를 진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12월 13일자 35면 『사법부가 엄정해야 시위문화 바꿀 수 있다』, 19일자 1면 『검찰수뇌부 “사법독제” 격앙』, 12월 20일자 『폭력시위에 따뜻한 사법부, 賞 주는 민주화』 제하의 기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인 7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고, 진압경찰의 헬멧을 뺀 등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채증되기도 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들은 단순 시위 참가자로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 폭력을 휘두른 피의자가 아니며,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에게 보도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5인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반FTA 시위 주동 7명 또 영장 기각』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2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520의 보도내용 (1)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52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FTA 시위’ 관련 반론
- 본 문 : 본지 2006년 12월 12일자 1면 『반FTA 시위 주동 7명 또 영장 기각』 기사와 관련, 김모 (37) 씨 등 6명은 “시위 주동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문화일보 2006. 1. 8자 1면에서 5면 사이에 게재하되, 제목은 1단 고딕으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

하게 보도한다.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8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5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법원, 반FTA 폭력 주동자 7명 영장기각』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3일자 A10면)

내 용 : <2006서울조정520의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52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FTA 시위’ 관련 반론

• 본 문 : 2006년 12월 13일자 A10면 『법원, 반FTA 불법 폭력 주동자 7명 영장기각』 기사와 관련, 김모(37) 씨 등 6명은 “시위 주동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선일보 2006. 1. 5.자 7면에서 11면 사이에 게재하되, 제목은 1단 고딕으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하게 보도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 피신청인 및 임직원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FTA 반대시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5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5인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FTA반대 불법 과격시위 혐의 7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2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520의 보도내용 (1) 참조>

(2) 『“죽봉 안나왔다고 기각하다니” “불법 폭력시위 조장할 우려”』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3일자 1면)

<2006서울조정520의 보도내용 (2) 참조>

(3) 『불법시위 관대한 법원, 누가 법치 세우나』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3일자 38면)
〈2006서울조정520의 보도내용 (3)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52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합의사항

〈2006서울조정522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FTA 반대시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동료교사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7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우리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6.
처리결과 : 합 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모든 행동과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의 몰상식한 행동에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까 걱정된다”며 “관계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우리일보 : 『동료 교사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8일자 23면)

내 용 : 같은 학교에 재직중인 현직 동갑내기 여교사와 남교사의 사소한 시비가 맞고소 사태로 확대되면서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강화군 화도면 S중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47,여) 씨는 지난 5일 16시 30분경 교내에서 자신을 이혼녀라고 소문을 내며 다닌다는 이유로 교내 복도에서 동료교사 구모(47,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는 것.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이없는 폭행을 당한 구씨는 심한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오히려 조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최근 구씨가 진단서를 첨부해 폭행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로 향후

우리일보는 2006년 12월 18일자 23면 『동료 교사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같은 학교 재직 중인 현직 동갑내기 여교사와 남교사의 사소한 시비가 맞고소 사태로 확대되면서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강화군 화도면 S중학교 재직 중인 교사 조모(47) 씨는 지난 5일 16시 30분경 교내에서 자신이 이혼녀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교내 복도에서 동료교사 구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는 것.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이없는 폭행을 당한 구모(47) 씨는 심한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오히려 조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 이르자 최근 구씨가 진단서를 첨부해 맞고소를 한 상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모든 행동과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몰상식한 행동에서 학생

들이 무엇을 배울까 걱정된다'며 '관계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모 씨는 동료교사 구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구모 씨가 정신분열증세로 병원치료를 받던 중 맞고소를 했다고 하였으나 정신분열의 원인이 조모 씨의 폭행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구모 씨의 맞고소 시점도 보도내용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18일자 23면 『동료 교사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조모 씨의 반론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조모 씨의 주장에 의하면 위 기사 관련 구모 씨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구모 씨가 정신분열증 등의 피해

를 입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본지의 위 보도는 구모 씨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폭행 및 그에 따른 정신분열 초래 등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실 확정 이전에 상대방 구모 씨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 사실화하여 보도한 점에 대해 피해자 조모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우리일보 2007년 1월 8일 23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동료 교사 폭행 물의)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요구 부분은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우리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8일자 2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귀금속매장 직원인 신청인들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2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김 ○ ○,

2 윤 ○ ○

피신청인 : TU미디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8.

처리결과 : 취 하

▷방문객 : 여기 혹시 금을 팔 수 있나요?

▷김○○ : 예

▷방문객 : 청심환에서 내가 짝~도려냈습니다.

▷김○○ : 거기서 도려낸 거예요?

▷방문객 : 예

▷김○○ : 제가 봤을 땐 못 팔 것 같은데...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TU미디어는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간 더 위험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귀금속매장으로 한 남자가 우황청심원의 노란 종이를 들고 와 금으로 알고 있는데 팔수 있겠냐며 문자 귀금속 매장 직원들이 안된다고 하는 내용의 몰래카메라를 수시

보도내용

TU미디어 : 「약간 더 위험한 방송」 프로그램 (2006년 7월~10월)

내 용 : (전략)

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사전양해도 없었고,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방송되어 귀금속매장 직원인 신청인들의

초상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심청인 김○○은 300,000원, 윤○○은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이 제이유그룹 계열사를 고소한 고소인과 차장검사와의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2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1) 「KBS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1월 28일 21:00)

내 용 : ▷앵커 : 정관계 로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제이유 그룹 수사소식 오늘의 집중취재입니다.

검찰수사 선상에 오른 현직 차장검사는 제이유 관련 소송 당사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검사의 누나도 제이유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서울 현직 차장검사가 제이유 측이 마련한 술자리에 참석했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이유 고문 변호사였던 최모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 차장 검사를 강남의 한 룸살롱으로 불렀습니다.

술자리에는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이 차장검사가 근무하는 지검에 고소를 한 고소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다름아닌 제이유 그룹 계열사인 알바트로스의 대표 문모 씨가 관여하던 경기관광개발, 주수도 회장의 돈을 받아 움직이던 사실상 제이유 계열사입니다.

제이유 고문변호사와 고소인, 그리고 검사가 함께한 이상한 술자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피고소인 측이 제이유와 관련된 줄 몰랐으며 고소인도 나오는 자리인 줄 몰랐고, 그런 자리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불려나왔던 고소인 측은 해당 검사가 제이유 주수도 회장 관련 애길 했고, 무언의 압력을 느꼈다고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후략)

(2) 「KBS일요뉴스타임」 프로그램 (2006년 12월 3일 07:06)

(전략) 다만 현직 차장검사는 제이유 그룹 로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모 씨와 지난 99년부터 잘 알고 지내왔다고 말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장 검사는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 때문에 제이유와의 연루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이유 그룹 고문 변호사였던 최모 씨의 권유를 받고, 제이유 관련 인사를 고소했던 고소인을 술자리에서 만난 것인데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제이유 관련 인사를 고소했던 고소인은 무언의 압력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피고소인 측 변호사의 주선으로 고소인을 술자리에서 만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반드시 진상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2006년 11월 28일 「KBS뉴스9」 프로그램에서 최모 변호사가 이 차장 검사와 제이유

그룹 계열사를 고소한 고소인의 술자리를 주선하여 사건관계를 의논하였다는 방송을 한 바 있으나, 최모 변호사는 차장검사와 고소인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사건과 관련된 만남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었고, 최모 변호사 및 차장검사는 제이유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11월 28일 「KBS 뉴스9」 및 12월 3일 「일요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최모 변호사가 모 차장검사와 제이유 그룹 계열사를 고소한 고소인의 술자리를 주선하여 차장 검사와 고소인이 사건관계를 이야기하였다고 방송을 한 바 있으나, 최모 변호사는 위 차장 검사와 고소

인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사건과 관련한 만남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어서 최모 변호사 및 차장검사는 제이유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여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1월 20일까지 KBS-1TV 시청자 옴부즈맨프로그램 중에 위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되, 조정대상방송보도(‘차장검사 누나도 돈거래’)를 보여주는 동시에 화면 하단에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제목을 자막 표시한 상태에서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기일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다른 민·형사상 청구를 일체 포기한다. □

의경 출신인 신청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출신 부대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2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9.

처리결과 : 취 하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전의경 ○○ ○○ 1기동대 특공 3부대 출신이에요.

당신도 술을 먹고 당신도 회식을 하고 당신도 여자 친구를 만나고 당신도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내 얘기를 이상하게 듣지 말고 그러다 보면 당신도 분명히 불법을 저지를 거예요.

(후략)

보도내용

KBS-2TV : 「세상의 아침」 프로그램 (2006년 12월 19일 07:00)

내 용 : (전략) 제가 ○○ 1기동대 478기입니다.

96년도 연대 데모 막았고요

98년도에 한총련 발대식 막았고요

음주운전 행위를 떠나서 의경 출신인데 경찰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요, 옛날 생각이 나서 한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2TV는 2006년 12월 19일 「세상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사전 경찰관을 매수하기 위해 소속 기동대 및 중대, 기수까지 밝히는 모습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음주측정 전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취재진에게 받았고 음주측정에도 순순히 응했으며, 음주측정 후 같은 기동대 의경출신으로 단속 경찰에게 신청인의 얘기를 하였던 것인데, 방송에

서는 마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이 의
경출신임을 밝힌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신

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이 산업폐기물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김 상 균)

피신청인 : 시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시민일보 : 『한강유역환경청도 불법 묵인』 제하의 기
사 (2006년 12월 14일자 18면)

내 용 : 양주시 OO면 OO석재의 폐기물 불법매
립과 무마용 금품살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환경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강
유역 환경청’마저도 업체의 불법을 묵과한 것으로
지적돼, 원상복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불법을 지적하는
각계의 빗발치는 여론에도 “지표면을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었다”며 1년 6개월간 진행된 폐기물매립
으로 지하 30여m, 거리 100m의 대형 웅덩이가 온
통 수만톤의 불법폐기물로 가득 찼으나 이를 외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면만을 점검한 것
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원성이 높아
가고 있다.

더욱이 한강유역 환경청 신모 씨는 “특pecially 오
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 민원인이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원인을 분
석해달라는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마음대로
깊이가 30m나 되는 곳을 파헤치기는 어려움이 따
른다”고 말하며 “사실 그 정도는 별거 아니기 때
문에 주의를 주는 정도로 그쳤다”는 무책임하고도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답변으로 일관해 단
속반원들의 자질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체대표 이모 씨는 무마용 돈 봉
투를 언론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조사관들도 별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담당자조차도 조사 나
온 환경청 직원의 명부를 요구하는 취재진들에게
“환경청직원들의 신상은 절대 말할 수 없다”고 강
조해 마치 서로를 보호해 주는 느낌마저 들게 했
다는 것이다.

주민 최모(55) 씨는 “30여 년간 파헤친 OO석재
의 웅덩이 크기를 메우려면 15톤 덤프트럭으로 약
일만여 대가 소요되며 현 폐기물 처리 시세를 볼
때 수십억 원의 이익이 창출된 것으로 비쳐져, 금
전과 연계된 의혹해소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
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씨는 “한강유역 환경청의 조사관들조
차 불법매립이 분명한데도 땅을 파보거나 시료
를 채취하는 등 토양오염도 점검을 외면한 채
거의 공사가 끝난 지표면만 살펴보고는 ‘앞으로
양질의 토사와 잘 섞어서 작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는 정도가 단속에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6년 12월 14일자 18면 『한강유역환경
청도 불법 묵인』이라는 제목 하에 “양주시 OO면
OO석재의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 한강유역환경
청마저 업체의 불법을 묵과한 것으로 지적돼 원상
복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한강유
역환경청 관계자는 불법을 지적하는 각계의 빗발
치는 여론에도 “지표면을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었
다”며 1년 6개월여에 걸쳐 지하 30여m, 거리 약
100m의 대형 웅덩이가 온통 수만톤의 불법폐기물

로 가득 찼으나 이를 외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면만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하고, 업체대표 이모 씨는 무마용 돈 봉투를 언론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조사관들도 별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담당자조차도 조사 나온 환경청 직원의 명부를 요구하는 취재진들에게 “환경청 직원들의 신상은 절대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해 마치 서로를 보호해 주는 느낌마저 들게 했고, 가상 인물인 최모(55) 씨를 등장시켜 “한강유역환경청의 조사관들조차 불법매립이 분명한데도 땅을 파보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등 토양오염도 점검을 외면한 채 거의 공사가 끝난 지표면만 살펴보고는 ‘앞으로 양질의 토사와 잘 섞어서 작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는 정도가 단속의 전부였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식적인 단속으로 업자의 폐기물 불법매립을 묵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석재는 '03. 8. 21일 양주시청에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석분 등 무기성오니를 양질의 토사와 45:55로 혼합하여 매립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06. 12. 5일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매립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민원인과 합동으로 매립현장을 조사하면서, 의심되는 부분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분석하였으며, 또한 '06. 10월 중순경 전국환경감시단중앙회가 매립현장 5개소를 굴착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양질의 토사와 혼합해서 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이 알고 있어 시료분석은 불필요하다고 하여 시료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또한 필요하면 장비를 동원해서 굴착 확인도 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민원인이 더 이상 장비에 의한 추가 굴착은 필요가 없다고 하여 굴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양주시청 담당자와는 현장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 '06. 12. 8일 양주시청 담당공무원이 포크레인을 이용 폐기물 혼합여부를 재확인, '06. 12. 14일 양주시청과 경기도청이 합동으로 포크레인을 이용 의심되는 부분 3개소를 굴착·조사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형식적인 단속으로 폐기물 불법매립을 묵과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는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고
반론보도도 할 수 없다. □

한강유역환경청이 산업폐기물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기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김 상 균)

피신청인 : 경기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매일 : 『한강유역환경청 불법 묵인 의혹』 제하
의 기사 (2006년 12월 14일자 1면)

내 용 : <2006서울조정5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5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경기매일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9일자 3면)

내 용 : 본지는 2006년 12월 14일자 1면 『한강유

『역환경청 불법 묵인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양주시○○면 ○○석재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 환경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유역환경청마저도 불법을 지적하는 각계의 빗발치는 여론에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면만을 점검하는 형식적인 단속으로 업자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묵과 의혹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민원인과 합동으로 매립현장을 조사하면서 시료

채취 및 굴착확인을 제의했으나 산업폐기물도 재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수분함량 70%이하로 양질의 토사와 50:50으로 혼합해서 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민원인이 알고 현장에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해 조사를 완료한 사항이다. 그 이후 2006년 12월 14일 양주시청과 경기도청이 합동으로 포크레인을 이용, 의심되는 부분 3개소를 굴착, 조사했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등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형식적인 단속으로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을 묵과한 사실이 없다. □

언론중재신청사례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인터뷰 하였으나 ‘된장녀’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9.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시사저널 : 『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 제하
의 기사 (2006년 8월 15일자 46~4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58-3번지
대표이사 금 창 태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신
청인 권○○에게 2006년 9월 30일까지 금 7,000,000
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기사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피신청인이 발
간, 운영하는 2006. 8. 15.자 시사저널 제877호 제46
면 내지 제50면에 커버스토리로 “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 제목 및 “뉴요커식 라이프스타
일을 추구하는 그녀들은 허영의 화신인가, 또 다른
코스모폴리탄인가” 부제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
사’라 한다)에서 소위 ‘된장녀’ 현상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권○○의 실명, 나이, 직업
및 초상을 인터뷰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6. 8. 17.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
대로 손해배상액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
정신청(2006서울조정325)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
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쟁을 본 중
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언론사의 고의, 과실 및 법익 침해 판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적 특징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
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
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
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
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

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등 참조).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소위 ‘된장녀’의 사회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20대 젊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서 신청인을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인터뷰 당시 성명을 익명 처리할 것과 사진 촬영시 신청인이 얼굴 사진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재하여 신청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고, 또한 기사 제목(“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과 신청인 사진의 배열 상태, 인터뷰 제목으로 ‘구두 및 속옷 마니아’로 게재한 부분, 한달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라고 말했음에도 ‘한달 생활비의 3분의 2 가까이 좋아하는 것을 사기 위해 투자한다’는 부분, 속옷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미혼의 여성인 신청인을 속옷마니아라고 표현한 점 등 기사 제목(“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과 전체적인 기사의 흐름, 일반 독자가 기사 및 사진으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볼 때, 신청인이 마치 과시적 허영적 소비를 하는 소위 ‘된장녀’의 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키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신청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사와 같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취재원이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자신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삽입할 것까지 동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는 아니므로, 잡지를 발간하는 것을 업무로하는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할 때에 그 취재원을 상대로 당초 인터뷰 내용과 기사 내용이 상이한지, 그의 사진을 사용하는데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것인지, 동의를 얻었다면 그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사를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잡지를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신청인의 성명권, 초상권 및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성명권 및 초상권의 침해,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액은 신청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성명 및 사진의 게재 경위, 게재된 사진의 크기 및 그 인물에 대한 인식이 용이한 정도, 이 사건 기사의 사회적 주목 정도, 인터넷사이트 등 유포의 정도, 이 사건 잡지의 성격, 언론사의 규모와 재정적 능력, 보도 후 사과문 게재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삭제 등 후속 조치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권○○에게는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30.

□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인터뷰 하였으나 ‘된장녀’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8. 29.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시사저널 : 『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 제하
의 기사 (2006년 8월 15일자 46~49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26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58-3번지
대표이사 금 창 태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신
청인 신○○에게 2006년 9월 30일까지 금 5,000,000
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기사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피신청인이 발
간, 운영하는 2006. 8. 15.자 시사저널 제877호 제46
면 내지 제50면에 커버스토리로 “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 제목 및 “뉴요커식 라이프스타
일을 추구하는 그녀들은 허영의 화신인가, 또 다른
코스모폴리탄인가” 부제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
사’라 한다)에서 소위 ‘된장녀’ 현상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신○○의 실명, 나이, 직업
및 초상을 인터뷰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6. 8. 17.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
대로 손해배상액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
정신청(2006서울조정326)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
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쟁을 본 중
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언론사의 고의, 과실 및 법익 침해 판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
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
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
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
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
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

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등 참조).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소위 ‘된장녀’의 사회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20대 젊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서 신청인을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인터뷰 당시 성명을 익명 처리할 것과 사진 촬영시 신청인이 얼굴 사진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재하여 신청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고, 또한 기사 제목(“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과 신청인 사진의 배열 상태, 신청인이 인터뷰 당시 스타벅스에 주 2회 정도 가므로 스타벅스 마니아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인터뷰 제목으로 ‘스타벅스 마니아’로 게재하고 인터뷰 당시 스키여행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스타벅스 종업원들과 스키여행을 다녀왔다고 적시한 부분 등 기사 제목(“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과 전체적인 기사의 흐름, 일반 독자가 기사 및 사진으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볼 때, 신청인이 마치 과시적 허영적 소비를 하는 소위 ‘된장녀’의 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

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신청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사와 같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취재원이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자신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삽입할 것까지 동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는 아니므로, 잡지를 발간하는 것을 업무로하는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할 때에 그 취재원을 상대로 당초 인터뷰 내용과 기사 내용이 상이한지, 그의 사진을 사용하는데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것인지, 동의를 얻었다면 그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사를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잡지를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신청인의 성명권, 초상권 및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성명권 및 초상권의 침해,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액은 신청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성명 및 사진의 게재 경위, 게재된 사진의 크기 및 그 인물에 대한 인식이 용이한 정도, 이 사건 기사의 사회적 주목 정도, 인터넷사이트 등 유포의 정도, 이 사건 잡지의 성격, 언론사의 규모와 재정적 능력, 보도 후 사과문 게재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삭제 등 후속 조치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신○○에게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30.

□

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2.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직접 붙어보자”』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2006서울조정3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대표이사 김 학 준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는 신청
인 김○○에게 2006년 10월 31일까지 금 700,000원
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는 피신청인이 발
간, 운영하는 2006. 9. 9.자 동아일보 사회면(11면)
하단 박스기사로 “직접 붙어보자” 제목 및 “온라
인 격투기게임서 시비 생기자 서울-부산서 진주
찾아가 주먹다짐” 부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서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온라인게
임을 하면서 알게 된 대학생과 중학생을 집단 폭
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고교생 5명을 8일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김○○를 ‘부산
모 대학 1학년 김모(18) 군’으로 표시하고 온라인
게임의 명칭(○○○ ○○) 및 게임 내 신청인이 소
속한 길드명(○○길드, 실제로는 ○길드)을 게재하였
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6. 9. 14.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6서울조정373)을 하였고,
조정 계류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
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
은 달 22.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언론사의 고의, 과실 및 법익 침해 판단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
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
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
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
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
다38032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
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
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등 참조).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의 취지와 내용이 소위 ‘현피’(온라인게임에서의 싸움이 실제 현실로 번지는 것)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10, 20대 젊은이들의 부적절한 일탈행동을 사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인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기사 제목과 전체적인 기사의 흐름, 일반 독자가 기사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이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속한 팀끼리 수백 차례 게임을 하며 갈등을 겪다 실제 현실에서 만나서 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대학생인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내용임이 인정되고,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신청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특징을 보건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게임의 명칭뿐 아니라 게임 내에서 신청인이 소속하여 활동한 길드(소속 팀)의 명칭도 공개함으로써 동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게임 내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일어났던 길드간 라이벌 내지 갈등 현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거주 지역, 직업, 연령, 성씨 등이 이 사건 기사에 함께 노출되었으므로 게임을 하는 주위 사람들이 기사에서 언급된 김모 씨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 보이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의 진술과 피신청인 주장대로 피해자의 길드가 이 사건 기사에서 가해자쪽 길드와 바뀌어 보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길드 사이의 분쟁

을 아는 사람이라면 대학생 김모 씨가 신청인임을 알아차리는 데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 특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사와 같이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어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신문을 발간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때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해서 게재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전국에 배포한 행위는 신청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또한 신청인의 소속 길드까지 명시해서 보도하는 것이 공적인 관심사 또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상관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 액수는 신청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이 사건의 기사의 제목과 내용 및 게재 경위, 피해자 특징의 정도, 이 사건 기사가 실린 매체의 성격 및 발행 부수, 다른 언론의 보도 내용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7.

□

신청인 대학이 등록금을 유용하고 교비를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서울○○○대학교 (총장 조 ○ ○)
피신청인 : 동국대대학원신문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6. 9. 27.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동국대대학원신문 : 『당신은 ‘교수’ 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4일자 4면)
내용 : <2006서울조정38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6서울조정38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6서울조정38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결정문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4
청구명 :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 서울〇〇〇대학교
총장 조 ○ ○
피신청인 : 동국대대학원신문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학술관 BF대학원
신문편집위원회
발행인 김 동 주
중재대리인 박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중재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국대대학원신문 제4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동 신문 2006년 9월 4일자 (제135호) 제1면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보도한다.

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8.

<별 지>

• 제 목 : 서울〇〇〇대 관련 정정 및 반론
• 본 문 : 본지는 지난 9월 4일자(제135호) 4면 『당신은 ‘교수’ 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〇〇〇대에 재직했던 이 모 교수의 말을 인용, 서울〇〇〇대 재단이 등록금을 유용하고 교비를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다시 확인한 결과 재단의 비리로 보도된 내용은 서울〇〇〇대 전 부총장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정정합니다.

한편, 서울〇〇〇대가 학교 구성원들의 언론을 차단하기 위해 학내 모든 컴퓨터에 대해 ‘보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외부에 개방되어 운영되던 〇〇〇〇학부의 자유게시판을 차단하여 학내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〇〇〇대는 “컴퓨터에 대한 보안검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안준수지침에 따라 학교내 모든 컴퓨터를 바이러스나 해킹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소프트웨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졌던 것이고, 〇〇〇〇학부의 게시판을 차단한 것은 원래 재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던 학부 게시판이 직원들의 실수에 의하여 외부에 개방되어 있어서 이를 학교방침에 따라 재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래대로 수정한 조치였을 뿐이므로, 학교 당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학내 구성원들의 언론을 차단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과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중재결정에 의한 보도문

동국대대학원신문 : 『서울〇〇〇대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일자 4면)
내용 : <결정문 중 별지 참조> □

신청인의 동의없이 수술장면을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8.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SBS-TV : 「SBS스페셜」 프로그램 (2006년 9월 10일
23:00)
내 용 : <2006서울조정38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86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 에스비에스 (SBS-TV)
서울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안 국 정
중재대리인 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 10. 23.
까지 금 7,5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가산
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9.



살인사건 용의자의 회사동료인 신청인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2.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SBS-TV : 「SBS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2006년

9월 23일 22:55)

내 용 : <2006서울조정39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6서울조정396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대표이사 안 국 정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신청인 홍○○에게 2006년 11월 10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2006. 9. 23. 23:0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의 미스터리 - 두 아이의 부모는 누구인가?” 제목의 방송보도(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를 하면서 신청인 홍○○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25초 분량으로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6. 9. 29.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6서울조정396)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10. 12.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피고 ○○○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와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테이프를 피고 방송 등에게 넘겨주어, 피고 방송 등이 위 프로그램에서 위 녹음 테이프를 음성 변조 처리 없이 재생하여 방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과 피고 방송 등은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인 음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51935 판결 등 참조).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원고의 촬영거부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원고를 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촬영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96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등 참조).

3. 언론사의 고의, 과실 및 법익 침해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이 공공적인 사항으로 국민적인 의혹이 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적인 내용이나 신원에 대해서는 방송상 아무런 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같은 직장의 동료 또는 신청인을 주위에서 아는 사람이라면 그 방송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보통의 주의만으로도 전화통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신청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공공적인 사항(영아유기사건) 또는 공적인 인물(유력한 용의자)에 관한 보도라 할지라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를 음성 변조없이 공개하는 것까지 공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음성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야 비로소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과 같이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일반 개인의 음성이 음성 변조없이 공개되어 인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관하여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 이 사건 방송을 할 때에 전제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영한 행위는 신청인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음성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 액수는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무단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뿐 아니라 녹음 내용이 음

성 변조 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되어 방송된 점,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경위 및 내용, 신청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 특정의 정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언론사 접촉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6.



시 정 권 고 사 례

시정권고사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언론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아울러 제3자에 의한 신청도 심의하여 그 시정을 해당 언론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결된 사례를 자체심의 및 신청심의로 구분하고,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의 보도내용만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특정되는 주문 부분은 생략하고, 실명 및 주소 등이 보도되어 문제가 된 부분은 당사자의 명예를 위하여 ○○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편집자주

자체심의 시정권고

〈안전번호 2006자심1〉

보도내용

「양산시 ○○읍 ○○사의 창건주이자 전 주지인 모스님(70)이 사찰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사찰의 종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인 A(29)와 B(26)씨는 약 2년동안 스님으로부터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스님의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前 직위 및 소속 사찰의 명칭과 소재지를 읊까지 밝히면서 창건주임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2〉

보도내용

「... 지난 10월 19일 저녁 7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신협중앙회 앞에서 경기 ○○가○○○○호 엘란트라 승용차(운전자 김모씨·23)가 전북○○다○○○○ 레조승용차(운전자 민모씨·44)를 들이받아 레조승용차 운전자 민씨와 같이 타고 있던 유모양(18)에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 때마침 이를 지나던 택시기사 최모씨(46)가 이를 발견하고 엘란트라 차량번호를 기재해 뒀다가 지난 8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동사무소 앞에서 같은 차량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유 차량의 종류 및 차량 번호를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3 - 2006자심4〉

보도내용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시청 공무원들인 ○모(40·기능 ○급)씨 등 3명은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고등동 G다방 앞 노상에서 “경적을 크게 울렸다”며 화물트럭 운전자 김모(40) 씨와 시비가 붙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 등은 김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격분한 김씨도 윤씨 등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등 다툼이 있었으며, 폭력 등의 혐의로 4명 모두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직종·직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5〉

보도내용

「통영해양경찰서는 8일 동료 선원을 흥기로 찢러 상해를 입힌 부산선적 ○○○ ○○호(115톤) 선원 이모(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통영 육지면 국도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 동료 선원인 문모(45)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문씨의 목에 흥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선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선박명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6〉

보도내용

「의정부지검 ○○지청은 택시 무선콜 단말기에 대한 불만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김모(53) 씨를 구속했다. 김모 씨는 지난 2004년 12월 경기도 ○○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인택시에 부착한 무선콜 단말기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납품 업체인 C사 간부로부터 “불만을 해소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조합의 명칭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7〉

보도내용

「화성과 오산에서 각각 편의점과 아파트 계단에서 잇따라 강도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

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2시47분께 화성시 우정읍 ○○리 ○○○마트 앞에서 30대 중반의 남자가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온 뒤 강도로 돌변, 흥기로 주인 이모 씨(45·여)를 위협해 현금 12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영중인 점포의 명칭과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8〉

보도내용

「자신이 성폭행한 여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 도둑질을 하던 10대가 때마침 귀가한 집주인과 이웃집에 놀러왔던 남자에 의해 검거됐다. 3일 낮 2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모 원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박모(여·25) 씨는 낯선 남자가 방안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 때마침 함께 있던 강모(25·청원군 ○○면 ○○○리) 씨가 검거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에 의해 붙잡힌 절도용의자 김모(19·괴산군 괴산읍)군은 이미 지난해 12월 12일 밤 10시께 이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박씨를 위협하고 성폭행을 한 뒤 핸드폰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강간사건 검거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9〉

보도내용

「... 부천중부경찰서는 9일 편의점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도를 일삼던 이모(고3)군 등 같은 학년 3명을 붙잡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중략 ...이군 등은 또 지난 2일 새벽 3시 20분 경 ○○동 ○○○번지에 있는 모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 이모(49) 씨의 머리를 삼패인 병으로 내려쳐 실신시킨 후 현금 89만 여원과 담배 40여 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영중인 점포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10〉

보도내용

「직장상사가 갓 입사한 여직원을 더듬다 못해 심지어 회사 홈페이지에까지 음담패설을 올려놓는 등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세모를 어둡게 하고 있다. 휴대폰, MP3, 전화기류 디자인개발제품 설계 회사 (주)○○○○(경북 ○○군 ○리) 회사간부 정모(40)이사가 K모양(25, ○○시 ○○읍)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미혼여성인 K모양은 직속 상관으로부터 큰 상처를 입고 원치 않

는 사직서를 급기야 제출, 현재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상사의 성과 나이 및 피해 여직원의 성의 영문이니셜·나이·읍단위의 주소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 및 소재지와 함께 피해자가 미혼인 사실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11〉

보도내용

「... 당시 A씨가 우편주문한 마약은 캐나다에서 과일잼 병 속에 담겨 국내로 밀반입되다 적발됐다. 또 지난해 9월15일 서울 목동 국제우체국에서는 중국에서 소포로 부쳐온 송이버섯 상자의 냉장 포장재에서 50억원 상당의 ○○○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인도에서 배달된 화장품통 안에는 ○○○를 농축한 ○○○ 1.5kg이 들어 있기도 했다. 이밖에 책 안에 흠을 파고 그 안에 ○○○을 숨기거나 땅콩버터와 치약의 내용물을 마약류로 바꿔치기해 들여오는 사례도 있다. 수산물을 수입하는 척 하면서 생선의 뱃속을 ○○○으로 채우는가 하면 마약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파스 접착면에 발라 들여오기도 한다. '○○○○' 등 신종 마약의 밀반입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의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인체에 위험한 환각성분인 ○○○을 함유한 ○○○과 환각제의 일종인 중국산 ○○○가 세관에 처음 적발됐다. '○○○○'은 남미 인디언들이 주술 등에 사용해왔던 환각제로, 버섯에 함유된 마약성분인 ○○○은 ○○○○○(일명 ○○○)보다 훨씬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로 유럽지역에서 유통됐던 마약의 일종인 ○○○가 중국에서 대량 생

산된 뒤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의 종류·환각적 효능·구입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12〉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해 인터넷 카페 한줄메모장을 통해 마약 판매를 광고한 뒤, 구입을 희망하는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마약을 판매해 왔다는 것. ○○○(1kg당 ○○만원)과 ○○○○(1정당 ○만원) 대금은 국내 환치기 계좌로 입금되었고 마약은 중국에서 항공택배를 이용해 우편엽서나 서류로 위장해 국내에 배송됐다. ---중략--- 중간공급책 김아무개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라는 마취제와 각성제 효과가 있는 마약식물을 구하는 네티즌을 위해 인터넷 지식검색으로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메일을 통해 알게된 조선족 판매자와 메신저 대화로 마약류 구매방법과 가격 등을 알린 뒤 거래해 왔다. ...중략... 이들은 대부분 ○○나 ○○○ 등에 타서 마시고, ○○○○○○에 ○○○을 넣고 ○○에 희석시켜 팔뚝에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임산부 송아무개씨는 중간공급책인 의료도매업자 오아무개(31·구속)씨로부터 ○○○을 구입해 3차례에 걸쳐 ○g를 복용했고, 고교생 이아무개(17)군은 ○○g의 마약류를 복용하다 적발됐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의 종류·사용량·사용방법·

구입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20〉

보도내용

「안성시 소재 ○○아파트 ○○○동 ○○○호 거주하는 노인이 자신의 베란다에서 투신, 현장에서 숨졌다. 8일 오전 7시 15분경 근무교대를 하던 정문경비원 박○○ 씨(67)가 평 하는 소리에 나가보니 101동 보도위에 사람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119구조대 등이 출동하였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1306호에 거주하는 ○○○씨(65)로 신원을 파악, 투신 자살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나이와 함께 생존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칭·동·호수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21〉

보도내용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울주군 ○○면 ○○리 자신의 방 안에서 김모(51) 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가족인 이모(여·51)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10년전 부인과 헤어진 뒤 술로 지내왔다는 유족측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22〉

보도내용

「... 지난해 9월 24일 발생한 충북 청원군 ○○○○화재로 다니던 직장을 잃은 최모 씨(53)는 3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의 뒤를 따랐다. 최씨는 새해맞이로 모두가 행복해 하던 1일 새벽 2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아파트 공터에서 전신주에 목을 매고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발견됐다. 10년 간 ○○○○서 운송업무를 하던 최씨는 청원공장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뒤 딸과 함께 숨진 아내의 수술비를 갚느라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3년 전 아내가 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숨진 후 그동안 들어갔던 수술비를 위해 은행 등에 빌린 돈으로 인해 최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왔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前 근무처·담당 업무·근무 연수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23〉

보도내용

「... 9일 밤 11시 34분께 정읍시 ○면 ○○리에서 이모씨(76)가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씨의 동생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중략... 이에 경찰은 이씨가 신변을 비관해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24 - 2006자심26〉

보도내용

「성남남부경찰서는 9일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후임병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행 등)로 ○○시 ○○구청 공익근무요원 정모(2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달 9일 오전 11시께 ○○구청 화장실에서 후임병 A(20)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하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공익근무요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를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전번호 2006자심27〉

보도내용

「공기총을 소지한 복면 쓴 강도가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9시 20분께 부안군 ○○면 ○○리 이모 씨(60)의 집에 공기총을 든 강도가 침입, 현금 120만원을 빼앗은 뒤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진술에서 이씨는 “아내와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문밖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빨간색 병거지모자를 둘러 쓴 사람이 공기총으로 위협하며 집안에 들어와 현금 120만원을 빼앗은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전번호 2006자심28 - 2006자심37〉

보도내용

「○○경찰서 ○○과장 ○모 경정이 자신이 묵던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쯤 ○○시 ○○동 H아파트 발코니에서 심과장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 심모 경사가 발견했다. ...중략... 심 과장의 숙소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마음고생을 시켜 미안하다. 우울증으로 업무 한계에 달했다.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심 과장이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유서를 통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직업·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전번호 2006자심38 - 2006자심40〉

보도내용

「... 20일 오후 3시께 경북 ○○군 ○○면 ○○리 ○중 교원사택에서 이 학교 교감 권모(51) 씨가 넥타이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권씨의 아들(21)과 행정실장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숨진 권 교감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교감으로 승진 발령받아 안동에서 영덕으로 부임한 후 가족과 떨어져 학교 사택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중은 1955년 설립된 공립학교로 3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다. 전체 교직원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모두 10명(남4, 여6)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교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재직하던 학교의 이니셜·연혁 등과 함께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전번호 2006자심44〉

보도내용

「성남시 ○○구청 ○○과에 근무중인 김모(43·○급) ○○팀장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대전광역시 중구 ○○동 김 팀장의 집에서 김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김 팀장은 2004년부터 1년동안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논문작성 등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우울증이 생겼고 지난해 12월 ○○구청 ○○과로 복귀했지만 병세가 심해지자 지난달 31일 병가를 낸 뒤 대전 본가로 내려가 치료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직급·직위 등과 함께 본가의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전번호 2006자심45〉

보도내용

「9일 오후 4시 35분께 나주시 ○○면 ○○○○○지하 변전실에서 직원 이모 씨(49·기능직 7급)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인 또다른 이모 씨(3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경찰은 숨진 이씨가 평소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

나 생존시 근무처·직종·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전번호 2006자심46〉

보도내용

「양산시 ○○읍 ○○○의 창건주인 모 스님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2명이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며 법무부와 법원, 청와대, 국회의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략… ○○○ 전 여직원인 강모(28·부산시 ○○구) 씨와 홍모(25·양산시 ○○읍) 씨의 진정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7개월과 2년 동안 ○○○의 종무소에 근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전 창건주인 모 스님(72)을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강씨 등은 당시 전 창건주인 스님이 직장을 불모로 수차례에 걸쳐 자신들을 불러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성폭행의 범위까지 확산되는 등 치욕적인 수모를 견디지 못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나이·前 근무처·근무 기간 등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의자인 스님의 나이·소속 사찰의 명칭 및 소재지를 읍까지 적시하고 창건주라는 사실 등을 밝혀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전번호 2006자심47 - 2006자심48〉

보도내용

「수원 ○○경찰서는 선배 의경이 후배의 군기를 잡는다며 구타한 혐의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소속 유모(22) 수경 등 2명은 11일 오후 7시께 ○○구 ○○동 치안센터 내무반에서 후임 신모(22) 일경 등 6명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의무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경찰서·부서·계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전번호 2006자심49〉

보도내용

「통영경찰서는 14일 공금 2억7,300만원을 횡령한 ○○○○○ 직원 김모(45·통영시 북신동) 차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7,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김씨는 ○○○○○ 임대료 13억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횡령한 돈으로 주식투자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

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전번호 2006자심50 - 2006자심53〉

보도내용

「여수해양경찰서는 1일 파손된 선박을 무리하게 운항, 선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수 선적 62t급 외끌이 저인망 어선 ○○호 선장 김모(51) 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동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배가 암초에 충돌, 배 밑부분이 일부 파손돼 물이 차는데도 방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여수항으로 회항하다 나로도 해상에서 배를 침몰시켜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어선 선장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항 선박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전번호 2006자심54〉

보도내용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원룸 하숙집에서 조선족 예비대학생 강○○(21·여·사진) 씨를 살해한 뒤 성관계를 한 황모(42·무직) 씨에 대해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서대문구 ○○동 강씨의 하숙방에 들어가 강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경찰은 “강씨가 황씨에게 돈을 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강씨의 은행 현금카드 3장, 현금 3만 원, 중국 위안화 200원을 훔쳐서 달아났다. ...중략... 중국 지린성 출신인 강씨는 지난해 1월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에 건너와 ○○대 ○○○○○에서 1년여 동안 한국어를 배웠으며 지난해 8월 말 수시 1학기 외국인전형으로 ○○대 ○○계열에 합격했다. 강씨는 숨질 당시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을 앞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었다. 강씨의 어머니 ○○○(○○○·47) 씨는 “딸을 중국과 한국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키우고 싶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살인사건 피해자의 성명·나이·입학 예정인 학교명 및 계열·국적·출신 지역 등과 함께 어머니의 성명 및 나이를 적시하고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전번호 2006자심55〉

보도내용

「시흥경찰서(서장 박경민)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소란을 피우던 김모 씨(28세·여·주거부정)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밤 11시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모 모텔객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 ○g을 ○○만원에 구입하여 ○○에 희석한 후 ○○○○○○를 이용하여 자신의 ○○○에 투약하고, 이후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의 사용량·사용 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전번호 2006자심56 - 2006자심58〉

보도내용

「술에 취한 아들의 방화로 70대 아버지가 불에 타 숨졌다. 15일 오전 0시 08분께 신안군 ○○면 ○○리 박모(70) 씨의 집에서 불이나 주인 박씨가 숨졌다. ...중략... 이날 불은 숨진 박씨의 아들(45)이 냈다. ...중략... 아들 박씨는 “평소 주사가 심하셨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자꾸 욕을 하자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질렀다. 전혀 아버지를 해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의 아들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 하였으나 아버지의 나이와 함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59〉

보도내용

「용인경찰서는 17일 환경 관련 업체를 다니며 금품을 갈취한 ○○○○신문 본사 사무국장 박모 씨(46세, 특수강도 등 9범)등 4명을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문 취재본부장 및 취재기자들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322번지에서 세녹스 등 유사 석유를 제조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진 촬영하고, 판매자 박모 씨(45세, 장의사 영업사원)등 2명에게 접근, 3차례에 걸쳐 모두 325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 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60〉

보도내용

「...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심야에 수도권 일대를 돌며 행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속칭 ‘퍽치기’에 가담해온 혐의(강도상해 등)로 경기도 ○○시청 소속 공익근무 요원 최모 씨(2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모 씨(25) 등 3명(18일 구속)과 함께 1월11일 오전 3시께 서울 송파구 삼전동 골목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모 씨(여·27)를 승용차로 뒤따라가 마구 때린 뒤 핸드백과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수도권을 무대로 3차례에 걸쳐 퍽치기 수법으로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도 렌터카를 이용해 길가는 여성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 소속 공익근무 요원 박모 씨(22)와 친구 이모 씨(22·무직)를 이날 구속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공익근무요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를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61〉

보도내용

「포천경찰서는 27일 시각장애인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절취, 수백여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특수절도 및 횡령)로 김모(54·남·포천시 OO면 OO리)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쯤 시각장애인 신모 씨에게 접근, 인감도장과 예금통장 등을 넘겨받아 공범 김씨(50)에게 넘겨 포천 관내 모 은행서 330만 원을 찾아 착취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62 - 2006자심65〉

보도내용

「50대 여성이 동거남의 집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오전 9시 20분께 화성시 OO면 OO리 황모 씨(42) 집에서 동거녀인

서모 씨(51)가 암매장된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중략... 화성경찰서 발안지구대 권모 경장(40)은 “언니로부터 가출인 신고를 받고 확인차 이날 집을 방문했는데 창고 바닥에 시멘트가 깨진 흔적이 보여 바닥을 파헤쳐 보니 서씨가 암매장된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와 함께 동거했던 황씨가 지난 3일 오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점 등으로 미뤄 황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황씨를 쫓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66〉

보도내용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24시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 김모(27) 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분께 남동구 OO동 OOOOO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 종업원 차모(26·여) 씨를 흉기로 위협,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 1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등 3십만 원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 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67〉

보도내용

「농촌을 돌면서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쳐온 40대가 붙잡혔다. 김천경찰서 동부지구대는 지난 11일 동모(남·47)씨를 강도 상해혐의로 체포했다. 동씨는 11일 오전 11시 40분경 ○면 ○리 강모(남·66)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현금 29만 2천 원을 훔친후 나오다가 강씨에게 들키자 강씨를 폭행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68〉

보도내용

「○○○ 전 대통령이 ○○ 생가를 방문한 날 생가 근처 가게에 강도가 침입,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전 5시께 ○○○○○ 전 대통령 생가 옆 가게에 괴한이 침입, 금품을 요구했으나 주인 옥모(여·72)씨가 저항하자 어깨 등을 흉기로 7~8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옥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다. 피해를 입은 가게는 ○ 전 대통령 생가와 20여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생가를 방문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추지할 수 있도록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 2006자심69〉

보도내용

「옥천경찰서는 6일 대낮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털 김모 씨(4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옥천군 ○○면 ○○리 문모 씨(62)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32만원과 10만원 짜리 상품권, 다이아몬드 반지 등 금붙이 14개를 털다 문씨에게 발각되자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중략...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근 마을서 발생한 빈집털이 사건도 김씨 소행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70〉

보도내용

「목포해경은 90대 노인이 인생비관으로 농약을 음독, 의식불명 돼 긴급 이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께 전남 ○○군 ○○도 ○리 자택에서 최모(여·93)씨가 인생비관으로 음주 후 농약을 음독해 자살기도를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71〉

보도내용

「지난 3일 오후 3시께 단양군 ○○면 ○리 박모(63·농업)씨의 집에서 박씨의 딸(35·○○○○)이 제초제를 마시고 신음하는 것을 박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시간만에 숨졌다. ... 중략 ... 경찰은 숨진 박씨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을 마치고 5년 전부터 친정집에서 머물렀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박씨가 신병을 비관해 음독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前 직업과 함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72〉

보도내용

「16일 오후 3시 50분께 통영시 ○○동 ○○○○ 내 1만3천t급 화학제품운반선 하부 탱크에서 작업 인부 백모(52·여·통영시 ○○동)씨와 윤모(58·여·통영시 ○○동)가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해경은 17일 유독가스 유출이 우려되는데도 강제 통풍구 개방 및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 ○○팀장 제모(3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신규선박인 경우 선체 내부에 산소가 부족하고 페인트 등에서 유독가스가 방출되는데도 탱크의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전번호 2006자심74〉

보도내용

「충주경찰서는 고객 돈 1억 1500만 원을 갖고 잠적한 전 국민은행 직원 이모(37)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대전 ○○지점에 근무하면서 지인인 A(63·여)씨로부터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며 대출상환금 1억 15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토록 한 뒤 그 해 11월 15일 전산 상으로 상환처리만 해놓은 채 잠적했다. ...중략... 한편 검찰은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前 근무처 및 근무 시기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전번호 2006자심75〉

보도내용

「부산 해양경찰서는 1일 선상에서 중국인 산업연수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통발어선 선원 권모(30)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부산해경 수사과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부산선적 연근해 통발어선 〇〇호(79t)에서 작업중 뱃멀미로 괴로워하던 중국인 산업연수생 유모(25) 씨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권씨는 또 유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동창고에 감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선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선박명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전번호 2006자심76〉

보도내용

「“백주대낮에 금은방 주인이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전주시청에서 불과 50여m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다 인근에 치안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오후 2시께 전주시 〇〇〇동 〇금은방에서 주인 안모씨(54·여)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 후송됐다. 목격자 오모 씨(38)는 “‘강도야’ 하는 소리와 함께 옆구리가 흉기에 찔린 안씨가 찾아와 ‘남편에게 전화해 달라’고 말한 뒤 문 앞에 쓰러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흰색 운동화에 베이지색 트레이닝복을 착용한 180cm가량의 30대 전·후반의 남자를 뒤쫓고 있다.…”는 기사와 피해 금은방이 찍힌 자료사진」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소재지, 영문 이니셜 등을 적시하고 상호가 온전히 드러나 있는 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전번호 2006자심77〉

보도내용

「28일 오전 9시 55분께 〇〇경찰서 정문 앞 별관 교통홍보관에서 〇〇〇〇과 소속 오모(37) 경장이 천장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오 경장이 출근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근무하는 사무실 맞은편 교통홍보관 안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중략…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족간의 재산보증과 노모 병간호 문제로 가정불화와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는 주변의 말에 따라 자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경찰서·부서·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전번호 2006자심78〉

보도내용

「3일 새벽 3시35분께 하남시 하산곡동 중부고속도로 구 하남출구에서 김모(46·서울 동대문구) 씨가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져 있는 것을 고속도로 순찰요원 김모(27)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고속도로 순찰 도중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승용차량(서울 ○○거 ○○○○·소나타)에 불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병을 비관한 김씨가 가출 하루 전인 지난 2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아버지보다 먼저 가게 되서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차량 주변에 버려진 휘발유통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유 차량의 종류 및 차량 번호를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전번호 2006자심79 - 2006자심80〉

보도내용

「...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양산시 ○○읍 소재 사찰인 ○○○의 창건주 모 스님(72)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스님은 사찰에 근무하는 여직원인 강모(28·부산 ○○), 홍모(25·양산 ○○)씨 등 2명을 자신의 처소로 차를 갖다 달라고 요구한 뒤 강제로 3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찰의 여직원인 강씨와 홍씨 등은 종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창건주인 스님이 자신들을 불러 성추행을 일삼았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나이·근무처 등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의자인 스님의 나이·소속 사찰의 명칭 및 소재지를 읊까지 적시하고 창건주라는 사실 등을 밝혀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81 - 2006자심82〉

보도내용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술에 취해 자신의 친누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장모 씨(34)에 대해 상해치사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익산시 ○○리 ○○마

을 자신의 집에서 누나(45)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집 마루에 있던 길이 50cm, 직경 3cm의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 장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일주일 전 집에서 쌀을 훔치고, 평소 술을 마시면 경기도 성남에서 택시를 타고와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누나가 이날도 택시비 없이 택시를 타고와 돈을 달라고 하자 화끈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조사결과 드러나.»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거주하는 마을의 명칭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83 - 2006자심85〉

보도내용

「양평경찰서는 15일 노숙자를 고용, 자신의 부모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 미수)로 박모 씨(3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노숙자 문모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께 노숙자 문씨를 양평군 〇〇면 〇〇리 자신의 집으로 보내 어머니 장모 씨(71)를 흉기로 위협한 뒤 통장과 카드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도박으로 1억여 원의 빚을 저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어머니의 성·나이와 함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86〉

보도내용

「농번기와 선거철을 맞아 농촌마을의 빈집을 돌며 금품을 털어오던 20대가 현장실습 중이던 한 경찰 예비생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상주 남부지구대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경찰 예비생인 최〇〇(34·사진) 씨는 17일 오후 3시쯤 외남면 신상리 일대를 순찰하던 중 골목길을 서성이던 박모(25·〇〇면 〇〇리) 씨를 만났다. 이런 박씨를 수상하게 여긴 최씨는 검문을 시작했고, 박씨가 달아나자 500여m를 쫓아가 검거한 것...」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87〉

보도내용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포항시 북구 〇〇〇〇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한 정비업체가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정비업체인 D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〇〇〇〇아파트

트 재건축조합 김모 조합장과 측근 K씨 등 조합 관계자와 당시 회사 직원이었던 S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들이 정비업체로 지정될 수 있게 힘써 주겠다고 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억여 원 상당의 조합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최근 조합측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해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만을 공표하였으나 피의자가 조합장을 맡고 있는 아파트의 명칭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88〉

보도내용

「광양경찰서는 30일 광양의 한 중학교에 발생한 실험실 폭발사고와 관련 이 학교 과학교사 이모 씨(35·여)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광양시 OO동 OOOO중학교 실험실에서 화학 약품에 따라 불꽃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실험을 하다 폭발사고를 내 최모 양(16·여) 등 학생 10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염화나트륨을 넣은 접시에서 황색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메탄올을 추가로 붓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중인 학교의 명칭 및 담당 과목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0〉

보도내용

「시각장애 1급 중증 장애인을 흥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98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20대 강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완도 경찰에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조사중인 김모 씨(23·완도군 OO면 OO리)는 지난 19일 밤 10시 40분께 같은 마을에 사는 시각장애 1급 정모 씨(25)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정씨의 집에 침입해 수차례 폭행한 뒤 흥기로 위협하고 현금 98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 및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1〉

보도내용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Og을 OOOOO에 희석해 OOOO에 투약한 임모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38세·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급책으로부터 금 OOO만원에 구입한 OO OOOO(OOO) 10회 투약분을 구입해 그중 1회분

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 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2〉

보도내용

「7일 오전 2시 30분께 ○○○○법원 ○○직(○급) 공무원 박모(33) 씨가 창원시 ○○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감모(42)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숨진 박씨가 평소 경륜장을 출입하면서 경륜도박으로 6500만원의 빚을 졌다는 부인 김씨의 진술에 따라 박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넥타이를 문고리에 걸어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직종·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3〉

보도내용

「22일 오전 5시 30분께 울주군 ○○면 ○○리 김모(66) 씨의 집 앞마당에서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주부 정모(53) 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숨져있는 것을 집주인 김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씨가 수년간 우울증을 겪었다는 유가족의 진술에 따라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주소를 리까지 밝혀 본인과 그 유족을 추지할 수 있게 하고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4〉

보도내용

「...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구 ○○동 ○○○○ ○○아파트 1208동 2xx호에서 ○○○○경찰대 ○○과장 A(37) 경정이 목욕탕 커튼에 끈으로 목 매 숨져있는 것을 동료 경관이 발견했다. 이 경관은 “이날 A경정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돼 관사로 찾아 가 보니 목욕탕에서 목매 숨진 채로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A경정이 고양시 일산에서 직접 목을 맨 끈을 사온 점, 최근 아내가 암 투병 중인 점 등으로 미뤄 가정 문제를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나이와 함께 생존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동과 층수 및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5〉

보도내용

「○○시청 국장을 지낸 전직 공무원 신모 씨(65)가 1일 오후 9시 25분께 자신의 집 인근 창고에서 팔에 독극물을 투약해 숨져 있는 것을 사위인 박모 씨(34)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신씨의 팔에서 독극물 투입을 위해 주사기를 꽂은 흔적만 있을 뿐 외상이 없고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자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6〉

보도내용

「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울산시 ○구청 직원 손모(38·○급 공무원)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손씨를 대신해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범인도피)로 친구 유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친구 유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7. 18.

〈안전번호 2006자심97 - 2006자심103〉

보도내용

「가평경찰서는 1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을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70)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8시께 가평군 ○면 ○리 자신의 집에서 아들(45)을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이며느리에게 자동차를 사줬다고 나무라던 중 아들이 대들자 화김에 부엌에 있던 과도로 아들을 찢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7. 18.

〈안전번호 2006자심105〉

보도내용

「진주경찰서는 21일 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강모(55)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진주시 장대동 모 실비주점에서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Og을 〇〇만원에 주고 구입한 뒤 〇〇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부터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7. 18.

〈안전번호 2006자심106 - 2006자심114〉

보도내용

「28일 밤 9시경 남양주시 〇〇동 〇〇〇경찰서 〇〇지구대 소속 조모(26) 순경이 〇〇지구대 옆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 스스로 머리에 권총을 쏘 자살했다. ...중략... 이날 〇〇〇경찰서 〇〇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조 순경은 그동안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이날 밤 8시 45분경 찾아와 〇〇지구대 근처에서 만났다. 조 순경은 이들과 몇 마디 말을 나누다 지구대 옆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로 가 운전석에 앉아 스스로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머리에 쏘았다. 조 순경은 지난해 2월 15일 〇〇〇경찰서 〇〇지구대에 초임 발령됐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직위·발령 시기 등을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7. 18.

〈안전번호 2006자심115〉

보도내용

「지난 19일 오후 4시께 고령군 〇〇면 〇〇리 정모(57) 씨가 자신의 집 감나무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정씨가 청각장애 기초수급대상자로 혼자 생활해오다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7. 18.

〈안전번호 2006자심116〉

보도내용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아버지와 딸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아버지의 전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김모 씨(37)를 살인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순천시 〇〇면 〇〇리 자택에서 아버지(71)의 전처인 김모 씨(71)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자신의 아버지와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아버지가 집밖으로 피하자 홧김에 집안에 머물고 있던 (아버지의) 전처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온 아들 김씨가 3년 전 생모가 숨진 뒤 아버지가 전처와 살림을 꾸린 데 불만을 품어오며 부자간 갈등이 심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5조제1항제2호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17〉

보도내용

「금산경찰서(서장 고헌근) 진악지구대(경사 길호균, 경장 강재구)는 지난 17일 오후 3시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소재 한진아파트 앞 골목에서 차량절도 혐의로 ○○고 1년 송모 군(○○면 거주, 남 16세), ○○○○고 1년 변모 군(○○면 거주, 남 17세)을 6시간 잠복근무 끝에 현장에서 동행하여 금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시켰다. 피의자들은 금산군 금산읍 거주 최모 씨(남 48세)의 겔로퍼 승합차량과 전북 남원시 주생면 거주 박모 씨(남 39세)의 봉고프런티어 냉동 탑차를 절취하는가 하면 번호판이 없는 50cc 스쿠터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이다.」

이 유

위 기사는 미성년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재학중인 학교명 및 학년 등과 함께 주소를 면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소년법 제68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5조제1항제1호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18 - 2006자심123〉

보도내용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홍기로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강도예비)로 ○○교도소 ○○교도대 최모(20) 이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이교는 18일 오전 1시께 홍기를 지나고 전주시 금암동 일대를 배회하다 지나가던 10대 2명에게 “인근의 슈퍼마켓을 털자”고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이 교도소에 배치된 최 이교는 16일 오후 근무복 차림으로 경비대 막사를 무단이탈한 뒤 이틀간 전주시내를 배회하던 중 만난 10대들에게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의 신고로 달미가 잡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교도대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계급·자대 배치 시기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24〉

보도내용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31일 실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총기 방아쇠를 당겨 동료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서울 ○○경찰서 ○○지구대 오모(43)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경사는 지난 2월 8일 오전 7시 39분께 ○○구 ○○지구대 사무실에서 6연발 38구경 권총의 실탄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은 상태로 방아쇠를 당겨 반대편 의자에 앉았던 동료경찰관 이모(51)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25〉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은 2일 동료선원을 폭행하고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성모(34·목포시 죽교동)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우잡이 연안 자망어선 '〇〇〇호' (9.77t) 선원인 성씨는 지난달 28일 신안군 지도읍 송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김모(31·영광군 낙월면)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후 물을 부어 질식사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김씨의 손발을 묶은 뒤 몽둥이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바다에 빠뜨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 및 소속 선박명 등과 함께 주소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26〉

보도내용

「19일 오후 10시 15분께 의성군 〇〇면 〇〇리의 김모(62) 씨가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말에 격분해 주택에 불을 질러 김씨의 외손녀 황모(의성 〇〇고 1년) 양이 불에 타 숨지고 목조 가옥이 전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20여 년 간 동거해온 김씨가 〇〇면 〇〇리 딸 변모 씨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주택에 불을 질러 김씨의 외손녀가 숨지고 주택이 전소됐다. 한편 김씨는 불을 지른 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 겸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 및 주소를 리까지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거녀 딸의 성 및 주소를 리까지 밝히면서 그 외손녀의 성·생존시 소속 학교명·학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27〉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은 22일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전복·해삼·소라를 채취한 혐의로 신안선적 연안복합어선 '〇〇호' (5t) 선장이모(52) 씨와 해녀 김모(52)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어선 선장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항중인 선박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

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28〉

보도내용

「... 14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 중부경찰서 북문지구대 사무실에서는 가냘픈 여중생이 경찰관들에 둘러 싸여 칭찬을 받고 있었다. 칭찬의 주인공은 최○○(17·○○중 3년)양. 최양은 귀가중이던 여대생에게 칼을 들이대고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를 맨손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최양은 이날 8시 50분쯤 수원시 연무동 수원천변을 걷고 있었다. 이때 비명 소리가 들렸다. 다름 아닌 이모(18) 군이 신모(22·여·대학 3년) 씨에게 칼을 들이대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었던것. ... 중략 ... 최양은 이 군이 휘두르는 흉기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위○○(24·○○대 ○○과)씨가 이 광경을 보고 합세했다. 갑자기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모 군은 당황했고 결국 줄행랑을 치려했다. 그러나 위씨가 이모 군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 틈에 최양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검거자들의 성명·나이·재학중인 학교명·학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29〉

보도내용

「대구 서부경찰서는 06. 8. 14경 거주지 및 공터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속칭 ○○○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 교부하여온 일당 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모(32세) 피의자는 06. 7월 중순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네거리 은행앞 노상에서 성불상 홍기로부터 공모(40세) 피의자에게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그램 상당을 ○만원 받고 공모 피의자에게 교부하는등 전후 4회에 걸쳐 필로폰 ○그램 상당을 판매하고, 공모 피의자는 06. 8. 7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3가 소재 빌딩 앞 노상에서 이모 피의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중 1회 투약분 ○그램 상당을 ○만원을 받고 박모(41세) 이모(41세) 피의자에게 판매하고 ○○○○○를 이용하여 ○○에 투약하고 남은 ○○○ 2.62그램 상당을 소지하고, 박모 이모 피의자는 각 주거지 등지에서 ○○○○○를 이용하여 ○○에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30〉

보도내용

「대구 성서경찰서는 06. 8. 31경 마약류인 대마초 ○그램을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 소지하고 ○에 끓여 1회 섭취한 김모(40세)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06. 6. 28경 경북 영천시 ○○읍 ○○시장에서 불상의 70대 할머니로부터 ○○○ ○그램을 ○○○원에 매입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승용차 뒤 트렁크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을 ○에 끓여 1회 섭취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대마초의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31〉

보도내용

「8월 셋째주말 충북지역은 90대 노인이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20일 오전 9시 20분께 청원군 OO면 OO리 연모 씨(90·여) 집에서 연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손자 한모 씨(37)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연씨가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손녀의 처지를 비관해왔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32 - 2006자심136〉

보도내용

「21일 오전 7시께 OO경찰서 4층과 옥상 사이 비상계단에서 이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모(22·서

울 노랑진구) 일경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일경을 발견한 경찰서 직원은 “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강당으로 올라가던 중 김 일경이 파이프에 목을 맨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김 일경이 이날 오전 4시경 평소 잘 지내던 여자친구가 전화로 헤어지자고 말한데 대해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등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이성문제로 고민하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전투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소속 경찰서와 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37〉

보도내용

「경찰서 과장이 지병을 비관해 원룸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OO구 OO경찰서 보안과 Y과장(56·경정)이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으나 숨졌다. ...중략...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Y경정이 폐암 진단을 받고 그동안 신병을 비관해 왔다는 것으로 보아 지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 성의 영문이니셜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38 - 2006자심139〉

보도내용

「휴직을 마치고 귀대를 앞둔 의경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28일 오전 5시 25분께 영주시 〇〇〇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〇〇〇대 소속 박모(21·봉화군) 일경이 추락해 사망한 것을 아파트 경비원 한모(66)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박씨가 지난해 12월 입대해 우울증세로 4월 경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5월 29일부터 3개월 휴직에 들어가 이날 귀대할 예정이었다는 소속 부대 부관의 말에 따라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의무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소속 부대·계급·입대 시기·휴직 일자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40, 2006자심156〉

보도내용

「〇〇축협 같은 부서의 과장·계장이 연이어 자살, 유족들이 각종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1일 오전 6시께 평택시 통북동 소재 1호국도 통북교량에 〇〇축협 〇〇사업소 계장인 이모 씨(45·〇〇시 〇〇동)가 교량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모 씨(4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이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과

장 최모 씨(46·〇〇시 〇〇읍)가 사업소 보일러실 배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직원 이모 씨(2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들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41〉

보도내용

「지난 1일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40대가 4일 오전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런데 바로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가 지난 1999년 '〇〇〇〇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〇모 변호사의 당시 사무장이었다는 것 때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변호사 사무장까지 지냈던 그가 왜 살인에 이어 자살까지 하게 되었을까. 경찰의 수사가 진척되면 자세한 사건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는 돈과 여자관계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쯤 대전 중구 안영동 야산 중턱에서 채소밭에서 김모(48)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밭 주인 나모씨(50)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발견 당시 목에 전기줄이 감겨진 채 상당 부분 부패한 상태인 것으로 미뤄 사망한지 이틀 정도 지났고 사망 원인은 자살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이면서 자살자인 특정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그가 대전 범조비리 사건의 당사자였던 L모 변호사의 당시 사무

장이었던 사실을 밝혀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동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42〉

보도내용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양산의 사찰 창건주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이평근 판사는 26일 사찰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됐었던 양산 ○○읍 소재 ○○○ 창건주 허모(72) 스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찰의 큰 스님으로서 직원들을 인사하고 감독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 2명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략… 이 사찰의 여직원 강모(28) 씨와 홍모(25) 씨 등은 각각 7개월과 2년 동안 종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사찰 창건주 허모 스님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근무 기간 등을 적시하여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43〉

보도내용

「지난 11일 밤 9시35분께 남양주시 ○○면 ○○리 1층 주택에서 20kg짜리 가정용 LPG 가스통이 폭발해 집주인 노모 씨(41)가 화상을 입고 구리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중략… 경찰조사 결과 이날 오후 6시께 별거중이던 노씨의 아내가 찾아와 토지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돌아간 뒤 노씨가 가스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여 폭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별거중인 사실을 밝혀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44〉

보도내용

「뽕소니 사망사고의 범인을 붙잡고 보니 사망자와 한마을에 사는 5촌 조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인척간 서로 망연자실했다. 13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제 ○○면 ○○리 한 마을에서 뽕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76·여) 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범인 이모(50) 씨를 붙잡아 특가법상 도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이씨는 범인 이씨의 당숙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 김제시 ○○면 ○○리로 귀가하다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자신의 당숙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45〉

보도내용

「거제경찰서는 17일 오후 5시 56분께 밀린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로 건축업자를 살해한 장모 씨(62·부산 ○구·○○○○대표)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7일 오후 5시께 거제시 ○○면 폐교교실에서 건축업자 정모 씨(44)와 술자리를 하면서 2004년 공사한 체불임금 3천 5백만 원에 대한 결제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장씨가 술자리에 있던 과도로 정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그가 특정 시설의 건립 대표라는 사실과 함께 그 시설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46 - 2006자심147〉

보도내용

「불이 난 아파트 방 안에서 초등학생이 양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오후 3시 40분께 울산 ○구 ○동 ○○○○아

파트 ○○○동 14층 윤모(32·여) 씨의 집 화재 현장에서 윤씨의 아들 박모(8) 군이 양손이 묶이고 입에 청테이프가 붙여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119 구조대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아파트 거실에서 발견된 박군은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도 있었다. 또 박군 옆에는 야구 방망이와 부엌 칼이 놓여 있었고 방안의 옷장과 서랍은 뒤진 흔적이 발견됐지만 아파트 출입문은 잠긴 상태였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어머니의 성과 나이 및 생존지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칭·동·층수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48 - 2006자심149〉

보도내용

「백주대낮 대로변에 있는 농협 지소에 공기총을 든 강도가 침입했다가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났다. 19일 오전 11시 54분께 논산시 ○○면 ○○리 ○○농협 ○○지소에 공기총을 들고 검은색 모자와 같은 색 겨울점퍼를 머리에 뒤집어쓴 괴한 1명이 침입했다. 이 괴한은 “돈을 내놓으라”고 2번 위협한 뒤 지소 직원 남모(여·43) 씨가 책상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자 농협 밖에 미리 세워 둔 차량을 타고 계백장군 묘 방면으로 도주했다. …중략… 지소장 신모(46) 씨는 “170cm 가량의 호리호리한 체격의 괴한이 공기총을 겨누는 뒤 돈을 달라고 위협했다”며 “비상벨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괴한을 80여m 쫓아갔으나 붙잡지 못했다”며 “매주 우발상황에 대비한 예방훈련을 해 직원들에 대처

요령이 배어있던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미수사건의 신고자와 진술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50 - 2006자심152〉

보도내용

「농협에 복면강도가 침입해 현금 228만원을 털어 달아났으나 3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오후 4시 50분께 울산시 ○○군 ○○읍 ○○리 ○○농협 ○○지점에 복면을 한 권모(41·울산시 ○○군) 씨가 흥기를 든 채 뒷문으로 침입했다. 권씨는 직원 천모(39) 씨를 폭행하고 다른 직원 3명을 흥기로 위협한 뒤 창구에 있던 현금 228만 원을 털어 달아났다. 농협 직원들은 “정문을 닫고 업무를 마무리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으로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했다”며 “곧바로 경찰로 연결된 신고벨을 누르면서 강도에게 화분을 던지며 대응했지만 뒷문으로 다시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53〉

보도내용

「수원 남부경찰서는 17일 ○○○을 구입해 수차례에 걸쳐 투약해 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스포츠댄스학원장 김모(47) 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권모(44)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길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권씨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 Og을 ○○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집에서 ○○○을 ○○에 섞어 마시는 등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54 - 2006자심155〉

보도내용

「군산경찰서는 20일 군산일대 여관을 돌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조모 씨(29·군산시 ○○면)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군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일명 ○○O) ○○정을 ○○만 원에 구입해 총 5차례에 걸쳐 40정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의 명칭·사용량·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

려가 있으므로 (시정 권고심의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57〉

보도내용

「... 생활안전과 지령실 근무 김○○ 경위는 지난 5일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경찰서로부터 김천시에서 소재불명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정○○양이 2회에 걸쳐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김천소방서 상황실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한 바, 직계존속외는 조회불능이라는 통보를 받고, 정○○양(78년생)에 대하여 컴퓨터조회를 실시 김천시 ○○동 ○○○번지(세대주 ○○○)로 확인되어 즉시 역전지구대 112순찰차를 정○○양 거처로 출동토록 해 김천소방서 구급차 지원을 요청, 구급차와 112 순찰차를 황금성당뒤 정자나무 주변에서 합류토록 유도하여 정○○양을 발견 신속히 김천의료원으로 후송함으로 2회에 걸쳐 음독한 자살기도자의 생명을 구하게 되자 가족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명·나이·주소·세대주의 성명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 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58 - 2006자심159〉

보도내용

「경찰 간부가 음독 자살을 시도해 생명이 위독

하다. 지난 6일 새벽 2시 15분께 ○○경찰서 ○○○○과 ○○○○장인 박모(46) 경위가 ○○군 ○○면 자신의 어머니 김모(67) 씨 집에서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김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중략... 경찰은 박 경위가 남긴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자세한 음독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 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60〉

보도내용

「대구 중부경찰서는 06. 9. 6경 시내 중심가의 공중전화기에 ○○○○를 집어넣어 전화이용자들이 동전이 낙전되지 못하게 한 후, 그 동전을 절취한 안모(42세)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06. 8. 6경부터 9. 6까지 대구시 중구 상서동 22 소재 모빌딩 앞에 설치되어 있는 동대구지사 소유의 공중전화를 비롯, 시내 중심가 29개소의 공중전화 동전투입구에 미리 노란색 ○○를 집어 넣고 그 사이 고객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 투입한 동전이 투입구에 쌓이게 한 후 준비한 철사 등을 이용, ○○를 꺼내 걸려 있던 동전이 반환구로 떨어지게 하는 수법으로 매일 저녁 공중전화기에 위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고 익일 10:00경 수거하는 방법으로 22개소 29개의 공중전화에서 전후 약 321회에 걸쳐, 도합 112,35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범죄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독자들

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61 - 2006자심162〉

보도내용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며 폭발한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그는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의 손가락을 도끼로 내리친다. 1993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피아노’의 한 장면이다. 광주에서도 이 영화를 연상케 하는 엽기적인 손가락 절단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의 불륜에 화가 치민 남편이 상대 남성의 손가락을 잘라버린 것이다. 지난 7일 오후 7시 광주시 ○구 ○동 정모(44·부동산중개업) 씨의 사무실. 임모(34·자영업)씨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울부짚었다. 응접용 탁자에는 날카로운 흉기 등 3개의 도구가 놓여있었다. 경기도가 주거지인 임씨가 이곳에 끌려온 것은 8년 전 정씨의 아내(43)와 저지른 불륜이 들통난 때문. 평소 아내의 행실을 의심해온 정씨는 최근 임씨에게 전화를 걸어 8년 전의 일을 꼬치꼬치 추궁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63〉

보도내용

「... 광주 북부경찰은 11일 ○○○○대학 ○○○○학과 부교수 김모(44) 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밤 1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지구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조교인 이모(여·24)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네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조교 이씨와 ○○동 K 호프집에서 병맥주(7병)·생맥주(1,600cc)를 나눠 마신 뒤 “다른 데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재직중인 대학의 영문이니셜·학과·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전번호 2006자심164〉

보도내용

「대구 달성경찰서는 산행을 함께 다녀오다 동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남 ○○○○직원 조모(47) 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5일 오후 7시쯤 동료 직원과 함께 산행을 갔다 오던 중 구마고속도로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직장 상사 옥모(42)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옥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65〉

보도내용

「최근 농지와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건축물 증축으로 무법지대를 만들던 30대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 씨(37세)가 양평군 OO면 OO리 소재 모 횃집을 운영하면서 관할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00평 가량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물의를 일으켰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께 양평군 OO면 OO리 OOOO번지 외 5필지에 대해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00평 가량은 주방,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약 100평 가량 불법 증축했다. 또 2005년 5월께 농업진흥구역내의 O리 OOOO번지 외 6필지 농지에 군청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 및 운동장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고 잔디를 식재해 약 1,500평 가량을 축구장으로 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1년 4월경에는 O리 OOOO번지에 지방 2급수 하천에 원두막 4개를 신축하는 등 하천구역 내의 토지 약 101평을 무단 점용해 하천법을 위반하고 2004년 9월경 O리 OOOO번지에 단독 정화를 설치하거나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증대시켜야 함에도 이를 어긴 채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그가 운영중인 업소의 유형 및 소재지와 함께 불법증축혐의 관련 세부내용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66〉

보도내용

「... 인천중부경찰서(강력1팀)는 한모(업주·46)씨를 도박장개장 등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인천 O구 OO동 소재에 폐업된 무도학원을 임대하여 OOOOO이라는 위장 무도장 간판을 걸어놓고 이곳에다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을 현금을 받고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영 중인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통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67〉

보도내용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던 사립학교에 교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 낸 혐의(사기)로 전직교사 염모 씨(52·전주시 OO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H고 교사였던 염씨는 지난 2004년 10월초 전주시 OO동 O고교 기숙사 사감실 내에서 영어교사 채용을 도와달라는 이모씨(38)의 부탁을 받고 “학교법인 실권자와 친하니까 채용을 돕겠다”며 1,100만 원을 받는 등 소개비 및 학교발전기부금 명목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8,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하던 학교의 영문이니셜 및 재직 시기 등과 함께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전번호 2006자심168 - 2006자심169〉

보도내용

「19일 새벽 3시께 안동시 ○○면 ○○리 백모(66·여) 씨의 집 안방에 괴한이 침입, 잠자던 백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백씨를 이불로 덮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금품을 요구하다 저항하는 백씨의 목과 앞면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것. 백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30~40대 남자로 보인다는 백씨의 진술을 토대로 방법용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전번호 2006자심170 - 2006자심174〉

보도내용

「... 10일 오후 8시 20분께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 경부선 철도 굴다리 아래서 인근 마을 서모(49)

씨가 자신의 승용차 옆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 김모(24·여) 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3시간여만에 숨졌다. ...중략... 경찰은 “미혼인 서씨가 지방선거에 실패한 뒤 처지를 비관해왔으며 지난 1일에도 음독자살을 기도해 5일간 병원치료 받았다”는 부친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씨는 지난 5·31지방선거 때 ○○○당 ○○○○ 후보공천을 신청했다가 여론조사에서 뒤져 낙천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특정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낙천자라는 사실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전번호 2006자심175 - 2006자심177〉

보도내용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중간지점에서 ○○○○ 직원이 회사업무용 차량을 몰고 와 차를 세워 놓고 바다로 뛰어들어 투신자살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59분경 인천공항 고속도로 공항기점 서울방향 12km 지점 영종대교에서 ○○○○○ 전력운영팀에 근무하는 김모(39·인천 ○구 ○○동) 씨가 투신자살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전번호 2006자심178 - 2006자심179〉

보도내용

「...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 5리 선착장에서 부패된 여자의 오른 손목이 예리한 흉기로 절단된 채 발견돼 손가락에서 어렵게 지문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센터에 신원 확인을 의뢰한 결과 김씨의 아내인 박某(44) 씨의 손목으로 밝혀져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26일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전번호 2006자심180〉

보도내용

「여자친구의 결별요구에 탈영을 했던 의경이 한 달만에 또 다시 탈영했다. 13일 청주〇〇경찰서에 따르면 〇〇서 〇〇〇〇〇 소속 김모 이경(20)이 지난 12일 오전 9시 50분쯤 자체 군기교육을 받던 도중 몰래 경찰서를 빠져 나갔다. ...중략... 경찰은 김 이경이 애인(22)과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말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전환장애로 2주간 경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는 등 애인에 대한 집착으로 탈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정신병력이 있는 의무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경찰서·부서·계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5조제1항제2호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전번호 2006자심181〉

보도내용

「경북 경산시의원 전모(41·한나라·하양-진량-와촌) 씨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강모 씨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강모 씨는 지난 〇〇〇〇선거에서 피살된 전 의원과 함께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던 경쟁자의 〇〇 것으로 밝혀져 후보자들 간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〇〇〇〇 선거 당시 경산시 하양-진량-와촌 시의원 선거에는 모두 9명이 출마해 4명이 당선됐는데, 용의자 강씨의 〇〇은 〇위에 그쳐 낙선했다. 선거 과정에서 특히 강씨와 전씨는 〇〇지역 동향 출신인데다 연령층과 성향, 지지기반이 비슷한 관계여서 선거기간 내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강씨는 〇〇〇 공천에서도 하양지역 몫의 당 공천을 전씨에게 뺏겨 탈당하면서 감정의 앙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만을 공표하였으나 특정 기초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보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후보의 형이라는 사실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전번호 2006자심182〉

보도내용

「예배 중인 목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및 예배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파문을 일으킨 교회 장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엄종규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68)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중략... 검찰에 따르면 포항 ○○교회 장로인 박씨는 지난 2005년 7월 예배중인 당회장 이모(57) 목사를 폭행한데 이어 지난 1월1일 교회 송구영신 예배직후 집사 손모(57) 씨 등 지금까지 모두 3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특정 교회의 장로라는 사실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전번호 2006자심183〉

보도내용

「울진군의원의 공무원 폭행사건에 이어 ○○소방서 ○○과장(48)이 만취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과장은 21일 0시 30분쯤 울진읍 K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울진중부지구대로 연행된 뒤 근무 중인 장모 경사(48)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것. 경찰은 ○과장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한 뒤 폭행 경위를 조사중.」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전번호 2006자심184〉

보도내용

「전주시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22일 석산업체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실을 고발한 후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며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조합 ○○지부장 황모 씨(4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월 21일 익산시 ○○면에서 ○○○○업을 하는 D업체 대표 김모 씨(52)가 허가구역 외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접수하고 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빌미로 김씨에게 향후 고발과 같은 일로 괴롭히지 않을 것을 내세우며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노동조합의 명칭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전번호 2006자심185〉

보도내용

「○○○○○ 직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통영해양경찰서는 27일 산소 호스를 잘못 연결한 ○○○○ ○○팀 손모(26)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2시8분께 1만3천t급

화학제품운반선 탱크 내부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폭발사고로 숨진 강모(50) 씨에게 공기를 주입하는 호스 대신 산소 호스를 잘못 연결한 손씨를 입건, 회사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소속 부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전번호 2006자심186〉

보도내용

「공주경찰서는 지난 2004년 10월 중순경부터 2006년 11월 26일 22:00경까지 상습적으로 하루 2-3회씩 대마초를 흡연하고, 대마초 약 90그램을 보관한 피의자 김모 씨(남, 40세)를 공주시 OO면 OO리 소재 자택에서 검거하여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음이 없이 대마를 상습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공주시 OO면 OO리 소재 야산에서 대마잎을 채취한 다음 방에다 건조시켜 피의자의 방안 찬장 위에 대마초 약 90그램을 보관하고, 하루 2-3회씩 흡연을 해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전번호 2006자심187〉

보도내용

「... 두 딸을 둔 주부 조모(30) 씨는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복면을 쓰고 고척동 ○○○○○로 들어갔다. 조씨는 손님 노모(여·60)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1분간 직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평범한 주부 조씨의 은행털이가 성공할 리 없었다. 창구에 있던 박모(38) 과장이 비상벨을 누른 뒤, 가스총을 들고 창구를 뛰어넘어 조씨에게 다가갔고, 겁을 먹은 조씨는 바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나려 했다. 조씨는 당황한 나머지 당겨야 열리는 문을 밀다가 결국 박 과장에게 붙잡혔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미수사건 검거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전번호 2006자심188 - 2006자심200〉

보도내용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38)가 사격 훈련 도중 자살했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사는 9일 오전 10시 5분께 도봉경찰서에서 사격 훈련을 하다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쏜 뒤 쓰러져 상계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경사는 이날 도봉경찰서에서 열린 ○○경찰서 소속 외근 직원들의 정례 사격 훈련에 참가하던 중이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전번호 2006자심201〉

보도내용

「최근 한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뒷부분은 삭제)

이 유

위 기사는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신청심의 시정권고

〈안전번호 2006신심14〉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 社告를 통해 “국가청렴위 발표 ... ○○시 청렴도(부패지수) 전국 꼴찌, 불명예 퇴치운동에 지방의회와 함께 ○○신문사에서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 자사 홍보를 위해 전면을 이용하여 1. 5.부터 3. 23.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 ‘불명예 퇴치운동에 지방의회와 함께 ○○신문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보도내용 중 ‘지방의회와 함께’라고 표현한 것도 ○○시의회를 통해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니며 ▲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광고게재 행위는 언론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통상적인 정도와 방식을 벗어난 악의적인 보도로서 ○○시와 소

속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지 않도록 시정권고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도는 감시와 계도차원에서 용인되는 피신청인의 고유한 기능이라 할 것이고, 해당 단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도 합당한 언론활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동일 사안에 대해 8회 연속하여(4월 6일자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어 4월 17일 현재 모두 9회 보도됨) 한 개 지면 모두를 할애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비록 그 보도가 진실이라 할지라도 반복적·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한 것임은 물론 공익 추구를 위해 용인되어질

수 있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또한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위법성이 부인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이 건 시정권고 신청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당 위원회는 이 건 관련 보도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결정한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신심39〉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 기사를 통해 “2007년도 수능 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물과목에서는 ‘황우석 파문’과 관련, 줄기세포가 거짓임이 확인된 과학적 과정을 고스란히 다룬 시사적인 문항이 출제되었다. 생물Ⅱ의 18번은 핵치환 과정을 통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만들고 핵과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유전자 지문검사를 실시해 줄기세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과학적 과정을 다뤘는데, 이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거짓임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과정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정답도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가 가짜인 것으로 나왔다”는 요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문제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핵을 제공한 회색 쥐와 세포질을 제공한 흰색 쥐, 그리고 복제 배양된 줄기세포를 구분하는 문제로서 줄기세포가 가짜임을 확인하는 과정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또한 ‘정답도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가 가짜로 나왔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해당 보도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황우석 교수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사과 및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정을 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32조에 의한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2006년도 수능능력시험 생물Ⅱ의 18번 문제(이하 ‘해당문제’)는 핵을 제공한 회색 쥐의 세포와 세포질을 제공한 흰 쥐의 세포, 그리고 이를 통해 복제에 성공한 줄기세포에서 DNA를 각각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고 각 세포를 구분하라는 것으로 보이고, 실험과정의 도입부분에서도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해당문제는 피신청인이 보도한 바와 같이 “줄기세포가 거짓임이 확인된 과학적 과정을 고스란히 다룬 문항”이라던가, “줄기세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과학적 과정을 다룬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또 “정답도 ... 줄기세포가 가짜인 것으로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해당문제에 대한 ○○○○방송측의 해설을 참조하여 보더라도 이 건 기사는 해당 문제를 적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건 기사로 인해 수험생들과 수능시험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시정권고를 결정한다.

2006. 12. 11.

□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외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회 의〉

1. 위원총회

가. 정기총회

- 일 자 : 2006. 2. 28.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안 건
 - 200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운영위원회 및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 선출

〈운영위원〉

조준희 위원장, 허광욱 부위원장, 김서중, 조인호, 김동호, 김강덕, 석희태,
유현옥, 하명희 위원

〈시정권고위원〉

조준희 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 이상현, 이수언, 임연택, 최충웅, 조수정 위원

나. 임시총회

- 일 자 : 2006. 9. 5.
- 안 건
 - 임원(부위원장, 감사) 선출

2. 운영위원회

가. 1차 운영위원회

- 일 자 : 2006. 1. 23.
- 심의·의결사항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의·의결

나. 2차 운영위원회

- 일 자 : 2006. 2. 21.
- 심의 · 의결사항
 - 총회상정안 및 조정중재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심의 · 의결

다. 3차 운영위원회

- 일 자 : 2006. 8. 28.
- 심의 · 의결사항
 - 임원(부위원장, 감사) 선출안

라. 4차 운영위원회

- 일 자 : 2006. 10. 27.
- 심의 · 의결사항
 - 결원 운영위원 선출
 - 중재위원 수당지급규칙 개정안
 - 위원회인규칙 개정안
 - 보수규칙 개정안
 - 직원근무평정규칙 개정안
 - 촉탁직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 사〉

1. 지방토론회 개최

가. 경기지방토론회

- 일 자 : 2006. 4. 21.
- 장 소 : 수원 호텔캐슬
- 주 제 :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 발 표 자 : 석희태 위원
- 참석인원 : 경기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관계, 사회단체 인사 등 65명

나. 전북지방토론회

- 일 자 : 2006. 7. 5.
- 장 소 : 전주 코아호텔
- 주 제 :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과제
- 발 표 자 : 권혁남 위원
- 참석인원 : 전북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관계, 사회단체 인사 등 95명

다. 충북지방토론회

- 일 자 : 2006. 9. 28.
- 장 소 : 청주 리호관광호텔
- 주 제 :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 발 표 자 : 박종호 위원
- 참석인원 : 충북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관계, 사회단체 인사 등 80명

2. 정기세미나 개최

- 일 자 : 2006. 11. 23. ~ 25.
- 장 소 : 전북 완주 대둔산 관광호텔
- 주 제 :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 포털뉴스의 피해구제 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 발 표 자 : 한 위 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양 재 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 변호사)
- 참석인원 : 언론계 인사, 중재위원, 포털 관계자 등 60여명

3. 중재위원워크숍 개최

- 일 자 : 2006. 3. 30. ~ 31.
- 장 소 : 충북 보은군 속리산 레이크힐스 관광호텔
- 주 제 : 조정사례로 본 새 제도 운용 진단
 - 사례로 본 손해배상청구
 - 증거조사 실시의 현황과 과제
 - 합의체 중재부의 효율적인 조정심리
 - 인터넷신문의 피해구제 보도 방법

- 발 표 자 : 조수정, 박정호, 권혁남, 김서중 위원
- 참석인원 : 중재위원 40명

4. 언론중재법 토론회

- 일 자 : 2006. 8. 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
- 주 제 :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
- 발 표 자 : 양경승 판사 (사법연수원)
- 사 회 자 : 조수정 위원 (변호사)
- 토 론 자 : 김재협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김태수 변호사,
박영상 교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박인규 프레스인 대표
- 참 석 자 : 중재위원, 언론사 기자 및 일반 시민 등 70여 명

5. 해외언론계 시찰

- 기 간 : 2006. 11. 7. ~ 16.
- 방문국 및 방문처
 - 스 위 스 : Neue Zürcher Zeitung
 - 오스트리아 : Komm Austria, Der Standard, Verband Österreichischer Zeitung
 - 이 탈 리 아 : La Repubblica, AG Com
- 시 찰 자 : 위원장
조정1팀차장 여종국, 조정2팀차장 최영훈

6. 직원해외연수실무연수

- 기 간 : 2006. 7. 12. ~ 8. 13.
- 연 수 국 : 미주 지역
- 연수내용
 - 언론학 전공 교수 면담 및 특강
 - 언론피해구제기구 및 언론기관 탐방
- 연 수 자 : 예산회계팀차장 임종우, 기획혁신팀 최승민

〈간 행 물〉

1. 회지 「언론중재」 발행

가. 2006년 봄호 (통권 제98호)

- 발행일자 : 2006. 3. 30.
- 특집주제 : 취재윤리와 진실보도
- 발행부수 : 1,200부

나. 2006년 여름호 (통권 제99호)

- 발행일자 : 2006. 6. 30.
- 특집주제 : 시민저널리즘, 과제와 전망
- 발행부수 : 1,200부

다. 2006년 가을호 (통권 제100호)

- 발행일자 : 2006. 9. 30.
- 특집주제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언론중재법
- 발행부수 : 1,200부

라. 2006년 겨울호 (통권 제101호)

- 발행일자 : 2006. 12. 30.
- 특집주제 :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 발행부수 : 1,200부

2. 「2005년도 연차보고서」 발행

- 발행일자 : 2006. 3. 30.
- 주요수록내용
 - 2005년도 조정 · 중재처리 및 시정권고 통계
 - 2005년도 언론조정 · 중재신청사례
 - 2005년도 시정권고사례
 -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 발행부수 : CD - ROM 1,000매, 책 300부

3. 「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13집) 발행

- 발행일자 : 2006. 6. 30.
- 주요수록내용
 - 전국 각급 법원의 언론관련 판결 중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 발행부수 : 1,200부

4. 「소식지」 발행

- 발행일자 : 매월 20일
- 주요수록내용
 - 위원회 소식 및 위원동정, 판례동향, 조정사례 등
- 발행부수 : 300부

5. 「언론조정실무가이드」 발행

- 발행일자 : 2006. 12. 18.
- 주요수록내용
 - 언론조정제도, 언론조정절차 등
- 발행부수 : 700부

6.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발행

- 발행일자 : 2006. 12. 18.
- 주요수록내용
 - 언론피해 상담사례 등
- 발행부수 : 700부

〈광고 및 홍보〉

1. 매체 광고

- 총 865회
 - 공중파TV : 116회
 - 케이블TV : 455회
 - 라 디 오 : 117회
 - 신문돌출 : 85회
 - 인 터 넷 : 34회
 - 잡 지 : 35회
 - 기 타 : 23회

2. 홍보용 책자발간

- 홍보책자 발간
 - 발행일자 : 2006. 9. 29.
 - 발행부수 : 국문 2,500부
영문 500부

〈기타 사업〉

1.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 조사기관 : (주)한국신용정보
- 조사기간 : 2006. 10. 23. ~ 2006. 11. 24.
- 보고서 발간
 - 제 목 : 200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 발행일 : 2006. 12. 18.

2. 조정·중재 사건 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업체명 : (주)정보사랑
- 구축기간 : 2006. 7. ~ 2006. 11.
- 구축건수 : 총 9,114건
- 대상기록
 - 1981년도 ~ 1995년도 : 연차보고서
 - 1996년도 ~ 2005년도 : 사건기록 원본

2006년도 중재위원 명단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위 원 장	조 준 희	변호사	2005. 3. 31. ~
부 위 원 장	노 향 기	전 월간말 발행인	2003. 9. 17. ~
	이 도 영	전 충북YMCA 명예사무총장	2003. 9. 1. ~
	이 중 욱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000. 9. 1. ~ 2006. 8. 31.
	허 광 욱	전 전남일보 논설주간(이사)	2000. 9. 1. ~ 2006. 8. 31.
서울제1중재부	황 정 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2006. 3. 13. ~
	안 병 준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2005. 3. 31. ~
	박 영 규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2006. 9. 1. ~
	오 욱 환	변호사	2003. 9. 1. ~
	김 문 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2005. 12. 20. ~ 2006. 2. 13.
서울제2중재부	임 시 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6. 3. 13. ~
	김 태 진	다섯수레 대표	2005. 11. 25. ~
	변 화 석	변호사	2003. 9. 1. ~
	한 국 연	전 기독교방송 상무이사	2006. 9. 1. ~
	김 정 기	한양대 신방과 교수	2006. 10. 30. ~
	송 영 천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3. 9. 1. ~ 2006. 2. 13.
	주 길 치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2003. 9. 1. ~ 2006. 8. 31.
	이 상 현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2005. 10. 20. ~ 2006. 9. 30.
서울제3중재부	한 범 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6. 9. 1. ~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서울제3중재부	이 수 언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2005. 3. 31. ~
	김 서 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2005. 3. 31. ~
	이 백 수	변호사	2006. 9. 1. ~
	성 기 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5. 3. 31. ~ 2006. 8. 28.
	양 삼 승	변호사	2000. 9. 1. ~ 2006. 8. 31.
서울제4중재부	김 동 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06. 3. 13. ~
	전 세 봉	변호사	2003. 9. 1. ~
	김 지 영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2006. 12. 22. ~
	김 영 석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5. 3. 2. ~
	권 정 숙	전 한겨레 방송팀장	2006. 9. 1. ~
	신 명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3. 3. 10. ~ 2006. 2. 20.
	신 찬 균	전 세계일보 주필, 편집국장	2003. 9. 1. ~ 2006. 11. 2.
	박 봉 간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	2003. 9. 1. ~ 2006. 8. 31.
	문 영 희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005. 3. 31. ~ 2006. 1. 31.
서울제5중재부	조 인 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5. 3. 31. ~
	장 윤 환	전 한겨레신문 이사	2006. 2. 17. ~
	유 효 봉	변호사	2005. 9. 2. ~
	임 연 택	전 KBS광주방송총국장	2002. 9. 2. ~
	이 기 중	전 전자신문 상무이사	2005. 9. 2. ~
	주 동 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2000. 9. 1. ~ 2006. 1. 18.
서울제6중재부	박 정 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5. 9. 2. ~
	최 충 응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부교수	2005. 9. 2. ~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서울제6중재부	김 동 호	전 중앙일보 공익사업이사보	2005. 9. 2. ~
	한 부 환	변호사	2005. 9. 2. ~
	조 수 정	변호사	2005. 9. 2. ~
부 산 중 재 부	홍 광 식	부산지법 부장판사	2006. 9. 1. ~
	정 영 현	동의대 신방과 겸임교수	2005. 3. 31. ~
	유 숙 명	부산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2006. 9. 1. ~
	김 민 남	동아대 언론홍보대학원장	2005. 3. 31. ~
	유 상 순	변호사	2006. 9. 1. ~
	신 우 철	부산지법 부장판사	2003. 9. 1. ~ 2006. 8. 31.
	주 대 경	변호사	2003. 9. 1. ~ 2006. 8. 31.
	강 은 교	동아대 문예창작과 교수	2003. 9. 1. ~ 2006. 8. 31.
대 구 중 재 부	김 세 진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6. 2. 28. ~
	여 원 연	전 영남일보 논설위원	2005. 3. 31. ~
	박 정 순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5. 10. 20. ~
	박 충 선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장	2003. 9. 1. ~
	김 중 수	변호사	2003. 9. 1. ~
	김 창 종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3. 10. 14. ~ 2006. 2. 20.
광 주 중 재 부	장 병 우	광주지법 부장판사	2005. 3. 31. ~
	이 훈	전 무등일보 주필	2006. 9. 1. ~
	이 수 애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5. 3. 31. ~
	김 성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	2005. 3. 31. ~
	안 재 극	변호사	2006. 9. 1. ~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광 주 중 재 부	곽 준 흠	변호사	2000. 9. 1. ~ 2006. 8. 31.
대 전 중 재 부	윤 병 구	대전지법 부장판사	2006. 3. 13. ~
	김 강 덕	전 국도일보 대표이사	2005. 3. 31. ~
	송 인 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2006. 8. 14. ~
	이 용 성	한서대 신방과 교수	2005. 3. 31. ~
	이 규 호	변호사	2006. 9. 1. ~
	한 상 곤	대전지법 부장판사	2003. 3. 10. ~ 2006. 2. 20.
	전 병 무	변호사	2003. 9. 1. ~ 2006. 8. 31.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2002. 12. 30. ~ 2006. 7. 14.
경 기 중 재 부	윤 우 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6. 3. 13. ~
	박 석 태	경인일보 논설위원	2006. 11. 6. ~
	정 홍 화	변호사	2006. 9. 1. ~
	김 정 현	안양대 신방과 교수	2005. 3. 31. ~
	석 희 태	경기대 법학과 교수	2005. 3. 31. ~
	한 병 의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4. 3. 17. ~ 2006. 2. 20.
	김 건 영	전 경인일보 대표이사	2000. 9. 1. ~ 2006. 8. 31.
	조 정 근	변호사	2003. 9. 1. ~ 2006. 8. 31.
	우 제 찬	경기언론인클럽 회장	2006. 9. 1. ~ 2006. 10. 9.
강 원 중 재 부	이 원 형	춘천지법 부장판사	2006. 3. 13. ~
	유 영 식	강원일보 편집위원	2006. 7. 26. ~
	박 형 일	변호사	2006. 9. 1. ~
	유 현 옥	강원도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2005. 3. 31. ~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강 원 중 재 부	정 연 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3. 9. 1. ~
	홍 승 철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2005. 3. 31. ~ 2006. 2. 20.
	김 종 식	변호사	2000. 9. 1. ~ 2006. 8. 31.
	이 관 열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3. 4. 30. ~ 2006. 6. 26.
충 북 중 재 부	어 수 용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06. 3. 13. ~
	박 종 호	청주대 사회과학대 명예학장	2005. 3. 31. ~
	김 태 영	변호사	2006. 9. 1. ~
	허 석 열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2005. 3. 31. ~
	박 대 영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05. 3. 31. ~ 2006. 2. 20.
전 북 중 재 부	유 길 종	전주지법 부장판사	2006. 3. 13. ~
	하 명 희	전북언론문화연구원장	2005. 3. 31. ~
	심 병 연	변호사	2006. 9. 1. ~
	권 혁 남	전북대 신방과 교수	2003. 9. 1. ~
	김 은 미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2006. 9. 1. ~
	류 연 만	전주지법 부장판사	2005. 3. 31. ~ 2006. 2. 20.
	신 환 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2001. 1. 26. ~ 2006. 8. 31.
	김 영 복	변호사	2003. 9. 1. ~ 2006. 8. 31.
경 남 중 재 부	황 용 경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2005. 3. 31. ~
	김 창 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2003. 9. 1. ~
	김 남 석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2006. 9. 1. ~
	백 경 석	변호사	2006. 12. 27. ~
	김 인 숙	창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06. 6. 9. ~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경 남 중 재 부	임 경 숙	전 대한YWCA 동부지역 위원장	2000. 9. 1. ~ 2006. 5. 12.
	김 영 주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2003. 9. 1. ~ 2006. 8. 31.
	이 재 철	변호사	2003. 9. 1. ~ 2006. 8. 31.
	이 원 희	변호사	2006. 9. 1. ~ 2006. 11. 30.
제 주 중 재 부	고 충 정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06. 3. 13. ~
	고 창 실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2005. 3. 31. ~
	서 송 목	전 연합뉴스 제주지사장	2003. 9. 1. ~
	김 종 배	전 CBS 제주방송보도제작국장	2005. 3. 31. ~
	이 연 봉	변호사	2006. 9. 1. ~
	조 한 창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05. 3. 31. ~ 2006. 2. 20.
	현 순 도	변호사	2000. 9. 1. ~ 2006. 8. 31.

언론조정신청사례 색인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면
(ㄱ)						
○○군산립조합	아시아일보	2006서울조정402	반론	합의		732
○○원외 2인	경북일보	2006대구조정8	정정·반론	취하		380
강남대학교	교수신문	2006서울조정342	정정·반론	조정불성립결정		640
○○(주)	울산MBC-TV	2006부산조정1	정정	취하		235
강○○	경향신문	2006서울조정506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901
강○○	서울신문	2006서울조정507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902
강○○	강릉MBC-TV	2006강원조정6	손배	조정결정		735
강○○	MBC-TV	2006서울조정169	정정·반론·손배	조정불성립결정		393
강○○	KBS-1TV	2006서울조정467	정정	취하		837
강○○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42	정정	합의		164
강○○	오마이뉴스	2006서울조정372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683
건설교통부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37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156
건설교통부	경향신문	2006서울조정172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397
건설교통부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339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635
건설교통부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340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637
건설교통부	SBS-TV	2006서울조정384	정정	합의		704
건설교통부	경향신문	2006서울조정421	반론	조정결정		769
건축사무소○○외 1인	광역일보	2006부산조정16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634
경인방송	기자협회보	2006서울조정414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757
경인방송	시사저널	2006서울조정474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50
고려인돕기운동본부	KBS-2TV	2006서울조정502	정정·반론	조정불성립결정		894
고○○	용인신문	2006경기조정37	정정	취하		477
○○종합전기(주)	KBS-1TV	2006서울조정355	정정·손배	합의		664
고조흥	포천신문	2006경기조정58	정정	취하		692
고진화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04	정정	합의		434
고창군	고창신문	2006전북조정22	정정	합의		517
○○○피해구조연맹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1	정정	각하		108
○○○피해구조연맹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	정정	각하		109
○○○피해구조연맹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3	정정	각하		109
○○○피해구조연맹	한겨레	2006서울조정4	정정	각하		110
○○○피해구조연맹	한국일보	2006서울조정5	정정	각하		110
○○○피해구조연맹	한국경제	2006서울조정6	정정	각하		111
○○○피해구조연맹	MBC-TV	2006서울조정7	정정	각하		111
○○○피해구조연맹	SBS-TV	2006서울조정8	정정	각하		111
○○○피해구조연맹	연합뉴스	2006서울조정9	정정	각하		112
○○○피해구조연맹	YTN	2006서울조정10	정정	각하		112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공정거래위원회	폴리뉴스	2006서울조정157	정정	합의		376
과학기술부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70	정정	합의		219
광대원외 1인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145	정정	합의		357
광주자동차부품조합협의회등조합	광주MBC-TV	2006광주조정4	정정	취하		168
교육인적자원부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29	정정	합의		148
교육인적자원부	SBS-TV	2006서울조정111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301
교육인적자원부	경향신문	2006서울조정148	정정	합의		360
교육인적자원부	한겨레	2006서울조정184	반론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취하	415
교육인적자원부	매일경제	2006서울조정210	정정·반론	취하		440
교육인적자원부	국민일보	2006서울조정229	반론	조정결정		471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경제	2006서울조정232	반론	취하		481
교육인적자원부	문화일보	2006서울조정387	반론	취하		709
교육인적자원부	세계일보	2006서울조정388	반론	합의		710
구○○외 2인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59	손배	합의		515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주간동아	2006서울조정212	정정	합의		444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451	반론	취하		818
국민대 38대총학생회	국민대신문	2006서울조정88	정정	합의 간주		246
국방부	문화일보	2006서울조정79	정정	합의		231
국방부	한겨레	2006서울조정102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289
국방부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104	정정	합의		290
국방부	문화일보	2006서울조정223	정정	취하		457
국방부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247	정정	취하		498
국방부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288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556
국방부	매일경제	2006서울조정317	정정	합의		593
국방부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364	반론	취하		672
국방부	문화일보	2006서울조정365	반론	취하		673
국방부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366	반론	취하		674
국방부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367	반론	취하		675
국방부	SBS-TV	2006서울조정368	반론	취하		675
국방부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432	정정	취하		786
국방부	주간동아	2006서울조정433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787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348	정정	합의		652
국 ○ ○	강원도민일보	2006강원조정1	반론·손배	반론(합의), 손배(취하)		127
국 ○ ○	강원일보	2006강원조정2	반론·손배	반론(합의), 손배(취하)		128
국 ○ ○	춘천KBS-TV	2006강원조정3	반론·손배	취하		129
국 세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14	정정	합의		447
국 세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222	정정	합의		456
국 세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227	정정	합의		467
국 세	국민일보	2006서울조정237	정정	취하		487
국 세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38	정정	합의		488
국 세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239	정정	합의		489
국 세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52	정정	합의		505
국 세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80	반론	합의		543
국 정	문화일보	2006서울조정354	정정	취하		663
국 정	경기일보	2006경기조정6	정정	합의		178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국 정 홍 보 처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181	정 정	합 의		407
○ ○ ○ ○ 학 원	새 전 북 신 문	2006전북조정27	정 정	합 의		711
○ ○ ○ ○ 학 원	전 북 일 보	2006전북조정28	정 정	합 의		712
○ ○ ○ ○ 학 원	전 라 일 보	2006전북조정29	정 정	취 하		748
○ ○ ○ ○ 학 원	전 민 일 보	2006전북조정30	정 정	취 하		749
○ ○ ○ ○ 학 원	전 북도 민 일 보	2006전북조정31	정 정 · 반 론	합 의		767
○ ○ ○ ○ 학 원	전 북 중 앙 신 문	2006전북조정32	정 정 · 반 론	합 의		769
○ ○ 레 저 산 업 (주)	전 주 KBS-TV	2006전북조정2	반 론	합 의		125
군 인 공 제 회	오 마 이 뉴 스	2006서울조정133	정 정 · 손 배	정정(합의)손배(취하)		330
군 인 공 제 회	주 간 동 아	2006서울조정242	정 정 ·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491
권 ○ ○	시 사 저 널	2006서울조정325	손 배	취 하		602
○ ○ ○ ○ 보 일 러	매 일 경 제	2006서울조정90	정 정 · 손 배	취 하		255
○○○코 리 아 레 저 (주)	세 계 일 보	2006서울조정60	정 정	합 의		197
○○○코 리 아 레 저 (주)	연 합 뉴 스	2006서울조정417	반 론	취 하		762
○ ○ (주)	전 민 일 보	2006전북조정3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139
○○○○○선 교 회	M B C - T V	2006서울조정334	정 정 ·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625
○○○○○실 천 운 동	한 겨 레	2006서울조정378	정 정	기 각		690
○ ○ 건 설 (주)	대 한 일 보	2006광주조정3	정 정	취 하		132
기 획 예 산 처	매 일 경 제	2006서울조정155	정 정	합 의		371
기 획 예 산 처	한 국 경 제	2006서울조정156	정 정 · 반 론	합 의		372
기 획 예 산 처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255	정 정	합 의		510
기 획 예 산 처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391	정 정 · 반 론	합 의		717
기 획 예 산 처	매 일 경 제	2006서울조정408	반 론	합 의		746
○ ○ 개 발 (주)	안 동 MBC-TV	2006대구조정3	정정·반론·손배	조정불성립결정		194
○ ○ 개 발 (주)	영 주 시 민 신 문	2006대구조정4	정정·반론·손배	조정불성립결정		195
김 ○ ○	이 코 노 미 스트	2006서울조정416	손 배	합 의		759
김 ○ ○	전 주 MBC-TV	2006전북조정23	정 정	취 하		533
김 교 홍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219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452
김 ○ ○	진 주 신 문	2006경남조정15	정 정 · 손 배	정정(합의)손배(취하)		919
김 ○ ○	합 안 신 문	2006경남조정14	정 정 · 손 배	정정(합의)손배(취하)		633
김 ○ ○	나 주 투 데 이	2006광주조정2	정 정	합 의		131
김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234	손 배	합 의		484
김 명 주	경 남 도 민 일 보	2006경남조정8	정 정	합 의		480
김 명 주	경 남 도 민 일 보	2006경남조정9	정 정 · 손 배	정정(합의)손배(취하)		482
김 ○ ○	K B S - 2 T V	2006서울조정410	손 배	조 정 결 정		751
김 ○ ○	디 시 뉴 스	2006서울조정411	손 배	합 의		752
김 ○ ○	K B S - 2 T V	2006서울조정526	손 배	취 하		930
김 ○ ○	중 부 일 보	2006경기조정7	정 정 · 손 배	취 하		200
김 ○ ○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519	정 정	취 하		923
김 ○ ○ 외 1인	K B S - 2 T V	2006서울조정518	손 배	합 의		922
김 ○ ○	전 북 대 중 일 보	2006전북조정33	정 정	합 의		872
김 ○ ○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94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266
김 ○ ○	S B S - T V	2006서울조정179	정 정 · 손 배	정정(합의)손배(취하)		405
김 ○ ○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162	정 정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383
김 ○ ○ 외 1인	T U 미 디 어	2006서울조정524	손 배	취 하		928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면
김	○	○	인천일보	2006경기조정22	정 정	합 의		270
김	○	○	한겨레	2006서울조정439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00
김	○	○	KBS-1TV	2006서울조정91	정 정 · 반론	정정(취하),반론(합의)		257
김	○	○	뉴시스	2006서울조정92	정 정 · 반론	취 하		258
김	○	○	노컷뉴스	2006서울조정93	정 정 · 반론	취 하		259
김	○	○	매일신문	2006대구조정5	정 정 · 반론	취 하		265
김	○	○	영남일보	2006대구조정6	정 정 · 반론	정정(취하),반론(합의)		265
김	○	○	TBC-TV	2006대구조정7	정 정 · 반론	정정(취하),반론(합의)		266
김	○	○	YTN	2006서울조정97	정 정 · 반론	취 하		280
김	○	○	KBS-2TV	2006서울조정44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167
김	○	○	경기신문	2006경기조정39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34
김	○	○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63	정 정 · 손배	기 각		520
김	○	○	신동아	2006서울조정445	반론 · 손배	취 하		806
김	○	○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122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319
김	○	○	충주MBC-TV	2006충북조정5	손 배	합 의		497
김	○	○	마이데일리	2006서울조정246	정 정 정	합 의		497
김	○	○	문화일보	2006서울조정257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13
김	○	○	남해시대	2006경남조정5	정 정	합 의		458
김	○	○	스포츠서울	2006서울조정207	손 배	합 의		437
김	○	○	KBS-1TV	2006서울조정160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381
김	○	○	제외동포신문	2006서울조정220	정 정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인용	453
김 ○ ○	외	1인	TJB-TV	2006대전조정11	정 정 · 손배	합 의		505
김	○	○	노컷뉴스	2006서울조정347	정 정 · 손배	취 하		650
김	○	○	경기일보	2006경기조정47	정 정 · 손배	취 하		665
김	○	○	경기신문	2006경기조정48	정 정 · 손배	취 하		677
김	○	○	경기매일	2006경기조정49	정 정 · 손배	취 하		677
김	○	○	경기도민일보	2006경기조정50	정 정 · 손배	취 하		678
김	○	○	경인일보	2006경기조정51	정 정 · 손배	취 하		678
김	○	○	기호일보	2006경기조정52	정 정 · 손배	취 하		679
김	○	○	수도권일보	2006경기조정53	정 정 · 손배	취 하		679
김	○	○	우리일보	2006경기조정54	정 정 · 손배	취 하		680
김	○	○	인천일보	2006경기조정55	정 정 · 손배	취 하		680
김	○	○	중부일보	2006경기조정56	정 정 · 손배	취 하		681
김	○	○	평화일보	2006경기조정57	정 정 · 손배	취 하		681
김	○	○	아시아일보	2006서울조정371	정 정 · 손배	취 하		683
김	○	○	SBS-TV	2006서울조정320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97
김	○	○	서남신문	2006광주조정9	정 정 · 손배	취 하		301
김	○	○	MBC-TV	2006서울조정191	정 정 · 손배	취 하		423
김	○	○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373	손 배	취 하		684
김	○	○	KBS-1TV	2006서울조정180	손 배	취 하		406
김	○	○	한겨레 21	2006서울조정493	정정 · 반론 · 손배	정정 · 반론(합의),손배(취하)		880
김	○	○	TJB-TV	2006대전조정6	손 배	합 의		447
김	○	○	SBS-TV	2006서울조정386	손 배	취 하		707
김 ○ ○	외	5인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520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924
김 ○ ○	외	5인	문화일보	2006서울조정521	정 정	합 의		925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김 ○ ○ 외 5인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522	정 정	합 의		926
김 ○ ○ 외 5인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523	정 정	합 의		926
김 ○ ○	경 기 매 일	2006경기조정19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251
김 ○ ○	경 기 매 일	2006경기조정20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253
김 ○ ○	인 천 일 보	2006경기조정21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254
김 ○ ○	여 주 신 문	2006경기조정9	정 정	취 하		205
(L)						
나 주 뉴 스	광주MBC-TV	2006광주조정31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862
나주배농업협동조합	나 주 투 데 이	2006광주조정1	정 정	취 하		122
○○시상가변영회	전 남 타 임 스	2006광주조정22	정 정 · 손배	취 하		468
남 경 필	코 레 아 포 커 스	2006서울조정77	정 정	취 하		225
남 궁 ○ ○	한 국 경 제	2006서울조정103	손 배	합 의		290
○○○축산업협동조합	경 기 신 문	2006경기조정40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38
남 ○ ○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87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245
남 해 군	M B C - T V	2006서울조정509	반 론	합 의		904
○ ○ 대 학 교	진주KBS-TV	2006경남조정4	정 정	합 의		349
녹색어머니회인천시지부	주간한국기자연대	2006경기조정41	정정·추후·손배	정정(합의),추후·손배(취하)		554
농 립 부	내 일 신 문	2006서울조정52	반 론	합 의		182
농 립 부	내 일 신 문	2006서울조정95	반 론	취 하		267
농 립 부	농 민 신 문	2006서울조정151	반 론	취 하		367
농 립 부	프 레 시 안	2006서울조정178	반 론	합 의		404
농 립 부	세 계 일 보	2006서울조정218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451
농 립 부	한 국 일 보	2006서울조정231	반 론	합 의		476
농 립 부	오 마 이 뉴 스	2006서울조정256	반 론	합 의		511
농 립 부	한 겨 레	2006서울조정260	반 론	취 하		516
농 립 부	국 민 일 보	2006서울조정395	반 론	취 하		723
농 립 부	농 민 신 문	2006서울조정407	반 론	합 의		743
농 립 부	아 시 아 경 제	2006서울조정447	반 론	합 의		810
(C)						
○ ○ 플 라 자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381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696
단 월 드	국 민 일 보	2006서울조정249	정 정	취 하		500
대 구 교 도 소	레 이 디 경 향	2006서울조정67	정 정	합 의		209
대 구 ○ ○ 교 회	목 사 장 로 신 문	2006서울조정435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792
대 구 지 방 국 세 청	일 요 서 울	2006서울조정39	정 정	조 정 결 정		159
○○네트웍스(주)	새 전 북 신 문	2006전북조정5	정 정 · 반론	취 하		19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487	정 정 · 반론	합 의		871
대 전 서 부 경 찰 서	뉴 시 스	2006서울조정142	정 정	합 의		352
대 통 령 노 무 현	국 민 일 보	2006서울조정72	반 론	취 하		221
대 통 령 노 무 현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73	반 론	취 하		221
대 통 령 노 무 현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136	정 정	합 의		336
대 통 령 비 서 실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109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98
대 통 령 비 서 실	내 일 신 문	2006서울조정211	반 론	취 하		442
대 통 령 비 서 실	문 화 일 보	2006서울조정453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820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대 통 령 비 서 실 ○ ○ 노 인 회 대 한 미 용 외 과 학 회 대 한 미 용 외 과 학 회 대 한 미 용 외 과 학 회 대 한 미 용 외 과 학 회 대 한 미 용 외 과 학 회 대 한 미 용 외 과 학 회 대 한 미 용 외 과 학 회 대 한 미 용 외 과 학 회 ○○○○ ○○○방생법회 대한의사협회 외 1인 대한주택공사경기본부 대 한 체 육 회 대 한 한 의 사 협 회 대 한 항 공 ○ ○ 해 운 (주) 도 ○ ○ ○○건설 외 1인	조 선 일 보 복 지 연 합 신 문 M B C - T V 국 민 일 보 동 아 일 보 쿠 키 뉴 스 Y T N M B C - T V M B C - T V K B S - 1 T V 창원KBS-1TV 경 기 신 문 경 향 신 문 보 건 신 문 S H A P E 중 도 일 보 세 계 일 보 중 도 일 보	2006서울조정454 2006서울조정43 2006서울조정135 2006서울조정441 2006서울조정442 2006서울조정443 2006서울조정471 2006서울조정473 2006서울조정472 2006서울조정69 2006서울조정41 2006경기조정38 2006서울조정177 2006서울조정250 2006서울조정281 2006대전조정14 2006서울조정55 2006대전조정12	정 정 정 정 · 반론 · 손배 정 정 · 반론 정 정 · 반론 정 정 · 반론 정 정 정 정 · 손배 정 정 · 손배 정 정 · 손배 정 정 정 정 정 정 · 손배 정 정 정 정 · 손배 정 정 · 손배 정 정 · 손배 정 정 정 정 정 정 · 손배 정 정 · 손배 정 정 정 정 · 손배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박	○	○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356	반 론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666
박	○	○	문 화 일 보	2006서울조정357	반 론	조 정 결 정		668
박	○	○	서 울 신 문	2006서울조정358	반 론	합 의		668
박	○	○	세 계 일 보	2006서울조정359	반 론	합 의		669
박	○	○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360	반 론	합 의		669
박	○	○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361	반 론	합 의		670
박	○	○	뉴 시 스	2006서울조정362	반 론	합 의		671
박	○	○	연 합 뉴 스	2006서울조정363	반 론	취 하		672
박	○	○	기 독 교 보	2006서울조정112	정 정 · 반론	조 정 결 정		302
박	○	○	기 독 교 보	2006서울조정171	정 정	조 정 결 정		396
박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158	정 정 · 손배	조 정 결 정		377
박 ○ ○ 외	1인		한 겨 레	2006서울조정393	정 정 · 손배	합 의		719
박	○	○	한 국 일 보	2006서울조정113	정 정	기 각		304
박	○	○	S B S - T V	2006서울조정397	정 정 · 손배	취 하		725
박	○	○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516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917
박	성 범	범	문 화 일 보	2006서울조정455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823
박	성 범	범	세 계 일 보	2006서울조정466	정 정	취 하		837
박	성 범 외	1인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192	정 정	취 하		425
박	성 범 외	1인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193	정 정	취 하		426
박	성 범 외	1인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194	정 정	취 하		426
박	성 범 외	1인	한 겨 레	2006서울조정195	정 정	취 하		427
박	성 범 외	1인	한 국 일 보	2006서울조정196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427
박	성 범 외	1인	경 향 신 문	2006서울조정197	정 정	취 하		427
박	성 범 외	1인	국 민 일 보	2006서울조정198	정 정	취 하		428
박	성 범 외	1인	서 울 신 문	2006서울조정199	정 정	취 하		428
박	성 범 외	1인	세 계 일 보	2006서울조정200	정 정	합 의		429
박	성 범 외	1인	M B C - T V	2006서울조정206	정 정	취 하		436
박	성 범 외	1인	K B S - T V	2006서울조정213	정 정	취 하		446
박	○	○	종 로 신 문	2006서울조정28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정 정 · 반론(합의), 손배(취하)	145
박	○	○	용인인터넷신문	2006경기조정62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720
박	○	○	K B S - 2 T V	2006서울조정34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153
박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233	손 배	조 정 결 정		483
박	○	○	P D 저 널	2006서울조정483	손 배	합 의		868
박	○	○	뉴 스 리 더	2006경기조정4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148
박	○	○	t v N	2006서울조정418	손 배	합 의		763
박	○	○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481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861
박	○	○	한 겨 레	2006서울조정431	정 정 · 반론 · 손배	정 정 · 반론(합의), 손배(취하)		782
박	○	○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300	반 론	취 하		576
박	○	○	한 겨 레	2006서울조정420	반 론	합 의		766
박	○	○	부 산 일 보	2006부산조정19	반 론	합 의		767
박	○	○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278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42
박	○	○	경 기 일 보	2006경기조정14	정 정	취 하		238
박	○	○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343	정 정	합 의		644
박	○	○	시 사 저 널	2006서울조정105	정 정 · 손배	정 정(합의), 손배(취하)		291
박	형 준		부 산KBS-1TV	2006부산조정18	정 정	취 하		651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박 ○ ○ 외 1인	M B C - T V	2006서울조정61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신청청인 이외신청, 소 계류	198
○ ○ 건 설 (주)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377	손 배	조 정 불 성 립 결 정		690
방 위 사 업 청	국 제 신 문	2006부산조정22	정 정	취 하		790
방 위 사 업 청	한 국 일 보	2006서울조정46	정 정	합 의		173
방 위 사 업 청	한 국 일 보	2006서울조정164	반 론	합 의		385
배 ○ ○	시 사 저 널	2006서울조정335	정 정	합 의		628
배 ○ ○	교 통 환 경 신 문	2006서울조정99	정 정 · 손배	조 정 결 정		285
배 ○ ○	무 등 일 보	2006광주조정25	정 정 · 반론	정정(취하),반론(합의)		692
배 ○ ○	무 등 일 보	2006광주조정27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745
배 ○ ○	K N N	2006부산조정8	손 배	합 의		530
배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271	손 배	합 의		532
배 ○ ○	S B S - T V	2006서울조정272	손 배	합 의		533
백 ○ ○	K B S - T V	2006서울조정515	손 배	합 의		916
백 ○ ○	시 사 저 널	2006서울조정476	정 정 · 손배	조 정 불 성 립 결 정		853
보 건 복 지 부	헤 럴 드 경 제	2006서울조정26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42
보 건 복 지 부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45	정 정	합 의		172
보 건 복 지 부	한 겨 레	2006서울조정100	정 정	합 의		286
보 건 복 지 부	머 니 투 데 이	2006서울조정450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816
004구역바른채개발실천연합	주 거 환 경 신 문	2006서울조정482	반 론	합 의		866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부 산 일 보	2006부산조정20	정 정 · 손배	취 하		778
부 천 시	부 천 차 치 신 문	2006경기조정45	정 정	합 의		661
부 천 시	부 천 타 임 스	2006경기조정46	정 정	합 의		663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사)	아 트 인 결 처	2006서울조정48	반 론	합 의		175
(나)						
사회복지법인 ○ ○ 원	울 산 노 동 뉴 스	2006부산조정21	정 정 · 손배	조 정 불 성 립 결 정		785
산 업 자 원 부	서 울 경 제	2006서울조정185	정 정	취 하		418
산 업 자 원 부	국 민 일 보	2006서울조정230	정 정	취 하		472
산 업 자 원 부	프 레 시 안	2006서울조정269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529
산 업 자 원 부	세 계 일 보	2006서울조정279	정 정	취 하		543
○ ○ ○ (주)	인 천 일 보	2006경기조정64	정 정 · 손배	조 정 불 성 립 결 정		739
○○○○○가평군지회	경 인 매 일 신 문	2006경기조정66	정 정	합 의		783
서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140	정 정 · 손배	조 정 불 성 립 결 정		346
서 ○ ○	경 인 일 보	2006경기조정29	정 정 · 손배	정정(조정결정),손배(취하)		350
서 ○ ○	인 천 일 보	2006경기조정30	정 정 · 손배	정정(조정결정),손배(취하)		351
○ ○ 대 학 교 병 원	한 겨 레	2006서울조정47	정정·반론·손배	정정·손배(취하),반론(합의)		174
서 울 ○ ○ ○ 대 학 교	데일리서프라이즈	2006서울조정123	정 정 · 반론	합 의		320
서 울 ○ ○ ○ 대 학 교	노 컷 뉴 스	2006서울조정146	반 론	합 의		358
서 울 ○ ○ ○ 대 학 교	데일리서프라이즈	2006서울조정108	정 정 · 반론	취 하		296
서 울 ○ ○ ○ 대 학 교	동국대학원신문	2006서울조정382	정 정 · 반론	취 하		696
서 울 ○ ○ ○ 대 학 교	매 일 경 제	2006서울조정423	반 론	취 하		773
서 울 ○ ○ ○ 대 학 교	한 국 경 제	2006서울조정424	반 론	취 하		774
서 울 ○ ○ ○ 대 학 교	전 자 신 문	2006서울조정425	반 론	취 하		774
서 울 시	서 울 신 문	2006서울조정75	정 정	합 의		223
서 울 시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76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225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서울시	한국일보	2006서울조정96	정정	취하		269
서울시	한겨레	2006서울조정110	정정	조정결정		298
서울시	경향신문	2006서울조정118	정정	합의		314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문화일보	2006서울조정31	정정	취하		150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신문	2006서울조정32	정정	조정결정		151
서울장로회신학교동문회	목사장로신문	2006서울조정379	정정	취하		694
서울지방국세청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428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777
서울지방노동청	한겨레	2006서울조정344	정정	취하		64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KBS-1TV	2006서울조정464	정정·손배	취하		834
서울○○○	목포투데이	2006광주조정32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76
서울○○○	경기일보	2006경기조정5	정정·반론	취하		162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상일보	2006부산조정5	정정	취하		338
서울○○○외 11인	전북일보	2006전북조정17	반론	합의		391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신문	2006서울조정276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40
서울○○○	PBC-R	2006서울조정503	추후·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97
성공회대학교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496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85
성공회대학교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497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86
성공회대학교	헤럴드경제	2006서울조정499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89
서울○○○	영남일보	2006대구조정14	정정·손배	합의		884
소방방재청	문화일보	2006서울조정297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566
소방방재청	국민일보	2006서울조정298	반론	합의		567
손○○○외 14인	일요서울	2006서울조정38	정정·손배	조정결정		157
손○○○	부산KBS-1TV	2006부산조정23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12
손○○○	KNN	2006부산조정24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12
손○○○	연합뉴스	2006서울조정457	정정·손배	기각		825
손○○○	노컷뉴스	2006서울조정458	정정·손배	기각		826
손○○○	이타임즈	2006서울조정459	정정·손배	기각		826
손○○○	영남일보	2006대구조정13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49
손○○○외 1인	한국일보	2006서울조정126	반론	취하		323
손○○○외 1인	머니투데이	2006서울조정127	반론	취하		324
손○○○외 1인	KBS-1TV	2006서울조정128	반론	합의		324
손○○○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328	정정	합의		611
송○○○	천안일보	2006대전조정15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59
송○○○	수도권일보	2006경기조정34	정정	취하		442
수도군단	경기신문	2006경기조정43	반론	합의		612
수원시	중부일보	2006경기조정60	정정	합의		714
수원시	노컷뉴스	2006서울조정508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903
○○○경찰서	전북도민일보	2006전북조정26	정정	취하		703
○○○○○○○(주)	강릉KBS-1TV	2006강원조정5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733
시민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간경남	2006경남조정11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71
○○○병원	광주일보	2006광주조정18	정정·반론·손배	취하		354
신○○○외 1인	순례자	2006서울조정485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70
신문발전위원회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282	정정	합의		546
신문발전위원회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283	정정	합의		549
신문발전위원회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84	정정	합의		550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면
신문발전위원회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85	정정	합의		551
신문발전위원회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286	정정	합의		552
신 ○ ○	시사저널	2006서울조정326	손배	취하		604
신문상	데일리엔케이	2006서울조정116	정정·반론	합의		311
신용보증기금보증센터	연천저널	2006경기조정24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276
신 ○ ○	매일경제	2006서울조정209	손배	합의		439
심 ○ ○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505	정정	취하		900
○○○커뮤니케이션(주)	매일경제	2006서울조정438	정정	취하		795
(o)						
○○○○○○○○○○(주)	경향신문	2006서울조정434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791
○ ○ ○ 배 이	매일경제	2006서울조정375	정정·손배	취하		686
○○○○스포츠인수위원회	경인일보	2006경기조정59	정정	합의		705
○ ○ ○ (주)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68	정정·손배	취하		211
○○테크놀로지	컴퓨터타임즈	2006서울조정273	반론	취하		535
아○○○니○○○ 외 3인	KBS-1TV	2006서울조정215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448
아○○○니○○○ 외 3인	MBC-TV	2006서울조정216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450
아○○○니○○○ 외 3인	Y T N	2006서울조정217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450
안 ○ ○	중부일보	2006경기조정65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745
안 ○ ○	내일신문	2006서울조정422	정정·손배	합의		772
안 산 시	투데이뉴스	2006경기조정1	정정·손배	조정결정		113
안 상 수	인천뉴스	2006경기조정31	정정	취하		363
안 상 수	현대일보	2006경기조정32	정정	취하		363
안 상 수	노컷뉴스	2006서울조정150	정정	취하		366
안 ○ ○	레몬트리	2006서울조정486	손배	합의		870
안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	안양광역신문	2006경기조정42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609
양 ○ ○	리닝라이프	2006서울조정277	손배	합의		542
양 ○ ○	한국건설신문	2006서울조정168	정정	합의		390
양주경찰서	경기북부시민신문	2006경기조정44	정정	합의		616
○ ○ ○ 사	서울경제	2006서울조정182	정정	합의		411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하나로신문	2006경기조정35	정정	취하		459
○○축산업협동조합	중부일보	2006경기조정67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33
○ ○ 나 라	부산일보	2006부산조정10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72
○ ○ 나 라	국제신문	2006부산조정11	손배	취하		573
○ ○ 나 라	K N N	2006부산조정12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74
○ ○ 나 라	부산MBC-TV	2006부산조정13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74
○ ○ 나 라	부산KBS-1TV	2006부산조정14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74
○ ○ 나 라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301	손배	취하		578
○ ○ 나 라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302	손배	취하		578
○ ○ 나 라	Y T N	2006서울조정303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79
○ ○ 나 라	연합뉴스	2006서울조정304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79
○ ○ 나 라	마산MBC-TV	2006경남조정12	손배→추후	합의		591
○ ○ 나 라	진주MBC-TV	2006경남조정13	손배→추후	합의		591
○ ○ 의 료 재 단	MBC-TV	2006서울조정504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99
○ ○ ○	KBS-1TV	2006서울조정394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723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여영오	○○○건설	거제타임즈	2006경남조정1	정정	합의	168
성가	○○○건축	한겨레	2006서울조정86	정정	합의	243
영상	○○○홍보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332	정정	합의	619
○○○	○○○	기자협회보	2006서울조정415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758
○○○	○○○	시사저널	2006서울조정475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52
영천	○○○	신라일보	2006대구조정12	정정·손배	합의	796
오○	○○○	국제태권도신문	2006서울조정245	정정	합의	495
오○	○○○	부산일보	2006부산조정26	정정·손배	취하	864
오○	○○○	부산KBS-1TV	2006부산조정27	정정·손배	취하	865
오○	○○○	부산MBC-TV	2006부산조정28	정정·손배	취하	865
오○	○○○	KNN	2006부산조정29	반론	취하	865
오○	○○○	시민일보	2006서울조정78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227
오○	○○○	투데이뉴스	2006경기조정12	정정	합의	228
오○	○○○	KBS-2TV	2006서울조정208	손배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438
○○○	○○○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383	정정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697
○○○	○○○	경향신문	2006서울조정16	반론	취하	133
○○○	○○○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17	반론	취하	133
○○○	○○○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18	반론	취하	134
○○○	○○○	한겨레	2006서울조정19	반론	취하	134
○○○	○○○	한국일보	2006서울조정20	반론	취하	135
○○○	○○○	매일경제	2006서울조정21	반론	취하	135
○○○	○○○	KBS-TV	2006서울조정22	반론	취하	135
○○○	○○○	MBC-TV	2006서울조정23	반론	취하	136
○○○	○○○	YT	2006서울조정24	반론	취하	136
○○○	○○○	농업협동조합	2006광주조정24	반론	취하	624
외교	○○○	통상부	2006서울조정50	정정	취하	180
외교	○○○	통상부	2006서울조정98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280
외교	○○○	통상부	2006서울조정125	정정	취하	322
외교	○○○	통상부	2006서울조정275	정정·반론	취하	537
외교	○○○	통상부	2006서울조정333	반론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620
○○○	○○○	은행노동조합	2006서울조정460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26
○○○	○○○	YMCA	2006경기조정3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146
○○○	○○○	병원	2006서울조정338	정정	취하	631
○○○	○○○	의료재단	2006서울조정370	정정	취하	682
응천	○○○	발전협회	2006대전조정13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14
원○	○○○	경향신문	2006서울조정254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09
○○○	○○○	교통신문	2006서울조정243	정정	취하	492
유○	○○○	증평괴산저널	2006충북조정4	정정	합의	465
유○	○○○	중앙매일	2006대전조정18	정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699
유○	○○○	정읍신문	2006전북조정21	정정·손배	취하	460
유○○	○○○	외24인	2006경기조정2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121
육군	○○○	제1군사령부	2006강원조정8	정정	합의	789
윤○○	○○○	외5인	2006서울조정331	반론	기각	617
윤○	○○○	MBC-TV	2006서울조정465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36
윤○	○○○	전자신문	2006서울조정409	정정·손배	취하	750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호 남 매 일	2006광주조정10	반론·손배	조정불성립결정		305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전 광 일 보	2006광주조정11	반론·손배	조정불성립결정		306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광 주 매 일	2006광주조정12	반론·손배	취 하		307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남 도 일 보	2006광주조정13	반론·손배	취 하		307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전 남 매 일	2006광주조정14	반론·손배	취 하		308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호 남 일 보	2006광주조정15	반론·손배	취 하		308
○○과수화분영농조합법인	호 남 투 데 이	2006광주조정16	반론·손배	취 하		309
이 ○ ○	광주MBC-TV	2006광주조정19	정 정	합 의		364
이 ○ ○	S B S - T V	2006서울조정413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754
이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305	손 배	합 의		579
이 ○ ○ 외 2인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49	반론·손배	반론(조정불성립결정),손배(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소 취하	179
이 ○ ○	월 간 미 술	2006서울조정258	손 배	합 의		513
이 ○ ○	경 기 일 보	2006경기조정13	정 정	취 하		237
이 ○ ○	한국마케팅신문	2006서울조정183	정정·손배	취 하		412
이 ○ ○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30	정 정	조 정 결 정		149
이 ○ ○	일 요 신 문	2006서울조정173	손 배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398
이 ○ ○	여 성 중 앙	2006서울조정174	정 정·손배	합의(조정불성립결정),손배(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400
이 ○ ○ 외 1인	S B S - T V	2006서울조정321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598
이 ○ ○	시 사 저 널	2006서울조정224	정 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460
이 룰 자동차 환경 협 회	대 한 일 보	2006광주조정17	정 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348
이 ○ ○	한 빛 일 보	2006충북조정6	정 정·손배	취 하		750
이 ○ ○	매 일 신 문	2006대구조정9	정정·반론·손배	합 의		594
이 미 경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448	정 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13
이 ○ ○	완 도 신 문	2006광주조정21	정 정·손배	취 하		455
○ ○ ○ (주)	M B C - T V	2006서울조정412	반 론	조 정 불 성 립 결 정		753
이 ○ ○	경 인 일 보	2006경기조정18	정 정·손배	취 하		250
이 ○ ○	Q 채 널	2006서울조정470	손 배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845
이 ○ ○	전 국 매 일	2006경기조정17	정 정·손배	취 하		248
이 ○ ○	대 한 일 보	2006광주조정7	정 정·손배	취 하		249
이 ○ ○	전 광 일 보	2006광주조정8	정 정·손배	취 하		249
이 ○ ○	서 울 신 문	2006서울조정152	손 배	조 정 결 정		369
이 ○ ○	Y T N	2006서울조정153	손 배	조 정 결 정		370
이 ○ ○	노 컷 뉴 스	2006서울조정154	손 배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371
이 ○ ○	나 주 투 데 이	2006광주조정23	반론·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65
이 ○ ○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264	정 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22
이 ○ ○	부 산 일 보	2006부산조정6	반 론	취 하		416
이 ○ ○	국 제 신 문	2006부산조정7	반 론	합 의		417
이 ○ ○	모 터 트 렌 드	2006서울조정517	정 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921
이 ○ ○	인 천 일 보	2006경기조정15	정 정·반론	취 하		240
이 ○ ○	현 대 일 보	2006경기조정16	정 정·반론	정정(취하),반론(합의)		241
이 ○ ○	더데일리포커스	2006서울조정129	정 정·손배	정정(합의),손배(조정결정)		325
이 ○ ○	연 합 뉴 스	2006서울조정130	손 배	합 의		326
○○골프그룹코리아	일 간 스포츠	2006서울조정226	정 정·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464
이 ○ ○	K B S - 2 T V	2006서울조정35	정 정·손배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54
이 ○ ○	서 해 안 신 문	2006대전조정5	정 정	취 하		353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이 ○ ○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291	추 후 · 손 배	추후(합의),손배(취하)		560
이 ○ ○	한 국 일 보	2006서울조정292	추 후 · 손 배	취 하		561
이 ○ ○	S B S - T V	2006서울조정293	추 후 · 손 배	추후(합의),손배(취하)		562
이 ○ ○	Y T N	2006서울조정294	추 후 · 손 배	추후(합의),손배(취하)		563
이 ○ ○	YTN STAR	2006서울조정295	추 후 · 손 배	추후(합의),손배(취하)		563
이 ○ ○	디트NEWS24	2006대전조정3	정 정	합 의		160
이 ○ ○ 외 2인	전 북 일 보	2006전북조정18	정 정	취 하		413
이 ○ ○ 외 2인	전 라 일 보	2006전북조정19	정 정	취 하		414
이 ○ ○	전 민 일 보	2006전북조정9	정 정 · 손 배	정정(합의),손배(취하)		244
이 ○ ○	세 계 일 보	2006서울조정131	정 정	취 하		327
이 ○ ○	경 인 일 보	2006경기조정28	정 정	취 하		328
이 ○ ○	M B N	2006서울조정419	정 정 · 손 배	정정(조정결정),손배(조정불성립결정)		764
○○엔터테인먼트(주)	경 향 계 임 스	2006서울조정462	정 정 · 손 배	취 하		831
이 중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389	정 정	합 의		713
이 ○ ○	합 안 신 문	2006경남조정2	정 정	합 의		217
이 ○ ○	오 마 이 뉴 스	2006서울조정290	정 정	합 의		558
이 ○ ○	A M 7	2006서울조정36	정 정 · 손 배	합 의		155
이 ○ ○	대 전 일 보	2006대전조정7	추 후 · 손 배	취 하		473
이 ○ ○	연 기 신 문	2006대전조정8	추 후 · 손 배	추후(합의),손배(취하)		474
이 ○ ○	중 도 일 보	2006대전조정9	추 후 · 손 배	추후(합의),손배(취하)		474
이 ○ ○	충 청 투 데 이	2006대전조정10	추 후 · 손 배	추후(합의),손배(취하)		475
이 ○ ○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323	손 배	조 정 결 정		600
이 ○ ○	스 포 츠 서 울	2006서울조정324	손 배	취 하		601
이 ○ ○	스 포 츠 서 울	2006서울조정147	정 정 · 손 배	합 의		359
이 해 찬	일 요 신 문	2006서울조정11	정 정 ·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118
이 해 찬	프런티어타임스	2006서울조정12	손 배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119
이 희 범	국 민 일 보	2006서울조정240	반 론	합 의		489
이 희 범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241	반 론	취 하		490
익산○○축제운영본부	소 통 뉴 스	2006전북조정24	정 정 · 반론	합 의		641
익산○○축제운영본부	소 통 뉴 스	2006전북조정25	정 정 · 반론	합 의		643
익 산 시	뉴 시 스	2006서울조정492	정 정	취 하		878
익 산 시 농 민 연 대	전 민 일 보	2006전북조정12	정 정	취 하		26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 천 일 보	2006경기조정23	정 정	기 각		274
인천부평구○○○동사무소	아 시 아 일 보	2006서울조정490	정 정	취 하		875
○○○테크놀로지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51	반 론	취 하		181
○ ○ ○ (주)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329	정 정 ·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613
임 ○ ○	뉴 스 메 이 커	2006서울조정149	정 정 · 손 배	합 의		365
임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444	정 정 · 손 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06
임 ○ ○	S B S - T V	2006서울조정74	정 정 · 손 배	정정(합의),손배(취하)		222
임 ○ ○	시 사 저 널	2006서울조정510	정 정 ·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906
임 ○ ○	부 산 일 보	2006부산조정4	정 정	취 하		318
임 ○ ○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345	정 정 · 손 배	취 하		646
임 중 인	Y T N	2006서울조정253	정 정 ·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508
임 ○ ○	효 원	2006부산조정15	정 정 · 손 배	합 의		607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						
자 유 개 척 청 년 단	데일리서프라이즈	2006서울조정58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193
자 유 학 교 ○ ○	민 들 레	2006서울조정141	정 정 · 손배	조정(합의),손배(취하)		346
장 ○ ○	수 산 신 문	2006서울조정27	정 정	합 의		143
장 ○ ○	전주KBS-TV	2006전북조정6	정정 · 반론 · 손배	취 하		230
장 ○ ○	서 울 일 보	2006경기조정10	정정 · 반론 · 손배	정정 · 반론(합의),손배(취하)		212
장 ○ ○	월 간 조 선	2006서울조정322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599
장 수 군	전북대중일보	2006전북조정34	정 정	조 정 결 정		898
장 ○ ○	광 주 드 림	2006광주조정30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42
재 단 법 인 ○ ○ 사	인터넷조은뉴스	2006서울조정449	정 정	취 하		814
재 단 법 인 ○ ○ 사	e 조 은 뉴 스	2006부산조정30	정 정	합 의		914
재 정 경 제 부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56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190
재 정 경 제 부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71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20
재 정 경 제 부	Y T N	2006서울조정244	반 론	취 하		493
재 정 경 제 부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274	반 론	합 의		53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311	정 정	합 의		587
전국공무원노조광명시지부	e 서 부 신 문	2006경기조정27	정 정 · 손배	기 각		283
전국공무원노조청양군지부	청 양 신 문	2006대전조정20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883
전 국 교 직 원 노 조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307	정 정 ·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582
전 국 교 직 원 노 조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308	정정 ·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584
전국대학노조 ○○○대지부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346	정정 · 반론	합 의		647
전 국 철 도 노 조	문 화 일 보	2006서울조정106	정정 · 손배	취 하		294
전 국 철 도 노 조	한 국 경 제	2006서울조정107	정정 · 손배	취 하		295
전 ○ ○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261	정정 · 반론 · 손배	취 하		519
전 ○ ○	문 화 일 보	2006서울조정262	정정 · 반론 · 손배	정정 · 손배(취하),반론(합의)		519
전 ○ ○	국 민 일 보	2006서울조정313	반 론	취 하		589
전 ○ ○	서 울 신 문	2006서울조정314	반 론	취 하		590
전 ○ ○	매 일 경 제	2006서울조정315	반 론	취 하		590
전 ○ ○	안동MBC-TV	2006대구조정11	정 정 · 손배	취 하		708
전 ○ ○	T B C - T V	2006대구조정1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107
전 ○ ○	매 일 신 문	2006대구조정2	정 정	취 하		108
전 북 개 발 공 사	전 북 일 보	2006전북조정7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232
전 북 개 발 공 사	전 주 매 일	2006전북조정8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233
전 ○ ○	S B S - R	2006서울조정62	정 정	기 각		202
전 ○ ○	경 기 일 보	2006경기조정61	정 정	취 하		716
전 주 시	전북중앙신문	2006전북조정10	정 정	합 의		259
전 주 시	전북중앙신문	2006전북조정11	정 정 · 반론	합 의		261
전 주 시	전북중앙신문	2006전북조정13	정정 · 반론 · 손배	정정 · 손배(조정불성립결정),반론(조정결정)		271
전 주 시	전북중앙신문	2006전북조정14	정 정 ·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273
전 주 시	전북중앙신문	2006전북조정15	정 정 ·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273
전 주 ○ ○ 타 운 번 영 회	전 북 일 보	2006전북조정1	반 론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124
전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319	손 배	합 의		596
정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236	손 배	합 의		486
정 동 채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336	정 정	조 정 결 정		629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정	동	채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337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631
정	동	채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479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858
정	○	○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251	정 정 · 반론	합 의		503
정	○	○	시 민 일 보	2006서울조정480	정 정	합 의		860
정	○	○	경 기 매 일	2006경기조정69	정 정	취 하		863
정	보 통 신 부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170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394
정	○	○	전국버스노동자신문	2006서울조정369	정 정	합 의		676
정	○	○	경 인 일 보	2006경기조정11	정 정	취 하		216
정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501	손 배	조 정 결 정	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893
정	○	○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138	정 정	합 의		340
정	책 기 획 위 원 회 외 4인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203	정 정	정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기각		432
정	청	래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83	정 정 · 반론	취 하		239
정	청	래	S B S - T V	2006서울조정84	정 정 · 반론	취 하		239
정	○	○	C N B N E W S	2006서울조정468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38
정	○	○	경 기 일 보	2006경기조정25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279
○	○	○	한국방송대 학보	2006서울조정385	정 정	취 하		706
○	○	포 커 스 (주)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400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730
조	○	외 1인	더데일리포커스	2006서울조정495	손 배	합 의		884
조	○	○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235	반 론	합 의		485
조	○	○	동 양 일 보	2006충북조정7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755
조	○	○	동 양 일 보	2006충북조정8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771
조	○	○	M B C - T V	2006서울조정463	추 후	합 의		832
조	○	○	대 구 신 문	2006대구조정10	정정 · 반론 · 손배	정정 · 손배(취하),반론(합의)		659
조	○	○	대 전 일 보	2006대전조정1	정 정	합 의		120
조	○	○	경 기 도 민 일 보	2006경기조정33	정 정	합 의		437
조	○	○	주간사하타임즈	2006부산조정2	정 정 · 손배	합 의		276
조	○	○	로 즈 저 널	2006부산조정3	정 정 · 손배	합 의		278
조	○	○	주 간 사 하 신 문	2006부산조정25	정 정 · 손배	합 의		828
조	○	○	뉴 시 스	2006서울조정488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73
조	○	○	메 디 칼 투 데 이	2006서울조정489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74
조	○	○	우 리 일 보	2006경기조정70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927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외 4인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143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355
좌	○	○	전 북 매 일	2006전북조정4	반 론	취 하 간 주		141
주 간 당 진 시 대			당 진 뉴 스	2006대전조정4	정 정	합 의		247
주 식 회 사 ○ ○ 드림			이 데 일 리	2006서울조정436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		793
중 소 기 업 중 앙 회			한 겨 레	2006서울조정430	정 정	합 의		780
중 소 기 업 중 앙 회			K B S - T V	2006서울조정452	정 정 · 손배	취 하		819
중 소 기 업 중 앙 회			헤 럴 드 경 제	2006서울조정484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69
중 소 기 업 청			서 울 경 제	2006서울조정139	정 정	합 의		344
중 소 기 업 청			서 울 경 제	2006서울조정228	정 정	취 하		470
중 앙 인 사 위 원 회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54	반 론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취하	187
진	○	○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309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85
진	○	○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310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87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						
00·00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	종 로 신 문	2006서울조정137	정 정 · 손 배	합 의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인용	339
00·00뉴타운추진연합회	한 겨 레	2006서울조정266	정 정	취 하		524
채 ○ ○	국 민 일 보	2006서울조정187	손 배	조 정 결 정		421
채 ○ ○	새 전 북 신 문	2006전북조정20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432
천 ○ ○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287	정 정 · 손 배	취 하		552
○ ○ 교 육 (주)	연 합 뉴 스	2006서울조정80	정 정	합 의		233
○ ○ 교 육 (주)	한 국 경 제	2006서울조정81	정 정	합 의		234
○ ○ 산 업	경 기 일 보	2006경기조정26	정 정	합 의		281
최 ○ ○	경 향 신 문	2006서울조정312	손 배	합 의		588
최 ○ ○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446	정 정	취 하		809
최 ○ ○	한 겨 레	2006서울조정59	정 정 · 손 배	정정(합의),손배(취하)		196
최 ○ ○	뉴 스 앤 조 이	2006서울조정82	정 정 · 손 배	합 의		238
최 ○ ○ 외 1인	원 주 투 데 이	2006강원조정7	정 정 · 반 론	기 각		760
최 ○ ○ 외 1인	청주MBC-TV	2006충북조정9	손 배	취 하		919
최 ○ ○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525	반 론	합 의		929
최 ○ ○ 외 1인	충 청 신 문	2006대전조정16	정 정	취 하		575
최 ○ ○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13	정 정 ·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121
최 ○ ○	고 성 신 문	2006경남조정10	정 정 · 손 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45
최 ○ ○	함 안 아 라 신문	2006경남조정6	정 정	합 의		478
최 ○ ○	아 라 신 문	2006경남조정7	정 정	합 의		478
최 ○ ○	머 니 투 데 이	2006서울조정289	손 배	합 의		558
충남연기군○○면○○1리	연 기 신 문	2006대전조정17	반 론	취 하		606
충 치 예 방 연 구 회	한 겨 레	2006서울조정429	정 정	각 하		779
(㉡)						
코 리 아 ○ ○ ○ 그 룹	한 라 일 보	2006제주조정1	정정·반론·손배	조정불성립결정		210
코 리 아 ○ ○ ○ 그 룹	한 라 일 보	2006제주조정2	정정·반론·손배	조정불성립결정		213
○ ○ ○ 제 과	K B S - 2 T V	2006서울조정134	정 정 · 반 론	합 의		333
○ ○ 케 어 (주)	중 도 일 보	2006대전조정2	정 정	합 의		137
(㉢)						
○ ○ 유 통 외 1인	이 슈 제 주	2006제주조정3	정정·반론·손배	정정·반론(합의),손배(취하)		374
통 계 청	한 국 일 보	2006서울조정85	반 론	합 의		242
통 계 청	파 이낸셜 뉴 스	2006서울조정341	반 론	취 하		638
통 일 부	문 화 일 보	2006서울조정65	정 정	조 정 불 성립 결 정		207
통 일 부	조 선 일 보	2006서울조정66	정 정	조 정 불 성립 결 정		208
통 일 부	노 컷 뉴 스	2006서울조정124	정 정	취 하		321
통 일 부	국 민 일 보	2006서울조정175	정 정	취 하		401
통 일 부	문 화 일 보	2006서울조정176	정 정	취 하		402
통 일 부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225	정 정	조 정 불 성립 결 정		461
통 일 부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352	정 정	기 각		656
○○엔터테인먼트(주)	K B S - 2 T V	2006서울조정89	정정·반론·손배	정정·손배(취하),반론(합의)		251
특 허 청	전 자 신 문	2006서울조정390	반 론	취 하		715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표)						
○ ○ ○ ○ 교 회	기 독 신 문	2006서울조정349	반론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653
○ ○ ○ ○ 교 회	기 독 신 문	2006서울조정350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654
○ ○ ○ ○ 교 회	기 독 신 문	2006서울조정351	정정	합의		655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221	정정	합의		45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296	반론 · 손배	반론(합의), 손배(취하)		56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437	정정	취하		794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SBS - TV	2006서울조정498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887
(후)						
하 ○ ○	수산인신문	2006서울조정330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615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경기방송 - R	2006경기조정36	정정 · 손배	합의		462
학교법인 ○○○학원	한겨레	2006서울조정64	정정 · 반론	정정(취하), 반론(합의)		206
한강유역환경청	일간환경	2006서울조정401	정정 · 반론	합의		730
한강유역환경청	시민일보	2006서울조정527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931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매일	2006경기조정71	정정	취하		932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2006서울조정477	정정	취하		853
한 ○ ○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15	반론	취하 간주		130
한국계임산업개발원	SBS - TV	2006서울조정426	정정	합의		775
한국농촌공사	내일신문	2006서울조정186	반론	취하		419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동아일보	2006서울조정512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909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신동아	2006서울조정513	반론	조정결정		910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경제	2006서울조정265	정정 · 반론	취하		523
한국산업단지공단	MBC - TV	2006서울조정469	정정 · 반론	정정(취하), 반론(합의)		842
한국산업은행	KBS - 1TV	2006서울조정316	반론	취하		592
한국산업인력공단	SBS - TV	2006서울조정514	정정	합의		912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SBS - TV	2006서울조정159	반론	합의		378
한국여성단체연합	중앙일보	2006서울조정267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525
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한국목재신문	2006서울조정268	정정 · 손배	정정(합의), 손배(취하)		526
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한국목재신문	2006서울조정406	정정 · 손배	정정(합의), 손배(취하)		742
한국제약협회(사)	매일경제	2006서울조정403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739
한국제약협회(사)	MBC - TV	2006서울조정404	반론	취하		740
한국제약협회(사)	SBS - TV	2006서울조정405	반론	취하		741
한국종합주택관리	전북중앙신문	2006전북조정16	정정	합의		361
○○동주택조합	시사저널	2006서울조정161	정정 · 손배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382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MBC - TV	2006서울조정398	정정 ·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726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KBS - 1TV	2006서울조정478	정정 · 반론	합의		854
○○2차입주자대표회의	CMB광주방송	2006광주조정29	정정 · 손배	정정(합의), 손배(취하)		839
○○대학교	복음과상황	2006서울조정114	반론	합의		309
○○대학교	뉴스앤조이	2006서울조정115	반론	합의		311
한 ○ ○	한겨레	2006서울조정33	반론	취하		152
한 ○ ○	SBS - TV	2006서울조정167	정정 · 손배	각하		389
합 ○ ○	남도일보	2006광주조정6	정정	기각		236
해 군 본 부	제민일보	2006제주조정5	정정	합의		632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해군제주기지사업기획단	제 민 일 보	2006제주조정4	정 정	취 하		626
해양경찰청	국 제 신 문	2006부산조정17	정 정	합 의		648
해양수산부	경 향 신 문	2006서울조정14	정 정	합 의		129
해양수산부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144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356
해양수산부	오 마 이 뉴 스	2006서울조정299	정 정	취 하		568
해양수산부	노 컷 뉴 스	2006서울조정327	정 정	합 의		604
해양수산부	노 컷 뉴 스	2006서울조정494	반 론	합 의		881
○ ○ 제 과	K B S - 2 T V	2006서울조정132	정 정 ·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328
○ ○ ○ ○ ○ (주)	M B C - T V	2006서울조정456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823
행정자치부	문 화 일 보	2006서울조정374	정 정	합 의		685
현대차노조	동 아 일 보	2006서울조정121	정 정	합 의		317
현 ○ ○	세 계 일 보	2006서울조정163	정 정	취 하		384
현 ○ ○	원 주 투 데 이	2006강원조정4	반론 · 손배	취 하		293
호남매일신문사	인터넷시민의소리	2006광주조정20	정 정 ·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412
홍 ○ ○	브레이크뉴스	2006서울조정165	정 정 · 손배	취 하		386
홍 ○ ○	쿠 키 뉴 스	2006서울조정166	정 정	취 하 간 주		388
홍 ○ ○	S B S - T V	2006서울조정396	손 배	취 하		725
○ ○ 토 취 개 발 (주)	내 외 일 보	2006서울조정461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829
환 경 부	국 제 신 문	2006부산조정9	정 정	합 의		557
환 경 부	매 일 경 제	2006서울조정306	정 정	합 의		580
환 경 부	서 울 신 문	2006서울조정376	정 정 ·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687
환 경 부	서 울 신 문	2006서울조정392	정 정	합 의		718
환 경 부	K B S - 1 T V	2006서울조정511	정 정 · 반론	조 정 결 정	폐신청인 이의신청, 소 계류	907
황 ○ ○	중 앙 일 보	2006서울조정318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595
황 ○ ○	오 마 이 뉴 스	2006서울조정380	정 정	합 의		694
황 ○ ○	싱 글 즈	2006서울조정205	정 정 · 손배	합 의		435
황 ○ ○	조 간 경 남	2006경남조정3	정 정	취 하 간 주		296
○ ○ 의 료 재 단	뉴 스 리 터	2006경기조정63	정 정 · 손배	취 하		736
○ ○ 산 업 (주)	T J B - T V	2006대전조정19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803
기 타						
5·18민주유공자○○동지회	전 남 타 임 스	2006광주조정28	정 정 · 손배	취 하		808
○ ○ ○ (주)	매 일 경 제	2006서울조정248	정 정	취 하		499
○ ○ ○ 마 케 팅	파 이낸셜뉴스	2006서울조정119	정 정	취 하		315
H C N 충 북 방 송	한 빛 일 보	2006충북조정1	반 론	합 의		342
H C N 충 북 방 송	한 빛 일 보	2006충북조정2	반 론	합 의		408
H C N 충 북 방 송	한 빛 일 보	2006충북조정3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410
○○건설(주) 외 1인	우 리 일 보	2006경기조정8	정 정 · 손배	정정(합의),손배(취하)		201
○ ○ ○ (주)	런 아 시 아 넷	2006서울조정120	정 정	기 각		316
○○○엔터테인먼트	스 포 츠 서 울	2006서울조정40	정 정	취 하		161

언론중재신청사례 색인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가)						
권 ○ ○	시 사 저 념	2006서울중재1	손 배	중 재 결 정		937
김 ○ ○	동 아 일 보	2006서울중재3	손 배	중 재 결 정		941
김 ○ ○	S B S - T V	2006서울중재5	손 배	중 재 결 정		944
(나)						
서 울 ○ ○ ○ 대 학 교	동국대대학원신문	2006서울중재4	정정·반론	중 재 결 정		942
신 ○ ○	시 사 저 념	2006서울중재2	손 배	중 재 결 정		939
(하)						
홍 ○ ○	S B S - T V	2006서울중재6	손 배	중 재 결 정		94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1.

시 행 : 2005. 7.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

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

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

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 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 | |
|---|---|
| <p>■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p> <p>■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p> <p>■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p> <p>■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p> <p>■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p> | <p>■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p> <p>■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p> <p>■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p> <p>■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p> <p>■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p> |
|---|---|

2007년 3월 20일 인쇄

2007년 3월 30일 발행

편저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조 사 연 구 팀
 발행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 화 : •대 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 담 센 터 02)397-3089
<http://www.pac.or.kr>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